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목차 정리



2026. 7.

사법정책연구원

목 차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1	2014-0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1
2	2014-0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4
3	2014-0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9
4	2014-0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14
5	2014-05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17
6	2014-06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2
7	2014-07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호	25
8	2015-01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8
9	2015-02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31
10	2015-03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최은정	38
11	2015-04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44
12	2015-05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53
13	2015-06	중·고등학생을 위한 법원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59
14	2015-07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변지영	63
15	2015-08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김주석	65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16	2015-09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71
17	2015-10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75
18	2015-11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김형진	80
19	2015-12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변지영	85
20	2015-12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변지영	87
21	2015-13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장수영,이덕환	89
22	2015-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93
23	2015-15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97
24	2015-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103
25	2015-17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최유경	106
26	2016-01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박준선	112
27	2016-02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116
28	2016-0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계인국	122
29	2016-04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125
30	2016-05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136
31	2016-06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141
32	2016-07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김주석	146
33	2016-0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하민경	153
34	2016-0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안문희	159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35	2016-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162
36	2016-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168
37	2016-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172
38	2016-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182
39	2016-14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189
40	2016-15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양시훈	198
41	2016-16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각국의 경제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홍진표	210
42	2016-17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22
43	2016-18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송현정	237
44	2016-19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47
45	2016-20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김정환	263
46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80
47	2016-22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88
48	2017-01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97
49	2017-02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301
50	2017-03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309
51	2017-04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김주완	313
52	2017-05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321
53	2017-06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335
54	2017-07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박원규	344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55	2017-08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359
56	2017-08 별책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별책)	홍진표	367
57	2017-09	미국 행정법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372
58	2017-10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표현덕,이혜영	385
59	2017-11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397
60	2017-12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402
61	2017-13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406
62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413
63	2017-15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박준선	423
64	2018-0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서용성	433
65	2018-02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446
66	2018-03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459
67	2018-04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468
68	2018-05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표현덕	473
69	2018-06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오세용,최유나	478
70	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486
71	2018-09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김대홍양은상,최유나	495
72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장지용	497
73	2018-11	아시아 · 태평양 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이혜영	504
74	2018-12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509
75	2018-13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514
76	2018-14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521
77	2018-15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524
78	2018-16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533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79	2018-17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539
80	2019-01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544
81	2019-02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550
82	2019-03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문선주	557
83	2019-04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562
84	2019-05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서현웅	571
85	2019-06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578
86	2019-07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587
87	2019-08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594
88	2019-09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차성안	603
89	2019-09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차성안	610
90	2019-10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617
91	2019-1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622
92	2019-12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630
93	2019-13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634
94	2019-14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현범	638
95	2019-14 별책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647
96	2019-15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최용훈	648
97	2019-16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장지용,김효정	655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98	2019-17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663
99	2019-18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이혜정	668
100	2020-01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676
101	2020-02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박용철	681
102	2020-03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687
103	2020-04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691
104	2020-05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698
105	2020-0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716
106	2020-07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723
107	2020-08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734
108	2020-09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748
109	2020-10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김경오	756
110	2020-11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763
111	2020-12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김봉철	770
112	현안보고서 2020-0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정성민,백광균	775
113	2020-13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이지민	780
114	2020-14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785
115	2020-15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792
116	2020-1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799
117	2020-17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직렬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815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118	2020-18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822
119	2020-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정호경	829
120	2020-20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강영재	836
121	2021-0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845
122	2021-02	체제전환기의 국내·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852
123	2021-03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859
124	2021-04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이민형	862
125	2021-0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병민	871
126	2021-06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김동현	877
127	2021-07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888
128	2021-08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893
129	2021-09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성대규	901
130	2021-10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907
131	2021-11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박우경	911
132	2021-12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나수경	914
133	2021-13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김정환	926
134	2021-14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933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135	현안보고서 2021-0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이재찬	947
136	2021-15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951
137	2021-16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955
138	2021-17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959
139	2022-01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967
140	2022-0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974
141	2022-0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980
142	2022-0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988
143	2022-0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995
144	2022-0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1004
145	2022-0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민형	1007
146	2022-0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1012
147	2022-0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1024
148	2022-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전휴재	1035
149	현안보고서 2022-01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1043
150	2022-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이상훈	1048
151	2022-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1054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152	2022-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1065
153	2022-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1071
154	2022-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1076
155	2022-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1080
156	2022-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1086
157	2022-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1089
158	2022-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1093
159	현안보고서 2022-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정현희	1101
160	2022-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1106
161	2023-0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임종미	1111
162	2023-0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1116
163	2023-0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1121
164	2023-0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1130
165	2023-0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1134
166	2023-0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1143
167	2023-07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1152
168	2023-0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얼	1158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169	2023-0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1161
170	2023-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1167
171	2023-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1172
172	2023-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이혜정	1175
173	2023-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1183
174	2023-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1189
175	2023-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1195
176	2023-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1202
177	2023-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1208
178	2023-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1215
179	2023-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1220
180	2023-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1225
181	2023-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방	정승연	1229
182	2024-0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1235
183	2024-0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1242
184	2024-0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1248
185	2024-0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1250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186	2024-0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1256
187	2024-0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1269
188	2024-0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1277
189	2024-0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임성민	1285
190	2024-09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민·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이영창	1292
191	2024-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1304
192	2024-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1306
193	2024-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1311
194	2024-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1319
195	2024-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1326
196	2024-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1329
197	2024-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1338
198	2024-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1342
199	2024-18	재개발・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1348
200	2024-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1355
201	2024-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1363
202	2025-0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1368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203	2025-0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1376
204	현안보고서 2025-01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남승민	1379
205	현안보고서 2025-02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김효정	1385
206	현안보고서 2025-0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정현	1389
207	2025-03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림	1397
208	2025-04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김봉철	1404
209	2025-05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신권철	1408
210	2025-06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류미리	1413
211	2025-07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조미선	1417
212	2025-08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진영	1423
213	2025-09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민	1429
214	2025-10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심병준	1435
215	현안보고서 2025-04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유인규	1441
216	현안보고서 2025-05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주	1447
217	2025-11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박우경	1452
218	2025-12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영창 홍보람	1457
219	2025-13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욱	1462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220	현안보고서 2025-06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홍보람	1467
221	현안보고서 2025-07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서용성	1477
222	2026-01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김미란	1482
223	2026-02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준	1491
224	2026-03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과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이현호	1496
225	2026-04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여하	1502
226	현안보고서 2026-01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윤동현	1504
227	현안보고서 2026-02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정현	1509
228	2026-05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설동윤	1514
229	2026-06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혜림	1524
230	2026-07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남승민	1531
231	2026-08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용	1541
232	2026-09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홍보람	1547
233	2026-10	준거법의 지정, 조사 및 해석·적용에 관한 연구	김효정	1559
234	2026-11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1566
235	2026-12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헌	1573
236	2026-13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유리	1582

연번	총서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페이지
237	2026-14	의료조력사 법제화에 관한 연구	김성돈	1587
238	2026-15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	박진영	1595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s for Overseas Citizens

연구총서 2014-01

연구책임자 :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4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1
제2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의 현황 ····· 15
제1절 재외국민의 현황 ····· 16
I. 개요 ····· 16
1. 재외국민의 의의 ····· 16
2. 구별 개념 ····· 16
II. 재외국민의 수 ····· 17
1. 각국의 재외국민 수 ····· 17
2. 주요 3개국 재외국민의 분포 ····· 19
3. 정리 ····· 20
제2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근거 법규 ····· 21
I.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의의 ····· 21
II. 관련 법규 ····· 22
1. 국적법 ····· 23
2. 국제사법 ····· 23

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24
II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5
1. 의의 ····· 25
2. 주요 내용 ····· 25
3. 정리 ····· 30
제3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의 현황 ····· 32
I.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수 ····· 32
II. 정리 ····· 33
제3장 현행 사무처리 절차의 문제점 ····· 35
제1절 개요 ····· 36
제2절 불편사항 발생의 구조적 원인에 관한 고찰 ····· 37
I. 개설 ····· 37
II. 비신속성 ····· 38
1. 신속한 사무처리의 필요성 ····· 38
2. 현행 등록사무 처리절차 ····· 39
3. 사건처리의 지연 ····· 39
4. 외교부 경유절차의 개선 필요성 ····· 40
III. 비전문성 ····· 41
1. 전문가의 업무처리 필요성 ····· 41
2. 현재 업무담당자들의 비전문성 ····· 46
3.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 47
IV. 비효율성 ····· 49
1.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필요성 ····· 49
2. 현재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 50
3. 정리 ····· 52
제3절 실무자들이 바라본 문제점 ····· 53
I. 개설 ····· 53
II. 재외공관 업무담당자들이 바라본 문제점 ····· 54
1. 설문조사 개요 ····· 54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55
III. 등록관서 업무담당자들이 바라본 문제점 ····· 66
1. 설문조사 개요 ····· 66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67
제4절 불편사례에 관한 고찰 ····· 76
I. 재외국민의 실정 ····· 76
II. 재외공관 업무담당자들이 전하는 재외국민의 불편사항 ····· 77
III. 구체적 불편사례 ····· 79
1. 미국 재외국민 사례와 처리과정 ····· 79

2. 일본 재외국민 사례와 처리과정 ····· 81
제4장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 83
제1절 개요 ····· 84
제2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가칭)'의 설립 ····· 85
I. 개설 ····· 85
II.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의 의의와 필요성 ····· 86
1. 의의와 관련 문제 ····· 86
2.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 ····· 88
III. 기대 효과 ····· 89
1. 재외국민을 위한 효과 ····· 89
2. 현재의 업무담당자들을 위한 효과 ····· 92
3. 사법부를 위한 효과 ····· 93
4. 현행 절차와 개선된 절차의 비교 ····· 94
제3절 법원공무원의 해외 직무파견 확대 ····· 97
I. 의의와 논의 배경 ····· 97
II. 법원공무원 직무파견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98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 98
2. 사법공조 업무 ····· 100
3. 사법한류의 역할 ····· 101
4. 재외공관 직원의 의견 ····· 102
5. 정리 ····· 102
제5장 결론 ····· 105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Indigent Defense System

연구총서 2014-02

연구책임자 : 양시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4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8
제2장 국선변호제도 일반론 ····· 11
제1절 국선변호제도 개관 ····· 12
I.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 12
II. 국선변호인의 자격 ····· 12
III.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 ····· 13
1. 국선변호인의 종류 ····· 13
2.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 13
3.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 14
4.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 및 사임 ····· 15
IV. 관련 통계 ····· 15
제2절 국선변호제도 개선 과정 ····· 16
I. 종래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비판 ····· 16
II. 국선변호제도 개선 과정 ····· 17
1. 서설 ····· 17

2. 국선변호인 선정방식 변천 ····· 17
3.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시행 이후의 개선 과정 ····· 18
제3장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운용 현황 및 쟁점 ····· 21
제1절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관 ····· 22
I. 의의 ····· 22
II. 근거 규정 ····· 22
제2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연혁 ····· 22
I. 도입 과정 ····· 22
II. 시행 경과 ····· 24
1. 제1차 시범 실시기(2004. 9. 1. ~ 2005. 2. 28.) ····· 24
2. 제2차 시범 실시기(2005. 3. 1. ~ 2006. 2. 28.) ····· 24
3. 본격적 시행 1기(2006. 3. 1. ~ 2009. 2. 28.) ····· 25
4. 본격적 시행 2기(2009. 3. 1. 이후) ····· 27
III.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현황(2007년 이후) ····· 28
제3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 성과 ····· 29
I. 양적 확대 ····· 29
II. 질적 발전 ····· 30
제4절 현행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관련 쟁점 ····· 32
제4장 외국의 제도 및 시사점 ····· 33
제1절 미국 ····· 34
I. 서론 ····· 34
II. 미국 공적변호제도의 연혁 ····· 34
1. 형사 공적변호제도의 태동 ····· 34
2. 형사 공적변호제도의 발전기 ····· 35
III. 미국 공적변호제도의 일반적 현황 ····· 37
1. 유형 ····· 37
2. 연방의 공적변호제도 운용 현황 ····· 37
3. 주 및 카운티의 공적변호제도 운용 현황 ····· 39
4. 각 주별 제도 및 운용 현황 ····· 46
IV. 공적변호제도에 관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기준 ····· 58
1. 일반론 ····· 58
2. 미국변호사협회(ABA)의 공적변호 시스템에 관한 기준 ····· 58
V. 미국 공적변호제도에 대한 평가 ····· 59
VI. 시사점 ····· 60
제2절 영국 ····· 62
I. 개관 ····· 62
1. 잉글랜드(England) 및 웨일즈(Wales) ····· 62
2. 스코틀랜드(Scotland) 및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 63

II. 영국 사법제도 및 공적변호제도 개관 ····· 64
1. 영국 사법제도 개관 ····· 64
2. 공적변호업무 개관 ····· 66
III. 영국 계약변호인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 67
1. LAA(Legal Aid Agency)의 설립 ····· 67
2. LAA의 목적 ····· 68
3. LAA의 조직 구성 ····· 68
4. LAC(Legal Aid Casework) ····· 68
5. 계약변호인 제도의 운영 규모 ····· 69
6. 계약변호인의 보수 ····· 70
7. 계약변호인의 자격기준 설정 ····· 71
IV. 퍼블릭디펜더 제도 ····· 71
1. 개관 ····· 71
2. 현황 ····· 72
V. 공적변호제도에 대한 변화 및 평가 ····· 72
1. 변화의 배경 ····· 72
2. 변화에 대한 평가 ····· 72
3. 공적변호제도에 대한 그 밖의 평가 ····· 74
VI. 특징 및 시사점 ····· 74
제3절 일본 ····· 75
I. 서설 ····· 75
1. 형사국선변호제도의 변천 ····· 75
2. 법테라스의 설립 과정 개관 ····· 76
II. 법테라스의 유래 ····· 77
1. 서설 ····· 77
2. 형사국선변호와 당번변호사제도 ····· 77
3. 법테라스의 설립 및 법률부조협회와 대비되는 특징 ····· 77
III. 법테라스 운영 형식과 관련된 논의 ····· 78
1. 운영주체와 관련한 설립 초기의 논의 ····· 78
2. 독립행정법인에 준하는 조직으로서의 법테라스 ····· 79
IV. 법테라스 운영 현황 ····· 79
1. 목적 ····· 79
2. 업무 ····· 80
3. 조직 ····· 80
4. 재정(財政) ····· 83
5. 국선변호 관련 업무 ····· 84
6. 상근(常勤)변호사 ····· 87
V. 법테라스 제도에 대한 평가 ····· 91

VI. 시사점 ····· 92
제5장 위촉·관리의 주체 및 조직 구성 관련 논의 검토 ····· 95
제1절 서설 ····· 96
제2절 제시되는 대안에 대한 검토 ····· 96
I. 변호사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 ····· 96
1. 장점 ····· 96
2. 단점 ····· 97
II. 법률구조공단이 흡수하는 안 ····· 99
1. 장점 ····· 99
2. 단점 ····· 99
III.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안 ····· 100
1. 장점 ····· 100
2. 단점 ····· 101
제3절 종합적 검토 ····· 102
I. 퍼블릭디펜더 제도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는 안에 대한 검토 ····· 102
II. 운영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와 최근의 개선 ····· 104
1. 기존 제도 . 국선변호위원회 구성 ····· 104
2. 최근의 개선 . 국선예규 개정 ····· 105
III. 소결 ····· 106
제6장 위촉 절차 관련 개선 방안 ····· 109
제1절 현행 위촉 절차 개관 ····· 110
I. 위촉 주체 ····· 110
1. 관련 규정 ····· 110
2. 해석 및 변천 과정 ····· 111
II. 위촉 절차 ····· 112
III. 재위촉(연임) ····· 113
1. 개관 ····· 113
2. 1회 및 2회 재위촉 ····· 113
3. 3회 연임자에 대한 위촉 ····· 114
제2절 개선 방안 ····· 114
I. 서설 ····· 114
II. 위촉 방식 개선 방안 ····· 115
1. 현황과 현행 방식의 한계 ····· 115
2. 면접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 116
제7장 보수와 업무량 및 재정 관련 개선 방안 ····· 119
제1절 보수와 업무량 관련 개선 논의 ····· 120
I.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 ····· 120

1. 현행 보수 및 비용변상 기준 개관 ····· 120
2. 개선 방안 ····· 121
II.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및 업무량 ····· 123
1. 보수 적정 여부 ····· 123
2. 업무량 적정 여부 ····· 124
제2절 재정 관련 개선 방안 ····· 125
I. 재정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25
1. 개관 ····· 125
2. 현행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 129
II. 개선 방안 ····· 132
1. 국선변호 관련 예산의 전액 일반회계예산으로의 일원화 ····· 132
2. 이원화 유지 시 공탁지원금에 의한 집행비율 축소 ····· 132
3. 기타 . 공탁출연금의 국가귀속 문제 ····· 133
제8장 관리 관련 개선 방안 ····· 135
제1절 업무평가 부분 ····· 136
I. 현행 업무평가방식 개관 ····· 136
1. 재판장에 의한 평가 및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관리 ····· 136
2. 일반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방식과의 비교 ····· 136
II.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 137
1. 서설 ····· 137
2. 재판장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 137
3. 개선 방안 ····· 138
제2절 재교육 부분 ····· 141
I. 재교육 관련 현황 ····· 141
1. 서설 ····· 141
2. 워크샵 예시 : 서울고등법원 2014년 상반기 워크샵 ····· 141
II. 개선 방안 ····· 142
1. 서설 ····· 142
2.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방안 ····· 143
3. 국선전담변호사 상호 간 협업체제 구축 방안 ····· 146
제9장 결론 ····· 149
제1절 논의의 정리 ····· 150
제2절 나가며 ····· 153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Proper Supervision Measures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ruptcy Court

연구총서 2014-03

연구책임자 : 강민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4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제2장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관여자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 11
제1절 우리나라 도산절차 관여자 ····· 12
I. 도산절차의 구분 ····· 12
1. 회생형 절차 ····· 12
2. 청산형 절차 ····· 12
II. 회생절차 ····· 13
1. 관리인 ····· 13

2. 조사위원 ····· 14
3. 감사 ····· 14
III. 파산절차 ····· 15
1. 파산관재인 ····· 15
2. 감사위원 ····· 15
IV. 개인회생절차 ····· 16
1. 채무자 ····· 16
2. 회생위원 ····· 16
제2절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 16
I. 법원의 관리·감독 ····· 16
1. 도산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 16
2. 법원의 관리·감독 권한 ····· 17
II. 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 20
1. 관리위원회의 구성 ····· 20
2. 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의 일반적인 역할 ····· 21
III. 채권자협의회의 관리·감독 ····· 22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23
2. 채권자협의회의 일반적인 역할 ····· 23
3. 채권자협의회 활동비용의 부담 ····· 24
제3절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무의 개선 현황 ····· 25
I.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선 ····· 25
1. 통합재판부 확대 설치와 법관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 ····· 25
2. 관리위원회의 확대 설치 ····· 25
II.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보완 ····· 26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한 논란 ····· 26
2. 실무상의 보완 ····· 27
III. 절차관여자 선임 제도의 개선 ····· 28
1. 법인회생사건의 절차관여자 선임 ····· 28
2. 파산관재인의 선임 ····· 29
3. 외부회생위원 제도의 도입과 회생위원의 선임 ····· 29
IV. 그 밖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30
1. 개인 파산관재인의 원칙적 선임 ····· 30
2. 절차관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평정 실시 ····· 30
3. 채권자협의회의 관리·감독 활성화 ····· 31
제3장 절차관여자 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33
제1절 미국 ····· 35
I. 절차의 개관 ····· 35
1. 7장 절차(Liquidation) ····· 35

2. 11장 절차(Reorganization) ····· 36
3. 13장 절차(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 36
II.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 37
1. 법원의 감독 ····· 37
2. 연방관재인(United States Trustee)의 감독 ····· 39
3. 채권자의 감독 ····· 44
4. 통지 및 청문절차 ····· 45
III. 검토 ····· 46
제2절 영국 ····· 47
I. 절차의 개관 ····· 47
1. 개인의 도산절차 ····· 48
2. 기업의 도산절차 ····· 49
II.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 50
1. 법원 ····· 50
2.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와 도산국(Insolvency Service) ····· 51
3. 채권자 ····· 52
III. 검토 ····· 52
제3절 독일 ····· 53
I. 절차의 개관 ····· 53
1. 일반적인 절차의 진행(청산 또는 도산계획절차) ····· 53
2. 자기관리절차(Eigenverwaltung) ····· 54
3. 소비자도산절차 ····· 54
II.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 55
1. 법원 ····· 55
2. 채권자 ····· 56
III. 검토 ····· 57
제4절 일본 ····· 57
I. 절차의 개관 ····· 57
1. 파산절차 ····· 58
2. 회사갱생절차 및 민사재생절차 ····· 58
3. 소규모 개인재생 및 급여소득자 등 재생절차 ····· 59
II.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 59
1. 재판소 ····· 59
2. 채권자 ····· 60
III. 검토 ····· 61
제5절 외국 제도들에 대한 분석의 시사점 ····· 61
제4장 도산절차의 관리·감독 역할 재정립 논의 검토 ····· 67
제1절 도산 실무의 현황과 역할 재정립 논의 ····· 68

I. 도산 실무의 현황과 과제 ····· 68
1. 법원에 의한 절차관여자의 선임과 관리·감독 ····· 68
2. 관리위원회의 도산절차 감독 기능 약화 ····· 70
3. 채권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소극적 참여 ····· 71
II. 역할 재정립 논의에서 제기되는 실무상 문제점 ····· 72
1. 역할 재정립 논의 ····· 72
2. 대심구조의 약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 ····· 73
제2절 역할 재정립 논의의 검토 ····· 74
I. 대심주의 강화 논의에 관한 검토 ····· 74
1. 도산절차와 대심주의 ····· 74
2. 현행 관리·감독 구조에 관한 논의의 검토 ····· 78
3. 대심구조 약화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논의의 검토 ····· 80
4. 대심구조 강화 방안에 관한 검토 ····· 81
II. 재판 기능과 관리·감독 기능 분리 논의에 관한 검토 ····· 84
1. 법원의 재판 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의 분리 논의 ····· 84
2. 외국의 도산감독기구에 관한 검토 ····· 85
3. 재판 기능과 관리·감독 기능 분리 논의에 관한 검토 ····· 89
III. 역할 재정립 논의의 시사점 ····· 93
제5장 파산법원의 설치와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 ····· 95
제1절 파산법원 설치 논의와 설치 필요성 ····· 96
I.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 경과 ····· 96
1.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의 파산법원 설치 논의 ····· 96
2. 2008년 이후 도산사건 및 실무의 변화 ····· 96
3. 파산법원 설치 논의 ····· 97
II. 파산법원 설치의 필요성 ····· 98
1. 전문법원(specialized court)의 설치 기준 ····· 98
2. 전문법원으로서의 파산법원 설치의 필요성 ····· 98
3. 파산법원 설치의 의미 ····· 100
제2절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절차관여자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 ····· 100
I.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관리·감독 개선 방향 ····· 100
II. 절차관여자의 자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101
1. 개선 필요성 ····· 101
2. 절차관여자 자질의 체계적 전산화 관리 ····· 103
III. 절차관여자 선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개선 방안 ····· 107
1. 개선 필요성 ····· 107
2. 절차관여자 선임의 역할 분담 ····· 108
IV. 법원의 관리·감독 역할 개선 방안 ····· 109
1. 법원 역할의 재검토 ····· 109

2. 법원의 전문성 강화 ····· 111
3. 사건 특성에 따른 관리·감독 구도 설정 ····· 112
V. 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역할 개선 ····· 113
1.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 ····· 113
2. 조직 구성의 개선 ····· 114
3.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116
VI. 채권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 ····· 118
1. 채권자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고려할 점 ····· 118
2. 채권자협의회의 절차 참여 촉진 ····· 119
3.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참여 촉진 ····· 120
제6장 결론 ····· 123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Methods for Improving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연구총서 2014-04

연구책임자 : 양은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연구참여자 : 김태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제2장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 19
제1절 개관 ····· 20
I. 등기제도 ····· 20
1. 연혁 ····· 20
2. 법원(法源) 및 기본원칙 ····· 21
3. 등기의 효력 ····· 22
II. 등록제도 ····· 22
1. 연혁 ····· 22
2. 법원(法源) 및 기본원칙 ····· 23
III.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24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상호의존적 관계 ····· 24
2.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기재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규정 ····· 25
제2절 평가 ····· 27
I. 등기와 대장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권리관계 명확화 ····· 27

1. 등기 업무의 특성 ····· 27
2. 대장 업무의 특성 ····· 29
3. 소결 ····· 30
II. 관련 업무와의 유기적·통일적인 처리 ····· 30
III.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업무와 정보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31
제3절 과제 ····· 31
제3장 각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5
제1절 용어의 정리 ····· 36
제2절 각국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현황 ····· 37
I. 개관 ····· 37
II. 유형 ····· 37
1. 부동산등기-대장 분리형(부동산 공부가 등기와 대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 ····· 37
2. 부동산등기-대장 통합형(부동산 공부로서 등기와 대장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 ····· 38
3. 기타(유일한 부동산 공부로서 등기부만 존재하는 국가) ····· 38
제3절 독일 ····· 39
I. 개관 ····· 39
1. 등기제도 ····· 39
2. 지적제도 ····· 44
II.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합에 관한 논의 ····· 45
1. 서설 ····· 45
2. 2004년 15대 연방하원에서의 법률개정안 ····· 46
3. 2006년 16대 연방하원에서의 법률개정안 ····· 49
III.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치를 위한 조치 ····· 49
IV. 평가 ····· 50
V. 시사점 ····· 51
제4절 일본 ····· 52
I. 개관 ····· 52
II.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 52
1. 부동산 공시제도의 연혁 및 일원화의 사회적 배경 ····· 52
2.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 54
3. 일원화 이후의 문제점 ····· 59
III. 시사점 ····· 60
제4장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 ····· 63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향과 목표 ····· 64
I. 부동산 공부의 공시기능 제고 ····· 64
II. 국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성 추구 ····· 64
III. 부동산 공시제도의 안정성 추구 ····· 64
제2절 부동산 공부 일원화 논의에 대한 검토 ····· 65
I. 부동산 공부 일원화 방안 ····· 65
1. 의의 ····· 65
2. 논거 ····· 66
3. 구체적 방안 ····· 66
4. 문제점과 한계 ····· 69
II.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72
1.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72

2. 추진경과 ····· 72
3. 등기정보 종합의 문제점 ····· 73
III. 소결 ····· 80
제3절 현행 제도 하에서의 개선 방안 ····· 82
I. 개설 ····· 82
II. 건축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등기촉탁 의무 규정 신설 ····· 83
III. 등기기록과 대장(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연계 ····· 84
IV. 실시간 통지와 촉탁 ····· 85
V. 관련 정보의 자동 변경 ····· 86
VI. 소결 ····· 86
제5장 결론 ····· 89

5.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Measures for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Judicial Administration

연구총서 2014-05

연구책임자 : 이재석(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장판사)
연구참여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2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제2장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개괄적 고찰 ····· 23
제1절 우리나라 사법행정의 개관 ····· 25
Ⅰ. 사법행정 ····· 25
1. 의의 ····· 25
2. 특질 ····· 25
3. 중요성 ····· 26
Ⅱ. 사법행정사무 ····· 27
제2절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개념의 정립 ····· 28
Ⅰ. 필요성 ····· 28
Ⅱ. 개념 규정 ····· 30
1. 국민 ····· 30
2. 참여영역으로서의 사법행정 ····· 30
3. 참여 ····· 33

4. 소결 ····· 35
Ⅲ. 유사 개념과의 구별 ····· 35
제3절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필요성 ····· 36
Ⅰ. 논의 방향 ····· 36
Ⅱ. 의식적 측면 ····· 36
1. 사법에 대한 신뢰 강화 ····· 36
2.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한 건설적 비판 ····· 37
Ⅲ. 제도적 측면 ····· 38
1. 국민의 사법행정수요를 파악·전달하는 창구 ····· 38
2. 국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사법행정 구현 ····· 40
Ⅳ. 정책적 측면 ····· 40
1.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의 지향 ····· 40
2. 창의와 혁신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품질 향상 ····· 41
제4절 참여 유형의 분류 ····· 42
제3장 우리나라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운영 현황 ····· 49
제1절 발전 경과 ····· 51
Ⅰ.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기존의 노력 ····· 51
Ⅱ. 새로운 형태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 실시 ····· 52
Ⅲ. 요약 ····· 53
제2절 시민사법위원회·시민사법참여단의 개관 ····· 54
Ⅰ. 개괄적 비교 ····· 54
Ⅱ. 시민사법위원회 ····· 55
1. 구성 ····· 55
2. 활동 ····· 56
Ⅲ. 시민사법참여단 ····· 56
1. 구성 ····· 56
2. 활동 ····· 57
제3절 법원별 현황 ····· 58
Ⅰ. 논의 방향 ····· 58
Ⅱ. 참여 유형 ····· 58
Ⅲ. 참여 영역 및 참여 방식 ····· 60
Ⅳ. 고등법원 ····· 61
1. 서울고등법원 ····· 61
2. 대전고등법원 ····· 62
3. 대구고등법원 ····· 63
4. 부산고등법원 ····· 63
5. 광주고등법원 ····· 64
6. 특허법원 ····· 65

Ⅴ. 지방법원 ····· 66
1. 서울중앙지방법원 ····· 66
2. 서울가정법원 ····· 67
3. 서울행정법원 ····· 68
4. 서울동부지방법원 ····· 68
5. 서울남부지방법원 ····· 69
6. 서울북부지방법원 ····· 70
7. 서울서부지방법원 ····· 71
8. 의정부지방법원 ····· 72
9. 인천지방법원 ····· 72
10. 수원지방법원 ····· 73
11. 춘천지방법원 ····· 74
12. 대전지방법원 ····· 75
13. 청주지방법원 ····· 76
14. 대구지방법원 ····· 77
15. 부산지방법원 ····· 78
16. 울산지방법원 ····· 79
17. 창원지방법원 ····· 79
18. 광주지방법원 ····· 80
19. 전주지방법원 ····· 81
20. 제주지방법원 ····· 82
제4절 지역사회 사법행정수요의 대응 사례 ····· 83
Ⅰ. 환각물질 판매 금지 캠페인 ····· 83
1. 환각물질 판매 금지 캠페인의 자문 ····· 83
2. 환각물질 판매 금지 캠페인의 시행 ····· 84
3. 환각물질 판매 금지 공청회의 개최 ····· 84
Ⅱ. 시민법률대학 ····· 85
1. 논의 과정 ····· 85
2. 운영 현황 ····· 85
제5절 평가 ····· 86
제6절 과제 ····· 89
제4장 미국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이해 ····· 95
제1절 고찰의 필요성 ····· 97
제2절 제도의 실태 ····· 98
Ⅰ. 발전 경과 ····· 98
Ⅱ. 협력과 소통 ····· 99
Ⅲ. 참여 유형 ····· 102
제3절 주요 현황 ····· 104

Ⅰ. 논의 방향 ····· 104
Ⅱ. 매사추세츠 주의 제도 ····· 104
1. 프랭클린 카운티 미래 연구소 프로젝트 ····· 104
2. 매사추세츠 주 지방법원 전략 계획 추진 사례 ····· 107
Ⅲ. 캘리포니아 주의 제도 ····· 109
1. 캘리포니아 주 사법부의 법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 시스템 구축 ····· 109
2. 사법행정 자문위원회 참여 및 회의 공개 ····· 112
3.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 지방법원의 사례 ····· 113
Ⅳ. 그 밖의 제도 ····· 114
1. 워싱턴 D.C.의 우수 법원을 위한 위원회 ····· 114
2. 뉴욕 주의 법원혁신센터 및 현대법원을 위한 기금 ····· 115
3. 위스콘신 주의 지역단체-법원 파트너십 프로그램 ····· 116
4. 뉴햄프셔 주의 시민위원회 ····· 116
5. 뉴저지 주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 117
6. 알라스카 주의 열린 법정 ····· 118
제4절 평가 ····· 118
Ⅰ. 제도의 특색 ····· 118
Ⅱ. 성공 요인 ····· 119
제5절 시사점 ····· 121
제5장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 125
제1절 제도 설계 방향 ····· 127
제2절 참여의 체계화 ····· 128
Ⅰ. 논의 방향 ····· 128
Ⅱ. 효율적 조직 구성 ····· 128
1. 주안점 ····· 128
2. 분과위원회 활용 ····· 129
3.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 129
4. 조직 개념도 ····· 130
Ⅲ. 인적 구성의 적정성 확보 ····· 131
1. 구성의 다양화 ····· 131
2. 소수자 배려 ····· 132
Ⅳ. 업무 프로세스의 확립 ····· 134
1. 제안·자문·권고 및 반영 프로세스의 구축 ····· 134
2. 온라인 제안·토론의 활성화 ····· 135
제3절 참여의 실용화 ····· 138
Ⅰ. 논의 방향 ····· 138
Ⅱ. 제안 및 활동 방식 ····· 139
1. 활동 유형 ····· 139

2. 실시 방안 ····· 140
Ⅲ. 지역사회 사법행정수요의 대응 ····· 141
Ⅳ. 세부 참여 영역 ····· 143
제4절 참여의 전문화 ····· 144
Ⅰ. 논의 방향 ····· 144
Ⅱ. 법원 내부의 전문성 제고 ····· 145
1.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 145
2. 리더십 교육 ····· 146
3. 업무 연속성 확보 ····· 147
4. 연구 활성화 ····· 147
Ⅲ. 참여 국민의 역량 강화 ····· 148
1.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충실화 ····· 148
2. 참여 국민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역할 정립 ····· 149
제5절 참여의 정착화 ····· 151
Ⅰ. 논의 방향 ····· 151
Ⅱ.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 ····· 152
Ⅲ. 설치 근거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 ····· 154
제6절 제도 발전 전략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 156
Ⅰ. 제도 발전 전략 계획 수립 방안 ····· 156
Ⅱ. 세부 실행 계획의 구상 ····· 157
제6장 결론 ····· 159

6.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Leveled Mock Trial Script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연구총서 2014-06

연구책임자 : 박원규(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장판사)

연구참여자 : 황승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2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Ⅰ. 연구의 범위 ····· 18
Ⅱ. 연구의 방법 ····· 18
제2장 법교육과 모의재판 ····· 21
제1절 법교육의 의의 ····· 23
Ⅰ. 법교육의 개념 ····· 23
Ⅱ. 법교육의 유형 ····· 23
제2절 모의재판의 의의와 효과 ····· 24

Ⅰ. 모의재판의 의의 ····· 24
Ⅱ. 중·고등학생에 대한 모의재판의 법교육적 의의 및 효과 ····· 25
1. 법교육적 의의 ····· 25
2. 법교육적 효과 ····· 26
제3절 모의재판 활용 실태 ····· 27
Ⅰ. 우리나라 ····· 27
1. 사법부 ····· 27
2. 법무부 ····· 32
3. 대한변호사협회 ····· 33
4. 한국법교육센터 ····· 34
5. 중·고등학교 ····· 34
6. 시사점 ····· 35
Ⅱ. 외국 ····· 35
1. 미국 ····· 35
2. 영국 ····· 43
3. 캐나다 ····· 44
4. 일본 ····· 45
5. 시사점 ····· 47
제3장 중·고등학생에 대한 법교육 현황 및 검토 ····· 49
제1절 개관 ····· 51
제2절 정규 교과를 통한 법교육 ····· 53
Ⅰ. 중학교 ····· 53
Ⅱ. 고등학교 ····· 56
Ⅲ. 검토 ····· 59
1. 중학교 ····· 59
2. 고등학교 ····· 60
제3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 ····· 61
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의 ····· 61
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 현황····· ····· 62
1. 개관 ····· 62
2. 학교 내 법교육 활동 ····· 63
3. 학교 외 법교육 활동 ····· 64
Ⅲ. 검토 ····· 65
제4장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현황 및 검토····· 67
제1절 사법부의 모의재판 시나리오 ····· 69
Ⅰ. 법원행정처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2012년) ····· 69
Ⅱ. 사법연수원 초·중·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 71
Ⅲ.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 72

Ⅳ. 사법발전재단 발행 법교육 교재 수록 모의재판 시나리오 ····· 73
Ⅴ. 기타 ····· 74
제2절 법무부의 모의재판 시나리오 ····· 74
Ⅰ. 모의재판·청소년 법정 수록 모의재판 시나리오 ····· 74
Ⅱ. 솔로몬 로파크의 법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수록 모의재판 시나리오 ····· 75
제3절 검토 ····· 76
제5장 중·고등학생을 위한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 ····· 81
제1절 개발의 기본방향 ····· 83
Ⅰ. 실시대상의 명확한 구분 ····· 83
Ⅱ. 실시대상의 흥미도와 참여도 제고 ····· 84
Ⅲ.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균형 ····· 84
Ⅳ. 실시기관과 지도관의 특성 및 시나리오의 용도 고려 ····· 85
Ⅴ. 기존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병행 활용 고려 ····· 86
Ⅵ. 정리 ····· 86
제2절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구성 ····· 88
제3절 중·고등학생을 위한 모의재판 시나리오 ····· 90
제6장 법관을 위한 모의재판 지도안 개발 ····· 91
제1절 개발의 주안점 ····· 93
제2절 모의재판 지도안의 구성 ····· 94
제3절 법관을 위한 모의재판 지도안 ····· 95
제7장 결론 ····· 97

7.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Austrian Judicial System

: Focusing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Supreme Court,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07

연구책임자 : 김태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2월 27일 발행

제1장 오스트리아 사법제도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3
Ⅰ. 비교법적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제2장 오스트리아의 최고사법기관들 ····· 19
제1절 최고사법기관들의 인적 구성과 권한 ····· 21
Ⅰ. 세 개의 최고사법기관 ····· 21
Ⅱ. 최고사법기관들의 인적 구성과 권한 ····· 21
1. 최고재판소 ····· 21
가. 인적 구성과 임명 절차 ····· 21
나. 최고재판소의 권한 ····· 22
2. 행정재판소 ····· 23
가. 인적 구성과 임명 절차 ····· 23

나. 행정재판소의 권한 ····· 23
3. 헌법재판소 ····· 24
가. 인적 구성과 임명 절차 ····· 24
(1) 인적 구성과 자격 요건 ····· 24
(2) 재판관 제청 및 임명 ····· 25
(3) 상임재판관 및 예비재판관 제도 ····· 25
나. 헌법재판소의 권한 ····· 25
(1) 규범통제 제도의 특징 ····· 25
(2) 공권력에 의한 헌법적 권리 침해를 다투는 소송의 특징 ····· 26
(3) 기타 헌법재판소의 권한 ····· 27
제2절 헌법재판과 최고사법기관 간 상호관계 - 현황과 쟁점 ····· 28
Ⅰ. 최고사법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헌법재판 ····· 28
1. 최고사법기관들 간의 대등성과 독립성 원칙 ····· 28
2. 헌법재판의 운영 현황과 최고사법기관의 관계에 관한 쟁점 ····· 29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운영현황과 쟁점 ····· 29
(1) 사건처리 현황 ····· 29
(2) 규범 통제 사건의 경우 ····· 32
나. 헌법재판과 최고재판소·행정재판소의 재판 ····· 33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34
1.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과 그 영향 ····· 34
가. 법령 폐지의 장래효 원칙과 예외 ····· 34
(1) 법률의 폐지와 그 시간적 효력 ····· 34
(2) 행정입법의 폐지와 그 시간적 효력 ····· 35
나.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 35
(1) 개관 ····· 36
(2) 당해 사건 ····· 36
(3) 헌법재판소가 달리 정하는 경우 ····· 36
다. 규범통제의 시간적 효력이 일반재판과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 ····· 37
2. 헌법불합치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허용 여부와 그 영향 ····· 37
가. 헌법불합치결정의 불필요성 ····· 37
나. 한정위헌 등 질적 일부위헌결정의 부존재 ····· 38
제3장 헌법 개정에 따른 최고사법기관 간 상호관계 ····· 39
제1절 최근 헌법 개정의 경과 ····· 41
제2절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관계 변화 ····· 42
Ⅰ. 행정재판제도 개혁의 초기 단계 -망명재판소의 운영 경험 ····· 42
1. 망명재판소의 도입 ····· 42
2. 망명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 42
Ⅱ. 행정재판제도 개혁과 헌법재판소·행정재판소의 관계 ····· 44

1. 행정재판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 44
가. 1심 행정법원의 신설 ····· 44
나. 행정재판소의 상고심화 ····· 45
(1)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 수행 ····· 45
(2) 상고허가제도 ····· 46
다. 특별행정재판제도의 운용 ····· 47
(1) 특별행정재판 ····· 47
(2) 헌법재판소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심리거부 제도 ····· 49
2. 헌법 개정의 의의와 전망 ····· 51
가.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의 불복절차가 갖는 의미 ····· 51
나.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 간 관할 구분의 기준과 심사의 강도 ····· 52
제3절 법률소원 도입과 최고사법기관 간의 관계 변화 ····· 54
Ⅰ. 위헌법률심판절차로서의 법률소원 제도 ····· 54
1. 종래의 규범통제절차 ····· 54
가. 위헌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 54
(1) 신청권자에 따른 심판절차 ····· 54
(2) 심판의 대상 ····· 55
나. 위법명령에 대한 규범통제 ····· 56
(1) 신청권자에 따른 심판절차 ····· 56
(2) 심판의 대상 ····· 57
2. 법률소원 제도의 도입과 전망 ····· 58
가.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제도의 일종으로서의 법률소원 ····· 58
나. 개정 논의 과정에서의 여러 입법안 ····· 59
(1) 개정안 2031/A, 2032/A ····· 59
(2) 개정안 2227/A ····· 59
다. 법률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각계의 의견 ····· 60
(1) 2031/A 및 2032/A 개정안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반대견해표명 ····· 60
(2) 전 행정재판소장의 반대견해표명 ····· 60
Ⅱ. 법률소원의 도입 내용과 분석 ····· 61
1. 도입된 법률소원의 내용 ····· 61
2. 분석과 향후 전망 ····· 61
Ⅲ.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특수 문제 ····· 62
제4장 제도적 특징과 시사점 ····· 65
제1절 오스트리아 제도의 특징적 사항 ····· 67
제2절 오스트리아 제도의 시사점 ····· 68
제3절 맺음말 ····· 70

8.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Different Level Lecture Programs Conducted by Judg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연구총서 2015-01

연구책임자 : 황승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5년 5월 22일 발행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Ⅰ. 연구의 범위 ····· 14
Ⅱ. 연구의 내용 ····· 15
Ⅲ. 연구의 방법 ····· 15
제2장 법교육과 법관의 강의 ····· 17
제1절 법교육의 개념 ····· 19
제2절 법교육과 법관 강의의 관계 ····· 20
Ⅰ. 법교육 원리와의 관계 ····· 20
Ⅱ. 법교육 방법과의 관계 ····· 21
Ⅲ. 교육과정과의 관계 ····· 22
Ⅳ. 교육내용 편성원리와의 관계 ····· 23
제3절 사법교육과 법관의 강의 ····· 24

제3장 법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 ····· 25
제1절 초등학교 ····· 27
Ⅰ. 개 관 ····· 27
Ⅱ. 1, 2학년 과정 ····· 27
1.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내용 체계 ····· 27
2. 검 토 ····· 28
Ⅲ. 3, 4학년 과정 ····· 29
1. 도덕 교과 ····· 29
2. 사회 교과 ····· 30
Ⅳ. 5, 6학년 과정 ····· 31
1. 도덕 교과 ····· 31
2. 사회 교과 ····· 33
제2절 중학교 ····· 37
Ⅰ. 개 관 ····· 37
Ⅱ. 도덕 교과 ····· 38
1. 내용 체계 ····· 38
2. 법교육 관련 내용 ····· 39
Ⅲ. 사회 교과 ····· 40
1. 내용 체계 ····· 40
2. 법교육 관련 단원 분석 ····· 41
제3절 고등학교 ····· 47
Ⅰ. 개 관 ····· 47
Ⅱ. '법과 정치' 과목 ····· 48
1. 내용 체계 ····· 48
2. 단원별 내용 분석 ····· 49
3. 법률서식의 제공 ····· 58
제4장 강의안 관련 자료의 검토 ····· 61
제1절 대법원 ····· 63
Ⅰ. 개 관 ····· 63
Ⅱ.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63
Ⅲ. 대법원 견학 교재 ····· 64
Ⅳ. 대법원 출장 강연 교재 -법원, 학교에 가다 ····· 65
Ⅴ.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4 ····· 68
Ⅵ.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1~4 ····· 70
제2절 사법연수원 및 각급 법원 ····· 74
Ⅰ. 사법연수원 ····· 74
1. 초등학생 과정 ····· 74
2. 중학생 과정과 고등학생 과정 ····· 76

Ⅱ. 각급 법원 ····· 85
제3절 미국 ····· 88
Ⅰ. Street Law ····· 88
1. 개 관 ····· 88
2. 주요 내용 ····· 89
Ⅱ. 기본권 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 94
1. '법정에서 교실로' 프로그램 (From Courtroom to Classroom Program)····· 94
2. 중학생용 발표자료 ····· 94
3. 고등학생용 발표자료 ····· 97
제5장 수준별 강의안의 개발 ····· 101
제1절 강의안의 구성 ····· 103
Ⅰ. 대상자의 구분 ····· 103
1. 초등학교 ····· 103
2. 중학교 ····· 103
3. 고등학교 ····· 104
Ⅱ. 강의시간 ····· 105
Ⅲ. 강의주제의 선정 ····· 105
1. 법교육 의미와 사법교육 목표의 반영 ····· 105
2. 사례 중심형 강의의 시도 ····· 106
3. 법원에 대한 오해의 불식 ····· 107
4. 헌법의 반영 ····· 107
5. 교과서 관련 단원과의 연계 ····· 107
Ⅳ. 강의방식 ····· 107
Ⅴ. 참고자료 ····· 108
제2절 강의안의 실제 ····· 109
제6장 결론 ····· 111

9.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Measur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Judgments of the Courts

연구총서 2015-02

연구책임자: 양시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5년 5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3
제2장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현황 및 분석 ····· 25
제1절 판결의 의미 ····· 27
Ⅰ. 법적 의미 ····· 27
Ⅱ. 사회적 의미 ····· 28
Ⅲ. 학문적 의미 ····· 28
Ⅳ. 구별 개념 ····· 28
1. 판례와의 구별 ····· 28
2. 판결서와의 구별 ····· 29
제2절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사법 신뢰도 현황 ····· 30
Ⅰ. 국민의 판결에 대한 관심도 ····· 30
Ⅱ. 국민의 판결에 대한 이해도 ····· 31
Ⅲ. 판결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 사이의 관계 ····· 32

1. 일반국민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 32
2. 전·현직 법조출입기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 33
제3절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낮은 원인 ····· 35
Ⅰ. 서설 ····· 35
Ⅱ.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複雜多岐化) ····· 35
Ⅲ. 사법권 확대로 인한 판결 대상의 다양화 ····· 35
Ⅳ. 판결 홍보의 본질적 한계 ····· 36
Ⅴ. 판결 관련 법교육의 한계 ····· 37
Ⅵ. 언론보도 및 법심리학적 원인 ····· 38
1. 판결과 언론보도의 중요성 ····· 38
2. 언론보도로 인한 판결 이해도 저해 유형 ····· 40
제4절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 ····· 41
Ⅰ.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41
Ⅱ. 사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 추구 ····· 42
Ⅲ. 판결 및 사법부 홍보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인식 변화 ····· 42
Ⅳ. 판결서 작성방식의 과감한 개선 ····· 42
제3장 사법부가 시행하는 판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사례 ····· 47
제1절 서설 ····· 49
제2절 외부 미디어(media)를 통한 소통 ····· 49
Ⅰ. KTV(한국정책방송) ····· 49
Ⅱ. 유튜브(YouTube) ····· 50
Ⅲ. 페이스북(Facebook) 및 트위터(twitter) ····· 50
Ⅳ. 네이버(NAVER) ····· 52
1. 판례 정보 확인 시스템 ····· 52
2. 판결 검색 관련 웹사이트 링크 ····· 54
Ⅴ. 기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판례 정보 시스템 ····· 55
1. 다음(DAUM) ····· 55
2. 구글(Google) ····· 55
Ⅵ. 블로그 ····· 56
제3절 사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한 판결 소개 및 홍보 ····· 57
Ⅰ. 서설 ····· 57
Ⅱ.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의 콘텐츠 ····· 57
1. ‘자료’란의 청소년용 교재 ····· 57
2. ‘소식’란의 뉴스레터와 보도자료 ····· 58
3. ‘판결’란의 콘텐츠 ····· 60
Ⅲ.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앱 ····· 62
Ⅵ.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63
Ⅴ. 각급 법원 홈페이지 ····· 65

1. 판결 게시: 우리법원 주요판결 ····· 6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소통광장 중 '만화로 배우는 법상식' ····· 65
제4절 판결 관련 문헌 발간 ····· 66
Ⅰ. 서설 ····· 66
Ⅱ. 대법원판례집 발간 ····· 66
1. 관련 규정 ····· 67
2. 발간 과정 및 현황 ····· 67
Ⅲ. 판례공보 발간 ····· 67
Ⅳ.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 기념 판결해설집 발간 ····· 68
1. 법률전문가용 대법원 판례평석집 발간 ····· 68
2. 일반국민용 판결해설집 발간 ····· 68
Ⅴ. 그 밖의 판결 관련 책자 간행 ····· 69
1. 대법원 판례해설 ····· 69
2. 각급 법원(제1, 2심) 판결공보 ····· 70
3. 기타 ····· 70
Ⅵ. 대법원 출장 강연 교재 .법원, 학교에 가다. 발간 ····· 70
제5절 대법원 법원전시관의 체험 프로그램 ····· 71
Ⅰ. 서설 ····· 71
Ⅱ.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 72
제6절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언론 업무 강화 ····· 73
Ⅰ.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제도 도입 ····· 73
Ⅱ. 각급 법원의 공보업무 담당 법관 지정 ····· 73
Ⅲ. 공보관의 업무 ····· 73
Ⅳ. 사법부와 언론의 소통을 위한 기타 사례 ····· 74
1.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개최 ····· 74
2. '법조출입기자를 위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책자 배포 ····· 74
3. 간담회 개최 ····· 75
Ⅴ. 변화의 특징 ····· 75
제7절 판결서 공개 확대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76
제8절 판결 홍보와 교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 78
Ⅰ. 서설 ····· 78
Ⅱ. 법 강좌(찾아가는 법 강의) 중 '우리나라를 움직인 판결' ····· 78
Ⅲ. 대학생기자단 ····· 79
제9절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79
제4장 외국의 관련 제도 고찰 ····· 83
제1절 서설 ····· 85
제2절 미국 ····· 85
Ⅰ. 서설 ····· 85

Ⅱ. 법원의 대(對)언론정책(Media Policy) ····· 86
1. 서설 ····· 86
2. 전국법원관리협회(NACM)의 가이드라인 ····· 86
3. 전국주법원센터(NCSC)의 대언론 사업 ····· 87
4. 법원공보관(Public Information Officer) 제도 ····· 87
Ⅲ. 판결 공개, 홍보 및 교육 관련 제도 ····· 91
1. 연방 ····· 91
2. 뉴욕(New York)주 ····· 96
3.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 97
4. 위스콘신(Wisconsin)주 ····· 97
5. 플로리다(Florida)주 ····· 99
6. 인디애나(Indiana)주 ····· 100
제3절 영국 ····· 100
Ⅰ. 서설 ····· 100
Ⅱ. 사법부 웹사이트의 판결 공개 ····· 101
1. 서설 ····· 101
2. 상원과 대법원 웹사이트의 판결 공개 ····· 102
3. 사법부(Court and Tribunals Judiciary)의 판결 공개 ····· 103
Ⅲ. BAILII(British and Irish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웹사이트 ····· 103
1. 서설 ····· 103
2. 판결 검색 기능(Case Law Search) ····· 104
3. 리딩케이스 제공 기능(JISC-Supported Leading Cases) ····· 105
제4절 캐나다 ····· 106
Ⅰ. 서설 ····· 106
Ⅱ.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의 판결 제공 및 대언론 서비스 ····· 106
1. 판결 문서 파일 공개 ····· 106
2. 판결선고 및 변론 동영상 공개 ····· 107
3. 언론을 위한 자료 제공 ····· 108
Ⅲ. CanLII의 판결 제공 ····· 109
제5절 일본 ····· 110
Ⅰ. 서설 ····· 110
Ⅱ. 판결 홍보 제도 ····· 110
1. 보도자료 배포 ····· 110
2. 재판소 홈페이지의 '재판례정보' 코너 운영 ····· 112
3. 판례집에 의한 판결 공개 ····· 114
4. 판결 및 그 해설에 대한 출판 지원 ····· 114
Ⅲ. 공보 업무 ····· 115
제6절 각국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115

Ⅰ. 미국 ····· 115
Ⅱ. 영국 및 캐나다 ····· 116
Ⅲ. 일본 ····· 117
제5장 대국민 판결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제안 ····· 119
제1절 개선 방향에 대한 총론적 원칙 ····· 121
Ⅰ. 서설 ····· 121
Ⅱ.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121
Ⅲ. 광범위한 참여 ····· 121
Ⅳ. 다양한 경로 확보 ····· 122
Ⅴ.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발 ····· 123
Ⅵ.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 123
Ⅶ. 철저한 사후 평가 ····· 124
Ⅷ. 제도 운영과 홍보의 지속성 확보 ····· 124
Ⅸ. 정리 ····· 125
제2절 홍보가치가 높은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방안 ····· 125
Ⅰ. 필요성 ····· 125
Ⅱ. 국내의 참고 사례 ····· 126
1. 서설 ····· 126
2. 헌법재판소의 사례 ····· 127
3. ‘한겨레21’의 올해의 판결(2008~2013년 92개의 판결) ····· 130
4. 법률신문사의 사례 ····· 133
5. 개인이 발간한 판결 소개 책자 ····· 134
6. 생활법률 관련 책자 예시: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 135
Ⅲ. 제안: 판결 선정 및 홍보의 방식 ····· 135
1. 판결 선정 절차 ····· 136
2. 홍보 방안 ····· 139
3. 판결 선정 및 홍보 절차 개념도 ····· 143
제3절 일반국민을 위한 판결공부방 운영방안 ····· 143
Ⅰ. 필요성 ····· 143
Ⅱ. 대상 판결 선정 및 교재 발간 ····· 144
1. 대상 판결 선정 ····· 144
2. 프로그램 구성 ····· 144
3. 교재 발간 ····· 145
Ⅲ. 운영 방식 ····· 145
1. 서설 ····· 145
2. 법원 내 판결공부방 ····· 146
3. 찾아가는 판결공부방 ····· 147
제4절 판결 홍보를 위한 언론계와의 협력 방안 ····· 152

Ⅰ. 사법과 언론의 관계 ····· 152
1. 서설 ····· 152
2. 법원의 재판과 언론보도 ····· 153
Ⅱ. 판결에 대한 심층적 언론보도 사례 ····· 155
1. 서설 ····· 155
2. 일부 신문사의 판결 기획연재 사례 ····· 155
Ⅲ. 개선 방안 ····· 157
1. 판결에 대한 심층적 해설을 담은 기사의 확대 ····· 157
2. 법조전문기자 육성을 위한 언론계와의 협력 ····· 158
3. 공보관 제도 운영 개선 검토 ····· 159
4. 법관들의 대언론 관계 가이드라인 정립 ····· 161
5. 오보(誤報)에 대한 적절한 대응 ····· 162
제5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판결 소개 관련 개선 ····· 163
Ⅰ. 현황 소개 ····· 163
1. 일반국민의 초·중·고등학교 법교육에 대한 인식 ····· 163
2. 중학교에서의 법교육 ····· 164
3. 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 ····· 165
Ⅱ. 내용상 문제점과 수정상의 한계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 ····· 166
1. 교과서의 내용상 문제점과 교과서 수정에 있어서의 한계 ····· 166
2. 개선 방안 ····· 167
제6절 인터넷 자료 관련 개선 ····· 168
Ⅰ. 사법정보 전달에 있어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 ····· 168
Ⅱ.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 소개 코너 개선 ····· 169
1. 판결서 인터넷열람 개선 ····· 169
2.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 개선 ····· 170
3. ‘이달의 판결’ 선정 및 게시 ····· 173
Ⅲ. 모바일 서비스 관련 개선 ····· 174
1. 법원 웹사이트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판결 게시 ····· 174
2.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앱의 콘텐츠 개선 ····· 176
Ⅳ.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판결 공개 시스템 개선 ····· 176
1. 네이버(NAVER)의 ‘판례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 176
2.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대법원 판례 정보 제공 사이트 링크 ····· 177
Ⅴ. 대법원 뉴스레터 수신자 증대 노력 ····· 178
제7절 그 밖의 개선 방안 ····· 180
Ⅰ. 판결 홍보·교육 관련 업무 조정과 관리 및 담당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 180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실제 판결 사안 적용 ····· 181
Ⅲ. 영화·드라마 소재 제공 ····· 182
Ⅳ. 유관기관에의 판결해설 기고(寄稿) 확대 ····· 183

1. 기존 사례: 국회보의 '이슈가 있는 판결' ····· 183
2. 판결 관련 기고 확대 모색 ····· 184
제8절 실천적 제안 요약 ····· 185
제6장 결론 ····· 187

10.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연구총서 2015-03

연구책임자: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5년 6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0
Ⅰ. 연구의 범위 ····· 20
Ⅱ. 연구의 방법 ····· 22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 23
제1절 성인 대상 모의재판에 대한 기존의 시각 ····· 25
제2절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 26
제3절 모의재판의 의의 ····· 31
제4절 모의재판의 효용성(기대 효과) ····· 32
Ⅰ. 사법부와 국민의 상호 이해를 통한 신뢰 확보 ····· 32
Ⅱ.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 34
Ⅲ. 각급 법원에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모델 제공 ····· 35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 37
제1절 개설 ····· 39
제2절 대구고등법원 ····· 40
Ⅰ. 모의재판의 실시 ····· 40
1. 2013년 모의재판 ····· 40
2. 2014년 모의재판 ····· 41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 42
1. 2013년 모의재판 ····· 42
2. 2014년 모의재판 ····· 43
Ⅲ. 평가 ····· 43
1. 2013년 모의재판 ····· 44
2. 2014년 모의재판 ····· 45
제3절 서울가정법원 ····· 45
Ⅰ. 모의재판의 실시 ····· 45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 47
Ⅲ. 평가 ····· 47
제4절 수원지방법원 ····· 49
Ⅰ. 모의재판의 실시 ····· 49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 50
Ⅲ. 평가 ····· 51
제5절 춘천지방법원 ····· 51
Ⅰ. 모의재판의 실시 ····· 51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 52
Ⅲ. 평가 ····· 53
제6절 광주지방법원 ····· 53
Ⅰ. 모의재판의 실시 ····· 54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 55
Ⅲ. 평가 ····· 56
제7절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 57
Ⅰ. 모의재판의 실시 ····· 57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 57
Ⅲ. 평가 ····· 57
제8절 결어 ····· 58
Ⅰ.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 ····· 58
Ⅱ. 모의재판 실시 방안의 방향 설정 ····· 61
제4장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 65
제1절 개설 ····· 67
Ⅰ. 기존 시나리오의 수집·정리 ····· 67

Ⅱ. 추가 시나리오의 개발 ····· 68
Ⅲ. 시나리오 수록 체계 ····· 69
제2절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 70
Ⅰ. 시나리오 목록 ····· 70
Ⅱ. 건물인도 사건1 ····· 71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71
2. 사안의 개요 ····· 71
3. 등장인물 소개 ····· 72
4. 평가 ····· 72
Ⅲ. 건물인도 사건2 ····· 73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73
2. 사안의 개요 ····· 73
3. 등장인물 소개 ····· 74
4. 평가 ····· 74
Ⅳ. 공사대금 사건 ····· 75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75
2. 사안의 개요 ····· 75
3. 등장인물 소개 ····· 75
4. 평가 ····· 76
Ⅴ. 대여금 사건1 ····· 76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76
2. 사안의 개요 ····· 77
3. 등장인물 소개 ····· 77
4. 평가 ····· 78
Ⅵ. 대여금 사건2 ····· 78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78
2. 사안의 개요 ····· 78
3. 등장인물 소개 ····· 79
4. 평가 ····· 79
Ⅶ. 대여금 사건3 ····· 80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80
2. 사안의 개요 ····· 80
3. 등장인물 소개 ····· 81
4. 평가 ····· 81
Ⅷ. 성형수술 부작용 사건 - 앗, 내 눈이! - ····· 82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82
2. 사안의 개요 ····· 82
3. 등장인물 소개 ····· 83

4. 의료소송에 관한 Q&A ····· 83
Ⅸ. 층간소음 사건 ····· 87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87
2. 사안의 개요 ····· 88
3. 등장인물 소개 ····· 88
4. 평가 ····· 89
제3절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 89
Ⅰ. 시나리오 목록 ····· 89
Ⅱ. 데이트강간 사건 ····· 90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90
2. 사안의 개요 ····· 90
3. 등장인물 소개 ····· 91
4. 평가 ····· 91
Ⅲ. 아파트 입주민 명예훼손·모욕 사건 - 이웃끼리 왜 이래 - ····· 92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92
2. 사안의 개요 ····· 92
3. 등장인물 소개 ····· 93
4. 명예훼손·모욕죄에 관한 Q&A ····· 94
Ⅳ. 양주 합동절도 사건 ····· 97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97
2. 사안의 개요 ····· 97
3. 등장인물 소개 ····· 98
4. 평가 ····· 99
Ⅴ. 음주운전 사건 ····· 99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99
2. 사안의 개요 ····· 99
3. 등장인물 소개 ····· 100
4. 평가 ····· 100
Ⅵ. 이종격투기 레스토랑 사망 사건 ····· 101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101
2. 사안의 개요 ····· 101
3. 등장인물 소개 ····· 102
4. 평가 ····· 103
Ⅶ. 청각장애인 절도공범 사건 ····· 103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103
2. 사안의 개요 ····· 104
3. 등장인물 소개 ····· 104
4. 평가 ····· 105

제4절 가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 106
Ⅰ. 시나리오 목록 ····· 106
Ⅱ. 평범한 중년부부의 위기 사건 - 그냥 직장동료 맞나요? - ····· 106
1.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 106
2. 사안의 개요 ····· 107
3. 등장인물 소개 ····· 108
4. 재판상 이혼에 관한 Q&A ····· 108
Ⅲ. 서울가정법원 모의재판 사안 ····· 111
1.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무자력인 경우 ····· 111
2.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 114
3.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 ····· 116
제5절 기타 시나리오 ····· 119
제5장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 ····· 121
제1절 개설 ····· 123
제2절 다양한 인적 구성 방안 ····· 124
Ⅰ. 인적 구성 방안의 분류 기준 ····· 124
Ⅱ. 1단계 방안 ····· 126
1. 의의 ····· 126
2. 구체적인 절차 ····· 127
3. 특별한 방청인 집단 ····· 132
4. 유의사항 ····· 132
5. 정리 ····· 132
Ⅲ. 2단계 방안 ····· 133
1. 의의 ····· 133
2. 구체적인 절차 ····· 134
3. 기타 고려사항 ····· 138
4. 유의사항 ····· 138
5. 정리 ····· 139
Ⅳ. 3단계 방안 ····· 139
1. 의의 ····· 139
2. 구체적인 절차 ····· 141
3. 기타 고려사항 ····· 145
4. 유의사항 ····· 145
5. 정리 ····· 146
Ⅴ. 4단계 방안 ····· 146
1. 의의 ····· 146
2. 구체적인 절차 ····· 147
3. 기타 고려사항 ····· 151

4. 유의사항 ····· 151
5. 정리 ····· 151
제6장 홍보 방안 ····· 153
제1절 홍보의 기본방향 ····· 155
제2절 단계별 홍보 방안 ····· 157
Ⅰ. 모의재판 실시 전 단계 ····· 157
1.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안 ····· 157
2. 참여 경험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안 ····· 161
Ⅱ. 모의재판 실시 단계 ····· 161
1. 역할극 참여자에 대한 배려 ····· 161
2. 배심원, 방청인에 대한 배려 ····· 162
Ⅲ. 모의재판 실시 후 단계 ····· 164
1. 모의재판 결과 공개 ····· 164
2. 사후 보도 ····· 164
3. 모의재판 관련 자료집 발간 ····· 164
4. 피드백 ····· 165
제7장 결론 ····· 167

11.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연구총서 2015-04

연구책임자 : 김상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양은상(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5년 5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4
Ⅰ. 연구의 범위 ····· 24
Ⅱ. 연구의 방법 ····· 26
제2장 거래안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 29
제1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 31
Ⅰ.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 31
1. 물권 공시의 필요성 ····· 31
2.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 31
가. 물권 공시제도 ····· 31
나. 부동산 등기제도 ····· 32
Ⅱ.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 32

1. 근대적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 32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질 ····· 33
제2절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현행 제도 ····· 34
Ⅰ. 개관 ····· 34
Ⅱ. 등기 전 단계 ····· 34
1. 등기사항 ····· 34
가. 개념 ····· 34
나.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 35
다.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 36
2. 가등기 ····· 37
가. 연혁 ····· 37
나. 잠정적·일시적 보호의 필요성 ····· 37
다. 내용 ····· 38
3. 등기의 전산화 ····· 38
가. 등기의 전산화와 거래안전 제고 ····· 38
나. 등기의 전산화 등 부동산 등기제도의 발전 ····· 39
Ⅲ. 등기 단계 ····· 42
1. 공동신청주의 ····· 42
가. 신청주의 ····· 42
나. 공동신청주의 ····· 43
2. 출석주의와 사용자등록 ····· 43
가. 방문신청(출석주의) ····· 44
나. 전자신청과 사용자등록 ····· 44
3.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공 ····· 44
가. 신청정보 ····· 45
나. 첨부정보 ····· 48
다. 인감증명과 공인인증 ····· 52
4. 등기관의 심사 ····· 54
가.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 55
나. 전문화를 통한 역량 강화 ····· 56
Ⅳ. 등기 후 단계 ····· 57
1. 등기의 추정력 ····· 57
가. 등기의 일반적 효력 ····· 57
나. 등기의 추정적 효력 ····· 57
2. 국가배상제도 ····· 58
가. 국가배상규정과 과실의 개념 ····· 58
나. 부실등기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 59
3. SMS 알리미 서비스 ····· 59

가. 개념 ····· 59
나. 내용 ····· 60
4. 각종의 통지제도 ····· 61
가. 등기필정보의 통지 ····· 61
나. 등기완료의 통지 ····· 61
다.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 62
제3절 부동산 거래안전과 관련한 과제 ····· 62
Ⅰ. 부실등기 방지와 부동산 거래안전 ····· 62
Ⅱ. 등기 전 단계 ····· 63
1. 등기사항과 권리정보 제공의 필요 ····· 63
2. 등기 전 매수인 보호의 필요 ····· 64
Ⅲ. 등기 단계 ····· 65
1.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전자적 보존 ····· 65
2. 본인확인제도의 강화 ····· 66
Ⅳ. 등기 후 단계 ····· 66
1. 등기의 공신력 ····· 66
2. 피해보상제도 ····· 67
제3장 거래안전을 위한 각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 69
제1절 독일 ····· 71
Ⅰ. 개관 ····· 71
Ⅱ. 물권변동 이론과 부동산등기의 신청 ····· 71
1. 부동산소유권 양도합의의 요식성 ····· 71
2. 등기공무원의 심사 ····· 73
가. 절차적 적법주의(formelles Legalitatsprinzip) ····· 73
나. 실체적 적법주의(materielles Legalitatsprinzip) ····· 73
3. 공증절차에서의 본인확인 ····· 74
Ⅲ. 등기의 추정력 및 공신력 ····· 75
1. 등기의 추정력 ····· 75
2. 등기의 공신력과 선의취득 ····· 76
Ⅳ. 국가배상제도와 정정청구권 및 이의등기제도 ····· 77
1. 등기정정청구와 이의등기제도 ····· 77
가. 등기정정청구(Berichtigungsanspruch) ····· 77
나. 이의등기(Widerspruch) ····· 78
2. 부실등기의 직권말소 ····· 79
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의 직권말소 ····· 79
나. 대상이 없는 등기의 직권말소 ····· 79
3. 손해배상제도 ····· 80
제2절 스위스 ····· 81

Ⅰ. 개관 ····· 81
Ⅱ. 등기절차에서의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 82
1. 신청권자와 신청방식 ····· 82
가. 신청권자 ····· 82
나. 신청방식 ····· 82
2. 물권변동의 요건과 등기관의 심사범위 ····· 82
가. 물권변동의 요건 ····· 82
나. 등기관의 심사범위 ····· 83
Ⅲ. 등기의 추정력 및 공신력 ····· 84
1. 등기의 추정력 ····· 84
2. 등기의 공신력 ····· 84
Ⅳ. 피해보상책임 및 등기정정제도 ····· 84
1. 손해배상책임 ····· 85
2. 등기정정제도 ····· 85
제3절 프랑스 ····· 86
Ⅰ. 개관 ····· 86
Ⅱ. 부동산 거래계약의 의무적 공정증서 작성 ····· 86
1.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의 작성 ····· 87
2. 등기신청과 등기부의 편철 ····· 87
Ⅲ. 일반적인 선매권 ····· 88
Ⅳ. 등기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 89
제4절 미국, 영국 및 호주 ····· 90
Ⅰ. 영미법계 등기제도의 개관 ····· 90
Ⅱ. 레코딩 시스템 ····· 91
1. 서설 ····· 91
가. 연혁 ····· 91
나. 개념 ····· 91
2. 부동산 거래의 형태 ····· 92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가입 ····· 92
나. 날인증서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 ····· 93
3. 권원조사 ····· 93
가. 권원조사의 필요 ····· 93
나. 권원조사의 방법 ····· 94
4. 권원보험(title insurance) ····· 94
가. 권원보험의 발달 ····· 94
나. 권원보험의 종류와 내용 ····· 94
5.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 95
가. 개념 ····· 95

나. 내용 ····· 96
Ⅲ. 토렌스 시스템 ····· 96
1. 서설 ····· 96
가. 연혁 ····· 96
나. 개념 ····· 97
2. 토렌스 시스템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거래 관행(영국의 경우)····· 97
가. 부동산 등기제도 ····· 98
나. 부동산 거래 관행 ····· 98
3. 권원조사와 최초등기(first registration) ····· 99
가. 최초등기의 개념 ····· 99
나. 권원조사(examination of title) ····· 100
다. 권원증명서와 이후 등기절차 ····· 100
4. 등기의 권리창설적 효력 ····· 101
5. 피해보상제도 ····· 101
6. 사전공시제도 ····· 102
가. 공식검색(official search, 영국) ····· 102
나. 캐비엇제도(Caveat, 호주) ····· 102
7. 토렌스 시스템의 문제점 ····· 102
가. 높은 사회적 비용과 권원보험회사 등의 저항 ····· 102
나. 높은 초기등기비용 ····· 103
다. 공시와 피해보상의 불완전 ····· 103
라. 등기공무원의 자질 ····· 103
제5절 일본 ····· 104
Ⅰ. 2004년 개정 일본 부동산등기법 ····· 104
Ⅱ. 등기식별정보 ····· 105
1. 개념 ····· 105
2. 등기식별정보의 통지와 제공 ····· 106
가. 등기식별정보의 통지 ····· 106
나. 등기식별정보의 제공 ····· 107
3. 등기완료증과의 관계 ····· 107
가. 등기완료증의 개념 ····· 108
나. 교부 ····· 108
다. 효력 ····· 108
Ⅲ. 사전통지제도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정보제공 ····· 108
1. 등기식별정보를 대신하는 본인확인수단 ····· 108
2. 사전통지 제도 ····· 109
가. 개념 ····· 109
나. 등기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 109

다. 사전통지절차 ····· 110
라. 등기의무자의 신청 ····· 110
3.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제공 ····· 110
가. 개념 ····· 110
나. 본인확인 정보 ····· 111
Ⅳ. 등기원인증명정보 ····· 112
1. 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의 도입 ····· 112
2. 등기원인증명정보의 내용과 필요적 제공 ····· 113
가. 등기원인증명정보의 내용 ····· 113
나. 등기원인증명정보의 필요적 제공 ····· 113
3. 등기원인서면의 보존과 공개 ····· 114
가. 등기원인서면의 보존 ····· 114
나. 등기원인정보의 열람·교부청구 ····· 114
Ⅴ. 본인확인 ····· 114
1. 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 114
가. 출석 및 정보제공 요구 ····· 115
나. 개정 취지 ····· 115
다. 신청권한 의심의 상당한 이유 ····· 115
2.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 ····· 116
Ⅵ. 직권경정등기와 심사청구 ····· 117
1. 직권경정등기 ····· 117
가. 직권경정등기와 통지 ····· 117
나.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직권경정등기 ····· 117
2. 심사청구 ····· 118
가. 심사청구 ····· 118
나. 심사청구의 처리 ····· 118
제4장 부동산 등기제도 발전 방안 ····· 121
제1절 등기 전 단계 ····· 123
Ⅰ. 부동산 관련 권리정보의 제공 ····· 123
1. 부동산 거래의 실제 모습 ····· 123
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문제 ····· 123
나. 설문조사 결과 ····· 125
2.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 ····· 127
가. 정보제공의무의 발생 근거 ····· 127
나. 부동산 거래당사자 등의 정보제공의무 ····· 129
3.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 131
가.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 131
나. 제공이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의 범위 ····· 133

다. 정보 제공의 형태 ····· 137
4. 제공이 필요한 권리정보의 구체적 내용 ····· 138
가. 등기기록 ····· 138
나.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 139
다. 사전공시 ····· 141
라. 납세정보 ····· 142
마. 주민등록과 후견등기 ····· 143
Ⅱ. 사전공시제도 ····· 145
1. 매수인 보호의 필요성 ····· 145
2. 등기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외국의 사례 ····· 146
가. 공식검색(official search, 영국) ····· 146
나. 캐비엇제도(Caveat, 호주) ····· 148
다. 캐비엇제도(Caveat, 싱가포르) ····· 153
라. 가등기(Vormerkung, 독일) ····· 156
마. 예고등기(.告登., 중국) ····· 158
3. 매수인 보호를 위한 기존제도의 활용방안 ····· 159
가. 가등기제도의 활용방안 ····· 159
나. 처분금지 가처분의 활용방안 ····· 162
4. 매수인 보호를 위한 사전공시 방법의 제안 ····· 165
가. 매매계약 정보의 사전 제공 필요성 ····· 165
나. 매매계약 정보의 제공과 SMS 알리미 서비스의 결합 ····· 166
다. 매매계약 정보의 보관·제공(사전공시) 방법 ····· 167
라. 매매계약 정보제공(사전공시)의 남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 ····· 168
제2절 등기 단계 ····· 169
Ⅰ.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 169
1. 부실등기의 개념과 유형 ····· 169
가. 부실등기의 개념 ····· 169
나. 부실등기의 유형 ····· 170
2.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171
가. 민법의 개정 논의 ····· 171
나. 찬성론의 논거 ····· 172
다. 반대론의 논거 ····· 173
3.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전 여건 ····· 174
가. 공증 방식의 명확한 전제와 그 실효성 확인의 필요 ····· 174
나. 부실등기 감소 여부에 관한 실증적 확인 필요 ····· 175
다. 경제성에 관한 분석 ····· 177
라. 신속한 권리 공시와의 관계 검토 ····· 178
마. 공증제도에 관한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검토 ····· 179

Ⅱ. 등기원인증서의 (준)영구적 보관 ····· 179
1. 등기원인증서의 처리 ····· 179
가. 등기원인증서의 개념 ····· 179
나. 등기원인증서의 반환·폐기 규정 ····· 180
다. 반환·폐기 규정의 입법배경 ····· 180
2. 등기원인증서의 역할과 보관의 필요성 ····· 181
가. 등기원인증서의 역할 ····· 181
나. 등기원인증서 보관의 필요성 ····· 181
3. 외국의 사례 ····· 182
가. 독일 ····· 182
나. 뉴질랜드 ····· 183
다. 일본 ····· 185
4. 등기원인증서의 보관 ····· 185
가. 보관의 방법(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구 보관) ····· 185
나. 보관의 범위 ····· 186
5. 전자보관의 효과와 활용방안 ····· 186
가. 부실등기의 사후 검증을 통한 등기의 신뢰 강화 ····· 187
나. 등기정보자료의 교환과 연계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 강화 ····· 187
다. 다양한 정보제공 ····· 187
라. 업무부담 경감과 비용 절감 ····· 188
마. 등기전산화의 일관성 확보 ····· 188
Ⅲ.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 189
1. 서설 ····· 189
2. 현행 인감증명제도의 개관 ····· 190
가. 개념 ····· 190
나. 인감증명의 발급절차 ····· 191
다. 효력 ····· 193
3.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방안 ····· 194
가.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 ····· 194
나. 인감증명서 위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95
다. 인감증명서의 허위발급과 관련한 개선 방안 ····· 196
Ⅳ.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199
1.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규정 ····· 199
가. 자격자대리인의 일반적 본인확인 규정 ····· 199
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내용 ····· 199
2.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의 강화 필요성 ····· 201
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현황 ····· 201
나.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 ····· 203

3.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 개선 방안 ····· 204
가. 등기필정보를 대신하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 204
나. 자격자대리인의 일반적 본인확인 ····· 207
제3절 등기 후 단계 ····· 209
Ⅰ. 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 ····· 209
1. 개관 ····· 209
2.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경과 ····· 210
가. 민법 제정 당시의 논의 상황 ····· 210
나. 그 이후의 논의 상황 ····· 211
3.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찬반론 ····· 212
가. 찬성론 ····· 212
나. 반대론 ····· 213
4. 등기 공신력 인정의 필요성 ····· 213
가. 동적 안전(動的 安全)과 정적 안정(靜的 安定) ····· 213
나. 최근 부동산 거래방법의 발전과 동적 안전 보호의 필요성 ····· 213
다. 비교법적 검토 ····· 214
5. 정책 결단을 위한 전제 ····· 215
가. 부실등기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평가 ····· 216
나.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216
Ⅱ. 피해보상제도 ····· 217
1. 피해보상제도의 필요성 ····· 217
가. 공신력 인정 여부와 피해보상제도의 관계 ····· 217
나.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의 보상제도의 필요성 ····· 218
다.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보상제도의 필요성 ····· 219
2. 외국의 사례 ····· 219
가. 토렌스 시스템 ····· 219
나. 대만(台.) ····· 231
다. 중국 ····· 233
3. 피해보상의 내용 ····· 235
가. 논의의 전제 ····· 235
나. 피해보상청구의 특징 ····· 236
4. 보상재원 마련 방안 ····· 239
가. 보상범위의 확대와 재원 마련의 필요성 ····· 239
나. 외국의 사례 ····· 239
다. 구체적 방안 ····· 239
제5장 결론 ····· 245

12.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t Discovery Procedure

연구총서 2015-05

연구책임자: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6월 30일 발행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제2장 증거의 개시 및 수집을 위한 현행 제도 고찰 ····· 21
제1절 서 ····· 23
제2절 현행 제도의 고찰 ····· 24
Ⅰ. 문서제출명령 ····· 24
1. 의의 ····· 24
2. 문서제출의무 ····· 24
가. 일반적 의무로의 확장 ····· 24
나. 명시적으로 열거된 문서 ····· 25
다. 일반문서 ····· 27
라. 문서제출 거부사유의 증명책임문제 ····· 28

3. 문서제출명령의 절차 ····· 28
가. 신청과 문서정보의 공개 ····· 29
나. 문서제출명령의 심리와 재판 ····· 32
4.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효과 ····· 36
가. 당사자가 불응한 경우 ····· 36
나. 제3자가 불응한 경우 ····· 37
5.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한 문제점 ····· 37
가. 조문체계상의 문제 ····· 38
나. 비밀심리절차(in camera proceedings)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 ····· 39
다. 제재규정의 미비 ····· 39
라. 수동적인 제도 운영 ····· 40
마. 문서제출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의 문제 ····· 41
Ⅱ. 증거보전 ····· 44
1. 의의 ····· 44
2. 요건 ····· 44
가. 증거보전의 대상 ····· 44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 44
다. 당사자의 신청 ····· 45
3. 절차 ····· 45
가. 관할법원 ····· 45
나. 신청 ····· 46
다. 비용의 예납 ····· 46
라. 결정 ····· 47
마. 증거조사의 시행 ····· 47
4. 증거보전기록 ····· 47
가. 보관 ····· 47
나. 송부 ····· 48
5. 변론에의 상정과 조서 기재 ····· 48
가. 변론에의 상정 ····· 49
나. 증거목록의 기재 ····· 49
제3절 소결 ····· 49
제3장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각국의 제도 ····· 51
제1절 서 ····· 53
제2절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 54
Ⅰ.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및 목적 ····· 54
Ⅱ. 증거개시제도의 연혁 ····· 55
Ⅲ. 증거개시가 인정되는 범위 ····· 58
1. 증거개시가 허용되는 범위와 그 문제점 ····· 58

가. 증거개시가 허용되는 범위 ····· 58
나.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와 증거개시의 허용범위 ····· 61
다. 증거개시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 ····· 63
2. 증거개시가 허용되는 범위의 제한 ····· 64
가. 개관 ····· 64
나. 증거개시의 형식상의 제한 ····· 64
다. 심리준비자료(Trial Preparation Materials) ····· 65
라. 비닉특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privileged matters) ····· 67
마. 전문가의 감정 결과(Expert Information) ····· 70
Ⅳ. 증거개시의 수단 ····· 71
1. 개관 ····· 71
2. 강제증거공개절차(mandatory disclosure) ····· 73
가. 의의 ····· 73
나. 증거개시절차 준비회합(discovery planning meeting) ····· 73
다. 사전증거공개(initial disclosure) ····· 74
라. 감정인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on expert testimony) ····· 74
마. 변론전 증거공개(pretrial disclosure) ····· 75
바. 관련문제 ····· 75
3. 증언조서(deposition) ····· 76
가. 의의 ····· 76
나. 절차 ····· 77
4. 질문서(interrogatories) ····· 79
가. 의의 ····· 79
나. 절차 ····· 80
다. 질문서의 활용 ····· 81
5. 자백요구(requests for admission) ····· 81
6. 문서 및 물건의 제출(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 83
가. 일반 ····· 83
나. 관련문제(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의 경우) ····· 84
7. 신체 및 정신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 86
8. 증거개시수단의 비교 ····· 88
Ⅴ. 증거개시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 ····· 90
1.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쟁점의 제한과 증거개시계획의 조정 ····· 90
2.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 90
3. 증거개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 91
Ⅵ. 증거개시 이후의 절차 ····· 92
1. 개관 ····· 92
2.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기준 ····· 93

가. 관련성 ····· 93
나. 증거의 진정성 ····· 93
다. 전문법칙 ····· 95
라. 원본서류제출의 원칙 ····· 97
3.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의 경우 ····· 97
Ⅶ. 증거개시제도의 현황 ····· 98
1. 증거개시제도의 현황 ····· 98
가. 증거개시가 이루어지는 비율 ····· 99
나. 증거개시제도의 효용성 ····· 100
2. 정리 ····· 104
제3절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 104
Ⅰ. 독립적 증거절차의 의의와 목적 ····· 104
Ⅱ. 독립적 증거조사를 위한 요건 ····· 105
1. 신청 상대방의 동의가 존재할 것 ····· 105
2. 증거방법(Beweismittel)의 분실 혹은 그 사용이 어렵게 될 우려가 존재할 것 ····· 106
3. 사람의 상태나 물건의 상태 혹은 물건의 가치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 107
Ⅲ. 절차 ····· 108
1. 관할 ····· 108
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108
나.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 아닌 경우 ····· 108
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109
라. 여러 법원에 증거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등 ····· 109
2. 신청 ····· 110
가. 신청의 방식 ····· 110
나. 신청의 내용 ····· 110
다. 반대신청 ····· 112
3. 결정 ····· 112
가. 결정의 형식 및 내용 ····· 112
나. 결정에 대한 불복 ····· 113
4. 증거조사 ····· 113
가. 증거조사의 실시 ····· 113
나. 상대방의 보호 ····· 114
다. 독립적 증거절차의 종료 ····· 114
라. 당사자 사이의 화해 ····· 115
Ⅳ. 증거조사의 효력 ····· 115
1. 소송법적 효력 ····· 115
2. 실체법적 효력 ····· 116
Ⅴ. 비용의 문제 ····· 117

1. 본안의 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우 ····· 117
가. 본안제소명령과 비용부담 ····· 117
나. 독립적 증거절차 신청의 취하 혹은 각하와 비용부담 ····· 118
2.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경우 ····· 119
가. 원칙 ····· 119
나.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한 경우 ····· 119
Ⅵ. 독립적 증거절차의 현황 ····· 119
제4절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 120
Ⅰ. 당사자조회제도의 의의 및 목적 ····· 120
1. 개념 ····· 120
2. 목적 ····· 121
Ⅱ. 당사자조회의 요건 ····· 122
1. 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 122
2. 조회의 당사자 ····· 123
3. 조회사항이 주장 혹은 증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 것 ····· 123
4. 회답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24
5. 주장 혹은 증명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 ····· 125
Ⅲ. 당사자조회의 절차 ····· 125
Ⅳ. 당사자조회의 효과 ····· 126
1. 회답의무의 발생과 당사자조회의 활용 ····· 126
2. 부당한 회답거절에 대한 제재 ····· 127
Ⅴ. 당사자조회의 활용 정도 ····· 127
1. 실효성 및 실무에서의 활용 정도 ····· 127
2. 당사자조회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 ····· 128
3. 당사자조회제도의 개혁 움직임 ····· 128
Ⅵ. 제소전 증거수집처분 등 ····· 129
1. 개관 ····· 129
2. 제소전 당사자조회 ····· 130
3. 제소전 증거수집의 처분 ····· 131
제5절 소결 ····· 132
제4장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35
제1절 서 ····· 137
제2절 개선 방안 ····· 138
Ⅰ. 문서제출명령의 개선 방안 ····· 138
1. 증거채부기준의 마련 ····· 138
가. 증거채부기준 마련의 필요성 ····· 138
나. 논의의 전제 ····· 139
다. 증거채부결정시 고려요소 ····· 139

라. 문서제출명령과 증거채부기준 ····· 142
마. 기대효과 ····· 143
2.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의 개선 ····· 144
가.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의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144
나. 개정안 및 그 해설 ····· 146
Ⅱ.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 ····· 156
1.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방안 ····· 156
가. 도입에 관한 견해 ····· 156
나. 도입 시의 장·단점 ····· 159
2.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의 도입 방안 ····· 160
가. 도입에 관한 견해 ····· 160
나. 도입 시의 장·단점 ····· 161
3.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의 도입 방안 ····· 162
4.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방안 ····· 163
가. 개선의 기본방향 ····· 164
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 ····· 164
다.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장·단점 ····· 165
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지향점 ····· 167
5.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구체적 내용 ····· 168
가. 명칭 ····· 168
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허용되는 증거방법 ····· 168
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169
라. 화해·조정과의 연계 ····· 170
마. 변호사의 관여 ····· 171
바. 소송비용 ····· 172
6. 개정안 및 해설 ····· 172
제3절 소결 ····· 196
제5장 결론 ····· 199

13. 중·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ourt Experience Program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연구총서 2015-06

연구책임자 : 황승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5년 6월 26일 발행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Ⅰ. 연구의 범위 ····· 18
Ⅱ. 연구의 내용 ····· 19
Ⅲ. 연구의 방법 ····· 20
제2장 법원체험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21
제1절 도덕·사회 교과 ····· 23
Ⅰ. 개 관 ····· 23
Ⅱ. 중학교 도덕 교과 ····· 24
1. 내용 체계 ····· 24
2. 법원체험 관련 내용 ····· 25
Ⅲ. 중학교 사회 교과 ····· 27
1. 내용 체계 ····· 27

2. 법원체험 관련 내용 ····· 27
Ⅳ.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 ····· 28
1. 내용 체계 ····· 28
2. 법원체험 관련 내용 ····· 29
제2절 '진로와 직업' 과목 ····· 30
Ⅰ. 성 격 ····· 30
Ⅱ. 내용 체계 ····· 31
Ⅲ. 교수·학습 방법 ····· 33
Ⅳ. 일선 학교의 실태 ····· 33
제3절 창의적 체험활동 ····· 34
Ⅰ. 개념과 성격 ····· 34
Ⅱ. 내용 체계 ····· 35
Ⅲ. 편성 및 운영 ····· 36
1. 편 성 ····· 36
2. 운 영 ····· 37
Ⅳ. 평가 및 관리 ····· 40
Ⅴ. 유의 사항 ····· 41
제4절 중학교 자유학기제 ····· 42
Ⅰ. 개 념 ····· 42
Ⅱ. 도입 일정 ····· 43
Ⅲ. 운영 체제 ····· 44
Ⅳ. 운영 모형 ····· 44
1. 진로 탐색 중점 모형(1) ····· 45
2. 진로 탐색 중점 모형(2) ····· 45
3.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 46
4. 예술·체육 중점 모형 ····· 47
5.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 47
Ⅴ. 전망과 유의 사항 ····· 48
1. 운영 형태 ····· 48
2. 적용 학기 ····· 48
3. 유의 사항 ····· 50
제3장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법 ····· 53
제1절 논의의 필요 ····· 55
제2절 법교육에 대하여 ····· 55
Ⅰ. 개 념 ····· 55
Ⅱ. 법교육 방법의 원리 ····· 57
Ⅲ. 법교육 방법 ····· 58
1. 법교육 관련 문헌의 내용 ····· 58

2. 미국 변호사 실무의 법교육 유형 ····· 60
3. 도덕·사회 교과 교수·학습 방법과의 관계 ····· 61
4.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 ····· 62
5. 교과서의 실례 ····· 65
Ⅳ.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 72
제3절 진로교육에 대하여 ····· 73
Ⅰ.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관계 ····· 73
Ⅱ. 진로 체험의 유형 및 활동 내용 ····· 73
Ⅲ. 현장 직업 체험의 방식 ····· 75
1. 인원의 구성 등 ····· 75
2. 직업 체험 활동의 예 ····· 75
3. 일터별 예시 프로그램 ····· 76
4. 직업 체험을 위한 서약서 작성 ····· 78
제4장 체험 프로그램의 실태 ····· 81
제1절 대법원 ····· 83
Ⅰ. 프로그램 ····· 83
1. 견학 프로그램 ····· 83
2. 교육·체험 프로그램 ····· 84
Ⅱ. 대법원 견학 교재 ····· 86
제2절 사법연수원 ····· 89
Ⅰ. 개 요 ····· 89
Ⅱ.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 89
Ⅲ.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 90
제3절 각급 법원 ····· 92
Ⅰ. 견학 프로그램 ····· 92
1. 고등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 92
2.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 93
3.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 95
Ⅱ. 일반 견학 외의 프로그램 ····· 97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강좌·사법캠프·청소년법률가 과정 ····· 97
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 99
3.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 101
4.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 102
5. 춘천지방법원의 사법캠프 ····· 102
6. 대전지방법원의 법체험캠프 ····· 105
7. 대구지방법원의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논술 경연대회 ····· 106
8. 전주지방법원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 107
제4절 유관 기관 ····· 110

Ⅰ. 헌법재판소 ····· 110
1. 재판소 견학 ····· 110
2. 어린이 헌법재판소 ····· 110
3. 도서관 헌법교실 ····· 111
Ⅱ. 법무부 ····· 111
1. 솔로몬 로파크 ····· 111
2. 온라인 교육 ····· 113
Ⅲ. 법제처 ····· 114
1. 어린이 법제처 ····· 114
2. 청소년 법제관 ····· 115
Ⅳ. 한국법교육센터 ····· 115
제5절 외 국 ····· 116
Ⅰ. 미 국 ····· 116
1. 연방 대법원 ····· 117
2. 주(州) 법원 ····· 119
3.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128
4. 스트리트 로 단체(Street Law, Inc.) ····· 129
5. 기본권 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 131
6.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 133
Ⅱ. 일 본 ····· 133
1. 최고재판소 ····· 133
2. 도쿄지방재판소 ····· 134
3. 법무성 ····· 136
4. 변호사연합회 ····· 138
제5장 법원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 139
제1절 목 표 ····· 141
제2절 프로그램의 실제 ····· 141
제6장 과제 및 제안 ····· 143

14.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 A Current State Analysis of the Statutes and Its Operation –

연구총서 2015-07

연구책임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7월 13일 발행

제1장 서론 ····· 11
제1절 개관 ····· 13
Ⅰ. 영국 양형기준제도 연구의 의의 ····· 13
Ⅱ. 연구의 범위와 방향 ····· 13
제2장 영국양형기준제도의 법령 ····· 15
제1절 영국양형제도의 연혁 ····· 17
Ⅰ. 2003년 형사사법법 이전의 양형제도 ····· 17
Ⅱ.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에 의한 양형기준제도의 개정····· 19
Ⅲ. 2009년 검시관과 사법에 관한 법에 따른 양형기준제도의 개정 ····· 22
제2절 양형기준제도에 관한 법 ····· 27
Ⅰ. 법적 규정 ····· 27
Ⅱ. 양형기준의 일반적 구조 ····· 32
Ⅲ. 양형기준의 제정 ····· 36
제3장 영국양형기준제도의 현황 ····· 47
제1절 양형위원회의 운영 ····· 49
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 49

Ⅱ. 양형위원회 운영 ····· 51
제2절 양형위원회의 양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기능 ····· 56
Ⅰ.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 ····· 56
Ⅱ.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의 제공 ····· 57
Ⅲ. 국민의 참여 유도 ····· 61
Ⅳ. 소결론 ····· 64
제3절 양형위원회의 평가 및 연구 기능 ····· 64
Ⅰ. 실증적 분석 조사 ····· 64
Ⅱ. 사회적 조사 연구 ····· 67
Ⅲ. 양형기준이 교정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 70
제4장 결론-시사점 ····· 71

15.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연구총서 2015-08

연구책임자: 손지영(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5년 6월 10일 발행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5
제2장 디지털 증거 일반론 ····· 19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종류 ····· 21
Ⅰ. 개념과 의의 ····· 21
Ⅱ. 디지털 증거와 유사한 개념들 ····· 22
1. 전자 증거, 전자적 증거, 전자기록 ····· 22
2. 전자문서 ····· 23
3. 컴퓨터 기록, 컴퓨터 증거 ····· 24
Ⅲ. 소결 ····· 24
제2절 디지털 증거의 특징 ····· 25
Ⅰ. 디지털 증거 관련 문제의 제기 ····· 25
Ⅱ. 디지털 증거의 특징 ····· 25
1. 디지털 증거의 성격 ····· 25
(1) 매체독립성과 원본과 사본 구분의 곤란성 ····· 26
(2) 변개의 용이성 내지 취약성 ····· 26

(3) 비가시성·비가독성 및 잠재성 ····· 27
(4) 대량성 ····· 27
(5) 전문성 ····· 28
(6) 네트워크 관련성 ····· 28
(7) 익명성 ····· 29
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 30
(1)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 31
(2) 진정성 ····· 32
(3) 신뢰성 ····· 33
(4) 원본성 ····· 34
3. 디지털 증거에 특유한 증거능력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 ····· 35
(1) 동일성 내지 무결성의 요구 ····· 35
(2) 신뢰성의 요구 ····· 35
(3) 원본성의 요구 ····· 36
4. 디지털 증거의 종류 ····· 37
제3장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 41
제1절 개관 ····· 43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포렌식 절차 ····· 43
Ⅰ. 디지털 포렌식 ····· 43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및 필요성 ····· 43
2. 기본원칙 ····· 44
(1) 정당성의 원칙 ····· 44
(2) 재현의 원칙 ····· 45
(3) 신속성의 원칙 ····· 45
(4) 절차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 ····· 45
(5) 무결성의 원칙 ····· 46
3.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관련 규정 ····· 46
Ⅱ.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 과정 ····· 48
Ⅲ. 증거 수집 ····· 50
1. 데드 시스템상에서의 증거 수집 ····· 51
2. 라이브 시스템상에서의 증거 수집 ····· 51
(1) 라이브 시스템 메모리 덤프 ····· 52
(2) 라이브 시스템 하드디스크 이미징 ····· 53
Ⅳ. 디지털 포렌식 도구 ····· 55
1.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문제 ····· 55
2. 포렌식 도구의 종류와 기능 ····· 56
(1) 종류 ····· 56
(2)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기능 ····· 56

3. 국내에서 활용되는 포렌식 도구와 표준화 ····· 57
(1) 국내 포렌식 도구 ····· 57
(2) 분석 도구 표준화 ····· 57
제3절 디지털 증거의 분석 ····· 58
Ⅰ. 증거물의 획득 및 분석 절차에서의 무결성 ····· 58
1. 증거물의 무결성 ····· 58
2. 증거물 획득 절차 ····· 58
3. 증거물 분석 절차 ····· 60
Ⅱ. 디지털 증거 분석의 개념과 종류 ····· 61
1. 디지털 증거 분석의 개념 ····· 61
2. 디지털 증거에 대한 사후 분석의 성격 ····· 62
3. 증거 분석 기법의 종류 ····· 63
(1) 메모리 덤프 분석 ····· 63
(2) Windows 레지스트리 분석 ····· 63
(3) Timeline 분석 ····· 64
(4) 삭제된 파일 복구 ····· 64
(5) 비정상적인 파일 찾기 ····· 65
(6) 전자우편 분석 ····· 65
(7) 로그 분석 ····· 65
(8) 슬랙 공간 분석 ····· 66
(9) 스트링 서치와 해쉬 분석 ····· 66
(10) 암호 분석(Crypto Analysis) ····· 67
(11) 프로세스 분석(Process Analysis) ····· 67
제4장 디지털 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69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 71
Ⅰ.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문제 ····· 71
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적격성 ····· 71
2. 압수·수색의 요건 ····· 72
3. 압수·수색의 방법 및 범위 ····· 73
4. 압수·수색 방법 및 범위의 사전적 제한 문제 ····· 74
Ⅱ. 디지털 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79
제2절 미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 80
Ⅰ. 개관 ····· 80
Ⅱ.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예외 사유의 인정 범위 ····· 83
1. 동의(Consent) ····· 83
2. 적법한 체포에 수반된 수색(Search Incident to Lawful Arrest) ····· 84
3. 육안 발견(Plain View) ····· 86
4. 그 밖의 예외 사유 ····· 87

Ⅲ. 전자적 감시와 수정헌법 제4조 ····· 88
1. 초기의 판례 ····· 88
2. 입법화와 판례의 태도 변경 ····· 88
제3절 독일의 디지털 증거 위법 수집과 증거능력 ····· 92
Ⅰ. 개관 ····· 92
Ⅱ.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관한 기본원칙: BVerfGE 113, 39 판결 ····· 94
Ⅲ.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처분과 증거능력 ····· 95
1. 디지털 증거에 관한 강제처분의 근거규정 ····· 95
(1) 압수의 대상인지 여부 ····· 95
(2) 전산자료의 투망식 조사(Rasterfahndung) ····· 95
(3) 통신감청 ····· 95
(4) 통신사실자료의 확인 ····· 96
(5) 디지털 데이터 수색 범위에 관한 규정 ····· 96
2. 관련 판례 ····· 97
(1) BVerfG, 2 BvR 902/06 V. 16. 6. 2009. ····· 97
(2) BGH StB 18/06, V. 31. 1. 2007. ····· 97
(3) BverfG, 1 BvR 370/07, 1 BvR 595·07 V. 27. 2. 2008 ····· 98
(4) BGH 1 StR 76/09, V. 31. 3. 2009. ····· 99
(5) BGH StB 48/09, V. 24. 11. 2009. ····· 99
(6) LG Ravensburg, V. 9. 12. 2002. - 2 Qs 153/02 ····· 100
(7) LG Bremen, V. 22. 7. 2005 - 11 Qs 112/05, StV 2006, 571 ····· 100
제4절 국내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판단 사례 ····· 101
Ⅰ. 개관 ····· 101
Ⅱ. 주요 사례 ····· 102
1. 영남위원회 사건 ····· 102
2.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103
(1)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사건 ····· 103
(2) 전교조 시국선언 본안사건 ····· 105
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107
4. 이○○ 사건 ····· 108
제5절 소결론 ····· 109
제5장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113
제1절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증거능력 ····· 115
제2절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허용성 ····· 115
Ⅰ. 미국 증거법의 개관 ····· 115
Ⅱ. 디지털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분석 틀 ····· 116
Ⅲ. 관련성의 검토 ····· 117
1. 논리적 관련성 ····· 117

2. 실질적 관련성 ····· 118
Ⅳ. 무결성(진정성) 내지 동일성의 검토 ····· 118
1. 외부적 증거에 의한 무결성(진정성) 증명 ····· 120
(1)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증언[제901조(b)(1)] ····· 120
(2) 전문가 증인이나 사실 판단자에 의한 비교[제901조(b)(3)] ····· 120
(3) 확연한 특징[제901조(b)(4)] ····· 121
(4) 공적 기록 및 보고[제901조(b)(7)] ····· 122
(5) 절차 또는 시스템[제901조(b)(9)] ····· 122
2. 당연히 무결성(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제902조) ····· 123
(1) 공식적 기록[제902조(5)] ····· 123
(2) 상품 표기문[제902조(7)] ····· 124
(3) 정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인증된 국내 기록[제902조(11)] ····· 124
Ⅴ. 원본성의 검토 ····· 125
Ⅵ. 컴퓨터 포렌식과 전문가 증언 문제 ····· 125
제3절 국내의 관련 판례 ····· 127
Ⅰ. 일심회 사건 ····· 127
Ⅱ. 왕재산 사건 ····· 129
Ⅲ. 이○○ 사건 ····· 131
제4절 소결론 ····· 132
제6장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135
제1절 개관 ····· 137
Ⅰ.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의의 ····· 137
Ⅱ.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 적용 문제 ····· 138
제2절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139
Ⅰ. 전문법칙에 관한 검토 순서 ····· 139
Ⅱ. 진술증거 여부 ····· 139
Ⅲ. 원진술자에 의한 진술 여부 ····· 139
Ⅳ.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법정 외 진술 여부 ····· 140
Ⅴ. 전문증거의 정의 배제 여부 ····· 141
Ⅵ. 전문법칙의 예외 해당 여부 ····· 142
1. 발생 현장에서의 묘사[제803조(1)] ····· 142
2. 흥분 상태의 언급[제803조(2)] ····· 142
3. 진술 당시의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관한 진술[제803조(3)]·····143
4. 업무상 기록 혹은 정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기록[제803조(6)] ·····143
5. 공적 기록[제803조(8)] ····· 144
6. 시장 보고서나 그와 유사한 발간물[제803조(17)] ····· 145
제3절 국내의 관련 판례 ····· 145
Ⅰ. 영남위원회 사건 ····· 145

Ⅱ. 일심회 사건 ····· 146
1. 판시 내용 ····· 146
2. 검토 ····· 147
Ⅲ. 성매매 메모리카드 사건 ····· 149
Ⅳ. 왕재산 사건 ····· 150
제4절 소결론 ····· 151
제7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기준 ····· 153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기준의 필요성 ····· 155
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 ····· 155
Ⅰ. 개요 ····· 155
Ⅱ. 구체적인 고려 요소 ····· 156
1. 영장주의 관련 ····· 156
(1)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 156
(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에 대한 집행 ····· 157
(3)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방법에 부합한 집행 ····· 157
(4) 범죄관련성의 문제 ····· 158
(5) 참여권 보장 및 통지 문제 ····· 159
2. 관련법 위반 여부 ····· 159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해당 여부 ····· 160
제3절 동일성·무결성에 대한 증명 ····· 161
Ⅰ. 개요 ····· 161
Ⅱ. 동일성·무결성의 확인 방법 ····· 161
Ⅲ. 삭제된 파일의 복구 및 분석과 관련된 문제 ····· 163
제4절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164
Ⅰ. 전문증거 해당 여부 ····· 164
Ⅱ. 전문증거인 경우 진정 성립의 증명(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165
Ⅲ.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경우 특신상태의 존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165
Ⅳ.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 각 호의 예외 해당 여부 ····· 166
제5절 내용의 요약 및 한계 ····· 166
제8장 결론 ····· 171

16.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Effective Courtroom Communication

연구총서 2015-09

연구책임자: 정채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양시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7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제2장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적 기초와 연구성과 ····· 17
제1절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개괄적 이해 ····· 19
Ⅰ. 커뮤니케이션학의 의의 ····· 19
Ⅱ.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 동향 및 시사점 ····· 21
제2절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적 발전과 실천적 응용 ····· 23
Ⅰ.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 전통과 접근 방법 ····· 23
Ⅱ. 커뮤니케이션학의 주요 이론 ····· 23
1. 사회적 판단 이론 ····· 24
2. 정교화 가능성 모델 ····· 26
3. 인지부조화 이론 ····· 28

Ⅲ.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및 전략 ····· 29
1. 상대방에 대한 관심 갖기 ····· 30
2. 경청 ····· 31
3. 내용 확인 ····· 32
4. 지각 확인 ····· 33
가. 신체언어 ····· 35
나. 목소리 및 억양 ····· 37
5. 직면하기 ····· 37
Ⅳ.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검토 및 비교분석 ····· 38
1. 의료 커뮤니케이션 ····· 38
2. 노사 커뮤니케이션 ····· 42
3. 협상 커뮤니케이션 ····· 44
4. 가족 상담 커뮤니케이션 ····· 46
제3장 법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괄적 이해 ····· 49
제1절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다원적 요소 ····· 51
Ⅰ. 커뮤니케이터로서 법관 ····· 52
Ⅱ. 메시지 ····· 53
Ⅲ. 대화 ····· 55
Ⅳ. 관계 ····· 56
제2절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및 고려사항 ····· 57
Ⅰ.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속성 ····· 57
1. 법정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 57
2. 법정의 공감 커뮤니케이션 ····· 58
Ⅱ.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60
1. 법관의 합리적인 심증형성과 법정 커뮤니케이션 ····· 60
2. 1심에서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종국적인 분쟁해결 ····· 63
3. 치료적 사법의 맥락에서 법정 커뮤니케이션 ····· 64
제3절 상호주관적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로의 방향성 ····· 65
Ⅰ.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주관성 ····· 66
Ⅱ. 상호주관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기초 이론 ····· 67
Ⅲ. 상호지향성 모델의 적용가능성 ····· 71
Ⅳ. 소결 ····· 73
제4장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발전적 정립 ····· 75
제1절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 정립의 토대 ····· 77
Ⅰ. 사법부의 AFIR 모델 ····· 77
Ⅱ. 기존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 ····· 78
1.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및 문제 상황 ····· 78
2. 기존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 80

제2절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구체적 적용 ····· 82
Ⅰ.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모델 ····· 82
1.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 82
2. 법관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 83
가. 편안한 법정 분위기 조성 ····· 83
나. 자기개방적인 자세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주체성 ····· 84
다. 의사소통의 촉매제 역할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활용 ····· 84
라.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공감능력 ····· 86
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조화 ····· 87
바. 명확한 쟁점 확인 및 정리 ····· 88
사. 적절하게 질문하기 ····· 89
아. 적절한 방식의 대화 개입 ····· 89
자. 법정에서의 경청과 관심 갖기 ····· 90
차. 소송법상의 절차 준수 ····· 92
3. 법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진단 ····· 93
Ⅱ.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재판 유형별 고려사항 ····· 96
1. 민사재판(일반) ····· 96
가. 민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구술심리주의 ····· 96
나. 민사재판에서 변론절차의 진행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 97
2. 민사조정 ····· 101
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의 의의 및 특성 ····· 102
나. 민사조정에서 조정기일의 진행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 105
3. 형사재판(일반) ····· 107
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공판중심주의 ····· 107
나.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의 진행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 107
4. 국민참여재판 ····· 113
가.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으로서 국민참여재판 ····· 113
나. 배심원 지향적인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고려사항 ····· 114
Ⅲ.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실천적 응용 ····· 115
1. 청각장애인 방청인에 대한 수화통역 ····· 116
가. 사안의 개요 ····· 116
나. 해설 및 고려사항 ····· 116
2. 퇴정 명령에 불복한 변호사에 대한 감치 ····· 119
가. 사안의 개요 ····· 119
나. 해설 및 고려사항 ····· 120
3.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서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 121
가. 사안의 개요 ····· 121
나. 해설 및 고려사항 ····· 122

제5장 결론: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125
제1절 법정 소통을 위한 사법부의 정책적 노력 ····· 127
제2절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129
Ⅰ. 법관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강화 ····· 129
Ⅱ.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간의 교류 등 ····· 130
Ⅲ. 법정 모니터링 항목의 체계화 ····· 130
제3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 135

17.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Judge-run Arbitration in the U.K., and the U.S.,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Judge-Arbitrator

연구총서 2015-10

연구책임자 : 이재석(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장판사)

2015년 7월 17일 발행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제2장 중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21
제1절 중재의 개념 ····· 23
제2절 중재의 분류 ····· 23
Ⅰ. 기관중재와 비기관중재 ····· 23
Ⅱ. 국제중재와 국내중재 ····· 25
제3절 중재의 법원(法源) ····· 26
Ⅰ. 중재지 중재법 및 개별 기관중재규칙 ····· 26
Ⅱ. 국제변호사협회 제반 규칙 ····· 26
제4절 중재절차 ····· 27
제5절 중재의 특징 ····· 28
Ⅰ. 일반적인 설명 ····· 28

Ⅱ. 소송과 비교한 중재제도의 특…… 29
1. 중재제기 …… 29
2. 중재인(arbitrator)의 선정 …… 29
3. 사실인정 …… 33
4. 절차의 비공개 …… 33
5. 판정 및 불복 …… 34
제6절 중재의 장·단점 …… 34
Ⅰ. 장점 …… 34
Ⅱ. 단점 …… 35
제7절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 …… 36
제8절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현황 …… 38
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 39
1. 절차도 …… 39
2. 상세절차 …… 40
3. 중재비용 …… 40
Ⅱ. 중재 이용 현황 …… 40
제3장 영국 중재법상 법관-중재인 제도의 현황 …… 41
제1절 잉글랜드·웨일즈 …… 43
Ⅰ. 영국 중재법의 제정 …… 43
Ⅱ. 중재법 …… 44
1. 법관-중재인 선정 …… 44
2. 항소법원 수석법관의 허가 …… 45
3. 중재비용 …… 45
4. 불복절차 …… 45
5. 부칙 …… 46
Ⅲ. 지침 …… 47
1. 상사법원 지침(Commercial Court Guide) …… 47
2. 기술건설법원 지침(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TCC) Guide) …… 47
제2절 스코틀랜드 …… 52
Ⅰ. 스코틀랜드 중재법의 제정 …… 52
Ⅱ. 스코틀랜드 중재절차 …… 54
1. 법관-중재인 선정 …… 54
2. 비밀유지의무 …… 56
3. 불복절차 …… 57
4. 중재비용 …… 57
제3절 평가 …… 58
Ⅰ. 영국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성화 …… 58
Ⅱ. 일정한 유형의 분쟁에 관하여 활용 …… 59

Ⅲ. 영국 특유의 제도에 관한 연혁적, 법문화적 접근 ····· 59
제4장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법원 중재의 현황 ····· 63
제1절 미국 중재제도의 개관 ····· 65
제2절 형평법법원 중재의 도입 경과 ····· 65
Ⅰ. 델라웨어주 형평법법원의 중재절차 ····· 65
1. 관련 규정 ····· 65
2. 중재신청 요건 ····· 66
3. 법관-중재인 선정 ····· 66
4. 절차의 신속 ····· 67
5. 비공개 및 비밀유지 ····· 67
6. 불복절차 ····· 68
7. 중재비용 ····· 69
Ⅱ. 이용 현황 ····· 69
1. 개요 ····· 69
2. Teradata Corporation 사례 ····· 70
3. Global Defense 사례 ····· 70
4. Chrysalis 사례 ····· 72
5. Skyworks Solutions, Inc. 사례 ····· 72
Ⅲ. 찬반 논쟁 ····· 73
1. 찬성 ····· 73
2. 반대 ····· 74
제3절 위헌 소송의 분석 ····· 75
Ⅰ. 주요 쟁점 ····· 75
Ⅱ. 소송의 경과 ····· 76
1. 연방지방법원 ····· 76
2. 제3연방항소법원 ····· 79
3. 연방대법원 ····· 80
Ⅲ. 분석 ····· 80
제4절 평가 ····· 82
Ⅰ. 델라웨어주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ADR 활성화 ····· 82
Ⅱ. 파격적, 실험적 시도 ····· 84
Ⅲ. 새로운 중재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법관-중재인 제도의 폐지 ····· 86
제5장 법관에 의한 중재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여건에 대한 고찰 ····· 89
제1절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논점 ····· 91
Ⅰ.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 ····· 91
Ⅱ. 중재절차의 비공개성 ····· 91
Ⅲ. 헌법적 쟁점 ····· 93
1. 헌법상 재판의 공개 원칙 ····· 93

2. 비교법적 접근 ····· 94
3. 요약 ····· 96
Ⅳ. 소송법적 쟁점 ····· 96
Ⅴ. 중재법적 쟁점 ····· 97
제2절 제도의 도입 여건에 관한 논점 ····· 97
Ⅰ.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윤리적 측면 ····· 97
1. 보수 측면 ····· 97
2. 일반의 의식 측면 ····· 98
Ⅱ. 중재 대상 관련 ····· 100
1. 국제중재와 국내중재 ····· 100
2. 상사중재 ····· 101
Ⅲ. 효율성 측면 ····· 101
1. 소송 대체 효과 측면·· ····· 101
2. 법관의 업무량 측면 ····· 104
3. 상소억제 효과 여부 ····· 105
Ⅳ. 실무적 관점 ····· 106
1. 법관의 전문성 제고 ····· 106
2. 중재실무계의 공감대 형성 ····· 107
3. 분쟁당사자의 법관-중재인 제도 이용 ····· 107
4. 이해관계인의 인식 ····· 109
제3절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 110
제6장 보론: 중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 113
제1절 퇴직 법관에 의한 중재인 직무 수행 활성화 ····· 115
제2절 중재전담법관의 지정 내지 중재전문재판부의 설치 ····· 117
Ⅰ. 중재전담법관 지정 요구의 증대 ····· 118
Ⅱ. 현황 ····· 119
Ⅲ. 외국 사례 ····· 120
1. 오스트레일리아 ····· 120
2. 인도 ····· 121
3. 아일랜드 ····· 121
Ⅳ. 검토 ····· 121
제3절 중재와 관련한 다양한 ADR의 개발 ····· 123
Ⅰ. 필요성 ····· 123
Ⅱ. 고려 사항 ····· 124
1. 법원에서 관여하는 중재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논의 경과 ····· 124
2. 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의 적극적 활용 ····· 126
Ⅲ. 외국 사례: 비구속적 중재 내지 조정절차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127
1. 비구속적 중재: 미국의 법원연계형 중재 ····· 127

2. 조정절차와의 연계: 조정-중재(Med-Arb) 또는 중재-조정(Arb-Med) …… 131
Ⅳ. 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를 활용한 중재프로그램의 구상: 조정절차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142
1. 기본 방향 …… 142
2. 조정센터에서의 중재 프로그램의 개요 …… 143
제7장 결 론 …… 147

18.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Trial Affairs Regarding Trial Records and Court Reports

연구총서 2015-11

연구책임자: 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석(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심의관)

2015년 7월 24일 발행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Ⅰ. 연구의 범위 ····· 18
Ⅱ. 연구의 방법 ····· 19
제2장 재판서·조서 전자화 및 법정녹음 시행과 그 과제 ····· 21
제1절 개설 ····· 23
Ⅰ. 개념 정의 ····· 23
Ⅱ. 재판기록의 효용 등 ····· 24
제2절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 25

Ⅰ. 근거 규정 ····· 25
Ⅱ. 사건별 전자기록화 ····· 25
Ⅲ. 운영 현황 ····· 28
1.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현황 ····· 28
2.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시행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29
3. 도산사건에서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 32
4. 전자소송사건의 진행 현황 및 이용관련 의견 ····· 34
5.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시행 전망 ····· 37
Ⅳ. 과제 ····· 39
제3절 법정녹음 시행 ····· 40
Ⅰ. 근거 규정 ····· 40
Ⅱ. 법정녹음의 유형 ····· 41
1. 개요 ····· 41
2. 조서 작성을 위한 속기·녹음(변론녹음예규 제2조 제1호) ····· 42
3. 조서 대체 속기·녹음(변론녹음예규 제2조 제2호) ····· 42
4. 조서 작성 편의를 위한 속기·녹음(변론녹음예규 제2조 제3호) ····· 46
Ⅲ. 운영 현황 ····· 46
1. 법정녹음 시범실시 ····· 46
2. 법정녹음 시행 ····· 50
Ⅳ. 과제 ····· 52
제3장 전자소송 및 법정변론 기록에 관한 외국의 재판실무와 그 시사점 ····· 55
제1절 개설 ····· 57
제2절 미국 ····· 57
Ⅰ. 전자소송 ····· 57
1. 개요 ····· 58
2. 연방법원 ····· 58
3. 주법원 ····· 61
4. 시사점 ····· 64
Ⅱ. 법정변론의 기록 ····· 65
1. 소송절차의 기록 ····· 65
2. 실시간 법정 조서 기록(Realtime Court Report) ····· 67
3. 판결서 작성 ····· 67
4. 시사점 ····· 69
제3절 영국 ····· 70
Ⅰ. 전자소송 ····· 70
1. 일반 ····· 70
2. MCOL 및 PCOL ····· 72
Ⅱ. 법정변론의 기록 ····· 73

1. 소송기록(Trial Bundles) ····· 73
2. 재판절차의 녹음(Recording of Proceedings) 및 조서의 작성 ····· 76
3.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s) ····· 76
4. 판결서(Judgments and Orders) ····· 78
Ⅲ. 시사점 ····· 79
제4절 독일 ····· 80
Ⅰ. 전자소송 ····· 80
1. 전자법률교류촉진법 제정 ····· 80
2. 단계적인 전자기록 도입 ····· 81
3. 전자소송에 관한 독일 민사소송법 규정 ····· 82
4. 헤센주의 전자소송 현황 ····· 85
5. 시사점 ····· 87
Ⅱ. 법정변론의 기록 ····· 87
1. 사전 준비절차 ····· 88
2. 주요기일 ····· 88
3. 판결서 작성 ····· 90
4. 재판기록 편성 방식 ····· 90
5. 시사점 ····· 91
제5절 프랑스 ····· 92
Ⅰ. 법정변론의 기록 ····· 92
1. 변론절차 ····· 92
2. 조서 ····· 93
3. 증거조사 과정의 녹화 또는 녹음 ····· 94
4. 판결 ····· 95
Ⅱ. 재판기록의 편성 ····· 95
Ⅲ. 시사점 ····· 97
제6절 일본 ····· 98
Ⅰ. 법정변론의 기록 ····· 98
1. 조서의 작성 ····· 98
2. 조서의 작성 시기 및 양식 ····· 99
Ⅱ. 재판기록의 편성 ····· 100
Ⅲ. 시사점 ····· 101
제4장 재판실무 개선 방안 ····· 103
제1절 개설 ····· 105
제2절 재판기록의 편성, 보존 및 관리 방안 ····· 107
Ⅰ. 재판기록의 편성 방안 ····· 107
1. 기본방향 ····· 107
2. 기록 편성 방식에 대한 검토 ····· 107

3. 편년체 방식의 보완 방법 ····· 110
Ⅱ. 재판기록의 보존 방안 ····· 117
1. 보존절차 ····· 117
2.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의 보존기간 ····· 118
Ⅲ. 재판기록의 관리 방안 ····· 119
1. 전자적 열람 문제 ····· 119
2. 녹음물의 복제 및 보안 문제 ····· 120
제3절 재판장과 참여관, 실무관의 협업 프로세스 정립 ····· 120
Ⅰ. 개요 ····· 120
Ⅱ. 기일 전 단계 ····· 121
1. 사건의 접수 및 배당 ····· 121
2. 소장심사와 보정 절차 ····· 122
3. 답변서 검토 ····· 125
4. 사건 분류 및 재판 준비 ····· 125
5. 기록 관리 ····· 129
6. 기일 전 절차관리 ····· 130
7. 자료조사 업무 ····· 130
8. 형식적 판결 작성 업무 보조 ····· 130
Ⅲ. 기일진행 단계 ····· 130
1. 기일참여 ····· 130
2. 쟁점정리 ····· 131
3. 절차협의 ····· 132
4. 실질적 절차관리 및 조서 작성 ····· 133
5. 전자기록화 및 법정녹음을 위한 설비 확인 ····· 134
6. 변론기일에서의 실무관 역할 ····· 134
Ⅳ. 기일 후 단계 ····· 135
Ⅴ. 기타 ····· 136
제4절 전자소송의 활성화 방안 ····· 137
Ⅰ. 전자소송 의무화의 필요성 ····· 137
1. 전자소송 제도의 취지 ····· 137
2. 전자소송의 단계적 발전 과정 ····· 137
3. 전자소송 의무화 ····· 138
Ⅱ.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138
1. 전자소송의 효용 제공 ····· 138
2.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139
3.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140
Ⅲ.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 ····· 140
제5절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 142

Ⅰ. 기존 조서 작성과 법정녹음의 병행 문제 ····· 142
Ⅱ. 필수적 고지사항과 절차진행사항의 확인 ····· 143
Ⅲ. 비(非)음성적 부분의 기재 문제 ····· 148
Ⅳ. 조서 작성 시기 문제 ····· 149
제6절 법정녹음 환경하에서 효율적인 심리 방식 ····· 150
Ⅰ. 쟁점목록 및 절차협의안의 활용 ····· 150
1. 필요성 ····· 150
2. 내용 ····· 151
Ⅱ. 요약조서의 적극적 활용 ····· 152
Ⅲ. 쟁점별 증인신문 ····· 153
Ⅳ. 증인진술서 제도의 활용 ····· 154
Ⅴ. 판결 작성 부담의 경감 ····· 155
제7절 재판실무에 관한 예규 등 법령 검토 ····· 155
Ⅰ. 개설 ····· 155
Ⅱ.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156
Ⅲ. 상소기록의 작성·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 156
Ⅳ.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 157
Ⅴ.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 157
Ⅵ.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 158
Ⅶ.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 159
Ⅷ.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 160
제5장 결 론 ····· 163

19.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Research on Legal Citation

- Appendix: a sample guide to legal citation -

연구총서 2015-12

연구책임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이덕환(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시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9월 14일 발행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제2장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의 현황 ····· 15
제1절 인용의 기본 원칙 ····· 17
Ⅰ. 저작권 보호와 표절방지를 위한 인용 ····· 17
Ⅱ. 법률문헌 등의 출처 파악을 위한 인용 ····· 18
제2절 국내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의 현황 ····· 19
Ⅰ. 개관 ····· 19
Ⅱ. 사법부의 인용방법 현황 ····· 19
Ⅲ. 법학전문 학술지의 인용방법 현황 ····· 22

Ⅳ. 법학연구소 간행물의 인용방법 현황 ····· 25
Ⅴ. 연구기관 인용방법 현황 ····· 28
Ⅵ. 한국법학교수회의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 ····· 31
Ⅶ. 학회의 인용방법 현황 ····· 34
Ⅷ.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주요 인용방법 현황 ····· 39
Ⅸ. 검토 결과 ····· 41
제3절 외국의 인용방법 및 현황 조사·분석 ····· 45
Ⅰ. 미국 ····· 45
Ⅱ. 영국 ····· 56
Ⅲ. 독일 ····· 59
Ⅳ. 일본 ····· 67
Ⅴ. 중국 ····· 71
Ⅵ. 기타 국가의 표준안 현황 ····· 74
Ⅶ. 검토 결과 ····· 75
제3장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 77
제1절 기본 방향 ····· 79
제2절 본 표준안의 특징 ····· 79
Ⅰ. 문헌 및 판결에 대한 높은 접근성 ····· 79
Ⅱ. 인용 문헌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 80
Ⅲ. 다양한 법 관련 문헌의 인용방안 마련 ····· 81
Ⅳ. 쉽게 쓸 수 있는 표준안 ····· 81
Ⅴ. 저작권의 존중과 표절예방 ····· 84
Ⅵ. 해외 법령·판례 등의 인용방법 개발 - 사법의 세계화 ····· 85
Ⅶ. 본 표준안 표시방법 정리 ····· 86
제4장 결 론 ····· 91

20.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

이 표준안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2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에 수록된 첨부 자료입니다.

연구총서 2015-12-첨부자료

연구책임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이덕환(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시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9월 14일 발행

Ⅰ. 판결 인용 ····· 8
1.1. 법원 판결 ····· 8
1.2. 헌법재판소 결정 ····· 8
1.3. 법원 명령 및 결정 ····· 9
1.4. 준(準)사법기관 결정(의결) ····· 9
1.5. 판결의 출처 표기 ····· 9
Ⅱ. 법령인용 ····· 11
2.0. 법령 표시의 일반적 원칙 ····· 11
2.1. 법령 ····· 11
2.2. 구법(舊法) ····· 12
2.3. 북한법령의 인용 ····· 13
Ⅲ. 도서의 인용 ····· 14
3.0. 도서 (단행본) ····· 14
3.1. 국내 도서의 인용 - 일반적 원칙 ····· 14
3.2. 외국 도서(단행본) 인용방법 ····· 16

Ⅳ. 정기간행물 내 논문 ····· 18
4.1. 정기간행물(논문집)의 인용방법 ····· 18
4.2. 외국의 정기간행물 내 논문 ····· 18
Ⅴ. 기타 법률자료의 인용 ····· 22
5.0. 기타 법률자료 인용의 일반적 원칙 ····· 22
5.1. 학위 논문 ····· 22
5.2. 간행 예정물 ····· 23
5.3. 국회 회의록 ····· 23
5.4. 국회 계류 의안 ····· 23
5.5. 공적 보고서 ····· 24
5.6. 공공기관 보도자료 ····· 25
5.7. 내부 보고서 ····· 25
5.8. 신문기사 ····· 26
5.9. 세미나 등 간담회 발표문(토론문) ····· 27
5.10. 개인기록 - 면담 등 ····· 28
Ⅵ. 디지털 문헌 ····· 30
6.0. 디지털 문헌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 30
6.1. 전통적인 출판의 형태가 있는 경우 - 일반적인 원칙 ····· 30
6.2. 디지털의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인 경우 ····· 31
Ⅶ. 해외 법령 및 판례 ····· 33
7.0. 해외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인용방법 - 일반적인 원칙 ····· 33
7.1. 미국 ····· 33
7.2. 영국 ····· 36
7.3. 독일 ····· 38
7.4. 프랑스 ····· 40
7.5. E.U./E.C. ····· 41
7.6. 일본 ····· 43
7.7. 중국 ····· 44
Ⅷ. 국제법률문헌 ····· 45
8.0. 국제법률문헌인용의 일반적인 원칙 ····· 45
8.1. 국제 조약 ····· 45
8.2. 국제법원 판례 ····· 46
8.3. 국제기구 문헌 ····· 47

21.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Analysis of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dure and Perception of the Trial

연구총서 2015-13

연구책임자 : 장수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환(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1월 25일 발행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30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
제2장 조사의 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 33
제1절 개관 ····· 35
제2절 조사의 설계 ····· 36
Ⅰ. 조사대상자 ····· 36
Ⅱ.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39
Ⅲ. 설문문항의 내용 ····· 39
제3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47
Ⅰ. 인구통계학적 특성 ····· 47
Ⅱ. 재판과 관련된 특성 ····· 52
제3장 국민이 사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 ····· 69

제1절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 ····· 71
Ⅰ. 개관 ····· 71
Ⅱ.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 71
Ⅲ. 성별에 따른 차이 ····· 75
Ⅳ. 연령대에 따른 차이 ····· 76
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 77
제2절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 ····· 78
Ⅰ. 개관 ····· 78
Ⅱ.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묻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 79
Ⅲ. 성별에 따른 차이 ····· 83
Ⅳ. 연령대에 따른 차이 ····· 83
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 84
Ⅵ.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유무에 따른 차이 ····· 85
Ⅶ. 재판 유형에 따른 차이 ····· 89
제4장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 93
제1절 개관 ····· 95
제2절 국민은 사법절차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96
Ⅰ. 개요 ····· 96
Ⅱ. <문항 1-1>에 대한 조사 결과(전반적 지식수준) ····· 96
Ⅲ. <문항 1-2>에 대한 조사 결과(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 99
Ⅳ. <문항 1-3>에 대한 조사 결과(판사와 검사의 차이) ····· 101
Ⅴ. 종합 분석 ····· 104
Ⅵ.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 106
제3절 국민은 사법절차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113
Ⅰ. 개요 ····· 113
Ⅱ. <문항 2-1>에 대한 조사 결과(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사례) ····· 114
Ⅲ. <문항 2-2>에 대한 조사 결과(형사절차의 개시 방법) ····· 116
Ⅳ. <문항 2-3>에 대한 조사 결과(민사절차의 개시 방법) ····· 118
Ⅴ. <문항 2-4>에 대한 조사 결과(당사자 호칭의 구별) ····· 122
Ⅵ. <문항 2-5>에 대한 조사 결과(행정재판의 사례) ····· 125
Ⅶ. 종합 분석 ····· 127
Ⅷ.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 130
제4절 국민은 민사절차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136
Ⅰ. 개요 ····· 136
Ⅱ. <문항 3-1>에 대한 조사 결과(처분권주의) ····· 136
Ⅲ. <문항 3-2>에 대한 조사 결과(주장책임) ····· 140
Ⅳ. <문항 3-3>에 대한 조사 결과(직권증거조사의 제한) ····· 144
Ⅴ. <문항 3-4>에 대한 조사 결과(민사판결의 효력) ····· 146
Ⅵ. 종합 분석 ····· 149
Ⅶ.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 151
제5절 국민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156
Ⅰ. 개요 ····· 156
Ⅱ. <문항 4-1>에 대한 조사 결과(검사 기소독점주의) ····· 157
Ⅲ. <문항 4-2>에 대한 조사 결과(범죄자와 피해자 간 합의의 효력) ····· 159
Ⅳ. <문항 4-3>에 대한 조사 결과(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162
Ⅴ. <문항 4-4>에 대한 조사 결과(무죄추정의 원칙) ····· 165

Ⅵ. 종합 분석 ····· 168
Ⅶ.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 170
제6절 국민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떤 절차를 더 잘 알고 있는가 ····· 176
제7절 국민의 사법절차에 관한 일반적 정보에 대한 이해도 ····· 177
Ⅰ. 일반국민과 현재 재판당사자 간 차이 ····· 177
Ⅱ. 일반국민, 재판경험자 및 현재 재판당사자 간 차이 ····· 179
제8절 국민의 사법절차에 관한 전체 정보에 대한 이해도 ····· 180
Ⅰ. 일반국민과 현재 재판당사자 간 차이 ····· 180
Ⅱ. 일반국민, 재판경험자 및 현재 재판당사자 간 차이 ····· 181
Ⅲ.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 182
제9절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상관관계 ····· 190
Ⅰ.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상호 간 상관관계 ····· 190
Ⅱ.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조사대상자의 특성 간 상관관계 ····· 192
제5장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 ····· 197
제1절 개관 ····· 199
제2절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 199
Ⅰ. 설문문항의 내용 ····· 199
Ⅱ. 답변 분포 ····· 200
Ⅲ. 평균 차이 ····· 201
Ⅳ. 응답자의 특성 ····· 201
제3절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 202
Ⅰ. 설문문항의 내용 ····· 202
Ⅱ. 답변 분포 ····· 203
Ⅲ. 평균 차이 ····· 204
Ⅳ. 재판경험자는 실제 참여한 재판과 일반적인 재판 중 어떤 재판을 더 공정하게 생각하는가 ····· 204
제4절 재판절차가 공정하다면 재판결과가 불리해도 수용할 수 있는가 ····· 207
Ⅰ. 설문문항의 내용 ····· 207
Ⅱ. 답변 분포 ····· 207
Ⅲ. 평균 차이 ····· 208
제5절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209
Ⅰ. 설문문항의 내용 ····· 209
Ⅱ. 답변 분포 ····· 209
Ⅲ. 평균 차이 ····· 211
Ⅳ. 현행 재판절차 자체의 문제 이유 ····· 211
제6절 법원에 대한 신뢰도 ····· 214
Ⅰ. 설문문항의 내용 ····· 214
Ⅱ. 답변 분포 ····· 214
Ⅲ. 평균 차이 ····· 215
제7절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의 종합 분석 ····· 217
Ⅰ. 일반국민과 현재 재판당사자 간 차이 ····· 217
Ⅱ. 일반국민, 재판경험자 및 현재 재판당사자 간 차이 ····· 218
제8절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 상호 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 ····· 220
Ⅰ.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 상호 간 상관관계 ····· 220
Ⅱ.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 223

제9절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및 상관관계 ····· 225
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 ····· 225
Ⅱ.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간 상관관계 ····· 240
제10절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 간 관계 ····· 244
Ⅰ.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른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 차이 ····· 244
Ⅱ.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 간 상관관계 ····· 251
제6장 실제 참여한 재판에 관한 인식 ····· 255
제1절 사법 안내에 관한 법원의 활동 ····· 257
Ⅰ.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 안내의 효용성 ····· 257
Ⅱ. 법원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등의 효용성 ····· 261
제2절 실제 참여한 재판에 관한 인식 분석 ····· 264
Ⅰ. 개관 ····· 264
Ⅱ. 실제 참여한 재판절차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에 대한 조사 결과 ····· 264
Ⅲ. 재판결과의 성취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 266
Ⅳ. 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 268
Ⅴ. 실제 참여한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 270
Ⅵ. 실제 참여하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 273
Ⅶ. 재판을 통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상승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 277
Ⅷ. 재판을 통한 법원에 대한 신뢰 변화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 280
Ⅸ. 종합 분석 ····· 282
Ⅹ. 실제 참여한 재판에 관한 인식 상호 간 상관관계 ····· 284
제3절 실제 참여한 재판에 관한 인식과 관련된 비교 ····· 285
Ⅰ.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른 차이 ····· 285
Ⅱ. 법원 안내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에 따른 차이 ····· 287
제7장 결론 ····· 291
제1절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293
Ⅰ. 설문조사의 개요 ····· 293
Ⅱ. 조사대상자의 특성 ····· 294
Ⅲ.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 297
Ⅳ.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 ····· 316
Ⅴ. 실제 참여한 재판에 관한 인식 ····· 326
제2절 조사의 한계 ····· 334

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연구총서 2015-14

연구책임자: 이 학 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1월 13일 발행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21
Ⅰ. 연구 방법 ····· 21
Ⅱ. 연구 범위 ····· 23
제2장 북한이탈주민 개관 ····· 25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의의 및 법적 지위 ····· 27
Ⅰ. 북한이탈주민의 의의 ····· 27
Ⅱ.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남한 정착과정 ····· 28
Ⅲ.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34
Ⅳ. 소결 ····· 39
제2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개관 ····· 40
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변천 과정 ····· 40
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 41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 44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 ····· 59
제1절 개설 ····· 61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소송 현황 ····· 61
Ⅰ. 개관 ····· 61
Ⅱ. 북한이탈주민과 민사소송 ····· 62
Ⅲ. 북한이탈주민과 형사소송 ····· 64
제3절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67
Ⅰ. 심층면접조사 방법 ····· 67
Ⅱ. 조사대상자별 심층면접조사 결과 ····· 68
Ⅲ. 분석 ····· 84
제4절 북한 사회와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 92
Ⅰ. 개설 ····· 92
Ⅱ. 북한 사회의 특징 ····· 92
Ⅲ.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 99
제5절 소결: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 ····· 105
Ⅰ.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 (1): 북한이탈주민의 소송 유형 분석을 통하여 ····· 105
Ⅱ.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 (2):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제도 접근 및 재판절차 이용상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 106
Ⅲ. 정리 ····· 115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현황 ····· 117
제1절 개관 ····· 119
제2절 사법부의 사법적 지원 현황 ····· 119
Ⅰ. 개관 ····· 119
Ⅱ. 각급 법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 120
Ⅲ. 소송구조제도와 국선변호인제도 ····· 125
제3절 사법부 이외 기관 및 단체의 사법적 지원 현황 ····· 127
Ⅰ. 개관 ····· 127
Ⅱ.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28
Ⅲ.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129
Ⅳ. 법교육 ····· 137
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내책자 ····· 146
Ⅵ.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를 위한 책자 ····· 160
제4절 현행 사법적 지원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 162
Ⅰ. 사법부의 현행 사법적 지원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 162
Ⅱ. 사법부 이외 기관의 현행 사법적 지원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 164
제5장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및 구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 173

제1절 개설 ····· 175
제2절 독일 통일 전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 176
Ⅰ. 서독 정부의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일반 ····· 176
Ⅱ. 동독이탈주민의 서독사회 동화 및 적응을 위한 지원 ····· 177
제3절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 181
제4절 검토 ····· 183
제6장 각국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비교 연구 ····· 185
제1절 개설 ····· 187
제2절 미국 ····· 187
Ⅰ. 사회적 소수자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 187
Ⅱ.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 199
Ⅲ. 전국주법원센터(NCSC)의 “편견 배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가이드 (Achieving Fairness Through Bias-Free Behavior: A Pocket Guide for the Courts)” 발간 ····· 202
Ⅳ. 법률구조제도 ····· 206
제3절 독일 ····· 208
Ⅰ. 사회적 소수자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208
Ⅱ.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 211
Ⅲ. 법률구조제도 ····· 212
제4절 영국 ····· 215
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 215
Ⅱ. 법률구조제도 ····· 218
제5절 일본 ····· 219
Ⅰ. 사회적 소수자 배려에 관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 ····· 219
Ⅱ. 외국인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 220
Ⅲ. 외국인에 대한 재판절차상 사법적 지원제도 ····· 222
제6절 중국 ····· 223
Ⅰ.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 223
Ⅱ.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 ····· 224
제7절 우리나라 ····· 224
Ⅰ. 개설 ····· 224
Ⅱ. 통역, 번역 등 ····· 225
Ⅲ. 외국인 재판실무편람 ····· 225
Ⅳ.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 226
Ⅴ.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 226
Ⅵ.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 227
Ⅶ. 외국인을 위한 웹사이트 개설 ····· 227
제8절 검토 ····· 229
제7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 231

제1절 개설 ····· 233
제2절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 233
Ⅰ. 개설 ····· 233
Ⅱ.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사법지원관 제도 도입 ····· 234
Ⅲ. 북한이탈주민 전화상담센터 설치 ····· 244
Ⅳ. 북한이탈주민 전용 법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 247
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 248
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의 안내 및 홍보 ····· 257
제3절 재판절차에서의 사법적 지원 방안 ····· 258
Ⅰ. 개설 ····· 258
Ⅱ. 사건접수 단계에서 재판당사자의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 ····· 258
Ⅲ. 전문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260
Ⅳ.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 268
Ⅴ. 국선변호인제도 운영의 보완 ····· 278
Ⅵ. 북한이탈주민과 법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자 ····· 281
Ⅶ.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 286
Ⅷ. 북한이탈주민 사법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293
제4절 법교육을 통한 사법적 지원 방안 ····· 297
Ⅰ. 개설 ····· 297
Ⅱ.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 299
제5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법적 지원 방안 ····· 308
Ⅰ. 개설 ····· 308
Ⅱ. 북한이탈주민과의 정례적 소통의 장 마련 ····· 308
Ⅲ. 사법적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 310
Ⅳ.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피드백(feedback) ····· 316
Ⅴ.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제도 운영에의 참여 ····· 319
Ⅵ.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 ····· 320
제8장 결론 ····· 323

23.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ontempt of Court in Overseas Jurisdictions

연구총서 2015-15

연구책임자 :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양시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1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7
Ⅰ. 재판진행방해 및 법정질서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 18
1. 형법상 법정모욕죄 ····· 18
2. 법원조직법상 법정질서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 20
3. 재판진행 중 불복종 행위에 대한 제재 ····· 25
Ⅱ. 법원의 결정 및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26
1.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 28
2. 민사집행법상 감치의 제재 ····· 30
3.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31
4.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33

5. 지식재산권법상 비밀유지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34
Ⅲ. 남소 및 비판 행위에 대한 제재 ····· 36
1. 무익한 소송의 제기 ····· 36
2.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행위 ····· 3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8
제2장 재판진행방해 및 법정질서침해 행위로서의 법원모욕 ····· 41
제1절 영국 ····· 43
Ⅰ. 법원모욕 제재의 기원 ····· 43
Ⅱ. 법원면전모욕죄 ····· 44
1. 구성요건 및 형벌 ····· 44
2. 성문법상 범죄 유형 ····· 45
3. 관련 사안 ····· 48
Ⅲ.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 ····· 49
1. 엄격책임원칙 ····· 49
2. 배심평의과정의 기밀 유지 ····· 55
3. 준법원모욕 ····· 58
제2절 미국 ····· 59
Ⅰ. 배경 ····· 59
Ⅱ. 법원모욕의 유형 ····· 59
1. 유형의 구별기준 ····· 59
2. 유형의 조합 ····· 62
Ⅲ. 법적 근거 ····· 65
1. 연방법률상 형사모욕과 민사모욕 ····· 65
2. 연방형사소송규칙 ····· 68
3. 연방민사소송규칙 ····· 71
4. 주법 ····· 72
Ⅳ. 관련 사안 ····· 74
1. 법정질서침해 행위 ····· 74
2. 고의 ····· 75
3. 절차적 보장 ····· 75
4. 대통령의 위증 행위 ····· 75
제3절 싱가포르 ····· 76
Ⅰ. 방해모욕행위 ····· 76
1. 개념 및 준거법 ····· 76
2. 형벌의 내용 ····· 77
Ⅱ. 재판 진행 중 법원모욕 ····· 77
1. 개념 ····· 77
2. 관련 사안 ····· 78
제4절 독일 ····· 79
Ⅰ. 법원조직법상 법정모욕 ····· 79

1. 법정질서유지와 모욕 ····· 79
2. 법정모욕 행위의 성격 ····· 81
Ⅱ. 관련 사안 ····· 83
1. 진술 또는 특정 행태 ····· 83
2. 재판부의 입정 시 기립 거부 행위 ····· 85
3. 복장 규정 위반 행위 ····· 85
제5절 프랑스 ····· 87
Ⅰ. 형법상 법원모욕죄 ····· 87
1. 관련 규정 ····· 87
2. 입법취지 및 현황 ····· 88
3. 구성요건 및 관련 사안 ····· 89
Ⅱ. 사법집행방해죄 ····· 93
1. 협박 행위 ····· 94
2. 뇌물 수수 행위 ····· 94
3. 증인의 증언의무 불이행 ····· 94
4. 법원의 판결 선고 전 공표 행위 ····· 95
5. 기타 사법집행방해 행위 ····· 95
제6절 일본 ····· 96
Ⅰ. 관련 법률 ····· 96
1. 재판소법 ····· 96
2.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97
3. 관련 논점 ····· 100
Ⅱ. 관련 사안 ····· 103
1. 법정질서법에 의한 제재사건 결정례 ····· 103
2. 형사소송법에 의한 제재규정에 관한 판례 ····· 107
제7절 국제재판소 ····· 108
Ⅰ. ICTY ····· 108
1. 재판소 고유의 권한 ····· 108
2. 소송규칙의 내용 ····· 109
3. 관련 사안 ····· 111
Ⅱ. ICC ····· 113
1. 로마규정 ····· 114
2. 관련 사안 ····· 114
제8절 시사점 ····· 115
Ⅰ. 사법부의 권위가 아닌 시민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원모욕죄 ····· 115
Ⅱ. 외국의 과잉입법과 과소입법에 대항한 중간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 116
Ⅲ. 감치와 형사제재의 이중처벌 문제의 해결 ····· 118
제3장 법원의 명령에 대한 위반 행위로서의 법원모욕 ····· 121
제1절 영국 ····· 123
Ⅰ. 배경 ····· 123

Ⅱ. 유형 ····· 124
1. 간접적 법원모욕 ····· 125
2. 민사적 법원모욕 ····· 126
Ⅲ. 관련 사안 ····· 130
1. 책임 능력의 판단기준 ····· 130
2. 유지명령 위반의 민사모욕 해당 여부 ····· 130
3. 제3자의 유지명령 위반의 성립요건 ····· 132
제2절 미국 ····· 134
Ⅰ. 배경 ····· 134
Ⅱ. 유지명령의 종류 ····· 134
1. 제재의 목적에 따른 구별 ····· 135
2. 성격에 따른 구별 ····· 135
3. 구별기준의 비절대성 ····· 136
Ⅲ. 민사모욕 ····· 137
1. 요건 및 절차 ····· 137
2. 강제적 민사모욕 ····· 138
3. 보상적 민사모욕 ····· 139
Ⅳ. 형사모욕 ····· 139
1. 의미 및 특성 ····· 139
2. 절차적 권리의 보장 ····· 141
3. 제재 수준의 결정 ····· 142
4. 부수적 공격 금지 원칙 ····· 142
5. 처벌의 인적 범위 ····· 144
Ⅴ. 관련 사안 ····· 145
1. Kim Davis 사안 ····· 145
2. 유지명령 주문의 명확성 요구 ····· 146
3. 노동쟁의 유지명령 위반 행위 ····· 147
제3절 싱가포르 ····· 148
Ⅰ. 관련 법률 ····· 148
Ⅱ. 관련 사안 ····· 149
1. 마레바형 유지명령 위반 행위로서의 법원모욕 ····· 149
2. 형사불법의 속성을 지니는 법원모욕 ····· 151
제4절 독일 ····· 151
Ⅰ. 이행강제금의 법적 규율 ····· 152
1. 개념 ····· 152
2. 법적 성격 ····· 152
3. 관련개념: 질서금 ····· 153
Ⅱ. 대체강제감치 ····· 154
1. 개념 ····· 154
2. 법적 성격 ····· 155

3. 법원모욕 제재와의 비교 ····· 156
제5절 프랑스 ····· 156
Ⅰ. 간접강제: 아스트렝트 ····· 157
1. 정의 ····· 157
2. 연혁 ····· 157
3. 법적 성격 ····· 158
Ⅱ. 관련 규정 ····· 159
1. 법률부분 ····· 159
2. 규정부분 ····· 161
3. 소결 ····· 162
제6절 일본 ····· 163
Ⅰ. 강제집행방법으로서의 간접강제 ····· 163
1. 체계상 지위 및 성질 ····· 164
2. 적용 범위 ····· 164
3. 절차 ····· 165
Ⅱ. 민사소송의 신속화와 관련한 법원모욕 도입 논의 ····· 165
1. 배경 ····· 165
2. 내용 ····· 166
제7절 국제재판소 ····· 167
Ⅰ. ICTY ····· 167
1. 소송규칙 ····· 167
2. 관련 사안 ····· 167
Ⅱ. ICC ····· 170
1. 로마규정 ····· 170
2. 소송규칙 ····· 170
제8절 시사점 ····· 171
Ⅰ. 민사모욕 제재가 주는 시사점 ····· 171
Ⅱ. 형사모욕 제재가 주는 시사점 ····· 174
제4장 기타 법원의 기능에 대한 침해 행위로서의 법원모욕 ····· 175
제1절 사소한 소송과 법원모욕 ····· 177
Ⅰ. 미국: 사소한 소제기에 대한 제재 ····· 177
1. 사소한 소송의 의미 ····· 177
2. 연방법 규정 ····· 177
3. 관련 사안 ····· 181
4. 변호사의 윤리 의무 ····· 185
Ⅱ. ICTY: 변호인의 의무 위반과 사소한 소제기 ····· 188
1. 관련 법령 ····· 189
2. 관련 사안 ····· 191
Ⅲ. 프랑스: 무익한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제재 ····· 192
1. 관련 법령 ····· 192

2. 관련 사안 ····· 192
제2절 표현의 자유와 법원모욕 ····· 192
Ⅰ. 영국: 법원추문조성죄 ····· 192
1. 개념 ····· 192
2. 법적 근거 ····· 193
3. 잉글랜드·웨일스의 법원추문조성죄 폐지 ····· 195
Ⅱ. 싱가포르: 법원추문조성죄 ····· 196
1. 배경 ····· 196
2. 개념 및 법적 근거 ····· 197
3. 판단 기준 ····· 198
Ⅲ. 미국: 허위사실공표의 법원모욕죄 ····· 201
1. 연방법 ····· 201
2. 주법 ····· 202
Ⅳ. 프랑스: 신뢰훼손죄 ····· 203
1. 개념 ····· 203
2. 관련 규정 ····· 204
3. 관련 사안 ····· 204
제3절 시사점 ····· 205
Ⅰ. 사법작용 내부에서의 법원모욕: 남소(남상소) 행위 ····· 205
Ⅱ. 사법작용 외부에서의 법원모욕: 언론 등의 비판 행위 ····· 207
제5장 결론 ····· 209

24.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he Family Counseling System

연구총서 2015-16

연구책임자 :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채연(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1월 9일 발행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Ⅰ. 연구의 범위 ····· 18
Ⅱ. 연구의 방법 ····· 19
제2장 가사상담제도의 개관 ····· 21
제1절 개설 ····· 23
제2절 가사상담의 의의 ····· 23
Ⅰ. 가사상담의 개념 ····· 23
Ⅱ. 가사상담의 특징 ····· 25
Ⅲ. 가사상담에 관한 현행 법 규정 ····· 26
제3절 가사상담의 필요성 ····· 33

Ⅰ. 통계로 보는 가사상담의 필요성 ····· 33
Ⅱ. 가사재판의 특수성 ····· 37
Ⅲ. 협의이혼 절차의 특수성 ····· 39
Ⅳ. 자유로운 이혼 vs 건강한 이혼 ····· 39
Ⅴ. 미성년 자녀의 복리 ····· 42
제4절 가사상담의 효용성 ····· 48
Ⅰ. 가사상담의 실제 사례 ····· 48
Ⅱ. 당사자 인터뷰 ····· 52
Ⅲ. 통계로 보는 가사상담의 효과 ····· 63
제5절 소결 ····· 66
제3장 각국의 가사상담제도 ····· 67
제1절 개설 ····· 69
제2절 미국 ····· 69
Ⅰ. 이혼제도 ····· 69
Ⅱ. 델라웨어(Delaware) 주 ····· 70
Ⅲ. 하와이(Hawaii) 주 ····· 71
Ⅳ. 텍사스(Texas) 주 ····· 72
Ⅴ. 플로리다(Florida) 주 ····· 73
Ⅵ. 코네티컷(Connecticut) 주 ····· 74
Ⅶ.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 76
Ⅷ.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 78
제3절 독일 ····· 90
Ⅰ. 이혼제도 ····· 90
Ⅱ. 가사상담제도 ····· 91
제4절 프랑스 ····· 94
Ⅰ. 이혼제도 ····· 94
Ⅱ. MéMdiation Familiale제도 ····· 95
제5절 일본 ····· 99
Ⅰ. 이혼제도 ····· 99
Ⅱ. 가사상담제도 ····· 99
제6절 오스트리아 ····· 101
Ⅰ. 이혼제도 ····· 101
Ⅱ. 협의상 이혼 절차에서의 의무적 상담 ····· 102
Ⅲ. 상담 가이드라인 ····· 103
제7절 호주 ····· 108
Ⅰ. 이혼제도 ····· 108
Ⅱ. 가사상담제도 ····· 110
제8절 소결 ····· 111
제4장 각 법원의 가사상담제도 운영 현황 ····· 115
제1절 개설 ····· 117
Ⅰ. 운영 현황의 조사방법 ····· 117
Ⅱ. 몇 가지 용어의 정리 ····· 118
제2절 전국 5개 가정법원의 가사상담제도 운영 실태 ····· 120
Ⅰ. 재판상이혼에서의 가사상담 ····· 120

Ⅱ. 협의이혼에서의 가사상담 ····· 125
제3절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가사상담제도 운영 실태 ····· 142
Ⅰ. 재판상이혼에서의 가사상담 ····· 142
Ⅱ. 협의이혼에서의 가사상담 ····· 142
제4절 소결 ····· 156
제5장 가사상담제도의 발전방안 ····· 159
제1절 개설 ····· 161
제2절 가사상담 활성화를 위한 일반론 ····· 162
Ⅰ. 현행 법 규정 하에서의 가사상담제도 ····· 162
Ⅱ.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4조 ····· 163
Ⅲ. 법원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 ····· 164
Ⅳ. 사건 담당 재판장의 초기 동기화 ····· 164
Ⅴ. 인적·물적 시설의 확충 ····· 165
제3절 쟁점별 접근 ····· 167
Ⅰ. 원칙적 상담제도 ····· 167
Ⅱ. 법원 내부 인력의 충원 ····· 168
Ⅲ. 상담위원의 관리 ····· 171
Ⅳ.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181
Ⅴ. 상담 유형의 다양화 ····· 183
Ⅵ.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일반적 상담제한에 관한 논의 ····· 189
Ⅶ. 비송사건에서의 상담 활성화 ····· 194
Ⅷ. 상담 비용의 문제 ····· 195
제4절 입법론 ····· 196
Ⅰ. 일반적 상담 의무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 ····· 196
Ⅱ. 법원의 후견적 역할과 그 한계 ····· 197
Ⅲ. 법원의 인적·물적 기반 ····· 199
Ⅳ. 장·단점 비교 ····· 199
Ⅴ. 법률 개정 방향의 제안 - 선택적 상담명령제도 ····· 200
제6장 결론 ····· 203

25.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Judicial Discipline in Foreign Jurisdictions

연구총서 2015-17

연구책임자 : 양시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유경(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2월 23일 발행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제2장 우리나라의 법관 징계제도 ····· 23
제1절 개관 ····· 25
Ⅰ. 서설 ····· 25
Ⅱ. 징계사유 ····· 25
1. 징계사유 개관 ····· 25
2. 법관윤리강령 ····· 26
Ⅲ. 징계처분의 종류 ····· 28
Ⅳ. 법관징계위원회 ····· 29
1. 구성 ····· 29
2.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임명 및 권한 ····· 29
Ⅴ. 징계절차 ····· 29
1. 징계청구 ····· 29
2. 예비심의 ····· 30
3. 징계심의 ····· 30
4. 징계결정과 불복 ····· 31

Ⅵ. 징계절차와 관련한 최근의 개정 ····· 32
1. 법원 감사위원회 신설 ····· 32
2. 징계청구권자의 조사 권한 강화 ····· 33
3. 비위행위 논란이 발생한 법관에 대한 사무분담 변경 근거 마련 ····· 34
제2절 탄핵제도와의 구별 ····· 35
Ⅰ. 탄핵제도 ····· 35
Ⅱ. 징계와 탄핵 비교 ····· 35
1. 공통점 ····· 35
2. 차이점 ····· 36
제3장 영미법계 국가의 법관 징계제도 ····· 37
제1절 미국의 법관 징계제도 ····· 39
Ⅰ. 개관 ····· 39
Ⅱ. 미국의 법관윤리규범 ····· 39
1. 연혁 ····· 39
2. 모범법관행동규범(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 41
3. 연방법관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 45
Ⅲ. 징계 관련 법률과 규칙 ····· 48
Ⅳ. 연방법원의 법관 징계제도 및 징계사례 ····· 49
1. 개관 ····· 49
2. 징계사유 ····· 49
3. 징계절차 ····· 51
4. 징계유형 ····· 57
5. 징계사건 처리 현황 ····· 58
6. 징계사례 ····· 61
Ⅴ. 주요 주의 법관 징계제도 및 징계사례 ····· 63
1. 일반론 ····· 63
2.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 68
3. 텍사스(Texas) 주 ····· 75
4.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 78
Ⅵ. 특징 및 시사점 ····· 82
제2절 영국의 법관 징계제도 ····· 83
Ⅰ. 개관 ····· 83
1. 서설 ····· 83
2. 영국의 사법제도 개관 ····· 84
3. 영국 법관 징계제도 개관 ····· 85
Ⅱ. 영국 법관행동강령(Guide to Judicial Conduct) ····· 85
1. 개관 ····· 85
2. 체계 ····· 87
3. 주요 내용 ····· 87
Ⅲ. 징계기관 및 징계사유 ····· 90
1. 징계 관련 업무 담당기관 ····· 90

2. 징계사유(징계신청 대상) ····· 91
3. 징계유형 ····· 92
Ⅳ. 징계절차 및 불복절차 ····· 93
1. 개관 ····· 93
2. 징계신청 ····· 93
3. 조사절차 ····· 95
4. 징계처분 ····· 97
Ⅴ. 법관 임명 및 행동 옴부즈맨 (Judicial Appointments and Conduct Ombudsman) ····· 98
Ⅵ. 징계제도 운영 현황 및 사례 ····· 99
1. 징계사건 처리 현황 ····· 99
2. 징계사례 ····· 102
Ⅶ. 특징 및 시사점 ····· 108
제3절 캐나다의 법관 징계제도 ····· 109
Ⅰ. 개관 ····· 109
1. 캐나다 연방제도 개관 ····· 109
2. 캐나다 법원 조직 ····· 109
3. 캐나다 사법제도의 특징 ····· 112
Ⅱ. 캐나다 법관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for Judges) ····· 113
1. 개관 ····· 113
2. 세부적 원칙 ····· 114
Ⅲ. 징계기구·징계사유·징계유형 ····· 116
1. 서설 ····· 116
2. 징계 관련 업무 담당기관 ····· 116
3. 징계사유 ····· 118
4. 징계유형 ····· 118
Ⅳ. 징계절차 및 결과통보 ····· 119
1. 징계절차 ····· 119
2. 결과통보 ····· 122
Ⅴ. 징계사건 처리 현황 및 사례 ····· 122
1. 징계사건 처리 현황 ····· 122
2. 징계사례 ····· 124
Ⅵ. 주의 법관 징계제도: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를 중심으로 ····· 130
1.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of British Columbia) ····· 130
2.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법관 징계절차 ····· 131
3. 심문결과의 종류 ····· 133
4. 결과통지 및 불복절차 ····· 134
Ⅶ. 특징 및 시사점 ····· 134
제4장 대륙법계 국가의 법관 징계제도 ····· 135
제1절 프랑스의 사법관 징계제도 ····· 137
Ⅰ. 개관 ····· 137
Ⅱ. 프랑스 법원 조직 ····· 137

Ⅲ. 징계기관: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138
Ⅳ. 징계사유 및 징계유형 ····· 140
1. 서설 ····· 140
2. 징계사유 ····· 140
3. 직업윤리의무 모음집과 징계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141
Ⅴ. 징계절차 ····· 143
1. 최고사법관회의에의 징계청구 ····· 143
2. 판사분과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절차 ····· 147
3. 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결정 ····· 148
Ⅵ.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 148
1. 개관 ····· 148
2. 불복 방식 ····· 149
3. 본안심리의 범위 ····· 150
4. 징계결정에 대한 파기소송의 현황 및 사례 ····· 150
Ⅶ. 징계 현황 ····· 151
1. 개관 ····· 152
2. 사법관 징계 관련 최근 주요 통계 ····· 152
Ⅷ. 징계사례: 2010년~2014년 사례 ····· 153
1. 사법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 ····· 153
2. 법정 언행 또는 일반당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와 관련한 사례 ····· 157
3. 사법관의 직무 이외의 행위(사생활)에 대한 사례 ····· 159
4. '이해당사자인 일반인'에 의한 징계제소 청원 관련 현황 ····· 163
Ⅸ. 특징 및 시사점 ····· 165
제2절 독일의 법관 징계제도 ····· 166
Ⅰ. 서설 ····· 166
1. 개관 ····· 166
2. 직무감독과의 관계 ····· 168
Ⅱ. 징계 관련 규정 ····· 170
1. 독일기본법 ····· 171
2. 기타 법률 ····· 171
Ⅲ. 징계사유 및 징계유형 ····· 172
1. 징계사유 ····· 172
2. 징계유형 ····· 174
Ⅳ. 징계절차 ····· 174
1. 서설 ····· 174
2. 일반 공무원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차이 ····· 176
3. 법관에 대한 행정적 징계절차 ····· 177
4. 법관에 대한 사법적 징계절차 ····· 182
Ⅴ. 불복절차 ····· 185
1. 직무상급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185
2. 사법적 징계절차에 대한 불복방법 ····· 185

Ⅵ. 징계사례 ····· 189
1. 서설 ····· 189
2. 대표적 징계사례에 대한 검토 ····· 189
3. 그 밖의 주요 징계사례 ····· 192
4. 징계와 관련된 최근 사례 ····· 194
Ⅶ. 특징 및 시사점 ····· 195
제3절 오스트리아의 법관 징계제도 ····· 196
Ⅰ. 오스트리아 사법제도 개관 ····· 196
Ⅱ. 오스트리아 법관 징계제도 개관 ····· 198
1. 일반론 ····· 198
2. 징계사유 ····· 198
3. 징계의 종류 ····· 199
4. 징계법원 ····· 201
5. 징계절차 ····· 202
6. 퇴직법관에 대한 징계 ····· 205
Ⅲ. 징계사례 ····· 206
1. 개관 ····· 206
2. 구체적 사례 ····· 206
Ⅳ. 특징 및 시사점 ····· 208
제4절 스위스의 법관 징계제도 ····· 209
Ⅰ. 스위스 법원 조직 ····· 209
Ⅱ. 스위스 법관 징계제도 개관 ····· 210
Ⅲ. 징계 관련 주요 사례 및 그에 대한 평가 ····· 211
1. 서설 ····· 211
2. 법관이 아동 포르노와 결부된 회사의 변호를 맡은 사건 ····· 212
3. 법관이 기자에게 침을 뱉은 사건 ····· 213
4. 법관이 법원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 214
5.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소송당사자가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례 ····· 215
6. 사례에 대한 분석 ····· 216
Ⅳ. 스위스 법관 징계제도의 특수성과 제도 개혁 논의 ····· 217
1.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배경 ····· 217
2. 제도 개혁 논의 ····· 218
Ⅴ. 특징 및 시사점 ····· 218
제5장 일본과 중국의 법관 징계제도 ····· 221
제1절 일본의 법관 징계제도 ····· 223
Ⅰ. 서설 ····· 223
Ⅱ. 일본의 재판관에 대한 신분보장 및 불이익 처분 ····· 223
1. 재판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개관 ····· 223
2. 재판관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유형 ····· 224
Ⅲ. 재판관에 대한 징계 ····· 225

1. 서설 ····· 225
2. 징계사유 ····· 226
3. 징계유형 ····· 229
4. 징계절차 ····· 231
5. 불복절차 ····· 234
6. 징계처분 공표지침 작성 및 통지 ····· 235
7. 징계사례 ····· 236
Ⅳ. 재판관 탄핵제도 ····· 241
1. 개관 ····· 241
2. 재판관 탄핵 관련 통계 ····· 242
3. 재판관 탄핵재판 사례 ····· 244
4. 자격회복재판 청구사건 사례 ····· 247
Ⅴ. 재판관에 대한 직무감독 및 주의처분 제도 ····· 248
1. 개관 ····· 248
2. 실무상 운용 ····· 249
3. 주의처분이 문제 된 사례 ····· 250
Ⅵ. 특징 및 시사점 ····· 251
제2절 중국의 법관 징계제도 ····· 252
Ⅰ. 개관 ····· 252
Ⅱ. 중국의 법원 및 법관제도 개관 ····· 253
1. 법원의 종류 ····· 253
2. 법원의 내부기구와 재판 조직 ····· 254
3. 법관 및 기타 재판관계인 ····· 255
4. 법원 및 법관의 독립성과 관련한 특징 ····· 256
Ⅲ. 중국의 법관 징계제도 일반론 ····· 259
1. 징계기구(징계주체) ····· 259
2. 징계사유 ····· 260
3. 징계유형 ····· 262
4. 징계절차 ····· 263
Ⅳ. 불복절차 ····· 264
Ⅴ. 법관 징계사례: 2010년 이후의 주요 사례 ····· 264
1. 2010년 ····· 264
2. 2011년~2012년 ····· 266
3. 2013년 ····· 267
4. 2014년 ····· 268
Ⅵ. 특징 및 시사점 ····· 272
제6장 결 론 ····· 275

26.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Methods to Realize an Ideal Image of a Judge

-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ystems -

연구총서 2016-01

연구책임자 : 박준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2월 16일 발행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7
제2장 법관 임용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 19
제1절 미국의 법관 임용 제도와 바람직한 법관상 ····· 21
Ⅰ. 법관 임용 방식과 그 절차 ····· 21
1. 연방 법원 법관의 선발 ····· 21
2. 주 법원 법관의 선발 ····· 26
Ⅱ.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법관의 자질 ····· 59
1. 연방 법원 법관의 자질 ····· 59
2. 주 법원 법관의 자질 ····· 65
제2절 영국의 법관 임용 제도와 바람직한 법관상 ····· 73

Ⅰ. 법관 임용 방식과 그 절차 ····· 73
1. 2005년 헌법개혁법 이전의 법관 임용 방식 ····· 73
2. 2005년 헌법개혁법 이후의 법관 임용 방식 ····· 75
3. 구체적인 법관 임용 절차 ····· 79
4. 법관 임용 사례 ····· 86
Ⅱ. 법관 임용 시 고려되는 법관의 자질 ····· 89
1. 실력(merit) ····· 89
2. 훌륭한 성품(good character) ····· 92
3. 다양성(diversity) ····· 94
제3절 검토 ····· 94
Ⅰ. 각 법관 임용 제도에서 중시하는 법관의 자질 정리 ····· 94
1. 연방 법원 법관 ····· 95
2. 뉴욕 시 형사법원 등의 법관 ····· 95
3. 알래스카 주 법원 법관 ····· 96
4.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관 임용 가이드라인 ····· 97
5. 영국의 법관 ····· 99
6. 검토 ····· 100
Ⅱ. 자질 평가를 위한 질문지 문항 검토 ····· 100
1. 고결성(integrity)·공정성(fairness)·공평성(impartiality) 등에 관한 부분 ·· 100
2. 전문적 능력(professional skills)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문항 ····· 106
3. 사법적 기질(judicial temperament) 및 성실성 등에 관한 문항 ····· 111
4. 기타 ····· 112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13
제3장 법관 평가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 115
제1절 미국의 법관 평가 제도와 바람직한 법관상 ····· 117
Ⅰ. 법관 평가 방식과 그 절차 ····· 117
1. 연방 법원 법관 ····· 117
2. 주 법원 법관 ····· 119
Ⅱ. 법관 평가 시 고려되는 법관의 자질 ····· 126
1. 법적 능력(legal ability) ····· 126
2. 고결성(integrity)과 공평성(impartiality) ····· 127
3.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s) ····· 129
4. 전문성(professionalism)과 기질(temperament) ····· 129
5. 행정 능력(administrative capacity) ····· 131
6. 추가 기준의 개발 ····· 134
7. 법관 평가 사례 분석 ····· 134
제2절 영국에서의 법관 평가 도입에 관한 논의 ····· 142
제3절 검토 ····· 143
Ⅰ. 각 법관 평가 제도에서 중시하는 법관의 자질 정리 ····· 143
1. North Law Publishers사에 의한 법관 평가 ····· 143

2. 알래스카 사법협의회(Alaska Judicial Council)의 법관 평가: 변호사·경찰관 설문조사····· 143
3. 알래스카 사법협의회(Alaska Judicial Council)의 법관 평가: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질문지 ····· 144
4. 콜로라도 사법평가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의 법관 평가 ····· 144
5.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관직무평가 가이드라인 ····· 145
Ⅱ. 자질 평가를 위한 설문지 문항 검토 ····· 146
1. 미국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용 법관 평가 설문지 문항 ····· 146
2. 미국 변호사협회의 배심원용 법관 평가 설문지 문항 ····· 149
3. 미국 변호사협회의 자기평가 질문지 문항 ····· 150
4.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정 직원용 법관 평가 설문지 문항 ····· 153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54
1. 우리나라의 법관 평가 제도 ····· 154
2. 우리나라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방향 ····· 156
제4장 결론 ····· 159
제5장 보론: 법관윤리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 167
제1절 개관 ····· 169
제2절 미국의 법관윤리규범 ····· 169
Ⅰ. 연방 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 169
1. 개관 ····· 169
2. 고결성(integrity)·독립성(independence) ····· 170
3. 부적절한 행위 및 외관의 회피 ····· 170
4. 공정성(fairness)·공평성(impartiality)·성실성(diligence) ····· 171
5. 법관의 직무 외 활동(extrajudicial activities) ····· 173
6. 정치적 중립성 ····· 177
Ⅱ. 모범법관행위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 177
1. 개관 ····· 177
2. 사법부의 독립성·고결성·공평성 수호와 부적절한 행위 및 외관의 회피 ····· 178
3. 공평성(impartiality)·능력(competence)·성실성(diligence) ····· 178
4. 법관의 직무 외 활동 ····· 180
5. 정치적 중립 ····· 181
제3절 영국의 법관윤리규범 ····· 182
Ⅰ. 개관 ····· 182
Ⅱ. 사법부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 ····· 182
Ⅲ. 공평성(impartiality) ····· 183
Ⅳ. 고결성(integrity) ····· 185
Ⅴ. 품위유지(propriety) ····· 186
Ⅵ. 능력과 성실성(competence and diligence) ····· 188
Ⅶ. 개인적인 관계들과 편견의 외관 (personal relationships and perceived bias) ····· 188
Ⅷ. 법정 외 활동(activities outside court) ····· 189
1. 개관 ····· 189
2. 언론 ····· 190

3. 공개토론 참가 ····· 190
4. 소셜 네트워킹과 블로그 활동 ····· 191

27.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Plans of the Appraisal System and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연구총서 2016-02

연구책임자 : 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년 1월 13일 발행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의 방법 ····· 21
Ⅰ. 연구의 범위 ····· 21
Ⅱ. 연구의 방법 ····· 23
제2장 감정 제도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요 ····· 25
제1절 감정 제도 ····· 27
Ⅰ. 개관 ····· 27
1. 감정의 의의 ····· 27
2. 감정의 대상 ····· 27
3. 감정의 성질 ····· 28
4. 감정의 기능 ····· 29
5. 감정인의 지위 ····· 30

6. 감정과 자유심증주의의 원칙 ····· 31
7. 감정의 촉탁 ····· 33
Ⅱ. 절차 ····· 34
1. 신청 ····· 34
2. 증거의 채부 결정 ····· 35
3. 감정인의 선정 ····· 37
4. 감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당사자에 대한 기일 통지 ····· 38
5. 감정인신문과 선서 ····· 38
6. 감정인의 의견 진술 ····· 39
7. 감정인신문·보충감정 및 재감정 ····· 40
8. 감정료의 지급 ····· 40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도 ····· 41
Ⅰ. 개관 ····· 41
1. 도입 및 취지 ····· 41
2. 의의 ····· 42
3. 기대 효과 ····· 43
4. 도입에 따른 문제점 ····· 44
5. 기존 전문가 제도와의 비교 ····· 45
6. 전문심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 46
Ⅱ. 절차 ····· 47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47
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 50
3.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 54
제3절 감정 제도와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관계 ····· 61
Ⅰ. 개관 ····· 61
Ⅱ. 감정 제도의 보완 수단으로서의 전문심리위원 제도 ····· 61
1. 같은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 ····· 61
2. 전문 소송에서 필수적인 증거방법으로서의 감정 ····· 62
3. 보조 수단에 불과한 전문심리위원 제도 ····· 63
4. 감정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 63
Ⅲ. 감정 제도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 64
1.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감정 제도에 관한 대체 가능성 ····· 64
2. 감정인 대신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 65
Ⅳ. 소결 ····· 66
제3장 감정 제도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 ····· 67
제1절 서설 ····· 69
제2절 감정 제도에 관한 문제점 발생의 원인 ····· 69
Ⅰ. 개관 ····· 69
Ⅱ. 법관에 의한 재판과 자유심증주의 ····· 70
Ⅲ. 감정 제도의 본질 ····· 71

1. 감정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 ····· 72
2. 소송당사자의 절차 참여에 대한 불만족 ····· 72
Ⅳ. 감정 제도의 운용 실태 ····· 73
1. 서설 ····· 73
2. 감정절차 단계에 따른 문제점 ····· 74
3. 과다한 감정 비용 ····· 77
4. 적정한 운용으로 감정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 보완 가능 ····· 78
제3절 감정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 79
Ⅰ. 감정인과 관련된 문제점 ····· 79
1. 서설 ····· 79
2. 감정인의 전문성에 관하여 ····· 80
3. 감정인의 공정성에 관하여 ····· 81
Ⅱ. 감정 결과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점 ····· 83
1. 감정 결과의 내용에 관하여 ····· 83
2. 감정 결과의 수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 84
Ⅲ. 감정 비용과 관련된 문제점 ····· 85
1. 배경 ····· 85
2. 내용 ····· 86
제4절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 ····· 86
제5절 소결 ····· 88
제4장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 89
제1절 서설 ····· 91
제2절 미국의 전문가 증언 제도 ····· 92
Ⅰ. 개관 ····· 92
Ⅱ. 전문가 증언의 허용성(Admissibility) 판단 기준 ····· 92
1. Frye 기준 ····· 93
2. Daubert 기준 ····· 94
Ⅲ. 전문가 증언의 실무 ····· 99
1. 연방법원 판사들에 대한 경험 조사 결과 ····· 99
2. 전문가 증언의 절차에 관한 실무 ····· 101
Ⅳ. 전문가 증언 제도에 관한 검토 ····· 116
1. 문제점 ····· 116
2. 검토 ····· 117
제3절 독일의 감정 제도 ····· 118
Ⅰ. 서설 ····· 118
Ⅱ. 감정 결과의 적정성 확보 ····· 119
1. 감정인 선정 ····· 119
2. 감정인에 대한 기피절차 ····· 121
3. 감정인에 대한 법원의 지휘 및 감정인의 의무 ····· 122
4. 감정인의 권한 범위 지정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 ····· 123

5. 감정인의 소환 및 구술설명 ····· 124
6. 사감정(私鑑定)의 취급 ····· 128
7. 감정인의 책임 ····· 129
8. 소결 ····· 130
Ⅲ. 감정서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통제 ····· 131
1. 감정 결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132
2. 감정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 ····· 132
3. 판결문에의 감정 결과 설시 ····· 133
4. 소결 ····· 134
제4절 일본의 감정 제도 및 전문위원 제도 ····· 135
Ⅰ. 개관 ····· 135
Ⅱ. 우리나라 감정 제도와의 차이점 ····· 136
1. 전문가 위원회의 설치 ····· 136
2. 의료소송에서의 복수감정 제도 ····· 142
3. 의료소송에서의 콘퍼런스감정 ····· 147
4. 감정인신문에 관한 제도상의 차이점 ····· 150
Ⅲ. 전문위원 제도 ····· 151
1. 도입 경위 ····· 151
2. 도입 취지 ····· 152
3. 절차 ····· 152
4. 전문위원 설명의 한계 ····· 155
5. 전문위원의 증거조사절차에의 참여 ····· 156
6. 전문위원의 설명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 157
7. 활용 현황 ····· 158
8. 우리나라 전문심리위원 제도와의 차이 ····· 160
Ⅳ. 소결 ····· 161
제5절 프랑스의 감정 제도 ····· 162
Ⅰ. 개관 ····· 162
Ⅱ. 감정인에 대한 관리 제도 ····· 162
1. 감정인 등록과 관련된 제도 ····· 162
2. 감정인을 위한 연수(formation) ····· 164
3. 감정인 평가 ····· 165
Ⅲ. 감정인 및 감정 업무를 관리하는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판사(특임판사) 제도 ·· 166
1. 특임판사 제도의 연혁 ····· 166
2. 특임판사 제도의 의의 ····· 167
3. 특임판사의 임명 ····· 167
4. 특임판사의 업무 ····· 168
Ⅳ. 대심주의가 적용되는 감정절차 ····· 168
1. 대심주의의 의의 ····· 168
2. 감정절차에의 적용 ····· 169

3. 판사의 감정절차에의 참여 ····· 172
Ⅴ. 소결 ····· 172
제6절 시사점 ····· 173
제5장 개선 방안 ····· 177
제1절 서설 ····· 179
Ⅰ. 논의의 필요성 ····· 179
Ⅱ. 논의의 범위 ····· 179
제2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감정 제도의 개선 방안 ····· 181
Ⅰ. 전문심리관 제도의 도입 ····· 181
1. 제안 배경 ····· 181
2. 개요 ····· 182
3. 전문심리관의 담당 업무 ····· 183
4. 전문심리관의 임용·위촉 및 배치 ····· 186
5. 유사 제도와의 비교 등 ····· 188
6. 검토 ····· 188
Ⅱ. 전문가 위원회의 설치 ····· 192
1. 필요성 ····· 192
2. 전문가 위원회의 모습 ····· 193
3.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 ····· 193
4. 전문가 위원회의 업무 ····· 193
5. 기대 효과 ····· 194
6. 소결 ····· 196
Ⅲ. 한계 ····· 197
제3절 운용 실태적 측면에서의 감정 제도의 개선 방안 ····· 198
Ⅰ. 개관 ····· 198
Ⅱ. 감정절차에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 199
1. 감정 사항의 정리 ····· 199
2. 감정의 전제 사실에 관한 사전 확정 ····· 202
3. 감정 자료의 적절한 확보 ····· 204
4. 감정인신문기일의 실질화 ····· 209
5. 감정인 선정절차의 개선 ····· 210
6. 복수감정 제도의 활용 ····· 222
Ⅲ. 감정인의 자질 담보 및 향상 ····· 225
1. 서설 ····· 225
2. 감정인 평가의 적극적 활용 ····· 226
3. 감정인의 교육 ····· 227
4. 감정인을 대상으로 한 감정 매뉴얼의 작성·배부 ····· 228
5.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제안 ····· 229
Ⅳ. 감정 결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 231
1. 재감정 시행에 대한 전향적 검토 ····· 231

2. 감정인신문의 활성화 ····· 236
3. 전문가 증인의 활용 ····· 243
4. 사감정(私鑑定)의 고려 ····· 244
Ⅴ. 과다한 감정 비용의 조정 방안 ····· 245
1. 서설 ····· 245
2. 건설감정의 경우 ····· 246
3. 특수 분야 감정의 경우 ····· 247
4. 법원의 구체적인 통제의 필요 ····· 248
Ⅵ.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용 ····· 249
1. 서설 ····· 249
2. 감정절차에서의 보완 ····· 249
3. 감정 결과의 내용 보완 ····· 252
4. 감정료 산정 근거의 보완 ····· 253
제4절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 ····· 254
Ⅰ. 개관 ····· 254
Ⅱ. 절차의 간이화 ····· 254
1. 당직 전문심리위원의 도입 ····· 255
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의 신속한 추가 ····· 256
Ⅲ. 전문가 조정위원과의 연계 ····· 257
1. 필요성 ····· 257
2. 내용 ····· 258
Ⅳ. 전문심리위원 활용 사례집의 발간 ····· 258
Ⅴ. 감정 제도 보완을 위한 활용 ····· 259
Ⅵ. 논의의 한계 ····· 259
제6장 결론 ····· 261

28.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n Judicial Proceedings

연구총서 2016-03

연구책임자 :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준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시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1월 14일 발행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방향 ····· 13
Ⅰ. 최적의 제도 설계: 기술적 완전무결 요청의 극복 ····· 13
Ⅱ. 원격영상재판의 목적과 취지 재검토 ····· 15
Ⅲ. 원격영상재판 시행과정 검토 및 향후 전망 ····· 16
제2장 원격영상재판의 개관 ····· 17

제1절 정보화 시대 법원의 발전방향: 전자사법제도 ····· 19
Ⅰ. 전자사법제도의 의의 ····· 19
Ⅱ. 법원 내부영역 및 외부영역의 정보화 ····· 19
제2절 전자사법제도의 기초개념 ····· 20
Ⅰ. 전자적 의사소통 ····· 20
Ⅱ. 전자소송 ····· 21
Ⅲ. 전자법정(e-Courtroom) ····· 22
Ⅳ. 전자법원(e-Court) ····· 23
Ⅴ. 소 결 ····· 23
제3절 첨단 전자법정의 형태로서 원격영상재판 ····· 24
Ⅰ. 전자법정의 발전적 형식 ····· 24
Ⅱ. 원격영상재판의 개념요소 ····· 24
제4절 원격영상회의기술과 이용현황 ····· 28
Ⅰ.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 28
Ⅱ. 이용현황 ····· 34
Ⅲ. 평가: 현재 영상회의 기술은 원격영상재판을 위해 충분한가? ····· 47
제3장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51
제1절 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53
Ⅰ. 미국의 전자사법제도 ····· 53
Ⅱ. 원격영상재판의 수용 및 전개 ····· 57
Ⅲ. 평 가 ····· 74
제2절 영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76
Ⅰ. 영국의 전자사법제도 ····· 76
Ⅱ. 원격영상재판의 이용현황 ····· 78
Ⅲ. 정 리 ····· 81
제3절 독일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82
Ⅰ. 독일의 전자사법제도 ····· 82
Ⅱ. 원격영상재판의 이용현황 ····· 87
Ⅲ. 정 리 ····· 96
제4절 프랑스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96
Ⅰ. 원격영상재판의 배경 및 연혁 ····· 96
Ⅱ. 원격영상재판 관련규정 ····· 100
Ⅲ. 원격영상재판의 적용 및 실태 ····· 107
Ⅳ. 평가 및 전망 ····· 108
제5절 싱가포르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110
Ⅰ. 싱가포르의 전자사법제도 ····· 110
Ⅱ. 법적 근거 ····· 111
Ⅲ. 원격영상재판 사례 ····· 112
Ⅳ. 평 가 ····· 114
제6절 일본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114
Ⅰ. 개 관 ····· 114
Ⅱ. TV 회의 방식 ····· 115
Ⅲ. 전화회의 ····· 122
Ⅳ. 현황 및 평가 ····· 127
제7절 오스트레일리아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129

Ⅰ. 개 관 ····· 129
Ⅱ. 근거법령 ····· 129
Ⅲ. 이용현황 및 기준요건 ····· 131
제8절 유럽연합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 ····· 136
Ⅰ. 전자사법제도의 발전 ····· 136
Ⅱ. 원격영상재판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137
Ⅲ. 정 리 ····· 141
제9절 국제사법기관 및 사법공조상 활용 ····· 141
Ⅰ.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 141
Ⅱ. 한국-코스타리카 간 원격영상재판에 의한 사법공조 ····· 143
제10절 중간 결론 ····· 146
Ⅰ. 원격영상재판의 도입 취지 ····· 146
Ⅱ. 원격영상재판제도의 설계 ····· 147
제4장 우리나라 원격영상재판의 이용현황 및 전망 ····· 149
제1절 사법 정보화와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 151
Ⅰ. 전자사법제도의 구축 ····· 151
Ⅱ.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 152
제2절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 시도 ····· 168
Ⅰ. 원격영상재판법의 개정 시도 ····· 168
Ⅱ. 원격영상재판의 최근 현황 ····· 169
제5장 결 론 ····· 179

29.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연구총서 2016-04

연구책임자 : 황승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2월 26일 발행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1
Ⅰ.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1
Ⅱ. 연구의 내용 ····· 31
Ⅲ. 연구의 방법 ····· 33
제2장 ADR에 관한 선결적 논의 ····· 35
제1절 개념 정립의 문제 ····· 37
Ⅰ. ADR의 의미 ····· 37
1. 개념의 불분명 ····· 37
2. 'Alternative'의 의미 ····· 37
3. 용어 대체의 움직임 ····· 38
4. 용어 사용의 실례 ····· 38
5. 정 리 ····· 40
Ⅱ. 조정과 알선의 관계 ····· 40

1.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알선의 관계 ····· 40
2.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관계 ····· 41
3. 정 리 ····· 43
제2절 ADR의 분류 ····· 44
Ⅰ. 사법형·행정형·민간형 ADR ····· 44
Ⅱ. 사법형 ADR의 형태 ····· 45
Ⅲ. 재판 선행형 ADR과 재판 병행형 ADR ····· 47
Ⅳ. 자발적 ADR과 의무적 ADR ····· 47
Ⅴ. 구속적 ADR과 비구속적 ADR ····· 47
제3절 ADR의 유형 ····· 48
Ⅰ. 협 상 ····· 48
Ⅱ. 중 재 ····· 50
1. 유 형 ····· 50
2. 자발적 중재에 적합한 사건 ····· 52
Ⅲ. 조 정 ····· 53
1. 개 념 ····· 53
2. 유 형 ····· 53
3. 조정인의 역할에 대한 견해 ····· 54
Ⅳ. 조정-중재 ····· 55
1. 개념과 기원 ····· 55
2. 장점과 단점 ····· 56
3. 중재-조정 ····· 57
Ⅴ. 사실 인정 ····· 57
1. 개 념 ····· 57
2. 사건 평가 ····· 58
3. 옴부즈만 ····· 58
Ⅵ. 조기 중립 평가 ····· 59
1. 개 념 ····· 59
2. 조기 중립 평가에 적합한 사건 ····· 60
Ⅶ. 간이 심리 ····· 60
1. 개 념 ····· 60
2. 간이 심리에 적합한 사건 ····· 62
Ⅷ. 간이 배심 심리 ····· 63
1. 개 념 ····· 63
2. 평 가 ····· 64
3. 간이 배심 심리에 적합한 사건 ····· 65
Ⅸ. 사적 재판 ····· 65
1. 개 념 ····· 66
2. 구체적인 예 ····· 66
3. 평 가 ····· 67
Ⅹ. 화해 주간 ····· 67

Ⅺ. 소액재판 ····· 69
제3장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 ····· 75
제1절 미 국 ····· 77
Ⅰ. ADR 운동(Movement) ····· 77
1. 배 경 ····· 77
2. 파운드 회의 ····· 78
3. ADR의 보급과 발전 ····· 85
Ⅱ. ADR에 관한 입법 ····· 87
1. 연방민사소송규칙 ····· 87
2. 사법 개선 및 법원 이용 촉진법 ····· 91
3. 민사 사법 개혁법 ····· 96
4. 대체적 분쟁 해결법 ····· 101
5. 표준 조정법 ····· 108
Ⅲ. 법원 부속형·연계형 ADR의 구체적 실시 형태 ····· 112
1. 연방지방법원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112
2. 주법원 -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조기조정 시범 프로그램 ····· 126
Ⅳ. 법원 부속형·연계형 ADR 현황과 사건 처리 동향 ····· 132
1. 연방지방법원의 ADR 승인 현황 ····· 132
2. 연방지방법원의 ADR 시행 현황 ····· 135
3. 연방지방법원의 ADR 회부 형태 ····· 136
4. 사건 처리 내역과 동향 ····· 137
5. 법원 부속형·연계형 ADR에 관한 평가 등 ····· 145
Ⅴ. 미국 민간 분야 ADR의 명암 ····· 148
1. 전문 기관에 의한 ADR ····· 148
2. 지역조정센터 ····· 152
제2절 독 일 ····· 154
Ⅰ. 개 관 ····· 154
Ⅱ. 조정 전치 ····· 154
1. 근거 법령 ····· 154
2. 조정 전치의 대상 사건 ····· 155
3. 조정 담당 기관과 조정의 효력 ····· 156
4. 소송과의 관계 ····· 156
5. 시효와의 관계 ····· 156
6. 실시 형태 및 성과 ····· 157
Ⅲ. 화해변론의 전치 등 ····· 159
1. 배 경 ····· 159
2. 주요 내용 ····· 159
Ⅳ. 변호사화해 제도 ····· 161
Ⅴ. 조정법관 제도 ····· 161
1. 개 요 ····· 161

2. 니더작센 주의 법원조정 프로젝트 ····· 162
3. 바이에른 주의 조정법관 제도 ····· 165
Ⅵ. 조정법 ····· 166
1. 제정 경위 ····· 166
2. 주요 내용 ····· 168
Ⅶ. 독일 법원의 사건 처리 내역과 동향 ····· 174
제3절 영 국 ····· 180
Ⅰ. 개 관 ····· 180
Ⅱ. CPR의 ADR 관련 주요 내용 ····· 182
1. 주요 목적 ····· 182
2. 법원의 사건 관리 강화 ····· 182
3. 소송 전 ADR 절차 이용의 협의 ····· 182
4. ADR 절차 이용을 위한 소송 절차의 정지 ····· 184
5. 소액청구 방식에서의 조정 회부 ····· 188
6. 화해의 제안 ····· 189
7. 소송비용의 부담 ····· 190
Ⅲ. 법원 부속형 조정, 법원 연계형 조정의 흐름 ····· 190
1. 조정 절차의 도입 ····· 191
2. 전국 조정 전화 서비스의 출범 ····· 191
3. 소액청구 방식에서의 법원 부속형 조정 ····· 191
4. 민사조정 온라인 안내 ····· 193
5. 절차의 흐름 ····· 194
Ⅳ. 영국 법원의 사건 진행 내역과 동향 ····· 198
제4절 프랑스 ····· 203
Ⅰ. 개 관 ····· 203
Ⅱ. 주요 내용의 검토 ····· 205
1.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의 강조 ····· 205
2. 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 205
3. 소송 절차에서의 조정 ····· 207
4. 소송 외의 화해와 조정 ····· 209
Ⅲ. 조정인의 실제 ····· 210
Ⅳ. 프랑스 법원의 사건 접수 및 종결 내역 ····· 213
제5절 일 본 ····· 215
Ⅰ. 개 관 ····· 215
Ⅱ. 법원조정 ····· 215
1. 민사조정 ····· 215
2. 특정조정 ····· 229
3.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일본 조정의 허(虛)와 실(實) ····· 233
Ⅲ. 노동심판 ····· 243
1. 의 미 ····· 243
2. 주요 내용 ····· 243

3. 접수 및 종결 내역 ····· 246
Ⅳ.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48
1. 입법 배경 ····· 248
2. 주요 내용 ····· 250
3. 시행 상황의 분석 ····· 256
4.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 268
제6절 대 만 ····· 270
Ⅰ. 개 관 ····· 270
Ⅱ. 법원조정 ····· 270
1. 주요 내용 ····· 270
2. 조정사건 종결 내역 ····· 280
Ⅲ. 마을조정 ····· 282
1. 연원과 성격 ····· 282
2. 주요 내용 ····· 282
3. 종결 내역 ····· 287
제4장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291
제1절 법원조정 ····· 293
Ⅰ. 민사조정법 제정 이전 ····· 293
1. 차지차가조정법의 시행 ····· 293
2.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 특례법의 시행 ····· 294
3. 소액사건심판법의 시행 ····· 295
4. 조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 ····· 295
Ⅱ. 민사조정법의 시행 ····· 296
1. 민사조정법의 제정 ····· 296
2. 민사조정법의 개정 ····· 296
3. 민사조정의 절차 ····· 303
Ⅲ. 2009년 이전의 상황 ····· 305
1.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접수 및 종결 추이 ····· 305
2. 민사조정사건의 추이 ····· 309
Ⅳ. 변화의 움직임 ····· 310
1. 상임 조정위원 제도 ····· 310
2. 상근 조정위원 제도 ····· 313
3. 조기조정 제도 ····· 316
4. 법원 연계형 조정 ····· 320
Ⅴ. 최근의 현황 ····· 323
1. 제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 추이 ····· 323
2. 제1심 민사본안사건 종결 내역 ····· 324
3. 민사조정 신청 및 회부, 조정 성공률 추이 ····· 326
4. 조정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 분석 ····· 328
제2절 행정형·민간형 ADR ····· 333

Ⅰ. 행정형 ADR ····· 333
1. 개 관 ····· 333
2. 분야별 ADR 기관 ····· 334
3. 운영 현황 ····· 342
4. 검 토 ····· 345
Ⅱ. 민간형 ADR ····· 347
제3절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의 논의 ····· 349
Ⅰ. 개 요 ····· 349
Ⅱ. 사법개혁위원회의 ADR에 관한 건의 ····· 349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 ····· 350
1. 후속 연구의 경과 ····· 350
2. 논의 내용 ····· 350
제5장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 ····· 353
제1절 논의의 전제 ····· 355
Ⅰ. 분쟁 해결 제도의 이상 ····· 355
Ⅱ. 이상과 현실의 조화 ····· 355
제2절 기본적 발전 방향 ····· 356
Ⅰ. 법원조정의 활성화 ····· 356
Ⅱ. 소송과 조정의 분리 ····· 360
Ⅲ. 법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 361
Ⅳ.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 363
Ⅴ. 당사자를 존중하는 조정의 지향 ····· 364
제3절 분야별 검토 ····· 365
Ⅰ. 조정 신청의 제고 ····· 365
1. 그동안의 경과 ····· 365
2. 방안 제시의 어려움 ····· 366
3. 활용 가능한 방안 ····· 367
Ⅱ. 조정 전치의 도입 ····· 372
1. 논의의 필요성 ····· 372
2. 국민적 정서 ····· 373
3. 조정 전치의 대상 탐색 ····· 375
4. 관련 문제 ····· 381
Ⅲ. 조정 회부에 대하여 ····· 384
1. 직권 조정 회부의 필요성 ····· 384
2. 조정 회부의 조건 ····· 386
3. 조정 회부 대상 사건의 선별 ····· 392
4. 조정 회부의 제한에 대하여 ····· 394
5. 절차 지연의 방지 ····· 395
Ⅳ. 조정센터의 법제화 ····· 395
1. 조정센터의 의미 ····· 395
2. 법제화의 필요 ····· 396

Ⅴ.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 396
1. 논의의 배경 ····· 397
2. 현실적 문제점 ····· 397
3. 정 리 ····· 398
Ⅵ. 새로운 조정 방식의 도입 ····· 398
1. 현재의 조정기관과 조정 방식 ····· 398
2. 조정 방식 다양화의 필요성 ····· 399
3. 조정 절차에서 작성된 합의서의 처리 ····· 400
Ⅶ. 수소법원 조정에 대하여 ····· 400
1. 연혁과 의미 ····· 401
2. 문제점 ····· 401
3. 검 토 ····· 402
Ⅷ. 조정기일조서에 대하여 ····· 403
1. 현행 민사조정법의 규정 ····· 403
2. 문제점 ····· 403
3. 개선 방안 ····· 404
Ⅸ. 조정의 효력 ····· 405
1. 관련 법률의 내용 ····· 405
2. 관련 대법원 판결 ····· 406
3. 검 토 ····· 408
4. 방 안 ····· 410
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 414
1. 비판적 시각 ····· 414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재조명 ····· 415
3. 제도적 개선 및 용어 변경의 필요성 ····· 416
ⅩⅠ. 조정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417
1.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 ····· 417
2. 문제점 ····· 418
3. 개선 방안 ····· 418
ⅩⅡ. 조정 절차의 비밀 보호 ····· 419
1. 관련 규정 ····· 419
2. 입법례와 견해 ····· 419
3. 검 토 ····· 422
ⅩⅢ. 조정위원에 대하여 ····· 424
1. 중요성 ····· 424
2.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 424
3. 전문성과 제고와 다양성의 추구 ····· 426
4. 교육의 필요 ····· 428
5. 조정위원 행위기준의 제정 검토 ····· 431
6. 조정위원 평가서의 작성 ····· 431

XIV. 당사자의 출석 확보 방안 ····· 434
1. 논의의 배경 ····· 434
2.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 435
3. 소송비용 부담에 반영하는 방안 ····· 436
XV. 예산 확보 방안 ····· 438
1. 그동안의 조정 관련 재원 ····· 438
2. 정규 예산 편성의 필요성 ····· 439
3. 조정 관련 기금의 조성 ····· 440
4. 비용 절감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 441
제6장 민사조정법 개정안 ····· 443
제1절 주요 개정내용 ····· 445
Ⅰ. 법원조정의 활성화 ····· 445
Ⅱ. 소송과 조정의 분리 ····· 445
Ⅲ. 법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 446
Ⅳ.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 446
Ⅴ. 당사자를 존중하는 조정의 지향 ····· 447
Ⅵ. 기타 ····· 448
제2절 개정 내용 및 축조 해설 ····· 449
Ⅰ. 목 적(제1조) ····· 449
1. 개정 조항 ····· 449
2. 개정 필요성 ····· 449
3. 개정 내용 ····· 450
Ⅱ. 조정 신청 및 조정 전치(제2조) ····· 450
1. 개정 조항 ····· 450
2. 개정 필요성 ····· 451
3. 개정 내용 ····· 452
4. 보 론 ····· 453
Ⅲ. 관할법원(제3조) ····· 454
1. 개정 조항 ····· 454
2. 개정 필요성 ····· 455
3. 개정 내용 ····· 456
Ⅳ. 이 송(제4조) ····· 457
1. 개정 조항 ····· 457
2. 개정 필요성 ····· 458
3. 개정 내용 ····· 458
Ⅴ. 신청 방식(제5조) ····· 459
Ⅵ.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제5조의2) ····· 459
Ⅶ.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제5조의3) ····· 460
Ⅷ. 조정 회부(제6조) ····· 462
IX. 조정기관(제7조) ····· 463
1. 개정 조항 ····· 463
2. 개정 필요성 ····· 464

3. 개정 내용 ····· 465
X. 조정센터의 설치(제7조의2) ····· 466
1. 개정 조항 ····· 466
2. 개정 필요성 ····· 466
3. 개정 내용 ····· 467
X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제8조, 제9조) ····· 468
XⅡ. 조정위원(제10조) ····· 468
1. 개정 조항 ····· 468
2. 개정 필요성 ····· 469
3. 개정 내용 ····· 470
XⅢ.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제10조의2) ····· 471
XIV. 기관·단체의 촉탁(제10조의3) ····· 472
1. 개정 조항 ····· 472
2. 개정 필요성 ····· 472
3. 개정 내용 ····· 473
XⅤ. 조정위원에 대한 이의(제10조의4) ····· 474
1. 개정 조항 ····· 474
2. 개정 필요성 ····· 475
3. 개정 내용 ····· 477
XVI. 조정 절차(제11조) ····· 477
1. 개정 조항 ····· 477
2. 개정 필요성 ····· 478
3. 개정 내용 ····· 478
XVⅡ.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제12조) ····· 478
XVⅢ. 수수료 납부의 심사(제13조) ····· 479
XIX.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제14조) ····· 480
XX. 사건의 분리·병합(제14조의2) ····· 480
XXⅠ. 조정기일(제15조) ····· 480
XXⅡ. 이해관계인의 참가(제16조) ····· 481
XXⅢ. 피신청인의 경정(제17조) ····· 481
XXIV. 대표당사자(제18조) ····· 482
XXⅤ. 조정 장소(제19조) ····· 483
1. 개정 조항 ····· 483
2. 개정 필요성 ····· 484
3. 개정 내용 ····· 484
XXVI. 비공개(제20조) ····· 485
XXVⅡ. 조정 전의 처분(제21조) ····· 485
XXVⅢ. 진술 청취와 사실 조사(제22조) ····· 486
1. 개정 조항 ····· 486
2. 개정 필요성 ····· 486
3. 개정 내용 ····· 487
XXIX. 진술의 원용 제한 및 비밀 보호(제23조, 제41조) ····· 487

1. 개정 조항 ····· 487
2. 개정 필요성 ····· 488
3. 개정 내용 ····· 489
XXX. 조서의 작성과 생략(제24조) ····· 489
1. 개정 조항 ····· 489
2. 개정 필요성 ····· 489
3. 개정 내용 ····· 490
XXXⅠ. 조정 신청의 각하(제25조) ····· 491
XXX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 491
1. 개정 조항 ····· 491
2. 개정 필요성 ····· 492
3. 개정 내용 ····· 492
XXXⅢ. 조정의 불성립(제27조) ····· 492
1. 개정 조항 ····· 492
2. 개정 필요성 ····· 493
3. 개정 내용 ····· 493
XXXⅣ. 조정의 성립(제28조) ····· 494
XXXⅤ. 조정의 효력(제29조) ····· 494
XXX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권고결정)(제30조) ····· 495
1. 개정 조항 ····· 495
2. 개정 필요성 ····· 496
3. 개정 내용 ····· 496
XXXⅦ. 신청인의 불출석(제31조) ····· 497
XXXⅧ. 피신청인의 불출석(제32조) ····· 497
1. 개정 조항 ····· 497
2. 개정 필요성 ····· 498
3. 개정 내용 ····· 498
XXXIX. 조정에 관한 조서 등의 송달 등(제33조) ····· 498
1. 개정 조항 ····· 498
2. 개정 필요성 ····· 499
3. 개정 내용 ····· 499
XL. 이의신청(제34조) ····· 500
1. 개정 조항 ····· 500
2. 개정 필요성 ····· 501
3. 개정 내용 ····· 501
XLⅠ. 소멸시효의 중단(제35조) ····· 502
XLⅡ.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제36조) ····· 502
1. 개정 조항 ····· 502
2. 개정 필요성 ····· 503
3. 개정 내용 ····· 503
XLⅢ. 절차 비용(제37조) ····· 504

1. 개정 조항 ····· 504
2. 개정 필요성 ····· 504
3. 개정 내용 ····· 505
XLIV. 민사소송법의 준용(제38조) ····· 505
1. 개정 조항 ····· 505
2. 개정 필요성 ····· 506
3. 개정 내용 ····· 508
XLV.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제39조) ····· 508
XLVI.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제40조) ····· 509
XLVII. 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제40조의2) ····· 509
XLVIII.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42조) ····· 510
1. 개정 조항 ····· 510
2. 개정 필요성 ····· 510
3. 개정 내용 ····· 510
XLIX. 위임규정(제43조) ····· 511
1. 개정 조항 ····· 511
2. 개정 필요성 ····· 511
3. 개정 내용 ····· 511
제3절 민사조정법 개정 법률안 ····· 512

30.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nsiderations for Courtroom Examination of Vulnerable Victims in Sexual Assault Cases

연구총서 2016-05

연구책임자 : 이재석(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년 1월 15일 발행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Ⅰ. 성범죄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 15
Ⅱ.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반대신문권의 충실한 보장 요구 ····· 17
Ⅲ.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허용 범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 18
제2절 관련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현황 및 과제 ····· 23
제1절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제한 관련 규정 ····· 25
Ⅰ. 형사소송법 ····· 25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
Ⅲ.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6
Ⅳ. 형사소송규칙 ····· 26
Ⅴ.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28
Ⅵ.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 ····· 28
제2절 피해자면접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 32

Ⅰ. 연구 1 ····· 32
Ⅱ. 연구 2 ····· 34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 ····· 34
2. 반복적인 질문 ····· 35
3. 당해 사건과 무관한 질문 ····· 35
Ⅲ. 연구 3 ····· 35
1. 친족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 ····· 36
2. 비친족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 ····· 36
3. 성인 피해자 ····· 37
제3절 과제 ····· 37
제3장 각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제한 방식 ····· 39
제1절 미국 ····· 41
Ⅰ. Rape Shield Law ····· 41
1. 연혁 ····· 41
2. 연방 및 각 주의 입법 현황 ····· 43
3. 유형적 고찰 ····· 43
4. 평가 ····· 54
Ⅱ. 성폭력 재판 관련 법관용 실무지침서 ····· 58
1. 미시간 주 성폭력 재판 벤치북 ····· 58
2. 뉴멕시코 주 성폭력 재판 벤치북 ····· 76
3. 오하이오 주 아동 성폭력 재판 벤치북 ····· 87
4.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동 피해자·증인 재판 벤치북 ····· 91
Ⅲ. 성폭력 재판 실무교육자료 ····· 93
1. 개요 ····· 93
2.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The Judicial Response to Stranger and Nonstranger Rape and Sexual Assault (1994) ····· 93
3.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The Judge's Role in Stranger and Nonstranger Rape and Sexual Assault Cases DVD-ROM (2005) ····· 94
4. The Challenges of Adult Victim Sexual Assault Cases: Materials for New Judges ····· 96
5. Judges Tell: What I Wish I Had Known Before I Preside in an Adult Victim Sexual Assault Case ····· 97
6.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The Judicial Response to Stranger and Nonstranger Rape and Sexual Assault Participating Judges' Recommendations ····· 103
제2절 영국 ····· 113
Ⅰ. Rape Shield Law의 연혁 ····· 113
Ⅱ. 관련 규정 ····· 115
Ⅲ. 내용 ····· 117
1. 성적 행위에 관한 증거 ····· 117

2. 허위 고소 ····· 118
3. 4개의 예외 조항 ····· 119
4. 예외 범주 밖에 있는 증거 ····· 123
5. 예외 범주 내에 있는 증거의 배제 ····· 124
Ⅳ. 평가 ····· 124
제3절 캐나다 ····· 125
Ⅰ. Rape Shield Law ····· 125
1. 연혁 ····· 125
2. 관련 규정 ····· 125
3. 평가 ····· 129
Ⅱ. 취약한 증인의 보호 규정 ····· 130
제4절 호주 ····· 131
Ⅰ. Rape Shield Law ····· 131
1. 관련 규정 ····· 131
2. 평가 ····· 135
Ⅱ. 취약한 증인의 보호 규정 ····· 136
Ⅲ. 반대신문에서의 부적절한 질문 금지 규정(1995년 증거법 제41조) ····· 141
Ⅳ. 뉴사우스웨일스 주 성폭력 재판 벤치북 ····· 142
1. 개요 ····· 142
2. 관련 내용 ····· 143
Ⅴ. 호주 법원에서 증언하는 아동을 위한 벤치북 ····· 148
1. 개요 ····· 148
2. 관련 내용 ····· 149
제5절 독일 ····· 165
Ⅰ. 개관 ····· 165
Ⅱ. 증인신문내용 제한 ····· 165
1. 내용 ····· 165
2. 평가 ····· 166
Ⅲ. 증인의 조력(Zeugenbeistand) ····· 167
1. 피해자 변호인제도와 신뢰할만한 사람의 동석 ····· 167
2. 피해자 변호인의 국선제도 ····· 168
Ⅳ. 2차 피해 방지 관련 논의의 소개 ····· 169
제6절 프랑스 ····· 171
Ⅰ. 개관 ····· 171
Ⅱ. 증인신문내용 제한 ····· 171
Ⅲ. 피해자의 소송참여권 ····· 172
Ⅳ. 비공개재판 청구권 ····· 173
Ⅴ. 증인의 보호 ····· 173
1. 일반 규정 ····· 173
2.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적용되는 소송절차 ····· 174
3. 관련 실무 ····· 174
제7절 일본 ····· 175

Ⅰ. 개관 ····· 175
Ⅱ. 증인신문내용의 제한 규정 ····· 175
1. 형사소송법 ····· 175
2. 형사소송규칙 ····· 176
3. 관련성 ····· 177
4. 소결 ····· 178
Ⅲ. Rape Shield Law의 도입 논의 ····· 179
제8절 각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제한 방식의 시사점 ····· 179
제4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에 관한 실무상 개선 논의 ····· 183
제1절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들의 성폭력 사건 심리방식 개선 논의 ····· 185
Ⅰ. 실무 운영 현황 ····· 185
1. 증인신문 이전 단계 ····· 185
2. 증인신문 단계 ····· 185
3. 증인신문 종료 ····· 188
Ⅱ. 증인신문 내용 및 신문 태도 등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방안 ····· 188
1. 증인신문 제한사항의 고지 ····· 188
2. 집중 심리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 188
제2절 대법원 젠더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제안 ····· 189
Ⅰ. 개관 ····· 189
Ⅱ. 2011년의 논의 ····· 189
1. 성폭력 전담재판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190
2.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증인신문내용 제한 ····· 191
Ⅲ. 2014년의 논의 ····· 192
1. 성폭력 전담재판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192
2. 2차 피해 방지 방안 ····· 194
제5장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모색 ····· 197
제1절 필요성 ····· 199
제2절 고려 요소 ····· 200
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조화 ····· 200
1. 피해자의 심리적 민감성 및 취약성에 관한 고려 ····· 200
2.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균형적 고려 ····· 201
3.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의 구현 ····· 202
Ⅱ. 올바른 증인신문방식의 모색 ····· 202
1. 반대신문 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 203
2. 증인신문의 원칙 ····· 205
3. 반대신문기술의 재구성 ····· 208
Ⅲ. 바람직한 직무윤리의 정립 ····· 208
1. 개관 ····· 208
2. ABA 법관윤리장전 ····· 209
3. 반대신문에 관한 변호인의 적정한 행위 기준 ····· 210

제3절 참고 자료 ····· 213
Ⅰ. 성범죄재판실무편람에서의 증인신문내용의 제한 ····· 213
Ⅱ. 내부용역보고서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를 위한 재판 가이드북(안) ····· 214
제4절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의 제안 ····· 215
Ⅰ. 목적 ····· 215
Ⅱ. 주요 내용 ····· 215
1. 심리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 ····· 215
2. 신문내용 및 신문방식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의 제한 ····· 215
3. Rape Shield Law의 우리 재판실무에의 활용 방안 제시 ····· 216
Ⅲ.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 ····· 218
제6장 결론 ····· 219

31.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Reporting Related to Personal Property Public Notice System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System

연구총서 2016-06

연구책임자: 김 정 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2월 25일 발행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방법 ····· 16
제2장 각국의 동산담보제도 ····· 17
제1절 미국의 동산담보제도 ····· 19
Ⅰ. 미국 동산담보제도의 개관 ····· 19
Ⅱ. 통일상법전의 적용범위 ····· 20
1. 의의 ····· 20
2. 담보물의 유형 ····· 21
3. 담보거래의 적용배제 ····· 24
Ⅲ. 담보권의 성립과 완성 ····· 24
1. 담보권의 성립 ····· 24
2. 담보권의 완성 ····· 29

Ⅳ.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priority) ····· 37
1. 총설 ····· 37
2. 여러 개의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 ····· 38
3. 우선순위 원칙의 예외 ····· 39
Ⅴ. 담보권의 법률관계 ····· 40
1. 대내적 법률관계 ····· 40
2. 대외적 법률관계 ····· 45
Ⅵ.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실행 ····· 50
1. 총설 ····· 51
2. 담보목적물의 점유 ····· 51
3. 담보목적물의 처분 ····· 52
Ⅶ. 미국의 동산담보제도 현황 ····· 55
1. 동산담보대출의 액수와 시장규모 ····· 55
2. 동산담보대출의 구체적 사례 ····· 59
3. 동산담보대출의 이용 정도 ····· 60
4. 평가 ····· 61
제2절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 ····· 74
Ⅰ. 들어가며 ····· 74
Ⅱ. 동산양도등기제도의 제정 경위 ····· 75
Ⅲ. 동산양도등기제도의 개요 ····· 76
Ⅳ. 동산양도등기의 대상 ····· 76
1. 양도의 주체 ····· 76
2. 양도의 객체 ····· 77
3. 양도의 목적 ····· 78
Ⅴ. 동산양도등기의 효력 ····· 79
1. 대항요건적 효력 ····· 79
2. 동일한 양도에 대하여 인도와 등기의 병존 ····· 80
3. 선의취득과의 관계 ····· 81
4. 각종 재단저당법에서의 재단과 동산양도등기와의 관계 ····· 82
5. 대리인 점유 하에 있는 동산의 양도 ····· 83
Ⅵ. 동산양도등기의 방법 등 ····· 83
1. 등기부의 편제 ····· 83
2. 등기사항 ····· 84
3. 등기신청 등 ····· 84
4. 등기의 존속기간 ····· 84
5. 등기사항의 공개 등 ····· 85
Ⅶ. 일본의 동산담보제도 현황 ····· 87
1. 동산양도등기 이용 현황 ····· 87
2. 동산담보대출 시장규모 ····· 88
3. 동산담보대출 액수 ····· 89

4. 동산담보대출의 구체적 사례 ····· 90
5. 동산담보의 종류 및 업종별 이용실적 ····· 91
6. 평가 및 향후과제 ····· 94
제3절 UNCITRAL의 담보권 입법지침 ····· 96
Ⅰ. 의의 ····· 96
Ⅱ. 입법지침의 내용 ····· 97
1. 담보권의 종류와 내용 ····· 97
2. 담보권설정자와 담보목적물 ····· 98
3. 담보권의 성립과 대항요건의 구분, 담보약정의 법적 성질 ····· 99
4. 담보권의 공시방법 ····· 100
5. 담보권의 우선권과 공시방법 사이의 우열 ····· 101
6.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 102
7.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목적물 처분과 담보권의 존속 ····· 102
8. 담보권의 실행 ····· 103
9. 취득금융을 위한 담보권의 특별취급 ····· 104
10. 국제사법 ····· 104
11. 도산법제와 담보법제의 공조 ····· 105
제4절 EBRD의 모범담보법 ····· 106
Ⅰ. 의의 ····· 106
Ⅱ. 특징 및 구성 ····· 107
1. 특징 ····· 107
2. 구성 ····· 108
Ⅲ. 주요 내용 ····· 109
1. 주요 개념 ····· 109
2. 담보권의 등록 및 관계인의 권리의무 ····· 110
3. 제3자의 관여 ····· 111
4. 담보권의 실행 ····· 112
5. 담보권의 등록 ····· 113
제3장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 ····· 115
제1절 질권과 비전형담보 ····· 117
Ⅰ. 질권 ····· 117
Ⅱ. 비전형담보 ····· 118
제2절 동산담보권 ····· 119
Ⅰ. 의의 및 특징 ····· 119
1. 의의 ····· 119
2. 특징 ····· 119
Ⅱ.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 120
1. 동산담보권의 성립 ····· 120
2. 동산담보권의 내용 및 효력 ····· 123
3. 동산담보권의 실행 ····· 128

제3절 동산담보제도의 현황 ····· 132
Ⅰ. 동산담보제도의 현황 ····· 132
1. 동산담보등기의 이용 현황 ····· 132
2. 동산담보대출의 시장규모와 액수 ····· 133
3. 동산담보대출의 취급 상품 현황 ····· 137
4. 동산담보의 종류별 이용실적 ····· 138
5. 평가 ····· 139
Ⅱ.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 ····· 141
1. 동산담보제도에 대한 이해·홍보 부족 ····· 141
2.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비 ····· 142
3.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제한 ····· 143
4. 동산담보권 실행상의 문제점 ····· 144
5. 제재규정의 미비 ····· 154
6. 등기열람과 관련한 문제점 ····· 155
7. 선의취득의 문제 ····· 156
제4장 동산담보제도 개선 방안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 ····· 159
제1절 동산담보제도 개선 방안 ····· 161
Ⅰ.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인프라 구축·홍보강화 ····· 161
1. 동산담보제도 관련 인프라 구축 ····· 161
2.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홍보강화 ····· 162
Ⅱ.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제한 폐지 ····· 162
Ⅲ.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의 개선 ····· 163
Ⅳ.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절차보장 ····· 164
Ⅴ. 제3자의 등기열람 허용 ····· 165
Ⅵ.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관련한 개선 방안 ····· 166
1. 집합동산의 수량기재의 문제에 관한 개선 방안 ····· 166
2.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경정의 문제에 관한 개선 방안 ····· 167
Ⅶ. 제재규정 마련 ····· 168
Ⅷ. 선의취득에 대한 제한 ····· 168
Ⅸ. 동산담보권의 통합 ····· 169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 ····· 171
Ⅰ. 디지털 기술 활용의 필요성 ····· 171
Ⅱ. 동산에 대한 디지털 기술 검토 ····· 172
1. 바코드 ····· 172
2. QR코드 ····· 173
3. RFID ····· 175
4. NFC ····· 178
5. GPS 시스템 ····· 180
6. 각 기술의 특징 및 동산담보목적물 관리에 줄 수 있는 시사점 ····· 182
Ⅲ.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총론) ····· 185
1. 전자태그가 담고 있어야 하는 정보 ····· 185

2. 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등록 후 관리 ····· 186
3. 동산담보등기부와 연계 모형 ····· 187
4. 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구축·관리 주체의 문제 ····· 189
5. 담보목적물 관리시스템 이용의 강제 여부 ····· 191
6. 비용부담의 문제 ····· 192
Ⅳ.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물 관리 방안(각론) ····· 192
1. 전자라벨, 바코드/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 ····· 192
2. RFID/NFC를 활용하는 방안 ····· 195
제5장 결론 ····· 203

32.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연구총서 2016-07

연구책임자 : 손지영(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3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7
제2장 각국의 압수·수색 절차와 그 운용 ····· 21
제1절 우리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 규정 ····· 23
Ⅰ. 압수·수색의 개념과 규정 체계 ····· 23
1. 압수·수색의 의의 ····· 23
2. 압수·수색 관련 규정의 체계 ····· 24
Ⅱ. 압수·수색의 요건 ····· 26
1. 범죄혐의 ····· 26
2.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 ····· 26
Ⅲ. 압수·수색의 절차 ····· 28
1. 영장의 청구와 발부 ····· 28
가. 영장 청구 및 발부의 방법 ····· 28
나. 피의자의 성명 등 ····· 29
다. 압수 대상 및 수색 장소 등 ····· 29
라. 영장의 유효기간 ····· 30
마. 압수·수색의 사유 등 ····· 30

바.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30
2. 영장의 집행 ····· 31
가. 집행기관 ····· 31
나. 영장 청구 및 집행의 시간적 한계 ····· 31
다. 영장의 제시 ····· 31
라. 집행에 필요한 처분 ····· 32
마. 당사자·책임자 등의 참여 ····· 32
바. 야간집행의 제한 ····· 33
사. 수색증명서·압수목록의 교부 ····· 33
3. 공무상·업무상 비밀의 압수 또는 수색의 제한 ····· 33
Ⅳ. 영장주의의 예외 ····· 34
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 35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 ····· 35
3.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 ····· 35
4.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제217조 제1항) ····· 36
5.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제218조, 제108조) ····· 36
Ⅴ.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37
Ⅵ.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37
Ⅶ.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 39
1. 개관 ····· 39
2. 압수·수색의 대상 여부 ····· 40
3. 압수·수색 방법 및 범위의 제한 문제 ····· 41
4. 참여권 보장의 문제 ····· 42
5. 전기통신의 경우 ····· 43
제2절 일본 압수·수색 절차의 내용과 특징 ····· 45
Ⅰ. 개관 ····· 45
Ⅱ. 압수·수색 일반론 ····· 46
1.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 46
2. 압수의 대상 ····· 47
3. 영장의 청구와 발부 ····· 47
4.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0
5. 영장주의의 예외 ····· 51
6. 영장의 집행 ····· 53
가. 영장의 제시 ····· 53
나. 필요한 처분 ····· 53
다. 당사자 등의 입회 ····· 54
라. 기타 ····· 54
7. 불복절차(준항고) ····· 54
8. 공무상·업무상 비밀의 압수 제한 ····· 55

Ⅲ. 전자적 기록매체의 압수·수색 ····· 56
1. 개관 ····· 56
2. 원격 접속 및 복사 후 압수 ····· 58
3. 기록명령부 압수 ····· 61
4. 전자적 기록과 관련한 기록매체 압수에 갈음하는 처분 ····· 64
5. 협력 요청 ····· 66
6. 보전 요청 ····· 67
7. 전자적 기록의 몰수 ····· 70
8. 평가 ····· 70
Ⅳ. 통신방수법 ····· 71
1. 감청의 요건 ····· 71
2. 감청의 절차 ····· 72
3. 감청기록 등 ····· 73
4. 불복신청 ····· 74
5. 최근의 개정 움직임 ····· 74
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75
제3절 미국 압수·수색 절차의 내용과 특징 ····· 79
Ⅰ. 수정헌법 제4조와 압수·수색의 요건 ····· 79
1. 상당한 이유 ····· 80
2.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 ····· 82
3. 선서진술서 ····· 83
4. 합리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의 기대 ····· 84
Ⅱ. 영장주의의 예외 법리 ····· 86
1. 동의 ····· 87
2. 적법한 체포에 수반된 수색 ····· 88
3. 자동차 수색 ····· 89
4. 긴급한 상황 ····· 89
5. 육안 발견 ····· 90
6. 그 밖의 예외 사유 ····· 91
Ⅲ. 연방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 규정 ····· 93
1. 적용 범위 및 정의 ····· 93
2. 영장 발부의 권한 ····· 94
3.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물건 ····· 94
4. 영장의 청구 ····· 94
5. 전화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영장 절차 ····· 95
6. 영장의 발부 ····· 98
7. 영장의 집행과 반환 ····· 98
가. 시간의 기재 ····· 98
나. 압수목록 ····· 98

다. 영수증 ····· 99
라. 영장의 반환 ····· 99
8. 압수물 환부 신청 ····· 99
Ⅳ. 관련법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 ····· 100
1. 사생활 비밀 보호법에 의한 제한 ····· 100
2. 변호사, 의사, 성직자 등의 수색에 관한 검찰총장 규정 ····· 101
Ⅴ. 영장의 집행 방법 ····· 101
1. Knock and Announce Rule ····· 101
2. 영장의 범위를 넘지 않는 집행 ····· 102
Ⅵ.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 103
1. 전자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의 기대 ····· 103
2. 압수·수색의 상당한 이유 ····· 104
3. 압수할 대상의 특정 ····· 105
4. 이미징 및 사후분석의 필요성 소명 ····· 106
5. 사후분석 단계에서의 유관정보(자료)의 선별 문제 ····· 106
6. 분석 기간의 제한 문제 ····· 107
7. 압수·수색 방법의 사전적 제한 문제 ····· 108
8.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 문제 ····· 111
가. 제3자의 동의 ····· 111
나. 긴급한 상황 ····· 112
다. 적법한 체포에 수반된 수색 ····· 112
라. 육안 발견의 예외 ····· 113
9. 전기·전자통신에 관한 입법적 규율 ····· 115
가. 저장된 통신 보호법 ····· 115
나. 감청법 ····· 117
(1) 개관 ····· 117
(2) 감청의 요건 및 절차 ····· 118
(3) 구제수단 ····· 119
다. 펜/트랩 법 ····· 120
10. 전자적 감시에 관한 최근의 판례 ····· 121
Ⅶ.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122
1. 개관 ····· 122
2. 법리의 형성·발전과 비판론의 수용 ····· 122
Ⅷ. 각 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 ····· 125
1. 뉴욕 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 ····· 125
가. 개관 ····· 126
나. 수색영장의 일반원칙과 개념 ····· 126
다. 압수할 물건 ····· 126
라. 수색의 대상 ····· 126

마. 집행 장소 ····· 127
바. 집행 기관 ····· 127
사. 집행 시간 ····· 127
아. 영장의 청구 ····· 127
자. 구두로 청구하는 경우 ····· 128
차. 청구에 대한 결정 ····· 129
카. 영장의 형식과 내용 ····· 129
타. 영장의 집행 ····· 130
파. 압수물의 처분 ····· 131
2. 캘리포니아 주의 압수·수색 규정 ····· 131
가. 개관 ····· 131
나. 정의 ····· 132
다. 영장 발부와 특별집행관 ····· 132
라. 상당한 이유 등 ····· 133
마. 증인신문 및 선서진술서 등 ····· 133
바. 영장의 집행 ····· 134
사. 압수물의 처분 ····· 134
아. 압수된 업무상 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 134
자. 영장의 반환과 압수물 목록의 제출 ····· 135
차. 압수물 환부 또는 증거 배제 신청 ····· 136
카. 전자통신사생활보호법 ····· 137
(1) 전자정보의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 ····· 137
(2) 통지의무 등 ····· 138
(3) 구제수단 ····· 139
제4절 독일 압수·수색 절차의 내용과 특징 ····· 140
Ⅰ. 개관 ····· 140
Ⅱ. 독일 헌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 ····· 140
1. 주거의 불가침(제13조) ····· 140
가. 의의 ····· 140
나. 보호영역 ····· 141
다. 수색(Durchsuchung) ····· 141
(1) 수색의 개념 ····· 141
(2) 법관유보 ····· 142
(3) 내용상 기준: 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 ····· 143
라. 기술적 감시의 정당성 ····· 143
(1) 주거에서의 비공개진술 감청(대감청) ····· 144
(2) 주거에서 활동하는 자의 보호를 위한 감청(소감청) ····· 144
2.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 145
가. 우편물의 압수와 법관유보 ····· 145
나. 기술적 감시와 통신의 비밀 ····· 145

다. 법관유보 ····· 146
3. 연방의회 및 연방의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금지(제40조, 제47조) ·· 146
가. 의회 내 압수·수색의 금지(제40조) ····· 146
나. 의원의 증언거부권과 압수 금지(제47조) ····· 147
4.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일반적 인격권(제2조 제1항) ····· 147
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제2조 제1항) ····· 147
나. 일반적 인격권(제2조 제1항, 제1조 제1항) ····· 147
5. 개별 기본권과 압수·수색의 제한 ····· 148
Ⅲ. 독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 ····· 149
1. 개관 ····· 149
2. 압수·수색 ····· 150
가. 증거대상의 보전을 위한 압수 ····· 150
(1) 의의 ····· 150
(2) 제출 및 인도의무와 예외 ····· 151
(3) 압수명령 ····· 151
나. 수색 ····· 152
(1) 수색의 요건 ····· 152
(2) 수색명령 ····· 152
(3) 수색의 절차 ····· 153
3. 압수의 제한(압수 금지)에 관한 규정 ····· 154
가. 증언거부권과 압수 금지 ····· 154
나. 인쇄물, 기타 문서에 대한 압수 ····· 158
4. 전산자료의 투망식 조사 ····· 158
5. 통신감청 및 통신사실자료의 확인 ····· 159
6. 기타 기술적 수단의 사용 등 ····· 161
7. 독립적 압수 ····· 161
8. 압수된 대상에 대한 표시 ····· 162
9. 서류 및 전자적 저장매체의 검열 ····· 162
10. 몰수 대상의 압수 ····· 163
Ⅳ. 증거사용금지 ····· 164
1. 개관 ····· 164
2. 증거사용금지를 결정하는 기준 ····· 165
Ⅴ. 전자정보에 관한 문제 ····· 166
1. 전자정보의 압수 적격성 및 수집의 기본원칙 ····· 166
2. 전자우편 압수의 근거 규정과 압수 방법 ····· 167
3. 원격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168
4. 온라인 수색의 문제 ····· 169
제3장 압수·수색절차의 개선방안 ····· 171
제1절 개관 ····· 173
제2절 압수·수색의 요건과 제한 ····· 173

Ⅰ. 압수·수색의 요건 ····· 173
1.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 173
2. 압수·수색의 필요성 ····· 175
가. 피내사자의 경우 ····· 175
나. 정보의 적시성 ····· 176
다. 선서진술서 ····· 177
3. 비례성의 원칙 ····· 177
4. 대상의 특정 ····· 179
Ⅱ. 압수·수색의 제한 규정 관련 ····· 180
Ⅲ. 영장주의의 예외 관련 ····· 181
제3절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 개선 ····· 184
Ⅰ. 영장 발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 수단의 확보 ····· 184
Ⅱ. 전화나 전자적 수단 등에 의한 영장 청구 및 발부의 허용 여부 ····· 186
Ⅲ. 영장의 분리 발부 또는 단계적 발부 ····· 191
1.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의 분리 ····· 191
2. 영장의 단계적 발부 ····· 192
Ⅳ. 압수·수색 방법의 구체적 기재 ····· 192
Ⅴ. 참여권의 보장 ····· 193
제4절 집행 후 절차의 개선 ····· 195
Ⅰ. 수색증명서 및 압수목록의 교부 ····· 195
Ⅱ. 새로운 집행 후 절차적 통제 방안의 도입 ····· 195
Ⅲ. 환부·가환부의 활성화 유도 ····· 197
1.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와 불복방법 ····· 198
2. 이용 현황 ····· 198
3. 환부·가환부 활성화 방안 ····· 199
제5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 200
Ⅰ. 원칙과 예외 ····· 200
Ⅱ.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서의 '관련성 원칙' ····· 202
제6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개선방안 ····· 205
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대상과 요건 ····· 205
1. 압수의 대상과 요건 심사의 방법 ····· 205
2. 특정의 정도 ····· 206
Ⅱ. 전자정보 압수 방법 등의 사전적 제한 ····· 207
1. 사전적 제한 방법의 모색 ····· 207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무 개선 내용 ····· 211
3. 개선 내용에 대한 검토 ····· 214
가. 삭제·폐기·반환 등 의무 관련 ····· 214
나.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관련 ····· 216
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 관련 ····· 217
제4장 결론 ····· 221

33.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연구총서 2016-08

연구책임자 : 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3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9
Ⅰ. 연구의 목적 ····· 19
Ⅱ. 연구의 범위 ····· 20
제2절 연구방법 ····· 21
Ⅰ. 정식재판청구제도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 21
Ⅱ. 정식재판청구제도 관련 사례의 수집과 분석 ····· 22
Ⅲ. 외국의 경미사건 처리제도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 23
제2장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관 및 현황 ····· 25
제1절 정식재판청구제도 개관 ····· 27
Ⅰ. 정식재판청구의 의의 및 기능 ····· 27
1. 정식재판청구의 의의 ····· 27
2.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의 기능 ····· 28
Ⅱ. 정식재판청구 절차 ····· 29

1. 약식명령의 청구 ····· 29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 29
3. 정식재판청구 ····· 32
Ⅲ.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33
1. 심판의 대상 ····· 33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4
3. 제척여부 ····· 34
4. 공소취소 등 ····· 34
Ⅳ.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 34
Ⅴ. 전자약식절차 ····· 35
1. 도입 배경 ····· 35
2. 주요 내용 ····· 36
제2절 정식재판청구사건 관련 통계 ····· 38
Ⅰ. 사건의 개황 ····· 38
1.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추이 ····· 38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 ····· 40
3.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 ····· 47
Ⅱ.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최근 통계 지표 ····· 52
1. 각 법원별 형사단독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 ····· 52
2. 공판절차 관련 통계 ····· 54
3. 판결 선고 관련 통계 ····· 56
제3절 정식재판청구사건 관련 사례 ····· 58
Ⅰ. 개요 ····· 58
Ⅱ. 정식재판절차 개선 관련 설문 ····· 59
1. 취지 ····· 59
2. 설문조사의 시행경과 ····· 60
3. 설문조사결과 분석 ····· 62
Ⅲ. 구체적 사례 ····· 65
1. 양형과 관련된 유형 ····· 65
2. 재판절차와 관련된 유형 ····· 69
3. 영업범과 관련된 유형 ····· 74
제3장 정식재판청구제도의 문제점 ····· 79
제1절 개요 ····· 81
제2절 약식명령 단계에서의 문제 ····· 81
Ⅰ. 약식청구 요건과 관련한 문제 ····· 81
Ⅱ. 약식청구 방식 및 통지와 관련한 문제 ····· 82
Ⅲ. 약식절차 심판대상 문제 ····· 83
Ⅳ. 약식절차의 지연 문제 ····· 84
제3절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의 문제 ····· 85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정식재판청구의 증가 ····· 85
Ⅱ.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남용 ····· 87

제4절 정식재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문제 ····· 88
Ⅰ. 개요 ····· 88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근거 ····· 89
1. 법적 근거 ····· 89
2. 이론적 근거 ····· 90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에 관한 논의 ····· 91
1. 입법취지 ····· 91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 ····· 91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론 ····· 94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존치론 ····· 97
Ⅳ.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입법연혁 ····· 102
1. 1995. 12. 29.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5054호, 시행 1997. 1. 1.) ··· 102
2. 2006. 1. 6. 정부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59호) ·· 103
3. 2009. 2. 17.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68호) · 104
4. 2012. 9. 10.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72호) · 108
제5절 정식재판절차 및 벌금형의 효율화 문제 ····· 112
Ⅰ. 경찰수사에 대한 의존 ····· 112
Ⅱ. 벌금형 제도와 관련한 문제 ····· 113
Ⅲ. 정식재판절차의 지연 및 업무 부담 ····· 113
1. 피고인 소환 문제 ····· 114
2. 증거조사절차 문제 ····· 114
Ⅳ.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상고심 문제 ····· 115
제4장 비교법적 검토 ····· 117
제1절 개요 ····· 119
제2절 미국 ····· 120
Ⅰ. 간이한 형사절차 ····· 120
1. 연방법상 경미한 범죄 및 간이절차 ····· 120
2. 주법상 경미한 범죄 및 간이절차 ····· 127
Ⅱ. 간이법원과 치안판사 ····· 131
1. 치안판사 체계 ····· 131
2. 경죄 및 경미범죄 사건 처리 현황 ····· 132
Ⅲ. 형사재판에서의 전자화 동향 ····· 134
1. CM/ECF 시스템 구축 ····· 134
2. 전자적 소송 절차 ····· 136
제3절 영국 ····· 138
Ⅰ. 간이한 형사재판절차 ····· 138
1. 형사사건의 분류 및 처리 현황 ····· 138
2. 재판유형의 결정 절차 (allocation decision) ····· 141
3. 간이재판절차 ····· 142
Ⅱ. 형사재판의 신속과 효율을 위한 노력 ····· 145
1. CJ Triple S (Criminal Justice: Simple, Speedy, Summary) ····· 145

2. 형사사법체계 통합 플랫폼 (Criminal Justice System Common Platform; CJS Common Platform) ····· 147
3. 재판유형의 결정 절차 개선 ····· 152
4. 간이재판절차의 개혁(Transforming Summary Justice, TSJ) ····· 156
제4절 독일 ····· 159
Ⅰ. 개요 ····· 159
1. 범죄의 분류 ····· 159
2. 경미범죄의 관할 ····· 161
Ⅱ. 경미범죄의 처리 ····· 161
1. 불기소처분 (기소법정주의의 예외) ····· 162
2. 간소화된 형사절차 ····· 163
3. 경미범죄의 처리현황 ····· 177
Ⅲ. 형사재판에서의 전자화 동향 ····· 179
1. 형사사건에서 전자화문서 도입을 위한 법률안 ····· 179
2. 독일 헤센(Hessen) 주의 전자형사소송절차 ····· 183
제5절 프랑스 ····· 187
Ⅰ. 개요 ····· 187
1. 범죄의 유형 ····· 187
2. 형사절차 흐름 ····· 188
3.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 ····· 190
Ⅱ. 약식절차(la procédure simplifiée) ····· 191
1. 개요 ····· 191
2. 경죄 사건의 경우 ····· 194
3. 위경죄 사건의 경우 ····· 195
4. 약식절차의 현황 및 평가 ····· 195
제6절 일본 ····· 197
Ⅰ. 개요 ····· 197
Ⅱ. 약식절차 ····· 199
1. 의의 ····· 199
2. 절차 ····· 200
3.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 204
Ⅲ. 약식절차에 대한 평가 ····· 205
1. 우리나라 약식절차와 비교 ····· 205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06
제7절 비교법적 검토에 의한 시사점 ····· 208
제5장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 방안 ····· 211
제1절 개관 ····· 213
제2절 약식명령 단계 ····· 214
Ⅰ. 약식명령 대상의 조정 ····· 214
1.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및 무죄재판으로의 확대 ····· 214

2. 자유형의 부과 ····· 215
3. 벌금형 상한 제한 ····· 216
Ⅱ. 약식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방안 ····· 216
1. 약식사건의 신속한 처리 ····· 217
2. 일본의 '재청약식' 제도 ····· 218
3.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의사확인 ····· 218
4. 약식명령 고지 문제(송달장소 확인 의무) ····· 220
5. 약식명령 청구 및 정식재판절차 규정 정비 ····· 222
제3절 정식재판청구 단계 ····· 223
Ⅰ. 정식재판청구 사유에 따라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 처리하는 방안 ····· 223
Ⅱ.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건의 처리 방안 ····· 225
1. 회복청구사건의 처리 절차 ····· 225
2. 피고인의 소명의무 관련 ····· 228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 228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의 타당성 ····· 228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폐지를 위한 대안 ····· 231
제4절 정식재판절차 및 벌금형의 효율화 방안 ····· 238
Ⅰ. 공판절차의 간이화 방안 ····· 238
1.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 및 소환 문제 ····· 238
2.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 242
3.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 ····· 244
Ⅱ. 벌금형의 효율화 방안 ····· 245
1.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 245
2. 일수벌금제도 ····· 246
3.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 247
4. 벌금형의 분납·연납 선고 제도 ····· 250
Ⅲ. 기타 ····· 253
1. 형사소송비용의 부담 ····· 253
2. 과태료 절차의 준용 ····· 254
제5절 정식재판청구사건 상고심의 합리화 방안 ····· 255
Ⅰ. 개요 ····· 255
Ⅱ. 상고기각 제도 ····· 256
Ⅲ. 상고이유의 제한 ····· 257
제6절 장기적 개선 방안 ····· 258
Ⅰ.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방안 ····· 258
1. 간이법원의 설치 ····· 258
2.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 확대 ····· 260
3.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 261
Ⅱ. 경미사건의 비범죄화 방안 ····· 262
Ⅲ. 유죄협상제도 ····· 263
1. 논의 현황 ····· 263

2. 약식절차에서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 264
Ⅳ. 전자약식절차의 활성화 방안 ····· 266
1. 구체적 방안 ····· 266
2. 평가 ····· 268
제6장 결론 ····· 269

34.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Standard of Property Division

연구총서 2016-09

연구책임자 : 최은정(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현주(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6년 4월 4일 발행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I. 연구의 범위 ····· 14
Ⅱ. 연구의 방법 ····· 15

제2장 재산분할제도의 개관 ····· 17
제1절 개설 ····· 19
제2절 재산분할제도의 연혁 ····· 20
I. 재산분할의 개념 ····· 20
Ⅱ.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제도의 도입 ····· 21
Ⅲ. 2006년 개정안의 내용 ····· 24
제3절 재산분할의 본질 ····· 31
I. 단순한 법률 규정과 판례의 발전 ····· 31
Ⅱ.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 ····· 32
Ⅲ. 비송사건으로서의 재산분할심판과 법원의 후견적 기능 ····· 35
제4절 재산분할제도의 실제 운영모습 ····· 37
I. 재산분할청구의 시기 ····· 37
Ⅱ. 당사자 ····· 38
Ⅲ. 관할 ····· 39
Ⅳ. 수수료 ····· 40
Ⅴ. 행사기간 ····· 41
Ⅵ. 심리 ····· 42
Ⅶ. 판단의 기준시기 ····· 45
Ⅷ. 분할의 방법 ····· 46
제3장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 51
제1절 개설 ····· 53
제2절 재산분할의 대상 ····· 54
I.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그리고 분할대상재산 ····· 54
Ⅱ. 쟁점별 판단 ····· 57
제3절 재산분할의 비율 ····· 72
I. 원칙 ····· 72
Ⅱ.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 ····· 73
Ⅲ. 실무상 재산분할의 비율 ····· 73
제4절 최근 하급심 판결 사례에 대한 분석 ····· 77
I. 구체적 사례 및 분석 ····· 78
Ⅱ. 재산분할에 관한 실무 상황의 정리 ····· 105
제4장 각국의 재산분할 기준 ····· 107
제1절 개설 ····· 109
제2절 미국 ····· 109
I. 부부재산제 ····· 109
Ⅱ. 재산분할 ····· 111
Ⅲ. 미국법률협회의 재산분할에 관한 원칙 ····· 120
제3절 영국 ····· 129
I. 부부재산제 ····· 129
Ⅱ. 재산분할 ····· 132
Ⅲ. 부양료 ····· 137
제4절 독일 ····· 139
I. 부부재산제 ····· 139
Ⅱ. 재산분할 ····· 141

제5절 프랑스 ····· 147
I. 부부재산제 ····· 147
Ⅱ. 재산분할 ····· 151
Ⅲ. 부양료 ····· 158
제6절 호주 ····· 163
I. 부부재산제 ····· 163
Ⅱ. 재산분할 ····· 164
Ⅲ. 부양료 ····· 171
제7절 러시아 ····· 172
I. 부부재산제 ····· 172
Ⅱ. 재산분할 ····· 175
제8절 일본 ····· 181
I. 부부재산제 ····· 181
Ⅱ. 재산분할 ····· 182
제9절 소결 ····· 192
제5장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고려요소 ····· 197
제1절 개설 ····· 199
제2절 총론적 접근방안 ····· 200
I. 부양적 요소와 혼인의 본질 ····· 200
Ⅱ. 기여란 무엇인가 ····· 202
Ⅲ. 사회적·문화적 현실과 재산분할 ····· 205
제3절 재산분할 기준의 방향 설정 ····· 209
I. 예측가능성의 확보 ····· 209
Ⅱ. 신재산의 분할대상으로의 편입 기준 마련 ····· 210
Ⅲ. 특유재산과 부양적 요소의 고려에 관한 기준 정립 ····· 211
Ⅳ.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출발점 공유 ····· 212
Ⅴ. 사회 전체의 경제적·문화적 기반과 자녀의 문제 고려 ····· 213
제4절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에 관한 구체적 제언 ····· 215
I.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 예시 ····· 215
Ⅱ.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예시 ····· 219
Ⅲ. 특유재산에 대한 별도의 분할비율 산정 ····· 223
제6장 결론 ····· 225

35.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연구총서 2016-10

연구책임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행일: 2016년 8월 26일

제1장 서론 ····· 15
Ⅰ. 연구의 의의 ····· 17
Ⅱ.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17
제2장 EU(유럽연합)와 유럽의 국제 사법적 기관 ····· 19
제1절 EU기관 ····· 21
Ⅰ. EU기관에 대한 개설 ····· 21
1. EU의 현황 ····· 21
가. EU의 헌법적 규범 ····· 21
나. 회원국 ····· 21
다. 공식 언어 ····· 22
라. 법치주의에 근거한 공동체 ····· 22
2. 주요기관 ····· 23
가. 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 ····· 24
나. 유럽의회(the Parliament) ····· 24
다. 각료이사회(the Council) ····· 24

라.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 25
마. 기타 ····· 25
Ⅱ. EU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 26
제2절 유럽지역 내에서의 국제재판소 ····· 27
Ⅰ. 서 ····· 27
Ⅱ.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 27
Ⅲ.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 28
Ⅳ.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 28
Ⅴ. 구(舊)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소(U.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 29
Ⅵ. 유럽지역 내 국제재판소 비교 정리 ····· 30
제3절 유럽통합특허법원 ····· 31
Ⅰ. 현황 ····· 31
Ⅱ. 구조 ····· 31
1. 유럽통합특허1심법원(The UPC Court of First Instance (UPC-CFI)) ····· 31
2. 항소심법원 ····· 32
3. 사무처 ····· 32
4. EU사법재판소와의 관계 ····· 32
Ⅲ. 유럽통합특허법원의 판사 ····· 33
제3장 EU사법재판소 제도(the Court System) ····· 35
제1절 EU사법재판소 구조 ····· 37
Ⅰ. 사법재판소 ····· 37
Ⅱ. 일반법원(1심 재판소) ····· 38
Ⅲ. 전문법원 -공무원재판소 ····· 38
Ⅳ. EU사법재판소 법원 간의 관계 ····· 38
Ⅴ. 구조의 개혁 ····· 39
1. 배경 ····· 39
2. EU사법재판소의 개혁안 ····· 40
3. 경과 ····· 40
제2절 EU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및 절차 ····· 41
Ⅰ. EU사법재판소의 관할권(재판권) ····· 41
1. EU사법재판소의 관할권(재판권) ····· 41
가. 유럽연합조약에 따른 관할권(재판권) ····· 41
나. 유럽연합기능조약에 따른 관할권(재판권) ····· 41
2. 직접 소송(direct actions) ····· 42
3.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s) ····· 43
4. 판결의 집행 ····· 44
Ⅱ.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 44
1. 역할 ····· 44
2. 관할권(재판권) ····· 45
가. 관할권(재판권)의 규정 ····· 45
나. 직접소송(direct actions) ····· 46

다. 법률 항소심(appeals) ····· 46
라. 사법심사(review) ····· 46
마. 의견(opinions) ····· 46
바.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s) ····· 47
3.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s) ····· 48
가. 절차 ····· 48
나. 회부(refer)의 시기 ····· 48
다. 회부(refer)의 방법 ····· 48
라.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 ····· 49
마. 긴급절차(urgent procedure) ····· 49
바. 선결적 판결 회부의 의무성 ····· 49
사. 선결적 판결의 효력 ····· 50
4. 사법재판소 소송 절차 ····· 51
가. 개관 ····· 51
나. 소송의 시작과 서면절차 ····· 51
다. 준비절차 ····· 51
라. 심리 및 법률고문관의 의견 ····· 52
마. 합의(Deliberations) 및 판결 ····· 52
5. 법정 대리인 ····· 52
6. 언어 ····· 53
7. 주요 판례 ····· 54
가. 사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 ····· 54
나. EU사법재판소의 질서를 확립한 판결들 ····· 54
다. 최신판례 ····· 56
Ⅲ. 일반법원 ····· 58
1. 관할권(재판권) ····· 58
2. 절차 ····· 58
가. 절차규칙 ····· 58
나. 직접소송 절차 ····· 59
다. 긴급절차(urgent procedure) ····· 60
라. 지적재산권 절차 ····· 60
마. 항소심 절차 ····· 61
바. 서면분량제한 ····· 61
3. 주요 판례 ····· 61
Ⅳ. 공무원재판소 ····· 62
1. 관할권(재판권) ····· 62
2. 절차 ····· 63
가. 서면심리의 단계(The written phase) ····· 63
나. 구술심리의 단계(The oral phase) ····· 63

다. 판결 ····· 64
라. 분쟁의 원만한 화해합의(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s) ····· 64
마. 잠정적 조치(가처분) 절차(Proceedings for interim measures) ··· 64
3. 주요 판례 ····· 65
제3절 EU사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적 구성 ····· 65
Ⅰ. EU사법재판소의 조직 ····· 65
1. 사법재판소 ····· 66
가. 재판부 구성 ····· 66
나. 사무처 ····· 71
2. 일반법원 ····· 75
가. 인적구성 ····· 75
나. 재판부 구성 ····· 76
다. 사무국(registry) ····· 77
3. 전문법원-공무원재판소 ····· 78
가. 재판부 ····· 78
나. 사무국(registry) ····· 79
Ⅱ. EU사법재판소 구성원(members)의 지위 - 판사(Judges)와 법률고문관(Advocate General)
····· 80
1. 임명 ····· 80
가.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 ····· 80
나. 전문법원-공무원재판소 ····· 81
2. 자격 ····· 81
가.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 ····· 81
나. 전문법원 ····· 84
3. 면책과 특권 ····· 85
4. EU사법재판소 구성원에 관한 윤리규정 ····· 85
가. 일반규정 ····· 85
나. 고결성 ····· 86
다. 공정성 ····· 86
라. 재산에 관한 선언 ····· 86
마. 법원 외 업무 ····· 86
바. 임기 후의 활동 ····· 86
제4장 유럽인권재판소 ····· 89
제1절 유럽인권재판소 관할권 및 절차 ····· 91
Ⅰ. 개관 ····· 91
1.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 ····· 91
2. 구조 개혁에 의한 재판소의 변화 ····· 92
가. 의정서 제11호에 의한 상설재판소 설립 ····· 92
나. 의정서 제14호에 의한 구조 개혁 ····· 93

다. 의정서 제15호에 의한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과 판단의
재량원칙(margin of appreciation) ····· 94
라. 의정서 제16호에 의한 국내재판소의 의견 신청(advisory opinion) 94
Ⅱ. 관할권 ····· 95
1. 개인 (권리구제)신청(application) ····· 95
2. 국가 간 사건(interstate) ····· 96
3. 권고 의견(advisory opinion) ····· 96
Ⅲ. 절차 ····· 97
1. 개인신청의 단계 ····· 97
가. 신청(application) ····· 97
나. 적법요건(admissibility) 심사 ····· 97
다. 변론(hearing) ····· 101
라. 판결(judgment) ····· 101
마. 대재판부에 재심청구(referral to Grand Chamber) ····· 102
바. 판결의 집행(execution of judgment) ····· 102
2. 시범판결절차(pilot judgment procedure) ····· 104
가. 시범판결절차조항 ····· 104
나. 시범판결절차 사건 – Broniowski v. Poland, application no. 31443/96 (2004) ····· 106
3. 사건의 우선 순위 정책(Priority Policy) ····· 107
Ⅳ. 주요 판례 ····· 108
1.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의의 ····· 108
2. 기본권에 따른 판결의 분류 ····· 109
3. 주요 판례 ····· 109
가.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9392/95 (2001) ····· 109
나. Case of Frylender v. France, Application no. 30979/96 (2000) ····· 112
제3절 유럽인권재판소의 조직 및 인적 구성 ····· 113
Ⅰ. 조직 ····· 113
1. 부(Section) ····· 113
2. 소장 및 부소장 ····· 114
가. 소장 ····· 114
나. 부소장 ····· 114
3. 재판부(Chambers) ····· 114
가. 단독판사(Single Judge) ····· 114
나. 3인 판사위원회(Committee) ····· 114
다. 7인 판사 재판부(Chambers) ····· 115
라. 17인 판사 대재판부(Grand Chamber) ····· 115
4. 사건 관리부(Filtering Section) ····· 116
5. 전체판사회의(Plenary Court) ····· 116
6. 기획실(Bureau) ····· 117

7.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 117
가. 사무처장 ····· 117
나. 사무차장 ····· 117
Ⅱ. 인적구성 ····· 118
1. 판사(judges) ····· 118
가. 판사의 구성 및 임기 ····· 118
나. 판사의 면책과 특권 ····· 118
다. 판사 선출 ····· 118
라. 대리(특별) 판사(Ad Hoc Judges) ····· 121
마. 판사의 자격 ····· 121
2. 사무처 ····· 123
가. 사무처 ····· 123
나. 재판연구관(Lawyers) ····· 124
다. 재판연구관보(Assistant Lawyers)- 신규법조인 ····· 124
라. 파견 재판연구관(Seconded Lawyers) ····· 125
Ⅲ. 구성원-판사-윤리 규정 ····· 125
1. 개관 ····· 125
2. 독립성(Independence) ····· 126
3. 공정성(Impartiality) ····· 126
4. 고결성(Integrity) ····· 126
5. 성실성과 능력(Diligence and competence) ····· 126
6. 비밀유지(Discretion) ····· 127
7.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 127
8. 겸직(Additional activity) ····· 127
9. 이익(Favours and advantages) ····· 127
10. 훈장 및 상장(Decorations and honours) ····· 127
11. 윤리 규정의 적용 범위 ····· 127
제5장 결론-시사점 ····· 129

36.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Categorization and Social Impact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연구총서 2016-11

연구책임자 : 이제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행일: 2016년 9월 8일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5
제2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 및 제도의 개관 ····· 19
제1절 개설 ····· 21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 ····· 21
Ⅰ. 연방대법원의 설치 ····· 21
1. 연합규약 ····· 21
2. 연방헌법 ····· 22
Ⅱ. 연방대법원의 심급구조의 변천 ····· 24
1. 1789년 법원조직법 ····· 24
2. 1891년 항소법원법 ····· 29
Ⅲ. 연방대법원의 관할권의 확립 ····· 32
1.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 ····· 32
2. 1925년 법원조직법 ····· 35
3. 1988년 상고허가제의 확대 ····· 38
4. 제1심 관할권과 상고심 관할권 ····· 40

5. 상고의 경로 ····· 42
6. 연방대법원 재판권의 제한으로서 사법심사적격성의 원리 ····· 44
제3장 상고허가제도(Certiorari) ····· 49
제1절 개설 ····· 51
제2절 심리·판단 대상의 선정 기준 ····· 52
Ⅰ. '4인 동의의 법칙(Rule of Four)' ····· 52
1. 의의 및 원리 ····· 52
2. 4인 동의의 법칙의 변형: '3인의 법칙(Rule of Three)' ····· 54
3. 대법원장 표의 비중 ····· 55
Ⅱ. 연방대법원규칙 제10 법칙(Rule 10) ····· 56
1. 하급심법원 판결의 통일성 ····· 58
2. 숙성(percolation) ····· 60
3. 대법관 개인의 관심사와 전략적 고려사항 ····· 62
제3절 심리·판단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63
Ⅰ. 상고허가신청서 풀(certiorari pool) ····· 63
Ⅱ.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 ····· 66
제4절 연방대법원 심리일정표(docket)상의 사건 감소의 배경 ····· 69
Ⅰ. 1988년 법원조직법 개정 ····· 70
Ⅱ. 연방대법원 구성원의 변화와 대법관 개인의 성향 ····· 72
Ⅲ. 상고허가신청서 풀(cert. pool) ····· 75
1. 재판연구원의 성향 ····· 75
2. 재판연구원의 상고허가 신청에 대한 인용 제안과 최종 인용 관계 ····· 76
Ⅳ. 본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 77
제5절 소결 ····· 78
제4장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 ····· 81
제1절 개설 ····· 83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 ····· 84
Ⅰ. 헌법사안을 주된 쟁점으로 삼고 있는 판결과 그 이외의 판결 ····· 84
1. 헌법사안을 주된 쟁점으로 삼고 있는 판결의 의미 ····· 84
2. 헌법적 회피(constitutional avoidance): Ashwander 규칙 ····· 89
3. 헌법판결 이외의 판결 ····· 94
4. 헌법판결과 그 이외의 판결의 비중 ····· 95
Ⅱ. 시기(쟁점)별 판결의 유형화 ····· 97
1. 대법원장별 분석 ····· 97
2. 연방대법원(1946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분석) ····· 109
Ⅲ. 진보적 판결과 보수적 판결 ····· 119
1. 대법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태도적 모델(Attitudinal model) ····· 120
2. 이념적 성향 판단 기준 ····· 121
Ⅳ. 전원일치(unanimous)와 비(非)전원일치(non-unanimous) 판결 ····· 133
1. 전원일치 판결의 비중 ····· 133
2. 전원일치 비율이 높은 이유 ····· 135

Ⅴ. 파기판결과 상고기각판결 ····· 139
Ⅵ. 상고인 및 피상고인에 따른 분류 ····· 142
1. 상고인 ····· 142
2. 피상고인 ····· 145
Ⅶ. 소송비용부담 여부에 따른 분류 ····· 148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영향 ····· 153
제1절 개설 ····· 155
제2절 이론적 기초 ····· 155
Ⅰ. 긍정적 반응 가설과 구조적 반응 가설 ····· 155
1. 긍정적 반응 가설(positive response hypothesis) ····· 155
2. 구조적 반응 가설(structural response hypothesis) ····· 156
Ⅱ. 역동적 법원 모델과 제약적 법원 모델 ····· 156
1. 이론 ····· 157
2. 법원의 세 가지 제약 요소 ····· 157
3.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견해 ····· 159
Ⅲ. 수직적(vertical) 판결과 평면적(lateral) 판결 ····· 161
1. 수직적 판결 ····· 161
2. 평면적 판결 ····· 163
Ⅳ. 소결 ····· 163
제3절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연방의회의 입법 ····· 164
Ⅰ.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의 권한과 그 한계 ····· 165
1. 권한 ····· 165
2. 한계 ····· 166
Ⅱ. 연방의회의 판결대응입법(congressional override) ····· 168
1. 개념 및 유형 ····· 168
2. 현황 ····· 169
3. 이유 ····· 171
4. 한계 ····· 175
Ⅲ. 반다수주의적 난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 179
1. 반다수주의 입장 ····· 179
2. 다수주의 입장 ····· 180
Ⅳ. 소결 ····· 182
제4절 판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 183
Ⅰ. 21세기 이전 판결 ····· 184
1. 시민인권(civil rights) ····· 184
2. 형사사법절차(criminal procedure) ····· 191
Ⅱ. 21세기 판결 ····· 202
1. 연방주의(federalism) ····· 202
2.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 211
3. 프라이버시(privacy) ····· 218
4. 적법절차(due process) ····· 226

Ⅲ. 소결 ····· 244
제6장 결론 ····· 247

37.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Witness Examination Procedure and Interrogation Methods

연구총서 2016-12

연구책임자 :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행일: 2016년 9월 30일

제1장 서론 ····· 21
제2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5
제1절 연구의 목적 ····· 27
제2절 연구의 방법 ····· 27
Ⅰ. 문헌 연구 ····· 27
Ⅱ. 민사부 재판장과의 면담 ····· 28
Ⅲ. 증인신문 및 법정녹음 관련 설문조사 실시 ····· 28
Ⅳ. 시범재판부 증인신문 실시 및 결과 보고 ····· 28
제3장 각국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 31
제1절 들어가며 ····· 33
제2절 우리나라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 33
Ⅰ. 개관 ····· 33
Ⅱ. 증인능력과 증언능력 ····· 34
Ⅲ. 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 35
Ⅳ. 증인조사의 방식 ····· 36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 36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 37
3.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 37
Ⅴ. 증인신문의 방법 ····· 38
1. 신문의 순서 ····· 39
2. 주신문 ····· 40
가. 주신문권자 ····· 40
나. 주신문의 범위 ····· 40
다. 유도신문의 금지 ····· 41
3. 반대신문 ····· 43
4. 재주신문 및 그 후의 신문 ····· 44
5. 쟁점별 증인신문 ····· 44
6. 탄핵 ····· 44
7. 보충신문과 개입신문 ····· 45
8. 신문의 방식에 관한 제한 ····· 45
9. 문서 등에 의한 신문 ····· 46
10. 격리신문과 그 예외 ····· 46
11. 증인의 대질 ····· 47
12. 이의신청의 처리 ····· 47
13.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48
Ⅵ.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 도입 ····· 48
Ⅶ. 증언의 신빙성 평가 문제 ····· 50
제3절 미국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 51
Ⅰ. 개관 ····· 51
Ⅱ. 변론 전 절차(Pre-Trial)와 변론 절차(Trial) ····· 52
Ⅲ. 증인신문의 순서 ····· 54
Ⅳ. 증인능력 내지 증언능력의 문제 ····· 54
Ⅴ. 증인신문의 방식 ····· 55
1. 주신문 ····· 56
가. 관련성의 원칙 ····· 56
나. 유도신문의 금지 ····· 57
다. 신문방식의 문제: 서술형 신문과 구체적 신문 ····· 60
라. 신문사항의 구성 ····· 60
2. 반대신문 ····· 62
가. 권리적 성격 ····· 62
나. 반대신문의 범위 ····· 62
다. 금지되는 경우 ····· 63
라. 반대신문의 기술 ····· 64

3.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 66
4. 법원에 의한 증인의 소환과 신문 ····· 67
5. 배심원에 의한 신문 ····· 68
6. 의견 금지의 원칙 ····· 69
7. 전문가 증언 ····· 70
가. 허용 범위 ····· 70
나. 신문 기법 ····· 72
다. 전문가 증언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 ····· 73
8. 기억 환기를 위한 서면 ····· 74
Ⅵ. 탄핵과 회복 ····· 75
1. 증인의 탄핵 주체 ····· 75
2. 탄핵 및 보강의 순서 ····· 75
3. 탄핵의 방법 ····· 75
가. 종전의 모순 진술 ····· 76
나. 편향성과 당파성 ····· 77
다. 정직성 혹은 부정직성에 관한 성격 ····· 78
라. 능력의 결함 ····· 80
마. 구체적 사실관계와의 모순 ····· 81
4. 신빙성 회복의 방법 ····· 81
Ⅶ. 증인의 격리 ····· 82
Ⅷ. 신문에 대한 이의 ····· 82
1. 이의(objection)의 처리 ····· 82
2. 이의와 명백한 오류 ····· 83
Ⅸ. 원격지에서의 동시적 전송에 의한 증인신문 ····· 85
Ⅹ. 증인의 신빙성 평가 문제 ····· 86
1. 사실심 판단의 존중 ····· 86
2. 신빙성 평가의 요소 ····· 86
3.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배심 설시 ····· 87
가. 관련 판결 ····· 88
나.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배심 설시의 예시 ····· 89
제4절 독일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 93
Ⅰ. 개관 ····· 93
Ⅱ. 증인의 신청 ····· 93
Ⅲ. 증인의 소환 및 기일지정 ····· 94
Ⅳ. 증언거부권 ····· 97
Ⅴ. 위증의 경고와 인정신문 ····· 98
Ⅵ. 증인신문의 방식 ····· 99
1. 신문의 순서와 방식 ····· 99

2. 요약조서의 작성 ····· 101
3. 선서 ····· 104
4. 서면에 의한 신문 ····· 104
5. 격리신문(Einzelvernehmung) ····· 105
6. 대질신문 ····· 105
7.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106
Ⅶ. 영상 및 음성 중계에 의한 증인신문 ····· 106
Ⅷ. 증인의 진술 분석 및 신문 기법 ····· 107
1. 개관 ····· 107
2. 증인의 진술 분석 ····· 108
가. 증인의 심리적 오류 ····· 108
나. 거짓 진술 ····· 112
3. 증인신문 기법 ····· 116
가. 증인신문 전 단계 ····· 116
나. 증인신문 단계 ····· 117
제5절 프랑스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 119
Ⅰ. 개관 ····· 119
Ⅱ. 프랑스의 민사소송과 증인신문 ····· 119
1. 민사소송과 서증우선주의 등 ····· 119
가.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 119
나. 증거조사와 서증우선주의 ····· 120
2. 민사소송의 증인신문 절차 개관 ····· 122
가. 증인신문의 채택 ····· 122
나. 증인신문의 실제 ····· 122
다. 조서의 작성 ····· 123
Ⅲ. 프랑스의 형사소송과 증인신문 ····· 123
1. 예심절차의 증인신문 ····· 124
가. 예심제도 ····· 124
나. 예심판사의 증인신문 ····· 124
2. 공판절차의 증인신문 ····· 125
가. 개관 ····· 125
나. 중죄법원 절차에서의 증인신문 ····· 126
다. 경죄법원 절차에서의 증인신문 ····· 128
제6절 일본의 증인신문 절차와 그 기법 ····· 128
Ⅰ. 개관 ····· 128
Ⅱ. 증거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 129
Ⅲ. 집중증거조사 ····· 129
Ⅳ. 증인의무와 출석의 확보 ····· 131

Ⅴ. 증인신문의 방법 ····· 132
1. 신문의 순서와 방식 ····· 132
2. 증인신문 절차의 합리화 방안 ····· 133
가. 증인 도우미와 차폐조치 ····· 133
나. 영상 등 송수신에 의한 신문 ····· 134
다. 서면에 의한 신문 ····· 135
라. 기타 ····· 136
3. 주신문 ····· 136
4. 반대신문 ····· 137
가. 반대신문권의 보장 등 ····· 137
나. 반대신문의 기법 ····· 138
5. 문서 등을 이용한 질문 ····· 140
6. 재판장의 신문 ····· 141
7. 신문 방식에 대한 제한 ····· 141
8. 격리신문 여부 ····· 142
Ⅵ. 녹음반역 또는 녹음물에 의한 공판조서 작성 ····· 142
Ⅶ. 증언의 신빙성 판단 ····· 144
1. 河村 浩 판사의 견해 ····· 144
2. 今中道信 판사의 견해 ····· 145
3. 吉岡 進 판사의 견해 ····· 146
가. 인증의 특색과 신빙성 있는 증언의 요건 ····· 146
나. 신문 방식이 진술의 진실성에 미치는 영향 ····· 148
다. 일문일답식과 자유서술식 ····· 149
4. 後藤 勇 판사의 견해 ····· 149
가. 보조사실에 의한 테스트 ····· 150
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의한 테스트 ····· 150
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50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 152
제4장 증인 진술 분석 및 증인신문 기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 157
제1절 들어가며 ····· 159
제2절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 160
Ⅰ. 증인 신빙성 평가의 두 측면 ····· 160
Ⅱ. 진술의 오류에 관한 연구 ····· 160
1. 배경 ····· 162
2. 판결 등에서 인용되는 연구 내용 ····· 162
가. 기억의 특성 ····· 162
나. 시스템 변인 ····· 164
다. 평가자 변인 ····· 169

3. 연구 내용의 불요증사실 채택 ····· 174
4. 배심 설시에의 포함 ····· 175
Ⅲ. 진술의 진위 판별에 관한 연구 ····· 176
1. 증인의 태도를 통한 진위 판별 ····· 176
2. 맥락과 편향성, 언어적 단서 ····· 177
3. 최근의 연구 경향 ····· 177
가. 감정적 단서 ····· 178
나. 행동 통제 단서 ····· 178
다. 인지적 부담 ····· 178
Ⅳ. 아동 진술의 신빙성 ····· 179
1. 들어가며 ····· 179
2. 아동의 기억 및 진술 능력 ····· 180
가. 피암시성 ····· 180
나. 출처감시능력과 현실감시능력 ····· 182
다. 진술 당시의 스트레스 ····· 182
3. 아동 진술의 진실성 ····· 183
제3절 증인 진술 분석의 기법 ····· 184
Ⅰ.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 184
1. 이론적 배경과 개요 ····· 184
2. CBCA의 준거 내용 ····· 185
가. 일반적 표지 ····· 186
나. 특별한 표지 ····· 187
다. 내용적 특별함 ····· 188
라. 동기 관련 내용 ····· 189
마. 범죄 특징과 관련된 진술 요소(범죄 특징의 세부 묘사) ····· 190
3. CBCA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 191
Ⅱ. 현실모니터링 기법 ····· 192
1. 이론적 배경과 개요 ····· 192
2. 준거의 내용 ····· 193
가. 진술의 명료함과 생생함 ····· 193
나. 감각 정보 ····· 193
다. 공간적 정보 ····· 193
라. 시간적 정보 ····· 193
마. 이야기의 재구성 ····· 194
바. 감정 ····· 194
사. 현실성 ····· 194
아. 인지적 조작(cognitive operation) ····· 194
3. 현실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평가 ····· 194

제4절 증인신문 기법에 관한 연구 ····· 195
Ⅰ.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기법의 활용 ····· 195
1. 인지 면담 기법의 개요 ····· 196
가. 이론적 배경 ····· 196
나. 최초 고안된 인지 면담 기법 ····· 196
다. 개선된 인지 면담 기법 ····· 197
2. 인지 면담 기법의 활용 현황 ····· 198
3. 인지 면담 기법에 관한 연구 ····· 199
Ⅱ. 아동 면담에서의 바람직한 신문 기법 ····· 200
1. 아동 면담에서의 질문 유형 ····· 200
2. 아동 면담의 기법 ····· 202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 215
Ⅰ.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와 증인신문 ····· 215
Ⅱ. 증인 진술 분석의 측면 ····· 220
Ⅲ. 증인신문 기법의 측면 ····· 221
제5장 증인신문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225
제1절 개관 ····· 227
제2절 심리환경의 변화 ····· 228
Ⅰ. 전자소송의 실시 ····· 228
Ⅱ. 법정녹음의 시행 ····· 228
1. 증인신문 등에 대한 필수적 녹음·녹취서 작성 및 그 녹음물의 조서화 ·· 228
2. 법정녹음 실시 후 증인신문 등에 관한 설문조사 ····· 230
가. 법정녹음의 대상 ····· 230
나. 증인신문 시 개입신문 또는 보충신문 여부 ····· 230
다. 민사소송법령에 제시된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여부 ··· 231
라. 법정녹음 실시 후 소송지휘권 행사 ····· 231
마. 증인신문에 소요되는 시간 ····· 232
바. 법정녹음의 업무 증감 효과 ····· 233
사. 녹취서, 요약조서, 요지조서의 활용 ····· 234
3. 법정녹음 개선 관련 건의사항 ····· 234
제3절 효과적인 증인신문을 위한 소송운영의 방식 ····· 235
Ⅰ. 쟁점정리의 충실화 ····· 235
1.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 235
2. 쟁점정리의 요령 및 신문에서의 활용 ····· 236
Ⅱ.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운영 ····· 237
1. 집중증거조사의 의의 ····· 237
2. 일괄 신청 및 서면 신청 ····· 238
3. 증인 채택 결정과 절차 협의 ····· 238

4.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운영 ····· 239
Ⅲ. 증인신문의 개방적 진행 ····· 239
1. 개방적 진행의 의미 ····· 239
2. 기대 효과 ····· 240
Ⅳ. 증인신문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 241
1. 의견 청취의 의의와 유의사항 ····· 241
2. 의견 청취 방법의 예시 ····· 241
제4절 법령에 제시된 증인신문 방식의 적극적 활용 ····· 242
Ⅰ. 재판장 직권신문의 적극적 활용 ····· 242
1. 보충신문과 개입신문의 활용 ····· 243
가. 보충신문 ····· 243
나. 개입신문 ····· 245
2. 신문 순서의 변경(직권신문의 선행 방식) ····· 249
가. 의의 ····· 249
나. 적합한 사건의 유형 ····· 249
다. 시범재판부(민사 소액 단독) 실시 사례 ····· 250
라. 유의사항 ····· 251
3. 개방형 신문 선행 방식 ····· 252
가. 의의 ····· 252
나. 기대효과 및 적합한 사건 유형 ····· 252
다. 시범재판부(민사 중액 단독) 실시 사례 ····· 253
라. 유의사항 ····· 255
Ⅱ. 쟁점별 증인신문 방식 ····· 256
1. 배경 및 의의 ····· 256
2. 기대 효과, 장·단점 및 적합한 사건 유형 ····· 256
3. 활용상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 258
4. 구체적 시행방법 ····· 259
Ⅲ. 증인진술서의 활용 ····· 263
1. 의의 ····· 263
2. 기대 효과, 장·단점 및 적합한 사건 유형 ····· 263
3. 활용상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 265
4. 구체적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 266
Ⅳ. 대질신문 방식 ····· 268
1. 의의 ····· 268
2. 종래 활용이 저조한 이유 ····· 269
3. 기대 효과, 장·단점 및 적합한 사건 유형 ····· 269
4. 구체적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 270
Ⅴ. 증인신문사항의 수정명령 ····· 272

제5절 다양한 증인신문 기법의 활용 ····· 273
Ⅰ. 우호적 법정 분위기의 조성 ····· 274
1. 증인 신청 및 채부 단계에서 유의할 점 ····· 274
2. 시차제 소환 ····· 276
3. 재판에 참여하는 인원의 활용 ····· 276
4. 증인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신뢰관계 형성 ····· 277
5. 증언의 적극적 경청과 증인에 대한 격려 ····· 279
6. 증언 및 신문의 중단 문제 ····· 281
7. 법관의 자기 통제 ····· 282
8. 증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배려 ····· 283
9. 반대신문 내지 적대적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 284
Ⅱ. 실체 규명과 효율적 진행에 효과적인 증인신문 기법 ····· 285
1. 들어가며 ····· 285
2. 신문의 착안점 ····· 287
가. 증언의 정확성 관련 ····· 288
나. 증언의 진실성 관련 ····· 289
다. 증언의 근거 확인 ····· 290
라. 증인의 입장·관점 ····· 290
마. 진술의 일관성 ····· 291
바. 객관적 증거·정황과의 모순 ····· 292
사. 관찰 및 기억, 표현 능력 ····· 293
아. 증인의 태도 ····· 295
자. 증인신문, 진술과 경험칙 ····· 296
3. 질문 방식의 적절한 사용 및 제한되는 신문 방법 ····· 300
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 300
나. 후속 질문 ····· 302
다. 유도신문의 사용 문제 ····· 302
라. 복합신문 ····· 305
마. 중복신문 ····· 305
바. 쟁점과 무관한 신문 ····· 306
사.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 ····· 307
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 ····· 308
자. 명예를 해치는 신문과 적절한 탄핵의 문제 ····· 309
차. 그 밖에 제한되는 신문 ····· 310
4. 이의신청의 취급 방법 ····· 310
5. 기타 증인신문 기법의 사용 ····· 311
가. 문서 등을 이용한 기법 ····· 311
나. 증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기법 ····· 313

다. 인터넷 및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기법 ····· 313
제6절 기타 기술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의 검토 ····· 314
Ⅰ. 법정녹화 및 영상물의 조서화 ····· 314
Ⅱ. 영상 등 송수신에 의한 증인신문의 활용 ····· 315
Ⅲ. 고성능, 이동형 마이크의 법정 설치 ····· 317
Ⅳ. 기타 제안 ····· 318
제6장 결론 ····· 319

38.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Effect of Defendant's Sensibility to Punishment on Sentencing

연구총서 2016-13

연구책임자 :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표현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현주(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6년 10월 17일 발행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Ⅰ. 양형기준제도의 의미와 한계 ····· 21
Ⅱ. 형벌감수성의 보완적 기능 ····· 22
Ⅲ. 연구의 계기가 된 구체적 사례 ·····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8
제2장 형벌감수성에 대한 개념 분석 ····· 31
제1절 형벌감수성의 정의 ····· 33
Ⅰ. 형벌감수성의 인정 논거 ····· 33
1. 실정법적 근거 ····· 33

2. 형벌론에 따른 정당화 ····· 34
가. 응보형주의 ····· 34
나. 특별예방주의 ····· 34
3. 법이론적 근거 ····· 35
가. 양형 체계의 정의 실현의 구조 ····· 35
나. 실질적 평등의 원칙과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법적 질감미의 구현 ··· 36
Ⅱ. 형벌감수성의 의미 ····· 38
1. 개념 설정 ····· 38
2. 형벌감응성과의 구별 ····· 38
3. 개념화의 의미 ····· 39
Ⅲ. 형벌감수성의 체계별 유형에 관한 고려의 의미 ····· 40
1. 인격의 두 가지 측면 ····· 40
2. 타법규범에 대한 형법 체계 내에서의 비례성 고려의 문제 ····· 41
제2절 실무에서 형벌감수성에 대한 고려 상황 ····· 41
Ⅰ.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형벌감수성'을 언급한 경우의 사용례 ····· 41
1. '형벌감수성이 예민하다/둔하다': '개전의 정'과 유사한 의미 ····· 41
2. '형벌감수성이 높다/낮다': 표현의 일관성 결여 ····· 42
3.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는 논거로서의 형벌감수성 ····· 43
Ⅱ. 피고인에게 초래되는 부수적 불이익의 유형 ····· 45
1. 양형기준에서의 고려요소 ····· 45
2. 판례에서의 추가적 고려요소: 신분상 불이익 ····· 47
가. 형벌에 수반되는 신분상실에 대한 고려 ····· 47
나. 장래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고려 ····· 48
다. 평소 직업에 대한 성실성 및 상실감 고려 ····· 48
3. 제도적 차원의 고려 ····· 49
Ⅲ.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 및 결과 ····· 50
1. 판례를 기초로 재구성한 사안에 관한 문항 ····· 50
가. 신분상 불이익 관련 사안 ····· 50
나. 신분상 불이익 및 연령 관련 사안 ····· 51
다. 직무상 성실성 및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관련 사안 ····· 52
2. 형벌감수성에 관한 일반 문항 ····· 54
제3장 외국의 논의 ····· 57
제1절 미국 ····· 59
Ⅰ. 연방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른 양형 체계 ····· 59
1. 양형가이드라인의 설립 배경 ····· 59
2. 양형기준표의 특성 및 한계 ····· 60
3. 양형 이탈 정책 ····· 61
Ⅱ.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양형 이탈(departure) ····· 63

1. 연방법상 양형위원회에 대한 지시사항 ····· 63
2. 가이드라인 §5H ····· 65
가. §5H1.1: 연령 ····· 65
나. §5H1.2: 교육 및 직업적 재능 ····· 66
다. §5H1.3: 정신적·감정적 상태 ····· 66
라. §5H1.4: 신체적·병적 상태 ····· 66
마. §5H1.5: 고용기록 ····· 67
바. §5H1.6: 가족관계 및 책임 ····· 67
사. §5H1.8: 범죄 전력 ····· 68
아. §5H1.10: 인종(race), 성별(sex), 국적(national origin), 신조(creed), 종교(religion),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 68
3. 양형 이탈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 ····· 69
가. Koon v. United States ····· 69
나.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 71
다. 의학적으로 특수한 상태 ····· 73
라. 피고인의 장래 직업 상실에 대한 고려 ····· 75
마. 부양가족이 있는 피고인 ····· 76
바. 인종(race), 성별(sex), 국적(national origin), 신조(creed), 종교(religion),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 79
Ⅲ. 양형 변경(variance) ····· 80
1. 개념 ····· 80
2. 판례의 태도 ····· 80
가. §3553(a)(1)에 근거한 변경 ····· 80
나. §3553(a)(2)에 근거한 변경 ····· 82
다. §3553(a)(3)에 따른 형벌 종류의 선택 ····· 82
Ⅳ.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 ····· 83
1. 개념 ····· 83
2. 신분상 불이익 고려의 정당화 논거 ····· 86
3. 판례의 태도 ····· 88
4. 주별 제도적 현황 ····· 89
가. 뉴욕 주 ····· 90
나. 캘리포니아 주 ····· 93
5. 사전양형보고서 ····· 96
Ⅴ. 시사점 ····· 97
제2절 영국 ····· 98
Ⅰ. 양형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운용 ····· 98
1. ‘2003년 형사사법법’과 ‘2009년 검시관 및 사법법’ ····· 98
2. 양형의 적용 과정 ····· 100

Ⅱ. 유형별 범주 내에서의 감형 ····· 102
1. 개별적 감경(personal mitigation) ····· 102
2. 부수적 불이익(collateral damage)의 고려 ····· 106
가. 인정 논거 ····· 106
나. 유형 ····· 108
다. 사전양형보고서의 활용 ····· 111
Ⅲ. 시사점 ····· 111
제3절 독일 ····· 112
Ⅰ. 양형이론 및 형벌감수성의 이론적 근거 ····· 112
1. 책임에 적합한 형벌에 관한 관점 대립 ····· 112
가. 유일형이론(Theorie von der Punktstrafe) ····· 112
나. 책임범위이론(Schuldrahmentheorie) ····· 113
2. 책임과 예방의 고려 관계에서의 관점 대립 ····· 113
가. 판단여지이론(Spielraumtheorie) ····· 113
나. 위가이론(Stellenwerttheorie) ····· 114
다. 범행비례적 양형이론(Tatproportionale Strafzumessungstheorie) ·· 114
Ⅱ. 형벌감수성(Strafempfindlichkeit)의 개념 ····· 115
1. 의의 ····· 115
2. 유래 ····· 116
3. 형벌감응성(Strafempfänglichkeit)과의 구별 ····· 116
Ⅲ. 실정법적 근거 ····· 117
1. 형법 제46조: 양형의 원칙 ····· 117
가. 제46조 제1항: 형벌감수성의 근거조문에 대한 견해 대립 ····· 118
나. 제46조 제1항 제2문에 대한 해석 ····· 119
다. 제46조 제2항 ····· 120
2. 형법 제42조: 벌금형에 대한 고려 ····· 120
3. 형법 제54조: 병합형 ····· 121
4. 형법 제60조: 형의 면제 ····· 121
5. 형사소송법 제267조: 양형이유의 기재 중시 ····· 122
Ⅳ. 형벌감수성의 정당화 근거와 유형 ····· 123
1. 정당한 책임상쇄(Gerechter Schuldausgleich) ····· 123
2. 유형의 분류 ····· 124
Ⅴ. 판례의 동향 ····· 125
1. 개인에게 특별한 형벌감수성 ····· 125
가. 초범에 대한 고려 ····· 125
나. 외국인에 대한 예외적 고려 ····· 125
다. 고령에 대한 고려 ····· 126
라. 질병에 대한 고려 ····· 126

마. 가족에 대한 부정적 결과 발생에 대한 고려 ····· 127
2. 모든 법적 제재의 무게를 총체적 관점에서 고려한 형벌감수성 ····· 127
가. 신분상 불이익의 고려 사안 ····· 127
나. 유형별 사실관계 및 판례의 태도 ····· 128
3. 장기간의 절차진행에 따른 부담 ····· 133
Ⅵ. 시사점 ····· 135
제4절 스웨덴 ····· 136
Ⅰ. 스웨덴 형법의 연혁을 통해 본 양형판단의 준거점 ····· 136
1. 1965년 형법의 특별예방적 양형 ····· 136
2. 1989년 형법의 범행비례적 양형 ····· 136
Ⅱ. 형벌감수성의 고려 규정 ····· 138
1. 책임과 무관한 형평적 요인의 고려 ····· 138
2. 감경 또는 면제사유 ····· 138
Ⅲ. 시사점 ····· 140
제5절 프랑스 ····· 141
Ⅰ. 양형이론의 연혁 ····· 141
1. 구체제(Ancient régime)하에서 자의적인 형벌 부과와 프랑스 대혁명
직후 전개된 양형이론 ····· 141
2. 고정적인 형벌 제도에 대한 비판과 형의 개별화 원리 도입 ····· 142
3.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사회방위론의 대두 ····· 142
4. 형벌의 개별화 원칙 확장 ····· 144
Ⅱ. 프랑스 형법상 양형 원칙과 기준 ····· 145
1. 프랑스 형법상 양형 원칙 ····· 145
가. 형의 인적 개별화 원칙(le principe de la personnalisation de la peine)····· 145
나. 형벌의 필요성 원칙(le principe de nécessitéde la peine) ····· 147
다. 양형이유 제시 의무의 원칙적 부존재 ····· 147
2. 형의 인적 개별화를 위하여 법관이 고려할 기준 ····· 148
가. 객관적 기준: 범죄의 정황(les circonstances de l'infraction) ····· 148
나. 주관적 기준: 범인의 성행(la personnalitéde l'auteur) ····· 149
다. 벌금형에서 특수한 양형기준 : 자산과 납부 능력
(les ressources et les charges du coupable) ····· 149
3. 최근 프랑스 형법상 양형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 150
가. 입법 배경 ····· 150
나. 주요 내용 ····· 150
Ⅲ. 형벌감수성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체법적 근거 ····· 151
1. 형벌감수성의 양형 반영에 관한 논의 여부 ····· 151
2. 형벌감수성을 형의 선고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 ····· 152
3. 형벌감수성을 형의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 ····· 153

4. 형벌감수성을 범죄기록에서 고려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 ····· 154
Ⅳ. 형벌감수성의 양형 반영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실무 운용 ····· 157
1. 인적 개별화를 위해 양형에서 고려한 요소들에 관한 하급심 판례 ····· 157
2.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하급심 판례 ····· 158
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한 사례 ····· 158
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사례 ····· 159
다. 피고인의 가족 관계 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례 ····· 160
3. 범죄기록 제2호 카드 기재에 관한 신분상 불이익과 관련된 판례 ····· 161
가. 하급심 판례 ····· 161
나. 파기원 판례 ····· 162
4. 양형이유 설시에 관한 사법적 통제를 한 파기원의 판례 ····· 163
가. 상고를 기각한 판례 ····· 163
나.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 ····· 163
Ⅴ. 형벌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164
1. 인적사항 조사(l'enquête de personnalité) ····· 165
가. 입법 연혁 ····· 165
나. 조사의 목적과 내용 ····· 165
2. 신속한 사회환경 조사(l'enquête rapide) ····· 167
3. 의학적·심리학적 검사 ····· 168
Ⅵ. 시사점 ····· 168
제6절 일본 ····· 169
Ⅰ. 양형의 판단기준 및 고려요소 ····· 169
1. 개정 형법 초안의 양형 관련 규정 ····· 169
2. 양형시세(量刑相場)의 존재 ····· 170
3. 양형 사정의 종류 ····· 172
가. 범죄의 동기, 방법 및 양태 ····· 173
나. 범죄결과의 대소, 정도, 수량 ····· 174
다. 범인의 성격 ····· 174
라. 범인의 일신상 사정 ····· 175
마. 범죄 전력 ····· 180
바. 여죄(餘罪) ····· 180
사. 피고인의 반성 ····· 181
아. 손해배상 ····· 182
자. 자백·부인(否認) ····· 183
차. 사회적 영향 ····· 184
카. 사회의 처벌 감정 ····· 185
타. 사회적 제재 ····· 185

파. 피해자 측 사정 ····· 189
Ⅱ. 형벌감수성에 관한 논의 ····· 190
1. 대체적 해악을 산입하여 형벌감수성을 인정하는 견해 ····· 190
가. '주관적' 형벌감수성의 부정 ····· 190
나. 대체적 해악부과의 고려 ····· 191
2. 형벌감수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 193
가. 객관적·주관적 형벌감수성 ····· 193
나. 형벌감수성의 개인적·일반적 측면 ····· 194
3. 형벌감명성과의 구별 ····· 195
Ⅲ. 기타 양형심리 강화를 위한 제도 ····· 198
1. 판결 전 조사제도의 도입 실패 ····· 198
2. 재판원제도의 도입 ····· 199
Ⅳ. 시사점 ····· 201
제4장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 203
제1절 형벌감수성 고려의 정당성 판단 ····· 205
Ⅰ. 형벌감수성의 인정 논거 ····· 205
1. 형벌 적용의 개별화 필요성 ····· 205
2. 자비 또는 연민에 근거한 형평의 차원 ····· 205
3. 정당한 책임상쇄 또는 대체적 해악부과 ····· 206
Ⅱ. 한계설정의 필요성 및 제한 방법 ····· 206
1. 양형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제한적 고려 ····· 206
2.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진 제한적 적용 ····· 207
제2절 형벌감수성 고려 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 208
Ⅰ. 판결문 양형이유의 충실한 기재: 법관에게 부여된 논증의무의 이행 ····· 208
Ⅱ. 양형기준의 수정 방안 ····· 211
Ⅲ. 형법에의 반영 방안: 형벌감수성 고려 규정의 명시 및 형벌 종류의 다양화 ····· 212
Ⅳ. 양형조사제도의 강화 방안 ····· 213
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정보접근의 용이화 방안 ····· 214
제5장 결론 ····· 215

39.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Judicial Reform and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n the Netherlands

연구총서 2016-14

연구책임자 : 김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10월 25일 발행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제2절 연구의 방법 ····· 24
제3절 네덜란드 헌법 및 법률 역사 ····· 25
I. 네덜란드 헌법 개관 ····· 25
1. 현행 헌법의 연혁 및 구성 ····· 25
2. 기본권 ····· 25
3. 정부 형태 ····· 26
가. 입헌군주제 ····· 26
나. 양원제 ····· 26
다. 내각 및 각료 ····· 26
라. 국사원(Council of State, Raad van State) ····· 27
II. 네덜란드 법률 역사(legal history) 개관 ····· 27
1. 특징 ····· 28

2. 법률 형성과정 ····· 28
제2장 네덜란드 법원의 구성 및 관할····· 31
제1절 일반 법원 ····· 33
I. 지방법원(District Courts, Rechtbanken) ····· 33
1. 설치 및 구성 ····· 33
2. 재판부별 관할 사건 ····· 33
가. 하위지방부(sub-district sector) ····· 33
나. 형사부(criminal law) ····· 34
다. 민사·가사부(civil/family law sector) ····· 34
라. 행정부(administrative law sector) ····· 34
II. 고등법원(Courts of Appeals, Gerechtshoven) ····· 35
1. 설치 ····· 35
2. 관할 ····· 35
제2절 대법원(Supreme Court, Hoge Raad der Netherlanden) ····· 36
I. 역사 ····· 36
II. 대법원의 구성 ····· 37
1.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구성 ····· 37
2. 재판부 구성 ····· 38
3. 대법관 임명 절차 ····· 38
가. 법적 근거 ····· 39
나. 일반적인 대법관 임명절차 ····· 39
다.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내부 절차 ····· 40
라. 대법관 구성의 변화 ····· 43
III. 대법원 내 법률자문실(prosecution office at the Supreme Court) ····· 43
1. 구성 ····· 43
2. 최고법률자문관(procurator general)의 주된 임무 ····· 44
3. 최고법률자문관(procurator general)의 특별 임무 ····· 44
가. 법관에 대한 진정(complaint) ····· 44
나. 법관에 대한 정직(suspension) 또는 파면(dismissal) 신청 ····· 44
다. 통일적인 법적용을 위한 상고(cassation in the interest of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law) ····· 45
라. 고위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 ····· 45
IV. 심리 및 판결 ····· 46
1. 심리 ····· 46
2. 판결 ····· 46
3. 자문 ····· 47
4. 소송대리 ····· 47
V. 위헌법률심사제도 ····· 47

1. 헌법상 위헌법률심사제도 불인정 ····· 47
2. 위헌법률심사제도 도입 제안 ····· 48
VI. 간이한 상고기각 또는 상고각하 제도 ····· 48
1. 상고기각 ····· 48
2. 상고각하 ····· 49
VII. 사건 통계 ····· 50
1. 대법원 ····· 50
2.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 ····· 50
가. 접수사건 수(2010년-2014년) ····· 50
나. 처리사건 수(2012년-2014년) ····· 51
다. 접수사건 대비 처리율(2012년-2014년) ····· 51
제3절 특별행정법원 ····· 52
I. 연혁 ····· 52
II. 중앙항소법원(Central Appeals Tribunal, Centrale Raad van Beroep) ·· 52
III. 통상·산업 항소법원(Trade and Industry Appeals Tribunal, College van Beroep van het bedrijfsleven) ····· 53
IV. 국사원 행정관할부(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 De Raad van State) ····· 54
1. 관할 사건 ····· 54
2. 구성 ····· 54
제3장 네덜란드의 사법개혁 ····· 57
제1절 사법위원회 ····· 59
I. 설립배경 ····· 59
II. 사법위원회의 지위, 협의 상대방(partner) 및 조직 ····· 59
1. 특별한 지위 ····· 60
2. 협의 상대방 ····· 60
3. 조직 및 구성 ····· 60
III. 사법위원회의 법적 책무 ····· 61
1. 사법부 재정 ····· 61
2. 사법부 운영 ····· 63
3. 사법의 질적 개선 ····· 64
가. 사법의 질(quality) ····· 64
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RechtspraaQ) ····· 64
다. 사법신뢰도 내지 만족도 조사 실태 ····· 69
4. 입법 자문(advice on legislation) ····· 71
IV. 사법위원회의 기타 책무 ····· 71
1. 학문적 연구(academic research) ····· 71
2. 법관선발과 연수 ····· 72

3. 사법연수원(SSR) ····· 72
4. 소통(communications) ····· 73
가. 공보실 설치 및 언론가이드라인 수립 ····· 73
나. 언론 가이드라인(press guidelines) ····· 73
다. 공보 판사(press judge) ····· 77
라. 공보 판사 위원회 ····· 86
마. 공보 자문관 ····· 86
바. 공보 조직의 규모 ····· 86
제2절 네덜란드 법원의 사법개혁 ····· 88
I. 사법개혁의 배경 ····· 88
1. 1998년 법무성 조사결과 ····· 88
가. 사건처리기간 지연에 대한 불만 ····· 88
나. 판결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 ····· 88
다.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부족 ····· 89
2. 전략적 장기 계획(Vision 2020)의 수립 ····· 89
II. 전략적 장기 계획(Vision 2020)의 내용 ····· 90
1. 주요 쟁점 ····· 90
2. 핵심 이념(core pillar)과 사법부의 임무 ····· 91
가. 핵심 이념 ····· 91
나. 사법부의 임무 ····· 92
3. 분야별 주요 내용 ····· 92
가. 4개 분야의 구성 ····· 92
나. 제1 분야: 사법부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 92
다. 제2 분야: 핵심 가치 ····· 93
라. 제3 분야: 법률시스템의 효율성 ····· 94
마. 제4 분야: 조직 및 운영 ····· 95
III. 전략적 장기계획의 실행 및 평가 ····· 96
1. 실행기관 ····· 96
2. 실행 및 평가체계 ····· 96
가. 연간계획서 및 연간보고서의 작성 ····· 96
나. 사법위원회의 평가 ····· 97
다. 각 법원의 책무 ····· 97
IV. 2011-2014년 사법부 의제(Agenda of the Judiciary 2011-2014) ····· 98
1. 수립 과정 ····· 98
2. 수립 근거 ····· 98
가. 2008-2011년 사법부 의제 평가 ····· 98
나. 평가위원회 조사 ····· 98
다. 법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 98

3. 내용 ····· 99
가. 법치주의 강화(목표 1) ····· 99
나. 핵심가치 강화(목표 2) ····· 99
다. 사회적 요구의 충족(목표 3) ····· 100
라. 조직과 운영의 전문성 추구(목표 4) ····· 101
마. 법원 관할구역 개혁(목표 5) ····· 101
V. 법원 관할구역 개혁(reform of the judicial map) ····· 101
1. 개혁 배경 ····· 101
2. 개혁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102
가. 법원 및 법원 운영위원회의 수 감소 ····· 102
나. 관할구역 개혁의 기준 및 기대효과 ····· 102
3. 다른 유럽 국가의 경향 ····· 104
VI.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 104
1. 도입 배경 ····· 104
2. 주요 내용 ····· 105
3. 전망 ····· 106
VII. 사법개혁의 성과 ····· 106
1.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 ····· 106
2. 성과 ····· 107
가. 계량적 방법에 의한 성과측정 ····· 107
나. 새로운 평가수단의 개발 ····· 108
다. 구체적인 사법개혁 성과 ····· 108
제4장 네덜란드의 법관임용제도 ····· 115
제1절 법관후보자 선발 및 연수제도의 연혁 ····· 117
I. 대륙법계 국가의 법관임용절차의 특성 ····· 117
1. 공개경쟁을 통한 선발과 장기간의 연수 ····· 117
2. 적성검사 또는 인성검사의 요구 ····· 117
II. 네덜란드 법관임용제도의 변천 및 그 배경 ····· 118
1. 1956년 이전 법관임용방식 ····· 118
2. 1957년-013년 법관임용방식 ····· 118
가. 개선배경 및 성과 ····· 118
나. 법관임용 및 연수제도의 구체적 내용 ····· 119
3. 2014년 이후 법관임용방식 ····· 121
가. 개선배경 ····· 121
나. 법관 직무명세서(job profile)의 수립 ····· 123
다. 종래 연수제도의 문제점 ····· 126
라. 새로운 법관후보자선발 및 연수제도 수립 ····· 127
제2절 현행 법관후보자 선발제도 ····· 128

I. 법관후보자(trainee judge) 모집 ····· 128
1. 법관선발위원회(National Selection Committee for the Judiciary,
De Landelijke Selectiecommissie Rechters, 이하 'LSR') ····· 128
가. 설립경위 ····· 128
나. 법관선발위원회(LSR)의 구성 ····· 128
다. 구성원 임명, 임기 및 면직 ····· 129
라. 법관선발위원회(LSR) 위원 선발을 위한 선발위원회(Selection Committee) ····· 129
마. 사무국(secretariat) ····· 130
바. 주요 업무 ····· 130
2. 법관후보자의 지원 자격 신설 및 논란 ····· 131
가. 자격 신설 ····· 131
나. 논란 및 그 배경 ····· 131
3. 법관후보자 모집(recruitment) ····· 132
가. 법관후보자 모집 현황 ····· 132
나. 절실한 현대화의 요구 ····· 132
다. 개선방안 ····· 133
라. 모집 시기 및 인원 ····· 135
II. 단계별 선발절차 ····· 136
1. 지원서 제출 ····· 136
2. 서류심사((letter selection) ····· 136
3. 범죄경력조회(background checks) ····· 137
4. 분석인지평가(analytical cognitive test) ····· 137
5. 예비면접(preliminary interview) ····· 138
6. 추천서 등 심사(reference and official Information) ····· 139
7. 인성평가(assessment) ····· 139
가. 도입배경 ····· 139
나. 평가방식 ····· 140
다. 평가항목 ····· 140
라. 평가결과의 종류 ····· 141
마. 평가결과의 활용 ····· 141
8. 법관선발위원회(LSR)의 면접(interview) ····· 142
9. 법관선발위원회(LSR)의 결정 ····· 143
10. 법관후보자 모집법원의 선발(selection in the court) ····· 143
11. 채용결정(intake) ····· 144
12. 절차 종료 ····· 145
III. 새로운 법관후보자 선발제도에 대한 보완점 ····· 145
1. 법관후보자의 남녀비율 ····· 145
2. 충분한 지원자의 확보 ····· 146

제3절 현행 법관후보자 연수제도 ····· 147
I. 연수제도 개혁의 경과 ····· 147
1. 'Vision of the initial training for judicial system 2011-2014'의 수립····· 147
2. 새로운 법관연수제도의 시행 ····· 148
II. 새로운 법관연수 구상(A new concept for the initial training programme)····· 148
1. 전문적 교육 ····· 148
2. generalist 법관 양성 ····· 149
3. 개인 맞춤형 연수 ····· 149
III. 새로운 법관연수의 교육철학(learning philosophy) ····· 150
1. 주요한 교육철학 ····· 150
2. 연수문화의 변화(change in the training culture) ····· 150
3. 제도적 반영 ····· 151
가. 주요 내용 ····· 151
나. 법관후보자에 대한 감독 및 평가제도 ····· 152
IV. 국가채용위원회(National Intake Committee) ····· 152
1. 연수기간 및 연수 중점사항의 결정 ····· 152
2. 단계별·경력별 연수기간 ····· 153
가. 단계별 연수기간 ····· 153
나. 경력별 연수기간 ····· 153
V. 사법연수원(SSR) ····· 154
1. 개요 ····· 154
2. 조직과 구성 ····· 154
VI. 예비단계(preliminary phase) 실무수습 ····· 155
1. 개요 ····· 155
2. 주요 내용 ····· 155
가. 도입주(induction week) ····· 155
나. 이론교육(learning environment, 사법연수원 실시) ····· 155
다. 현장근무연수(work-training environment, 근무예정법원 실시) ··· 156
라. 단기 검찰 실무수습(public prosecution service internship) ····· 156
마. 개인별 학습계획(personal learning plan, PLP) 수립 ····· 156
바. 자기 적성평가(self-evaluation) ····· 157
VII. 본단계(main phase) 실무수습 ····· 158
1. 개요 ····· 158
2. 현장근무연수(work-training environment) ····· 158
3. 교육연수(learning professional) ····· 158
4. 인턴십(internship) ····· 159
VIII. 평가 ····· 159
1. 국가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 159

가. 감독과 평가의 분리 ····· 159
나. 평가자료 및 평가항목 ····· 160
다. 개선 내용 ····· 160
2. 제1차 중간평가(first interim assessment) ····· 160
3. 제2차 중간평가(second interim assessment) ····· 161
4. 보충평가(supplementary assessment) ····· 161
5. 최종평가(final assessment) ····· 162
6. 평가인터뷰(evaluation interview) ····· 162
7. 사법연수원(SSR) 및 실무수습법원 지도관의 역할 ····· 162
IX. 새로운 법관연수제도의 향후 전망 ····· 164
X. 항소법원 법관선발 ····· 164
제4절 네덜란드 법관 관련 통계 ····· 165
I. 법관 수 ····· 165
1. 전체 법관 수 ····· 165
2. 법관 수 변동추이 ····· 166
3. 법관의 심급별 분포 비율 ····· 168
4. 사법부 전체의 인력 규모 ····· 170
II. 법관의 보수 ····· 171
1. 초임 법관 보수(salaries of judges at the beginning of the career) ··· 171
가. 연봉 수준 ····· 171
나. 연봉 추이 ····· 172
2. 대법관 보수(salaries of judges at the end of the career) ····· 172
가. 연봉 수준 ····· 172
나. 연봉 추이 ····· 173
III. 법관의 남녀비율 ····· 173
1. 심급별 남녀 법관 분포 ····· 173
2. 전체 법원의 남녀 법관 분포 ····· 174
3. 지방법원장 및 고등법원장의 남녀 분포 ····· 175
제5장 네덜란드 검찰제도····· 177
제1절 조직과 구성 ····· 179
I.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General Prosecution Service) ····· 179
II. 국립검찰청(National Public Prosecutor's office) ····· 179
III. 검찰총장 위원회(The Board of Prosecutors-General) ····· 180
제2절 정치적 책임(political accountability) ····· 181
제3절 검사의 임용절차 ····· 182
제4절 검사의 권한과 책무 ····· 183
I. 수사의 책임자 ····· 183
II.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등 ····· 184

1. 사건 송치 ····· 184
2. 불기소결정(non-prosecution) ····· 185
3. 협상 또는 제재명령 ····· 185
가. 협상 ····· 185
나. 제재명령 ····· 186
4. 소환장(writ of summons) 발부 ····· 187
III. 공소 유지 ····· 187
IV. 기타 ····· 188
제5절 사건처리 현황 ····· 188
제6장 변호사 및 교수 등 법률전문직 양성제도 ····· 191
제1절 변호사 ····· 193
I. 변호사 시보 등록 요건 ····· 193
II. 변호사 시보 연수제도 ····· 193
III. 변호사 연수제도의 개선 ····· 194
1. Law Firm School(LFS) ····· 194
2. 평생교육의무 ····· 195
IV. 기타 사항 ····· 195
1. 변호사 수 및 변동 추이 ····· 195
2. 여성변호사의 비율 및 활동 ····· 197
3. 네덜란드 변호사의 개업형태 및 지역분포 ····· 197
4. 지역한정대리 ····· 197
제2절 교수 ····· 198
I. 박사논문 ····· 198
1. 논문제출 자격 ····· 198
2. 논문심사절차 ····· 198
II. 대학교수 ····· 200
1. 대학교수의 종류 ····· 200
2. 조교 ····· 200
3. 종신지위보증 ····· 200
4. 교수의 실무겸직 ····· 201
5. 실무가의 교수임용 ····· 201
제7장 결론 ····· 203

40.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Practical Training for New Admittees to the Korean Bar

연구총서 2016-15

연구책임자 : 김윤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시훈(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선(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표현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10월 21일 발행

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9

I. 연구 방법 ····· 29

1. 문헌 연구 ····· 29

2.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터뷰 ····· 29

3. 해외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 ····· 31
4. 법조인 양성 제도 전문가 세미나 ····· 32
II. 연구 범위 ····· 32
제2장 외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 고찰 ····· 35
제1절 서설 ····· 37
제2절 미국 ····· 37
I. 개관 ····· 37
II. 미국의 로스쿨 내 실무교육 ····· 38
1. 미국의 로스쿨 제도 개관 ····· 38
2. 로스쿨의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 39
가. 교육과정(커리큘럼) ····· 40
나. 교육방법 ····· 41
3. 로스쿨 학생들의 법원실무수습(Judicial Externship) ····· 44
가. 로스쿨의 외부연수(Externship) 제도 ····· 44
나. 법원실무수습(Judicial Externship)의 내용 ····· 45
다. 미국 내 평가 ····· 47
4. 법원의 로스쿨 원외 재판 ····· 48
가. 개요 ····· 48
나. 캘리포니아 주(州) 대법원 ····· 48
다. 연방제9항소법원 ····· 48
5. 로스쿨 Legal Clinic의 법원 Pro Bono Program 참여 ····· 48
가. 의의 ····· 49
나. 로스쿨 Legal Clinic의 연방제9항소법원 Pro Bono Program 참여 ·· 50
6. 뉴욕 주의 프로보노 스칼라 프로그램(Pro Bono Scholars Program, PBSP) ····· 51
가. 취지 ····· 51
나. 내용 ····· 52
다. 변호사등록 요건과 연계 ····· 53
라. 구체적인 활동 사례 ····· 53
7. 모의재판(Moot Court) ····· 54
III.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교육 ····· 54
1. 서론 ····· 54
2. 변호사협회의 계속연수(CLE) 프로그램 ····· 55
가. 뉴욕 주 MCLE 요건 ····· 55
나. CLE의 사례 ····· 58
3. 법률사무소 실무교육 프로그램 ····· 64
가. Latham & Watkins LLP 사례 ····· 64
나. Weil Gotshal & Manges LLP 사례 ····· 67
IV. 시사점 ····· 69

제3절 영국 ····· 72
I. 개관 ····· 72
II.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의 구분 ····· 73
III. 사무변호사(solicitor)의 양성 과정 ····· 75
1. 개요 ····· 75
2. 법학교육과정 ····· 75
가. 법학학사학위 소지자과정(Law Graduate Route) ····· 75
나. 법학학사학위 미소지자과정 ····· 76
3. LPC 과정 ····· 77
가. 개요 ····· 77
나. 구체적인 내용 ····· 78
다. 비용 ····· 78
4. PRT 과정 ····· 79
가. 개요 ····· 79
나. 실무수습기관의 요건 ····· 79
다. 실무수습의 현황 ····· 80
라. PSC 과정 ····· 81
5. 사무변호사 등록 ····· 82
IV. 법정변호사(barrister)의 양성 과정 ····· 82
1. 개요 ····· 82
2. 법학교육과정 ····· 83
3. BPTC 과정과 실무수습 ····· 83
V. 시사점 ····· 83
제4절 캐나다 ····· 84
I. 개관 ····· 84
II. 로스쿨에서의 교육 ····· 85
III. LSAP(실무연수) ····· 85
제5절 독일 ····· 87
I. 개관 ····· 87
II. 독일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특징 ····· 88
III. 독일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내용 ····· 90
1.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 ····· 90
가. 1단계 법조인 양성 제도의 시도 ····· 90
나. 1단계 법조인 양성 제도의 시행 ····· 90
다. 1단계 법조인 양성 제도 시행의 폐지 ····· 97
라. 1단계 법조인 양성 제도의 포기 이후의 논의 ····· 98
2.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 ····· 100
가. 법적 근거 ····· 100

나. 현행 제도의 목표 ····· 100
다. 현행 제도의 구체적 내용 ····· 103
IV. 시사점 ····· 119
제6절 네덜란드 ····· 121
I. 개관 ····· 121
II. 판사 및 검사 양성 제도 ····· 122
III. 변호사 양성 제도 ····· 123
1. 변호사 시보 등록 요건 ····· 123
2. 실무연수 제도 ····· 123
3. 변호사 연수 제도의 개선 ····· 124
가. Law Firm School(LFS) ····· 124
나. 평생교육의무 ····· 125
제7절 벨기에 ····· 125
I. 개관 ····· 125
II. 판사 및 검사 양성 제도 ····· 126
III. 변호사 양성 제도 ····· 130
1.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 130
2. 변호사 실무수습 절차 ····· 131
가. 개요 ····· 131
나. 지도 변호사에 의한 실무수습 과정 ····· 132
다. 변호사협회에 의한 연수 과정 ····· 133
3. 변호사 현황 ····· 135
제8절 스웨덴 ····· 136
I. 개관 ····· 136
II. Advokat이 되기 위한 요건 ····· 136
III. 법학교육 ····· 138
IV. Advokat이 되기 위한 변호사시험과 실무연수 ····· 139
제9절 이탈리아 ····· 140
I. 개관 ····· 140
II. 법학교육 ····· 140
III. 실무연수 ····· 141
제10절 프랑스 ····· 143
I. 개관 ····· 143
II. 프랑스의 사법관 양성 제도 ····· 143
III. 프랑스의 변호사 양성 제도 ····· 144
1. 프랑스 변호사 제도의 배경 ····· 144
2. 변호사연수원을 통한 선발 ····· 146
가. 개관 ····· 146

나.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 147
다. 변호사연수원의 연수 ····· 153
라. 변호사 자격 취득 ····· 160
마. 변호사 자격 취득 후의 연수 ····· 161
IV. 시사점 ····· 163
제11절 일본 ····· 164
I. 개관 ····· 164
II. 관련 규정 ····· 165
III. 법조인 양성 제도 개관 ····· 165
1. 법과대학원 ····· 165
가. 개관 ····· 165
나. 고시에서 정한 커리큘럼 ····· 167
다.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한 현상과 평가 ····· 168
라. 재판관 등 법과대학원 파견 제도 ····· 171
마. 사법연수소의 법과대학원에의 노하우 제공 ····· 172
2. 시험 제도 ····· 172
가. 신사법시험 ····· 172
나. 사법시험예비시험 ····· 174
3. 신(新)사법수습 ····· 178
IV. 시사점 ····· 179
제12절 소결 ····· 180
제3장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소 교육····· 183
제1절 서설 ····· 185
제2절 법과대학원 제도 도입 전 사법수습 ····· 185
I. 개관 ····· 185
1. 사법수습의 의미 ····· 185
2. 사법수습의 개요 ····· 186
II. 사법수습의 구체적 내용 ····· 186
1. 전전(戰前)의 법조인 양성 제도 ····· 186
2. 전후(戰後)의 법조인 양성 제도(사법수습 제도) ····· 186
3. 수습기간 ····· 187
가. 수습기간의 변천 ····· 187
나. 최초의 사법수습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배경 ····· 187
4. 사법수습의 구성 ····· 188
제3절 일본의 법과대학원 도입과 현행 사법연수소 교육 ····· 190
I. 일본 사법개혁의 경과 ····· 190
1. 개관 ····· 190
2.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서 발표 ····· 191

3.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중 '법조양성검토회' ····· 192
II. 법과대학원 도입 과정 ····· 193
1. 개관 ····· 193
2. 논의과정 ····· 193
3.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특징 ····· 195
가. 설립인가의 특징 ····· 195
나. 법학부와 법과대학원의 양립 허용 ····· 195
다. 예비시험 제도 ····· 196
4. 법과대학원의 개혁 논의 ····· 196
III. 법과대학원의 실무 관련 커리큘럼 ····· 198
1. 교토대학법과대학원의 커리큘럼 ····· 198
가. 실무 관련 과목 ····· 198
나. 1년차 과정 ····· 198
다. 2·3년차 과정 ····· 198
2. 게이오대학법과대학원의 커리큘럼 ····· 199
가. 실무 관련 과목 ····· 199
나. 1년차 과정 ····· 199
다. 2·3년차 과정 ····· 199
3. 규슈대학법과대학원의 커리큘럼 중 리걸 클리닉 ····· 200
가. 규슈대 리걸 클리닉 법률사무소 ····· 200
나. 리걸 클리닉 I ····· 200
다. 리걸 클리닉 II ····· 201
4. 와세다대학법과대학원 등의 리걸 클리닉 ····· 201
가. 현황 ····· 201
나. 와세다대학법과대학원의 임상법학교육 ····· 202
5. 간사이(關西)대학법과대학원의 나카노시마(中之島) 법률 클리닉 ····· 202
6. 총평 ····· 203
IV. 신사법수습 제도 도입 당시의 논의 ····· 205
1. 신사법수습 도입 당시 설계된 신·구 제도 비교 ····· 205
2. 새 제도 도입 당시 논의의 개요 ····· 205
가. 사법연수소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 ····· 206
나. 사법연수소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 ····· 208
3. 변호사단체의 입장 ····· 208
4. 급여제에 관한 논의 ····· 209
V. 신사법수습의 내용 ····· 209
1. 개요 ····· 210
2. 신사법수습의 이념 ····· 211
3. 신사법수습의 특징 ····· 212

4. 신사법수습의 내용 ····· 213
가. 신사법수습의 구조 ····· 213
나. 도입수습의 폐지와 부활 ····· 213
다. 분야별 실무수습과 선택형 실무수습의 현황 ····· 222
라. 분야별 실무수습 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집합수습의 현황 ····· 235
마. 사법수습생 자격 취득 및 사법수습생의 의무 ····· 236
바. 시험과 평가 ····· 236
5. 신사법수습의 향후 과제 ····· 239
가. 연수 체제의 정비 ····· 239
나. 변호사 지도담당관 확충의 문제 ····· 240
다. 획일적인 실무수습기간에 대한 비판 ····· 240
VI. 신사법수습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 241
1. 분야별 실무수습 충실화 방안 ····· 241
2. 대여제와 관련한 논의 ····· 244
가. 대여제의 운영 현황 ····· 244
나. 급여제의 폐지와 관련한 논거 ····· 246
다. 대여제에 관한 찬반 의견 소개 ····· 247
VII. 신사법수습 제도에 대한 평가 ····· 253
1. 구사법시험 시대의 법조인들의 평가: 사법수습의 중요성 강조 ····· 253
2. 신사법시험을 치른 사법수습생들의 평가 ····· 253
가. 실무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 ····· 253
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 ····· 255
다. 선택형 실무수습의 활용 ····· 256
라. 법조전문가로 양성되기 위한 필수적 코스 ····· 257
3. 법과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들 또는 입학예정자들의 평가 ····· 259
VIII. 법조 양성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 261
1. 개관 ····· 261
2. 사법수습의 방향과 관련한 논의 ····· 261
3. 계속교육(継続教育)과 관련한 논의 ····· 262
4.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 ····· 263
제4절 일본 사법연수소 사법수습 제도의 주요 쟁점 ····· 264
I. 사법연수소에서의 전원 통일수습 ····· 264
II. 1년의 수습기간 ····· 265
1. 기간 단축 ····· 265
2. 수습기간과 관련한 논의 ····· 265
III. 수습내용 ····· 266
1. 도입수습의 구성 ····· 266
2. 실무수습과 후기 집합수습 ····· 267

IV. 급여제 폐지 및 대여제를 둘러싼 논의 ····· 267
1. 대여제에 대한 논의 ····· 267
2. 대책과 관련한 논의 ····· 268
제4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현황 및 그 틀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선방안·· 269
제1절 개관 ····· 271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 271
I.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의 개념 ····· 271
II.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실무교육의 현황 ····· 273
1. 실무교육의 목표 수준 ····· 273
2. 실무와 관련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목 ····· 274
가. 개요 ····· 274
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소개 ····· 275
다. 법정실무필수과목의 개설 시기 ····· 278
3. 실무교육 사례 ····· 278
가. 민사재판실무 ····· 278
나. 형사재판실무 ····· 279
다.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 281
라. 방학 등의 기간에 시행되는 외부기관의 실무교육 ····· 284
4.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평가 ····· 296
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민사실무강의 관련) ····· 296
나. 인터뷰 결과 ····· 297
5. 보론: 실무교육이 강화되기 위한 방안 ····· 306
가. 실무교육과 변호사시험과의 연관관계 ····· 306
나. 실무수습 강화와 이에 따른 실무교육의 효과 ····· 308
다. 변호사시험 실시 시기에 관한 검토 ····· 309
제3절 법원이 시행하는 실무교육 ····· 310
I.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 310
1. 개관 ····· 310
2. 현황 ····· 311
3. 사법연수원의 출강 지원 내용 변천 ····· 313
가. 민사재판실무 ····· 313
나. 형사재판실무 ····· 313
4. 평가 ····· 314
II.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연수 ····· 315
1. 개요 ····· 315
2. 법원 실무수습 기본 및 심화 프로그램 ····· 315
가. 경과 ····· 315
나. 사법연수원의 집체 교육 ····· 317

다. 법원 실무수습 주요 프로그램의 소개 ····· 318
라. 평가 ····· 321
3. 단기 특강 프로그램 ····· 322
가. 개요 ····· 322
나. 진행 경과 ····· 322
다. 평가 및 향후 계획 ····· 323
III. 기타 ····· 324
1. 모의기록 지원 ····· 324
2.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연구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325
3. 기타 ····· 325
제4절 검찰이 시행하는 실무교육 ····· 325
I. 개관 ····· 325
II.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 325
III.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검찰 실무수습 ····· 326
제5절 경찰이 시행하는 실무교육 ····· 328
I. 개관 ····· 328
II.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 328
III.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찰 실무수습 ····· 329
제6절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실무연수 ····· 329
I. 사법개혁 당시까지 사법연수원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 ····· 329
1. 개관 ····· 329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 ····· 330
3. 2003. 7. 25. 공개토론회에서의 논의 ····· 331
II.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제도 도입의 배경 ····· 334
III.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제도의 개요 ····· 336
IV.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관련 법규 ····· 337
1. 변호사법 ····· 337
2.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 338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 339
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 ····· 340
나. 연수기간 ····· 340
다. 연수 과정 ····· 340
라. 연수의 이수 등 ····· 340
마. 연수자의 의무 ····· 340
바. 비용부과 ····· 341
4. 학사관리지침 ····· 341
V. 대한변호사협회 실시 실무교육의 현황 ····· 341

1. 2012년 실무교육 ····· 341
가.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협회 차원의 최초 구상 ····· 341
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준비 실무협의회'에 의한 연수 프로그램의 수립 ····· 342
다.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공고 ····· 346
라. 강의일정 및 강의 운영 방식 ····· 347
마. 강의내용 ····· 348
바. 연수교재 ····· 349
사. 과목별 과제 채점 현황 ····· 349
아. 유관기관의 실무연수 지원 ····· 350
자. 2012년 연수에 대한 평가 ····· 352
2. 2013년 실무교육 ····· 357
가. 현황 ····· 357
나. 과목 구성 ····· 359
다. 강사진 ····· 362
라. 강의 장소 ····· 362
마. 연수교재 ····· 363
바. 2013년 연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평가 ····· 363
사. 2013년 연수에 대한 연수 참가 변호사들의 평가 ····· 367
3. 2014년 실무교육 ····· 369
가. 현황 ····· 369
나. 연수 제도 개선안 제안 ····· 370
다. 2014년 연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평가 ····· 370
라. 2014년 연수에 대한 연수 참가 변호사들의 평가 ····· 374
4. 2015년 실무교육 ····· 374
가. 현황 ····· 374
나. 2015년 연수에 대한 평가 ····· 377
VI.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제도의 특징과 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 383
1. 특징 ····· 383
가. 수강 인원의 변화 ····· 383
나. 실무수습, 분반토의 형태의 교육 추가 ····· 383
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제도 운영백서상 연수 참가 변호사들의 만족도····· 384
2. 참여 관리의 한계 ····· 384
3. 연수 내용 또는 시간의 한계 ····· 385
4.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 ····· 387
5. 물적 설비의 한계 ····· 387
6.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에서의 공감대 부족의 문제 ····· 388
7. 진로별 차등 인식의 문제 ····· 388
8. 취업 변호사들의 수강 기회 제한 ····· 389

VII.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 ····· 390
1. 개요 ····· 390
2.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연수 제도 일원화 주장 ····· 390
3. 분반 교육의 필요성 ····· 392
4. 집약적인 집체 교육의 시행 ····· 392
5. 실무수습의 실질화 ····· 393
제7절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제도 ····· 393
I. 개관 ····· 393
II.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의 모습과 이에 대한 평가 ····· 394
1.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제도의 현황 ····· 394
2.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제도에 대한 평가 ····· 395
가. 낮은 급여 문제 ····· 395
나. 실무교육의 질의 극심한 편차 ····· 398
다. 다양한 실무 경험의 어려움 ····· 399
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수용인원과 신입 변호사 수의 불균형 ····· 400
III.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제도에 대한 변호사회의 입장 ····· 401
1. 서설 ····· 401
2. 관계 기관의 입장 ····· 401
가. 대한변호사협회 ····· 401
나. 서울지방변호사회 ····· 402
IV.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 403
1.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증대 ····· 403
2. 급여 최저 기준 설정 ····· 403
3. 수습 가이드라인 마련 ····· 404
4.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검증 ····· 404
제5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틀을 변경하여 의무적·일원적 실무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개선방안 ····· 405
제1절 개관 ····· 407
제2절 의무적·이원적 실무연수 제도의 유지 여부 ····· 407
I.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의 유지 여부 ····· 407
II. 이원적 실무연수 제도의 유지 여부 ····· 409
제3절 연수 제도 방안과 관련한 쟁점별 논의 ····· 410
I. 들어가는 말 ····· 410
II. 연수기간 ····· 410
1. 현행 유지 방안(6개월로 하는 방안) ····· 410
2.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 ····· 411
III. 연수 구성내용 ····· 411
1. 집체 교육 ····· 411

2. 실무수습 ····· 412
IV. 연수주관기관 ····· 415
V. 연수기간 동안의 급여 또는 비용 관련 문제 ····· 416
1. 현행 제도하에서의 연수비용 부담 현황 ····· 416
2. 방안의 검토 ····· 417
가. 급여제를 선택하는 방안 ····· 417
나. 연수자들에게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 418
다. 급여와 수강료 없이 무이자 또는 저리의 대출 혜택을 주는 방안 ····· 418
VI. 연수 종료 시 수료시험 실시 여부 ····· 419
1. 인터뷰 대상 변호사들의 의견 소개 ····· 419
2. 수료시험 실시와 관련한 논의 ····· 420
가. 실시 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 ····· 420
나. 실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 ····· 421
VII. 연수자의 신분 문제(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의 문제를 포함하여) ····· 422
1.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과 관련하여 ····· 422
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현행 유지) ····· 422
나. 연수 수료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 ····· 422
2. 공무원 신분 부여 여부 ····· 423
가. 준공무원 지위 부여 긍정 견해 ····· 423
나. 준공무원 지위 부여 부정 견해 ····· 423
VIII. 연수기간 동안의 변론 또는 수사 권한 부여 문제 ····· 423
1. 긍정적 견해 ····· 423
2. 부정적 견해 ····· 424
IX. 소결 ····· 425
제6장 결 론 ····· 429

41.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각국의 경제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pecialized Economic Chambers

연구총서 2016-16

연구책임자 : 홍진표(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2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9
Ⅰ. 연구의 목적 ····· 29
Ⅱ. 연구의 범위 ····· 31
제2절 연구방법 ····· 32
Ⅰ. 경제사건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 33
Ⅱ. 외국의 복잡한 경제사건 처리제도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 34

제2장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개관 및 통계 ····· 35

제1절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개관 ····· 37
Ⅰ. 경제범죄와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의의 및 분류 ····· 37
1. 의의 ····· 37
2. 대검찰청의 범죄 분류 및 대법원의 형사공판사건 분류 ····· 39
가. 대검찰청의 범죄 분류 ····· 39
나. 대법원의 형사공판사건 분류 ····· 40
3. 재산범죄 및 이에 대한 공판사건의 추이 ····· 40
Ⅱ.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범죄 특성 ····· 44
1. 지능적·전문적인 범죄 ····· 44
2. 조직적·계획적인 범죄 ····· 44
3. 범죄피해의 중대성 ····· 45

제2절 경제관련 형사재판의 통계 및 구체적 모습 ····· 47
Ⅰ.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접수와 처리결과 및 분석 ····· 47
1. 전체 형사사건의 구성 ····· 47
2.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최근 접수 및 처리결과 ····· 48
가. 전체 형사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 48
나. '형법상 재산범죄 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 48
다. 사기·횡령·배임 관련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 49
라. 통계자료의 분석 ····· 50
Ⅱ.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처리현황 및 이에 대한 분석 ····· 52
1. '형법상 재산범죄 등' 사건의 처리기간 ····· 52
2. '형법상 재산범죄 등' 사건의 증인 수 ····· 53
3. 중요재산범죄에 대한 처리인원수와 항소율 ····· 53
4. 통계자료의 분석 및 평가 ····· 54
가. 분석 ····· 54
나. 평가 ····· 55
Ⅲ.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의 중요성 및 구체적 모습 ····· 56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의 중요성 ····· 56
2.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재판 진행 사례 ····· 56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 사건 ····· 57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 사건 ····· 58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사건 ····· 60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456(병합) 사건 ····· 61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사건 ····· 62
제3장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재판현황 및 문제점 ····· 65

제1절 경제사건 전문·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 67
Ⅰ. 형사법원 내지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의 미설치 ····· 67
1.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 67
가. 전문법원 내지 전문·전담재판부의 일반적 필요성 ····· 67
나. 형사법원 내지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 68
2. 형사법원 내지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의 미설치 ····· 69
Ⅱ. 형사전문법관 내지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관의 부존재 ····· 70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조 경력의 필요성 ····· 70
2. 형사사건 전문법관 내지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관의 부존재 ····· 70
Ⅲ. 경제사건 전문·전담재판부의 지정 및 운영 현황 ····· 72
1. 경제사건 전문·전담재판부의 지정 ····· 72
2. 경제사건 전문·전담재판부의 운영 현황 ····· 73
제2절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분류와 신속한 사건처리절차 ····· 74
Ⅰ.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분류와 효율적 처리 필요성 ····· 74
1. 형사사건의 분류와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 ····· 74
2.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분류 및 효율적 처리 필요성 ····· 74
Ⅱ.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사건처리절차 ····· 75
1.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분류와 배당 및 처리 현황 ····· 75
2. 경미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약식절차 활용 ····· 76
3. 피고인의 합리적 판단 유도 등을 통한 신속ㆍ효율적인 처리 여부 ····· 76
제3절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준비 및 증거조사방법 ····· 77
Ⅰ.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 77
1. 형사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요청 ····· 77
2.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요청 ····· 78
Ⅱ.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판준비 현황 ····· 78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판준비의 필요성 및 절차 ····· 78
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공판준비의 필요성 및 절차 ····· 78
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철저한 공판준비의 필요 및 절차 ····· 80
2.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인 공판준비의 내용 및 현황 ····· 81
가. 구체적인 공판준비의 내용 ····· 81
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수 ····· 82
Ⅲ.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조사방법 현황 ····· 83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특별한 증거조사방법의 부존재 ····· 83
2. 집중적인 증거조사 ····· 83
가. 집중적인 증거조사의 필요 ····· 83
나. 집중적인 증거조사의 구체적 방법 ····· 84
3. 재판 진행상황과 결과의 공유 및 진행 협의 ····· 84

가. 소송관계인의 협의 내지 협조 필요 ····· 84
나. 구체적 방법 ····· 85
4.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인 증거조사의 방법 ····· 85
5.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 86
제4절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재판에 있어서의 문제점 ····· 87
Ⅰ.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문제점 ····· 87
Ⅱ.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관리에서의 문제점 ····· 88
Ⅲ.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공판준비에서의 문제점 ····· 90
Ⅳ.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증거조사에서의 문제점 ····· 91
제4장 비교법적 검토 ····· 95
제1절 개요 ····· 97
제2절 독일 ····· 98
Ⅰ. 경제범죄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 98
1. 독일 법관의 형사사건 전문화 여부 ····· 98
가. 법관의 선발 ····· 98
나. 형사사건 전문법관의 운영 여부 ····· 99
2. 경제범죄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 100
가. 설치배경 ····· 100
나. 설치근거 ····· 103
다. 토지 및 사물관할 ····· 103
라. 운영과 토지관할의 확장 ····· 104
마. 관할권의 우열 ····· 105
바. 독일에서의 경제관련 형사사건과 경제범죄전담재판부의 사건에 대한 통계 ····· 105
사. 특별 연수 ····· 110
아. 구체적 사건-플로어텍스(FlowTex) 사건 ····· 112
Ⅱ. 경제사건을 비롯하여 복잡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 112
1. 제1심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종류 및 관할 ····· 112
가. 제1심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종류 ····· 112
나. 범죄의 분류 ····· 114
2. 경미범죄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을 통한 신속한 종결 ····· 114
3. 간소화된 형사절차의 일종인 신속절차 ····· 115
Ⅲ.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의 공판절차 · 118
1. 피고인이 공판 중 절차중지(Einstellung des Verfahrens) 협의를 한
경우의 절차 ····· 118
가. 절차중지 제도의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 118
나. 적용요건 및 법적 효력 ····· 120
다. 적용 통계 ····· 121

라. 구체적 사례 ····· 122
2. 피고인이 공판 중 협상(Verständigung)을 한 경우의 절차 ····· 125
가. 의의 및 발전과정 ····· 125
나. 독일 협상제도의 특징 ····· 126
다. 협상의 절차 및 효력 ····· 127
라. 협상제도의 운영 실태 및 비판 ····· 131
Ⅳ.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재판준비 및 증거조사방법 ····· 135
1. 경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의 일반적인 형사절차 ····· 135
2.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참심원의 참여 ····· 136
3.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집중심리의 원칙 ····· 136
4. 공판준비에서 소송기록 사전 열람 여부 ····· 136
가. 법관과 참심원의 사전 열람 여부 ····· 136
나. 변호인의 사전 열람 ····· 137
5. 증인신문 방식 ····· 139
6.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및 이용 ····· 140
7. 공범자 증언 등에 대한 임의적 감면제도 ····· 141
8. 판결선고의 방식과 상소 여부에 따른 판결이유 작성 ····· 142
9.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의 실제 모습 ····· 144
가. 사건의 개요 ····· 144
나. 재판준비 ····· 144
다. 재판진행 기일 ····· 145
라. 증거조사 ····· 145
Ⅴ. 시사점 ····· 146
제3절 프랑스 ····· 147
Ⅰ. 경제사건 전담법원의 설치 및 운영 ····· 147
1. 프랑스 법관의 전문화 ····· 147
가. 예심(수사)판사(juge d'instruction)와 판결(재판)판사(juge juridiction) ····· 147
나. 법관의 전문화 ····· 149
2. 경제범죄 전담법원(Les juridiction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judiciaires)의 설치 및 운영 ····· 150
가. 일부 법원의 전문화 ····· 150
나. 설치 및 근거 ····· 151
다. 조직 및 관할 ····· 153
라. 경제사건 전담법원에 대한 평가 ····· 159
마. 경제사건 전담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 159
Ⅱ. 복잡하지 않은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 ····· 162
1. 제1심 형사법원의 종류 및 범죄의 유형에 따른 관할 ····· 162

가. 제1심 형사법원의 종류 ····· 162
나. 범죄의 유형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관할 ····· 162
2.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procédure simplifiée) ····· 163
3. 신속처리절차에 의한 처리 통계 ····· 164
Ⅲ.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의 특례절차 ····· 167
1.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의 특례(CRPC) 규정 및 특징 ····· 167
2. 요건 및 적용범위 ····· 168
3. 절차 ····· 168
Ⅳ.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의 공판절차 ····· 171
1. 직권주의에 의한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방법 ····· 171
가. 일반적인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방법에 따른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 171
나.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공판절차 ····· 173
다.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증거에 관한 원칙 및 증거조사 ····· 173
2.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중죄법원에서의 공판절차와 증거조사방법 ····· 175
3.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경죄법원에서의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방법 ····· 176
4. 공범자 증언 등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 ····· 177
Ⅴ. 시사점 ····· 178
제4절 일본 ····· 180
Ⅰ.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 내지 전문재판부의 검토 ····· 180
1. 형사법원 내지 형사사건 전문법관의 존재 여부 ····· 180
2. 형사조세사건 전문재판부의 설치 ····· 181
3.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진행내역 ····· 183
가. 유한회사 Ｔ＆Ｃ의 소비세 등 탈루 사건 ····· 183
나. 주식회사 라이브도어(ライブドア) 사건 ····· 184
다. 주식회사 올림푸스(オリンパス) 분식회계 사건 ····· 185
Ⅱ.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 ····· 186
1. 간단한 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 186
2. 약식명령절차 ····· 187
3.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 187
Ⅲ.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공판절차와 증거조사방법 ····· 188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판전정리절차의 활용 ····· 188
가. 공판전정리절차의 도입 배경 ····· 188
나. 경제사건을 비롯한 복잡한 사건에서의 활용 ····· 189
다. 공판전정리절차의 개시 및 관계인의 출석 ····· 189
라. 공판전정리절차의 구체적 진행 ····· 190
마. 일반적 흐름 ····· 193
바. 구체적 통계 ····· 194
사. 실무상 운용 모습 ····· 195

아. 형사소송법의 개정 ····· 198
2.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방법 ····· 199
가. 일반적인 공판절차를 통한 경제사건의 처리 ····· 199
나. 구체적인 증거조사 과정 ····· 200
3. 복잡한 사건에 대한 일본의 재판실무 ····· 202
Ⅳ.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의 특례 등의 도입 ····· 203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협상제도 등의 인정 ····· 203
2.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협상제도 ····· 204
가. 법적 근거 및 특징 ····· 204
나. 절차 ····· 204
다. 공판절차의 특례와 합의의 종료 및 이행확보 ····· 205
3. 개정된 협상제도에 대한 찬반론 및 검토 ····· 205
가. 찬반 논의의 전개 ····· 205
나. 찬성하는 견해 ····· 206
다. 반대하는 견해 ····· 207
라. 검토 ····· 208
Ⅴ. 시사점 ····· 208
제5절 미국 ····· 210
Ⅰ. 경제관련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의 검토 ····· 210
1. 미국의 제1심 형사사건 담당 법관의 임명 ····· 210
가. 연방법원의 법관 ····· 210
나. 주법원의 법관 ····· 211
2. 배심제도와 형사사건 전문법원 및 전문재판부 ····· 211
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 211
나. 배심재판의 추이 ····· 211
다.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과 전문재판부의 부존재 ····· 214
Ⅱ.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경미범죄 등의 신속한 처리 ····· 217
1. 미국에서의 범죄분류와 법원의 재판권 ····· 217
가. 연방지방법원과 주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 217
나. 미국 연방법상 범죄의 분류와 제1심 법원의 재판 ····· 218
다. 주법상 범죄의 분류와 제1심 법원의 재판 ····· 219
2.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형사절차 ····· 219
가. 연방법원 형사절차 ····· 219
나. 주법원 형사절차 ····· 222
3. 경제사건을 비롯한 형사재판의 효율적 처리의 필요성 ····· 223
4. 미국에서의 경미한 범죄의 신속한 처리절차 ····· 224
5. 신속한 재판(speedy trial)을 받을 권리의 보장 ····· 225
Ⅲ. 미국에서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 재판사례 ····· 225

1. 미국에서의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추이 ····· 225
2. 미국에서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진행사례 ····· 227
가. 매도프(Bernard L. Madoff) 사건 ····· 227
나. 라자라트남(Rajaratnam) 사건 ····· 230
Ⅳ.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의 절차 ····· 232
1. 형사절차에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필요성 ····· 232
가. 형사절차와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 ····· 232
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필요성 ····· 232
2. 유죄인부절차(arraignment) ····· 235
가. 의의 ····· 235
나. 유죄 답변(guilty plea) ····· 236
다. 무죄 답변(not guilty plea) ····· 236
라. 불항쟁 답변(nolo contendere) ····· 237
마. 유죄 또는 불항쟁 답변의 인정 절차 ····· 237
3.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 240
가. 의의 ····· 240
나.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의 절차 ····· 241
다. 유죄협상(plea bargaining)에 대한 비판 ····· 242
Ⅴ.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절차 ····· 243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계획적인 공판준비 ····· 243
가.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도하에서의 공판준비의 필요성 ····· 243
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계획적인 공판준비의 요청 ····· 244
2.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인 공판준비절차 ····· 246
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한 재판준비절차 ····· 246
나. 소송기록 등의 공개를 통한 효율적인 재판준비 ····· 246
다. 재판진행 절차와 방침 등의 고지에 의한 효율적 재판준비 ····· 247
라. 당사자의 공판 전 신청 및 이에 대한 결정을 통한 공판준비 ····· 249
마. 공판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를 통한 공판준비 ····· 255
3.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효율화 ····· 255
가. 집중적인 증거조사와 법관의 역할 ····· 255
나.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 256
다.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 ····· 257
라. 면책조건부증언제도의 활용을 통한 증거조사 ····· 258
Ⅵ. 시사점 ····· 259

제6절 영국 ····· 261
Ⅰ. 경제관련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의 검토 ····· 261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법원·재판부의 설치 논의 ····· 261
2.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관의 논의 ····· 262

Ⅱ. 복잡하지 않은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 264
1. 제1심 형사법원의 종류 및 관할 ····· 264
2. 피고인의 유·무죄답변과 재판유형의 결정(allocation decision) ····· 268
가. 재판유형결정(allocation decision) 심리절차의 개시 ····· 268
나. 유죄답변에 따른 형의 선고 ····· 268
다. 무죄주장과 재판유형의 결정 ····· 269
라. 피고인의 실형 선고 여부 암시 요구 ····· 269
3. 재판유형결정 심리절차(allocation hearing) 개선 ····· 271
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형사사법의 개혁 ····· 271
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재판유형결정 심리절차(allocation hearing) 개선 ····· 272
4. 조기유죄답변제도(Early Guilty Plea Scheme)를 통한 신속한 답변의 요구 ····· 273
가. 재판 대기 시간의 지속적인 증가 ····· 273
나. 조기유죄답변제도(Early Guilty Plea Scheme)의 실시 및 문제점 ····· 274
다. 효율적인 사건관리 계획[Better Case Management(BCM)]에 의한
조기유죄인정제도의 통일 ····· 275
Ⅲ.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례 및 유죄를 협의하는 경우의 절차 ····· 276
1. 경제범죄의 통계 ····· 276
2. 영국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례 ····· 277
가. 크리스토퍼 루니(Christopher Ronnie) 사건 ····· 277
나. 톰 헤이스(Tom Hayes)의 리보(Libor)금리 조작 사건 ····· 278
다. 조란 마크 손더스(Jolan Marc Saunders) 등의 폰지 스킴 사기 사건 ····· 279
3.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협의하는 경우의 절차
및 효과 ····· 281
가. 플리디스커션(plea discussion)의 도입 ····· 281
나. 플리디스커션(plea discussion)의 요건 ····· 283
다. 플리디스커션(plea discussion)의 절차 ····· 284
라. 플리디스커션(plea discussion)의 효과 ····· 285
Ⅳ.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재판절차 ····· 286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의 장기화 ····· 286
2.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합리적 평결의 유도 ····· 286
3.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심제 축소의 논의 ····· 287
4.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있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준비의 실시 ····· 287
가. 신속한 공판준비절차(Plea and Trial Preparation Hearing, PTPH)의 지정 ····· 287
나. 추가적인 사건관리심리절차[Further Case Management Hearing
(FCMH)]의 지정 ····· 289
5. 증거조사의 일반적인 방법·절차 ····· 291
6. 경제사건에서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등의 활용 ····· 292
7. 영국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재판의 실무 ····· 293

Ⅴ. 시사점 ····· 294
제7절 비교법적 검토에 의한 시사점 ····· 296
제5장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 ····· 301
제1절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 ····· 303
Ⅰ.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 ····· 303
1. 상당한 형사재판 경력을 가진 법관에 의한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 303
2. 경제관련 형사사건 담당 법관의 전문성 강화 ····· 304
3. 전문성을 구비한 직원과의 유기적 협력 ····· 305
4.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배당 시 법관과 직원의 한시적 증원 ····· 305
Ⅱ.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판준비절차의 원칙적 실시 및 충실화 ····· 306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의 원칙적 실시 ····· 306
2. 공판준비절차의 충실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 308
가. 충실화의 요청과 법적 근거 ····· 308
나.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 심리방식의 정립과 안내·고지 ····· 308
3.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진행하여야 할 주요사항 ····· 309
가. 공판준비기일의 조기지정과 추가적인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및 운영 ····· 309
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의 확인 및 정리 ····· 311
다. 조사할 증거의 압축 ····· 312
라. 공판기일의 지정 및 협의 ····· 313
마. 기타-양형 기준의 제시 내지 설명 여부 ····· 314
Ⅲ. 증거조사의 집중화·효율화 ····· 315
1. 집중적인 증거조사 ····· 315
가. 원칙적인 연일개정 ····· 315
나. 연일개정시 재판일정 ····· 316
다. 집중적인 증거조사 재판의 진행 사례 ····· 316
라. 연일개정의 탄력적 운용 ····· 318
2. 증인신문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 320
가. 간단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 ····· 320
나. 증인신문 순서의 다양화 ····· 320
다. 증인신문 방법의 다양화 ····· 321
라. 증인예정시간의 준수 ····· 322
마. 첨단장비 등의 활용 ····· 322
3. 증인신문 이외의 증거조사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 323
가. 실질적인 증거조사의 실시 ····· 323
나. 서증조사 순서의 다양화 ····· 323
다. 증거 분리제출의 실시 ····· 324
라. 증거서류 조사방법의 다양화 ····· 326

4. 공판절차의 협력과 피해자의 배려 ····· 328
가. 정보의 공유 및 협력 ····· 328
나. 피해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 ····· 329
5. 적절한 양형을 위한 노력 ····· 330
가. 실질적인 양형심리의 필요 ····· 330
나. 양형과 관련된 쟁점의 정리 및 공유 ····· 330
제2절 제도적 개선 방안 ····· 331
Ⅰ.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 내지 전문재판부 등의 검토 ····· 331
1.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법원 내지 형사법원의 검토 ····· 331
2. 확대된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재판부의 검토 ····· 332
가. 확대된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재판부의 검토 필요성 ····· 332
나. 확대된 경제관련 형사사건 전문재판부의 신중한 접근 ····· 333
3. 전문조사관 제도의 검토 ····· 335
Ⅱ. 경제관련 형사사건 재판부에의 접수사건 수 경감방안의 검토 ····· 336
1. 간단ㆍ경미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분리 필요성 ····· 336
2. 간단ㆍ경미한 사건 처리법원의 검토 ····· 337
3. 조기분류 판사제도의 검토 ····· 338
4.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접수사건 수의 경감 ····· 339
5.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형사절차의 개선을 통한 접수사건 수의 경감 ····· 340
Ⅲ.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 341
1.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341
2. 공판준비의 충실화와 증거개시대상의 확대 및 간이화 ····· 342
3. 공판중심주의와의 조화 ····· 344
4. 구속기간 제한의 폐지 여부 및 보석의 활성화 ····· 345
5. 재판기일의 조기지정 ····· 347
6.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 ····· 347
Ⅳ. 피고인의 합리적 의사의 반영과 협상제도 등 재판절차의 간이화 검토 ····· 348
1. 경제사건에서 피고인의 합리적 의사 반영의 필요성 ····· 348
2.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의 검토 ····· 350
가. 논의의 방향 ····· 350
나. 협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 ····· 350
다. 협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 ····· 352
3. 세계 주요 국가의 여러 제도의 검토 ····· 353
가. 검토 범위의 제한 ····· 353
나. 각국 제도의 특징 ····· 353
4. 피고인 의사의 점진적·단계적 검토와 재판절차의 간이화 ····· 355
가. 다양한 접근 방안의 검토 ····· 355
나. 피고인 의사의 점진적·단계적 검토와 재판절차의 간이화 ····· 358

Ⅴ. 내부비리 진술의 재판상 고려와 재판절차의 효율화 ····· 359
1.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서 내부비리 진술의 재판상 고려 필요성 ····· 359
2.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의 검토 ····· 360
가. 논의의 방향 ····· 360
나. 법률안의 주요 내용 ····· 361
다. 폐지된 법률안에 대한 종래의 논의 ····· 363
3. 세계 주요 국가의 여러 제도의 검토 ····· 365
4. 내부비리 진술의 양형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검토 ····· 366
가. 다양한 접근 방안의 검토 ····· 366
나. 점진적·단계적 검토 ····· 369
제6장 결론 ····· 373

42.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ourt-based Strategy to Support Pro Bono

연구총서 2016-17

연구책임자 : 김상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3월 13일 발행

제1장 서론 ····· 35
제1절 연구의 목적 ····· 3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9
Ⅰ. 연구의 범위 ····· 39
1. 법률적 부분의 봉사활동 ····· 39
2. 법률구조제도 이외의 법률 봉사활동 ····· 40
3. 공익소송 부분 제외 ····· 41
Ⅱ. 연구의 전개와 그 방법 ····· 42
제2장 프로보노의 연혁 및 필요성과 개념 ····· 45
제1절 프로보노의 연혁 ····· 47
Ⅰ. 근대 사법시스템 구조와 프로보노 활동의 태동 ····· 47
1. 근대 사법시스템의 구조와 자선적 은혜 ····· 47
2. 근대 사법시스템의 한계와 프로보노 활동의 태동 ····· 48
Ⅱ. 프로보노 활동의 전개 ····· 49
1. 사회정의론과 자유·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가능 ····· 49
2. 사법접근 운동(Access to Justice Movement)의 전개 ····· 50

가. 1970년대 사법접근 운동과 사법개혁 ····· 50
나. 공익법 운동의 일환으로써 사법접근 강화 ····· 51
3. 빈곤계층의 증가와 실질적 법치주의 ····· 52
가. 빈곤계층의 증가 ····· 52
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빈곤계층의 사법접근 보장 필요 ····· 53
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사법접근 강화 ····· 54
가. 공유경제의 등장 ····· 54
나.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제공 모델과 사법접근 강화 ·· 55
제2절 프로보노의 개념과 필요성 ····· 56
Ⅰ. 프로보노의 개념 ····· 56
1. 공익의 개념 ····· 56
가. 무상성 ····· 57
나. 법률 봉사활동 ····· 57
2. 각국에서의 프로보노 개념 규정 ····· 57
가. 미국의 경우 ····· 58
나. 일본의 변호사 프로보노 규정 ····· 62
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 66
Ⅱ. 프로보노의 필요성 ····· 68
1.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 해소 ····· 68
2. 법률가 전체에 대한 신뢰 제고 ····· 69
3.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 ····· 69
4. 전문 직업의 속성 ····· 70
5. 경제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 ····· 71
제3장 외국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73
제1절 개요 ····· 75
제2절 미국 ····· 76
Ⅰ. 프로보노의 전개 ····· 76
1. 프로보노의 역사 ····· 76
가. 사법제도의 불완전성과 공익활동의 태동 ····· 76
나. 공익활동 영역의 확장 ····· 77
다. 국가의 적극적 재정지원과 공적 법률구조의 강화 ····· 78
라. 국가 재정지원의 삭감과 프로보노 활성화 ····· 79
마. 형사사건의 국선변호 확대 ····· 79
바. 민사사건에서의 프로보노 활동 확대 ····· 81
2. 프로보노 활동의 일환으로써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 강화 ····· 82
Ⅱ.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83
1.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에 관한 규정 ····· 83
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프로보노 활동 권장 ····· 84

나. 뉴욕주의 프로보노 활동 및 보고 의무 ····· 84
2.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89
가. 프로보노 활동 분야 ····· 89
나. 프로보노 활동 중 제1유형: 무료 법률대리 활동 현황 ····· 91
다.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반응 ····· 94
3. 프로보노 중개 및 지원기관 ····· 99
가.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ro Bono Institute, PBI) 설립 ····· 99
나. 주요 프로젝트 ····· 99
4. 로펌 프로보노 ····· 101
가. 주요 로펌 프로보노 활동 ····· 101
나. 로펌 프로보노의 기준 및 평가 ····· 104
Ⅲ. 사법접근위원회(Access To Justice Commission) ····· 108
1. 사법접근위원회(ATJ Commission)의 설립 배경 ····· 108
가. 법원 기반의(Court-based) 사법접근위원회 등장 ····· 108
나. 사법접근위원회 활동의 전개 ····· 108
2. 사법접근위원회(ATJ Commission)의 조직 ····· 110
가. 사법접근위원회(ATJ Commission) 설립 및 구성 ····· 110
나. 사법접근위원회(ATJ Commission)의 특징 ····· 115
3. 사법접근위원회(ATJ Commission) 조직의 구체적 모습 ····· 117
가. 워싱턴주 사법접근위원회(Washington ATJ Board) ····· 117
나. 메인주 사법행동그룹(Maine Justice Action Group) ····· 119
다. 텍사스주 사법접근위원회(Texas Access to Justice Commission) ····· 121
라. 콜로라도주 사법접근위원회(Colorado Access to Justice Commission) ····· 122
마. 뉴멕시코주 사법접근위원회(New Mexico Access to Justice Commission) ····· 124
바. 미시시피주 사법접근위원회(Mississippi Access to Justice Commission) ····· 125
4. 사법접근위원회의 역할 ····· 126
가. 사법접근 확장 매개체(vehicles)로서의 역할 수행 ····· 126
나. 사법접근위원회의 구체적 역할 ····· 126
Ⅳ. 사법접근위원회 등의 법원 연계형 프로보노 활동 ····· 128
1. 법원 연계 로스쿨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 128
가. 로스쿨 프로보노 활동의 개관 ····· 128
나. 법원과 연계한 프로보노 활동 ····· 130
다. 사법접근위원회의 로스쿨 프로보노 활동 지원 사례 ····· 131
라. 프로보노 스칼라 프로그램(Pro Bono Scholars Program, PBSP) ····· 135

2. 법원 기반의 나홀로소송 지원 프로그램 ····· 138
가.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 138
나. 캘리포니아주의 JusticeCorps ····· 139
다. 캘리포니아주의 나홀로소송 센터(Pro Per Center) ····· 142
3. 언어적 접근권 보장(Access to Language) ····· 144
가. 언어적 접근권 보장의 필요 ····· 144
나. 법정 언어 접근에 관한 미국 전역 회담
(National Summit on Language Access in the Courts) ····· 144
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사례: 언어 접근권 보장 플랜
(plan for language access) ····· 147
4. 법률정보 접근(Access to Legal Information) ····· 150
가. 도서관의 역할과 법률정보 접근권 보장의 필요 ····· 150
나. 도서관과 법원의 협력(Library Collaboration with the Courts) ·· 150
다. 도서관과 법원의 협력의 구체적 사례 ····· 152
5. 파산법원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 156
가. 미시건 동부 연방파산법원 ····· 156
나. 기타 연방파산법원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 159
다. 펜실베이니아주 파산법원의 파산 프로보노 프로젝트 ····· 162
6. 시골지역 사법접근 지원 ····· 163
가. 시골법원의 강화(Strengthening Rural Courts) 프로젝트 ····· 163
나. 시골지역 프로보노 프로젝트(Rural Pro Bono Project) ····· 165
7. 노인에 대한 프로보노 프로그램 ····· 176
가. 미국 메인주의 LSE(Legal Services for the Elderly) ····· 176
나. 미국 워싱턴 D. C.의 LCE(Legal Counsel for the Elderly) ····· 178
8. 사법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보장 ····· 179
가. 사법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 ····· 179
나. 사법접근위원회의 사법접근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 방안 제안:
뉴욕주 사례 ····· 180
다. 사법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 182
라. 기타 사법정보기술 접근 보장을 위한 활동 ····· 187
9. 온라인 분쟁해결(ODR)을 통한 사법접근 지원 ····· 190
가. 사법접근위원회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활용을 위한 노력 ····· 190
나. 민간 부분의 사례 ····· 193
10. 프로보노 활동 장려 프로그램 ····· 197
가. 우수 프로보노 활동가 선정 및 시상 ····· 197
나. 우수 프로보노 프로그램 선정과 홍보 ····· 199
제3절 영국 ····· 201
Ⅰ. 영국의 변호사제도와 법률구조 ····· 201

1. 영국의 변호사제도 ····· 201
2. 영국의 법률구조 제도 ····· 202
가. 영국 법률구조 제도의 연혁 ····· 202
나. 영국 법률구조 제도의 내용 ····· 203
Ⅱ. 변호사 단체의 프로보노 활동 ····· 204
1. 프로보노 활동의 부각 ····· 204
2. 사무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 로웍스(LawWorks) ····· 205
가. 개요 ····· 205
나. 프로그램 ····· 206
다. 프로보노 프로토콜(Pro Bono Protocol) ····· 207
3. 법정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 프로보노 유닛(Bar Pro bono Unit, PBU) ····· 207
가. 개요 ····· 207
나. 프로보노 프로토콜(Pro Bono Protocol) ····· 208
Ⅲ. 비영리단체의 프로보노 활동 ····· 210
1. Free Representation Unit ····· 210
2. 법률상담 기관(Advice Agencies) ····· 211
가. Citizens Advice ····· 211
나. Law Centres Network ····· 212
Ⅳ. 영국 법원의 소액사건 사법접근 강화 프로그램 ····· 213
1. 소액사건 관련 법원이 직면한 도전 ····· 213
가. 소액사건의 문제점 ····· 213
나. 소액사건 분쟁해결을 위한 요소 ····· 213
2. 사법접근(ATJ)에 대한 재검토 ····· 215
가. 온라인 법원(HM Online Court)의 제안 ····· 215
나. 새로운 분쟁해결의 패러다임 ····· 215
3. 온라인 법원의 단계별 세부 내용 ····· 217
가. 1단계: 온라인 평가(Online Evaluation) ····· 217
나. 2단계: 온라인 조력(Online Facilitation) ····· 217
다. 3단계: 온라인 판사(Online Judges) ····· 218
제4절 홍콩 ····· 220
Ⅰ. 홍콩의 사법제도 개관 ····· 220
1. 독립된 사법권과 법원 구조 ····· 220
2.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성 대두 ····· 222
Ⅱ. 법률구조 제도 ····· 222
1. 법률구조제도 개관 ····· 222
2. 법률구조제도의 종류 ····· 223
Ⅲ. 프로보노 활동 ····· 225
1. 프로보노 활동의 현황 ····· 225

2. 당직변호사 서비스(Duty Lawyer Service) ····· 226
가. 당직변호사(Duty Lawyer Scheme) ····· 226
나. 무료 법률상담(Free Legal Advice Scheme) ····· 226
다. 전화 법률상담(Tel-Law Scheme) ····· 227
라. 고문 방지 협약에 의한 법률지원
(Convention Against Torture Scheme) ····· 227
3. 프로보노 활동의 장애와 새로운 시도 ····· 228
제5절 싱가포르 ····· 230
Ⅰ.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개관 ····· 230
1. 싱가포르 법원 구조 ····· 230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31
3. 싱가포르의 법률구조와 프로보노 활동 개관 ····· 232
Ⅱ. 법원 등 국가기관의 법률구조 ····· 233
1. LASCO(Legal Assistance Scheme for Capital Offences) ····· 233
2. Legal Aid Bureau(LAB) ····· 234
Ⅲ. 변호사협회(Law Society) 등의 프로보노 활동 ····· 235
1. 지역사회 봉사(Serve the Community) ····· 235
가.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s for individuals) ····· 236
나. 지역사회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s for community serving organizations) ····· 237
다.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s for the community at large) ····· 238
2. 자원봉사자 지원(support our volunteers) ····· 239
가. 현장 프로보노 평가 계획
(Ad Hoc Pro Bono Assessment Scheme, AHPBS) ····· 239
나. 자원봉사 계획 지원(Volunteer Initiative Support Scheme) ····· 239
다. 사회복지기관 소개 서비스(Social Service Agency referral service) ··· 239
3. 다른 기관과의 프로보노 지원·협력
(Assist or Collaborate on Pro Bono Initiatives with other Agencies) ···· 240
제6절 독일 ····· 241
Ⅰ. 연혁 ····· 241
Ⅱ. 재판상 법률구조 ····· 242
1. 국선 변호인(Pflichtverteidigung) 제도 ····· 242
가. 규정 ····· 242
나. 국선변호인 수락의 의무 ····· 244
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 245
2. 소송비용부조(Prozesskostenhilfe) ····· 245
가. 연혁 ····· 245

나. 소송비용부조의 요건 ····· 247
다. 법원의 심사 ····· 249
라. 소송비용부조 결정과 그 효력 ····· 249
마. 소송비용부조 결정의 현황 ····· 250
Ⅲ. 재판 외 법률구조(법률상담구조) 등 ····· 253
1. 법률상담구조(Beratungshilfe) ····· 253
가. 법률상담구조의 연혁 ····· 253
나. 법률상담구조의 요건과 내용 ····· 254
다. 법률상담구조의 절차와 법률상담 ····· 255
라. 법률상담인의 보수청구 ····· 256
2. 권리보호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 제도 ····· 257
가. 권리보호보험과 사법접근 보장 ····· 257
나. 규정 ····· 258
다. 권리보호보험의 내용 ····· 260
라. 급부의 종류(Leistungsart) ····· 260
Ⅳ. 프로보노 활동 ····· 262
1. 프로보노 활동에 관한 인식 변화 ····· 262
가. 독일 특유의 법과 법률문화 ····· 262
나. 프로보노 활동의 태동 ····· 262
2. 법률 서비스법(RDG)의 제정 ····· 263
가. 법률상담법(RBerG)의 문제점 ····· 263
나. 법률 서비스법(RDG) 제정과 무료 법률상담 허용 ····· 263
3. 변호사 단체 등의 프로보노 활동 ····· 264
가. 이동법률상담과 프로보노 포럼 ····· 264
나. 베를린 변호사협회의 ‘하르츠법 IV. (Hartz IV)’ 법률상담 ····· 265
다. 독일 프로보노 협회(Pro Bono Deutschland e. V) ····· 266
4. 법대생들의 프로보노 활동 ····· 266
가. 주요 법과대학의 프로보노 활동 ····· 266
나. 법대생들의 주요 프로보노 활동 소개 ····· 267
제7절 프랑스 ····· 271
Ⅰ. 연혁 ····· 271
Ⅱ. 법률구조 제도 ····· 272
1. 연혁 ····· 272
2. 소송구조(l'aide juridictionnelle) ····· 273
가. 의의 ····· 273
나. 대상과 요건 ····· 273
다. 절차 ····· 275
라. 평가 ····· 275

3. 법률정보접근의 지원(l'aide àl'accèas au droit) ····· 276
가. 의의 ····· 276
나. 내용 ····· 276
다. 활동조직과 평가 ····· 277
Ⅲ. 변호사협회의 프로보노 활동 ····· 278
1. 파리변호사연대(Barreau de Paris Solidarité) ····· 278
2. 파리 변호사협회의 연대버스(Bus de la Solidarité) ····· 278
3. 변호사연대 기부펀드
(Fonds de dotation Barreau de Paris Solidarité) ····· 279
제8절 일본 ····· 280
Ⅰ. 서설 ····· 280
Ⅱ. 법률구조제도 ····· 280
1. 법률부조협회(法律扶助協会) ····· 281
가. 연혁 ····· 281
나. 민사법률부조법 제정 ····· 282
2. 일본사법지원센터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Japan Legal Support Center) ····· 282
가. 총합법률지원법(総合法律支援法) 제정 ····· 282
나.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설립 ····· 283
다. 일본사법지원센터의 활동 ····· 285
Ⅲ.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 295
1. 일본변호사연합회(JFBA) ····· 296
가. 연혁 ····· 296
나. 공익활동의 실천 규정 ····· 297
다. 주요 프로보노 활동 ····· 298
2. 도쿄변호사회 ····· 301
가.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의 연혁 ····· 301
나. 회무활동 등에 관한 회규 개정의 주요 내용 ····· 302
3. 제1도쿄변호사회 ····· 303
4. 제2도쿄변호사회 ····· 306
가. 공익활동의 강화 ····· 306
나. 의무적 공익활동 규정 ····· 306
다. 공익활동 부담금(公益活動負担金) ····· 307
라. 공익활동 의무의 면제 ····· 307
Ⅳ.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 308
1. 리걸클리닉 현황 ····· 308
2. 주요 법과대학원의 리걸클리닉 ····· 308
가.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법과대학원의 임상법학교육 ····· 308

나. 간사이대학(関西大学) 법과대학원의 나카노시마(中之島) 법률클리닉 ··· 309
다. 규슈대학(九州大学) 법과대학원의 리걸클리닉 ····· 309
제4장 우리나라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313
제1절 개관 ····· 315
제2절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317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역사 ····· 317
1. 변호사의 공익활동 ····· 317
2. 로펌의 공익활동 ····· 318
가. 2000년대 초반까지의 로펌의 공익활동 ····· 318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로펌 공익활동 ····· 318
Ⅱ. 변호사의 공익활동(Pro Bono) 규정과 현황 ····· 319
1. 공익활동 의무의 입법화 ····· 319
가. 변호사법 ····· 319
나.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 319
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 321
2. 변호사회의 공익활동 현황 ····· 323
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 323
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 326
다. 공익활동 내용(2008년) ····· 328
Ⅲ.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의 활동 현황 ····· 330
1. 공익변호사의 개념과 의미 ····· 330
2. 공익변호사의 현황 ····· 331
가. 공익전담변호사단체 ····· 331
나. 로펌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전담변호사 -로펌 내 코디네이터 ····· 332
다.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전담변호사 ····· 332
라. 노동 · 환경 등 특정 공익영역의 변호사단체 ····· 333
마. 국가 · 지자체의 출연·위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전담변호사 ····· 334
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전담변호사 ····· 334
사. 공익변호사 지원단체 ····· 335
Ⅳ. 변호사 공익활동의 최근 동향 ····· 336
1.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마을변호사 제도' ····· 336
가. 제도의 도입 ····· 336
나. 마을변호사의 공익활동 및 현황 ····· 337
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 338
라.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 341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프로보노지원센터' ····· 343
가. 설립 취지 ····· 343
나. 공익활동 중개 절차 ····· 343

3.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 345
가. 개요 ····· 345
나. 지원변호사 중개 절차 ····· 346
4. 대형 로펌들의 ‘로펌 공익네트워크’ ····· 347
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 348
1. 우수 공익활동 변호사 선정 및 시상 ····· 348
2. 공익활동 평가지표 개발 ····· 349
가. 공익활동 ····· 349
나.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 351
3. 공익활동 보고서 작성 ····· 351
제3절 로스쿨, 사법연수원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353
Ⅰ. 로스쿨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353
1.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도입 ····· 353
가. 리걸클리닉의 취지 ····· 353
나. 리걸클리닉의 근거 규정과 국가의 지원 ····· 353
다. 리걸클리닉의 설립 현황 ····· 354
2. 리걸클리닉의 운영 사례 ····· 356
가. 서울대학교 리걸클리닉 센터 ····· 357
나.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 360
다.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 ····· 362
라.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법학교육센터 ····· 363
3. 리걸클리닉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364
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우선적 처우 ····· 365
나. 난민을 위한 법률지원 ····· 367
다. 지역사회 법률지원 ····· 370
라. 중소기업 현장 리걸클리닉 ····· 372
마. 무변촌 법률지원 ····· 373
바. 법원 연계형 조정클리닉 ····· 374
사. 법원 연계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프로보노 활동 ····· 375
아. 리걸클리닉Ⅲ(법원) 정규 교과목 강좌 개설 ····· 376
Ⅱ. 사법연수원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 ····· 376
1. 법률관련 봉사연수 ····· 376
가. 개요 ····· 376
나. 근거 및 종류 ····· 377
다. 실시 시기와 기간 ····· 377
라. 연수기관 선정 및 배정 ····· 377
마. 지속적 법률관련 봉사연수의 내용 ····· 378
바. 봉사연수의 관리 ····· 378

2. 복지시설봉사연수 ····· 379
가. 개요 ····· 379
나. 근거 및 종류 ····· 379
다. 지속적 복지시설봉사활동의 내용 ····· 379
라. 실시와 참여 ····· 380
마. 봉사 대상기관의 선정 등 ····· 380
바. 봉사활동의 관리 ····· 380
3. 무료 법률상담 활동 ····· 381
제4절 법원의 사법접근 강화를 위한 활동 현황 ····· 382
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 382
1.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 382
가. 취지 ····· 382
나. 내용 ····· 383
다. 절차 ····· 383
2. 기타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 385
가.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 385
나. 소송구조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 385
다. 소송구조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385
Ⅱ.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 등 지원 ····· 386
1. 법원-로스쿨 연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프로보노 활동 지원 ····· 386
가. 법원-로스쿨 연계 조정클리닉 ····· 386
나. 법원-로스쿨 연계 연수프로그램 ····· 389
다. 법원의 로스쿨 정규 교과목 강좌 지원 ····· 389
2. 로스쿨생의 실무연수 지원 ····· 389
가.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389
나. 사법연수원의 로스쿨생 교육 지원 ····· 390
3. 청년변호사 등과의 소통을 통한 사법접근 이해도 제고 ····· 391
가. 청년변호사의 법원 체험 행사 ····· 391
나. 청년사법참여단과 청년인턴십 ····· 391
Ⅲ.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보장을 위한 활동 ····· 393
1.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 393
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 지원 ····· 393
나. 우선지원창구 설치 현황 ····· 393
2. 외국인·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법접근 지원 ····· 394
가.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 394
나. 외국인·이민자를 위한 사법정보 안내(JIFI) ····· 396
다. 외국인 소송구조(Legal Aid) 지정변호사 제도 ····· 398
라. 외국인 통역 지원(Access To Language) ····· 400

마. 외국인을 위한 법률특강 ····· 403
3. 장애인을 위한 사법접근 지원 ····· 404
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 ····· 404
나. 법원의 장애인의 사법접근을 위한 지원 활동 ····· 404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법접근 지원 ····· 406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 ····· 406
나. 탈북 청소년 초청 행사 등 ····· 407
Ⅳ. 과학기술을 활용한 나홀로소송 지원 ····· 408
1.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나홀로소송 지원의 변화 ····· 408
가. 소송정보 제공 ····· 409
나. 소장 등 소송문서 작성 프로그램 ····· 409
2. 소송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구체적 구현 절차 ····· 410
가. 로그인 후 사건 유형 선택 ····· 411
나. 소송당사자 작성 ····· 411
다. 청구취지 작성 ····· 413
라. 청구원인 작성 ····· 414
마.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기재 ····· 415
바. 관할 및 기타 ····· 416
3.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와 전자소송의 연계 ····· 417
가. 전자소송과의 연계를 통한 사법접근 강화 ····· 417
나. 연계된 전자소송 활용 절차 ····· 418
Ⅴ. 기타 사법접근 지원 활동 ····· 422
1. 지역맞춤형 사법접근 지원: 마을분쟁해결센터 ····· 422
가. 마을분쟁해결센터의 개요 ····· 422
나. 마을분쟁해결센터의 기능 ····· 422
2. 파산채무자 등의 지원 프로그램 ····· 423
가.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423
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파산채무자 신속 지원 절차 ····· 425
다. 시민 대상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강의 ····· 426
3. 찾아가는 법정 ····· 427
가. 도서(島嶼) 지역 등 출장 재판 ····· 427
나. 찾아가는 열린 법정 ····· 427
4. 프로보노 장려 활동 ····· 428
제5장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 ····· 429
제1절 사법접근위원회의 조직 ····· 433
Ⅰ. 사법접근위원회(ATJ Commission) 조직의 필요성 ····· 433
1. 빈곤계층의 증가와 사법접근 지원 수요의 증대 ····· 433
2.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 ····· 437

가. 나홀로소송의 증가 ····· 437
나. 변호사의 증가와 평균 수임 사건의 감소 ····· 438
다.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할 방안 필요 ····· 439
3. 사법접근 지원 방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필요 ····· 439
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 ····· 439
나. 체계적·효율적 사법접근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440
4.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 제고 필요 ····· 441
가. 우리나라 사법제도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 ····· 442
나. 법률가 전체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프로보노 활동 ····· 446
Ⅱ. 사법접근위원회의 조직 ····· 447
1. 설립을 위한 체계적 준비 ····· 447
2. 구성 ····· 448
가. 조직 단위 ····· 448
나. 분과위원회 ····· 449
3. 위원의 구성 ····· 450
4. 활동 ····· 451
제2절 사법접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452
Ⅰ.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기획과 확대 ····· 452
1.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기획 ····· 452
가. 프로보노 관심 도모 및 아이디어 청취 ····· 452
나. 프로그램 기획의 방안 ····· 452
2. 우수 프로보노 활동가 선정 및 시상 ····· 455
가. 프로보노 문화의 전파와 일반대중의 관심 유도 ····· 455
나. 구체적 선정 및 시상 방법 ····· 456
Ⅱ. 프로보노 활동의 평가지표의 활용 ····· 460
1. 프로보노 활동의 평가지표의 필요성 ····· 460
가. 프로보노 활동의 자기 점검 ····· 460
나. 프로보노 활동의 확산 ····· 460
2. 평가지표의 구성 ····· 461
가. 평가지표의 구성 기준 ····· 461
나. 프로보노 활동 평가지표의 구성 기준 ····· 462
다. 통계항목을 활용한 평가 지표 설계 ····· 465
Ⅲ. 프로보노 활동 결과의 정기적 보고 ····· 477
1. 활동 결과의 정기적 보고 필요성 ····· 477
2. 연간보고서의 주요 구성 ····· 478
가. 프로보노 활동 현황 ····· 478
나. 프로보노 활동 평가 ····· 480
다. 프로보노 활동 전략 ····· 481

Ⅳ. 법관 임용시 프로보노(Pro Bono) 활동 내역의 반영 ····· 484
1. 미국의 법관 임용시 프로보노 활동 내역의 반영 ····· 484
가. 뉴욕주 변호사등록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내역 ····· 484
나. 연방 법관 선발 시 공익활동의 고려 ····· 486
다. 주 법관 선발 시 공익활동의 고려 ····· 488
2. 법관 임용시 프로보노 활동 내역 반영 ····· 489
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 489
나. 법관 임용시 프로보노 활동 내역 반영의 필요성 ····· 490
다. 법관 임용시 프로보노 활동 내역 반영의 구체적 방안 ····· 491
제3절 프로보노 활동 지원 분야 ····· 492
Ⅰ. 노인의 사법접근 지원 ····· 492
1. 노인에 대한 사법접근 지원 필요성 ····· 492
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법률 지원 수요 증가 ····· 492
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 494
2. 노인들을 위한 사법접근 보장 프로그램 개발 ····· 497
Ⅱ. 무변촌·지역사회 맞춤형 사법접근 지원 ····· 501
1. 무변촌·지역사회 사법접근 지원 ····· 501
가. 사법접근 지원의 필요 ····· 501
나. 로스쿨과 법원 등의 사법접근 지원 활동 ····· 501
2. 무변촌·지역사회 프로보노 확산 전략 ····· 502
가. 시골지역 프로보노 확산 전략(Rural Pro Bono Delivery Initiative) ··· 502
나. 무변촌·지역사회 프로보노 확산 전략 검토 ····· 503
Ⅲ. 외국인·이민자의 언어접근(Access to Language) 지원 ····· 506
1. 언어적 접근권 보장(Access to Language) ····· 506
가. 언어적 접근 보장의 필요 ····· 506
나. 언어적 접근 지원 현황 ····· 506
2. 법정에서의 언어접근 지원(Language Access in the Courts)을 위한 전략 ····· 507
가. 미국의 언어접근 전략 검토의 필요 ····· 507
나. 언어접근 전략의 검토 ····· 507
Ⅳ. 나홀로소송 지원 ····· 510
1. 나홀로소송과 사법접근의 지원 ····· 510
2.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활용 제고 ····· 511
가. 나홀로소송 당사자의 사법접근 지원을 위한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 511
나.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와 전자소송의 연계 ····· 511
다. 나홀로소송 지원 범위의 확대 ····· 512
라. 나홀로소송 지원 기관과의 연계 강화 ····· 513
마. 로스쿨생들 등과의 협업 강화 ····· 513
3. 도서관을 통한 법률정보 접근(Access to Legal Information) 지원 ····· 514

가. 도서관과 법원의 협력(Library Collaboration with the Courts) 필요성 … 514
나. 나홀로소송 당사자의 법률정보 접근 지원 ····· 515
다. 법률정보 접근 지원 방안 ····· 515
Ⅴ. 예비 법조인 교육과 프로보노 활동 지원 ····· 516
1. 예비 법조인의 프로보노 활동의 필요성과 법원의 역할 ····· 516
가. 예비 법조인의 프로보노 활동의 필요성 ····· 516
나. 법원의 역할 ····· 516
2. 예비 법조인들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 ····· 517
가. '로스쿨 인가' 및 '변호사등록' 요건과 연계 ····· 517
나. 로스쿨 교육과정의 개편 모색 ····· 518
다. 로스쿨의 교육 및 지원 ····· 523
라. 법원 기반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참여 ····· 523
마. 로스쿨의 사법접근위원회 참여 ····· 524
Ⅵ. 사법정보기술 접근(Access to Justice Technology)의 보장 ····· 525
1. 사법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 ····· 525
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와 사법접근의 한계 ····· 525
나. 사회적 약자와 동일한 보호의 필요 ····· 526
2. 사법정보기술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한 방안 ····· 526
가. 로스쿨생, 청년변호사 등과의 협업 강화 ····· 526
나. 사법정보기술 접근 지원 활동 ····· 527
Ⅶ. 온라인 분쟁해결(ODR) 방안 모색 ····· 528
1. 미래 사법의 모습(The Future of Justice) ; 온라인 분쟁해결(ODR) … 528
2. 온라인 분쟁해결(ODR)을 통한 사법접근 강화 ····· 529
가. 과학기술(Technology)과 온라인 분쟁해결(ODR) ····· 529
나. 온라인 분쟁해결(ODR)과 사법접근 ····· 530
3. 온라인 분쟁해결(ODR)의 활용 사례 ····· 530
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 530
나. 외국 법원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시도 ····· 532
제6장 결론 ····· 537

43.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United States Patent Trial Practice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연구총서 2016-18

연구책임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11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5
Ⅰ. 연구의 방법 ····· 25
1. 문헌 조사 ····· 25
2. 미국 특허변호사 및 한국 내 미국 특허분쟁 전문가 면담 및 자문 ····· 26
3. 미국 법관의 실무 소개 ····· 26

Ⅱ. 연구의 범위 ····· 28
제2장 미국 특허쟁송 개관 ····· 31
제1절 미국 연방법원의 체계 ····· 33
제2절 미국 특허쟁송의 소개 ····· 34
제3장 특허침해 ····· 37
제1절 특허침해의 유형 ····· 39
제2절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 ····· 40
Ⅰ. 특허침해소송 관련 실무 소개 ····· 40
1. 특허시범프로그램(Patent Pilot Program) ····· 41
가. 개관 ····· 41
나. 특허사건의 배당 ····· 42
다. 효과 ····· 43
2. 특허사건관리규정(Patent Local Rule) ····· 45
가. 개관 ····· 45
나. 채택 현황 ····· 46
다. 내용 ····· 47
라. 효과 ····· 49
마. 효력 ····· 51
3. 재판절차에서의 전문가 활용 ····· 52
가.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 52
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전문가 채택(Court-Appointed Expert) ····· 52
다. 기술조언자(Technical Advisor) ····· 53
라. 전문심리위원(Master) ····· 54
마. 로클럭(Law Clerk) ····· 54
바. 기타 ····· 54
Ⅱ. 특허침해소송의 절차 및 절차단계별 실무 ····· 55
1. 포럼쇼핑(Forum Shopping) ····· 55
2. 변론준비절차(Pretrial) ····· 60
가. 증거보전조치(Litigation Hold) ····· 60
나. 소답(Pleading) 절차 ····· 62
(1) 소장(Complaint)의 제출 및 송달 ····· 62
(2) 피고의 대응 ····· 63
(가) 응소 전 대응(Pre-Answer Motion) ····· 63
(나) 답변서 제출(Answer) ····· 66
다. 피고의 반소 제기에 대한 원고의 답변서 제출
(Plaintiff's Reply to Counterclaims) ····· 71
라.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f항에 따른 당사자 간 회합
[Rule 26(f) Conference] ····· 71

마. 사건관리기일(Case Management Conference, CMC) ····· 71
바. 증거개시절차(Discovery) ····· 73
(1) 증거개시의 범위(Scope) ····· 74
(가) 관련성(Relevancy) ····· 74
(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및 변호사 작업물 보호 ····· 75
(다)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 76
(2) 사실관계 증거개시(Fact Discovery) ····· 77
(가) 질문서(Interrogatories) ····· 78
(나) 자료제출 요구서(Request for Production) ····· 78
(다) 증언녹취(Deposition) ····· 78
(라) 자백요구서(Request for Admission) ····· 79
(3) 전문가 증거개시(Expert Discovery): 도버트 기준(Daubert Standard) ····· 80
(4)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 82
(가) 개관 ····· 82
(나) 전자증거(ESI)의 특성 ····· 83
(다) 전자증거(ESI)의 형태 ····· 84
(라)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 85
(마) 전자증거개시 참조모델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EDRM)의 확립 ····· 87
사. 마크만 히어링(Markman Hearing) ····· 88
(1)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와 외적 증거(Extrinsic Evidence) 88
(2) 마크만 히어링의 지정 ····· 89
(3) 특허청구항 해석의 효과 ····· 90
(4) 특허청구항 해석에 대한 법관의 결정 ····· 91
아.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 92
자. 침해금지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 95
3. 변론절차(Trial) ····· 96
가. 변론절차 준비(Trial Preparation) ····· 96
(1) 배심재판 여부 결정 ····· 96
(2) 변론준비기일 및 준비명령
(Pretrial Conference and Pretrial Order) ····· 99
(3) 배심원 선정(Jury Selection) ····· 101
나. 모두발언(Opening Statement) ····· 102
다. 증인신문(Witness Examination) ····· 103
라. 최종변론(Final Argument) ····· 104
마. 배심원에 대한 설명(Jury Instruction) 및 배심 평결(Jury Verdict) ·· 104
바. 판결 선고(Judgment) ····· 105
사. 법적 구제(Remedy) ····· 106

(1) 영구적 침해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 106
(2) 손해배상액(Damages) ····· 107
(가) 일실이익(Lost Profits) ····· 108
(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 109
(다) 기타 강화된 손해배상(Enhanced Damages) ····· 110
아. 판결 이후 신청(Post-Trial Motion) ····· 112
4. 항소절차 ····· 113
제3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침해조사 ····· 114
Ⅰ. 소개 ····· 114
Ⅱ.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성 ····· 116
1. 위원회(Commission) ····· 118
2. 위원회 지원부서 ····· 119
가. 운영실(Office of Operations) ····· 119
(1) 불공정 수입조사과(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 119
나. 법무실장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 120
다. 행정법판사실(Office of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 120
(1) 개요 ····· 120
(2)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 120
(가) 개관 ····· 121
(나) 요건 ····· 121
(다) 임기 및 보수 ····· 122
(라) 업무 독립성 ····· 122
Ⅲ. 특허침해조사 요건 ····· 123
1. 미국 내 수입(Importation) ····· 123
2.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 124
가. 경제적 요소(Economic Prong) ····· 125
나. 기술적 요소(Technical Prong) ····· 125
Ⅳ. 특허침해조사에 따른 구제조치의 유형 ····· 127
1. 배제명령(Exclusion Order) ····· 127
가. 일반적 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 127
나. 제한적 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 127
2.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 128
3. 잠정적 구제조치(Preliminary Relief) ····· 128
가. 잠정적 배제명령(Temporary Exclusion Order) ····· 129
나. 잠정적 중지명령(Temporary Cease and Desist Order) ····· 130
4. 구제조치에 관한 최근 동향 ····· 130
Ⅴ. 특허침해조사의 절차 및 절차 단계별 실무 ····· 132
1. 조사신청인(Complainant)의 조사신청서(Complaint) 제출 ····· 135

2. 조사개시 결정(Decision to Institute Investigation) ····· 135
가. 조사개시 여부 결정 ····· 135
나. 조사개시 결정의 통지 ····· 136
3. 피신청인(Respondent)의 답변서(Response) 제출 ····· 137
가. 답변서(Response) 제출 ····· 137
나. 항변(Defense) ····· 137
다. 반소(Counterclaim) 제기 ····· 138
4. 행정법판사(ALJ) 주관 하의 조사 ····· 138
가. 조사절차를 위한 기본규칙(Ground Rules) ····· 139
나.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Completion Date) 설정 ····· 141
다. 심리준비기일(Pre-hearing Conference) ····· 142
라. 증거개시절차(Discovery) ····· 143
(1) 증거개시 범위 ····· 143
(2) 증거개시 기한 설정 ····· 144
(3) 증거개시 방법 ····· 145
(가) 증언녹취(Deposition) ····· 145
(나) 질문서(Interrogatories) ····· 147
(다) 자료제출 요구서(Request for Production) ····· 148
(라) 자백요구서(Request for Admission) ····· 149
(4)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 150
마. 마크만 히어링(Markman Hearing) ····· 151
바. 약식심결(Summary Determination) ····· 152
사. 기술 투토리얼(Technology Tutorial) ····· 153
아. 심리기일(Hearing) ····· 154
5. 행정법판사(ALJ)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 156
6. 위원회의 최종심결 ····· 158
가. 위원회의 심사 여부 결정(Grant or Denial of Review) ····· 158
(1) 신청에 의한 위원회 심사 ····· 158
(2) 위원회 직권에 의한 심사 ····· 159
나. 위원회의 심사 여부 결정 통보 ····· 159
다. 위원회의 심사(Review of Initial Determinations) ····· 160
라. 위원회의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 ····· 160
마. 위원회의 최종심결에 대한 재심사(Reconsideration) ····· 161
7. 대통령의 승인 ····· 162
8. 불복절차 ····· 163
제4장 특허무효 ····· 165
제1절 특허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무효심사 ····· 167
Ⅰ. 소개 ····· 167

1. 개정특허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 167
가. 개정된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무효심사의 개관 ····· 167
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의 신설 ····· 169
(1) 조직 ····· 169
(2) 최근 논의 ····· 171
다. 특허행정판사(Administrative Patent Judge) ····· 173
(1) 개관 ····· 173
(2) 자격 ····· 173
(3) 임명 ····· 174
(4) 임기 및 보수 ····· 175
(5) 업무방식 ····· 176
(6) 업무 독립성 ····· 176
2.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 ····· 177
가. 특허실무를 위한 등록 시험(Registration Examination to Practice in Patent Cases) ····· 177
(1) 응시자격 ····· 178
(2) 시험 내용 및 방식 ····· 178
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의 비교 · 180
Ⅱ.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 관할 특허무효심판 ····· 181
1. 소개 ····· 182
2. 등록 후 무효심판(Post Grant Review, PGR) ····· 185
가. 개관: 도입 배경 ····· 185
나. 신청 요건 ····· 185
(1) 신청 시기 ····· 185
(2) 신청인 적격 ····· 185
(3) 신청 대상 및 사유 ····· 186
(4) 신청서의 내용 및 송달 ····· 186
다. 특허권자의 예비답변(Preliminary Response) ····· 187
라. 절차 개시(Institution) 요건 ····· 187
마. 절차 개시 이후 ····· 188
(1) 답변서 교환 및 특허권자의 특허정정 신청 (Motion to Amend the Patent) ····· 188
(2) 증명책임 ····· 188
(3) 증거개시(Discovery) ····· 189
(4) 기간 ····· 189
바. 중용권(Intervening Right, 中用權) ····· 189
사. 비용 ····· 190
3.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CBMR) ····· 190
가. 개관 ····· 190
나. 등록 후 무효심판(PGR) 절차와의 차이점 ····· 191
(1) 신청 시기 ····· 191
(2) 신청인 적격 ····· 191
(3) 신청 대상 ····· 192
4.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 193
가. 개관 ····· 193
나. 신청 요건 ····· 194
(1) 신청 시기 ····· 194
(2) 신청인 적격 ····· 195
(3) 신청 대상 및 사유 ····· 195
(4) 신청서의 내용 및 송달 ····· 195
다. 특허권자의 예비답변(Preliminary Response) ····· 196
라. 절차 개시(Institution) 요건 ····· 196
마. 절차 개시 이후 ····· 197
(1) 답변서 교환 및 특허권자의 특허정정 신청
(Motion to Amend the Patent) ····· 197
(2) 증명책임 ····· 198
(3) 증거개시(Discovery) ····· 198
(4) 기간 ····· 198
바. 중용권(Intervening Right, 中用權) ····· 198
사. 비용 ····· 199
5. 특허무효심판의 동향 ····· 199
Ⅲ. 특허청(USPTO) 관할 특허무효심사 ····· 202
1. 개요 ····· 202
2. 선행기술 및 서면진술서의 인용 ····· 203
가. 개관 ····· 203
나. 인용 목적 ····· 203
다. 인용할 수 있는 자 ····· 204
라. 익명성 보장(Confidentiality) ····· 204
마. 인용의 제출시기 ····· 204
바. 인용 범위 ····· 205
사. 설명서(Explanation) ····· 205
아. 결정계 재심사(EPX) 절차 진행 중 선행기술 인용의 처리 ····· 205
자. 제한 ····· 206
3.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EPX) ····· 206
가. 신청 요건 ····· 206

(1) 신청 시기 ····· 206
(2) 신청인 적격 ····· 206
(3) 신청 사유 ····· 207
(4) 신청서의 내용 ····· 207
나. 절차 개시(Institution) 요건 ····· 208
(1) 판단기준 ····· 208
(2) 절차 개시 결정 ····· 208
(3) 특허권자의 진술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209
다. 절차 개시 이후 ····· 210
(1) 정보개시의무 ····· 210
(2) 증명책임 ····· 210
(3) 심사관(Examiner)의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 ····· 211
(가) 최초(또는 최종이 아닌) 거절이유통지서
(First/Non-Final Office Action) ····· 211
(나) 최종 거절이유통지서(Final Office Action) ····· 212
라. 효과 ····· 215
(1) 불복심판(Appeal) ····· 215
(2) 중용권(Intervening Rights, 中用權) ····· 215
마. 기간 ····· 215
바. 비용 ····· 216
4. 특허무효심사의 동향 ····· 217
제2절 연방지방법원의 특허무효 확인소송 ····· 218
Ⅰ. 특허무효 확인소송 분석 ····· 218
1. 요건 ····· 218
2. 증명책임 ····· 220
3. 비자명성(Non-Obviousness)의 판단과 전문가 증인 ····· 221
가.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기준 ····· 221
나. TSM 기준의 완화 ····· 222
4. 효력 ····· 223
가. 관련 규정 ····· 223
(1) 연방법률집 제35편 제290조(35 U.S.C. § 290) ····· 223
(2) 특허청(USPTO)의 특허심사절차편람 제2242조(MPEP s. 2242) ····· 224
나. 청구배제효(Res Judicata) ····· 224
Ⅱ. 특허무효 확인소송의 장단점 ····· 225
1. 장점 ····· 225
2. 단점 ····· 226
제3절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사, 특허무효 확인소송의 비교 ····· 226
제5장 연방지방법원, 특허청(USPTO),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의 관계 231

제1절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 절차의 관계 ····· 233
Ⅰ. 등록 후 무효심판(PGR)과 민사소송의 관계 ····· 233
1. 특허침해소송과 등록 후 무효심판(PGR)의 관계 ····· 233
2. 등록 후 무효심판(PGR)과 특허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 233
3. 금반언(Estoppel) 효력 ····· 235
Ⅱ.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BMR)과 민사소송의 관계 ····· 236
1. 특허침해소송과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BMR)의 관계 ·· 236
2.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BMR)과 특허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 236
3. 금반언(Estoppel) 효력 ····· 237
Ⅲ. 당사자계 무효심판(IPR)과 민사소송의 관계 ····· 238
1. 특허침해소송과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의 관계 ····· 238
2. 당사자계 무효심판(IPR)과 특허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 242
3. 금반언(Estoppel) 효과 ····· 243
Ⅳ. 결정계 재심사(EPX)와 민사소송과의 관계 ····· 244
1. 연방법원의 명령 및 승인에 의한 결정계 재심사(EPX) 신청,
또는 재심사를 위한 법원의 소송 중지 ····· 244
2. 결정계 재심사(EPX) 개시 결정시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 244
가. 연방법원의 유효 확정판결
(Final Court Decision of Claim Validity)이 존재하는 경우 ····· 244
나. 연방법원의 무효 또는 실효 확정판결(Final Holding of Claim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이 존재하는 경우 ····· 245
다. 법원의 확정되지 않는 무효 또는 실효 판결
(Non-Final Holding of Claim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 246
3.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판결 전에 동시에 진행되는 결정계
재심사(EPX)의 심결이 있는 경우 ····· 246
4. 결정계 재심사(EPX) 진행 중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 247
제2절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의 관계 ····· 247
Ⅰ. 병행되는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와 관련된 연방지방법원 절차의 중지 ···· 247
Ⅱ. 효과 ····· 251
1. 연방지방법원 절차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심결의 효과 ····· 251
2.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절차에 대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효과 ····· 251
제3절 특허청(USPTO)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의 관계 ····· 252
제6장 항소심 ····· 255
제1절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소개 ····· 257
Ⅰ. 설립 배경 ····· 257
Ⅱ. 관할권(Jurisdiction) ····· 258
Ⅲ. 구성 ····· 259
1. 판사 ····· 259

2. 로클럭 ····· 261
3. 재판보조인력 ····· 262
가. 기술보좌관(Technical Assistant) ····· 262
나. 상근 변호사(Staff Attorney) ····· 262
다.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 263
Ⅳ. 심리기준 ····· 264
1.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리기준 ····· 264
가. 심리기준의 유형 ····· 264
나.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심리기준 ····· 265
(1)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1996) 판결 ····· 265
(2) Teva Pharmaceuticals USA v. Sandoz (2015) 판결 ····· 265
2. 특허청(USPTO)[또는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에 대한 심리기준 ····· 267
3.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심결에 대한 심리기준 ····· 268
Ⅴ. 항소심 특허사건의 동향 ····· 269
제2절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사건처리방식 ····· 272
Ⅰ. 관련 규정 ····· 272
Ⅱ. 절차 ····· 273
1. 관련 서류 제출 ····· 273
가. 서류 제출 기한 및 서면분량의 제한 ····· 273
나. 서류 제출 시 유의할 점 ····· 274
다. 서류 작성 시 유의할 점 ····· 275
2. 합의부의 형성 ····· 276
3. 구술변론 ····· 277
4. 판결문의 작성 ····· 280
5. 판결문의 회람(Circulation of Opinions) ····· 281
6. 판결의 등록 ····· 282
7. 재심리 ····· 282
가. 재심리 신청 ····· 282
(1) 합의부 재심리 신청(Petition for Panel Rehearing) ····· 282
(2)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 283
(3) 합의부 재심리 및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Combined Petition
for Panel Rehearing and Rehearing En Banc) ····· 285
나. 직권에 의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Sua Spante Requests for Rehearing En Banc) ····· 285
8. 상고 ····· 286
제7장 결론 ····· 289

44.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Small Claims Procedure in Korea

연구총서 2016-19

연구책임자 : 표현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월 24일 발행

제1장 서론 ····· 35
제1절 연구의 목적 ····· 3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8
Ⅰ. 연구의 범위 ····· 38
Ⅱ. 연구의 방법 ····· 39
제2장 민사소액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41
제1절 민사소액재판 제도 개관 ····· 43
Ⅰ. 소액사건심판법의 연혁 ····· 43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경위와 목적 ····· 43
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경위 ····· 43
나.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 44
2.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 과정 ····· 44
3.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범위 ····· 46
가. 적용 대상 ····· 46
나. 소의 변경 등 ····· 47
다. 일부청구의 제한 ····· 47

라. 재심, 준재심 ····· 47
Ⅱ.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례 ····· 48
1. 간이한 방식의 소의 제기 ····· 48
가.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48
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48
2. 이행권고결정 제도 ····· 48
가. 개요 ····· 48
나. 도입 배경과 효과 ····· 49
다. 구체적인 절차 ····· 49
라.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51
마.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52
바. 강제집행의 특례 ····· 52
3. 소장 송달과 기일지정 등의 특례 ····· 53
가. 지체 없는 소장 송달 ····· 53
나. 신속한 변론기일 지정과 1회 변론종결 ····· 53
다.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 개정 ····· 53
4.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53
5. 심리절차상 특칙 ····· 54
가. 무변론 청구기각 ····· 54
나. 변론갱신 예외 ····· 54
다. 조서의 기재 생략 ····· 54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55
가. 직권증거조사 ····· 55
나. 교호신문 배제(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55
다.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서면신문 ····· 55
7. 판결에 관한 특례 ····· 56
가.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선고 ····· 56
나.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 56
8. 상고와 재항고 제한 ····· 56
Ⅲ. 소액사건심판절차 특례의 다른 법률에의 준용 ····· 57
제2절 민사소액재판의 현황 ····· 58
Ⅰ. 민사소액사건 통계 현황 ····· 58
1. 민사소액사건의 접수 추이 ····· 58
2. 민사소액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 ····· 60
가. 접수와 처리 내역 ····· 60
나. 처리 기간 ····· 62
3. 민사소액사건의 항소율과 항소심 처리 현황 ····· 65
가. 항소 건수와 항소율 ····· 65

나. 항소심 처리 현황 ····· 65
4. 민사소액사건의 변호사 대리 현황 ····· 66
5. 민사소액사건의 전자소송 현황 ····· 67
가. 전자소송 민사소액사건의 접수 및 처리 내역 ····· 68
나. 전자소송 민사소액사건의 처리 기간 ····· 68
다. 전자소송 민사소액사건의 항소 현황 ····· 69
Ⅱ. 각급 법원의 실무 현황 ····· 70
1. 2016년 서울 권역 법원의 소액재판 운영 현황 ····· 70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 70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 72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72
라. 서울북부지방법원 ····· 73
마. 서울서부지방법원 ····· 74
2. 소액재판 운영 실태 ····· 74
가. 소액재판의 진행 ····· 75
나. 소액재판의 기일 운영 ····· 75
다. 즉일조정과 조기조정 ····· 76
라. 당사자에 대한 절차 안내와 법원 대기 공간 ····· 77
Ⅲ. 최근 민사소액사건 심리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 ····· 80
1. 소액전담법관 제도 ····· 80
가. 도입 배경과 현황 ····· 80
나. 기대 효과와 한계 ····· 81
2. 독촉절차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 81
가. 도입 배경과 취지 ····· 81
나. 주요 내용 ····· 82
다. 기대 효과와 한계 ····· 83
3. 공시송달과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 등에 관한 참여관 역할 강화 ····· 83
가. 도입 배경과 취지 ····· 83
나. 주요 내용 ····· 84
다. 기대 효과와 한계 ····· 84
4.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추가 ····· 84
가. 도입 취지와 내용 ····· 85
나. 기대 효과와 한계 ····· 86
제3절 민사소액재판의 실무와 제도상 문제점 ····· 89
Ⅰ. 소의 제기 단계에서의 문제점 ····· 89
1.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변용과 남소 ····· 89
2. 나홀로 소송과 소송 조력 ····· 90
3.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사문화 ····· 93

4. 이행권고결정 문제 ····· 94
가. 운영상 문제점 ····· 94
나. 독촉절차와의 관계 ····· 95
5.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에 대한 선택권 보장 ····· 96
Ⅱ. 심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 96
1. 사건 분류와 기일지정 지체 ····· 96
2. 재판 대기 시간과 절차 지연 ····· 97
3. 충분한 변론 기회 부족 ····· 98
4. 직권조사 ····· 98
5. 조서 기재 생략 ····· 99
6. 조정절차 활용 ····· 100
7. 공휴일과 야간 개정 ····· 100
Ⅲ. 판결 선고와 그 이후 단계에서의 문제점 ····· 101
1.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 101
2.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의 엄격한 분리 ····· 102
3. 상고와 재항고 제한 ····· 102
제3장 각국의 민사소액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05
제1절 서설 ····· 107
제2절 미국 ····· 107
Ⅰ. 소액재판제도 개관 ····· 107
1. 소액법원의 설치 ····· 107
2. 소액재판절차의 특징 ····· 109
3.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 ····· 111
4. 소액재판의 비중 ····· 113
Ⅱ.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소액재판 ····· 115
1. 개요 ····· 115
2.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116
가.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와 원고적격 ····· 116
나.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 117
다. 소의 제기 절차 ····· 117
라. 변론절차 ····· 118
마. 판결과 항소 절차 ····· 119
3. 소액재판 관련 특수한 절차 또는 제도 ····· 119
가. 임시판사에 의한 소액재판 ····· 119
나. 소액재판 상담 서비스 ····· 121
4.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121
가. 소액사건의 접수 및 처리 ····· 121
나. 소액사건의 처리 기간 ····· 124

5.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126
가.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의 실무 운영 ····· 126
나. 재판절차의 실무 운영 ····· 126
다. 캘리포니아 주 소액재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 127
Ⅲ. 뉴욕(New York) 주의 소액재판 ····· 128
1. 개요 ····· 128
2.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130
가.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와 원고적격 ····· 130
나.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 130
다. 소의 제기 절차 ····· 130
라. 변론절차 ····· 131
마. 판결과 그 이후 절차 ····· 131
3. 소액재판 관련 특수한 절차 또는 제도 ····· 132
가. 당사자의 편의에 맞춘 개정시간 운영 ····· 132
나. ADR의 적극적 활용 ····· 133
4.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135
가. 소액사건의 접수 및 처리 ····· 135
나. 뉴욕 시 민사법원의 소액사건 비중 ····· 137
5.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138
가.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의 실무 운영 ····· 138
나. 재판절차의 실무 운영 ····· 138
Ⅳ.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소액재판 ····· 139
1. 개요 ····· 139
2.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139
가.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와 재판절차 ····· 139
나. 소액사건과 관련된 신청절차 ····· 141
다. 집행절차 ····· 142
3.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143
4.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144
가. 사건 접수와 재판 시 당사자에 대한 절차 안내에 관한 실무 운영 ···· 144
나. 구체적인 재판절차의 실무 운영 ····· 148
5. 소액재판 개선 논의 ····· 151
Ⅴ.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의 소액재판 ····· 152
1. 개요 ····· 152
2.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153
가.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와 원고적격 ····· 153
나.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 153
다. 소의 제기 절차 ····· 154

라. 변론절차 ····· 154
마. 판결과 그 이후 절차 ····· 155
3. 소액재판 관련 특수한 절차 또는 제도 ····· 156
가. 로스쿨 학생들의 소액재판 참여 ····· 156
나. 근무시간 외 개정 명문화 ····· 156
다. 중재(Arbitration)와 조정(Conciliation)의 적극적 활용 ····· 156
4.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157
가. 소액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 ····· 157
나. 소액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 ····· 159
Ⅵ.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시 소액재판 ·· 161
1. 개요 ····· 161
2.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162
3.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163
가. 소액사건의 연도별 접수 및 처리 현황 ····· 163
나. 소액사건의 조정 현황 ····· 163
4.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164
가. 사건 접수와 재판 안내의 실무 운영 ····· 164
나. 재판절차의 구체적 실무 운영 ····· 164
다. 소액재판의 특수한 실무 운영 방식 ····· 167
제3절 영국 ····· 168
Ⅰ. 개관 ····· 168
1. 민사소송절차 개요 ····· 168
2. 소액재판절차 개요 ····· 172
Ⅱ.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173
1.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 ····· 173
2.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 175
3. 소의 제기 절차 ····· 175
가. 소장 접수 ····· 175
나. 소장 송달과 피고의 답변 ····· 176
다. 소송비용 ····· 179
라. 소의 제기 시 원고가 유의해야 할 사항 ····· 181
4. 변론 전 절차 ····· 182
5. 변론절차 ····· 183
가. 변론의 진행방식 ····· 183
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 184
6. 판결과 그 이후 절차 ····· 185
Ⅲ. 소액재판 관련 특수한 절차 또는 제도 ····· 186
1. 법원 부속형 조정 ····· 186

2. 온라인 분쟁 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제도 ····· 190
Ⅳ.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192
1. 개요 ····· 192
2. 소액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 ····· 193
3. 소액사건의 처리 기간 ····· 195
4. 변호사 대리 현황 ····· 196
Ⅴ.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198
1.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 등의 실무 운영 ····· 198
2. 재판절차의 실무 운영 ····· 199
3. 소액재판 개선 논의 ····· 201
제4절 캐나다 ····· 202
Ⅰ. 개관 ····· 202
1. 사법제도 일반 ····· 202
2. 소액재판절차 개요 ····· 202
Ⅱ.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의 소액재판 ····· 204
1. 개요 ····· 204
2.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205
가.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 ····· 205
나.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206
다. 소의 제기 절차 ····· 206
라. 변론 전 절차 ····· 208
마. 변론절차 ····· 208
바. 판결과 그 이후 절차 ····· 209
3. 소액재판의 특수한 절차 또는 제도 ····· 210
가. 의무적인 화해기일(Settlement Conference) ····· 210
나. 당사자의 화해 제안(Offer to Settle) ····· 212
다. 금액과 사건 유형별 조정 ····· 213
라. 시범 사업 ····· 217
마. 소액소송에 관한 온라인 안내 절차 ····· 219
바.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 ····· 220
4.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224
가. 소액사건의 접수 현황 ····· 224
나. 소액사건의 처리 기간 ····· 226
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현황 ····· 230
라. 소액사건의 법원 연계형 조정 현황 ····· 231
5.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234
가.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 등의 실무 운영 ····· 234
나. 기일 지정의 실무 운영 ····· 235

다. 재판절차의 실무 운영 ····· 237
라. 화해기일, 조정, 간이재판 등의 실무 운영 ····· 238
마. 소액재판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논의 ····· 240
Ⅲ. 온타리오(Ontario) 주의 소액재판 ····· 241
1. 개요 ····· 241
2.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242
가.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 ····· 242
나.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242
다. 소의 제기 절차 ····· 243
라. 변론 전 절차 ····· 244
마. 변론절차 ····· 245
바. 판결과 그 이후 절차 ····· 245
3. 소액재판의 특수한 절차 또는 제도 ····· 246
4. 소액사건의 접수에 관한 통계 현황 ····· 247
제5절 프랑스 ····· 249
Ⅰ. 개관 ····· 249
1. 사법제도 일반 ····· 249
2. 민사사건의 제1심법원 관할과 구성 및 재판절차 일반 ····· 250
가.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 250
나. 소법원(Tribunal d'instance) ····· 251
다. 근린법원(Juridiction de proximité) ····· 251
Ⅱ.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253
1. 개요 ····· 253
2. 소의 제기 절차 ····· 255
3. 변론 전 절차(사전 화해절차) ····· 256
4. 변론절차 ····· 257
5. 판결 선고와 그 이후 절차 ····· 258
Ⅲ.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258
1. 개요 ····· 258
2. 소법원과 근린법원의 민사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 ····· 259
가. 소법원과 근린법원 전체 민사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 ····· 259
나. 근린법원의 민사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 ····· 260
3. 소법원과 근린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기간 ····· 261
가. 소법원과 근린법원의 민사사건 연도별 평균 처리 기간 ····· 261
나. 소법원과 근린법원의 2015년에 종국된 민사사건 처리 기간 추이 ···· 261
Ⅳ.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262
1.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의 실무 운영 ····· 262
2. 재판절차의 실무 운영 ····· 263

제6절 독일 ····· 267
Ⅰ. 개관 ····· 267
1. 사법제도 일반 ····· 267
2. 간이법원의 관할과 구성 및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 268
Ⅱ. 구체적인 소액재판절차 ····· 269
1. 개요 ····· 269
2. 소의 제기 절차 ····· 270
3. 변론 전 절차와 변론절차 ····· 271
가. 사전준비절차로서 조기 제1회 기일 방식 ····· 271
나. 화해변론과 조정 전치 등 ····· 272
다. 변론절차 ····· 274
4. 판결 선고와 그 이후 절차 ····· 275
Ⅲ.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276
1. 개요 ····· 276
2. 간이법원의 민사사건 접수 및 처리, 변호사 선임 등 현황 ····· 276
가. 제1심 전체 민사사건의 최근 3년간 접수 및 처리 현황 ····· 276
나. 간이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상세 현황 ····· 277
다. 민사사건 기일 운영 현황과 처리 기간 ····· 281
라. 민사사건 변호사 대리 현황 ····· 282
3. 소액사건 현황 ····· 283
가. 600유로 이하 소액사건의 처리 및 항소 현황 ····· 283
나. 300유로 이하 경미사건의 현황 ····· 285
Ⅳ.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286
1. 소액사건의 구술변론 현황 ····· 286
2. 소액재판부 현황 ····· 287
3.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의 실무 운영 ····· 287
4. 소액사건을 비롯한 간이법원의 민사사건 재판 운영 ····· 289
제7절 일본 ····· 290
Ⅰ. 간이재판소 개관 ····· 290
1. 현황과 역할 ····· 290
2. 조직과 구성 ····· 292
3. 민사사건의 심급 체계 ····· 293
Ⅱ.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절차와 소액소송절차 ····· 295
1. 개요 ····· 295
2. 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 295
가. 간이한 방식의 소제기 ····· 295
나. 재량이송과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 296
다. 소송대리 특칙 ····· 297

라. 제소전화해와 화해에 갈음하는 결정 ····· 297
마. 심리절차의 특칙 ····· 298
바. 판결서 기재의 간략화 ····· 299
사. 사법위원의 참여 ····· 299
3. 소액소송절차의 특례 ····· 301
가. 기본 취지와 대상 범위 ····· 301
나. 소의 제기 절차의 특례 ····· 302
다. 심리절차의 특례 ····· 303
라.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의 특례 ····· 305
마.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의 특례 ····· 307
Ⅲ.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309
1. 개요 ····· 309
2.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의 접수 및 처리 현황 ····· 309
가. 통상소송의 접수, 처리, 미제와 종국사유 ····· 309
나. 소액소송의 접수, 처리, 미제와 종국사유 ····· 313
3.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의 심리 기간 ····· 316
가.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의 연도별 평균 심리 기간 ····· 316
나. 2014년도 통상소송 심리 기간의 상세 현황 ····· 317
4.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의 변호사 등 선임 현황 ····· 318
5.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의 증거조사 ····· 319
Ⅳ.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320
1. 도쿄간이재판소(東京簡易裁判所) ····· 320
가. 개요 ····· 320
나.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의 실무 운영 ····· 320
다. 재량이송의 실무 운영 ····· 321
라. 재판의 실무 운영 ····· 321
2. 오사카간이재판소(大阪簡易裁判所) ····· 325
가. 개요 ····· 325
나. 소액소송의 실무 운영 ····· 327
다. 조정의 실무 운영 ····· 327
Ⅴ. 간이재판소와 소액소송절차 개선 논의 ····· 328
1. 개요 ····· 328
2. 구체적인 개선 논의 ····· 328
가. 접근성 증진 ····· 329
나. 알기 쉬운 절차 ····· 329
다. 판사 구성의 다양화 ····· 329
라. 청사의 독립 ····· 329
마. 시민의 이용 촉진 ····· 329

바. 심리 유연화와 효율화 ····· 330
제8절 중국 ····· 330
Ⅰ. 개관 ····· 330
1. 사법제도 일반 ····· 330
2. 민사소송절차 개관 ····· 331
Ⅱ. 소액재판절차 ····· 332
1. 개요 ····· 332
가. 도입 배경 ····· 332
나. 입법 현황 ····· 333
2. 소액재판의 대상 범위 ····· 334
가. 간이절차에 해당하는 사건 ····· 334
나. 소송목적의 값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취업자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사건 ····· 335
3. 소의 제기 절차 ····· 336
4. 심리절차 ····· 337
5. 판결 선고와 그 이후 절차 ····· 338
Ⅲ. 소액재판의 통계 현황 ····· 339
1. 개요 ····· 339
2. 베이징 시 소액재판 통계 현황 ····· 339
가. 소액소송절차 적용 현황 ····· 339
나. 소액소송의 사건 유형 ····· 340
다. 소액소송사건 종국처리 상세 현황 ····· 341
라. 소액소송사건 평균 심리 기간 ····· 342
3. 광둥 성(广东省) 소액재판 통계 현황 ····· 342
가. 소액소송절차 적용 현황 ····· 342
나. 소액소송의 사건 유형 ····· 343
다. 소액소송사건 종국사유와 처리 기간 ····· 343
Ⅳ. 소액재판의 실무 운영 현황 ····· 344
1. 사건 접수와 절차 안내의 실무 운영 ····· 344
2. 재판절차의 실무 운영 ····· 344
3. 시청 구(西城区)의 소액재판 담당 법관과 법정 운영 ····· 345
Ⅴ. 소액재판의 문제점과 개선 논의 ····· 346
1.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논의 ····· 346
가. 소액소송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 ····· 346
나. 소액소송 적용에 대한 법관의 우려 ····· 346
2.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논의 ····· 347
가. 구체적인 절차 규정의 부족 ····· 347
나. 소액소송의 적용과 당사자의 선택권 ····· 347

다. 1심종심에 따른 구제 절차 결여 ····· 348
제9절 유럽연합 소액소송절차 ····· 349
Ⅰ. 개관 ····· 349
Ⅱ. 유럽연합 소액소송규칙의 적용 범위 ····· 351
1. 적용 대상 ····· 351
2. 적용 제외 사건 ····· 354
Ⅲ. 구체적인 유럽연합 소액소송절차 ····· 354
1. 절차의 개요 ····· 354
2. 소의 제기 절차 ····· 358
3. 심리절차 ····· 359
가. 원칙적인 서면심리 ····· 359
나. 구술변론과 증거조사의 방법 ····· 359
다. 법원의 절차 안내와 화해 등에 관한 조력 의무 ····· 360
4. 판결과 그 이후 절차 ····· 360
가. 판결 선고 ····· 360
나. 비용부담 ····· 361
다. 상소와 재심 ····· 361
라. 판결의 승인과 집행 ····· 362
Ⅳ. 유럽연합 소액소송절차의 운용 현황과 평가 ····· 362
1. 절차의 적용 여부 ····· 362
2.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 ····· 364
3. 개정규칙의 주요 내용 ····· 365
제10절 비교법적 검토에 의한 시사점 ····· 365
제4장 민사소액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 371
제1절 개관 ····· 373
제2절 소액재판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 373
Ⅰ. 조사의 설계 ····· 373
1. 취지 ····· 373
2. 시행 경과 ····· 373
가. 조사 기간과 방법 ····· 374
나. 설문문항의 내용 ····· 374
Ⅱ.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74
1. 응답자에 대한 배경 질문과 인구통계학적 정보 ····· 374
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분포 ····· 375
나. 응답자의 소송상 지위 ····· 375
2. 재판진행에 대한 만족도 ····· 376
3. 시설과 민원 안내에 대한 만족도 ····· 377
4. 소액재판 전반에 대한 만족도 ····· 378

5. 소액사건의 최종 재판에 관한 사항 ····· 379
6. 소액재판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 ····· 380
가. 소액재판 결과 법원에 대한 신뢰 여부 ····· 380
나. 추후 비슷한 분쟁 발생 시
소액재판절차를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381
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한 의견 ····· 382
7. 소액재판 개선 방안 ····· 383
가. 소액재판절차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 383
나. 소액재판절차 개선에 관한 의견 ····· 384
제3절 소액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 386
Ⅰ. 조사의 설계 ····· 386
1. 취지 ····· 386
2. 시행 경과 ····· 386
가. 조사 기간과 방법 ····· 386
나. 설문문항의 내용 ····· 386
Ⅱ.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87
1. 직책과 경력에 대한 일반적 사항 ····· 387
2. 민사소액재판 일반 사항 ····· 388
3. 기일 운영 관련 사항 ····· 388
가. 한 기일에 지정하는 사건 수 ····· 388
나. 다투는 사건의 기일 지정 방식 ····· 389
다. 다투는 사건의 변론 시간 ····· 390
라. 예정된 시간에 맞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 ····· 390
마. 재판 지연 정도 ····· 391
바. 재판 지연 시 절차 안내와 양해를 구하는지 여부 ····· 392
4. 증거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 ····· 392
가.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과 증거조사 진행 방식 ····· 392
나. 나홀로 소송 당사자나 노약자 등
소통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대면할 경우 진행 방식 ····· 393
5. 민사소액재판절차의 개선 필요성 ····· 394
가.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 현황 ····· 394
나. 실무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유 ····· 395
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유 ····· 396
6. 구체적인 실무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 ····· 397
가. 소의 제기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397
나. 사무분담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 ····· 398
다. 심리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399
라. 판결 선고와 그 이후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400

7. 소액사건의 최종심과 간이법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402
가. 소액사건의 최종 재판에 관한 사항 ····· 402
나. 간이법원 설치 또는 소액전담재판부 확대 시 법관의 운영 형태 ····· 403
8. 소액재판 개선에 관한 의견 ····· 403
제4절 설문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406
제5장 민사소액재판의 실무 운영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 407
제1절 개관 ····· 409
제2절 소의 제기 단계 개선 방안 ····· 409
Ⅰ. 금융기관 등이 채권추심 성격의 소액사건을
대량으로 제소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 처리 방안 ····· 409
1. 차별적인 사건 관리 ····· 409
2. 소송 초기 단계에서 원고가 증명할 사항과 증명 정도 강화 ····· 411
가. 현재의 실무와 개선 필요성 ····· 411
나. 미국의 사례 ····· 411
다. 우리 현실에 맞는 실무 개선 방안 ····· 416
3. 제한적 독촉전치주의 도입 ····· 419
4. 답변 서식을 이용한 사건의 조기 분류 ····· 420
5. 공시송달의 기준 통일 ····· 421
6. 토지관할 문제 ····· 423
Ⅱ. 나홀로 소송에 대한 조력 시스템 마련 ····· 424
1.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법원의 다양한 절차 안내 ····· 425
2. 소의 제기 절차의 접근성 개선 ····· 427
가. 전자소송의 활성화 ····· 427
나. 간편하고 정형화된 소장 양식 마련 ····· 428
다. 현실에 맞는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절차 개선 ····· 428
3. 법률구조 서비스 구축 ····· 429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단체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움직임 ·· 429
나. 소송구조 제도 개선 ····· 430
다. 법률비용보험 제도 개선 ····· 432
라. 법률구조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433
4.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참여와 지원 ····· 436
Ⅲ. 소액집중심리재판부의 확대와 사무분담 개선 ····· 437
Ⅳ.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와의 연계적 접근 ····· 438
1. 법원 외부 대체적 분쟁 해결의 활성화 ····· 438
2. 조기조정 확대 실시 ····· 441
Ⅴ. 소액사건의 대상 범위 조정 ····· 444
1. 과거의 논의 ····· 444
2. 최근 소액사건 범위에 대한 논의와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개정 ····· 445

Ⅵ. 소액사건에서 인지액의 차등적 정액화 ····· 447
Ⅶ. 이행권고결정의 개선 ····· 448
1. 사법보좌관의 이행권고결정 업무 처리에 따른 효율적인 절차 개선 ····· 448
2. 원고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여 ····· 449
제3절 심리 단계 개선 방안 ····· 450
Ⅰ. 소액재판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방안 ····· 450
1. 사건의 조기 분류와 신속한 첫 기일 지정 ····· 450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 사건의 조서 기재 간이화 ····· 452
3. 참여관과 사법보좌관의 역할 강화와 재정립 ····· 453
4. 불출석 당사자에 대한 제재 ····· 453
5. 간이한 송달 방법의 특례 마련 ····· 454
Ⅱ. 충실한 심리 확보 방안 ····· 455
1. 다투는 사건의 맞춤형 단계별 집중심리 방안 ····· 455
2. 소액집중심리재판부로의 재배당 ····· 457
3. 증거조사의 합리화 방안 ····· 457
Ⅲ. 예정된 재판 시간의 지연과 당사자 대기 절차의 개선 방안 ····· 459
1. 적정한 사건 수의 기일 지정과 시차제 소환 ····· 459
2. 실시간 재판안내 시스템 활용 ····· 460
가. 재판안내 시스템의 운영 현황 ····· 460
나. 소액재판에서의 운영 가능성 ····· 461
3. 소액법정 앞에 안내 데스크 마련 ····· 463
Ⅳ. 조정의 활성화 ····· 463
1. 사건 유형에 따른 조정 전치 도입 ····· 463
2. 즉일조정 절차의 개선 ····· 465
Ⅴ. 원격영상재판 활용 ····· 467
1. 과거의 시행 결과 ····· 467
2.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시도 ····· 469
Ⅵ. 야간 개정 여부 ····· 470
제4절 판결 선고와 그 이후 단계 개선 방안 ····· 471
Ⅰ. 사실심 충실화를 구현하기 위한 판결 이유 고지와 판결서 기재 방식 ····· 471
1. 사건의 유형에 따른 즉일선고 여부 ····· 471
2. 판결 선고 시 이유 고지와 판결서 이유 기재 방안 ····· 472
3. 분할지급 판결 가능성 ····· 473
Ⅱ. 집행절차의 간이화와 법원의 후견적 감독 강화 ····· 474
Ⅲ. 불복 절차의 합리화 방안 ····· 476
제5절 장기적 개선 방안 ····· 477
Ⅰ. 소액사건심판법의 법률 명칭 개정 ····· 477
Ⅱ. 소액사건심판법을 ‘소액재판절차 등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법률’로 재편 ····· 477

Ⅲ. 간이법원 설치 방안 ····· 480
1. 간이법원 도입 논의 ····· 480
2. 간이법원의 인적 구성과 물적 시설 등 ····· 481
Ⅳ. 소액재판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 ····· 484
Ⅴ.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의 모색 ····· 484
제6장 결론 ····· 487

4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Status Quo and Future Directions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Policy

연구총서 2016-20

연구책임자 : 김태호(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3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9
제2절 연구의 방법 ····· 31
제2장 공익소송 제도에 관한 기본 개념 ····· 33
제1절 공익소송의 의의 ····· 35
Ⅰ. 공익소송 개념 정의의 어려움 ····· 35
Ⅱ. 공익의 개념 ····· 35
Ⅲ. 공익소송의 다양한 개념 정의 ····· 36
1. 국외 ····· 36
2. 국내 ····· 37
3. 공익소송의 특징 ····· 38

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 38
나.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보호 ····· 38
다. 사익관련성의 존재 문제 ····· 39
제2절 공익소송의 기능과 제도화의 방향 ····· 40
Ⅰ. 공익소송의 순기능과 역기능 ····· 40
1. 공익소송의 순기능 ····· 40
가. 공익실현기능 ····· 40
나. 권리구제기능 ····· 40
다. 자기지배의 실현기능 ····· 41
라. 사회개혁을 통한 발전역량의 도모 ····· 41
2. 공익소송의 역기능 ····· 42
가. 기존 소송체계와의 양립 불가능성 ····· 42
나.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 ····· 42
다. 사법 의존도의 증가 ····· 42
Ⅱ. 제도화의 문제 ····· 42
제3장 공익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45
제1절 미국의 공익소송 ····· 48
Ⅰ. 개관 ····· 48
Ⅱ. 공익소송의 역사적 발전 ····· 48
1. 공익법운동 ····· 48
가. 공익법운동의 의의 ····· 48
나. 공익법운동의 전개 ····· 49
2. 공익단체의 활동 ····· 49
가. 미국변호사협회의 pro bono 활동 ····· 49
나. 변호사단체의 등장 ····· 50
3. 로펌의 역할 ····· 50
가. 대형로펌의 역할 ····· 50
나. 소형로펌의 역할 ····· 51
4. 사회단체의 역할 ····· 51
Ⅲ. 대표당사자소송 ····· 52
1. 의의 ····· 52
2. 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변천 ····· 53
가. 기원 및 최초의 규정 ····· 53
나. 1966년의 개정 ····· 53
다. 1977년의 개정안 ····· 53
라. 1985년의 개정안 ····· 54
마. 민사규칙자문위원회의 법안과 화해촉진안 ····· 54
바. 1995년의 증권소송개혁법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PSLRA) ····· 56

사. 1998년의 증권소송통일기준법 (Securities Litigation Uniform Standards Act of 1998) …… 57
아. 2005년의 대표당사자소송 공정화에 관한 법률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 58
3. 요건 …… 59
가. 대표당사자소송의 기본요건 …… 59
나. 대표당사자소송의 인증(certification) 요건 …… 60
4. 대표당사자소송의 특징 …… 61
가. 법원의 적극적 역할 …… 61
나. 집단의 확정과 인증절차 …… 61
다. 통지 및 증거개시절차 …… 62
라. 화해와 변호사보수의 산정 …… 63
마. 손해의 산정과 분배절차 …… 65
5. 대표당사자소송의 각국에서의 도입 및 변용 …… 65
가. 캐나다 …… 66
나. 덴마크 …… 69
다. 스웨덴 …… 72
라. 아르헨티나 …… 76
마. 브라질 …… 78
바. 칠레 …… 80
Ⅳ. 광역소송절차 …… 84
1. 광역소송의 의의 …… 84
2. 광역소송의 도입배경 및 역사 …… 84
가. 광역소송 도입 논의의 시작 …… 85
나. 광역소송제도의 도입 …… 85
3. 광역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 88
4. 광역소송 절차의 개관 …… 89
가. 절차의 개시 …… 90
나. 이송여부에 대한 광역소송 사법위원회(JPML)의 결정 …… 90
다. 사건의 이송 …… 93
라. 이송 이후의 절차 …… 95
마. 불복절차 …… 97
5. 관련문제 …… 98
가. 사실심리절차(trial)의 병합가능성 …… 99
나. 광역소송 사법위원회(JPML)의 재량 행사의 기준 문제 …… 100
Ⅴ. 파렌스 파트리에(parens patriae) 소송 …… 100
1. 의의 …… 100
2. 파렌스 파트리에(parens patriae) 소송의 유래 …… 100
3. 미국의 파렌스 파트리에(parens patriae) 소송의 주요 내용 …… 101
가. 원고적격 …… 101

나. 적용범위와 준국가적 이익(quasi-sovereign interest)의 요건 ····· 102
다. 대표당사자소송과의 상관관계 ····· 102
Ⅵ. 납세자소송제도 ····· 103
1. 의의 ····· 103
2. 납세자소송의 인정근거 ····· 104
3. 납세자소송의 당사자 및 그 대상 ····· 104
가. 납세자소송의 당사자 ····· 104
나. 납세자소송의 대상 ····· 105
4. 납세자소송의 절차 ····· 105
가. 소제기의 전제로 권한 있는 공무원에 대한 소제기 요구 ····· 105
나. 중복제소의 금지 및 소송참가 ····· 106
다. 납세자소송의 구제유형 및 그 제한 ····· 106
라. 판결의 효력 ····· 107
Ⅶ. 징벌적 손해배상 ····· 108
1. 개념 ····· 108
2.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 ····· 109
가. 징벌적 기능을 통한 공익실현기능 ····· 109
나. 경고 및 억제적 기능 ····· 109
다. 만족적 기능 및 전보적 기능 ····· 110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 111
가. 소비자보호 ····· 111
나. 근로자 보호 ····· 112
다.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적용 ····· 113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절차 ····· 113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 113
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115
다. 당사자 ····· 115
라. 대표당사자소송과의 관계 ····· 117
5.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과 해결시도 ····· 118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 118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시도 ····· 119
Ⅷ 미국 공익소송의 대표적인 사례 ····· 120
1. 인종차별 공익소송 ····· 120
가.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사건 ····· 120
나. Cooper v. Aaron 사건 ····· 122
다. Gayle v. Browder 사건 ····· 122
라. Burton v. Wilmington Parking Authority 사건 ····· 123
마. Heart of Atlanta Motel v. United States 사건 ····· 124

2. 제조물책임관련 소송 ····· 125
가. Nader v. General Motors Corp. 사건 ····· 125
나. Stephenson v. Dow Chemical Co. 사건 ····· 126
다.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사건 ····· 127
라. 독성 곰팡이(Toxic Mold) 사건 ····· 128
마. In re Volkswagen “Clean Diesel” Marketing, Sales Practices and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사건 ····· 129
제2절 독일의 공익소송 ····· 131
Ⅰ. 유럽연합(EU)의 집단분쟁해결입법지침 ····· 131
Ⅱ. 독일 경제법에서의 단체소송 ····· 131
1. 의의 및 연혁 ····· 132
가. 의의 ····· 132
나. 연혁 ····· 132
2. 단체소송의 기본 이념 ····· 133
가. 내부적 통제 ····· 133
나. 외부적 통제 ····· 133
3. 소송의 목적(금지청구) ····· 134
4. 선행절차 ····· 136
5. 제소권한 있는 단체 ····· 136
가. 단체 ····· 136
나. 제소권한의 성격 ····· 137
6. 단체소송의 경제적 역할 ····· 137
Ⅲ. 독일 환경법에서의 환경단체소송법 ····· 138
1. 역사적 발전 ····· 138
가.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찬반논쟁 ····· 138
나. 주 단위 단체소송제도 도입으로부터의 시작 ····· 138
다. 연방자연보호법에서 단체소송제도의 수용 ····· 139
2. 환경권리구제법의 도입 ····· 141
가. 오르후스 협약의 이행에 따른 법 제정 ····· 141
나. 환경권리구제법의 재개정 논의 ····· 143
3. 환경손해법의 제정 ····· 144
Ⅳ. 표본소송절차(Musterverfahren) ····· 144
1. 개관 ····· 144
가. 제·개정 경과 ····· 144
나. 입법목적 ····· 145
2. 자본투자자표본절차 ····· 146
가. 표본절차의 신청 ····· 146
나. 수소법원의 제시결정 ····· 146

다. 표본절차의 준비 ····· 147
라. 표본절차의 진행 ····· 147
마. 권리항고절차 ····· 148
바. 표본재판의 효력 ····· 149
사. 소송비용의 문제 ····· 149
3. 표본소송절차의 적용범위 확대 논의 ····· 150
V. 이익환수청구제도 ····· 150
1. 개념 및 목적 ····· 150
2. 이익환수청구 요건 ····· 151
가. 고의의 위반행위의 존재 ····· 151
나. 위반행위자의 이익 발생 ····· 152
다. 다수의 구매자 혹은 공급자의 손실 발생 ····· 152
라.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 153
마. 다른 규정에 의한 이익환수를 하지 않았을 것 ····· 153
3. 법적 효과 ····· 153
가.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153
나.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 154
다. 정보제공의무 및 기타 준용규정 ····· 154
4. 이익환수청구 절차 ····· 154
가. 환수이익의 국고편입 ····· 155
나. 원고인 소비자단체의 비용상환청구 ····· 155
다. 이익환수와 손해배상 등의 조정 ····· 156
라. 절차상의 쟁점 ····· 156
5. 운영현황 ····· 158
가. 이익환수청구를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 158
나. 이익환수청구의 사례 ····· 158
다. 제도의 평가 ····· 159
제3절 프랑스의 공익소송 ····· 159
Ⅰ. 개관 ····· 159
Ⅱ.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소송 ····· 160
1. 소비자보호단체에 의한 사소권(私訴權, Action civile)의 행사 ····· 160
가. 의의 ····· 161
나. 사소권 행사의 주체: 소비자보호단체 ····· 161
다. 내용 ····· 162
라. 평가 ····· 163
2. 소비자보호단체의 공동소송(Action conjointe) 및 소송참가(Intervention en justice) ····· 163
Ⅲ. 소비자보호단체의 공동대리소송 (Action en représentation conjointe) · 164
1. 의의 ····· 164

2. 내용 ····· 164
3. 평가 ····· 164
Ⅳ. 단체소송 ····· 165
1. 배경 ····· 165
2. 손해의 개념 ····· 166
3. 제1단계: 사업자에 대한 책임확인판결 ····· 166
가. 의의 및 판단 범위 ····· 166
나. 내용 ····· 167
다. 소비자집단에의 가입 ····· 167
라. 손해배상 ····· 168
마. 기간 규정 ····· 168
바. 일부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탁명령 ····· 168
사. 소송대리인 ····· 168
4. 제2단계: 약식단체소송절차 ····· 169
가. 개관 ····· 169
나. 손해배상판결의 확정(프랑스 소비자보호법 제L. 623-14조) ····· 169
다. 소비자의 확정(프랑스 소비자보호법 제L. 623-14조) ····· 169
라. 사업자의 고지의무(프랑스 소비자보호법 제L. 623-15조) ····· 169
마. 사업자의 불이행(프랑스 소비자보호법 제L. 623-16조) ····· 169
5. 판결의 이행 ····· 170
가. 개관 ····· 170
나. 배상의 이행 ····· 170
다. 대리인으로서의 소비자보호단체 ····· 170
6. 조정 ····· 170
7. 시효 ····· 171
8. 이용현황 및 평가 ····· 171
제4절 영국의 공익소송: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 172
Ⅰ. 들어가며 ····· 172
Ⅱ. 공익소송을 위한 당사자 적격의 문제 ····· 173
1. 전통적인 요건(traditional view) ····· 173
2. 판례 및 해석에 따른 당사자적격 요건의 완화 ····· 174
가. Blackburn 사건 ····· 174
나. McWhirter 사건 ····· 177
다. 목적중심 해석(purposive interpretation) ····· 178
3. 입법에 의한 당사자적격의 완화 ····· 179
가. 1978년 대법원규칙 및 1981년 대법원법의 규정 ····· 179
나. 관련 사례 ····· 180
Ⅲ. 공익소송을 위한 그 밖의 문제 ····· 181

1. 법률구조제도 ····· 181
2. 법원에 의한 보호적 비용명령 ····· 181
3.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 183
Ⅳ. 공익소송 관련 제도 ····· 183
1. 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 ····· 183
가. 개요 ····· 183
나. 기원 및 내용 ····· 184
다. 특징 ····· 185
라. 대표소송제도의 한계 ····· 186
2. 집합소송(Group Litigation) ····· 187
가. 개요 ····· 187
나. 집합소송명령(Group Litigation Order) ····· 187
다. 집합소송명령(GLO)의 신청 ····· 188
라. 법원의 조치 ····· 189
마. 사건관리 ····· 190
바. 명령 및 판결의 구속력 ····· 191
사. 소송비용 ····· 191
3.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 ····· 192
가. 개요 ····· 192
나. 집단소송의 인가(certification) ····· 193
다. 집단화해(Collective Settlement) ····· 194
라. 손해배상(damages) ····· 194
Ⅴ. 환경공익소송 ····· 195
1. 개요 ····· 195
2. 당사자적격 ····· 195
가. 개인에 의한 환경공익소송 ····· 195
나. 단체에 의한 환경공익소송 ····· 196
3. 제소기간 ····· 197
4. 소송비용의 문제 ····· 198
Ⅵ. 최근 공익소송의 대표사례 ····· 198
1. 2000년 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0) 사건 ····· 198
2.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 199
3. 의사 조력 자살권(Physician-Assisted Suicide) ····· 199
제5절 일본의 공익소송 ····· 200
Ⅰ. 공익소송의 의의 ····· 200
Ⅱ.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 201
1. 개념 및 연혁 ····· 201
2.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 202

3. 주민소송의 당사자 ····· 202
가. 원고 ····· 202
나. 피고 ····· 203
4. 주민소송의 대상 ····· 203
5. 주민소송의 유형 ····· 204
가. 1호청구 ····· 204
나. 2호청구 ····· 204
다. 3호청구 ····· 204
라. 4호청구 ····· 205
6. 주민소송의 절차 ····· 205
가. 관할 및 절차규정 ····· 205
나. 중복제소의 금지 ····· 206
다. 소송비용의 문제 ····· 206
7. 주민소송의 현황 ····· 207
Ⅲ.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 208
1. 개념 및 배경 ····· 208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개념 ····· 208
나. 도입배경 ····· 208
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과정 ····· 209
2. 소비자단체소송의 내용 ····· 209
가. 적격소비자단체 ····· 209
나. 금지청구권 ····· 210
3. 소비자단체소송의 절차 ····· 211
가. 서면에 의한 사전청구 ····· 211
나. 관할 ····· 212
Ⅳ. 일본의 소비자집합소송제도 ····· 212
1. 의의 및 배경 ····· 212
2. 절차의 개요 ····· 216
가. 제1단계 절차: 공통의무확인소송(금전지급의무의 확인) ····· 216
나. 제2단계 절차: 채권의 확정절차 - 간이확정절차 ····· 218
제6절 중국의 공익소송 ····· 227
Ⅰ. 중국의 민사공익소송 ····· 227
1. 민사공익소송의 의의 ····· 227
2. 민사공익소송의 연혁과 입법과정 ····· 228
가. 공익 및 공익소송의 개념 ····· 228
나. 공익소송의 대상분야 ····· 229
다. 공익소송의 입법형식 ····· 229
Ⅱ. 민사공익소송의 원고적격 ····· 230

1. 원고적격의 기본문제 ····· 230
2. 공익소송의 유형과 원고적격의 문제 ····· 231
가. 환경공익소송과 원고적격 ····· 231
나. 소비자공익소송과 원고적격 ····· 231
3. 검찰기관의 원고적격 문제 ····· 232
Ⅲ. 민사공익소송의 절차 ····· 233
1. 소의 적법요건 ····· 233
2. 공익소송의 관할 ····· 234
가. 토지관할 ····· 234
나. 급별관할 ····· 234
다. 관할의 집중 ····· 235
3. 법원과 행정기관의 연계(고지) ····· 235
4. 소송참가와 반소 ····· 235
가. 소송참가 ····· 236
나. 반소 ····· 236
5.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의 관계 ····· 236
가.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의 제기 ····· 237
나.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 237
6. 화해 및 조정 ····· 237
7. 소취하의 제한 ····· 238
8. 판결의 효력 ····· 238
가. 기판력 ····· 238
제7절 인도의 공익소송 ····· 240
Ⅰ. 개관 ····· 240
Ⅱ. 인도에서의 공익소송의 발전 ····· 240
1. 인도 헌법의 제정과 공익소송의 기초 마련 ····· 241
2. 공익소송의 시작 ····· 241
3. 공익소송의 발전 ····· 242
Ⅲ. 공익소송절차 ····· 245
1. 근거법령 ····· 245
2. 당사자적격 ····· 245
가. 원고 ····· 245
나. 피고 ····· 246
3. 절차의 개시 및 진행 ····· 246
가. 절차의 개시 ····· 246
나. 공익소송에 인정되는 특수한 소송형태 ····· 248
다. 절차의 진행 ····· 248
4. 인도 공익소송의 현황 ····· 249

Ⅳ. 공익소송의 평가 ····· 250
Ⅴ. 인도 공익소송의 대표적인 사례 ····· 250
1. Vishaka v. State of Rajasthan 사건 ····· 250
2. Vincent Panikurlangera v. Union of India 사건 ····· 251
3. M.C. Mehta v. Union of India 사건 ····· 252
4. A.S. Mittal v. State of Uttar Pradesh 사건 ····· 253
5. Sheela Barse v. Union of India 사건 ····· 253
6.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v. Union of India & Others 사건 ····· 254
7. Almitra Patel v. Union of India 사건 ····· 255
8. Pratibha Naithani v. Union of India 사건 ····· 256
9. Novartis AG vs. Union of India 사건 ····· 256
제8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익소송 ····· 257
Ⅰ. 개관 ····· 257
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공익소송의 발전 ····· 258
1. 1994년 이전의 시기 ····· 259
2. 1994년-2000년 사이의 시기 ····· 259
3. 2000년-2010년 사이의 시기 ····· 259
4. 2010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 260
Ⅲ. 공익소송과 당사자적격(locus standi, standing)의 문제 ····· 260
Ⅳ.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익소송 관련 제도 ····· 261
1.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 261
가. 판례에 의한 발전 ····· 261
나. 판례에 의한 대표당사자소송의 인정 요건 ····· 261
다. 대표당사자소송의 이용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 ····· 262
2. 보호적 비용구제제도(Protective Cost Regime) ····· 263
3. 징벌적 손해배상 ····· 263
제9절 정리 및 시사점 ····· 264
Ⅰ. 공익소송의 별도 규율 여부 ····· 265
Ⅱ. 당사자적격 요건의 완화 ····· 266
Ⅲ. 집단적 분쟁해결수단의 다양한 형태 ····· 266
Ⅳ. 공익단체와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271
Ⅴ.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존재 ····· 272
제4장 한국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 ····· 273
제1절 공법소송에서의 공익소송 ····· 275
Ⅰ. 헌법소송과 공익소송적 속성 ····· 275
Ⅱ. 행정소송의 공익소송적 속성 ····· 275
Ⅲ.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 ····· 276
1. 주민소송제도 개관 ····· 276

2.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 277
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 277
나. 필수적 전치주의 ····· 277
3. 주민소송의 당사자 ····· 278
가. 주민소송의 원고 ····· 278
나. 주민소송의 피고 ····· 278
4. 주민소송의 대상 및 유형 ····· 279
가. 주민소송의 대상 ····· 279
나. 주민소송의 유형 ····· 281
5. 주민소송의 절차 ····· 281
가. 관할·제소기간 ····· 281
나. 소송고지 ····· 282
다. 소송비용 ····· 282
라. 직권심리주의 ····· 283
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283
바. 판결의 효력 ····· 284
제2절 민사소송에서의 공익소송 ····· 285
Ⅰ. 개관 ····· 285
Ⅱ.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소송 제도의 한계 ····· 287
1. 공동소송제도의 한계 ····· 287
2.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 ····· 288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 ····· 289
1. 제정목적 ····· 289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당사자 ····· 290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 290
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2단계절차 ····· 291
다. 제외신고 ····· 300
라. 분배절차 ····· 301
Ⅳ. 단체소송 ····· 305
1. 소비자단체소송 ····· 305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및 대상 ····· 305
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등 ····· 306
다. 소송절차 ····· 307
라. 판결의 효력 ····· 309
마. 소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 화해 등의 문제 ····· 310
바. 보전처분 ····· 310
2. 개인정보단체소송 ····· 311
가.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 ····· 311

나. 단체소송의 대상·관할 ····· 311
Ⅴ. 집단분쟁조정제도 ····· 314
1.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 314
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의의·필요성 ····· 314
나.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 316
2. 다른 법률에서의 집단분쟁조정제도 ····· 320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 ····· 320
나.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 322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제도 ····· 324
3.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신청 ····· 325
4.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 327
Ⅵ. 집단소송의 도입 확대 움직임 ····· 327
1. 집단소송법안 ····· 328
2.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328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9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30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1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1
7.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2
8.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안 ····· 332
9. 강제징용 특례법안 ····· 333
Ⅶ.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34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전 ····· 334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 335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35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36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37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38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확대 움직임 ····· 339
제3절 공익소송의 사례 및 현황 ····· 342
Ⅰ. 공법상의 공익소송 사례 및 현황 ····· 342
1.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사례 ····· 342
가. 새만금간척지 사건 ····· 342
나. 신행정수도이전 사건 ····· 343
다. 호주제폐지 사건 ····· 343
2. 주민소송제도 사례 및 현황 ····· 344
가. 주민소송제도 활용 현황 ····· 344

나. 주민소송제도 사례 ····· 345
Ⅱ. 민사소송에서의 공익소송 사례 및 현황 ····· 347
1. 집단소송제도 이외의 사례 ····· 347
가. 망원동유수지 사건 ····· 347
나. 천성산 도롱뇽 사건 ····· 347
다. 담배소송사건 ····· 348
2. 집단소송제도 사례 ····· 348
가. 선정당사자 관련 ····· 348
나. 증권관련 집단소송 ····· 349
다. 단체소송 ····· 353
라. 집단분쟁조정 ····· 353
제5장 현행 공익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359
제1절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61
Ⅰ.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 361
1.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의 비효율성 ····· 361
2. 주민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대상적격의 제한 ····· 361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나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규정의 준용 여부 ···· 362
4. 절차적 제한 ····· 362
가. 증명의 부담 ····· 363
나. 비용부담의 문제 ····· 363
Ⅱ.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363
1.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의 개선 ····· 363
2. 주민소송 대상의 확대 ····· 364
가. 당사자적격의 확대 ····· 364
나. 대상적격의 확대 ····· 364
3. 가처분 규정 및 사정판결 규정의 준용 명문화 ····· 365
4. 절차적 제한의 완화 ····· 365
가. 증명부담의 완화 ····· 365
나. 승소보상금 지급 등 비용부담의 완화 ····· 366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67
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 367
1. 적용범위의 제한 ····· 367
2. 소송허가요건 ····· 368
3.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제한 ····· 369
가. 대표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제한 ····· 369
나.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제한 ····· 369
4. 소송비용 ····· 370
5. 절차와 관련한 문제 ····· 371

가. 전속관할 ····· 371
나. 기타 절차와 관련한 문제 ····· 372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373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확대 ····· 373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의 확대 ····· 373
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의 적용범위 확대 ····· 374
2.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의 완화 ····· 374
가. 구성원 요건의 완화 ····· 374
나. 주식보유 요건의 수정·폐지 ····· 375
다.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요건의 완화 ····· 375
3. 소송비용부담의 완화 ····· 376
4. 소송절차의 개선 ····· 377
가. 전속관할규정의 수정 ····· 377
나. 기타 소송절차의 개선 ····· 377
제3절 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78
Ⅰ. 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 ····· 378
1.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불충분성 ····· 378
2. 미약한 제재수단 ····· 379
3. 소비자보호의 지연 ····· 379
4. 소송허가제 ····· 379
5. 처분권주의 ····· 380
6. 보전처분 ····· 380
Ⅱ. 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381
1. 손해배상청구와 예방적 청구의 허용 ····· 381
2. 본안소송의 2단계 구조화 ····· 381
가. 절차의 구성 ····· 381
나. 판결의 효력 ····· 382
다. 평가 ····· 383
3. 소송허가제의 폐지 ····· 383
4. 처분권주의의 제한 ····· 383
5. 보전처분의 범위 확대 ····· 383
제4절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84
Ⅰ.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 384
1. 집단분쟁조정기관 사이의 역할 중복 ····· 384
2. 저조한 활용실적 ····· 384
3. 조정의 효력 ····· 385
4. 조정절차상의 문제 ····· 385
가. 신청인의 제한 ····· 385

나. 절차진행과 관련한 문제 ····· 386
Ⅱ.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386
1.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법적 체계 내에서의 재정비 ····· 387
2.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387
가. 신청요건의 완화 ····· 387
나. 허가요건의 개선 ····· 388
다. 보상계획에 대한 권고절차의 개선 ····· 388
라. 조정조서의 기판력 문제 ····· 389
제5절 보론 ····· 390
Ⅰ.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인터넷·모바일 공동소송 ····· 390
Ⅱ. 단일 법률로서의 '집단소송법' 제정 ····· 391
1. 논의의 기초 ····· 391
2. 집단소송법 제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 392
가. 집단소송의 악용에 대한 대책 마련 ····· 392
나. 집단소송의 형태 ····· 392
다. 절차와 관련된 문제 ····· 393
라.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설정 ····· 397
Ⅲ. 광역소송(MDL)과 표본절차(Musterverfahren)의 도입 방안 ····· 397
제6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및 그 도입방안 ····· 398
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399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의 문제 ····· 399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 399
나. 법체계상의 부조화 ····· 399
다. 남소가능성 ····· 400
라.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 400
2.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 ····· 400
가. 입법형식 ····· 400
나. 불명확한 요건 ····· 401
다. 손해배상액수의 문제점 ····· 402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방안 ····· 402
1. 위헌논의 및 이론적 비판에 대한 극복 ····· 402
가. 손해배상과 형사제재를 둘러싼 법환경의 변화 ····· 403
나. 비례성원칙과의 조화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 ····· 404
다. 남소우려 및 피해자의 부당이득 가능성에 대한 대안 ····· 404
2. 입법형식의 변화 ····· 405
가. 단행법에 의한 도입 ····· 405
나. 개별법에 의한 도입 ····· 406
다. 법제정시 고려할 요소 ····· 406

3. 손해배상액의 증액 ····· 407
Ⅲ. 보론 - 대안으로서의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 ····· 408
제6장 결론 ····· 409

4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Regulatory Reform and Judicial Review

연 구 총 서 2016-21

연구책임자 :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세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유나(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4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기본 방향 ····· 19
제2절 연구 내용의 개관 ····· 22
제3절 연구의 방법 ····· 24
제2장 기존 규제개념의 비판적 분석 ····· 27
제1절 규제란 무엇인가 ····· 29
Ⅰ. 논의의 필요성 ····· 29
1. 법학적 접근의 필요성 ····· 29
2. 법적 개념한정의 작업 ····· 31
가. 규제와 법의 동일시 문제 ····· 31
나. 법적 문제에 대한 총칭 ····· 33

다. 법체계 간의 차이 ····· 33
라. 정책적-법적 규제개념의 구별 ····· 34
Ⅱ.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 ····· 35
1. 기존의 규제개념 이해방법 ····· 35
2. 콘셉트적 접근방식 ····· 35
Ⅲ. 규제개념의 분류 ····· 36
1. 최광의의 규제개념 ····· 37
가. 일상적 어법에서의 규제 ····· 37
나. 규제의 어원적 분석 ····· 38
2. 광의의 규제 ····· 39
가. 최광의의 규제개념 극복 ····· 39
나. “economic regulation” ····· 40
다. 정부규제론 ····· 46
라. 규제적 법(regulatives Recht) ····· 46
마. 정리 ····· 48
3. 협의의 규제 ····· 48
가. 질서행정법적 의미 ····· 48
나. 일본의 규제행정(規制行政) ····· 49
4. 헌법상의 규제개념 ····· 50
가. 경제질서와 헌법 제119조 ····· 50
나. 규제와 조정의 의미 ····· 51
5. 현행법상의 규제개념: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 52
가. 현행법상 규제의 정의와 범위 ····· 52
나. 규제완화기조 ····· 53
다. 규제적 법의 관점 ····· 53
라. 평가 ····· 55
6. 기존 규제개념들의 평가 ····· 58
가. 무제한적 개념이해의 위험성 ····· 58
나. 국가개입: 정치적, 정책적 의미의 규제개념 ····· 61
7. 소결 ····· 62
가. 법학적 관점에 따른 이해 필요성 ····· 62
나. 새로운 규제개념의 등장 ····· 62
다. 구별방법? ····· 63
Ⅳ. 규제완화와 규제 ····· 64
1. 논의의 필요성 ····· 64
2. 규제완화의 내용 ····· 65
가. 국가작용의 축소 ····· 65
나. 법의 축소: 탈법제화 ····· 66

다. “규제적 법” 현상의 해소 ····· 66
라. 규제완화와 민영화 ····· 67
마. 평가 ····· 68
3. 규제완화의 재구성 ····· 68
가. 법이론적 관점에서 출발: “규제적 법” ····· 69
나. 일반적, 총론적 의미의 규제완화 ····· 69
다. 사안관련적 규제완화 ····· 70
4. 규제완화 재구성의 의의 ····· 71
가. 규제개념의 구별 및 의미한정 ····· 71
나. 수량적 관점의 극복 ····· 72
Ⅴ. 중간 결론 ····· 73
제3장 규제현실의 변화와 규제개혁 ····· 75
제1절 규제집행의 개혁 ····· 77
Ⅰ. 법학적 논의 대상 여부 ····· 77
Ⅱ. 규제집행의 개선안 ····· 77
1. OECD의 규제집행 및 감사 개선안 ····· 77
2. 이른바 좋은 규제와 규제집행 ····· 79
가. 좋은 규제의 원칙 ····· 79
나. 좋은 것의 법적 의미 ····· 80
다. 좋은 행정과 법치국가원리 ····· 80
Ⅲ. 규제집행의 개혁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 ····· 81
1. 절차법적 접근 ····· 81
2. 규제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 82
가. 이유제시의무에 대한 사법심사 ····· 82
나. 이유제시의 의미와 기능 ····· 83
다. 이유제시의 정도 ····· 84
라. 법원의 판단기준 형성 필요 ····· 85
제2절 규제현실의 변화와 법의 혁신 ····· 87
Ⅰ. 논의의 방향 ····· 87
Ⅱ. 혁신론 ····· 88
1. 혁신과 법의 혁신 ····· 88
가. 혁신의 개념 ····· 88
나. 혁신론의 확장 ····· 89
다. 법에 의한 혁신과 법의 혁신 ····· 89
2. 혁신과 규제 ····· 90
가. 혁신적대적 규제 ····· 90
나. 규제지체(regulatory time lag) ····· 91
3. 법의 혁신개방성 ····· 92

4. 예시적 대안 ····· 93
가.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 93
나. 획일규제의 개선 필요 ····· 95
다. 거버넌스 이념의 수용 ····· 99
라. 사적 동력의 활용 ····· 100
마. 정리 ····· 100
Ⅲ. 규제현실의 변화 사례 ····· 101
1. 주류 소매관련 고시에 의한 규제 ····· 101
가. 이른바 “맥주보이” 사례 ····· 101
나. 개정 고시 ····· 102
다. 평가 ····· 103
2. 중고차 매입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 104
가. 배경 ····· 104
나. 온라인-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규제 ····· 105
다. 경과 ····· 107
라. 평가 ····· 108
3. 자율주행자동차 ····· 109
가. 의의 및 발전양상 ····· 109
나.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규제 ····· 110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근거 ····· 111
라. 해외 입법례 ····· 113
마. 제도 개선의 쟁점 ····· 116
4. 개인정보보호와 규제개혁 ····· 119
가.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규제 ····· 119
나.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T.O.M)에 의한 규제 ····· 122
제3절 중간 검토 ····· 125
제4장 규제법과 규제개혁 ····· 129
제1절 규제법의 출현 배경 ····· 131
Ⅰ. 개 관 ····· 131
1. 미국의 규제와 유럽연합의 규제법 ····· 131
2. 이론적 기초로서 보장국가론 ····· 132
3. 규제개혁 논의와의 관련성 ····· 133
가. 국가임무론과 규제 ····· 133
나. 공동선, 공익, 규제 ····· 134
Ⅱ. 법치국가의 발전과 새로운 국가상 ····· 134
1. 법치국가의 단계와 행정유형 ····· 135
2. 사회국가의 위기 ····· 136
가. 과잉법제화와 규제의 트릴레마 ····· 136

나. 회귀적 대안으로서의 규제완화 ····· 137
3. 새로운 국가상으로서 보장국가 ····· 139
가. 새로운 국가상의 필요성 ····· 139
나. 보장국가론 ····· 140
제2절 보장국가의 배경이론 ····· 142
Ⅰ. 국가와 공동선 ····· 142
1. 논의의 필요성 ····· 142
2. 공동선의 실현과 국가 ····· 143
가. 국가의 개념과 공동선의 관계 ····· 143
나. 사인에 의한 공익실현 ····· 145
다. 국가와 사회의 분업적 공동선 실현 ····· 146
라. 정리 ····· 147
Ⅱ. 국가임무론 ····· 147
1. 국가임무론의 발전과 한계 ····· 148
가. 기원: 국가목적론 ····· 148
나. 기존 임무론의 연구대상과 성과 ····· 149
다. 변화의 조짐과 방향성의 설정 ····· 149
2. 국가의 핵심임무가 존재하는가? ····· 151
가. 문제의 인식과 접근방법 ····· 151
나. 국가임무의 전통적 분류시도 ····· 152
다. 핵심임무론의 등장 ····· 153
라. 핵심임무론에 대한 비판 ····· 154
마. 소결 ····· 157
Ⅲ.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 ····· 158
1. 책임론의 등장배경과 기능 ····· 158
가. 등장배경 ····· 158
나. 기능 ····· 158
2. 행정책임의 기본유형 ····· 159
가. 이행책임 ····· 159
나. 보장책임 ····· 160
다. 교정책임 ····· 160
3. 책임론의 성과 ····· 160
제3절 보장행정에서의 규제 ····· 162
Ⅰ. 보장국가와 보장행정 ····· 162
1. 공동선 실현방식의 변화 ····· 162
2. 기존 국가상 및 행정유형과의 비교 ····· 163
3. 규제국가로서 보장국가 ····· 165
Ⅱ. 행정법체계에서의 규제 ····· 165

1. 행정법의 체계성과 규제개념의 수용 ····· 165
2. 보장국가의 규제전략 ····· 166
가. 고권적 규제의 변화 ····· 166
나. 자율규제 ····· 167
다. 규제적 자율규제 ····· 170
라. 예시적 대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자율규제 ····· 171
Ⅲ. 규제법의 개요 및 구조 ····· 172
1. 규제법상의 규제의 특징 ····· 172
가. 질서법적 범위의 초월 ····· 172
나. 민영화결과법(Privatisierungsfolgerecht) ····· 173
다. 경쟁의 보호에서 형성으로 ····· 173
라. 경쟁법과의 구별 ····· 173
2. 규제목적: 규제법의 구조적 특징 ····· 174
가. 입법기술적 특이성 ····· 174
나. 규제개념에 대한 콘셉트적 접근 ····· 175
다. 규제된 경쟁의 목적과 공동선 목적의 결합 ····· 176
3. 정리 ····· 178
Ⅳ. 평가 ····· 179
제5장 규제개혁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임무 ····· 181
제1절 개 관 ····· 183
Ⅰ. 본질적 한계 ····· 183
Ⅱ. 사법부의 기능적합적인 규제개혁 수행 ····· 183
제2절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185
Ⅰ. 미국 연방대법원의 Chevron 존중주의 ····· 185
1. 미국 행정법상 사법존중주의의 의미 ····· 185
가. 미국 행정청의 특수성과 사법심사 ····· 185
나. 규제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사법심사 ····· 186
2. Chevron 존중의 개요 ····· 187
가. Chevron 사건의 개요 및 경과 ····· 187
나. 연방대법원의 판결 ····· 188
3. 사례의 분석 ····· 190
가. Scialabba v. Cuellar de Osorio 사건 ····· 190
나. 행정입법 해석권한과의 관계 ····· 191
Ⅱ.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규제재량 ····· 200
1. 개념의 기원 ····· 200
2.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 200
3. 규제재량의 인정여부 ····· 201
Ⅲ. 비용편익분석 ····· 202

1. 현대 규제정책과 비용편익분석 ····· 202
2. 비용편익분석의 등장과 발전 ····· 203
3. 비용편익분석과 사법심사 ····· 204
Ⅳ. 사법심사에 대한 규제기관의 존중 ····· 204
1. 국가기능 상호간의 긴장과 존중 ····· 204
2. 미국 ····· 205
가. 미국연방대법원의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 205
나. Chevron 존중주의에 대한 제한 ····· 206
다. Ragsdale v. Wolverine World Wide, Inc. 사건 ····· 207
3. 일본의 현황 ····· 209
가. 판결에 따른 행정입법의 개정 ····· 209
나. 일본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209
다. 경제산업성 사무국의 영업비밀관리지침 개정 ····· 210
라. 징계면직처분 ····· 211
4. 독일 공무원임용절차상 신체적합성 기준의 변경 ····· 213
가. 사건의 배경 및 경과 ····· 213
나. 판례의 변경 ····· 214
다. 행정청의 회람과 판결존중 ····· 214
5.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유지 문제 ····· 216
가. 논의의 배경 ····· 216
나. 정의규정과 해석의 문제 ····· 216
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일련의 대법원 판례 ····· 216
라. 판결에 반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유지 ····· 217
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218
바. 평가 ····· 218
제3절 판결을 통한 규제개혁과 사회변혁 ····· 219
Ⅰ. 사법부 본연의 임무수행과 규제개혁 ····· 219
Ⅱ.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의한 유럽연합법의 발전 ····· 220
1. 개관: 판례에 의한 규제개혁의 기본이념 형성 ····· 220
2. 1985년 소위 “부작위판결” ····· 220
가. 배경 ····· 220
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단 ····· 222
3. 1986년 Nouvelles-Frontières 판결 ····· 223
4. 2003년 Altmark Trans 판결: 공공의 이익과 경쟁의 원칙 ····· 224
가. 배경 ····· 224
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 226
다. 평가 ····· 228
5. 시사점 ····· 228

Ⅲ. 규제개혁 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 229
1. 논의의 배경 ····· 229
2. 미국 ····· 229
가. 개관 ····· 229
나. 관련 법령 ····· 229
다. 행정기관에 대한 사법심사 ····· 230
라. 미국의 법원모욕 ····· 234
3. 프랑스 ····· 236
가. 아스트렝트 ····· 236
나. 이행청구 ····· 239
4. 독일 행정소송법상 이행강제금 ····· 239
5.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구속력 ····· 240
가. 반복금지(제33조 제1항) ····· 240
나. 재처분의무(제33조 제2항 및 제3항) ····· 240
다. 원상회복의무 ····· 241
라. 구속력 위반의 효과 ····· 241
6. 중국 ····· 241
가. 중국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 ····· 242
나. 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 243
7. 현행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기속력 ····· 246
가. 의의 ····· 246
나. 기속력의 내용 ····· 247
8.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방안 ····· 248
가. 논의 배경 ····· 248
나. 경과 ····· 249
다. 개정의 지연상황 ····· 250
라.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 251
마.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 252
바. 평가 ····· 256
9. 그 외의 방안 ····· 256
가. 행정법원의 강화 및 확대 방안 ····· 256
나. 가처분의 도입 및 집행정지의 개선방안 ····· 259
제6장 결론 ····· 261

47.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Basic rearch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for examining evidenc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연구총서 2016-22

연구책임자 : 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7년 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Ⅰ. 연구의 범위 ····· 21
Ⅱ. 연구의 방법 ····· 23
제2장 전자정보의 일반론 ····· 25
제1절 전자정보의 의의 ····· 27
Ⅰ. 전자정보의 개념 ····· 27
Ⅱ.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 28
1. 전자문서 ····· 28
2. 디지털증거 ····· 29

3. 전자적 자료(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 30
제2절 전자정보의 특성 ····· 30
Ⅰ. 서설 ····· 30
Ⅱ. 매체 독립성 ····· 31
Ⅲ. 용량의 방대성 ····· 32
Ⅳ.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매체 의존성) ····· 33
Ⅴ. 잠재성 ····· 34
Ⅵ. 유동성(취약성) ····· 34
Ⅶ. 복원성 ····· 36
Ⅷ. 전문성 ····· 36
Ⅸ. 네트워크 관련성 ····· 37
제3절 전자정보의 유형 ····· 38
Ⅰ. 작성 주체에 따른 분류 ····· 38
1. 컴퓨터에 저장한 정보(Computer Stored Information) ····· 39
2.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Computer Generated Information) ····· 39
Ⅱ. 저장 매체의 접근 가능성에 따른 분류 ····· 40
1. 활성, 온라인 데이터(Active, Online Data) ····· 41
2. 근접 데이터(Near-line Data) ····· 41
3. 오프라인 저장소(Offline Storage/Archives) ····· 41
4. 백업테이프(Backup Tapes) ····· 41
5. 삭제, 분절, 손상된 데이터(Erased, Fragmented, Corrupted Data) ····· 42
6. 정리 ····· 42
Ⅲ. 형태에 따른 분류 ····· 43
1. 원본 데이터(Native data) ····· 43
2. 메타데이터(Meta data) ····· 43
3. 이미지파일(Image File) ····· 45
4. 그 외의 형태 ····· 45
가. 임베디드데이터(Embedded Data) ····· 46
나. 삭제된 데이터(Deleted Data) ····· 46
다. 이메일(Email) ····· 47
라. 백업데이터(Backup Data) ····· 47
마. 인스턴트메시지로그(Instant Messaging Logs) ····· 47
바. 임시 파일(Temporary Files) ····· 48
사. 인터넷 게시판 ····· 48
아. 소셜미디어(Social Media) ····· 48
자. 데이터베이스(Database) ····· 49
차.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의 데이터 ····· 49
Ⅳ. 휘발성에 따른 분류 ····· 50

1. 휘발성 정보 ····· 51
2. 준휘발성 정보 ····· 51
3. 비휘발성 정보 ····· 51
제4절 전자정보의 기본적인 조건 ····· 52
Ⅰ. 서설 ····· 52
Ⅱ. 진정성(Authenticity) ····· 53
Ⅲ. 신뢰성(Reliability) ····· 53
Ⅳ. 무결성(Integrity) ····· 54
Ⅴ. 이용 가능성(Usability) ····· 55
제3장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및 실무 ····· 57
제1절 서설 ····· 59
제2절 증거조사 방법 ····· 60
Ⅰ. 현행 규정 ····· 60
1. 민사소송 ····· 61
가. 민사소송법 ····· 61
나. 민사소송규칙 ····· 62
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65
2. 형사소송 ····· 72
가. 형사소송법 ····· 72
나. 형사소송규칙 ····· 73
다. 관련 판례 ····· 74
Ⅱ. 실무 현황 ····· 76
1. 서설 ····· 76
2. 민사소송 ····· 77
가. 학설의 소개 ····· 77
나. 종이소송에서의 증거조사 ····· 79
다.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 82
라. 검토 ····· 85
3. 형사소송 ····· 87
가. 증거능력의 인정 ····· 87
나. 컴퓨터용 디스크 등의 조사 방법 ····· 88
다.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의 조사 방법 ····· 89
라. 도면·사진 등의 조사 방법 ····· 91
마. 검토 ····· 91
제3절 증거 수집 제도 ····· 93
Ⅰ. 서설 ····· 93
Ⅱ. 현행 제도 및 실무의 개관 ····· 94
1. 민사소송 ····· 94

가. 문서제출명령 제도 ····· 94
나. 증거보전절차 ····· 98
2. 형사소송: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 100
가. 열람·등사의 대상 ····· 100
나. 신청의 방법 ····· 101
다. 열람·등사의 방법 ····· 101
라. 특수 매체의 열람·등사 ····· 102
마. 검사의 열람·등사 ····· 102
바. 열람·등사의 제한 ····· 102
Ⅲ.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제도에 관하여 제안된 개선 방안 ····· 103
1.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 104
가. 현황 및 문제점 ····· 104
나. 개선 방안 ····· 104
다. 기대 효과 ····· 106
2.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 106
가. 도입의 필요성 ····· 107
나. 도입 방안 ····· 107
다. 기대 효과 ····· 112
Ⅳ. 전자정보를 고려한 접근의 필요 ····· 113
제4장 각국의 전자정보에 관한 규정 및 실무 ····· 115
제1절 서설 ····· 117
제2절 미국 ····· 117
Ⅰ. 규정 ····· 118
1.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 118
가. 원본 제출의 원칙과 전자정보 ····· 119
나. 비밀유지권이 인정되는 자료의 부주의로 인한 공개 ····· 120
2.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121
가. 증거개시의 개관 ····· 121
나. 개정 경위 ····· 122
다. 전자정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 ····· 124
Ⅱ. 실무지침 및 사례 ····· 142
1. 세도나 원칙 ····· 142
가. 세도나 회의의 개관 ····· 142
나. 세도나 원칙의 주요 내용 ····· 143
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Sedona Canada Principles) ····· 151
2. 뉴욕 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실무 운영 방안 ····· 153
가. 제1 지침(Guideline NO. 1): 보존 의무의 발생 시기 ····· 154
나. 제2 지침(Guideline NO. 2): 보존 의무의 범위에 관한 고려 요소 · 155

다. 제3 지침(Guideline NO. 3): 보존 통지의 내용 ····· 155
라. 제4 지침(Guideline NO. 4): 변호사의 협조 ····· 156
마. 제5 지침(Guideline NO. 5): 변호사의 전문성 ····· 157
바. 제6 지침(Guideline NO. 6): 제출을 요구하는 전자정보의 범위 ····· 158
사. 제7 지침(Guideline NO. 7): 전자정보의 제출 형태 ····· 159
아. 제8 지침(Guideline NO. 8): 전자정보의 제출 단계 ····· 160
자. 제9 지침(Guideline NO. 9): 전자정보 수집의 고려 요소 ····· 160
차. 제10 지침(Guideline NO. 10): 전자정보의 검색 ····· 161
카. 제11 지침(Guideline NO. 11): 검색에서의 비밀유지권 등의 고려 · 162
타. 제12 지침(Guideline NO. 12): 비용 감소를 위한 변호사의 조치 ··· 163
파. 제13 지침(Guideline NO. 13): 비용 분담을 위한 변호사의 조치 ··· 163
하. 제14 지침(Guideline NO. 14): 전자정보의 인멸 등에 대한 제재 ··· 164
3. 전자정보의 검색·검토 등에 관한 실무 ····· 164
가. 전자정보의 검색·검토 등의 필요성 ····· 165
나. 키워드 검색 및 그 한계 ····· 165
다. Predictive Coding의 등장 ····· 167
4.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 172
5. 전자증거개시 참조모델 (EDRM: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 174
가. 개요 ····· 174
나. 절차 개관 ····· 174
6. 사례 ····· 175
가. Zubulake v. UBS Warburg LLC 사건 ····· 175
나. Columbia Pictures Inc. v. Bunnell 사건 ····· 177
다. Louis Vuitton Malletier v. Dooney & Bourke, Inc. 사건 ····· 179
라. Healthcare Advocates, Inc. v. Harding, Earley, Follmer & Frailey 사건 ····· 180
마. In re Priceline.com Inc. Securities Litigation 사건 ····· 181
바. Williams v. Sprint/United Management Co. 사건 ····· 181
사. In Stevenson v. Union Pacific Railroad Co. 사건 ····· 182
아. O'Brien v. O'Brien 사건 ····· 183
자. Kilpatrick v. Breg Inc. 사건 ····· 183
차. Helget v. City of Hays, Kans. 사건 ····· 183
카. EEOC v. Simply Storage Management 사건 ····· 184
제3절 영국 ····· 185
Ⅰ. 전자증거개시 현황의 개괄적 검토 ····· 186
Ⅱ.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민사소송규칙의 규정 ····· 187
1. 일반 원칙 ····· 188
2. 문서의 보존 ····· 188
3. 최초 사건관리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전 당사자들 사이의 기술과 증거개시 이용에

관한 논의 ····· 188
4. 전자문서 질문서(Electronic Documents Questionnaire) ····· 189
5. 최초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의 준비 ····· 190
6. 당사자들이 전자문서의 개시에 관하여 적절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 191
7. 합리적인 검색 ····· 191
8. 키워드 검색과 다른 자동화된 검색 ····· 192
9. 메타데이터의 개시 ····· 193
10. 문서 목록(Lists of documents) ····· 193
11.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개시의 제공 ····· 194
12. 개시된 문서의 전자적 복제본의 제공 ····· 194
13. 전문화된 기술 ····· 195
Ⅲ. 실무사례: Predictive Coding의 채택 ····· 195
1. Predictive Coding의 개념 및 목적 ····· 195
2. 잉글랜드 고등법원(English High Court)의 결정 ····· 196
가. 결정 요지 ····· 196
나. 사실관계 ····· 196
다. 결정 이유 ····· 197
제4절 독일 ····· 198
Ⅰ. 관련 규정의 개관 ····· 199
Ⅱ. 전자문서의 개념 ····· 202
Ⅲ.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 203
1. 증거조사 방법: 검증 ····· 203
2. 증거조사의 개시 ····· 205
가. 파일 ····· 205
나. 제출 ····· 205
다. 전송 ····· 206
라. 파일의 개봉 ····· 206
마. 기타 ····· 207
3. 전자문서의 증거력 ····· 208
가. 전자사문서 ····· 209
나. 전자공문서 ····· 212
다. 전자공문서 출력물의 증거력 ····· 215
라. 이메일과 De-Mail ····· 218
마. 스캔한 문서 ····· 222
제5절 일본 ····· 227
Ⅰ.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조사 방법 ····· 228
1.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의 논의 ····· 228
2. 현행 규정 ····· 228

Ⅱ. 컴퓨터용 저장 매체의 증거조사 방법 ····· 229
1. 법령 규정의 부재 ····· 229
2. 견해의 대립 ····· 230
3. 실무의 태도 ····· 230
가. 현황 ····· 230
나. 전망 ····· 230
Ⅲ. 증거 수집에 관한 제도 및 실무 ····· 231
1. 제소 전 증거수집처분 ····· 232
가. 개요 ····· 232
나. 전자정보의 증거수집처분에 관한 논의 ····· 232
2. 증거보전절차 ····· 233
가. 개요 ····· 233
나. 전자정보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논의 ····· 234
제6절 시사점 ····· 235
제5장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증거 수집에 관한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안 ·· 239
제1절 서설 ····· 241
제2절 증거조사에 관한 현행 규정 ····· 243
Ⅰ. 문제점 ····· 243
1. 현행 규정의 개관 ····· 243
2. 증거조사에 관한 단순한 법 규정 ····· 245
3. 전자정보와 저장 매체의 혼동 ····· 246
4. 전자정보의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부적절성 ····· 246
5. 민·형사소송규칙의 모호한 규정 내용 ····· 247
6. 이원적인 규율에 따른 혼란 ····· 248
7. 구체적인 규정 내용의 적정성 ····· 249
가. 문자정보와 비문자정보의 구분 ····· 249
나. 불명확한 내용의 존재 ····· 250
Ⅱ. 바람직한 법령 규정의 방향 ····· 251
1. 전자정보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포함된 법령 규정 ····· 251
2. 전자정보 자체를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규정 ····· 252
3. 전자정보에 적합한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관련 규정 ····· 253
4. 문자인 전자정보의 원칙적인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민·형사소송규칙의 명확한 규정 ····· 254
5. 민사소송에서의 통일적인 규율 ····· 255
6. 규정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 ····· 256
가. 문자정보와 비문자정보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구별의 폐지 ····· 256
나. 불명확한 용어 사용의 지양 ····· 257
7.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258
제3절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증거 수집 제도의 내용 일반 ····· 260

Ⅰ. 문제점 ····· 260
Ⅱ. 전자정보에 관한 내용 마련의 필요성 ····· 261
Ⅲ. 당사자 협의의 중요성 ····· 262
Ⅳ. 전문성 확보 ····· 266
제4절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 ····· 268
Ⅰ. 문제점 ····· 268
1. 증거 수집에서의 어려움 ····· 268
2. 증거조사에서의 어려움 ····· 269
Ⅱ. 효율적인 대응 ····· 269
제5절 증거의 제출 형태 ····· 271
Ⅰ. 문제점 ····· 271
Ⅱ. 제출 형태의 기준 설정 ····· 272
1. 증거조사를 위한 제출 ····· 272
2. 증거 수집을 위한 제출 ····· 273
제6절 합리적인 접근 가능성 ····· 275
Ⅰ. 문제점 ····· 275
Ⅱ. 2단계 기준 및 비례성 원칙에 따른 처리 ····· 276
제7절 자료의 공개 및 훼손 가능성 ····· 278
Ⅰ. 문제점 ····· 278
Ⅱ. 증거유지명령 등의 활용 ····· 279
제8절 위법 수집 가능성의 증가 ····· 280
Ⅰ. 문제점 ····· 280
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고려 여부 ····· 281
제9절 기본적인 조건의 법률상 취급 ····· 283
Ⅰ. 문제점 ····· 283
Ⅱ. 형식적 증거력의 판단 기준 ····· 283
1. 진정성 ····· 283
2. 신뢰성·무결성 ····· 284
제10절 관련 비용의 증가 ····· 285
Ⅰ. 문제점 ····· 285
Ⅱ. 구체적 고려 필요 ····· 287
제11절 증거 보존 의무의 부과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 ····· 288
Ⅰ. 문제점 ····· 288
Ⅱ. 전자정보에 대한 보존 의무와 제재 조치 ····· 290
제12절 제출 거부 사유를 간과한 제출 ····· 293
Ⅰ. 문제점 ····· 293
Ⅱ. 소지자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 ····· 294
제13절 원본 증거의 개념 유지 여부 ····· 296

Ⅰ. 문제점 ····· 296
Ⅱ. 원본 개념의 변화 ····· 297
제6장 맺음말 ····· 299

48.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연구총서 2017-01

연구책임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오세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8월 30일 발행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일반적인 원칙 ····· 1
본 표준안의 사용 방향 ····· 3
인용의 일반 원칙 ····· 3
법 연구에서의 정확한 인용 ····· 4
직접 인용에서의 내용변경 ····· 4
각주 인용 방식 ····· 6
참고문헌 ····· 6
각주 인용 방법 ····· 7
문헌(1차 문헌)을 인용한 문헌(2차 문헌)에서의 인용 - 재인용 ····· 8
I. 판결 등 인용 ····· 9
1.1. 법원의 판결, 결정 및 명령 ····· 9
1.2. 헌법재판소 결정 ····· 10
1.3. 준(準)사법기관 결정(의결) ····· 10
1.4. 판결의 출처 표기 ····· 10
1.5. 판결의 영문표기 ····· 11
II. 법령 인용 ····· 13

2.1. 법령 표시의 일반적 원칙 ····· 13
2.2. 법령 ····· 13
2.3. 구법(舊法) ····· 14
2.4. 북한법령의 인용 ····· 15
III. 도서의 인용 ····· 16
3.1. 도서(단행본) ····· 16
3.2. 국내 도서의 인용 - 일반적 원칙 ····· 16
3.3. 외국 도서(단행본) 인용방법 ····· 18
IV. 정기 간행물 내 논문 ····· 20
4.1. 정기 간행물(논문집)의 인용방법 ····· 20
4.2. 외국의 정기 간행물 내 논문 ····· 20
V. 기타 법률자료의 인용 ····· 25
5.1. 기타 법률자료 인용의 일반적 원칙 ····· 25
5.2. 학위 논문 ····· 25
5.3. 간행 예정물 ····· 26
5.4. 국회 회의록 ····· 26
5.5. 국회 계류 의안 ····· 26
5.6. 공적 보고서 ····· 27
5.7. 공공기관 보도자료 ····· 27
5.8. 내부 보고서 ····· 28
5.9. 신문기사 ····· 29
5.10. 세미나 등 간담회 발표문(토론문) ····· 30
5.11. 개인기록 - 면담 등 ····· 31
VI. 디지털 문헌 ····· 33
6.1. 디지털 문헌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 33
6.2.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판된 형태가 있는 경우 - 일반적인 원칙 ····· 33
6.3. 디지털의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인 경우 ····· 34
VII. 해외 법령 및 판례 ····· 36
7.1. 해외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인용 방법 - 일반적인 원칙 ····· 36
7.2. 그리스 ····· 36
7.3. 남아프리카 공화국 ····· 38
7.4. 노르웨이 ····· 39
7.5. 네덜란드 ····· 40
7.6. 뉴질랜드 ····· 41
7.7. 대만 ····· 42
7.8. 덴마크 ····· 43
7.9. 독일 ····· 44

7.10. 러시아 ····· 46
7.11. 말레이시아 ····· 48
7.12. 멕시코 ····· 49
7.13. 미국 ····· 50
7.14. 벨기에 ····· 52
7.15. 벨라루스 ····· 54
7.16. 베트남 ····· 54
7.17. 브라질 ····· 55
7.18. 스웨덴 ····· 56
7.19. 스위스 ····· 56
7.20. 스페인 ····· 57
7.21. 싱가포르 ····· 58
7.22. 아르헨티나 ····· 59
7.23. 아일랜드 ····· 60
7.24. 영국 ····· 61
7.25. 오스트리아 판례 ····· 63
7.26. 우즈베키스탄 ····· 65
7.27. 우크라이나 ····· 65
7.28. 이스라엘 ····· 66
7.29. 이집트 ····· 67
7.30. 이탈리아 ····· 68
7.31. 인도 ····· 69
7.32. 인도네시아 ····· 70
7.33. 일본 ····· 71
7.34. 중국 ····· 72
7.35. 칠레 ····· 73
7.36. 카자흐스탄 ····· 74
7.37. 캐나다 ····· 74
7.38. 케냐 ····· 76
7.39. 태국 ····· 77
7.40. 프랑스 ····· 78
7.41. 핀란드 ····· 79
7.42. 필리핀 ····· 80
7.43. 호주 ····· 81
7.44. 홍콩 ····· 82
7.45. EU/EC ····· 83
7.46. European Case Law Identifier(ECLI: 유럽 국가 판례법 식별 표시) ·· 84
VIII. 국제법률문헌 ····· 86

8.1. 국제법률문헌 인용의 일반적인 원칙 ····· 86
8.2. 국제 조약 ····· 86
8.3. 국제법원 판례 ····· 87
8.4. 지역인권법원 ····· 89
8.5. 유엔 전범재판 기구 문헌 ····· 91
8.6. 국제기구 문헌 ····· 93
8.7. 국제중재 기구 문서 ····· 96
IX. 축약형태 및 영문명 ····· 97
9.1. 공보지 및 법원명 약어 ····· 97
9.2. 주요 간행물 영문명 ····· 102
9.3. 해외 주요 논문 간행물의 축약 형태 ····· 107
9.4. 국제 조약집 약어 ····· 165

49.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The French Law of Evidence in Civil Actions

연구총서 2017-02

연구책임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5월 17일 발행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0
Ⅰ. 연구의 범위 ····· 20
Ⅱ. 연구의 방법 ····· 20
1. 문헌연구 ····· 20
2. 전문가 의견 ····· 21
제2장 증거법의 특징 ····· 23
제1절 개설 ····· 25
제2절 역사적 배경 ····· 25
제3절 서면심리원칙의 강화 ····· 30
제4절 서증우선의 원칙 ····· 32
Ⅰ. 서증우선의 원칙의 의의 ····· 32
1.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 ····· 32
2. 금액 또는 가액을 통한 제한 ····· 34
Ⅱ. 계약 중심적 사회의 특징 ····· 35

Ⅲ. 사적 질서로서의 서증우선의 원칙 ····· 36
제5절 증명책임 및 증거조사에 대한 협력 ····· 38
Ⅰ. 개설 ····· 38
Ⅱ. 증명책임 ····· 39
1. 민사소송법 제9조 ····· 39
2. 민법 제1363조 ····· 40
Ⅲ. 증거조사에 대한 협력 및 제재 ····· 40
1. 개설 ····· 40
2. 당사자의 협력의무 ····· 41
3. 불응에 대한 제재 ····· 41
제6절 증거방식의 인정 여부 ····· 42
Ⅰ. 개설 ····· 42
Ⅱ. 증명방법의 일반적 원칙 ····· 42
Ⅲ. 증거방법에 대한 예외 ····· 43
1. 금액초과를 통한 증거방식의 제한 ····· 43
2. 서면확보의 불가능 ····· 44
가. 사실상 또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 45
나. 불가항력의 경우 ····· 46
3. 서증의 단서 ····· 46
제7절 추정 ····· 47
Ⅰ. 개설 ····· 47
Ⅱ. 개정 전 규정 ····· 47
1. 법률에 의한 추정 ····· 48
2. 법관에 의한 추정 ····· 48
Ⅲ. 개정 규정 ····· 49
1. 법률에 의한 추정 ····· 49
가. 단순 추정 ····· 49
나. 제한적 추정 ····· 49
다. 절대적 추정 ····· 50
2. 법관에 의한 추정 ····· 51
3. 기판력 ····· 52
제3장 서면에 의한 증거 ····· 53
제1절 개설 ····· 55
제2절 서면증거의 제공의무 ····· 55
Ⅰ. 개설 ····· 55
Ⅱ. 제3자 및 당사자가 소지한 서면증거 ····· 56
1. 제3자가 소지한 서면증거 ····· 56
2. 당사자가 소지한 서면증거 ····· 57

제3절 서면증거의 공통적 사항 ····· 58
Ⅰ. 개설 ····· 58
Ⅱ. 증거의 일반 원칙 ····· 59
1. 민법 제1363조의 신설 ····· 59
2. 개정 전 민법 제1315조 ····· 60
Ⅲ. 증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 ····· 60
1. 문서 일반에 대한 예외 ····· 60
2. 전자문서에 대한 예외 ····· 61
Ⅳ. 법관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62
제4절 사서증서 ····· 62
Ⅰ. 개설 ····· 62
Ⅱ. 사서증서의 증명력 ····· 63
1. 개설 ····· 63
2. 효력의 범위 ····· 63
3. 제3자에 대한 효력 ····· 64
가. 등록일 ····· 64
나. 서명인의 사망일 ····· 64
다. 공정증서에 의한 검증일 ····· 64
라. 관련 판례 ····· 65
4. 필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 ····· 65
가. 개정 전 필적 감정 규정 ····· 65
나. 개정 된 필적 감정의 요건 ····· 66
5. 변호사가 연서한 사서증서의 증명력 ····· 67
Ⅲ. 복수 원본 작성의 원칙 ····· 68
1. 당사자의 수와 원본의 수의 동일성 ····· 69
2. 작성된 원본 수의 기재 ····· 70
3. 계약의 일부 이행 시 ····· 70
4. 전자문서의 경우 ····· 71
Ⅳ. 금액 또는 수량의 직접 기재 ····· 71
Ⅴ. 삭제된 특정 사서증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 ····· 72
Ⅵ. 사서증서에 관한 분쟁 ····· 73
1. 필적 감정 ····· 74
가. 개설 ····· 74
나. 필적 감정 방법 ····· 75
다. 전자서명에 대한 신뢰도 추정 ····· 76
라. 증거조사 및 절차 ····· 76
마. 분쟁이 되는 문서 ····· 77
바. 필적의 감정 소송 ····· 77

2. 위조 ····· 78
가. 개설 ····· 78
나. 감정 절차 ····· 78
다. 증거자료의 확보 ····· 79
라. 증인 신문 ····· 79
제5절 공정증서 ····· 80
Ⅰ. 개설 ····· 80
1. 성립요건 ····· 80
2. 효력 ····· 81
Ⅱ. 공정증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 ····· 81
1. 증여계약 ····· 82
가. 개념 ····· 82
나. 증여계약과 공정증서 ····· 82
다. 증여계약과 민법 제1370조와의 관계 ····· 83
라. 소결 ····· 83
2. 채무자의 약정대위 ····· 83
가. 개념 ····· 83
나. 채권자의 협력 유무 ····· 84
3. 부부재산계약 ····· 85
가. 연혁 ····· 85
나. 개념 ····· 86
다. 부부재산계약과 공정증서 ····· 86
4. 저당권 설정 계약 ····· 87
가. 내용 ····· 87
나. 저당권 설정과 공시 ····· 87
5.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 89
Ⅲ. 공정증서에 대한 위조소송 ····· 90
1. 개설 ····· 90
2. 위조에 대한 부대적 소송 ····· 90
가. 개설 ····· 90
나. 소의 제기 ····· 90
다. 소장에 대한 심사 ····· 91
라. 증거조사 ····· 91
마. 판결 ····· 91
바. 형사상 소추 ····· 92
3. 위조에 대한 주된 소송 ····· 92
가. 소의 제기 ····· 92
나. 공정증서의 필적 감정 ····· 93

다. 공정증서에 대한 위조소송의 포기 또는 타협 ····· 95
제6절 다른 방식의 서면에 의한 증거 ····· 95
Ⅰ. 개설 ····· 95
Ⅱ. 등본 ····· 96
1. 개정 전 등본의 증명력 규정 ····· 96
가. 정본 또는 최초의 등본 ····· 96
나. 원본에 근거해 작성된 등본 ····· 96
다. 단순 정보 ····· 97
2. 개정된 등본에 관한 규정 ····· 97
가. 개설 ····· 97
나. 증명력 ····· 97
Ⅲ. 확인증서 ····· 98
1. 원본 제출 의무 ····· 98
2.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 99
3. 개정을 통해 삭제된 규정 ····· 99
가. 30년 이상 된 증서의 존재 ····· 99
나. 채무의 증명 ····· 100
다. 증여 ····· 100
Ⅳ. 증명력이 인정되는 서면 ····· 100
1. 개설 ····· 100
2. 장부나 문서 ····· 102
3. 가계 문서 ····· 102
4. 영수증의 원본 및 부본 ····· 103
Ⅴ. 서증의 단서 ····· 104
1. 의의 ····· 104
가. 개정 전 사서증서 관련 규정 ····· 104
나. 개정 전 등본 관련 규정 ····· 104
다. 개정 전 증언 관련 규정 ····· 105
2. 개정 규정 ····· 105
가. 보충적 성격 ····· 106
나.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 ····· 106
제4장 진술에 의한 증거 ····· 107
제1절 개설 ····· 109
제2절 개정 전 증언에 관한 민법상 규정 ····· 110
Ⅰ. 개설 ····· 110
Ⅱ. 금액 초과 채권 ····· 110
Ⅲ. 상사 관련 법률에 의한 특례 ····· 111
Ⅳ. 이자가 포함된 총액의 초과 ····· 112

1. 청구한 금액의 감액 ····· 112
2. 채권의 잔액 ····· 112
3. 하나의 소에 청구된 금액의 총액 ····· 112
Ⅴ. 서증의 단서 ····· 113
Ⅵ. 서면증거의 제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 114
1. 서면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 114
가. 의사표시에 기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 114
나. 가능성의 부존재 또는 예측불가능성 ····· 115
2. 등본의 존재 시 ····· 116
제3절 당사자의 진술 ····· 116
Ⅰ. 당사자의 법정 출석 ····· 116
Ⅱ. 신문절차 ····· 117
Ⅲ. 조서의 작성 및 효과 ····· 118
제4절 제3자의 진술 ····· 118
Ⅰ. 개설 ····· 118
Ⅱ. 진술서의 작성 ····· 118
Ⅲ. 증인신문의 방식 ····· 119
1. 개설 ····· 119
2. 공통 사항 ····· 120
가. 증인의 능력 ····· 120
나. 불출석에 따른 제재 ····· 120
다. 절차 및 방식 ····· 120
3. 일반적 증인신문 ····· 123
가. 증명대상의 특정 ····· 123
나. 증인의 지정 ····· 123
다. 증인신문의 방식 및 일정 ····· 124
라. 증인의 소환 ····· 125
4. 예외적 증인신문 ····· 125
제5절 증언증거 배제에 대한 예외 ····· 125
Ⅰ. 개설 ····· 125
Ⅱ. 재판상 선서 ····· 126
1. 개설 ····· 126
2. 민법상 선서 관련 규정 ····· 126
가. 개설 ····· 126
나. 당사자에 의한 선서 ····· 127
다. 법관의 직원에 의한 선서 ····· 129
3. 선서를 명하는 판결 ····· 130
4. 선서의 방식 ····· 130

Ⅲ. 자백 ····· 131
1. 개설 ····· 131
가. 개념 ····· 131
나. 대상 확대 ····· 131
2. 자백의 종류 ····· 132
가. 재판 외 자백 ····· 132
나. 재판상 자백 ····· 132
제5장 전문가를 통한 증거조사 ····· 135
제1절 개설 ····· 137
제2절 전문가를 통한 증거조사의 공통적 사항 ····· 138
Ⅰ. 개설 ····· 138
Ⅱ. 전문가의 임명 ····· 138
Ⅲ. 전문가에 대한 기피 ····· 139
Ⅳ. 전문가의 임무 ····· 140
1. 사안의 조사 및 의견의 제공 ····· 140
2. 정보의 수집 ····· 140
3. 의견서 작성 ····· 141
Ⅴ. 법관의 임무 ····· 142
1. 개설 ····· 142
2. 전문가에 대한 법관의 임무 ····· 143
제3절 확인 ····· 144
Ⅰ. 개설 ····· 144
Ⅱ. 확인 절차 ····· 144
1. 사실 확인자에 대한 임명 ····· 144
2. 사실 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 145
Ⅲ. 보수의 지급 ····· 145
제4절 자문 ····· 145
Ⅰ. 자문 절차 ····· 145
1. 자문 수행자에 대한 임명 ····· 145
2. 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 146
Ⅱ. 보수의 지급 ····· 146
제5절 감정 ····· 146
Ⅰ. 개설 ····· 146
Ⅱ. 감정을 명하는 결정 ····· 147
1. 감정인의 지명 ····· 147
2. 감정인 명단 ····· 148
3. 감정 임무의 수락 ····· 149
4. 감정인 보수에 대한 예납 ····· 149

가. 예납금의 결정 ····· 149
나. 예납의 불이행 ····· 149
다. 예납금의 보충 ····· 150
5. 감정 결정에 대한 불복 ····· 150
Ⅲ. 감정 작업 ····· 151
1. 감정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 151
2. 당사자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 ····· 152
3. 감정 작업의 진행 ····· 152
4. 감정 작업의 중단 ····· 153
Ⅳ. 감정인의 의견 ····· 153
1. 감정서의 작성 ····· 153
2. 감정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 ····· 154
Ⅴ. 감정인 관리를 위한 법관의 존재 ····· 155
제6장 결론 ····· 157

50.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Systems of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연구총서 2017-03

연구책임자 : 이제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6월 20일 발행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제2장 북한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의 연혁 ····· 21
제1절 일제강점기의 제도 ····· 23
Ⅰ. 민적법(民籍法) ····· 23
1. 제정배경 ····· 23
2. 호적제도의 특징 ····· 24
3. 한계 ····· 26
Ⅱ. 조선호적령 ····· 27
1. 제도의 연혁 ····· 27
2. 호적제도의 특징 ····· 28
3. 한계 ····· 29
Ⅲ. 조선기류령 ····· 30

Ⅳ. 소결 ····· 30
제2절 광복 이후 새로운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의 확립 ····· 31
Ⅰ. 신분등록사업 ····· 32
1. 정권 초기: 호적제도의 유지 ····· 32
2. 신분등록제도의 도입 배경 ····· 34
3. 제도의 내용 ····· 35
Ⅱ. 공민등록사업 ····· 37
1. 공민등록제도의 도입 ····· 37
2. 공민증의 형식 ····· 40
3. 정리 ····· 40
Ⅲ. 주민요해사업 ····· 41
Ⅳ. 소결 ····· 44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사회주의법 국가의 제도 ····· 45
제1절 러시아(구 소비에트연방) ····· 47
Ⅰ. 신분등록제도 ····· 48
1.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신분등록제도 ····· 48
2. 사회주의 신분등록제도의 내용 및 특징 ····· 51
Ⅱ. 단일신분증명제도와 의무적 거주등록제도 ····· 60
1. 도입배경 ····· 60
2. 제도의 내용 ····· 61
제2절 중국 ····· 65
Ⅰ. 호구제도 ····· 65
1. 연혁 ····· 65
2. 호구제도의 목적 ····· 66
3. 담당기관과 등록장부 ····· 68
4. 호구제도상 등기대상 ····· 72
Ⅱ. 거민신분증제도(居民身份证制度) ····· 78
1. 제도의 도입 및 발전 ····· 78
2. 거민신분증 ····· 78
3. 한계 ····· 80
제3절 소결 ····· 80
제4장 현행 북한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의 실태 ····· 83
제1절 신분등록제도 ····· 85
Ⅰ. 신분등록사항 및 신분등록기관 ····· 85
1. 신분등록사항 ····· 85
2. 신분등록기관 ····· 86
Ⅱ. 출생 및 사망등록 ····· 88
1. 출생등록 ····· 88

2. 사망등록 ····· 90
Ⅲ. 입양 및 파양등록 ····· 90
1. 입양등록 ····· 90
2. 파양등록 ····· 91
Ⅳ. 결혼 및 이혼등록 ····· 91
1. 결혼등록 ····· 91
2. 이혼등록 ····· 92
Ⅴ.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 92
제2절 공민등록제도 ····· 93
Ⅰ. 공민등록기관 및 등록신청절차 ····· 94
1. 공민등록기관 ····· 94
2. 등록신청절차 ····· 94
Ⅱ. 공민증·출생증·평양시민증 ····· 95
1. 교부 ····· 95
2. 회수(제적) ····· 100
제3절 주민등록제도 ····· 101
Ⅰ. 주민등록사업의 원칙 및 요해의 기준 ····· 101
1. 주민요해에서 지켜야 할 원칙 ····· 101
Ⅱ. 주민등록사업의 조직 및 통보절차 ····· 107
1. 조직 ····· 107
2. 통보절차 ····· 108
3. 정리 ····· 112
Ⅲ.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 규정사업 ····· 112
1. 성분 ····· 112
2. 계층 ····· 121
Ⅳ. 주민등록대장 ····· 124
1. 주민등록카드 ····· 124
2. 료해 및 주민대장세대등록부 ····· 127
3. 따로사는 가족·친척 주민대장 №6 ····· 127
Ⅴ. 주민대장과 관련된 여러 사무 ····· 129
1. 주민대장 묶는 방법과 배열 ····· 129
2. 주민대장의 보관·이용·실사 ····· 132
제4절 등록제도의 전산화 ····· 137
Ⅰ. 현황 ····· 137
Ⅱ. 평양시 전산 주민등록대장 ····· 138
1. 구성 ····· 138
2. 동번호 및 동(구역)명 ····· 139
3. 민족번호 및 민족명 ····· 140

4. 본인번호 및 시민증단위 ····· 141
제5장 제도 통합의 과제와 방안 ····· 145
제1절 남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 ····· 148
Ⅰ. 신분등록제도 ····· 148
1. 호주제도 ····· 148
2. 가족관계등록제도 ····· 151
Ⅱ. 주민등록제도 ····· 155
1. 연혁 ····· 155
2. 현행 제도의 특성 ····· 157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구축 방안 ····· 157
Ⅰ. 통일독일 사례 ····· 157
1. 통일 이전까지의 연혁 ····· 157
2. 통일 과정에서 신분등록제도의 통합 ····· 159
Ⅱ.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 160
1.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방식 ····· 160
2. 가족관계등록 창설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 161
3. 가족관계등록 대상자의 구분 및 사례별 검토 ····· 162
제3절 주민등록제도의 운용 방안 ····· 165
Ⅰ. 통일독일 사례 ····· 166
1. 통일 이전 ····· 166
2. 통일 이후 ····· 168
Ⅱ. 통일한국에서의 주민등록제도 구축 방안 ····· 172
1.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 ····· 172
2. 주민등록증의 발급 ····· 185
제4절 주민요해사업의 폐지 ····· 189
제6장 결론 ····· 191

51.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Research on Demanding Procedure through Service by Public Notice

연구총서 2017-04

연구책임자 : 조호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김주완(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심의관)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7년 8월 1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제도의 입법 및 주요 내용 ····· 7

제1절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제도의 입법 ····· 9

Ⅰ. 서설 ····· 9

Ⅱ. 입법 배경 ····· 9

1. 종래 독촉절차에서 공시송달의 불허 ····· 9

2. 독촉사건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성 ····· 10

가. 독촉사건의 소송절차로의 대량 이동 ····· 10

나. 인지보정 및 소송절차 지연 ····· 11

3. 채무자 심급이익 보호 필요성 ····· 12
4. 사법부 효율성 제고 필요성 ····· 13
Ⅲ. 입법과정 ····· 14
1. 2006년 전자독촉절차에의 도입 검토 ····· 14
가. 논의 배경 ····· 14
나. 주요 내용 ····· 14
다. 추진 결과 ····· 15
2. 2014. 6. 10. 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 ····· 15
가. 발의 배경 ····· 15
나. 주요 내용 ····· 16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17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 19
가. 수정안 채택 경과 ····· 19
나. 주요 내용 ····· 19
4.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후속조치 ····· 22
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개정 ····· 22
나. 채권자 추가 요청 ····· 23
다. 기타 규칙 개정 ····· 25
Ⅳ. 입법에 따른 기대 효과 ····· 25
1. 독촉절차 활성화 ····· 25
2. 재판업무 선택과 집중 실현 ····· 26
3. 채무자 심급이익 보호 ····· 26
제2절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제도의 주요 내용 ····· 27
Ⅰ. 채권자 범위 ····· 27
1. 일부 금융기관으로 채권자 한정 ····· 27
2. 구체적 채권자 범위 ····· 28
3. 직권 소송절차회부결정 제한 ····· 29
4. 실무상 논의 및 처리 ····· 29
가. 불명확한 채권자의 신청 ····· 29
나. 비해당 채권자 신청 ····· 30
다. 비해당 채권자 신청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 30
라. 파산관재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 ····· 32
Ⅱ. 대상청구권의 범위 ····· 34
1.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그 양수금 채권으로 제한 ····· 34
2. 금융기관의 업무 관련성 ····· 35
3. 실무상 논의 및 처리 ····· 36
가. 대상청구권 판단 기준 ····· 36
나. 자동차 할부금융 채권 ····· 36

다. 보증금에서 주채무의 대상청구권 해당성 ····· 39
라. 사채(社債) ····· 41
마. 양수금에서 피양수채권의 대상청구권 해당성 ····· 42
바. 대상청구권과 비대상청구권의 객관적 병합 청구 ····· 43
Ⅲ. 청구원인 소명 ····· 44
1. 의의 ····· 44
2. 소명 정도 및 방법 등 ····· 45
가. 소명 정도 ····· 45
나. 소명 방법 ····· 46
3. 소명 대상 및 구체적 내용 ····· 47
가. 소명 대상 ····· 47
나. 구체적 소명 내용 ····· 48
4. 실무상 논의 및 처리 ····· 51
가. 실질적 심사 ····· 51
나. 미소명 시 처리 ····· 52
다. 전화 대출 채권 ····· 53
라. 양수금 청구와 양도통지 도달증명 ····· 53
마. 시효연장 목적 청구 ····· 55
Ⅳ. 공시송달 ····· 56
1. 공시송달 명령 주체 ····· 57
가. 일반 소송절차의 경우 ····· 57
나.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에 적용 ····· 57
다. 독촉법원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 ····· 58
2. 공시송달 요건 ····· 59
3. 공시송달사유 소명 ····· 59
4. 실무상 처리 ····· 60
가. 공시송달 심사 업무절차 ····· 60
나. 실무상 유의사항 ····· 62
Ⅴ. 추후보완 이의신청 ····· 62
1. 이의사유 간주 ····· 62
2. 효과 ····· 63
3. 실무상 처리 ····· 63
제3장 주요 국가의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 65
제1절 개설 ····· 67
제2절 일본 ····· 68
Ⅰ. 독촉절차(督促手続) 개요 ····· 68
1. 신청 요건 등 ····· 68
2. 지불독촉 및 가집행선언절차 ····· 69

3. 채무자 보호 ····· 69
Ⅱ.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도입 여부 ····· 70
1. 채무자 주소 불명 시 처리 ····· 70
2. 가집행선언부 지불독촉 공시송달 ····· 71
3.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도입 여부 ····· 72
Ⅲ. 소결 ····· 72
제3절 독일 ····· 73
Ⅰ. 독촉절차(Mahnverfahren) 개요 ····· 73
1. 신청 요건 등 ····· 73
2. 독촉통지 및 집행통지절차 ····· 74
3. 채무자 보호 ····· 74
Ⅱ.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도입 여부 ····· 74
1. 채무자 주소 불명 시 처리 ····· 75
2. 집행통지 공시송달 ····· 75
3.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도입 여부 ····· 76
가. 독일 민사소송법 제696조 유추 적용 ····· 76
나. 검토 ····· 77
Ⅲ. 소결 ····· 78
제4절 오스트리아 ····· 79
Ⅰ. 독촉절차(Mahnverfahren) 개요 ····· 79
1. 신청 요건 등 ····· 79
2. 지급명령절차 ····· 79
3. 채무자 보호 ····· 80
Ⅱ.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도입 여부 ····· 80
1. 법규 해석 ····· 80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81
가. 적용법조 ····· 81
나. 공시송달 요건 ····· 82
다. 요건 심사 및 공시송달 방법 ····· 82
라. 공시송달 효과와 강제집행 ····· 82
3.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 83
가. 적용법조 ····· 83
나. 송달관리인 선임 요건 등 ····· 84
다. 송달관리인의 소송행위 및 책임 ····· 88
라. 공시송달 가능 여부 ····· 88
Ⅲ. 소결 ····· 89
제5절 시사점 ····· 90
제4장 이용 현황 및 운영 평가 ····· 93

제1절 이용 현황 ····· 95
Ⅰ. 독촉절차 이용 현황 ····· 95
1. 민사본안사건과 독촉사건 ····· 95
2. 일반독촉과 전자독촉 ····· 96
3. 독촉사건 처리 현황 ····· 98
4. 소송절차 이행 현황 ····· 99
가. 채무자 이의신청 ····· 99
나. 채권자 소제기신청 ····· 102
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 104
5. 추후보완 이의신청 현황 ····· 106
Ⅱ. 공시송달 독촉절차 이용 현황 ····· 107
1.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 및 명령 현황 ····· 107
2. 전체독촉사건과의 비교 ····· 110
3. 대상청구별 사건 현황 ····· 111
4. 채권자 이용 현황 ····· 112
5. 각급 법원별 신청 현황 ····· 114
6. 각급 법원별 처리기간 ····· 115
7. 타 사건 처리기간과의 비교 ····· 116
가. 비공시독촉사건 처리기간과의 비교 ····· 116
나.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과의 비교 ····· 118
Ⅲ. 각급 법원 실무 처리 현황 ····· 119
1. 각급 법원별 독촉업무 담당 인력 구성 현황 ····· 119
2. 각급 지방법원(본원)별 업무량 ····· 122
3. 각급 법원별 공시송달 등 실무 처리 방식 ····· 124
제2절 운영 평가 ····· 125
Ⅰ. 전체독촉절차 활성화 여부 ····· 125
1.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이용 증가 ····· 125
2. 전체독촉절차 활성화 여부 ····· 125
Ⅱ. 경제적 부담의 감소 ····· 126
1. 소송절차 이행 시 추가 비용 ····· 126
2. 전체독촉사건의 평균 청구금액 ····· 127
3. 절감된 인지액 및 송달료 총액 ····· 128
Ⅲ. 재판의 선택과 집중 ····· 129
1. 제1심 민사본안사건과 공시독촉사건의 추이 ····· 129
2. 제도 시행과의 연관성 ····· 131
3. 재판의 효율성 제고 분석 ····· 131
4. 비분쟁성 사건 처리 방식의 다양화 ····· 134
Ⅳ. 채무자 보호 등 ····· 135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7
제1절 채무자 보호 ····· 139
Ⅰ. 요건 등 심사 ····· 139
1. 문제점 ····· 139
2. 개선방안 ····· 139
가. 대상채권에 대한 심사 강화 ····· 139
나. 엄격한 소명 요구 ····· 140
다. 항변사유 부존재 등 채권자 소명 책임 부여 ····· 140
라. 채권자 심문 실시 ····· 141
마. 채무자 측 사정 고려 ····· 142
Ⅱ. 추후보완 이의신청 실효성 확보 ····· 143
1. 문제점 ····· 143
2. 전면적 전자독촉 실시 검토 ····· 144
가. 필요성 ····· 144
나. 실현 가능성 ····· 144
다. 구체적 실현 방안 ····· 145
Ⅲ. 부당한 지급명령과 손해배상 담보제도 ····· 147
1. 문제점 ····· 147
2. 담보제도 도입 검토 ····· 148
가. 필요성 ····· 148
나.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도 ····· 149
다. 사건별 담보제도 도입방안 ····· 153
라. 포괄담보제도 도입방안 ····· 157
Ⅳ. 추후보완 이의신청절차 개선 ····· 160
1. 문제의 소재 ····· 160
2. 적법성 판단 주체 ····· 161
가. 문제의 소재 ····· 161
나. 종래의 견해 대립 ····· 161
다. 검토 ····· 163
3. 지급명령 실효시기 ····· 163
가. 문제점 ····· 163
나. 종래의 견해 대립 ····· 164
다. 일반적인 독촉절차의 실무상 처리 ····· 165
라. 검토 ····· 166
4. 채권자 인지 미보정과 각하 ····· 167
가. 문제점 ····· 167
나. 견해 대립 ····· 167
다. 검토 ····· 168

5. 강제집행 개시 ····· 168
가. 문제의 소재 ····· 168
나. 소송계속 중인 경우 ····· 168
다.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169
6.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 ····· 169
가. 문제의 소재 ····· 169
나. 소송계속 중인 경우 ····· 169
다.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171
7. 관련 법규 재정비 ····· 171
가. 필요성 ····· 172
나. 관련 법규 명문화 등 재정비 ····· 172
제2절 채권자 범위의 객관화와 업무처리 표준화 ····· 172
Ⅰ. 채권자 범위의 객관화 ····· 172
1. 문제점 ····· 172
가. 입법과정 논의 ····· 173
나. 국회 법률안 계류 현황 ····· 173
다. 객관적 기준의 부재 ····· 175
라. 채권자 규정 방식의 혼란 ····· 176
2. 객관적 기준 구체화 ····· 177
가. 개요 ····· 177
나. 처분행위의 소명 가능성 ····· 178
다. 자력 충분성 ····· 178
3. 채권자 확정방식 개선 ····· 181
Ⅱ. 업무처리 표준화 ····· 182
1. 문제점 ····· 182
가. 공시송달 요건 객관화 ····· 182
나. 청구원인 소명 심사의 객관화 ····· 187
2. 표준업무처리지침 마련 검토 ····· 187
가. 표준업무처리지침의 의의 ····· 188
나. 표준업무처리지침 수립 방향 ····· 188
다. 표준업무처리지침의 구체적 수립 방안 ····· 190
제3절 제도의 남용 방지 ····· 192
Ⅰ. 문제점 ····· 192
1.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 192
2.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남용 ····· 195
Ⅱ. 개선방안 ····· 195
1. 이용 제한 ····· 195
가. 행정지도를 통한 제한 ····· 196

나. 신청 단계에서의 제한 ····· 198
다. 심사 단계에서의 제한 ····· 198
라. 공시송달 안내서 등을 통한 제한 ····· 199
2. 공시독촉 채권자에서 제외 ····· 199
3. 추심 금지 및 손해배상 등 ····· 200
가. 근거 법령 ····· 200
나.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 203
제4절 장기적 개선방안 검토 ····· 204
Ⅰ. 법체계 개선 ····· 204
1. 문제점 ····· 204
2. 개선방안 ····· 205
Ⅱ. 이행권고결정제도와의 중복 제거 ····· 206
1. 문제점 ····· 206
2. 개선방안 ····· 207
Ⅲ. 독촉절차 전치제도 도입 검토 ····· 207
1. 필요성 ····· 208
2. 고려 사항 ····· 209
3. 구체적 시행 방안 ····· 209
가. 개요 ····· 209
나. 1,000만 원 미만 사건 대상 ····· 210
다. 2,000만 원 미만 사건 대상 ····· 212
라. 3,000만 원 미만 사건 대상 ····· 213
제6장 결론 ····· 215

52.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연구총서 2017-05

연구책임자 : 김윤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7년 9월 1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등 ····· 5
Ⅰ. 연구 방법 ····· 5
1. 문헌 연구 ····· 5
2.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 5
3.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자문 ····· 7
Ⅱ. 연구 범위 ····· 7
Ⅲ.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 9
제2장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운영 현황 ····· 11
제1절 서설 ····· 13
제2절 독일 ····· 14
Ⅰ. 개관 ····· 14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14
2.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 ····· 14
가. 성년후견법의 시행 ····· 14
나. 제1차 개정 ····· 16
다. 제2차 개정 ····· 22
라. 제3차 개정 ····· 22
마. 제4차 개정 ····· 23
바. 제5차 개정 ····· 24
3. 독일의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기관 ····· 24
가. 개요 ····· 24
나. 성년후견법원(Betreuungsgericht) ····· 25
다. 성년후견청(Betreuungsbehörde) ····· 26
라. 성년후견사단(Betreuungsverein) ····· 34
마. 성년후견협회(Arbeitsgemeinschaft für Betreuungsangelegenheiten) ····· 40
바.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42
Ⅱ. 후견인의 선임 현황 ····· 43
1. 선임 절차 ····· 43
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선임 절차 개시 ····· 43
나. 성년후견청의 조사보고서(Sozialbericht) 작성 ····· 43
다. 전문의에 의한 감정 ····· 45
라. 절차보조인의 선임 ····· 46
마. 판사의 심문(Anhönrung) ····· 48
바. 선임결정 ····· 49
2. 성년후견인의 업무 수행과 통제 ····· 54
가. 업무 수행 ····· 54
나. 성년후견법원에 의한 통제 ····· 55
3. 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통계 ····· 56
4. 후견인의 보수 등 ····· 61
Ⅲ. 후견감독실무 현황 ····· 65
1. 성년후견법원에 의한 후견감독 ····· 65
가. 의의 ····· 65
나. 성년후견법원의 성년후견인 감독 ····· 66
다. 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성년후견인 감독 ····· 76
2. 성년후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책임 ····· 78
가. 의무위반행위 ····· 78
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78
다. 형사상 책임 ····· 82
Ⅳ. 시사점 ····· 82

제3절 싱가포르 ····· 83
Ⅰ. 개관 ····· 83
Ⅱ.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업무 ····· 84
1. 개요 ····· 84
2. 공공후견청 ····· 84
가. 법률적 근거와 현황 ····· 84
나. 주된 업무 ····· 88
3. 가정법원 ····· 89
Ⅲ. 후견인의 양성 및 지원 현황 ····· 91
1. 공공교육 및 홍보 업무 ····· 91
2. 후견인 양성 시스템 ····· 91
Ⅳ. 후견인의 선임 현황 ····· 94
1. 후견인 선임 절차 ····· 94
가. 영속적 대리인 ····· 94
나. 법정후견인 ····· 97
2.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통계 ····· 98
가. 후견인 선임 전반과 관련한 통계 ····· 98
나. 영속적 대리인과 관련한 통계 ····· 99
다. 법정후견인과 관련한 통계 ····· 101
Ⅴ. 후견감독실무 현황 ····· 104
1. 개관 ····· 104
2. 조사업무 ····· 105
3. 감독업무 ····· 107
가. 영속적 대리인의 감독 ····· 107
나. 법정후견인의 감독 ····· 108
Ⅵ. 특별수요신탁회사 ····· 113
1. 개요 ····· 113
2. 특별수요신탁회사의 조직 구성 ····· 114
3. 특별수요신탁의 설정 과정 ····· 115
4. 신탁의 해지 ····· 116
5. 금융권에서 하는 신탁과 특별수요신탁의 비교 ····· 116
Ⅶ. 시사점 ····· 117
제4절 미국 ····· 118
Ⅰ. 개관 ····· 118
1.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와 이에 대한 평가 ····· 118
2.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혁 시도 ····· 122
가.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122
나. 성년후견절차 ····· 122

다. 운영상 문제점 ····· 123
라. 성년후견제도의 개혁 시도와 그 성과 ····· 123
3. 성년후견제도를 갈음하는 제도 ····· 129
가. 개요 ····· 129
나. 지속적 대리권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 ····· 129
다. 신탁제도 ····· 130
라. 제도에 대한 평가 ····· 131
Ⅱ.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현황 ····· 131
1. 후견인의 유형 ····· 131
2. 친족후견인 ····· 132
3. 전문직 후견인 ····· 136
4. 공공후견인 ····· 138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 140
1. 후견인의 선임 재판과 관련한 통계 ····· 140
2. 후견인의 선임 실무 ····· 141
가. 통일후견보호절차법(UGPPA)상 선임기준 ····· 141
나.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여러 주의 입장 ····· 142
다. 후견인의 선임 실무 ····· 142
라. 법원평가인과 대리인의 선임 ····· 147
마. 후견인의 권한: 피후견인 사망 이후를 중심으로 ····· 150
Ⅳ. 후견감독실무 현황 ····· 152
1. 개관 ····· 152
2. 감독 관련 규정 ····· 154
가. 통일후견보호절차법상 후견인 감독절차 ····· 154
나. 전국유언검인법원 표준(National Probate Court Standards) ····· 155
3. 후견인의 부정행위 태양 ····· 156
4.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 157
가. 미국 각 주의 후견감독 법령 및 보고서 제출 의무 ····· 157
나. 주의사건 표시 ····· 161
다. 자원봉사형 감독 및 방문조사관 프로그램(Volunteer Monitor and Visitor Programs) ····· 163
라. 법원의 명령 등의 집행 또는 이행 확보 조치 ····· 172
마. 미국 일부 주의 성공적 운영 사례 ····· 173
바. 감독실무의 문제점 ····· 180
사. 후견인의 부정행위 대처를 위한 감독실무 개선방안 ····· 182
Ⅴ. 후견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 183
1. 개요 ····· 183
2. 사법부의 후견지원 프로그램 ····· 184
가. 텍사스 주 ····· 184

나. 오하이오 주 ····· 186
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 191
라. 캘리포니아 주 ····· 191
마. 웨스트버지니아 주 ····· 192
바. 기타 카운티 법원(County Court)의 경우 ····· 193
3. 기타 기관의 후견지원 프로그램 ····· 193
가. 전국후견협회(NGA)와 후견인증센터(CGC) ····· 193
나. 텍사스 주 보건사회복지부(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 203
다. 오하이오 주 중앙오하이오지역노인기구의 후견 지원 프로그램 ····· 204
라. 오하이오 주 발달장애 위원회(Ohio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 ODDC)의 후견 지원 프로그램 ····· 205
마. 오하이오 주 성년후견인 지원 서비스협회(Guardian Support Services, Inc.) ····· 205
바. 캘리포니아 주 후견인증센터(CGC) ····· 206
사. 뉴욕 주 후견지원네트워크(Guardian Assistance Network, GAN) ····· 206
Ⅵ. 시사점 ····· 210
제5절 일본 ····· 212
Ⅰ. 개관 ····· 212
Ⅱ. 가정재판소의 후견센터 ····· 214
1. 개요 ····· 214
2.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발족 경위 ····· 214
3.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사무 분담과 인력 상황 ····· 216
가. 후견센터의 사무 분담 ····· 216
나. 후견센터의 인력 상황 ····· 217
4.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주요 업무 ····· 218
가. 후견사이트의 개설을 통한 성년후견제도 지원 ····· 218
나. 후견지원 사업의 현황 ····· 218
다. 후견개시사무의 신속화 및 합리화 추구 ····· 219
5. 후견센터의 과제 ····· 230
Ⅲ. 후견인의 교육 및 양성 현황 ····· 231
1. 친족후견인의 경우 ····· 231
2. 전문직 후견인의 경우 ····· 232
가. 지방변호사회 ····· 233
나. 법무사단체 ····· 235
다. 사회복지사협회 ····· 236
3. 법인후견인의 경우 ····· 237
가. 법인후견인의 선임 현황 ····· 237
나. 법인후견사무의 절차와 내용 ····· 238
4. 시민후견인의 경우 ····· 241

가. 시민후견인의 정의 ····· 241
나. 시민후견인의 육성 등의 법적 근거 ····· 242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개요 ····· 243
라. 시민후견인의 양성 및 운영 현황 ····· 244
마. 시민후견인의 내부 감독 현황 ····· 249
바. 시민후견인 지원 ····· 250
Ⅳ. 후견인의 선임 현황 ····· 251
Ⅴ. 후견감독실무 현황 ····· 256
1. 개요 ····· 256
2. 감독업무의 일반적인 흐름 ····· 256
3.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의 감독업무 ····· 259
가. 후견감독인제도의 취지 ····· 259
나. 후견감독인 선임 실무 ····· 260
다. 후견감독인 활용의 현황 ····· 263
라. 후견감독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 264
마. 후견감독인 선임의 과제와 평가 ····· 264
4. 감독 과정에서 재판소의 구체적인 조치 ····· 265
가. 예금계좌의 명의와 관련한 조치 ····· 265
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조치 ····· 265
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조치 ····· 265
라. 투자 및 투기에 대한 지도 ····· 266
마. 피후견인을 계약자·피보험자, 후견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문제 ····· 266
바. 피후견인의 묘지·묘석의 구입이나 장의에 관한 계약 등 ····· 266
사. 보고서 미제출 시 재판소의 조치 ····· 266
5. 구체적인 후견인 권한 남용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 ····· 267
가. 언론에 보도된 후견인 권한 남용 사례 ····· 267
나. 후견인 권한 남용 사례의 특징과 분석 ····· 269
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사례의 유형화와 대응 ····· 271
6. 후견제도지원신탁의 현황과 평가 ····· 279
가. 개요 ····· 279
나. 후견제도지원신탁의 필요성 ····· 280
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상황 ····· 282
라. 후견제도지원신탁의 구조 ····· 286
마. 후견제도지원신탁의 특수성 ····· 287
바.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대상과 적용되는 사건 ····· 288
사.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 288
아.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이용하는 절차의 흐름 ····· 289
자.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 모습 ····· 292

차. 후견감독의 모습 ····· 293
카. 신탁기간(종료) ····· 294
타. 일부 해약·해약의 판단 ····· 294
파. 후견제도지원신탁에 대한 평가 ····· 294
7. 보험가입의 강제 ····· 294
Ⅵ. 관계기관 업무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동향 ····· 295
1. 개요 ····· 295
2. 행정기관의 역할 ····· 296
가. 법무성 ····· 296
나. 후생노동성 ····· 297
다. 지방자치단체 ····· 298
3. 관계기관 업무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동향 ····· 299
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위 ····· 299
나. 위 법률의 내용 ····· 299
4.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 300
가. 개요 ····· 300
나.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회의 ····· 300
다.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위원회 ····· 302
Ⅶ. 성년후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응 현황 ····· 304
1. 개요 ····· 304
2. 피후견인 사망 후 후견인의 권한 문제 ····· 305
가. 원활화법 제정 이전 도쿄가정재판소 후견센터의 실무 ····· 305
나. 원활화법으로 인한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관련한 개정 ····· 308
다. 피후견인의 사후사무와 관련하여 원활화법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대응 ····· 311
3.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대응 문제 ····· 314
가. 개관 ····· 314
나. 금융기관별 대응의 편차 원인 ····· 315
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전의 은행 실무의 특징 ····· 315
라.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의 변화 ····· 315
마.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의 현황과 그 문제점 ····· 319
Ⅷ. 시사점 ····· 326
제6절 프랑스 ····· 328
Ⅰ. 개관 ····· 328
1. 1968년 민법의 개정 ····· 328
2. 2007년 민법의 개정 ····· 329
Ⅱ. 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 현황 ····· 332
1. 친족후견인 ····· 332
가. 개관 ····· 332

나. 교육 현황 ····· 333
2. 사법대리인 ····· 334
가. 개관 ····· 334
나. 양성 현황 ····· 335
3. 비영리 후견기관 ····· 336
4. 기관 소속 대리인 ····· 336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 337
1. 후견 ····· 337
가. 후견제도의 개요 ····· 337
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유형 ····· 339
다. 후견인 선임의 통계 ····· 339
2. 보좌인의 선임 상황 ····· 340
가. 보좌제도의 개요 ····· 340
나. 보좌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유형 ····· 341
다. 보좌인 선임의 통계 ····· 342
3. 사법적 보호 ····· 343
가. 사법적 보호제도의 개요 ····· 343
나. 사법적 보호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유형 ····· 343
다. 사법적 보호인 선임의 통계 ····· 344
4. 소결 ····· 345
Ⅳ. 후견감독실무 현황 ····· 345
1. 감독을 담당하는 인력 현황 ····· 345
가. 후견감독인 ····· 345
나. 보좌감독인 ····· 346
다. 특별후견인(tuteur ad hoc) 또는 특별보좌인(curateur ad hoc) ····· 346
라. 친족회 ····· 346
2. 감독기관 ····· 347
가. 수석서기를 통한 연간회계보고서의 감사 ····· 347
나. 법관의 조치 내용 ····· 347
다. 전자문서를 통한 보고 ····· 348
Ⅴ. 후견인의 보수와 자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위한 조치 ····· 350
1. 후견인의 보수 ····· 350
2. 자력이 없는 본인을 위한 조치 ····· 353
가. 개관 ····· 353
나. 사회적 지원조치 ····· 353
다. 사법적 지원조치 ····· 355
Ⅵ. 시사점 ····· 356
제7절 영국 ····· 357

Ⅰ. 개관 ····· 357
Ⅱ.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기관 ····· 359
1. 보호법원(Court of Protection) ····· 359
2. 공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 359
가. 개요 ····· 359
나. 조직 ····· 360
다. 역할 ····· 360
라. 보호법원과의 역할분담 ····· 362
3. 사회복지행정청 ····· 362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 363
1. 개관 ····· 363
2. 후견인의 선임 실무 ····· 364
가. 일반적인 선임 실무 ····· 364
나. 후견법인의 선임 가능성 ····· 368
3.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 청구 ····· 368
4. 정신능력법과 관련한 실무지침서 ····· 369
5. 소득이 거의 없는 본인을 위한 제도 ····· 371
Ⅳ. 후견감독실무 현황 ····· 371
1. 후견감독실무의 현황 ····· 371
2.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 ····· 373
3. 보험제도 ····· 373
Ⅴ. 시사점 ····· 374
제8절 호주 ····· 375
Ⅰ. 개관 ····· 375
Ⅱ. 성년후견 관련 업무 담당기관 ····· 376
1. 후견관리위원회(GAB) ····· 376
가. 개관 ····· 376
나. 후견관리위원회의 구성 ····· 376
다. 후견관리위원회의 권한 ····· 378
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378
마. 관련사건 통계 ····· 382
2. 공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 383
Ⅲ. 후견인의 선임 현황 ····· 384
1. 신상보호 담당 성년후견인(Guardianship)의 선임 ····· 384
2. 재산관리 담당 성년후견인(Administration)의 선임 ····· 384
3. 공공후견인의 선임 현황 ····· 385
Ⅳ. 시사점 ····· 389
제3장 후견인 양성과 개선방안 ····· 391

제1절 서설 ····· 393
Ⅰ. 들어가는 말 ····· 393
Ⅱ. 후견인의 유형과 논의의 순서 ····· 393
제2절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 현황 ····· 395
Ⅰ. 개요 ····· 395
Ⅱ. 현황 ····· 397
1. 대한변호사협회 ····· 397
2.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398
제3절 법인후견인의 양성 현황 ····· 400
Ⅰ. 개요 ····· 400
Ⅱ. 현황 ····· 401
1. 법적 근거 ····· 401
2. 법인후견인과 관련한 통계 등 현황 ····· 402
가. 통계 ····· 402
나. 법인후견인 선임 및 교육 현황 ····· 402
3. 법인후견인의 자격과 업무 수행 현황 ····· 403
가. 개요 ····· 403
나. 법인 Ⅰ ····· 403
다. 법인 Ⅱ ····· 405
라. 법인 Ⅲ ····· 407
4. 법무법인 등 영리법인이 법인후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문제 ··· 408
제4절 공공후견인의 양성 현황 ····· 410
Ⅰ. 공공후견의 개념 ····· 410
Ⅱ. 법률적 근거 ····· 410
Ⅲ. 우리나라의 공공후견 현황 ····· 411
1.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시행 경위와 개요 ····· 411
2. 공공후견인 양성 ····· 413
3. 공공후견인 선임 이후의 업무절차 ····· 415
4. 공공후견인의 업무 수행 현황 ····· 415
제5절 개선방안 ····· 416
Ⅰ. 후견인 유형별 개선방안 ····· 416
1. 전문직 후견인 ····· 416
2. 법인후견인 ····· 418
3. 공공후견인 ····· 423
가. 지원 영역의 확대 ····· 423
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 425
Ⅱ. 후견인 양성을 위한 통합 지원 필요성과 개선방안 ····· 427
1. 필요성 ····· 427

2. 개선방안 ····· 428
제6절 자력이 거의 없는 피후견인을 위한 개선방안 ····· 430
Ⅰ. 개요 ····· 430
Ⅱ. 현재의 지원제도 ····· 431
Ⅲ. 개선방안 ····· 432
1. 자원봉사 후견인의 조직적·체계적 양성 ····· 432
2. 공공후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 433
3.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435
제7절 소결 ····· 436
제4장 후견인의 선임 및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 ····· 437
제1절 개관 ····· 439
제2절 성년후견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현황 ····· 442
Ⅰ. 개관 ····· 442
Ⅱ. 본원 규모 법원의 현황 ····· 442
1. 들어가는 말 ····· 442
2. 관련 통계와 심리 현황 ····· 443
가. 후견개시 등 사건 신청건수 현황 ····· 443
나. 심리 현황 ····· 444
3. 인적 현황 ····· 446
Ⅲ. 지원 규모 법원의 현황 ····· 447
1. 관련 통계 ····· 448
2. 심리 현황 ····· 448
3. 인적 현황 ····· 449
제3절 개선방안 ····· 450
Ⅰ. 조직의 개선방안 ····· 450
1. 후견센터의 설치 ····· 450
가. 필요성 ····· 450
나. 구체적인 운영의 모습 ····· 450
2. 성년후견지원위원회 등 후견지원업무 담당기관의 설치 ····· 452
3. 가사조사관 역할의 재정비 ····· 457
4. 성년후견사건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 458
가. 근무기간 보장 ····· 458
나. 성년후견과 관련한 전문 정보 등 제공 ····· 459
다. 성년후견사건 담당 재판부의 전담재판부화 ····· 460
Ⅱ. 후견인 선임 실무의 개선방안 ····· 460
1. 후견개시심판 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460
가. 사건본인이나 관계인과 관련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 ····· 460
나. 확인되어야 할 사건본인이나 관계인의 정보 ····· 461

2. 감정실무와 관련한 개선 방안 ····· 462
3. 후견인 선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463
4. 사건본인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 466
가. 사건본인에 대한 통지 시의 배려 ····· 466
나.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 검토 ····· 467
5. 후견개시심판 청구의 취하 제한 ····· 468
Ⅲ. 후견인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 ····· 470
1. 보험제도의 개선 ····· 470
가. 현존하는 보험 상품의 이용 증대 ····· 470
나.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 ····· 472
2. 친족후견인 교육 시스템의 개선 ····· 473
가. 개요 ····· 473
나. 현황과 문제점 ····· 474
다. 개선방안 ····· 477
3. 재산조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 482
4.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실무의 개선 ····· 484
가. 개요 ····· 484
나. 현황과 개선방안 ····· 485
5. 후견인을 위한 업무 지침 ····· 489
가. 필요성 ····· 489
나. 신상보호 업무의 중요성 강조 ····· 491
다. 피후견인 사망 이후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 관련 ····· 493
6. 후견 업무 관련 정보의 제공 ····· 494
7.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대응 개선 ····· 495
가. 금융기관의 대응 개선 ····· 495
나. 금융기관 외 유관기관의 대응 개선 ····· 499
8. 후견인에 대한 보수와 비용 지출 문제 ····· 499
가. 전문직 후견인의 보수 등 문제 ····· 499
나. 공공후견인의 보수 문제 ····· 501
제4절 소결 ····· 502
제5장 후견감독과 개선방안 ····· 505
제1절 개관 ····· 507
Ⅰ. 들어가는 말 ····· 507
Ⅱ. 후견감독의 법률적 근거 ····· 508
제2절 감독실무 현황 ····· 510
Ⅰ. 본원 규모 법원의 현황 ····· 510
1. 서론 ····· 510
2. 감독절차의 개요 ····· 510

가. 후견감독 사건의 처리 절차 ····· 510
나. 후견감독업무의 내용 ····· 511
3. 감독사건의 통계 ····· 512
가. 후견감독사건 접수 누적 통계 ····· 512
나. 후견감독 부수사건 접수 통계 ····· 514
다. 후견감독인 선임과 관련한 현황 ····· 515
4.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활용 현황 ····· 516
5.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 발각 시 대처 실무 ····· 518
Ⅱ. 지원 규모 법원의 현황 ····· 518
제3절 개선방안 ····· 520
Ⅰ. 전문가 활용 방안 ····· 520
1.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의 지원 필요 ····· 520
가. 개관 ····· 520
나. 외부 전문가의 지원 업무 ····· 520
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 ····· 521
라. 신상보호사무 감독을 위한 자원봉사 ····· 522
2. 후견감독인제도의 적극적 활용 ····· 523
가. 개관 ····· 523
나. 후견감독인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 ····· 523
다. 후견감독인제도의 적극적 활용 시 예상되는 효과 ····· 528
3. 사법보좌관 등의 성년후견감독사무 전담과 전문성 강화 ····· 529
Ⅱ. 감독 기능의 집중과 효율성 도모 방안 ····· 531
1. 본원 규모 법원으로 감독 기능의 집중화 ····· 531
2. 재산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다양화 ····· 533
가. 재산유용 발각 또는 의심 시에 활용되는 매뉴얼 ····· 533
나. 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 등 안내와 의무 위반 시 대처 ····· 535
다. 후견제도와 결합한 신탁제도의 개발 ····· 537
3.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의 차별 관리 ····· 540
가. 차별 관리의 필요성 ····· 540
나. 감독사건 차별 관리를 위한 감독사건 구분제도 도입 ····· 540
다. 허가사항 결정 시 참고사항 ····· 543
4. 감독실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선 ····· 543
Ⅲ. 후견인 유형별 감독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4
1. 개요 ····· 544
2. 친족후견인 ····· 545
3. 전문직·법인후견인 ····· 545
4.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 546
제4절 소결 ····· 547

제6장 결론 ····· 549

5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iversity of Judges

연구총서 2017-06

연구책임자 : 김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9월 1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주요 국가의 법관 다양화 ····· 5
제1절 미국 ····· 7
I. 서설 ····· 7
II. 법원조직 개관 ····· 7
1. 연방법원 ····· 7
가. 개요 ····· 7
나. 연방지방법원 ····· 8
다. 연방항소법원 ····· 9
라. 연방대법원 ····· 10
마. 특별법원 ····· 13
2. 주법원 ····· 14
가. 개요 ····· 14
나. 주지방법원 ····· 14
다. 주항소법원 ····· 15
라. 주대법원 ····· 15
마. 간이법원 ····· 16
III. 법관 일반 ····· 19

1. 연방법원 판사 ····· 19
가. 임명권자 및 임용요건 ····· 19
나. 임명절차 및 임기 ····· 20
다. 판사 임명과 정치적 고려 ····· 21
라. 근무여건 ····· 23
마. 보수 ····· 23
2. 주법원 판사 ····· 24
가. 개요 ····· 24
나. 법관선거제도 ····· 24
다. 실적위주 선발제도 ····· 25
라. 선발방법 및 임기 ····· 26
IV. 부판사(Magistrate Judge) ····· 30
1. 제도의 연원 ····· 30
가. 연방공화국 초기 ····· 30
나. 1896년 수탁인 법률 ····· 30
다. 수탁인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 ····· 30
2. 1968년 부판사법 제정 ····· 31
가. 입법 배경 ····· 31
나. 주요 규정 ····· 31
다. 추진 경과 ····· 32
3. 주요 개정 경과 ····· 32
가. 부판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 32
나. 부판사의 권한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 33
4. 임용 및 재임용 ····· 34
가. 임용요건 ····· 34
나. 임용절차 ····· 36
다. 재임용 ····· 48
5. 제도의 운용 현황 ····· 51
가. 정원 현황 ····· 51
나. 임용 현황 ····· 52
6. 담당 업무 ····· 54
가. 개관 ····· 54
나. 형사사건 초기절차 ····· 55
다. 사전 쟁점 및 부가적 업무 ····· 59
라. 형사경죄사건 ····· 61
마. 민사사건 ····· 63
바. 사건처리현황 ····· 64
7. 보수 및 겸직금지 ····· 65

가. 보수 및 지원 ····· 65
나. 겸직 금지 ····· 65
8. 주법원 부판사 ····· 66
가. 개요 ····· 66
나. 캘리포니아 주 ····· 66
다. 버지니아 주 ····· 66
라. 조지아 주 ····· 67
마. 미주리 주 ····· 67
바. 텍사스 주 ····· 68
사. 웨스트버지니아 주 ····· 68
아. 뉴욕 주 ····· 68
9.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 69
가. 예비판사제도 ····· 69
나. 전담법관제도 ····· 71
다. 사법보좌관제도 ····· 72
라. 미국 부판사제도와의 차이점 ····· 78
V.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 80
1. 서설 ····· 80
가. 도입배경 ····· 80
나. 개념 ····· 80
다. '판사' 명칭의 부여와 '판사'로서의 기능 ····· 81
2. 임용 ····· 81
가. 법적 근거 ····· 81
나. 임용자격 ····· 82
다. 임용절차 ····· 82
라. 배치현황 ····· 82
3. 신분 ····· 83
가. 임기 및 징계 ····· 83
나. 보수 ····· 84
4. 업무 ····· 85
가. 행정절차법 규정 ····· 85
나. 일반법관의 업무와 비교 ····· 85
다. 행정법판사의 결정과 이에 대한 심사 ····· 86
5. 우리나라 청문주재자와의 비교 ····· 87
가.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 ····· 87
나. 미국 행정법판사와의 비교 및 시사점 ····· 88
제2절 영국 ····· 89
I. 서설 ····· 89

II. 법원조직 개관 ····· 89
1. 대법원(Supreme Court) ····· 89
가. 대법원 신설 ····· 89
나. 구성 ····· 90
다. 관할 ····· 90
2.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91
가. 역사적 배경 ····· 91
나. 형사부(Criminal Division) ····· 91
다. 민사부(Civil Division) ····· 91
3. 고등법원(High Court) ····· 92
가. 역사적 배경 ····· 92
나. 형평부(Chancery Division) ····· 92
다. 가사부(Family Division) ····· 93
라.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 ····· 93
4. 구역법원(County Court) ····· 95
5. 형사법원(Crown Court) ····· 95
가. 구성 ····· 95
나. 제1심 재판 ····· 95
다. 항소심 재판 ····· 96
6.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 96
가. 관할 ····· 96
나. 담당 판사 ····· 97
7. 심판소(Tribunals) ····· 97
가. 개요 ····· 97
나. 종류 ····· 98
다. 구성원 ····· 98
III. 법관 일반 ····· 100
1. 개관 ····· 100
가. 기록판사(Recorder) ····· 100
나. 치안판사(Magistrate) ····· 100
다. 구역판사(District Judge) ····· 100
라. 순회판사(Circuit Judge) ····· 101
마. 고등법원 판사(High Court Judge) ····· 101
바. 항소법원 판사(Lord Justice of Appeal) ····· 101
사. 대법관(Supreme Court Justice) ····· 102
아. 최고법관(Lord Chief Justice) ····· 102
2. 법관임용 ····· 103
가.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 103

나. 임용절차 ····· 104
다. 보수 ····· 106
IV. 비상근법관 ····· 107
1. 일반 ····· 107
2. 기록판사(Recorder) ····· 108
가. 임용자격 ····· 108
나. 연수 ····· 108
다. 임기 및 정년 ····· 108
라. 담당 업무 ····· 109
마. 변호사 업무와의 충돌 ····· 109
바. 보수 및 연금 ····· 110
3. 치안판사(Magistrate) ····· 110
가. 연혁 ····· 110
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 ····· 111
다. 임기, 정년 및 신분 ····· 113
라. 담당 업무 ····· 114
마. 관련 통계 ····· 116
제3절 독일 ····· 119
I. 서설 ····· 119
II. 법원조직 개관 ····· 119
1. 일반 ····· 119
가. 독일기본법의 관련 규정 ····· 119
나. 통상(通常)법원과 특별법원의 분리 ····· 120
다. 연방최고법원의 종류 ····· 120
2. 연방헌법재판소 ····· 120
가. 지위 ····· 120
나. 구성 및 권한 ····· 121
다. 재판관의 자격·임기·선출방법 등 ····· 121
3. 통상법원 ····· 122
가. 민·형사 관할 법원 ····· 122
나.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 124
다. 연방통상대법원(Bundesgerichtshof) ····· 124
라. 통상법원의 심급 구조 ····· 125
4. 특별법원 ····· 128
가. 노동법원 ····· 128
나. 행정법원 ····· 129
다. 사회법원 ····· 131
라. 재정법원 ····· 132

III. 직업법관(Berufsrichter) ····· 133
1. 의의 ····· 133
2. 정년직 법관 ····· 134
가.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 ····· 134
나. 신분 및 보수 ····· 136
3. 수습법관 ····· 138
가. 임용 ····· 138
나. 신분 ····· 138
4. 임기직 법관 ····· 139
5. 파견법관 ····· 139
6. 기술판사 ····· 140
가. 개요 ····· 140
나. 임용 ····· 140
다. 일반 직업법관과의 차이 ····· 142
라.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 제도와의 비교 ····· 142
IV. 명예법관 ····· 143
1. 의의 ····· 143
2. 참심법관 ····· 143
가. 임용자격 ····· 143
나. 임명절차 및 임기 ····· 144
다. 권한 ····· 144
라. 관할 ····· 145
3. 상사법관 ····· 145
가. 자격 ····· 146
나. 임기 및 임명절차 ····· 146
다. 권한 ····· 146
라. 관할 ····· 147
4. 전문명예법관 ····· 148
가. 독일의 직업법원 ····· 148
나. 변호사직업법원의 전문명예법관 ····· 148
다. 헤센 주 의료직업법원의 전문명예법관 ····· 150
5. 연방특별대법원 명예법관 ····· 151
가. 연방노동대법원 ····· 151
나. 연방행정대법원 ····· 151
다. 연방사회대법원 ····· 152
라. 연방재정대법원 ····· 152
제4절 프랑스 ····· 153
I. 서설 ····· 153

II. 법원조직 개관 ····· 153
1. 개요 ····· 153
2. 일반 사법법원 ····· 154
가. 대법원(Cour de cassation) ····· 154
나. 고등법원(Cour d'appel) ····· 154
다. 제1심법원 ····· 154
라. 특별법원 ····· 156
3. 행정법원 ····· 158
가. 국사원(Conseil d'État) ····· 159
나. 고등행정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 159
다. 지방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 160
라. 특별행정법원(Juridictions Spécialisées) ····· 160
III. 사법관(Magistrat) ····· 161
1. 개요 ····· 161
2. 일반 사법법원 사법관 ····· 161
가. 선발방식의 종류 ····· 162
나.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한 선발 ····· 162
다. 정규직 사법관 편입 ····· 167
라. 임시직 사법관 편입 ····· 169
마. 근린법원 판사(Juge de proximité) ····· 171
바. 임명 ····· 172
사. 임기 및 정년 ····· 172
아. 신분보장 ····· 172
3. 인원 현황 ····· 174
4. 보수 ····· 174
제5절 일본 ····· 176
I. 서설 ····· 176
II. 법원조직 개관 ····· 176
1. 법적 근거 ····· 176
2. 법원의 종류 ····· 177
가. 최고재판소 ····· 177
나. 하급재판소 ····· 179
다. 사건접수 추이 ····· 182
III. 재판관 ····· 182
1. 최고재판소 재판관 ····· 182
가. 임명자격 및 방법 ····· 182
나. 임기 및 정년 ····· 183
2. 재판소법상 하급재판소 재판관 ····· 183

가. 개요 ····· 183
나. 판사보 ····· 184
다. 판사 ····· 185
라. 간이재판소 판사 ····· 186
3. 보수 ····· 190
IV. 변호사의 재판관 임용 ····· 192
1. 상근재판관 임용 ····· 192
가. 도입배경 및 경과 ····· 192
나. 임용절차 ····· 195
2. 비상근재판관 임용 ····· 201
가. 의의 및 도입취지 ····· 201
나. 직무와 권한 ····· 201
다. 임기, 근무형태 및 수당 ····· 202
라. 임용자격 ····· 202
마. 임용절차 ····· 203
바. 선발고려사항 ····· 204
사. 임용통계 및 재직현황 ····· 204
아. 비상근재판관의 상근재판관 임용 ····· 206
제6절 네덜란드 ····· 206
I. 서설 ····· 206
II. 법원조직 개관 ····· 207
1. 지방법원(Rechtbanken) ····· 207
가. 설치 및 구성 ····· 207
나. 재판부별 관할 사건 ····· 207
2. 고등법원(Gerechtshoven) ····· 208
3. 대법원(Hoge Raad der Netherlanden) ····· 209
가. 구성 ····· 209
나. 심리 및 판결 ····· 209
4. 특별행정법원 ····· 209
가. 중앙항소법원(Centrale Raad van Beroep) ····· 209
나. 통상·산업 항소법원(College van Beroep voor het bedrijfsleven)
····· 210
다. 국사원 행정관할부(De Raad van State) ····· 210
III. 법관 일반 ····· 212
1. 임용자격 ····· 212
2. 임용절차 ····· 212
가. 개요 ····· 212
나. 법관후보자 선발 ····· 212

다. 법관후보자 연수 ····· 214
3. 정년 및 신분보장 ····· 217
4. 보수 ····· 217
가. 초임 법관 보수 ····· 217
나. 대법관 보수 ····· 217
IV. 부판사(Rechter-plaatsvervanger) ····· 218
1. 의미 ····· 218
2. 임용대상자 ····· 218
3. 재판참여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 219
4. 인원 및 배치현황 ····· 220
5. 부판사의 항소법원 판사 임용 ····· 220
제3장 시사점 및 제안 ····· 221
제1절 주요 국가의 법관 다양화 ····· 223
제2절 우리나라 법관제도에의 제안 ····· 225
1. 우리나라의 법관 다양화 필요성 ····· 225
2. 비교법적 검토 ····· 225
3. 법관 다양화 방식과 고려사항 ····· 226
가. 일반 ····· 226
나. 법관 다양화 방식 ····· 226
다. 구체적 고려사항 ····· 227
4. 결어 ····· 229

5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Measures to Establish a Land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연구총서 2017-07

연구책임자 : 오세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원규(전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덕환, 장수영(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이제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7년 9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6

Ⅰ. 연구의 방법 ····· 6

Ⅱ. 연구의 한계 ····· 7

제3절 연구의 범위 ····· 8
제2장 남·북한 토지제도의 개요 ····· 11
제1절 분단 이전 토지제도의 변천 ····· 13
Ⅰ. 일제강점기 이전의 토지제도 ····· 13
1.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 13
2. 대한제국 시기의 토지제도 ····· 14
Ⅱ. 일제강점기의 토지제도 ····· 16
1. 개관 ····· 16
2. 역둔토조사사업 ····· 17
3. 토지조사사업 ····· 18
4. 임야조사사업 ····· 20
제2절 남한 토지제도의 변천 및 현황 ····· 22
Ⅰ. 남한 토지제도의 변천 ····· 22
1. 개관 ····· 22
2. 미군정에 의한 조치 ····· 23
가. 일본정부와 일본인 소유 재산의 몰수 ····· 23
나. 귀속농지의 매각 ····· 25
3.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몰수 ····· 26
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및 폐지 ····· 26
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28
4.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 ····· 30
가. 개요 ····· 30
나. 내용 ····· 30
다. 성과 ····· 33
Ⅱ. 남한 토지제도의 현황 ····· 33
1. 토지소유제도 ····· 33
가. 토지소유권의 의의 ····· 33
나. 토지소유권의 내용 ····· 34
다. 토지소유권의 제한 ····· 34
2. 토지이용제도 ····· 36
가. 물권적 이용권 ····· 36
나. 채권적 이용권 ····· 40
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42
3. 토지담보제도 ····· 44
가. 유치권 ····· 44
나. 저당권 ····· 45
제3절 북한 토지제도의 변천 및 현황 ····· 47
Ⅰ. 북한 토지제도의 변천 ····· 47

1. 개관 ····· 47
2. 토지개혁시기 ····· 48
가. 진행 과정 ····· 48
나. 주요 내용 ····· 49
다. 검토 ····· 51
3. 농업협동화시기 ····· 52
가. 배경 ····· 52
나. 진행 과정 ····· 53
다. 검토 ····· 55
4. 사회주의 토지소유권제도의 확립시기 ····· 55
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 55
나. 1977년 토지법의 제정 ····· 56
다. 1990년 민법의 제정 ····· 57
라. 검토 ····· 57
5. 대외경제개방의 추진시기 ····· 58
가. 배경 및 진행경과 ····· 58
나. 주요 내용 ····· 58
다. 검토 ····· 61
Ⅱ. 북한 토지제도의 현황 ····· 62
1.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 62
가. 국가소유 ····· 62
나. 사회협동단체소유 ····· 63
다. 개인소유 ····· 64
2.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 65
가. 개관 ····· 65
나. 일반적인 토지 이용 ····· 66
다. 토지이용권에 의한 토지 이용 ····· 69
라. 허가에 의한 토지 이용 ····· 82
3. 북한의 토지이용권 담보제도 ····· 89
가. 의의 및 주체 ····· 89
나. 저당절차 ····· 90
다. 권리·의무 ····· 91
라. 저당물의 처분 및 취득 ····· 91
마. 저당권의 소멸 ····· 92
제3장 남·북한 토지등기제도의 개요 ····· 93
제1절 남한의 토지등기제도 ····· 95
Ⅰ. 토지에 관한 공시제도 ····· 95
1. 등기제도와 지적제도 ····· 95

가. 등기제도 ····· 95
나. 지적제도 ····· 96
2. 등기부와 대장 ····· 97
가. 등기부 ····· 97
나. 대장 ····· 99
다.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100
Ⅱ. 토지등기제도 ····· 101
1. 토지등기제도의 변천 ····· 101
가. 일제강점기 ····· 101
나. 해방 후 부동산등기법의 제정 전까지 ····· 103
다. 부동산등기법의 제정 이후 ····· 103
2. 토지등기제도의 특징 ····· 109
가. 법원의 등기사무 관장 ····· 109
나. 물적 편성주의 ····· 109
다. 토지·건물 등기부의 이원화 ····· 110
라.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110
마. 공동신청주의 원칙 ····· 111
바. 형식적 심사주의 ····· 111
사. 성립요건주의 ····· 112
아. 공신력의 불인정 ····· 112
3. 등기의 효력 ····· 113
가. 권리변동의 효력 ····· 113
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 113
다. 순위확정의 효력 ····· 114
라. 점유적 효력 ····· 114
마. 추정력 ····· 114
바. 후등기 저지력 ····· 115
Ⅲ. 지적제도 ····· 116
1. 지적제도의 변천 ····· 116
가. 일제강점기부터 지적법의 제정 전까지 ····· 116
나. 지적법의 제정 이후 ····· 117
2. 지적제도의 현황 ····· 122
가. 지적 관련 법령 ····· 122
나. 담당 기관 ····· 122
다. 지적측량 ····· 123
라. 측량기준점 ····· 123
마. 지적공부 ····· 124
3. 토지등기제도와의 비교 ····· 125

제2절 북한의 토지등기제도 ····· 126
Ⅰ. 토지등기제도 ····· 126
1. 분단 당시 북한의 토지등기제도 ····· 126
2. 토지개혁 시기의 토지등기제도 ····· 126
3. 토지등기제도의 폐지 ····· 127
Ⅱ. 지적제도 ····· 129
1. 분단 당시 북한의 지적제도 ····· 129
2. 토지개혁 시기의 지적제도 ····· 130
3. 지적제도의 축소 ····· 131
4. 지적제도의 현황 ····· 133
가. 지적측량 ····· 133
나. 토지대장 ····· 134
Ⅲ. 토지등록제도 ····· 135
1. 국토관리와 국토의 조사·등록 ····· 135
가. 국토관리와 토지등록제도 ····· 135
나. 토지의 구분에 따른 토지등록 ····· 137
2. 부동산관리법에 기한 토지등록제도 ····· 138
가. 의의 ····· 138
나. 등록과 실사 ····· 139
다. 지번과 지목 ····· 140
제3절 양 제도의 비교 ····· 144
Ⅰ. 남·북한 토지등기제도의 비교 ····· 144
Ⅱ. 남·북한 지적제도의 비교 ····· 145
제4장 통일과정에서 토지등기제도 수립에 관한 일반론 ····· 147
제1절 통일방법 및 체제전환과정 ····· 149
Ⅰ. 개요 ····· 149
Ⅱ. 통일방법의 유형 ····· 150
Ⅲ. 체제전환과정의 유형 ····· 151
Ⅳ. 소결 ····· 152
제2절 토지소유권의 귀속 ····· 153
Ⅰ. 개요 ····· 153
Ⅱ. 몰수토지의 처리 문제 ····· 154
1. 의의 ····· 154
2. 처리 방안 ····· 155
가. 원물반환방식 ····· 155
나. 금전보상방식 ····· 156
다. 무반환·무보상 방식 ····· 157
Ⅲ. 사회협동단체에 의한 토지소유의 처리 문제 ····· 158

1. 의의 ····· 158
2. 처리 방안 ····· 158
Ⅳ. 소결 ····· 160
제3절 토지이용정책의 수립 ····· 160
Ⅰ.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실시 ····· 160
Ⅱ. 토지이용현황 조사 ····· 164
Ⅲ. 토지이용계획 수립 ····· 166
제4절 토지관리정책의 수립 ····· 167
Ⅰ. 지적공부의 제작 ····· 167
Ⅱ. 토지등기부의 제작 ····· 168
Ⅲ. 토지가격 공시제도의 구축 ····· 170
제5장 각국의 사례 ····· 173
제1절 개관 ····· 175
제2절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국가 ····· 177
Ⅰ. 독일 ····· 177
1. 통일 과정 ····· 177
가. 독일의 분단 과정 ····· 177
나. 분단 이후 통일 직전까지 ····· 178
다. 독일의 통일 과정 ····· 178
2. 경제체제의 전환 ····· 181
가. 체제전환에 따른 문제점 ····· 181
나. 화폐통합 ····· 182
다. 신탁청의 설치 및 주요 활동 ····· 183
3.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 187
가. 동독의 토지소유제도 ····· 187
나. 통일 과정에서 동독지역의 소유권 확립을 위한 법적 조치 ····· 197
다. 몰수재산 처리 관청 및 처리 절차 ····· 202
라. 통일 이후 발생한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 ····· 216
4. 토지등기제도의 변화 ····· 226
가. 동독의 등기제도 ····· 226
나. 토지등기제도에 대한 경과적 조치와 정비 ····· 227
다. 통일 과정에서 등기제도 통합을 위한 법적 조치 ····· 229
라. 통일 독일의 토지등기제도 ····· 233
Ⅱ. 예멘 ····· 237
1. 통일 과정 ····· 237
가. 분단 과정 ····· 237
나. 통일 과정 ····· 238
2. 경제체제의 전환 ····· 242

가. 북예멘의 경제체제 ····· 242
나. 남예멘의 경제체제 ····· 243
다. 통일 예멘의 경제체제 ····· 243
3. 토지제도의 변화 ····· 244
Ⅲ. 홍콩·마카오 ····· 245
1. 홍콩·마카오의 식민지 역사 ····· 245
가. 홍콩 ····· 245
나. 마카오 ····· 246
2. 홍콩·마카오의 중국으로의 반환 과정 ····· 247
가. 홍콩 ····· 247
나. 마카오 ····· 248
3. 일국양제 이론 및 특별행정구의 설치과정 ····· 249
가. 일국양제 이론의 법제화 ····· 249
나. 특별행정구 설치의 법적 근거 ····· 250
다.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 250
라. 홍콩의 특별행정구 설치과정 ····· 251
마. 마카오의 특별행정구 설치과정 ····· 251
4.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 252
가. 특별행정구기본법의 법적 지위와 효력 ····· 252
나. 각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주요 내용 ····· 253
다. 각 특별행정구기본법 사이의 몇 가지 차이점 ····· 255
5. 홍콩·마카오의 토지제도 변화 ····· 256
가. 홍콩 ····· 256
나. 마카오 ····· 258
제3절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 ····· 259
Ⅰ. 러시아 ····· 259
1. 체제전환과정 ····· 259
가. 구 소련의 계획경제체제 ····· 260
나. 페레스트로이카 전반기(1986년~1989년) ····· 264
다. 페레스트로이카 후반기(1990년~1991년) ····· 266
라.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체제 ····· 268
2.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 271
가. 구 소련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271
나.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273
3. 토지소유제도의 내용 ····· 276
가. 러시아 연방토지법의 체계 ····· 276
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 ····· 277
다. 국유토지의 사유화 ····· 279

Ⅱ. 헝가리 ····· 282
1. 경제체제의 변화 ····· 282
가. 공산화 및 체제 전환 이전 시기 ····· 282
나. 체제전환 이후 시기 ····· 286
2. 토지제도의 변화 ····· 288
가. 체제전환 이전 ····· 288
나. 체제전환에 따른 몰수재산의 처리 ····· 289
다. 체제전환에 따른 국유지의 사유화 ····· 294
라. 토지등기제도 ····· 295
Ⅲ. 몽골 ····· 298
1. 체제전환과정 ····· 298
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 298
나. 체제전환 과도기 ····· 301
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 303
2.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 304
가. 토지 관련 법제의 변화 ····· 304
나. 2002년 민법 개정 ····· 305
다. 2002년 국토법 개정 ····· 306
라. 2002년 토지사유화법 제정 ····· 307
마. 현황과 과제 ····· 309
제4절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 ····· 310
Ⅰ. 중국 ····· 310
1. 경제체제의 변화 ····· 310
가. 신중국 출범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 310
나. 개혁·개방이후 ····· 312
2. 토지제도의 변화 ····· 314
가. 신중국 출범 이전까지 ····· 314
나. 신중국 출범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 315
다. 개혁·개방이후 토지사용제도 변화의 필요성 ····· 318
라. 농촌 토지사용제도의 개혁 과정 ····· 320
마. 도시 토지사용제도의 개혁 과정 ····· 323
3. 토지등기제도의 현황 ····· 329
가.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 329
나. 부동산등기의 종류 ····· 333
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 337
라. 부동산등기 관리주체 ····· 340
마. 부동산 등기부 및 각종 권리증서 ····· 343
바. 토지사용권자와 건물소유자 간의 일치원칙 ····· 344

Ⅱ. 베트남 ····· 346
1. 경제체제의 변화 ····· 346
가. 베트남의 독립과 분단 시기 ····· 346
나. 베트남 전쟁과 통일 시기까지 ····· 349
다. 통일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 351
라. 개혁·개방 이후 ····· 354
2. 토지제도의 변화 ····· 357
가. 1986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 357
나. 1986년 개혁·개방 이후 ····· 359
3. 토지등기제도의 현황 ····· 362
가. 2013년 '토지법'의 주요 내용 ····· 362
나. 지적제도의 현황 ····· 364
다. 토지등록제도의 현황 ····· 366
제5절 정리 및 시사점 ····· 372
Ⅰ.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국가 ····· 372
1.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72
2. 예멘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74
3. 홍콩·마카오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74
Ⅱ.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 ····· 376
1. 러시아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76
2. 헝가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77
3. 몽골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78
Ⅲ.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 ····· 379
1. 중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79
2. 베트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80
제6장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 수립의 기본 방향 ····· 383
제1절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성 ····· 385
Ⅰ. 남북한 사이에 상이한 토지소유제도의 장기간 병존 ····· 385
1. 북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 385
2.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특수성 ····· 386
Ⅱ. 북한지역 토지에 관한 등기제도의 부존재 ····· 388
1. 북한의 토지등기제도 ····· 388
2. 북한의 토지등록제도 ····· 390
3. 북한지역 토지에 관한 등기제도 마련의 필요성 ····· 391
Ⅲ. 한반도 통일방식의 예측불가능성 ····· 393
1. 상정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방식의 유형 ····· 393
2. 그동안 논의되어 온 남북한의 통일방안 ····· 394
3. 통일방식의 다양성 - 외국의 사례 ····· 396

가. 독일 ····· 396
나. 예멘 ····· 397
다. 키프로스 ····· 398
라. 홍콩·마카오 ····· 398
4. 전망 ····· 399
Ⅳ. 상호교류의 단절 및 분단 상태의 고착 ····· 402
1. 통일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상호교류의 중요성 ····· 402
2. 우리의 현실 ····· 403
제2절 통일 한국에서 토지등기제도 수립시 고려할 사항 ····· 407
Ⅰ. 개관 ····· 407
Ⅱ. 시장경제적 토지소유권제도의 확립 ····· 409
Ⅲ. 북한토지의 효율적 이용 ····· 411
Ⅳ. 북한주민에 대한 배려 필요(북한주민의 현지 정착 및 지원책 마련) ····· 412
Ⅴ. 통일비용의 최소화 ····· 414
Ⅵ. 몰수토지 처리문제의 해결 ····· 415
1. 북한의 국유화 조치의 성격 ····· 415
2. 몰수토지의 처리 방안 ····· 417
가. 원물반환방식 ····· 417
나. 금전보상방식 ····· 417
다. 무반환·무보상 방식 ····· 418
라. 검토 ····· 419
3. 통일방식과의 상관성 ····· 420
Ⅶ. 통일 이후 토지의 사유화 추진 ····· 421
1. 개관 ····· 421
2. 사유화 방법에 관한 논의 ····· 422
가. 토지공공임대제의 도입 ····· 422
나. 북한 주민의 부동산 이용권 보장 ····· 424
다. 토지이용권에 의한 임대토지 ····· 428
라. 기타 국유토지와 산업시설 관련 토지 ····· 429
제7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 431
제1절 서론 ····· 433
Ⅰ. 기본원칙 ····· 433
Ⅱ. 논의의 방향 ····· 435
제2절 지적제도의 통합 ····· 437
Ⅰ. 지적제도 통합의 필요성 ····· 437
Ⅱ.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지적조사 경험 ····· 439
1.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의 제정 ····· 439
2.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지적조사 및 확정측량 실시 ····· 440

3. 개성공업지구의 지적공부 작성 ····· 441
4.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등록 ····· 442
5. 평가 ····· 448
Ⅲ. 지적조사의 기본 방향 ····· 449
1. 근거 법률의 제정 ····· 449
2. 전담기구의 설치 ····· 451
3. 전문 인력의 양성 ····· 452
4. 사업기간 및 예산 ····· 453
Ⅳ. 구체적인 지적조사 방안 ····· 455
1. 개요 ····· 455
2. 사전준비단계 ····· 456
가. 실시계획 수립 ····· 456
나. 지적조사에 관한 근거 법률의 제정 ····· 457
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458
3. 실행단계 ····· 459
가. 측량기준점 정비 ····· 459
나. 지적조사실시 및 측량 ····· 460
다. 지적공부 작성 ····· 461
4. 토지관리단계 ····· 464
가. 지적공부의 전산화 ····· 464
나. 등기부와의 연계 서비스 ····· 466
제3절 등기사항의 결정 ····· 467
Ⅰ. 개관 ····· 467
Ⅱ. 등기의 대상인 물건 - 토지의 표시 ····· 468
1. 현행 법률 규정 ····· 468
2. 토지의 소재 표시의 문제 ····· 471
3. 지번 표시의 문제 ····· 474
4. 지목 표시의 문제 ····· 477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 480
1. 현행 법률 규정 ····· 480
2. 북한에서 인정되는 토지에 관한 권리 ····· 481
가. 토지이용관계의 내용 ····· 482
나. 토지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 483
3. 토지이용권 인정 문제 ····· 484
가. 북한의 토지이용권 제도 ····· 485
나. 통일 이후 토지이용권의 인정 문제 ····· 488
다. 검토 ····· 489
Ⅳ.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492

1. 개관 ····· 492
2. 권리의 보존 및 소유권보존등기 ····· 493
가. 일반론 ····· 493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494
다. 통일 과정에서 혹은 통일 이후에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 ····· 497
3. 권리의 이전 ····· 497
가. 일반론 ····· 497
나. 통일 과정에서 혹은 통일 이후에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 ····· 498
4. 권리의 설정 ····· 499
가. 일반론 ····· 499
나. 통일 과정에서 혹은 통일 이후에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 ····· 500
5. 권리의 변경 ····· 500
가. 일반론 ····· 500
나. 통일 과정에서 혹은 통일 이후에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 ····· 502
6. 권리의 소멸 ····· 502
가. 일반론 ····· 502
나. 통일 과정에서 혹은 통일 이후에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 ····· 503
제4절 등기신청절차의 정비 ····· 504
Ⅰ. 개관 ····· 504
Ⅱ. 수복지역에서의 소유자복구 및 보존등기 경험 ····· 505
1. 입법배경 및 경과 ····· 505
가. 수복지역의 의의 ····· 505
나. 입법배경 ····· 506
다. 경과 ····· 506
2.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의 내용 ····· 507
가. 적용범위 ····· 507
나. 복구등록절차 ····· 507
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신청절차 ····· 509
라. 보증서, 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 ····· 510
마. 보증서 및 기타 증빙자료의 증명력 ····· 513
3. 평가 ····· 514
가.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의 필요성 및 의의 ····· 514
나.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의 특징 ····· 515
다. 수복지역 소유자복구와 보존등기 경험의 성과와 한계 ····· 515
라. 수복지역 소유자복구와 보존등기 경험의 시사점 ····· 517
Ⅲ.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절차 ····· 518
1. 문제의 소재 ····· 518
2.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 519

가. 몰수토지의 경우 ····· 519
나. 북한지역 토지의 사유화 방안 ····· 520
다.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에 따른 등기절차 검토 ····· 520
3. 토지소유권의 확정절차 ····· 527
가. 개요 ····· 527
나. 과거의 경험 -소유권 확정절차의 유형 ····· 528
다. 소유권 확정절차의 법적 성격과 등기의 추정력 ····· 555
라. 검토 ····· 563
Ⅳ. 등기절차의 정비 ····· 566
1. 부동산등기신청절차의 정비 필요성 ····· 566
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 566
나.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 ····· 568
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상 한계 ····· 569
2.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기절차의 정비 방안 ····· 572
가.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정비 방안 ····· 572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정비 방안 ····· 574
3. 예상되는 소유자의 범위 및 등기신청방법 ····· 575
가. 국가 소유 ····· 575
나. 사회협동단체의 소유 ····· 576
다. 북한 주민의 소유 ····· 578
라. 외국인의 소유 ····· 580
마. 남한 주민의 소유 ····· 581
제5절 물적·인적 등기인프라의 구축 ····· 582
Ⅰ. 개관 ····· 582
Ⅱ. 남한에서의 등기인프라 구축 현황 및 전망 ····· 584
1. 현행 등기소의 편제 및 현황 ····· 584
가. 현행 등기소의 편제 ····· 584
나. 전국 등기소의 분포 현황 및 주요 변천 과정 ····· 585
다. 전국 등기소의 사건 처리 현황 ····· 586
라. 전자신청의 도입 배경 및 현황 ····· 587
2. 현행 등기실무의 문제점 ····· 590
가. 원격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시 불편사항 존재 ····· 590
나. 등기소별 업무량 및 처리능력 편차 심각 ····· 591
다. 대량의 등기사건이 폭증할 경우 대처능력 부족 ····· 592
3. 개선방안 ····· 593
가. 광역등기소의 확대 신설 ····· 593
나.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 594
다. 등기신청의 전자화 ····· 596

4. 전망 -전자광역등기체계의 추진 ····· 598
가. 전자광역등기체계 마련의 필요성 ····· 598
나. 전자광역등기체계의 내용 ····· 599
Ⅲ. 통일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600
1.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등기소 신설의 필요성 ····· 600
2. 대량 등기사건의 일시적 폭증 가능성 ····· 602
3. 전문성 있는 등기관의 확보 필요성 ····· 603
4. 안정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 ····· 605
Ⅳ. 단기적 방안 ····· 606
1. 북한지역 재판소 현황 ····· 606
가. 개요 ····· 606
나. 중앙재판소 ····· 606
다. 도(직할시)재판소 ····· 607
라. 인민재판소 ····· 608
마. 특별재판소 ····· 609
2. 북한지역에 대한 등기소 설치 방안 ····· 610
가. 등기소의 설치 ····· 610
나. 등기인력의 충원 ····· 612
Ⅴ. 장기적 방안 ····· 613
1. 전자광역등기체계의 확대 ····· 613
2. 선결 과제 ····· 614
가. 통신, 인터넷망 등 인프라의 구축 ····· 614
나. 등기사무의 전산화 ····· 618
다. 전국단일관할체제의 마련 ····· 620
제6절 구체적인 추진 방안 ····· 620
Ⅰ. 선결문제 ····· 620
1. 토지소유제도의 통합 시기 문제 ····· 620
2. 몰수토지의 처리방법 및 국유토지의 사유화 문제 ····· 622
3. 해결 방향의 모색 ····· 623
Ⅱ. 추진 방안 ····· 624
1.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을 위한 방법론 ····· 624
2. 토지등기제도에 대한 잠정적 조치 시행 ····· 625
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시기 ····· 625
나. 새로운 토지등기부 제작 및 전면적인 지적조사의 필요성 ····· 626
다. 토지등기제도에 관한 잠정적 조치의 필요성 ····· 628
3.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 실시 ····· 629
가. 사전준비단계 ····· 629
나. 실행단계 ····· 630

다. 토지관리단계 ····· 631
라. 정리 ····· 632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결정 ····· 633
가. 소재의 표시 ····· 633
나. 지번의 표시 ····· 634
다. 지목의 표시 ····· 635
라. 정리 ····· 636
5. 토지에 관한 물권법 체계의 정비 ····· 637
가. 제한물권의 인정 ····· 637
나. 토지이용권의 인정 ····· 638
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이용권의 이익조정 ····· 638
라. 정리 ····· 639
6. 미등기 북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의 마련 ····· 640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640
나. 토지소유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 ····· 641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 및 추정력 ····· 645
라. 정리 ····· 648
7. 물적·인적 등기인프라의 구축 ····· 649
가. 통일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649
나. 단기적 방안 ····· 650
다. 장기적 방안 ····· 653
라. 정리 ····· 654
제8장 결론 ····· 657

55.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Written Jury Instructions

연구총서 2017-08

연구책임자 : 홍진표(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9월 15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필요성 ····· 5
Ⅲ. 연구의 범위 ····· 6
제2절 연구방법 ····· 8
Ⅰ. 통계자료 및 배심원 설명서 양식 수집과 분석 ····· 9
Ⅱ. 국내·외 설명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 9
Ⅲ. 설문조사의 시행과 설문결과의 분석 ····· 9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및 현황 ····· 11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13
Ⅰ. 의의 및 특징 ····· 13
1. 의의 ····· 13
2. 특징 ····· 13
Ⅱ. 대상사건 ····· 14
1. 합의사건 ····· 14
2. 단독사건으로의 확대(재정합의사건) ····· 15
Ⅲ. 피고인의 신청 및 배제 결정 ····· 18

1. 피고인의 신청 ····· 18
2. 배제 결정 ····· 19
Ⅳ. 공판준비와 배심원의 선정 및 선정절차 설명 ····· 20
1. 공판의 준비 ····· 20
2. 배심원의 선정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설명 ····· 21
Ⅴ. 공판기일의 진행과 평의 및 판결선고 ····· 22
1. 모두절차 ····· 22
가. 개정절차 ····· 22
나. 재판장의 모두설명-최초설명 ····· 22
2. 모두진술 ····· 23
가. 검사의 모두진술 ····· 23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 ····· 23
3. 재판장의 쟁점정리-중간설명 ····· 23
4. 변론종결 이후의 재판장 설명-최종설명 ····· 24
5. 평의 ····· 25
가. 평의 소요 시간과 평의 및 판결선고기일 ····· 25
나. 판사의 의견 개진 ····· 25
다.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 27
라. 양형토의 ····· 27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 28
Ⅰ. 접수 및 처리내역 등 현황 ····· 28
1. 접수 및 처리내역 ····· 28
2. 최근 접수건수 및 실시건수의 추이 ····· 29
3. 범죄유형별 건수 및 비율 ····· 30
4. 평의 소요 시간 ····· 30
5. 평균 처리기간 ····· 31
Ⅱ. 배심원 관련 현황 ····· 32
1. 배심원 선정 ····· 32
2. 배심원의 재판이해도 현황 ····· 33
3.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 ····· 34
4. 배심원의 의견진술과 판사의 의견 ····· 35
5. 배심원의 애로사항 ····· 35
Ⅲ. 상소 현황 ····· 36
1. 항소율 ····· 36
2. 상소심의 처리 ····· 36
제3장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 39
제1절 재판장 설명의 개관 및 현황 ····· 41
Ⅰ. 재판장 설명의 의의와 유형 ····· 41

1. 의의 ····· 41
2. 유형 ····· 42
가. 최초설명과 쟁점 등의 설명 ····· 42
나. 수시설명 ····· 45
다. 최종설명 ····· 46
Ⅱ. 재판장 설명과 배심원 설명서의 기능 ····· 48
1. 공정한 평의·평결을 위한 전제 ····· 48
2. 공판과 평의·평결의 기초 ····· 49
3. 피고인 방어의 기준 ····· 50
4. 항소심의 검토 대상 ····· 50
Ⅲ. 재판장 설명과 배심원 설명서의 관계 ····· 51
1. 배심원 설명서에 기초한 설명 ····· 51
2.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설명 및 설명서에의 기재 ····· 52
3. 택일적·예비적, 축소사실의 설명 및 설명서에의 기재 ····· 53
제2절 배심원 설명서 실제 양식과 작성 시 고려 사항 ····· 54
Ⅰ. 배심원 설명서 실제 양식 ····· 54
1. 각 재판부의 구체적 양식 ····· 54
가. 구체적 검토 및 유의할 점 ····· 54
나. 배심원 설명서의 '명칭' ····· 55
다. '주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 ····· 56
라. 기재 순서 ····· 61
2. 구체적인 기재 내용 ····· 63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죄명 및 적용법조 ····· 63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쟁점에 대한 설명 ····· 66
다. 증거법칙 ····· 77
라. 질문 및 견해표명의 금지 등 유의사항 ····· 96
마.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 97
바. 평의·평결절차 안내, 용어 설명 및 관련 법규 ····· 99
3. 각 배심원 설명서의 작성 방식·내용 및 시사점 ····· 104
가. 각 배심원 설명서의 작성 방식·내용 ····· 104
나. 시사점 ····· 106
Ⅱ.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고려 사항 ····· 108
1. 표준화를 통한 객관성 확보 여부 ····· 108
가. 평결과 배심원 설명서의 영향 ····· 108
나. 영향 제한과 미국의 표준화된 배심원 설명서 ····· 108
다. 표준화된 배심원 설명서 도입 주장 및 검토 ····· 109
2. 당사자의 참여 보장 ····· 111
가. 서면에 의한 법률적 사항의 설명 요청 ····· 111

나. 배심원 설명서 작성 및 교부 실무 현황 ····· 111
다. 당사자 의견 반영 주장 및 검토 ····· 112
3. 이해하기 쉬운 배심원 설명서 작성 ····· 113
가. 배심원의 자질과 평결 ····· 113
나.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 작성 ····· 114
4. 평의·평결의 절차적 지침의 제공 ····· 116
가. 평의절차 진행 관련 규정 ····· 116
나. 평의·평결 관련 절차적 지침의 설명 여부 및 검토 ····· 117
5. 공판전 준비절차 진행내용 포함 여부 ····· 119
6. 설명의 중복 내지 무의미한 용어의 반복 회피 ····· 120
가. 설명의 중복 회피 ····· 120
나. 무의미한 용어의 반복 회피 ····· 120
7. 배심원의 피고인·증인에 대한 질문 ····· 121
8. 배심원 메모의 허용 ····· 122
제4장 주요 국가의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검토 ····· 125
제1절 미국 ····· 127
Ⅰ. 배심재판의 특징 및 대상 ····· 127
1. 특징 ····· 127
2. 배심재판 대상 ····· 127
Ⅱ. 배심원 설명의 유형 및 내용 ····· 129
1.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심원 설명 및 내용 ····· 129
2. 최초설명 및 내용 ····· 130
3. 공판절차 중간의 설명과 제한적 설명 및 내용 ····· 131
가. 공판절차 중간의 설명 및 내용 ····· 131
나. 제한적 설명 및 내용 ····· 131
4. 최종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 134
5. 평의·평결 과정에서 예외적인 배심원 설명 ····· 143
6. 당사자 의견의 반영 ····· 144
Ⅲ. 표준적인 배심원 설명서의 작성 및 활용 ····· 145
1. 표준적인 배심원 설명서의 활용 ····· 145
2. 제11연방항소법원의 표준적인 배심원 설명서 ····· 146
3. 제9연방항소법원의 표준적인 배심원 설명서 ····· 147
4. 주 법원의 표준적인 배심원 설명서 ····· 148
제2절 영국 ····· 149
Ⅰ. 배심재판의 대상 및 배제 논의 ····· 149
1. 제1심 형사사건의 관할 ····· 149
2. 배심재판 대상 ····· 150
3. 배심재판 배제 논의 ····· 150

Ⅱ. 법관의 설명 ····· 151
1. 배심원 설명 및 설명서에 대한 개요서 제공 ····· 151
2. 최초설명 ····· 153
3. 수시설명 ····· 154
4. 최종설명 ····· 154
가. 근거 및 주요 설명 내용 ····· 154
나. 법률에 관한 설명 ····· 156
다. 증거의 요약 및 증거의 설명 ····· 158
라. 평의에 관한 지시 ····· 159
마. 무죄평결의 설명 및 지시 ····· 160
바. 배심원 역할 종료 후 설명 ····· 160
Ⅲ. 배심원 설명서 ····· 161
1. 배심원 설명서의 작성 정도 ····· 161
2. 배심원 설명서 작성 방식·내용 및 협의·제공 ····· 162
가. 작성 방식·내용 ····· 162
나. 협의 및 제공 ····· 163
3. 구체적 작성 방식 ····· 164
가. 사건 개요 ····· 164
나. 서술형 배심원 설명서 ····· 164
다. 질문형 배심원 설명서 ····· 166
라. 흐름도 ····· 167
제3절 독일 ····· 168
Ⅰ. 참심재판의 대상 ····· 168
1. 형사사건의 관할 법원 ····· 168
2. 참심재판부의 대상 사건 ····· 169
Ⅱ. 참심제도의 특징 ····· 170
1. 참심원의 자격 ····· 170
2. 참심원의 권한 ····· 171
3. 참심원과 직업법관의 관계 ····· 172
4. 평의·평결 및 판결 ····· 174
Ⅲ. 참심원의 교육과 설명서 등 ····· 176
1. 참심원의 교육 ····· 176
2. 참심원을 위한 설명서 ····· 176
3. 구체적 사건에서 참심원에 대한 설명 ····· 177
가. 공판 전의 설명 ····· 177
나. 공판 종결 후의 설명 ····· 178
제4절 프랑스 ····· 179
Ⅰ. 참심재판의 대상 ····· 179

1. 사법제도의 특징 ····· 179
2. 대상사건 ····· 179
Ⅱ. 참심원의 자격 및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 안내 ····· 180
1. 참심원의 자격 및 통지 ····· 180
2. 참심원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 안내 ····· 181
Ⅲ. 공판에 앞선 재판장의 설명 ····· 182
1. 참심원 선정 후의 재판장 설명 ····· 182
2. 참심원에게 설명하는 구체적 모습 ····· 182
Ⅳ. 공판심리의 절차 ····· 183
1. 도입보고서의 낭독 ····· 183
2. 참심원의 지위 및 권한 ····· 184
Ⅴ. 변론 종결과 평의에서 재판장의 설명 ····· 185
1. 재판장의 참심원 의무 낭독 ····· 185
2. 평의실에서의 재판장 설명 ····· 186
Ⅵ. 평의 및 평결의 절차 ····· 187
1. 재판장 주재의 평의 진행 ····· 187
2. 자유심증에 의한 평결 ····· 187
제5절 일본 ····· 188
Ⅰ. 재판원재판의 대상 ····· 188
1. 재판원재판의 의의 ····· 188
2. 재판원재판의 대상사건 ····· 188
Ⅱ. 재판원재판의 특징 ····· 189
1. 재판원의 권한 ····· 189
가. 권한 범위 ····· 189
나.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 ····· 190
다. 재판원이 관여하지 않는 판단 ····· 191
2. 평의 ····· 191
3. 평결 및 판결선고 ····· 193
가. 사실인정에 관한 평결 ····· 193
나. 양형에 관한 평결 ····· 194
다. 판결선고 ····· 194
Ⅲ. 재판원 선임절차 및 재판원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 안내 ····· 195
1. 재판원 선임절차 개관 ····· 195
2. 재판원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 안내 ····· 195
Ⅳ. 재판원에 대한 재판장 설명의 유형 및 내용 ····· 196
1. 공판 전 재판원에 대한 재판장의 설명 및 내용 ····· 196
2.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의 설명 및 내용(중간평의 단계) ····· 198
3. 평의 및 평결에서 재판장의 설명 ····· 199

4. 재판원 설명서 작성 실무 ····· 200
가. 재판원을 위한 설명서 작성 실무 ····· 200
나. 표준적인 설명서의 부재 ····· 201
제6절 시사점 ····· 202
제5장 개선방안의 검토 ····· 207
Ⅰ. 사전교육의 강화 ····· 209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홍보 강화 ····· 209
2.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210
Ⅱ. 배심원 설명서 및 일반적 작성 기준 ····· 212
1. 구술에 의한 재판장 설명의 전제 ····· 212
2. 재판장 설명 사례집상의 작성 기준 ····· 213
3.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원인의 고려 ····· 214
4. 다른 재판부 배심원 설명서의 고려 ····· 216
5.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타 고려 사항 ····· 217
Ⅲ. 작성방식·내용의 통일 여부 및 방법 ····· 218
1. 현행 실무 및 검토 필요성 ····· 218
2. 설문조사의 필요성 및 실시 ····· 218
3. 실제 작성 여부와 작성자 및 소요 시간 ····· 219
가. 설문조사의 결과 ····· 219
나. 설문결과의 분석 ····· 220
4. 통일 필요성 ····· 221
가. 설문조사의 결과 ····· 221
나. 설문결과의 분석 ····· 222
5. 기재순서 및 삭제 필요 여부 ····· 223
가. 현행 실무 및 검토 필요성 ····· 223
나. 기재순서 변경 여부 ····· 224
다. 배심원 설명서의 일부 삭제 여부 ····· 225
6. 통일 필요성 및 통일된 방식·내용의 검토 ····· 225
7. 배심원 설명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준 ····· 226
가. 통일된 방식·내용의 제시 필요성 ····· 226
나. 활용 가능성의 우선적 고려 ····· 227
다. 실무상 사용되는 배심원 설명서의 반영 ····· 227
라. 자율적인 수정 및 변경의 전제 ····· 227
마. 배심원 중심의 접근 ····· 227
바. 자백과 부인 사건의 구분 ····· 228
사. 내용에 따른 구분 ····· 228
아. 각 범죄유형별로 다양한 설명의 제시 ····· 228
자. 구체적 양식 ····· 229

Ⅳ. 당사자의 의견 반영 여부 ····· 229
1. 의견 반영 필요 여부 ····· 229
가. 의견 반영 논의 ····· 229
나. 설문조사의 결과 ····· 230
다. 설문결과의 분석 ····· 231
2. 의견반영 시기 및 방법 ····· 232
가. 검토 필요성 ····· 232
나.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 232
3. 점진적·단계적 검토 ····· 234
Ⅴ. 배심원 설명서의 교부 여부 ····· 235
1. 검토 필요성 ····· 235
2.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 235
가. 설문조사의 결과 ····· 235
나. 설문결과의 분석 ····· 236
3. 배심원 설명서 교부의 검토 ····· 236
Ⅵ. 표준적인 배심원 설명서의 검토 ····· 237
1. 작성 필요성의 검토 ····· 237
2. 설문조사의 실시 및 분석 ····· 237
가. 설문조사의 실시 ····· 237
나. 설문결과의 분석 ····· 238
3. 작성 주체의 검토 ····· 239
가.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 여부 ····· 239
나. 설문조사의 실시 및 분석 ····· 239
4. 장기적인 검토 ····· 239
Ⅶ. 배심원의 배려 ····· 240
1. 배심원 배려 필요성 ····· 240
2. 미국에서의 증거능력 논의와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 241
3. 일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 ····· 242
4.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배심원 설명서의 작성 및 안내 ····· 243
제6장 결론 ····· 245

56.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별책)

Research on Written Jury Instructions

연구총서 2017-08-별책

연구책임자 : 홍진표(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9월 15일 발행

제1장 국민참여재판 일반에 관한 재판장 설명 / 1

1. 소개 ……3
2. 형사재판·공판절차·공소장·공소사실 ……3
3. 사건 개요 ……4
4. 공소장 기재 사실로부터 추론 금지 ……4
5. 수죄 ……4
6. 재판절차 ……5
7. 최후진술 ……5
8. 재판장 설명 및 평의 평결 ……6
9. 배심원의 역할 ……6
10. 증거 ……7
11. 증거에 대한 이의와 증거의 제외 ……7
12. 재판장의 질문 ……8
13. 사건에 관한 정보 ……9
14. 토론의 금지 ……9
15. 휴정 ……10
16. 기일을 속행하는 경우 유의사항 ……11
17. 공동피고인 ……11

18. 유·무죄와의 구분 및 형량에 대한 고려 ……11
19. 배심원 질문 ……12
20. 배심원 노트 필기 ……12
21. 배심원의 평의 의무 ……13
22. 재판장의 최종설명 ……14
23. 축소 범죄사실 ……15
24.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평의 및 평결 ……16
제2장 증거 및 증거법칙에 관한 재판장 설명 / 19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21
2. 증거재판주의 ……22
3. 증거의 적시 ……23
4. 추론 ……23
5. 당사자의 주장 ……24
6. 증거에 대한 이의 제기 ……24
7. 무죄 추정 ……25
8. 검사의 증명책임 ……26
9.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26
10. 자유심증주의 ……28
1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 ……29
12. 증언의 신빙성 ……31
13. 피고인의 자백 ……33
14. 공동피고인 중 1인의 자백 ……35
15.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의 증언 ……35
16.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공범의 증언 ……35
17. 경찰관의 증언 ……36
18. 아동의 증언 ……36
19.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 ……37
20. 피고인의 사진 ……37
2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8
22. 증거의 사용 제한: 피고인별 고려 ……39
23. 수죄 혹은 수인의 피고인 ……40
가. 단독피고인의 수죄 ……40
나. 수인의 일죄 ……40
다. 수인의 수죄 ……40
제3장 범죄의 성립에 관한 재판장 설명 / 41
1. 구성요건 ……43
가. 고의 ……43
나. 과실 ……46

다. 중과실 ·····47
라. 행위: 작위와 부작위 ·····48
마. 인과관계 ·····50
2. 위법성 ·····53
가. 정당방위 ·····53
나. 과잉방위A ·····61
다. 과잉방위B: 처벌하지 않는 과잉방위 ·····62
라. 긴급피난 ·····65
마. 과잉피난A ·····66
바. 과잉피난B: 면책적 과잉피난 ·····67
사. 피해자의 승낙 ·····67
아. 추정적 승낙 ·····69
자.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70
3. 책임 ·····71
가. 책임능력: 심신상실 ·····71
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상실 ·····74
다. 심신미약 ·····76
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미약 ·····79
마. 위법성의 인식 ·····80
바. 강요된 행위 ·····82
사. 기대가능성 ·····84
4. 미수와 예비 ·····85
가. 미수범 ·····85
나. 예비죄 ·····87
다. 중지미수 ·····88
라. 불능범과 불능미수 ·····90
5. 공범 ·····93
가. 공동정범과 방조범 ·····93
나. 공모공동정범과 교사범 ·····96
다. 간접정범 ·····99
6. 죄수 ·····100
가. 일죄 ·····100
나. 수죄 ·····100
다. 수 명의 피고인의 일죄 ·····101
7. 양형 관련 ·····101
가. 자수 ·····101
나. 양형 ·····103

제4장 주요 범죄별 재판장 설명 / 105

1. 방화죄의 죄 ……107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107
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111
2. 살인의 죄 ……112
가. 살인죄 ……112
나. 존속살해죄 ……115
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16
라.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17
마. 살인미수죄 ……119
3. 상해와 폭행 및 협박의 죄 ……120
가. 상해죄 ……120
나. 폭행치사(상해치사, 폭행, 보복 목적 폭행 포함) ……124
다. 협박죄(보복 목적 협박 포함) ……131
4. 유기, 학대, 체포, 감금의 죄 ……134
가. 유기치사죄 ……134
나. 학대치사죄 ……136
다. 체포·감금 등 치사죄 ……137
5.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138
가. 강간죄 ……138
나. 강제추행죄 ……143
다. 준강간죄 ……147
라. 강간상해죄 ……149
마. 강간치사상죄 ……152
6. 절도의 죄 ……154
7. 강도의 죄 ……158
가. 강도죄 ……158
나. 강도상해죄 ……163
다. 준강도 및 준강도의 강도상해 ……167
8. 사기, 공갈의 죄 ……169
가. 사기의 죄 ……169
나. 공갈의 죄 ……171
9. 횡령, 배임의 죄 ……174
가. 횡령의 죄 ……174
나. 배임의 죄 ……176
10. 뇌물죄 ……180

부 록 배심원 설명서 양식 / 183

[1] 부인 사건 …… 185

[2] 자백 사건 ····· 205
1. 소개 ····· 3
2. 형사재판·공판절차·공소장·공소사실 ····· 3
3. 사건 개요 ····· 4
4. 공소장 기재 사실로부터 추론 금지 ····· 4
5. 수죄 ····· 4
6. 재판절차 ····· 5

57.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7-09

연구책임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1월 2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미국 행정법판사에 대한 개관 ····· 5
제1절 미국 행정법판사의 의미 ····· 7
Ⅰ. 행정법판사의 개념 ····· 7
1. 행정법판사란 ····· 7
2. 행정관사와의 구분 ····· 8
3. 사법부의 법관과 구분 ····· 9
Ⅱ. 행정법판사의 연혁 ····· 10
1. 행정법판사의 기원 ····· 10
2. 행정법판사 직위의 신설 ····· 10
3. 심리심사관에서 행정법판사로 ····· 11
제2절 행정법판사 관련 규정 ····· 13
Ⅰ. 연방법 - Federal APA ····· 13
1. 관련 법률 ····· 13
2. 관련 행정규칙 ····· 14
Ⅱ. 주법 - Model State APA ····· 16
Ⅲ. 입법목적 ····· 17
1. 행정절차법의 목적 ····· 17
2. 행정법판사를 두는 목적 ····· 17
제3장 자격과 선발 ····· 19

제1절 자격 ····· 21
Ⅰ. 연방행정법판사 ····· 21
1. 필수자격요건 ····· 21
2. 경력 ····· 22
가. 인정되는 경력 ····· 22
(1) 소송실무 경력 ····· 22
(2) 행정법 경력 ····· 22
나. 인정되지 않는 경력 ····· 23
3. 변호사 자격증 ····· 24
Ⅱ. 주행정법판사 ····· 25
1. 모범법의 규정 ····· 25
2. 캘리포니아 주 ····· 25
3. 뉴욕 주 ····· 25
제2절 선발과정 ····· 27
Ⅰ. 연방행정법판사 ····· 27
1. 중앙인사처의 일괄관리 ····· 27
2. 퇴역군인 가산점 ····· 27
3. 이력서의 제출 ····· 28
4. 선발시험 ····· 28
가. 온라인 심사 ····· 28
(1) 상황판단시험 ····· 28
(2) 논술표본 ····· 29
(3) 경력평가 ····· 29
(4) 필기시험 단계로 진행 ····· 29
나. 필기시험 ····· 30
(1) 시험방법 ····· 30
(2) 1교시 논술평가 ····· 30
(3) 2교시 객관식 논리평가 ····· 30
다. 구술면접시험 ····· 30
라. 시험점수 부여기준 ····· 32
마. 후보자명부에 등록 ····· 32
5.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32
6. 재시험 ····· 32
7. 임용 ····· 33
가. 임용의 제안 ····· 33
나. 임용의 거절 ····· 33
다. 임용에 있어서 중앙인사처와 행정청 사이의 책임분담 ····· 33
8. 시험개발 및 평가요소 ····· 34

가. 시험개발 ····· 34
나. 시험평가요소 - 13개의 역량 ····· 34
9. 전문 행정법판사 선택제도의 폐지 ····· 37
Ⅱ. 주 행정법판사 선발과정 ····· 38
1. 선발기관과 임명기관 ····· 38
2. 캘리포니아 주 ····· 38
가. 선발 및 임명기관 ····· 38
나. 선발시험 ····· 39
(1) 교육 및 경력에 대한 평가 ····· 39
(가) 지식 평가요소 ····· 39
(나) 능력 평가요소 ····· 40
(2) 인성 및 일반 자격요건 ····· 40
3. 뉴욕 주 ····· 41
가. 선발 및 임명기관 ····· 41
나. 선발시험 ····· 41
다. 평가 요소 ····· 42
라. 후보자명단 등록 ····· 42
Ⅲ. 자격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평가 ····· 43
제3절 행정법판사 전문성과 자질 ····· 44
Ⅰ. 전문성 ····· 44
Ⅱ. 필요자질 ····· 45
1. 행정청이 요구하는 필요자질 ····· 45
2. 행정법판사들이 생각하는 필요자질 ····· 46
제4장 행정법판사의 업무 ····· 49
제1절 역할 ····· 51
Ⅰ. 심리 ····· 51
1. 공식적인 심리의 주재 ····· 51
2. 사건의 종류 ····· 51
3. 소환 ·조사의 역할과의 분리 ····· 52
4. 행정법판사의 대리 ····· 52
Ⅱ. 행정운영제도 ····· 53
1. 사무행정운영 ····· 53
2. 수석행정법판사 행정운영제도 ····· 53
가. 연방행정청의 수석행정법판사 행정운영제도 ····· 53
나. 주 행정청의 수석행정법판사 행정운영제도 ····· 55
3. 비행정법판사 행정운영제도 ····· 56
제2절 행정청 근무현황 ····· 57
Ⅰ. 근무현황 ····· 57

1. 현황 ····· 57
2. 연방행정청 ····· 57
3. 각 주 행정청 ····· 59
Ⅱ. 연방행정청의 행정법판사 Loan 제도 ····· 59
1. 중앙인사처에 파견요청 ····· 59
2. 파견기간 ····· 59
3. 비용부담 ····· 60
Ⅲ. 연방시니어행정법판사제도 ····· 60
1. 중앙인사처의 제도운영 ····· 60
2. 시니어행정법판사의 임기 ····· 61
3. 시니어행정법판사의 보수 ····· 61
제3절 행정청의 업무부여 ····· 62
Ⅰ. 업무의 범위 ····· 62
Ⅱ. 연방행정법판사 사건배당순환제도 ····· 62
1. 순환적 사건배당 ····· 62
2. 사회보장청의 사건배당 ····· 63
3. 연안경비대의 사건배당 ····· 64
Ⅲ. 업무의 처리 ····· 64
1. 업무의 성격-업무량 및 난이도 ····· 64
가. 연방사회보장청 ····· 64
나. 연방노동부 ····· 65
다. 복잡사건을 다루는 연방행정청 ····· 65
라.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연방행정청 ····· 65
2. 업무처리기간에 대한 지침 ····· 66
가. 사회보장청 ····· 66
나. 연방연안경비대 ····· 66
제4절 주요 행정청별 행정법판사 업무 ····· 67
Ⅰ. 연방 ····· 67
1. 국제무역위원회 ····· 67
가. 조직 및 운영 ····· 67
나. 분쟁 유형 ····· 68
다. 심리절차 ····· 68
(1) 심리절차의 진행 ····· 68
(2) 심리선행절차 ····· 69
(3) 심리 ····· 69
(4) 1차 결정 ····· 69
(5) 구제조치 유형 ····· 70
(가) 한정적 배제명령 ····· 70

(나) 종합적 배제명령 ····· 70
(다) 금지명령 ····· 70
(6) 재심 ····· 70
2. 환경청 ····· 71
가. 조직 및 운영 ····· 71
나. 분쟁 유형 ····· 71
다. 심리절차 ····· 72
(1) 심리선행 정보교환 절차 ····· 72
(2) 심리준비 명령 ····· 72
(3) 심리선행회의 ····· 72
(4) 증거심리 ····· 73
(5) 최종서면제출 ····· 73
(6) 1차 결정 ····· 73
(7) 불복 ····· 73
3. 사회보장청 ····· 74
가. 조직 및 운영 ····· 74
나. 분쟁의 유형 ····· 75
다. 심리절차 ····· 76
(1) 심리 청구 ····· 76
(2) 심리에 대한 고지 ····· 76
(3) 심리선행절차 ····· 77
(4) 심리 ····· 77
(5) 심리 후 절차 ····· 77
(6) 결정 ····· 77
(7) 불복 ····· 78
4. 에너지규제위원회 ····· 78
가. 조직 및 운영 ····· 78
나. 분쟁의 유형 ····· 79
다. 심리절차 ····· 79
(1) 증거개시 ····· 79
(2) 심리 ····· 80
(3) 1차 결정 ····· 80
라. 심리기간 기준설정 ····· 80
5. 전국노동관계위원회 ····· 81
가. 조직 및 운영 ····· 81
나. 분쟁의 유형 ····· 82
다. 심리절차 ····· 83
(1) 조사 및 소환 ····· 83

(2) 심리 ····· 83
(3) 결정 ····· 83
6. 증권거래위원회 ····· 84
가. 조직 및 운영 ····· 84
나. 분쟁의 유형 ····· 84
다. 심리절차 ····· 85
(1) 조사 및 제재 청구 ····· 85
(2) 심리선행절차 ····· 85
(3) 심리 ····· 86
(4) 1차 결정 ····· 86
7. 연방연안경비대 ····· 86
가. 조직 및 운영 ····· 86
나. 분쟁의 유형 ····· 87
다. 심리절차 ····· 87
8. 연방통신위원회 ····· 87
가. 조직 및 운영 ····· 87
나. 분쟁의 유형 ····· 87
Ⅱ. 주 ····· 89
1. 캘리포니아 주 행정심리사무국 ····· 89
가. 사무국 운영 및 구조 ····· 89
나. 주요 분쟁 유형 ····· 90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처분 ····· 90
(2) 발달장애서비스부의 처분 ····· 91
(3) Keyhea 심리 ····· 91
(4) 교원소청심사 ····· 92
(5) 주립병원 AB 366심사 ····· 92
(6) 교육구와 장애학생 특별교육에 관한 분쟁 ····· 93
2. 뉴욕 시 행정심리사무국 ····· 93
가. 사무국 운영 및 구조 ····· 93
나. 주요 분쟁 유형 ····· 94
제5절 행정법판사 지원인력 ····· 95
Ⅰ. 지원인력의 고용 ····· 95
Ⅱ. 재판연구원 ····· 96
Ⅲ. 행정법판사 보조변호사 ····· 97
제6절 행정심판 심리 ····· 98
Ⅰ. 행정법판사에 의한 심리 ····· 98
Ⅱ. 심리절차 ····· 99
1. 심리선행절차 ····· 99

2. 심리 ····· 99
3. 결정 ····· 100
4. 행정법판사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 101
Ⅲ. 행정심리 결정문 ····· 102
1. 결정문의 요건 ····· 102
2. 결정문의 구성 ····· 102
Ⅳ. 행정법판사와 대체적 분쟁해결 ····· 104
1. 행정분쟁해결법 ····· 104
2. 행정법판사의 역할 ····· 105
3. 행정법판사에 의한 조정 ····· 105
4. 행정청별 ADR에서의 행정법판사의 역할 ····· 106
가. 연방 환경청 행정법판사의 ADR ····· 106
나. 국제무역위원회 337 조정 프로그램 ····· 107
5. 행정청 행정법판사들을 위한 ADR교육 ····· 108
가. 뉴욕 주 공동시설부 ····· 108
나. District of Columbia의 행정심리사무국 ····· 108
제7절 경력 행정법판사 교육 ····· 109
Ⅰ. 교육 의무연수 ····· 109
Ⅱ. 교육 프로그램의 예 ····· 110
1. National Judicial College 행정법판사 교과과정 ····· 110
2. 전미변호사협회산하 행정법판사회의와 전미행정법판사협회 공동 교육 세미나 ··· 111
Ⅲ. 행정법판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12
제5장 행정법판사의 독립성 ····· 113
제1절 행정법판사의 신분 ····· 115
Ⅰ. 신분의 이중성 ····· 115
1. 사법부 법관과 유사한 역할 ····· 115
2. 행정청의 공무원 ····· 116
Ⅱ. 임기 ····· 117
1. 연방행정법판사 ····· 117
2. 주행정법판사 ····· 117
Ⅲ. 보수 ····· 118
1. 연방행정법판사 ····· 118
가. 연혁 ····· 118
나. 중앙인사처 보수체계 ····· 118
다. 보수체계조정 및 지역별조정 ····· 120
라. 초과근무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 120
마. 관리 및 행정업무에 따른 호봉인상 ····· 121
바. 연방공무원은퇴제도 ····· 121

사. 성과금 지급의 금지 ····· 121
아. 보수에 있어서 중앙인사처와 행정청의 책임분담 ····· 122
2. 주행정법판사 ····· 122
3. 평균보수 ····· 123
Ⅳ. 승진 및 전보 ····· 124
1. 연방 ····· 124
가. 승진 ····· 124
나. 전보 ····· 124
2. 주 ····· 124
Ⅴ. 행정청과의 관계 ····· 125
1. 연방 행정법판사 ····· 125
가. 행정처 내 별도조직 ····· 125
나. 행정법판사 독립기구의 제안 ····· 125
2. 주 행정법판사 ····· 126
가. 중앙행정심판기구 형 ····· 126
나. 중앙행정심판기구 이외 ····· 128
제2절 업무관리 ····· 131
Ⅰ. 연방행정법판사 ····· 131
1. 업무최종평가의 금지 ····· 131
2. 최종평가금지로 인한 문제점 ····· 132
3. 업무평가 시도와 실패 ····· 132
4. 연방행정회의 보고서의 업무평가방안 ····· 133
Ⅱ. 주 행정법판사 ····· 134
1. 업무평가 ····· 134
2. 뉴저지 주 행정법판사 평가방식 ····· 134
3. 콜로라도 주 행정법판사 평가방식 ····· 135
가. 판단 평가 ····· 135
나. 업무평가 설문조사 ····· 136
다. 가치 인증 프로그램 ····· 137
제3절 행정법판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 138
Ⅰ. 독립적 판단 ····· 138
Ⅱ. 책임 ····· 139
1. 사실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결정할 의무 ····· 139
가. 법적 규정 ····· 139
나. 사실관계 확정의 내용과 형식 ····· 139
2. 행정재심 ····· 140
가. 결정에 대한 불복 및 재심사 ····· 140
나. 행정재심 방식 ····· 141

3. 사법심사 ····· 142
4. 윤리규정에 따른 책임 ····· 143
제6장 윤리와 징계 ····· 145
제1절 윤리 ····· 147
Ⅰ. 일반적 적용 윤리강령 ····· 147
Ⅱ. 행정법판사 대상 윤리강령 ····· 147
Ⅲ. 행정법판사 모범윤리강령 ····· 148
1. 연방 ····· 148
가. 연방행정법판사에게 적용여부 ····· 148
나. 윤리강령의 구조 ····· 148
다. 독립성의 유지 ····· 149
라. 부적절한 행태의 삼가 ····· 149
마. 공정한 업무 ····· 150
(1) 행정심판 업무의 공정성 ····· 150
(2) 행정적인 업무의 공정성 ····· 151
(3) 회피 ····· 151
바. 사법행정개선을 위한 활동 ····· 152
사. 이해관계충돌 위험의 최소화 ····· 153
(1) 취미활동 ····· 153
(2) 시민 활동 ····· 153
(3) 사업 활동 ····· 153
(4) 수탁 업무 ····· 154
(5) 기타 외부업무 ····· 154
아. 외부로부터 받는 보수의 제한 ····· 155
자. 부적절한 정치적 활동의 금지 ····· 155
2. 주 ····· 156
가. 연혁 ····· 156
나. 규정 ····· 156
(1) 강령의 구조 ····· 156
(2) 강령 1 ····· 157
(3) 강령 2 ····· 157
(가) 공정한 업무 ····· 157
(나) 선입견 ····· 158
(다) 외부영향 ····· 158
(라) 성실성과 협동성 ····· 158
(마) 공정한 심리기회 부여 및 결정의 의무 ····· 159
(바) 예의범절 ····· 159
(사) 법정 외 일방 당사자 및 관계인 개별접촉금지 ····· 159

(아) 사건에 관한 공표 ····· 160
(자) 회피 ····· 161
(차) 감독의 의무 ····· 162
(카) 업무에의 장애 ····· 162
(타) 비위 보고 ····· 163
(파) 징계기관과의 협조 ····· 163
(4) 강령 3 ····· 163
(가) 외부활동 ····· 163
(나) 공직자에의 자문제공 ····· 164
(다) 성품관련 증인 ····· 164
(라) 공직에의 임명 ····· 165
(마) 비공개정보의 이용 ····· 165
(바) 차별단체소속 및 단체 활동 ····· 165
(사) 기타 역할 수임 ····· 166
(아) 사업 및 영리 활동 ····· 166
(자) 외부활동에 대한 비용 ····· 166
(차) 금품 등의 수수 ····· 167
(카) 비용의 환급 및 면제 ····· 167
(5) 규범4 ····· 167
(가) 행정법판사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활동 ····· 167
(나) 임명직 행정법판사 후보 ····· 168
(다) 비사법적인 공직 후보가 되는 행정법판사의 활동 ····· 168
제2절 징계 ····· 169
1. 연방행정법판사 ····· 169
가. 징계기관-능력시스템보호위원회 ····· 169
나. 징계기준-정당한 이유 ····· 170
(1) 비위 및 역량부족 ····· 170
(2) 불복종 ····· 171
(3) 신체적 불능 ····· 171
(4) 정당한 이유와 서비스의 효율성 판단기준 ····· 171
(5) 법률상 추정 면직 ····· 172
다. 연방공무원으로서 연방법규정에 의한 징계 ····· 172
(1) 국가안보에의 위협 ····· 172
(2) 법률과 규칙의 위반 ····· 173
(3) 인력의 감축 ····· 173
라. 징계의 종류 ····· 173
마. 능력시스템보호위원회로의 징계판단청구절차 ····· 174
(1) 행정청의 청구 ····· 174

(2) 행정법판사의 권리: 청구에 대한 답변 ····· 174
(3) 행정법판사의 행정청에 대한 법률상 추정 면직 등의 부당행위 판단 청구 ··· 175
바. 징계 관련 판례 ····· 175
(1) 면직 ····· 175
(가) SSA v. Goodman ····· 175
(나) Benton v. U.S. ····· 176
(2) 감봉 - Lawson v.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176
2. 주행정법판사 ····· 177
가. 징계 기관 및 징계 기준 ····· 177
나. 징계 판례 - Absmeier v. Simi Valley Unified School Dist., 126 Cal.Rptr.3d 237 (2011) ····· 178
3. 사법부 법관 징계와의 구분 ····· 178
제7장 행정법판사협회 ····· 181
제1절 행정법판사협회 현황 ····· 183
제2절 각 행정법판사협회 활동 ····· 184
Ⅰ. 전국행정법판사협회 ····· 184
1. 개관 ····· 184
2. 활동 ····· 184
Ⅱ. 행정법판사협회 ····· 185
1. 개관 ····· 185
2. 정책 지원 ····· 185
Ⅲ. 연방행정법판사회의 ····· 186
1. 개관 ····· 186
2. 활동 ····· 186
Ⅳ. 미국행정법판사포럼 ····· 187
1. 개관 ····· 187
2. 활동 ····· 187
3. 입법청원 ····· 188
Ⅴ. 전미변호사협회 전국행정법사법회의 ····· 189
1. 개관 ····· 189
2. 활동 ····· 189
3. 정책방향 ····· 189
Ⅵ. 전국행정심리관협회 ····· 190
1. 개관 ····· 190
2. 활동 ····· 190
가. 인증교육 ····· 190
나. 전국행정심리관 세미나 개최 ····· 191
제8장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행정법판사 위헌성 문제 ····· 193

제1절 배경 ····· 195
Ⅰ. 임명에 관한 위헌성 문제 ····· 195
Ⅱ. 행정법판사에 의한 과징금 심리의 증가 ····· 195
Ⅲ. 증권거래위원회 행정법판사의 임명 ····· 196
1. 연방헌법상의 고위공무원 임명조항 ····· 196
2. 증권거래위원회의 임명절차 ····· 197
제2절 D.C.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 198
Ⅰ. Lucia v. SEC ····· 198
1. 사건의 배경 ····· 198
2. 판결 ····· 198
Ⅱ. 향후 전개 ····· 200
제3절 제10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 201
Ⅰ. Bandimere v. SEC ····· 201
1. 사건의 배경 ····· 201
2. 판결 ····· 201
제4절 전망 ····· 204
제9장 시사점 ····· 205
제1절 개관 ····· 207
Ⅰ. 미국 행정법판사 ····· 207
Ⅱ. 행정심판담당자 ····· 207
1. 행정심판제도 ····· 207
2. 미국 행정법판사와 비교 ····· 208
가. 행정심판위원 ····· 208
나. 소청심사위원 ····· 208
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9
라. 청문주재자 ····· 209
제2절 행정심판 담당자의 자격 ····· 210
Ⅰ. 행정심판 담당자 등의 자격 요건 ····· 210
Ⅱ. 임기 및 신분보장 ····· 212
Ⅲ. 시사점 ····· 213
1. 자격검증 ····· 213
2. 임기 및 신분보장 ····· 216
3. 교육 및 훈련 ····· 216
제3절 행정심판절차 ····· 217
Ⅰ. 행정심판과 적법절차 ····· 217
Ⅱ. 시사점 ····· 217
1. 재결문의 구성 ····· 217
2. 접근성의 향상 ····· 218

3. 위원들의 윤리규정 ····· 220
4. 행정 청문제도의 강화 ····· 221
제10장 결론 ····· 223

58.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Improving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in Korea

연구총서 2017-10

연구책임자 :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표현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최유나(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7년 12월 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Ⅰ. 연구의 대상과 범위 ····· 6
Ⅱ.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우리나라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 ····· 11
제1절 개관 ····· 13
Ⅰ. 난민의 개념과 난민인정 요건 ····· 13
1. 난민인정 제도의 역사적 배경 ····· 13
2. 난민 관련 입법 경위 ····· 14
3. 난민의 개념 ····· 16
가.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 ····· 16
나. 난민법상 그 밖의 개념 정의 ····· 17
4. 난민인정의 세부적 요건 ····· 19
가. 박해(persecution)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 19

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 24
다. 국적국 또는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26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개관 ····· 28
1. 개요 ····· 28
2. 행정청의 난민인정 심사와 이의 절차 ····· 29
가. 난민인정 관련 기관의 현황 ····· 29
나. 난민인정 신청 ····· 30
다. 난민인정 심사 ····· 34
라. 이의신청과 난민위원회 심의를 통한 결정 ····· 38
3. 법원의 난민재판 절차 ····· 40
가. 개요 ····· 40
나. 피고와 관할 ····· 40
다. 심리의 대상과 방법 ····· 41
라.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과 확정판결의 효력 ····· 42
제2절 행정청의 난민인정 절차 현황과 평가 ····· 42
Ⅰ. 난민인정 신청 단계 ····· 42
1. 난민인정 신청의 현황 ····· 42
가. 연도별 현황 ····· 42
나. 국적별 현황 ····· 43
다. 사유별 현황 ····· 45
라. 체류자격 현황 ····· 46
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제도 ····· 47
가. 신청과 심사 회부 현황 ····· 47
나. 운용에 대한 평가 ····· 48
다.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회부 기간과 관련된 평가 ····· 49
라. 회부심사 기준에 대한 평가 ····· 50
마.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와 이에 대한 평가 ····· 52
바. 출국대기실 운영 형태의 현황과 평가 ····· 54
3. 특정 유형의 난민인정 신청 증가 현황과 평가 ····· 56
4.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강제퇴거명령의 관계 ····· 59
Ⅱ. 난민인정 심사 단계 ····· 60
1.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인정 현황 ····· 60
가. 연도별 현황 ····· 60
나. 국적별 현황 ····· 61
다. 사유별 현황 ····· 62
라. 최근 4년간 단계별 세부 인정 현황 ····· 62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인정 심사 현황 ····· 63

3. 난민인정 심사 담당자의 현황과 평가 ····· 65
4. 난민인정 심사절차 일부 생략의 현황과 평가 ····· 66
가. 개요 ····· 66
나. 비판적 견해 ····· 67
다. 실무 현황 ····· 68
5. 녹음 또는 녹화의 현황과 평가 ····· 69
6. 난민전문통역인의 운용 현황과 평가 ····· 70
7. 난민인정 등의 결정 시기와 관련된 현황과 평가 ····· 71
8. 인도적 체류허가의 현황과 평가 ····· 72
Ⅲ. 이의신청 단계 ····· 74
1.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 ····· 74
2. 난민위원회 심의 현황과 평가 ····· 74
가. 현황 ····· 74
나. 평가 ····· 75
제3절 법원의 난민재판 현황과 평가 ····· 78
Ⅰ. 개관 ····· 78
Ⅱ. 소장 접수와 절차 안내 등의 단계 ····· 78
1. 소의 제기 현황과 평가 ····· 78
가. 현황 ····· 78
나. 평가 ····· 80
2. 소장 접수와 심사의 현황과 평가 ····· 80
가. 현황 ····· 80
나. 평가 ····· 82
3. 소송구조의 현황과 평가 ····· 83
가. 운용 현황 ····· 83
나. 평가 ····· 84
Ⅲ. 심리 단계 ····· 85
1. 통역의 실무 현황과 평가 ····· 85
가. 통역인 선정의 현황과 평가 ····· 85
나. 서울행정법원의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운용 현황과 평가 ····· 87
다. 통역과 관련된 기일지정 현황 ····· 88
2.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의 실무 현황과 평가 ····· 89
3. 난민인정 요건에 대한 심리의 현황과 평가 ····· 91
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 91
나. 문제되는 몇 가지 쟁점 ····· 93
4. 증거조사의 현황과 평가 ····· 96
가. 서증 ····· 96
나. 당사자신문 ····· 98

다. 국가정황정보 ····· 99
라. 사실조회 ····· 99
5. 판결과 불복의 현황 및 평가 ····· 100
가. 처리 현황과 평가 ····· 100
나. 불복 현황과 평가 ····· 103
Ⅳ. 상소심 단계 ····· 104
1. 항소심 절차의 현황과 평가 ····· 104
가. 항소심의 운용 현황과 평가 ····· 104
나. 항소심 접수 및 처리 현황과 평가 ····· 105
다. 상고 현황 ····· 106
2. 상고심 절차의 현황과 평가 ····· 107
Ⅴ. 소결 ····· 108
제3장 비교법적 검토 ····· 111
제1절 서설 ····· 113
Ⅰ. 대상 국가의 선정 경위 ····· 113
Ⅱ. 기본 개념의 이해 ····· 115
1. 비호(庇護, Asylum) ····· 116
2. 비호청구권(Right to Seek Asylum) ····· 117
3. 난민보호(Refugee Protection) ····· 119
제2절 미국 ····· 119
Ⅰ. 개관 ····· 119
1. 준거법 및 보호 현황 ····· 119
2. 용어 정의 ····· 122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125
1. 개관 ····· 125
가. 관련 기관 현황 ····· 125
나. 난민인정 절차 개관 ····· 127
2. 국토안보부 관여 절차 ····· 130
가. 난민인정 심사 개시 경로 ····· 130
나. 비호신청 제한 사유(사법심사의 제한) ····· 141
3. 법무부: 이민심사행정실 산하 이민법원과 이민불복위원회 관여 절차 ····· 143
가. 이민법원의 이민판사: 난민인정 심사 ····· 143
나. 이민불복위원회: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 ····· 153
다. 이민법원과 이민불복위원회의 사건 적체 및 대응 ····· 159
4. 연방항소법원: 사법심사 ····· 165
가. 개요: 사실상 단심으로 재판 종결 ····· 165
나. 절차 ····· 166
다. 난민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노력 ····· 169

Ⅲ. 소결 ····· 177
제3절 영국 ····· 179
Ⅰ. 개관 ····· 179
1. 난민인정의 역사적 배경과 경위 ····· 179
2. 난민 관련 현행 법제 ····· 181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182
1. 관련 기관의 현황 ····· 182
2. 비호신청과 영국 비자 이민청의 비호절차 ····· 185
가. 개요 ····· 185
나. 비호신청 절차와 현황 ····· 187
다. 심사절차와 현황 ····· 191
라. 결정절차와 현황 ····· 195
마. 불복절차와 현황 ····· 200
3. 제1심 행정심판소와 상급 행정심판소의 이민·비호 심판부 절차 ····· 210
가. 개요 ····· 210
나. 제1심 행정심판소 이민·비호 심판부 ····· 211
다. 상급 행정심판소 이민·비호 심판부 ····· 225
4.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난민재판 절차 ····· 233
가. 항소법원 ····· 233
나. 대법원 ····· 235
다. 현황 ····· 235
Ⅲ. 소결 ····· 237
제4절 캐나다 ····· 239
Ⅰ. 개관 ····· 239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241
1. 개관 ····· 241
가. 준거법 ····· 241
나. 관련 기관 소개와 난민인정 절차 개관 ····· 242
2. 이민부와 국경관리청: 난민신청의 적격성(eligibility) 심사 ····· 245
가. 난민신청 ····· 245
나. 적격성(eligibility) 심사절차 ····· 247
3. 이민난민심판원 ····· 250
가. 난민보호과: 난민인정 심사 ····· 250
나. 난민불복과: 난민보호과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 ····· 254
다. 현황 ····· 258
4. 연방법원: 사법심사 ····· 267
가. 개요 ····· 267
나. 절차 ····· 268

다. 현황 ····· 275
라. 항소 제한 ····· 277
마. 상고허가제 ····· 278
Ⅲ. 특정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배제와 난민인정 심사 신속화 제도 ····· 278
1. 개요 ····· 278
2. 안전한 제3국 제도: 미국과 캐나다의 양자 협정 ····· 279
가. 의의와 내용 ····· 279
나. 적용 대상과 범위 ····· 279
다. 예외 사유: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280
라. 난민불복과에의 불복 제한 ····· 280
3. 출신지정국 제도(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DCO) ····· 281
가. 의의 ····· 281
나. 출신지정국 명단 ····· 282
다. 내용 ····· 282
라. 제도 시행 효과 ····· 283
4. 지정된 외국인 제도(Designated Foreign Nationals, DFNs) ····· 284
가. 의의 ····· 284
나. 내용 ····· 285
Ⅳ. 소결 ····· 286
제5절 호주 ····· 288
Ⅰ. 개관 ····· 288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291
1. 개관 ····· 291
가. 준거법과 보호비자 ····· 291
나. 관련 기관 소개와 난민인정 절차 개관 ····· 292
2. 이민부: 보호비자 신청에 대한 1차 심사 ····· 293
가. 보호비자 신청절차 ····· 293
나. 신청 지원 제도 ····· 299
다. 비자 신청 제한 사유 ····· 301
라. 면접 ····· 302
마. 심사 기준 ····· 303
바. 결정과 이의신청 ····· 304
사. 비자 신청 처리 기간 ····· 305
아. 현황 ····· 306
3. 행정불복심판소의 이의심사 ····· 313
가. 행정불복심판소(AAT) ····· 313
나. 행정불복심판소 이주난민과에 의한 이의심사 ····· 315
다. 행정불복심판소 일반과에 의한 이의심사 ····· 320

라. 이민심사기관에 의한 신속트랙 결정에 대한 이의심사 ····· 321
마. 현황 ····· 322
4. 연방순회법원 등: 사법심사 ····· 323
가. 개요 ····· 323
나. 절차 ····· 324
Ⅲ. 소결 ····· 326
제6절 뉴질랜드 ····· 328
Ⅰ. 개관 ····· 328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330
1. 개관 ····· 330
가. 준거법 ····· 330
나. 관련 기관과 난민인정 절차 개관 ····· 331
2. 이민청 난민지위과(RSB): 1차 난민심사 ····· 332
가. 결정권자(난민보호심사관)와 관할 ····· 332
나. 절차 ····· 333
다. 현황 ····· 339
3. 이민보호심판소: 이의심사 ····· 340
가. 소속과 구성 ····· 340
나. 관할 ····· 341
다. 절차 ····· 343
라. 현황 ····· 348
4. 국가정황정보(COI) 전문 연구센터 ····· 349
가. 필요성 ····· 349
나. 뉴질랜드 국가정황연구과(CRB)의 연혁과 역할 ····· 350
다. 국가정황연구과 안내 자료 ····· 351
라. 국가정황정보 전문 연구센터의 이점 ····· 354
5. 고등법원: 불복 제소와 사법심사 ····· 355
가. 개요 ····· 355
나. 고등법원에 법률적 쟁점에 대한 소의 제기 ····· 357
다. 고등법원에 사법심사청구 ····· 358
라. 항소법원에의 항소 ····· 358
마. 대법원에의 상고 ····· 358
바. 현황 ····· 359
Ⅲ. 소결 ····· 360
제7절 독일 ····· 361
Ⅰ. 개관 ····· 361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365
1. 개요 ····· 365

2. 행정청의 비호신청과 심사절차 ····· 366
가. 관련 행정청 ····· 366
나. 공항 특별절차 ····· 367
다. 일반 비호절차 ····· 369
라. 신속한 비호절차 ····· 394
3. 법원의 재판절차 ····· 395
가. 개요 ····· 395
나. 제1심 소송절차 ····· 397
다. 불복과 상소심 절차 ····· 426
라. 2016년 현황 ····· 436
Ⅲ. 소결 ····· 439
제8절 프랑스 ····· 441
Ⅰ. 개관 ····· 441
1. 난민인정 관련 법제 ····· 441
2. 2015년 외국인법(CESEDA)의 개정 경위와 주요 내용 ····· 443
3. 난민의 개념과 인정 근거 ····· 444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445
1. 난민인정 관련 기관의 현황 및 절차의 개요 ····· 445
2. 보호 사무국(OFPRA)의 난민인정 절차 ····· 447
가. 보호 사무국의 조직과 구성, 역할 ····· 447
나. 비호신청 절차와 현황 ····· 450
다. 심사절차와 현황 ····· 456
라. 결정절차와 현황 ····· 461
마.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465
3. 국가비호법원(CNDA)의 난민재판 절차 ····· 465
가. 개요 ····· 465
나. 국가비호법원의 조직과 구성, 역할 ····· 466
다. 소의 제기 절차 등 ····· 469
라. 심리 ····· 473
마. 판결과 결정에 의한 종국 처리 ····· 479
바. 불복절차 ····· 482
4. 국사원의 난민재판 절차 ····· 482
가. 국사원의 조직과 구성, 역할 ····· 482
나. 국사원의 심리와 판결 절차 ····· 483
다. 국사원의 난민사건 현황 ····· 483
Ⅲ. 소결 ····· 484
제9절 일본 ····· 485
Ⅰ. 개관 ····· 485

1. 난민인정 관련 현황 ····· 485
2. 난민인정 제도 개관 ····· 486
가. 난민인정 법제 ····· 486
나. 2004년 입관법의 개정 ····· 487
Ⅱ.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 ····· 489
1. 개요 ····· 489
2. 법무성의 난민인정 절차 ····· 490
가. 난민인정 신청절차 ····· 490
나. 난민인정 심사절차 ····· 491
다. 심사청구 절차 ····· 493
라. 난민인정의 효과 ····· 496
3. 법원의 난민재판 절차 ····· 497
가. 난민재판 유형 개관 ····· 497
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498
다.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 500
라. 난민 해당성의 입증과 판단 ····· 501
마. 심리절차: 도쿄지방재판소의 실무 ····· 504
바. 종국판결 및 기타 소송종료 ····· 506
사. 상소심 절차 ····· 508
아. 난민불인정처분과 관련된 그 밖의 소송절차 ····· 509
Ⅲ. 난민인정과 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 ····· 511
1. 난민인정 신청과 불복신청의 현황 ····· 511
가. 난민신청자 수 현황 ····· 511
나. 난민인정 신청 당시 체류자격 현황 ····· 513
다. 불복신청자 수 현황 ····· 515
2. 난민인정 신청과 불복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 ····· 516
가. 난민인정처분과 불인정처분 현황 ····· 516
나. 처리 기간 현황 ····· 518
3. 임시체류허가와 인도적 배려에 의한 체류허가 현황 ····· 520
가. 임시체류허가 현황 ····· 520
나. 인도적 배려에 의한 체류허가(기타 비호) 현황 ····· 520
4. 2016년 난민인정 신청의 내용 ····· 523
가. 난민인정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 신청 내용 ····· 523
나.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 신청 내용 ····· 523
5. 난민재판의 현황 ····· 524
가. 난민사건 수 ····· 524
나. 판결 등의 현황 ····· 524
6. 난민인정 제도의 문제점과 검토 현황 ····· 525

가. 문제점 ····· 525
나. 난민인정 제도 운용에 대한 재검토 논의와 정책 반영 ····· 527
Ⅳ. 소결 ····· 529
제4장 개선 방안 ····· 531
제1절 개관 ····· 533
제2절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과 회부심사 단계 ····· 534
Ⅰ.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과 출입국관리 업무의 관계 설정 ····· 534
Ⅱ.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절차의 개선 ····· 536
1.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권리 고지의 개선 ····· 536
가. 도착할 때부터 입국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절차 안내 ····· 536
나. 입국심사 공무원에 의한 절차 안내 ····· 537
다. 입국재심실과 출국대기실 등에서의 지원 ····· 538
2. 법률에 맞는 신속한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제도의 운용 ····· 538
Ⅲ.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방식과 기준의 개선 ····· 539
1. 개선의 필요성 ····· 539
2. 각국의 운용 현황 ····· 540
3. 개선 방안 ····· 544
가. 출입국항에서 신청자의 적격성 위주로 형식적 회부심사를 하는 방안 · 544
나. 출입국항에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하는 방안 ····· 546
Ⅳ. 불회부결정 이후의 절차와 불복 방법 마련 ····· 547
Ⅴ. 출국대기실의 운영 형태와 절차 개선 ····· 549
제3절 국내 난민인정 신청과 행정청의 심사 단계 ····· 550
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제고 ····· 550
1. 국내 난민인정 신청과 준비 단계에서 지원 ····· 550
가. 지원 필요성과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 ····· 550
나.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 ····· 554
2. 난민인정 심사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 ····· 558
가. 필요성 ····· 558
나. 면접의 원칙적 녹음·녹화 ····· 558
다. 면접조서에 대한 수정·보완의 기회 제공 ····· 559
라. 절차를 위반하여 조사한 사실 또는 증거의 배제 ····· 559
마. 투명한 정보공개 ····· 560
3. 난민인정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 ····· 560
가. 심사의 전문성 강화 ····· 560
나. 난민인정 요건 중심의 심사 방법 ····· 562
다. 난민인정 심사의 독립성 제고 ····· 563
Ⅱ.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 564
1. 신청자의 성실한 협력 유도 방안 ····· 564

가. 각국의 운용 현황 ····· 564
나. 개선 방안 ····· 565
2. 난민인정 심사절차 일부 생략 규정을 신속한 심사절차 규정으로 전환 ····· 566
3. 특정 유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절차 일부 배제와 신속절차 도입 방안 ··· 567
가. 개요 ····· 567
나. 각국의 운용 현황 ····· 568
다.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569
라. 개선 방안 ····· 571
제4절 이의신청 단계 ····· 572
Ⅰ. 개관 ····· 572
Ⅱ. 현행 난민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실무 운영의 개선 ····· 572
1. 상설 운영 ····· 572
2. 구술심문 기회 보장 ····· 573
3. 구성과 조직 형태 개선 ····· 574
Ⅲ.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전문적인 준사법기관 설립 방안 ····· 574
1. 각국의 운용 현황 ····· 574
2.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575
가. 전문가 면담 결과 ····· 575
나. 난민재판 담당 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576
3. 설립 시 고려 사항 ····· 577
제5절 난민재판 단계 ····· 578
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제고 ····· 578
1.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향상 ····· 578
가. 간편한 소의 제기 방법 마련 ····· 578
나. 보다 쉽고 간편한 절차 안내 ····· 579
다. 소송구조 개선 ····· 580
라. 그 밖에 법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 ····· 581
2. 법원 심리의 충실화 ····· 582
가. 국제적 지침: 국제법률가위원회의 '난민과 이주자에 관한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 ····· 582
나.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586
다. 개선 방안 ····· 589
Ⅱ. 난민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 597
1. 심급구조와 재판형태의 다양화 ····· 597
가. 필요성 ····· 597
나. 각국의 운용 현황 ····· 598
다.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600
라. 개선 방안 ····· 603

2. 특정 유형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 ····· 608
가. 각국의 운용 현황 ····· 608
나.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609
다. 개선 방안 ····· 610
3. 심리 과정의 신속화 ····· 611
가. 각국의 운용 현황 ····· 611
나.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612
다. 특정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신속심리 모델 ····· 613
라. 개선 방안 ····· 614
4. 판결선고와 상소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 616
가. 판결문 이유 기재 간이화 ····· 616
나. 추완항소의 효율적 처리 ····· 618
다. 상소심의 효과적인 심리 ····· 618
제5장 결론 ····· 619

59.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The Exclusion of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Motion in Limine and Motion to Suppress in Criminal Cases

연구총서 2017-11

연구책임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제2장 미국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배제신청제도 개관 ····· 7
제3장 유해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 ····· 13
제1절 개관 ····· 15
Ⅰ. 의의 ····· 15
Ⅱ. 목적 ····· 17
Ⅲ. 근거 ····· 19
1. 연방증거규칙 제402조 ····· 20
2. 연방증거규칙 제403조 ····· 21
3. 연방증거규칙 제103(d)조 및 제104(c)조 ····· 23
4. 연방증거규칙 제611조 ····· 24

Ⅳ. 적용범위 및 한계 ····· 25
1. 적용범위 ····· 25
2. 한계 ····· 28
가. 사실적 뒷받침 또는 주장이 불명한 경우 ····· 28
나. 유해증거배제 신청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 29
다. 일상적인 실무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사안 ····· 30
라. 유해증거배제신청의 부적절한 사용 ····· 30
제2절 연혁 및 발전 ····· 32
Ⅰ. 기원 ····· 33
Ⅱ. 형사재판에서 적용 ····· 36
1. 초기 ····· 37
2. 피고인의 유해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사법승인 ····· 39
3. 검사의 유해증거배제신청 ····· 42
4. 검사의 유해증거배제신청 확대 ····· 44
가. 개관 ····· 44
나. 주 법원 ····· 45
다. 연방 법원 ····· 52
제3절 쟁점별 증거의 허용성 판단기준 ····· 57
Ⅰ. 개관 ····· 57
Ⅱ. 연방증거규칙 관련 쟁점 ····· 57
1. 예비적 질문(Preliminary Question) ····· 58
가. 기초사실의 존부 ····· 58
나. 사실심 판사의 재량 ····· 58
2. 공모자의 진술(Coconspirator Statement) ····· 61
가. 관련 규정 ····· 61
나. 내용 ····· 62
3. 범인식별(Identification) ····· 70
가. 범인식별 증언 ····· 70
나. 라인업(Lineup) ····· 72
다. 쇼업(Showup) ····· 73
라. 법정 내 범인식별 ····· 74
마. 법정 외 범인식별에 대한 증인의 법정증언 ····· 75
바. 머그샷(Mug Shot) ····· 76
4. 대화의 테이프 녹음 ····· 76
가. 증거의 허용성 ····· 76
나. 절차 단계별 테이프 녹음의 사용 ····· 77
5. 다른 범죄 또는 기타 위법행위 ····· 79
6. 증인의 신용성 ····· 83

7. 전문가의 증언 ····· 85
가. 의의 ····· 85
나. 전문가 자격 ····· 87
다. 전문가의 의견 증언 ····· 90
라. 종국적 쟁점에 관한 의견 ····· 92
마. Daubert 기준과 과학기술 ····· 92
8. 교정적 배심원 설명(Curative Instruction) ····· 95
9.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 97
10. 배심원 앞에서 혹은 배심원이 관여하는 실험 수행 ····· 97
Ⅲ. 헌법적 쟁점 ····· 98
1.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 ····· 98
가. 개관 ····· 98
나. 행사주체 ····· 99
다. 행사범위 ····· 99
라. 행사근거 ····· 100
마. 행사방식 ····· 101
바. 포기 ····· 102
2. 대면권 ····· 102
가. 개념 ····· 102
나. 전문진술과 대면권 ····· 103
다. 법정 외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105
라. 피고인의 법정 출석 ····· 107
제4절 형사소송에서 신청 절차 ····· 109
Ⅰ. 신청 시기 및 방식 ····· 109
1. 개관 ····· 109
2. 시기 ····· 111
3. 방식 ····· 113
Ⅱ. 증거채부결정 ····· 116
1. 이익형량 분석 ····· 116
가. 개관 ····· 116
나. 연방증거규칙 제403조 ····· 117
다. 연방증거규칙 제609(a)조 ····· 119
라. 연방증거규칙 제609(b)조 ····· 122
2. 법원의 결정 ····· 124
가. 형태 ····· 124
나. 시기 ····· 124
다. 방식 ····· 126
3. 유해증거배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128

Ⅲ. 불복을 위한 이의의 보존(Preservation of Objection) ····· 129
1. 내용 ····· 129
가. 이의 및 입증제의(Offer of Proof, 立證提議) ····· 129
나. 관련 규정 ····· 130
2. 관련 주요 판례 ····· 132
가. 연방대법원 ····· 132
나. 연방항소법원 ····· 133
Ⅳ. 항소심 ····· 137
1. 항소요건 ····· 137
2. 관할 ····· 137
3. 심사범위 ····· 138
4. 심사기준 ····· 138
제4장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 ····· 143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45
Ⅰ. 개관 ····· 145
1. 의의 ····· 145
2. 목적 ····· 146
Ⅱ. 연혁 ····· 146
1. 개관 ····· 147
2. 연방 차원 ····· 148
3. 주 차원 ····· 150
Ⅲ. 적용범위 및 예외 ····· 151
1. 개관 ····· 151
2. 적용범위 및 예외 ····· 152
가. 독수과실이론(毒樹果實理論,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 152
나. 탄핵증거 ····· 156
다. 노크와 고지의 원칙(Knock and Announce Rule) 위반 ····· 156
라. 선의(Good Faith) ····· 157
Ⅳ. 논의 ····· 161
제2절 형사소송에서 신청 절차 ····· 162
Ⅰ. 의의 ····· 162
Ⅱ. 신청 ····· 165
1. 신청 적격 ····· 165
2. 시기 ····· 166
가. 일반 ····· 166
나. 실기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구제 ····· 169
3. 방식 ····· 170
Ⅲ. 심문절차 ····· 172

1. 증거조사를 위한 연방치안판사의 지정 ····· 172
2. 위법수집증거배제 심리(Suppression Hearing) ····· 174
가. 심리의 개최 여부 ····· 174
나. 입증책임 ····· 176
Ⅳ. 법원의 결정 ····· 178
Ⅴ. 불복 ····· 179
1. 검사의 불복 ····· 179
2. 피고인의 불복 ····· 18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과 유해증거배제신청의 비교 ····· 182
제5장 시사점 ····· 185
제1절 개관 ····· 187
Ⅰ. 국민참여재판제도 ····· 187
Ⅱ.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189
제2절 시사점 ····· 191
Ⅰ. 증거채부에 관한 충실한 심리 ····· 191
Ⅱ. 본안과 분리된 증거채부심리절차 ····· 194
Ⅲ. 공판준비절차의 실효성 담보 ····· 195
Ⅳ. 증거결정이유에 대한 충실한 설시 ····· 198
Ⅴ. 증거채부심리절차 전담법관 ····· 199
Ⅵ. 증거채부 판단기준 매뉴얼 ····· 200
제6장 결론 ····· 211

60.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Dismissal in civil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연구총서 2017-12

연구책임자 : 오규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7
제2장 민사재판의 현황과 문제 ····· 9
제1절 소각하와 관련한 민사재판의 현황 ····· 11
Ⅰ.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현황 ····· 11
1. 최근 6년간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 현황 ····· 11
2. 평균처리기간 현황에 대한 검토 ····· 15
Ⅱ. 소장각하명령 관련 현황 ····· 16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 16
2. 소장각하명령의 현황 ····· 17
Ⅲ. 소각하판결 현황 ····· 20
1. 소각하 일반론 ····· 20
가. 소각하 사유 ····· 20
나. 소각하 판단의 시기 ····· 21
2. 신의칙 위반과 소각하 ····· 23
3. 소각하판결 관련 통계 ····· 25
제2절 부당소송의 문제 ····· 28

제3절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 29
제3장 미국의 소각하 제도 ····· 31
제1절 서론 ····· 33
제2절 미국 민사소송절차 개관 ····· 35
Ⅰ.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관할권 ····· 35
Ⅱ. 제1심 민사소송절차 ····· 36
Ⅲ. 상소심 소송절차 ····· 39
1. 상소 일반 ····· 39
2. 상소의 대상 ····· 39
Ⅳ.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적용범위 및 양식 ····· 41
1. 연혁 및 적용범위 ····· 41
2. 연방민사소송규칙 소정의 각종 양식 ····· 42
Ⅴ. 미국의 적정 사건처리기간 및 사건처리기간 관련 통계 ····· 42
1. 민사 1심사건 적정 처리기간 기준 ····· 42
가. 일반론 ····· 42
나. 각 주별 적정 사건처리기간 ····· 42
다. 검토 ····· 44
2. 민사 1심사건 처리기간 관련 통계 ····· 44
가. 소가(訴價)별 사건처리 현황 ····· 44
나. 최근 10년간 민사 1심사건 처리기간 현황 ····· 45
제3절 미국 민사소송법상 소각하 ····· 47
Ⅰ. 미국 민사소송법상 'dismissal'의 의의 ····· 47
1. 개념 ····· 47
2. 재소(再訴) 허용 여부에 따른 구분 ····· 48
3. 유사한 제도들과의 비교 ····· 48
가. 약식재판 ····· 49
나. 구석명신청 ····· 50
다. 삭제신청 ····· 50
4. 소각하 관련 통계 ····· 55
Ⅱ. 소각하의 절차 ····· 57
1. 직권 및 신청 ····· 57
2. 소각하의 통지 ····· 58
3. 심문 ····· 58
4. 재판 ····· 60
5. 소각하 재판에 대한 불복 ····· 61
6. 소장의 보정 등 ····· 61
Ⅲ.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소각하 관련 규정 개관 ····· 62
1.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1조(a), (b) ····· 62

가. 자발적 각하 ····· 62
나. 비자발적 각하 ····· 63
2.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 ····· 63
3. 기타 연방민사소송규칙 소정의 소각하 사유 ····· 65
Ⅳ.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의 소각하 제도 개관 ····· 66
1. 뉴욕주의 소각하 제도 ····· 66
가. 민사신청 관련 법령 ····· 66
나. 소각하 신청사유 ····· 67
다. 신청시기 ····· 68
라. 증거개시의 자동 중지 ····· 69
2. 캘리포니아주의 소각하 제도 ····· 69
가. 소각하의 근거법령 ····· 69
나. 소각하의 신청사유,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등 ····· 70
다. 소각하 신청전 협의 ····· 71
라. 소송지연을 사유로 한 재량 소각하 ····· 72
Ⅴ. 소각하 사유의 구체적인 검토 ····· 73
1. 소송요건 관련 소각하 사유 ····· 73
2. 법원의 명령 불이행·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소각하 ····· 73
가. 소각하 권한 ····· 73
나. 소각하 권한의 한계 ····· 75
다. 소송대리인의 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문제 ····· 77
3. 청구원인의 부족을 이유로 한 소각하 ····· 78
가.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 ····· 78
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의 내용 ····· 79
다. 원고가 기재한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 83
4. 소송수행의 불성실을 이유로 한 소각하 ····· 88
가. 일반론 ····· 88
나. 구체적 검토 ····· 91
다. 소송불성실에 대한 면책 ····· 94
5. 부당소송을 이유로 한 소각하 ····· 97
6.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에 따른 소각하 ····· 99
가. 전략적 봉쇄소송의 의의 및 미국에서의 논의 ····· 99
나. 전략적 봉쇄소송을 사유로 한 소각하 신청 ····· 100
Ⅵ. 실제 소송 사례 고찰 ····· 101
1. 소각하 신청이 기각된 사안 ····· 101
2.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사안 ····· 102
제4장 미국 소각하 제도의 시사점 ····· 105
제1절 우리의 소각하와 미국의 소각하의 비교 ····· 107

1. 공통점 ····· 107
2. 차이점 ····· 107
제2절 우리 민사소송에 대한 시사점 ····· 112
1. 소각하 사유의 구체화 ····· 113
2. 법원모욕에 대한 제재 ····· 114
3. 부당소송과 남소의 방지를 위한 입법 ····· 115
4. 사건의 조기 분류, 신속한 쟁점 파악 및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 115
제5장 결론 ····· 119

61.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elevising and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연구총서 2017-13

연구책임자 : 염호준(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표현덕(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7년 9월 2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재판 중계방송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 7
제1절 재판 중계방송의 개념 ····· 9
Ⅰ. 관련 규정 ····· 9
Ⅱ. 다른 법령의 검토 ····· 10
1. 방송법 ····· 10
2. 저작권법 ····· 11
3. 국회법 ····· 12
Ⅲ. 현행 규정의 문제점 ····· 13
Ⅳ. 개념 정의 ····· 15
제2절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 ····· 16

Ⅰ. 서설 ····· 16
Ⅱ. 공개재판의 원칙 ····· 17
1. 개관 ····· 17
2. 근거 ····· 17
가. 우리나라 헌법상의 근거 ····· 17
나. 각국의 근거 ····· 18
다. 정책적 근거 ····· 20
3. 내용 ····· 21
가. 기본 내용 ····· 21
나. 공개 범위에 따른 공개재판의 원칙의 내용 ····· 21
다. 간접 공개 ····· 22
4. 기능 ····· 22
가. 긍정적 기능 ····· 22
나. 부정적 기능 ····· 23
5. 제한 ····· 24
가. 개관 ····· 24
나. 헌법상 근거 ····· 25
다. 법령상 근거 ····· 30
라. 내재적 사유에 의한 제한 ····· 33
6. 간접공개로서의 재판 중계방송 ····· 36
Ⅲ. 국민의 알 권리 ····· 38
1. 개관 ····· 38
가. 의의 ····· 38
나. 헌법적 근거 ····· 39
다. 구체적 내용 ····· 40
2. 알 권리와 재판 중계방송 ····· 42
가. 사법에 대한 알 권리 ····· 42
나. 재판 중계방송의 포함 여부 ····· 44
3.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따른 제한 ····· 46
Ⅳ. 언론의 자유 ····· 49
1. 사법에 대한 언론의 자유의 내용 ····· 49
가. 표현의 자유 ····· 49
나. 취재의 자유 ····· 50
다. 방송의 자유 ····· 51
2. 사법에 대한 언론의 자유의 구현 ····· 51
가. 국민과 언론의 원칙적 평등 ····· 51
나. 언론에 대한 실질적 편의 제공 ····· 52
제3장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 55

제1절 서설 ····· 57
제2절 각국의 현황 ····· 57
Ⅰ. 미국 ····· 57
1. 개관 ····· 57
2. 연혁 ····· 58
가. Estes v. Texas 사건 ····· 60
나.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사건 ····· 61
다. Chandler v. Florida 사건 ····· 62
3. 주(州)법원 ····· 63
가. 개요 ····· 63
나. 뉴욕주 ····· 66
다. 캘리포니아주 ····· 67
라. 위스콘신주 ····· 70
마. 플로리다주 ····· 73
4. 연방법원 ····· 74
가. 연방지방법원의 시범프로그램 ····· 74
나. 연방대법원 ····· 78
5.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법률안 ····· 80
Ⅱ. 영국 ····· 81
1. 잉글랜드·웨일즈 법원 ····· 81
가. 관련 규정 ····· 81
나. 영국법조협회 보고서 ····· 83
다. 심문절차에 대한 방송 ····· 84
라. DCA 보고서 ····· 85
마. 트위터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 85
바. 법률 개정 및 시범실시 ····· 86
2. 스코틀랜드 법원 ····· 87
가. 개관 ····· 87
나. 재판 중계방송사례 ····· 88
3. 영국 대법원 ····· 89
Ⅲ. 독일 ····· 97
1. 개관 ····· 97
2. 각급 법원 ····· 97
가. 입법연혁 ····· 97
나. 미디어공개 확대에 관한 법률 ····· 102
다. 결정례 ····· 114
3. 연방헌법재판소 ····· 115
가. 관련 규정 ····· 115

나. 재판 중계방송 사례 ····· 124
Ⅳ. 프랑스 ····· 130
1. 개관 ····· 130
2. 기록물법에 의한 재판의 녹음 및 녹화 ····· 131
가. 요건 ····· 131
나. 절차 ····· 132
다. 열람 및 복사 ····· 133
라. 녹음·녹화 사례 ····· 134
3.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 135
가. 형사재판 ····· 135
나. 민사재판 ····· 137
4. 헌법재판의 재판 중계방송 ····· 137
5. 재판 중계방송과 관련된 논의 ····· 140
Ⅴ. 일본 ····· 142
1. 형사소송규칙 ····· 142
2. 법정 내 카메라 취재의 표준적인 운용기준 ····· 142
3. 법정촬영의 현황 ····· 144
Ⅵ. 중국 ····· 145
1. 공개재판의 원칙 ····· 145
2. 재판 중계방송의 도입 및 이에 대한 평가 ····· 146
가. 재판 중계방송의 도입 ····· 147
나.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평가 ····· 147
3. 방송국의 자체적 원칙 ····· 148
가. 제작과정 ····· 149
나. 사건당사자의 동의 여부 ····· 149
다. 대상의 선택 ····· 149
4. 재판 중계방송의 확대 ····· 150
5. 재판의 인터넷 중계방송 현황 ····· 150
가. 중국 재판공개망을 통한 재판 중계방송 ····· 150
나. 실시간 재판 중계방송 플랫폼을 통한 재판 중계방송 ····· 152
Ⅶ. 노르웨이 ····· 153
1. 개관 ····· 153
2. 브레이비크 사건 ····· 154
가. 사실관계 ····· 154
나. 판단 ····· 154
Ⅷ. 남아프리카공화국 ····· 157
1. 개관 ····· 157
2. 피스토리우스 사건 ····· 158

가. 사실관계 ····· 158
나. 판단 ····· 158
Ⅸ. 기타 유럽 국가 ····· 161
제3절 국제재판소 ····· 163
Ⅰ. 국제형사재판소(ICC) ····· 163
1. 개관 ····· 163
2. 재판의 공개 ····· 165
3. 재판 중계방송 ····· 165
가. 근거 및 방식 ····· 165
나. 실제 사례 ····· 168
Ⅱ.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 172
1. 개관 ····· 172
2. 재판의 공개 ····· 173
가. 재판 중계방송 ····· 173
나. 실제 사례 ····· 173
제4절 시사점 ····· 176
Ⅰ.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현황 요약 ····· 176
Ⅱ. 분석 ····· 177
1. 영미법계 국가 ····· 177
2. 대륙법계 국가 ····· 178
3. 기타 ····· 179
제4장 국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검토 ····· 181
제1절 관련 법령 ····· 183
제2절 현황 ····· 185
Ⅰ. 법원 ····· 185
1. 대법원 ····· 185
2. 하급심 ····· 191
가. 공판 개시 전 촬영 ····· 191
나. 판결 선고 중계방송 ····· 196
다. 원격지 법원 재판중계 ····· 198
Ⅱ. 헌법재판소 ····· 198
제3절 재판 중계방송의 필요성 검토 ····· 203
Ⅰ. 재판 중계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 203
1.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의 근거 ····· 203
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 ····· 203
나. 재판당사자의 방어권 및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위협의 우려 ····· 204
다. 공정한 재판진행의 어려움 ····· 205
라. 실체적 진실발견의 어려움 ····· 206

마. 편집으로 인한 왜곡보도의 우려 ····· 207
바.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곤란 초래 ····· 208
사. 모방범죄 양산의 우려 ····· 208
2.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의 근거 ····· 208
가. 사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 209
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 ····· 210
다. 법교육 및 범죄예방효과 ····· 210
Ⅱ. 검토 ····· 211
1. 사회의 변화 ····· 211
2. 해외의 동향 ····· 212
3.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12
가. 미국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12
나. 국내에서의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14
4.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 215
5. 소결 ····· 217
제4절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219
Ⅰ. 검토배경 ····· 219
Ⅱ.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의 검토 ····· 219
1. 현행 규칙의 문제점 ····· 219
2.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따른 허가대상 범위의 확대 ····· 219
3. 개정안 ····· 221
Ⅲ.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규정의 신설 ····· 221
1. 신청에 의한 허가규정 및 직권규정의 준별 ····· 221
2.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요건 ····· 222
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222
나. 역사적 기록물 보존 ····· 223
3.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방식 ····· 223
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 ····· 223
나. 역사적 기록물 보존을 위한 촬영 ····· 224
다. 음성녹음 및 음성방송의 적극 활용 ····· 224
4. 개정안 ····· 225
제5절 재판 중계방송 실시방안 ····· 227
Ⅰ. 재판유형별 검토 ····· 227
Ⅱ. 중계방송방식 ····· 229
1. 생중계방송 ····· 229
2. 녹화중계방송 ····· 229
3. 지연중계방송 ····· 230
4. 검토 ····· 230

Ⅲ. 녹화 및 송출방식 ····· 230
1. 녹화방식 ····· 230
가. 기존 방송사에 영상녹화를 허용하는 방안 ····· 2
나.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 ····· 232
2. 송출방식 ····· 233
가. 기존 방송사를 통한 송출 ····· 233
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송출 ····· 234
다. 자체 방송채널을 통한 송출 ····· 235
라. 검토 ····· 237
Ⅳ.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정착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 237
1. 시범프로그램의 운영 ····· 237
2. 법원방송위원회의 설치 ····· 238
가. 법원방송위원회의 구성 ····· 238
나. 법원방송위원회의 역할 ····· 239
제5장 결론 ····· 241

6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Supreme Court Decisions and Societal Change

총서번호 2017-14

연구책임자 :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강민애(사법정책연구원 사서)

2018년 3월 30일 발행

제1장 들어가는 말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무 사이에서 ····· 11
제1절 개설 ····· 13
제2절 개인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국가의 생명 보존 의무 ····· 13
Ⅰ. 프롤로그 ····· 13
1. 인위적으로 연장된 죽음으로의 변화 ····· 13
2. 존엄사의 개념 정의 ····· 14
3. 의사조력자살의 불법성 ····· 15
4.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의 ····· 16
Ⅱ. 김 할머니 사건 ····· 18
Ⅲ. 판결의 영향 ····· 21
1. 헌법재판소의 결정 ····· 21
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 21
3.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 22
4. 에필로그 ····· 24

제3절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 25
Ⅰ. 프롤로그 ····· 25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우 ····· 26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과 찬반 논의 ····· 26
3. 판례의 변화 ····· 28
Ⅱ.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사건 ····· 30
Ⅲ. 판결의 영향 ····· 31
1. 헌법재판소의 결정 ····· 31
2. 판결이유 부분의 변화 ····· 32
3. 국가기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 ····· 32
가. UN 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 32
나. 대법원의 입장 ····· 33
다. 시민의식의 변화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시도 ····· 34
제3장 전통적 관념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 37
제1절 개설 ····· 39
제2절 처(妻)의 행위능력의 회복 ····· 39
Ⅰ. 프롤로그 ····· 39
1. 처의 법률상 행위능력 ····· 39
2. 일제강점기하 처의 무능력제도 ····· 41
3. 광복 이후 미군정(美軍政)하 민주주의 사조의 확산 ····· 43
Ⅱ. 처의 행위능력 인정 사건 ····· 44
Ⅲ. 판결의 영향 ····· 45
1. 판결에 대한 찬반 논의 ····· 45
2. 후속 대법원 판례의 추이 ····· 47
3. 제정민법에서 처의 무능력조항 배제 ····· 47
제3절 종중구성원과 남녀평등 ····· 49
Ⅰ. 프롤로그 ····· 49
1.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의 폐지 ····· 49
2. 종중의 개념 ····· 51
3. 여성에 대한 종중원 지위 부여에 관한 찬반 논의 ····· 52
Ⅱ.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 사건 ····· 53
Ⅲ. 판결의 영향 ····· 55
1. 대상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 55
2. 후속 대법원 판례의 추이 ····· 57
3. 에필로그 ····· 58
제4절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 59
Ⅰ. 프롤로그 ····· 59
1. 성전환증과 성전환자의 개념 ····· 59

2.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입장 ····· 61
3.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용에 대한 찬반 논의 ····· 62
Ⅱ. 성전환자 호적 정정 사건 ····· 64
Ⅲ. 판결의 영향 ····· 65
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제정 ····· 65
2. 성전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67
3.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인정 ····· 69
4. 에필로그 ····· 70
제5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 71
Ⅰ. 프롤로그 ····· 71
1. 이름의 의미 ····· 71
2. 완화설과 엄격설의 견해 대립 ····· 72
3. 개명신청과 법원의 허가 ····· 73
4. 1995년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절차간소화 실시 ····· 74
Ⅱ. 개명허가의 기준 정립 사건 ····· 75
Ⅲ. 판결의 영향 ····· 77
1. 개명신청과 개명허가율의 증가 ····· 77
2.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의 제정 ····· 79
3. 개명허가의 제한 ····· 80
가. 상당한 이유 심사 ····· 80
나. 남용 심사 ····· 81
제6절 사실혼에 대한 보호 ····· 82
Ⅰ. 프롤로그 ····· 82
1. 혼인의 성립: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 ····· 82
2. 사실혼 보호에 대한 찬반 논의 ····· 84
Ⅱ. 사실혼배우자 위자료 인정 사건 ····· 84
Ⅲ. 판결의 영향 ····· 85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제도의 신설 ····· 85
2. 후속 판례에서의 사실혼의 보호 ····· 86
3. 사실혼 보호에 대한 이론의 전개 ····· 87
4. 에필로그: 입법적 조치의 검토 ····· 88
제7절 부부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 ····· 90
Ⅰ. 프롤로그 ····· 90
1. 형법체계에서 성범죄의 변화 ····· 90
2.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 ····· 91
3. 부부강간죄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 ····· 93
4. 판례의 변화 ····· 94
Ⅱ. 아내강간 인정 사건 ····· 95

Ⅲ. 판결의 영향 ····· 97
1. 세대별 인식의 차이 ····· 97
2. 후속 판례의 추이 ····· 98
3. 부부폭력률의 감소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 98
4. 에필로그: 가정보호와의 조화 필요성 ····· 99
제8절 양자(養子)의 지위 보호 ····· 100
Ⅰ. 프롤로그 ····· 100
1.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역사 ····· 100
2. 입양 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 101
Ⅱ.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인정 사건 ····· 102
Ⅲ. 판결의 영향 ····· 104
1. 후속 대법원 판례의 추이 ····· 104
2. 민법 개정을 통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 106
3. 에필로그: 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운영의 필요성 ····· 106
제4장 경제의 발전과 약자에 대한 구제 ····· 111
제1절 개설 ····· 113
제2절 농지개혁법과 소작농의 보호 ····· 113
Ⅰ. 프롤로그 ····· 113
1. 일제강점기하 토지상황 ····· 113
2. 광복 이후의 상황 ····· 114
3. 농지개혁법의 시행 ····· 114
Ⅱ. 소작금지규정 해석 사건 ····· 115
Ⅲ. 판결의 영향 ····· 117
1. 소작금지판결의 확립 ····· 117
2. 농지개혁의 추이 ····· 117
3.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 ····· 117
제3절 주택임차인 지위의 안정 ····· 118
Ⅰ. 프롤로그 ····· 118
Ⅱ. 주택임차인 지위 보호 사건 ····· 119
Ⅲ. 판결의 영향 ····· 120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120
2. 임차인 보호의 후속 판례 ····· 122
3.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안 검토 ····· 122
제4절 환경오염소송에서 기업의 책임 ····· 124
Ⅰ. 프롤로그 ····· 124
1. 환경법의 발전 ····· 124
2. 환경오염소송과 증명책임 ····· 125
Ⅱ. 김양식장 오염 사건 ····· 127

Ⅲ. 판결의 영향 ····· 128
1. 공해소송에서 증명완화에 관한 법리 확정 ····· 128
2. 인과관계 문제 확정의 한계 ····· 130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30
제5절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 신장 ····· 132
Ⅰ. 프롤로그 ····· 132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132
2.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 133
3.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도 ····· 134
Ⅱ. 여성 전화교환원 사건 ····· 134
Ⅲ. 판결의 영향 ····· 138
1. 후속 대법원 판례의 추이 ····· 138
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 138
3. 에필로그: 간접차별의 문제 ····· 139
제6절 비정규직 계약의 보장 ····· 140
Ⅰ. 프롤로그 ····· 140
1. 노동에 대한 존중 ····· 140
2. 비정규직의 실태 ····· 141
3. 기간제 근로계약의 문제 ····· 142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 143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44
Ⅱ.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사건 ····· 145
Ⅲ. 판결의 영향 ····· 148
1. 노동자성의 인정 ····· 148
2. 기존 판례의 법리와 기간제법의 관계 설정에 관한 판례의 추이 ····· 148
3. 에필로그 ····· 150
제7절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업의 공생 ····· 150
Ⅰ. 프롤로그 ····· 150
1. 유통사업의 규제와 영업시간의 제한 ····· 150
2. 찬반 논의의 대립 ····· 152
3. 해외의 대형마트 규제 현황 ····· 152
Ⅱ. 대형마트 규제 사건 ····· 153
Ⅲ. 판결의 영향 ····· 156
제5장 정치적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성 ····· 159
제1절 개설 ····· 161
제2절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 161
Ⅰ. 프롤로그 ····· 161
1. 악법도 법인가? ····· 161

2. 국가배상법상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 163
3.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제한 ····· 163
Ⅱ. 대법원의 위헌심사 사건 ····· 164
Ⅲ. 판결의 영향 ····· 167
1. 헌법으로 규정된 이중배상금지원칙 ····· 167
2. 후속 판례의 전개 ····· 167
3. 군인재해보상법의 입법예고 ····· 168
4. 에필로그 ····· 169
제3절 위법한 사형선고와 재심무죄판결 ····· 170
Ⅰ. 프롤로그 ····· 170
1. 국가폭력의 개념 ····· 170
2. 인혁당 사건 ····· 171
Ⅱ. 인혁당재건위 사건 ····· 171
Ⅲ. 판결의 영향 ····· 174
1. 위법한 판결에 대한 비판 ····· 174
2. 재심판결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 175
3. 에필로그 ····· 176
제4절 국가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 177
Ⅰ. 프롤로그 ····· 177
1.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으로 인한 피해 ····· 177
2.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지연 ····· 179
3. 정부의 담화 발표 관련 국가손해배상 부정 사건 ····· 180
Ⅱ. 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인정 사건 ····· 181
Ⅲ. 판결의 영향 ····· 183
1. 후속 소의 제기 ····· 183
2. 관련 특별법의 제정 노력과 운용 ····· 184
제6장 인권의 보장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 187
제1절 개설 ····· 189
제2절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해석 ····· 189
Ⅰ. 프롤로그 ····· 189
1.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189
2. 형사소송법의 제정 과정 ····· 191
3.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 192
Ⅱ. 전주대 공사장 인부 고문 사건 ····· 194
Ⅲ. 판결의 영향 ····· 197
1. 후속 판례에 의한 해석의 확립 ····· 197
2. 형사소송절차 일반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제정 ····· 198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신설 ····· 198

제3절 한국판 미란다판결의 등장 ····· 199
Ⅰ. 프롤로그 ····· 199
1. 미란다고지의 유래 ····· 199
2. 우리나라의 피의자권리 고지제도 ····· 201
3. 대법원 판례의 흐름 ····· 202
Ⅱ. 신20세기파 사건 ····· 203
Ⅲ. 판결의 영향 ····· 205
1.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에 관한 후속 판례의 추이 ····· 205
2. 진술거부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정 ····· 206
3. 에필로그: 진술거부권 적용 범위의 확대 ····· 209
제4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 ····· 209
Ⅰ. 프롤로그 ····· 210
1. 위법하게 수집한 비진술증거의 효력 ····· 210
2. 위법수집증거배제 규정의 신설 과정 ····· 210
3.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적용을 위한 학계의 해석론 ····· 211
Ⅱ. 제주도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 213
Ⅲ. 판결의 영향 ····· 215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해석지침의 확립 ····· 215
2. 후속 대법원 판례에 의한 해석의 구체화 ····· 216
제5절 대학교수 재임용제도의 개혁 ····· 218
Ⅰ. 프롤로그 ····· 218
1. 교수 재임용제도 ····· 218
2.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219
3.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 ····· 220
Ⅱ.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 ····· 221
Ⅲ. 판결의 영향 ····· 224
1. 관련 법률의 개정 ····· 224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 225
3. 에필로그: 소청심사의 확대 ····· 226
제6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 227
Ⅰ. 프롤로그 ····· 227
1. 변호사의 법적 지위 ····· 227
2.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 228
3.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금지에 대한 찬반 논의 ····· 230
Ⅱ.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사건 ····· 231
Ⅲ. 판결의 영향 ····· 232
제7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 ····· 234
Ⅰ. 프롤로그 ····· 234

1.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법관법 ····· 234
2. 취업규칙제도 ····· 235
3.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 236
Ⅱ. 대한석탄공사 퇴직금청구 사건 ····· 237
Ⅲ. 판결의 영향 ····· 239
1. 근로기준법의 개정 ····· 239
2. 후속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40
3. 에필로그 ····· 242
제8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 242
Ⅰ. 프롤로그 ····· 243
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 243
2. 보호의 정도에 대한 견해 대립 ····· 243
Ⅱ.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결성 사건 ····· 245
Ⅲ. 판결의 영향 ····· 247
제9절 직장 내 성희롱 ····· 248
Ⅰ. 프롤로그 ····· 248
1. 성희롱의 개념 ····· 248
2. 사회적 인식 ····· 248
3. 성희롱의 실태 ····· 249
Ⅱ.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 ····· 250
Ⅲ. 판결의 영향 ····· 252
1. 법률 및 제도의 변화 ····· 252
가. 성희롱 예방교육 ····· 252
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 253
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 254
2.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 ····· 254
3. 에필로그 ····· 255
제7장 일상생활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 259
제1절 개설 ····· 261
제2절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의 권리 ····· 261
Ⅰ. 프롤로그 ····· 261
1. 음악산업 시장의 변화 ····· 261
2. 음악파일 무료 공유에 대한 찬반 논의 ····· 263
3. 저작권법의 개정 ····· 264
가. 디지털 복제 개념의 도입 ····· 264
나. 전송권 개념의 도입 ····· 264
다.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및 책임 제한 신설 ····· 265
Ⅱ. 소리바다 가처분이의 사건 ····· 265

Ⅲ. 판결의 영향 ····· 268
1. 소리바다 관련 후속 판례의 추이 ····· 268
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 268
나. 형사 사건 ····· 269
2. 새로운 음악 서비스의 시장 진입 ····· 270
3. 저작권 인식의 계기 ····· 271
4.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물 불법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 273
5. 에필로그 ····· 274
제3절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 274
Ⅰ. 프롤로그 ····· 274
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유형 및 효력 ····· 275
2.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 ····· 275
3.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제3자의 원고적격 ····· 276
가. 공설화장장 건설 사건 ····· 277
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건 ····· 278
다. 폐기물처리시설 사건 ····· 278
Ⅱ. 새만금 사건 ····· 279
Ⅲ. 판결의 영향 ····· 281
1. 후속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81
2.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의 전개 ····· 283
3. 에필로그: 국가정책과 사법부의 역할 ····· 284
제4절 행정소송에서 재판대상의 확대 ····· 284
Ⅰ. 프롤로그 ····· 284
1. 행정소송의 대상과 처분 개념 ····· 285
2. 거부처분의 개념 ····· 286
3. 공적장부 등재행위의 행정처분성 ····· 288
가. 가옥대장의 등재행위 ····· 288
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 ····· 289
다. 지적공부 등재행위 ····· 289
4. 헌법재판소의 공적 장부 등재행위에 대한 판단 ····· 290
Ⅱ.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 사건 ····· 291
Ⅲ. 판결의 영향 ····· 295
1. 후속 판례의 발전 ····· 295
2.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의 확대 ····· 295
제5절 납세자의 신뢰 보호 ····· 296
Ⅰ. 프롤로그 ····· 296
1. 법치주의 원리와 신뢰보호 원칙 ····· 296
2. 조세행정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298

Ⅱ. 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 299
Ⅲ. 판결의 영향 ····· 301
1. 후속 판례에 의한 신뢰보호의 구체화 ····· 301
2.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 302
제8장 맺음말 ····· 305

6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The Role of Courts on Development and Growth of Arbitration

연구총서 2017-15

연구책임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선(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윤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4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제2장 중재제도 개관 ····· 7
제1절 중재의 의의 ····· 9
제2절 중재제도의 장·단점 ····· 9
Ⅰ. 개관 ····· 9
Ⅱ. 중재의 장점 ····· 10
1. 유연성 ····· 10
2. 전문성 ····· 10
3. 비밀성 ····· 10
4. 중립성 ····· 11

5. 승인 및 집행의 용이성 ····· 11
Ⅲ. 중재의 단점 ····· 12
1. 불확실성 ····· 12
2. 진실발견의 어려움 ····· 12
3. 다수당사자간 분쟁의 취약 ····· 12
4. 국내중재에서의 집행가능성의 문제 ····· 13
제3장 외국의 중재제도 ····· 15
제1절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 17
Ⅰ. 개관 ····· 17
Ⅱ. UNCITRAL 모델중재법 ····· 18
1. 중재절차 개시 단계 ····· 18
가. 중재합의 ····· 18
나.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 20
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 ····· 22
2. 중재절차 진행 단계 ····· 23
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 ····· 23
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26
3. 중재절차 종료 이후 단계 ····· 27
가.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 27
나. 중재판정의 취소 ····· 27
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28
제2절 싱가포르 ····· 30
Ⅰ. 개관 ····· 30
Ⅱ. 싱가포르의 중재관련 법령 ····· 31
1. 중재절차 개시 단계 ····· 31
가. 중재합의 ····· 31
나.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 33
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 ····· 33
2. 중재절차 진행 단계 ····· 35
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 ····· 35
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37
3. 중재절차 종료 이후 단계 ····· 37
가.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 37
나. 중재판정의 취소 ····· 38
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38
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거부사유 ····· 39
Ⅲ. 중재기관 -SIAC ····· 40
1. 조직 ····· 40

2. 현황 ····· 42
가. 전체 ····· 42
나. 신속중재절차와 긴급중재 ····· 43
3. SIAC 중재규칙 ····· 43
가. 2010년 개정 ····· 43
나. 2013년 개정 ····· 45
Ⅳ.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 47
1. 지리적·문화적 배경 ····· 47
2. 법제도 ····· 48
3. 중재법제의 운용 ····· 49
4. 중재절차 ····· 50
5. 법원의 중재 친화적 태도 ····· 51
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 52
1. 설립 ····· 52
2. SICC 취급사건 ····· 54
3. SICC의 특징 ····· 54
4. SICC에서의 절차 ····· 55
가. 재판부의 구성 ····· 55
나. 심리절차 ····· 56
다. 불복절차 ····· 58
라. 소송비용 ····· 58
마. 강제집행 ····· 58
5. 국제상사법원의 중재에 관한 역할 ····· 59
제3절 영국 ····· 60
Ⅰ. 개관 ····· 60
Ⅱ. 영국의 중재관련 법령 ····· 61
1.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 61
2. 중재합의 ····· 62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권한 ····· 62
4. 절차의 진행 ····· 63
가. 절차의 개시 ····· 63
나. 절차진행의 기본원칙 ····· 63
다. 심리·증거조사 ····· 64
라. 중재판정과 절차의 종결 ····· 64
마.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65
Ⅲ. 중재기관 -LCIA ····· 65
1. 개관 ····· 65
2. 중재인 ····· 66

3. 중재절차의 특성 ····· 67
4. 중재비용 ····· 67
5. 현황 ····· 68
제4절 프랑스 ····· 68
Ⅰ. 개관 ····· 68
Ⅱ. 프랑스의 중재관련 법령 ····· 70
1.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 70
2. 중재합의 ····· 70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권한 ····· 70
4. 임시적 처분 ····· 71
5. 절차의 진행 ····· 71
가. 절차진행의 기본원칙 ····· 71
나. 심리·증거조사 ····· 72
다. 중재판정과 절차의 종결 ····· 72
라. 중재판정의 불복 ····· 73
마.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73
Ⅲ. 중재기관 -ICC ICA ····· 74
1. 개관 ····· 74
2. ICC 중재조직의 구성과 역할 ····· 75
가. ICC 법원 ····· 75
나. 사무국 ····· 75
Ⅳ. 지원판사 제도 ····· 77
1. 지원판사의 임무 ····· 77
2. 지원판사 제도의 도입이 중재절차에 미친 영향 ····· 79
3. 지원판사에 대한 중재 전문성의 확보 ····· 80
4. 지원판사의 권한 ····· 80
제5절 미국 ····· 80
Ⅰ. 개관 ····· 80
Ⅱ. 미국의 중재관련 법령 ····· 81
1. 미국 연방중재법의 구조 ····· 81
가. 개관 ····· 82
나. 연방중재법 제2장의 적용 ····· 82
다. 연방중재법 제3장의 적용 ····· 84
2. 국제상사중재절차의 진행과 법원의 역할 ····· 84
가. 초안 작성 단계 ····· 84
나. 중재절차 개시 전 단계 또는 개시 단계 ····· 84
다. 중재절차 진행 단계 ····· 85
라. 중재절차 종료 이후 단계 ····· 86

Ⅲ. 중재기관 -AAA/ICDR ····· 86
1. 개관 ····· 86
2. 임무와 원칙 ····· 88
3. AAA/ICDR에서의 중재절차 ····· 89
가. 중재신청접수단계 ····· 89
나. 중재인의 선정 단계 ····· 90
다. 사전심리 단계 ····· 91
라.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단계 ····· 92
마. 심리단계 ····· 93
바. 심리후 서류제출 ····· 94
사. 판정 ····· 95
제6절 홍콩 ····· 96
Ⅰ. 개관 ····· 96
Ⅱ. 홍콩의 중재관련 법령 ····· 96
1.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 97
2. 중재합의 ····· 97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권한 ····· 98
4. 임시적 처분 ····· 98
5. 절차의 진행 ····· 99
가. 절차의 개시·절차진행의 기본원칙 ····· 99
나. 심리·증거조사 ····· 99
다. 중재판정과 절차의 종결 ····· 101
라.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 101
마.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102
Ⅲ. 중재기관 -HKIAC ····· 102
1. 개관 ····· 102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103
3. 현황 ····· 103
Ⅳ.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 104
1. 지리적·문화적 배경 ····· 104
2. 중재전문 인력 양성 ····· 105
가. 홍콩중재사학회(HKIArb)를 통한 양성 ····· 105
나. 대학을 통한 양성 ····· 106
다. HK45제도를 통한 양성 ····· 106
라. 홍콩에서의 중재에 대한 홍보 ····· 107
마. 홍콩 정부의 중재 지원 ····· 107
바. 민간부문에서의 중재 지원 ····· 109
제7절 일본 ····· 109

Ⅰ. 개관 ····· 109
Ⅱ. 일본의 중재관련 법령 ····· 110
1. 중재법 제정 이전 ····· 110
2. 중재법 제정 이후 ····· 111
Ⅲ. 일본 중재제도의 현황 ····· 113
1. 들어가는 말 ····· 113
2. 중재제도와 관련한 통계 ····· 114
가. 개관 ····· 114
나. 중재기관에 대한 신규 신청 건수 ····· 114
다. JCAA에서 일본 기업 등이 일방 당사자가 된 중재건수 ····· 115
라. 일본이 중재지인 ICC 중재건수 ····· 116
3. 중재절차의 현황 ····· 117
4. 중재 관련 재판과 관련한 현황 ····· 118
가. 중재 취소 재판과 관련한 판례와 이에 대한 평가 ····· 118
나. 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절차 ····· 119
Ⅳ. 중재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 120
1. 일본의 전통적 문화 ····· 120
2. 재판소에 의한 조정의 활용 ····· 120
3. 중재법의 공포·시행 이후의 문제점 ····· 120
4. 외변법 개정 전의 문제점 ····· 122
5. 중재 인프라의 부족 ····· 122
6. 기타 ····· 122
Ⅴ. 중재제도 개선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 ····· 123
1. JCAA의 정책 ····· 123
2. 중재인 연수제도 등 ····· 123
3. 중재법 연구 학회 설립 및 법과대학원 내 중재법 관련 과목 신설 ····· 123
Ⅵ. 일본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한 논의 ····· 124
1. 들어가는 말 ····· 124
2. 각 연구회 등에서 공표한 개선방안 ····· 124
가. JCAA의 국제중재시스템고도화연구회의 분석 ····· 124
나. 국제중재대리연구회의 분석 ····· 125
다. JCAA의 실태조사 ····· 126
3. 학자 또는 실무가들이 주장하는 개선방안 ····· 126
가. JCAA의 재정 기반 강화 및 국제중재센터의 신설 등 ····· 126
나. 유능한 중재인의 양성 ····· 127
다. 국제계약서의 중재조항에 일본의 중재를 규정하는 실무 확산의 필요성 ····· 127
라. 중재서비스의 질의 향상 ····· 128
마. 법제면에서의 개선 ····· 128

바. 중재인 리스트와 관련한 정보 등의 공개 등 ····· 129
사. 중재협회의 조직 개편을 통한 노력 ····· 129
아. 재판소의 중재 친화적인 제도 신설 ····· 129
자. 감독관청의 특정 ····· 129
차. 로스쿨 등에서 중재 관련 커리큘럼의 구성 ····· 130
카. JCAA 등 중재제도의 홍보 ····· 130
제8절 중국 ····· 130
Ⅰ. 개관 ····· 130
Ⅱ. 중국의 중재관련 법령 ····· 131
1. 중재관련법령 개관 ····· 131
가. 중재법 ····· 131
나. 민사소송법 ····· 132
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 132
2. 중재관련법령 내용 ····· 133
가.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 133
나. 중재합의 ····· 133
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권한 ····· 133
라. 임시적 처분 ····· 134
마. 절차의 진행 ····· 134
Ⅲ. 중재기관 -CIETAC ····· 137
1. 개설 ····· 137
2. 연혁 및 조직 ····· 138
3. 인적 구성 ····· 138
4. CIETAC 중재규칙 ····· 139
5. 현황 ····· 139
Ⅳ.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 141
1. 외국인의 중재관련 활동 ····· 141
2.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 141
3. 중재에 대한 홍보 ····· 142
4. 중국 정부의 중재 지원 ····· 142
가. 중재산업 지원 법제 ····· 142
나. 중국 행정기관의 지원 ····· 142
다. 사법부의 지원 ····· 143
제9절 정리 및 시사점 ····· 144
제4장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 147
제1절 개관 ····· 149
제2절 중재제도 관련 법령 ····· 150
Ⅰ. 중재법 ····· 150

1. 중재법 일반 ····· 150
2. 개정 중재법의 내용 및 그 평가 ····· 151
가. 중재적격(중재가능성) ····· 151
나. 중재합의 ····· 151
다.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 153
라.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 ····· 156
마.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 158
바.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160
사. 중재판정 ····· 161
아.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 163
자. 중재판정의 취소 ····· 164
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165
카.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 167
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68
1. 개관 ····· 168
2. 주요 내용 및 평가 ····· 169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 169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 169
다.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 170
라.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 170
마. 재정지원 ····· 171
바. 자율적 운영의 보장 ····· 171
제3절 중재기관 ····· 171
Ⅰ. 대한상사중재원 ····· 171
1. 개관 ····· 171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 172
가. 주요 내용 ····· 173
나. 2016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 178
Ⅱ. 서울국제중재센터 ····· 183
제5장 중재 현황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185
제1절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중재유치 현황 ····· 187
제2절 영국 Queen Mary 대학교의 2015년 국제중재 관련 설문 ····· 189
Ⅰ. 개관 ····· 189
Ⅱ. 중재 선호도 및 중재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결과 ····· 190
1. 중재 선호도에 대한 설문결과 ····· 190
2. 중재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결과 ····· 190
Ⅲ. 중재지 혹은 중재기관의 선호도 ····· 192
1. 중재지에 대한 선호도 ····· 192

2. 중재기관에 대한 선호도 ····· 195
Ⅳ. 중재절차와 관련한 개선사항 ····· 199
1. 개관 ····· 199
2. 소액사건에 대한 신속중재절차 도입 ····· 200
3. 긴급중재 ····· 201
제3절 World Bank Group의 해외 투자 보고서(Investing Across Borders) ····· 203
Ⅰ. 2010년 보고서 ····· 203
Ⅱ. 2012년 보고서 ····· 208
1. AMD 지표 ····· 208
2. 중재절차 및 강제집행에 소요된 기간 ····· 211
제4절 정리 및 시사점 ····· 213
제6장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215
제1절 개관 ····· 217
제2절 전문성 강화 ····· 218
Ⅰ. 법관의 전문화 ····· 218
Ⅱ. 법원의 전문화 ····· 219
1. 개관 ····· 219
2. 현황 ····· 220
3. 외국의 경우 ····· 222
4. 시사점 ····· 223
5. 개선방안 ····· 223
가. 중재전담법관의 임명 ····· 223
나. 중재전문재판부의 설치 ····· 224
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 ····· 224
6. 기대효과 ····· 225
제3절 중재 친화적인 사법부의 태도 ····· 226
Ⅰ. 홍보를 통한 국제적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226
1. 개관 ····· 226
2. 홍보기관의 마련 ····· 227
3. 법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 229
4. 영문 웹페이지 구축 ····· 230
Ⅱ. 법원 사용언어의 다양화 및 인적·물적 시설의 구축 ····· 230
Ⅲ.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태도 ····· 232
1. 법원의 중재절차 개입 자제 ····· 232
2. 법원의 중재합의 유효성 긍정 ····· 233
3. 중재판정에 대한 신속하고 긍정적 집행 ····· 235
가. 문제점 ····· 235
나. 해결방안 ····· 236

제7장 결론 ····· 239

64.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Senior Judge Program

연구총서 2018-01

연구책임자 : 모성준(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최유나(前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8년 11월 2일 발행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Ⅰ.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 3
1.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3
2. 법조일원화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4
Ⅱ.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 5
1. 외국의 사례 ····· 5
2.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논의 ····· 6
3. 연구의 필요성 ····· 7
제2절 연구의 방법 ····· 8
Ⅰ. 선행 연구의 한계 ····· 8
1.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부재 ····· 8
2. 법관의 중도퇴직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 9
3. 원로법관의 바람직한 근무형태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부재 ····· 10
Ⅱ. 연구의 개요 및 방법 ····· 11
1. 연구의 개요 ····· 11
2. 구체적인 연구 방법 ····· 12
제2장 평생법관제와 시니어판사의 인력활용 ····· 15

제1절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 17
Ⅰ.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17
1. 법조일원화 개관 ····· 17
2.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논의의 경과 ····· 18
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0년) ····· 18
나. 21세기 변호사위원회(2002년) ····· 19
다. 사법개혁위원회(2004년) ····· 19
3.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21
가.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임용제도 ····· 21
나.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22
Ⅱ. 현행 법조일원화 시행방안의 한계 ····· 23
1. 법조일원화 논의의 근본적 한계 ····· 23
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 24
나. 법관의 연소 및 경험부족 문제 해결 ····· 24
다. 중도사직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 해소 ····· 25
라. 법조일원화의 주된 목적 ····· 28
2. 평생법관제 관련 논의 ····· 30
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관계 ····· 30
나. 평생법관제의 논의배경 ····· 31
다. 평생법관제 도입 논의의 한계 ····· 32
라.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32
3.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성공의 전제조건 ····· 34
가. 2000년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34
나. 2002년 발간 “법조제도개혁 연구보고서” ····· 35
다. 2004년 발간 “사법개혁위원회 보고서” ····· 35
라. 법조일원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35
Ⅲ. 법조일원화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 36
1. 법관 부족 문제 ····· 36
가. 신규 법관임용후보군의 공급부족 ····· 36
나. 법조경력자 선발과정의 어려움 ····· 38
다. 기존 법관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법관 부족 ····· 40
라. 법관선발의 기준 문제 ····· 42
2. 우수한 법조인에 대한 유인방안 마련의 필요성 ····· 43
가. 우수한 법조경력자의 법관직 지원에 대한 유인방안 ····· 43
나. 전제조건의 성취 없는 법조일원화의 문제점 ····· 45
3. 법관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문제 ····· 46
가. 법관퇴직 경향의 변화와 법관연령의 고령화 ····· 46
나. 시니어판사의 인력활용문제 ····· 47

Ⅳ. 시니어판사 제도의 필요성 ····· 49
1. 법관 부족현상에 대한 대응 ····· 49
2. 법관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합리적 업무분배의 필요성 ····· 51
3. 우수한 법조인에 대한 유인방안 ····· 51
4. 과밀학급 해소정책 사례의 교훈 ····· 52
제2절 전관예우 논란과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논의 ····· 55
Ⅰ. 전관예우 논란과 그에 대한 대책 ····· 55
1. 과거 법관의 라이프 사이클 ····· 55
가. 과거 법관임용 방식 ····· 55
나. 과거 법관의 라이프 사이클 ····· 56
2. 전관예우 논란 ····· 57
3.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대책 ····· 59
가. 개관 ····· 59
나. 각종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 60
4. 기존의 전관예우 대책의 실효성 ····· 65
가. 기존의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평가 ····· 65
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 65
다.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의 개선 가능성 ····· 66
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적인 대책 제안 ····· 67
마. 전관예우금지 헌법개정안 제안 ····· 68
바. 기타 주장 ····· 69
5.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평가 ····· 70
가.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 70
나. 재판의 독립과의 관련성 ····· 71
Ⅱ.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 73
1. 법관 독립의 원칙 ····· 73
가. 법관 독립의 원칙의 기원 ····· 73
나. 법관 독립의 원칙의 발전 ····· 74
2. 법관 독립의 요소 ····· 75
가. 법관 독립의 핵심 요소 ····· 75
나. 우리나라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및 처우의 정도 ····· 75
3. 법관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의 최소화 방안 ····· 78
가. 다른 국가의 경우와의 차이점 ····· 78
나. 제도개선의 방향 ····· 78
4. 시니어판사 제도 ····· 83
제3장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85
제1절 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개관 ····· 87
Ⅰ. 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개관 ····· 87

1. 영미법계 국가들의 시니어판사 제도 ····· 87
2. 대륙법계 국가들의 시니어판사 제도 ····· 87
Ⅱ. 시니어판사 제도의 전제조건 ····· 88
1. 시니어판사 제도(또는 시간제 판사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 ····· 88
2. 우리나라 법관제도와의 차이점 ····· 88
제2절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 89
Ⅰ. 서론 ····· 89
Ⅱ. 미국연방법원의 법관제도 개관 ····· 90
1. 미국의 사법제도 ····· 90
가. 미국의 법원체계 개관 ····· 90
나. 연방법원의 구성 ····· 91
다. 주 법원의 구성 ····· 94
2. 연방법원 판사제도 ····· 96
가. 연방법원 판사제도 개관 ····· 96
나. 미국 연방법원의 판사 ····· 96
다. 연방법원 판사의 보수 ····· 98
라. 연방법원 판사의 퇴직 ····· 102
마. 퇴직 연방대법관 및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퇴직 후의 취업 제한 ····· 108
Ⅲ. 미국연방법원의 시니어판사 제도 ····· 110
1. 시니어판사 제도의 연혁 및 근거규정 ····· 110
가. 시니어판사의 연혁 및 역사 ····· 110
나. 시니어판사 제도의 헌법상 문제 ····· 115
다. 시니어판사 제도의 정착 ····· 121
2. 시니어판사의 요건 ····· 121
가. 연방법원 판사의 퇴직체계의 구조 ····· 121
나. 시니어판사의 지위 ····· 122
다. 시니어판사가 되기 위한 요건 ····· 123
라. 시니어판사 지원 절차 ····· 128
3. 시니어판사에 대한 처우 및 시니어판사 지위 유지 요건 ····· 130
가. 시니어판사에 대한 처우 ····· 130
나. 시니어판사 지위의 유지를 위한 요건 ····· 134
다. 처우에 대한 평가 ····· 137
4. 시니어판사 제도의 운영현황 ····· 138
가. 시니어판사의 재직 현황 ····· 138
나. 시니어판사의 직무수행 현황 ····· 146
다. 시니어판사 지원동기 ····· 153
라. 시니어판사들의 불만 ····· 155
마. 시니어판사들의 업무현황(제3연방항소법원의 경우) ····· 155

5. 시니어판사 제도의 긍정적 효과 ····· 158
가. 시니어판사 개인에 대한 긍정적 요소 ····· 158
나. 연방법원에 대한 긍정적 요소 ····· 159
6.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한 비판 ····· 160
가.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의 ····· 160
나. 시니어판사의 고령화에 대한 논의 ····· 162
7. 시니어판사 제도의 확대 적용 ····· 163
가. 임기제 연방법원 판사들에 대한 리콜(Recall) 제도 ····· 163
나. 리콜(Recall) 제도의 요건 ····· 164
다. 시니어판사 제도와의 차이 ····· 165
라. 운영현황 ····· 165
Ⅳ. 미국 주(州)법원 시니어판사 제도 ····· 166
1. 미국 주법원 판사제도 개관 ····· 166
가. 주법원 판사제도의 분류 ····· 166
나. 자격 및 임기 ····· 167
다. 보수 및 승진 ····· 168
라. 법관의 퇴직 ····· 168
마. 각 주의 시니어판사 제도 ····· 169
바. 각 주별 시니어판사 현황 ····· 174
2. 캘리포니아 주의 지명판사 프로그램(Assigned Judge Program) ····· 177
가. 지명판사 프로그램 개관 ····· 177
나. 지명판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 177
다. 지명판사 프로그램의 성과 ····· 181
3. 뉴욕 주의 Judicial Hearing Officer 제도 ····· 181
가. 뉴욕 주 판사의 정년제도 ····· 181
나. 뉴욕 주의 JHO 제도 ····· 182
4. 인디애나 주 ····· 185
가. 인디애나 주 시니어판사 제도 개관 ····· 186
나. 시니어판사 지원자격 ····· 186
다. 시니어판사 자격요건 ····· 186
라. 시니어판사의 임명 ····· 187
마. 시니어판사에 대한 자격인정 등 ····· 188
바. 보수와 처우 ····· 189
5. 조지아 주 ····· 191
가. 조지아 주 치안판사 제도의 개관 ····· 191
나. 시니어 치안판사 제도 ····· 192
6. 기타 ····· 193
Ⅴ. 소결 ····· 193

제3절 캐나다의 시니어판사 제도 ····· 194
Ⅰ. 캐나다 연방 판사제도 개관 ····· 194
1. 캐나다 사법제도 일반 ····· 194
2. 캐나다의 연방 법관인사제도 ····· 195
가. 법관의 구성 ····· 195
나. 법관의 급여 ····· 196
다. 법관의 정년 및 퇴직 ····· 196
라. 법관에 대한 연금 ····· 197
마. 정원외 판사 제도 ····· 199
3. 법관에 대한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논의 ····· 200
가. 법관의 보수 ····· 200
나. 법관의 연금에 대한 논의: 법관연금의 가치 ····· 204
다. 정원외 판사에 대한 논의 ····· 205
Ⅱ.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시간제 정원외 법관제도 ····· 207
1. 개관 ····· 207
2. 시간제 근무 요건 ····· 208
3. 절차 ····· 208
가. 면담 ····· 209
나. 일정 조정 ····· 209
다. 시니어판사의 임명 ····· 209
4. 시간제 근무 선택의 효과 ····· 210
가. 권한과 자격 ····· 210
나. 제한 ····· 210
5. 시간제 판사에 대한 처우 ····· 212
가. 급여 및 처우 ····· 212
나. 연금 ····· 212
제4절 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 213
Ⅰ. 영국의 법관제도 개관 ····· 213
1. 법관제도의 개요 ····· 213
가. 영국의 법관제도 ····· 213
나. 영국 법관의 종류 ····· 213
2. 법관의 임용절차 ····· 216
가. 일반법관 임용절차의 변천 ····· 216
나.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 218
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추천 후보자 선정 절차 ····· 219
라. 법관별 선발 방식 ····· 220
3. 법관의 보수 ····· 221
Ⅱ. 법관의 퇴직과 퇴직법관의 활용 ····· 226

1. 법관의 정년 및 연금제도 ····· 226
가. 법관의 정년 규정 ····· 226
나. 퇴직 법관의 실제 활용 ····· 228
다. 법관의 퇴직과 법관에 대한 연금 ····· 228
라. 법관퇴직 및 연금개시 유형 ····· 230
2. 법관퇴직 후 변호사 개업 관련 문제 ····· 232
Ⅲ. 영국 대법원의 보충 재판부 제도 ····· 232
1. 보충 재판부 제도의 근거 ····· 232
가. 대법원 보충재판부 제도 ····· 232
나. 대법관 직무대리(Acting judges)(헌법개혁법 38, 39절) ····· 233
2. 보충 재판부 제도의 운영현황 ····· 233
제5절 싱가포르의 시니어판사 제도 ····· 234
Ⅰ. 싱가포르 법관제도 개관 ····· 234
1.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 234
가. 싱가포르 법원의 구조 ····· 234
나. 대법원의 구성 ····· 234
다. 하급법원의 구성 ····· 236
2. 싱가포르 법관제도 ····· 236
가. 대법원의 상고법원 판사 등 ····· 236
나.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238
Ⅱ. 시니어판사 제도 ····· 239
1. 시니어판사 제도의 근거 ····· 239
2. 시니어판사 제도의 운영현황 ····· 240
제6절 홍콩의 임시직 판사 제도 ····· 242
Ⅰ. 홍콩 법관제도 개관 ····· 242
1. 홍콩의 사법제도 개관 ····· 242
가. 특별행정구 사법제도의 특징 ····· 242
나. 특별행정구 사법제도의 기본원칙 ····· 243
다. 특별행정구의 법원과 법관제도 ····· 246
2. 홍콩의 법관제도 ····· 251
가. 법관독립의 원칙 ····· 251
나. 법관의 자격요건과 임면 ····· 253
다. 법원장의 자격과 임면 ····· 254
라. 각급 법원의 구성 ····· 255
마. 법관의 개업제한 ····· 260
Ⅱ. 임시직 판사 제도 ····· 261
1. 홍콩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과 정년연장 ····· 261
가. 의의 ····· 261

나. 법관의 정년 ····· 262
다. 법관에 대한 급여 ····· 262
2. 지속적인 법관 부족 현상 ····· 265
가. 우수한 법관임용의 어려움 ····· 265
나. 법관 부족으로 인한 문제 ····· 267
3. 임시직 법관의 활용현황 ····· 269
가. 임시직 법관의 현황 ····· 269
나. 종심법원의 비상임법관 활용 ····· 270
다. 고등법원 원송법정 및 하급법원의 임시직 법관활용 ····· 270
4. 임시직 법관 관련 문제 ····· 272
5. 재판의 독립 관련 문제 ····· 273
6.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274
제7절 대만의 법관우대제도 ····· 275
Ⅰ. 대만 법관제도의 개관 ····· 275
1. 대만의 사법제도 ····· 275
2. 대만의 법관제도 ····· 276
가. 종신직 법관제도와 법관우대제도 ····· 276
나. 종신직 법관의 해석과 관련된 논란 ····· 276
Ⅱ. 대만의 법조일원화 제도 ····· 278
1.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278
2. 법조일원화 제도의 내용 ····· 278
가. 법관인사제도의 법률적 근거 ····· 278
나. 사법관 선발의 다원화 ····· 279
다. 판사와 검사의 상호전환 ····· 280
라. 판·검사의 변호사로의 전임 ····· 280
Ⅲ. 대만의 법관우대제도 ····· 281
1. 법관우대제도의 연혁 ····· 281
2. 법관법상 법관우대제도의 도입 ····· 282
가. 법관법 제77조 ····· 282
나. 「사법인원인사조례」와의 차이점 ····· 283
3. 법관우대제도의 활용 ····· 284
4. 검토 ····· 285
제8절 독일 법관의 시간제 근무제도 ····· 286
Ⅰ. 법관의 시간제 근무제도 개관 ····· 286
1. 의의 ····· 286
2. 법적 근거 ····· 287
3. 시간제 근무 제도의 특징 ····· 287
Ⅱ. 시간제 근무제도의 유형 ····· 288

1. 의의 ····· 288
2. 고령으로 인한 시간제근무 ····· 288
가. 연방 판사(상급법원 판사) ····· 289
나. 주(州) 판사(하급법원 판사) ····· 289
Ⅲ. 시간제 근무제도의 운영현황 ····· 292
1. 독일의 판사 수 ····· 292
2. 시간제근무 판·검사의 수·비율 ····· 293
3. 시간제 근무 판사 및 검사의 변화추이 ····· 294
4. 바이에른 주의 판사 직급별 시간제근무 비율 ····· 296
Ⅳ. 관련 문제 ····· 298
1. 보수 및 처우의 원칙 ····· 298
2. 고령으로 인한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보수가산 ····· 299
3. 호봉 산정 ····· 299
4. 복무관리(겸업 제한) ····· 300
가. 시간제근무 판사의 겸업과 관련된 우려 ····· 300
나. 시간제근무 판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 ····· 300
5. 대체인력 확보 방안 ····· 301
가. 시간제근무자 비율 상승에 따른 실질적 인력 감소 효과 ····· 301
나. 인력 충원 현황 ····· 302
다. 합의재판부 운영 방식 변경에 의한 인력 충원 ····· 303
6. 시간제근무 판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304
가. 종일근무 판사와의 다른 처우 금지 ····· 304
나. 다른 처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305
7. 근무 평정 ····· 305
가. 독일의 법관 평정 ····· 306
나. 시간제근무 판사에 대한 근무 평정 ····· 306
8. 시간제 법관에 대한 전보의 요건과 한계 ····· 306
가. 법관 전보의 어려움 ····· 306
나. 같은 법원 조직 내에서의 다른 법원 근무에 대한 동의 ····· 307
9. 시간제근무 판사의 근무 방식 ····· 308
가. 근무방식 일반 ····· 308
나. 합의재판부 운영 ····· 309
Ⅴ. 시사점 ····· 310
제9절 네덜란드의 시간제 법관 제도 ····· 311
Ⅰ. 네덜란드의 사법제도 ····· 311
1. 의의 ····· 311
2. 법원 조직 개관 ····· 311
가. 지방법원(Rechtbanken) ····· 311

나. 고등법원(Gerechtshoven) ····· 311
다. 대법원(Hoge Raad der Netherlanden) ····· 312
라. 특별행정법원 ····· 312
3. 법관 제도 개관 ····· 312
가. 법관임용자격 ····· 312
나. 법관임용절차 ····· 313
Ⅱ. 법관 정년과 보수 및 연금 ····· 313
1. 정년 및 신분보장 ····· 313
2. 보수 ····· 313
가. 초임법관 보수 ····· 313
나. 대법관 보수 ····· 314
3. 연금 및 퇴직수당 ····· 314
Ⅲ. 대체법관과 시간제 법관 ····· 314
1. 대체법관(rechter-plaatsvervanger) ····· 314
2. 시간제 법관 ····· 315
제10절 스페인 법관의 정년연장제도 ····· 316
Ⅰ. 스페인의 사법제도 ····· 316
1. 연혁 및 개관 ····· 316
2. 스페인 법원의 종류 ····· 317
가. 일반 법원 ····· 317
나. 헌법재판소 ····· 318
Ⅱ. 스페인의 법관 제도 ····· 318
1. 법관의 임용절차 ····· 318
2. 법관인사 및 처우 ····· 318
Ⅲ. 스페인의 판사 정년 및 연금 제도 ····· 319
1. 법관의 정년연장 ····· 319
2. 대법관의 퇴직과 연금 수급 ····· 320
가. 연금 수급 현황 ····· 320
나. 연금 수급과 의무 부담 ····· 320
Ⅳ. 시사점 ····· 320
제11절 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 ····· 321
Ⅰ. 법관의 인사제도 ····· 321
1.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 321
가. 임명자격 및 방법 ····· 321
나. 임기 및 정년 ····· 322
2. 하급재판소 재판관 ····· 322
가. 임명방법 ····· 322
나. 임기 및 정년 ····· 323

3. 퇴직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취업금지 ····· 323
4. 퇴직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예우 ····· 324
가. 개요 ····· 324
나. 예우 ····· 324
다. 의무 ····· 329
Ⅱ.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 ····· 329
1. 간이재판소 개관 ····· 329
2. 간이재판소 판사 ····· 330
가. 의의 및 종류 ····· 330
나. 임명자격 ····· 331
다. 간이재판소 판사의 현황 ····· 333
라. 간이재판소 판사의 지위 ····· 334
3. 간이재판소 판사로 임명되는 재판소 서기관 ····· 336
4. 퇴직판사의 간이재판소 근무 현황 ····· 337
제4장 시니어판사 도입가능성 검토 ····· 341
제1절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의 검토 ····· 343
Ⅰ. 각국 시니어판사 제도의 개요와 시사점 ····· 343
1.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의 요지 ····· 343
2. 시니어판사 제도 또는 유사 제도의 활용현황 ····· 346
3. 시니어판사 제도의 목적 ····· 346
4. 시니어판사의 지원 자격 ····· 347
5. 시니어판사의 근무형태 ····· 347
6. 시니어판사 제도의 효과 ····· 349
Ⅱ. 시니어판사 제도의 착안점 ····· 349
1. 법관 부족현상에 대한 대응수단 ····· 349
2. 재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 ····· 350
3.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의 전제 ····· 351
Ⅲ. 법조일원화와 시니어판사 제도 ····· 352
1. 법조일원화 내지 평생법관제 성공요인 ····· 353
가. 보수수준과 연금수급권 ····· 353
나. 법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 354
다. 고령의 법관을 위한 변형근무제 ····· 354
라. 법관의 다양화와 법관업무의 집중 ····· 355
마. 항소심의 구조와 판결작성업무 ····· 355
2. 우수한 법관자원의 유치방안 ····· 356
가. 법관처우의 개선 ····· 356
나. 법관에 대한 지원인력의 확충 ····· 358
다. 고령의 법관을 위한 변형 근무제 ····· 358

3.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 ····· 360
Ⅳ.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 ····· 360
1. 우리나라의 제도적 한계 ····· 360
2. 법관 독립의 문제 ····· 361
제2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검토 ····· 364
Ⅰ.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의 원칙 ····· 364
1.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 ····· 364
가. 법조일원화로 인한 획기적인 변화 ····· 364
나.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목적 관련 논의 ····· 365
2. 시니어판사 제도고안 시 고려사항 ····· 370
가. 시니어판사 제도를 위한 토양의 미비 ····· 370
나. 시니어판사 제도의 장점의 극대화 ····· 372
다.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시의 착안점 ····· 373
라. 시니어판사 제도의 위험성 ····· 374
3. 주요 쟁점별 검토 ····· 374
가. 시니어판사 제도 검토과정의 기본적 고려사항 ····· 374
나. 시니어판사의 기본 구조 ····· 377
다. 시니어판사의 업무분담 등 ····· 381
라.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 ····· 382
마. 시니어판사의 업무능력과 성공가능성 ····· 385
Ⅱ.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방안 ····· 386
1. [제1안] 시니어판사 제도(새로운 형태의 판사직 창설) ····· 386
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 386
나. 시니어판사의 요건 ····· 387
다. 시니어판사의 지위 ····· 388
라. 시니어판사의 근무형태 및 보수 ····· 390
마. 기타 고려사항 ····· 391
2. [제2안] 전담법관제도 확대(정년연장) ····· 392
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 392
나. 지원 자격과 정년 연장 ····· 392
다. 전담법관의 지위(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와 유사) ····· 393
라. 근무형태 및 보수 ····· 393
마. 검토의견 ····· 393
3. [제3안] 정원 외 시간제법관 제도(캐나다, 영국 및 네덜란드) ····· 394
가. 도입 필요성 ····· 394
나. 지원 자격 및 방법 ····· 394
다. 정원 외 시간제법관의 임기와 지위 ····· 395
라. 근무형태 ····· 395

마. 검토의견 ····· 396
4. [제4안] 독일식 정년 전 시간제 근무제도 ····· 397
가. 도입 필요성 ····· 397
나. 시간제 근무 개시 연령 ····· 397
다. 구체적인 내용 ····· 398
라. 기대효과 ····· 401
5. 소결 ····· 401
제5장 결론 ····· 403
1. 시니어판사 제도: 법관 부족에 대한 대응 ····· 405
2. 시니어판사 제도: 올바른 재판에 대한 집중 ····· 405
3. 법관의 독립과 시니어판사 제도 ····· 406

65.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Judicial Measures in Aid of Multicultural Families

연구총서 2018-02

연구책임자 : 홍진표(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최유나(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8년 2월 22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I.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4
제2절 연구방법 ····· 6
Ⅰ. 문헌 연구 ····· 6
Ⅱ. 인터뷰 실시와 간담회 · 공청회 참석 ····· 6
제2장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 9
제1절 개관 ····· 11
제2절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및 범위 ····· 11
Ⅰ. 관련 법률 ····· 11
1. 개설 ····· 11
2. 다문화 가족 지원법 ····· 12
가. 목적 ····· 12

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12
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 13
라. 실태조사 ····· 13
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 13
바. 아동 · 청소년의 보육 · 교육 ····· 14
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15
아. 다문화 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5
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5
차. 보수교육의 실시 ····· 1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16
가. 목적 ····· 16
나. 용어의 정의 ····· 16
다.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 16
라. 인권 옹호 및 사회적응 지원 ····· 17
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17
바.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및 상담 ····· 17
4. 국적법 ····· 18
가. 목적 ····· 18
나. 인지 및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18
다. 허가 등의 취소 ····· 19
Ⅱ. 다문화 가족의 범위 ····· 19
제3절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 ····· 20
Ⅰ. 외국인 주민 현황 ····· 20
1. 외국인 주민의 수 ····· 20
2. 외국인 주민 유형 ····· 21
3.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이 ····· 23
4. 외국인 주민의 거주 지역 ····· 24
Ⅱ. 결혼이민자 · 귀화자 등의 일반적 특성 ····· 25
1. 제3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실시 ····· 25
2.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출신국적 ····· 25
3. 한국어 능력과 한국 생활의 어려움 ····· 27
가. 한국어 능력 ····· 27
나. 한국 생활 어려움 ····· 27
다. 차별 경험 ····· 28
Ⅲ. 다문화 가족의 일반적 특성 ····· 29
1. 지역별 분포: 수도권 집중 ····· 29
2. 다문화 가구의 구성과 양태 ····· 31
3. 결혼이민자의 혼인지속 기간 및 동거 여부 ····· 32

4. 결혼 후 이혼 · 별거 ····· 33
5. 이혼 · 별거 후 자녀 양육 및 만남 ····· 34
가. 자녀 양육 ····· 34
나. 자녀와의 만남 빈도 ····· 35
Ⅳ. 결혼이민자의 국적 및 영주권 ····· 36
1. 국적 취득 현황 ····· 36
2.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 ····· 37
3. 향후 국적 · 영주권 취득 계획 ····· 39
4. 기관·단체 인지 및 이용 ····· 39
Ⅴ. 추이 ····· 40
1. 국제결혼의 감소와 귀화자의 증가 ····· 40
가. 국제결혼의 감소 ····· 40
나. 귀화자의 증가 ····· 41
다. 혼인귀화 이외의 사유에 의한 귀화자 증가 ····· 41
2. 다문화 가족 자녀수의 증가 ····· 42
가. 양적 증가 ····· 42
나. 취학 자녀의 증가 ····· 43
3. 추이 변화와 시사점 ····· 44
Ⅵ. 다문화 가족의 법적 분쟁 현황 ····· 45
1. 서설 ····· 45
2. 민사 및 가사사건 ····· 45
3. 형사사건 ····· 48
제3장 다문화 가족의 사법적 지원 현황 ····· 53
제1절 사법부 이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 55
Ⅰ. 행정부의 지원 현황 ····· 55
1. 지원 근거 ····· 55
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 ····· 55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55
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56
2. 여성가족부 ····· 56
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포털 운영 ····· 56
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 58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 58
라. 다누리콜센터의 운영 ····· 59
3. 법무부 ····· 59
가. 외국인 기본 계획의 수립 ····· 59
나.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실시 ···· 60
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 62

Ⅱ. 행정부 이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 62
1. 대한법률구조공단 ····· 62
가. 무료 법률구조 ····· 62
나. 법문화교육센터 운영 ····· 63
2.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64
3. 변호사 단체 ····· 65
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65
나. 각 지방변호사회 ····· 67
4.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 68
가. 취지 ····· 68
나. 시범 실시 지역 ····· 68
다. 확대 시행 ····· 68
제2절 사법부의 지원 현황 ····· 70
Ⅰ. 다문화 가족의 언어 지원 ····· 70
1. 통역 · 번역인에 의한 통 · 번역 제공 ····· 70
가. 통역 · 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통역 · 번역인 지정 ····· 70
나. 통역 · 번역인 후보자의 교육 ····· 70
다. 법정 통역인 편람 출판 ····· 71
2. 형사절차에서 번역한 재판에 관한 안내서 등의 교부 ····· 71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제출자의 번역문 첨부 ····· 72
4. 다자간 전화 통역 서비스 제공 ····· 73
가. 각급 법원에서 서비스 제공 ····· 73
나.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에 의한 제공 ····· 73
다. 다산콜센터와 비비비 코리아를 통한 제공 ····· 74
라. 지역 외국인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와 연계 ····· 74
5. 통역 자원봉사자 제도 ····· 75
Ⅱ. 다문화 가족의 소송구조 ····· 75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소송구조 인정 및 통역비용 등의 소송구조 ····· 75
가. 소송구조 인정 ····· 75
나. 통역비용 등에 대한 소송구조 및 안내 ····· 76
2. 외국인 · 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 ····· 77
가. 실시 ····· 77
나. 외국인 · 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신청 ····· 77
다. 구체적 절차 ····· 78
라.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소송구조 현황 ····· 78
Ⅲ.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 이주민을 위한 홈페이지와 대법원 영문사이트 운영 ··· 80
1.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 이주민을 위한 웹사이트 ····· 80
2. 대법원의 영문 웹사이트 운영 ····· 82

3.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개선 ····· 82
Ⅳ. 외국인 · 이주민을 위한 전용 민원상담창구 운영 ····· 83
Ⅴ. 기타 지원 현황 ····· 84
1. 다국어 재판절차 안내문 및 자료 발간, 게시 ····· 84
2. 다문화 가족용 '부모' 책자 제작과 게시 및 부모 교육 동영상 게시 ····· 84
3.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내수첩 ····· 85
4. 부부, 부모 관계 개선 등 캠프 실시 ····· 85
5.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률 특강 ····· 86
가. 다문화 가족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특강 ····· 86
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률 등의 특강 ····· 86
다. 다문화 가족 등의 법원 견학 ····· 86
6.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과 재판 관련 책자 발간 ····· 87
가. 전담재판부 운영 ····· 87
나. 외국인재판실무편람 및 매뉴얼 발간 ····· 87
제4장 주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 ····· 89
제1절 개관 ····· 91
제2절 미국 ····· 91
Ⅰ. 개설 ····· 91
Ⅱ.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사법접근위원회 ····· 93
1. 주 사법접근위원회의 등장 ····· 93
2. 주 사법접근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 93
Ⅲ. 언어적 접근의 보장 ····· 94
1. 언어적 접근 보장의 필요 ····· 94
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시스템의 전제 ····· 94
나. 주법원에서의 실제 현황 ····· 95
2. 미국 전역 회담과 실행 방안 및 구체적 단계 ····· 99
가. 실행 방안 ····· 99
나. 우선 실시 분야와 구체적 실행 단계 ····· 100
Ⅳ. 나홀로 소송 지원과 법률구조 ····· 102
1. 나홀로 소송 지원을 위한 Self-Help 서비스 ····· 102
2. 법률구조 ····· 102
가. 서설 ····· 102
나. 민사법률구조 ····· 103
다. 형사법률구조 ····· 103
Ⅴ. 캘리포니아주 ····· 103
1. 캘리포니아 체류 이주민 · 외국인 현황 및 사법 지원 필요성 ····· 103
가. 외국 출생자 비율 ····· 103
나. 캘리포니아주의 인종 분포 및 히스패닉 비율 ····· 104

다.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 외국인 현황 ····· 105
라.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언어 사용 현황 ····· 107
마. 외국 출생자 등을 위한 사법 지원 필요성 ····· 108
2.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절차 내에서의 통역서비스 ····· 108
가. 미국의 법정통역 개관 ····· 108
나. 최근 통역인 등 현황 ····· 109
다. 통역서비스 이용 추이 ····· 110
라. 언어 통역인 사용 현황 ····· 110
마. 법원 인증 및 등록 통역인 자격 ····· 111
바. 화상 원격 통역 ····· 113
3. 체류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 ····· 113
가. 통합 홈페이지 ····· 113
나.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이민정보 제공 ····· 115
다. 각종 양식의 제공 ····· 117
라. 1심 법원 자체 웹사이트 ····· 117
4. 기타 서비스 현황 ····· 117
가. 법률구조 ····· 117
나. 각종 외국어 안내 책자 및 외국어 표기 안내판 등의 설치 ····· 118
5. 향후 장기 계획 ····· 118
가. 개설 ····· 118
나. 장기 계획의 목표 ····· 119
다. 1단계 계획 ····· 119
라. 2단계 계획 ····· 121
마. 3단계 계획 ····· 122
6. 연방법원의 사법 지원 ····· 122
Ⅵ. 뉴욕주 ····· 123
1. 뉴욕주 인구 및 언어 사용 현황 ····· 123
2. 통역 ····· 123
가. 서설 ····· 123
나. 근거법령 ····· 123
다. 특징 ····· 124
라. 조직 및 제도관리 ····· 125
마. 통역인 자원 관리 ····· 126
바. 2016년도 통역 현황 ····· 128
3. 번역 ····· 130
가. 일부 법원 명령의 번역 서비스 제공 검토 ····· 130
나. 일부 법원 명령에 대한 외국어 병기 ····· 130
4. 법률구조와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 131

가. 법률구조 ····· 131
나. 홈페이지 ····· 132
다. 안내 책자 ····· 134
5. 다언어 구사자 고용 확대 · 우대 검토 ····· 134
가. 배경 ····· 134
나. 구체적인 검토 사항 ····· 134
Ⅶ. 시사점 ····· 135
제3절 캐나다 ····· 138
Ⅰ. 개관 ····· 138
Ⅱ. 언어 지원 서비스 ····· 139
1. 개설 ····· 139
2. 형사절차에서의 언어 지원 서비스 ····· 140
가.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 140
나. 다른 언어들로 된 서류들에 대한 번역 서비스 ····· 141
3. 민사절차에서의 언어 지원 서비스 ····· 141
가.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 141
나. 다른 언어들로 된 서류들에 대한 번역 서비스 ····· 142
다. 다국어 법률정보 제공 및 가이드 북 발간 ····· 142
4. 다국어 직통전화 ····· 144
5. 자조센터 등 운영 ····· 144
Ⅲ. 법률구조제도 ····· 145
1. 개설 ····· 145
2. 온타리오주의 법률구조 ····· 146
가. 홈페이지 운영 ····· 146
나. 법률지원의 내용 ····· 146
3.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법률구조 ····· 149
가. 당직 변호사 및 변호사 선임 ····· 149
나. 법률상담 ····· 150
4. 퀘벡주의 법률구조 ····· 150
5. 소송비용 면제 ····· 150
Ⅳ.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151
1. Legalline.ca ····· 151
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Justice Education Society ····· 152
3. 온타리오주의 JusticeNet ····· 153
Ⅴ. 시사점 ····· 154
제4절 호주 ····· 157
Ⅰ. 개관 ····· 157
Ⅱ.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사법협의회 ····· 158

1. 개설 ····· 158
2. 구성 및 업무 ····· 158
3. JCCD의 구체적 업무 성과 ····· 159
가. 법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 또는 현황조사서 등의 발간 ····· 159
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법원 직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59
Ⅲ. 법원의 통·번역서비스 제공 ····· 161
1. 국립통·번역서비스의 제공 ····· 161
2. 국립통·번역서비스 이용방법 및 비용 ····· 163
3. 연방법원의 TIS National 활용 ····· 163
가. 법원 창구에서의 통역 ····· 163
나. 재판과정에서의 통역 ····· 165
다. TIS National의 DVD 배포 ····· 166
4. 무료 문서번역서비스 ····· 166
Ⅳ. 법률구조 ····· 167
1. 업무 내용 ····· 167
2. 통역 및 변호사 지원 ····· 167
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법정보안내 ····· 169
1. 법률용어해석을 위한 웹사이트 마련 ····· 169
2. 법원 웹사이트 내 사법정보 번역본 제공 ····· 170
Ⅵ. 커뮤니티 법률센터 ····· 170
Ⅶ. 시사점 ····· 171
제5절 영국 ····· 174
Ⅰ. 개관 ····· 174
Ⅱ. 통역에 대한 지원 ····· 175
1. 형사절차 ····· 175
2. 민사절차 ····· 175
3. 통역 및 번역 현황 ····· 176
가. 재판관련 통역 및 번역 건수 ····· 176
나. 통역 및 번역에 대한 민원 ····· 177
Ⅲ. 법률구조 ····· 178
1. 개설 ····· 178
2. 형사절차에서의 법률구조 ····· 180
가. 서설 ····· 180
나. 대리 ····· 180
다. 당직 변호인 ····· 181
3. 민사절차에서의 법률구조 ····· 182
Ⅳ.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 183
1. 고객지원 담당관과 장애연락 담당관 ····· 183

2. 다양성 및 지역사회 관계 법관 ····· 184
Ⅴ. 기타 ····· 185
1. 다국어 서비스 ····· 185
2. 기타 지원 단체 등 ····· 185
Ⅵ. 시사점 ····· 186
제6절 독일 ····· 188
Ⅰ. 개관 ····· 188
Ⅱ. 외국인에 대한 사법 지원 원칙 및 법적 근거 ····· 189
1. 기본원칙 ····· 189
2.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내용 ····· 190
3. 차별 대처에 관한 정보의 제공 ····· 192
Ⅲ. 외국인에 대한 언어 서비스의 지원 ····· 193
1. 법적 근거 ····· 193
2. 통역 및 번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 194
3.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안내 ····· 197
4. 통역 및 번역 비용 ····· 200
Ⅳ. 법률구조제도 ····· 200
1. 개설 ····· 200
2. 형사재판절차의 필요적 변호제도 ····· 201
3. 소송비용구조제도 ····· 204
4. 재판 외 법률상담구조제도 ····· 209
Ⅴ.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발간 자료의 번역 ····· 211
1.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 211
가. 주요 법원 및 법무부 홈페이지 다국어 서비스 ····· 211
나. 연방법무부의 웹사이트 ····· 212
2. 발간 자료의 외국어 번역 ····· 213
Ⅵ. 시사점 ····· 214
제7절 프랑스 ····· 216
Ⅰ. 개관 ····· 216
1. 인구 현황 ····· 216
2. 이민정책의 변천 및 최근 동향 ····· 217
Ⅱ. 통역 및 번역의 지원 ····· 218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지원 ····· 218
2. 법원 등록 통·번역인 제도 ····· 219
Ⅲ. 법률구조 및 법률정보 접근의 지원 ····· 220
1. 개설 ····· 220
2. 법률구조 ····· 221
가. 의의 ····· 221

나. 대상과 요건 ····· 222
다. 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 ····· 224
라. 구조절차 ····· 225
3. 법률정보접근의 지원 ····· 227
가. 서설 ····· 227
나. 내용 ····· 227
다. 활동조직과 평가 ····· 228
Ⅳ.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의 제공 ····· 228
Ⅴ. 시사점 ····· 229
제8절 일본 ····· 231
Ⅰ. 개관 ····· 231
Ⅱ. 외국인을 위한 언어 접근의 지원 ····· 231
1. 개설 ····· 231
2. 통역인 및 후보자 선임 관련 ····· 232
가. 통역인 후보자 명부에서 선정 ····· 232
나. 사법통역기능검정 ····· 233
3. 형사사건 ····· 234
가. 서설 ····· 234
나. 현황 ····· 234
다. 통역인에 대한 연수 등 ····· 235
라. 법정통역에 대한 안내 · 홍보 ····· 236
마. 형사재판 통역의 개선을 위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제안 ····· 237
4. 민사사건 ····· 238
5. 소년사건 ····· 238
Ⅲ.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 ····· 238
1. 외국인 서포트 스탭 제도 ····· 238
2. 외국인을 위한 재판소 안내자료 ····· 240
3. 영문간행물 발간 ····· 241
4. 영문 웹사이트를 통한 사법절차 안내 ····· 242
5. 집행절차에 관한 다국어 안내서 등 ····· 242
6. 형사재판절차 이해를 위한 안내 ····· 242
Ⅳ. 재판소 이외의 기관의 사법 지원 ····· 243
1. 법무성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상담 등 ····· 243
가. 서설 ····· 243
나. 인권상담소 설치 ····· 244
다. 외국어 인권상담 다이얼 ····· 244
라.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접수창구 ····· 244
2. 법테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의 사법 지원 ····· 244

가. 사법 접근 향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 ····· 244
나. 종합법률지원법 제정 및 법테라스 설립 ····· 245
다. 조직 ····· 245
라. 다언어 법률정보제공서비스 ····· 246
마. 가사 · 민사 · 행정사건에 대한 민사법률부조제도 ····· 247
바. 일본변호사연합회 · 법테라스의 위탁원조업무 ····· 247
사. 국선변호 관련 ····· 248
3. 변호사회의 사법적 지원 ····· 249
가. 일본변호사연합회 · 법테라스 위탁원조업무 ····· 249
나. 당번변호사제도 이용 ····· 249
다. 각 변호사회의 외국인 상담창구 ····· 249
Ⅴ. 시사점 ····· 250
제5장 사법적 지원 방안 및 구현 방법 ····· 253
제1절 실효적인 사법 지원 방안의 수립 · 실시 ····· 255
Ⅰ. 목표와 전략 및 실천 계획의 수립 · 실시 ····· 255
Ⅱ. 일반적 고려사항 ····· 255
1. 다문화 가족 형태 및 변화의 고려 ····· 255
2. 최초 접촉 지점부터 모든 과정에서 사법적 지원 ····· 256
가. 실효적 지원을 위한 당위의 문제 ····· 256
나. 필요적 전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257
다. 다문화 가족에 관한 사법연감 통계자료 작성의 필요 ····· 257
3. 언어 지원 및 법률구조에 집중: 역차별 주의 ····· 258
4. 효율성의 고려: 홍보 강화 및 외부 기관 · 단체와 협력 확대 ····· 258
Ⅲ. 다문화 가족 통합 지원 주체의 검토 ····· 259
1. 관리주체 필요성 ····· 259
2. 조직 방안 ····· 259
가. 독립 위원회 설치 방안 ····· 260
나. 업무 총괄 담당 부서 내지 담당관 설치 방안 ····· 260
다. 자문기구의 정책 지원 방안 ····· 260
제2절 온라인 접속자에 대한 사법 지원 ····· 261
Ⅰ. 필요성 ····· 261
Ⅱ. 기존 제도의 제약 ····· 262
Ⅲ. 개선 방안 ····· 264
1. 모바일 접속 지원의 확대 ····· 264
2. 사이트 편제 및 내용 개편 ····· 265
가. 번역 기능 수반 ····· 265
나. 언어 지원 확대 ····· 265
다. 다국어로 된 중요한 양식이나 관심 정보의 제공 ····· 266

라. 외부 사이트와 연결 ····· 267
마. 법률 용어 해설 웹사이트 등의 제작 ····· 268
Ⅳ. 홍보 확대 및 강화 ····· 269
1. 필요성 ····· 269
2. 방안 ····· 270
제3절 법원 방문자 및 상담자에 대한 사법 지원 ····· 271
Ⅰ. 필요성 ····· 271
Ⅱ. 법원 시설에 대한 다국어 표시와 외국인 전용 창구 개선 ····· 272
1. 법원 방문 및 시설의 다국어 표시 ····· 272
2. 외국인 전용 창구의 개선 ····· 273
가. 외국인 전용 창구의 다국어 안내 ····· 273
나. 충분한 언어서비스의 제공 ····· 274
다. 지원 필요 언어의 신속한 파악 ····· 275
라. 업무처리 효율성-필요한 정보 제공 ····· 276
마. 업무처리 매뉴얼 제공 ····· 277
바. 필요한 책자, 양식, 컴퓨터 등의 구비 및 제공 ····· 278
Ⅲ. 법정 등에 필요한 양식, 책자 등의 비치 ····· 280
Ⅳ. 다국어 사용 다문화 가족의 채용 확대 및 활용 ····· 281
제4절 법정에서 통역 · 번역 등 언어 서비스 지원 ····· 282
Ⅰ. 지원 필요성 ····· 282
Ⅱ. 공적인 통 · 번역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 ····· 284
1. 모든 소송절차로의 확대 여부 ····· 284
2. 양육이나 가정폭력 등 중요한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 285
3. 통 · 번역 지원 센터 도입 검토 ····· 285
4. 이원적 접근 ····· 287
Ⅲ. 통역인 명부에 등재된 통역인의 통역 품질 향상 방법 ····· 288
1. 통역인 인증 · 등록 검토 ····· 288
2. 통 · 번역의 통합 관리 ····· 289
3. 교육 ····· 290
4. 효율적인 통역 활용의 지원 ····· 292
Ⅳ. 통역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통역인의 통역 품질 향상 방안 ····· 293
1. 교육 기회 제공 및 방법 ····· 293
가. 통역 현황과 교육 제공 필요성 ····· 293
나. 수준별 교육과 및 연수 및 감독 ····· 295
2. 통역 시 참조할 책자나 매뉴얼 등의 작성 ····· 296
가. 책자나 매뉴얼 작성 및 비치 ····· 296
나. 참조할 용어 등을 설명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홍보 ····· 297
3. 통역 풀 확대 및 신속한 연계 ····· 298

가. 신속한 통역 지원 시스템 정비 ····· 298
나. 통역 실비 지원 및 근거 ····· 299
Ⅴ. 번역의 지원 ····· 301
1. 판결 번역문 및 소송서류 번역 제공 여부 ····· 301
2. 법정기간 및 준수의무 등의 번역 제공 검토 ····· 302
제5절 법률구조 지원 개선 ····· 304
Ⅰ. 소송구조 확대 검토 ····· 304
1. 확대 여부 ····· 304
2. 중요 사건에 대한 적극 검토 ····· 306
3. 집행을 위한 지원 여부 ····· 306
Ⅱ.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개선 및 홍보 ····· 307
Ⅲ. 법률구조 제도와의 연계 ····· 308
제6절 인식 개선과 교육을 위한 지원 ····· 309
Ⅰ. 필요성 ····· 309
Ⅱ. 법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310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의 교육 및 연수 ····· 310
2. 다문화 가족 관련 사건의 특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312
3. 다문화 가족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315
4. 매뉴얼 등의 제작 ····· 317
Ⅲ. 연구회 등의 활성화 ····· 319
Ⅳ. 다문화 가족 자체의 인식 개선 지원 ····· 320
1. 필요성 ····· 320
2. 구체적 방안 ····· 321
가. 심층적인 부모 교육 ····· 321
나. 이주민 배우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 322
다. 복지적 사업의 개선 ····· 323
제7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강화 ····· 324
Ⅰ. 정책 협조 필요성 ····· 324
Ⅱ. 협의 채널 구성 및 협력 사업 강화 ····· 326
Ⅲ. 통합형 안내 책자 등의 제작 및 제공 ····· 328
Ⅳ. 법교육 실시 및 책자 등 제공 ····· 329
Ⅴ. 증명서 등 발급 과정의 개선 ····· 330
제6장 결 론 ····· 331

66.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option System

연구총서 2018-03

연구책임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4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I.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4
1. 문헌연구 ····· 4
2. 전문가 의견 ····· 5
제2장 우리의 입양제도 ····· 7
제1절 개설 ····· 9
제2절 입양제도의 역사 및 배경 ····· 9
Ⅰ. 과거의 입양법 ····· 9
Ⅱ. 1958년 민법과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 10
Ⅲ. 1976년 입양특례법 ····· 12
Ⅳ.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13
Ⅴ. 2005년 민법상 친양자제도 ····· 13
1. 도입 배경 ····· 13
2. 내용 ····· 14
Ⅵ. 2011년 입양특례법 ····· 15

제3절 현행 입양제도에 대한 개관 ····· 16
Ⅰ. 개설 ····· 16
Ⅱ. 입양절차 개관 ····· 16
1.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절차 ····· 16
2. 민법상 입양절차 ····· 18
Ⅲ. 양부모 관련 규정 ····· 18
1. 민법 ····· 18
가. 관련 규정 ····· 18
나. 법원에서 실시하는 양부모 교육 ····· 19
2. 입양특례법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22
가. 입양특례법상 양부모 될 자격 ····· 22
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양부모 될 자격 ····· 22
다. 양부모의 교육의무 ····· 23
Ⅳ. 양자 관련 규정 ····· 24
1. 양자 될 자의 연령 ····· 24
가. 민법 ····· 24
나. 입양특례법 ····· 24
2. 양자가 될 자격 ····· 25
3. 입양에 대한 의사 ····· 26
가.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 26
Ⅴ. 감독기관 ····· 3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32
가. 제1차적 책무 ····· 32
나. 제2차적 책무 ····· 33
2. 가정법원 ····· 33
가. 개설 ····· 33
나. 가정법원의 심사 ····· 34
다. 입양 허가 통계 ····· 37
라. 범죄경력의 확인 ····· 38
마. 입양 신고 및 효과 ····· 42
Ⅵ. 입양기관 ····· 44
1. 개설 ····· 44
2. 내용 ····· 44
가. 입양기관의 설립 ····· 44
나. 입양기관장의 임무 ····· 45
다. 비용의 수납 및 보조 ····· 47
3. 중앙입양원 ····· 50
가. 중앙입양원의 설립 ····· 50

나. 중앙입양원의 임무 ····· 51
제3장 외국의 입양제도 ····· 57
제1절 개설 ····· 59
제2절 독일 ····· 60
Ⅰ. 배경 및 현황 ····· 60
Ⅱ. 국내 입양 ····· 64
1. 개설 ····· 64
2. 입양절차 ····· 64
가. 입양동의 ····· 64
나. 입양절차 ····· 65
다. 시험양육 ····· 66
라. 재판절차 및 입양결정 ····· 68
3. 입양효과 ····· 70
Ⅲ. 국외 입양 ····· 71
Ⅳ. 아동청 ····· 71
1. 배경 및 역할 ····· 71
2. 입양업무의 전담 ····· 73
Ⅴ. 정리 ····· 74
제3절 영국 ····· 75
Ⅰ. 배경 및 현황 ····· 75
Ⅱ. 입양절차 ····· 76
1. 입양신청 ····· 76
2.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 ····· 77
3. 입양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 ····· 77
4. 입양아동 찾기 ····· 78
5. 시험양육 ····· 78
6. 법원의 입양 허가 ····· 78
7. 입양 후 서비스 ····· 78
Ⅲ. 입양기관 ····· 80
1. 입양기관 분포 및 역할 ····· 80
2. 주요 입양기관과 그 역할 ····· 81
Ⅳ. 정리 ····· 83
제4절 캐나다 ····· 84
Ⅰ. 현황 ····· 84
Ⅱ. 온타리오 주 ····· 85
1. 입양요건 ····· 85
2. 입양기관 ····· 86
3. 입양절차 ····· 87

가. 입양가정조사 ····· 87
나. 입양동의 ····· 87
다. 입양청구의 방식 ····· 87
라. 입양명령 ····· 88
마. 입양의 효력 ····· 88
Ⅲ.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89
1. 입양요건 ····· 89
2. 입양절차 ····· 90
가. 입양할 가정에 대한 배치 ····· 90
나. 입양가정조사 ····· 90
다. 입양청구의 방식 ····· 91
라. 입양명령 ····· 91
마. 입양의 효력 ····· 91
Ⅳ. 정리 ····· 93
제5절 스웨덴 ····· 93
Ⅰ. 배경 및 현황 ····· 93
Ⅱ. 입양절차 ····· 96
1. 개설 ····· 96
2. 양부모 될 자의 자격 ····· 96
3. 양부모 될 자의 적격성 심사 ····· 97
4. 양부모 될 자에 대한 교육 ····· 97
5. 가정위탁 ····· 98
6. 입양명령 ····· 98
Ⅲ. 입양기관 및 감독기관 ····· 99
1. 입양기관 ····· 99
2. 감독기관 ····· 100
Ⅳ. 입양 효력 ····· 100
Ⅴ. 정리 ····· 101
제6절 프랑스 ····· 102
Ⅰ. 배경 및 현황 ····· 102
Ⅱ. 국내 입양 ····· 102
1. 입양요건 ····· 102
가. 입양 동의 ····· 102
2. 입양효과 ····· 105
Ⅲ. 국외 입양 ····· 106
1. 배경 및 현황 ····· 106
2. 양부모에 대한 심사 ····· 108
3. 입양절차 ····· 109

가. 현황 ····· 109
나. 입양을 위한 승인(agrément) ····· 110
다. 입양청구서의 작성 ····· 111
라. 입양청구서의 수락 ····· 111
마. 아동의 출신국에서의 절차 ····· 112
바. 비자 신청 ····· 112
사. 프랑스에서의 국적 취득 ····· 113
4. 사후 서비스 ····· 114
Ⅳ. 정리 ····· 115
제7절 미국 ····· 116
Ⅰ. 배경 및 현황 ····· 116
Ⅱ. 통일입양법 ····· 117
1. 개설 ····· 117
2. 입양될 아동의 유형 ····· 118
3. 입양기관 ····· 120
가. 입양기관의 성격 ····· 120
나. 입양기관의 역할 ····· 120
4. 법원 심사 ····· 123
5. 양육보조금 ····· 123
6. 입양 후 서비스 ····· 124
Ⅲ. 캘리포니아 주 ····· 127
1. 입양요건 ····· 127
2. 법원의 심사 ····· 127
3. 입양효과 ····· 128
Ⅳ. 뉴욕 주 ····· 129
1. 입양요건 ····· 129
2. 입양신청절차 ····· 130
3. 입양효과 ····· 130
Ⅴ. 정리 ····· 131
제8절 중국 ····· 133
Ⅰ. 배경 및 현황 ····· 133
Ⅱ. 국내 입양 ····· 137
1. 입양의 목적 및 의의 ····· 137
2. 입양에 대한 동의 ····· 138
3. 양부모 될 자의 자격 ····· 138
4. 입양효과 ····· 139
Ⅲ. 국외 입양 ····· 139
1. 개설 ····· 139

2. 양부모 될 자격 ····· 139
3. 입양 등기 절차 ····· 141
4. 입양효과 ····· 142
Ⅳ. 정리 ····· 142
제9절 홍콩 ····· 143
Ⅰ. 현황 ····· 143
Ⅱ. 입양절차 ····· 143
1.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사전적 기초 심사 ····· 143
2. 입양신청 후 가정조사를 통한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 144
3. 시험양육 및 입양 허가 ····· 144
Ⅲ. 입양기관 ····· 145
Ⅳ. 정리 ····· 146
제10절 베트남 ····· 146
Ⅰ. 현황 ····· 146
Ⅱ. 입양요건 ····· 147
Ⅲ. 입양절차 ····· 149
1. 개설 ····· 149
2. 국내 입양 ····· 149
3. 국제 입양 ····· 150
Ⅳ. 입양효과 ····· 151
Ⅴ. 정리 ····· 151
제11절 필리핀 ····· 152
Ⅰ. 현황 ····· 152
Ⅱ. 국내 입양 ····· 153
1. 입양요건 ····· 153
가. 양부모의 자격요건 ····· 153
나. 양자의 자격요건 ····· 154
2. 입양절차 ····· 154
가. 상담기회의 보장 ····· 154
나. 입양에 대한 동의 ····· 155
다. 시험양육 ····· 155
라. 법원의 입양 결정 ····· 156
3. 입양효과 ····· 156
Ⅲ. 국외 입양 ····· 157
1. 양부모의 자격요건 ····· 157
2. 입양신청 ····· 158
3. 시험양육을 통한 입양 결정 ····· 158
Ⅳ. 정리 ····· 159

제12절 외국 입양제도의 시사점 ····· 160
제4장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163
제1절 개설 ····· 165
제2절 협약의 의의 ····· 166
Ⅰ. 개설 ····· 166
Ⅱ. 우리의 현황 ····· 167
제3절 협약의 내용 ····· 169
Ⅰ. 개설 ····· 169
Ⅱ. 적용범위 ····· 169
Ⅲ. 입양의 요건 ····· 170
1. 아동 출신국의 의무 사항 ····· 170
2. 아동 수령국의 의무 사항 ····· 171
Ⅳ.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 171
1. 중앙당국 ····· 171
2. 인가단체 ····· 173
가. 개념 ····· 173
Ⅴ. 입양의 절차적 요건 ····· 175
1. 입양의 신청 ····· 175
2. 수령국의 보고서 작성 및 송부 ····· 175
3. 출신국의 보고서 작성 및 송부 ····· 175
4. 아동에 대한 위탁결정 요건 ····· 176
5. 출입국 및 영주허가를 위한 협력 ····· 176
6. 아동의 이동 ····· 176
7. 입양 진행 과정에 관한 통지 ····· 177
8. 입양의 중단 ····· 177
Ⅵ. 입양의 승인과 효과 ····· 178
1. 입양자동승인의 원칙 ····· 178
2. 입양자동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 ····· 179
3. 입양승인의 효과 ····· 179
4. 단순입양으로부터 완전입양으로의 전환 ····· 180
Ⅶ. 금지규정 ····· 180
1. 입양지의 제한과 아동의 위탁 또는 이동 금지 ····· 180
2. 사전접촉금지 ····· 181
3. 아동에 관한 정보 보존의무 ····· 181
4. 부당한 이득의 금지 ····· 181
Ⅷ. 절차적 규정 ····· 182
1. 강행법규성 ····· 182
2. 자율성 ····· 182

3. 유연성 ····· 183
4. 보충성 ····· 184
제5장 개선방안을 위한 구체적 제언 ····· 187
제1절 개설 ····· 189
제2절 국내 입양 ····· 189
Ⅰ. 국내 입양의 현황 ····· 189
Ⅱ. 입양기관 ····· 191
1. 입양기관 현황 ····· 191
2.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 ····· 192
가. 조사 현황 ····· 192
나. 개선 방안 ····· 193
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195
라. 정리 ····· 196
3.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 197
가. 교육 현황 ····· 197
나. 개선 방안 ····· 198
4. 입양업무실무자의 자격 ····· 203
가. 우리의 현황 ····· 203
나. 개선 방안 ····· 204
Ⅲ. 입양 전제 가정위탁 ····· 209
1. 가정위탁의 의의 ····· 209
2. 입양 전제 가정위탁의 배경 ····· 209
3. 입양 전제 가정위탁의 문제점 ····· 210
가. 입양특례법 위반 ····· 210
나. 입양기관에 의한 가정위탁 결정의 문제 ····· 211
다. 입양 허가 이전에 성립된 애착관계 ····· 212
4. 입양 전제 가정위탁에 대한 검토 ····· 213
가. 의원안에 대한 검토 ····· 213
나. 개선 방안 ····· 215
Ⅳ. 법원의 심사 ····· 220
1. 양부모의 범죄경력 ····· 220
가. 개설 ····· 220
나. 범죄경력 자료 요청의 주체 ····· 220
다. 범죄경력 자료 요청의 비강제성 ····· 221
라. 범죄경력 자료 제출 의무화 ····· 222
2. 입양될 아동의 의견 표명 ····· 222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 222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224

다. 정리 ····· 226
3. 입양조사관 제도 ····· 229
가. 현황 ····· 229
나. 가사조사관의 업무 및 현황 ····· 229
다. 개선 방안 ····· 231
Ⅴ. 입양 후 서비스 ····· 232
1. 우리의 현황 ····· 232
2.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 234
가. 관련 규정 ····· 234
나. 양육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 ····· 234
다. 개선 방안 ····· 236
라. 정리 ····· 238
3. 입양특례법상 사후관리 ····· 239
가. 개설 ····· 239
나. 입양실무매뉴얼 ····· 240
다. 개선 방안 ····· 241
제3절 국외 입양 ····· 248
Ⅰ. 우리의 현황 ····· 248
Ⅱ. 입양법의 일원화 ····· 249
1. 입양법제의 일원화 문제 ····· 249
2.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의 일원화 문제 ····· 250
3.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의 분류 기준의 상이성: 국적과 상거소 ····· 251
Ⅲ. 유엔아동권리협약 ····· 253
1. 국내규정 미비 ····· 253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 253
Ⅳ. 중앙당국 주도의 입양 ····· 254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 254
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 및 이행 ····· 255
3. 중앙당국 ····· 256
가. 중앙당국 지정의 필요 ····· 256
나. 중앙당국의 대상에 대한 검토 ····· 257
4. 인가단체 ····· 262
제6장 결론 ····· 265

67.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총서번호 2018-04

연구책임자 : 계인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현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6월 15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방향 및 내용 ····· 3
제2절 주제 한정 및 연구방법 ····· 3
제2장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개관 ····· 7
제1절 온라인 분쟁해결의 의의 ····· 9
Ⅰ. 일반적 이해 ····· 9
1. 현상적 차원의 이해 ····· 9
2. 개념적 이해 ····· 11
Ⅱ. ODR의 개념 ····· 12
1. 개념표지 ····· 13
2. ODR의 정의 ····· 17
3. 관련 개념 ····· 18
Ⅲ. 소결 ····· 21
제2절 ODR의 발전과정 ····· 22
Ⅰ. 의의 ····· 22
Ⅱ. 인터넷의 등장과 온라인 세계의 구축 ····· 22
1. 초기 인터넷 연구 ····· 22

2.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 ····· 23
3. 비상업적 목적의 폐기 ····· 24
Ⅲ. ODR의 발현기 ····· 24
1.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 24
2. ODR 전문 기업의 출현 ····· 25
3. ODR 시범 프로젝트 ····· 26
Ⅳ. ODR의 발전기 ····· 27
1. ODR의 상용화 ····· 27
2. ODR 규율체계의 형성 시도 ····· 28
3. ODR의 확대 ····· 29
Ⅴ. 전망 ····· 30
1. 기능적 차원 ····· 30
2. 여타 분쟁해결과의 차이 ····· 31
제3절 ODR의 유형 ····· 31
Ⅰ. 개요 ····· 31
Ⅱ. 절차적 형식에 따른 분류 ····· 32
1. 온라인 협상 ····· 32
2. 온라인 조정(Online Mediation) ····· 33
3. 온라인 옴부즈만(Online Ombudsman) ····· 34
4. 온라인 중재 ····· 35
5. 블라인드 비딩(Blind-Bidding) ····· 36
6. 온라인 가상 배심 ····· 37
Ⅲ. 구현방식에 따른 분류 ····· 37
1. 직접 소통 방식 ····· 38
2. 웹사이트 게시판방식 ····· 38
3. 포털 방식 ····· 39
4. 플랫폼 방식 ····· 39
제3장 ODR의 구현 요건 ····· 41
제1절 논의대상의 정리 ····· 43
제2절 ODR의 특징과 장단점 ····· 44
Ⅰ. ODR의 특징 ····· 44
1. 대면방식의 변화 ····· 44
2. 온라인상의 소통 ····· 46
3. 기술의존도와 기술수용성 ····· 48
Ⅱ. ODR의 장단점 ····· 49
1. 비용과 소요시간의 절감 ····· 49
2. 효율성 ····· 49
3. 편의성 ····· 49

4. 유연성 ····· 50
5. 정리 ····· 50
제3절 ODR의 목표와 필요조건 ····· 51
Ⅰ. ODR의 목표 ····· 51
1. 공정한 분쟁해결 ····· 51
2. 신뢰성 확보 ····· 51
3. 유효성 인정 ····· 52
4. 합법성과 법적 정당성 ····· 52
5. 효율성 ····· 52
Ⅱ. ODR의 필요조건 ····· 52
1. 프레임워크로서 필요조건 ····· 52
2. 규율 전략 ····· 53
3. 기술적 측면 ····· 54
4. 시장 및 사회정책적 측면 ····· 55
5. 정리 ····· 57
제4절 ODR 제도의 설계 ····· 58
Ⅰ. ODR의 실현환경 ····· 58
1. 전제: 분쟁해결의 3단계 모델 ····· 58
2. 요구사항 ····· 58
3. 시스템 및 도구의 확보 ····· 60
Ⅱ. ODR 시스템의 기본 설계 ····· 61
1. 의의 ····· 61
2. ODR 도구의 개발 ····· 62
3. ODR 시스템 모델의 예시 ····· 62
Ⅲ. ODR 규율방식의 특징 ····· 69
1. 온라인 영역의 규율방식 ····· 69
2. ODR의 규제전략 ····· 70
제4장 온라인 분쟁해결의 규율 및 이용현황 ····· 73
제1절 국제적 차원의 규율현황 ····· 75
Ⅰ. 논의대상 ····· 75
Ⅱ. OECD 가이드라인 ····· 75
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 75
2. 소비자 분쟁해결 및 구제를 위한 권고안 ····· 77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권고안 ····· 78
Ⅲ. ICC ODR 실무지침 ····· 78
1. 배경 ····· 78
2. 내용 ····· 79
Ⅳ. UNCITRAL 모델규범 ····· 82

1. UNCITRAL Working Group III ····· 82
2. ODR 절차규칙의 변천 ····· 83
3. UNCITRAL ODR 기술 문서 ····· 85
제2절 이용현황 ····· 90
Ⅰ. 이용현황의 연구기준 ····· 90
1. 기존의 분석기준 ····· 90
2. 연구대상의 한정 ····· 90
Ⅱ. 미국의 ODR 현황과 발전 ····· 91
1. ODR 규율 방식 ····· 91
2. 규율형식 ····· 93
3.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로서 ODR ····· 94
4. eBay 분쟁해결센터 ····· 95
5. SquareTrade의 ODR 서비스 ····· 97
6. Mondria의 공공부문 ODR ····· 99
7. 공공부문으로의 확대 ····· 100
Ⅲ. 유럽연합 ODR 규율 및 이용현황 ····· 101
1. 규율의 형성 과정 ····· 101
2. 유럽연합 ODR 규약 ····· 104
3. 사법접근권과 ODR 보고서 ····· 105
4. 유럽연합 ODR 플랫폼 ····· 107
Ⅳ. 네덜란드의 ODR 이용현황 ····· 110
1. Rechtwijzer 프로젝트 출범 ····· 110
2. Rechtwijzer 2.0 서비스 ····· 111
3. 특징 ····· 114
4. 한계 및 전망 ····· 115
Ⅴ. 일본의 ODR 활용 ····· 116
1. ODR의 필요성 인식과 전향적 태도 ····· 116
2. 국제소비자 센터(CCJ) ····· 117
3. ODR의 기본 요소 설정시도 ····· 119
Ⅵ. 중국의 ODR 활용 ····· 121
1. 인터넷 이용도와 발전 ····· 121
2. 중국의 ODR 기관 ····· 122
제5장 온라인 분쟁해결과 사법절차 ····· 125
제1절 사법과 기술의 결합 ····· 127
Ⅰ. 배경 ····· 127
1. 재판절차의 특성 ····· 127
2.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의 기술의 투입 ····· 127
Ⅱ. 리걸테크(Legal Tech) ····· 129

1. 의의 ····· 129
2. 리걸테크 서비스 ····· 130
3. 리걸테크의 실현 구조 ····· 131
4. 리걸테크와 ODR ····· 133
제2절 사법접근권과 ODR ····· 134
Ⅰ. 사법접근권 ····· 134
1. 의의 ····· 134
2. 장애요소 ····· 135
3. 시민중심적 사법서비스 ····· 135
4. 보장방안으로서 ODR ····· 137
제3절 법원의 ODR 수용 ····· 138
Ⅰ.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모델 ····· 138
1. 의의 ····· 138
2. 형성과정 및 내용 ····· 140
3. 운영단계 및 방식 ····· 142
4.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ODR ····· 148
Ⅱ. 전자사법제도와 ODR ····· 152
1. 사법정보화의 진행 ····· 152
2. 법원으로의 ODR 확대 ····· 153
3. 영국의 온라인 법정 ····· 154
4. 중국 온라인 법원 ····· 159
Ⅲ. 나홀로소송과 ODR ····· 184
1. 나홀로소송 ····· 184
2. ODR의 관념에 의한 발전방향 ····· 186
3. 나홀로소송의 현황 ····· 187
4. 정리 및 제언 ····· 188
Ⅳ. 전망 ····· 190
1. ODR 관념의 수용 ····· 190
2. 선결과제 ····· 190
3. 장기적 발전방향 ····· 193
4.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열린 지능형 법원” ····· 194
제6장 결론 ····· 197

68.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Lecture Program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Teachers

연구총서 2018-05

연구책임자 : 이종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표현덕(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8년 08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현황과 실태 ····· 5
제1절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법교육 현황 ····· 7
Ⅰ. 개요 ····· 7
Ⅱ.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법교육 실태 ····· 7
1. 법교육 과정의 현황 ····· 7
2. 법교육 관련 강좌의 내용 ····· 9
가. 교양과정 강좌 내용 ····· 9
나. 심화과정 강좌 내용 ····· 10
Ⅲ. 사범대학의 법교육 실태 ····· 13
1. 법교육 과정의 현황 ····· 13
2. 법교육 관련 강좌의 내용 ····· 17
가. 기초법학 강좌 내용 ····· 17

나. 헌법, 민법, 형법 등 개별 법학 강좌 내용 ····· 17
다. 법교육 교재 및 방법 관련 강좌 내용 ····· 18
제2절 교사 임용 후 법교육 현황 ····· 19
Ⅰ. 개요 ····· 19
Ⅱ. 사법부의 교사에 대한 법교육 현황 ····· 19
1. 사법연수원의 교사 직무연수 ····· 19
가. 직무연수 개요와 일정 ····· 19
나. 2017년 직무연수 내용 ····· 20
2. 각급 법원의 교사 직무연수 등 프로그램 ····· 22
가. 부산고등법원 ····· 23
나. 서울가정법원 ····· 24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25
라. 서울남부지방법원 ····· 26
마. 수원지방법원 ····· 27
바. 의정부지방법원 ····· 27
사. 대구지방법원 ····· 28
아. 울산지방법원 ····· 29
자. 창원지방법원 ····· 30
차. 광주지방법원 ····· 30
카. 그 밖의 법원 ····· 31
3. 사법부의 법교육 콘텐츠 ····· 32
Ⅲ. 법무부의 교사에 대한 법교육 현황 ····· 34
1.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 34
2. 교사용 법교육 관련 교재 ····· 36
가.『청소년의 법과 생활』및『한국인의 법과 생활』····· 36
나. 법무부 출장강연 법교육 자료 ····· 38
3. 온라인에 기반한 사이버 강의와 법교육 콘텐츠 ····· 38
가. 사이버 강의 ····· 38
나. 법사랑 사이버랜드 교사용 콘텐츠 ····· 40
Ⅳ. 기타 기관의 교사에 대한 법교육 현황 ····· 45
1. 헌법재판연구원 ····· 45
2. 한국법교육센터 ····· 46
3. 교원연수기관의 법교육 현황 ····· 48
제3절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 49
Ⅰ. 개관 ····· 49
Ⅱ. 전문가 인터뷰 ····· 49
1. 참가자 ····· 49
2. 인터뷰 내용 ····· 50

가. 요약 ····· 50
나. 인터뷰 전문 ····· 50
제3장 외국의 사례 ····· 61
제1절 미국 ····· 63
Ⅰ. 개관 ····· 63
Ⅱ. 법교육 일반 ····· 63
1. 법교육의 발전과 법교육지원법의 제정·변화 ····· 63
가. 법교육 운동의 역사 ····· 63
나. 법교육지원법의 제정과 변동 과정 ····· 64
다. 미국 법교육의 특징 ····· 64
2.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 66
Ⅲ.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 67
1. 법원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 68
2. 시민적 참여 수업 ····· 70
3. 교사용 법교육 교재 ····· 70
제2절 영국 ····· 72
Ⅰ. 개관 ····· 72
Ⅱ. 법교육 일반 ····· 73
1. 시민성 재단(Citizenship Foundation) ····· 73
2. 시민교육협회(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ACT) ····· 74
Ⅲ.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 74
1. 시민교육 교과 내용 ····· 74
2.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 76
제3절 독일 ····· 77
Ⅰ. 개관 ····· 77
Ⅱ. 법교육 일반 ····· 78
1. 김나지움의 사회일반 과목에 의한 법교육 ····· 78
2. 연방정치교육원의 법교육 ····· 79
Ⅲ.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 80
제4절 프랑스 ····· 81
Ⅰ. 개관 ····· 81
Ⅱ. 법교육 일반 ····· 82
1. 초등학교와 중학교 ····· 82
가. 제2기(cycle 2) ····· 83
나. 제3기(cycle 3) ····· 84
다. 제4기(cycle 4) ····· 85
2. 고등학교 ····· 85
가. 2학년(Classe de seconde) ····· 86

나. 1학년(Classe de premie`re) ····· 87
Ⅲ.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 89
제5절 일본 ····· 89
제4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 관련 교과 분석 ····· 91
제1절 개관 ····· 93
제2절 초등학교 ····· 94
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요 ····· 94
Ⅱ. 도덕과 ····· 94
1. 내용 체계 ····· 94
2.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성취기준 ····· 96
가. 타인과의 관계 영역 ····· 96
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 97
Ⅲ. 사회과 ····· 98
1. 내용 체계 ····· 98
2.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별 성취기준 ····· 99
가.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 ····· 99
나.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 ····· 103
제3절 중학교 ····· 105
Ⅰ. 중학교 교육과정 개요 ····· 105
Ⅱ. 도덕과 ····· 106
1. 내용 체계 ····· 106
2.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별 성취기준 ····· 106
가. 타인과의 관계 영역 ····· 106
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 107
Ⅲ. 사회과 ····· 108
1. 내용 체계 ····· 108
2.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별 성취기준 ····· 109
가. '일상생활과 법' 단원 ····· 109
나. '인권과 헌법' 단원 ····· 110
다.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 ····· 111
제4절 고등학교 ····· 113
Ⅰ. '통합사회' 과목 ····· 113
1. 내용 체계 ····· 113
2.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별 성취기준 ····· 114
가. 인권 보장과 헌법 ····· 114
나. 사회 정의와 불평등 ····· 115
Ⅱ. '정치와 법' 과목 ····· 116
1. 내용 체계 ····· 116

2. 단원별 내용과 성취 기준 ····· 118
가. 민주주의와 헌법 ····· 118
나. 민주 국가와 정부 ····· 119
다. 정치과정과 참여 ····· 121
라. 개인 생활과 법 ····· 122
마. 사회생활과 법 ····· 123
바. 국제 관계와 한반도 ····· 125
제5장 수준별 강의안의 개발 ····· 127
제1절 강의안의 구성 ····· 129
Ⅰ. 강의대상자의 구분 ····· 129
Ⅱ. 강의주제의 선정 ····· 129
Ⅲ. 강의방식 ····· 129
제2절 강의안의 실제 ····· 130
Ⅰ. 초등학교 교사용 강의안 ····· 130
1. [강의안]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법 ····· 130
2. [강의안] 소설 속 법 이야기 ····· 134
3. [강의안] 학교 안에서의 인권 이야기 ····· 137
4. [강의안] 인터넷과 법 ····· 140
5. [강의안]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 146
6. [강의안] 결혼 이야기 ····· 150
Ⅱ. 중학교 교사용 강의안 ····· 154
1. [강의안] 층간소음과 갈등조정 ····· 154
2. [강의안] 개인적 복수와 사회정의 ····· 157
3. [강의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생각해보기 ····· 161
4. [강의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기 ····· 170
5. [강의안] 이혼 이야기 ····· 174
6. [강의안]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 181
Ⅲ. 고등학교 교사용 강의안 ····· 186
1. [강의안] 사람의 일생과 생활 속의 법률 ····· 186
2. [강의안] 청소년이 일할 때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 189
3. [강의안]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 193
4. [강의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 ····· 198
5. [강의안]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 202
6. [강의안]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 206
7. [강의안] 종교의 자유의 충돌 ····· 212
8. [강의안] 양형 토론하기 ····· 216
제6장 결론 ····· 219

6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The Research on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연구총서 2018-06

연구책임자 : 김현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세용(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유나(前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8년 10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8
제2장 미국 도산제도의 개관 ····· 11
제1절 미국 연방파산법 개요 ····· 13
제2절 미국 도산절차 개관 ····· 13
Ⅰ. 개요 ····· 13
Ⅱ. 제7장 절차 ····· 15
Ⅲ. 제11장 절차 ····· 16
Ⅳ. 제13장 절차 ····· 16
제3절 연방파산법원과 파산법관 ····· 17
Ⅰ. 연방파산법원 ····· 17
1. 사법관할권 ····· 17

2. 연방파산법원의 설치 현황 ····· 19
Ⅱ. 파산법관 ····· 20
제3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연혁 ····· 23
제1절 도입과정 ····· 25
Ⅰ. 개설 ····· 25
Ⅱ. 연방관리관(United States Trustee) 제도의 도입 ····· 25
1. 1898년 연방파산법(Bankruptcy Act of 1898) 제정 이전 ····· 25
2. 1898년 연방파산법(Bankruptcy Act of 1898) ····· 26
3. 1978년 파산개혁법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Bankruptcy Code) ····· 28
가. 파산법원에서의 행정적 기능 분리 ····· 28
나. 파산법관의 지위 확립 ····· 29
다. 연방관리관 제도의 실시 ····· 29
Ⅲ.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도입 ····· 31
1. 1986년 개정법(Bankruptcy Judges, United States Trustees, and Family Farmer Bankruptcy Act) ····· 31
가. 하원에서의 논의 ····· 31
나. 상원에서의 논의 ····· 32
다. 연방법원행정처의 법안 제출 ····· 34
라. 논의 결과 ····· 34
2.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실시 ····· 35
Ⅳ. 연방관리관과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병존 ····· 38
제2절 합헌성 논의 ····· 40
Ⅰ. 개설 ····· 40
Ⅱ. St. Angelo v. Victoria Farms, Inc. 판결 ····· 40
Ⅲ. 전국파산심사위원회(National Bankruptcy Review Commission)의 논의 ····· 41
Ⅳ. 현재의 상황 ····· 44
제4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현황 ····· 47
제1절 연방파산관리인의 개관, 임면, 감독 및 보수 ····· 49
Ⅰ. 연방파산관리인 개관 ····· 49
Ⅱ. 연방파산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 52
Ⅲ. 연방파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 54
Ⅳ. 연방파산관리인의 보수 ····· 55
제2절 연방파산관리인의 조직 ····· 58
Ⅰ. 연방파산관리인의 소속과 지위 ····· 58
Ⅱ.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 58
1. 앨라배마 주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 ····· 58
가. 앨라배마 북부지역 ····· 58
나. 앨라배마 중부지역 ····· 59

다. 앨라배마 남부지역 ····· 59
2. 노스캐롤라이나 주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 ····· 59
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역 ····· 59
나.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역 ····· 60
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역 ····· 60
3.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운영 ····· 61
가. 구성원의 임무 및 역할 ····· 61
나. 팀 운영 ····· 63
다. 구성원의 고용 ····· 63
제3절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 66
Ⅰ. 개관 ····· 66
Ⅱ. 도산절차 유형별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 68
1. 제7장 절차 ····· 68
가. 관리인(trustee) 선임절차 관여 ····· 68
나. 관리인 감독 ····· 70
다. 법원에 대한 관리인 감독 업무 보고 ····· 71
라. 개인채무자의 신청 남용 검토와 기각·전환 신청 ····· 71
마. 면책 불허가 사유의 확인 ····· 72
2. 제11장 절차 ····· 73
가. DIP의 사업 경영 및 사건 관리에 대한 감시·감독 ····· 73
나. 절차 관련 의견 제시 ····· 74
다. 법원에 대한 보고 ····· 74
3. 제13장 절차 ····· 74
가. 상임관리인 임명 ····· 74
나. 상임관리인의 관리감독 ····· 75
Ⅲ. 업무 유형별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 76
1. 사건 관리 업무 ····· 76
가. 신건 접수 시 흠결사항 확인 및 기각신청 ····· 76
나. 심문기일 ····· 76
다. 개별사건 자산 처분 관련 ····· 77
2. 채권자집회 관리 업무 ····· 77
가. 채권자집회(Meetings of Creditors) 등의 주재 ····· 77
나. 개인채무자 신분증명방침 관리 ····· 78
다. 채권자집회 진행과정 ····· 78
라. 채권자집회의 연기 ····· 80
마. 채권자집회의 녹음기록 관리 ····· 81
3. 형사고발 ····· 81
4. 신용상담기관 및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관리 ····· 81

5. 연방파산관리인 중재 프로그램(BA Mediation Program) ····· 82
6. 법원에 대한 보고 ····· 84
제5장 연방관리관 제도와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비교 ····· 85
제1절 연방관리관 제도 ····· 87
Ⅰ. 개관 ····· 87
1. 제도의 도입취지 ····· 87
2. 선임 및 해임 ····· 87
3. 감독 ····· 88
4. 보수 ····· 88
5. 신청건수 ····· 89
Ⅱ. 연방관리관의 조직 ····· 90
1. 구조 및 운영 ····· 90
2. 사무실 직원 고용 ····· 91
3. 비용 및 예산 ····· 91
Ⅲ. 연방관리관의 업무 ····· 92
1. 업무 개관 ····· 92
2. 제7장 절차 관련 업무 ····· 93
가. 도산절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 93
나. 관리인의 선임 관여 및 감독 ····· 93
다. 채권자집회 소집 및 주재 ····· 93
3. 제11장 절차 관련 업무 ····· 94
가. 신건 및 최초기일 명령(First Day Orders) 신청 등의 검토 ····· 94
나.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examiner)의 임명 ····· 94
다. 채권자 등 위원회 구성 및 감독 ····· 95
라. 회생계획과 공시보고서 검토 ····· 95
마. 채권자집회 소집 및 주재 ····· 95
바. 규정 준수 확인(Ensuring Compliance) ····· 96
사. 부당한 절차지연의 방지(Preventing Undue Delay) ····· 96
아. 부정행위(Fraud) 관련 조치 ····· 96
4. 제13장 절차 관련 업무 ····· 96
가. 상임관리인 임명 ····· 96
나. 상임관리인 감독 ····· 97
5. 신용상담기관 및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승인 및 관리 ····· 97
제2절 연방파산관리인과 연방관리관 제도 비교 ····· 98
Ⅰ. 공통점과 차이점 ····· 98
1. 두 제도의 공통점 ····· 98
2. 두 제도의 차이점 ····· 98
Ⅱ.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장점 ····· 100

1. 노력과 비용의 절감 ····· 100
2. 이해관계 충돌 위험의 감소 ····· 101
3.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 ····· 102
Ⅲ.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단점 ····· 103
1. 법원과 연방파산관리인의 관계로 인한 공정성 저해 우려 ····· 103
2. 업무처리의 통일성·조직성 결여 ····· 104
제3절 미국 내 평가 ····· 104
Ⅰ. 개관 ····· 104
Ⅱ.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 ····· 105
Ⅲ. 연방법원행정처의 의견 ····· 106
Ⅳ. 그 밖의 평가 ····· 106
제6장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109
제1절 관리위원회 제도 ····· 111
Ⅰ. 관리위원회의 설치 ····· 111
1. 도입 목적 및 법적 근거 ····· 111
가. 도입 목적 ····· 111
나. 법적 근거 ····· 111
2. 연혁 ····· 111
가. 도입 배경 ····· 111
나. 경과 ····· 112
Ⅱ.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113
1. 관리위원회의 구성 ····· 113
가. 관리위원회의 조직 ····· 113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 114
다. 간사 및 직원 ····· 114
2. 관리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 115
가. 적극적 자격요건 ····· 115
나. 소극적 자격요건 ····· 115
다. 임기 ····· 116
라. 신분보장 ····· 116
마. 보수 ····· 116
바. 지위 ····· 117
사. 복무 ····· 117
3. 관리위원회의 회의 ····· 117
Ⅲ.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118
1. 개요 ····· 118
가. 관리위원회의 업무 ····· 118
나. 관리위원회의 권한 ····· 119

2. 전문가로서 의견제시 업무 ····· 119
가. 도산절차관계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 119
나.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심사 ····· 120
다. 도산절차의 진행상황 평가 ····· 121
라. 그 밖에 도산절차에 필요한 의견의 제시 ····· 121
3. 행정적 처리 업무 ····· 122
4.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 122
5.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 ····· 123
가. 회생절차 ····· 123
나.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 125
6.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업무 ····· 130
가. 법원의 허가사무 위임 ····· 130
나. 위임사무 처리절차 ····· 131
다.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132
Ⅳ. 현행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실제 운영 현황 ····· 133
1. 구성현황 ····· 133
2. 각 절차별 수행 업무 개관 ····· 133
가. 회생절차 ····· 133
나. 파산절차 ····· 134
다. 개인회생절차 ····· 134
라. 소결 ····· 135
3. 실제 운영 현황 -관리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5
가. 관리위원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 135
나. 관리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6
다. 소결 ····· 145
제2절 회생·파산위원회 ····· 146
Ⅰ. 설치 목적 및 근거 규정 ····· 146
1. 설치 목적 ····· 146
2. 근거규정 ····· 147
Ⅱ. 구성 ····· 147
1.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의 위촉 ····· 147
2. 회생·파산위원회의 조직 ····· 148
3.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148
Ⅲ. 회생·파산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149
1. 회생·파산위원회의 업무 ····· 149
가. 업무 범위 ····· 149
나.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 및 해촉 요청 ····· 149
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150

라.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해촉 심사 등 ····· 150
마. 관리인 등 후보자의 적격여부 의견 제시 등 ····· 150
바. 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151
2. 회생·파산위원회의 회의와 권한 ····· 151
가. 회생·파산위원회의 회의 ····· 151
나. 회생·파산위원회의 권한 ····· 151
Ⅳ. 회생·파산위원회의 현황 ····· 152
1. 구성 현황 ····· 152
2. 운영 현황 ····· 152
제3절 현행 도산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3
Ⅰ. 현행 도산감독 제도 및 실무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53
1. 소개 ····· 153
가. 도산절차에서 대심구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 154
나. 법원의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 155
다.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 ····· 157
라.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주장 ····· 157
2. 검토 ····· 158
가. 대심구조 강화 주장에 대하여 ····· 158
나.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 분리 주장에 대하여 ····· 160
다. 도산절차관계인 감독기능 미흡 주장에 대하여 ····· 166
라.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 167
Ⅱ. 시사점 ····· 168
1. 개관 ····· 168
2.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도산감독제도 현황 ····· 168
가. 각 절차별 도산감독기관의 역할 ····· 168
나.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방식 ····· 172
3. 관리위원회, 회생·파산위원회 제도에 대한 시사점 ····· 173
가. 절차관계인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의 강화 ····· 173
나. 관리위원회의 회의체 기능 활성화와 구성의 다양화 ····· 177
Ⅲ. 개선방안 ····· 178
1. 업무보조 인력 지원 ····· 178
가. 업무보조 인력 지원 근거 ····· 178
나.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 ····· 178
다. 업무보조 인력의 충원방법과 규모 ····· 180
2. 관리위원회의 회의체 기능 활성화와 구성의 다양화 ····· 181
가. 회의체로서의 기능 활성화 ····· 181
나. 관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182
3. 팀별 운영방식 또는 총괄관리위원제의 도입 ····· 183

가. 관리위원 구성의 차등화 ····· 183
나. 업무별 팀제 운영 도입 ····· 184
4. 회생·파산위원회의 지위 강화 ····· 186
가. 조직·권한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 명시 ····· 186
나. 관리위원의 위촉·해촉 및 감독 권한 부여 ····· 186
다.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 187
제7장 결론 ····· 191
1. 도산절차에서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의 분리 여부 ····· 193
2. 도산절차 관리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5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95
나. 개선방안 ····· 196

7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A Study on 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Constitutional Judgment of Court

연구총서 2018-08

연구책임자 : 이종엽(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경(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0월 1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의 전제와 한계 ····· 6
제2장 법원의 헌법판단과 위헌심사기준 ····· 9
제1절 법원의 헌법판단 ····· 11
Ⅰ. 법원의 헌법판단의 태양 ····· 11
1.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분장 ····· 11
2. 헌법판단작용의 하나로서 법률해석·적용 ····· 11
Ⅱ. 합헌적 법률해석 ····· 13
1. 의의와 기능 ····· 13
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 ····· 13

나.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능 ····· 14
2. 필요성 ····· 15
가. 헌법상 규범통제구조의 실현 ····· 15
나. 판결의 정당성 확보 ····· 15
다. 기본권 보장 ····· 16
3. 한계 ····· 16
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원리에 의한 한계 ····· 16
나. 해석적 한계 ····· 16
Ⅲ. 심사기준 정립의 필요성 ····· 17
제2절 위헌심사기준의 의미 ····· 18
Ⅰ. 심사기준의 의미 ····· 18
Ⅱ. 심사의 척도 ····· 18
Ⅲ. 심사의 강도 ····· 19
제3장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 21
제1절 과잉금지원칙 ····· 23
Ⅰ. 서론 ····· 23
1. 연혁 및 확대 ····· 23
2. 비례의 원칙과의 차이 ····· 23
Ⅱ. 헌법적 근거 ····· 24
1. 헌법 제37조 제2항 ····· 24
2. 법치국가원리 ····· 25
3. 헌법재판소의 견해 ····· 25
Ⅲ.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 26
1. 기본권의 분류에 따른 위헌심사기준 ····· 27
가.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화 ····· 27
나. 복수의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 27
2. 자유권 제한입법에 대한 3단계 위헌심사 ····· 28
3. 자유권 제한입법에서 완화된 과잉금지심사 ····· 29
가. 필요성 ····· 29
나. 관련 결정 ····· 29
Ⅳ.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대상 ····· 30
1. 서론 ····· 30
2. 목적의 정당성 ····· 30
가. 내용 ····· 30
나. 관련 결정 ····· 31
3. 수단의 적절성 ····· 32
가. 내용 ····· 32
나. 관련 결정 ····· 33

4. 피해의 최소성 ····· 34
가. 내용 ····· 34
나. 관련 결정 ····· 35
5. 법익의 균형성 ····· 38
가. 내용 ····· 39
나. 관련 결정 ····· 40
6. 법정형과 과잉금지원칙 ····· 43
가. 서설 ····· 43
나. 일반적인 심사기준 ····· 43
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사례 ····· 43
Ⅴ.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46
1. 서론 ····· 46
2. 분석대상 결정 ····· 47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차이 ····· 48
가. 서설 ····· 48
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 48
다.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 52
4. 시사점 ····· 63
가. 적정한 규범목적의 파악 ····· 63
나. 합헌결정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재검토 ····· 64
다. 피해침해성 판단의 정밀화 ····· 64
Ⅵ.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 66
1. 서론 ····· 66
2.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의 독자성 여부 ····· 66
가. 과잉금지원칙으로 이해하는 견해 ····· 66
나.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 이해하는 견해 ····· 67
다. 관련 결정 ····· 67
3.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 ····· 68
가. 서설 ····· 68
나. 관련 결정 ····· 69
제2절 신뢰보호원칙 ····· 72
Ⅰ. 서론 ····· 72
1. 헌법상 의의 및 근거 ····· 72
2. 한계 ····· 73
Ⅱ.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 ····· 73
1. 일반적 심사기준 ····· 74
2. 구체적 심사기준 ····· 74
가. 신뢰이익의 헌법적 보호가치 ····· 74

나. 침해의 중한 정도 ····· 80
다.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 82
라. 조세법 영역에서의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84
3.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 88
가. 적용요건의 구별 ····· 88
나. 신뢰보호원칙의 독자성 ····· 89
Ⅲ.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91
1. 서론 ····· 91
2. 분석대상 결정 ····· 91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심사의 차이 ····· 92
가. 서설 ····· 92
나. 적용 실제 및 시사점 ····· 93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 ····· 97
Ⅰ. 서설 ····· 97
1. 헌법상 의의와 근거 ····· 97
2.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범적 의미 ····· 98
Ⅱ.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 ····· 98
1. 수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 ····· 98
가. 심사기준 ····· 99
나. 관련 결정 ····· 99
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101
가. 의의 ····· 101
나.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 102
다.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 104
Ⅲ.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른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108
1. 서론 ····· 108
2. 분석대상 결정 ····· 108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차이 ····· 109
가. 서설 ····· 109
나. 적용 실제 및 시사점 ····· 109
제4절 포괄위임금지원칙 ····· 115
Ⅰ. 행정입법권 일반 ····· 115
1. 헌법상 의의와 기능 ····· 115
2. 헌법적 근거와 한계 ····· 115
Ⅱ.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 116
1.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일반 ····· 116
가. 의의 ····· 116
나. 위임의 구체성 ····· 117

다. 예측가능성 ····· 118
라.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과의 관계 ····· 118
2. 처벌법규의 심사기준 ····· 119
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 119
나.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성 ····· 119
다. 형벌법규에 대한 위임의 한계 ····· 120
라. 관련 결정 ····· 120
3. 조세법규의 심사기준 ····· 126
가. 조세법률주의 일반 ····· 126
나.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 126
다. 관련 결정 ····· 128
4. 처벌법규와 조세법규를 제외한 영역의 심사 ····· 137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 137
나. 대법원의 판결 ····· 141
5. 재위임의 한계 ····· 145
가. 판단기준 ····· 145
나. 관련 결정 ····· 145
Ⅲ.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른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147
1. 서론 ····· 147
2. 분석대상 결정 ····· 147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차이 ····· 148
가. 서설 ····· 148
나. 적용 실제 및 시사점 ····· 148
제5절 적법절차원칙 ····· 153
Ⅰ. 서론 ····· 153
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 153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 153
가. 헌법 조항 ····· 153
나. 적용범위 ····· 153
3.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154
Ⅱ. 적법절차원칙의 내용 ····· 155
1. 실체적 적법절차 ····· 155
2. 절차적 적법절차 ····· 155
Ⅲ.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구체적 적용 ····· 156
1. 서설 ····· 156
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결정 ····· 157
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 ····· 163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과 다른 헌법상 원리와의 관계 ····· 166

가. 교원지위 법정주의 ····· 166
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67
다. 형사절차상 원리 ····· 168
Ⅳ.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168
1. 서론 ····· 168
2. 분석대상 결정 ····· 168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심사의 차이 ····· 169
가. 서설 ····· 169
나. 적용 실제 및 시사점 ····· 170
제4장 기본권 영역에 따른 개별적 위헌심사기준 ····· 175
제1절 평등권 ····· 177
Ⅰ. 평등권의 헌법상 의의와 내용 ····· 177
1. 헌법상 의의 ····· 177
2. 내용 ····· 177
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177
나. 법 적용의 평등과 법 내용의 평등 ····· 178
다. 차별금지의 기준과 차별금지의 영역 ····· 178
Ⅱ.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위헌심사기준 ····· 179
1. 위헌심사의 독자적 구조 ····· 179
2. 차별취급의 존재확인 ····· 180
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의 구별기준 ····· 180
나. 관련 결정 ····· 182
3. 차별대우의 헌법적 정당성 ····· 187
가. 일반론 ····· 187
나. 자의금지원칙 ····· 187
다. 비례의 원칙 ····· 195
Ⅲ. 평등심사의 실제 및 시사점 ····· 203
1. 서론 ····· 203
2. 분석대상 결정 ····· 204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의 차이 ····· 205
가. 서설 ····· 205
나. 적용 실제 및 시사점 ····· 205
다. 소결 ····· 218
제2절 직업의 자유 ····· 219
Ⅰ. 서론 ····· 219
1. 헌법상 의미와 성격 ····· 219
가. 포괄적 기본권 ····· 219
나. 성격 및 기능 ····· 220

2. 보호영역 ····· 220
가. 헌법상 직업의 개념 ····· 220
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 221
Ⅱ. 직업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 225
1. 단계이론의 수용 ····· 225
2.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26
가. 내용 및 심사 ····· 226
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심사기준 ····· 227
다. 관련 결정 ····· 228
3.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229
가. 일반 ····· 229
나.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230
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234
Ⅲ.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 236
1. 서론 ····· 236
2.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일반 ····· 237
가. 자격의 개념 및 유형 ····· 237
나. 실무상 문제되는 자격제도 유형 ····· 237
3. 자격제도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 238
가. 일반론 ····· 238
나. 제한 내용에 따른 관련 결정 ····· 239
4. 비판적 검토 ····· 244
Ⅳ. 직업의 자유에 대한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246
1. 서론 ····· 246
2. 분석대상 결정 ····· 246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의 차이 ····· 247
가. 서설 ····· 247
나. 적용 실제 및 시사점 ····· 247
제3절 재산권 ····· 252
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의와 기능 ····· 252
1. 헌법규정 ····· 253
2. 재산권 보장의 의의와 기능 ····· 253
가. 자유보장적 기능 ····· 253
나. 사회적 연관성 ····· 254
다. 관련 선례 ····· 254
3.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특징 ····· 255
Ⅱ. 재산권의 보호범위와 내용 ····· 257
1. 재산권의 보호범위 ····· 257

가. 의의와 범위 ····· 257
나. 관련 선례 ····· 258
2. 재산권 보장의 내용 = 존속보장 ····· 259
Ⅲ. 재산권 제한입법의 위헌심사기준 ····· 260
1. 재산권 제한의 종류 ····· 260
가. 재산권의 내용형성적 제한 ····· 260
나. 재산권의 공용침해적 제한 ····· 261
2.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관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61
가. 논의의 배경 ····· 261
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내용 ····· 262
3. 위헌심사기준 ····· 266
가. 심사기준 결정의 기준 ····· 266
나. 심사척도 ····· 268
다. 구체적인 고찰 ····· 268
Ⅳ.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280
1. 서론 ····· 280
2. 분석대상 결정 ····· 280
3.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차이 ····· 280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 280
나.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 283
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 286
제4절 사회적 기본권 ····· 290
Ⅰ. 서론 ····· 290
1.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 ····· 290
2. 사회적 기본권의 기능 ····· 291
Ⅱ.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적 특성 ····· 292
1. 방어권에 대비되는 급부권 ····· 292
2. 기본권 제한 구조의 상이성 ····· 292
3. 권리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 293
4. 사실적 가능성에 의하여 제약되는 권리 ····· 294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94
1. 학계의 견해 ····· 294
가. 객관적 규범설 ····· 295
나. 추상적 권리설 ····· 295
다. 구체적 권리설 ····· 295
라.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 296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296
가. 일반적 추상적 권리설 ····· 296

나. 예외적 구체적 권리설 ····· 298
3. 검토 ····· 298
가. 사회적 기본권의 논란에 대한 이해 ····· 298
나. 사회적 기본권 규범의 다층적 성격 ····· 300
다. 기본권규범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 301
Ⅳ. 구체적인 심사기준 ····· 302
1. 서설 ····· 302
2. 심사기준 ····· 303
가. 사회적 기본권에 직접 적용되는 심사기준 ····· 303
나. 간접적·병행적 방법에 의한 심사기준의 강화 ····· 309
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규범통제의 실제 및 시사점 ····· 313
1.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작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 ·· 313
2.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최소한도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 ····· 314
가. 헌법재판소의 판례 ····· 314
나. 법원의 판례 ····· 316
3. 시사점 - 논의의 결론에 대신하여 ····· 319
제5장 결론 ····· 323

71.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Former Chief Justice CHO Jin-man

연구총서 2018-09

연구책임자 :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홍(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은상(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유나(前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8년 11월 20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2장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활동 ····· 5
제1절 출생과 성장과정 ····· 7
제2절 조선인 최초의 부장판사 ····· 11
제3절 판사 조진만의 판결 ····· 16
제4절 변호사로서의 활동 ····· 22
제5절 법무부장관 취임 ····· 26
제6절 대법원장 선거 ····· 30
Ⅰ. 대법관 추천 실패와 제일변호사회 회장 선출 ····· 30
Ⅱ. 대법원장 선거 출마 ····· 31
제3장 대법원장으로서의 발자취 ····· 35
제1절 제3·4대 대법원장 역임 ····· 37
Ⅰ. 제3대 대법원장 취임 ····· 37

Ⅱ. 제4대 대법원장 취임 ····· 39
제2절 판결서의 한글화·가로쓰기화 및 간이화 ····· 43
Ⅰ. 판결서의 한글화·가로쓰기화 ····· 43
Ⅱ. 판결서의 간이화 ····· 53
제3절 소송절차의 개선 ····· 55
Ⅰ. 교호신문제도 도입 ····· 55
Ⅱ. 재판의 신속처리 ····· 62
제4절 법원조직의 개편 ····· 64
Ⅰ.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 설치 ····· 65
Ⅱ. 사법대학원 설립 ····· 69
Ⅲ. 가정법원 신설 ····· 72
Ⅳ. 재판연구원제도 도입 ····· 76
Ⅴ. 민·형사지방법원 분리 ····· 79
제5절 법원문화의 개선 ····· 83
Ⅰ. 탈권위주의 ····· 83
Ⅱ. 공정한 인사 ····· 86
Ⅲ. 법관상 정립-조진만 대법원장이 추구한 법관상 ····· 87
제4장 다양한 평가 ····· 91
제1절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활동에 대한 평가 ····· 93
제2절 대법원장으로서의 평가 ····· 96
제3절 인간 조진만에 대한 회고 ····· 107
제5장 맺으며 ····· 111

72.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Complex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 An Analysis of Multidistrict Litigation

연구총서 2018-10

연구책임자 : 이제우(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2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Ⅰ. 연구의 방법 ····· 4
Ⅱ. 연구의 범위 ····· 5
제2장 복잡소송의 정의와 유형 ····· 7
제1절 복잡소송의 정의 ····· 9
제2절 집단피해 불법행위 ····· 9
Ⅰ. 개념 정의 ····· 9
Ⅱ.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유형 ····· 11
1. 대형 참사(Mass Accident) ····· 11
2. 환경오염 불법행위(Toxic Tort) ····· 11
3.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12

4. 혼합된 형태의 집단피해 불법행위 ····· 13
제3절 복잡소송의 유형 ····· 13
Ⅰ.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 14
1. 개념 정의 ····· 14
2. 변천 ····· 14
3.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 18
4. 정리 ····· 19
Ⅱ.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 ····· 19
1. 개념 및 발전 배경 ····· 19
2. 시범소송(Bellwether Trial) ····· 26
제4절 유럽의 복잡소송제도 ····· 33
Ⅰ. 유럽연합(EU) ····· 33
Ⅱ. 독일 ····· 34
Ⅲ. 프랑스 ····· 34
Ⅳ. 영국 ····· 35
제5절 소결 ····· 35
제3장 광역소송의 주요 사례 ····· 37
제1절 석면(Asbestos) 사건 ····· 39
Ⅰ. 사건의 개요 ····· 39
Ⅱ.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의 이송결정 배경 ····· 41
Ⅲ. 제1단계: 대표당사자소송을 통한 화해시도(Class Action Effort) ····· 42
Ⅳ. 제2단계: 입법을 통한 시도(Legislative Effort) ····· 43
Ⅴ. 제3단계: 사건별 처리(Claim by Claim Resolution) ····· 43
1. 새로운 접근의 원칙: 분할(Disaggregation) ····· 44
2. 석면소송의 처리실무 ····· 45
제2절 댈콘 쉴드(Dalkon Shield) 사건 ····· 52
Ⅰ. 사건의 개요 ····· 52
Ⅱ.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이송결정 배경 ····· 53
Ⅲ. 추가이송 중지 및 집단소송 승인 시도 ····· 54
Ⅳ. 회생신청 이후 신탁기금(Trust Fund)의 설치에 의한 해결 ····· 55
제3절 딥워터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사건 ····· 56
Ⅰ. 사건의 개요 ····· 56
Ⅱ.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이송결정 배경 ····· 58
Ⅲ. 변론전 절차 ····· 59
1. 소송당사자 ····· 59
2. 청구 유형(Pleading Bundle) ····· 60
3. 적용가능한 법률 ····· 62
4. 증거개시와 증언녹취 ····· 63
Ⅳ. 재판(Trial) ····· 63

1. 제1단계 소송 ····· 64
2. 제2단계 소송 ····· 64
Ⅴ. 화해(Settlement) ····· 65
Ⅵ. 사건진행내역 ····· 66
제4절 바이옥스(Vioxx) 사건 ····· 69
Ⅰ. 사건의 개요 ····· 69
Ⅱ. 이송결정 배경 ····· 70
Ⅲ. 변론전 절차 및 시범소송 ····· 71
Ⅳ. 집단화해 승인 ····· 72
Ⅴ. 사건진행내역 ····· 73
제5절 연방재난관리청(FEMA) 사건 ····· 74
Ⅰ. 사건의 개요 ····· 74
Ⅱ. 이송결정 배경 ····· 75
Ⅲ. 변론전 절차 ····· 76
1. 최초변론기일 ····· 76
2. 집단인증신청 ····· 76
Ⅳ. 시범소송 ····· 77
Ⅴ. 집단화해 승인 ····· 78
1. 집단화해 ····· 78
2. 공동이익변호사비용의 분배 ····· 79
3. 집단화해기금의 분배 ····· 80
Ⅵ. 사건진행내역 ····· 81
제6절 비만치료제(Diet Drug) 사건 ····· 82
Ⅰ. 사건의 개요 ····· 82
Ⅱ. 이송결정 배경 ····· 84
Ⅲ. 변론전 절차 및 시범소송 ····· 85
Ⅳ. 화해 ····· 87
1. 화해계약의 승인 ····· 87
2. 화해계약의 수정 ····· 91
Ⅴ. 사건의 해결 ····· 92
Ⅵ. 사건진행내역 ····· 92
제4장 광역소송의 특성 ····· 95
제1절 광역소송의 절차 ····· 97
Ⅰ. 이송신청(Motion for Transfer) ····· 97
Ⅱ. 이송결정시 고려사항 ····· 100
Ⅲ. 추가이송(Tag-along) 사건 ····· 102
Ⅳ. 이송법원 및 수이송법원의 역할 ····· 103
Ⅴ. 변론전 절차 ····· 104
1. 변론전 절차의 종류 ····· 104

2. 증거개시(Discovery) ····· 105
3. 변론전 절차의 종료 ····· 106
제2절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 106
Ⅰ. 현황 ····· 106
1. 사건(Docket) 유형 ····· 107
2. 계속 중인 소송(Pending Action) ····· 108
Ⅱ. 활동 내용 및 평가 ····· 109
1. 이송법원으로의 환송사건 증가 ····· 111
2. 이송신청 인용의 감소 ····· 112
제3절 특별 위임(Special Referral) ····· 113
Ⅰ. 부판사(Magistrate Judge) ····· 113
1. 부판사 제도 개관 ····· 113
2. 권한 ····· 114
Ⅱ.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 116
1. 특별관리인 제도 개관 ····· 116
2. 권한 ····· 117
3. 직무 유형 ····· 121
4. 특별관리인 선정에 대한 이의 및 보수 ····· 127
5. 실제 특별관리인을 역임한 변호사들에 대한 고찰 ····· 128
6. 선정명령(Appointment Order) ····· 132
7. 특별관리인의 윤리문제 ····· 135
제4절 광역소송 사건처리의 특색 ····· 139
Ⅰ. 법원의 적극적인 절차감독 ····· 139
Ⅱ. 대리인의 역할 ····· 140
Ⅲ. 변론준비기일 ····· 140
Ⅳ. 최종 변론준비기일 ····· 141
제5절 증거개시 ····· 142
Ⅰ. 판사의 권한 ····· 142
Ⅱ. 증거개시의 제한 ····· 143
1. 기간제한 ····· 143
2. 양적 제한 ····· 144
3. 단계적, 순차적 증거개시 ····· 144
4. 대상의 우선순위 정하기 ····· 144
5. 당사자별 순차적 증거개시 ····· 145
6. 증거개시의 형식 ····· 145
Ⅲ. 판사 권한의 한계 ····· 145
Ⅳ. 사례 ····· 146
제6절 화해 ····· 147
Ⅰ. 서설 ····· 147

Ⅱ. 딥워터호라이즌 사건의 E&PD 화해계약서 ····· 148
1. E&PD 화해 이전: 걸프연안소송기구(Gulf Coast Claims Facility) ····· 148
2. E&PD 화해의 성립 ····· 148
3. 화해의 운영 ····· 149
4. 보상금 지급 등의 운용방식 ····· 150
5. 보상 가능한 손실의 유형 ····· 150
6. 보상대상자 ····· 155
7. 개인(individual) ····· 155
8. 화해안 승인 ····· 157
제7절 변호사비용(Attorney Fees) ····· 158
Ⅰ. 미국식 규칙(American Rule) ····· 158
Ⅱ. 공동자산이론(Common Fund Doctrine) ····· 159
1. 로드스타 방식(lodestar approach) ····· 161
2. 배상액의 일정비율(percentage of recovery) 산정방식 ····· 161
3. 변호사비용의 분배 ····· 162
제5장 주법원의 복잡사건 처리제도 ····· 163
제1절 주법원의 복잡사건 처리제도 현황 ····· 165
제2절 캘리포니아주 ····· 167
Ⅰ. 복잡사건의 개념 및 고려 요인 ····· 167
Ⅱ. 복잡사건 처리절차 ····· 168
1. 인정/불인정 신청과 이에 관한 판단 ····· 168
2. 사건의 병행 신청 및 담당 판사의 지정 ····· 168
3. 사건 병행 담당 판사의 의무 ····· 169
제3절 뉴저지주 ····· 169
Ⅰ. 복잡소송 처리절차 ····· 169
1. 다중카운티법원 관할사건(Multicounty Litigation) 처리절차 ····· 170
2. MCL 처리절차 ····· 171
Ⅱ. 광역소송과 MCL의 차이점 ····· 173
제6장 광역소송에 대한 평가 ····· 175
제1절 광역소송의 효용 ····· 177
Ⅰ.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 ····· 177
Ⅱ. 적극적 사건관리 ····· 177
Ⅲ. 특별위임을 통한 효율적 사건관리 ····· 178
제2절 광역소송의 문제점 ····· 179
Ⅰ. 공통의 사실관계 인정의 어려움 ····· 179
Ⅱ. 과도한 증거개시와 시범소송의 실패로 인한 절차의 지연 ····· 179
Ⅲ. 화해의 공정성 ····· 180
제3절 정리 ····· 181

제7장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의 시사점 ····· 183

제1절 우리나라의 복잡소송 사례 ····· 185
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 185
Ⅱ. 가습기 살균제 사건 ····· 187
Ⅲ. 개인정보 유출사건 ····· 188
제2절 우리나라의 집단분쟁해결법제 ····· 189
Ⅰ. 단체소송제도 ····· 189
Ⅱ. 집단소송제도 ····· 190
Ⅲ. 최근의 입법논의 ····· 191
제3절 관할의 집중 ····· 192
Ⅰ. 사건의 관할 ····· 192
Ⅱ. 사건의 이송 ····· 193
1. 법원 내에서의 재배당, 이송 ····· 193
2. 타법원으로의 이송 ····· 194
Ⅲ. 사건의 분류 및 병합 ····· 197
1. 사건의 분류 ····· 197
2. 사건의 병합 방식 ····· 197
제4절 법원의 역할 ····· 198
Ⅰ.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 ····· 199
Ⅱ. 절차적 유연성 확보 ····· 200
1. 법관의 재량범위 ····· 200
2. 절차진행의 창의성 ····· 200
Ⅲ. 적극적 소송지휘 ····· 201
1. 구체적 운영방안의 마련 ····· 201
2. 적극적 석명준비명령 ····· 202
3. 손해액의 산정 및 분배 ····· 202
Ⅳ. 시범소송 – 대표사건 우선 진행 ····· 203
Ⅴ. 화해절차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 204
제5절 증거자료의 확보 ····· 205
Ⅰ. 재판자료 확보의 필요성 ····· 205
Ⅱ. 현행법상 증거수집 방법 ····· 206
1. 증거보전절차 ····· 206
2. 문서제출명령 제도 ····· 207
Ⅲ.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 도입 검토 ····· 208
제6절 인력의 확충 ····· 209
Ⅰ. 재판부의 구성 ····· 209
1. 업무연속성 확보 ····· 209
2. 재판부 구성 방안 ····· 209
Ⅱ. 재판보조인력의 확충 ····· 210

1. 조정위원회 ····· 210
2. 전문심리위원(Expert Commissioner) ····· 210
3. 사법보좌관 ····· 212
4. 관리인/관리위원 제도 ····· 212
5. 조사위원/회생위원 제도 ····· 215
제8장 결론 ····· 217

73. 아시아·태평양 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Establishing an Asia-Pacific Court of Human Rights: Feasibility and Strategies

- Comparative Research on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

연구총서 2018-11

연구책임자 :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현존하는 지역별 인권법원의 설립 경과와 현황 ····· 7

제1절 개관 ····· 9

Ⅰ. 지역인권체제의 등장 배경 ····· 9

Ⅱ. 지역인권체제의 구성요소 ····· 11

Ⅲ. 지역인권체제의 설립 경과 ····· 13

1. 지역인권체제의 구축 및 발전 ····· 13

2. 지역인권체제(규범, 기구, 이행) 발전 양상의 특징 ····· 17

3. 지역인권법원의 역할 및 한계 ····· 18

Ⅳ.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 18

제2절 유럽 ····· 20
Ⅰ. 개관 ····· 20
Ⅱ. 유럽인권체제의 형성 ····· 21
1. 유럽평의회 설립 ····· 21
가. 서론 ····· 21
나. 역사적 배경 ····· 23
다. 1943년~1949년 유럽통합운동 전개와 유럽평의회 설립 ····· 25
2. 유럽인권협약 채택 ····· 39
가. 서론 ····· 39
나. 유럽인권협약 채택 과정 ····· 41
다. 1950년 유럽인권협약 ····· 44
3.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법원 설립 및 초기 운용 ····· 53
가. 유럽인권위원회 ····· 53
나. 유럽인권법원 ····· 55
Ⅲ. 유럽인권체제의 발전적 전개 ····· 59
1. 서론 및 배경 ····· 59
2. 실체적 보장 권리 범위 확장 ····· 60
가.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에 의한 확장 ····· 61
나. 사회권헌장 등 별도 인권규범 채택 ····· 62
3. 절차적 권리구제 장치 강화(인권위원회 폐지 및 상설인권법원 설치) ····· 63
가. 배경 및 개관 ····· 63
나. 제11의정서에 의한 개정 ····· 65
다. 제14의정서에 의한 개정 ····· 68
라. 제15의정서에 의한 개정 ····· 69
마. 제16의정서에 의한 개정 ····· 69
4. 판결의 이행 감독 장치 강화 ····· 70
Ⅳ. 유럽인권법원 현황 및 평가 ····· 72
1. 현행 구성 및 소송 절차 ····· 72
2. 재판 현황 ····· 73
가. 사건청원 통계 및 현황 ····· 73
나. 판결 통계 및 현황 ····· 79
Ⅴ. 결어 ····· 83
제3절 미주 ····· 84
Ⅰ. 개관 및 배경 ····· 84
Ⅱ. 미주인권체제의 형성 및 발전 ····· 86
1. 미주기구 설립 ····· 86
가. 설립 배경 ····· 86
나. 미주기구헌장 ····· 88
다. 조직 및 주요 기관 ····· 89
2. 미주인권선언 채택 ····· 89

가. 채택 배경 ····· 89
나. 내용 ····· 91
다. 법적 지위 ····· 91
3. 미주인권위원회 설립 및 발전 ····· 92
가. 설립 배경 ····· 92
나.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의 발전 과정 ····· 93
4. 미주인권협약 채택 및 발효 ····· 96
가. 채택 배경 ····· 96
나. 내용 ····· 98
다. 협약 채택에 따른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법원의 이중 구조 ····· 99
5. 미주인권법원 설립 ····· 100
6. 실체적 보장 권리 범위 확장 ····· 101
가.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의정서 ····· 101
나. 법적 구속력 있는 미주협약 ····· 102
다.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 등 ····· 105
Ⅲ. 미주인권위원회 및 미주인권법원 현황 ····· 105
1. 미주인권위원회 ····· 105
가. 구성 ····· 105
나. 관할 및 운용 현황 ····· 106
2. 미주인권법원 현황 ····· 113
가. 구성 ····· 113
나. 관할 및 운용 현황 ····· 113
Ⅳ. 결어 ····· 116
제4절 아프리카 ····· 117
Ⅰ. 개관 ····· 117
1. 아프리카 지역통합의 배경 ····· 117
2. 범지역적 체제와 소지역 체제의 병행적 발전 ····· 118
가. 범지역적 단위 ····· 118
나. 소지역단위 ····· 119
Ⅱ. 범아프리카 인권체제의 형성 및 발전 ····· 121
1. 범아프리카 인권체제 형성 ····· 121
가. 아프리카단결기구 설립 ····· 121
나. 아프리카인권헌장 채택 ····· 122
다.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설립 ····· 127
라. 아프리카연합 출범 ····· 131
마. 아프리카인권법원 설립 ····· 132
2. 범아프리카 인권체제 발전 및 현황 ····· 137
가. 실체적 보장 권리 범위 확장 ····· 137
나. 절차적 권리구제 운영 현황 및 발전 ····· 138
다. 판결(결정)의 이행 감독 장치 강화 노력과 한계 ····· 140

Ⅲ. 결어 ····· 141
제3장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의 설립 전망과 과제 ····· 143

제1절 개관 ····· 145

제2절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정의 ····· 147
Ⅰ. ‘아시아’ 혹은 ‘아시아 · 태평양’ 개념의 성질 ····· 147
Ⅱ. 현존하는 ‘아시아’ 혹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분류 기준 ····· 150

제3절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의 필요성 ····· 155
I. 지역인권체제에 의한 인권의 보충적 보호의 필요성 ····· 157
1. 개인적 수준 ····· 158
2. 국가적 수준 ····· 161
3. 지역적 수준 ····· 166
4. 국제적 수준 ····· 171
Ⅱ.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의 특수한 필요성 ····· 172
1. 아시아 · 태평양에 만연한 대표적인 인권문제 ····· 172
가. 아동 권리 ····· 173
나. 여성 인권(성차별 및 성폭력) ····· 173
다. 장애인 ····· 174
라. 인신매매 ····· 176
마. 자의적 구금, 불법체포, 강제납치, 고문 등 ····· 176
바. 난민과 실향민 ····· 177
사. 기후 변화와 환경권 ····· 178
아. 기타 ····· 179
2. 아시아 · 태평양에의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특수한 한계 ····· 179
Ⅲ. 지역적 단위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제’의 필요성 ····· 181

제4절 아시아 · 태평양인권체제 설립에 대한 장애요인 ····· 188
Ⅰ.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 ····· 189
Ⅱ.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 상대주의 ····· 192
Ⅲ. 경제개발 우선적 사고와 주권 개념의 강조 ····· 194
Ⅳ. 아시아 국가 간 연합을 저해하는 역사적 배경 ····· 196
Ⅴ. 아시아 내 국가들의 지역인권보장체제 창설에 대한 의지 및 리더십 결여 ····· 198
Ⅵ. 결어 ····· 199

제5절 아시아 · 태평양인권체제 설립 제언 ····· 200
Ⅰ. 개관 ····· 200
Ⅱ. 지역인권체제 출범의 바탕이 되는 정황적 요건과 아시아 · 태평양 ····· 201
1. 지역통합 수준의 변화와 지역 내 정치적 합의기구 출범 가능성 ····· 202
가. 범지역적 통합체의 등장 ····· 202
나. 소지역단위 기구의 발전 ····· 206
다. 기타 개별 국가들의 노력 및 시사점 ····· 210
2. 지역 내 인권 아젠다의 확산(아시아인권체제의 맹아) ····· 211

가. 지역인권규범의 맹아 ····· 212
나. 지역인권기구의 등장 ····· 216
다. 소결 ····· 219
Ⅲ. 아시아‧태평양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 219
1. 개관 ····· 219
2. 성공적인 지역인권체제 정착을 위한 3가지 선결요건 ····· 220
가. 지역 국가의 헌신 ····· 221
나. 실효적이고 공정한 절차 마련 및 운용 ····· 224
다.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 강화 ····· 230
3. 설립 방안 모색 ····· 232
가. 좁은 접근법 ····· 233
나. 넓은 접근법 ····· 233
다. 네트워크 접근법 ····· 233
라. 평가 및 결론 ····· 234
4. 네트워크 접근법에 기반한 지역인권체제 구축의 제언 ····· 235
가. 기존의 소지역단위 정치적 연합체를 중심으로 인권체제 구축 방안 ····· 235
나. 지역 내 공통의 인권문제 중심으로 개별 지역인권체제 구축 방안 ····· 236
다.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일반 지역인권조약을 채택하는 방안 ····· 238
Ⅳ.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할 ····· 242
1.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올바른 원용의 필요성 ····· 242
2. 아시아‧태평양 내 사법협력을 통한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 ····· 244
3. 지역인권체제 설립 논의 과정을 주도 내지 직접적 참여 ····· 246
제4장 결론 ····· 249

7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연구총서 2018-12

연구책임자 : 오규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2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 9

제1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연혁과 최근 동향 ····· 11
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연혁 ····· 11
1. 1977년 제정 ····· 11
2. 1988년 개정 ····· 12
3. 1998년 개정 ····· 12
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실무의 최근 동향 ····· 13
1. 제재금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 ····· 13
2. 개인에게 선고된 구금형 기준 상위 10인 ····· 15
3. 최근 10년간의 FCPA 관련 통계 ····· 16
가. 최근 10년간 법집행 대상 기업의 수 ····· 16
나. 최근 10년간 기업에 부과된 제재금액 ····· 17
다. 최근 10년간 법집행 대상 개인의 수 ····· 20
4.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에 대한 비판 ····· 21
제2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 ····· 22

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기본 체계 ····· 22
Ⅱ. 반뇌물규정 ····· 22
1. 개요 ····· 23
2.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의 증뢰죄 ····· 23
가. 해당 조문(15 U.S.C. § 78dd-1) ····· 23
나. 구성요건 ····· 26
3. 미국 국내업체(Domestic Concern)의 증뢰죄 ····· 48
가. 해당 조문(15 U.S.C. § 78dd-2) ····· 48
나. § 78dd-1과의 비교 ····· 51
다. 미국 국내업체의 범위 ····· 51
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등 ····· 52
4. 미국증권발행회사도 미국 국내업체도 아닌 자의 증뢰죄 ····· 52
가. 해당 조문(15 U.S.C. § 78dd-3) ····· 52
나. § 78dd-1, § 78dd-2와의 비교 ····· 55
다. 검토 ····· 55
5. 예외 사유 및 면책항변 사유 ····· 59
가. 해당 조문 ····· 59
나. 예외 조항(Exception) ····· 61
다. 면책항변 조항(Affirmative Defenses) ····· 62
6. 강요에 의한 지급의 문제 ····· 65
7. 일반 법인책임의 적용 ····· 66
가. 모회사-자회사 책임 ····· 66
나. 승계책임 ····· 66
8. 공모, 교사, 방조 등 ····· 68
가. 형사책임 ····· 68
나. 민사책임 ····· 77
Ⅲ. 회계규정 ····· 78
1. 해당 조문{15 U.S.C. § 78m(b)(2), (5)} ····· 78
2. 개요 ····· 79
3. 기록유지의무(Books and Records) ····· 80
4. 내부회계관리체계 수립의무(Internal Accounting Controls) ····· 82
5.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 84
6. 적용범위 ····· 84
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 ····· 84
나. 회계규정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85
다. 회계규정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 89
라. 교사, 방조, 공모 등 ····· 89
Ⅳ. 처벌 및 제재 등 ····· 90
1. 개요 ····· 90
2. 형사책임 ····· 91

가. FCPA 규정 등 ····· 91
나. 미국연방양형기준 ····· 92
다. 벌금형 ····· 94
라. 몰수 ····· 102
3. 민사책임 ····· 104
가. 민사책임 개관 ····· 104
나.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금액증액(SEC Increased Fine Option) ····· 105
다. 이익환수처분(disgorgement) ····· 106
4. 비금전적 제재 ····· 111
가.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거래금지조치(Debarment) ····· 111
나. 다자개발은행(MDB)에 의한 거래금지조치 ····· 113
다. 수출제한조치 ····· 114
라. 감시제도(Monitorship) ····· 114
5. 관련 민사소송의 제기 ····· 117
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관련 있는 다른 연방법령 ····· 118
1. 개관 ····· 118
2. 여행법(Travel Act) ····· 118
3.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 119
4. 우편사기 및 전신사기(Mail and Wire Fraud) ····· 120
5. 허위보증 및 허위보고(Certification and Reporting Violations) 관련 제재 ····· 120
6. 세법 위반 ····· 121
7. 일반공모조항(18 U.S.C. § 371) ····· 121
가. 구성요건 등 ····· 121
나. 합의 ····· 122
다. 명시적인 행위 ····· 122
Ⅵ. 시효(Statute of Limitations) ····· 123
1. 5년의 일반 시효 ····· 123
2. 공모 및 “계속범” 이론 ····· 123
3. 국외증거 확보를 위한 3년의 잠정적 시효정지 ····· 124
4. 회계규정위반죄에 대한 시효의 문제 ····· 125
5. 민사시효의 문제 ····· 125
Ⅶ.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 유형 ····· 127
1. 법무부의 결정 유형 ····· 127
가. 공소제기 등 ····· 127
나.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 ····· 127
다. 공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 127
라. 불기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 128
마. 불기소처분(Declination) ····· 129
2.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 유형 ····· 130

가. 민사보전처분 등(Civil Injunctive Actions and Remedies) ····· 130
나. 민사행정처분 등(Civil Administrative Actions and Remedies) ····· 131
다. 제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 ····· 132
라. 부제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NPA) ····· 132
마. 부제소종결 및 종결문서(Declinations and Termination Letters) ····· 132
Ⅷ. 내부고발자 보호 ····· 133
1. 개요 ····· 133
2. 사베인스-옥슬리법 ····· 134
3. 도드-프랭크 법 ····· 134
4.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 운영 ····· 135
Ⅸ. 미국 법무부의 최근 주요 정책 ····· 136
1. 기업 범죄에 대한 개인의 법적책임 관련 정책 ····· 136
가. 개요 ····· 136
나. 6대 핵심 사항 ····· 137
다. Yates Memo의 실무상 영향 ····· 140
2. 법무부의 FCPA 기업 법집행 정책 ····· 141
가. 최초의 파일럿 프로그램 ····· 141
나. FCPA 기업 법집행 정책 ····· 142
제3장 사례 연구 ····· 145
제1절 서론 ····· 147
제2절 거액의 벌금 및 제재금이 부과된 사건 ····· 147
Ⅰ. Telia 사건 ····· 147
1. 사건의 배경 ····· 147
2. 사건의 개요 ····· 148
3.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등 ····· 149
4. 처벌 기타 제재 ····· 150
5. 제재금액 분석 ····· 150
Ⅱ. Siemens 사건 ····· 151
1. 사건의 개요 ····· 151
2.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 152
가. 불법행위 전반 ····· 152
나. 불법행위의 유형 ····· 152
다. 국가별 불법행위의 세부 내용 ····· 153
3. 수사과정 ····· 155
4. 처벌 기타 제재 ····· 156
가. 금전적 제재 ····· 156
나. 감시인의 임명 ····· 156
다. 세계은행과의 합의 ····· 157
라. 자금몰수 ····· 157
마. 개인에 대한 제재 ····· 157

5. 법집행 이후 Siemens의 준법경영 노력 ····· 158
제3절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사건 ····· 159
Ⅰ. Jumet 사건 ····· 159
1. 사건의 배경 ····· 159
2. 사건의 개요 ····· 159
3.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 160
4. 처벌 기타 제재 ····· 160
Ⅱ. Africa Sting 사건 ····· 161
1. 사건의 개요 ····· 161
2.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등 ····· 162
3. 사건의 결과 ····· 162
제4절 한국에서의 뇌물제공이 문제되었던 사건 ····· 163
Ⅰ. SSI Korea 사건 ····· 163
1. 사건의 배경 ····· 163
2. 사건의 개요 ····· 164
3.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등 ····· 165
가. 뇌물제공행위 ····· 165
나. 내부통제제도의 부재 ····· 166
4. 처벌 기타 제재 ····· 166
Ⅱ. IBM KOREA 사건 ····· 167
1. 사건의 배경 ····· 167
2. 사건의 개요 ····· 167
3.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등 ····· 168
4. 처벌 기타 제재 ····· 168
제5절 일본 기업에 대하여 법집행이 이루어진 사건들 ····· 169
Ⅰ. JGC 사건 ····· 169
1. 사건의 배경 ····· 169
2. 사건의 개요 ····· 170
3.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 170
4. 처벌 기타 제재 ····· 171
5. 평가 ····· 171
Ⅱ. Bridgestone 사건 ····· 171
1. 사건의 배경 ····· 171
2. 사건의 개요 ····· 172
3. FCPA 위반 혐의의 내용 ····· 172
4. 처벌 기타 제재 ····· 173
제4장 시사점 ····· 175
제5장 결론 ····· 181

75.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Methods of Measur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s and Courts

연구총서 2018-13

연구책임자 : 한성수(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1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2장 연구에 대한 개관 ····· 5
제1절 연구 목적 ····· 7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연구 범위 ····· 8
Ⅰ. 선행연구 개관 ····· 8
Ⅱ. 선행연구와 차별성 ····· 9
Ⅲ. 연구 범위와 내용 ····· 10
제3절 연구 방법 ····· 12
제3장 사법신뢰도의 측정 ····· 13
제1절 신뢰 일반론 ····· 15
Ⅰ. 신뢰 논의의 배경 ····· 15
Ⅱ. 신뢰의 개념 ····· 16
1. 개념의 다양성, 모호성 ····· 16
가. 자연적 본성으로서의 신뢰 ····· 17
나. 경험에 의해 양성되는 신뢰 ····· 17
2. 개념의 공통 요인 ····· 18

가. 상호의존성 ····· 19
나. 위험성 ····· 19
다. 취약성 ····· 19
라. 명예에 대한 존중 ····· 19
3. 유사 개념 ····· 20
가. 협력 또는 협동(cooperation) ····· 20
나. 신빙성(credibility) ····· 20
다. 신용 또는 확신(confidence) ····· 21
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 21
Ⅲ. 신뢰의 다차원 구조 ····· 21
1. 논의의 배경 ····· 21
2. 신뢰주체 측면(신뢰의 구성차원) ····· 22
가. 인지적 차원 ····· 22
나. 감정적 차원 ····· 22
다. 행위적(행태적) 차원 ····· 23
라. 구성차원간의 상호관계 ····· 23
3. 신뢰대상 측면(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대상 특성 또는 신뢰의 구성요인) ····· 24
가. 능력(ability or competence) ····· 25
나. 호의(benevolence)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 25
다. 성실성(integrity), 일관성(consistency) ····· 26
라. 개방성(openness) ····· 26
마. 집단적 동일체 의식과 가치·이념적 동질성 ····· 26
Ⅳ. 신뢰의 유형과 형태 ····· 27
1. 신뢰생성의 경로와 조건에 따른 유형화 ····· 27
가. 신뢰생성 경로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7
나. 신뢰생성 조건과 방안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8
다. 각 유형의 비교 ····· 29
라. 유형 사이의 관계 ····· 30
2. 신뢰의 대상에 따른 유형화 ····· 31
가.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 또는 개인적신뢰(personal trust) ····· 31
나. 제도신뢰(institutional trust), 원칙 또는 질서신뢰 ····· 32
다.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관계 ····· 33
Ⅴ. 신뢰와 불신의 관계 ····· 35
1. 논의 배경 ····· 35
2. 기존 연구와 새로운 견해의 등장 ····· 35
3. 공존 가능성 ····· 36
4. 통합가능성과 개념적 독립성 ····· 37
가. 공존하는 신뢰와 불신의 통합가능성 ····· 37
나. 개념적 독립성 ····· 38
5. 신뢰와 불신의 기능과 동태적 관계 ····· 38
가. 순기능과 역기능의 공존 ····· 38

나. 신뢰와 불신의 동태적 관계 ····· 40
Ⅵ. 신뢰측정과 증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 41
제2절 사법신뢰의 의미와 측정방법 개관 ····· 43
Ⅰ. 사법신뢰의 의미 ····· 43
1. 사법신뢰의 개념 ····· 43
2. 사법신뢰의 체계상 지위 ····· 44
3.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의 특성과 평가 지표 ····· 45
가. 사법신뢰 형성의 구성요인 ····· 45
나. 구성요인의 구체적인 평가 지표 ····· 46
Ⅱ. 사법신뢰의 측정방법 ····· 49
1. 측정방법 개관 ····· 49
가. 연구방법의 유형과 접근법 ····· 51
나. 자료수집방법 ····· 53
다. 측정대상의 개념화와 조작화 ····· 56
라. 측정의 의미와 한계 ····· 58
마. 측정척도 ····· 59
2.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개관 ····· 64
가. 의의 ····· 64
나. 개별 국가의 사법신뢰도 지수와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 ····· 64
다. 대표적인 국제적 사법신뢰도 지수의 유형 ····· 65
라. 일반적 측정방법론 ····· 66
마. 특성과 한계 ····· 67
3. 분석대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 지수 ····· 68
제4장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 69
제1절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 71
Ⅰ. 개관 ····· 71
1. 소개 ····· 71
2. 목적과 특징 ····· 71
가. 목적 ····· 71
나. 특징 ····· 72
Ⅱ. 사법제도 또는 법원 관련 지수 ····· 72
1. 법치주의(rule of law) 지수 ····· 72
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4가지 법치주의 보편원칙 ····· 73
나. 「한눈에 보는 정부(2013)」의 '법치주의' 4가지 핵심요소 지표 ····· 74
다.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 81
2. 대시민서비스(serving citizens) 지수 ····· 82
가. 사법부문의 효율성 지표 ····· 82
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비용충당능력) 지표 ····· 84
다. 사법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지표 ····· 85
라.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access to judicial systems and legal information) 지표 ····· 87

마.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요구 대응성(responsiveness of judicial systems to citizens needs) 지표 ····· 92
바.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judicial systems) 지표 ····· 96
사.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 101
3.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in judicial system) 지수 ····· 101
가. 신뢰도 조사의 목적 ····· 101
나. 신뢰도 현황 ····· 102
다. 구체적인 조사 · 측정방법 ····· 104
라. 사법제도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여러 국제조사 비교 ····· 105
마. 갤럽 세계여론조사(gallop world poll, GWP) ····· 107
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지수의 한계와 유용성 ····· 111
사. 신뢰도 측정 방법의 개선점 ····· 113
Ⅲ. OECD의 신뢰 측정 가이드라인 ····· 114
1. 목적 ····· 114
2. 측정대상인 신뢰의 의미 ····· 114
3. 도입 배경 ····· 115
4. 주요 내용 ····· 115
가. 개념과 타당성(제2장) ····· 115
나. 신뢰 측정에서 방법론적 고려사항(제3장) ····· 117
다. 신뢰의 측정(제4장) ····· 123
라. 신뢰 자료의 결과와 분석(제5장) ····· 129
마. 부록(annexes) ····· 132
5. 향후 과제 ····· 132
제2절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 시리즈 ····· 133
Ⅰ. 세계가치관조사의 설립 목적 ····· 133
Ⅱ. wave 시리즈의 탄생과 연혁 ····· 134
Ⅲ. wave 시리즈의 특징 ····· 135
1. 개관 ····· 135
2. 구체적인 조사방법 ····· 135
가. 설문 개발과 번역 ····· 135
나. 설문 항목의 구성 ····· 136
다. 현장조사와 표본수집 절차 ····· 137
3. 자료의 제공 ····· 139
가. 다양한 차원의 온라인 자료 제공 ····· 139
나. 각 wave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 140
4. 한계 ····· 140
Ⅳ. 사법신뢰도 조사 ····· 141
1.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신뢰도 조사 ····· 141
2. 사법신뢰도 조사결과 ····· 143
가. wave 1(1981-1984, 8개국) ····· 143

나. wave 2(1990-1994, 8개국) ····· 144
다. wave 3(1995-1998, 17개국) ····· 146
라. wave 5(2005-2009, 21개국) ····· 147
마. wave 6(2010-2014, 15개국) ····· 149
3. 우리나라 사법 신뢰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50
가. 개관 ····· 150
나. 통계적 특성 ····· 151
다. 설문의 문구(wording) ····· 152
라. 조사결과 ····· 152
제3절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의 사법신뢰도 지수 비교 ····· 154
Ⅰ. 신뢰도 지수 또는 측정치 산출절차의 주체 ····· 155
Ⅱ. 조사 목적 ····· 156
Ⅲ. 발표 주기 ····· 156
Ⅳ. 조사대상인 국가 범위 ····· 157
1. 세계가치관조사(WVS) wave 시리즈 ····· 157
2.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 ····· 158
Ⅴ. 설문조사 방법과 규모 ····· 158
1. 세계가치관조사(WVS)의 wave 시리즈 ····· 158
2.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 ····· 158
Ⅵ. 설문의 구성과 내용 ····· 159
1. 관련 신뢰 조사대상의 특정 ····· 159
2. 설문의 문구 ····· 160
3. 응답척도 ····· 161
가. 제시된 응답척도 ····· 161
나. 기타 응답의 처리 ····· 162
제5장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 165
제1절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 ····· 167
Ⅰ.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 167
1. 설립 ····· 167
2. 활동 ····· 167
3. 목표 ····· 167
Ⅱ. 법치주의 지수 ····· 168
1. 소개 ····· 168
가. 개념 ····· 168
나.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 ····· 168
2. 세부 평가분야 ····· 169
가. 8가지 분야(factors) ····· 169
나. 우리나라 세부 평가분야별 순위 ····· 173
3. 설문사항 ····· 174
가. 일반대중 여론조사(general population poll, GPP) ····· 175
나. 관련전문가 설문(qualified respondents' questionnaires, QRQ) ····· 176

4. 구체적인 법치주의 지수 산출과정 ····· 178
가. 산출단계 ····· 178
나. 방법론상의 장점과 한계 ····· 181
5. 법치주의 지수의 특성 ····· 182
제2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와 국정관리지수 ····· 183
I. 기업환경평가 ····· 183
1. 개관 ····· 183
2.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84
Ⅱ. 국정관리지수 ····· 184
1. 개관 ····· 184
2. 특징 ····· 185
3.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86
제3절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지수 ····· 187
I.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지수 ····· 187
1. 개관 ····· 187
2. 측정대상과 방법 ····· 188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와의 차이점 ····· 188
4.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89
Ⅱ.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지수 ····· 190
1. 개관 ····· 190
2. 측정대상과 방법 ····· 190
3. 사법제도 관련 지표와 현황 ····· 191
제4절 대륙별·지역별 사법제도 관련 지수 ····· 191
Ⅰ. 종류 ····· 191
Ⅱ. 특징과 한계 ····· 192
제5절 각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수의 비교 ····· 193
Ⅰ. 조사목적 ····· 193
1.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 193
2.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 193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와 국정관리지수(WGI) ····· 194
4.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GCI) ····· 194
5.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연감(WCY) ····· 195
6. 검토 ····· 195
Ⅱ. 발표주기 ····· 195
Ⅲ. 조사대상 국가 범위와 규모 ····· 196
1. OECD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 196
2.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 196
3. 세계은행 ····· 197
4. 세계경제포럼(WEF) ····· 197
5.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 197
Ⅳ. 조사항목 ····· 197

Ⅴ. 조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 199
제6장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과 시사점 ····· 203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 ····· 205
I. 각종 지수에 나타난 사법신뢰 수준 ····· 205
1. 사법신뢰도 지수 ····· 205
가. 현황 ····· 205
나. 검토 ····· 206
2.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 208
가. 현황 ····· 208
나. 검토 ····· 210
Ⅱ. 사법신뢰 형성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211
1.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에 관한 연도별 분석 ····· 211
가. 2013년 보고서 ····· 211
나. 2015년 보고서 ····· 213
다. 2017년 보고서 ····· 213
라. 시계열 정리 ····· 214
마. 종합검토 ····· 216
2.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의 변화와 사법신뢰도 지수와의 관계 ····· 218
가. 우리나라 사법제도 관련 자료에 의한 추론 ····· 218
나. 대안적 분석: 시계열 자료 비교를 통한 추세 또는 경향성의 파악 ····· 221
다. 시계열 자료의 비교 ····· 223

제2절 시사점 ····· 235
I. 사법신뢰도 지수의 해석과 활용상 유의사항 ····· 235
1. 측정대상과 범위의 확인 ····· 235
2.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 237
3. 조사방법론상 특성의 고려 ····· 238
Ⅱ. 사법신뢰 증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 238
1. 신뢰의 다차원적 구조로부터의 시사점 ····· 238
가. 신뢰대상 측면의 다차원성 ····· 238
나. 신뢰주체 측면의 다차원성 ····· 240
2. 신뢰의 유형으로부터의 시사점 ····· 244
3. 신뢰와 불신의 순기능·역기능과 병존 가능성 문제 ····· 246
4. 사법제도 외부요인으로 인한 한계 ····· 246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247
제7장 결론 ····· 251

76.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 외관을 중심으로

Judicial Ethics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the United States

연구총서 2018-14

연구책임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2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미국 법관윤리규범에서 외관의 중요성 ····· 7
제1절 법관윤리와 외관의 관계 ····· 9
Ⅰ. 개설 ····· 9
Ⅱ. 법관의 지위 ····· 9
Ⅲ.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법관윤리 ····· 10
Ⅳ. 외관 규제의 필요성 ····· 12
제2절 외관의 유형 ····· 14
제3절 외관 관련 규정 ····· 15
Ⅰ. 서설 ····· 15
Ⅱ. 강령 1: 사법의 독립성, 염결성 및 공평성 ····· 18
1. 규칙 1.2: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진 ····· 19
2. 규칙 1.3: 사법적 지위의 남용 금지 ····· 20
Ⅲ. 강령 2: 법관으로서 의무 ····· 21

1. 규칙 2.2: 공평성 및 공정성 ····· 21
2. 규칙 2.3: 편견(Bias), 선입관(Prejudice) 및 희롱(Harassment) ····· 22
3. 규칙 2.4: 사법행위에 대한 외부의 영향 ····· 23
4. 규칙 2.6: 진술권(Right to be Heard) 보장 ····· 24
5. 규칙 2.8: 예절, 품행, 배심원과의 의사소통 ····· 24
가. 무례하고 모욕적인 발언 ····· 26
나. 편향된 발언 ····· 26
다. 부적절한 행위 ····· 28
6. 규칙 2.9: 일방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 ····· 28
가. 개념 ····· 29
나. 금지의 목적 ····· 30
다. 원칙: 금지되는 의사소통 ····· 32
라. 예외: 허용되는 의사소통 ····· 36
7. 규칙 2.10: 계류 중이거나 계류가 임박한 사건에 관한 법관의 의사표현 ····· 38
8. 규칙 2.11: 부적격(Disqualification) ····· 39
가. 개념 ····· 41
나. 목적 ····· 41
다. 유형 ····· 42
라. 면제(Waiver) ····· 44
Ⅳ. 강령 3: 비사법적 행위(Extra-judicial Activities) ····· 45
1. 규칙 3.1: 비사법적 행위 일반 ····· 45
2. 규칙 3.2: 다른 국가기관에 출석 및 다른 공무원과 협의 ····· 46
3. 규칙 3.3: 성격증인(Character Witness)으로서 증언 ····· 47
4. 규칙 3.6: 차별적인 단체와의 관련 ····· 47
5. 규칙 3.7: 교육·종교·자선·친목·시민 단체와 그 활동의 참여 ····· 48
6. 규칙 3.8: 수탁자 지위에 임명 ····· 50
7. 규칙 3.10: 변호사 업무 수행 행위 ····· 50
8. 규칙 3.11: 금융활동, 영업활동 기타 보수를 받는 활동 ····· 51
9. 규칙 3.12: 비사법적 활동으로 얻는 보수 ····· 52
10. 규칙 3.13: 선물·융자·유증·이익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의 수령과 보고 ····· 52
제4절 소결 ····· 54
제3장 부적절한 외관 기준의 발전과정 및 관련 사례 ····· 57
제1절 개설 ····· 59
제2절 발전과정 ····· 60
Ⅰ. 발생(1924년) ····· 60
Ⅱ. 실효성 제고(1972년) ····· 63
1. 에이브 포타스 대법관의 스캔들 ····· 64
2.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대법관후보 지명에 대한 상원인준 실패 ····· 67

Ⅲ. 실효성 강화(1990년) ····· 68
Ⅳ. 강제성 확보(2007년) ····· 72
1. 서설 ····· 72
2. 개정 배경 및 주장 ····· 73
3. 개정 과정 ····· 73
가. 2004년 5월 첫 초안 ····· 73
나. 2005년 6월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 ····· 74
다. 2005년 12월 보고서 최종안(Final Draft Report) ····· 74
라. 2006년 12월 대의원회 결의를 위한 보고서 최종안 ····· 75
4. 개정 내용 ····· 77
제3절 관련 사례 ····· 80
Ⅰ. 판단기준 ····· 80
1. 서설 ····· 80
2. 판단의 주체 ····· 81
3. 외관 관련 정보의 인지 정도에 따른 논의 ····· 81
가. 완전한 정보 기준 ····· 82
나. 부분적 정보 기준 ····· 82
Ⅱ. 징계 행위 ····· 85
1. 서설 ····· 85
2. 법관의 직무 내 행위 ····· 86
가. 일방적 접촉(Ex Parte Contact) ····· 86
나. 개인적 친분관계 ····· 87
다. 경제적 이해관계 ····· 95
라. 사건의 처리방식 ····· 100
마. 부적격(Disqualification) ····· 103
3. 법관의 직무 외 행위 ····· 105
가. 영향력의 사용 ····· 105
나. 법정 외 발언 ····· 110
다. 범죄자와의 교류 ····· 112
라. 기타 ····· 115
제4절 소결 ····· 119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21
제1절 개설 ····· 123
제2절 시사점 ····· 123
Ⅰ. 외관 자체를 규율하는 명문규정 마련 ····· 123
Ⅱ. 외관 관련 규범의 구체성 확보 ····· 124
Ⅲ. 부적절한 외관 창출에 관한 경각심 고취 ····· 128
제5장 결론 ····· 133

77.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Rethinking the Admiralty Procedure

연구총서 2018-15

연구책임자 : 변지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현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2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 방법 ····· 4
제2장 개관 ····· 7
제1절 '해사'법에 대한 이해 ····· 9
Ⅰ. 해사(海事)의 개념 ····· 9
1. 해사사건의 의미 ····· 9
2. 해사법의 의미 ····· 9
Ⅱ. 해상법 ····· 10
1. 해상법의 개념 ····· 10
2. 해상법의 특수성 ····· 11
가. 공동해손 ····· 11
나. 해난구조 ····· 11
다. 선박우선특권 ····· 12
3. 해상보험 ····· 13
4. 항공운송법 ····· 13
5. 해상관련 특별법 ····· 14
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 14
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14

Ⅲ. 해사공법 ····· 15
Ⅳ. 해양법 ····· 16
1. 해양법의 개념 ····· 16
2. 해양법 분쟁 해결기구 ····· 16
가. 국제사법재판소 ····· 16
나.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16
Ⅴ. 해양·수산관련 법제 ····· 17
제2절 국내 해사분쟁해결 기관 ····· 20
Ⅰ. 법원 ····· 20
1. 해사전문재판부 ····· 20
2. 사건처리 현황 ····· 21
Ⅱ. 중재기구 ····· 21
1. 대한상사중재원 ····· 21
2. 중재인 ····· 22
3. 절차 ····· 22
가. 중재인의 선정 ····· 22
나. 심리 ····· 23
다. 판정 ····· 23
라. 신속절차 ····· 24
4. 중재판정사례 ····· 24
가. 접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24
나. 하자보수채무 등 부존재확인청구/손해배상금 청구 ····· 25
Ⅲ. 해양안전심판원 ····· 25
1. 관할 ····· 25
2. 인적 조직 ····· 26
가. 심판관 ····· 26
나. 조사관 ····· 27
3. 절차 ····· 27
제3절 외국 분쟁해결장소를 통한 해결 ····· 29
Ⅰ. 섭외적 요소 ····· 29
1. 해사사건의 특성 ····· 29
2. 해상계약에서 관할합의 ····· 29
가. 용선계약 ····· 30
나. 개품운송계약 ····· 30
3. 선박충돌사건 등 관할 ····· 31
4. 선원관련 소송 관할 ····· 31
5.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 ····· 31
가.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ion Association) ····· 31
나. 싱가포르국제해사중재원

(Singapore Chamber of Maritime Arbitration) ····· 34
제4절 해사분쟁관련 산업 및 인프라 현황 ····· 35
Ⅰ. 관련 산업 ····· 35
1. 현황 ····· 35
2. 최근 동향 ····· 36
3. 산업 연계성 ····· 37
Ⅱ. '해사'법 교육기관 ····· 37
1.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 37
2.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 38
3.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 38
제5절 '해양'관련 국제기구 ····· 39
Ⅰ. 국제해사기구 ····· 39
1. 개관 ····· 39
2. 조직 ····· 40
3. 해사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 40
Ⅱ. 국제해저기구 ····· 40
1. 개관 ····· 40
2. 조직 ····· 41
3. 심해저개발국제규범 ····· 41
Ⅲ.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42
1. 개관 ····· 42
2. 구성 ····· 42
3. 문헌의 종류 ····· 43
4. 해사법 관련 규범 ····· 43
제3장 해사재판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45
제1절 영국 ····· 47
Ⅰ. 조직 ····· 47
1. 영국 사법부 구조 ····· 47
가. 법원 ····· 47
나. 심판소(Tribunals) ····· 49
2. 영국의 해사법원 제도 ····· 49
가. 조직 ····· 49
나. 인력 ····· 51
Ⅱ. 관할(Jurisdiction) ····· 57
1. 고등법원 관할 ····· 57
2. 해사 분쟁 ····· 58
3. 상사 분쟁 ····· 59
Ⅲ. 절차 ····· 60
1. 사건의 관리 ····· 60

2. 대물소송 ····· 61
3. 충돌 분쟁 ····· 62
4. 가압류/압류 ····· 63
5. 경매 절차 ····· 63
6. 책임제한 분쟁 ····· 64
7. 기타 분쟁 ····· 65
8. 해사담당관 회부 ····· 65
9. 집행 ····· 66
10. 항소 ····· 66
Ⅳ. 운영 ····· 66
1. 사건의 처리 ····· 66
가. 종류별 사건 수 ····· 67
나. 절차별 처리 건수 ····· 67
다. 사실심 건수 ····· 67
2. 정보의 공개 ····· 68
가. 판례 ····· 68
나. 예측 소송시간 ····· 68
3. 시설 ····· 69
4. 해사법원이용자위원회 ····· 70
5. 해사·상사법원 업무량 설문조사 ····· 70
제2절 중국 ····· 71
Ⅰ. 개관 ····· 71
Ⅱ. 해사재판 시스템의 구축 ····· 71
1. 해사재판 조직의 구축 ····· 71
2. 해사재판 법률제도의 형성 ····· 74
3. 해사법원 법관의 임명방식과 현황 ····· 75
Ⅲ. 해사법원의 관할 ····· 76
1. 전문관할 ····· 76
가. 해사법원 전문관할의 변천 ····· 76
나. 해사법원 전문관할 사건 유형 ····· 77
2. 급별관할(级别管辖) ····· 82
3. 해사법원의 토지관할 ····· 82
4. 합의관할 ····· 83
Ⅳ. 해사사건 처리 절차 ····· 84
1. 해사절차법 개관 ····· 84
2. 선박 압류 ····· 85
가. 요건 ····· 85
나. 결정절차 ····· 85
다. 집행절차 ····· 86
3. 선박충돌 사건의 심리 ····· 88

가. 선박충돌 사건의 특수성 ····· 88
나. 선박충돌 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 88
다. 선박충돌 재판절차 적용 범위 ····· 89
Ⅴ. 해사법원 사건 현황 ····· 90
1. 전체 해사법원의 사건 현황 ····· 90
2. 개별 해사법원의 사건 현황 ····· 91
가. 닝보 해사법원 ····· 91
나. 상하이 해사법원 ····· 93
다. 베이하이 해사법원 ····· 96
Ⅵ. 해사재판의 전문성과 국제 영향력의 강화 ····· 98
1. 해사사건 담당 법관의 역량 강화 ····· 98
2. 해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 영향력 강화 ····· 98
3. 해사재판 명품화 전략 추진 ····· 100
4. 국제상사·해사사법 중심으로의 도약 노력 ····· 101
Ⅶ. 중국 해사법원에 대한 비판과 전망 ····· 102
1. 해사법원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02
2. 중국 해사법원의 전망 ····· 103
제3절 미국 ····· 104
Ⅰ. 법원의 해사관할 ····· 104
1. 연방법 규정에 따른 해사관할 ····· 105
2. 보통법에 따른 해사관할 ····· 106
가. 해상계약 ····· 106
나. 해사불법행위 ····· 107
다. 항공기 불법행위 ····· 109
3. 대인소송과 대물소송 ····· 110
가. 대인소송과 대물소송의 차이 ····· 110
나. 대인소송 사건 ····· 111
다. 대물소송 ····· 111
4. 청구인의 권리에 따른 관할 ····· 112
5. 해사형사관할 ····· 112
6. 해사사건의 이송 ····· 113
Ⅱ. 절차 ····· 114
1. 민사소송규칙 ····· 114
2. 해사사건 청구 ····· 116
3. 대물소송 ····· 117
4. 경매와 배당절차 ····· 118
5. 책임제한 소송 절차 ····· 118
제4절 싱가포르 ····· 119
Ⅰ. 싱가포르 사법부 개관 ····· 119
Ⅱ. 관할 ····· 120

Ⅲ. 절차 ····· 121
1. 선박압류절차 ····· 121
2. 선박충돌절차 ····· 121
3. 책임제한 소송절차 ····· 123
Ⅳ. 운영 ····· 123
1.「Admiralty Court Guide」 발간 ····· 123
2. 집행관 상시 대기 ····· 124
제5절 홍콩 ····· 124
Ⅰ. 홍콩 사법부 개관 ····· 124
Ⅱ. 해사관할 및 절차 ····· 125
Ⅲ. 해사전담법관 ····· 126
제6절 말레이시아 ····· 127
Ⅰ. 현황 ····· 127
Ⅱ. 관할 ····· 128
Ⅲ. 조직 ····· 129
1. 법관 ····· 129
2. 사무처 ····· 130
Ⅳ. 운영 ····· 130
1.「The Admiralty Court User Guide」 발간 ····· 130
2. 신속성 제고 ····· 131
3. 해사법원 이용자 위원회 ····· 131
Ⅴ. 절차 ····· 132
1. 대물소송 ····· 132
2. 선박충돌 ····· 132
3. 책임제한 ····· 133
제7절 호주 ····· 134
Ⅰ. 호주 사법부 개관 ····· 134
Ⅱ. 해사관할 ····· 134
1. 해사분쟁의 정의 ····· 134
2. 해사사건의 이송 ····· 136
Ⅲ. 절차 ····· 137
1. 해사분쟁 절차 ····· 137
2. 대물소송 ····· 137
3. 대인소송 ····· 138
Ⅳ. 조직 ····· 139
1. 전국해사전문판사 ····· 139
2. 해사집행관 ····· 139
Ⅴ. 운영 ····· 140
1. 해사집행관 매뉴얼 ····· 140
2. 해사집행관 보험 ····· 141

3. 해사업계와 협력관계의 유지 ····· 141
가. 호주 해양안전원 ····· 141
나.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 ····· 141
다. 호주 항만청 ····· 142
제8절 뉴질랜드 ····· 142
Ⅰ. 뉴질랜드 사법부 개관 ····· 142
1. 일반법원 ····· 142
2. 전문법원 ····· 143
Ⅱ. 해사관할 ····· 143
Ⅲ. 절차 ····· 145
1. 충돌사건 절차 ····· 145
2. 책임제한 절차 ····· 146
3. 압류·가압류 경매 절차 ····· 147
Ⅳ. 해사전문재판부 부재 ····· 147
제9절 파나마 ····· 148
Ⅰ. 파나마 사법부 개관 ····· 148
Ⅱ. 파나마 해사법원 ····· 149
1. 연혁 ····· 149
2. 관할 ····· 149
3. 절차 ····· 150
4. 조직 ····· 150
가. 전문법관 ····· 150
나. 전문집행관 ····· 151
5. 해사법원의 운영 ····· 151
제10절 네덜란드 ····· 152
Ⅰ. 네덜란드 사법부 ····· 152
Ⅱ. 해사재판부의 설립 ····· 152
Ⅲ. 전문법관 ····· 152
Ⅳ. 운영 ····· 153
1. 효율적 운영 ····· 153
2. 영어의 사용 ····· 153
제4장 해사법원에 대한 도입 논의 현황 ····· 155
제1절 도입추진 활동 현황 ····· 157
Ⅰ.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 157
1. 추진위원회 발족 ····· 157
2. 추진위원회 활동 ····· 157
Ⅱ.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위원회 ····· 158
Ⅲ. 서울지방변호사회 ····· 158
Ⅳ. 부산지방변호사회 ····· 158

Ⅴ.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 160
Ⅵ. 대한변호사협회 ····· 160
Ⅶ. 한국해법학회 ····· 161
Ⅷ. 한국해사법학회 ····· 162
Ⅸ. 해사관련 중재기구 설립 추진 활동 ····· 162
1.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 162
2. 서울해사중재협회 ····· 163
제2절 의원법률안 ····· 163
Ⅰ. 김영춘의원 안 ····· 163
Ⅱ. 유기준의원 안 ····· 164
Ⅲ. 정유섭의원 안 ····· 165
Ⅳ. 안상수의원 안 ····· 166
Ⅴ. 윤상직의원 안 ····· 167
Ⅵ.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 ····· 167
Ⅶ. 정리 ····· 169
제5장 개선방안 ····· 171
제1절 해사사건의 특성 ····· 173
Ⅰ. 전문성의 요구 ····· 173
Ⅱ. 신속성의 필요 ····· 174
Ⅲ. 해사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 ····· 175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 176
Ⅰ. 현황-전문재판부 ····· 176
1. 전문재판부 구성 ····· 176
2. 전문재판부의 운영 ····· 176
3. 사건의 처리 ····· 177
4. 문제점 ····· 177
Ⅱ. 전문법원 ····· 178
1. 전문법원 현황 ····· 178
가. 특허법원 ····· 178
나. 가정법원 ····· 179
다. 회생법원 ····· 180
2. 전문법원 요건 ····· 181
가. 전문법관의 확보 ····· 181
나. 규모의 확보 ····· 182
다. 전문법원 요건과 해사법원 ····· 182
Ⅲ. 특성화 법원 ····· 182
Ⅳ. 소결 ····· 183
1. 개선방안의 제안-전문재판부 발전 방안 ····· 183
2. 개선방안의 제안-집중 관할 법원 방안 ····· 184

3.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 184
제3절 비제도적 개선방안 ····· 186
I. 전문화 방안 ····· 186
1. 전문법관 ····· 186
2. 전문집행관 ····· 187
3. 교육 ····· 187
가. 법관연수 ····· 187
나. 해사법연구회 ····· 188
다. 외부기관협력 ····· 188
라. 연구보고서 발간 및 관련 데이터 확보 ····· 189
Ⅱ. 효율화 방안 ····· 189
1. 해사사건절차법의 일원화 ····· 189
2. 선박 압류·가압류 절차 ····· 190
3. 선박충돌 ····· 190
4. 해사사건접수담당관에 의한 사건관리 ····· 191
5. 관련업계와 협력 방안 ····· 193
Ⅲ. 대체적분쟁해결 ····· 193
Ⅳ.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 194
1. 해사사건 당사자를 위한 해사실무책자 발간 ····· 194
2. 전문재판부 이용자 위원회 ····· 194
3. 영어 변론 ····· 195
4. 판결 예측성 ····· 196
5. 홍보방안 ····· 196
제6장 결론 ····· 199

78.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ooperation of Legal Informa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연구총서 2018-16

연구책임자 : 이정은(사법정책연구원 파견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9년 1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5
제2장 입법과 사법의 관계 ····· 9
제1절 입법과 사법의 전통적 권력분립관계 ····· 11
Ⅰ.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 11
1. 권력분립이론의 의의 ····· 11
2. 권력분립의 양태 ····· 12
Ⅱ. 입법과 사법의 전통적 권력분립관계 ····· 15
1. 입법과 사법의 권력분립관계 ····· 15
2.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권력분립관계 ····· 17
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통제수단 ····· 17
나.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권력분립관계의 실제 ····· 20
제2절 입법과 사법의 협력관계 ····· 23
Ⅰ. 권력분립관계의 재조명 ····· 23
1. 권력분립이론의 한계와 변용 ····· 23
가. 전통적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비판 ····· 23

나. 권력분립관계의 변화 ····· 24
다.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의 등장 ····· 27
2. 분립된 권력의 내재적 협력관계 ····· 28
가. 고전적 권력분립의 내재적 협력관계 ····· 28
나. 권력분립의 현대적 해석과 내재적 협력관계 ····· 31
다. 내재적 협력관계의 한계 ····· 32
Ⅱ. 입법과 사법의 협력관계 ····· 32
1. 입법과 사법의 내재적 협력관계 ····· 32
가. 제도적 상호의존 및 지원 관계 ····· 33
나. 국가법체계 작용의 일관체제 관점의 협력관계 ····· 34
다. 협력에 따른 위험의 상대적 저하 ····· 34
2.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협력관계 ····· 36
가. 입법과 사법의 협력수단 ····· 36
나.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협력관계의 실제 ····· 37
제3장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 필요성 ····· 41

제1절 개 관 ····· 43
Ⅰ.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연계적 소통 필요성 ····· 43
1. 국가법체계의 협력적 작용을 위한 소통 ····· 43
가. 국가법체계의 협력적 작용 ····· 43
나. 국가법체계의 협력방식: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 ····· 45
2. 협력적 소통의 구체적 기대효과 ····· 47
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 47
나. 국가법체계 작용의 일관성 제고 ····· 47
다. 국가법체계의 완성도 제고 ····· 48
Ⅱ. 정보협력의 효용성 ····· 48
1.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 48
2. 정보재의 비경합적 특성과 파레토 개선(Pareto 改善) 가능성 ····· 49
제2절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 필요성 ····· 50
Ⅰ. 입법정보 활용을 통한 사법산출(司法産出)의 개선 ····· 50
1. 사법산출체계(司法産出體系)의 효율성 제고 ····· 50
가. 재판의 정확성 제고: 산출 측면 ····· 50
나. 재판규범의 해석부담 완화: 사법산출의 투입측면 ····· 54
2. 사법산출(司法産出)의 민주성 제고 ····· 58
가. 재판규범의 민주성 제고 ····· 58
나. 해석방법론과 입법정보의 활용 ····· 61
Ⅱ. 사법정보의 환류를 통한 재판규범의 개선 ····· 70
1. 재판규범의 명확화를 통한 해석부담의 완화 ····· 70
2. 법률적 불확실성의 완화를 통한 쟁송의 감소 유도 ····· 75
제3절 입법부의 법률정보협력 필요성 ····· 77
Ⅰ. 민주적 입법의사의 재판규범력 강화 ····· 77

1. 입법의사와 법규범 해석의 괴리 완화 ····· 77
가. 입법의사(立法意思)와 규범해석(規範解釋)의 괴리 ····· 78
나. 입법의사와 규범해석의 괴리에 따른 갈등 ····· 82
다. 입법정보의 제공을 통한 괴리의 축소 필요성 ····· 93
2. 사법재량의 적정화를 통한 입법권의 실질화 ····· 94
가. 사법재량의 발생원인 ····· 94
나. 사법재량의 문제점 ····· 97
다. 법률정보협력을 통한 사법재량의 적정화 ····· 99
Ⅱ. 입법개선정보의 환류를 통한 입법완성도 제고 ····· 100
1. 입법의 자기교정기능 강화 ····· 100
가. 입법에 대한 교정정보 제공 ····· 100
나. 일반·추상적 판단에 대한 보완 ····· 102
2. 인식오차의 축소를 통한 입법완성도 제고 ····· 102
가. 법문에 대한 인식오차 축소 ····· 102
나. 쟁송가능성에 대한 인식오차 축소 ····· 104
제4장 우리나라의 입법·사법 정보협력 현황 ····· 109

제1절 입법정보협력 현황 ····· 111
Ⅰ. 입법정보의 제공 및 활용 현황 ····· 111
1. 입법정보의 제공현황 ····· 111
가. 입법정보의 종류 ····· 111
나. 입법정보의 제공방식 ····· 112
2. 사법부의 입법정보 활용현황 ····· 113
가. 법관의 입법정보 이용현황 ····· 113
나. 국회 입법정보시스템 이용현황 ····· 118
Ⅱ. 입법정보협력의 문제점 ····· 121
1. 입법정보 제공과정의 문제점 ····· 121
가. 입법정보의 정보량 및 충실도 부족 ····· 121
나. 정보접근의 어려움 ····· 124
다. 입법의사 주체의 불명확성 ····· 124
라. 입법과정의 문제점 ····· 125
2. 입법정보 활용과정의 문제점 ····· 128
가.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 128
나. 업무부담으로 인한 입법정보 활용 제약 ····· 131

제2절 사법정보협력 현황 ····· 132
Ⅰ. 사법정보의 제공 및 활용 현황 ····· 132
1. 법원의 사법정보 제공 및 활용현황 ····· 132
가. 판례정보의 입법과정 환류현황 ····· 132
나. 법원의 입법의견 제출 ····· 140
다.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의 정보교류 현황 ····· 143
2. 헌법재판소의 사법정보 제공 및 활용 현황 ····· 144

가. 헌법재판정보의 환류 ····· 144
나. 헌법재판소의 입법의견 제출 ····· 149
Ⅱ. 사법정보협력의 문제점 ····· 151
1. 판례정보 환류체계의 미흡 ····· 151
가. 체계적인 법원 판례정보 환류체제의 부재 ····· 151
나. 위헌법률 정보의 입법반영 지연 ····· 153
2. 입법개선정보 전달체계의 한계 ····· 154
가. 입법의견 제출제도의 한계 ····· 154
나. 기타 입법개선의견 제출의 한계 ····· 155
다. 실질적 소통경로의 부재와 환류의 제약 ····· 156
3. 기타 – 행정입법 통제정보에 대한 협력 부재 ····· 157
제5장 외국의 법률정보협력 사례 ····· 159
제1절 입법정보의 협력사례 ····· 161
Ⅰ. 미국의 입법정보 협력 ····· 161
1.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정보 제공 ····· 161
가. 미국의회의 입법정보와 입법정보시스템 ····· 161
나. 입법연혁자료(legislative history)의 종류 ····· 164
2. 미국의 입법정보 활용 ····· 180
가. 미국의 입법정보 사용 연혁 ····· 180
나. 신문언주의의 비판 ····· 182
다. 활발한 입법연혁자료(legislative history) 이용의 원인 ····· 185
Ⅱ. 영국의 입법정보 협력 ····· 187
1. 영국의회의 입법정보 제공 ····· 187
가. 영국의 입법정보시스템 ····· 187
나. 의회 홈페이지의 입법정보 제공항목 ····· 187
다. 법률안 정보의 세부내역 ····· 190
라. 의사록 및 회의록 ····· 194
2. 영국의 입법정보 활용 ····· 197
가. 법원의 소극적 입법정보 활용 ····· 198
나. Pepper v. Hart 이후의 입법정보 활용 ····· 203
Ⅲ. 독일의 입법정보 협력 ····· 206
1. 독일의 입법정보 제공 ····· 206
가. 입법정보의 공개범위 및 제공방식 ····· 206
나. 법률안별 정보 ····· 207
다. 주요입법문서의 내용 ····· 212
2. 독일의 입법정보 활용 – 입법이유의 상세한 제공 및 활용 ····· 229
가. 독일의 법률해석방법론과 입법정보에 대한 태도 ····· 229
나. 입법이유의 상세한 제공과 활발한 이용 ····· 230
제2절 사법정보의 협력사례 ····· 233
Ⅰ. 미국의 사법정보 협력 ····· 233

1. 미국 연방정부의 사법정보 협력 ····· 233
가. 연방사법회의의 정보협력 ····· 234
나. Statutory Housekeeping Project ····· 235
다.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정보의 환류 ····· 242
2. 미국 주정부의 사법정보 협력 ····· 244
가.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 245
나. 법령개정위원회(Law Revision Commission) ····· 253
다. 기타 사법정보 전달체계 ····· 258
Ⅱ. 영국의 사법정보 협력 ····· 262
1. 영국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 262
2. 법제위원회(Law Commission)를 통한 정보협력 ····· 263
Ⅲ. 독일의 사법정보 협력 ····· 265
1. 연방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정보의 환류 ····· 265
2. 비공식적인 입법개선의견 환류 ····· 266
가. 판례정보의 입법과정 환류 ····· 267
나. 법관의 사적 의견 개진 ····· 271
다. 연방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의 독립적 전문가위원회의 연구 ····· 272
Ⅳ. 기타 국가의 사법정보협력 ····· 272
1. 러시아 사법부의 소관 관련 입법안 제출권 등 ····· 272
2. 스웨덴 입법심의회의 입법의견 제시 ····· 274
3. 노르웨이 대법원의 입법의견 제시 ····· 277
제3절 소결: 외국 정보협력사례의 시사점 ····· 278
Ⅰ. 입법정보 협력사례의 시사점 ····· 279
Ⅱ. 사법정보 협력사례의 시사점 ····· 280
제6장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 증진방안 ····· 283
제1절 정보협력의 제약요인과 협력모형 ····· 285
Ⅰ. 정보협력의 제약요인 ····· 285
1. 권력분립적 한계 ····· 285
가. 정보협력의 권력분립적 제약 ····· 285
나. 입법정보협력의 권력분립적 한계 ····· 285
다. 사법정보협력의 권력분립적 한계 ····· 288
2. 상호이해도의 저조 ····· 291
3. 협력비용 ····· 292
Ⅱ. 입법·사법 정보협력의 모형 ····· 293
1. 정보협력의 유형과 정보협력모형 ····· 293
2. 상황적합적 정보협력모형 ····· 297
가. 정보협력모형의 상황적합성 ····· 297
나. 입법정보협력에 적합한 모형 ····· 297
다. 사법정보협력에 적합한 모형 ····· 298

제2절 입법부의 법률정보협력 강화 ····· 299
Ⅰ. 입법정보 제공의 활성화 ····· 299
1. 입법정보의 충실화 ····· 299
가. 입법자료의 충실도 제고 ····· 299
나. 입법자료의 공식성 강화 ····· 300
2. 입법과정의 개선 ····· 301
가. 정보협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정의 개선 필요성 ····· 301
나. 입법과정의 개선방안 ····· 302
Ⅱ. 사법정보 이용의 활성화 ····· 304
1. 판례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강화 ····· 304
2. 사법부와의 비제도적 소통 활성화 ····· 305
제3절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 강화 ····· 306
Ⅰ. 사법정보 제공의 활성화 ····· 306
1. 새로운 입법개선의견 제출절차의 도입 ····· 306
가. 도입 필요성 ····· 306
나. 도입방안 ····· 308
2. 판례정보 환류체제의 개선 ····· 310
3. 행정입법 통제정보의 제공 ····· 311
Ⅱ. 입법정보 이용의 활성화 ····· 312
1. 입법정보 활용교육의 강화 ····· 312
가. 입법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의 강화 ····· 312
나. 입법과정 및 해석방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 ····· 314
2. 입법정보 전달체계의 전문화 ····· 315
제4절 소결: 유연한 저부담 정보협력체제 구축 ····· 316
제7장 결론: 상호이해와 절제된 협력의 추구 ····· 317
제1절 연구의 요약 ····· 319
제2절 연구의 한계 ····· 321
제3절 결어: 상호이해와 절제된 협력을 위한 제언 ····· 323

79.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System

연구총서 2018-17

연구책임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행일 : 2019년 1월 30일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4
1. 문헌연구 ····· 4
2. 전문가 의견 ····· 5
제2장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 및 현황 ····· 7
제1절 개설 ····· 9
제2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 10
Ⅰ. 개설 ····· 10
Ⅱ.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도입 ····· 11
1. 개설 ····· 11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정착 과정 ····· 12
가. 2001년 7월 1일 이전 ····· 12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 13

3.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과 조사관의 역할 ····· 14
Ⅲ. 가정법원 조사관의 임용 및 편제 ····· 17
1. 선발 ····· 17
가. 개설 ····· 17
2. 조사관의 증원 및 배치 ····· 19
Ⅳ.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 ····· 22
1. 개설 ····· 22
2. 가사조사관 ····· 23
가. 사실조사 ····· 23
나. 조정조치 ····· 26
다. 의견 진술 ····· 28
라.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 28
마. 가사조사관의 추가적 직무 ····· 30
3. 소년사건조사관 ····· 35
가. 사실조사 ····· 36
나. 심리 출석 및 의견 진술 ····· 38
다. 동행영장의 집행 ····· 38
라. 보고의무 ····· 38
마. 추가된 직무 ····· 39
4.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47
가. 조사 업무 ····· 48
나. 의견 진술 ····· 49
다. 집행 ····· 49
5.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50
제3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 ····· 51
Ⅰ. 개설 ····· 51
Ⅱ. 가정법원 조사관의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 52
Ⅲ. 승진 기회의 부족 ····· 54
Ⅳ. 조사관의 배치 ····· 56
Ⅴ. 조사 기간 및 횟수 ····· 57
Ⅵ. 조사보고서의 열람 및 공개 ····· 58
Ⅶ. 조사관에 대한 연수 ····· 59
1. 신규 연수 ····· 59
2. 후기 연수 ····· 61
가. 가사조사관 ····· 61
나. 소년사건조사관·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62
Ⅷ. 조사관의 직무 ····· 64
1. 가사조사관 ····· 64
가. 직무 수행 주체 ····· 64
나. 직무 범위 확대 ····· 65

2. 소년사건조사관 ····· 66
가. 조사관의 직무 범위 확대 및 배치 ····· 66
나. 직무 관련 문제 ····· 66
3.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67
4.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68
제3장 외국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 69
제1절 개설 ····· 71
제2절 미국 ····· 71
Ⅰ. 개설 ····· 71
Ⅱ. 배경 및 연혁 ····· 72
Ⅲ.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 및 연수 ····· 75
1. 가정법원 전문 인력 ····· 75
2. 소년보호관찰관 ····· 77
Ⅳ.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직무 ····· 78
1.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직무 ····· 78
가. 이혼 전 부모 교육 ····· 79
나. 조정 ····· 83
다. 상담 ····· 88
라. 양육 평가(custody evaluation) ····· 90
마. 사회서비스 조정 및 맞춤형 사례관리 ····· 91
2. 소년보호관찰관의 직무 ····· 93
가. 개설 ····· 93
나. 사건의 접수·선별·평가 ····· 94
다. 판결 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 ····· 95
라. 지도 감독(supervision) ····· 95
제3절 독일 ····· 96
Ⅰ. 가정법원 설립 배경 ····· 96
Ⅱ.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대한 논의 및 절차보조인 제도 ····· 97
1. 조사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 97
2. 절차보조인 제도 ····· 98
Ⅲ. 아동복지기관을 통한 상담(Beratung) 및 조정(Mediation) ····· 99
1. 가정법원의 상담서비스 권고 ····· 99
2. 상담의 의의 ····· 101
3. 상담 경로 ····· 101
4. 상담 방식 ····· 102
5. 상담 내용 ····· 102
6. 아동복지기관의 직무 ····· 104
가. 가정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의 협력 ····· 104
나.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에 대한 가정법원의 청취 ····· 105

다. 가정법원에 대한 아동복지기관의 통지 ····· 106
Ⅳ. 아동청(Jugendamt)을 통한 소년사법보호인 ····· 107
1. 아동청 ····· 107
2. 소년사법보호인의 자격과 업무 ····· 108
가. 자격 ····· 108
나. 업무 ····· 108
제4절 일본 ····· 109
Ⅰ. 개설 ····· 109
Ⅱ.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조직 편제 ····· 111
1. 가정국의 설립 및 조직 구성 ····· 111
2. 가정재판소의 조직 ····· 112
3.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구성 ····· 114
가. 조직구성 및 직무 ····· 114
나. 현황 ····· 117
Ⅲ.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선발 ····· 119
1. 개설 ····· 119
2. 응시 현황 ····· 119
3.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120
4. 채용시험 ····· 120
Ⅳ. 가정재판소 조사관을 위한 연수 ····· 123
1. 개설 ····· 123
2. 양성부 연수: 신규 연수 ····· 124
가. 개설 ····· 124
나.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과목 ····· 125
3. 실무연수·전문연수 및 특별연수: 지속적 연수 ····· 129
가. 실무연수: 4년차 ····· 129
나. 전문연수: 7년차 ····· 130
다. 특별연수 ····· 130
Ⅴ.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직무 ····· 131
1. 조사 방법 ····· 131
2. 직무 범위 ····· 131
3. 직무의 내용 ····· 132
가. 가사계 조사관의 직무 ····· 134
나. 소년계 조사관의 직무 ····· 145
제5절 정리 ····· 147
제4장 개선 방안을 위한 구체적 제언 ····· 151
제1절 개설 ····· 153
제2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 154
Ⅰ. 개설 ····· 154

Ⅱ. 선발 및 조직 체계의 일원화 ····· 154
1. 단기적 개선 방안 ····· 154
가. 조사 직렬로의 일원적 편제 ····· 154
나. 조별 구성 ····· 157
다. 업무의 분류 ····· 159
2. 장기적 개선 방안: 조사국의 설치 ····· 159
Ⅲ. 조사관의 지역별 배치 및 순환보직 ····· 161
1. 개설 ····· 161
2. 신규 임용자의 배치 ····· 161
3. 조사관의 순환보직 ····· 162
Ⅳ. 사실조사 기간 ····· 163
Ⅴ.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 ····· 164
제3절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 165
Ⅰ. 개설 ····· 165
Ⅱ. 조사관을 위한 연수 ····· 166
1. 연수의 필요성 ····· 166
가. 업무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 ····· 167
나. 업무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 167
다. 정리 ····· 168
2. 연수의 확대 ····· 169
가. 신규 연수 ····· 169
나. 후기 연수 ····· 170
다. 외부 연수 ····· 170
3. 연수 과목, 교재 및 연구진 ····· 171
Ⅲ. 조사관 직무 관련 개선 방안 ····· 171
1. 가사조사관 ····· 171
2. 소년사건조사관 ····· 172
3.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172
4.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172
제5장 결론 ····· 173

80.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Criteria for Self-defense Judgment and the Public's Legal Consciousness in Overseas Jurisdictions

연구총서 2019-01

연구책임자 : 하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9년 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2장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 7
제1절 정당방위의 근본사상 ····· 9
Ⅰ. 정당방위의 근거 ····· 9
1. 자기보호원칙 ····· 9
2. 법질서수호원칙 ····· 9
3. 이원론의 입장 ····· 10
Ⅱ. 정당방위의 원리 ····· 10
1. 상호주관적 승인이론 ····· 11
2. 정당방위의 한계 설정 ····· 11
제2절 정당방위 법규정의 내용과 역사 ····· 12
Ⅰ. 형법 제21조 ····· 12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2

가. 정당방위상황 ····· 13
나. 방위행위 ····· 14
다. 상당한 이유 ····· 14
2. 과잉방위 ····· 18
가. 의미 ····· 18
나. 제정 배경 ····· 19
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 20
1. 현재성 요건의 완화 ····· 21
2. 상당성 심사의 면제 여부 검토 ····· 21
3. 과잉방위의 필요적 감경 ····· 22
제3절 국민의 법의식과 판례의 입장 ····· 22
Ⅰ.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검토 ····· 22
1. 검토의 의미 ····· 22
2. 평결과 판결이 일치한 사건 ····· 23
가. 가정폭력 ····· 23
나. 싸움 ····· 41
다. 성범죄 ····· 63
라. 국가기관 대항 ····· 67
3.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사건 ····· 79
가. 싸움 ····· 79
나. 국가기관 대항 ····· 86
4. 검토 결과 ····· 88
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 결과의 검토 ····· 88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의 영향 ····· 89
2. 한국과 미국, 일본의 법문화에 따른 차이 ····· 90
제3장 미국의 정당방위 ····· 93
제1절 적극적 정당방위 인정 문화권 ····· 95
Ⅰ. 전통적 정당방위 유형 ····· 95
1. 정당화적 정당방위 ····· 95
2. 양해할만한 정당방위 ····· 96
Ⅱ. 역사적·정치적 관점 ····· 96
1. '치명적인 힘 행사'의 배경 ····· 96
2. 논란의 근거에 대한 경험적 연구 ····· 97
가. 연구의 내용 및 결과 ····· 98
나. 개인의 가치체계의 영향력이 주는 의미 ····· 99
Ⅲ. 정당방위 요건 ····· 100
1. 필요성 ····· 100
2. 비례성 ····· 100
3. 합리적인 믿음 ····· 101

제2절 정당방위 관련 법제 ····· 102
Ⅰ. 연방수정헌법 ····· 102
Ⅱ. 뉴욕주법 ····· 103
1. 2단계 복합 심사 ····· 103
2. 인정하지 않는 경우 ····· 104
Ⅲ.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법 ····· 104
1. 중간적 기준 ····· 104
2. 영역별 실력 행사의 허용기준 ····· 105
Ⅳ. 주거방위의 특수성 판단 ····· 106
1. 캐슬의 법리 ····· 106
2. '자기 땅에 서 있기' ····· 107
제3절 유형별 판례 ····· 108
Ⅰ.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 108
1. State v. Leidholm, 334 N.W.2d 811 (N.D. 1987) ····· 109
2. State v. Norman, 378 S.E.2d 8 (N.C. 1989) ····· 110
3. State v. Edwards, 60 S.W.3d 602 (Mo.Ct. App. 2000) ····· 110
Ⅱ. 싸움에 관한 정당방위 사안 ····· 111
1. 행위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고려 여부 ····· 111
가. People v. Goetz, 497 N.E.2d 41 (N.Y.1986) ····· 111
나. State v. Hampton, 558 N.W.2d 884 (Wis. Ct. App. 1996) ····· 111
2. 정신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여부 ····· 112
가. State v. Simson, 646 P.2d 1119 (Kan. 1982) ····· 112
나. State v. Wanrow, 559 P.2d 548 (Wash. 1977) ····· 112
3.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여부 ····· 113
가. People v. Romero, 81 Cal.Rptr. 2d 823 (Cal.Ct.App. 1999) ····· 113
제4장 독일의 정당방위 ····· 115
제1절 정당방위의 역사와 기본사상 ····· 117
Ⅰ. 정당방위권의 확대와 제한의 역사 ····· 117
1. 정당방위권 확대의 역사 ····· 117
가.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 ····· 117
나. 중세 독일 ····· 117
다. 보통법 시대와 18세기 계몽시대 ····· 118
라. 19세기 형사입법 ····· 119
2. 정당방위권 제한의 역사 ····· 123
가. 정당방위 제한 논의의 단초 ····· 123
나. 20세기 초 입법 논의 ····· 123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흐름 ····· 125
3. 확대에서 제한으로의 선회 ····· 126
Ⅱ. 정당방위의 기본사상 ····· 126

1. 자기보호사상 ····· 127
2. 법확증의 이익 ····· 127
제2절 정당방위의 요건과 검찰수사기록의 분석 ····· 129
Ⅰ.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 ····· 129
1. 정당방위상황 ····· 129
가. 공격 ····· 129
나. 공격의 현재성 ····· 132
다. 공격의 위법성 ····· 133
2. 방위행위 ····· 138
가. 방위행위의 필요성 ····· 138
나. 방위행위의 요구성 ····· 140
Ⅱ.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 ····· 151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논의 ····· 152
1. 의미 ····· 152
2. 위헌성 논의 ····· 153
가. 위헌설 ····· 153
나. 합헌설 ····· 154
Ⅳ. 사건유형별 검토 ····· 155
1. 가정폭력 ····· 155
가. 수사기록의 분석 ····· 156
나. 판례 ····· 157
2. 싸움 관련 판례 ····· 159
가. 연방통상대법원 1986. 3. 19.자 판결(사건번호: 2 StR 38/86) ····· 159
나. 연방통상대법원 1979. 7. 24.자 판결(사건번호: 1 StR 249/79) ····· 159
다. 연방통상대법원 1952. 2. 14.자 판결(사건번호: 5 StR 1/52) ····· 160
3. 국가권력 대항 관련 판례 ····· 160
제3절 독일 국민의 법의식 ····· 161
Ⅰ. 경험적 연구 조사 ····· 161
Ⅱ. 조사 결과 분석 ····· 165
1. 판례의 입장에 대한 공감 여부 ····· 165
2. 법익형량기준 적용 여부 ····· 166
3. 법확증의 원칙과 회피의무의 인정 여부 ····· 170
가. 확실한 방어수단의 선택 ····· 170
나. 신체적 우월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 171
다. 회피의무 관련 조사 ····· 173
4. 정당방위의 제한에 관한 의견 일치 여부 ····· 176
가. 책임무능력자의 공격 ····· 176
나. 유책하게 도발된 정당방위 상황 ····· 177
다. 배우자 간 정당방위 제한과 국민의 법의식 ····· 179
라. 공갈에 대한 은밀한 정당방위 ····· 181

Ⅲ. 전화설문조사와 검찰수사기록분석 결과의 비교 ····· 184
제5장 일본의 정당방위 ····· 187
제1절 정당방위 제도의 발전 과정 ····· 189
Ⅰ. 정당방위 제도의 계수와 발전 ····· 189
1. 법규정의 변화 과정 ····· 189
2. 판례의 입장 ····· 190
Ⅱ. 정당방위의 규제 상황 ····· 191
1. 정당방위의 한계 설정 논의 ····· 191
2. 회피의무의 부과 논의 ····· 192
3. '상당성'에 관한 논의 ····· 194
가. 행위기준설 ····· 194
나. 결과기준설 ····· 195
다. 소결 ····· 196
제2절 유형별 판례 ····· 197
Ⅰ.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정당방위 사건 ····· 197
1. 여성폭력의 특수성 ····· 197
가.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 198
나. 정당방위 판단 기준 ····· 199
2. 가정폭력의 특수성 ····· 200
가.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 201
나. 정당방위를 부정한 사례 ····· 203
다. 가정폭력 사건의 한계 ····· 204
3. 소결 ····· 208
Ⅱ. 싸움에 관한 정당방위 사건 ····· 209
1. 원칙적 부정 ····· 209
2. 적극적 가해의사와 급박성 논의 ····· 210
가. 최고재판소 1977년 7월 21일 판결 ····· 210
나. 오사카고등법원 1978년 3월 8일 판결 ····· 212
다. 후쿠오카고등법원 1983년 4월 27일 판결 ····· 212
라. 최고재판소 1984년 1월 30일 판결 ····· 213
마. 오사카고등법원 1981년 1월 20일 판결 ····· 213
바. 후쿠오카고등법원 1985년 7월 8일 판결 ····· 214
사. 동경지방법원 1988년 4월 5일 판결 ····· 215
아. 최고재판소 2008년 5월 20일 결정 ····· 216
3. 소결 ····· 217
Ⅲ. 국가권력에 대항한 정당방위 사건 ····· 219
1.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219
2.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 ····· 220
3. 개선 사항 ····· 221

제3절 국민의 법의식과 재판원재판제도의 영향 ····· 223
Ⅰ. 국민의 법의식 ····· 223
1. 법문화적 배경 ····· 223
2. 일본의 법문화와 법의식의 특수성 ····· 224
Ⅱ. 재판원재판제도의 도입과 판례의 변화 ····· 225
1. 재판원재판제도의 도입 ····· 225
2. 최고재판소 2017년 4월 26일 결정 ····· 226
가. 침해의 급박성 요건 ····· 227
나. 방위행위의 유형 ····· 230
3. 소결 ····· 232
제6장 결론 ····· 235

81.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consular notification in the case of detention

연구총서 2019-02

연구책임자 : 이선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현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현(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9년 3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개관 ····· 4
Ⅰ. 연구의 내용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국제법에서의 영사 통보 등 ····· 7
제1절 영사 제도의 역사 ····· 9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0
제3절 비엔나영사협약에 의한 영사 통보 등 ····· 14
Ⅰ.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의 문언 ····· 14
Ⅱ.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의 성립 과정 ····· 16
Ⅲ. 영사 통보 등의 의의 ····· 19

Ⅳ.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제1항 (b)의 해석 ····· 20
제3장 영사 통보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23
제1절 미국 ····· 25
Ⅰ. 개관 ····· 25
1. 영사 통보 등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결 ····· 25
2. 영사 통보 등에 관한 별도의 이행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 26
3. 입법 현황의 개관 ····· 27
가. 연방 입법 ····· 28
나. 주 입법 ····· 28
다. 그 밖의 규정들 ····· 28
Ⅱ. 연방 입법 ····· 29
1. 연방규정집 제28권 제50.5조 ····· 29
2. 연방규정집 제8권 제236.1조 ····· 31
3. 연방형사소송규칙 ····· 34
Ⅲ. 주 입법 ····· 37
1. 일리노이 주 ····· 37
2. 캘리포니아 주 ····· 39
3. 오리건 주 ····· 42
4. 네바다 주 ····· 45
5. 노스캐롤라이나 주 ····· 46
6. 플로리다 주 ····· 47
Ⅳ. 그 밖의 규정 ····· 48
1. 연방 차원 ····· 48
가. 육군규정 ····· 48
나. 국세청 매뉴얼 ····· 52
다. 법무부 매뉴얼 ····· 54
라. 국무부 매뉴얼 ····· 56
2. 주 또는 지역 차원 ····· 57
가. 버몬트 주 교정부 지침 ····· 57
나. 애틀랜타 시 경찰국 매뉴얼 ····· 59
다. 텍사스 주 치안판사 가이드 ····· 61
Ⅴ. 평가 ····· 62
1. 이원화된 규정 체계 ····· 62
2.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의 대상 범위 ····· 63
3.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 63
제2절 영국 ····· 65
Ⅰ. 개관 ····· 65
Ⅱ. 경찰 실무규칙 ····· 66
1. 규정 ····· 66
2. 내용 ····· 68

Ⅲ. 교도소 지침 ····· 69
1. 규정 ····· 69
2. 내용 ····· 70
Ⅳ. 평가 ····· 71
제3절 일본 ····· 73
Ⅰ. 개관 ····· 73
Ⅱ. 법원 통달 ····· 74
1. 최고재판소 통달의 규정 ····· 74
2.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의 대상 ····· 79
가. 대상 ····· 80
나. 예외 ····· 85
3.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의 의무자 및 절차 ····· 85
4. 다른 양자조약과의 관계 ····· 86
Ⅲ. 경찰 예규 또는 통달 ····· 87
1. 국가경찰규칙 ····· 87
2. 지방경찰규칙 ····· 88
Ⅳ. 평가 ····· 92
제4절 중국 ····· 93
Ⅰ. 개관 ····· 93
Ⅱ.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94
1. 외국인 범죄에 대한 중국 형사소송법의 원칙 ····· 94
2. 사법해석의 규정 ····· 95
3. 영사 통보의 대상 ····· 97
4. 권리 고지의 대상 ····· 97
5.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의 의무자 및 절차 ····· 98
Ⅲ. 공안부령 ····· 98
1. 형사절차규정 ····· 99
2. 행정절차규정 ····· 100
Ⅳ. 평가 ····· 101
제5절 독일 ····· 102
Ⅰ. 개관 ····· 102
Ⅱ. 형사절차에서의 영사 통보 등 ····· 103
1. 형사소송법 ····· 103
가. 법률의 규정 ····· 103
나. 권리 고지의 대상 ····· 105
다. 권리 고지의 의무자 ····· 106
라. 권리 고지의 내용 ····· 106
마. 권리 고지의 시기 및 방법 ····· 107
2. 행정규칙 ····· 107
3. 영사 통보 의무자에 관한 실무 현황 ····· 109

Ⅲ. 비송사건절차(자유박탈사건)에서의 영사 통보 등 ····· 109
Ⅳ. 평가 ····· 111
제6절 프랑스 ····· 112
Ⅰ. 개관 ····· 112
Ⅱ. 비엔나영사협약에 관한 해석지침 ····· 113
1. 개요 ····· 113
2. 해석지침의 구성 ····· 113
3. 해석지침의 규정 ····· 114
4. 권리 고지 및 영사 통보의 근거 ····· 118
5. 권리 고지 및 영사 통보의 대상 ····· 119
6. 권리 고지 및 영사 통보의 절차 ····· 119
Ⅲ. 평가 ····· 120
제7절 정리 ····· 120
Ⅰ. 형사상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한정되는지 여부 ····· 121
Ⅱ. 법원이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122
제4장 영사 통보 등 위반에 관한 각국의 판례 ····· 123
제1절 국제사법재판소 ····· 125
Ⅰ. 개관 ····· 125
Ⅱ. 브리어드 사건(Paraguay v. United States of America) ····· 126
Ⅲ. 라그랜드 사건(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 127
1. 사건의 진행 경과 ····· 127
2. 판결 요지 ····· 128
Ⅳ. 아베나 사건(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 129
1. 사건의 진행 경과 ····· 129
2. 판결 요지 ····· 130
3. 그 후의 경과 ····· 131
가. 미국이 구제수단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131
나. 국제사법재판소의 2009년 1월 19일 해석판결 ····· 133
다. 사법적 재심사 및 재검토 외의 구제 ····· 134
제2절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 135
제3절 미국 ····· 136
Ⅰ. 연방대법원 ····· 136
1. 브리어드 사건(Breard v. Greene) ····· 136
가. 사건의 진행 경과 ····· 136
나. 판결 요지 ····· 137
다. 그 후의 경과 ····· 138
2. 라그랜드 사건(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United States) ····· 138
가. 사건의 진행 경과 ····· 138
나. 판결 요지 ····· 138

다. 그 후의 경과 ····· 139
3. 산체스-야마스 사건[Sanchez-Llamas v. Oregon & Bustillo v. Johnson (Virginia and Oregon)] ····· 139
가. 사건의 진행 경과 ····· 139
나. 판결 요지 ····· 140
4. 메델린 사건(Medellín v. Texas) ····· 141
가. 사건의 진행 경과 ····· 141
나. 판결 요지 ····· 142
다. 그 후의 경과 ····· 143
Ⅱ. 연방항소법원 ····· 143
1. 제7연방항소법원 ····· 144
가. 손해배상소송의 소권 긍정 ····· 144
나.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대한 증거심리 인정의 요건 ····· 144
다. 절차해태의 법리 적용 긍정 ····· 145
2. 그 밖의 연방항소법원 ····· 145
가. 기소각하 사유 해당 부정 ····· 145
나. 불법행위 성립 부정 ····· 146
다. 유죄평결을 뒤집을 사유 해당 부정 ····· 146
라. 진술배제 사유 해당 부정 ····· 146
마. 추방 무효 사유 해당 부정 ····· 146
Ⅲ. 주 법원 ····· 147
1. 오클라호마 주 형사대법원(Torres v. State) ····· 147
2. 네바다 주 대법원(Gutierrez v. State) ····· 148
Ⅳ. 정리 ····· 149
제4절 영국 ····· 150
제5절 독일 ····· 151
Ⅰ. 형사절차에서의 영사 통보 등 위반의 경우 ····· 151
1. 재판소원이 이루어진 사건 ····· 151
가. 개관 ····· 151
나. 제1차 연방통상대법원 결정 ····· 152
다. 제1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 152
라. 제2차 연방통상대법원 결정 ····· 153
마. 제2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 153
바. 제3차 연방통상대법원 결정 ····· 154
사. 제3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 155
2. 그 밖의 사건 ····· 155
가. 개관 ····· 155
나. '이의제기에 의한 해결' 적용 긍정례 ····· 155
다. '이의제기에 의한 해결' 적용 유보례 ····· 156
Ⅱ. 비송사건절차(자유박탈사건)에서의 영사 통보 등 위반의 경우 ····· 157

1. 자유박탈처분의 위법성 긍정례 ····· 157
2. 자유박탈처분의 위법성 부정례 ····· 157
Ⅲ. 정리 ····· 158
1.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158
2. 상고 전 이의제기가 필요한지 여부 ····· 158
3.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반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159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유가 되는지 여부 ····· 159
5. 위반시 취득된 증거의 배제 여부 ····· 159
6. 형집행으로 인한 보상 인정 여부 ····· 159
7. 구속명령의 위법 여부 ····· 160
제6절 정리 ····· 160
제5장 우리나라의 영사 통보 등 ····· 163
제1절 국제조약의 현황 ····· 165
Ⅰ. 미국과의 양자조약 ····· 165
Ⅱ. 러시아와의 양자조약 ····· 167
Ⅲ. 중국과의 양자조약 ····· 168
제2절 국내 입법의 현황 ····· 171
Ⅰ. 법령 ····· 171
1.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정 ····· 171
가. 출입국관리법 ····· 171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172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172
2. 내용 ····· 173
가. 영사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경우 ····· 173
나. 영사 통보의 방식 ····· 173
Ⅱ. 행정규칙 ····· 174
1. 범죄수사 관련 규칙들 중 영사 통보 등 규정 ····· 174
가.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 174
나. 범죄수사규칙 ····· 175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 175
라.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 ····· 176
마. (해양경찰청)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76
2. 내용 ····· 177
제3절 법원 및 경찰의 실무 현황 ····· 177
Ⅰ. 법원 ····· 177
Ⅱ. 경찰 ····· 178
제4절 제언 ····· 180
Ⅰ. 영사 통보 등에 관한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180
Ⅱ. 법원의 역할 제도화 ····· 180

1. 형사상 인신구속에서의 법원의 역할 ····· 180
2. 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서의 법원의 역할 ····· 181
3. 영사 통보 등 위반 주장이 재판 중 제기된 경우의 절차 ····· 182
4. 영사 통보 등에 관한 양자조약 숙지 ····· 182
Ⅲ. 위반시 효과에 대한 연구 ····· 183
1. 형사절차에서의 구제수단 연구 ····· 183
2. 민사상 구제수단 연구 ····· 183
Ⅳ. 그 밖의 제언 ····· 184
제6장 결론 ····· 187

82.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Juvenile Justice Procedure in Korea

-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Integrated Operation -

연구총서 2019-03

연구책임자 : 문선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김윤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9년 7월 24일 발행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목적 ····· 4
1.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 및 차별성 ····· 4
2. 우리나라의 소년 형사사법시스템 ····· 5
3. 연구의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Ⅰ. 연구 범위 ····· 9
Ⅱ. 연구 방법 ····· 10
1. 문헌 연구 ····· 10
2. 소년부 및 소년형사전담 판사에 대한 인터뷰 및 의견조회 ····· 11

3. 소년형사사법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실무가 의견청취 ····· 11

제2장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 13

제1절 개관 및 소년사건 통계 ····· 15
Ⅰ.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관 ····· 15
1. 소년 형사사법절차 ····· 15
2.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관할 ····· 15
Ⅱ. 소년사건 처리 관련 통계 ····· 16
1. 수사단계에서의 통계 ····· 16
2. 소년형사사건 관련 통계 ····· 19
3. 소년보호사건 관련 통계 ····· 22
4. 소년범 처우 관련 통계 ····· 24
Ⅲ. 통계 분석 및 시사점 ····· 25
1. 검사의 불기소처분 비율 ····· 25
2. 검사의 기소율과 형사재판 결과 중 소년부 송치 비율 ····· 25
3. 소년형사재판 결과 ····· 26
4. 종전사건에 대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결정 ····· 26
제2절 소년 형사사법절차 관련 실무상 문제점 ····· 27
Ⅰ. 검사선의주의 관련 문제점 ····· 28
1. 전문성 결여로 인한 사건분류의 문제점 ····· 28
2. 조기 개입의 지연 ····· 31
3. 학업 중단 등 교육적 처우 지연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 32
Ⅱ. 이원적 절차로 인한 문제점 ····· 33
1. 소년조사절차의 통일성 부족 ····· 33
2. 절차지연으로 인한 소년의 불이익 ····· 34
3. 소년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전문성 ····· 35
4. 종국처분의 불균형 ····· 35
5. 중간적 처분의 부존재 ····· 36
제3절 국회의안 자료 ····· 36
Ⅰ. 개정 법률안 ····· 36
Ⅱ. 시사점 ····· 39

제3장 독일과 미국의 소년법 운용 현황 ····· 41

제1절 서설 ····· 43
Ⅰ. 소년법의 이념 ····· 43
1. 소년보호이념의 기원 ····· 43
2.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의 결합 ····· 43
Ⅱ. 각국의 제도 ····· 44
1. 법원선의주의 채택 국가 ····· 44

2. 독일과 미국의 소년 형사사법절차 ····· 45
3.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 46
제2절 독일 ····· 46
Ⅰ. 개관 ····· 46
1. '독일식' 소년형사사법 모델 ····· 46
2. 소년법원법의 적용대상 ····· 48
Ⅱ. 소년법원의 관할 등 구성과 절차적 특수성 ····· 48
1. 소년법원의 관할 ····· 48
2. 소년법관 및 소년검사의 선발과 자격 ····· 50
3. 소년사법보호 ····· 50
4. 교육처분을 위한 가정법원으로의 이송 ····· 51
5. 소년재판의 절차적 특수성 ····· 52
Ⅲ. 소년에 대한 처분의 특징 ····· 55
1. 처분들 사이의 우선순위 ····· 55
2. 여러 처분들의 결합 ····· 56
3. 부수효과와 보안처분 등의 특례 ····· 56
4. 다수 행위들의 처리 ····· 57
Ⅳ. 교육처분과 징계처분 ····· 58
1. 교육처분 ····· 58
2. 징계처분 ····· 66
Ⅴ. 소년형벌 ····· 70
1. 소년형벌의 의의 ····· 70
2. 소년형벌의 요건 및 기간 ····· 71
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74
Ⅵ. 소년재판의 집행 ····· 78
1. 교육처분과 징계처분의 집행 ····· 78
2. 소년형벌의 집행 ····· 78
Ⅶ. 독일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시사점 ····· 79
1. 통합적 소년 형사사법절차 ····· 79
2.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전문성 ····· 79
3. 약식명령 배제와 간이소년보호절차 ····· 80
4. 보충성의 원칙과 처분들의 결합 등 ····· 80
5.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및 지시, 의무부과 ····· 80
6. 소년법관에 의한 집행감독 ····· 81
제3절 미국 ····· 81
Ⅰ. 개관 ····· 81
1. 국친사상 ····· 81
2. 엄벌화 정책과 형사이송제도의 도입 ····· 83
3. 균형적 사법모델과 혼합양형의 도입 ····· 85
Ⅱ. 미국의 소년 형사사법절차와 소년보호제도 ····· 85

1. 소년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연방법률 ····· 85
2. 미국 소년 형사사법절차 ····· 86
3. 보호처분의 결정 ····· 89
Ⅲ. 펜실베이니아 주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 및 집행감독 ····· 90
1. 보호관찰(Probation) ····· 90
2. 배상명령(Restitution)과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 92
3. 요부양 소년의 처분(Dependency Dispositions) ····· 94
4. 구금처분(Commitment) ····· 94
5.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소년범에 대한 처분 ····· 96
6. 보호처분 후 집행감독 ····· 98
7. 구금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검토와 계획 ····· 100
Ⅳ. 혼합양형(Blended Sentencing) ····· 101
1. 개관 ····· 101
2. 주별 혼합양형 유형 분류 ····· 103
3. 소년혼합양형과 형사혼합양형 ····· 104
4. 의무적 혼합양형과 재량적 혼합양형 ····· 107
5. 혼합양형에 대한 평가 ····· 112
Ⅴ. 미국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시사점 ····· 116
1. 국친사상에 근거한 보호주의와 혼합양형 ····· 116
2. 형사이송제도 ····· 116
3. 보호관찰 등의 운영 ····· 117
4. 구금처분에서의 기본원칙 ····· 117
5.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소년범에 대한 처분 ····· 117

제4장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방안 ····· 119

제1절 절차적 개선방안 ····· 121
Ⅰ. 서론 ····· 121
Ⅱ. 소년보호재판 관할의 통합적 운용 ····· 122
1. 소년보호재판의 토지관할 ····· 122
2. 관련 규정 및 관할구역 ····· 122
3. 관할구역의 개정 필요성 ····· 126
4. 관할구역 개정안 및 운영 방안 ····· 130
Ⅲ. 단일법관 전담방안 ····· 131
1. 개요 ····· 131
2.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현황 ····· 132
3. 단일법관 전담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 135
4. 관련 통계 자료 ····· 138
5. 검토 ····· 143
6. 구체적 도입 및 운영 방안 ····· 145
Ⅳ. 소년형사사건 관할의 통합 및 소년법원 신설 방안 ····· 147

1. 소년형사사건 관할의 통합 ····· 147
2. 소년법원 신설 방안 ····· 150
Ⅴ. 보호처분의 집행·감독 개선 ····· 152
1. 법원에 의한 집행감독의 필요성 ····· 152
2. 소년보호사건의 집행감독 ····· 153
3. 2016년 도입된 집행감독사건의 실무와 활용 방안 ····· 155
4. 집행감독과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 160
제2절 실체적 개선방안 ····· 161
Ⅰ. 서론 ····· 161
Ⅱ. 소년형사재판 실무의 기준 정립 ····· 162
1. 보호처분 우선주의의 선언 ····· 162
2. 소년형사재판장의 전문성 강화 ····· 162
3. 소년사건 분류기준의 마련 ····· 166
Ⅲ.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개선방안 ····· 170
1. 개선의 필요성 ····· 170
2.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현황 ····· 172
3.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활용 방안 ····· 174
4. 중간적 처우의 도입 ····· 179
Ⅳ. 검사의 사건분류 개선방안 ····· 183
1. 개선의 필요성 ····· 183
2. 약식명령의 배제 또는 제한 방안 ····· 183
3. 불기소처분의 배제 또는 제한 방안 ····· 185

제5장 결 론 ····· 189

83.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disputes settlement procedure in Korea

연구총서 2019-04

연구책임자 : 이종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9년 6월 1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노동분쟁 개관 ····· 5
제1절 노동분쟁의 개념 ····· 7
제2절 노동분쟁의 유형 ····· 8
Ⅰ.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 ····· 8
Ⅱ.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 8
제3절 노동분쟁의 특징 ····· 9
Ⅰ. 불평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 ····· 9
Ⅱ. 일상적, 계속적 분쟁 ····· 9
Ⅲ. 노사 대리전의 성격을 띤 분쟁 ····· 10

제4절 노동분쟁해결절차의 지향원리 ····· 10
Ⅰ. 실질적 공정성의 원리 ····· 10
Ⅱ. 신속성의 원리 ····· 11
Ⅲ. 경제성의 원리 ····· 11
Ⅳ. 자율성의 원리 ····· 11

제3장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기관 ····· 13

제1절 노동위원회 ····· 16
Ⅰ. 연혁 ····· 16
Ⅱ. 성격과 구성 ····· 17
1. 성격 ····· 17
2. 구성 ····· 17
Ⅲ. 직무관할 및 기능 ····· 18
1. 노동위원회의 직무관할 ····· 18
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무 ····· 18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무 ····· 20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무 ····· 22
라. 기타 노동위원회의 업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2호 내지 제4호)· 22
2. 노동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 ····· 22
가. 심사(심판)기관으로서의 기능 ····· 22
나. 행정청 내부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 23
다.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 ····· 23
라. 조정·중재기관으로서의 기능 ····· 23
Ⅳ. 현황 ····· 24
1. 사건접수 현황 ····· 24
가. 노동쟁의 조정사건 ····· 24
나.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 24
2. 사건처리 현황 ····· 25
가. 노동위원회 심판(차별사건 포함)사건의 처리현황 ····· 26
나. 중노위 재심신청사건의 처리현황 ····· 27
다.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 ····· 28
3.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 ····· 29
4.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방식 ····· 30
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 ····· 30
나. 공익위원의 위촉 ····· 30
Ⅴ.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 ····· 31
1. 개관 ····· 31
2. 부당해고 등 심판의 개시 ····· 31
가. 사건의 관할 ····· 31
나. 구제신청 ····· 31

3. 조사와 심문 ····· 32
가. 개요 ····· 32
나. 조사 ····· 32
다. 심문 ····· 32
4. 화해절차 및 단독심판 ····· 33
가. 화해절차 ····· 33
나. 단독심판 ····· 33
5. 판정절차 ····· 34
6. 구제명령의 내용, 효력, 이행확보수단 ····· 34
가. 구제명령의 내용 ····· 34
나. 구제명령의 효력 ····· 35
다.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 35
Ⅵ.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장점과 한계 및 문제점 ····· 36
1.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장점 ····· 36
가. 경제성 ····· 36
나. 직권조사의 활용가능성 ····· 36
다. 심리의 신속성 ····· 36
라. 분쟁의 화해적 해결 ····· 37
2.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37
가. 행정위원회가 사법기능을 담당함에 따른 문제점 ····· 37
나. 전문성의 한계 ····· 38
다. 심리의 한계 ····· 38
라. 권리구제의 지연 및 절차중복의 문제 ····· 38
마. 구제명령의 실효성 문제 ····· 39
제2절 법원 ····· 40
Ⅰ. 현황 ····· 40
1. 노동사건 전담재판부의 운영 ····· 40
2.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운영 ····· 42
3. 노동법분야연구회의 활동 ····· 44
Ⅱ. 문제점 ····· 44
1. 전문성의 부족 ····· 44
2. 절차의 중복 및 지연의 문제 ····· 44
3. 전문법원 및 절차적 특례규정의 부재 ····· 45
4. 고비용의 문제 ····· 45

제4장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 47

제1절 미국 ····· 49
Ⅰ. 개관 ····· 49
Ⅱ.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 50
1. 연혁 ····· 50

2. 권한과 법적 지위 ····· 52
3. 주요기관 ····· 52
가. 위원회(Board) ····· 52
나. 사무총장(General Counsel) ····· 53
다. 지역사무소장(Regional Directors) ····· 53
라.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 54
4. 기능 ····· 54
가. 교섭대표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절차 ····· 54
나. 심판절차 이전 분쟁조정 절차 ····· 55
Ⅲ. 연방알선조정국(FMCS) ····· 56
1. 연혁 ····· 56
2. 법적 지위와 구성 ····· 56
3. 기능 ····· 57
가. 이익분쟁의 조정 ····· 57
나. 권리분쟁에 대한 중재제도의 운용 ····· 58
다. 분쟁해결 담당자(조정인과 중재인)의 관리 ····· 58
라. 예방적 조정 ····· 59
Ⅳ.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 59
1. 구성과 권한 ····· 59
2. 고용차별 사안의 수사와 구제절차 ····· 59
제2절 일본 ····· 60
Ⅰ. 개관 ····· 60
Ⅱ. 노동위원회 ····· 62
1. 조직 및 구성 ····· 62
2. 기능 ····· 63
가.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 63
나. 노동쟁의의 조정 ····· 66
Ⅲ. 노동심판제도 ····· 67
1. 의의 ····· 67
2. 현황 ····· 68
3. 노동심판의 대상 ····· 69
4. 노동심판의 절차 ····· 70
가. 노동심판의 신청 ····· 70
나. 심리 ····· 70
5. 노동심판의 효력과 이의신청 ····· 71
제3절 프랑스 ····· 72
Ⅰ. 개관 ····· 72
Ⅱ. 현황 ····· 73
1. 노동법원, 법관의 수 및 사건수 ····· 73
2. 노동법원 법관 임용방식의 개정 ····· 74

Ⅲ. 노동법원의 조직과 구성 ····· 76
1. 노동법원의 설치 ····· 76
2. 노동법원 법관의 구성 ····· 76
3. 노동법원의 조직체계 ····· 76
가. 국(section) ····· 76
나. 부(chambre) ····· 77
다. 화해 및 지도과, 재판과 및 신속심리부 ····· 77
Ⅳ. 법관의 임명 및 지위 ····· 77
1. 법관의 임명 ····· 77
2. 법관의 지위 ····· 79
가. 직무수행의 보장 ····· 79
나. 법관연수교육의 보장 ····· 79
다. 해고로부터의 보호 ····· 80
Ⅴ. 노동법원의 소송절차 ····· 80
1. 사건의 분류 ····· 80
2.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 ····· 81
3. 의무적 화해절차 ····· 82
4. 재판절차 ····· 83
제4절 독일 ····· 85
Ⅰ. 개관 ····· 85
Ⅱ. 노동법원의 역사 ····· 86
Ⅲ. 노동법원의 구조 ····· 87
1.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 87
2. 노동재판의 심급구조 ····· 87
가. 독립된 3심 구조 ····· 87
나. 심급별 법원 현황 ····· 87
Ⅳ. 노동법원의 특징 ····· 89
1.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 ····· 89
2. 명예법관의 재판 참여 ····· 89
가. 의의 ····· 89
나. 명예법관의 임명방식 ····· 89
다. 명예법관의 자격 ····· 90
3. 노동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노사의 참여 ····· 91
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관여 ····· 91
나. 명예법관의 법원 운영 참여 ····· 92
4. 소송절차상 특징 ····· 92
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 92
나. 소송촉진을 위한 규정 ····· 93
다. 화해적 해결의 촉진을 위한 규정 ····· 94

제5절 영국 ····· 96
Ⅰ. 개관 ····· 96
Ⅱ.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ACAS) ····· 98
1. 연혁 ····· 98
2. 조직구조 ····· 98
3. 주요업무 ····· 99
가. 조언과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 99
나. 알선(conciliation) ····· 100
다. 중재와 조정 ····· 100
4. 알선관(conciliation officer)의 채용 및 교육 ····· 101
Ⅲ. 고용심판소(ET) ····· 102
1. 연혁 ····· 102
2. 관할 ····· 102
3. 심판부의 구성 ····· 103
가. 3자주의 구성 원칙 ····· 103
나. 심판부 구성원의 선발절차 ····· 103
다. 고용심판관 단독심의 증가 ····· 104
4. 심판절차 ····· 105
가. 조기알선(Early Conciliation) 제도 ····· 105
나. 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 ····· 105
다. 심문방식 ····· 106
라. 결정의 유형 ····· 107
마. 판결 및 항소 ····· 107
제6절 시사점 ····· 108

제5장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 111

제1절 전문성 강화방안 ····· 113
Ⅰ. 공익위원의 전문성 강화 ····· 113
1. 공익위원 위촉방식의 개선 ····· 113
가. 현황 ····· 113
나. 현황에 대한 평가 ····· 114
다. 개선방안 ····· 115
라. 검토 ····· 116
2. 공익위원 자격요건의 강화 ····· 116
3. 상임위원제도의 강화 ····· 117
가. 현황 ····· 117
나. 평가 ····· 118
다. 개선안 ····· 118
4. 공익위원에 대한 교육의 강화 ····· 119

Ⅱ.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 119
1. 현황 ····· 119
2. 개선안 ····· 120
제2절 심리의 충실성 강화방안 ····· 121
Ⅰ. 현장조사의 강화 ····· 121
Ⅱ. 심문회의 심리의 강화 ····· 122
제3절 분쟁의 조기해결 촉진방안 ····· 122
Ⅰ.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강화 ····· 122
Ⅱ. 화해전치제도의 도입 ····· 123
제4절 심급의 단순화 방안 ····· 123
Ⅰ.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 방안 ····· 124
1.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 124
가. 찬반론 ····· 124
나. 검토 ····· 125
2. 중노위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 126
Ⅱ. 중노위 재심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등법원이 맡는 방안 ····· 127
제5절 공정성 강화방안 ····· 128
Ⅰ. 기관의 독립성 강화 ····· 128
Ⅱ.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독립성 강화 ····· 129

제6장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검토 ····· 131

제1절 노동법원 도입논의 개관 ····· 133
Ⅰ. 초기의 논의 ····· 133
Ⅱ. 입법을 위한 노력 ····· 135
제2절 노동법원 신설의 필요성 ····· 137
Ⅰ.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찬반론 ····· 137
1. 찬성론의 논거 ····· 137
2. 반대론의 논거 ····· 138
Ⅱ.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입장 ····· 138
Ⅲ. 검토 ····· 139
제3절 노동법원 도입시 쟁점 ····· 141
Ⅰ. 재판부의 구성 ····· 141
1. 재판부 구성의 형태 ····· 142
가. 완전참심제 형태 ····· 142
나. 준참심제 형태 ····· 142
다. 배심제 형태 ····· 142
라. 직업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형태 ····· 143
2. 완전참심형 또는 준참심형 노동법원의 도입에 대한 찬반론 ····· 143
가. 찬성론의 논거 ····· 143

나. 반대론의 논거 ····· 144
3. 완전참심형 재판부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 ····· 144
가. 위헌론의 논거 ····· 144
나. 합헌론의 논거 ····· 145
4. 검토 ····· 145
Ⅱ. 직업법관, 참심관, 노동조사관 등 구성원의 선발문제 ····· 149
1. 직업법관 선임방안 ····· 149
가. 전문법관 제도의 운영 ····· 149
나. 노사 양측의 의견반영 ····· 150
다. 선발절차의 정비 ····· 150
2. 참심관 선임방안 ····· 151
3. 노동조사관 선임방안 ····· 152
Ⅲ. 심급구조 ····· 152
Ⅳ. 관할의 문제 ····· 153
1. 전속관할 사건의 범위 ····· 153
가. 노동민사사건 ····· 154
나. 노동행정사건 ····· 154
다. 노동비송사건 ····· 154
라. 사회보험사건 ····· 155
마. 노동형사사건 ····· 155
2. 사물관할의 분배 ····· 157
3. 토지관할의 문제 ····· 158
Ⅴ. 노동위원회와의 관계설정 ····· 158
1.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159
2. 노동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 159
3.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법원에 이관하는 방안 ···· 159
4. 노동법원 사건의 사전화해절차를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 ····· 160
가.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관으로의 개편 ····· 160
나. 절차지연 문제에 대한 방안 ····· 162
제4절 절차상 특례의 도입 등 ····· 163
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 ····· 164
1. 분쟁해결기간의 단축방안 ····· 164
2. 제1심 판결문 작성의 간이화 ····· 164
Ⅱ. 증거의 편재문제 해결방안 ····· 165
1. 직권에 의한 심리의 강화 ····· 165
2. 근로자의 효과적 증거확보 방안 ····· 166
가. 증거개시제도 ····· 166
나. 당사자 등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 ····· 167
Ⅲ. 소송비용의 절감방안 ····· 168
1. 소송비용의 감액 및 패소자부담원칙의 완화 ····· 168

2. 소송구조의 강화 ····· 169
Ⅳ. 화해의 적극적 활용방안 ····· 169
1.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구화 ····· 169
2. 법원 내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 171
3. 기타 조정촉진방안 ····· 171
Ⅴ. 소송대리권의 확대방안 ····· 171
1. 노동조합 관련자의 소송대리권 ····· 172
2.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 172
3. 검토 ····· 172
Ⅵ. 실효적 가구제 제도 ····· 173
1. 노동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활성화 ····· 174
2. 임시적 원직복직조치 및 간접강제 ····· 175
Ⅶ. 근로자의 편의성 증대방안 ····· 175

제7장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판사들의 인식조사 ····· 177

제1절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 179
제2절 설문조사결과 분석 ····· 179
Ⅰ. 노동사건 처리경험 ····· 180
Ⅱ. 현행 노동쟁송절차의 개선 필요성 ····· 180
Ⅲ.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 ····· 181
Ⅳ. 노동법원 신설이 필요한 이유 ····· 181
Ⅴ. 노동법원 신설이 불필요한 이유 ····· 182
Ⅵ. 노동법원 재판부의 구성형태 ····· 182
Ⅶ. 완전참심제의 합헌 여부 ····· 183
Ⅷ. 노동전문법관제도 도입 필요성 및 지원의사 ····· 184
Ⅸ. 절차상 특례제도 ····· 185
Ⅹ. 노동법원 신설시 노동위원회의 역할 ····· 187
Ⅺ. 기타 의견 ····· 188

제8장 결론 ····· 191

84.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Ideal management plan for the Termed Civil Servant System : Focusing on the Judiciary's Termed Civil Servants

연구총서 2019-05

연구책임자 : 서현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19년 6월 1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6

제2장 임기제공무원제도 개관 ····· 7

제1절 임기제공무원제도 ····· 9
Ⅰ. 임기제공무원제도의 소개 ····· 9
1. 임기제공무원(구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역사 ····· 9
2. 임기제공무원(구 계약직공무원)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 10
3. 임기제공무원제도 등 개방형 인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 논의 ····· 12
4. 임기제공무원제도와 종래 계약직공무원제도의 비교 ····· 13
5.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15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 15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 16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16
라. 한시임기제공무원 ····· 16
6.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 17
Ⅱ. 임기제공무원 현황 ····· 18
1.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현황 ····· 18
2. 임기제공무원별 현황 ····· 18
3. 주요기관별 임기제공무원 종류별 현황 ····· 19
Ⅲ.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20
1.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 20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20
나. 공무원임용령(행정부) ····· 20
다. 법원공무원규칙(사법부) ····· 21
라.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사법부) ····· 21
마.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사법부) ····· 21
바.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사법부) ····· 22
사. 사법부내 임기제공무원 관련 특별 법령 ····· 22
2. 임용권 ····· 24
가. 임용권자 ····· 24
3. 채용 ····· 25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26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 26
다. 시험 공고 ····· 29
라. 채용 절차 ····· 30
마. 채용 방법 ····· 30
4. 시보기간 ····· 31
5. 근무기간 ····· 31
6. 근무상한 연령 ····· 32
7. 승진임용 ····· 32
8. 전보 ····· 32
9. 연봉 ····· 33
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및 연봉 한계액 ····· 33
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및 연봉 한계액 ····· 34
10. 성과관리 ····· 35
제2절 사법부 임기제공무원 현황 ····· 36
Ⅰ. 사법부 임기제공무원 전체 현황 ····· 36
Ⅱ. 일반임기제공무원 현황 ····· 37
Ⅲ. 전문임기제공무원 현황 ····· 37

제3장 주요국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 ····· 39

제1절 주요국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 ····· 41
Ⅰ. 개관 ····· 41
Ⅱ. 미국의 임기제공무원제도 ····· 43
1. 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 43
2. 인사행정기관 ····· 43
가. 인사관리처(OPM) ····· 43
나.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 44
다. 연방노사관계청(FLRA) ····· 44
3.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법령 ····· 45
4. 임기직공무원(Term) 제도 ····· 45
가. 후보자 명부에 의한 임시적 채용(Temporary Appointment Pending Establishment of a Register Employment, TAPER Employment) ····· 46
나. 임기직 임용(Term Appointment) ····· 47
다. 임시적 임용(Temporary Appointment) ····· 48
5. 시사점 ····· 50
Ⅲ. 영국의 임기제공무원 유사 제도 ····· 51
1. 영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 51
2. 인사행정기관 ····· 51
가. 중앙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 51
3.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법령 ····· 52
4. 임기제공무원과 유사한 채용 제도 ····· 52
가. 임시 채용(Casual Appointment) ····· 53
나. 고정기간 채용(Fixed Term Appointment) ····· 53
다. 조건부 채용(Conditional Appointment) ····· 53
라. 수시반복 임시채용(Recurring Temporary Appointment) ····· 53
마. 단기 통지채용(Short Notice Appointment) ····· 54
5. 고정기간 채용(Fixed Term Appointment) ····· 54
6. 시사점 ····· 55
Ⅳ. 일본의 임기제공무원 유사 제도 ····· 56
1. 일본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 56
2. 인사행정기관 ····· 56
가. 인사원 ····· 56
나. 내각인사국 및 각 부성(府省)의 인사부서 ····· 57
3. 임기부직원 관련 법령 ····· 57
4. 임기부직원제도의 목적 ····· 57
5. 임기부직원의 종류 ····· 58
6. 임기부직원제도 현황 ····· 59
7. 임기부직원의 근무기간, 근무기간의 갱신 ····· 60
8. 임기부직원의 정규직 전환 ····· 60
9. 임기부직원의 채용 ····· 60

가. 채용 절차 ····· 60
나. 채용 공정성 확보 ····· 61
10. 임기부직원의 승진 제도 ····· 61
11. 임기부직원의 보수 ····· 61
가. 특정임기부직원 ····· 61
나. 일반임기부직원 ····· 63
12. 임기부직원의 승급 제도 ····· 63
13. 임기부직원의 성과 관리, 성과평가제도 ····· 63
14. 임기부직원의 경력관리(교육 등) 제도 ····· 63
15. 임기부직원에 대한 인사이동통지서 교부 ····· 63
16. 시사점 ····· 64

제4장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개선 ····· 65

제1절 임기제공무원 인사 실무상 개선분야 ····· 67
Ⅰ. 임기제공무원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 분석 ····· 67
제2절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기간 연장 분야 ····· 69
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원칙) ····· 69
1. 개관 ····· 69
2. 임기제공무원의 원칙적 근무기간(최대 5년) 및 근무기간 연장 ····· 70
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기간연장 ····· 71
나. 일반임기제공무원 ····· 71
다. 전문임기제공무원 ····· 71
라. 인사 실무 현황 ····· 72
마. 문제점 ····· 73
바. 개선방향 ····· 74
Ⅱ. 최대 5년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근무기간 연장 ····· 77
1. 개관 ····· 77
2. 인사실무 현황 ····· 78
3. 현행법령상 근거 및 법령 위배 여부 ····· 79
4. 임기제공무원제도 취지와의 조화 여부(합목적성 판단) ····· 80
5. 근무 장기화의 배경 ····· 82
6. 최대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문제점 ····· 85
가. 신규 지원자들의 들러리화 ····· 85
나. 재임용 시 연봉의 초기화(리셋화) 내지 삭감 ····· 86
다. 적기(適期) 기간연장의 실패로 인한 신분 불안 발생 ····· 89
7. 개선 방향 ····· 90
가. 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 ····· 90
나. 연봉 보전 규정 제정 ····· 90
다. 임용결과의 선별적 공개 ····· 91
라. 적시(適時) 재임용 ····· 93

마. 임용절차관련 기록 보관 ····· 93
Ⅲ. 탁월한 성과 인정을 통한 5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 연장 ····· 94
1. 개관 ····· 94
2.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규정 ····· 95
가. 탁월한 성과 판단에 관한 국가 전체 공통 기준(행정부) ····· 95
나. 사법부 내부 기준 ····· 95
3. 타 기관 사례 ····· 96
가. 개설 ····· 96
나. 국회입법조사처 ····· 97
다. 국회예산정책처 ····· 99
라. 서울특별시 ····· 100
마. 임기제공무원 전국연합(서울특별시 TF) 안 ····· 102
4. 탁월한 성과 판단 기준 정립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제언 ····· 103
5. 사법부를 위한 추가적 제언 ····· 106
Ⅳ.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시 정책결정에 대한 제언 ····· 107
1. 임기제공무원 임기만료 시 인사정책결정의 딜레마 ····· 107
2. 임기제공무원 임기만료 시 인사정책결정상 고려사항 ····· 108
가. 법령해석의 한계 준수 ····· 108
나.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 보장을 위한 절차 마련 ····· 110
다. 재임용 방법에 따른 장·단점 고려 ····· 110
라.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간의 구분 ····· 111
제3절 승진임용 분야 ····· 113
Ⅰ. 개관 ····· 113
Ⅱ. 현행 임기제공무원제도 하에서의 승진임용 제도 ····· 114
1. 현행법령상 임기제공무원의 승진 제도 ····· 114
2. 승진임용 제도의 도입 필요성 ····· 114
3. 승진제도 관련 외국의 현황 ····· 115
가. 미국 ····· 115
나. 영국 ····· 115
다. 일본 ····· 115
Ⅲ. 개선방향 ····· 116
1. 승진제도의 도입 방향 ····· 116
2. 현행 제도 하에서 가능한 승진임용 방안 ····· 117
가. 비다수인대상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단서,
법원공무원규칙 제20조 제2항)을 활용하는 방안 ····· 117
나. 신규채용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 118
3. 신규채용을 통한 승진 방안의 예시 및 문제점(사법부) ····· 118
4. 법령 개정에 대한 제안 ····· 121
제4절 근무성적평정 분야 ····· 123
Ⅰ. 개관 ····· 123

1.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123
Ⅱ. 임기제공무원의 성과 평가 ····· 124
1.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 124
2. 근무실적의 평가방법(사법부 기준) ····· 125
가. 평가 시기 ····· 125
나. 평가자 ····· 125
다. 성과계획서의 작성 ····· 126
라. 업무계획서의 작성 ····· 127
마. 평가방법 ····· 128
바. 평가순위명부 작성 ····· 131
사. 평가결과의 반영 ····· 133
Ⅲ. 근무성적평정 방식의 개선 ····· 133
1. 현행 근무성적평정 방식의 문제점 ····· 133
가. 당사자 참여권 문제 ····· 133
나. 1인 평가 시스템의 문제 ····· 134
다. 소극적 평가 방식 ····· 134
라. 평가결과의 비공개 ····· 135
2. 근무성적평정제도 관련 외국의 현황 ····· 136
가. 미국 ····· 136
나. 영국 ····· 136
다. 일본 ····· 137
3. 개선 방향 ····· 137
가. 당사자 참여권 보장 및 적극적 평가로의 전환 ····· 137
나. 1인 평가시스템의 개선 ····· 139
다. 평정결과 공개를 통한 장점의 극대화 ····· 139

제5장 국가기관의 바람직한 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 141

제1절 국가기관의 바람직한 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 143
Ⅰ. 개관 ····· 143
제2절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 144
Ⅰ. 임기제공무원의 복무관리 ····· 144
1. 개설 ····· 144
2.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사유 ····· 144
가. 면직 종류 ····· 144
3. 임기제공무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면직에 대비한 인사운영방안 ····· 145
가. 의원 면직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사전예고기간 약정 ····· 145
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한 의원 면직에 대한 제재 ····· 146
다. 신규채용절차의 신속 진행 ····· 146
Ⅱ. 임기제공무원 임용권 남용 방지 ····· 147
1. 개설 ····· 147

2. 문제점 ····· 148
3. 개선방향 ····· 148
가. 채용 공정성·투명성 강화 ····· 148
나. 임용정보의 제한적 공개 ····· 150
Ⅲ. 임기제공무원제도에 대한 중장기 정책 전환 ····· 150
1. 임기제공무원제도의 규정과 현실의 부조화 ····· 150
2. 임기제공무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 ····· 151
제3절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 ····· 154
Ⅰ.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실무 운영 개선 ····· 154
1. 개설 ····· 154
2. 구체적 제언 ····· 154
가. 근무기간의 탄력적 규정 ····· 154
나. 복무관리 및 업무공백 방지 방안 ····· 155
다. 신속 채용을 위한 임용 승인 절차의 개선 ····· 156
라. 근무기간 연장 신청권 또는 기대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절차 명문화 ···· 157
마. 신규임용을 통해 재임용된 자에 대한 기본 연봉 보전 ····· 159
바. 임기제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 159
사. 임기제공무원 인사예규 신설 ····· 160
아. 상시·계속적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일반 경력직 전환 ···· 161
Ⅱ. 사법행정 분야의 임기제공무원(관리자급) 인사 정책 제언 ····· 161
1. 개설 ····· 161
2. 사법행정 분야의 관리자급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정책 제언 ····· 162
가. 임기제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유지 ····· 162
나. 조직 안정화 및 조직 융화 ····· 163
다. 교육을 통한 업무 및 조직적응 지원 ····· 165

제6장 결론 ····· 167

85.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Suitable Operation of the Punitive Damage System

연구총서 2019-06

연구책임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8월 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 7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과 기능 ····· 9
Ⅰ. 개념 및 기원 ····· 9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 ····· 11
1. 징벌적 기능 ····· 11
2. 억지 기능 ····· 12
3. 그 외의 기능 ····· 13
가. 전보적 · 만족적 기능 ····· 13
나. 법준수(Law Enforcement) 기능 ····· 14
제2절 우리 민법상 유사 제도 ····· 15
Ⅰ. 위자료 ····· 15
1. 위자료의 의의 및 기능 ····· 15

2. 활용가능성 ····· 16
3. 한계 ····· 17
Ⅱ. 특별손해 ····· 18
1. 활용가능성 ····· 18
2. 한계 ····· 19
Ⅲ. 위약벌 ····· 19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경제학 ····· 20
Ⅰ.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론적 근거 ····· 20
1. 최적 억지 혹은 비용 내부화 이론 ····· 21
2. 그 외의 이론 ····· 23
가. 부당이득 환수 혹은 이득 제거 이론 ····· 23
나. 자발적 거래 유도 이론 ····· 23
Ⅱ.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 24
1. 징벌승수 활용 ····· 24
2. 징벌승수 활용에 대한 비판 ····· 25
가. 불법행위의 과소억지 ····· 26
나. 응보이론 ····· 26
3. 비판에 대한 반론 ····· 26
4. 최적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 27
가. 이론적 가능성 ····· 27
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 ····· 27
Ⅲ.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 31
1. 억지효과 ····· 32
2.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빈도와 배상액의 크기 ····· 33
3. 전보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 34
4. 법관과 배심의 차이 ····· 35
가. 실증적 연구 ····· 35
나. 실험을 통한 연구 ····· 36
5. 그림자 효과(Shadow Effect) ····· 36
제4절 소결 ····· 37

제3장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41

제1절 서론 ····· 43
제2절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44
Ⅰ. 서론 ····· 44
1.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 44
2.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 45
3. 가중사유가 있는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 ····· 47
4.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 ····· 47

5. 보상적 손해배상(Restitutionary Damages) ····· 48
6. 변호적 손해배상(Vindicatory Damages) ····· 49
Ⅱ.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 49
1. 가중사유가 있는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 ····· 49
가. 의의 ····· 49
나. 인정요건 ····· 50
다. 손해배상액 산정 ····· 51
라.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과의 관계 ····· 53
2. 보상적 손해배상(Restitutionary Damages) ····· 53
가. 징벌적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형 ····· 53
나.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 ····· 55
다. 특수한 사례 ····· 55
라.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56
3. 변호적 손해배상(Vindicatory Damages) ····· 56
가. 개념 ····· 56
나. 사례 ····· 57
다. 관련문제 ····· 59
Ⅲ. 징벌적 손해배상 ····· 60
1.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60
가. 가해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과정에서
자의적, 억압적 또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 ····· 60
나.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보다 많은 경우 ····· 61
다. 개별 법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경우 ····· 61
2. 그 외의 요건 ····· 62
가. 최후수단일 것 ····· 62
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피해자일 것 ····· 62
다. 가해자의 형사처벌 혹은 기타 제재 ····· 62
라. 피해자의 수 ····· 63
마. 피해자의 행위 ····· 64
바. 가해자의 선의 ····· 64
3.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64
가. 일반원칙 ····· 64
나. 배심원에 대한 통제와 설시 ····· 68
다. 실증적 조사 결과 ····· 68
4. 관련문제 ····· 70
가. 증명도 문제 ····· 70
나. 보험 문제 ····· 71
제3절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71
Ⅰ. 코먼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 71

1. 적용범위 ····· 71
가. 불법행위 사건 ····· 72
나. 계약법 사건 ····· 76
다. 중재 사건 ····· 78
2. 당사자 ····· 79
가. 배상청구권자 ····· 79
나. 배상의무자 ····· 79
3. 성립요건 ····· 81
가. 원인이 되는 사건의 존재 ····· 81
나. 실손해의 존재 ····· 81
다. 가해자의 비난가능한 행위 ····· 82
4.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절차(discovery) ····· 82
5. 배상액 산정 ····· 83
가. 들어가며 ····· 83
나. 배상액 산정과 사실판단자의 재량 ····· 83
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할 요소 ····· 84
6. 대표당사자소송과의 관계 ····· 95
7.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과 해결시도 ····· 96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 96
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시도 ····· 101
Ⅱ.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 ····· 122
1. 개념 ····· 122
2.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비교 ····· 123
3. 성문법상 배액배상의 장·단점 ····· 124
4. 성문법상 배액배상의 입법형식 ····· 124
가. 연방법 ····· 125
나. 주법 ····· 127
Ⅲ. 버지니아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 129
1. 일반론 ····· 129
2. 사건유형별 검토 ····· 131
가. 상해사건 ····· 131
나. 계약위반 ····· 131
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132
라. 차량사고 ····· 132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 133
가. 보충적 청구원인 ····· 133
나. 손해배상액 제한 ····· 134
다. 손해배상액 제한의 예외 ····· 134
라. 사용자책임 ····· 135
4.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사법심사 ····· 135

제4절 캐나다의 징벌적 손해배상 - 퀘벡주를 중심으로 ····· 137
Ⅰ. 서론 ····· 137
Ⅱ. 퀘벡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 138
1. 들어가며 ····· 138
2. 가해자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전보적 손해배상의 관계 ····· 138
가. 면책규정과 과실상계 ····· 139
나. 비재산적 손해 ····· 139
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140
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142
마. 소송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 147
Ⅲ. 캐나다 다른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 150
1.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150
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 150
나. 계약위반 ····· 151
다. 과실 ····· 151
라. 법률의 규정 ····· 151
2.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 ····· 152
3.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152
가. 원칙 ····· 152
나. 고려요소 ····· 152
다. 법원에 의한 제한 ····· 155
제5절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157
Ⅰ. 들어가며 ····· 157
Ⅱ. 중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 158
1. 소비자권익보호법 ····· 158
2. 계약법 ····· 160
3. 식품안전법 ····· 161
4. 불법행위법 ····· 162
5. 관광법 ····· 163
6. 상표법 ····· 163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 ····· 165
1. 적용범위의 협소 ····· 165
2. 배상금액 산정의 문제점 ····· 165
3. 적용요건의 문제 ····· 165
제6절 소결 ····· 166
Ⅰ.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166
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168
Ⅲ. 캐나다의 징벌적 손해배상 ····· 169
Ⅳ.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170
Ⅴ. 시사점 ····· 171

제4장 우리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 173

제1절 서론 ····· 175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의와 그 현황 ····· 176

Ⅰ.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의 - 도입 이전 ····· 176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현황 ····· 177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78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78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79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80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80

6. 개인정보보호법 ····· 18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81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81

9. 제조물책임법 ····· 182

10. 환경보건법 ····· 183

11. 특허법 ····· 183

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184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84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8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85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6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 186

1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확대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 ····· 187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7

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188

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제정안 ····· 188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89

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89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9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

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너.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193
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러. 징벌적 배상법안 ····· 194
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 195
버.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196
Ⅲ. 소결 ····· 197
1.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법률 ····· 198
2.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 199
3. 입법형식에 따른 분류 ····· 201
4.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따른 분류 ····· 202
5. 가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른 분류 ····· 202
Ⅳ.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판례 ····· 20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 203
가. 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 31582, 33748 판결 ····· 203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합32056 판결 ····· 205
다. 부산고등법원 2018. 7. 26. 선고 (창원)2017나20930 판결 ····· 206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55462 판결 ····· 207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572122 판결 ····· 209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합106395(본소),
110967(반소) 판결 ····· 210
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합202844 판결 ····· 212
아.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가합74190 판결 ····· 213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합82598,
512430 판결 ····· 216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217
가.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4 판결 ····· 217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 218
가.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030380 판결 ····· 218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 219
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2875 판결 ····· 219
5. 정리 ····· 220
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 ····· 221
1. 들어가며 ····· 221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설문조사 ····· 222
3.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 222
가. 개요 ····· 222
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 여부 ····· 223
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 224
라.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 224
마. 설문결과 정리 ····· 224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 225
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 ····· 225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 여부 ····· 225
2. 법체계상의 문제 ····· 226
3. 남소가능성 ····· 226
4.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 227
Ⅱ.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 ····· 228
1. 도입형태에 대한 비판 ····· 228
2. 불명확한 요건 ····· 229
3. 손해배상액수의 문제점 ····· 230
4. 증명책임 관련 문제점 ····· 231
5. 저조한 활용 ····· 231
제4절 소결 ····· 232

제5장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운영방안 ····· 235

제1절 서론 ····· 237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문제점의 해결방안 ····· 238
Ⅰ.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 ····· 238
1. 법체계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 ····· 238
2. 비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240
3. 남소우려에 대한 대안 ····· 240
가. 손해배상액의 피해자 귀속 제한 ····· 241
나. 그 외의 대안 ····· 242
Ⅱ.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 243
1. 적정 배상액 산정의 필요성 ····· 243
2.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견해 ····· 244
3. 정리 ····· 245
Ⅲ.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형식 ····· 247
1. 단일법에 의한 도입 ····· 247
가. 민법개정을 통한 도입 ····· 247
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도입 ····· 247
2. 개별법에 의한 도입 ····· 249
가. 장점 ····· 249
나. 단점 ····· 249
Ⅳ. 집단소송의 도입문제 ····· 250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 ····· 251
Ⅰ. 인정요건의 정비 ····· 251
Ⅱ. 배상액 산정기준 활용 ····· 252
1. 산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 252

2. 구체적 산정기준 ····· 254
가. 기본원칙 ····· 254
나. 산정기준 요소 ····· 255
다. 산정기준 사이의 우선순위 ····· 259
3. 배상액 산정기준표(예시) ····· 260
Ⅲ. 증거법상의 문제 해결 ····· 262
1. 증거개시절차의 도입 ····· 262
2. 증명도의 문제 ····· 264
Ⅳ. 배심제 도입 ····· 265
1.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65
가. 도입 필요성 ····· 265
나. 기대효과 ····· 266
2. 배심원에 대한 설시 활용 ····· 267
3.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270
4. 배심제의 대안으로 자문위원회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 ····· 270
Ⅴ. 소송비용 ····· 271
Ⅵ. 법관의 상세한 이유 설시 ····· 272
Ⅶ. 손해배상액의 피해자 귀속 제한 ····· 274
1. 필요성 및 원칙 ····· 274
2. 고려사항 ····· 275
가. 귀속비율 설정 ····· 275
나. 활용용도에 대한 고려 ····· 275
3.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 276
제4절 소결 ····· 277

제6장 결론 ····· 279

86.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iling Fee System and Related Practices

연구총서 2019-07

연구책임자 : 이혜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19년 7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인지제도 개론 ····· 7

제1절 인지의 의의 ····· 9
Ⅰ. 소송비용과 인지 ····· 9
Ⅱ. 인지의 기본원리 및 구성요소 ····· 9
1. 재판유상주의 ····· 10
2. 인지액 ····· 10
3. 소송목적의 값 ····· 10
Ⅲ. 재판수수료 부과에 대한 일반론 ····· 11
Ⅳ. 인지의 기능 ····· 12
제2절 우리나라 인지제도의 연혁 ····· 14
Ⅰ. 근대화 이전 시대의 인지제도 ····· 14

Ⅱ. 근대 인지법 연혁 ····· 16
1. 인지법의 제정 경위 ····· 16
2. 인지법의 개정 과정 ····· 17
제3절 인지수입 통계 ····· 24
Ⅰ. 연도별 인지수입 통계 ····· 24
Ⅱ. 연도별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소가 분포도 통계 ····· 26

제3장 인지액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 ····· 31

제1절 소가연동제의 개선필요성에 대한 고찰 ····· 33
Ⅰ. 논의의 필요성 ····· 33
Ⅱ. 소가연동제 현황 ····· 33
Ⅲ. 외국의 입법례 ····· 35
1. 독일 ····· 35
2. 미국 ····· 37
3. 일본 ····· 37
4. 시사점 ····· 38
가. 나라별 수수료 비교 ····· 38
나. 국가별 인지제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 39
다. Hodges, Vogenauer & Tulibacka의 연구(2009) ····· 39
Ⅳ. 소가연동제 개선과 관련된 논의 ····· 40
1. 소가와 심급에 연계되어 계산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 ····· 40
가. 실무상 제기되는 비판 ····· 40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 41
다. 법률개정안 ····· 43
2. 소송의 목적과 수수료의 관계에 대한 논의 ····· 45
가. 실무상 제기되는 비판 ····· 45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 46
다. 법률개정안 ····· 47
Ⅴ. 소가연동제 보완책 현황 ····· 47
1. 소송구조제도 ····· 47
가. 의의 ····· 47
나. 소송구조 대상의 문제점 ····· 48
다. 소송구조 효과의 문제점 ····· 50
2. 소송비용부담재판 ····· 51
가.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의의 ····· 51
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문제점 ····· 51
3. 법률서비스보험제도 ····· 52
4. 시사점 ····· 53
Ⅵ. 소가연동제 개선방안 검토 ····· 53
1. 1997년 이후 사건수와 인지수입 변동 분석 ····· 53

2. 인지의 기능과 소가연동제 ····· 55
3. 소송의 목적과 인지상한제 ····· 59
4. 사건별 또는 사물관할별 인지정액제 도입 ····· 61
가. 의의와 도입가능성 ····· 61
나. 영국의 고용심판소 수수료납부제도 논쟁 ····· 64
Ⅶ. 결론 ····· 67
제2절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대상 사건의 인지정액화 ····· 69
Ⅰ. 논의의 필요성 ····· 69
Ⅱ. 민사소액재판 제도 현황 ····· 69
1.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례 ····· 69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 ····· 70
3. 소액사건 접수통계 ····· 71
Ⅲ. 소액사건의 수수료에 대한 외국 입법례 ····· 73
1. 미국 ····· 73
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 73
나. 뉴욕(New York) 주 ····· 73
다.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 74
라.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 74
2. 영국 ····· 74
가. 대상 ····· 74
나. 비용 ····· 75
3. 캐나다 ····· 76
가.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 ····· 76
나. 온타리오(Ontario) 주 ····· 77
4. 싱가포르 ····· 77
5. 독일 ····· 78
6. 일본 ····· 78
7. 시사점 ····· 78
Ⅳ. 정액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 79
Ⅴ. 정액의 수준 ····· 82
1. 예산과 재판수수료 ····· 82
가. 법원 예산과 사건 ····· 82
나. 재판부 필수 구성원 이외 조력인원의 수당현황 ····· 95
2. 정액 결정시 고려사항 ····· 96
가. 정액 책정 구조 ····· 96
나. 조정수당과의 관계 ····· 98
다. 인지정액보다 소가가 낮은 사건의 처리문제 ····· 98
Ⅵ. 정액제 운영 시 유의점 ····· 99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 ···· 99
2.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분야 ····· 100

3. 절차의 변경 ····· 101
4. 상소의 경우 ····· 102
Ⅶ. 결론 ····· 102
제3절 보전처분 관련 인지의 적정성 ····· 104
Ⅰ. 논의의 필요성 ····· 104
Ⅱ. 보전처분의 인지 개정 연혁 ····· 104
1. 개정 전 법률 ····· 104
2. 보전처분의 인지 개정 ····· 105
가. 개정 1안(대안반영폐기) ····· 105
나. 개정 2안(대안) ····· 105
Ⅲ.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인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107
1. 문제점 ····· 107
가. 저렴한 비용에 따른 보전처분 남용과 본안소송 대용화 문제 ····· 107
나. 변호사보수산입기준과의 형평성 ····· 110
다. 전략적 봉쇄소송과의 관계 ····· 110
2. 개선방안 ····· 112
Ⅳ. 결론 ····· 115
제4절 부동산 가액산정방식 개선방안 ····· 117
Ⅰ. 논의의 필요성 ····· 117
Ⅱ. 부동산의 가액산정방식 현황 ····· 117
1. 산정방식 현황 ····· 117
가. 토지 ····· 117
나. 건물 ····· 118
2. 산정방식의 배경 ····· 119
Ⅲ. 현행 부동산 가액산정방식의 문제점 ····· 120
1. 토지, 건물 이외의 다른 물건·권리와의 형평성 문제 ····· 120
2. 세금계산 기준을 부동산 가액평가 기준으로 채택한 데 따른 부작용 ····· 121
가. 세금계산 기준가격 형성과정의 문제점 ····· 121
나.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적용에 따른 문제점 ····· 124
3. 같은 소송물에 대한 다른 소가(訴價) 평가의 문제 ····· 128
Ⅳ. 해결방안 검토 ····· 129
1. 실거래가액에 의한 산정방안 ····· 129
2. 모든 건물의 가액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가격 도입 ····· 130
3. 고려사항 ····· 131
가.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 131
나.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소가산정 문제 ····· 132
다. 소가의 상승에 따른 문제점 ····· 133
Ⅴ. 결론 ····· 134
제4장 인지 면제 ····· 137

Ⅰ. 논의의 필요성 ····· 139
Ⅱ. 국가에 대한 인지면제 규정의 취지 ····· 139
1. 특례의 의의 ····· 139
2. 도입배경 ····· 140
Ⅲ. 국가송무 운영현황 ····· 140
1. 송무담당, 소송현황 ····· 140
2. 국가송무 관련 예산 ····· 141
Ⅳ. 국가의 인지첩부의무 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 142
Ⅴ. 국가의 인지첩부의무 재도입의 필요성 ····· 143
1. 남소방지 측면에서의 필요성 ····· 143
2. 전략적 봉쇄소송의 통제수단으로서의 필요성 ····· 145
3. 예산관련 문제 ····· 147
4.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 150
Ⅵ. 결론 ····· 152

제5장 인지 환급 ····· 153

제1절 논의의 필요성 ····· 155
제2절 인지환급제도의 연혁과 제도 현황 ····· 157
Ⅰ. 환급제도의 연혁 ····· 157
Ⅱ. 환급제도 현황 ····· 157
1. 인지환급대상(인지법 제14조 제1항) ····· 157
2. 환급금액(인지법 제14조 제1항) ····· 158
3. 환급가능기간(인지법 제14조 제2항) ····· 158
제3절 소각하판결의 인지환급 ····· 159
Ⅰ. 문제점 ····· 159
Ⅱ.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관계 ····· 160
1. 의의 ····· 160
가. 소장각하명령 ····· 160
나. 소각하판결 ····· 160
2. 양자의 비교 ····· 160
3.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비율 통계 ····· 161
Ⅲ. 소각하판결의 인지환급 필요성 ····· 163
1.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관계에 따른 인지환급 필요성 ····· 163
가. 소장각하명령 사유의 명확성 문제 ····· 163
나. 소장각하명령 사유에 대한 법원의 처리시기 문제 ····· 166
다. 소장각하명령과 무변론 소각하판결의 형평성 ····· 166
2. 소송요건 흠결에 의한 소각하판결 시 인지환급의 필요성 ····· 170
Ⅳ. 인지환급 시 고려 사항 ····· 172
1. 환급비율의 차별방식 도입 ····· 172

2. 소각하판결 사유가 있음에도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경우 ····· 173
3. 소각하사유에 대한 판단과 본안판단이 동시에 기재된 경우 ····· 173
Ⅴ. 결론 ····· 174
제4절 이행권고에 의한 종결사건의 인지환급 ····· 175
Ⅰ. 문제점 ····· 175
Ⅱ. 이행권고 현황 ····· 176
Ⅲ. 이행권고제도의 운영방식 ····· 177
Ⅳ. 현행 인지법상 이행권고가 환급사유에서 제외된 이유 ····· 177
Ⅴ. 이행권고의 특성에 따른 인지환급의 필요성 ····· 179
Ⅵ. 결론 ····· 180
Ⅶ. 보론 ····· 180

제6장 전자소송과 인지제도 ····· 183

제1절 전자소송 개관 ····· 185
Ⅰ. 전자소송의 의의 ····· 185
Ⅱ. 전자소송의 절차적 흐름 ····· 185
제2절 전자소송환경에서의 인지제 운영 ····· 187
Ⅰ. 논의의 필요성 ····· 187
Ⅱ. 전자소송 수수료 관련 외국 입법례 ····· 187
1. 미국 ····· 187
가. 연방법원 ····· 188
나. 주 법원 ····· 189
2. 영국 ····· 189
3. 시사점 ····· 191
Ⅲ. 전자소송의 수수료 ····· 191
1. 전자소송에 대한 인지법의 태도(할인정책) ····· 191
2. 전자소송 동의와 소송절차 및 수수료의 관계 ····· 192
가. 민소전자문서법에서 전자소송 동의의 의미 ····· 192
나. 인지법에서 전자소송 동의의 의미 ····· 195
Ⅳ. 전자소송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 195
1. 인지법 규정의 문제점 ····· 195
2. 전자소송사건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 196
3. 종이소송사건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 197
4. 비율에 따른 인지액 할인 ····· 199
5. 전자소송 비이용자의 인지부담 문제 ····· 200
가. 문제점 ····· 200
나. 인터넷 이용현황과 시사점 ····· 200
다. 전자소송 비이용자와 변호사 대리 ····· 207
라. 소결 ····· 209

Ⅴ. 전자소송 정책에 따른 인지제도 변화의 필요성 ····· 210
1. 전자소송 정책 현황 ····· 210
가. 전자소송 이용 현황 ····· 210
나. 전자소송 의무자 확대 정책 ····· 211
다. 스마트법원 4.0정책 ····· 212
2. 소결 ····· 213
Ⅵ. 결론 ····· 213

제7장 보론 (인지미첩부사건의 처리) ····· 215

제1절 논의의 필요성 ····· 217
Ⅰ. 인지납부 관련 실무 ····· 217
Ⅱ. 문제점 ····· 218
제2절 개선방안 검토 ····· 222
Ⅰ. 인지미납 시 접수거부 규정 신설방안 ····· 222
1. 방안의 내용 ····· 222
2. 인지미첩부 접수사건에 대한 해외 실무 ····· 222
가. 미국 ····· 222
나. 독일 ····· 223
다. 일본 ····· 223
라. 영국 ····· 223
3. 접수거부 규정의 신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 ····· 223
Ⅱ. 부당소송인 명단 관리방안 ····· 224
1. 방안의 내용 ····· 224
2. 외국 입법례 ····· 225
가. 영국 ····· 225
나. 미국 ····· 227
3.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 228
가. 부당제소로부터 사법질서를 방어할 필요성 ····· 228
나. 부당소송인 명단등재 기준 ····· 229
다. 부당소송인 명단의 내용과 그 관리방안 ····· 230
라. 접수거부의 실무적 운영방안 ····· 233
Ⅲ. 결론 ····· 234

제8장 결론 ····· 237

87.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chtspfleger System

연구총서 2019-08

연구책임자 : 김경오(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19년 8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6
Ⅰ. 연구방법 ····· 6
Ⅱ. 연구범위 ····· 6

제2장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배경과 시행경과 ····· 9

제1절 도입배경과 제도의 시행 ····· 11
제2절 사법보좌관제도의 연혁과 제도개선 현황 ····· 12
Ⅰ. 사법보좌관제도 출범 시 담당 업무영역 ····· 12
1. 서언 ····· 12
2. 민사본안재판이 예정된 업무 ····· 12
3. 민사집행업무 ····· 13
가. 강제집행업무 ····· 13

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업무 ····· 14
다. 재산조회업무 ····· 15
라. 압류물 인도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 ····· 16
마. 제소명령 및 가압류집행취소업무 ····· 16
4. 부수적 업무 ····· 17
5. 공증적 업무 ····· 17
6. 기타 업무 ····· 18
7. 결어 ····· 19
Ⅱ.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20
1. 서언 ····· 20
2.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20
3. 통상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21
4.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21
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확정절차상의 사무 ····· 21
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각하결정 및 지급명령신청서각하결정 ····· 22
다. 공시최고불허가결정 ····· 22
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22
마. 기타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 ····· 22
5.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23
6.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 ····· 23
7. 결어 ····· 24
Ⅲ.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이후 제도개선 현황 ····· 25
1. 서언 ····· 25
2.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업무 추가 ····· 25
가. 개정배경 ····· 25
나.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의 주요 내용 ····· 26
3.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 28
가. 개정배경 ····· 28
나. 주요 개정내용 ····· 28
4. 이행권고결정 등 업무영역 확대 ····· 29
가. 개정배경 ····· 29
나. 사법보좌관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 30
5.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 ····· 30
가. 개정배경 ····· 30
나. 주요 개정내용 ····· 31
6. 가정법원 사무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 31
가. 개정배경 ····· 31
나. 주요 개정내용 ····· 31
7. 결어 ····· 32

제3장 사법보좌관의 선발과 교육 및 제도운용에 대한 발전방안 ····· 33

제1절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 ····· 35
Ⅰ. 서언 ····· 35
Ⅱ. 현재의 사법보좌관 선발과 교육 ····· 35
1. 선발방식 ····· 35
가. 선발계획의 송부 ····· 35
나.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추천 ····· 36
다. 사법보좌관의 선발 ····· 36
2.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교육 ····· 36
가. 교육주체 및 수료 현황 ····· 36
나. 2016년까지의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제도 ····· 37
다. 2017년의 교육과정 개편 ····· 39
3. 사법보좌관의 보직 운용 ····· 40
가. 보직기간 ····· 40
나. 다른 직위의 겸직 ····· 40
Ⅲ. 선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1. 문제점 ····· 41
가. 추천과정에서의 실질적 심사의 미흡 ····· 41
나. 내부 승진적 성격을 가진 선발방식 ····· 41
2. 개선방안 ····· 42
가. 소속기관장의 실질적 심사 강화 ····· 42
나. 사법보좌관 직렬의 신설 문제 ····· 42
다. 선발시험 신설 문제 ····· 43
Ⅳ. 사법보좌관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3
1. 문제점 ····· 43
가. 법률이론 강의의 한계 ····· 43
나. 실무과목에 대한 이론 강의의 부족 ····· 44
2. 비교법적 검토 ····· 44
가. 독일 ····· 44
나. 오스트리아 ····· 46
다. 그 외 각국의 사법보좌관(또는 유사직위)의 교육현황 ····· 47
3.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시사점 ····· 49
가. 우리 사법보좌관의 교육내용 ····· 49
나. 유럽연합의 통일화된 교육과정 ····· 50
다. 시사점 ····· 51
4. 개선방안 ····· 51
가. 교육기간의 연장 ····· 51
나.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교육과정 개편 ····· 52
다. 교육인력의 확보 ····· 53
라. 해외연수 등의 파견 확대 ····· 54

제2절 사법보좌관의 인사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Ⅰ. 서언 ····· 57
Ⅱ. 현행 평정방식과 문제점 ····· 57
1. 현행 평정방식 ····· 57
가. 제도의 목적 ····· 57
나. 근무성적평정 ····· 58
2. 문제점 ····· 59
가. 사법보좌관 고유의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 ····· 59
나. 1차 평가자의 문제 ····· 60
다. 평가결과의 피드백에 대한 문제 ····· 60
Ⅲ. 현행 승진제도와 문제점 ····· 61
1. 현행 승진방식 ····· 61
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 ····· 61
나. 사법부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 ····· 63
2. 승진제도의 문제점 ····· 64
가. 사법보좌관의 전문성 반영 미흡 ····· 64
나. 일반과장과 사법보좌관의 차별화된 승진기준 미비 ····· 65
Ⅳ. 부이사관 사법보좌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 65
1. 부이사관 사법보좌관제도의 개관 ····· 65
2. 역할 강화 필요성 ····· 66
Ⅴ. 개선방안 ····· 66
1. 평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 66
가. 사법보좌관 고유의 평가지표 개발 ····· 66
나. 1차 평가자의 변경 또는 개선 ····· 67
다. 평가결과의 피드백 ····· 67
2.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68
가. 승진시스템의 투트랙 운영 ····· 68
나. 일반과장과의 차별화된 승진심사 기준 설정 필요 ····· 68
3. 부이사관 사법보좌관의 역할 강화방안 ····· 68
가. 이의신청 사건의 경유자의 역할 ····· 68
나. 업무 조정자의 역할 ····· 69
다. 국가소송수행자의 자문 역할 ····· 70
라. 소결 ····· 70

제3절 사법보좌관의 명칭 변경 ····· 71
Ⅰ. 그동안의 논의 및 명칭 변경 필요성 ····· 71
1. 사법보좌관 명칭의 근거 ····· 71
2. 현행 명칭의 평가 및 변경 필요성 ····· 71
가. 긍정적인 측면 ····· 71
나. 부정적인 측면 ····· 72

다. 변경 필요성 ····· 73
Ⅱ. 구체적인 변경방안 ····· 74
1. 2008년 명칭 개정 검토 당시 변경방안 ····· 74
가. 검토 대상 변경안 ····· 74
나. 당시의 검토 결과 ····· 75
2. 적절한 대체 명칭에 대한 검토 ····· 76
가. 서언 ····· 76
나. 법무관(法務官) ····· 76
다. 사법심판관(司法審判官) ····· 77
라. 사법담당관(司法擔當官) ····· 77
마. 사법심사관(司法審査官) ····· 78
바. 사법심결관(司法審決官) ····· 78
사. 소결 ····· 78

제4장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및 추진방안 ····· 81

제1절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 ····· 83
Ⅰ. 서설 ····· 83
Ⅱ. 업무영역 확대의 기준과 필요성 ····· 84
1. 업무영역 확대의 기준 ····· 84
2.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 ····· 85
가. 법관에 의한 본안사건 심리의 충실화 강화 ····· 85
나. 업무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86
다.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 향상 ····· 86
Ⅲ. 비교법적 검토 ····· 88
1. 독일의 경우 ····· 88
가. 전부위임사무(독일 사법보좌관법 제3조 제1호) ····· 88
나. 유보위임사무(독일 사법보좌관법 제3조 제2호) ····· 90
다. 개별위임사무(독일 사법보좌관법 제3조 제3호) ····· 90
라. 개별위임사무: 사법행정사무(독일 사법보좌관법 제3조 제4호) ····· 91
마.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의 권한 ····· 92
2. 오스트리아의 경우 ····· 95
가. 사법보좌관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헌법상 직무영역의 확장 ····· 95
나. 사법보좌관의 직무영역 ····· 95
다. 각 분야에 공통되는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 ····· 96
라. 민사소송·민사집행·도산사건 분야에서의 직무범위 ····· 97
마. 비송사건 분야에서의 직무범위 ····· 98
3. 시사점 ····· 101
제2절 단기적인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검토 ····· 103
Ⅰ. 협의이혼의사 확인 업무(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103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의 개요 ····· 103

2.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의 협의상 이혼 ····· 103
3.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 104
Ⅱ. 제소전 화해 절차 업무 ····· 106
1. 제소전 화해 절차의 개요 ····· 106
2. 제소전 화해 절차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 107
Ⅲ. 담보취소 절차 업무 ····· 108
1. 보전처분 절차에서의 담보제공 ····· 108
2. 담보취소 절차의 개요 ····· 109
가. 담보사유의 소멸 ····· 109
나. 채무자의 동의 ····· 110
다. 소송 완결 후의 권리행사 최고 ····· 110
3. 담보취소절차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 110
Ⅳ.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감독업무 ····· 111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111
2.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 절차 ····· 113
가. 법원에 의한 후견감독의 필요성 ····· 113
나. 법원의 후견감독사무 ····· 113
3.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감독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 114
가. 비교법적 검토 ····· 114
나. 후견개시 및 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임 업무 ····· 114
다. 후견감독사무 ····· 115
Ⅴ. 부동산등기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 116
1. 이의신청의 의의 및 절차 ····· 116
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 117
제3절 중·장기적인 업무확대 영역에 대한 검토 ····· 118
Ⅰ. 중·장기적인 업무확대 영역 ····· 118
Ⅱ. 개인회생절차 업무 ····· 119
1.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 119
2.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개인회생절차 ····· 119
3. 개인회생절차 중 사법보좌관 담당 업무로 할 수 있는 판단기준 ····· 121
4. 사법보좌관의 담당 업무로 이관이 가능한 업무 ····· 122
Ⅲ. 과태료 사건 ····· 124
1. 과태료 사건의 개요 ····· 124
가.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의 의의 ····· 124
나. 과태료 사건의 적용법령 ····· 124
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 ····· 125
2. 과태료 사건의 개시 ····· 126
가. 법원이 1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126
나.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126
3. 과태료 사건의 심리 ····· 126

가. 약식절차 ····· 126
나. 정식절차 ····· 128
4. 과태료 사건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 129
가. 일반적인 실무처리 ····· 129
나. 과태료 사건 중 업무영역 확대가 가능한 범위 ····· 129
Ⅳ.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 130
1.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의 개요 ····· 130
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 130
나.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 131
2.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의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 132
Ⅴ. 부동산 강제관리사건 ····· 133
1. 부동산 강제관리의 개요 ····· 133
2. 부동산 강제관리절차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 135
Ⅵ. 보전처분 중 가압류사건 ····· 136
1. 가압류사건의 개요 ····· 136
가.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 136
나. 가압류의 심리 ····· 138
2. 가압류사건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 138
Ⅶ. 민사조정사건 ····· 139
1. 민사조정사건의 개요 ····· 139
가. 의의 ····· 139
나. 민사조정의 절차 ····· 140
다. 민사조정의 효력 ····· 141
2. 비교법적 검토 ····· 142
3. 민사조정사건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 142
Ⅷ. 약식명령사건 ····· 143
1. 약식절차의 개요 ····· 143
가. 의의 ····· 143
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및 방식 ····· 144
다. 약식명령의 처리 ····· 144
라. 공판절차 회부와 정식재판 ····· 145
2. 검사직무대리제도 ····· 145
가. 도입배경 ····· 145
나. 연혁 ····· 146
다. 자격 ····· 146
라. 직무범위 ····· 147
3.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 ····· 147

제5장 사법보좌관의 재판연구관 보직방안 ····· 149

제1절 재판연구관 제도의 개관 ····· 151

Ⅰ. 재판연구관 제도의 의의 ····· 151
Ⅱ. 재판연구관 제도의 연혁 ····· 151
Ⅲ. 사법보좌관의 재판연구관 보직의 필요성 ····· 153
1. 사법보좌관제도의 성과 반영 ····· 153
2. 비송 분야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활용 ····· 153
제2절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활용방안 ····· 154
Ⅰ. 관련 규정 및 임용 기준 ····· 154
1. 국가공무원법 ····· 154
2. 법원조직법 ····· 155
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 155
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 155
나.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 156
4. 법원공무원규칙 ····· 157
5.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 157
6. 재판연구관 임용 직급 ····· 158
Ⅱ. 선발 및 활용방안 ····· 160
1. 선발 및 보직기간 ····· 160
가. 선발 ····· 160
나. 보직기간 ····· 160
2. 활용방안 ····· 160
가. 관련 통계 ····· 160
나. 민사집행 및 부동산·상업등기, 공탁 분야에 특화 ····· 161

제6장 기타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방안 ····· 163

제1절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 검토 ····· 165
Ⅰ. 외부개방의 필요성 ····· 165
1. 서언 ····· 165
2. 필요성 ····· 166
가. 전문성 강화 ····· 166
나. 조직의 활성화 ····· 166
Ⅱ. 공직의 개방성 여부에 대한 일반론 ····· 166
1. 서언 ····· 166
2. 공직의 폐쇄형과 개방형 체제 ····· 167
가. 폐쇄형 체제 ····· 167
나. 개방형 체제 ····· 168
다. 한국 공무원제도에서의 개방형 도입 ····· 168
Ⅲ. 비교법적 검토 ····· 169
1. 독일의 사법보좌관제도 ····· 169
2.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제도 ····· 169
Ⅳ. 선발 및 운용방안 ····· 171

1. 서언 ····· 171
2. 구체적인 방안 ····· 171
가. 개방형 채용의 선결문제 ····· 171
나. 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 ····· 171
다. 채용직급 ····· 172
라. 교육 ····· 173
마. 채용기간 ····· 173
3. 결어 ····· 174
제2절 사법보좌관제도의 법제 개선방안의 검토 ····· 174
Ⅰ.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174
1. 현황 ····· 174
2. 개선의 필요성 ····· 175
Ⅱ. 사법보좌관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 176
1. 서언 ····· 176
2. 사법보좌관의 물적 독립성 ····· 177
가. 의의 ····· 177
나. 사법보좌관의 물적 독립성 ····· 177
3. 사법보좌관의 인적 독립성 ····· 178
Ⅲ. 비교법적 검토 ····· 179
1. 독일의 경우 ····· 179
2. 오스트리아의 경우 ····· 181
가. 사법보좌관 사건에 대한 법관의 자기 유보 ····· 181
나. 사법보좌관 사무 처리에 대한 법관의 지시 ····· 182
다. 사법보좌관의 제출의무 ····· 183
3. 시사점 ····· 183
Ⅳ. 구체적인 개선방안 ····· 184
1. 헌법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 ····· 184
2.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85

제7장 결론 ····· 18

88.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 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Comparative Study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1)

-Examples of Overseas Regulations-

연구총서 2019-09

연구책임자 : 차성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19년 12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2장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 9

제1절 각국의 퇴직법관 변호사 개업 실태: 미국, 독일, 일본 ····· 11
Ⅰ. 미국 ····· 11
Ⅱ. 독일 ····· 15
1.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문화 ····· 15
2. 독일의 전직 연방법원 판사의 로펌행 사례 ····· 18
가. Wulf Goette 판사의 Gleiss Lutz 로펌행 ····· 19
나. Wilfried Terno 판사의 Johannsen 로펌행 ····· 22
다. 슈피겔의 비판기사와 연방일반법원장의 비판 ····· 22

라. 대기기간 설정, 연금에서의 소득공제 제안 ····· 23
Ⅲ. 일본 ····· 23
제2절 각국의 규범적 대응 사례 개관 ····· 27
Ⅰ. 미국 ····· 27
1. 법관윤리와 자문의견을 통한 규범적 대응 ····· 27
가. 퇴직법관의 변호사활동에 특유한 규율 ····· 27
(1) 이익충돌 ····· 28
(2) 법관의 재직 중 고용교섭 규제 ····· 29
(3)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의 회피 또는 소송대리 제한 ····· 29
(4)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의 판사 호칭 사용 ····· 30
나.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규제와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에의 적용 ····· 30
(1) 법관과 변호사 양쪽에게 부과하는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금지 ···· 30
(2) 상대방에 대한 통지절차를 통한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혐의 피하기 ····· 34
(3) 회피, 징계, 신고의무와 심리의 무효, 재심리 ····· 35
다. 강제력 ····· 37
2. 퇴직법관 출신 변호사의 소송대리, 개업활동 규제 ····· 38
가. 주법원의 소송대리 금지 등 전관 변호사의 개업활동 제한 사례 ····· 38
나. Article III 판사의 사직, 은퇴 후 변호사 재개업 금지 도입론 ····· 41
3. 법관의 낮은 보수는 법관의 조기사직, 은퇴를 초래하는가 ····· 45
가. 2014년 연방법관 보수인상과 한국 법관 보수와의 비교 ····· 45
나. 생계비 증가와 연방법관 보수 인상 논쟁의 연혁 ····· 47
다. 법관 보수하락과 법관 사직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 48
라. 낮은 법관보수에 대한 불만의 의의: 상대적 박탈감, 실체적 공정성 ···· 49
4. 법관 연금제도와 재직기간, 변호사 재개업과의 관련성 ····· 51
가. 연금수급자격과 연방법관 재직기간 사이의 높은 상관성 ····· 51
나. 80의 규칙의 효과:
조기사직 방지 vs. 은퇴 유발 vs. 변호사 개업억제 ····· 53
다. 연금수급권 상실의 변호사 재개업 억제 효과 ····· 54
5. 비금전적 혜택(nonpecuniary benefits)과 법관직에 대한 매력증가 ····· 56
가. 급여 감소를 뛰어넘는 비금전적 혜택의 위력 ····· 56
나. 법관의 총체적 보수 개념 ····· 57
다. 법관 사직 사유의 실증적 분석 필요성 ····· 57
6. 법관보수가 법관 풀(Pool)의 질과 다양성, 업무수행의 질에 미치는 영향· 60
가. 변호사, 판사의 보수격차는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는가 ····· 60
나. 법관보수가 연방법관의 풀(Pool)의 질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62
다. 법관보수가 법관 업무수행의 질에 미치는 영향 ····· 63
라. 법관 후보자 풀(Pool)의 규모가 가지는 중요성 ····· 65
Ⅱ. 영연방국가들(탈퇴국가 포함): 전면적·부분적 개업 또는 소송대리 제한 ····· 66
1. 유럽 – 아일랜드(영연방 탈퇴국가) ····· 67

가. 재직법원과 동급법원 또는 하급법원에서의 소송대리 금지 전통 ····· 67
나. 법정변호사 협회 행위규범에 반영된 소송대리 금지 ····· 68
다. Barry White (전직) 판사의 소제기:
형사 법률구조 변호사 목록 등재 요구 ····· 70
라. 1심 고급법원: 생계를 유지할 권리의 침해 인정 ····· 71
마. 항소법원: 등재 허용하되, 생계를 유지할 권리의 침해 부정 ····· 72
바. 이후 상황: 제한적 파급력 ····· 73
2. 아시아 ····· 74
가. 홍콩 ····· 74
(1) 홍콩 법원의 구조, 법관의 자격 등 ····· 74
(2) 고등법원, 구역판사: 임명 시 퇴직 후 개업금지 서약 ····· 75
(3) 최고법원인 종심법원 판사:
법령으로 퇴직 후 사적 변호사 개업금지 ····· 76
(4) 홍콩 법관의 퇴직 후 활동 ····· 76
나. 싱가포르 ····· 76
(1) 3년 이상 재직한 상급법원 판사 소송대리의 영구적·전면적 제한 ···· 76
(2) 상급법원의 범위: 1심을 포함한 고급법원과 상고법원 ····· 77
(3) 하급법원의 범위 ····· 78
(4) 법관 임명 자격 ····· 80
(5) 예외 규정 ····· 80
3.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81
가. David Williams 판사 사례 ····· 81
나. 현재: 법관 임용 시 개업금지 서약 요구 ····· 82
4.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82
가. 나이지리아 헌법상 퇴직법관의 소송대리 금지 ····· 82
나. 개업변호사 직업행위 규칙: 소송대리 금지, 법원서면 서명금지 ····· 83
다. 소송대리 업무 외의 대안의 부족과 규범력의 약화 ····· 84
Ⅲ. 기타 국가들 ····· 85
1. 독일 ····· 85
가. 공무원지위법에 따른 재직법원에서의 5년 이내의 소송대리 제한 ····· 85
나.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 89
다. 연방일반법원 민사절차의 상고심 변호사 자격 제한 ····· 89
2. 대만: 3년 수임제한과 형사처벌 ····· 91
3. 중국: 2년 개업금지와 재직법원 소송대리 영구 금지 등 ····· 92
Ⅳ. 영국과 캐나다의 특수성 ····· 93

제3장 영국의 전면적 개업금지와 규제완화 논의 ····· 95

제1절 논의범위의 한정 ····· 97
제2절 영국의 법원과 판사 임용 ····· 97
Ⅰ. 영국의 법원 ····· 97

Ⅱ. 영국의 판사 ····· 102
제3절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개업금지의 구조 ····· 103
Ⅰ. 판사임용 조건을 매개로 한 불문의 관행 ····· 103
Ⅱ. 판사 퇴직 후 개업금지 관행의 사실상의 규범력 ····· 108
제4절 2004~2006년의 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퇴직 후 개업금지 폐지 제안 · 109
Ⅰ. 2004년 법관 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업금지 폐지 제안 ····· 109
1. 개업금지 폐지 제안 배경 ····· 110
2. 높은 백인남성 판사 비율 vs.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판사의 낮은 비율 ···· 110
3. 판사의 다양성 확보 전략 중 하나로서 개업금지 폐지 검토 ····· 111
4. 응답의견 요약보고서의 개업금지 폐지 관련 쟁점들 ····· 114
가. 변호사 개업금지가 법관직 지원에 장해물로 작용하는지 ····· 114
나. 현직 판사에 대한 재개업 금지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 117
Ⅱ. 2005~2006년 Lord Chancellor의 제안과 그에 대한 반응들 ····· 118
1. 판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허가 제안과 반발, 철회의 과정 ····· 118
2. 허용의 필요성, 위험성에 관한 논쟁 분석 ····· 122
가. 판사 퇴직 후 개업금지 폐지는 법관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가 ····· 122
(1) 사법적 서열의 상승가능성,
장래 변호사 재개업 선택권 박탈 문제 ····· 123
(2) 대륙식의 직업법관 시스템으로 전환 의도에 대한 우려, 의심 ···· 126
(3) 개업금지 폐지는 실제 법관직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가 ····· 127
나. 사법 독립이나 신뢰를 해하는가
– 실제 차원과 공공의 인식 차원에서 ····· 130
다. 판사경력의 상품화–변호사 재개업과 조정, 중재업무 수행의 차이 ···· 132
라. 개업금지와 전일제 판사와
수당제(fee–paid) 판사의 본질적 차이 유무 ····· 132
마. 판사의 헌신감소, 법관의 동료간 토론의 위축 등 ····· 134
3. 정책변경에 대비하여 제안된 조건과 안전장치와 그에 대한 반응 ····· 134
가. 소송대리 서비스(advocacy service) 제공에 대한 제한 ····· 135
나. 변호사로 재개업한 전직 법관에게 적용될 다른 조건과 안전장치 ····· 138
(1) 전직 법관이 재직 중 다룬 사건에 당사자나 법적 대리인으로
나타난 적이 있는 회사(firm)나 개인과 고용관계를 맺기 전까지의
격리기간(quarantine period) ····· 138
(2) 다른 조건과 안전장치 – 특정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한 제한 등 ··· 139
다. 재개업 전 최소한의 사법부 복무기간 설정 ····· 141
라. 조건과 안전장치의 공표와 집행 주체와 방식 ····· 143
제5절 최근의 논의 ····· 146
Ⅰ. 퇴직 판사 변호사 재개업 허용 관련 이후 논의 ····· 146
Ⅱ. 보수, 연금, 근로조건의 저하와 조기 퇴직 경향의 증가 ····· 147
1. 퇴직 후 재개업 금지 관행의 침식 주장 ····· 147
2. 낮은 조기사직 비율의 유지와 추가 연구 필요성 ····· 148

Ⅲ. 선택을 되돌릴 기회의 박탈 문제와 법관 업무수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 ····· 149
1. 법관직 지원 장려책으로서 법관직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 149
2. 판사 주요업무 파악용 사법업무 섀도잉 제도 ····· 150
3. 여성, 흑인, 소수인종의 법관 지원 조력을 위한 '사법 멘토링' 제도 ····· 150
Ⅳ. 한국의 전관변호사 개업 규제 강화 시 부작용 해소책 마련 필요성 ····· 151

제4장 캐나다의 부분적 소송대리 제한과 규제강화 논의 ····· 153

제1절 캐나다 전관 변호사 규제 논의의 개관과 특징 ····· 155
Ⅰ. 개관-현재진행형인 규제 강화 논의 ····· 155
Ⅱ. 전관 변호사 활동 규제 강화로의 방향성 ····· 157
Ⅲ. 판사의 커리어 사이클의 변화 - 3차 직업활동 양상의 출현, 확산 ····· 158
Ⅳ. 소송대리 제한에 집중된 규제 - 한국적 상황에의 적합성 ····· 159
제2절 캐나다의 판사 출신 변호사 활동 규제의 현황 ····· 160
Ⅰ. 캐나다의 법원 구조, 법관의 임명 ····· 160
1. 법원 구조 ····· 160
가. 주 단위 법원구조와 연방대법원이 이루는 기본적인 4단계 구조 ····· 161
나. 연방법원 구조와 연방법원과 주 단위 법원 사이의 관할 문제 ····· 163
다. 행정위원회와 행정심판원 ····· 164
2. 법관의 임명 ····· 165
3. 법관의 인사이동, 승진 ····· 167
4. 법관의 보수, 정년, 정원외 법관·시간제 법관, 연금 등 ····· 168
Ⅱ. 각 주의 변호사협회(Law Society) 규정으로 규율되는 규범구조 ····· 171
Ⅲ.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 모범규정 현황 ····· 174
1.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의 구성, 연혁, 임무 ····· 174
2. 직업행위 모범규정의 제정과정, 채택 정도 ····· 175
3. 법관 출신 변호사 활동 규제 관련 내용의 현황 ····· 177
가. 소송대리(Appearance)의 제한 ····· 177
나. 전직 법관경력의 마케팅 관련 규제 ····· 179
다. 담당법관과의 연고관계가 불편부당성이나
그 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 180
Ⅳ. 캐나다 변호사연합 직업행위 규범 ····· 180
Ⅴ. 주별 현황 ····· 182
1. 개업 제한과 법원절차 소송대리(appearance) 제한 ····· 182
가. 자격회복 자체의 제한이 포함된 규제례 - 노바스코샤 주 ····· 183
나. 모든 법원에 대해 기간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 184
다. 기간제한(영구 vs. 3년), 하급심으로의 확대 등
법원별 차이를 둔 경우 ····· 186
(1) 브리티시 컬럼비아 - 연방 차원의 법관임명 법원과 그 외의 법원· 187
(2) 온타리오: 상급사법법원(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추가 ····· 188
라.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의 모범규범의 3년 냉각기간 채택 사례와

변형례 ····· 194
마. 퀘벡주 – 재직한 법원에 한정한 사례 ····· 196
바. 시간제 판사에 대한 규율 ····· 197
사. Appearance의 범위 ····· 197
아. 예외적 허용사유의 문제 ····· 198
2. 전직 판사 경력의 마케팅에의 활용 ····· 199
3. 판사로 간 로펌의 전직 변호사 경력의 로펌에서의 활용 ····· 200
4. 현직 법관의 로펌 등과의 고용교섭, 사업관계 등 협의 ····· 201
5. 회피(recusal, recusation, disqualification), 이익충돌, 비밀유지 ····· 201
제3절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들 ····· 204
Ⅰ. 개관 ····· 204
Ⅱ. 규제 강화 제안들의 공통의 전제들 ····· 205
Ⅲ. 주제별 규제 강화 제안 분석 ····· 205
1. 전직 법관인 변호사의 소송대리 제한 ····· 206
가. 법원특정형 제한 vs. 상황특정형 제한 ····· 206
나. 소송대리가 제한되는 법원의 확장
– 상급 법원으로의, 캐나다 전역으로의 ····· 206
다. 소송대리가 제한되는 절차의 확장 또는 축소
– 행정위원회, 행정심판원 ····· 208
라. 법관 외 사법적 관리로의 확대 또는 축소
– 행정심판원, 소액사건법원, 치안판사 ····· 208
마. 냉각기간의 원칙적인 삭제 – 예외적 승인 조건으로 활용될 가능성 ··· 209
(1) Huband 전직 판사의 냉각기간(3년) 경과 후 소송대리 사례 ····· 209
(가) Huband 전직 판사의 냉각기간 경과 후
소송대리와 재판부 조정 ····· 209
(나) 재직시 법관 동료가 포함된 항소심 재판부와
Huband의 소송대리 ····· 211
(다) 연방대법원의 판단 ····· 213
(2) 냉각기간 3년에 한정되는 소송대리 제한의 타당성 ····· 214
바. 소송대리(appearance)의 범위 – 서면제출, 의사소통, 외관창출 경계 ··· 215
2. 예외적 상황에 근거한 승인 ····· 222
가. 예외적 승인의 가능성과 사유들 ····· 222
나. 프로보노 활동 시 예외 인정 여부 ····· 223
3. 법관 경력의 변호사 마케팅에의 활용 – 호칭, 법복, 경력표시 등 ····· 224
4. 전직 법관의 실질적 참여사건에 관한 관여금지 ····· 227
가. 전직 법관인 변호사에 대한 제한 ····· 227
나. 파트너나 어쏘시에이트 변호사의 관여 조건 ····· 228
5. 법관재직 중 고용교섭의 전면적 금지 제안 ····· 229
6. 사법적 과정의 비밀성 ····· 232
가. 전직 법관의 선례에 대한 사법적 충실함과 의뢰인 이익의 충돌 ····· 232

나. 사법적 과정의 비밀성 ····· 233

제5장 결론 ····· 237

89.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 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Comparative Study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2)

-How to Regulate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n Korea-

연구총서 2019-09

연구책임자 : 차성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12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2장 전관예우의 개념과 실태, 인식 ····· 7

제1절 전관예우의 개념 ····· 9

Ⅰ. 전관예우 존재 여부 논쟁과 전관예우 개념 ····· 9

1. 역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전관예우 존재 여부 논쟁 ····· 9

2. 전관예우 개념의 불일치로 인한 소모적 논쟁 ····· 11

3. 다양한 차원의 전관예우 개념에 대한 논의 필요성 ····· 12

Ⅱ. 전관예우의 개념, 인접개념 및 그 생태계 ····· 13

1.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 개념의 단계적 확장 ····· 13
2. 재판결과 전관예우/절차편의 전관예우 ····· 15
가. 재판결과 전관예우 ····· 16
나. 절차편의 전관예우 ····· 17
다. 심증교류 전관예우 ····· 18
라. 신경쓰임 전관예우: 기록을 보는 강도, 판단에 있어 부담감 ····· 19
마. 회색지대 ····· 20
3. 전관예우의 인접개념들 ····· 20
가. 친분예우 – 전관경력에 준하는 다양한 연고관계 활용 ····· 20
나. 그림자 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 ····· 21
다. 관선변호 – 현관예우 ····· 21
라. 역전관예우, 전관박대, 전관학대 ····· 22
마. 후관예우 ····· 22
4. 전관예우 생태계 – 전관의 발생과 선택, 활동, 재생산 ····· 23
가. 정기대량사직 후 개업의 전제조건: 당사자와 로펌의 전관 과잉선호 ··· 23
나. 전관의 생태계 활동 – 전관예우 기대감에 대한 부응의 단계화 ····· 24
다. 전관예우 생태계의 조성자이자 수혜자로서의 국가 ····· 25
(1) 헌신의 경제적 유인: 퇴직 후 전관 변호사로서의 높은 개업소득 ·· 25
(2) '아마쿠다리' 관행과 비공식적 연금·퇴직위로금으로서의 전관예우 ···· 26
(3) 값싸고 빠른 재판, 효율성 확보와 법조일원화의 역효과 논란 ····· 27
(4) 국가: 전관예우 생태계 '조성자'에서 '해체자'로의 전환 ····· 29
라. 전관 변호사 재생산의 핵심고리: 잠재적 전관 변호사로서의 정체성 ··· 31
(1) 법원 내의 전관 개업의 문화적 수용기제
– 현관의 전관 주시(注視) 문화 ····· 31
(2)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사직 여부 주시 문화 ····· 32
(3) '모시던' 부장님 사직에 대한 배석판사들의 주시 문화 ····· 32
(4) 개업인사장 우편송부·법률신문 등 개업·영입 광고 ····· 33
(5) 전관의 승소율과 수임성과에 대한 법원 내 가십(gossip) 문화 ···· 34
(6) 관행, 문화의 변화를 위한 규범화와 법관 사회의 자발적 노력 필요성 · 35
제2절 전관예우의 실태 ····· 36
Ⅰ. 실태에 관한 서술방식 ····· 36
Ⅱ. 전관예우 실태의 유형별 고찰 ····· 38
1. 전관 변호사 발생실태 ····· 38
2. 전관 변호사 로펌취업, 수임, 수임료 ····· 41
3. 전관 변호사 부적절 변론실태 ····· 43
가. 효율적 재판진행을 위한 전화변론 vs. 부정한 목적의 전화변론 ····· 43
나. 징계자료를 통한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 변론 실태 파악 시도 ····· 45
4. 전관 변호사에 대한 '예우'의 실태 ····· 48
제3절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 49
Ⅰ. 전관예우 인식과 판·검사, 변호사, 국민 간의 불화 ····· 49

Ⅱ. 전관예우의 인식 유형 ····· 51
1. 인식유형의 차이와 논의의 필요성 ····· 51
2. 이념형으로서의 4가지 전관예우 인식유형 ····· 51
가. 부정 및 정당화형 ····· 52
나. 강한 인정형 ····· 53
다. 약한 인정형 ····· 53
라. 외관중시형 ····· 54
3. 직역에 따른 지배적 인식유형과 변이형, 유형의 결합과 상호작용 ····· 54
가. 부정 및 정당화 유형 ····· 55
나. 법관 사회 내 변이형의 발생과 그 경로 ····· 55
다. 강한 인정형 ····· 58
라. 약한 인정형 ····· 58
마. 외관중시형 – 다른 지배적 인식유형과의 결합 가능성 ····· 59
4. 인식유형 차이의 발생원인과 그 시사점 ····· 60

제3장 전관예우 해외 규제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 63

제1절 해외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 상황의 전체적 평가 ····· 65
Ⅰ. 전관 변호사 활동에 대한 사법불신의 강도 ····· 65
1. 사법불신의 '우려' vs. '현실화'된 사법불신 ····· 65
2. 해외의 '은퇴'와 한국의 '대량 정기 조기사직'의 차이 ····· 66
가. '은퇴'와 '대량 정기 조기사직'의 구별 필요성 ····· 66
나. 정책목표: 40대, 50대의 대량 정기 조기사직의 정년퇴직으로의 전환 · 67
다. 시니어 판사 제도의 한국적 변용 필요성 ····· 68
3. 법원 절차 소송대리가 필수적인 한국의 전직 법관 변호사 개업활동 ····· 69
4. 대법관까지 확장된 전관예우 논란 ····· 69
Ⅱ. 매우 약한 규제수준과 그 원인 ····· 71
1. 개업제한, 소송대리 제한을 기준으로 한 비교 ····· 71
2. 회피 제도를 기준으로 한 비교 ····· 73
3. 전화변론, 관선변호 등 비정상적 변론 규제를 기준으로 한 비교 ····· 74
4. 약한 규제에 대한 과대평가 ····· 76
Ⅲ. 한국 법관직의 총체적 보수 수준에 대한 평가 ····· 77
1. 왜 한국 법관들은 40대, 50대에 대량 정기 조기사직하는가 ····· 77
2. 한국 법관의 봉급, 연금의 수준 ····· 78
가. 봉급 수준이 법관 임용, 조기사직에 미치는 영향 문제 ····· 78
(1) 해외 법관과 한국 법관의 봉급수준 비교 ····· 78
(2) 국내 법관과 변호사의 보수 수준 비교 ····· 79
나. 해외 법관과 한국 법관의 연금 수준의 비교 ····· 82
(1) 퇴직 직전 급여 대비 소득대체율 비교와 사직,
개업에 미칠 영향 예측 ····· 82
(2) 시니어 판사 제도를 참고한

한국 법관 정년 연장 및 업무감경 문제 ····· 84
(3) 퇴직 대법관을 위한 석좌교수 제도와 연금 지급정지 문제 ····· 85
(4) 변호사 개업 시 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의 개업 억제효과 ····· 88
(5) 조기퇴직 유도 형태로 설계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 89
3. 비금전적 처우 ····· 91
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비금전적 처우 ····· 91
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비금전적 처우 ····· 92
다. 법관의 조기사직 요인에 관한 후속 실증연구의 필요성 ····· 94
4. 처우개선형 대책과 규제형 대책의 균형 확보 필요성 ····· 94
가. 법조일원화 도입 시 논의된 처우개선형 대책의 실종 ····· 94
나. 규제형 대책의 위헌성 감소수단으로서의 처우개선형 대책의 가치 ····· 95
다. 전관 변호사 개업소득과 법관 보수와의 격차와 규제형 대책의 가치 ·· 96
Ⅳ. 변호사 수 증가가 전관예우에 미치는 영향 ····· 97
제2절 규제의 정당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교형량 ····· 99
Ⅰ. 규제의 정당성 ····· 99
1.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오해인가, 합리적 의심인가 ····· 99
2. 법관경력 상품화, 사법적 비밀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상반된 평가 ····· 100
3. 전관박대는 규제의 정당성을 감소시키는가 ····· 101
4. 생계를 유지할 권리 침해 vs. 직업의 자유 침해 ····· 102
가. 생계를 유지할 권리 ····· 102
나. 개업지 제한의 재평가 – 전관예우 관행의 제도적 승인 ····· 103
(1) 헌법재판소의 1989년 개업지 제한 위헌결정 ····· 103
(2) 목적의 정당성 2가지: 공정성에 대한 신뢰 vs. 중견판사 확보 ··· 104
(3) 수단의 적합성의 부정: 중견법관 확보 목적에서만 판단 ····· 105
(4) 최소침해 내지 비례성 원칙 위반의 논거: 획일성 ····· 105
다. 개업·소송대리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비교형량 ····· 106
라. 추가적인 위헌성 감소 방안들 ····· 108
(1) 위헌성 감소책 1.
– 선택을 후회하는 자를 위한 사전, 사후 안전장치 ····· 109
(가) 법관직 지원후보자를 위한 법관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 109
(나) 임명 후 일정기간 내 사직 시 예외 인정 ····· 110
(2) 위헌성 감소책 2.
– 재임용탈락, 탄핵, 질병으로 인한 사직 시 예외인정 ····· 111
(가) 재임용탈락, 탄핵의 경우 ····· 111
(나) 질병, 장애로 인한 사직의 문제 ····· 112
(3) 위헌성 감소책 3.
– 프로보노 활동 시 소송대리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 ····· 112
Ⅱ. 규제의 부작용 ····· 114
1. 법관경험을 가진 '유능한 전관' 변호사 활용 기회의 박탈 주장 ····· 114
2. '우수'한 변호사의 법관 지원감소 주장 ····· 115
가. "봉급이 중요하다": 유보된 봉급으로서 사직 후 개업소득 ····· 115

나. “대체인력 이론(The Substitutes Theory)”:
풀(Pool)은 포화되어 있는가. ····· 118
3. 법관의 장로화와 효율성의 감소 ····· 123
4. 전관 개업활동 규제는 법관의 소신·독립을 저해하는가, 강화하는가 ····· 125
Ⅲ. 비교형량과 정책적 결단의 필요성 ····· 127

제4장 규제 단계별 추가적 규제방안 모색 ····· 129

제1절 규제의 형식과 주체의 문제 ····· 131
Ⅰ. 규제의 형식 ····· 131
1.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는 규제의 다양한 형식들 ····· 131
2. 국내법상 6가지 규제형식의 활용가능성 ····· 132
Ⅱ. 개업제한과 소송대리 제한의 구별 ····· 139
Ⅲ. 유예규정, 경과규정의 활용 ····· 140
Ⅳ. 규제의 주체 – 법원의 역할에 관한 숙고 필요성 ····· 143
Ⅴ. 법관징계 개혁 필요성과 법관의 사직을 통한 징계 회피의 문제 ····· 144
1. 법관징계의 은폐 경향과 온정주의적 운용 극복을 위한 개혁방안 ····· 144
2. 법관의 사직을 통한 징계회피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 145
제2절 해외사례가 규제형 대책에 주는 시사점 ····· 151
Ⅰ. 시간적 흐름에 따른 규제형 대책 5단계의 설정 ····· 151
Ⅱ. 해외사례가 단계별 규제에 주는 시사점 ····· 152
1. 1단계 진입 사전봉쇄: 개업제한, 로펌 취업제한 ····· 153
가. 개업제한 ····· 153
(1) 대한변협의 2016. 6. 20.자 대책 ····· 153
(2) 대법관 개업제한 입법시도 ····· 154
(가) 김동철 의원안: 대법관 등 개업금지와 보수연액 90% 지급 · 154
(나) 박영선 의원안:
대법관 2년간 개업제한, 대법원 사건 수임 영구제한 ····· 156
(다) 헌법상 전관예우 관련 규정 신설 개헌안 ····· 156
(라)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제한에 대한 검토 ····· 157
(마) 6년 임기제의 정년제 전환 또는 최소 1회의 자동연임 보장 필요성 157
(바) 퇴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대체할 일자리 공급 필요성 ·· 158
나. 로펌 취업제한 ····· 158
(1) 3년짜리 로펌 취업제한의 입법 ····· 158
(2) 문제점 ····· 159
(3) 로펌 맞춤형 전관예우 대책의 필요성 ····· 162
(가) 소속 로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모색 필요성 ····· 162
(나) 소속 로펌에 대한 벌금·과태료 상향, 양벌규정,
몰수·추징, 업무정지 ····· 163
다. 현직법관과 로펌 등의 고용교섭의 제한 ····· 165
(1) 재직 중 고용교섭에 관한 권고의견과 실태조사 필요성 ····· 165

(2) 취업 자제기간, 취업협상의 자제기준의 구체화 필요성 ····· 167
2. 2단계 수임 단계: 수임·소송대리 제한, 이익충돌, 연고관계 선전금지 ····· 168
가. 수임·소송대리 제한, 이익충돌 ····· 168
(1) 1년짜리 수임제한의 실효성과 잠재력에 대한 긍정 필요성 ····· 169
(2) 1년짜리 수임제한 실효성 강화 방안들 ····· 171
(가) 짧은 수임제한 기간: 2~6년으로의 증가, 영구제한 가능성 ·· 171
(나) 퇴직 전 1년 근무에 한정되는 대상 법원: 기간 증가와 지역 확대· 173
(다) 로펌 담당변호사 시스템을 이용한 잠탈 문제:
차단조치의 마련 ····· 174
(라) 수임제한 위반의 효과 ····· 177
(마) 예외가 인정되는 친족범위 ····· 177
나. 전관 등 연고관계 홍보금지, 법관경력의 마케팅 활용 제한 ····· 177
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수임료 상한제도 ····· 180
3. 3단계 사건배당 단계:
기피, 회피,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대법원 배당제한 등 ····· 182
가. 기피, 회피 제도의 활용가능성 ····· 182
나. 전관 변호사 사건 특정재판부 재배당제도 ····· 182
다. 재판부 소속 법관과의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 제도 ····· 185
(1)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규범적 근거 ····· 185
(2) 매우 좁은 전관 변호사 범위 ····· 186
(3) 전관 변호사 외의 연고관계: 일종의 친분예우 규제 ····· 186
(4) 재배당 요청의 기준 ····· 187
(5) 평가 ····· 188
(6) 개선논의 ····· 188
(가) 고발인, 고소인 또는 검사, 당사자 등의 재배당 신청권 ····· 188
(나) 재판장의 연고관계 회피의무 입법화, 연고관계 고지제도 ····· 189
(다)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와 회피·기피 제도와의 관계 ····· 190
(라) 재판부 변경 vs.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소송대리 제한 ····· 190
(마) 수임·소송대리 제한, 개업제한을 통한
예방제도로의 변환 필요성 ····· 191
라.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사건 배당제한 ····· 192
4. 4단계 비정상적 변론 규제:
그림자 변론·전화변론·관선변호·사법적 비밀 ····· 193
가. 전관 변호사의 차별성 추구에서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의 역할 ····· 193
(1)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과 한국 법관윤리, 변호사윤리의 빈틈 ····· 193
(2) 현관이 느끼는 평판의 압력과 전관 변호사의 차별성 ····· 193
(3) 영향력 과시 수단으로서의 전화변론과 전관 변호사의 차별성 ···· 194
(4) 짧고 형해화된 구술변론보다 좋은 전화변론, 관선변호 ····· 195
나. 기일 외 변론에 대한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7
(1) 법정 외 면담·접촉, 기일 외 변론 규제현황과 문제점 ····· 197
(2) 미국 연방법관행위규범의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규제 ····· 199

(3)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의 기일 외 변론 규정의 쟁점별 해석 201
(4) 권고의견 제11호를 통한 구체화 시도의 배경과 한계 ····· 205
(5) 신고의무, 형사처벌의 문제 ····· 208
(가)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개념과 재판절차 ····· 208
(나)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청탁' 개념으로의 포섭가능성 ····· 212
(다) 반론 ····· 214
(6) 개선방안 ····· 215
(가) 법관윤리강령, 민사/형사소송규칙,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 필요성 ····· 215
(나) 법관 사회, 변호사 단체 내에서
충분한 자체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성 ····· 216
(다) 실효성 확보수단 1.
– 징계와 회피의 활성화와 신고의무 부과 ····· 217
(라) 실효성 확보수단 2.
– 법관연수, 변호사연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등 ····· 220
(마) 실효성 확보수단 3. – 부정청탁 개념에의 포섭문제 ····· 221
(바) 컨퍼런스콜, 화상대화시스템 등 3자간 전화협의절차 제공 ··· 222
다. 사법적 비밀 유지 의무의 규범화 ····· 222
5. 5단계 전관 정보제공형 규제: 수임, 사건처리 정보의 공개 등 ····· 225
가. 전관 정보제공형 전관예우 규제의 잠재력과 역효과 논쟁 ····· 225
나. 현행 변호사법상 정보제공형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8
다. 전관 정보제공형 대책의 주체 문제 – 법원의 역할론 ····· 232

제5장 결론 ····· 237

90.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연구총서 2019-10

연구책임자 : 이동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19년 12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 ····· 7

제1절 서설 ····· 9

제2절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 ····· 10

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현황 ····· 10

Ⅱ. 법인 아닌 단체의 재산 현황 ····· 11

제3장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과 문제점 ····· 15

제1절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 ····· 17

Ⅰ. 개관 ····· 17

Ⅱ. 법인 아닌 사단의 발생 원인 ····· 17

Ⅲ.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효과 ····· 19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 19
가. 판례 ····· 19
나.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요건 ····· 19
2. 효과 ····· 20
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 20
나. 재산 관계(총유) ····· 20
Ⅳ. 준법인적 취급 ····· 20
1. 소송상 당사자능력 ····· 20
2.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 ····· 21
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당사자능력 ····· 21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절차 ····· 22
다. 등기절차의 특징 ····· 23
3. 법인 아닌 사단의 공탁 ····· 24
가. 공탁당사자능력 ····· 24
나. 법인 아닌 사단의 공탁당사자능력 ····· 25
다. 법인 아닌 사단의 공탁 절차 ····· 25
4. 법인 아닌 사단의 집행당사자능력 ····· 26
5. 기타 ····· 26
가. 헌법심판 당사자능력 ····· 26
나. 행정심판 청구인능력 ····· 27
제2절 문제점 ····· 28
Ⅰ. 총유적 소유관계의 문제점 ····· 28
1. 서설 ····· 28
2. 총유 규정의 제정 과정 ····· 29
가. 구 민법의 태도 및 판례 ····· 29
나. 현행 민법의 총유 규정의 도입 ····· 29
3. 총유 규정에 관한 논의 ····· 30
4. 민법 개정안의 내용 ····· 31
가. 2004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 32
나. 2013년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 ····· 32
5. 소결 ····· 34
Ⅱ. 실무적 문제점 ····· 35
1. 소송절차에서 문제점 ····· 35
2. 비송절차에서 문제점 ····· 36

제4장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해외 사례 ····· 37

제1절 각국의 법적 규율 ····· 39
Ⅰ. 개설 ····· 39
Ⅱ. 독일 ····· 39

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규정 ····· 39
가. 법인격의 취득 ····· 39
나. 조합규정의 적용(독일 민법 제54조) ····· 40
2.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 및 능력 ····· 41
가. 권리능력 및 재산귀속관계 ····· 41
나. 부동산등기당사자능력 ····· 43
다. 소송당사자능력 ····· 44
3.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 도입 여부 ····· 45
가. 서설 ····· 45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당사자능력에 대한 독일의 논의 ····· 46
4. 소결 ····· 48
Ⅲ. 프랑스 ····· 48
1. 법인에 관한 프랑스 민법의 태도 ····· 48
2. 신고 되지 않은 비영리사단에 대한 규율 ····· 50
가. 법인격 인정 여부 ····· 50
나. 신고 되지 않은 비영리사단의 능력 및 재산소유형태 ····· 51
3. 소결 ····· 52
Ⅳ. 일본 ····· 53
1. 서설 ····· 53
가.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 ····· 53
나. 일본 중간법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54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법적 규율 ····· 56
가. 관련 규정 ····· 56
나. 내·외부관계 ····· 56
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 ····· 57
3.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 –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화 ····· 58
가. 중간법인제도의 개요 ····· 58
나. 중간법인 설립등기 현황 ····· 61
다. 중간법인에 대한 평가 ····· 62
4. 소결 ····· 65
제2절 시사점 ····· 66

제5장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 공시방안 ····· 67

제1절 공시의 필요성 ····· 69
Ⅰ. 공시의 의의와 공시방법 ····· 69
Ⅱ. 공시제도와 법인성의 관계 ····· 69
Ⅲ. 검토 ····· 70
제2절 등기를 통한 공시방안 – 법인화 방안 ····· 72
Ⅰ. 서설 ····· 72

Ⅱ. 민법법인의 성립요건 ····· 72
1. 목적의 비영리성 ····· 72
2. 실체형성행위 – 정관 작성 행위 ····· 73
3. 주무관청의 허가 ····· 74
4. 등기 ····· 74
Ⅲ. 법인화 방안 ····· 74
1. 민법개정 방안 – 준칙주의의 도입 ····· 74
2. 개별법에 법적 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 76
3. 단일 특별법 제정 방안 ····· 76
가. 서설 ····· 76
나. 주요 내용 ····· 77
다. 검토 ····· 80
4. 종중관리법과 종교법인법의 제정 방안 ····· 80
가. 종중관리법 제정 방안 ····· 81
나. 종교법인법의 제정 방안 ····· 84
Ⅳ. 소결 ····· 87
제3절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 ····· 89
Ⅰ. 개설 ····· 89
Ⅱ. 등록번호 제도 개관 ····· 89
1. 신청 ····· 89
2. 등록번호의 부여 ····· 90
3. 등록증명서의 발급 ····· 90
4. 소결 ····· 90
Ⅲ. 등록내용 공시의 구체적 방안 ····· 91
1. 서설 ····· 91
2.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의2 신설 ····· 91
가. 법인 아닌 사단 등록부의 작성 ····· 93
나. 등록사항 ····· 93
다. 공시 – 등록사항증명서의 발급 ····· 95
라. 대표권에 관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95
마. 등록부의 보존 ····· 96
3. 등록사무 관장 주체의 변경 ····· 96
가. 변경의 필요성 ····· 96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개정 ····· 97
4. 사단의 실체성 등 심사 강화 – 공증인 인증의 도입 필요 ····· 98
5. 등록증명서 양식 개선 ····· 101
가. 현재의 양식 ····· 101
나. 양식 개선의 필요성 ····· 102
6. 공시의 효과 ····· 103
가. 등록과 사단의 실체성 ····· 103

나. 사실상의 추정력 인정 여부 ····· 103
다. 실무의 개선 가능성 ····· 104
라. 거래의 안전 강화 ····· 104
마. 등록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처분 ····· 105
7. 기대 효과 ····· 105
Ⅳ. 검토 ····· 106
1. 공증의 신뢰성 확보의 문제 ····· 107
2. 부동산등기절차 지연의 문제 ····· 108
3. 종중과 종교단체 심사의 어려움 ····· 108
4. 소결 ····· 109

제6장 결론 ····· 111

9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The Harmonization of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justice in Trial Procedure

연구총서 2019-11

연구책임자 : 이종엽(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11월 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4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5
Ⅰ. 연구의 방법 ····· 5
Ⅱ. 연구의 내용 ····· 6

제2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일반론 ····· 9

제1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의의 ····· 11
Ⅰ. 서설 ····· 11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개념 ····· 13
1. 기본적 개념 ····· 13
가. 당사자제출주의(party-presentation) ····· 14
나. 당사자수행주의(party-prosecution) ····· 14
2. 관련 개념 ····· 15

가. 규문주의, 직권주의, 탄핵주의, 당사자주의, 비당사자주의 ····· 15
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 ····· 16
다.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 17
Ⅲ. 적용 영역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행정소송과 가사소송 ····· 18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 '운영적 이슈' 대 '제도적 이슈' ····· 18
2. 행정소송과 가사소송 : '명목상 배제'와 '실질적 적용' ····· 19
제2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본질과 그 형성과정 ····· 20
Ⅰ. 서설 ····· 20
Ⅱ. 역사적 접근 ····· 21
1. 개관 ····· 21
2. 형사소송 ····· 22
가. 영미법계 ····· 22
나. 대륙법계 ····· 30
다. 정리 ····· 32
3. 민사소송 ····· 33
가. 영미법계 ····· 33
나. 대륙법계 ····· 34
Ⅲ. 이념적 접근 ····· 40
1. 이념적 접근의 필요성 ····· 40
2. 형사재판의 이념형 :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 41
3. 민사재판의 이념형 : 변론주의 vs 직권탐지주의 ····· 43
4. 구성요소 ····· 44
가. 본질적 요소(*essentialia*) ····· 44
나. 주변적 요소(*naturalia*) ····· 50
5.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대표성 ····· 64
가. 당사자주의 ····· 64
나. 직권주의 ····· 65
제3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교착과 융합 ····· 66
Ⅰ. 두 모델의 수렴현상 ····· 66
1. 변증법적 자기교정 ····· 66
2. 수렴현상의 배경 ····· 67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 대한 변화의 추동원인 ····· 68
1. 과도한 당사자주의 ····· 68
가. 비효율성과 절차지연 ····· 68
나. 당사자의 현실적 비대등성 ····· 69
다. 소송결과의 왜곡 ····· 69
2. 과도한 직권주의 ····· 70
Ⅲ. 양 모델의 변화와 수렴의 내용 ····· 71
1. 영미법계 ····· 71
가. 민사 ····· 71

나. 형사 ····· 75
2. 대륙법계 ····· 75
가. 형사 ····· 75
나. 민사 ····· 76
3. 정리 ····· 79

제3장 우리 소송제도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실현양상 ····· 81

제1절 당사자주의·직권주의적 요소의 우리 소송법상 반영 ····· 83
Ⅰ. 제정 민·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직권주의와 그 발전 ····· 83
1. 형사소송 ····· 83
2. 민사소송 ····· 85
Ⅱ. 우리 소송법상 당사자와 법관의 권한 배분 구조 ····· 86
1. 민사소송 ····· 86
가. 소송구조 ····· 86
나. 법률의 규정 ····· 87
다. 법관주도성과 관련한 이론적 쟁점 ····· 95
2. 형사소송 ····· 101
가. 소송구조 ····· 101
나. 판례 ····· 103
다. 법률의 규정 ····· 104
제2절 당사자주의·직권주의의 실무에서의 실현양상 ····· 109
Ⅰ. 2000년 이전 법원 실무의 양상 ····· 109
1. 민사소송 : 의사(疑似) 당사자주의와 은폐된 직권주의 ····· 109
2. 형사소송 : 조서재판에 의한 직권주의 ····· 111
Ⅱ. 2000년 이후 법원 실무의 변화 ····· 112
1. 민사소송 ····· 112
가. 신모델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개혁 ····· 112
나. 구체적인 개혁내용 ····· 115
2. 형사소송 ····· 119
가. 당사자주의적 공판중심주의로의 변화 ····· 119
나. 구체적인 개혁내용 ····· 120
3. 정리 ····· 125

제4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의 최적화 요인 ····· 127

제1절 재판운영형태로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29
Ⅰ. 재판운영형태와 판사의 능동성 ····· 129
Ⅱ. 직권주의적 판사와 당사자주의적 판사 ····· 129
1. 직권주의적 판사 ····· 131
2. 당사자주의적 판사 ····· 131

Ⅲ. 재판운영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 132
1. 소송구조와 소송관 ····· 132
2. 실체적 진실, 절차적 공정성, 소송의 효율성 ····· 132
제2절 재판운영의 최적화 요인에 대한 구체적 고찰 ····· 134
Ⅰ. 소송구조와 소송관 ····· 134
1. 민사 ····· 134
가. 민사소송의 역사적, 이념적 발달과 소송구조 ····· 134
나. 민사소송에서 소송관의 전개와 법관의 역할 ····· 135
2. 형사소송에서 소송관의 전개와 법관의 역할 ····· 138
Ⅱ. 실체적 진실발견 ····· 140
1.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의 의의 ····· 140
가. 소송의 목적과 진실발견 ····· 140
나. 소송상의 진실과 실체적 진실 ····· 141
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 ····· 148
2. 진실발견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관한 논거들 ····· 150
가. 서설 ····· 150
나. 당사자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견해 ····· 151
다. 직권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견해 ····· 153
3. 실증적·이론적 연구 ····· 154
가. 개요 ····· 154
나. 정보획득과 관련된 연구 = 정확성에 관한 연구 ····· 155
다. 정보처리와 관련된 연구 = 가설형성과 확증편향 ····· 167
라. 소결론 ····· 176
Ⅲ. 절차적 정의 ····· 177
1. 서론 ····· 177
가. 절차적 정의의 의미 ····· 177
나. 판사의 적극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관계 ····· 180
2. 절차적 공정성의 결정 요인 ····· 181
가. 절차통제(Process Control) ····· 181
나. 의견표현 기회(Voice) ····· 183
다. 주장에 대한 진지한 고려(Consideration) ····· 184
3. 당사자주의·직권주의와 절차적 정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85
가. Thibaut과 Walker 등의 연구 = 당사자주의의 우위 ····· 185
나. Lind 등의 연구(1980) ····· 188
다. Sheppard 등의 연구(1985) : 직권주의적 모델의 재발견 ····· 188
라. Sevier의 연구(2014) : 진실과 절차적 정의는 맞교환되는가? ····· 190
마. 소결론 ····· 191
Ⅳ. 소송의 효율성 ····· 193
1. 서설 ····· 193
2. 당사자주의·직권주의와 효율성에 관한 논의 ····· 194

가. 기존 견해들 ····· 194
나. 실증적 연구 ····· 198
3. 직권주의의 효율성의 실천적 의의 ····· 199
가. 소송제도적 의의 ····· 199
나. 소송운용상의 의의 ····· 209
4. 시사점 ····· 211

제5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에 관한 실무인식 ····· 213

제1절 개관 ····· 215
제2절 재판의 당사자주의적 경향과 직권주의적 경향에 대한 인식 ····· 216
Ⅰ. 당사자주의적 판사 vs 직권주의적 판사 ····· 216
1. 설문 ····· 216
2. 결과 ····· 216
3. 분석 ····· 217
Ⅱ. 직권주의적 경향의 원인 ····· 218
1. 설문 ····· 218
2. 결과 ····· 218
3. 분석 ····· 219
Ⅲ. 소송의 목적 ····· 219
1. 설문 ····· 219
2. 결과 ····· 220
3. 분석 ····· 220
Ⅳ.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한 입장 ····· 221
1. 설문 ····· 221
2. 결과 ····· 221
3. 분석 ····· 221
Ⅴ. 적극적 심증개시에 대한 입장 ····· 222
1. 설문 ····· 222
2. 결과 ····· 222
3. 분석 ····· 222
Ⅵ. 보충신문과 개입신문의 적극성 ····· 223
1. 설문 ····· 223
2. 결과 ····· 223
3. 분석 ····· 224
Ⅶ. 적극적 석명의 허용 여부 ····· 225
1. 설문 ····· 225
2. 결과 ····· 225
Ⅷ. 당사자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후견적 개입 ····· 226
1. 설문 ····· 226
2. 결과 ····· 226

3. 분석 ····· 226
제3절 실제 소송에서 당사자 주도성에 대한 인식 ····· 227
Ⅰ. 당사자의 주도성 ····· 227
1. 설문 ····· 227
2. 결과 ····· 227
3. 분석 ····· 228
Ⅱ. 소극성의 원인 ····· 229
1. 설문 ····· 229
2. 결과 ····· 229
3. 분석 ····· 230
제4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230
Ⅰ. 결과의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이
재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지 ····· 230
1. 설문 ····· 230
2. 결과 ····· 230
3. 분석 ····· 231
Ⅱ. 절차적 공정성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 효율성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 232
1. 설문 ····· 232
2. 결과 ····· 232
3. 분석 ····· 232

제6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재판운영에 관한 제언 ····· 235

제1절 의사소통의 문제로서 재판운영 ····· 237
Ⅰ. 소송 이념들 사이의 우선순위 ····· 237
Ⅱ. 제도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법관과 당사자의 주도성 ····· 239
Ⅲ. 민·형사소송의 의사소통상의 차이 ····· 240
제2절 재판실무에 관한 제언 ····· 241
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의 의미 ····· 241
Ⅱ. 법관 주도성과 당사자 주도성의 통합 ····· 243
1. 의사소통적 소송모델 ····· 243
가. '능동성'의 상호교환 ····· 243
나. 대화와 토론으로서의 소송과정 ····· 244
2. 의사소통적 소송모델의 소송제도적 구현 ····· 248
가. 독일의 회의모델(토론의무) = ZPO 제139조의 재해석 ····· 248
나. 프랑스의 대심원칙 ····· 252
다. 일본에서의 절차보장의 3물결 ····· 252
라.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와 관계 ····· 253
Ⅲ. 의사소통적 소송모델과 관련한 쟁점들 ····· 255

1. 심증개시와의 관계 ····· 255
가. 심증개시의 필요성 ····· 255
나. 심증개시와 절차적 공정성 ····· 257
다. 심증개시의 선순환 ····· 258
라. 방법과 형식의 문제 ····· 259
2. 석명권 행사의 재해석 ····· 261
가. 수직벡터와 수평벡터의 의사소통 ····· 261
나. 절차보장으로서의 석명권 행사 ····· 261
3. 소송의 효율성과의 관계 ····· 263
가. 소송지휘에 관한 절차참여 ····· 263
나. 대화와 토론에 의한 변론과 효율성 ····· 264
4.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 265
Ⅳ. 정리 ····· 266
제3절 적극성의 조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267
Ⅰ. 개입의 유형 ····· 268
1. 관리적 개입과 참여적 개입 ····· 268
가. 관리적 개입 = 대화와 토론의 기초로서 정보현출을 위한 개입 ····· 268
나. 참여적 개입 =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실체형성을 위한 개입 ····· 269
2. 의사인식적 석명과 의사형성적 석명 ····· 269
3. 촉진적 소송지휘와 억제적 소송지휘 ····· 270
가. 촉진적 소송지휘 ····· 270
나. 억제적 소송지휘 ····· 271
Ⅱ. 개입의 방식과 한계 ····· 272
1. 개입의 방식 – 당사자의 절차통제감에 관한 배려와 보이스의 보장 ····· 272
가.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 ····· 272
나. 절차통제와 참여 ····· 273
다. 보이스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 ····· 274
라. 소통적 언어의 사용 ····· 276
마. 탈편향 전략 ····· 276
2. 개입의 한계 ····· 281
가. 후견주의적 개입의 한계 ····· 281
나. 법관의 중립성 요청에 의한 한계 ····· 282
Ⅲ. 심리의 단계에 따른 개입의 정도와 태양 ····· 283
1. 쟁점정리단계 ····· 283
가.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 대립 ····· 283
나. 촉진적 의사소통의 측면에서의 개입 필요성 ····· 284
다. 관리적 권한의 측면에서의 개입 필요성 ····· 285
라. 개입의 시기와 방법 ····· 286
2. 증거채부와 증거조사 ····· 289
가. 증거의 채부단계 ····· 289

나. 증거의 조사단계 ····· 292
다. 변론 ····· 295
Ⅳ. 소송의 유형에 따른 개입의 정도와 태양 ····· 297
1. 고전적 소송과 현대형 소송 ····· 297
2. 본인 소송 ····· 299
3. 구체적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에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 300
가. 변호사 대리 vs 본인 소송 ····· 300
나. 일반 시민 vs 국가, 대기업, 전문가집단 ····· 302
제4절 형사소송을 위한 제언 ····· 303
Ⅰ. 형사소송에서의 의사소통적 소송모델 ····· 303
1. 형사재판에서 의사소통의 구조 ····· 303
2. 대화적 소송진행과 법관의 개입 필요성 ····· 304
Ⅱ. 직권주의적 위험 ····· 305
Ⅲ. 양형심리와 유무죄심리의 분리 ····· 306
Ⅳ. 의사(疑似)당사자주의 – 조서재판의 극복 ····· 306
제5절 다시 제도의 문제 ····· 309
Ⅰ. 제도적 논의의 중요성 ····· 309
Ⅱ. 몇 가지 제언들 ····· 310

제7장 결론 ····· 313

92.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연구총서 2019-12

연구책임자 :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11월 25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Ⅰ. 연구의 내용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행정형 ADR에 대한 일반적 논의 ····· 7

제1절 행정형 ADR의 개념과 의의 ····· 9

제2절 행정형 ADR의 허용성과 특징 ····· 15

제3절 행정형 ADR의 주요 분쟁해결 형태 ····· 17

Ⅰ. 조정 ····· 17

Ⅱ. 알선 ····· 17

Ⅲ. 재정 ····· 18

Ⅳ. 중재 ····· 18

제3장 주요 외국에서의 행정형 ADR 제도 ····· 19

제1절 미국 ····· 21
Ⅰ. 연방 주요 ADR 법의 연혁과 전개 ····· 21
Ⅱ. 행정분쟁해결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 24
Ⅲ. 행정형 ADR 방식 ····· 27
1. 조정 ····· 27
2. 조기중립평가 ····· 28
3. 약식심리 ····· 28
4. 약식배심심리 ····· 29
5. 중재 ····· 29
6. 혼합절차 ····· 31
Ⅳ. 행정형 ADR 지원기관 ····· 32
1. 법무부 분쟁해결국 ····· 32
2. 정부부처합동 ADR 실무그룹 ····· 33
Ⅴ. 주요 행정형 ADR 기관 ····· 34
1.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ADR 기관 ····· 34
2. 연방조정알선청 ····· 35
3. 환경분쟁해결원 ····· 36
4. 계약소청심사위원회 ····· 37

제2절 독일 ····· 38
Ⅰ. ADR 법의 전개와 주요 내용 ····· 38
Ⅱ. 주요 행정형 ADR의 운영 방식 ····· 41
1. 소비자분쟁해결법 ····· 41
2. 우편법 ····· 43
3. 항공교통법 ····· 44
4. 장애인평등법 ····· 44
5. 부정경쟁방지법 ····· 45

제3절 프랑스 ····· 46
Ⅰ. ADR 제도의 전개와 현황 ····· 46
Ⅱ. 주요 행정형 ADR 기관과 운영방식 ····· 50
1. 권리보호관 ····· 50
2. 소비자분쟁해결 ····· 51
3. 임대차분쟁해결 ····· 53

제4절 일본 ····· 54
Ⅰ. ADR 제도와 주요 내용 ····· 54
Ⅱ.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행정형 ADR ····· 58
Ⅲ. 주요 행정형 ADR 기관과 운영방식 ····· 59
1. 공해 등 조정위원회 ····· 60
2. 국민생활센터 분쟁해결위원회 ····· 62

3. 노동위원회 ····· 63
4. 저작권분쟁해결 알선위원 ····· 65
5.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 ····· 66
6. 건설공사분쟁심사회 ····· 67
제5절 소결 ····· 69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관과 운영현황 ····· 73

제1절 서설 ····· 75
Ⅰ. 행정형 ADR 기관의 현황과 분류 ····· 75
Ⅱ.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목적과 조정대상 ····· 77
제2절 행정형 ADR 기관의 구성 및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 81
Ⅰ. 행정형 ADR 기관의 구성방식 ····· 81
Ⅱ. 조정위원의 자격요건 ····· 83
Ⅲ. 기타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 86
제3절 행정형 ADR에서의 분쟁해결방식과 절차 ····· 87
Ⅰ.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 87
Ⅱ. 현행 법령상 분쟁해결방식과 주요 내용 ····· 90
1. 조정 ····· 90
2. 조정 외 수단 ····· 93
Ⅲ.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 95
Ⅳ. 분쟁해결절차와 소송절차 ····· 95
Ⅴ. 분쟁해결의 법적 효력 ····· 96
제4절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운영현황 ····· 110
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110
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110
Ⅲ.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111
Ⅳ.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112
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13
Ⅵ.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113
Ⅶ. 언론중재위원회 ····· 114
Ⅷ.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17
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19
Ⅹ.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20
Ⅺ.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22
Ⅻ.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123
XIII.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23
XIV.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25
XV.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128
XVI.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129

XVII.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129
XVIII. 소결 ····· 131

제5장 현행 행정형 ADR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3

제1절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 135
Ⅰ. 조정절차에서의 조정위원의 역할 ····· 135
Ⅱ.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 136
1. 현황과 평가 ····· 136
2. 독립성과 중립성의 강화방안 ····· 138
Ⅲ. 조정위원의 전문성 ····· 139
1. 법률전문가의 참여확대 ····· 139
2. 조정위원의 전문교육 ····· 141
제2절 조정절차와 효력에 관한 사항 ····· 146
Ⅰ. 조정절차 개시에서의 자발성 ····· 146
Ⅱ. 조정의 비밀성 ····· 147
Ⅲ.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 149
1.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 149
2. 당사자의 조정위원 선정권 ····· 150
Ⅳ. 조정안 수락의제 ····· 151
Ⅴ. 조정과 소송 간의 관계 ····· 152
1.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 ····· 152
2.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 153
Ⅵ. 분쟁해결의 법적 효력으로서의 재판상 화해 ····· 155
제3절 기타 사항 ····· 161
Ⅰ. 행정형 ADR 기관의 정비 ····· 161
Ⅱ. 상임조정위원과 비상임조정위원의 증원 ····· 163
Ⅲ.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 ····· 165
Ⅳ. 행정형 ADR 기본법의 제정 ····· 168
제4절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 ····· 172
Ⅰ. 행정형 ADR의 홍보강화 ····· 172
Ⅱ. 외부연계형 조정의 적극적 활용 ····· 176
Ⅲ. 조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 180
Ⅳ. 부분적 조정전치주의와 소송으로의 이탈 금지제도의 부분적 도입 ····· 182
Ⅴ. 기타 활성화 방안 ····· 184

제6장 결론 ····· 187

93.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United States Supreme Court Jurisprudence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연구총서 2019-13

연구책임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12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소수자의 개념 개관 ····· 7

제1절 서설 ····· 9
제2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이 ····· 10
제3절 소수자의 개념 정의 ····· 11
Ⅰ. 사회·인류학적 개념 정의 ····· 11
1. 루이스 워스 ····· 11
2. 찰스 웨글리와 마빈 해리스 ····· 12
3. 앤서니 드워킨과 로자린 드워킨 ····· 12
4. 소결 ····· 13
Ⅱ. 국제법적 개념 정의 시도 ····· 14
제4절 소수자의 개념적 징표 ····· 16

Ⅰ. 수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숫자의 우열, 사회적 영향력 ····· 17
Ⅱ. 절대적 소수자와 상대적 소수자: 소수자와 다수자의 변경가능성 ····· 18
제5절 소수자의 특징 ····· 19
Ⅰ. 비지배적 위치 ····· 19
Ⅱ. 지배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 ····· 19
Ⅲ. 소수자 집단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받는 차별적 대우 ····· 20
Ⅳ. 차별의 역사적 맥락 ····· 20
제6절 소결 ····· 21
Ⅰ. 소수자라는 개념의 개방성 ····· 21
Ⅱ. 소수자의 개념에서 수적 개념이 갖는 함의 ····· 23
Ⅲ.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개념 명확한 구별 ····· 24
제3장 소수자 보호의 법적 기초 ····· 27
제1절 소수자 보호의 당위성 ····· 29
제2절 소수자 보호의 이념적 근거 ····· 31
Ⅰ. 자유 ····· 31
Ⅱ. 평등 ····· 33
Ⅲ. 인간의 존엄성 ····· 36
제3절 소결 ····· 37
제4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역할론 ····· 41
제1절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의 필요성 ····· 43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역할의 발전과정 ····· 47
Ⅰ. 개관 ····· 47
Ⅱ. Carolene Products Company 판결 각주 4 ····· 48
Ⅲ. 사법적극주의 시대, 일명 '워런 시대' ····· 52
Ⅳ. 삼중 심사 기준의 발전 ····· 54
Ⅴ. 국가행위의제론의 전개 ····· 56
제3절 소결 ····· 60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 ····· 63
제1절 서설 ····· 65
제2절 짐크로법(Jim Craw Laws)의 폐지 ····· 67
Ⅰ. 사회적 배경 ····· 67
1. Dred Scott 판결: 남북전쟁의 도화선 ····· 68
2. 링컨 대통령의 당선과 노예제도의 폐지 ····· 69
3. Plessy 판결: 인종분리정책의 고속화 ····· 70
4. 흑인 민권 운동의 시작 ····· 71

Ⅱ.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판결 ····· 72
Ⅲ. 판결의 영향 ····· 74
1. 남부의 저항 ····· 74
2. 흑백교육분리 철폐를 위한 행정부의 협력 ····· 75
3. 흑인 민권 운동의 전개 ····· 75
4. 연방대법원의 짐크로법에 대한 잇따른 위헌판결 ····· 76
5. 민권법과 투표권법의 제정: 짐크로법의 전면적 폐지 ····· 77
Ⅳ. 소결 ····· 78
제3절 타 인종 간 결혼(Interracial Marriage)의 합법화 ····· 78
Ⅰ. 사회적 배경 ····· 78
1. 피 한 방울의 법칙(One Drop Rule) ····· 78
2. 버지니아주 인종순결법(Racial Integrity Act)의 제정 ····· 79
3. Brown 판결과 짐크로법의 폐지 ····· 80
Ⅱ. Loving v. Virginia (1967) 판결 ····· 81
Ⅲ. 판결의 영향 ····· 82
1. 타 인종 간 결혼의 증가 ····· 83
2. 동성결혼의 법리적 뒷받침 ····· 84
Ⅳ. 소결 ····· 86
제4절 대학 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난항 ····· 87
Ⅰ. Affirmative Action의 개념정의 ····· 87
Ⅱ. 사회적 배경 ····· 88
1. ~1960년대: 형성 과정 ····· 88
2. 1970년대: '과거의 역사적 차별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실천 및 반대론의 등장 ····· 90
Ⅲ.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978) 판결 ····· 91
1. 파월 대법관이 집필한 의견 ····· 92
가. '인종 할당제(quota)'의 필수불가결한 공익 인정 여부(소극) ····· 93
나. '다양한 학생체 구성(diverse student body)'의 필수불가결한
공익 인정 여부(적극) ····· 93
2. 브레넌 대법관이 집필한 일부 동조의견(concurring in part) 및 반대의견(dissenting) ····· 94
3. 스티븐스 대법관이 집필한 일부 동조의견(concurring in part) 및 일부
반대의견(dissenting in part) ····· 95
Ⅳ. 판결의 영향 ····· 96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반발 ····· 96
가. 1980년대: 할당제·역차별의 논쟁 ····· 96
나. 1990년대: 다양성 확보 논리의 보완 ····· 96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의 변천 ····· 98
Ⅴ. 소결 ····· 104
제5절 여성 차별적 고정관념의 해소 ····· 105

Ⅰ. 사회적 배경 ····· 105
1. 제1차 페미니즘 물결: 여성운동의 시작 ····· 106
2.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 106
3. 제2차 페미니즘 물결: 성혁명과 여성해방운동 ····· 106
Ⅱ. Reed v. Reed (1971) 판결 ····· 108
Ⅲ. 판결의 영향 ····· 110
1. 중간 심사 기준(Intermediate Scrutiny)의 확립 ····· 110
2.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법의 잇따른 폐지 ····· 112
Ⅳ. 소결 ····· 114
제6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철폐 및 인식 개선 ····· 116
Ⅰ. 사회적 배경 ····· 116
1. 소도미법(Sodomy Law)의 폐지 ····· 116
2. 시민결합(Civil Union) 제도와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 ····· 120
3.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 121
Ⅱ. Obergefell v. Hodges (2015) 판결 ····· 126
1. 최근 생겨난 인식 및 기본적 권리 인정 ····· 128
2. 불분명한 위헌심사기준 ····· 129
3. 실체적 적법절차와 평등보호의 통합 ····· 129
4. 민주적 절차와 연방대법원의 정책결정권 ····· 130
Ⅲ. 판결의 영향 ····· 131
1. 동성결혼 지지 비율의 증가 ····· 131
2. '종교의 자유'와 '동성애자의 평등권'의 대립 ····· 132
Ⅳ. 소결 ····· 134
제7절 기타 ····· 135
Ⅰ. 외국인(Alienage) ····· 135
Ⅱ. 혼외자(Illegitimacy) ····· 137
Ⅲ. 정신장애인 ····· 139

제6장 시사점 ····· 141

제1절 개관 ····· 143
제2절 시사점 ····· 144
Ⅰ.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에 대한 실천적 인지 ····· 144
Ⅱ. 사법적극주의 기조와 살아있는 (헌)법해석 ····· 146
Ⅲ. 판결이유에 대한 충분한 논증 설시 ····· 150

제7장 결론 ····· 153

94.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Judicial Reform of China

연구총서 2019-14

연구책임자 : 김현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12월 27일 발행

제1편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9

1. 연구 자료 ····· 9

2. 연구 관점 ····· 10

제2장 중국의 사법제도 개관 ····· 11

제1절 중국의 사법기관 ····· 13

Ⅰ. 개관 ····· 13

Ⅱ. 사법기관 ····· 14

1. 인민법원 ····· 14

2. 인민검찰원 ····· 15

Ⅲ. 사법 관련 기관 ····· 16

1. 사법부(司法部) ····· 16

2. 공안기관 ····· 16

제2절 인민법원의 구성 ····· 17
Ⅰ. 최고인민법원 ····· 17
1. 지위와 구성 ····· 17
2. 직무 범위 ····· 18
3. 파출조직 ····· 19
Ⅱ. 지방인민법원 ····· 21
1. 고급인민법원 ····· 21
2. 중급인민법원 ····· 22
3. 기층인민법원 ····· 22
Ⅲ. 전문인민법원 ····· 23
1. 개관 ····· 23
2. 군사법원 ····· 23
3. 해사법원 ····· 24
4. 지식재산권법원 ····· 25
5. 금융법원 ····· 26
6. 기타 ····· 27
제3절 인민법원의 내부조직 ····· 28
Ⅰ. 재판조직과 행정관리조직 ····· 28
Ⅱ. 합의정과 단독정 ····· 29
1. 단독정 ····· 29
2. 합의정 ····· 29
Ⅲ. 재판위원회 ····· 29
제4절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 ····· 30
Ⅰ. 공산당의 영도 ····· 30
Ⅱ. 4급 2심 종심제(四級兩審終審制) ····· 32
Ⅲ. 인민검찰원에 의한 재판감독 ····· 33

제3장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개관 ····· 35

제1절 사법개혁 추진 배경 ····· 37
Ⅰ. 중국 사법제도의 형성과 변천 ····· 37
1.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형성과 초보적 발전 시기(1949년~1957년) ····· 37
2. 사법제도 발전의 곡절과 파괴 시기(1957년~1978년) ····· 38
3. 사법제도의 회복과 재건의 시기(1978년~1980년대 중반) ····· 39
4. 재판방식 개선 중심의 발전시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 41
Ⅱ. 사법개혁 추진의 동인(動因) ····· 44
1.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상황 ····· 44
2. 내부적 요인 ····· 45
3. 외부적 요인 ····· 54
제2절 사법개혁 추진 경과 ····· 56

Ⅰ. 소송절차 등 기술적 사항 중심 개혁 단계 ····· 56
1. 제1차 5개년 개혁의 실시 ····· 56
2. 제2차 5개년 개혁의 실시 ····· 58
3. 제3차 5개년 개혁의 실시 ····· 60
4. 종합평가 ····· 61
Ⅱ. 사법체제개혁의 본격화 단계 ····· 63
Ⅲ. 사법체제개혁의 종합 심화 단계 ····· 65

제4장 중국 인민법원 사법개혁의 특징 ····· 67

제1절 의법치국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 69
Ⅰ.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의 채택 ····· 69
Ⅱ. 의법치국의 의의와 특징 ····· 70
1. 의의 ····· 70
2. 본질과 특징 ····· 71
Ⅲ. 의법치국 전면 추진 ····· 72
1. 의의 ····· 72
2. 주요 임무 ····· 73
Ⅳ.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특징 ····· 73
Ⅴ. 의법치국과 사법개혁 ····· 74
제2절 중국에서의 재판독립 ····· 75
Ⅰ. 재판독립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인식 ····· 75
Ⅱ. 사법개혁과 재판독립 ····· 77
1. 재판독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 ····· 77
2. 최근 개혁조치와 재판독립 ····· 78
제3절 정층설계(頂層設計)와 기층탐색(基層探索) ····· 80
Ⅰ. 사법개혁 추진방식의 변천 ····· 80
Ⅱ. 기층탐색과 정층설계의 의의 및 특징 ····· 81
1. 기층탐색 ····· 81
2. 정층설계 ····· 83
Ⅲ. 정층설계와 기층탐색의 조화 ····· 85
1. 정층설계와 기층탐색의 이원적 방식 ····· 85
2. 정층설계와 기층탐색의 실제 운영방식 ····· 86

제5장 제1 내지 3차 법원개혁의 주요 내용 ····· 93

제1절 제1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 95
Ⅰ. 개관 ····· 95
1. 개혁 목표 ····· 95
2. 인민법원 개혁의 근거와 기본원칙 ····· 96
3. 구체적 개혁임무 ····· 96

Ⅱ. 재판방식 개혁 ····· 96
1. 주요 개혁사항 ····· 96
2. 성과와 한계 ····· 97
Ⅲ. 재판조직 개선 ····· 98
1. 주요 개혁사항 ····· 98
2. 성과와 한계 ····· 99
Ⅳ. 법원 인사관리제도 개혁 ····· 100
1. 주요 개혁사항 ····· 100
2. 성과와 한계 ····· 101
Ⅴ. 평가 ····· 101
제2절 제2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 102
Ⅰ. 개관 ····· 102
1. 기본 임무와 목표 ····· 102
2. 인민법원 개혁의 기본원칙 ····· 103
3. 구체적 개혁임무 ····· 103
Ⅱ. 소송 절차와 제도의 개혁 ····· 104
1. 주요 개혁사항 ····· 104
2. 성과와 한계 ····· 105
Ⅲ. 집행체제 개혁 ····· 105
1. 주요 개혁사항 ····· 105
2. 성과와 한계 ····· 106
Ⅳ. 평가 ····· 107
제3절 제3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 108
Ⅰ. 개관 ····· 108
1. 개혁 심화의 지도사상 ····· 108
2. 개혁 심화의 목표 ····· 109
3. 개혁 심화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개혁임무 ····· 109
Ⅱ. 인민법원 직권배치의 최적화 ····· 110
1. 구체적 개혁임무 개관 ····· 110
2. 내부조직·업무절차 개선 ····· 110
3. 사법행위 규범화 ····· 112
Ⅲ. 인민을 위한 사법업무 시스템 구축 ····· 113
1. 구체적 개혁임무 개관 ····· 113
2. 사법 공개의 확대 ····· 114
3. 다원적 분쟁해결체제 구축 ····· 114
4. 형사피해자구조와 법률구조의 강화 ····· 115
Ⅳ. 평가 ····· 115

제6장 제4차 법원개혁의 내용과 성과 ····· 117

제1절 제4차 개혁요강 개관 ····· 119
Ⅰ. 개혁 전면 심화의 목표와 기본노선 ····· 119
Ⅱ. 개혁 전면 심화의 기본원칙 ····· 119
Ⅲ. 법원개혁 관련 조직 ····· 120
1. 중앙개혁영도소조 ····· 120
2. 법원 내 개혁영도소조 ····· 120
Ⅳ. 구체적 개혁임무 ····· 121
제2절 법원 인사관리제도와 사법관리체제 등의 개선 ····· 122
Ⅰ. 사법종사자 분류관리제도와 법관정원제 실시 ····· 122
1. 사법종사자 분류관리제도 수립 ····· 122
2. 법관정원제의 전면 실시 ····· 123
Ⅱ. 성(省)급 이하 인민법원의 인·재·물 통일 관리 추진 ····· 124
1. 주요 개혁 내용 ····· 124
2. 추진 현황 ····· 125
Ⅲ. 법원 인사관리제도 개선 ····· 126
1. 법관 인사관리제도 등의 개혁 ····· 126
2. 재판보조인원 인사관리제도 등의 개혁 ····· 127
Ⅳ. 사건 관할 제도 개선 ····· 128
1. 심급제도 개선 ····· 128
2. 행정소송의 초(超)행정구역 집중관할 시범실시 ····· 129
3. 환경자원사건의 관할 개선 ····· 129
Ⅴ. 사법의 신뢰성과 권위 보호 ····· 130
1. 사법의 신뢰성과 권위 보호 제도 개선 ····· 130
2. 직업윤리 건설 강화 ····· 130
제3절 사법책임제의 전면 실시 ····· 131
Ⅰ. 개요 ····· 131
Ⅱ. 재판조직과 업무시스템 개선 ····· 132
1. 단독판사·합의정의 사건처리 책임제 ····· 132
2. 재판조직의 탄력적 구성 ····· 132
3. 사건배당 시스템 개혁 ····· 134
4. 재판 보조 업무 모델의 혁신 ····· 134
5. 원장·정장의 사건처리 상시화 ····· 135
Ⅲ. 재판업무 관리·감독제도 개선 ····· 135
1. 새로운 형식의 재판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135
2. 주심법관회의 제도 완비 ····· 136
3. 재판위원회 제도 개혁 ····· 137
4. 사례지도제도의 강화 ····· 137
Ⅳ. 법관의 직무수행 보장과 책임 추궁 제도 수립 ····· 138
1. 위법 재판 책임 추궁 시스템 개선 ····· 138
2. 법관징계제도 수립 ····· 139

3. 법관의 실적 평정 제도 개선 ····· 139
4. 내부자의 사건 탐문·관여 사실 기록·통보·책임추궁 제도 수립 ····· 141
5. 사법종사자의 적법한 직무수행 보장 시스템 개선 ····· 142
제4절 법원 조직·기구 등의 개혁 추진 ····· 143
Ⅰ. 전문 재판조직의 강화 ····· 143
1. 지식재산권 재판체계 전문화 ····· 143
2. 항저우·베이징·광저우 인터넷법원 설립 ····· 143
Ⅱ. 법원 내부조직 개혁 ····· 144
1.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설치 ····· 144
2. 초 행정구역 관할법원 시범실시 ····· 145
3. 성급 이하 인민법원의 내부조직 개혁 ····· 146
Ⅲ. 인민배심제도의 개혁 ····· 146
제5절 형사소송 관련 절차의 개선과 규범화 ····· 147
Ⅰ.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 147
1. 재판 중심의 형사소송체제 수립 추진 ····· 147
2. 형사 신속재판절차와 범죄·형량 자인 사건의 관대한 처리제도 ····· 149
3.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수행 보장제도의 개선 ····· 151
4. 오심의 예방과 교정 ····· 153
Ⅱ. 형사절차의 규범화 ····· 153
1. 양형 규범화 개혁의 심화 ····· 153
2. 감형, 가석방과 집행정지의 엄격한 규범화 ····· 154
3. 인민법원 법정규칙의 개정 ····· 154
4. 사건 관련 재물 처리 절차 규범화 ····· 155
5. 사법구조제도 개선 ····· 155
제6절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156
Ⅰ. 사법 편의성 제고 ····· 156
1. 입안제도 개선 ····· 156
2.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의 온라인 데이터 일체화 처리 ····· 157
3. 소송서비스 현대화 ····· 159
Ⅱ. 민사소송 방식 개선 ····· 160
1. 가사 재판방식·업무체제 개혁 ····· 160
2. 민사송달제도 개선 ····· 161
Ⅲ. 다원적 분쟁해결체제 강화 ····· 162
1. 다원적 분쟁해결체제 완비 ····· 162
2. 변호사 조정제도의 수립·개선 ····· 163
제7절 집행난 해결 추진 ····· 164
Ⅰ. 집행난 해결의 목표 설정과 성과 ····· 164
Ⅱ. 집행방식·제도의 개선 ····· 165
1. 온라인 재산 조사·보전 시스템 구축 ····· 165
2. 악성 피집행인에 대한 연합 제재 체제 구축 ····· 166

3. 온라인 방식 경매의 전면 추진 ····· 167
Ⅲ. 집행관리 개선 ····· 168
1. 집행관리 시스템 개선 ····· 168
2. 집행체제 개혁의 심화 ····· 169
제8절 사법공개의 심화와 스마트 법원의 건설 ····· 170
Ⅰ. 사법공개의 심화 ····· 170
1. '4대 공개 플랫폼'의 구축 ····· 170
2. 기업파산정보 공개망 구축 등 사법공개의 강화 ····· 173
Ⅱ. 스마트 법원의 건설 ····· 173
1. 정보화 건설의 정층(頂層) 계획, 기준 수립과 기초설비 구축 ····· 173
2. 전자소송의 전면 추진 ····· 174
3. 형사재판 지능 보조시스템의 개발·활용 ····· 176
4. 사건심리와 사법관리 지능화 지원의 강화 ····· 177
5. 사법관리와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화, 빅 데이터 기술 활용 ····· 177

제7장 제5차 법원개혁의 내용과 전망 ····· 181

제1절 제5차 개혁요강 개관 ····· 183
Ⅰ. 개혁요강의 구성 ····· 183
Ⅱ. 전체적 요구 ····· 183
1. 지도사상 ····· 183
2. 기본원칙 ····· 184
3. 전체 목표 ····· 185
Ⅲ. 조직과 실시 ····· 186
제2절 주요 임무 ····· 187
Ⅰ. 사회주의 사법의 이념적 특성 강화 ····· 187
1. 당의 영도를 보장하는 제도체계 완성 ····· 187
2. 전체적인 발전·안정 국면의 봉사·보장체계 완비 ····· 188
3. 인민 중심의 소송서비스 제도체계 완비 ····· 189
Ⅱ. 전반적인 조직·업무체제의 개선 ····· 190
1. 개방적·역동적이고 투명·편리한 사법제도체계의 완비 ····· 190
2. 사법책임제 중심의 재판권 운용체계 완비 ····· 191
3. 인민법원 조직체계와 직능체계 개선 ····· 192
Ⅲ. 재판·집행·사법행정의 영역별 업무체제 개혁 ····· 193
1. 시대와 과학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소송제도체계 완비 ····· 193
2. 집행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효과적 제도체계 완비 ····· 194
3. 법원종사자 분류관리 및 직업보장 제도체계의 완비 ····· 195
Ⅳ. 혁신적 과학기술 활용의 강화 ····· 196
1. 스마트법원 기초설비 건설 심화 ····· 196
2. 과학기술 혁신 수단의 활용 심화와 관련 체제 개선 ····· 197
3. 전자소송 확대와 전자기록 생성·보존 체제 개선 ····· 198

제3절 의의와 전망 ····· 199
Ⅰ. 제5차 개혁요강의 의의 ····· 199
Ⅱ. 향후 전망 ····· 200

제8장 평가 및 시사점 ····· 203

제1절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평가 ····· 205
Ⅰ. 개혁의 기본방향 ····· 205
Ⅱ. 개혁의 내용 ····· 207
1. 전통적인 문제의 해결 노력 ····· 207
2. 변화와 발전 추구 ····· 210
Ⅲ. 개혁의 방법 ····· 211
1. 개혁 주도세력 ····· 211
2. 개혁 추진 범위 ····· 212
3. 개혁 기간 ····· 213
제2절 시사점 ····· 215
Ⅰ. 개혁 내용 관련 ····· 215
1. 개혁방안 관련 아이디어 참고 ····· 215
2. 국가의 발전 상황·목표에 적합한 사법체제 구축 강화 ····· 216
3. 국민 중심의 개혁 강화 ····· 218
Ⅱ. 개혁 방식 관련 ····· 219
1. 법원개혁 추진기구의 조직 필요성 ····· 219
2.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공유 필요성 ····· 220
3. 사법개혁 연구·지원 조직의 필요성 ····· 220
4. 일선 법원의 개혁역량 활용 필요성 ····· 221
Ⅲ. 사법교류·협력 관련 ····· 222

제2편 [특별기고] 중국의 법치 실현과 사법개혁 개관

[한다위엔] 중국의 법치 발전: 도전과 향후 전망(1978～2018) ····· 227

Ⅰ. 중국의 법치 전통과 그 변천 ····· 229
Ⅱ. 중국의 법치 발전 ····· 231
1. 법제에서 법치로 ····· 232
2. 국가 본위에서 인권보장으로 ····· 233
3.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 233
4. 법률체계에서 법치체계로 ····· 234
5. 법치와 개혁의 상호역할 ····· 235
6. 단일 법치에서 혼합 법치로 ····· 236
Ⅲ. 중국의 법치 발전이 직면한 도전 ····· 236
Ⅳ. 중국 법치 발전의 향후 전망 ····· 238

[천루이화] 중국 사법개혁의 최근 동향 ····· 241

Ⅰ. 검찰기관 개혁의 기본 동향 ····· 243
1. 형사공소 직능의 개혁 ····· 243
2. 공익소송의 발전 ····· 245
3. 법률감독 직능의 변화 ····· 247
4. 사법심사 직능의 개선 ····· 249
5. 내부기구의 조정 ····· 250
Ⅱ. 사법행정기관 개혁의 기본 동향 ····· 251
1. 정부 법제부문의 통합 ····· 251
2. 공공 법률서비스 체계의 구축 ····· 252
3. 형사변호제도의 변혁 ····· 253
4. 법률업무 종사자 선발방식의 전환 ····· 255
5. 확정재판 집행직능의 발전 ····· 255

9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별책)

Research on Judicial Reform of China

연구총서 2019-14-별책

연구책임자 : 김현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12월 27일 발행

제1장 제1차 5개년 개혁요강 ····· 1

제1절 인민법원의 개혁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 ····· 3
제2절 인민법원 5개년 개혁의 기본 내용 ····· 6
제3절 영도 강화와 개혁 목표의 단계적 실현 ····· 16

제2장 제2차 5개년 개혁요강 ····· 19

제3장 제3차 5개년 개혁요강 ····· 33

제1절 인민법원 사법개혁 심화의 지도사상·목표·원칙 ····· 35
제2절 2009-2013년 인민법원 사법개혁의 주요 임무 ····· 38
제3절 인민법원 사법체제와 업무체제 개혁 심화의 업무 요청 ····· 47

제4장 제4차 5개년 개혁요강 ····· 51

제1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전체적인 사고 방향 ····· 53
제2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기본원칙 ····· 54
제3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주요 임무 ····· 55
제4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업무상 요구 ····· 71

제5장 제5차 5개년 개혁요강 ····· 73

제1절 전체적 요구 ····· 75
제2절 주요 임무 ····· 81
제3절 조직과 실시 ····· 100

96.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ederal Assembly System of Switzerland: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cess

연구총서 2019-15

연구책임자 : 최용훈(사법정책연구원 파견연구위원)

2020년 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연방의회의 위상, 권한 및 특성 ····· 9

제1절 연방의회의 위상 ····· 11
Ⅰ. 연방의 최고기관 ····· 11
Ⅱ. 연방의회와 연방내각의 상호 독립적 관계 ····· 11
1. 연방내각 불신임권 부재 ····· 11
2. 연방의회 해산불가 ····· 12
3. 불투명한 여당과 야당의 구분 ····· 12
제2절 연방의회의 권한 ····· 13
Ⅰ. 입법 권한 ····· 13
Ⅱ. 재정 권한 ····· 13
Ⅲ. 인사 권한 ····· 14
Ⅳ. 감독 권한 ····· 15
Ⅴ. 사법 권한 ····· 15
Ⅵ. 외교 등 그 밖의 권한 ····· 15
제3절 연방의회의 특성 ····· 16
Ⅰ. 민병제 의회 ····· 16

1. 개념 ····· 16
2. 연혁 ····· 17
3. 이점 ····· 18
4. 한계 ····· 18
5. 현실 ····· 20
Ⅱ.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양원제 의회 ····· 21
1. 의회구조와 양원제 ····· 21
2. 양원제 도입 배경 ····· 22
3. 국민대표기관인 연방하원 ····· 22
4. 칸톤대표기관인 연방상원 ····· 23
5. 양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스위스 양원제 의미 ····· 24

제3장 입법과정의 참여자 및 법령체계 ····· 27

제1절 입법과정의 참여자 ····· 29
Ⅰ. 연방의원, 위원회 등 연방의회 ····· 29
1. 연방의원 1인 ····· 29
2. 위원회 ····· 30
3. 법률안 발의 방식 ····· 30
4. 의원발의 법률안 특징 ····· 31
5. 의원발의 법률안 증가 ····· 32
6. 의원발의 법률안 사례 ····· 32
Ⅱ. 연방내각 ····· 33
1. 연방내각 중심 입법 ····· 34
2. 연방내각제출 법률안 사례 ····· 34
Ⅲ. 칸톤 ····· 35
제2절 입법과정의 특징 ····· 35
Ⅰ. 연방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 35
Ⅱ. 폭넓은 참여와 협의 ····· 36
Ⅲ. 연방의회 역할의 강화 ····· 36
제3절 연방법령 체계 ····· 37
Ⅰ. 연방법률 ····· 37
Ⅱ. 긴급연방법률 ····· 38
1. 헌법합치적 긴급연방법률 ····· 39
2. 헌법개정적 긴급연방법률 ····· 39
Ⅲ. 연방명령 ····· 40
Ⅳ. 연방결의 ····· 41
1. 단순연방결의 ····· 41
2. 일반구속적 연방결의 ····· 42

제4장 연방내각의 입법과정 ····· 43

제1절 연방내각의 의의 ····· 45
Ⅰ. 연방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 45
Ⅱ. 연방내각의 법제기구 ····· 46
1. 연방내각사무처 ····· 46
가. 법부 ····· 46
나. 중앙언어서비스부 ····· 47
다. 정부간행물센터 ····· 47
2. 연방법무·경찰부 법무국 공법실 ····· 48
가. 입법계획·방법과 ····· 48
나. 입법 I·II과 ····· 48
제2절 연방내각의 입법과정 ····· 49
Ⅰ. 다양한 입법요구 ····· 49
Ⅱ. 입법요구안 분석: 사전적 입법평가 ····· 49
Ⅲ. 법률안 초안 작성 ····· 50
1. 부처 공무원 중심 ····· 50
2. 전문가위원회 중심 ····· 51
Ⅳ. 법률안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 52
Ⅴ. 법률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보고서) 작성 ····· 52
Ⅵ. 입법협의절차: 의회심의 전 의견청취 ····· 53
1. 의의 ····· 53
2. 연혁 및 법령상 근거 ····· 53
3. 입법협의절차 목적 ····· 55
4. 입법협의절차 대상 및 생략 ····· 55
5. 입법협의절차 참가자 ····· 57
6. 입법협의절차 주관기관 ····· 57
7. 입법협의절차 진행: 문서절차 ····· 58
8. 입법협의절차 기한: 최소 3개월 ····· 59
9. 입법협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 59
10. 입법협의절차 효과 ····· 59
11. 입법협의절차 실적 ····· 60
Ⅶ. 연방내각제출 법률안 및 법률안 제안설명서 확정 ····· 61

제5장 연방의회의 입법과정 ····· 63

제1절 연방의회 입법과정 개요 ····· 65
제2절 선의원 결정 ····· 65

제3절 선의원 소관위원회 심사 ····· 66
Ⅰ. 소관 위원회 회부 ····· 66
Ⅱ. 위원회 심사 권한 ····· 67
Ⅲ. 위원회 심사 방법 ····· 67
1. 법률안 심사여부 결정 ····· 68
2. 위원회 심사의 비공개 ····· 68
3. 법률안의 예외적 분할심사 ····· 69
4. 언어권별 자료 제공 ····· 69
제4절 선의원 본회의 심의 ····· 70
Ⅰ. 본회의 심의의 최종성 ····· 70
Ⅱ. 본회의 심의방법 ····· 70
1.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본회의 심의여부 결정: 도입토론 ····· 71
2. 상세심의 ····· 71
3. 최종투표 ····· 72
Ⅲ. 연방의회가 수정한 안건의 비율 ····· 72
제5절 후의원 심의: 선의원 의결 법률안 회부 ····· 73
제6절 양원간 이견여부 ····· 74
Ⅰ. 양원 간 이견이 없는 경우: 법제편집위원회 검토 ····· 74
Ⅱ. 양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왕복심의, 양원조정협의회 회부 ····· 74
1. 조정횟수는 3회로 제한 ····· 75
2. 이견법률안의 심의방법 ····· 75
3. 2차 독회 후 결정 ····· 75
Ⅲ. 양원조정협의회 ····· 76
1. 구성 ····· 76
2. 조정제안서 제출 ····· 76
3. 양원조정협의회의 조정실패 또는 성공 ····· 76
4. 양원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 77
제7절 양원 본회의 의결, 공고 및 국민투표 회부 ····· 77
Ⅰ. 양원 본회의 의결 ····· 77
Ⅱ. 연방공보에 공고 ····· 78
Ⅲ. 국민투표 회부 ····· 78
1. 국민투표 의미 ····· 78
2. 선택적 국민투표 대상과 의결요건 ····· 79
3. 의무적 국민투표 대상과 의결요건 ····· 79
4. 국민투표 효과 ····· 79
제8절 연방법률안 효력발생 ····· 80
Ⅰ. 효력발생 의의 ····· 80
Ⅱ. 효력발생 사례 ····· 81
제9절 연방법률 집행 및 사법심사 배제 ····· 81

Ⅰ. 연방법률 집행 ····· 81
Ⅱ. 연방법률의 사법심사 배제 ····· 82

제6장 입법계획 및 입법평가 ····· 83

제1절 입법계획 수립 ····· 85
Ⅰ. 의의 ····· 85
Ⅱ. 연혁 및 법령상 근거 ····· 85
Ⅲ. 입법계획의 구성 ····· 86
Ⅳ. 입법계획의 수립·확정 절차 ····· 87
1. 정책환경 분석 ····· 87
2. 입법계획보고서 작성 ····· 87
3. 입법계획보고서의 연방의회 제출 ····· 87
4. 연방의회의 입법계획 심의 및 확정 ····· 88
Ⅴ. 입법계획 수립 사례 ····· 88
Ⅵ. 입법계획의 특징 ····· 90
1. 입법계획과 재정계획, 정책목표 간 연계 ····· 90
2. 연속성과 안정성 ····· 90
3. 연방내각과 연방의회 간 협력 ····· 90
제2절 입법평가 ····· 91
Ⅰ. 입법평가의 의의 ····· 91
1. 개념과 유형 ····· 91
2. 사전적 입법평가 ····· 92
3. 사후적 입법평가 ····· 92
Ⅱ. 입법평가의 연혁 ····· 93
Ⅲ. 입법평가의 법령상 근거 ····· 94
1. 연방헌법 ····· 94
2. 의회법 ····· 95
3. 연방법률의 개별 평가조항 ····· 95
Ⅳ. 입법평가의 특징 ····· 96
1. 연방의회 주도형 입법평가 ····· 96
2.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 97
Ⅴ. 입법평가의 기능 ····· 97
1. 입법품질 제고 ····· 97
2. 정보 제공 ····· 98
3. 정치적 책임성 제고 ····· 98
Ⅵ. 입법평가의 대상 ····· 99
Ⅶ. 입법평가의 기준 ····· 99
1. 의회법 기준 ····· 100
2. 법률안 제안설명서 기준 ····· 101
3. 스위스 평가학회 기준 ····· 102

Ⅷ. 입법평가의 실시사유 ····· 103
1. 연방의회 등에 권한이 있는 경우 ····· 103
2. 연방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 104
Ⅸ. 입법평가의 실시 주체 ····· 105
1. 연방의회 ····· 105
2. 연방내각 ····· 106
3. 외부 전문가 ····· 106
Ⅹ. 입법평가의 절차, 방법 및 공개 ····· 107
1. 입법평가 절차 ····· 107
2. 입법평가 방법 ····· 108
3. 입법평가 공개 ····· 108
Ⅺ. 입법평가의 한계 ····· 109
1. 입법평가의 정치적 효과 ····· 109
2. 정당화의 도구 ····· 110
3. 입법평가의 신뢰성 문제 ····· 110
4. 다양한 개별 평가와의 조정 문제 ····· 110

제7장 연방의회와 연방법원의 관계 ····· 113

제1절 연방법원 개관 ····· 115
Ⅰ. 연방대법원 ····· 115
1. 설립 및 근거 ····· 115
2. 재판부 구성 및 조직 ····· 115
3. 연방대법원 관할 ····· 116
4. 법관총회 ····· 117
5. 연방의회와의 관계 등 ····· 117
Ⅱ. 연방형사법원 ····· 118
1. 설립 및 근거 ····· 118
2. 재판부 구성 및 조직 ····· 118
3. 법관총회 ····· 119
4. 연방의회와의 관계 등 ····· 120
Ⅲ. 연방행정법원 ····· 120
1. 설립 및 근거 ····· 120
2. 재판부 구성 및 조직 ····· 120
3. 법관총회 ····· 121
4. 연방의회와의 관계 등 ····· 122
Ⅳ. 연방특허법원 ····· 122
1. 설립 및 근거 ····· 122
2. 재판부 구성 및 조직 ····· 123
3. 법관총회 ····· 123
4. 연방의회와의 관계 등 ····· 124

제2절 연방의회의 연방법관 선출 ····· 124
Ⅰ. 선출절차 ····· 124
Ⅱ. 연방법관 선출의 정치성 ····· 126
Ⅲ. 연방법관 선출 시 추가 고려사항: 언어 및 지역 등 ····· 127
Ⅳ. 연방법관 선출방식에 대한 평가 ····· 129
1. 긍정적 평가 ····· 129
2. 부정적 평가 ····· 129
3. 국제적 평가 ····· 130
제3절 연방의회의 감독과 연방법원의 독립성 ····· 131
Ⅰ. 연방의회의 연방법원 감독 ····· 131
Ⅱ. 연방법원 및 연방법관의 독립 ····· 131
1. 연방법원의 독립 ····· 131
2. 연방법관의 독립 ····· 132
Ⅲ. 연방법원의 감독과 법원독립의 균형 ····· 133

제8장 연방의회 제도의 특징, 시사점 및 결론 ····· 135

제1절 연방의회 제도의 특징 ····· 137
Ⅰ. 민병제 의회 ····· 137
Ⅱ. 연방의회의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 ····· 138
Ⅲ. 동등한 권한을 가진 양원제 의회 ····· 138
Ⅳ.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법협의절차 ····· 139
Ⅴ. 상세한 정보가 담긴 법률안 제안설명서 ····· 139
Ⅵ.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최종적 결정(직접민주주의) ····· 140
Ⅶ. 헌법상 근거를 둔 입법평가 및 연방의회의 입법계획 심사 ····· 140
Ⅷ. 전문가 참여 중심 입법 ····· 141
Ⅸ. 연방법관 선출의 정치성 및 다양성 ····· 141
Ⅹ. 연방법원의 민주적 구성·운영 ····· 142
제2절 연방의회 제도의 시사점 ····· 143
Ⅰ.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 ····· 143
Ⅱ. 양원제 도입 시 참고 ····· 145
Ⅲ. 입법예고 강화 ····· 145
Ⅳ. 법률안 제안설명서의 내실화 ····· 146
Ⅴ.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검토 ····· 147
Ⅵ. 입법평가의 규범화 ····· 147
Ⅶ. 정부입법계획의 내실화 ····· 149
Ⅷ. 전문가 참여 입법 ····· 150
Ⅸ. 대법관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 법원운영의 민주성 ····· 150
제3절 결론 ····· 151

97.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연구총서 2019-16

연구책임자 : 장지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0년 3월 2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Ⅰ. 연구의 범위 ····· 6
Ⅱ.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일반론 ····· 11

제1절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의의 ····· 13
제2절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이론적 근거 ····· 15
Ⅰ. 서설 ····· 15
Ⅱ. 종래의 이론 ····· 15
1. 예양이론 ····· 15
2. 기득권이론 및 의무이론 ····· 17
3. 그 밖의 이론 ····· 18
Ⅲ.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근거 ····· 19
1. 판례의 입장 ····· 19
2. 학설의 입장 ····· 20

3. 검토 ····· 20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제도 ····· 23

제1절 승인의 대상 ····· 25
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의미 ····· 25
1. 외국의 사법기관의 재판 ····· 26
2.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재판 ····· 27
3. 대립당사자 상호간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의 재판 ····· 28
4. 종국적 재판 ····· 30
5. 확정재판 ····· 30
가. 확정의 의미 및 판단기준 ····· 30
나. 확정 여부의 판단기준 ····· 33
Ⅱ. 개별적 고찰 ····· 33
1. 소각하판결(소송판결) ····· 33
2.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및 조정조서 ····· 33
가. 견해의 대립 ····· 33
나. 판례의 입장 ····· 35
다. 검토 ····· 35
3. 공정증서 ····· 36
4. 비송재판 ····· 36
5. 보전처분 ····· 37
가. 견해의 대립 ····· 37
(1) 제한적 적극설 ····· 37
(2) 소극설 ····· 38
나. 검토 ····· 38
6. 외국도산절차 중의 재판(면책재판 등) ····· 39
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제도 ····· 39
나. 면책재판 등의 승인의 방식 ····· 41
(1) 문제의 소재 ····· 41
(2) 견해의 대립 ····· 41
(가) 외국재판 승인설 ····· 41
(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처분설 ····· 41
(다) 외국도산절차 승인설 ····· 42
(3) 판례의 입장 ····· 42
(4) 검토 ····· 43
다. 면책재판 등의 승인의 대상적격 구비 여부 ····· 44
7. 중간판결(interlocutory judgment) ····· 44
8. 채무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 ····· 45
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채무승인판결 제도 개관 ····· 45
나. 캘리포니아주 채무승인판결이 승인대상인지 여부 ····· 46

9. 결석판결(default judgment) ····· 47
가. 영국의 결석판결 ····· 47
(1) 영국의 결석판결 제도 개관 ····· 47
(2) 영국의 결석판결이 승인대상인지 여부 ····· 48
나. 미국의 결석판결 ····· 49
10. 동의판결(consent judgment) ····· 50
가. 영국의 동의판결 제도 개관 ····· 50
나. 영국의 동의판결이 승인대상인지 여부 ····· 51
11. 중재판정 확인명령(order confirming an arbitral award) ····· 51
제2절 승인의 요건 ····· 52
Ⅰ. 서설 ····· 52
Ⅱ. 국제재판관할 요건 ····· 53
1. 서설 ····· 53
가. 국제재판관할의 의의 및 기능 ····· 53
나. 간접관할의 판단기준 ····· 53
2.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기준 ····· 54
가. 서설 ····· 54
나. 견해의 대립 ····· 54
(1) 역추지설 ····· 54
(2) 관할배분설(조리설) ····· 55
(3) 수정역추지설(특별사정설) ····· 55
다.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 55
(1) 실질적 관련의 원칙 ····· 55
(2) 국내법의 관할규정 참작 ····· 56
라. 판례의 입장 ····· 56
3. 개별적 검토 ····· 58
가. 피고주소지 ····· 58
나. 영업소 소재지 ····· 58
다. 의무이행지 ····· 59
라. 재산소재지 ····· 60
마. 불법행위지 ····· 60
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 61
(1) 소비자계약 ····· 61
(2) 근로계약 ····· 62
사. 합의관할 ····· 62
(1) 의의 ····· 62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요건 ····· 63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 64
아. 변론관할 ····· 65

4.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제재판관할 규칙 ····· 65
5. 관할요건의 심리 ····· 66
Ⅲ. 송달 요건 ····· 66
1. 송달 요건의 의의 및 취지 ····· 66
2. 송달의 적법성 및 적시성 ····· 67
가. 송달의 적법성 ····· 67
(1) 의의 및 판단기준 ····· 67
(2) 송달의 적법성의 완화 내지는 송달의 하자의 치유 인정 여부 ····· 68
나. 송달의 적시성 ····· 72
3. 송달의 방법 ····· 72
가. 사법공조에 의한 송달 ····· 72
(1) 양자조약에 의한 송달 ····· 72
(2)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송달 ····· 73
나. 통상의 송달(교부송달) 및 보충송달 ····· 74
(1) 판례의 입장 ····· 74
(2) 학설의 입장 ····· 74
(3) 검토 ····· 75
다. 우편에 의한 송달 ····· 77
라. 영사송달 ····· 78
마. 송달대리인에 의한 송달 ····· 79
4. 응소의 의미 및 판단기준 ····· 80
Ⅳ. 공서 요건 ····· 81
1. 공서의 의미 ····· 81
2. 공서 요건의 심사 ····· 83
가.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 83
나. 공서위반 심사의 대상 ····· 84
(1) 학설의 대립 ····· 84
(가) 주문설 ····· 84
(나) 이유설 ····· 85
(2) 판례의 입장 ····· 86
(3) 검토 ····· 86
3. 공서위반의 구체적 내용 ····· 87
가. 실체적 공서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87
(1) 고액배상판결(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문제) ····· 87
(가) 비전보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경우 ····· 87
(나) 과다한 전보적 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경우 ····· 90
(2) 대한민국의 강행법규 위반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외국재판 ····· 92
(3)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외국재판 ····· 92
나. 절차적 공서위반 ····· 93
(1)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 ····· 93
(2) 변론 전 디스커버리(pre-trial discovery)에 의한 외국재판 ····· 94

Ⅴ. 상호보증 요건 ····· 96
1. 상호보증의 의미 및 취지 ····· 96
2. 부분적 상호보증 ····· 98
3. 상호보증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국가별 검토 ····· 99
가. 미국 ····· 99
(1) 미국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제 ····· 99
(가) 연방법 및 조약의 부존재에 따른 주법의 규율 ····· 99
(나) 각 주별 금전지급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규 ····· 100
(다) 각 주별 비금전적 청구 또는 혼인·가사사건 등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규 ····· 110
(2)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보증 인정 여부 ····· 110
(가) 개관 ····· 110
(나) 뉴욕주 ····· 113
(다) 캘리포니아주 ····· 115
(라) 네바다주 ····· 115
(마) 그 밖의 주 ····· 116
나. 일본 ····· 117
(1) 일본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제 ····· 117
(가) 개관 ····· 117
(나) 일본 민사소송법상 승인대상: 외국재판소의 확정판결 ····· 118
(다) 일본 민사소송법상 승인요건 ····· 119
(2) 대한민국과 일본 간 상호보증 인정 여부 ····· 123
다. 독일 ····· 123
(1) 독일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제 ····· 123
(가) 조약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 123
(나) 독일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 125
(2) 대한민국과 독일 간 상호보증 인정 여부 ····· 128
라. 중국 ····· 129
(1) 중국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제 ····· 129
(가) 조약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 129
(나)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 130
(2) 대한민국과 중국 간 상호보증 인정 여부 ····· 131
(가) 대한민국 판례의 입장 ····· 131
(나) 중국 판례의 입장 ····· 132
마. 영국 ····· 133
바. 프랑스 ····· 134
사. 캐나다 ····· 135
아. 호주 ····· 136
자. 베트남 ····· 137
4. 상호보증 요건 폐지에 관한 입법론 검토 ····· 138

가. 학설의 대립 ····· 138
(1) 폐지론 ····· 138
(2) 존치론 ····· 138
나. 검토 ····· 139
제3절 승인의 절차 및 효력 ····· 140
Ⅰ. 승인의 절차 ····· 140
1. 자동승인의 원칙 ····· 140
2. 확인의 소 제기 가능성 ····· 140
Ⅱ. 승인의 효력 ····· 140
1. 승인된 외국재판의 효력의 준거법 및 범위 ····· 140
가. 견해의 대립 ····· 141
(1) 효력확장설(재판국법기준설) ····· 141
(2) 동등설(승인국법기준설) ····· 141
(3) 누적설 ····· 142
나. 검토 ····· 142
2. 승인된 외국재판의 효력 ····· 143
가. 기판력 ····· 143
나. 형성력 ····· 145
다. 참가적 효력 ····· 145
라. 법률요건적 효력 ····· 145
제4절 외국재판의 집행 ····· 146
Ⅰ. 집행판결청구소송의 법적 성격 ····· 146
1. 학설의 대립 ····· 146
가. 이행소송설 ····· 146
나. 확인소송설 ····· 146
다. 형성소송설 ····· 146
2. 검토 ····· 147
Ⅱ. 집행판결의 절차 ····· 148
1. 관할 및 당사자 ····· 148
2. 심리대상 ····· 148
3. 집행판결의 주문 ····· 149
Ⅲ.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150
1. 집행판결청구소송절차에서의 항변 ····· 150
2. 청구이의의 소 ····· 151
Ⅳ. 이행의 소와의 관계 ····· 151
1. 이행의 소 제기 가부 ····· 151
2. 이행의 소의 예비적 병합 가부 ····· 152
Ⅴ. 외국이혼재판의 집행절차의 특수성 ····· 153

제4장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 ····· 155

제1절 서론 ····· 157
Ⅰ. 국제적 동향 ····· 157
Ⅱ. 우리나라의 현황 ····· 157
Ⅲ. 국제협약 개관 ····· 158
제2절 헤이그재판협약 ····· 160
Ⅰ. 협약의 체결 배경 ····· 160
1. 협약의 목적 ····· 160
2. 협약의 성안과정 ····· 161
Ⅱ. 협약의 적용범위 ····· 162
1.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의 관계 ····· 162
2. 민사 또는 상사(제1조) ····· 162
3. 적용 배제(제2조) ····· 162
Ⅲ. 협약의 주요 내용 ····· 163
1. 체약국간 판결의 승인·집행(제4조) – 본안 심사(실질재심사)의 금지 ····· 163
2. 재판의 정의(제3조) ····· 164
3. 승인·집행의 근거(승인관할, 제5조) ····· 165
4. 승인·집행의 거부(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 165
가. 협약상 거부사유 ····· 165
나. 구체적 검토 ····· 167
(1) 상호보증 – 불요 ····· 167
(2) 송달 ····· 167
(3) 사기(fraud) ····· 167
(4) 공서(public policy) ····· 168
5.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 169
가. 협약 제10조에 따른 거절 사유 ····· 169
나. 우리법과의 비교 ····· 169
다. 전보배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170
Ⅳ. 특정국과 협약 관계 부인(제29조) ····· 172
Ⅴ. 협약 가입시 문제될 수 있는 내용 ····· 172
제3절 헤이그관할합의협약 ····· 173
Ⅰ. 협약의 기초사항 ····· 173
1. 협약의 목적 ····· 173
2. 협약의 기본원리 ····· 173
3. 체약국 ····· 174
Ⅱ. 협약의 구체적 내용 ····· 174
1. 적용범위(제2조) ····· 174
2.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제3조) ····· 175
3. 선택 법원의 관할(제5조) ····· 175
4. 선택되지 않은 법원의 의무(제6조) ····· 175
5. 관할합의에 기초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제8조, 제9조) ····· 176

Ⅲ. 가입 관련 검토 ····· 176
제4절 기타 협약 소개 ····· 177
Ⅰ. 뉴욕협약(중재) ····· 178
1. 국내법으로의 수용 ····· 178
2. 협약의 주요 내용 ····· 181
가. 승인·집행의 요건 및 효과 ····· 181
나. 승인·집행의 거부 ····· 181
(1)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유 ····· 181
(2) 권한당국이 증명하여야 하는 사유 ····· 183
Ⅱ. 싱가포르협약(조정) ····· 184
1. 채택 배경 ····· 184
2. 협약의 목적 ····· 185
3. 협약의 적용범위 ····· 185
가. 적용 요건 ····· 185
나. 적용 배제 ····· 186
4. 협약의 특징 ····· 186
가. 집행력의 부여(승인 절차의 부재) ····· 186
나. 집행의 거부사유 ····· 187
5. 전망 ····· 187

제5장 외국재판 승인·집행 제도의 개선방안 ····· 189

제1절 해석론적 제언 ····· 191
Ⅰ. 승인대상에 관한 해석론적 제언 ····· 191
Ⅱ. 승인요건에 관한 해석론적 제언 ····· 192
1. 전속적 관할합의 유효요건 중 합리적인 관련성 요건의 폐기 필요성 ····· 192
2. 보충송달의 적법성 인정 ····· 192
3. 과다한 전보배상을 명하는 확정재판 등의 승인 ····· 194
4. 상호보증 요건 심사시 유의점 ····· 196
제2절 입법론적 제언 ····· 197
Ⅰ. 정치한 국제재판관할 규칙의 도입 필요성 ····· 197
Ⅱ. 상호보증 요건의 폐지 ····· 197
Ⅲ. 민사집행법상 일부 집행에 관한 규정 신설 ····· 198
Ⅳ.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요건 구비 여부 판단주체의 변경 ····· 199
제3절 협약 가입에 관한 제언 ····· 200
Ⅰ. 헤이그재판협약 가입에 관한 제언 ····· 200
Ⅱ.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에 관한 제언 ····· 201

제6장 결론 ····· 203

98.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ied Family Court in USA

연구총서 2019-17

연구책임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3월 1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미국 통합가정법원의 도입 배경 ····· 7

제1절 개관 ····· 9
제2절 미국 내 가정법원의 설립 및 현황 ····· 10
Ⅰ. 가정법원 설립 배경 ····· 10
Ⅱ. 가정법원 설립 확대 ····· 11
제3절 가정법원 기능 수행의 문제점 ····· 13
Ⅰ. 개설 ····· 13
Ⅱ. 절차적 불공정성 ····· 14
Ⅲ. 가정법원 인력의 비전문성 ····· 16
Ⅳ. 가정법원의 체계적 한계 ····· 17
1. 개설 ····· 17
2. 가족법 관련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 ····· 18

가. 소송 기간 ····· 18
나. 단편적 소송 구조 ····· 18
다. 가족법 관련 사건의 특수성 ····· 19
라. 가족법 관련 사건과 당사자주의 절차 ····· 20
3.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 표명의 어려움 ····· 21
가. 개설 ····· 21
나. 가정법원 판사의 입장 ····· 21
다. 소송 대리인의 입장 ····· 21
라. 소송 당사자의 입장 ····· 22
4. 재판 결과의 일관성 결여 ····· 23
Ⅴ. 가정법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통합가정법원 ····· 24
제4절 통합가정법원의 의의 ····· 25
Ⅰ. 개설 ····· 25
Ⅱ. 통합가정법원의 이념적 근거로서의 치료사법 ····· 26
1. 개설 ····· 26
2. 치료사법의 개념 ····· 26
가. 개설 ····· 26
나. 의의 ····· 27
다. 특징 ····· 28
라. 실제적 운용 ····· 28
3. 직권주의의 영향 확대 ····· 31
4. 치료사법과 가족법 관련 사건 ····· 32
Ⅲ. 치료사법의 실현: 문제해결법원 ····· 34
1. 개념 ····· 34
2. 문제해결법원의 도입 배경 ····· 35
가. 개설 ····· 35
나. 문제해결법원의 시작 ····· 35
다. 현대적 의미의 문제해결법원 ····· 36
3. 현황 ····· 38
4. 문제해결법원과 통합가정법원 ····· 40
가. 개설 ····· 40
나. 각 유형의 문제해결법원의 공통적 특징 ····· 40
다.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통합가정법원의 의의 및 요건 ····· 41
Ⅳ. 통합가정법원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견해 ····· 42
1. 개설 ····· 42
2. 문제해결법원 판사의 역할과 헌법 원리의 조화 ····· 43
3. 당사자주의적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 45
4. 문제해결법원의 확산을 억제하는 요소 ····· 46
5. 정리 ····· 47

제3장 미국 통합가정법원의 특성 및 실제적 운용 ····· 49

제1절 통합가정법원의 필수적 구성 요소 ····· 51

Ⅰ. 개설 ····· 51
Ⅱ. 통합가정법원의 필수적 · 공통적 요소 ····· 51
Ⅲ. 통합가정법원 모델 ····· 54
Ⅳ. 정리 ····· 56
제2절 사건 관리로서의 팀제 운용 ····· 57
Ⅰ. 개설 ····· 57
Ⅱ. 사건 관리의 의의 ····· 58
1. 배경 및 범위 ····· 58
2. 절차 및 내용 ····· 60
3. 전문화된 법원 인력 ····· 62
가. 개설 ····· 62
나. 통합가정법원 판사 ····· 62
다. 사건 관리자 ····· 65
4. 정리 ····· 67
Ⅲ. '한 가족, 한 판사' 또는 '한 가족, 한 팀'의 팀제 운용 ····· 68
1. 개설 ····· 68
2. 팀제 운용(OFOJ)의 의의 및 평가 ····· 68
3. 플로리다 주의 팀제 운용(OFOJ) 규정 ····· 71
가. 도입 배경 ····· 71
나. 플로리다 주 가사소송규칙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72
다. 팀제 운용(OFOJ) 규정 ····· 73
라. 합동(공동) 심리 또는 합동 재판 ····· 79
마. 사건 자료에 대한 접근 및 검토 ····· 79
4. 평가 ····· 80
제3절 법원의 후견복지서비스 ····· 81
Ⅰ. 개설 ····· 81
Ⅱ. 후견복지서비스의 의의 ····· 82
1. 개설 ····· 82
2. 후견복지서비스의 도입 배경 ····· 82
3. 후견복지서비스의 이론적 근거 ····· 84
4. 법원의 후견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84
5. 통합가정법원과 후견복지서비스 ····· 86
Ⅲ. 이혼부모 · 자녀 교육 ····· 87
1. 개설 ····· 87
2. 이혼부모교육 ····· 88
가. 의의 ····· 88
나. 현황 및 평가 ····· 89
다. 대상 및 내용 ····· 90
라. 구체적 운용 ····· 91
3. 이혼자녀교육 ····· 94
가. 개설 ····· 94
나. 현황 ····· 95
Ⅳ. 조정 제도 ····· 96

1. 의의 및 도입 배경 ····· 96
2. 이혼조정 ····· 98
가. 도입 배경 ····· 98
나. 의의 ····· 99
다. 내용 ····· 100
라. 과정 ····· 101
3. 구체적 운용 ····· 102
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가정법원 ····· 102
나. 마호닝 카운티의 가정법원 ····· 102
다. 팜비치 카운티의 통합가정법원 ····· 103
Ⅴ. 면접교섭관리 ····· 109
1. 의의 ····· 109
2. 구체적 운용 ····· 111
가. 캘리포니아 주 ····· 111
나. 팜비치 카운티 ····· 111
제4절 외부 기관을 통합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 114
Ⅰ. 개설 ····· 114
Ⅱ. 팜비치 통합가정법원 소년부와 연계된 외부 서비스 · 프로그램 ····· 115
1. 개설 ····· 115
2. 자립서비스 안내 ····· 116
가. 개설 ····· 116
나. 상담 및 지원 ····· 116
다. 소년범죄의 전환 및 예방 ····· 119
라. 교육프로그램 ····· 120
3. 소년범죄 약물 법원 ····· 121
가. 의의 ····· 121
나. 프로그램의 내용 ····· 122
다. 참가 대상 ····· 122
4. 지역사회 서비스 ····· 124
5. 소년교육클리닉 ····· 126
Ⅲ. 뉴욕 주 통합법원시스템과 외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127
1. 개설 ····· 127
2. 뉴욕 주 통합법원시스템 ····· 128
3. 법원혁신센터 ····· 129
가. 개설 ····· 129
나. 프로그램 ····· 130
4. 현대적 법원을 위한 기금 ····· 131
가. 개설 ····· 131
나. 프로그램 ····· 131

제4장 미국 통합가정법원에서의 시사점 ····· 133

제1절 개설 ····· 135

제2절 팀제 또는 조별 운용에 대한 검토 ····· 136
제3절 법원 내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검토 ····· 139
제4절 외부 기관을 통합 포괄적 서비스에 대한 검토 ····· 141
제5절 정리 ····· 141

제5장 결론 ····· 143

99.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with a Focus on the Certificate by Registration

연구총서 2019-18

연구책임자 : 이혜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20년 2월 1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가족관계등록제도 개론 ····· 5

제1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7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 8
Ⅰ. 2008. 1. 1.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이전 상황 ····· 8
Ⅱ. 2008. 1. 1.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이후 ····· 9
1. 제정 가족관계등록법 ····· 9
2. 제1차 개정 ····· 9
3. 제2차 개정 ····· 10
4. 제3차 개정 ····· 10
5. 제4차 개정 ····· 10
6. 제5차 개정 ····· 10
7. 제6차 개정 ····· 11

8. 제7차 개정 ····· 11
9. 제8차 개정 ····· 12
10. 제9차 개정 ····· 12
11. 제10차 개정 ····· 12
12. 제11차 개정 ····· 12
13. 제12차 개정 ····· 13
14. 제13차 개정 ····· 13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 ····· 14
Ⅰ. 의의 ····· 14
Ⅱ. 특징 ····· 14
1.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 14
2. 신분정보의 전산단위별 집합체 ····· 14
3. 가족 간 특정등록사항의 전산 상 연결 ····· 15
Ⅲ.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 15
1. 법률상 기록사항 ····· 15
2. 규칙상 기록사항 ····· 15
3.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구분 ····· 16

제3장 등록사항별 증명제도 개론 ····· 17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의의 ····· 19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현황 ····· 20
Ⅰ. 증명서 내용 ····· 20
1. 등록사항별 일반·상세증명서 ····· 20
가. 가족관계증명서 ····· 20
나. 기본증명서 ····· 20
다. 혼인관계증명서 ····· 21
라. 입양관계증명서 ····· 21
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1
2. 특정증명서 ····· 22
3. 기타 증명서 ····· 24
Ⅱ. 증명서 교부 ····· 24
1. 교부청구권자 ····· 24
가. 본인 등 ····· 24
나. 본인 등의 대리인 ····· 25
다. 본인 등의 위임 없는 제3자 ····· 25
라. 외국인 ····· 26
2. 교부 청구 목적에 따른 발급제한 ····· 26
3. 제3자의 의무 ····· 27
제3절 증명서 등 발급현황 통계 ····· 28

Ⅰ. 통계의 필요성 ····· 28
Ⅱ. 통계 현황 ····· 28
1. 신청방식별 건수 ····· 28
2. 내·외국인별 발급건수 ····· 30
3. 신청인 자격별 발급건수 ····· 30
4. 청구사유별 발급건수 ····· 32
5. 발급서류별 건수 ····· 34
가. 증명서별 발급건수 ····· 34
나. 제적등·초본별 발급건수 ····· 36
6. 주민등록번호 공개구분별 발급건수 ····· 37
7. 아포스티유 전송여부별 발급건수 ····· 38
Ⅲ. 시사점 ····· 38

제4장 신분정보의 공개에 대한 논의와 입법 연혁 ····· 41

제1절 논의의 필요성 ····· 43
제2절 호적법 시대 : 개인신분정보 '공개' ····· 44
Ⅰ. 호적공개원칙 ····· 44
Ⅱ. 호적공개원칙에 대한 제한입법과 입법 전후 논쟁 ····· 45
Ⅲ. 평가 ····· 48
제3절 가족관계등록법 시대 : 개인신분정보 '보호' ····· 49
Ⅰ. 개인신분정보 '보호의 원칙화' ····· 49
1.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 ····· 49
2. 국회입법과정 ····· 50
3. 입법결과와 평가 ····· 54
Ⅱ. 개인신분정보 '보호의 충실화' ····· 54
1. 2010. 6. 30. ~ 2016. 11. 29.(일부증명서는 2011. 12. 30.부터) ····· 54
가. 문제점과 입법논의 ····· 54
나. 평가 ····· 57
2. 2016. 11. 30. ~ 현재 ····· 57
가. 문제점 ····· 57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 58
다. 정부의 개정 법률안 제출과 통과 ····· 59
라. 평가와 과제 ····· 60
제4절 소결 ····· 61

제5장 해외의 개인신분정보 관리현황 ····· 63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대상선정 기준 ····· 65
제2절 베트남 ····· 67

Ⅰ. 특징 ····· 67
Ⅱ. 등록 ····· 69
1. 출생 ····· 69
2. 입양 ····· 71
3. 결혼 ····· 72
4. 사망 ····· 72
5. 변동사항의 등록 ····· 73
Ⅲ. 증명 등 ····· 74
Ⅳ. 시사점 ····· 76
제3절 일본 ····· 78
Ⅰ. 특징 ····· 78
Ⅱ. 등록 ····· 79
1. 일반 ····· 79
2. 출생 ····· 80
3. 입양 ····· 81
4. 결혼 ····· 82
5. 사망 ····· 82
Ⅲ. 증명 등 ····· 83
1. 원칙적 증명방식 ····· 83
2. 일부사항증명서 관련 ····· 86
3. 본인통지제도 ····· 88
Ⅳ. 2019년 호적법의 내용 ····· 89
Ⅴ. 시사점 ····· 90
제4절 홍콩 ····· 92
Ⅰ. 특징 ····· 92
Ⅱ. 등록 ····· 93
1. 출생 ····· 93
2. 입양 ····· 93
3. 결혼 ····· 94
4. 사망 ····· 95
Ⅲ. 증명 등 ····· 95
Ⅳ. 시사점 ····· 97
제5절 미국 ····· 98
Ⅰ. 특징 ····· 98
Ⅱ. 등록 ····· 99
1. 출생 ····· 99
2. 입양 ····· 101
3. 결혼 ····· 102
가. 원칙 ····· 102
나. 결혼 방식 ····· 102

다. 이혼 ····· 104
4. 사망 ····· 105
가. 원칙 ····· 105
나. 태아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Fetal Death) ····· 105
다. 사산증명서(Certificate of Still Birth) ····· 106
Ⅲ. 증명 등 ····· 106
1. 기록의 관리(검색) ····· 106
가. 원칙 ····· 106
나. 예외 ····· 107
2. 증명 ····· 108
가. 서론 ····· 108
나.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Public Health Use Only ····· 109
다. Certified Authorized copy와 Certified Informational copy ····· 109
라. Short form certificate와 Long form certificate ····· 110
Ⅳ. 시사점 ····· 111
제6절 캐나다 ····· 113
Ⅰ. 특징 ····· 113
Ⅱ. 등록 ····· 114
1. 출생 ····· 114
2. 입양 ····· 116
3. 결혼 ····· 116
4. 사망 ····· 118
5. 등록오류의 수정 ····· 118
Ⅲ. 증명 등 ····· 119
1. 검색 ····· 119
2. 출생증명 ····· 119
3. 결혼 ····· 121
4. 이름변경증명서 ····· 121
5. 입양기록 ····· 122
6. 사망증명서 ····· 122
Ⅳ. 시사점 ····· 123
제7절 독일 ····· 125
Ⅰ. 특징 ····· 125
Ⅱ. 등록 ····· 126
1. 출생 ····· 126
2. 입양 ····· 127
3. 결혼 ····· 128
4. 사망 ····· 130
Ⅲ. 증명 등 ····· 130
Ⅳ. 시사점 ····· 133

제8절 영국 ····· 134
Ⅰ. 특징 ····· 134
Ⅱ. 등록 ····· 135
1. 출생 ····· 135
2. 입양 ····· 137
3. 결혼 ····· 138
4. 사망 ····· 140
Ⅲ. 증명 등 ····· 141
1. 신분등록부의 공개 ····· 141
2. 출생증명서 ····· 141
3. 입양증명서 ····· 142
4. Civil partnership certificate ····· 144
5. 기타 증명서 ····· 145
Ⅳ. 시사점 ····· 145
제9절 스웨덴 ····· 146
Ⅰ. 특징 ····· 146
Ⅱ. 등록 ····· 147
1. 출생 ····· 147
2. 입양 ····· 148
3. 결혼 ····· 149
4. 사망 ····· 150
Ⅲ. 증명 등 ····· 151
1. 정보공유 ····· 151
2. 증명서 ····· 152
Ⅳ. 시사점 ····· 155

제6장 등록사항별 증명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 157

제1절 논의내용과 방향 ····· 159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업무 관련 설문 ····· 160
Ⅰ.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 160
Ⅱ. 설문결과 ····· 160
1. 응답자 본인에 대한 설문 ····· 160
2. 제3자의 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설문 ····· 162
3. 상세증명서 발급 관련 ····· 163
4. 특정증명서 발급 관련 ····· 163
5. 증명서 내용 중 삭제 관련 설문 ····· 165
6. 상속 관련 증명서 ····· 167
7.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발급 ····· 167
8. 영문 이름 표기 관련 ····· 169

Ⅲ. 시사점 ····· 170
제3절 특정증명서 제도의 운영방향 ····· 172
Ⅰ. 검토의 필요성 ····· 172
Ⅱ. 일반증명서의 제외사항 ····· 172
Ⅲ. 비교1: 부동산등기의 공개방식 ····· 174
Ⅳ. 비교2: 주민등록등·초본 ····· 176
Ⅴ. 증명범위의 다양성에 대한 해외입법례 정리 ····· 178
Ⅵ. 특정증명서 선택사항 검토 ····· 179
1.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하에서의 선택사항 ····· 179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공통사항 ····· 179
나. 증명서별 기재사항 ····· 187
다. 제안정리 ····· 192
2. 법률개정이 필요한 개선안 ····· 196
가. 통합 특정증명서 제도 ····· 196
나. 용도별 증명서 제도 ····· 197
Ⅶ. 소결 ····· 197
제4절 제재규정의 개선 ····· 199
Ⅰ. 문제점 ····· 199
Ⅱ. 제재규정에 대한 논의 ····· 199
Ⅲ. 검토(제재규정의 필요) ····· 200
1. 제도 운영상의 필요성 ····· 200
2. 다른 규정과의 비교에 따른 제재규정 필요성과 제재내용 ····· 201
Ⅳ. 소결 ····· 203
제5절 등록사항별 외국어 증명서에 대한 논의 ····· 204
Ⅰ. 검토의 필요성 ····· 204
Ⅱ. 등록사항별 외국어 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존 논의와 배경 ····· 205
1. 등록사항별 증명서 작성 기준 언어에 대한 규정 ····· 205
2. 등록사항별 외국어 증명서와 관련된 설문조사 ····· 205
가. 재외공관 대상 설문조사(2014년) ····· 205
나. 전국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2019년) ····· 207
3. 증명서 등 발급통계 ····· 208
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 208
5. 타 기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번역양식제공의 문제점 ····· 209
6. 외국어 증명서 발급 경향의 확산 ····· 210
가. 공문서 ····· 210
나. 사문서 ····· 213
7. 아포스티유와 외국어 증명서 ····· 214
가. 아포스티유의 의의와 현황 ····· 214
나. 등록사항별 외국어 증명서와 관련된 시사점 ····· 217
Ⅲ. 해외 입법례 ····· 218

1.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Civil Status(ICCS) ····· 218
가. 기구의 의의 ····· 218
나. 다국어 증명 관련 협약 ····· 219
다. 실제 발행례 ····· 223
2. EU Regulation ····· 223
가. 제정 배경과 의의 ····· 223
나. 규정 내용 ····· 225
3. 대만 ····· 234
가. 신분등록의 특징 ····· 234
나. 신분등록의 외국어 증명 ····· 235
Ⅳ. 비교: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237
Ⅴ. 신설된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 ····· 239
1. 작성언어 ····· 239
2. 성명 ····· 239
3. 기록사항 ····· 239
4. 발급제한 ····· 240
Ⅵ. 검토 ····· 240
1. 영문증명서의 내용 검토 ····· 240
2. 등록사항별 외국어 증명서의 발급언어 검토 ····· 241
3. 소결 ····· 244

제7장 결론 ····· 247

100.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Applying International Rights Treaties by Korean Courts: Normative Status and Interpretive Challenges

연구총서 2020-01

연구책임자 :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3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제2장 국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을 위한 기본적 이해 ····· 11

제1절 서설 ····· 13
제2절 국제인권조약 체제와 해석자료·해석원칙에 대한 이해 ····· 13
Ⅰ. 의의 및 논의의 배경 ····· 13
Ⅱ. 조약기구에 의한 조약의 이행감독과 해석자료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심으로 – ····· 18
1. 규범적 배경: 인권의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보호체제 ····· 18
2.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 ····· 19
3. 조약별 감독기구 ····· 21
가. 소개 ····· 21
나. 국가보고 절차와 조약기구의 최종견해 ····· 24
(1) 개괄적 설명 ····· 24
(2) 법원에서의 활용방안 ····· 30
다. 일반논평/일반권고 ····· 41
(1) 개괄적 설명 ····· 41
(2) 법원에서의 활용방안 ····· 45
라. 개인진정 제도 ····· 47

(1) 개괄적 설명 ····· 47
(2) 법원에서의 활용방안 ····· 49
Ⅲ.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원칙 ····· 52
1. 비엔나조약법협약에 따른 조약의 해석원칙 ····· 53
가. 규정 ····· 53
나. 분석 및 함의 ····· 54
2.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원칙: 목적론적·진화적·실효적 해석 ····· 59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규범 간 충돌의 해결 ····· 63
Ⅰ. 의의 및 논의의 배경 ····· 63
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헌법적 근거 ····· 63
1. 조약의 국내적 편입 방식·절차 ····· 63
2. 조약의 국내적 지위 ····· 64
Ⅲ.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조정을 위한 해석원칙 ····· 66
1. 신의성실한 규범 연계에 기반한 인권의 해석 ····· 69
가. 논의의 배경 및 규범적 근거 ····· 69
나. 의무의 내용 ····· 72
다. 법원에서의 활용방안 ····· 73
2.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 ····· 76
가. 규범적 근거 ····· 76
나. 이론적 근거 ····· 80
다. 법원에서의 활용방안 ····· 82

제3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 판결문 전수조사 – ····· 85

제1절 서설 ····· 87
제2절 조사방법 ····· 88
Ⅰ. 조사대상과 범위: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문 전체 ····· 88
Ⅱ. 검색방법: 내부 전산망 주제어 검색 ····· 91
Ⅲ. 선별기준: ‘적용’ 및 ‘원용’의 의미 ····· 92
제3절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 현황 ····· 94
Ⅰ. 조약별·시기별·소송유형별 판결 현황 ····· 94
Ⅱ. 조약별 쟁점유형 및 관련 조항(침해된 인권) ····· 98
1.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 98
가. 쟁점유형별 현황 ····· 98
(1) 형사 ····· 98
(2) 민사 ····· 99
(3) 행정 ····· 100
나. 침해/관련된 인권 유형별(관련 조항별) 현황 ····· 101

(1) 형사 ····· 102
(2) 민사 ····· 103
(3) 행정 ····· 106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 108
가. 쟁점유형별 현황 ····· 108
나. 침해/관련된 인권 유형별(관련 조항별) 현황 ····· 109
3. 인종차별철폐협약 ····· 111
가. 쟁점유형별 현황 ····· 111
나. 침해/관련된 인권 유형별(관련 조항별) 현황 ····· 112
4. 여성차별철폐협약 ····· 112
가. 쟁점유형별 현황 ····· 112
나. 침해/관련된 인권 유형별(관련 조항별) 현황 ····· 114
5. 고문방지협약 ····· 115
가. 쟁점유형별 현황 ····· 115
나. 침해/관련된 인권 유형별(관련 조항별) 현황 ····· 116
6. 아동권리협약 ····· 117
가. 쟁점유형별 현황 ····· 117
나. 침해/관련된 인권 유형별(관련 조항별) 현황 ····· 118
7. 장애인권리협약 ····· 121
가. 쟁점유형별 현황 ····· 121
나. 침해/관련된 인권 유형별(관련 조항별) 현황 ····· 122
제4절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의 쟁점별 인정·불인정·미판단률 ····· 123
Ⅰ. 전체 통계 ····· 123
Ⅱ. 쟁점유형별 세부 통계 ····· 128

제4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중심으로 – ····· 137

제1절 의의 및 분석의 틀 ····· 139
Ⅰ. 의의 ····· 139
Ⅱ. 분석의 틀: 적용단계별 분석 ····· 139
제2절 불인정형: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 141
Ⅰ. 개관 ····· 141
Ⅱ. 적용단계별 논거의 분석 ····· 141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국내법적 효력 인정 ····· 141
2. 국제인권조약의 재판규범성: 자기집행성의 허상 ····· 143
3.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조약기구의 견해 배척 & 규범 간 충돌 부정 ····· 150
가. 조약기구의 견해 배척과 국내법의 효력 선언 ····· 151
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부정 ····· 152

(1) 국제인권조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의 존재를 논거로 함:
조약이 허용하는 제한이라고 해석 ····· 152
(2) 국제법의 국내법 역합치적 추정(전이 논법) ····· 154
4.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및 적용:
축자적 해석 & 국내법리·국내자료에 기반한 해석 ····· 155
가. 축자적 해석에 따른 한계 강조 ····· 156
(1)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의 개인의 특별한 청구권 창설 부정
(국내법에 따른 청구권만 인정) ····· 156
(2) 조약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나 절차를
정하고 있을 것을 요구 ····· 160
나. 국내법리에 기반한 해석 ····· 165
(1) 조약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구문을 활용한 해석 ····· 165
(2) 국내법을 통한 우회적 해석 ····· 166
(3) 해석자료의 협소함 ····· 168
제3절 인정형: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 170
Ⅰ. 개관 ····· 170
Ⅱ. 적용단계별 논거의 분석 ····· 170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국내법적 효력 인정 ····· 170
2.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조약기구와의 성실한 규범적 연계에
기반한 해석 &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 ····· 171
가. 외부 조약기구 등의 견해 존중(충돌 가능성 인정) ····· 172
나.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 으로 충돌 조정 ····· 174
3.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및 적용: 목적론적·진화적·실효적 해석 및
국내법에 대한 국제인권조약의 보충적 활용, 국제적 해석자료의 활용 ···· 178
가. 목적론적·진화적·실효적 해석 ····· 178
나. 국제인권조약의 보충적·장식적 활용 ····· 183
다. 다양한 국제적 출처의 자료 참조 ····· 186
제4절 시사점 및 제언 ····· 188
Ⅰ. 시사점 ····· 188
Ⅱ. 국제인권법과 헌법: “불협화음인 상태에서의 동등함”에 기반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범적 연계 ····· 190
Ⅲ. 재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및 적용: 적용단계별 제언 ····· 194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 195
2.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 195
3.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및 적용 ····· 197
제5장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 199
제1절 서설 ····· 201

제2절 종합법률정보에 조약정보 및 해석자료의 확충 ····· 202
Ⅰ. 조약정보(법령) 등록 ····· 203
1. 현황 및 제언 ····· 203
2. 고려 사항 ····· 203
Ⅱ. 조약기구를 출처로 하는 해석자료 ····· 204
1. 현황 및 제언 ····· 204
2. 고려 사항 ····· 205
Ⅲ. 주석서, 단행본, 논문 등 ····· 207
1. 현황 및 제언 ····· 207
2. 고려 사항 ····· 207
제3절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실무제요/실무편람' 제작 ····· 208
Ⅰ. 현황 및 제언 ····· 209
Ⅱ. 고려 사항 ····· 210
1. 사법연수원의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 ····· 210
2. 사법연수원의 '재판실무편람편찬위원회' ····· 211
제4절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법관 연수프로그램 강화 ····· 213
Ⅰ. 현황 및 제언 ····· 214
Ⅱ. 고려 사항 ····· 217
제5절 사법정책적 제언의 실현 지원 방안 ····· 219
Ⅰ. 조약기구의 국가보고 절차의 활용 ····· 219
1. 현황 및 제언 ····· 219
2. 고려 사항 ····· 220
Ⅱ. 사법정책연구원에 의한 지원 ····· 221
1. 현황 및 제언 ····· 221
2. 고려 사항 ····· 222
제6장 결론 ····· 223

101.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iability Assessment and Experience Rules of Victim's Statement in the Criminal Case of Sexual Violence

연구총서 2020-02

연구책임자 : 이선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철(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0년 3월 11일 발행

전체 목차

제1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박용철> ····· 1

제2부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통한 경험칙 연구 <이선미> ····· 57

참고문헌 ····· 204

제1부 내용 목차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의 배경 ····· 5

제2절 연구의 내용 ····· 6

제3절 연구의 방법 ····· 7

I. 문헌 분석을 통한 자료의 정리 ····· 7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논의 ····· 9

제1절 형사재판에 제시하는 법관의 경험칙 ····· 9

Ⅰ. 형사재판에서의 경험칙 ····· 9

1. 경험칙과 합리적 의심 ····· 10

2. 유사 사건에 적용하는 경험칙의 변경 ····· 13

Ⅱ. 경험칙과 구별되는 개념들 ····· 14

1. 논리법칙 ····· 14

2. 채증법칙 ····· 15

Ⅲ. 법관의 경험칙 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16

1. 미국 ····· 17

2. 독일 ····· 18

제2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19

Ⅰ.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의 필요성 여부 ····· 19

Ⅱ.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20

1. 미국 ····· 21

가. 보강증거의 필요성 여부 ····· 21

2. 영국 ····· 24

제3절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24

Ⅰ. 미국 ····· 25

1.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관련된 기준 ····· 25

2. 공판과정에서 적용하는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서의 기준 ····· 26

가. 신속한 고소(Prompt Outcry 또는 Fresh Complaint)의 원칙 ····· 26

3.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 설명(jury instruction)에 드러난 기준 ····· 30

II. 영국 ····· 30

1.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관련된 기준 ····· 30

가. 의의 ····· 30

나. 아동 청소년 성학대 범죄의 경우의 특칙 ····· 31

2. 공판과정에서 적용하는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서의 기준 ····· 32

3.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 설명(jury instruction)에 드러난 기준 ····· 33
III. 호주 ····· 44
1.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관련된 기준 ····· 44
가. 진술의 일관성 여부 ····· 44
나. 진술의 진실성 및 신뢰성 여부 ····· 44
다. 피해자의 진술시 행동 ····· 45
라. 피해자의 약물 사용 또는 음주 여부 및 정도 ····· 45
마. 소결 ····· 45
2. 공판과정에서 적용하는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서의 기준 ····· 46
가. 신속한 고소의 증거의 법칙(the Recent Complaint Evidence Rule) ····· 46
나. 지연된 고소의 증거의 법칙(the Delayed Complaint Evidence Rule) ····· 48
3.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 설명(jury direction)에 드러난 기준 ····· 49
가. 빅토리아주 모델 ····· 50
나. 북부지방 모델 ····· 51
다. 퀸즈랜드주의 경우 ····· 52

제3장 결론 ····· 53

제1절 연구 내용의 정리 ····· 53
제2절 시사점 ····· 54

제2부 내용 목차

제1장 서론 ····· 67

제1절 연구의 배경 ····· 67
제2절 연구의 내용 ····· 68
제3절 연구의 방법 ····· 68
Ⅰ. 용어의 정의 ····· 69
Ⅱ. 분석 대상의 선정 ····· 73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의 개관 ····· 74

제1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 74
Ⅰ. 유일한 증거로서의 피해자 진술 ····· 74
1. 객관적 증거의 부족 ····· 74

2. 주관적 증거의 부존재 ····· 75
Ⅱ.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뇌물 사건과의 비교 ····· 76
제2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되는 지점 ····· 77
Ⅰ. 증거의 증명력 ····· 77
1. 자유심증주의 ····· 77
2.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명력 ····· 78
Ⅱ. 증거능력의 예외적 인정 요건 ····· 79
제3절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 ····· 81
Ⅰ. 일반적 설시 ····· 81
1. 진술 내적 요소 ····· 82
가. 합리성 ····· 82
나. 객관적 상당성 ····· 82
다. 일관성 ····· 82
라. 구체성 ····· 83
2. 진술 외적 요소 ····· 83
3.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 ····· 83
가.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경우 ····· 83
나. 진술이 모호해지는 경우 ····· 84
다.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 84
라. 진술의 일부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 85
마. 진술의 동기를 고려하여야 할 경우 ····· 85
바.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86
Ⅱ. 성폭력 사건에서의 특유한 설시 ····· 86
1.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 87
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인 경우 ····· 87
3.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신빙성 판단 ····· 88
제4절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 ····· 88
Ⅰ. 판단 기준으로서의 '경험칙'의 차별성 ····· 88
Ⅱ. 판단 기준으로서의 '경험칙'의 의미 ····· 89
1. 경험칙의 정의 ····· 89
2. 경험칙의 종류 ····· 89
3. 경험칙의 정도 ····· 90
Ⅲ. '경험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 91

제3장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판결문 분석 ····· 92

제1절 분석의 필요성 ····· 92
제2절 분석 대상의 선정 ····· 92
Ⅰ. 죄명에 따른 선별 ····· 92
1. 전체 성폭력 사건수의 과다 ····· 93

2. ‘강간’ 죄명 사건의 대표성 ····· 93
Ⅱ. 검색어에 따른 선별 ····· 95
제3절 분석 대상의 현황 ····· 95
Ⅰ. 연도별 추이 ····· 95
Ⅱ. 공소사실상 성적 행위의 태양별 분류 ····· 97
1. 분류 기준 ····· 98
2. 분류 결과 ····· 99
Ⅲ. 결론별 분류 ····· 99
1. 제1심의 결론 ····· 99
가. 분류 기준 ····· 99
나. 분류 결과 ····· 100
2. 확정된 결론 ····· 102
가. 전체 현황 ····· 102
나. 결론 변경 현황 ····· 103
다. 연도별 유·무죄 변경의 추이 ····· 104
제4절 분석 대상 판결문에 나타난 경험칙 ····· 105
Ⅰ. 경험칙 설시의 빈도 및 추이 ····· 105
1. 경험칙 설시 빈도 ····· 105
2. 경험칙 설시 빈도의 추이 ····· 106
3. 제1심 무죄 결론과 경험칙 설시의 관계 ····· 106
4. 유·무죄 결론의 변경과 경험칙 설시의 관계 ····· 107
Ⅱ. 설시된 경험칙의 내용 분류 ····· 108
1. 분류 기준 ····· 108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이른 사정 관련 내용 ····· 108
3.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관련 내용 ····· 114
4.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관련 내용 ····· 118
5. 신고·고소 또는 진술 관련 내용 ····· 122
6. 피고인의 언동 관련 내용 ····· 125
7. 그 밖의 내용 ····· 131
Ⅲ. 유·무죄 결론의 변경과 경험칙 ····· 134
1. 유·무죄 결론이 변경된 사건과 경험칙 설시의 현황 ····· 134
2. 유·무죄 결론의 변경과 경험칙의 관계 ····· 152
제5절 ‘경험칙’의 재구성 ····· 160
Ⅰ. 문제의 제기 ····· 160
Ⅱ. 분석 대상 판결문을 통해 본 ‘경험칙’의 검증 ····· 161
1. 검증의 대상 선정 ····· 161
가. 선정의 전제 ····· 161
나. 선정된 분석 대상 ····· 162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 관계 관련 경험칙의 검증 ····· 163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에 따른 검증 ····· 163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이인지에 따른 검증 ····· 166
3. 피해자의 진술 시점 관련 경험칙의 검증 ····· 167
가. 전체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한 검증 ····· 168
나. 공소사실 유형별로 구분한 검증 ····· 169
Ⅲ. 분석 결과 ····· 172
1. 결과 요약 ····· 172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관련 경험칙에 대한 검증 결과 ····· 172
나. 피해자의 진술 시점 관련 경험칙에 대한 검증 결과 ····· 173
2. 분석의 한계 ····· 174

제4장 결론 ····· 175

제1절 연구 내용의 정리 ····· 175
제2절 시사점 ····· 176

102.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Used by Courts Against Large-Scale Disasters

연구총서 2020-03

연구책임자 : 성대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0년 4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Ⅰ. 연구의 범위 ····· 6

Ⅱ. 연구의 방법 ····· 7

1. 첫 번째 대응 방식 ····· 7

2. 두 번째 대응 방식 ····· 8

3. 법원 재난 규정 마련 ····· 9

4. 인터뷰 진행 ····· 9

5. 논의의 순서 ····· 10

제2장 법원 재난의 국내 사례를 통한 문제점 검토 ····· 13

제1절 포항지원 사례: 지진 ····· 15

Ⅰ. 포항지진 개요 ····· 15

Ⅱ. 정부대응 일반 ····· 16

1. 초기 대응과정 ····· 16

2. 중간 대응과정 ····· 17
3. 사후 대응 및 수습 과정 ····· 18
Ⅲ. '포항지원'의 재난상황과 대응과정 ····· 19
1. 개요 ····· 19
2. 평상시 재난 상황 대비 ····· 19
3. 재난 상황 발생 당시 ····· 20
4. 재난 상황 종료 및 복구 ····· 24
제2절 속초지원 사례: 산불 ····· 25
Ⅰ. 속초산불 개요 ····· 25
Ⅱ. '속초지원'의 재난상황과 대응과정 ····· 26
1. 개요 ····· 26
2. 평상시 재난 상황 대비 ····· 27
3. 재난 상황 발생 당시 ····· 27
4. 재난 상황 종료 및 복구 ····· 31
제3절 소결 ····· 33
1. 각 상황(단계)별 분석 ····· 33
가. 평상시 재난 상황 대비 ····· 33
나. 재난 상황 발생 시 ····· 33
다. 재난 상황 종료 및 복구 ····· 34
2. 해결을 요하는 구체적·개별적인 문제점들 ····· 35

제3장 재난 일반 ····· 37

제1절 재난 현황 ····· 39
Ⅰ. 개요 ····· 39
Ⅱ. 우리나라의 재난 현황 ····· 41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 42
2.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 43
3. 소결 ····· 43
제2절 재난 개념 ····· 44
Ⅰ. 재난의 개념 ····· 44
Ⅱ. 재해 개념과의 구별 ····· 46
제3절 재난 관리 ····· 47
Ⅰ. 개요 ····· 47
Ⅱ. 재난의 특징 ····· 48
Ⅲ. 재난의 관리 ····· 49
1. 재난 관리 절차 ····· 49
2. 재난 관리 방식 ····· 49
3. 재난 관리 체계 ····· 51
가. 재난의 효율적 대응 ····· 51

나. 재난의 연계관리 ····· 53
제4절 소결 ····· 54

제4장 재난 발생과 법원의 구체적 대응 ····· 55

제1절 소송기록물 ····· 57
Ⅰ. 전자기록물 ····· 57
1. 전산정보센터 개요 ····· 57
2. 전자기록물 관련 문제점과 해소 방안 ····· 58
가. 전산정보센터 건물 ····· 58
(1) 건물현황 ····· 58
(2)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58
나. 전산정보센터로 전송되지 않는 전자기록물 ····· 60
Ⅱ. 종이기록물 및 문서 ····· 60
제2절 등기업무 ····· 61
Ⅰ. 개요 ····· 61
Ⅱ. 등기 종이신청 ····· 62
1. 문제점 ····· 62
2. 문제의 해소 ····· 63
3. 소결 ····· 65
제3절 안전취약계층 ····· 65
Ⅰ. 개요 ····· 65
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피 매뉴얼 ····· 66
1. 관련 법령 ····· 66
가.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 ····· 66
나. 재난안전법 제3조 제9의3호 ····· 67
다. 평가 ····· 68
2. 재난 발생 시 대피행동 요령(매뉴얼) ····· 68
가. 매뉴얼 적용 대상 ····· 68
나. 관리자 및 안전취약계층 대피행동 요령 일반 ····· 70
제4절 재난 복구 대비 보험가입 ····· 72
Ⅰ. 개요 ····· 72
Ⅱ. 보험 관련 법규정 ····· 72

제5장 재난 발생 시 외국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 ····· 75

제1절 개관 ····· 77
제2절 미국 ····· 78
Ⅰ. 업무지속과 실행 계획의 개요 ····· 78
Ⅱ. 업무지속 계획 매뉴얼 수립과 실행 ····· 80

1. 1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작업 ····· 80
2. 2단계: COOP 계획안의 주된 내용 확인 ····· 85
3. 3단계: COOP 계획 실행 절차 ····· 100
4. 4단계: COOP 계획 실행절차 모델의 완성 ····· 112
5. 5단계: COOP 계획의 유지 및 실행 ····· 113
제3절 일본 ····· 115
Ⅰ. 개관 ····· 115
Ⅱ. 수도직하지진 등 대응에 관한 업무계속계획서 ····· 115
1. 개요 ····· 115
2. 업무계속계획서 수립 ····· 116
3. 피해의 상정 ····· 118
4. 업무의 분류 및 정리 ····· 120
5. 대규모 지진 발생 시의 체제 ····· 121
6. 대규모 지진 발생 시의 대응 ····· 123
7. 평상시에서의 준비 및 조치 등 ····· 127
8. 교육 및 훈련 ····· 130
9. 계획의 재검토 ····· 131
제6장 법원의 재난 대응 가이드 제시 ····· 133
제1절 법원 재난 규정 ····· 135
Ⅰ. 개관 ····· 135
Ⅱ. 재난안전법의 법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재난안전법 제3조 ····· 136
1. 규정의 내용 ····· 136
2. 검토 ····· 139
Ⅲ. 재난 대응 절차에 따른 주요 규정들의 검토 ····· 139
1. 개요 ····· 139
2. 총칙 ····· 141
3.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143
4. 안전관리계획 ····· 148
5. 재난의 예방 ····· 150
6. 재난의 대비 ····· 152
7. 재난의 대응 ····· 162
8. 재난의 복구 ····· 171
9. 보칙 ····· 173
Ⅳ. 소결 ····· 178
제2절 법원 업무지속 매뉴얼 작업시트 ····· 179
제7장 결론 ····· 205

103.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연구총서 2020-04

연구책임자 :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0년 4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Ⅰ. 연구 내용 ····· 6
Ⅱ. 연구 방법 ····· 8

제2장 우리나라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 11

제1절 개인정보 개념과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 ····· 13
Ⅰ.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과 그 범위 ····· 13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 15
Ⅲ.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 ····· 17

제2절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 18
Ⅰ.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19
Ⅱ. 강제집행신청서 ····· 25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26
2. 동산·채권 등 강제집행신청서 ····· 27
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 27
나. 채권 등 집행을 위한 신청서 ····· 30
Ⅲ. 공탁서 ····· 32
제3절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 35
Ⅰ. 판결서·집행문 ····· 35
Ⅱ. 결정서·명령서 ····· 36
제4절 소결 ····· 41

제3장 우리나라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 45

제1절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 47
Ⅰ. 소장 ····· 47
Ⅱ. 강제집행신청서 및 공탁서 ····· 49
제2절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 50
Ⅰ. 판결서 ····· 51
Ⅱ. 결정서·명령서 ····· 51
Ⅲ. 집행문 ····· 52
제3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하는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 53
Ⅰ. 경매기록 ····· 53
Ⅱ. 공탁관계서류 ····· 54
제4절 소송방식에 따른 관리방식의 차이 ····· 55
Ⅰ. 종이소송의 경우 ····· 55
Ⅱ. 전자소송의 경우 ····· 56
제5절 소결 ····· 57

제4장 외국 법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취급방식 ····· 59

제1절 미국 ····· 61
Ⅰ.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 62
1. 당사자 작성 문서 ····· 62
가. 소장 ····· 62
나. 소장과 응소안내서 송달 ····· 76
2. 법원 작성 문서 ····· 79
가. 판결서 ····· 79

나. 집행문 ····· 81
Ⅱ.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및 보호책임 관련 규정 ····· 92
1. 비실명 처리하거나 봉인하여 제출되는 소송서류 ····· 92
2.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성명의 익명화 ····· 96
3. 판결의 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 98
제2절 독일 ····· 100
Ⅰ.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과 당사자의 권리 ····· 100
1. 개인정보와 그 처리의 개념 ····· 100
2.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 법적 근거 ····· 101
3. 법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102
가. 재판절차 ····· 102
나. 재판 외 절차 ····· 102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 103
Ⅱ.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 103
1. 당사자 작성 문서 ····· 103
가. 소송절차 ····· 104
나. 강제집행절차 ····· 109
다. 공탁절차 ····· 112
2. 법원 작성 문서 ····· 114
가. 판결서 ····· 115
나. 집행문 ····· 119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서 ····· 121
Ⅲ.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관련 규정 ····· 121
1.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 122
가. 민사책임 관련 규정 ····· 122
나. 형사책임 관련 규정 ····· 123
2. 관련 사례 ····· 124
제3절 오스트리아 ····· 124
Ⅰ.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 법적 근거 ····· 124
Ⅱ.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 125
1. 당사자 작성 문서 ····· 125
가. 소장 및 (준비)서면 ····· 125
나. 강제집행승인신청서 ····· 127
2. 법원 작성 문서 ····· 128
가. 판결서 ····· 128
나. 결정서 ····· 129
다. 집행문 ····· 131
라. 강제집행승인결정서 ····· 132
Ⅲ.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및 보호책임 ····· 133
1.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 133

가. 당사자 주소 비공개 제도 ····· 133
나. 전자법률교류 시스템이 전송하는 문서 ····· 142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원의 책임 규정 및 판례 ····· 143
가.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 규정 ····· 143
나. 법원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 145
제4절 프랑스 ····· 147
Ⅰ.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 법적 근거 ····· 147
Ⅱ.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 149
1. 당사자 작성 문서 ····· 149
가. 신청서 ····· 149
나. 소장 ····· 154
2. 법원 작성 문서 ····· 156
가. 판결서 ····· 156
나. 집행문 ····· 157
Ⅲ.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및 보호책임 ····· 161
1. 범죄피해자의 주소정보 보호 제도 개요 ····· 161
2. 범죄피해자의 주소정보 보호 제도 내용 ····· 163
제5절 일본 ····· 164
Ⅰ.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 165
1. 당사자 작성 문서 ····· 165
2. 법원 작성 문서 ····· 167
가. 판결서 ····· 167
나. 집행문 ····· 168
Ⅱ.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및 보호책임 ····· 172
1. 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 172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작성되는 현황조사보고서 ····· 174
제6절 소결 ····· 175

제5장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 ····· 179

제1절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수집·표시 및 주소 표시에 관한 논의 ····· 181
Ⅰ.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논의 ····· 181
1. 문제 상황 ····· 181
2. 외국 사례 ····· 182
3. 우리나라 법원 내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의미 ····· 184
가. 인구학적 특징 ····· 184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성 ····· 184
4. 주민등록번호 수집 단계의 문제 ····· 186
가. 문제 상황 ····· 186
나. 소송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성 ····· 186

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정도 ····· 187
1. 제1안: 주민등록번호 전체불표시 ····· 187
가. 개요 ····· 187
나. 장·단점 ····· 188
2. 제2안: 주민등록번호 일부표시 ····· 188
가. 개요 ····· 188
나. 장·단점 ····· 188
3. 제3안: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189
가. 개요 ····· 189
나. 장·단점 ····· 189
4. 검토 ····· 189
Ⅲ. 주소가 표시되는 정도 ····· 190
1. 제1안: 주소 전체표시 ····· 190
가. 개요 ····· 190
나. 장·단점 ····· 191
2. 제2안: 주소 일부표시 ····· 192
가. 개요 ····· 192
나. 장·단점 ····· 192
3. 제3안: 주소 전체불표시 ····· 192
가. 개요 ····· 192
나. 장·단점 ····· 192
4. 검토 ····· 193
Ⅳ. 주소비공개신청제도 도입 필요성 ····· 194
1. 주소비공개신청제도 도입 찬성론 ····· 194
2. 주소비공개신청제도 도입 반대론 및 그에 대한 반론 ····· 196
가. 범죄피해자 여부의 판단 곤란 ····· 196
나. 범죄 피해사실 증명의 곤란 ····· 197
다. 관할 인정에 관한 문제 ····· 197
라. 기일 외 화해교섭의 어려움 ····· 197
마. 반소제기 시 원고 주소를 조사할 부담 ····· 198
바. 악의에 의한 부당소송 문제 ····· 198
3. 검토 ····· 199
제2절 작성주체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안 검토 ····· 199
Ⅰ.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 ····· 200
1. 당사자표시서 도입안 ····· 200
가. 개요 ····· 200
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비실명 처리하는 주체 ····· 203
2. 봉인함 도입안 ····· 204
가. 개요 ····· 204
나. 미국 사례 ····· 204

다. 우리나라에 적용 ····· 205
라. 추가 고려 사항 ····· 205
3. 주소비공개신청 절차 설계 ····· 206
가. 개요 ····· 206
나. 비공개신청의 방식 ····· 206
다. 비공개신청의 주체 ····· 208
라. 비공개신청의 시기 ····· 209
마. 비공개서면의 범위 ····· 209
바. 송달 영수인의 지정 ····· 209
사. 법원의 판단 ····· 210
아. 상대방의 절차권 보장 ····· 212
자. 법원의 결정 ····· 213
차. 법원의 비밀유지의무와 비공개 기간 ····· 215
4. 공탁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 ····· 217
5. 기타 관련 쟁점들 ····· 219
가.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 219
나.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이용 의무화 ····· 220
Ⅱ.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 ····· 221
1. 당사자정보확인서 도입안 ····· 221
가. 개요 ····· 221
나. 신청주체 및 송달여부 ····· 222
다. 신청절차 및 방법 ····· 222
라. 당사자정보확인서의 표시사항 ····· 223
마. 당사자정보확인서와 집행권원의 연결성 또는 그 진위여부 확인 ····· 223
2. 당사자정보확인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재판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방안 ····· 232
가. 개요 ····· 232
나. 원·피고에게 송달되는 문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비실명
처리 가능성 ····· 232
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서에 기재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비실명 처리 가능성 ····· 237
라. 집행문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의 개선 가능성 ····· 239
Ⅲ.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하는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 ····· 241
1. 봉인함 활용 ····· 241
가. 기본절차 ····· 241
나. 주민등록번호 외 정보 비실명 처리 신청 ····· 242
2. 경매기록 열람·복사 방식 개선 ····· 243
3. 공탁관계서류 열람·복사 방식 개선 ····· 244
Ⅳ. 원본과 정·등본에 기재되는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 정·등본의 효력 ····· 246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응용 방안 ····· 246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개념 ····· 246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능 ····· 247
다. 외국 사례 ····· 248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개념 적용 가능성 ····· 250
2. 전자문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본 개념 정립 방안 ····· 251
가. 전자문서의 특징 ····· 252
나. 전자문서의 원본·사본 관련 미국 논의: 연방증거규칙 ····· 254
다. 우리 실무 적용가능성 ····· 256
3. 축약정본 개념 도입 방안 ····· 256
제3절 소결 ····· 257

제6장 결론 ····· 261

104.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A Study on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in Korea

연구총서 2020-05

연구책임자 : 정성민(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2020년 4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업무 전산화 ····· 3
Ⅰ. 전산 시스템의 개발과 전산정보센터의 건립 ····· 3
Ⅱ. 전자소송의 도입 ····· 3
제2절 형사 전자소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4
제3절 연구의 개요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 9

제1절 형사 전자소송의 의의 ····· 11
Ⅰ. 전자소송의 의의 ····· 11
Ⅱ. 형사 전자소송의 의의 ····· 12
제2절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 ····· 12
Ⅰ.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 12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 13
Ⅲ.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 14
1. 종이기록의 한계 극복 ····· 14
가. 기록 편철의 문제 해결 ····· 14
나. 기록의 훼손·변조 방지 ····· 15

2. 전자증거 ····· 15
3. 전자소송과 공판중심주의 ····· 15
Ⅳ.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 ····· 17
1. 기록 열람 ····· 17
2. 검색 및 내용 복사 ····· 17
3. 피고인 및 변호인 ····· 18
가. 기록 열람·복사의 지연 문제 해소 ····· 18
나. 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의 실질적 보장 ····· 19
다. 전자적인 신청, 문건 접수, 서면·증거 제출 가능 ····· 20
라. 비용 절감 효과 ····· 20
4. 법원 ····· 21
가. 판사 ····· 21
나. 참여관 및 실무관 ····· 22
다. 상소기록 송부 ····· 25
라. 문건 누락 방지 ····· 26
5. 검사 ····· 26
가. 전자적 공소제기 ····· 26
나. 증거제출 ····· 27
다. 기록 대출 ····· 28
제3절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주의사항 ····· 28
Ⅰ.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28
Ⅱ.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 29
Ⅲ. 장애인의 접근·이용 보장 ····· 30
Ⅳ. 정보접근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 30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 ····· 33

제1절 개요 ····· 35
제2절 관련 법령 등 ····· 35
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35
1. 입법 과정 ····· 35
2. 정의 ····· 37
가. 형사사법업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 37
나. 형사사법정보 ····· 37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38
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 38
마. 형사사법포털 ····· 38
3. 내용 ····· 38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 38
나.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 39

다.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수집·저장·이용 금지 ····· 39
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 39
마. 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법무부에 설치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 40
바.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 40
4. 문제점 ····· 41
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집중의 문제 ····· 41
나. 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 42
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구성 ····· 44
라. 형사사법포털 ····· 44
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확대 필요성 ····· 45
Ⅱ.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6
1. 연혁 ····· 46
2. 입법과정 ····· 46
가. 입법예고 ····· 46
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47
3. 정의 ····· 49
가. 관련 법률 정의규정 준용 ····· 49
나. 전자적 처리절차 ····· 49
다. 전자문서·전자화문서 ····· 49
4. 적용 범위 ····· 50
가. 적용 대상 사건 ····· 50
나. 피의자의 동의 ····· 50
5.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작성 ····· 53
가.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 53
나. 수사기관의 전자화문서 작성 ····· 53
6. 약식명령 청구 및 불기소 처분 ····· 54
가. 약식명령 청구 ····· 54
나. 불기소 처분 ····· 55
7. 약식명령 – 법원의 전자문서·전자화문서 작성 ····· 56
가. 법원의 전자문서 작성 ····· 56
나. 법원의 전자화문서 작성 ····· 56
8. 약식명령 등의 송달·통지 ····· 56
가. 전자적 송달·통지 ····· 56
나. 출력물에 의한 송달 ····· 58
9. 공판절차 심판 ····· 58
가. ① 공판절차 회부, ② 정식재판 청구, ③ 공소 제기 ····· 58
나. 종이문서의 출력·제출 ····· 59
10. 기록의 열람·등사 ····· 60
11. 형의 집행 지휘 ····· 60

12. 전자약식사건의 실제 처리 모습 ····· 61
가. 참여관의 결정요청 ····· 61
나. 판사의 심리 대상 사건 선택 ····· 61
다. 판사의 심리 및 결정 ····· 62
라. 참여관의 약식명령등본 작성·발송 ····· 63
13. 평가 및 문제점 ····· 64
Ⅲ.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 65
1. 연혁 ····· 65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5
나. 전자서명법 ····· 65
2. 정의 ····· 65
가. 전자문서 ····· 65
나. 전자화문서 ····· 66
다.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 66
3.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 ····· 67
가.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법 ····· 67
나. 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법 ····· 67
4. 적용 범위 ····· 68
가. 전자문서법 - 전자거래와 무관한 전자문서에도 적용 ····· 68
나. 전자서명법 ····· 68
5. 형사절차에의 적용 가능성 ····· 68
Ⅳ. 전자정부법 ····· 70
1. 목적 및 정의 ····· 70
2.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 70
3. 행정전자서명 ····· 70
Ⅴ.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정도 ····· 71
1. 수사기관 ····· 71
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훈령) ····· 71
나.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 73
2. 법원 ····· 73
가.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 ····· 73
나. 재판서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 74
다. 조서 등 각종 재판사무 관련 문서 -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 74
라. 재판서와 조서 파일의 보관 및 활용 ····· 75
3. 수사기관 및 법원 업무의 전산화 정도 ····· 75
제3절 전자소송의 현황(통계) 및 성과 ····· 76
Ⅰ. 전자약식 ····· 76

1. 전자약식명령 청구 사건 접수 비율 ····· 76
2. 전자약식명령 청구 사건 처리율 ····· 78
3. 정식재판청구율 ····· 79
4. 전자약식의 과제 ····· 80
Ⅱ. 전자소송 ····· 80
1. 민사 전자소송 ····· 80
가. 민사 제1심 전자소송 비율 ····· 80
나. 사물관할별 전자소송 비율 ····· 81
2. 가사 전자소송 ····· 82
3. 행정 전자소송 ····· 83
4. 전자소송의 정착 ····· 83
Ⅲ. 전자소송의 성과 ····· 84
1. 구술심리의 실질적 구현 ····· 84
2. 전자소송 비율의 비약적 증가 ····· 84
3. 업무 처리 및 기록 관리의 효율화 ····· 85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 ····· 87

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 89
Ⅰ. 독일의 형사절차 개요 ····· 89
Ⅱ. 2005년 사법의사소통법 ····· 90
1. 기록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 마련 ····· 90
2.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41a조 ····· 92
가. 전자문서의 제출 및 도달 ····· 92
나. 적용 범위 ····· 92
다. 전자문서의 개념 ····· 92
라. 인증된 전자서명 ····· 92
마. 법원과 검찰이 처리하기에 적합할 것 ····· 93
바. 소송기록용 출력본 작성 ····· 93
사. 법규명령 ····· 93
3. 연방의 법규명령 ····· 94
가. 「연방일반법원과 연방특허법원에서의 전자적 제출에 관한 법규명령」 ····· 94
나. 전자문서 제출 방법 ····· 94
다. 전자문서 양식 ····· 95
라. 압축 파일 제출 ····· 96
4. 평가 ····· 96
가.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볼 수 없음 ····· 96
나. 현재의 사무처리 환경에 맞지 않음 ····· 96
Ⅲ. 2017년 전자기록 도입 법률 ····· 97
1. 개요 ····· 97
가.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 97

나. 도입 배경 ····· 98
다. 형사 전자소송의 장점 ····· 98
라. 형사소송법 개정 ····· 99
2. 전자기록 도입을 위한 규정 신설 ····· 99
가. 제32조 전자기록 작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 99
나. 제32a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과의 전자적 법적교류;
법규명령 제정 권한 ····· 103
다. 제32b조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전자문서의 생성과 전송;
법규명령 제정 권한 ····· 110
라. 제32c조 전자 양식; 법규명령 제정 권한 ····· 114
마. 제32d조 전자적 전송 의무(2022. 1. 1. 시행) ····· 115
바. 제32e조 기록 작성을 위한 문서 전환 ····· 116
사. 제32f조 기록 열람의 허용 방식; 법규명령 제정 권한 ····· 121
3. 제41a조 삭제 ····· 125
4. 관련 규정 개정 ····· 125
가. 제1편(총칙) 부분 ····· 126
나. 제2편(제1심 절차) 중 제1장(공소), 제2장(공소의 준비) 부분 ····· 132
다. 제2편(제1심 절차) 중 제6장(공판) 부분 ····· 139
라. 제3편(상소) 부분 ····· 153
마. 제5편(피해자의 절차참가) 부분 ····· 154
바. 제8편 제1장(정보 제공과 기록 열람) 부분 ····· 158
5. 개인데이터 관련 규정 신설 ····· 161
가. 제8편 제4장 신설 ····· 161
나. 신설 조문 ····· 162
6. 기록의 보존 – 사법기록보존법 ····· 168
가. 제정 및 개정 ····· 168
나. 구성 ····· 168
다. 일반 기준(제1조) ····· 169
라. 법규명령 제정(제2조) ····· 169
7. 법규명령 및 법규명령안 ····· 169
가. 법규명령 ····· 169
나. 법규명령안 공개 ····· 172
8. 예상 비용 ····· 176
9.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현황 ····· 177
가. 바이에른 주 ····· 177
나. 헤센 주 ····· 178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78
1. 실무적 필요에 의한 도입 ····· 178
2. 단계적 도입 및 법규명령 위임 ····· 179
3. 전자문서 양식 제한 ····· 179

4. 변호인과 변호사의 전자문서 제출의무 ····· 180
5. 개인정보의 검색·이용 제한 ····· 180
제2절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 181
Ⅰ. 미국의 형사절차 개요 ····· 181
1. 연방과 주(州)의 이원적 구조 ····· 181
2. 법원의 구조 ····· 181
3. 기소 이전의 절차 ····· 181
가. 개요 ····· 181
나. 최초출석절차(Initial Appearance) ····· 182
다.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Hearing) ····· 182
라. 기소 ····· 182
4. 기소 후의 절차 ····· 182
가. 기소사실 인부 절차(Arraignment)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 182
나. 공판(Trial) ····· 184
다. 선고(Sentencing) ····· 184
5.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184
Ⅱ. 연방법원의 형사절차 전자화 ····· 185
1.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CM/ECF)의 도입 ····· 185
가. 연방법원의 사건관리 및 전자문건 시스템 ····· 185
나. 연혁 및 현황 ····· 185
다. 지원하는 문서형식 및 운영체제 ····· 185
라. 문서의 무결성 검증 ····· 186
마. 시스템 환경 ····· 186
바. 차세대 시스템 ····· 186
2. 전자적 제출 시스템(Electronic-Filing System) ····· 187
가. 전자적 송달 ····· 187
나. 전자적 문서 제출 ····· 188
다. 개인정보 보호 ····· 188
Ⅲ. 연방법원 전자소송의 소송단계별 검토 ····· 188
1. 소송서류의 전자화 ····· 188
가. 소송서류의 접수 ····· 188
나. 소송서류의 관리(보관) 및 열람 ····· 192
다. 전자문서의 송달 ····· 194
라. 전자문서의 보존 ····· 196
2. 전자적 사건관리 ····· 196
가. 개요 ····· 196
나. 구체적 활용 ····· 196
Ⅳ. 주(州)법원의 형사절차 전자화 ····· 197
1. 개요 ····· 197
2. 국립 주법원 센터의 2009년 설문조사 ····· 197

가. 전자소송에 대한 설문조사 ····· 197
나. 전자소송 도입 여부 ····· 198
다. 전자소송 도입의 장애요소 ····· 198
라. 전자소송화 정도 ····· 199
마. 제출 가능한 문서 양식(중복 답변) ····· 200
3. 델라웨어 주법원 ····· 201
4. 뉴욕 주법원 ····· 201
가. 전자소송 도입 경과 ····· 201
나. 뉴욕 주법원 전자제출 시스템(NYSCEF)의 모습 ····· 202
다. 전자제출 연습 사이트 ····· 203
라. 전자법원(eCourts) 구현 ····· 203
마. 전자검색(eTrack) 서비스 ····· 204
5. 텍사스 주법원 ····· 205
가. 전자소송 도입 경과 ····· 205
나. 전자제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전자제출 서비스 ····· 206
6. 캘리포니아 주법원 ····· 207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08
제3절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 209
Ⅰ. 싱가포르의 형사사법제도 ····· 209
1. 법원 ····· 209
가. 법원의 구성 – 대법원, 하급법원 ····· 209
나. 대법원의 구성 – 상소재판부, 고등재판부 ····· 209
다. 하급법원의 구성 – 지방법원, 치안법원 ····· 210
라. 사물관할 ····· 210
2. 검찰 ····· 210
3. 형사절차 개요 ····· 211
가. 수사 ····· 211
나. 기소 ····· 211
다. 공판 ····· 211
라. 판결문의 작성 ····· 212
Ⅱ. 싱가포르의 전자소송 연혁 ····· 213
1. 전자문서제출시스템(EFS) ····· 213
2.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 ····· 213
3.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 ····· 213
4. 각 시스템의 비교 ····· 214
5. 싱가포르 형사 전자소송의 특징 ····· 215
가. 법원 주도형 ····· 215
나. 이원적 체계 ····· 215
다. 타 기관과의 연계 ····· 215
라.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 ····· 216

마. 당사자 본인의 시스템 이용 불허 ····· 216
바. 표준화된 양식 사용 ····· 216
사. 인증서 불필요, 외부 접속 가능 ····· 216
Ⅲ.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개발 및 특징 ····· 217
1.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개발 ····· 217
가. 개발 배경 ····· 217
나. 개발 현황 ····· 217
2.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특징 ····· 218
가. 구조적 특징 ····· 218
나. 기술적 특징 ····· 219
Ⅳ. 절차단계별 전자화 검토 ····· 221
1. 수사 단계 ····· 221
2. 소송서류의 전자화 ····· 222
3. 공판절차의 전자화 ····· 222
가. 사건관리 시스템 ····· 222
나. 전자법정의 운용 ····· 222
다. 판결 선고 후 형사사법정보 공유 ····· 222
라. 확정기록의 보존 ····· 223
4. 영장 발부 시스템의 전자화 ····· 223
Ⅴ.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을 이용한 실제 업무처리 모습 ····· 224
1. 경찰 ····· 224
가. 공소장 작성 및 제출 ····· 224
나. 사건 기록의 공유 ····· 229
2. 검찰 ····· 229
가.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의 구체적 구현 모습 ····· 229
나. 검찰의 관련 시스템 ····· 237
3. 법원 ····· 239
가. 로그인 ····· 239
나. 사건관리 ····· 240
다. 미닛 시트(Minute Sheet) ····· 242
4. 법정 ····· 247
가. 전자법정 ····· 247
나. 영상재판 ····· 249
Ⅵ.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 비교 ····· 249
Ⅶ.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50

제5장 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 ····· 251

제1절 기본 방향 ····· 253
Ⅰ. 수사·공판·집행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253
Ⅱ.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 253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 254
Ⅳ. 업무 과중 우려에 대한 고려 ····· 254
제2절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 ····· 255
Ⅰ.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 255
1.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정의 ····· 255
가. 법률 규정 ····· 255
나.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 ····· 256
다. 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 ····· 257
라. 전자화문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 ··· 262
2.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 ····· 264
가. 전자문서의 효력 ····· 264
나. 전자화문서의 효력 ····· 264
3.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전자소송 시스템 등재 ····· 268
4. 전자문서의 작성 방식 ····· 268
가. 문제점 ····· 268
나. 가능한 방법 ····· 269
다. 검토 ····· 270
라. 민사 전자소송 ····· 272
Ⅱ. 전자서명 ····· 272
1. 전자서명의 정의 ····· 272
가. 전자서명의 필요성 ····· 272
나. 법률 규정 –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 273
다.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서명 ····· 274
2. 전자서명의 효력 ····· 274
가. 전자서명법 ····· 274
나. 전자정부법 ····· 275
다. 약식전자문서법 ····· 275
라. 민소전자문서법 ····· 276
마.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 277
Ⅲ. 전자소송 동의(전자절차 동의) ····· 278
1. 전자소송 의무자 ····· 278
가. 민사 전자소송 ····· 278
나. 형사 전자소송 ····· 279
2. 전자소송 동의의 의미 ····· 280
가. 민사 전자소송 ····· 280
나. 형사 전자소송 ····· 281
3. 전자소송 동의의 안내 ····· 282
가.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안내 ····· 282

나. 공판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안내 ····· 283
4. 전자소송 동의의 방법 ····· 283
가.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방법 ····· 283
나. 공판 단계에서의 전자소송 동의 방법 ····· 284
5.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 284
가. 민사 전자소송 ····· 284
나. 형사 전자소송 ····· 285
6.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 ····· 288
가. 민사 전자소송 ····· 288
나. 형사 전자소송 ····· 289
7.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범위 ····· 292
8.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 292
Ⅳ. 전자적 제출 ····· 293
1.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주체 ····· 293
가. 민사 전자소송 ····· 293
나. 형사 전자소송 ····· 293
2. 전자적 제출을 받는 기관 ····· 294
가.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 ····· 294
나.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 ····· 295
3. 전자적 제출 요건 ····· 295
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 295
나. 제출방법 ····· 296
4. 부본 제출 의무 ····· 297
5.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 298
가. 민사 전자소송 ····· 298
나. 형사 전자소송 ····· 299
6. 법정기간의 연장 ····· 300
Ⅴ. 전자적 송달 ····· 301
1. 관련 법률 검토 ····· 301
가. 약식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법 ····· 301
나.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 304
2. 송달간주의 인정 여부 및 기간 ····· 304
가. 송달간주의 인정 여부 ····· 304
나. 송달간주 기간 ····· 305
다. 송달간주에 대한 구제방법 및 송달간주 기간 불산입 ····· 306
3. 전자문서 출력서면의 송달 ····· 307
가. 관련 규정 ····· 307
나.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 310
4. 구금된 자에 대한 송달 ····· 310
가. 구금시설의 장에게 송달 ····· 310

나. 구금된 자에 대한 교부 ····· 311
제3절 수사 단계 ····· 312
Ⅰ. 고소·고발 ····· 312
1. 전자적 제출에 의한 고소·고발 ····· 312
2. 고발이 소추요건인 사건 ····· 312
3.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 312
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 313
1. 조서의 작성 방식 ····· 313
2. 진술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의견 진술의 기재 ····· 313
가. 관련 규정 ····· 313
나. 전자조서의 경우 ····· 314
3. 서명·날인 ····· 316
4. 증거능력 ····· 316
Ⅲ. 구속기간 및 구속영장 청구시한 ····· 316
1. 구속기간 ····· 316
2. 구속영장 청구시한 ····· 317
Ⅳ. 종결처분 ····· 318
1. 공소제기 ····· 318
가. 현재의 실무 ····· 318
나. 전자소송 도입 후 ····· 318
다. 공소장 부본 첨부 ····· 319
2. 불기소 처분 ····· 319
3. 통지 ····· 320
가. 피의자에 대한 통지 ····· 320
나.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 ····· 320
제4절 영장 ····· 321
Ⅰ. 영장청구 사건의 심리 ····· 321
1. 현재의 실무 ····· 321
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및 기록 제출 ····· 321
나.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록 제출 ····· 321
다. 법원의 심리 및 기록 반환 ····· 321
2. 전자소송에서의 영장청구 사건 심리 ····· 322
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및 기록 제출 ····· 322
나.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록 제출 ····· 322
다. 법원의 심리 및 기록 처리 ····· 322
Ⅱ. 전자영장 도입 여부 ····· 323
1. 논의의 필요성 ····· 323
2. 전자영장의 도입 필요성 ····· 323
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 323
나. 압수·수색영장 ····· 324

3. 원본 종이영장의 유지 여부 ····· 325
4. 전자영장의 복수 원본 허용 문제 ····· 326
가. 영장의 수통 발부 ····· 326
나. 전자영장의 단일 원본 유지 여부 ····· 327
Ⅲ. 전자영장의 집행 ····· 328
1. 종이 출력물을 이용한 집행의 허부 ····· 328
2. 영장의 집행 지휘 ····· 329
가. 집행 지휘의 주체 ····· 329
나. 집행 지휘의 방식 ····· 329
다. 전자영장의 집행 지휘 방식 ····· 329
Ⅳ.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구속 및 석방 ····· 330
1. 문제의 소재 ····· 330
2. 종이 구속영장의 작성 및 집행 ····· 330
3. 전자 구속영장의 작성 및 집행 ····· 331
가. 전자 구속영장의 작성 ····· 331
나. 전자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 ····· 331
다. 전자 구속영장의 기록 편입 시점 ····· 332
4.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석방 지휘 ····· 332
가. 종이소송에서의 석방 지휘 방식 ····· 333
나. 전자소송에서의 석방 지휘 방식 ····· 333
제5절 공판 단계(증거조사 제외) ····· 334
Ⅰ. 공소장 부본의 송달 ····· 334
Ⅱ. 전자법정 구성 ····· 335
1. 컴퓨터 설치 ····· 335
가. 컴퓨터의 확대 설치 ····· 335
나. 입력기기와 모니터 ····· 335
다. 검사석 컴퓨터와 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결 문제 ····· 336
2. 기록 공유 방법 ····· 336
Ⅲ. 공판조서의 작성 및 정정 ····· 337
1. 공판조서의 작성 ····· 337
2. 공판조서의 정정 ····· 337
가. 종이기록의 경우 ····· 337
나. 전자기록의 경우 ····· 338
제6절 증거조사 ····· 339
Ⅰ. 증거조사의 의의 ····· 339
Ⅱ. 증거신청 ····· 339
1. 증거신청의 방식 ····· 339
가. 관련 규정 ····· 339
나. 실무 ····· 341
2. 증거신청의 시기 ····· 341

가. 형사소송법 ····· 341
나. 증거신청의 시기 ····· 342
다. 법원의 예단 방지 ····· 344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속한 증거기록 열람 보장 ····· 345
3. 약식절차 및 그 후속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신청 ····· 345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 345
나. 현재의 처리 ····· 346
다. 전자소송 도입 후의 처리 ····· 346
Ⅲ.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및 증거결정 ····· 347
1.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347
2. 증거결정 ····· 347
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법원의 접근 제한 해제 ····· 347
나. 불채택한 증거의 처리 ····· 348
3. 증거기록의 순서 ····· 348
가. 종이기록의 편철 순서 ····· 348
나. 증거분리제출에 따른 기일별 편철 방식의 장단점 ····· 348
다. 전자기록의 정렬 순서 ····· 349
Ⅳ. 증거조사 ····· 349
1.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 349
2. 민사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 350
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 350
나. 민소전자문서법 ····· 351
3.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 351
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351
나.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 352
제7절 재판 및 상소, 재판의 집행 ····· 352
Ⅰ. 재판서의 작성 ····· 352
1. 민사·가사·행정사건 재판서의 전자적 작성 ····· 352
2.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서 작성 ····· 353
Ⅱ. 검찰에 대한 재판결과통지 및 판결등본 송부 ····· 353
1. 관련 규정 및 실무 ····· 353
가. 검찰에 대한 재판결과통지 ····· 353
나. 검찰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 353
2. 전자소송 도입 후 ····· 354
Ⅲ.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 354
Ⅳ. 상소기록의 정리 및 기록의 분리 ····· 355
Ⅴ. 재판의 집행 ····· 356
1. 재판의 집행 지휘 ····· 356
가. 집행 지휘의 주체 ····· 356
나. 집행 지휘의 방식 ····· 356

2.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재판 집행 지휘 방식 ····· 357
가.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 ····· 357
나. 행정전자서명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 ····· 358
제8절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전자기록 관리 ····· 358
Ⅰ.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 358
1.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법 ····· 358
가. 전자소송홈페이지 이용 ····· 358
나. 검사의 접근 방법 ····· 359
2. 접근이 허용되는 범위 ····· 359
가. 전자소송 인증번호의 부여 ····· 359
나. 접근이 허용되는 검사의 범위 ····· 360
Ⅱ. 개인정보 보호조치 ····· 360
1. 재판기록에 대한 비실명 처리 ····· 360
2. 종이기록의 비실명 처리 ····· 360
가. 비실명 처리 방법 ····· 360
나. 비실명 처리 결과 ····· 361
3. 전자기록의 비실명 처리 ····· 361
가. 비실명 처리 방법 ····· 361
나. 비실명 처리 결과 ····· 361
Ⅲ. 기록의 보존 ····· 362
1. 사건기록 보존의 개념 ····· 362
2. 보존의 주체 ····· 362
가. 현재의 실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처리 ·· 362
나. 근거 법률 없음 ····· 363
다. 재판의 집행 지휘에 기록이 필요한지 여부 ····· 363
라. 법원 보존의 필요성 ····· 364
3. 보존절차 및 보존 후의 열람 ····· 365
가. 현재의 실무 ····· 365
나.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 365
다.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 ····· 365
4. 보존기간 ····· 366
가. 현행 보존기간 ····· 366
나. 형사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 367
Ⅳ. 전자기록에 대한 열람·검색 제한 ····· 368

제6장 도입방안 ····· 371

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 373
Ⅰ. 사건에 따른 단계적 도입 ····· 373
1. 형사 전자소송 법률의 적용대상 사건 검토 ····· 373

2. 절차를 정한 법률에 따른 분류 ····· 373
가. 형사소송법 ····· 373
나. 기타 법률 ····· 374
3. 대상 사건에 따른 단계적 도입 ····· 377
Ⅱ. 전자화 범위의 확장에 의한 단계적 도입 ····· 378
1. 시범 실시 단계 ····· 378
2. 전자소송 도입 1단계: 법원 작성 문서의 전자화 ····· 378
3. 전자소송 도입 2단계: 전자적 제출 허용 ····· 378
4. 전자소송 도입 3단계: 검사의 법원 제출 문서 전자화 ····· 379
Ⅲ.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 379
1.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 379
2. 시범 실시 단계 ····· 380
3.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주요 내용 ····· 380
가. 전자사본화 처리 개요 ····· 380
나. 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 ····· 380
다. 전자사본화 방법 ····· 381
라. 사용자등록 ····· 381
마. 전자사본기록 열람 ····· 381
바.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PDF 파일 제공 ····· 382
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 382
4. 시범 시행 경과 ····· 382
가. 시범 시행 재판부 선정 ····· 382
나. 전자사본기록의 외부 열람 ····· 382
다. 검찰에 대한 열람서비스 ····· 384
5.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의 성과 ····· 384
Ⅳ.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단계적 확대 ····· 385
제2절 입법 방안 ····· 385
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 ····· 385
Ⅱ.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386
제3절 발의된 법률안 검토 ····· 386
Ⅰ.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386
1. 제안이유 ····· 386
2. 특징 ····· 387
가. 단계적 도입 ····· 387
나. 법원에 대한 전자적 제출만 규정 ····· 387
다. 민소전자문서법을 기본으로 함 ····· 388
Ⅱ. 법률안 검토 ····· 388
1. 제1조 목적 ····· 388
2. 제2조 정의,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 388
가. 전자문서의 정의 ····· 389

나. 전자화문서의 정의 ····· 390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390
라. 전자서명 ····· 390
3. 제3조 적용범위 ····· 391
4. 제5조 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소송등의 수행 ····· 393
가.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주체 ····· 393
나. 전자적 제출을 받는 기관 ····· 393
5. 제6조 사용자등록 ····· 394
6. 제7조 전자서명 ····· 395
가. 규정 체계 ····· 395
나. 문제점 ····· 396
7. 제8조 문서제출방법 ····· 398
가.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 398
나. 전자적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 추가 – 구금된 자 ····· 399
8. 제9조 전자문서등의 접수 ····· 399
9. 제10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등, 제15조 수사기관의 전자문서등 작성 ··· 400
가. 규정 체계 ····· 402
나. 전자적 작성 방법 및 대상 ····· 404
다. 전자화문서의 효력 ····· 407
라. 전자적 서명의 효력 ····· 409
10. 제11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 410
가. 전자소송 의무자 ····· 411
나. 전자소송의 사전 동의 ····· 411
다. 송달 관련 ····· 412
라. 향후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적 제출도 규정하게 될 경우
– 전자소송 동의 확인에 관한 규정 필요 ····· 414
11. 제12조 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 414
가. 출력서면 제출 의무자 ····· 415
나. 출력서면 송달 사유 ····· 415
다. 전자문서와 출력서면 사이의 동일성 ····· 416
12. 제13조 재판확정전자문서 등의 열람·복사 ····· 416
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 및 재판서 등의 열람·복사 ····· 420
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대응하는 조문 ····· 420
다. 열람·복사 대상 ····· 420
라. 열람·복사 기관 ····· 421
마. 제4항의 필요 여부 ····· 421
13. 제14조 열람·복사된 전자문서등의 남용 금지, 제20조 벌칙 ····· 421
14. 제16조 전자문서등에 의한 집행 지휘 ····· 422
가.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를 위한 규정 ····· 422
나. 문제점 ····· 423

다. 행정전자서명에 의한 재판 집행 지휘(형사소송법 제461조 단서) ····· 423
15. 제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 424
16. 제18조 위임규정 ····· 424
17.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425
18. 부칙 ····· 425
19.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 ····· 426
가. 약식전자문서법의 폐지 또는 개정 ····· 426
나. 수사기관의 전자기록 열람·검색 제한 ····· 426
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확대 ····· 426

제7장 결론 ····· 427

105.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Cognitive Error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and Measures for Debiasing

연구총서 2020-06

연구책임자 : 이종엽(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 3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차별성 ····· 4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5
Ⅰ. 연구의 방법 ····· 5
Ⅱ. 연구의 내용 ····· 6

제2장 법적 판단과 편향이론 ····· 9

제1절 JDM 연구과 법적 판단 ····· 11
제2절 법적 판단에 있어 휴리스틱과 편향의 영향 ····· 12
제3절 휴리스틱과 편향이론 ····· 15
Ⅰ. 판단 및 의사결정의 심리학 ····· 15
Ⅱ. 휴리스틱의 기전 ····· 19
1. 이중정보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 ····· 19
2. 시스템1과 시스템2의 관계 ····· 22
3. 인지반응검사(CRT) ····· 23
Ⅲ. 재판에 있어 휴리스틱과 편향이론의 의의 ····· 25
제4절 전문가로서 판사의 의사결정의 특징 ····· 26
Ⅰ. 전문가 사고의 특징 ····· 26
1. 체화된 스키마 ····· 26
2. 전문가 판단의 신뢰 조건 ····· 28

Ⅱ. 전문가로서 판사의 의사결정 ····· 29
1. 인간으로서의 판사 vs 전문가로서의 판사 ····· 29
2. 판사의 의사결정의 특징 ····· 30
가. 전문가로서의 신뢰성 ····· 30
나. 휴리스틱에 관한 강점과 약점 ····· 30
(1) 강점 ····· 30
(2) 약점 ····· 31
다. 정리 ····· 32

제3장 판단을 위한 전략 ····· 35

제1절 판단모형 ····· 37
제2절 직관적 모델 vs 숙고적 모델 ····· 38
Ⅰ. 직관 대 숙고 ····· 38
Ⅱ. 문제의 성격과 판단 전략 ····· 39
1. 법적 판단과 직관적 사고 ····· 39
2. 법적 판단과 숙고적 사고 ····· 40
3. 과제의 성격에 따른 판단전략 ····· 41
제3절 진단적 평가 vs 통계적 평가 ····· 41
Ⅰ. 의의 ····· 41
Ⅱ. 임상적 평가와 통계적 평가(clinical v. actuarial prediction) ····· 42
1. 의의 ····· 42
2. 적용범위와 한계 ····· 46
3. 통계적 판단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판단이 선호되는 이유 ····· 47
Ⅲ. 전체적 판단과 분석적 판단 ····· 48
1. 의의 ····· 48
2. 법적 판단에 있어 판단전략의 우월성 ····· 49
3. 법적 함의 ····· 50
가. 선형모델에 대한 고려 ····· 50
나. 개별적 평가주의와 종합적 평가주의 ····· 51
제4절 하향식(top-down) vs 상향식(bottom-up) 판단전략 ····· 54
Ⅰ. 숙고적 사고과정에서의 두 모드 ····· 54
Ⅱ. 편향성과의 관련 ····· 55
Ⅲ. 전략의 선택 ····· 56

제4장 법적 판단에 있어 인지적 편향의 내용 ····· 59

제1절 사건 이해 및 쟁점 인식과 관련한 오류 ····· 61
Ⅰ. 스키마(schema) ····· 61
1. 의미 없는 세상에 의미 만들기 ····· 61
2. 스키마적 문제 프레이밍 ····· 62

3. 사전확률로서의 스키마 ····· 62
4. 다양성의 의미 ····· 64
Ⅱ. 프레이밍(framing) ····· 64
Ⅲ. 이득 프레임과 손실 프레임 ····· 68
1. 손실회피 ····· 68
2. 소유효과 ····· 70
3. 법적 함의 ····· 70
가. 소유효과에 의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제한 법리 ····· 70
나. 소송구조의 프레임과 합의 선호 ····· 71
제2절 증거의 관련성과 타당도 판단에 관한 오류 ····· 74
Ⅰ. 확률판단에 관한 오류 ····· 74
1. 확률판단의 중요성 ····· 74
가. 주관적 확률로서의 심증 ····· 74
나. 증거평가와 확률이론 ····· 76
2.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 거짓 상관 ····· 80
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별 ····· 80
나. 공변량 평가오류 ····· 81
다. 상관성 착각(illusory correlation) ····· 84
3. 베이지안 추론 ····· 85
가. 베이즈 정리 ····· 85
나. 심증형성에 관한 베이즈 이론의 적용 ····· 86
4. 기저율 무시 ····· 89
5. 복잡한 사건에 대한 잘못된 확률판단 ····· 95
가. 결합 사건에 관한 직관 ····· 95
나. 낙관 오류의 원인 ····· 96
다. 복잡한 사건(compound event)에 대한 낙관 오류 ····· 96
Ⅱ. 대표성 휴리스틱 ····· 98
1. 의의 ····· 98
2. 결합오류 ····· 100
가. 의의 ····· 100
나. 법적 함의 ····· 101
3. 도박꾼의 오류 ····· 103
4. 무선성에 대한 잘못된 직관 ····· 104
5. 표본크기의 무시(작은 수의 법칙) ····· 105
6. 법적 함의 ····· 106
가. 범주적 판단으로서의 재판 ····· 106
나. 대표성 휴리스틱과 증거평가 ····· 107
(1) 증거의 검증력 ····· 107
(2) 증거의 강도와 무게 ····· 108
(3) 구체적인 예 ····· 109

제3절 책임 판단에 관한 오류 ····· 112
Ⅰ. 후견편향(hindsight bias) ····· 112
1. 의의 ····· 112
2. 원인 ····· 114
가. 본질적 인지적 성향 ····· 114
나. 가용성 휴리스틱과의 관련성 ····· 115
3. 법적 함의 ····· 115
가. 후견편향에 대응한 법리들 ····· 115
(1) 경영판단의 법리 ····· 115
(2) 증거능력의 제한 ····· 116
나. 형사재판에서의 후견편향 ····· 117
4. 탈편향 ····· 118
Ⅱ. 앵커링(anchoring) ····· 119
1. 의의 ····· 119
2. 원인 ····· 120
3. 다른 휴리스틱 또는 인지적 편향과의 관련 ····· 125
4. 법적 함의 ····· 127
가. 조정 또는 합의와 앵커링 ····· 127
나. 청구금액과 앵커링 ····· 128
다. 구형과 선고형 사이의 관계 ····· 129
라. 증거평가 ····· 131
마. 형사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조정 ····· 131
5. 탈편향 ····· 132
Ⅲ. 근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 133
1.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 ····· 133
2. 법적 함의 ····· 133
가. 책임판단에 있어 상황적 요인의 무시 ····· 133
나. 분쟁의 악화 원인 ····· 134
3. 탈편향 ····· 134
Ⅳ. 역추정 오류(inverse fallacy) ····· 135
1. 법적 책임판단과 역추정 오류 ····· 135
2. 판결의 논증구조와 역추정 오류 ····· 137
3. 실증적 연구 ····· 138
Ⅴ. 고정관념(stereotype) ····· 139
1. 의의 ····· 139
2. 법적 함의 ····· 140
제4절 정보처리와 판단상의 오류 ····· 141
Ⅰ.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 141
1. 회상 용이성 ····· 141
2. 원인 ····· 143

3. 판단의 묘사 의존성과 맥락의존성 ····· 143
가. 지지이론(support theory) ····· 143
나. 초두효과와 최신효과 ····· 145
(1) 초두효과(primary effect) ····· 145
(2) 최신효과(recency effect) ····· 146
4. 법적 함의 ····· 148
가. 교호신문제도의 가치 ····· 148
나. 가용성 휴리스틱과 증거평가 ····· 148
다. 가용성 휴리스틱과 당사자소송 ····· 150
(1) 처리 유창성(processing fluency) ····· 150
(2) 단순노출효과 ····· 151
(3)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 151
5. 탈편향 ····· 152
Ⅱ.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 153
1. 의의 ····· 153
가. 확증과 반증에 대한 차별적 처리 ····· 153
나. 확증편향의 4가지 양상 ····· 154
2. 원인 ····· 154
3. 법적 함의 ····· 156
가. 증거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평가 ····· 156
나. 초기 가설의 형성과 확증편향 ····· 157
다. 일방적 증거와 애매한 증거의 영향 ····· 160
4. 탈편향 ····· 161
Ⅲ. 과신(overconfidence) ····· 161
1. 의의 ····· 161
2. 원인 ····· 163
3. 법적 함의 ····· 163
가. 정확성과 확신감의 상관관계 ····· 163
(1) 확신감 있는 진술 ····· 163
(2) 배심의 확신감과 증거 왜곡 ····· 165
나. 일관성 극대화와 과잉확신 ····· 166
(1) 인지적 수미일관성(cognitive coherence) 이론 ····· 166
(2) 법적 함의 ····· 167
4. 탈편향 ····· 168
Ⅳ. 스토리 모델(story model) ····· 169
1. 의의 ····· 169
2. 관련 현상 ····· 170
가. 가설과 정보 사이의 쌍방향적 추론 ····· 170
나. 미래예측과 시뮬레이션 ····· 172
Ⅴ. 자기중심적 편향(ego-centric bias) ····· 173
1. 의의 ····· 173

2. 법적 함의 ····· 174
Ⅵ. 이유에 근거한 선택 ····· 175
Ⅶ. 동조 ····· 176
Ⅷ.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제거 ····· 176
1. 인지적 오류와 증거능력의 배제 ····· 176
2.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근거 ····· 178
가. 동기(motivation) ····· 178
나. 역설적 과정(Ironic Process Theory) ····· 179
다. 정보처리 과정상의 오염(mental contamination) ····· 179
라. 신념고수 현상(belief perseverance) ····· 180
3. 실증적 연구 ····· 180
가. Wistrich 등의 실험 ····· 180
나. 연구의 내용 ····· 181
(1)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 181
(2) 전과기록(Prior Criminal Conviction) ····· 181
(3) 불법 자백(Inadmissible Criminal Confession) ····· 181
4. 법적 함의 ····· 182
제5절 조정과 화해에 관한 인지적 오류 ····· 183
Ⅰ. 자기중심적 편향 ····· 183
Ⅱ. 프레이밍 ····· 184
Ⅲ. 전망이론 ····· 184
1. 조정의 전략 ····· 184
2. 손실회피 관점에서 본 형평 ····· 186
Ⅳ. 소유효과 ····· 187
Ⅴ. 현상유지 편향 ····· 187
Ⅵ. 불확실성 혐오 ····· 188

제5장 인지적 편향의 극복방안 ····· 189

제1절 정신적 오염과 탈편향 ····· 191
제2절 탈편향 전략 ····· 192
Ⅰ. 개관 ····· 192
1. 탈편향에 필요한 조건 ····· 192
2. 기존 연구 ····· 193
Ⅱ. 동기적 전략 ····· 194
1. 동기화(motivation) ····· 194
2. 편향의 인식과 교육 ····· 196
가. 인식과 교육이 편향을 줄일 수 있는가 ····· 196
나. 법적 판단에 있어 휴리스틱의 인식과 교육 ····· 197
다. 교육의 효과를 위한 조건 ····· 199

(1) 개인의 동기 ····· 199
(2) 개입의 필요성 ····· 199
(3) 시스템1으로의 통합 ····· 200
3. 이유 제시 ····· 200
Ⅲ. 인지적 전략 ····· 201
1. 하향식(top-down) vs 상향식(bottom-up) 판단전략 ····· 201
2. 선형모델 ····· 202
3.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inside view v. outside view) ····· 204
4. 대안적 전략 찾기 ····· 205
가.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생각하기 ····· 205
나. 객관적 판단기준으로의 대체 ····· 207
5. 반대로 생각하기(think-the opposite-strategy) ····· 208
6. 다시 생각하기 ····· 209
Ⅳ. 환경적 전략 ····· 209
1. 인지적 자원의 확보 - 시간과 인력 ····· 209
2. 정보 제공과 피드백 ····· 210
가. 객관적·통계적 정보의 제공 ····· 210
나. 사무분담의 안정성과 전문화 ····· 211
3. 기술적 도구의 제공 ····· 212
제3절 제도적 대응 ····· 213
Ⅰ. 합의체로 재판부 구성하기 ····· 213
Ⅱ. 투명성 ····· 214
Ⅲ.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 215
Ⅳ. 판단과정의 분리 ····· 216
1. 선행절차의 편향과 절연 ····· 216
2.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 ····· 217
Ⅴ. 편향에 대응한 법리 ····· 217
1. 후견편향의 방지 ····· 217
2. 대표성 휴리스틱 ····· 218
가. 성격증거의 배제 ····· 218
나. 과실추정원칙(res ipsa loquitur) ····· 219
다. 진술거부권 ····· 219
라. 포렌식 증거 ····· 220
3. 확증편향 ····· 221
4. 앵커링 ····· 222
5. 탈편향 ····· 222
가. 대립 당사자주의와 반대로 생각하기 ····· 222
나. 이유 제시의 요구 ····· 222

제6장 결론 ····· 225

106.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A Proposed Operation Strategy for the Law Clerk System in Korea

연구총서 2020-07

연구책임자 : 문선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효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7월 2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1. 법조일원화와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 3
2.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경과 ····· 5
3. 제도 정비의 필요성 ····· 6
Ⅱ.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Ⅰ. 연구의 범위 ····· 7
Ⅱ. 연구의 방법 ····· 8
1. 문헌연구 ····· 8
2. 설문조사 ····· 8
3. 의견조회 ····· 8
가. 재판부 구성원 판사에 대한 의견조회 ····· 9
나. 현직 재판연구원에 대한 의견조회 ····· 9

제2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현황과 사법제도 개선 논의 ····· 11

제1절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 13
Ⅰ. 개관 ····· 13
1. 법조일원화 도입과 재판연구원 제도 ····· 13
2. 법률 개정 경과 ····· 14
3. 제도 운용 경과 ····· 14
Ⅱ.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도입 취지 ····· 16
1. 대법원의 사법개혁 추진 경과 ····· 16
가.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16
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16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판사임용 제도 개선 토론회 ····· 18
라.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 ····· 19
2.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 경과 ····· 20
가. 구성 및 활동 개요 ····· 20
나. 회의 내역 ····· 20
3. 도입 여부에 관한 쟁점 및 도입 취지 ····· 22
가. 도입 반대의견 ····· 22
나. 도입 찬성의견 ····· 24
다. 소결: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취지 ····· 25
4.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시행방안 논의 경과 ····· 26
가. 논의 경과 개관 ····· 26
나. 법관임용 후보자 그룹의 양성 필요성 ····· 27
다. 정원 및 임용기간 ····· 27
라. 시행시기 ····· 28
Ⅲ. 도입 취지 관련 법원 내 운영 방향 ····· 30
1. 개관 ····· 30
2. 법관임용 후보자 그룹의 양성 ····· 30
3. 실무교육 방안으로서의 의미 ····· 31
4. 재판연구원의 주된 업무: 판결초고 작성과 법관의 업무경감 ····· 31
가. 판결초고 작성 업무와 재판연구원 ····· 31
나. 법관의 판결문 작성 업무경감 ····· 32
Ⅳ. 소결: 법관 업무보조의 필요성 증대와 재판연구원 제도 ····· 33
제2절 재판연구원 제도의 현황 ····· 34
Ⅰ. 제도의 현황 ····· 34
1. 개관 ····· 34
가. 의의 ····· 34
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 35
2. 재판연구원의 지위 ····· 36
가. 신분 ····· 36
나. 재판부와의 관계 ····· 36
3. 정원 및 임용기간 ····· 37

4. 주요 업무 ····· 37
5. 근무 법원 및 배치 현황 ····· 38
가. 전보 및 배치 원칙 ····· 38
나. 고등법원 권역별 배치 현황(2016년-2018년) ····· 39
다. 2019년 배치 현황 ····· 41
Ⅱ. 재판연구원 매뉴얼 ····· 43
1. 매뉴얼 제정 경과 ····· 43
가. 2012년 재판연구원 운용 매뉴얼 ····· 43
나. 2012년 매뉴얼의 구성 ····· 43
2. 미국 연방사법센터의 연방 로클럭 핸드북 ····· 43
Ⅲ.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 현황 ····· 44
1. 재판연구원 교육 개요 ····· 44
가. 후보자 1차 교육 ····· 44
나. 후보자 2차 교육 ····· 44
다. 서울고등법원 1년차 전입교육 ····· 45
2. 2019년 재판연구원 교육 현황 ····· 45
3. 법관 직무연수 참여 현황 ····· 46
제3절 사법제도 개선 논의 ····· 47
Ⅰ. 개관 ····· 47
Ⅱ. 법원 내 논의 경과 ····· 47
1. 2009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 ····· 47
가. 개관 ····· 47
나.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 ····· 47
다. 고법 판사와 지법판사 이원화 방안 ····· 48
2. 2011년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 48
가. 개관 ····· 48
나. 재판부 재편 및 법관 인사 이원화 건의문 ····· 48
3.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 49
4. 2015년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현황 ····· 50
가. 개요 ····· 50
나. 법관 증원과 법관 역량의 심판업무 집중 ····· 50
다. 전담법관 임명 ····· 50
라. 배석판사 근무 기간 합리화 및 합의부장 순환 근무 ····· 51
5. 2018년 법관인사제도 개선 자료 ····· 51
6.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관련 의결 ····· 52
가. 2017. 12. 4. 의결 결과 ····· 52
나. 2018. 7. 23. 의결 결과 ····· 53
다. 2019. 12. 2. 의결 결과 ····· 53
7. 소결: 사법제도 개선과 재판연구원 제도 ····· 54

제3장 각국의 재판보조인력 ····· 55

제1절 미국의 로클럭 제도 ····· 57
Ⅰ. 서론 ····· 57
Ⅱ. 로클럭 제도의 목적과 윤리 ····· 58
1. 로클럭 제도의 목적 ····· 58
가. 사건처리의 효율성 증대 ····· 58
나. 신입 법조인의 실무능력 제고 ····· 59
다. 재판의 질 향상 ····· 59
2. 로클럭의 행동강령 ····· 59
Ⅲ. 로클럭의 임용 ····· 60
1. 로클럭의 자격 ····· 60
2. 로클럭 임용의 형태 ····· 62
가. 임기에 따른 분류 및 단기근무의 장단점 ····· 62
나. 개별 판사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 ····· 64
3. 로클럭 채용 규모 및 판사당 수 ····· 64
4. 로클럭의 채용절차 ····· 66
Ⅳ. 로클럭의 처우 ····· 68
1. 연방법원 로클럭의 급여 ····· 68
2. 상근변호사의 급여 ····· 69
3. 복지혜택 ····· 71
가. 로클럭에 대한 복지혜택 ····· 71
나. 상근변호사에 대한 복지혜택 ····· 72
Ⅴ. 로클럭의 업무 ····· 72
1. 개관 ····· 72
2. 법률정보조사와 서면 작성·편집 ····· 73
가.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 ····· 73
나. 서면 작성 ····· 73
다. 서면 편집 ····· 76
3. 판사실 운영 및 사건 관리 ····· 77
가. 판사실 운영(chambers administration) ····· 77
나. 사건 관리(case management) ····· 77
4. 로클럭의 업무수행상 문제점 ····· 78
가.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질 제한 ····· 78
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 ····· 79

Ⅵ. 로클럭에 대한 교육 ····· 81
1. 법원이 제공하는 교육 ····· 81
2. 연방사법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 81
가. 연방사법텔레비전네트워크(FJTN) ····· 81
나. 연방로클럭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iOLC) ····· 82

다. 사법부 내부 전산망의 동영상 자료 ····· 82
Ⅶ. 미국의 로클럭 제도의 시사점 ····· 83
1. 우리나라의 재판연구원과의 차이점 ····· 83
2. 우리나라의 재판연구원 제도에의 시사점 ····· 84
가.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발간 ····· 84
나. 판결서 초안 작성 시 의견교환의 필요성 ····· 84
다. 장기적인 개선방안: 경력 변호사 임용 및 임용기간 연장 방안 ····· 85
제2절 영국의 재판연구원 ····· 86
Ⅰ. 개관 ····· 86
Ⅱ. 재판연구원의 임용 ····· 87
1. 채용 인원 및 기간 ····· 87
2. 임용기준과 임용절차 및 방법 ····· 88
3. 'Case Lawyer' 제도 ····· 88
4. 법관 임용과의 관계 ····· 89
Ⅲ. 재판연구원의 업무 ····· 90
1. 재판연구원의 역할 ····· 90
2. 재판연구원의 구체적 업무와 실무 패턴 ····· 90
가. 특정 판사의 업무보조 ····· 90
나. 항소법원 사건관리 업무 ····· 91
Ⅳ. 시사점 ····· 91
제3절 일본의 법관임용 제도 ····· 92
Ⅰ. 개관 ····· 92
Ⅱ. 판사보 제도 ····· 93
1. 도입경과 ····· 93
2. 임명 및 직권의 제한 ····· 93
3. 일본 사법개혁 ····· 94
Ⅲ. 시사점 ····· 94

제4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용 현황 ····· 97

제1절 업무 현황조사 결과 ····· 99
Ⅰ. 2012년 재판연구원 현황점검 및 간담회 결과 ····· 99
1.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현황점검 ····· 99
가. 2012년 재판연구원 제도 현황점검 내역 ····· 99
나. 2012년 재판연구원 제도 운영 평가와 업무 설정 문제 ····· 100
2. 재판연구원의 지위와 역할 ····· 100
3. 재판연구원의 업무 ····· 101
가. 업무의 내용 ····· 101
나. 업무 방법 ····· 102
다. 재판부 내부 피드백 ····· 103

Ⅱ. 2013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업무 현황 ····· 104
1.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3. 4. 설문조사 결과 ····· 104
가. 설문조사 방법 ····· 104
나. 재판연구원 업무 분석 ····· 104
다. 행정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05
라. 형사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06
마. 민사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06
바. 실질적 보조역할 강화를 위한 재판연구원 의견 ····· 106
2. 2013. 4.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구체적 운영 현황 ····· 108
가. 재판부 현황 ····· 108
나. 재판연구원 업무 분담 방식: 홀/짝수 분담 방식 ····· 108
다. 재판연구원의 주요 업무 ····· 108
Ⅲ. 2014년 2년차 재판연구원 업무수행 현황 설문조사 ····· 109
1. 설문조사 대상 ····· 109
2. 설문조사 결과 ····· 110
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10
나. 건의사항 ····· 111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3
Ⅳ.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113
1. 설문조사 방식 ····· 113
2. 업무 내용 및 업무량 ····· 114
3. 업무부여 방식 ····· 114
4. 의견서 작성 방식 ····· 115
5. 업무결과물의 피드백 ····· 116
6. 재판 참관 등 재판부 생활 ····· 117
7. 개선이 필요한 사항 ····· 118
Ⅴ. 업무 현황조사 결과의 시사점 ····· 118
1. 업무 현황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 118
2. 개선방안 검토 ····· 119
제2절 제도 현황조사 결과 ····· 119
Ⅰ.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수습 설문조사 결과 ····· 119
1. 재판실무수습 심화 과정 내용 ····· 119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20
가. 설문조사 결과 ····· 120
나. 분석 ····· 120
Ⅱ. 2013년 2년차 재판연구원 진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21
1. 설문조사 방법 ····· 121
2. 설문조사 결과 ····· 121
가. 향후 진로 관련 ····· 121
나. 진로모색 관련 애로사항 ····· 121

다. 건의사항 ····· 122
Ⅲ. 2015년 재판연구원 순회 간담회 결과 ····· 122
1. 간담회 내역 ····· 122
2. 간담회 결과 ····· 123
가. 법원 생활 현황 ····· 123
나. 부적절 사례 ····· 123
다. 건의사항 ····· 124
3. 간담회 결과 분석 및 2016년 개선사항 ····· 125
Ⅳ.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126
1. 재판연구원 만족도 ····· 126
2. 건의사항 등 의견 ····· 127
Ⅴ. 2016년 2년차 재판연구원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27
1. 설문조사 방법 ····· 127
2. 설문조사 결과 ····· 128
가. 재판연구원 임용에 대한 만족도 ····· 128
나. 재판연구원 제도 관련 의견 ····· 128
다. 향후 진로 ····· 130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1
Ⅵ. 2017년 2년차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131
1. 설문조사 방법 ····· 131
2. 설문조사 결과 ····· 131
가. 주요 내용 ····· 131
나. 재판연구원 지위나 진로 관련 ····· 132
다. 기타 처우 및 생활 관련 구체적인 의견 ····· 133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2017년 제도 개선 경과 ····· 134
Ⅶ. 2020년 전직 재판연구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35
1. 설문조사 방법 ····· 135
2. 설문조사 결과 ····· 135
Ⅷ. 재판연구원 제도 설명회 후기 ····· 136
1. 설명회 개최 및 참석 후기 ····· 136
2. 주요 내용 ····· 137
3. 설명회 결과 분석 ····· 138
제3절 참고자료: 변호사 실무교육 현황 ····· 138
Ⅰ. 개관 ····· 138
Ⅱ. 변호사 실무수습 관련 설문조사 ····· 139
1.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 139
2.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 140
가. 2017년 설문조사 및 개선 내역 ····· 140
나. 2018년 설문조사 결과 ····· 141
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신청 현황 ····· 141

Ⅲ.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업무역량 설문조사 ····· 142
1. 설문조사 방법 ····· 142
2. 설문조사 결과 ····· 142
가. 재판연구원의 업무 현황 ····· 142
나. 그 밖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업무 현황 ····· 143

제5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제언 ····· 145

제1절 실무적 개선방안 ····· 147
Ⅰ. 개관 ····· 147
1. 운영 성과 ····· 147
2. 업무 개선의 필요성 ····· 148
Ⅱ. 업무 설정의 기본원칙 ····· 149
1. 업무 설정에서의 난점 ····· 149
가. 불명확한 업무 영역 ····· 149
나. 제한적 업무보조 영역 ····· 150
2. 법관의 실질적 업무경감 ····· 151
3. 재판연구원에 대한 고려 ····· 151
가. 업무 성과의 향상과 반영 ····· 151
나. 업무수행능력 ····· 152
4. 업무의 정형화 ····· 152
5. 소결 ····· 153
Ⅲ. 사무분담별 업무 개선방안 ····· 154
1. 개관 ····· 154
2.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의 기본 업무 ····· 154
가. 민사부 업무 개요 ····· 154
나. 주심판사의 업무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55
다. 재판장의 업무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56
라. 비주심판사의 업무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56
3. 사무분담별 재판연구원 업무의 특징 ····· 157
가. 민사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57
나. 가사부 업무 현황 ····· 158
다. 행정부 업무 현황 ····· 158
라. 항고부 업무 현황 ····· 159
마. 형사부 업무 현황 ····· 159
4.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 160
가. 경력대등재판부 개요 ····· 160
나. 민사 항소부 업무 현황 ····· 160
다. 형사 항소부 업무 현황 ····· 161
Ⅳ. 구체적인 업무별 개선방안 ····· 162
1. 개요 ····· 162

2. 주된 업무의 수행 현황과 개선방안 ····· 162
가. 신건 검토 ····· 162
나. 검토보고서 ····· 165
다. 주장 및 증거 정리나 기록검토 업무 ····· 168
라. 판결초고 또는 의견서 ····· 170
마. 조정 또는 합의 참여 ····· 172
바. 참여관 업무와 재판연구원 제도 ····· 173
3. 사건배당 방식과 개선사항 ····· 174
가. 사건 배당 방식별 장·단점 ····· 174
나. 업무현황의 공유 ····· 175
다. 실질 대등재판부의 업무 방식 ····· 177
4. 업무부여 방식의 개선방안 ····· 178
가. 구체적인 방식의 업무지시 ····· 178
나. 업무의 단계적 변경 필요성 ····· 179
다.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활용방안 ····· 180
5. 재판연구원의 업무량 ····· 181
가. 업무량 현황 및 문제점 ····· 181
나. 개선방안 ····· 182
Ⅴ. 공동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 ····· 183
1. 의의 및 필요성 ····· 183
가. 의의 ····· 183
나. 활용과 개선 필요성 ····· 183
2. 운영방식 ····· 183
가. 첫 번째 방식 ····· 183
나. 두 번째 방식 ····· 184
다. 세 번째 방식 ····· 184
3. 2019년 서울고등법원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 184
가. 전담재판부별 배치 방식의 운용 현황 ····· 184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5
Ⅵ. 재판연구원 교육 강화 방안 ····· 186
1. 재판연구원 교육의 필요성 ····· 186
2. 집체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안 ····· 186
가. 재판연구원의 교육 만족도 ····· 186
나. 2015년 개선의견 ····· 187
다. 개선방안 ····· 188
3. 법관연수 참여 방안 ····· 188
4. 재판부별 개별교육 방안 ····· 189
가. 개별교육의 필요성 ····· 189
나. 재판연구원 제도와 개별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 189
5. 개별 교육자료의 마련 ····· 190

가. 필요성 ····· 190
나. 교육자료의 내용 ····· 191
6. 업무적응의 지원 ····· 192
가. 업무수행 태도에 관한 지도 ····· 192
나. 참고자료 등의 지원 ····· 193
7. 업무성과물에 대한 피드백 ····· 193
가. 필요성 ····· 193
나. 피드백의 내용 ····· 194
Ⅶ. 업무 매뉴얼 마련방안 ····· 194
1. 업무 매뉴얼의 필요성 ····· 194
가. 찬반 의견 ····· 194
나. 업무 매뉴얼의 필요성 ····· 195
2.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안) ····· 195
Ⅷ. 기타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 ····· 199
1. 재판연구원 업무개선 논의의 활성화 방안 ····· 199
가. 논의 활성화의 필요성 ····· 199
나. 재판부 내 재판연구원 제도에 관한 토의 ····· 200
다. 재판연구원 실무연구회 구성 방안 ····· 200
라. 재판장 연수 등에서의 논의 필요성 ····· 201
2. 전산 시스템 등의 지원 방안 ····· 201
3. 처우 개선방안 ····· 201
가. 재판연구원실 사무용품 제공 ····· 201
나. 근무환경 개선 ····· 202
제2절 장기적 활용방안 ····· 202
Ⅰ. 재판연구원 배치 확대와 증원 방안 ····· 202
1. 개관 ····· 202
2. 배치기준 개선방안 ····· 203
가. 배치기준 ····· 203
나.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의 개관 ····· 203
다. 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배치의 문제점 ····· 205
라. 법원별 배치 개선방안 ····· 206
3.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배치방안 ····· 207
가. 1심 단독화와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 207
나.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시행 현황 ····· 208
다. 경력대등재판부와 재판연구원 제도 ····· 208
4. 합의부 배치 방안 ····· 209
가. 전담재판부 배치의 필요성 ····· 209
나. 재판연구원이 배치된 합의부 운영 방안 ····· 210
5. 단독부장 재판부 배치 방안 ····· 211
가. 단독재판부 업무 개요 ····· 211

나. 배치 방안 ····· 212
6. 원로법관 등 전담법관 ····· 212
가. 배치의 필요성 ····· 212
나. 검토 ····· 213
7. 법관증원과 재판연구원 제도 ····· 213
가. 법관 업무부담의 가중 ····· 213
나. 법관증원 논의와 재판연구원 제도 ····· 213
Ⅱ. 재판연구원 임용 개선방안 ····· 214
1. 개관 ····· 214
2. 임기 연장 방안 ····· 214
가. 법조일원화와 임기 연장의 관계 ····· 214
나. 연장 기간 ····· 215
다. 임기 연장 활용방안 ····· 215
라. 임기 연장 방법 ····· 216
3. 경력 변호사 선발 방안 ····· 216
가. 미국의 경력임용 제도 ····· 216
나. 도입 방안 ····· 216
다. 활용방안 ····· 217
4. 상근 변호사 임용 방안 ····· 217
가. 미국과 영국의 상근 변호사 제도 ····· 217
나. 도입 방안 ····· 218
5. 우수 인력 선발방안과 재판연구원의 진로 ····· 218

제6장 결론 ····· 221

107.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Cambodia·Laos

연구총서 2020-08

연구책임자 : 정호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20년 5월 1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의 관계 ····· 7

제1절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3국 관계 ····· 9

제2절 한국과의 양자관계 ····· 11

Ⅰ. 교역관계 ····· 11

Ⅱ. 캄보디아·라오스에 대한 진출 전략 ····· 12

Ⅲ.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의 상업등기제도 교류와 경제 관계 ····· 13

제3장 베트남의 기업등기제도 ····· 15

제1절 베트남의 기업등기(등록) ····· 17

Ⅰ. 베트남의 상법(Luật Thương mại)과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 17

Ⅱ. 베트남 기업법 및 기업법 관련 명령, 규칙 ····· 18

제2절 등기와 등록 ····· 21
Ⅰ. 문제점 ····· 21
Ⅱ. 한국에서의 등기와 등록 ····· 22
1. 우리 행정법상 공증 개념에 의한 구별 여부 ····· 22
2. 일반인에 대한 공시에 의해 구별 가능한지 여부 ····· 23
3. 권리의 득실여부에 의해 구별이 가능한지 여부 ····· 23
4. 소결 ····· 24
Ⅲ. 베트남에서의 등기와 등록 ····· 26
1. 개설 ····· 26
2.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상업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와 해당 증명서 ···· 27
3. 베트남 기업법상의 “enterprise registration(đăng ký doanh nghiệp)” ····· 34
제3절 베트남의 기업등기제도 총론 ····· 41
Ⅰ. 등기와 등기소 ····· 41
1. 상업등기와 기업등기 ····· 41
가. 우리나라의 상업등기 ····· 41
나. 베트남의 기업등기 ····· 42
2. 등기소 ····· 43
가. 우리나라에서 상업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 ····· 43
나. 베트남의 기업등기소 ····· 43
Ⅱ. 기업등기증과 기업등기내용 ····· 48
1. 의의 ····· 48
2. 기업등기증 또는 기업등기내용의 변경 ····· 50
가. 기업등기“증”의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절차 ····· 50
나. 등기사항의 변경 ····· 51
3. 기업등기내용의 공시와 정보의 제공 ····· 51
4. 기업등기증의 재발급 ····· 52
5. 우리나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53
Ⅲ. 등기신청절차 ····· 54
1. 등기신청인 ····· 54
가. 의의 ····· 54
나.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 ····· 56
다. 우리나라의 등기신청인 ····· 58
2. 기업식별번호(Mã số doanh nghiệp; Identification number of an enterprise) ····· 59
가. 개관 ····· 59
나. 자동 기업식별번호 발급 순서 ····· 60
다. 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의 배정 ····· 61
라. 우리나라의 경우 ····· 61
3. 등기신청서의 작성 ····· 62
가. 개설 ····· 62
나. 기업의 상호(Tên doanh nghiệp; Names of enterprises) ····· 63

다. 기업의 본점과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 68
라. 사업 분야(Ngành, nghề kinh doanh; Business line) ····· 75
마. 세무등록정보(Thông tin đăng ký thuế; Tax registration information) ····· 78
바. 기업등기비용, 수수료(Phí, lệ phí đăng ký doanh nghiệp) ····· 80
4. 첨부정보 ····· 81
가. 개설 ····· 81
나. 기업등기서류 ····· 82
다. 회사정관(Điều lệ công ty; Company charter) ····· 84
라. 사원명부와 창립주주명부 ····· 86
마. 기타 ····· 87
5. 법인인감(Con dấu của doanh nghiệp; Seals of enterprises) ····· 87
가. 의의 ····· 87
나. 법인인감양식의 수량, 형식, 내용 ····· 88
다. 법인인감양식의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진, 언어 ····· 89
라. 법인인감의 관리 및 사용 ····· 90
마. 법인인감양식의 변경, 손괴 통지 ····· 90
바. 우리나라의 경우 ····· 91
6. 등기의 전자신청 ····· 94
가. 의의 ····· 94
나. 공인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기업등기의 순서, 절차 ····· 96
다. 사업자등록계정을 사용하는 기업등기의 순서, 절차 ····· 96
라. 우리나라의 경우 ····· 97
Ⅳ. 등기처리절차 ····· 101
1. 개설 ····· 101
2. 접수와 처리 ····· 102
가. 접수 및 기입 ····· 102
나. 조사 및 보정명령 ····· 103
다. 등기의 처리, 거절 ····· 106
라. 기업등기증의 취소와 기업의 법적 상태의 복구 ····· 107
마. 기업등기증을 취소당한 경우의 기업의 해산 ····· 110
3. 우리나라의 경우 ····· 111
가. 개설 ····· 111
나. 접수와 기입 ····· 111
다. 조사와 교합 ····· 112
라. 취하와 보정 ····· 113
마. 등기신청의 각하 ····· 113
Ⅴ. 등기정보 등의 제공, 정정, 이의신청 ····· 115
1. 기업등기내용에 관한 국가기관 간 정보 제공 ····· 115
2. 정정, 보충 ····· 115
3. 이의신청 ····· 116

4. 우리나라의 경우 ····· 117
제4절 개인기업에 관한 등기 ····· 119
Ⅰ. 개관 ····· 119
Ⅱ. 설립등기 ····· 121
1. 등기신청인 등 ····· 121
2. 신청정보 ····· 121
3. 첨부정보 ····· 122
4. 우리나라의 경우 ····· 122
Ⅲ. 변경등기 ····· 122
1. 개인기업소유주 변경등기 ····· 122
2. 개인기업소유주의 투자자본금 변경등기 ····· 123
Ⅳ.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과 파산 ····· 124
1. 기업의 조직개편 ····· 124
2. 전체 기업의 해산 ····· 126
가. 전체 기업의 해산 요건 ····· 126
나. 전체 기업의 해산 절차 ····· 127
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기업의 해산 ····· 128
라. 기업의 해산등기절차 ····· 129
마. 해산결정이후의 금지되는 행위 ····· 131
3. 파산 ····· 132
제5절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등기 ····· 132
Ⅰ.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등기 ····· 132
1. 1인 유한책임회사의 기업법상 일반론 ····· 132
가. 의의 ····· 132
나. 회사설립 자본금의 출자 ····· 132
다. 회사 소유주의 권한과 의무 ····· 133
라. 조직 또는 개인이 소유주인 1인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조직기구 ····· 133
마. 사원총회 ····· 134
바. 회장(사장)과 이사 또는 총괄이사, 감사 ····· 137
2. 설립등기 ····· 139
가. 등기신청인 등 ····· 139
나. 신청정보 ····· 139
다. 첨부정보 ····· 140
3. 변경등기 ····· 141
가. 개설 ····· 141
나. 정관자본금의 변경등기 ····· 141
다.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 변경등기 ····· 143
4. 기업의 조직개편 ····· 145
가. 개설 ····· 145
나. 기업의 분할(Chia doanh nghiệp; Division of enterprises) ····· 145

다. 기업의 따잇(Tách doanh nghiệp; Separation of enterprises) ····· 148
라. 기업 신설합병(Hợp nhất doanh nghiệp; Consolidation of enterprises) ····· 150
마. 기업의 흡수합병(Sáp nhập doanh nghiệp; Merger of enterprises) ····· 153
바. 기업유형의 조직변경(Chuyển đổi; Conversion) ····· 155
Ⅱ.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hai thành viên trở lê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with two or more members) ····· 158
1.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기업법상 일반론 ····· 158
가. 의의 ····· 158
나. 회사설립 자본금의 출자와 사원명부 ····· 159
다. 사원의 권리와 의무 ····· 159
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조직기구 ····· 160
마. 사원총회(Hội đồng thành viên; The Members' Council) ····· 160
바. 사원총회 의장과 이사 또는 총괄이사, 법률상 대표자 ····· 162
2. 설립등기 ····· 163
가. 등기신청인 등 ····· 163
나. 신청정보 ····· 163
다. 첨부정보 ····· 164
3. 변경등기 ····· 164
가. 개설 ····· 164
나. 정관자본금의 변경과 출자비율 변경등기 ····· 164
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변경등기 ····· 166
제6절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에 관한 등기 ····· 170
Ⅰ.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 Joint stock companies)의 기업법상 일반론 ····· 170
1. 의의 ····· 170
2. 주식회사의 정관자본금(Vốn điều lệ công ty cổ phần; Charter capital of a joint stock company) ····· 170
3. 주식(Cổ phần; Share)과 주주(Cổ đông; Shareholder) ····· 170
4. 주식회사의 조직관리구조(Cơ cấu tổ chức quản lý công ty cổ phần; Organizational and managerial structure of joint stock companies) ····· 172
5. 주주총회(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172
6. 이사회(Hội đồng quản trị; The Board of Directors) ····· 174
7. 감사위원회(Ban kiểm soát; The Supervisory Board) ····· 175
8. 주식회사의 정보공개(Công khai thông tin công ty cổ phầ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joint stock companies) ····· 175
Ⅱ. 설립등기 ····· 176

1. 등기신청인 등 ····· 176
2. 신청정보 ····· 176
3. 첨부정보 ····· 177
Ⅲ. 변경등기 ····· 177
1. 정관자본금의 변경등기 ····· 177
2. 주식회사 창립주주의 정보변경통지 ····· 178
3. 비상장주식회사의 외국인투자자인 주주의 변경통지 ····· 179
4. 기업경영자 정보변경통지 ····· 180
Ⅳ.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 180
1. 주식회사의 1인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180
가. 의의 ····· 180
나. 등기절차 등 ····· 180
다. 조직변경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181
2. 주식회사의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182
가. 조직변경의 방식 ····· 182
나. 등기절차 등 ····· 182
다. 조직변경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183
제7절 파트너십기업(Công ty hợp danh)에 관한 등기 ····· 183
Ⅰ. 파트너십기업(Partnerships)의 기업법상 일반론 ····· 183
1. 의의 ····· 183
2. 출자 및 출자증명서의 발급(Thực hiện góp vốn và cấp giấy chứng nhận phần vốn góp; Capital contribution and grant of capital contribution certificates) ····· 184
3. 무한책임사원의 권리제한(Hạn chế quyền đối với thành viên hợp danh; Restrictions on rights of general partners) ····· 184
4. 사원총회 ····· 184
5. 파트너십기업의 경영 관리 ····· 185
Ⅱ. 설립등기 ····· 185
1. 등기신청인 등 ····· 185
2. 신청정보 ····· 186
3. 첨부정보 ····· 186
Ⅲ. 변경등기 ····· 186
1. 출자비율의 변경 ····· 186
2.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s; Thành viên hợp danh)의 변경등기 ····· 187
제8절 가사사업등기 ····· 188
Ⅰ. 의의 ····· 188
Ⅱ. 가사사업의 요건 ····· 188
Ⅲ. 등기절차 등 ····· 189
1. 개설 ····· 189
2. 등기절차 등 ····· 189

가. 등기신청인 ····· 189
나. 현급 가사사업등기소 ····· 189
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190
라. 등기의 실행 ····· 190
마. 등기내용의 변경등기 ····· 191
바. 가사사업등기증의 취소와 재발급 ····· 191

제4장 캄보디아의 상업등기제도 ····· 193

제1절 캄보디아 기업의 형태 ····· 195
Ⅰ. 총설 ····· 195
Ⅱ. 파트너십기업(Partnership) ····· 196
1. 의의 ····· 196
2. 일반 파트너십기업(General Partnership) ····· 199
가. 의의 ····· 199
나.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자본 ····· 200
다.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내부관계 ····· 200
라.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외부관계 ····· 200
마. 사원의 퇴사 ····· 201
바.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해산, 청산 ····· 201
3. 유한 파트너십기업(Limited Partnership) ····· 201
가. 의의 ····· 201
나. 계약의 형식 ····· 202
다. 유한 파트너십기업의 법인격 취득일과 상호 ····· 202
라. 유한 파트너십기업의 내부관계 ····· 202
마. 유한 파트너십기업의 외부관계 ····· 202
바. 준용규정 ····· 203
Ⅲ. 유한회사(Limited Company) ····· 203
1. 의의 ····· 203
2. 법적 성격(Nature of Limited Company) ····· 204
3. 유한회사의 설립(Creation of Limited Company) ····· 204
가. 의의 ····· 204
나. 상호(Name of company) ····· 204
다. 정관(Articles) ····· 207
라. 영업 목적 및 영업 범위 ····· 210
마. 자본(capital) ····· 212
바.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 회사 장부(Books),
회사 기록물(Records) ····· 212
사. 이사(Director) ····· 212
아. 주식 ····· 213
자. 주주 ····· 214

차. 해산(Dissolution)과 청산(Liquidation) ····· 215
Ⅳ. 외국기업(Foreign Business) ····· 216
1. 의의 ····· 216
2.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216
3. 지점(Branch) ····· 217
4. 자회사(Subsidiary) ····· 217
제2절 캄보디아의 상업등기제도 총론 ····· 218
Ⅰ. 총설 ····· 218
Ⅱ. 등기와 등기소 ····· 221
1. 상업등기 ····· 221
가. 의의 ····· 221
나. 캄보디아 상업등기법상의 등기사항 ····· 224
다. 2016년 1월 4일 이후 무료로 공시되는 등기사항 ····· 226
2. 등기소 ····· 228
가. 의의 ····· 228
나. 2016년 1월 4일 이전 ····· 228
다. 2016년 1월 4일 이후 ····· 229
Ⅲ. 등기 관련 증명서 등 ····· 231
Ⅳ. 등기신청절차와 처리절차 ····· 233
1. 등기신청인과 법률상 대리인 ····· 233
가. 등기신청인 ····· 233
나. 법률상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 234
2. 등기신청서의 작성 ····· 237
가. 상업등기법에 의한 신청서 기재사항 ····· 237
나. 상호 ····· 238
다. 주소 ····· 239
3. 등기관(Registrar) ····· 239
4. 온라인 상업등기신청의 시작과 재등록 ····· 241
제3절 온라인 상업등기제도 이전의 기업유형별 등기실무 ····· 245
Ⅰ. 총설 ····· 245
Ⅱ. 단독 소유주(Sole Proprietorships)의 등기 ····· 245
1. 의의 ····· 245
2. 등기절차 ····· 247
Ⅲ. 파트너십기업(Partnership)의 등기 ····· 248
1. 의의 ····· 248
2. 등기절차 ····· 249
Ⅳ. 유한회사(Limited Company)의 등기 ····· 251
1. 의의 ····· 251
2. 등기절차 ····· 253
Ⅴ. 외국기업(Foreign companies)의 등기 ····· 255

1. 개관 ····· 255
2.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등기 ····· 255
가. 의의 ····· 255
나. 등기절차 ····· 256
3. 지점(Branch of a Foreign Company) 등기 ····· 257
가. 의의 ····· 257
나. 등기절차 ····· 258
Ⅵ. 캄보디아 회사의 지점(Branch of a Cambodian Company) 등기 ····· 259
1. 의의 ····· 259
2. 등기절차 ····· 260
Ⅶ. 유한회사와 외국기업의 비교 ····· 261
Ⅷ. 연간보고서(ANNUAL DECLARATION) ····· 262
제4절 온라인 상업등기신청 ····· 265
Ⅰ. 총론 ····· 265
1. 의의 ····· 265
2. 등기신청인 ····· 266
3. 상업등기소 ····· 267
4.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입력 방법 ····· 267
5. 방문신청 ····· 267
6. 첨부정보 ····· 268
가. 회사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For Company Registration) ····· 268
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등기(Registration of Branch or Representative Office) ····· 271
다. 파트너십기업의 등기(Registration of Partnership Company) ····· 272
라. 단독 소유주 기업의 등기(Registration of Sole Proprietorship Enterprise) ··· 273
7. 첨부정보 등의 진정성 담보 방안 ····· 274
8. 수수료 ····· 275
Ⅱ. 현행 온라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의한 등기절차 ····· 276
1. 의의 ····· 276
2.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 ····· 276
3. “INFORMATION” 메뉴 ····· 277
가. 의의 ····· 277
나. 기업설립 정보 ····· 279
다. 세부사항 변경(CHANGE DETAILS) ····· 283
라. 연간보고서 제출 정보(FILING ANNUAL DECLARATION) ····· 285
마. 회사의 해산(DISSOLUTION OF A COMPANY)에 관한 정보 ····· 285
4. “ONLINE SERVICES” 메뉴 ····· 286
가. 의의 ····· 286
나. 법인 검색 및 직책 검색 ····· 287
Ⅲ. 캄보디아 온라인 상업등기제도의 문제점과 장점 ····· 289

1. 법령체계상의 문제점 ····· 289
2. 캄보디아의 온라인 상업등기제도의 장점 ····· 290

제5장 라오스의 기업등기제도 ····· 293

제1절 라오스 기업(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Enterprise)의 형태 ····· 295
제2절 라오스의 기업등기제도 총론 ····· 299
Ⅰ. 총설 ····· 299
Ⅱ. 기업등기와 영업허가증 ····· 301
1. 기업등기 ····· 301
가. 의의 ····· 301
나. 등기사항 ····· 303
다. 기업등기사항의 변경 ····· 304
라. 기업등기증명서의 내용 및 내용의 변경(Contents and Changing of Contents on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305
마. 무효인 기업등기(Invalid enterprise registration) ····· 306
2. 영업허가증 ····· 307
가. 의의 ····· 307
나. 기업등기 이후의 영업허가증 신청(Application for Business Operating License after Enterprise Registration) ····· 307
다. 영업허가증의 내용(Contents of Business Operating License) ····· 308
라. 기업등기 이후의 영업활동 추가(Adding Business Activities after Enterprise Registration) ····· 308
Ⅲ. 등기소와 등기관 ····· 309
1. 등기소 ····· 309
가. 의의 ····· 309
나. 각 등기소의 권리와 의무 ····· 310
2. 등기관 ····· 312
가. 의의 ····· 312
나. 기업등기증명서에 서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Officers Authorized to Sign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312
다. 금지사항과 처벌 ····· 313
Ⅳ. 등기신청절차 ····· 313
1. 등기신청인 ····· 313
2. 신청서의 작성 ····· 314
3. 기업의 상호(ENTERPRISE NAME) ····· 315
4. 자본의 등기(기업법 제25조) ····· 317
5. 영업의 목적(Business's objective) ····· 317
6. 법인인감 제작(Enterprise seal making) ····· 319
7. 기업등기신청서류 ····· 319
Ⅴ. 등기처리절차 ····· 320

1. 기업등기의 조사 단계 ····· 320
2. 기업등기 조사 기간 ····· 320
3. 기업등기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처리 및 발급에 대한 책임의 배분 ····· 321
가. 기업등기관리부서(The Department of Enterprise Registration and Management)에서의 처리 ····· 321
나. 지방·수도 산업통상부서(Provincial [and] Capit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의 처리 ····· 321
다. 구(區) 및 시(市) 산업통상사무소(District [and] City Office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의 처리 ····· 321
4. 처리절차와 처리기간(Procedures and Time Period for Processing) ····· 322
5. 기업등기에 필요한 서류 심사(Examination of Documents Required for Enterprise Registration) ····· 322
6. 기업등기 관련 정보의 제공(Fil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Enterprise Registration) 및 시설의 제공(Provision of Facilities) ····· 323
7. 영업허가기관(Relevant sectoral agency)의 신청서 검토 ····· 323
Ⅵ. "국가 기업 데이터베이스(National Enterprise Database)"를 통한 데이터 탐색(Explore Data) ····· 324
1. 의의 ····· 324
2. 등기부 검색(Search the Register) ····· 324
3. 데이터 지도(Data Mapping) ····· 327
4. 국가적 통계(National Statistics) ····· 328
5. NED(National Enterprise Database) 차트(Charts) ····· 332
6. NED와의 정보 연계(Integrate with the NED) ····· 333
7. 우리나라의 등기정보광장 ····· 333
가. 의의 ····· 333
나. 종합 안내 ····· 335
다. 데이터 시각화 ····· 335
라. 법인등기 항목 ····· 336
마. 소결 ····· 339
제3절 개인기업(Individual enterprise)에 관한 등기 ····· 339
Ⅰ. 개관 ····· 339
Ⅱ. 개인기업(ราชการส่วนบุคคล)의 기업법상 일반론 ····· 341
1. 의의 ····· 341
2. 기업소유자의 권리와 의무(The owner's rights and duties) ····· 341
3. 매니저(ผู้จัดการ; Manager) ····· 342
4. 해산 및 청산(Dissolution and liquidation) ····· 342
Ⅲ. 설립등기 ····· 343
1. 등기신청인 등 ····· 343
2. 신청정보 ····· 343

3. 첨부정보 ····· 344
Ⅳ. 변경등기(ການປ່ຽນແປງເນື້ອໃນທະບຽນວິສາຫະກິດ; Alteration of registered matters) ····· 345
제4절 파트너십기업(Partnership)에 관한 등기 ····· 347
Ⅰ. 일반 파트너십기업(ວິສາຫະກິດຮຸ້ນສ່ວນສາມັນ; Ordinary Partnership)에 관한 등기 ····· 347
1. 파트너십기업의 공통 사항 ····· 347
가. 의의 ····· 347
나. 파트너십기업의 설립계약 ····· 347
다. 파트너십기업의 법인으로서의 지위(Status of legal person of partnership) · 347
라. 파트너십기업의 지점(기업법 제40조) ····· 348
마. 파트너십기업의 정관(A partnership's bylaws) ····· 349
바. 정관과 설립계약서의 변경 ····· 349
2.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기업법상 일반론 ····· 349
가. 의의 ····· 349
나.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자본 ····· 350
다.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내부관계 ····· 350
라.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외부관계(The external relationships of the ordinary partnership) ····· 352
마.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합병 ····· 352
바.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해산 ····· 353
사. 일반 파트너십기업의 청산 ····· 353
3. 설립등기 ····· 354
가. 등기신청인 등 ····· 354
나. 신청정보 ····· 354
다. 첨부정보 ····· 354
4. 변경등기 ····· 355
5. 지점설치등기(ຈົດທະບຽນສ້າງຕັ້ງສາຂາຂອງ ວ ສ; Registration to establish branch) ····· 355
Ⅱ. 유한파트너십기업(ວິສາຫະກິດຮຸ້ນສ່ວນຈຳກັດ; Limited Partnership; Partnership LTD)에 관한 등기 ····· 356
1. 유한 파트너십기업의 기업법상 일반론 ····· 356
가. 의의 ····· 356
나. 사원의 책임(Liability of partners) ····· 356
다. 출자와 지분의 양도 ····· 357
라. 유한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 ····· 357
마. 기타 ····· 357
2. 설립등기 ····· 358
가. 등기신청인 등 ····· 358
나. 신청정보 ····· 358
다. 첨부정보 ····· 358
3. 변경등기 ····· 359

제5절 유한회사(ບໍລິສັດຈຳກັດ; Limited Company)에 관한 등기 ····· 359
Ⅰ. 회사(Company)의 공통 사항 ····· 359
1. 의의 ····· 359
2. 회사의 주주(Shareholders of a company) ····· 360
3. 회사의 법적 지위와 지점(Status of legal person and branch of company) ····· 360
4. 그룹회사(Group company) ····· 360
5. 회사의 설립계약(Company's contract of incorporation) ····· 360
6. 회사의 정관(Company's bylaws) ····· 361
7. 회사의 설립계약과 정관의 변경(Alteration of the contract of incorporation and the bylaws) ····· 361
Ⅱ. 유한회사(ບໍລິສັດຈຳກັດ; Limited Company; Company LTD)에 관한 등기 ····· 362
1. 유한회사의 기업법상 일반론 ····· 362
가. 의의 ····· 362
나. 유한회사의 설립(Establishment of a limited company) ····· 363
다. 주식과 자본 ····· 363
라. 이사(ຜູ້ ອຳ ນວຍການ; Director) ····· 365
마.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366
바. 주주총회 ····· 366
사. 합병(Merger), 해산(dissolution) ····· 367
2. 설립등기 ····· 368
가. 등기신청인 등 ····· 368
나. 신청정보 ····· 368
다. 첨부정보 ····· 369
3. 변경등기 ····· 370
Ⅲ. 1인 유한회사(ບໍລິສັດຈຳກັດຜູ້ດຽວ; sole limited company) ····· 371
1. 1인 유한회사의 기업법상 일반론 ····· 371
가. 의의 ····· 371
나. 1인 유한회사의 설립(Establishment of a sole limited company) ····· 371
다. 1인 유한회사의 주금납입과 주식양도(Contribution and transfer of shares) ····· 371
라. 주주 ····· 371
마. 매니저(Manager) ····· 372
2. 설립등기 ····· 372
가. 등기신청인 등 ····· 372
나. 신청정보 ····· 372
다. 첨부정보 ····· 373
3. 변경등기 ····· 373
제6절 주식회사(ບໍລິສັດມະຫາຊົນ; Public Company)에 관한 등기 ····· 373
Ⅰ. 주식회사의 기업법상 일반론 ····· 373

1. 의의 ····· 373
2. 주식회사의 주주 수에 관한 원칙(Public company's principle on the number of shareholders) ····· 374
3. 주식회사의 발기인(Promoters of a public company) ····· 374
4.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 375
5. 주식회사의 설립계약(Contract of incorporation of a public company) ····· 375
6. 주식(Shares) ····· 375
Ⅱ. 설립등기 ····· 376
1. 등기신청인 등 ····· 376
2. 신청정보 ····· 376
3. 첨부정보 ····· 377
Ⅲ. 변경등기 ····· 378

제6장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의 등기제도 상호교류 방안 ····· 379

제1절 총설 ····· 381
제2절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 383
Ⅰ. 서설 ····· 383
Ⅱ.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의 현황과 주요 내용 ····· 384
제3절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의 등기제도 상호교류 ····· 395
Ⅰ.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상업등기제도의 주요 장·단점 ····· 395
1. 의의 ····· 395
2. 베트남 ····· 395
3. 캄보디아 ····· 397
4. 라오스 ····· 399
Ⅱ. 상업등기제도의 상호교류 방향 ····· 400
1. 법제처 보도자료 소개 ····· 400
2. 상업등기 관련 법령 개선 지원 및 등기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상호교류 ····· 401
3. 인적 상호교류 ····· 402
4. 소결 ····· 403

제7장 결론 ····· 405

108.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Research on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in the era of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연구총서 2020-09

연구책임자 :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통계분석 : 박재후(옥스포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020년 6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차별성 ····· 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5

제2장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7

제1절 법조일원화의 개념 ····· 9
제2절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과정 ····· 10
Ⅰ.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 ····· 10
1. 구성 ····· 10
2.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 ····· 11
3. 건의 내용 ····· 12
4. 활동 결과 ····· 13
Ⅱ.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1997년) ····· 13

1. 구성 ····· 13
2. 건의 내용 ····· 14
3. 활동 결과 ····· 14
Ⅲ.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 15
1. 구성 ····· 15
2. 활동 결과 ····· 15
Ⅳ.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2003년) ····· 16
1. 구성 ····· 16
2. 건의 내용 ····· 16
3. 활동 결과 ····· 17
Ⅴ. 사법개혁위원회(2003년~2004년) ····· 17
1. 구성 ····· 17
2. 건의 내용 ····· 18
3. 활동 결과 ····· 20
Ⅵ. 사법정책자문위원회(2009년~2010년) ····· 20
1. 구성 ····· 20
2. 건의 내용 ····· 21
제3절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22
Ⅰ. 법원조직법 개정(2011년) ····· 22
1.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의 법관 임용 ····· 22
2.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23
Ⅱ. 개정 법원조직법 부칙에 의한 법조경력 요건의 단계적 강화 ····· 24
1. 개정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른 최소 법조경력 요건 ····· 24
2. 개정 법원조직법 부칙의 개정 ····· 24
가. 내용 ····· 24
나. 개정 이유 ····· 24
Ⅲ. 검토 ····· 25

제3장 법조일원화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 ····· 27

제1절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에 관한 국내의 논의 ····· 29
Ⅰ. 논의의 의의 ····· 29
Ⅱ. 관련 법령 등에 나타난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 ····· 29
1. 법학전문대학원법 ····· 29
2. 법관윤리강령과 법관인사규칙 ····· 30
3.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계획 및 전담법관 임용계획 ····· 30
4. 법관 임용지원자 평가지침 ····· 31
Ⅲ. 일반 국민들의 법원 및 법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31
1. 법원과 판결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 31
2. 법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32
Ⅳ.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 34

Ⅴ. 국내 법학계에서의 논의 ····· 35
1. 예의 ····· 35
가. 예의의 필요성 ····· 35
나. 친절과 온화의 중용으로서의 예의 ····· 36
2. 성실 ····· 36
가. 성실의 필요성 ····· 36
나. 정의에 봉사하는 형식으로서의 성실 ····· 37
3. 신중 ····· 38
가. 신중의 필요성 ····· 38
나. 현명한 재판의 전제로서의 신중 ····· 38
4. 절제 ····· 39
가. 절제의 필요성 ····· 39
나. 법관의 절제력 ····· 39
5. 용기 ····· 41
가. 용기의 필요성 ····· 41
나. 법관에게 요구되는 용기의 내용 ····· 41
6. 공정 ····· 43
가. 공정의 필요성 ····· 43
나. 공정한 외관의 중요성 ····· 44
7. 겸손 ····· 45
가. 겸손의 필요성 ····· 45
나. 법관에게 필요한 세 가지 겸손 ····· 45
8. 의사소통 능력 ····· 47
가.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 ····· 47
나. 법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 47
제2절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에 관한 해외의 논의 ····· 49
Ⅰ. 서구 법학계에서의 논의 ····· 49
Ⅱ.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에 관한 미국의 기준 ····· 50
1. 연방법원 법관의 자질 ····· 50
가. 미국의 연방법원 및 연방법관의 종류 ····· 50
나. 미국 변호사협회 산하 연방사법상임위원회의 평가 기준 ····· 51
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평가 기준 ····· 52
2. 주 법원 법관의 자질 ····· 52
가. 주 법원 법관의 선발방식 ····· 52
나. 주 법원의 법관 선발 시 고려해야 할 자질에 관한
미국 변호사협회의 가이드라인 ····· 53
다. 가이드라인에 의한 바람직한 주 법원 법관의 자질 ····· 54
Ⅲ.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에 관한 영국의 기준 ····· 56
1. 2005년 헌법개혁법의 제정 ····· 56
2. 법관의 자질과 관련된 2005년 헌법개혁법 규정의 내용 ····· 58

3. 법관인사위원회가 고려하는 구체적인 법관의 자질 ····· 58
가. 능력(merit) ····· 58
나. 훌륭한 성품(good character) ····· 60
다. 다양성(diversity) ····· 60
제3절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 ····· 61

제4장 법관 임용제도의 현황 및 평가 ····· 63

제1절 우리나라의 법관 임용제도 현황 ····· 65
Ⅰ. 개관 ····· 65
Ⅱ. 법관 즉시임용제도 ····· 66
Ⅲ.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제도 ····· 67
1. 1990년경부터 2005년까지 ····· 67
2. 2006년부터 2012년까지 ····· 67
가. 개관 ····· 67
나. 임용심사 흐름도 ····· 68
다. 임용심사 항목 ····· 69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 70
가. 개관 ····· 70
나. 임용심사 흐름도 ····· 71
다. 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과 기준 ····· 71
4. 2016년부터 2017년까지 ····· 73
가. 개관 ····· 73
나. 2016년 법관 임용절차 개선 내용 ····· 73
다. 임용심사 흐름도 ····· 77
5. 2018년 ····· 78
가. 개선 내용 ····· 78
나. 임용심사 흐름도 ····· 80
6. 2019년 ····· 80
가. 개선 내용 ····· 80
나. 임용심사 흐름도 ····· 82
다.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기준으로 한
각 절차의 세부 내용 ····· 82
Ⅳ. 전담법관 임용제도 ····· 98
1. 전담법관제도 도입 및 시행 경과 ····· 98
가. 전담법관제도 도입 경과 ····· 98
나. 전담법관제도 시행 경과 ····· 98
2. 전담법관 임용심사의 세부 절차 ····· 99
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심사와의 차이점 ····· 99
나. 임용심사 흐름도 ····· 99
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제도 ····· 100

1. 개관 ····· 100
2. 2013년부터 2014년까지 ····· 100
3. 2015년 ····· 101
4. 2016년부터 2017년까지 ····· 102
Ⅵ. 검토 ····· 102
제2절 주요 국가의 법관 임용제도 현황 ····· 104
Ⅰ. 미국 ····· 104
1. 연방법원 법관의 임용제도 ····· 105
가. 연방지방법원 및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임용 ····· 105
나. 연방지방법원 부판사(Magistrate Judge)의 임용 ····· 112
다. 연방법원 법관 임용제도 전반에 관한 현지의 평가 ····· 115
2. 주 법원 법관의 임용제도 ····· 116
가. 법관 임용방식에 따른 검토 ····· 116
나. 캘리포니아 주 ····· 116
다. 뉴욕 주 ····· 123
라. 워싱턴 D.C. ····· 125
3. 소결 ····· 127
Ⅱ. 영국 ····· 128
1. 법관인사위원회 ····· 128
가. 개관 ····· 128
나. 구성 ····· 129
2. 개별선발절차 ····· 130
가. 개관 ····· 130
나. 책임 및 구성 주체 ····· 130
다. 법관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 ····· 131
3.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판단 절차 ····· 132
가. 자기평가서(Self-Assessment) ····· 132
나. 독립평가서(Independent Assessment) ····· 132
다. 후보군 선정(Shortlisting) ····· 133
라. 면접 심사 ····· 135
마.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 136
바. 법령상 자문의무(Statutory Consultation) ····· 137
4. 후보자의 성품에 대한 판단 및 최종 선발 ····· 137
가. 훌륭한 성품 평가를 위한 조사 ····· 137
나. 선발 및 성품 위원회의 추천 ····· 138
다. 추천에 따른 임명 ····· 138
라. 임용 탈락 후 재지원(Feedback) ····· 139
마. 근무지역 결정 ····· 140
5. 법관의 다양성 확보 정책 ····· 141
6. 법관직 지원 유도를 위한 홍보정책 ····· 142

가. 일반적 홍보정책 ····· 142
나. 훌륭한 변호사의 법관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 142
다. 소수자에 대한 별도의 홍보정책 ····· 143
라. 법원 업무 체험 프로그램(Judicial Work Shadowing Scheme) ····· 143
7. 소결 ····· 143
Ⅲ. 캐나다 ····· 144
1. 개관 ····· 144
2. 연방법원과 주 상급법원 법관의 임용절차 ····· 145
가. 지원, 천거 및 이력서 작성 ····· 145
나. 사법자문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 ····· 146
다. 연방 정부의 임명 ····· 146
3. 주 하급법원(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지방법원) 법관의 임용절차 ····· 147
가. 임용절차 일반 ····· 147
나. 지원서 기재사항 ····· 148
다. 의견조회 ····· 148
라. 면접 ····· 148
마. 주 정부의 임명 ····· 149
바. 법관 임용지원과 관련된 소속 기관에서의 불이익 ····· 149
Ⅳ. 호주 ····· 149
1. 개관 ····· 149
2. 빅토리아 주의 법관 임용절차 ····· 150
가. 임용절차 일반 ····· 150
나. 지원의향서 기재사항 ····· 151
다. 지원 시부터 합격자 발표 시까지의 소요 기간 ····· 151
라. 법관직 지원자의 부담 경감 방안 ····· 151
마. 의견조회 ····· 152
3.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법관 임용절차 ····· 152
가. 공고 ····· 152
나. 지원의향서 ····· 152
다. 적격자 분류 및 면접 ····· 152
라. 제청 ····· 153
Ⅴ. 독일 ····· 153
1. 법관 임용의 기본 원칙 ····· 153
2. 각 주의 법관 임용제도에 관한 실무상 검토 ····· 154
가. 개관 ····· 154
나. 바이에른 주 ····· 155
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 158
라.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주 ····· 161
마. 그 밖의 주 ····· 163
3. 소결 ····· 169

Ⅵ. 일본 ····· 170
1. 재판관 지명 자문위원회 ····· 170
2. 변호사 임관제도의 도입 ····· 171
3. 변호사 임관절차 ····· 172
가. 개관 ····· 172
나. 변호사 임관 추천위원회 ····· 173
다. 최고재판소 면접 ····· 175
라. 자문위원회의 심사 ····· 175
마.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 및 임관내정 통지 ····· 176
4. 소결 ····· 177
Ⅶ. 검토 ····· 177
1. 각국의 유능성 지표 평가 방식 ····· 177
가.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성적 ····· 177
나. 소송기록형 필기시험 ····· 178
다. 실무능력평가 면접 ····· 178
라. 의견조회 ····· 179
마. 유능성 지표 평가의 담당 주체 ····· 180
2. 각국의 정성적 지표 평가 방식 ····· 180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법관 임용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181
Ⅰ. 서설 ····· 181
Ⅱ. 유능성 지표 평가제도 관련 검토 및 개선방안 ····· 182
1.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 성적 ····· 182
가. 반영 비율의 축소 ····· 182
나. 반영 단계의 제한 ····· 183
2. 법률서면 작성평가 ····· 183
3. 실무능력평가 면접 ····· 184
가. 문제의 내용 및 난이도 조정 ····· 184
나. 전문분야 실무능력평가의 도입 및 부담의 경감 ····· 185
4. 의견조회 ····· 185
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 ····· 185
나. 일선 법원의 재판부를 통한 의견조회의 활성화 ····· 186
다. 의견조회 범위의 확대 ····· 186
5. 유능성 지표 평가의 담당 주체 ····· 187
Ⅲ. 정성적 지표 평가제도 관련 검토 및 개선방안 ····· 188

제5장 법관 임용지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실증적 분석 ····· 189

제1절 개관 ····· 191
제2절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94
Ⅰ. 개관 ····· 194

Ⅱ. 2018년 임용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 194
1. 법관 임용지원 시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 ····· 194
가. 설문조사 결과 ····· 194
나. 지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 소속 기관에서 받게 될 불이익 관련 검토 195
다. 실무능력평가 준비의 부담 관련 검토 ····· 195
라. 임용절차의 장기화 관련 검토 ····· 195
마. 기타 설문 답변내용 관련 검토 ····· 196
2. 법관 임용지원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 ····· 196
가. 설문조사 결과 ····· 196
나. 임용일정의 신속하고 명확한 고지 관련 검토 ····· 197
다. 지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준비서면의 분량 증대 관련 검토 ····· 197
라. 기타 설문 답변내용 관련 검토 ····· 197
3. 법조일원화 시대에 훌륭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방안 ····· 198
가. 설문조사 결과 ····· 198
나. 임용방식의 개선 관련 검토 ····· 198
다. 적극적인 홍보 관련 검토 ····· 199
라. 법관 처우의 개선 등 관련 검토 ····· 199
4. 소결 ····· 200
제3절 법관 임용지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201
Ⅰ. 분석 모델과 방법론 ····· 201
1. 자료의 수집 ····· 201
2. 종속변인 ····· 203
3. 설명변인 ····· 204
4. 통제변인 ····· 206
Ⅱ. 연구결과 ····· 206
1.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8
가.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 업무에 대한 기대 ····· 208
나. 전문법률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활용 가능성 ····· 208
다. 복지에 대한 기대(정년, 연금) ····· 209
2.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9
가. 법조경력 기간 ····· 209
나. 복지에 대한 기대(육아) ····· 209
다. 지방근무 부담 및 소득감소 ····· 211
라. 즉시임용 법관 대비 불이익한 대우에 관한 우려 ····· 211
3. 원로판사 제도 도입 관련 검토 ····· 212
Ⅲ. 소결 ····· 213

제6장 결론 ····· 217

109.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thod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xecution

-Focusing on the System of Investigation of Debtor's Property and the System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연구총서 2020-10

연구책임자 : 김경오(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안문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0년 7월 2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검토 ····· 7

제1절 제도의 현황 ····· 9
Ⅰ. 개설 ····· 9
Ⅱ. 재산명시제도의 개관 ····· 11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 및 기능 ····· 11
2. 재산명시명령 ····· 12
가. 재산명시명령의 의의 ····· 12
나.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 12
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 15
라. 재산명시절차의 관할과 재판 ····· 15
3.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 16
4.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16
5. 재산명시절차의 실시 ····· 17
가.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 17
나. 재산목록의 제출 ····· 17
다. 기일의 진행 및 선서 ····· 18
라. 명시기일의 연기 ····· 18
6.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 19
7.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 19
8. 재산명시절차의 정지 및 취소 ····· 19
9. 채무자에 대한 감치 및 벌칙 ····· 20
가. 감치제도의 의의 ····· 20
나. 감치의 요건 ····· 21
다. 감치재판의 절차 ····· 21
10.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23
Ⅲ.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개관 ····· 24
1.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의의 및 기능 ····· 24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의 성격 ····· 25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요건 ····· 25
가. 집행권원이 생긴 후 6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26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때 ····· 26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판 ····· 26
5.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및 열람 ····· 27
6.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 28
Ⅳ. 재산조회제도의 개관 ····· 29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및 기능 ····· 29
2. 재산조회 신청 요건 ····· 31
3. 재산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 31
4. 재산조회 절차 ····· 32
제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 33
Ⅰ. 재산명시제도의 문제점 ····· 33
1.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 33
2. 재산명시 대상의 시적 범위 ····· 34

3. 재산명시에서 소극재산의 신고 ····· 35
4. 감치제도의 실효성 ····· 36
Ⅱ.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문제점 ····· 37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 ····· 37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 38
Ⅲ.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 ····· 39
1. 재산명시절차 전치주의 ····· 39
2. 금융재산의 개별조회 ····· 40

제3장 주요 각국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 ····· 41

제1절 일본 ····· 43
Ⅰ. 개설 ····· 43
Ⅱ. 일본의 재산개시제도의 개관 ····· 44
1. 서설 ····· 44
2. 집행당사자 및 신청 요건 ····· 44
가. 일반적인 요건 ····· 44
나.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45
3. 재산개시집행 절차 ····· 46
가. 재산개시절차의 신청 ····· 46
나. 재산개시절차의 실시 결정 ····· 46
다. 재산개시기일의 지정 및 재산목록의 제출 ····· 47
라. 재산개시기일의 실시 ····· 47
마. 재산개시절차에 불응하는 개시의무자에 대한 제재 ····· 48
바. 열람 및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 ····· 49
사. 개시절차의 종료 및 취소 ····· 50
Ⅲ.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최근의 제도 개선 상황 ····· 51
1.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 ····· 51
가. 재산개시의무자의 출석확보에 대한 문제 ····· 51
나. 재산개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제한 문제 ····· 51
다. 재산목록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정보취득절차의 미비 ·· 51
2. 2019년도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52
가. 민사집행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 ····· 52
나. 재산개시절차의 신청권자에 대한 범위 확대 ····· 52
다. 재산개시절차에서의 제재 강화 ····· 53
3.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재산정보 취득제도 신설 ····· 53
가. 개요 ····· 53
나. 채무자의 부동산정보 취득(등기소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 54
다. 채무자의 급여채권정보 취득(공적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 55
라.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의 정보 취득(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 56
4. 정보제공 명령을 받은 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 57

가. 등기소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 57
나. 후생연금사무 취급기관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 57
다. 금융기관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 58
5. 정보제공 방법 ····· 58
제2절 미국 ····· 59
Ⅰ. 개설 ····· 59
Ⅱ. 집행보조절차(심문절차, Examination Proceedings) ····· 62
1. 개요 ····· 62
2.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심문절차의 신청 ····· 63
3.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심문절차의 신청 ····· 64
4. 심문실시명령의 발령 ····· 64
5. 심문절차의 실시 ····· 65
6. 강제수단 ····· 65
Ⅲ.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 ····· 67
1. 개요 ····· 67
가. 판결 후 개시절차의 의의 ····· 67
나. 판결 후 개시절차의 목적과 본안에서의 증거개시절차와의 차이점 ····· 68
2. 판결 후 개시절차가 인정되는 범위 ····· 68
가. 판결 후 개시가 허용되는 범위 ····· 68
나. 판결 후 개시가 허용되는 범위의 제한 ····· 69
3. 캘리포니아주의 구체적인 절차 ····· 70
가. 서면심문(written interrogatories) ····· 70
나. 문서열람 요구(inspection demand) ····· 71
다. 강제수단 ····· 71
Ⅳ. 간접적 강제수단 ····· 72
1. 간접적 강제수단의 개요 ····· 72
2. 판결선취특권(Judgment Lien)제도 ····· 72
가. 의의 및 발생요건 ····· 72
나. 효력 ····· 73
다. 유효기간 ····· 74
라. 부동산에 대한 판결선취특권(Judgment Lien) ····· 74
마. 동산에 대한 판결선취특권(Judgment Lien) ····· 75
3. 집행보조인(Keeper Levy)제도 ····· 76
제3절 독일 ····· 77
Ⅰ. 개설 ····· 77
Ⅱ. 재산명시제도 ····· 78
1. 개요 ····· 78
2. 재산명시제도의 내용 ····· 79
가.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신고의무) ····· 79
나. 재산 및 그 처분행위를 신고할 의무 ····· 79

다.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집행권원 ····· 80
라. 재산명시의 방법 및 절차 ····· 81
3. 재산명시의무의 이행 확보 수단 ····· 83
가. 강제구금 절차 ····· 83
나. 형벌 ····· 84
4. 재산명시제도의 기능 ····· 84
Ⅲ. 집행관에 의한 채무자 정보취득제도 ····· 84
1. 서설 ····· 84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관한 정보취득제도 ····· 86
가. 주민등록청을 통한 채무자의 주소 및 거소 조사 ····· 86
나.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채무자 주소 등의 조사 ····· 86
다. 다른 채권자를 위한 정보 이용 ····· 87
3. 공공기관을 통한 집행관의 정보취득제도 ····· 87
가. 인정 요건 ····· 87
나.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기관 ····· 88
다.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및 통지 ····· 90
라. 다른 채권자를 위한 정보 전달 ····· 91
Ⅳ. 채무자목록제도 ····· 91
1. 제도의 목적 ····· 91
2. 채무자목록 등록 명령 ····· 92
가. 등록을 명할 수 있는 사유 ····· 92
나. 등록명령 시 이유 기재 및 송달 ····· 92
다. 등록명령의 집행과 이의신청 ····· 93
3. 채무자목록의 내용 및 작성·관리 ····· 93
4. 채무자목록의 말소 및 정정 ····· 93
가. 통상적인 말소와 조기 말소 ····· 93
나. 채무자목록의 정정 ····· 94
5. 채무자목록의 열람 및 사본 제공 ····· 94
가. 채무자목록의 열람목적 및 제한 ····· 94
나. 채무자목록의 사본 제공 ····· 95
6. 중앙집행법원의 역할 ····· 95
제4절 프랑스 ····· 96
Ⅰ. 개설 ····· 96
Ⅱ. 프랑스의 집행관(huissier de justice)의 지위와 역할 ····· 96
1. 서설 ····· 96
2. 임용 요건 ····· 97
3. 주요 업무 및 성격 ····· 98
4.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역할 ····· 99
5. 변화되는 집행관제도 ····· 100
가. 명칭의 변화 ····· 100

나. 제도 시행 전 변경 단계 ····· 100
다. 법무관(Commissaire de justice)의 지위 및 임무 ····· 101
Ⅲ.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도 ····· 102
1. 개관 ····· 102
2. 재산조회 대상 ····· 102
3. 취득정보의 보호 ····· 103
Ⅳ. 아스트렝트(Astreinte)제도 ····· 103
1. 개관 ····· 103
2. 아스트렝트의 구체적인 내용 ····· 104
가. 일반적 적용 영역 ····· 104
나. 민사집행절차에서 아스트렝트 ····· 105
다. 아스트렝트의 선고와 청산 ····· 105
라. 아스트렝트의 효력 ····· 106
제5절 중국 ····· 107
Ⅰ. 개설 ····· 107
Ⅱ.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 ····· 107
1. 중국 민사집행법의 특성 ····· 107
가. 민사집행권의 법적성질 ····· 107
나. 국가간예주의(國家干預主義)적 요소의 상존(尙存) ····· 108
다. 설득과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이행촉구 ····· 108
2. 집행난(執行難)의 문제 ····· 109
Ⅲ. 중국의 집행채무자의 집행재산 조사제도 ····· 110
1. 재산보고제도 ····· 110
가. 재산보고의 내용 ····· 110
나. 재산보고의 거부자나 허위보고자에 대한 제재 ····· 111
2. 제3자 조회제도 ····· 112
가. 종전의 조회방법 ····· 112
나. 온라인 재산조사·보전 시스템의 구축 ····· 113
Ⅳ.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제도 ····· 113
1. 신용징계제도 ····· 113
2. 회계감사제도 ····· 114
3. 비금전적 간접강제제도 ····· 115
가. 출국금지명령 ····· 115
나. 고액소비 제한명령 ····· 116

제4장 각국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117

제1절 각국 제도에 대한 시사점 ····· 119
Ⅰ. 개설 ····· 119
Ⅱ. 재산탐지절차 ····· 119
1. 일본 ····· 119

2. 미국 ····· 120
3. 독일 ····· 122
4. 프랑스 ····· 123
5. 중국 ····· 124
Ⅲ. 재산탐지절차의 불응 시의 제재 ····· 125
1. 일본 ····· 125
2. 미국 ····· 126
3. 독일 ····· 127
4. 중국 ····· 128
Ⅳ. 채무불이행자명부 공개 방법 ····· 128
Ⅴ. 간접적 강제수단 ····· 129
1. 서설 ····· 129
2. 미국 ····· 130
3. 독일 ····· 131
4. 프랑스 ····· 131
5. 중국 ····· 132
Ⅵ. 소결 ····· 133
제2절 우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133
Ⅰ. 개설 ····· 133
Ⅱ.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 ····· 134
1.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확대 ····· 134
2. 재산명시 대상 재산의 시적 범위 연장 ····· 135
3. 소극재산의 신고 ····· 136
4. 감치제도의 개선 ····· 137
Ⅲ.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개선방안 ····· 138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온라인 통합 관리 ····· 138
2. 열람·복사의 편리성 제고 ····· 139
Ⅳ. 재산조회제도의 개선방안 ····· 140
1. 근무처(사업장) 조회제도 신설 ····· 140
2. 금융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시 재산명시절차 전치주의 폐지 ····· 141
3. 금융재산의 통합조회절차 도입 ····· 142

제5장 결론 ····· 143

110.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연구총서 2020-11

연구책임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9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 6

제2장 국제상사법원 일반론 ····· 7

Ⅰ. 국제상사법원의 등장 원인 ····· 9
1. 중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국제상사법원 ····· 9
2. 'Forum Shopping'이 아닌 'Forum Selling' ····· 10
Ⅱ. 국제상사법원의 특징 ····· 11
1. 외국 당사자가 관여된 국제적 분쟁의 취급 ····· 11
2.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 ····· 11
3.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 ····· 12
4. 외국 소송대리인의 변론 인정 ····· 13
5. 절차 진행에서의 영어 사용 ····· 13
6. 판결의 공개 ····· 14

7. 유연한 불복절차의 구성 ····· 14
8. 중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절차비용 ····· 15
9. 기술적 요소의 적극적 도입 ····· 16
10. 그 외의 특징 ····· 17
Ⅲ. 국제상사법원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8
1. 법원 간의 지나친 경쟁 우려 ····· 18
2.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 간과 ····· 18
3. 이원화된 사법절차 구성 ····· 19

제3장 각국의 국제상사법원 ····· 21

제1절 영국 상사법원 ····· 23
Ⅰ. 들어가며 ····· 23
Ⅱ. 법원조직 ····· 24
Ⅲ. 절차 ····· 25
1. 관할 ····· 25
2. 소장 및 답변서의 교환 ····· 26
3. 사건관리 ····· 27
4. 증거개시 및 증거공개절차(disclosure) ····· 29
5. 변론절차 ····· 31
6. 판결의 선고·강제집행절차 ····· 35
7.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의 활용 ····· 36
Ⅳ. 현황 ····· 37
Ⅴ. 시사점 ····· 38
제2절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 40
Ⅰ. 서론 ····· 40
Ⅱ.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및 지위 ····· 40
Ⅲ.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절차 ····· 42
1. 관할 ····· 42
2. 재판부의 구성 ····· 46
3. 외국 변호사의 소송대리 ····· 47
4. 소제기 및 그 이후의 절차 ····· 48
5. 절차의 비공개 ····· 53
6. 변론절차 ····· 54
7. 판결 ····· 56
8. 불복절차 ····· 56
9. 소송비용 ····· 57
10. 강제집행 ····· 58
11. 국제상사법원의 중재에 관한 역할 ····· 60
Ⅳ.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주요 판결 ····· 60
1. BCBC Singapore Pte Ltd v PT Bayan Resources TBK 사건 ····· 60

2. Telemedia Pacific Group Ltd v
Yuanta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Ltd & Anor 사건 ····· 61
3. CPIT Investments Limited v Qilin World Capital Ltd 사건 ····· 62
4. BNP Paribas SA v Jacob Agam & Anor 사건 ····· 63
5. Arris Solutions, Inc and Ors v
Asian Broadcasting Network (M) Sdn Bhd 사건 ····· 64
6. Teras Offshore Pte Ltd v
Teras Cargo Transport (America) LLC 사건 ····· 64
7. Macquarie Bank Limited v Graceland Industry Pte Ltd 사건 ····· 65
8. AKRO Group DMCC v Discovery Drilling Pte Ltd 사건 ····· 66
9. B2C2 Ltd v Quoine Pte Ltd 사건 ····· 67
10. SK Lateral Rubber & Plastic Technologies (Suzhou) Co. Ltd v
Lateral Solutions Pte Ltd 사건 ····· 69
Ⅴ. 시사점 ····· 70
제3절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DIFC Courts) ····· 71
Ⅰ. 설립 경과 ····· 71
Ⅱ. 법원의 구성 ····· 72
Ⅲ. 절차 ····· 73
1. 인적구성 ····· 73
2. 관할 ····· 74
3. 절차 및 대리 ····· 75
4. 외국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76
5. 프로보노(Pro Bono) 프로그램 운영 ····· 77
Ⅳ. 첨단기술의 활용 ····· 78
1. 전자소송 ····· 78
2. 블록체인 법원 ····· 78
Ⅴ. 강제집행 ····· 80
1. DIFC가 아닌 두바이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 80
2. 두바이 외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에서 집행하는 경우 ····· 82
3.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외의 외국에서 집행하는 경우 ····· 83
Ⅵ. 법 교육기관(DIFC Academy of Law) ····· 85
Ⅶ. 현황 및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의 주요 판결 ····· 85
1. 현황 ····· 85
2. 주요 판결 ····· 87
Ⅷ. 시사점 ····· 88
제4절 카타르 금융센터법원 ····· 89
Ⅰ. 들어가며 ····· 89
Ⅱ. 카타르 금융센터법원의 설립경과 ····· 90
Ⅲ. 카타르 금융센터법원의 절차 ····· 91
1. 법원의 성격 및 구조 ····· 91

2. 관할 ····· 91
3. 재판부의 구성 ····· 92
4. 외국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93
5. 법정에서의 영어 사용 ····· 94
6. 준거법 ····· 94
7. 소장 및 답변서 제출 ····· 95
8. 법원의 사건관리 ····· 96
9. 증거개시 ····· 97
10. 변론전 절차와 변론절차 ····· 97
11.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 98
12. 불복절차 ····· 98
13. 소송비용 ····· 99
14. 전자소송 ····· 99
Ⅳ. 카타르 금융센터법원의 통계 ····· 100
1. 연도별 사건 수 ····· 101
2. 당사자의 분포 ····· 102
3. 인용된 선례의 분포 ····· 102
4. 분야별 사건 분포 ····· 103
제5절 아부다비 금융자유구역법원(ADGM Courts) ····· 104
Ⅰ. 설립 경과 ····· 104
Ⅱ. 법원의 구성 ····· 105
Ⅲ. 절차 ····· 106
1. 특징 ····· 106
2. 관할 ····· 107
3. 외국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108
4. 소장 및 답변서 제출 ····· 108
5. 법원의 사건관리 ····· 110
6. 증거개시절차 ····· 111
7. 소송비용 ····· 112
8. 불복절차 ····· 116
9. 강제집행 ····· 117
Ⅳ. 전자소송 ····· 118
Ⅴ. 현황 ····· 119
제6절 중국 국제상사법원 ····· 120
Ⅰ. 들어가며 ····· 120
Ⅱ. 중국 국제상사법원의 설립경과 ····· 121
Ⅲ. 중국 국제상사법원의 절차 ····· 122
1. 관할 ····· 122
2. 국제상사법원의 심급구조 ····· 125
3. 재판부의 구성 ····· 125

4. 외국 소송대리인에 의한 변론 ····· 127
5.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 127
6. 영어를 활용한 소송진행 ····· 128
7. 송달 ····· 129
8. 사건관리 ····· 129
9. 증거조사 ····· 130
10. 전자소송 ····· 130
11. 판결의 강제집행 ····· 130
Ⅳ. 중국 국제상사법원에 대한 평가·한계 ····· 131
1. 국제적 요소의 부족 ····· 131
2. 불복절차의 미비 ····· 132
3. 공문서에 대한 인증절차 미비 ····· 132
4. 국제상사법원의 관할과 관련한 문제 ····· 132
5. 중국 사법부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 ····· 133
Ⅴ. 중국 국제상사법원의 현황 ····· 133
제7절 네덜란드 상사법원(NCC) ····· 134
Ⅰ. 설립 배경 및 경과 ····· 135
Ⅱ. 조직 ····· 137
Ⅲ. 법관 및 직원 ····· 138
Ⅳ. 관할 ····· 139
1. 1심법원의 관할 ····· 139
2. 항소법원의 관할 ····· 141
3. 약식재판법원의 관할 ····· 142
4. 관할에 대한 이의 ····· 142
Ⅴ. 언어 ····· 142
1. 영어사용의 원칙 ····· 142
2. 번역 및 통역 활용 ····· 143
3. 소송언어 변경의 경우 ····· 143
Ⅵ. 네덜란드 상사법원의 소송절차 ····· 144
1. 절차의 기본원칙 ····· 144
2. 소송대리 ····· 145
3. 절차의 개시 ····· 145
4.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답변 ····· 146
5. 심문기일 ····· 146
6. 증거규칙 ····· 147
7. 판결 ····· 149
8. 소송비용 ····· 149
Ⅶ. 전자소송 ····· 150
Ⅷ. 네덜란드 상사법원의 사건 및 판결 ····· 152
1. Elavon Financial Services DAC vs

IPS Holding B.V. and others 사건 ····· 153
2. Symphony Solutions B.V. vs OpenBet Limited et al 사건 ····· 153
3. Subsea Survey Solutions LLC vs
South Stream Transport B.V. 사건 ····· 154
4. McCourt Global Sports & Media LLC vs
Tennor Holding B.V. 사건 ····· 154
5. GLAS Trust Corporation Limited vs
IHC Merwede Holding B.V. and others 사건 ····· 155
Ⅸ. 특징 및 평가 ····· 155
1. 특징 ····· 155
2. 긍정적 평가 ····· 156
3. 부정적 평가 ····· 156
제8절 프랑스 국제상사법원 ····· 157
Ⅰ. 들어가며 ····· 157
Ⅱ. 절차 ····· 158
1. 법원의 구성 ····· 158
2. 관할 ····· 158
3. 사용언어 ····· 159
4. 변론전 절차 ····· 160
5. 증거조사 ····· 161
6. 비용 ····· 162
Ⅲ. 평가 ····· 162
Ⅳ. 현황 ····· 163
제9절 상사법원에 관한 상설 국제포럼(SIFoCC) ····· 164
Ⅰ. SIFoCC의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 164
Ⅱ. SIFoCC의 활동 및 현황 ····· 165
1. SIFoCC 창립총회 ····· 165
2. 제2회 총회 ····· 166
3. 강제집행에 관한 다자간 메모랜덤 발간 ····· 167
4. 제3차 총회 ····· 167
5. SIFoCC 회원국 현황 ····· 167
제10절 소결 ····· 170
Ⅰ. 근거규범에 따른 분류 ····· 170
Ⅱ. 법원의 관할에 따른 분류 ····· 170
Ⅲ. 법원의 국제화 요소에 따른 분류 ····· 171
1. 재판부 구성에 따른 분류 ····· 171
2. 외국 변호사의 변론 허용 여부 ····· 173
3. 영어 사용 여부 ····· 174
Ⅳ. 불복절차의 존재 및 구성 ····· 175
Ⅴ. 전자소송 활용 여부 ····· 176

제4장 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대한 논의 ····· 179

제1절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 181
Ⅰ. 소송분야에 관한 국가주권 방어·확대 ····· 181
1. 초국가적 사법교류의 확대 ····· 181
2. 국제상사법원과 초국가적 사법교류 ····· 181
3.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 182
Ⅱ. 국내 변호사 역할 제고 ····· 184
Ⅲ. 경제성장 유발효과 ····· 184
Ⅳ. 중소기업의 분쟁해결에 대한 대안 제공 ····· 186
1. 문제점 ····· 186
2.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187
3. 중재의 대안으로 국제상사법원 설립 필요성 ····· 190
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가지는 경쟁력 제고 ····· 192

제2절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 ····· 195
Ⅰ. 논의의 전제 – 분쟁당사자가 선호하는 법원이 되기 위한 요건 ····· 195
1. 유럽연합 내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 195
2.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SIDRA 조사연구 ····· 198
Ⅱ. 구체적 고려요소 ····· 203
1.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 ····· 203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마련 ····· 206
3. 설립근거 마련 ····· 211
4. 재판부 구성의 전문화·다양화 ····· 213
5. 유연한 절차구성 ····· 222
6. 외국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226
7. 영어를 사용한 절차 진행 ····· 230
8. 전자소송 및 영상변론 등 도입 ····· 236
9. 불복절차 구성 ····· 239
10. 강제집행 ····· 242
Ⅲ. 중재와의 관계 설정 ····· 245
1. 문제의 제기 ····· 245
2. 대안 ····· 245
Ⅳ. SIFoCC 가입 ····· 247
1. SIFoCC 가입 시의 장점 ····· 247
2. SIFoCC 가입 필요성 ····· 248
3. SIFoCC 가입 신중론에 대한 반론 ····· 249

제5장 결론 ····· 251

111.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erman Judiciary Act (Deutsches Richtergesetz) -Focusing on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Vocational Judges

연구총서 2020-12

연구책임자 :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11월 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Ⅰ. 연구의 내용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독일 법관법에 관한 선행적 고찰 ····· 7

제1절 독일 법관법의 제정동기와 제정과정 ····· 9

제2절 독일 법관법의 주요 구조와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 12

제3절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업법관의 유형과 법관직 자격의 취득 ····· 17

Ⅰ. 직업법관의 유형 ····· 17

Ⅱ.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통한 법관직 자격의 취득 ····· 18

1. 일반론 ····· 18

2. 법학교육 ····· 20
3. 사법시험 ····· 21
제4절 소결 ····· 24

제3장 직업법관의 복무관계 ····· 25

제1절 직업법관 임용자격과 선발기준 ····· 27
Ⅰ. 임용자격 ····· 27
Ⅱ. 선발기준 ····· 29
제2절 직업법관의 임명 ····· 30
Ⅰ. 정년직 법관 ····· 30
1. 일반론 ····· 30
2. 정년직 법관의 임명절차에서의 법관선발위원회의 관여 ····· 31
Ⅱ. 임기제 법관 ····· 35
Ⅲ. 수습법관과 수임법관 ····· 37
Ⅳ. 법관의 대량퇴직과 법관지원자의 감소 문제 ····· 38
제3절 직업법관 임명의 무효와 취소 ····· 41
제4절 직업법관의 복무내용의 변동 ····· 43
Ⅰ. 전보와 해직 ····· 43
Ⅱ. 법관의 파견 ····· 47
Ⅲ. 단축근무와 휴직 ····· 47
제5절 직업법관의 복무관계의 종료 ····· 52
Ⅰ. 직업법관의 면직 ····· 52
1. 직업법관의 공통적 면직사유 ····· 52
2. 수습법관과 수임법관에 고유한 면직사유 ····· 54
Ⅱ. 판결에 의한 복무관계의 종료 ····· 56
Ⅲ. 직무 무능력으로 인한 퇴직 ····· 56
Ⅳ. 징계와 탄핵에 의한 파면 ····· 58
제6절 소결 ····· 60

제4장 법관의 독립과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 ····· 63

제1절 법관의 독립 ····· 65
Ⅰ. 일반론 ····· 65
Ⅱ. 법관의 물적 독립 ····· 67
Ⅲ. 법관의 인적 독립 ····· 69
Ⅳ. 법관의 내적 독립 ····· 70
Ⅴ. 사법신뢰의 바탕인 법관의 독립성 ····· 71
Ⅵ. 소결 ····· 75
제2절 법관의 독립과 직무감독 ····· 76

Ⅰ. 일반론 ····· 76
Ⅱ. 직무감독권자와 직무감독의 내용과 범위 ····· 78
1. 직무감독권자 ····· 78
2. 직무감독의 수단과 한계 ····· 79
가. 직무감독수단인 질책과 훈계 ····· 79
나. 직무감독의 한계로서 법관활동의 핵심영역 ····· 80
3. 직무감독과 관련한 개별 사례들 ····· 81
가. 재판절차 ····· 81
나. 화해 ····· 83
다. 사건처리방식과 근무형태 ····· 83
라. 사법행정 ····· 84
마. 사무분담 ····· 86
바.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와 법관협의회 ····· 86
사. 법관단체 결성과 활동 ····· 87
Ⅲ. 직무감독 처분과 직무법원 ····· 87
1. 직무법원에 관한 일반론 ····· 87
가. 직무법원의 설치와 구성 ····· 87
나. 직무법원의 관할과 역할 ····· 89
2. 직무감독 처분에 대한 법관의 제소 ····· 91
가. 제소대상인 직무감독 처분 ····· 91
나.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관한 주장 ····· 92
다. 직무법원과 행정법원과의 관계 및 직무법원의 심사 ····· 92
Ⅳ. 소결 ····· 93
제3절 법관의 독립과 근무평정 및 외부평가 ····· 94
Ⅰ. 사법부에서의 법관 근무평정 ····· 94
1. 일반론 ····· 94
가. 법관 근무평정의 필요성과 종류 ····· 94
나. 평정기준과 평정절차 ····· 96
2. 법관 근무평정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 ····· 101
Ⅱ. 외부에 의한 법관평가 ····· 104
Ⅲ. 소결 ····· 108

제5장 독일 법관법에서의 법관의 의무와 징계 ····· 111

제1절 법관의 의무 ····· 113
Ⅰ. 일반론 ····· 113
Ⅱ. 독일 법관법에서의 의무의 유형 ····· 114
1. 법관의 선서의무 ····· 114
2. 독립성 유지의무 ····· 115
가. 일반론 ····· 115
나. 절제명령에 관한 일반적 논의 ····· 115

다. 절제명령의 적용범위 ····· 116
라. 법관의 정치적 활동 ····· 118
3. 표결과 평의의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 120
4. 겸직금지의무 ····· 122
가. 일반론 ····· 122
나. 중재법관 및 중재인으로서의 활동금지 ····· 123
다. 직무 외의 법적 감정과 유료 법률상담의 금지 ····· 124
라. 연방공무원법상 겸직활동의 허가 ····· 125
마. 연방법관의 겸직활동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겸직활동 수입현황 ····· 126
바. 독일 연방법관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 외 소득 현황 ···· 128
제2절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로서의 법관징계 ····· 130
Ⅰ. 징계사유와 징계유형 ····· 130
Ⅱ. 징계양정과 징계시효 ····· 132
Ⅲ.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 ····· 133
1. 이중적 징계절차 ····· 133
2. 행정적 징계절차 ····· 134
3. 사법적 징계절차 ····· 135
제3절 소결 ····· 137

제6장 법관대표기구를 통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 139

제1절 일반론 ····· 141
제2절 법관협의회 ····· 144
Ⅰ. 연방법관협의회 ····· 144
1. 연방법관협의회의 참여권 ····· 144
가. 참여의 기본원리로서의 협력관계 ····· 144
나. 참여대상과 그 형태 ····· 145
2. 연방법관협의회의 구성 ····· 147
Ⅱ. 주법관협의회 ····· 147
1. 주법관협의회의 참여권 ····· 147
2. 주법관협의회의 구성 ····· 151
제3절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 ····· 152
Ⅰ. 연방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 ····· 153
1. 연방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참여권 ····· 153
2. 연방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 ····· 155
Ⅱ. 주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 ····· 155
1. 주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참여권 ····· 155
2. 주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 ····· 157
제4절 법원운영위원회 ····· 158
Ⅰ. 법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일반론 ····· 158

Ⅱ. 법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사례와 구성 ····· 159
Ⅲ. 법관의 의견표명권과 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 ····· 162
제5절 독일 법관연합 ····· 163
Ⅰ. 독일 법관연합의 현황 ····· 163
Ⅱ. 독일 법관연합의 활동 ····· 164
1. 대외적 활동 ····· 164
2. 대내적 활동 ····· 166
Ⅲ. 독일 법관연합의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 167
1. 법관 신분에 관한 사항 ····· 168
가. 독립적인 법관 신분의 보장과 확대 ····· 168
나. 법관법에 의한 법적 지위의 전적인 규율 ····· 168
다. 법관직의 원칙적인 동등성은 법관의 독립성에 적합 ····· 169
라. 공석인 모든 법관직의 공고와 조속한 충원 ····· 169
마. 법관 임용 시 법관대표기구와 법관의 참여 ····· 169
바. 법관 독립을 위한 제한된 직무감독 ····· 169
사. 법관에 대한 원칙적인 직무감독권자는 법원장 ····· 170
아. 징계법원에 의한 법관징계 처분과 징계절차에서의 관련 법관의 동의 … 170
자. 법관 근무평정의 법관 독립성 불가침 ····· 170
차. 직무감독권자에 의한 법관 근무평정 ····· 170
2. 법관의 참여권 ····· 171
가.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법관지원자의 모든 서류제출 ····· 171
나.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와 주 장관의 갈등에 대한 대응 ····· 171
다. 법관협의회의 관할 확대 ····· 171
3. 법관의 재교육 ····· 171
가. 법관 재교육의 진흥 ····· 171
나. 법관아카데미의 확대와 법관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재편성 ····· 172
다. 법관아카데미 프로그램편성 위원회에서의 법관참여의 강화 ····· 172
4. 복무조건 ····· 172
가. 과도한 업무부담의 축소 ····· 172
나. 법관의 직위에 적합한 복무조건 ····· 172
다. 법관의 사법정책 참여활동 기회의 확대 ····· 173
제6절 소결 ····· 173

제7장 나가며 ····· 175

112.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연구총서 현안보고서 2020-01

연구책임자 : 정성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11월 6일 발행

I. 서론 ····· 1

1. 현안 검토의 배경 및 목적 ····· 1
가. 현안 검토의 배경 ····· 1
나. 현안 검토의 목적 ····· 1

2. 보고서의 개요 ····· 2
가. 보고서의 용어 및 내용 ····· 2
1) 용어 ····· 2
2) 내용 ····· 3
나. 보고서 작성과 자문 ····· 3

II. 민사조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 5

1. 조정사건의 종류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 ····· 5
가. 조정사건의 종류 ····· 5
나.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 ····· 6
다. 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인정과의 차이 ····· 7
1) 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인정 ····· 7
2) 조정절차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 8

2.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 ····· 8

가. 사실관계 확인 방법 ····· 8
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 8
1) 사실조사와 증거조사의 의의 ····· 8
2)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준별 ····· 9
3) 문제점: 조정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11

3. 구 민사조정법상의 증거조사와 이에 대한 비판 ····· 11
가. 구 민사조정법 등의 관련 규정 ····· 11
1) 구 민사조정법 ····· 11
2) 구 민사조정규칙 ····· 13
3) 구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 13
나. 비판 및 구법의 해석 ····· 14
1) 비판 ····· 14
2) 구법의 해석 ····· 15

4. 민사조정법 등의 개정 ····· 17
가. 사실조사 관련 개정 내용 ····· 17
나. 개정 조문 검토 ····· 17
1) 민사조정법 ····· 17
2) 민사조정규칙 및 예규 ····· 18
다. 평가 ····· 19

III. 일본 민사조정에서의 사실인정 ····· 21

1. 사실인정 ····· 21
가. 사실인정에 관한 규정 ····· 21
1) 소송절차 ····· 21
2) 조정절차 ····· 21
나. 사실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 22
1) 소송절차 ····· 22
2) 조정절차 ····· 22
다.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방법 ····· 23
라. 소송절차의 중지 ····· 24

2.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 25
가. 사실조사의 주체 ····· 25
나. 사실조사의 위탁 ····· 26
다. 사실조사의 촉탁 ····· 28
라. 사실조사 ····· 30
1) 사실조사의 의의 ····· 30
2) 서류 조사 ····· 30
3) 진술·의견 청취 ····· 31
4) 전문가 조정위원의 활용 ····· 31

마. 사실조사 결과의 본안에서의 활용 ····· 33

3. 조정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34

가. 의의 ····· 34

나. 요건 ····· 34

다. 활용 ····· 34

IV.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 36

1. 증거조사의 허부 ····· 36

가. 민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36

1) 민사소송법의 준용 ····· 36

2)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38

나.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증거조사의 허부 - 부정 ····· 39

다.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한 증거조사의 허부 - 부정 ····· 39

라. 조정절차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방법: 사실조사 ····· 41

2. 사실조사 방법 ····· 41

가. 사실조사의 범위 및 절차 ····· 41

1) 범위 ····· 41

2) 절차 ····· 42

나. 사실조사의 주체 - 조정기관 ····· 43

다. 사실조사 촉탁 ····· 45

1) 사실조사 촉탁의 허부 ····· 45

2) 사실조사 촉탁의 주체 ····· 46

3) 사실조사 촉탁의 방식 ····· 50

4) 사실조사를 촉탁받을 수 있는 자 ····· 51

라. 가능한 사실조사 방법 ····· 51

1) 주의할 점 ····· 51

2)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51

3) 서류 조사 ····· 52

4)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 및 의견 청취 ····· 52

5)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간이감정) ····· 52

6)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 53

7) 토지·건물의 현장 확인 ····· 53

8) 사실조회 ····· 54

3. 사실조사를 벗어난 방법 및 그 대안 ····· 55

가. 사실조사를 벗어난 방법 ····· 55

1) 강제력 사용, 의무 부과 ····· 55

2) 서류 조사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 56

3) 서류 조사를 위한 문서송부촉탁 ····· 56

4) 법원 밖 서류 조사 ····· 59

5) 감정 ····· 60

6)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64
7)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68
나. 사실조사를 벗어난 방법의 일반적 대안 ····· 69
1)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69
2) 증거보전 신청 ····· 71
다. 당사자·대리인에 대한 안내 등 ····· 72

V. 사실조사 방법 검토 ····· 74

1. 서류 조사 ····· 74
가. 필요성 및 관련 규정 ····· 74
나. 절차 ····· 74
다. 소송절차에서의 이용 ····· 75
라. 기록의 편철 ····· 76
1) 주의할 점 ····· 76
2) 조정회부사건 중 수소법원이 처리하는 경우 ····· 76
3) 조정회부사건 중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 77
4)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 77

2.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 및 의견 청취 ····· 78
가. 필요성 및 관련 규정 ····· 78
나. 절차 ····· 78
1) 진술·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 수렴 ····· 78
2) 출석 ····· 79
3) 조정위원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 ····· 79
4) 진술·의견 청취 ····· 81
5) 조서의 작성 ····· 82
다. 소송절차에서의 이용 ····· 83

3.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간이감정) ····· 85
가. 필요성 및 관련 규정 ····· 85
나. 절차 ····· 87
1) 간이감정에 대한 의견 수렴 ····· 87
2) 조정위원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 ····· 87
3) 법원 외의 장소에서의 조정사무 수행 허가 ····· 88
4) 당사자들의 비용 예납 ····· 92
5) 당사자들의 관련 서류 제출 ····· 92
6)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 92
7) 조정위원의 사실조사보고서 제출 ····· 96
8) 조정위원의 보충 의견 진술 ····· 96
다. 실제 사례 – 건축물의 하자가 문제된 사건 ····· 97

4.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 100

가. 필요성 및 관련 규정 ····· 100
나. 절차 ····· 101
1) 의견 청취 방법 ····· 101
2) 의료 사건의 경우 ····· 102
3) 복수의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필요성 ····· 102

5. 토지·건물의 현장 확인 ····· 103
가. 필요성 및 관련 규정 ····· 103
나. 절차 ····· 103
1) 현장 확인에 대한 의견 수렴 ····· 103
2) 현지조정 제도의 활용 ····· 104
3) 현장 확인 ····· 105
4) 조서의 작성 ····· 106

6. 사실조사 비용과 그 예납 ····· 107
가. 사실조사 비용 ····· 107
1) 비용 지급의 필요성 ····· 107
2) 비용 지급의 근거(관련 규정) ····· 109
3) 비교 ····· 110
4) 검토 - 신설 및 증액 필요 ····· 110
나. 사실조사 비용의 예납 ····· 111

VI. 결론 ····· 113

1. 요약 ····· 113
2. 규정 정비 필요성 ····· 114

113.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UK -Focusing on Coordinating Procedures For Conflicting Interests Regarding Bills

연구총서 2020-13

연구책임자 : 이지민(사법정책연구원 파견연구위원)

2020년 12월 22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영국 법체계의 특징 ····· 3
Ⅰ. 개관 ····· 3
Ⅱ. 코먼로(Common Law)의 형성배경 ····· 3
Ⅲ. 제정법(Act of Parliament)의 역할 증대 ····· 4
제2절 연구의 의의 ·····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제2장 영국 의회 개관 및 법률안의 종류 ····· 9

제1절 영국 의회 개관 ····· 11
Ⅰ. 의원내각제 ····· 11
Ⅱ. 양원제 ····· 11
1. 하원(House of Commons) ····· 11

가. 하원의 구성 ····· 11
나. 하원의원의 임기 ····· 12
2. 상원(House of Lords) ····· 13
가. 상원의 구성 ····· 13
나. 상원의원 임명방식 ····· 14
Ⅲ. 위원회(Committees) ····· 15
1.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s) ····· 16
2. 법률안심사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s) ····· 17
3. 대위원회(Grand Committees) ····· 17
Ⅳ. 회기(Session): 1년 단위의 회기 ····· 18
제2절 법률안의 종류 ····· 19
Ⅰ. 제출주체에 따른 구분 ····· 19
1. 정부제출법률안(Government Bills) ····· 21
2. 의원발의법률안(Private Members' Bills) ····· 21
Ⅱ. 성격·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 22
1. 일반법률안(Public Bills) ····· 22
2. 사적법률안(Private Bills) ····· 23
3. 혼합법률안(Hybrid Bills) ····· 26

제3장 영국의 입법과정 ····· 29

제1절 일반법률안 중 정부제출법률안 입법과정 ····· 31
Ⅰ. 법률안 제출 ····· 31
Ⅱ. 하원의 법률안 심의절차 ····· 33
1. 1독회(상정) ····· 34
2. 2독회(대체토론) ····· 35
3. 위원회 단계(축조심사) ····· 36
가. 법률안심사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 ····· 37
나.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House) ····· 39
다. 위원회 재송부(Re-committal of Bills) ····· 40
4. 보고단계 ····· 40
5. 3독회 ····· 41
6. 상원으로의 이송 및 심의 ····· 41
Ⅲ. 상원의 법률안 심의절차 ····· 43
1. 2독회 ····· 43
2. 위원회 단계 ····· 43
3. 3독회 ····· 44
Ⅳ. 국왕의 승인(Royal Assent) ····· 44
제2절 일반법률안 중 의원발의법률안 입법과정 ····· 45
Ⅰ. 하원의 의원발의법률안 발의 ····· 46

1. 추첨(Ballot Bills) ····· 46
2. 10분제한발언(Ten Minute Rule Bills) ····· 47
3. 사전통보(Presentation Bills) ····· 47
4. 발의방식별 발의건수 및 통과현황 ····· 48
Ⅱ. 상원의 의원발의법률안 발의 ····· 49
Ⅲ. 의원발의법률안의 다른 원으로의 이송 ····· 50
제3절 일반법률안 중 통합법률안(Consolidation Bills) 입법과정 ····· 50

제4절 사적법률안(Private Bills) 입법절차 ····· 52
Ⅰ. 준비단계 및 법률안의 제출 ····· 52
1. 개관 ····· 52
2. 의회대리인(Parliamentary Agent) ····· 53
Ⅱ. 심사관(Examiners)의 검토 ····· 55
Ⅲ. 1독회 및 2독회 ····· 56
Ⅳ. 법률안 반대청원(Petitions against Bills) ····· 57
1. 반대청원을 할 수 있는 자격 ····· 57
2. 반대청원 제출기간 ····· 58
3. 반대청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58
4. 반대청원 제출방법 ····· 58
5. 반대청원 대리인(Petition Representatives) ····· 59
6. 반대청원에 따른 비용 부담 ····· 59
Ⅴ. Court of Referees ····· 60
Ⅵ. 위원회 단계 ····· 61
Ⅶ. 보고 및 3독회 ····· 62
Ⅷ. 상원의 심사 ····· 63
제5절 혼합법률안(Hybrid Bills) 입법절차 ····· 64
Ⅰ. 일반법률안인지 혼합법률안인지에 대한 판단 ····· 64
Ⅱ. 2독회 ····· 66
Ⅲ. 법률안 반대청원(Petitions against Bills) ····· 66
Ⅳ.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a Hybrid Bill) 심사 ····· 67
제6절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 ····· 69
제7절 우리나라 입법과정과의 비교 ····· 70
Ⅰ. 우리나라 입법과정 개관 ····· 70
Ⅱ. 영국과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비교 ····· 73

제4장 영국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사례 및 개선논의 ····· 75

제1절 사적법률안 심사사례: City of London Corporation (Open Spaces) Bill ··· 77
Ⅰ. 법률안의 개요 ····· 77
1. 법률안의 배경 및 주요내용 ····· 77

가.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성격 ····· 77
나. CLC의 공공녹지 관리 배경 및 현황 ····· 78
다. 법률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 ····· 79
2. 심사경과 ····· 80
가. 하원의 심사 ····· 80
나. 상원의 심사 ····· 80
Ⅱ. 반대청원 제출현황 ····· 81
Ⅲ. Court of Referees의 당사자적격(locus standi) 심사 ····· 81
Ⅳ. 하원 Opposed Bill Committee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 82
1. Kennel Club 반대청원의 주요쟁점 ····· 82
가. 안 제12조의 내용 ····· 82
나. 반대청원의 주요쟁점 ····· 84
2. 제1차 회의 논의경과 ····· 84
가. 회의 참석자 및 진행순서 ····· 85
나. 안 제12조에 대한 법률안제출자의 입장 ····· 85
다. 반대청원인측 입장 ····· 86
라.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및 문제제기 ····· 88
마. 안 제12조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결과 ····· 92
3. 제2차 회의 논의경과 ····· 92
제2절 혼합법률안 심사사례: Crossrail Bill ····· 94
Ⅰ. 법률안의 개요 ····· 94
1. 법률안의 주요내용 ····· 94
2. 심사경과 ····· 95
가. 법률안 제출 ····· 95
나. 하원의 심사 ····· 96
다. 상원의 심사 ····· 96
Ⅱ. 반대청원 제출현황 ····· 97
Ⅲ. 하원 Select Committee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 97
1. 하원 Select Committee에서의 의사진행순서 및 준수사항 등 ····· 98
가. 의사진행순서 ····· 98
나. 반대청원인의 준수사항 ····· 98
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 ····· 99
라. 이행사항목록(Register of Undertakings and Assurances) ····· 100
2. 이해관계 조정사례 ····· 100
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floating slab track) ····· 101
나. 지역주민과의 협의채널 마련
(Spitalfields 지역 및 Paddington 지역) ····· 103
다. 반대청원 비용 부담문제 ····· 104
제3절 혼합법률안에 대한 입법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 ····· 107
Ⅰ. 논의배경 ····· 107

Ⅱ. Select Committee on the High Speed Rail
(London-West Midlands) Bill의 개선의견 ····· 110
1. 반대청원의 온라인 제출 허용 및 용어 현대화 ····· 110
2. 당사자적격에 대한 엄격한 접근 필요 ····· 111
3. 혼합법률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의 권한 명료화 ····· 111
Ⅲ. 논의경과 ····· 112
1. 상·하 양원의 공동검토 착수 ····· 112
2. 사적법률안에 대한 의사규칙(Private Business Standing Orders)
개정 (2017년 11월) ····· 114

제5장 시사점 ····· 117

제6장 결론 ····· 121

114.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Research on the Legal Services Insurance

연구총서 2020-14

연구책임자 : 이은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0년 12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국내 법률시장과 법률구조제도 ····· 7

제1절 국내 법률시장과 법률서비스 ····· 9
Ⅰ. 국내 소송 현황과 변호사선임 현황 ····· 9
Ⅱ. 국내 변호사 수와 매출액 현황 ····· 12
Ⅲ. 법률서비스의 의의와 가격 ····· 15
Ⅳ. 법률서비스의 특징과 필요성 ····· 18
1. 법률서비스의 특징 ····· 18
가. 외부효과 ····· 18
나. 사회적 기본권 ····· 19
2. 법률서비스의 필요성 ····· 19
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논의 ····· 19
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 20
Ⅴ. 사법접근성의 근거와 사법접근성에 대한 국제적 향상 논의 ····· 22
제2절 민사소송과 소송비용 ····· 24
Ⅰ. 소송비용 ····· 24

1. 소송비용의 의의 ····· 24
2. 소송비용부담주체 ····· 25
가. 독일의 소송비용부담주체 논의 ····· 25
나. 우리나라의 재판유상주의 원칙 ····· 26
Ⅱ. 민사소송과 소송비용부담 ····· 27
1. 민사소송의 기본 이념 ····· 27
2.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주의 ····· 28
3. 소송비용 확정절차 ····· 28
4. 인지액의 산정방법 ····· 29
5. 변호사보수 산정방법 ····· 31
제3절 법률구조제도 ····· 33
Ⅰ. 소송구조제도 ····· 33
1. 소송구조의 의의 ····· 33
2. 소송구조의 요건 ····· 33
가. 무자력 요건 ····· 34
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 34
3. 소송구조의 효과 ····· 35
가. 구조의 객관적 범위 ····· 35
나. 구조의 주관적 범위 ····· 36
다. 소송비용의 환수와 추심 ····· 36
라. 변호사 선임절차 및 변호사비용에 대한 환수와 추심 ····· 36
4. 소송구조의 현황과 예산 ····· 38
Ⅱ.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법률구조제도 ····· 39
1. 법률구조의 의의 ····· 39
2. 법률구조의 요건 ····· 40
3. 법률구조의 효과 ····· 40
가.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대한 법률구조 ····· 40
나. 소송비용의 상환과 면제 ····· 42
4. 법률구조의 현황과 예산 ····· 42
가. 현황 ····· 42
나. 예산 ····· 43
Ⅲ. 그 밖의 공적인 법률구조제도 ····· 44
1.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 44
가.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44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44
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5
2. 공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상담제도 ····· 45
가. 법률홈닥터 ····· 45
나. 마을변호사제도 ····· 45
Ⅳ. 법률서비스와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 46

제3장 법률서비스보험 일반이론 ····· 49

제1절 보험제도 ····· 51
Ⅰ. 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 51
Ⅱ. 보험의 종류 ····· 52
1. 손해보험과 인보험 ····· 52
2. 재산보험과 물건보험 ····· 53
3. 공보험과 사보험 ····· 53
4.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의무보험) ····· 54
Ⅲ. 보험과 인접분야와의 비교 ····· 54
1. 공제사업 ····· 54
2. 유사보험(공제보험) ····· 55
3. 보험과 공제의 이론적 구별 ····· 55
4. 보험법의 준용 ····· 56
제2절 법률서비스보험의 구조와 특징 ····· 57
Ⅰ. 법률서비스보험의 의의와 구조 ····· 57
Ⅱ. 법률서비스보험의 특징 ····· 58
1. 손해보험 ····· 58
2. 비용보험(소극보험) ····· 58
3. 신뢰재를 담보하는 보험 ····· 59
Ⅲ. 법률서비스보험의 문제점 ····· 60
1. 대리인비용 ····· 60
가. 주인과 대리인 문제 ····· 60
나. 도덕적 해이 ····· 61
다. 역선택 ····· 62
2. 신뢰재를 담보하는 보험 ····· 62
가. 기만행위 ····· 62
나. 가격 상승 ····· 62
Ⅳ. 법률서비스보험과 민영건강보험과의 비교 ····· 63
Ⅴ. 법률서비스보험의 효용 ····· 65
1. 적은 비용으로 권리보호 ····· 65
2. 국민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심적 안정감 제공과 법률교육 효과 ····· 65
3.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와 사법접근성 확대 ····· 66
제3절 법률서비스보험의 구체적 모습 ····· 67
Ⅰ. 법률서비스보험의 요소 ····· 67
1. 법률서비스보험의 이해관계인 ····· 67
2.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 68
3. 보험사고와 보험급여(보험급부) ····· 68
4. 보험금액(보험가액), 보험금과 보험료 ····· 70

Ⅱ. 법률서비스보험의 형태 ····· 71
1. 사업의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 71
2. 가입방식에 따른 구분 ····· 72
3. 보험료 부담주체에 따른 구분 ····· 73
4. 변호사의 선임방식에 따른 구분 ····· 74
5. 보험급여(보험급부)의 내용에 따른 구분 ····· 74
6. 변호사보수 산정방식에 따른 구분 ····· 75
Ⅲ. 법률서비스보험의 효과 ····· 76
1. 보험자의 의무 ····· 76
가. 보험금 지급의무 ····· 76
나. 면책사유 ····· 76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 77
가. 보험료 납부의무 ····· 77
나.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 78
다. 손해방지·경감의무 ····· 78
3. 보험사고 접수와 처리 과정 ····· 79
4. 책임보험에 인정되는 방어비용과의 구별 ····· 79

제4장 법률서비스보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81

제1절 비교법의 대상과 연구쟁점 ····· 83
제2절 독일 ····· 84
Ⅰ. 소송비용 ····· 84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인지액 ····· 84
2. 변호사보수 법정주의 ····· 86
Ⅱ. 민사 법률구조제도 ····· 88
1. 소송비용구조제도 ····· 89
가. 요건 ····· 89
나. 효과 ····· 89
다. 예산 ····· 90
2. 법률상담구조제도 ····· 90
Ⅲ. 권리보호보험 일반 ····· 93
1. 권리보호보험의 의의 ····· 93
2. 권리보호보험의 보급현황 ····· 94
가. 변호사비용 조달과 권리보호보험 ····· 94
나. 권리보호보험 보급률과 보급요인 ····· 94
다. 보험사건 처리 현황 ····· 96
3. 권리보호보험의 발전 ····· 97
가. 보장대상의 확대 ····· 97
나. 약관 소개 ····· 98
다. 권리보호보험(일반보험약관 ARB2019)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 ····· 102

라. 독일 연방법무부에 의한 위탁조사 ····· 103
4. 권리보호보험 상품 소개 ····· 104
Ⅳ. 권리보호보험 관련 법률과 분쟁해결절차 ····· 107
1. 보험계약법 ····· 107
가. 제125조 보험자의 급부 ····· 107
나. 제126조 손해정산기업 ····· 107
다. 제127조 변호사선택의 자유 ····· 108
라. 제128조 중재감정인절차 ····· 108
마. 제129조 상이한 합의 ····· 109
2.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분쟁해결절차 ····· 109
가. 중재감정인절차 ····· 109
나. 결정투표(캐스팅보트)절차 ····· 109
다. 보상소송 ····· 110
Ⅴ. 독일 권리보호보험의 특징과 사법접근성 ····· 110
제3절 미국 ····· 111
Ⅰ. 소송비용 ····· 111
1. 소송비용부담원칙과 인지액 ····· 111
2. 변호사보수 산정방법 ····· 113
Ⅱ. 민사 법률구조제도 ····· 114
1. 소송비용구조제도 ····· 114
2. 법률구조공사(LSC)에 의한 법률구조제도 ····· 115
가. 수혜자 ····· 115
나. 대상 사건 ····· 116
다. 예산 ····· 116
Ⅲ. 법률서비스보험 일반 ····· 117
1. 법률서비스보험의 도입 ····· 117
2. 법률서비스보험의 전개 ····· 117
가. 미국 변호사 협회의 역할 ····· 117
나. 법적 기반의 마련 ····· 119
다. 발전 과정과 그 형태 ····· 120
3. 법률서비스보험의 유형 ····· 121
가. 단체형 법률서비스보험 ····· 121
나. 선불형 법률서비스보험 ····· 122
다. 영리형 법률서비스보험 ····· 126
4. 법률서비스보험 상품 소개 ····· 126
가.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선불형 법률서비스보험 ····· 126
나. 메트라이프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형 법률서비스보험 ····· 128
다. 리걸쉴드 회사가 판매하는 일반 공제형 법률서비스보험 ····· 129
라. 아라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영리형 법률서비스보험 ····· 130
Ⅳ. 법률서비스보험 관련 법률 ····· 130

1. 연방 법률 ····· 130
2. 주(州) 법률 ····· 131
Ⅴ. 미국 법률서비스보험의 특징과 사법접근성 ····· 132
제4절 일본 ····· 133
Ⅰ. 소송비용 ····· 133
1. 소송비용부담원칙과 인지액 ····· 133
2. 변호사보수 산정방법 ····· 134
Ⅱ. 민사 법률구조제도 ····· 136
1. 소송비용구조제도 ····· 136
2. 일본사법지원센터가 실시하는 법률구조제도 ····· 136
Ⅲ. 변호사비용보험 일반 ····· 138
1. 변호사비용보험의 발전과 현황 ····· 139
가. 변호사비용보험의 발전 ····· 139
나. 변호사비용보험의 현황 ····· 140
2. 변호사비용보험과 민사소송 ····· 142
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가 ····· 142
나. 민사사건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과 변호사선임비율 ····· 143
다. 민사소송에서의 사법접근성 향상 ····· 144
3. 변호사비용보험 상품 소개 ····· 144
가. 미카타(Mikata) 변호사비용보험 ····· 145
나. 치한원죄·치한피해에 특화된 보험상품 ····· 146
다.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변호사비용과 법률비용 특약 ····· 147
Ⅳ. 변호사비용보험 관련 법률과 분쟁해결절차 ····· 148
1. 보험법 ····· 148
2. 변호사비용보험ADR ····· 148
Ⅴ. 일본 변호사비용보험의 특징과 사법접근성 ····· 149
제5절 법률서비스보험의 비교와 시사점 ····· 150

제5장 국내의 법률서비스보험 ····· 153

제1절 국내의 법률서비스보험 현황 ····· 155
Ⅰ. 도입과 현황 ····· 155
Ⅱ. 법률서비스보험과 관련된 보험상품 ····· 156
1. 법률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 ····· 156
가. 배상책임보험 ····· 156
나. 장기보장성 상해보험(운전자보험) ····· 159
다.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법률비용지원 특약 ····· 161
라. 특정 단체의 책임공제사업 ····· 163
2. 특정 분야 등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 163
가. 지적재산권 소송비용보험 ····· 163

나. 교직원을 위한 법률비용보험 ····· 164
다. 소방공무원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법률비용보험 ····· 164
라. 공무원을 위한 책임보험(법률비용보험 포함) ····· 164
3. 법률서비스를 단독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 ····· 165
가. DAS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 ····· 165
나. LIG손해보험주식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 ····· 173
Ⅲ. 법률서비스보험 관련 법률과 분쟁해결절차 ····· 177
1. 보험업법과 상법 ····· 177
2. 분쟁해결절차 ····· 177
제2절 과거 도입된 법률서비스보험의 비활성화 원인 ····· 179
Ⅰ. 보험상품과 소송에 대한 낮은 인지도 ····· 179
Ⅱ. 사법적 해결을 회피하는 성향 ····· 180
Ⅲ. 단독상품 판매의 어려움 ····· 182
Ⅳ. 법률분쟁 대상 자체를 보험사고로 담보하는 보험상품 ····· 183
제3절 법률서비스보험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84
Ⅰ.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 184
1. 역선택 개선방안 ····· 184
2. 도덕적 해이(소송의 남용) 개선방안 ····· 186
Ⅱ. 보장내용 ····· 188
1. 소송 전·소송 외 사건의 보장 ····· 188
2. 형사·행정·가사 사건의 포괄적 보장 ····· 188
3.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 ····· 189
4.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 190
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의 제공 ····· 190
나. 실질적 변호사 비용의 보장 ····· 192
다. 패소 시 부담하여야 할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보장 ····· 193
Ⅲ. 보험의 형태와 운영 ····· 194
1. 보험의 형태 ····· 194
2.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방안 ····· 195
3. 보험자의 보험급여 거절에 대한 불복제도 마련방안 ····· 196
Ⅳ. 기타 활성화 방안 ····· 196
1. 의무보험 도입 ····· 196
2. 단체보험 도입 ····· 198
3. 미래 법률서비스환경의 변화에 대응 ····· 199
가. 온라인 변호사 소개 및 상담 플랫폼과 제휴 ····· 199
나. 리걸테크를 이용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 200
4. 법원의 역할 ····· 201

제6장 결론 ····· 203

115.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entencing guidelines on fines

연구총서 2020-15

연구책임자 : 백광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12월 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 3
Ⅰ. 징역형 양형기준의 정립 ····· 3
Ⅱ. 벌금형 양형기준의 논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 범위 ····· 6
제3절 연구 방법 ····· 7

제2장 국내 양형기준 현황 ····· 9

제1절 양형위원회 설립 및 활동 경과 ····· 11
Ⅰ. 양형위원회 설립 경과 ····· 11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11
2. 사법개혁위원회 ····· 12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13
4. 법원조직법 개정, 시행 ····· 15
Ⅱ.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 16
1. 구성 ····· 16
2. 운영 ····· 17
3.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 논의 ····· 18

4. 기수별 활동 경과 ····· 20
제2절 징역형 양형기준 ····· 21
Ⅰ. 현황 ····· 21
1. 설정 범위 ····· 21
2. 적용 대상 ····· 23
Ⅱ. 기본 원칙 ····· 25
1. 양형인자의 평가 원칙 ····· 25
2. 공통 원칙 ····· 26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26
4.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28
Ⅲ. 사기범죄 ····· 29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29
2. 2018년 적용 현황 ····· 32
3. 2014-2018년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 영역별 형량 ····· 36
Ⅳ. 폭력범죄 ····· 39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39
2. 2018년 적용 현황 ····· 43
3. 2014-2018년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 영역별 형량 ····· 47
Ⅴ. 교통범죄 ····· 49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49
2. 2018년 적용 현황 ····· 51
3. 2014-2018년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 영역별 형량 ····· 53
Ⅵ. 피해 회복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55
1. 현황 ····· 55
2. 검토 ····· 58
제3절 벌금형 양형기준 ····· 62
Ⅰ. 양형기준 현황 ····· 62
1. 설정 범위 ····· 62
2. 설정 및 수정 경위 ····· 62
Ⅱ. 선거범죄 양형기준 ····· 63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63
2. 2018년 적용 현황 ····· 65
3. 2014-2018년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 영역별 형량 ····· 68
4. 2014-2018년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 영역별 선택형 ····· 72
제4절 양형 통계 ····· 74
Ⅰ. 양형기준 설정 범죄별 구약식 현황 ····· 74
Ⅱ. 전체 범죄 양형 현황 ····· 77
1. 형의 종류 ····· 77
2. 집행유예 ····· 77

제3장 해외 양형기준 현황 ····· 79

제1절 영국 ····· 81
Ⅰ. 연혁 ····· 81
1. 최초 논의 ····· 81
2. 전개 ····· 82
3. 잉글랜드와 웨일스 양형위원회 설립 ····· 84
4. 스코틀랜드 양형위원회 설립 ····· 84
Ⅱ. 양형 실무 ····· 85
1. 일반론 ····· 85
2. 벌금형 ····· 88
Ⅲ. 양형기준 ····· 91
1. 공통 기준 ····· 92
2. 음주운전 및 미수 ····· 109
3. 사기 ····· 111
4. 단체: 식품 안전, 위생 규제 위반 ····· 118
Ⅳ. 양형 통계 ····· 125
1. 전체 ····· 125
2. 즉시 구금 ····· 126
3. 벌금 ····· 128
Ⅴ. 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한 법률 중 양형 부분 ····· 132

제2절 미국 ····· 155
Ⅰ. 연혁 ····· 155
1. 도입 현황 ····· 155
2. 연방대법원의 양형기준 위헌 선언 ····· 156
Ⅱ. 연방 양형기준 ····· 157
1. 일반 적용 원칙 ····· 157
2. 범행 ····· 158
3. 형의 결정 ····· 163
4. 단체에 대한 양형 ····· 170
Ⅲ. 양형 통계 ····· 181
1. 종국 ····· 181
2. 양형기준 적용 ····· 182
Ⅳ. 연방 법전 제18편 중 벌금형 양형 부분 ····· 183
1. 양형 일반 ····· 183
2. 벌금형 ····· 191

제3절 독일 ····· 198
Ⅰ. 양형 일반 ····· 198
1. 검찰 ····· 198
2. 법원 ····· 200

Ⅱ. 양형 실무 ····· 204
1.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 ····· 204
2. 사기 ····· 207
3. 도로교통범죄 ····· 213
Ⅲ. 양형 통계 ····· 221
1. 전체 범죄 ····· 221
2.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 ····· 222
3. 사기 ····· 223
4. 도로교통범죄 ····· 224
Ⅳ. 형법 중 양형 부분 ····· 226
제4절 일본 ····· 246
Ⅰ. 양형 실무 ····· 246
1. 양형 시세 ····· 246
2. 피해자 ····· 256
3. 행정처분 등 불이익 ····· 263
4. 형 선택 ····· 267
5. 집행유예 ····· 271
6. 벌금형 병과 ····· 276
7. 노역장 유치 ····· 278
Ⅱ. 양형 통계 ····· 280
1. 간이재판소 ····· 280
2. 지방재판소 ····· 283
3. 양형 종합 ····· 289
Ⅲ. 형법 중 양형 부분 ····· 290

제4장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 방안 ····· 303

제1절 도입 여부 및 방법 ····· 305
Ⅰ. 고려 요소 ····· 305
1. 양형기준 ····· 305
2. 벌금형 ····· 307
3. 형벌감수성 ····· 308
Ⅱ. 도입 여부 ····· 308
1. 도입론 ····· 308
2. 신중론 ····· 310
3. 검토 ····· 312
Ⅲ. 도입 방법 ····· 312
1. 양형조사분석의 필요성 ····· 312
2. 도입 방식 ····· 313
제2절 형 선택 공통 기준 제시 방식 ····· 314

Ⅰ. 특징 ····· 314
1. 장점 ····· 314
2. 단점 ····· 314
Ⅱ. 설정 방법 ····· 315
1. 원칙 ····· 315
2.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선별, 분류 ····· 316
3. 주요부정사유 ····· 317
4. 주요긍정사유 ····· 319
5. 종합 ····· 320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321
1. 형 선택 양형기준 신설안 ····· 321
2. 개별 양형기준 수정안 ····· 324
3.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325
제3절 형 선택 개별 기준 제시 방식 ····· 328
Ⅰ. 특징 ····· 328
1. 장점 ····· 328
2. 단점 ····· 328
Ⅱ. 설정 방법 ····· 329
1. 원칙 ····· 329
2. 징역형과 벌금형의 관계 ····· 329
3. 형 선택 기준 ····· 330
Ⅲ. 양형기준 수정안 ····· 330
1. 개별 양형기준 수정안 ····· 330
2.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338
제4절 형량 공통 기준 제시 방식 ····· 341
Ⅰ. 특징 ····· 341
1. 장점 ····· 341
2. 단점 ····· 342
Ⅱ. 설정 방법 ····· 342
1. 원칙 ····· 342
2. 양형인자의 선별, 분류 ····· 342
3. 특별감경인자 ····· 343
4. 특별가중인자 ····· 345
5. 종합 ····· 347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349
1. 벌금형 형량 양형기준 신설안 ····· 349
2. 개별 양형기준 수정안 ····· 353
3.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354
제5절 형량 개별 기준 제시 방식 ····· 356

Ⅰ. 특징 ····· 356
1. 장점 ····· 356
2. 단점 ····· 356
Ⅱ. 설정 방법 ····· 357
1. 원칙 ····· 357
2. 설정 순서 ····· 357
3. 권고 형량 기준 ····· 359
4.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재정립 ····· 360
5. 「동종 벌금형 전과」의 일반가중인자 추가 ····· 361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361
1. 음주운전범죄 양형기준 신설안 ····· 362
2. 개별 양형기준 수정안 ····· 364
3.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372
제6절 형 선택 및 형량 공통 기준 제시 방식 ····· 375
Ⅰ. 특징 ····· 375
1. 장점 ····· 375
2. 단점 ····· 375
Ⅱ. 설정 방법 ····· 376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377
1.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안 ····· 377
2. 개별 양형기준 수정안 ····· 381
3.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382
제7절 형 선택 및 형량 개별 기준 제시 방식 ····· 386
Ⅰ. 특징 ····· 386
1. 장점 ····· 386
2. 단점 ····· 386
Ⅱ. 설정 방법 ····· 387
1. 형 선택 개별 기준 ····· 387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388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388
1. 개별 양형기준 신설안 ····· 389
2. 개별 양형기준 수정안 ····· 389
3.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392
제8절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 ····· 395
Ⅰ. 특징 ····· 395
1. 장점 ····· 395
2. 단점 ····· 397
Ⅱ. 설정 방법 ····· 397
1. 설정 순서 ····· 397
2. 중소기업 기준 ····· 399

3. 형량 범위, 양형인자 ····· 401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402
1.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안 ····· 402
2.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403
제9절 환형 유치에 대한 양형기준 ····· 404
Ⅰ. 특징 ····· 404
1. 장점 ····· 404
2. 단점 ····· 404
Ⅱ. 설정 방법 ····· 405
1. 입법 취지 ····· 405
2. 현황 ····· 406
3. 방식 ····· 407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411
1. 환형 유치 양형기준 신설안 ····· 412
2.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413
제10절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기준 ····· 414
Ⅰ. 특징 ····· 414
1. 장점 ····· 414
2. 단점 ····· 415
Ⅱ. 설정 방법 ····· 415
1. 입법 취지 ····· 415
2. 현황 ····· 417
3. 종합 ····· 426
Ⅲ. 양형기준 신설, 수정안 ····· 427
1. 벌금형 집행유예 양형기준 신설안 ····· 427
2.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 428

제5장 결론 ····· 431

제1절 요약 ····· 433
제2절 제언 ····· 434

11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A study on personnel operation plan for court officials according to changes in working environment including electronic litigation

연구총서 2020-16

연구책임자 : 박 미 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 정 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 용 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3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4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사법 업무의 전자시스템화 ····· 9
제1절 사법 정보화의 과정 ····· 11
Ⅰ. 개요 ····· 11
Ⅱ. 사법 정보화의 목적과 기능 ····· 11

1. 목적 ····· 11
2. 기능 ····· 12
Ⅲ. 연혁 ····· 12
1. 초기 단계(1979년~1997년) ····· 12
2. 확산·발전 단계(1998년~2004년) ····· 12
3. 전자법원 단계(2005년~현재) ····· 13
4. 차세대 전자법원 단계(2024년~) ····· 13
제2절 각 분야별 사법 업무의 전자시스템화 ····· 13
Ⅰ. 서설 ····· 13
Ⅱ. 민사 등 재판 관련 전자소송 ····· 14
1. 개요 ····· 14
2. 민사 전자소송 ····· 15
3. 형사 전자소송(전자약식) ····· 18
4. 특허 전자소송 ····· 19
5. 가사 및 행정 전자소송 ····· 19
Ⅲ. 등기업무의 전산화 ····· 20
1. 개요 ····· 20
2. 각 단계별 전산화 현황 ····· 21
가. 계획 단계(1990. 8.~1994. 4.) ····· 21
나. 종이등기부 전산화 단계(1994. 5.~2003. 9.) ····· 22
다. 인터넷등기소 구축 단계(2003. 9.~2007. 9.) ····· 22
라. 등기업무의 고도화 단계(2007. 9.~) ····· 23
마. 미래등기시스템 개발 추진 단계(2014. 1.~) ····· 23
Ⅳ. 공탁시스템의 전자화 ····· 23
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전자화 ····· 24
Ⅵ. 신청 및 집행·비송사건의 전자화 ····· 25
1. 신청사건 ····· 25
2. 도산사건 ····· 25
3. 집행·비송사건 ····· 25
제3절 차세대시스템의 추진 ····· 26
Ⅰ. 차세대 전자소송 ····· 26
1. 추진 배경 ····· 26
가. 국민의 소송업무 처리 불편 지속 ····· 26
나. 법관의 재판업무 처리 효율성 모색 ····· 27
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업무환경 ····· 27
라. 시스템의 노후화 ····· 27
2. 추진 현황 ····· 28
Ⅱ. 미래등기시스템 ····· 28
1. 추진 배경 ····· 28
2. 추진 현황 ····· 29

Ⅲ.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검토 ····· 29

제3장 전자소송 등 도입으로 인한 법원 업무의 변화 ····· 31

제1절 전자소송의 개요 ····· 33
Ⅰ. 전자소송의 개념 ····· 33
1. 전자적 서류관리(e-filing) ····· 33
2. 전자적 사건관리(e-case management) ····· 34
3. 전자적 법정변론(e-courtroom) ····· 34
Ⅱ. 전자소송 관련 법률 등 ····· 35
Ⅲ. 전자소송 절차의 흐름 ····· 36
제2절 재판업무의 변화 ····· 37
Ⅰ. 당사자 등 입장에서의 변화 ····· 38
Ⅱ. 법관의 업무 변화 ····· 39
1. 소송기록 관리 및 열람의 편의성 증대 ····· 39
2.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40
3. 재택근무 환경의 조성(smart work) ····· 40
4.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화 ····· 40
Ⅲ. 참여관과 실무관의 업무 변화 ····· 41
1. 접수업무 ····· 41
2. 송달업무 ····· 42
3.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 43
4. 기록 검토 ····· 44
5. 기일의 진행 및 조서 작성 ····· 45
6. 기록 보존 ····· 46
제3절 등기업무의 변화 ····· 46
Ⅰ. 개요 ····· 46
Ⅱ. 달라진 변화 ····· 47
1. 민원인 입장 ····· 47
가. 등기소 무방문 ····· 47
나. 지역 무관 서비스 ····· 48
다. 대기시간의 단축 ····· 48
라. 관계기관 방문의 최소화 ····· 49
마. 양질의 서비스 ····· 49
바. 쾌적한 환경의 제공 ····· 49
2. 등기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변화 ····· 50
가.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의 제거 ····· 50
나. 업무처리 절차의 효율성 제고 ····· 50
다. 정확도 향상 ····· 50
라. 다양한 공시 형태의 제공 ····· 51

마. 통계 및 정보 제공의 자동화 ····· 51
바. 분실 및 멸실 방지 ····· 52
사. 예산의 절감 ····· 52
아. 등기자료의 안정적 보관 및 유사시 대처의 효율성 제고 ····· 52
자. 혁신적인 등기업무체제로의 전환 및 사무자동화 환경 구축 ····· 53
3. 관계기관과의 연계 ····· 53
4. 인력 절감 효과 ····· 53
제4절 공탁업무의 변화 ····· 54
Ⅰ. 개요 ····· 54
Ⅱ. 전자화 이후 법원 실무의 변화 ····· 54
1. 전자공탁 ····· 54
2. 기존 공탁제도와 전자공탁의 업무상 차이점 ····· 55
가. 공탁신청의 경우 ····· 55
나. 공탁금 출급의 경우 ····· 56
제5절 가족관계등록업무의 변화 ····· 57
Ⅰ. 개요 ····· 57
Ⅱ. 전자화 이후 법원 실무의 변화 ····· 57
1. 접수 ····· 57
2. 처리 ····· 57
3.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과 발급 ····· 58
제6절 신청 및 집행업무의 변화 ····· 59
Ⅰ. 개요 ····· 59
Ⅱ. 전자화 이후 법원 실무의 변화 ····· 60
1. 민사신청사건 ····· 60
가. 보전처분 기입등기의 전자적 말소촉탁 ····· 60
나. 등기완료통지 등의 전자적 편철 ····· 60
다. 등기신청수수료의 전자적 납부 ····· 60
라. 등록면허세의 전자적 제출 ····· 60
마. 전자적 담보제공 ····· 61
바. 자동차 등 가압류·가처분등록 촉탁 ····· 61
사. 임차권등기명령 기입등기 촉탁 ····· 62
아.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 관련 업무 변경 ····· 62
2. 경매사건 ····· 63
가. 기존 경매업무의 흐름 ····· 63
나. 전자화 이후 업무의 변화 ····· 64
3. 채권배당절차사건 ····· 65
가. 업무의 흐름 ····· 65
나. 전자화 이후 업무의 변화 ····· 65
제7절 차세대 시스템하에서 예상되는 업무 변화 ····· 66
Ⅰ. 차세대 전자소송 ····· 66

1. 스마트법원 4.0 ····· 66
2. 민원인 입장에서의 변화 ····· 69
3. 법원 업무처리의 변화 ····· 70
가. 사건메모 프로그램 통합 ····· 71
나. 흠결사항 자동체크 방안 ····· 72
다. 재배당, 이송, 배당 등의 업무 간소화 ····· 72
라. 송달료 처리업무 재설계 ····· 72
마. 주소보정업무 재설계 ····· 72
바. 묶음(일괄)결재 업무 재설계 ····· 72
사. 제출명령과 촉탁기관 업무연계 재설계 ····· 73
아. 촉탁사건 현황판 개발 ····· 73
Ⅱ. 미래등기시스템 ····· 73
1. 종합 로드맵(2020년~2029년) ····· 73
가. 1단계(2020년~2024년) ····· 73
나. 2단계(2025년~) ····· 74
2. 시스템 구축의 목표와 방향 ····· 74
가. 지능형 등기업무 서비스 영역 ····· 75
나. 등기업무지원 서비스 영역 ····· 75
다. 등기기록관리 서비스 영역 ····· 76
라.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서비스 영역 ····· 76
마. 대국민통합등기 서비스 영역 ····· 76
3. 등기제도의 변화 ····· 76
가. 국민 불편사항 해소 및 권리보호 강화 ····· 76
나.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 77
다. 법원공무원 등기업무 처리의 변화 ····· 77
Ⅲ. 형사 전자소송 ····· 78
1. 도입 시 기대되는 변화 ····· 78
가.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 78
나.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 78
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 79
라.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 ····· 79
2.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고려할 사항 ····· 80

제4장 주요 국가의 전자소송의 현황과 시사점 ····· 81

제1절 독일 ····· 83
Ⅰ. 전자소송의 발달 현황 ····· 83
1.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연혁 ····· 83
가. 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전자송달의 도입 ····· 83
나. 사법의사소통법의 제정 ····· 84
다. 전자독촉시스템의 도입 ····· 84

라. 전자소송촉진법의 제정 ····· 84
마.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 85
2. 헤센주의 전자소송시스템 ····· 86
3. 실무상 전자소송 활용 현황 ····· 87
가. 전자소송의 활용 부진(2014년 기준) ····· 88
나. 전자소송 이용의 점진적 증가 ····· 88
다. 법원의 새로운 과제 : 형사 전자소송(2019년~2020년 기준) ····· 90
Ⅱ. 법원의 업무 변화 ····· 91
1.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 및 적응 문제 ····· 91
가. 문서의 전자적 접수 및 전송업무 ····· 91
나. 종이기록의 스캔 업무 ····· 92
다. 전자소송과 보안업무 ····· 94
라. 전자소송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 기간의 필요 ····· 95
2. 법원공무원의 전자소송 관련 교육 실시 ····· 96
가. 일반직 법원공무원 교육 ····· 96
나. 전자사법 실습교육장의 설치(브레멘주) ····· 96
Ⅲ.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한 법원공무원 인력의 변화 ····· 97
1. 각 주(州)의 인력 변화에 대한 입장 ····· 97
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사례 ····· 97
나. 라인란트팔츠주의 사례 ····· 100
다. 헤센주의 사례 ····· 101
2.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한 전통적 사무분담의 조정 필요성 ····· 101
가. 법률안의 목적과 필요성 ····· 102
나. 법률안의 주요 내용 ····· 103
다. 사법보좌관법의 개정안 ····· 104
3.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변화 및 발전 방향 ····· 105
가. 주 법무부의 제언 ····· 105
나. 주 법무부 전자소송 담당 판사의 제언 ····· 106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제언 ····· 106
라. 사법보좌관의 제언 ····· 107
Ⅳ. 시사점 ····· 108
제2절 싱가포르 ····· 110
Ⅰ. 전자소송의 발달 현황 ····· 110
1. Electronic Filing System(EFS) ····· 110
가. 추진 배경 ····· 110
나. 추진 단계 ····· 111
다. 근거 규정 ····· 111
라. EFS의 기능 ····· 111
마. EFS에 대한 평가 ····· 112
2. eLitigation ····· 113

가. 추진 배경 ····· 113
나. 주요 내용 ····· 113
3. 향후 과제 ····· 118
Ⅱ. 법원의 업무 변화 ····· 118
1. 사법개혁 및 전자소송 도입의 목적 ····· 118
2. 전자소송 이후 법원 업무의 변화 ····· 119
Ⅲ. 시사점 ····· 119
제3절 미국 ····· 120
Ⅰ. 전자소송의 발달 현황 ····· 120
1. 미국 연방법원의 CM/ECF(Case Management/Electronic Case Files) ····· 120
가. 연혁 ····· 120
나. CM/ECF 시스템의 기능 ····· 121
다. CM/ECF 시스템 이용방법 ····· 122
라.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 123
마. NextGen CM/ECF(Next Generation of CM/ECF) ····· 124
2. 미국 연방 사법부의 사법 정보화(2020년~2024년) ····· 125
가. 견고하고 유연한 기술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의 지속적 구축·유지 ···· 125
나. 국가 IT시스템·응용프로그램과의 조정·통합 ····· 126
다. 기술 활용을 통한 시스템 차원의 접근방식 개발 ····· 126
라. 보안 환경의 개선 및 업데이트 ····· 126
Ⅱ.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용 현황 ····· 126
1. 외부 서비스 관련 ····· 126
2. 내부 업무 시스템 관련 ····· 127
3. 영상(화상)재판 관련 ····· 127
4. 재판안내 관련 ····· 127
5. 관계기관 연계 관련 ····· 128
6.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관련 ····· 128
7.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센터 관련 ····· 128
Ⅲ. 법원 업무와 인력의 변화 ····· 128
1. 생산성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129
2. 인력에 미치는 영향 ····· 129
3. 조직 정책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 ····· 130
Ⅳ. 시사점 ····· 130

제5장 전자시스템화와 인력운영의 변화 ····· 133

제1절 자동화와 인력 ····· 135
Ⅰ. 개요 ····· 135
Ⅱ. 자동화와 인력의 관계에 대한 이론 검토 ····· 135
1. 자동화의 영향 ····· 135
가. 인간 영향력의 증대 ····· 135

나. 새로운 직업수요의 창출 ····· 136
2. 자동화와 직무변화 ····· 138
가. 자동화의 효과 ····· 138
나. 자동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 139
3.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총량 불변 ····· 140
제2절 전자시스템 도입과 인력 변화 ····· 142
Ⅰ. 특허청의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력 변화 분석 ····· 142
1. 특허넷 ····· 142
가. 추진 배경 ····· 142
나. 구축 과정 ····· 143
2. 업무 변화와 인력 현황 ····· 143
가. 업무 변화 ····· 143
나. 인력 현황 ····· 144
3. 효과 분석 ····· 145
가. 생산성의 향상 ····· 145
나. 인력증가의 원인 ····· 146
4. 시사점 ····· 149
Ⅱ. 특허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업무 담당 인력의 변화 ····· 149
1. 특허 전자소송의 시행 ····· 149
2. 특허소송 사건의 현황 ····· 150
3. 특허 전자소송 시행 전·후 인력의 변화 추이 ····· 151
가. 특허법원의 사무분담과 업무의 특징 ····· 151
나. 특허과 ····· 152
4. 시사점 ····· 153
Ⅲ. 전자독촉시스템 시행에 따른 업무 담당 인력의 변화 ····· 154
1. 전자독촉시스템 ····· 154
가. 개요 ····· 154
나. 사건접수 현황 ····· 155
2. 전자독촉시스템 보급 후 인력의 변화 추이(서울중앙지방법원) ····· 156
가. 독촉사건의 처리 ····· 157
나. 전자독촉시스템 보급 이후 인력의 변화 ····· 158
3. 시사점 ····· 160
제3절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법원공무원 인력의 변화 ····· 163
Ⅰ. 전자소송과 법원공무원 인력의 추이 ····· 164
1. 민사사건 접수 건수와 전자사건의 접수 비율 ····· 164
2. 단순비교에 의한 행정부 공무원과 법원공무원의 인력 변화의 추이 ····· 166
Ⅱ.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참여관과 실무관의 추가된 업무 ····· 169
1. 접수 및 소장검토업무 ····· 169
가. 종이접수사건의 전자화를 위한 스캔 작업 ····· 169
나. 이의사건의 서증 목록화 작업 ····· 170

다. 종이기록에서 전자접수된 문건의 처리 ····· 170
라. 문건으로 전자접수된 사건의 정정 처리 ····· 170
마. 부실한 전자문서의 보완 요구 ····· 170
2. 인지·송달료 납부 관련 업무 ····· 170
가. 소송이행사건의 송달료 처리 ····· 170
나. 종이사건에서 전자항소장 제출 시 송달료 처리 ····· 171
다. 전자사건의 인지·송달료의 종이 납부서 제출 ····· 171
3. 송달업무 : 전자소송 미동의 당사자의 우편송달과 처리 ····· 171
4. 기록뷰어 정리 및 기록관리 ····· 172
가. 당사자 제출 서증과 종이 제출 서증의 정리 ····· 172
나.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병행 관리로 인한 업무 혼선 ····· 172
5. 기일 진행 ····· 173
가. 전자기기 활용법의 숙지와 전자기록의 다운로드 ····· 173
나. 법정 제출 서증 등의 등록 ····· 173
다. 법정 제출문건과 소급적 전자화 사건의 스캔과 문건분류 ····· 173
라. 부적합 전자증거의 수정과 송부문서의 처리 ····· 174
마. 신문사항 부본의 준비와 영수증의 전산 등재 ····· 174
바.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서의 별도 등록 ····· 175
6. 기록 보존 ····· 175
가. 종이와 전자문건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 보존 ····· 175
나. 종이사건과 전자사건의 별도 보존 ····· 175
7. 기타 ····· 175
가. 서증제출 파일의 복제 ····· 175
나. 전산공증 시 세심한 주의 필요 ····· 176
다. 개인정보 정정업무의 추가 ····· 176
라. 전자소송인증번호 관리 ····· 176
마. 계속적인 고도화로 인한 시스템 적응 부담 ····· 176
Ⅲ. 전면전자화의 계속적인 시범 실시 ····· 177
1. 종이독촉사건의 전면전자화 ····· 177
2. 민사사건 전면전자화 시범 운영 ····· 178
Ⅳ. 소결 ····· 179

제6장 다른 국가기관 및 법원의 인력 (재)배치 사례 검토 ····· 183

제1절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운영 및 (재)배치 사례 ····· 185
Ⅰ. 인력운영의 방향과 (재)배치 사례 ····· 185
1. 정부 3.0시대의 공무원 인력운영의 방향 ····· 185
가. 정부 3.0의 개념 ····· 185
나. 정부 운영방식의 변화 ····· 185
다. 인사제도의 변화 ····· 186

2.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사례 ····· 187
가. 인력 배치의 방향성 ····· 188
나. 인력 배치의 효율성과 문제점 ····· 189
다. 인력 배치의 원칙(적정 배치의 원칙) ····· 189
라. 정부의 인력 배치 ····· 190
3. 팀(team)제 도입 사례 ····· 194
가. 팀(team)제 ····· 194
나. 정부 조직의 팀(team)제 시행 ····· 197
다. 검찰청 형사부의 팀(team)제 ····· 200
Ⅱ. 시사점 ····· 203
1. 인력 (재)배치 ····· 203
2. 팀(team)제 ····· 204
가. 행정안전부의 팀제 ····· 204
나. 검찰청 형사부 팀제 ····· 205
제2절 법원의 인력운영 및 배치 사례 ····· 206
Ⅰ. 인력 풀(pool)제 ····· 206
1. 형사 실무관 풀(pool)제(제주지방법원) ····· 207
가. 시범 실시 배경 ····· 207
나. 내용 ····· 207
다. 문제점 ····· 208
라. 시사점 ····· 209
2. 등기 기입 실무관 풀(pool)제 ····· 211
가. 시행 배경 ····· 211
나. 내용 ····· 211
다. 문제점 ····· 211
라. 시사점 ····· 212
3. 재판지원시스템(서울서부지방법원) ····· 212
가. 시행 배경 ····· 212
나. 내용 ····· 212
다. 성과 및 문제점 ····· 212
라. 시사점 ····· 213
4. 형사합의 2인 참여관제 ····· 214
가. 내용 ····· 214
나. 시사점 ····· 214
Ⅱ. 팀(team)제 ····· 215
1. 등기관 팀(team)제 ····· 215
가. 시행 배경 ····· 215
나. 내용 ····· 215
다. 문제점 ····· 216
라. 시사점 ····· 216

2. 재판업무의 팀(team)제 시범 도입(서울서부지방법원) ····· 217
가. 시행 배경 ····· 217
나. 내용 ····· 218
다. 성과 및 한계점 ····· 219
라. 팀제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 221
마. 시사점 ····· 221
3. 경매지도관제(인천지방법원) ····· 223
가. 시행 배경 ····· 223
나. 내용 ····· 223
다. 시사점 ····· 223
Ⅲ. 참여관의 전문화(역량 강화) ····· 224
1.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수원지방법원) ····· 224
가. 시행 배경 ····· 224
나. 내용 ····· 224
다. 시사점 ····· 225
2.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 225
가. 시행 배경과 내용 ····· 225
나. 법원일반직의 역량 강화 ····· 226
다. 시사점 ····· 227
Ⅳ. 참여관 업무의 다기능화 ····· 228
1. 1인 경매참여관제도 ····· 228
가. 시행 배경 ····· 228
나. 내용 ····· 228
다. 경매업무의 특징 ····· 228
라. 문제점 ····· 229
마. 시사점 ····· 229
2. 1인 등기관제도 ····· 230
가. 시행 배경 ····· 230
나. 내용 ····· 230
다. 문제점 ····· 230
라. 시사점 ····· 231
Ⅴ. 신청·집행 복잡 및 장기미제사건 전담 ····· 232
1. 경매 복잡사건 전담계(인천지방법원) ····· 232
2. 채권배당절차 장기미제사건 전담계(인천지방법원) ····· 232
3. 시사점 ····· 233
Ⅵ. 재판부 형태의 다각화에 따른 인력 배치 ····· 234
1. 소액 독촉사건 전담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 234
가. 내용 ····· 234
나. 시사점 ····· 234
2. 소액 금융기관 전담재판부 ····· 235

3. 이행권고 전담재판부(서울북부지방법원) ····· 235
4. 사건관리부제도(일명 문지기재판부) ····· 238
가. 개요 ····· 238
나. 내용 ····· 238
다. 기대효과 ····· 239
라. 본안재판부의 운영 방식 ····· 239
마. 형사재판 사건관리부 운영 사례(광주지방법원) ····· 239
바. 민사재판 사건관리부 운영 사례(인천지방법원) ····· 240
사. 사건관리부제도의 폐지 ····· 241
아. 시사점 ····· 242
5. 대등재판부 또는 경력 대등재판부 ····· 243
가.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 243
나. 지방법원 경력 대등재판부 ····· 244
다. 시사점 ····· 245
Ⅶ. 탄력적인 인력운영 ····· 245
1. 속기직렬 전담제와 풀(pool)제의 병행 ····· 245
가. 속기 풀(pool)제 ····· 245
나. 운영 현황(서울중앙지방법원) ····· 246
2. 국별 업무지원팀의 운영(서울중앙지방법원) ····· 247
3.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인력 투입(서울중앙지방법원) ····· 247
가. 진행 상황 ····· 247
나. 대응 절차 ····· 247
Ⅷ. 법원 단순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 ····· 248
1. 전자소송 스캔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 ····· 248
가. 시행 배경 ····· 249
나. 도입 현황 ····· 249
다. 스캔 인력의 업무범위와 인력 현황 ····· 250
라. 시사점 ····· 250
2.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의 아웃소싱(outsourcing) ····· 251
3. 송달업무의 아웃소싱(우정사업본부의 송달 대행 서비스 : e-post) ····· 251
4. 외부 상담위원제도(서울중앙지방법원) ····· 252

제7장 법원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 255

제1절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 인력운영의 방향 ····· 257
Ⅰ. 사회적 환경과 가치의 변화 ····· 258
1. 사회적 환경의 변화 ····· 258
가. 정보화 사회와 조직 ····· 258
나. 조직구조와 직무구조 변화의 방향 ····· 258
2. 사회적 가치의 변화 ····· 262
가.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추구 ····· 262

나. 유연근무제의 확대 ····· 263
Ⅱ. 사회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 인력운영의 방향 ····· 267
1. 업무 조직 변화의 다양한 시도 ····· 267
2. 직무 중심의 인력운영 ····· 267
3. 워라밸을 고려한 인력운영 ····· 268
제2절 법원공무원의 현황 및 업무 선호도 ····· 270
Ⅰ. 법원의 조직 및 법원공무원의 현황 ····· 270
1. 법원의 기관조직 현황 ····· 270
2. 법원공무원의 현황 ····· 271
가. 법원공무원의 분류 ····· 272
나. 법원공무원의 정원 ····· 273
다. 법원공무원의 직무 ····· 274
Ⅱ. 인력운영의 기초자료로서의 업무 선호도 분석 ····· 275
1. 법원공무원의 업무 선호도 ····· 275
가. 법원행정처 실시 직무별 업무 조사 ····· 275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업무 선호도 조사 ····· 278
다. 업무 선호도 조사의 결과 ····· 282
2. 업무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82
가. 업무 관련 스트레스 지수의 분석 ····· 283
나. 업무 선호도의 영향 요인 ····· 285
제3절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선행 요건 ····· 286
Ⅰ. 법원 인력구조의 개선 ····· 287
1. 개요 ····· 287
가. 승진적체 ····· 292
나. 승진 소요 연수의 장기화로 인한 사기 저하 ····· 292
다. 업무 변화 시 탄력적 대응 불가 ····· 292
라.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 293
마. 지나친 승진경쟁으로 인한 업무 공백 현상 ····· 293
바. 근속승진으로 인한 책임감 등의 저하 ····· 293
사.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운영 ····· 293
2. 실질적인 항아리형 구조로의 직급 개편 ····· 294
3. 핵심인재(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 ····· 294
4. 하위직의 축소 ····· 295
가. 자연 감소와 직급 조정 ····· 296
나. 신규채용 방안 ····· 296
Ⅱ. 적정처리 건수(업무량)의 유지 ····· 298
Ⅲ. 위험업무 영역에 대한 안전망 마련 ····· 300
1. 재정보증보험 보장금액의 한도 확대 ····· 300
가. 재정보증보험제도의 도입 ····· 300
나. 재정보증보험의 차등 가입의 필요성 ····· 301

2. 철저한 직무교육 ····· 302
Ⅳ. 기피 보직에 대한 우대정책 ····· 303
Ⅴ. 보직기간의 조정과 전문성 강화 ····· 304
Ⅵ. 체계화된 교육 실시 ····· 305
Ⅶ. 예비인력 풀(pool)의 구성 ····· 307
1. 필요성 ····· 307
가. 여성 비율과 워라밸에 따른 휴직 등 인력의 증가 ····· 307
나. 업무의 폭증 및 긴급현안의 발생 대비 ····· 310
다.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310
2. 예비인력 풀(pool)의 구성 방안 ····· 310
가. 법원조직 내에서의 인력 풀(pool) ····· 311
나. 법원공무원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예비인력 풀(pool) ····· 313
Ⅷ. 인사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 확보 ····· 314
제4절 법원공무원 인력 배치 안 ····· 316
Ⅰ. 개요 ····· 316
Ⅱ. 민사 등 재판부 인력 배치 안 ····· 317
1. 1개 재판부-1인 참여관-1인 실무관 ····· 318
가. 참여관의 심층적 역할 강화 ····· 318
나. 참여관과 실무관의 업무 조정 ····· 319
2. 1개 재판부-2인 참여관 ····· 322
가. 사건 분담의 경우 ····· 322
나. 업무 세분의 경우 ····· 323
3. 1개 재판부-1인 참여관 ····· 324
4. 2개 재판부-2인 참여관-1인 실무관 ····· 325
5. 2개 재판부-3인 참여관 ····· 326
가. 1인 참여관이 사건관리 역할을 맡는 경우 ····· 327
나. 1인 참여관이 기존 2인 실무관의 역할을 맡는 경우 ····· 327
6. 인력 풀(pool)제 ····· 328
가. 참여관 전속, 실무관 풀(pool)제 ····· 328
나. 참여관 풀(pool)제, 실무관 전속 ····· 328
다. 참여관, 실무관 풀(pool)제 ····· 329
7. 무변론 재판부와 변론 재판부의 운영 ····· 329
가. 무변론 재판부의 운영방식(기존 사건관리부) ····· 330
나. 변론(본안) 재판부의 운영방식 ····· 332
8. 복합 팀(team)제 ····· 333
가. 3개 재판부-1인 참여사무관-2인 참여관-3인 실무관 팀(team)제 ·· 333
나. 3개 재판부-1인 법원사무관-3인 참여관-2인 실무관 팀(team)제 ·· 334
9.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정착 시 배치 방안 ····· 335
가. 1개 재판부-1인 법원사무관-1인 참여관-1인 실무관 ····· 336
나. 1개 재판부-1인 법원사무관-2인 참여관 ····· 337

Ⅲ. 등기업무의 인력 배치 안 ····· 338
1. 전국 등기과(소) 인력 현황 ····· 338
2. 등기업무의 환경과 인력의 변화 ····· 339
3. 등기업무 인력 배치 안 ····· 340
가. 1인 등기관 제도 ····· 340
나. 등기관, 실무관 풀(pool)제 ····· 341
다. 실질적인 등기관 팀(team)제 ····· 342
Ⅳ. 신청 및 집행업무의 인력 배치 안 ····· 343
1. 신청 및 집행업무의 인력 현황 ····· 343
2. 신청 및 집행업무의 특성과 문제점 ····· 346
가. 신속성 ····· 346
나. 대민성 ····· 347
다. 1회 완결성 ····· 347
라. 위험성 ····· 347
3. 신청 및 집행업무의 인력 배치 안(공통) ····· 350
가. 참여관의 접수업무와 사건처리업무의 분리 ····· 350
나. 실무관들의 업무 보조 ····· 351
다. 별도의 민원안내자 배치 ····· 352
라. 신청 및 집행업무의 팀(team)제 ····· 352
4. 경매, 채권배당절차의 지도사무관제 ····· 354
가. 경매 지도사무관제 ····· 354
나. 채권배당절차의 지도사무관제 ····· 355
5. 1인 경매참여관제 유지 시 ····· 356
가. 실무관 또는 참여관의 업무 보조 ····· 356
나. 전화 민원상담관의 배치 ····· 357
다. 교육, 휴가, 업무 폭증 시 지원인력 배치 ····· 358
Ⅴ. 기타 업무 인력 배치 안 ····· 358
1. 공탁업무 ····· 358
가. 각 법원별 공탁관 현황 ····· 358
나. 공탁업무 인력 배치 안 ····· 359
2. 가족관계등록업무 ····· 362
가. 인력 현황 ····· 362
나.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관장자로서의 법원 ····· 364
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365
라. 가족관계등록관의 재외공관 영사 파견 확대 ····· 366
3. 민원업무 ····· 368
가. 현황 ····· 368
나. 민원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 ····· 369
다. 민원업무 담당자를 위한 지원 방안 ····· 369
라. 민원업무 영역의 인력 배치 안 ····· 371

4. 일반 행정업무 ····· 373
가. 법원행정처의 부서 칸막이 제거와 협업의 필요성 ····· 374
나. 법원행정 전문가의 양성 ····· 374
다. 주요 법원 총무과에 업무분석담당관(가칭)의 배치 ····· 375

제8장 결론 ····· 377

117.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직렬구조 개편 방안

Study on the reorganization measures for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of court officials for realization of fair and faithful court affairs

연구총서 2020-17

연구책임자 : 이 학 구(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 정 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 문 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 용 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3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차별성 ····· 4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의 이론적 논의 ····· 9
제1절 개관 ····· 11
제2절 공직분류 체계 ····· 11

Ⅰ. 공직분류 체계의 의의 ····· 11
Ⅱ. 공직분류의 기능 ····· 12
Ⅲ. 직군·직렬·직류의 구분 ····· 12
제3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13
Ⅰ. 계급제 ····· 13
1. 계급제의 의의 ····· 13
2. 계급제의 특징 ····· 14
3. 계급제의 장·단점 ····· 14
Ⅱ. 직위분류제 ····· 15
1. 직위분류제의 의의 ····· 15
2. 직위분류제의 특징 ····· 16
3.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16
Ⅲ. 검토 ····· 17

제3장 주요 국가들의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 ····· 19

제1절 미국 ····· 21
Ⅰ.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 ····· 21
1. 개설 ····· 21
2. 재판부 직원(Chamber Staffs) ····· 22
3. 사무국 직원(Clerk and Clerk Office Staffs) ····· 22
4. 법무 직원(Court Legal Staffs) ····· 25
5. 형사 절차 관련 직원(Criminal Justice Careers) ····· 27
6. 그 밖의 재판참여 직원 ····· 28
Ⅱ. 법원공무원의 직제 ····· 28
1. 개설 ····· 28
2. 연방공무원 직제 ····· 29
3. 법원공무원 직제 ····· 34
Ⅲ. 시사점 ····· 41
1.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 ····· 41
2. 승진에 있어 직위분류제에 따른 제한 ····· 41
제2절 일본 ····· 42
Ⅰ.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 ····· 42
1. 재판소직원의 종류와 역할 ····· 42
2.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법무성 직원 ····· 57
Ⅱ. 시사점 ····· 60
1. 재판소 서기관과 재판소 사무관의 특이한 구조 ····· 60
2. 인사체계의 개방성 ····· 60
제3절 독일 ····· 61
Ⅰ.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 ····· 61

1. 개설 ····· 61
2. 법원사무국의 문서관 ····· 62
3. 법원전문직 공무원(문서관) 및 법원전문계약직원 ····· 67
4. 법원보안직 공무원 및 법원보조직원 ····· 74
Ⅱ. 시사점 ····· 78
1.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의 급여 차이가 없음 ····· 78
2. 교육과정의 충실화 ····· 78
3. 전직 가능성 ····· 79
제4절 프랑스 ····· 80
Ⅰ.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 ····· 80
1. 개설 ····· 80
2. 서기 ····· 81
3. 행정직·기술직 공무원 ····· 88
Ⅱ. 시사점 ····· 91
1. 사법직에 속하는 서기와 일반직 공무원 분리 ····· 91
2. 임용시험의 2원화 ····· 92

제4장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분석 ····· 93

제1절 개관 ····· 95
제2절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무분석 ····· 96
Ⅰ. 법원 일반직공무원 인사 현황 ····· 96
1.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및 명칭 ····· 96
2.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및 다른 기관과 비교 ····· 98
3. 직급 간 승진 소요 연수(법원사무 및 등기사무 직렬) ····· 100
Ⅱ.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에 대한 법률적 분석 ····· 100
1. 개설 ····· 100
2. 직위별 업무 및 법적 근거 ····· 101
3. 소결 ····· 107
Ⅲ.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의 실증적 조사 및 분석 ····· 108
1. 개설 ····· 108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무분석 ····· 109
3. 서울회생법원의 직무분석 ····· 112
Ⅳ.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무분석 결과 ····· 113
1. 9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의 직무 유사성 ····· 113
2.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및 5급 공무원의 직무 유사성 ····· 114
3. 7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혼용 보직의 존재) ····· 114
4. 4급 공무원 직무의 특성 ····· 114
5. 3급 이상 공무원 직무의 특성 ····· 115

제3절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직렬구조의 문제점 ····· 116
Ⅰ. 직급체계의 합리성 및 탄력성 부족 ····· 116
1. 직급과 직위의 불일치 ····· 116
2. 비개방형 법원조직의 한계 ····· 116
Ⅱ. 성과 관리 및 승진 문제 ····· 117
1. 성과 관리의 어려움 ····· 117
2. 승진 적체 ····· 118
Ⅲ.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직급·직렬구조 실현의 한계 ····· 119
1. 전문성 강화 필요 ····· 119
2.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 120

제5장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의 개편 방안 ····· 121

제1절 개관 ····· 123
제2절 9단계 직급을 확대 및 축소하는 방안 ····· 124
Ⅰ. 직급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 124
1. 개설 ····· 124
2. 4단계로 축소하는 모형 ····· 124
3. 장·단점 비교 ····· 125
Ⅱ. 중간 직급을 확대하는 방안 ····· 127
1. 개설 ····· 127
2. 직급 간 승진 소요 연수 ····· 127
3. 중간 직급 확대 모형 ····· 128
4. 장·단점 비교 ····· 128
Ⅲ. 9단계 직급구조를 8단계 직급구조로 축소하는 방안 ····· 129
1. 개설 ····· 129
2. 입법부 사례 ····· 130
3. 법원 일반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및 경쟁률 비교 ···· 133
4. 장·단점 비교 ····· 134
Ⅳ. 검토 ····· 136
제3절 상위 직급 정원을 늘리는 방안 ····· 137
Ⅰ. 서언 ····· 137
Ⅱ. 상위 직급 정원 확대 필요성 ····· 137
1. 다른 헌법기관(입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의
상위 직급 비교 ····· 137
2. 조직관리 차원에서 적정 관리자의 수 ····· 140
Ⅲ. 해결 방안 ····· 140
1. 개설 ····· 140
2. 사법보좌관의 업무 확대 및 수석사법보좌관 정원 확대 ····· 141
3. 조정위원에 법원 일반직공무원 보직부여 ····· 145

4. 법원조사관 제도의 법제화 및 직급 상향 ····· 153
Ⅳ. 검토 ····· 165
제4절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유연성 확대 방안 ····· 165
Ⅰ. 서언 ····· 165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의 및 도입 배경 ····· 166
1.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의 ····· 166
2.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배경 ····· 167
Ⅲ. 고위공무원단 제도 주요 내용 ····· 168
1. 제도 개설 ····· 168
2. 제도 주요 내용 ····· 170
Ⅳ. 법원에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여부 ····· 175
1. 개설 ····· 175
2. 법원에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측면 ····· 176
3. 법원에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시 부정적인 측면 ····· 179
4. 소결 ····· 180
Ⅴ. 고위공무원단 제도 대체 방안 ····· 181
1. 개설 ····· 181
2. 개방형 직위 운영 방안 ····· 181
3.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 ····· 184

제6장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렬구조의 개편 방안 ····· 187

제1절 개관 ····· 189
제2절 법원사무 직렬과 등기사무 직렬의 통합 논의 ····· 190
Ⅰ. 등기사무 직렬의 신설 배경 ····· 190
1. 전문화 제안 배경 ····· 191
2. 등기관의 전문성이 낮은 원인 제시 ····· 191
3. 등기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 ····· 191
Ⅱ. 등기사무 직렬의 도입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 192
1. 등기사무 직렬의 신설 이후 성과 ····· 192
2. 등기사무 직렬의 분리 이후 문제점 ····· 193
Ⅲ. 등기국(과·소) 운영 현황 및 등기사무 직렬의 인사운영 개요 ····· 200
1. 등기국(과·소) 현황 및 인원 현황 ····· 200
2. 등기사무 직렬 인사운영 현황 ····· 201
Ⅳ. 행정부처 직렬 통합 사례 ····· 202
1. 개설 ····· 202
2. 교육행정 직렬과 일반행정 직렬 통합 ····· 203
3. 사회복지 직렬과 일반행정 직렬 통합 논의 ····· 205
Ⅴ. 양 직렬 통합 논의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인식 조사 ····· 208
1. 개설 ····· 208

2. 설문조사 개요 ····· 209
3. 설문조사 분석 ····· 211
4. 법원구성원 심층 인터뷰 ····· 221
Ⅵ. 양 직렬 통합 논의 시 고려할 요소 ····· 227
1. 등기사무 직렬의 전문성 확대 및 강화 ····· 227
2. 등기관 인력 부족 해결 ····· 229
3. 직렬 분리로 인해 분리된 조직 문화 통합 ····· 229
4. 법무사 자격 부여 문제 ····· 230
5. 국민들을 비롯한 사법서비스 수요자 측면 ····· 232
6. 법원사무 직렬 업무의 전문성 강화 ····· 232
7. 등기특별회계 운영 및 연장 ····· 234
Ⅶ. 해결 방안 ····· 236
1. 개설 ····· 236
2. 양 직렬 통합 안 ····· 237
3. 양 직렬 통합 및 직류 유지 안 ····· 239
4. 전직제도 활용 안 ····· 242
5. 양 직렬 간 업무 범위 확대 안 ····· 247
6. 양 직렬 통합 이후 보직관리 방식 개선 안 ····· 250
7. 소결 ····· 253
제3절 소수 직렬의 통합 논의 및 제 문제 ····· 254
Ⅰ. 서언 ····· 254
Ⅱ. 소수 직렬의 정원 및 현원 ····· 255
Ⅲ. 관리 직렬 직무영역 확대 방안 ····· 255
1. 개설 ····· 255
2. 관리 직렬 현황 ····· 256
3. 해결 방안 ····· 256
4. 향후 추진 과제 ····· 259
Ⅳ. 병기 직렬·환경 직렬의 문제 ····· 260
1. 현행 병기 직렬·환경 직렬의 담당 업무 ····· 261
2. 유사 직렬과 통합 논의 ····· 261
Ⅴ. 비상대비 직렬(전문경력관)과 보안관리 직렬의 운영 문제 ····· 262
1. 개설 ····· 262
2. 근거 법률 및 운영체계 ····· 262
3. 유관기관 운영 현황 ····· 263
4. 해결 방안 ····· 263
Ⅵ. 기술 직군의 상위 직급 통합 문제 ····· 264
1. 개설 ····· 264
2. 타 행정부처 사례 ····· 264
3. 해결 방안 ····· 265
Ⅶ. 소수 특정 직렬의 봉급 체계 문제 ····· 265

1. 개설 ····· 265
2. 법원 일반직공무원 급여 체계의 차이 ····· 265
3. 문제점 ····· 266
4. 해결 방안 ····· 267

제7장 결론 ····· 269

118.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Judicial Standards for Hate Speech

연구총서 2020-18

연구책임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0년 12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혐오 표현 일반 ····· 7
제1절 개관 ····· 9
제2절 혐오 표현의 개념 ····· 10
Ⅰ. 규제론적 담론에서의 개념: '혐오 표현'의 외연 설정 ····· 10
1. '혐오'와 '표현'의 개념 ····· 10
가. 혐오의 개념 ····· 10
나. 표현의 개념 ····· 13

2. ‘혐오 표현’의 개념 ····· 14
Ⅱ. 실정법상 규제 대상으로서 개념 ····· 15
Ⅲ. 소결 ····· 17
제3절 혐오 범죄와의 차이점 ····· 18

제3장 혐오 표현 규제의 이론적 기초 ····· 21

제1절 혐오 표현의 해악성 ····· 23
제2절 혐오 표현 규제 찬반론의 논거 ····· 24
Ⅰ. 자기지배 저해 ····· 24
Ⅱ. 진리 발견 방해 ····· 26
Ⅲ. 민주적 토론의 장 왜곡 ····· 27
Ⅳ. 자기실현 저해 ····· 29
제3절 소결 ····· 31

제4장 해외 혐오 표현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 33

제1절 개관 ····· 35
제2절 국제·지역규범 ····· 35
Ⅰ. 국제규범 ····· 35
1. 개관 ····· 35
2.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 36
가. 세계인권선언 ····· 36
나. 자유권규약 ····· 37
다. 인종차별철폐협약 ····· 40
라. 제노사이드방지협약 및 로마규정 ····· 43
3. 소결 ····· 44
Ⅱ. 지역규범: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 46
1. 개관 ····· 46
2. 관련 규정 ····· 46
가. 혐오 표현에 관한 회원국 각료위원회 권고 97 (20) ····· 46
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범한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협약의 추가의정서 ····· 48
다. 인종주의 및 불관용에 대응하는 유럽위원회의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일반 정책 권고 제15호 ····· 49
3. 관련 판례 및 판단 기준 ····· 52
가. 일반론 ····· 52
나.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적용 사례 ····· 54
다. 유럽인권협약 제17조 적용 사례 ····· 55
4. 소결 ····· 58

제3절 미국 ····· 59
Ⅰ. 개관 ····· 59
Ⅱ.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 61
1. 위법행위의 선동 ····· 62
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 ····· 62
나. Brandenburg 기준 ····· 64
다. 평가 ····· 65
2. 도발적 언사 ····· 65
가. 내용에 근거한 차별 기준 ····· 65
나. 불명확성과 과도한 광범성 기준 ····· 69
다. 평가 ····· 71
3. 명예훼손적 표현 ····· 72
가. 집단 명예훼손: 보호되지 않는 표현? ····· 72
나. 공직자 명예훼손: 실제적 악의 기준 ····· 73
다. 평가 ····· 74
4. 위협적 표현 ····· 75
가. 위법행위의 선동과의 차이점 ····· 75
나. 진정한 위협 기준 ····· 75
다. 평가 ····· 77
Ⅲ. 소결 ····· 78
제4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 79
Ⅰ. 개관 ····· 79
Ⅱ.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 80
1. 공공질서법 ····· 80
가. 인종 혐오 ····· 80
나. 종교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 ····· 86
다. 두려움 혹은 폭력의 도발 ····· 91
라. 고의적 괴롭힘 혹은 불안, 고통 ····· 92
마. 괴롭힘 혹은 불안, 고통 ····· 94
2. 평등법 ····· 96
3. 기타 ····· 97
Ⅲ. 소결 ····· 98
제5절 캐나다 ····· 100
Ⅰ. 개관 ····· 100
Ⅱ.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 101
1. 형법 ····· 101
가. 제노사이드옹호죄 ····· 101
나. 공공연한 혐오 선동죄 ····· 102
다. 고의적 혐오 고취죄 ····· 102
라. 혐오선전물의 압수 및 폐기 ····· 104

2. 인권법 ····· 105
가. 혐오 메시지(2013년 폐지) ····· 106
나. 차별적 고시의 발행 등 ····· 111
다. 괴롭힘 ····· 112
3. 방송배포규칙 ····· 112
Ⅲ. 소결 ····· 113
제6절 독일 ····· 114
Ⅰ. 개관 ····· 114
Ⅱ.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 115
1. 기본법 ····· 115
2. 형법 ····· 115
가. 대중선동죄 ····· 115
나. 모욕죄 및 비방죄 ····· 128
3. 일반평등대우법 ····· 131
4. 소셜네트워크집행법 ····· 132
5. 최근 입법 ····· 135
Ⅲ. 소결 ····· 136
제7절 일본 ····· 137
Ⅰ. 개관 ····· 137
Ⅱ. 관련 규정 ····· 138
1. 형법 ····· 138
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38
나. 협박죄, 신용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140
다. 상해죄 ····· 141
라. 한계 ····· 141
2. 민법 ····· 142
가. 손해배상청구 ····· 142
나. 한계 ····· 142
3.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143
4.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 144
가. 제정 배경 ····· 144
나. 주요 내용 ····· 145
다. 평가 ····· 146
5. 조례 등 ····· 147
가. 오카야마시 전자게시판에 관한
유해정보의 기록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147
나. 돗토리현 인권침해의 구제 추진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147
다. 오사카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조례 ····· 148
라. 가와사키시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 152
Ⅲ. 관련 판례 및 판단 기준 ····· 155

1. 2002년 아이누族 역사자료집사건 ····· 155
2. 2009년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 ····· 156
가. 형사사건 ····· 156
나. 민사사건 ····· 158
3. 2011년 수평사박물관 피차별부락사건 ····· 162
4. 2016년 재일조선인 프리라이터사건 ····· 162
5.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 이후의 판례 ····· 163
Ⅳ. 소결 ····· 165

제5장 우리나라의 혐오 표현 관련 규정 및 판결 분석현황 ····· 167

제1절 관련 규정 ····· 169
Ⅰ. 내용 ····· 169
1. 헌법 ····· 169
2. 법률 ····· 171
가. 형법 ····· 171
나. 민법 ····· 173
다. 공직선거법 ····· 175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 176
마. 남녀고용평등법 ····· 177
바. 장애인차별금지법 ····· 177
사. 방송법 ····· 179
아. 정보통신망법 ····· 180
자. 언론중재법 ····· 183
차. 옥외광고물법 ····· 184
Ⅱ. 개선논의 ····· 186
1.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혐오 표현 규제법안 ····· 186
2.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혐오 표현 형사 처벌 법안 ····· 187
3.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4. 김재연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 188
5.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시안 ····· 188
Ⅲ. 소결 ····· 189

제2절 관련 판례 및 분석 ····· 190
Ⅰ. 형사사건 ····· 190
1. 관련 판례 ····· 190
가. 여성 혐오 표현 ····· 190
나. 장애인 혐오 표현 ····· 197
다. 특정 지역 혐오 표현 ····· 198
라. 외국인 혐오 ····· 201
2. 분석 ····· 202
가. 모욕죄를 통한 혐오 표현 규제 ····· 202

나.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혐오 표현 규제 ····· 204
다. 집단 모욕죄(명예훼손죄) 판단 기준: 피해자 특정성의 문제 ····· 206
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 지역 혐오 표현 판단 기준 ····· 208
Ⅱ. 민사사건 ····· 209
1. 공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 209
가. 관련 판례 ····· 209
나. 분석 ····· 211
2. 대항 표현 ····· 212
가. 관련 판례 ····· 212
나. 분석 ····· 216
3. 혐오 표현이 연관될 개연성이 높은 집회 및 시위 ····· 218
가. 관련 판례 ····· 218
나. 분석 ····· 219
4.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 220
가. 관련 판례 ····· 220
나. 분석 ····· 223
Ⅲ. 행정사건 ····· 224
1. 혐오 표현에 근거한 징계처분의 취소 ····· 224
가. 관련 판례 ····· 224
나. 분석 ····· 226
2. 혐오 표현 금지 조례의 무효확인 ····· 227
가. 관련 판례 ····· 227
나. 분석 ····· 229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31

제1절 사법적 해결을 위한 시사점 ····· 233
Ⅰ. 재판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제언 ····· 233
1.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 ····· 233

2. 재판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판단 요소 ····· 237
가. 기제: 투사적 혐오 ····· 237
나. 발화자: 다수자(주류) ····· 238
다. 표적대상: 소수자(비주류) ····· 238
라. 맥락 ····· 240
마. 의도 ····· 241
바. 내용 ····· 242
사. 표현행위의 파급 정도 ····· 243
아. 표현행위의 장소 ····· 243
자. 임박성을 포함한 위해의 가능성 ····· 244
차.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244

제2절 입법적 해결을 위한 시사점 ····· 245
Ⅰ. 혐오 표현 규제법 마련의 필요성 ····· 245
Ⅱ. 혐오 표현 규제법 마련을 위한 제언 ····· 246
1. 형사적 규제 ····· 246
2. 민사적 규제 ····· 249
3. 행정적 규제 ····· 249

제7장 결론 ····· 251

1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Research on Ways to Improv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연구총서 2020-19

연구책임자 : 정 호 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조 호 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 용 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0년 3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등기업무 현황 ····· 7
제1절 등기업무절차 개관 ····· 9
Ⅰ. 등기신청의 원칙 ····· 9
Ⅱ. 등기신청 ····· 9
1. 등기신청인 ····· 9
2. 방문신청 ····· 10
3. 전자신청 ····· 10

Ⅲ. 등기신청서의 접수 및 배당 ····· 10
1. 신청의 접수 ····· 10
2. 등기신청사건의 배당 ····· 11
가. 균등 배당 ····· 11
나. 전담등기관의 지정 ····· 12
Ⅳ. 기입 ····· 12
1. 의의와 순서 ····· 12
2. 실무상 처리 ····· 13
Ⅴ. 조사 및 교합 ····· 13
1. 실무상 조사 및 교합 방식 ····· 13
2. 등기관의 심사 ····· 14
가. 심사권한에 관한 논의 ····· 14
나. 형식적 심사의 범위 ····· 15
다. 심사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 16
3. 처리시간 ····· 16
가. 등기의 신속성 ····· 16
나. 처리시간에 관한 규정 ····· 16
Ⅵ. 보정, 취하, 각하 ····· 17
1. 보정 ····· 17
2. 취하 ····· 18
3. 각하 ····· 18
가. 각하사유의 법적 성질 ····· 18
나. 구체적 각하사유 ····· 19
다. 각하 절차 ····· 22
제2절 등기사건 현황 ····· 23
Ⅰ. 서론 ····· 23
Ⅱ. 등기사건 현황 ····· 23
1. 전국 등기관 및 등기소 운영 현황 ····· 23
2. 일반 현황 ····· 25
가. 타 비송사건과의 비교 ····· 25
나. 신청건수 ····· 26
다. 각하 건수 ····· 30
Ⅲ. 등기 사건 처리시간 현황 ····· 31
1. 처리시간 분석 ····· 31
2. 등기관 1인당 담당 건수 ····· 33

제3장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현황과 분석 ····· 35

제1절 이의절차 개관 ····· 37
Ⅰ. 서론 ····· 37
Ⅱ.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 37

1. 이의신청의 대상 ····· 37
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37
나.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당' ····· 38
2. 이의신청인 ····· 39
Ⅲ.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39
1. 이의신청 방법 ····· 39
2. 이의신청기간과 권리보호 ····· 40
3.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40
4. 이의신청과 집행부정지 ····· 40
Ⅳ. 이의에 대한 조치 ····· 41
1. 등기관의 조치 ····· 41
가. 각하결정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41
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42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 43
가. 심리의 방식 ····· 43
나. 재판 전의 부기등기명령 등 ····· 44
다. 이의신청을 각하, 기각 또는 취하한 경우 ····· 46
라.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 46
3.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 47
가. 등기절차 ····· 47
나.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47
4. 관할 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와 부기등기의 말소 ····· 48
가. 관할 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 ····· 48
나. 부기등기나 가등기의 말소 ····· 48
Ⅴ.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49
1.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한 경우 ····· 49
2.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 49
가.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경우 ····· 49
나.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경우 ····· 50
제2절 이의사건 현황과 이의사유의 유형화 ····· 50
Ⅰ. 이의사건 담당 법관 현황과 이의사건의 통계 ····· 50
1. 서론 ····· 50
2. 담당 법관 현황 ····· 51
3. 이의사건 통계적 분석 ····· 52
가. 이의사건 수 ····· 52
나. 이의사건 처리기간 ····· 53
다. 이의사건 각하, 기각, 인용 비율 ····· 54
Ⅱ. 이의사유의 유형화 ····· 55
1. 이의사유 분석 및 유형화의 필요성 등 ····· 55
가. 이의사유 분석 및 유형화의 필요성 ····· 55

나. 분석의 자료 : 법원의 결정서를 통한 이의사유의 분석 ····· 55
다. 분석 대상 등기의 분류 ····· 56
2. 이의사유 분석 결과의 정리 ····· 57
가. 부동산등기에 대한 이의사유의 분석 ····· 57
나. 법인등기에 대한 이의사유의 분석 ····· 69

제4장 해외 국가의 주요 등기제도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73

제1절 독일 ····· 75
Ⅰ. 개관 ····· 75
Ⅱ. 부동산등기에서 등기관의 처분 ····· 75
1. 사법보좌관 ····· 75
2. 등기관 ····· 76
3. 등기의 신청 ····· 78
4. 등기관의 심사와 처분 ····· 79
Ⅲ.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80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 80
2. 항고의 절차 및 효력 ····· 82
가. 항고의 개념 ····· 82
나. 항고권자 ····· 83
다. 항고절차 ····· 84
라. 항고의 효력 ····· 85
3. 이의등기제도 ····· 86
4. 소결 ····· 86
제2절 오스트리아 ····· 87
Ⅰ. 오스트리아 등기 제도 ····· 87
1. 부동산등기 제도 ····· 87
가. 등기제도의 연혁과 등기관련 정보의 전산화 현황 ····· 87
나. 등기부의 구성·열람·관리 ····· 88
다. 등기법의 기본원칙 ····· 89
라. 사법보좌관의 등기업무 ····· 90
마. 등기 절차 ····· 91
바. 등기부 예시 ····· 92
2. 법인등기 제도 ····· 95
가. 연혁과 현황 ····· 95
나. 법인등기부의 구성 및 공시 ····· 98
다. 사법보좌관의 등기업무 ····· 98
라. 법인등기절차 ····· 99
마. 등기부(Hauptbuch) 예시 : Red Bull 유한회사 ····· 99
3. 선박등기 사건 ····· 102
Ⅱ.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102

1. 부동산등기 ····· 102
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토지등기절차 제반 업무 ····· 102
나. 토지등기부 작성·보완 업무와 이의신청 ····· 103
다. 토지등기 사건에 대한 항소와 상고 ····· 105
2. 회사등기 ····· 106
가. 회사등기사건의 처분권자 ····· 106
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항소와 상고 ····· 109
3. 소결 ····· 110
제3절 일본 ····· 111
Ⅰ. 개관 ····· 111
Ⅱ. 부동산등기절차 ····· 112
1. 개요 ····· 112
2. 등기절차 ····· 113
가. 운영주체 ····· 113
나. 등기의 신청 ····· 115
다. 등기식별정보 및 등기원인정보 ····· 116
라. 등기의 심사 ····· 117
Ⅲ. 상업등기절차 ····· 121
1. 개요 ····· 121
2. 등기절차 ····· 122
가. 운영주체 ····· 122
나. 등기의 신청 ····· 122
다. 등기의 심사 ····· 123
Ⅳ. 부동산 및 상업등기의 이의절차 ····· 126
1. 개요 ····· 126
2. 이의절차 ····· 126
3. 소결 ····· 134
제4절 시사점 ····· 135

제5장 현행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7

제1절 개관 ····· 139
제2절 이의신청 이전의 절차 ····· 140
Ⅰ. 서론 ····· 140
Ⅱ. 이의신청 이전의 처리 ····· 140
1. 의의 ····· 140
2. 각하결정으로 인한 제문제 ····· 141
3. 개선 방안 ····· 143
가. 등기관 교육 ····· 143
나. 등기지식·정보의 지원 기반 확대 ····· 146

다. 전담 등기관 제도의 확대 또는 등기관회의(협의체) 구성 ····· 157
라. 등기관의 조사·교합 업무의 축소와 민원서비스 확대 ····· 158
마. 질의회신제도 이용 ····· 160
바. 공증의 활성화 ····· 163
제3절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 165
Ⅰ. 의견서 송부까지의 절차 ····· 165
1.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65
2. 의견서 작성 및 송부 ····· 166
3.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 168
4.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 171
Ⅱ. 의견서 송부 이후의 이의절차 ····· 172
1. 개관 ····· 172
2. 이의절차 기간 등의 분석 ····· 172
3. 이의절차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 ····· 177
4. 개선 방안 ····· 181
가. 서면인터뷰 정리 ····· 181
나. 법관 인원 확충과 전담 법관(재판부) 설치 및 인식 변화 ····· 182
다. 의무적 처리기간의 법정화 ····· 186
라. 기타 업무부담 경감 방안 ····· 187
마.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제도의 확대 여부 ····· 188
바. 시스템 개선 ····· 189
제4절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방안 ····· 195
Ⅰ. 필요성 ····· 195
1. 의의 ····· 195
가. 사법보좌관제도의 의의 ····· 195
나. 본 논의의 의의 ····· 196
2. 설문조사 결과 ····· 197
3. 이론 및 실무 ····· 198
Ⅱ. 등기 전담 사법보좌관제도의 설치 및 운영 ····· 202
1. 개설 ····· 202
2. 등기사무직렬 등의 전문성 활용 ····· 202
가. 등기사무직렬의 성과 ····· 202
나. 등기사무직렬의 전문성 활용 ····· 203
3. 사법보좌관 교육 ····· 203
가.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 ····· 203
나. 사법보좌관 직무수행 연수 ····· 205
다. 개선안 ····· 206
4. 설치 및 운영 ····· 206
가. 설치 ····· 206
나. 운영 ····· 207

5. 사법보좌관의 업무추가에 관한 법규정 검토와 개정안 ····· 208
가. 사법보좌관제도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정 ····· 208
나. 사법보좌관의 업무와 그에 관한 규정 ····· 208
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 211
라. 개정안 ····· 212
6. 관련문제 ····· 213
가. 공탁에서의 이의신청 ····· 213
나. 종합법률정보 개선 ····· 215

제6장 결론 ····· 217

120.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Improving the Procedure for Final Appeal -Focusing on Recommendations to Adopt Systems of Submitting Written Statements of Grounds for Final Appeals to the Lower Court and Restricting Reappeals to the Supreme Court-

연구총서 2020-20

연구책임자 : 강 영 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 용 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3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상고심 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 ····· 9

제1절 상고제도의 의의와 목적 ····· 11
Ⅰ. 상고제도의 의의 ····· 11
Ⅱ. 상고제도의 목적 ····· 11
제2절 상고심 재판의 현황 ····· 12
Ⅰ. 들어가며 ····· 12
Ⅱ. 통계의 측면에서 본 상고심 재판의 현황 ····· 13
1. 들어가며 ····· 13
2. 구체적 통계 ····· 13
가. 최근 약 30년 동안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처리 추이 ····· 13
나. 최근 5년 동안 민·형사 본안사건 접수·처리건수 통계 및 처리결과 상세내역 ····· 14
다. 최근 5년 동안 민·형사 재항고사건 접수·처리 통계 등 ····· 18
3. 상고심 재판의 통계에서 알 수 있는 점 ····· 22
가. 과다한 수의 사건 접수 ····· 22
나. 본안사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형식적 판단 ····· 23
다. 재항고에서의 문제점 ····· 23
Ⅲ. 재판절차의 측면에서 본 상고심 재판의 현황 ····· 24
1. 들어가며 ····· 24
2. 민사 본안사건 진행절차 ····· 24
가. 개설 ····· 24
나. 원심법원에의 상고장 제출 ····· 25
다. 원심법원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25
라. 소송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 26
마. 상고법원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등 ····· 26
바. 대법원에의 상고이유서 제출 ····· 27
사.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28
아. 본안심리 ····· 30
자. 상고심의 종료 ····· 31
3. 형사 본안사건 진행절차 ····· 32
가. 개설 ····· 32
나. 상고심의 종료 ····· 33
4. 민사 재항고사건 진행절차 ····· 35
가. 개설 ····· 35
나. 항고의 적용범위 ····· 36
다. 민사 재항고사건의 주요 유형 ····· 37
5. 형사 재항고사건 진행절차 ····· 38
가. 개설 ····· 38
나. 항고의 적용범위 ····· 38
다. 형사 재항고사건의 주요 유형 ····· 41
6. 나오며 ····· 42

제3절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향 ····· 42
Ⅰ.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도입방안 ····· 42
1. 문제의식 ····· 42
2. 개선방안의 방향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방안 ····· 44
Ⅱ.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방안 ····· 45
1. 문제의식 ····· 45
2. 개선방안의 방향 -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방안 ····· 46

제3장 비교법적 연구 ····· 49

제1절 서론 ····· 51
제2절 독일 ····· 51
Ⅰ. 들어가며 ····· 51
Ⅱ. 독일 법원의 종류와 심급구조 ····· 52
1. 개관 ····· 52
2. 독일 형사재판의 심급구조 ····· 53
가. 구법원(AG), 지방법원(LG), 고등법원(OLG), 연방일반법원(BGH) ····· 54
나. 판결에 대한 상소 흐름도 ····· 55
Ⅲ. 독일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 56
1. 제도의 구체적 내용 ····· 56
가. 상고의 제기 ····· 56
나. 상고이유서의 제출 ····· 57
다. 상고이유서 부제출시 등의 효과 ····· 60
라. 원심법원의 상고이유서 송달 ····· 61
마.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62
바. 상고법원으로의 기록송부 ····· 62
2. 정리 ····· 62
Ⅳ. 독일에서의 최초의 항고·재항고 제도 ····· 63
1. 들어가며 ····· 63
2. 형사재판절차 ····· 63
가. 최초의 항고 ····· 63
나. 재항고 ····· 65
3. 민사재판절차 ····· 67
가. 서설 ····· 67
나. 즉시항고 ····· 67
다. 재항고(법률항고) ····· 69
제3절 일본 ····· 74
Ⅰ. 들어가며 ····· 74
Ⅱ. 일본 재판소의 종류와 심급구조, 상고제한제도 개관 ····· 74
1. 일본 재판소의 종류 ····· 74

2. 심급구조 ····· 75
3. 상고제한제도 ····· 75
가. 민사의 경우 ····· 75
나. 형사의 경우 ····· 77
Ⅲ. 상고이유서 등의 원재판소 제출제도 ····· 78
1. 민사의 경우 ····· 78
가. 서설 ····· 78
나. 상고제기 내지 상고수리신청 ····· 78
다. 상고이유서 등의 제출 ····· 78
라. 원재판장 또는 원재판소의 상고 등의 각하 ····· 82
마. 상고재판소로의 사건 송부 ····· 85
2. 형사의 경우 ····· 85
가. 서설 ····· 85
나. 상고수리신청 ····· 86
다. 상고수리신청이유서의 제출 ····· 86
라. 원재판소의 상고수리신청 기각결정 ····· 87
마. 상고재판소로의 상고수리신청서 및 이유서 송부 등 ····· 87
Ⅳ. 일본에서의 최초의 항고·재항고 제도 ····· 88
1. 들어가며 ····· 88
2. 형사재판절차 ····· 88
가. 최초의 항고 ····· 88
나. 재항고 ····· 90
3. 민사재판절차 ····· 92
가. 최초의 항고 ····· 92
나. 재항고 ····· 93
제4절 그 밖의 주요 국가들 ····· 97
Ⅰ. 미국 ····· 97
1. 미국의 법원조직 개관 ····· 97
가.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이원적 구조 ····· 97
나. 연방법원의 심급 체계 ····· 98
다. 주법원의 심급 체계 ····· 100
2. 미국 연방대법원에의 구체적 상고절차 ····· 101
가. 개설 ····· 101
나. 상고허가 신청서의 제출 ····· 101
다.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서면공방 ····· 105
라. 사건의 배당 ····· 105
마. 상고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 105
바. 공동 소송기록(joint appendix)의 제출 ····· 111
사. 구술변론 전 상고이유서 등의 서면 공방 ····· 111
아. 구술변론(oral argument) ····· 112

Ⅱ. 영국 ····· 113
1. 영국 법원조직 개관 ····· 113
2. 영국 대법원에의 구체적 상고절차 ····· 114
가. 개설 ····· 114
나. 상고허가 신청서의 제출 ····· 115
다. 피신청인의 이의서 제출 ····· 116
라. 상고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 117
마. 사건요약서와 소송기록의 제출 ····· 119
바. 구술변론기일의 지정과 서면 공방 ····· 119
사. 구술변론 ····· 120
Ⅲ. 프랑스 ····· 120
1. 프랑스의 사법제도 ····· 120
가. 개관 ····· 120
나. 일반 사법법원 체계 ····· 121
2. 프랑스 파기원에의 상고절차 ····· 122
가. 상고의 제기(déclaration de pourvoi) ····· 122
나. 상고이유서의 제출 ····· 124
다. 배당 및 주심의 사건 검토 ····· 124
라. 본안 심리 및 재판 ····· 124
제5절 소결 ····· 125

제4장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도입방안 ····· 127

제1절 서론 ····· 129
제2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기대와 우려 ····· 130
Ⅰ.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점 ····· 130
1. 상고심의 본안심리 집중 ····· 130
2. 상고심법상 심리속행사유 존부의 실질 심리기간 증가 ····· 132
3. 재항고사건에서 재도의 고안 활성화 ····· 133
4. 부당한 상고의 조기종결 ····· 134
Ⅱ.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점 ····· 134
1. 원심법원이 상고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 ····· 134
2. 상고이유서 준비가능기간 감소 우려 ····· 136
3. 형사본안 구속사건에서 대법원의 실질 심리기간 감소 우려 ····· 138
제3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구체적 내용 ····· 139
Ⅰ. 들어가며 ····· 139
Ⅱ.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 140
1. 개설 ····· 140
2. 비교법적 연구결과 ····· 140
3. 구체적 검토 ····· 141

가. 상고장 제출일을 기산일로 하는 안: 부정적 ····· 141
나. 판결문 송달일을 기산일로 하는 안: 부정적 ····· 141
다. 가칭 상고제기통지서 송달일을 기산일로 하는 안: 부정적 ····· 142
라. 상고제기기간 만료일을 기산일로 하는 안: 긍정적 ····· 144
Ⅲ.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144
1. 개설 ····· 144
2. 비교법적 연구결과 ····· 145
가. 독일의 경우 ····· 145
나. 일본의 경우 ····· 145
다. 그 밖의 경우 ····· 146
3. 구체적 검토 ····· 147
가. 민사상고의 경우 ····· 147
나. 형사상고의 경우 ····· 149
4. 정리 ····· 150
Ⅳ. 원심법원이 할 수 있는 본안 전 심사의 범위, 형식 및 방법 ····· 150
1. 개설 ····· 150
2. 상고이유서 기한 내 제출 여부 심사 ····· 151
가. 원심법원의 상고이유서 기한 내 제출 여부 심사 가부(可否) 등 ····· 151
나. 원심법원 재판의 형식 ····· 154
다. 원심법원의 상고각하결정에 대한 대법원에의 재항고 인정 여부 ····· 155
3. 상고이유의 적법 심사 ····· 158
가. 서설 ····· 158
나. 법령이 정하고 있는 상고이유들 ····· 158
다. 비교법적 연구결과 ····· 159
라. 검토 ····· 160
4. 민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심법상 심리속행사유 존부 심사 ····· 177
Ⅴ. 원심법원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정명령 등의 가능 여부와 범위 ····· 178
1. 개설 ····· 178
2. 비교법적 연구결과 ····· 178
3. 구체적 검토 ····· 179
가. 원심법원의 상고이유서 보정명령 등의 가부 ····· 179
나. 민사에서의 상고이유서 보정명령 ····· 180
다. 보정명령 불이행시 재판의 가부 및 형식 ····· 182
라. 대법원에의 재항고 인정 여부 ····· 183
Ⅵ. 원심법원이 제출받는 소송서류의 범위 ····· 183
1. 개설 ····· 183
2. 비교법적 연구결과 ····· 184
3. 구체적 검토 ····· 184
Ⅶ. 원심법원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 185
1. 개설 ····· 185

2. 비교법적 연구결과 ····· 185
3. 구체적 검토 ····· 185
Ⅷ. 상고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 제도 유지 여부 ····· 186
제4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방안이 도입될 경우의 재판절차 ····· 187
Ⅰ. 들어가며 ····· 187
Ⅱ. 민사 본안사건 ····· 187
1. 원심법원에의 상고장 제출 ····· 187
2.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187
3. 원심법원에의 상고이유서 제출 ····· 188
4. 원심법원의 본안 전 심사 ····· 188
가.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대한 심사 ····· 188
나. 상고이유 적법 심사 ····· 188
5. 대법원으로 소송기록 송부 ····· 189
6. 대법원의 상고요건 심사 ····· 189
7. 상고이유서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등 ····· 189
8.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190
9. 본안심리 및 상고심의 종료 ····· 190
10. 정리 ····· 190
Ⅲ. 형사 본안사건 ····· 191
1. 개설 ····· 191
2. 원심법원에의 상고장 제출 ····· 191
3. 원심법원의 상고장 심사 ····· 191
4. 원심법원에의 상고이유서 제출 ····· 192
5. 원심법원의 본안 전 심사 ····· 192
가.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대한 심사 ····· 192
나. 상고이유 적법 심사 ····· 192
6. 대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 193
7. 대법원의 상고요건 심사 ····· 193
8. 대법원의 상고이유 적법 심사 ····· 193
9. 상고이유서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등 ····· 193
10. 본안심리 및 상고심의 종료 ····· 194
11. 정리 ····· 194
제5절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 195
Ⅰ. 들어가며 ····· 195
Ⅱ. 민사소송법령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 195
1. 민사소송법 ····· 195
2. 소액사건심판법 ····· 197
3. 민사소송규칙 ····· 197
Ⅲ. 형사소송법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 198

제5장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방안 ····· 201

제1절 서론 ····· 203

제2절 재항고 제한제도 방안의 구체적 내용 ····· 204

Ⅰ. 재항고 제한제도의 여러 가능성 중의 선택 ····· 204

1. 들어가며 ····· 204

2. 구체적 검토 ····· 204

가. 재항고 금지제도 ····· 204

나. 재항고 재심사제도 또는 재항고 허가제도 ····· 205

Ⅱ. 재항고 재심사제도(제1안) ····· 210

1. 들어가며 ····· 210

2. 형사 재항고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 등의 규정 관련 문제 211

가. 문제의 제기

– 형사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 등 규정의 필요성 … 211

나. 구체적 검토 ····· 211

3. '재항고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원심법원이 내리는 재판 ····· 212

4. 원심법원의 의미 ····· 213

5. 재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구체적 불복 절차 ····· 214

6. 나오며 ····· 215

Ⅲ. 재항고 허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제2안) ····· 215

1. 들어가며 ····· 215

2. 재항고 허가의 기준 ····· 216

가. 비교법적 연구 ····· 216

나. 구체적 검토 ····· 217

3. 재항고 허가 판단 법원 ····· 217

가. 비교법적 연구 ····· 217

나. 구체적 검토 ····· 218

4. 재항고 허가를 구하는 서면의 형식과 그 제출법원 ····· 218

가. 비교법적 연구 ····· 218

나. 구체적 검토 ····· 219

5. 재항고 허가신청 이유서 제출의무 관련 문제 ····· 219

6. 재항고 허가 여부 판단의 방식 내지 형식 ····· 220

7. 대법원에 재항고 허가신청서와 함께 송부될 서류의 범위 ····· 220

8. 상고심법상 민사 재항고에의 준용규정 유지 여부 ····· 221

9. 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와의 관계 ····· 222

Ⅳ.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항고사건 진행절차 ····· 223

1. 재항고 재심사제도가 도입될 경우(제1안) ····· 223

2. 재항고 허가제도가 도입될 경우(제2안) ····· 224

제3절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 225

Ⅰ. 들어가며 ····· 225

Ⅱ. 민사소송법령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 225
1. 민사소송법 ····· 225
가. 재항고 재심사제도 도입의 경우(제1안) ····· 225
나. 재항고 허가제도 도입의 경우(제2안) ····· 226
2. 상고심법 ····· 228
Ⅲ. 형사소송법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 228
1. 재항고 재심사제도 도입의 경우(제1안) ····· 228
2. 재항고 허가제도 도입의 경우(제2안) ····· 230

제6장 결론 ····· 233

12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Post-Qualification Experience for Judicial Appointments in South Korea

연구총서 2021-01

연구책임자 :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통계분석 : 박재후(옥스퍼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021년 2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5

제2장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 논의의 필요성 ····· 7

제1절 법관 임용현황 ····· 9
Ⅰ.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전후의 법관 임용현황 비교 ····· 9
Ⅱ. 법조일원화 이후 신규 임용 법관 수 감소의 원인 ····· 11
1. 저조한 법관직 지원 경쟁률 ····· 11
2.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와의 법관직 지원 경쟁률 비교 ····· 11
3. 현저히 낮은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직 지원율 ····· 13
4. 최종 임용 법관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비율의 저조 ····· 15
5. 소결 ····· 16

제2절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직 지원 및 임용 관련 검토 ····· 16
Ⅰ. 저조한 장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비율에 관한 문제의 제기 ····· 16
Ⅱ. 장기 법조경력자의 지원율 및 임용비율의 비교 ····· 17
Ⅲ.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기간의 취급에 관한 검토 ····· 18
Ⅳ. 장기 법조경력자의 저조한 지원율에 관한 검토 ····· 20
1. 법조경력기간과 법관직 지원의사의 상관관계 분석 ····· 20
2. 장기 법조경력자의 지원율 제고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성 ····· 21
가.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 검토 ····· 22
나. 법관 임용절차 개선방안 관련 검토 ····· 23
Ⅴ.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 24

제3장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 논의 경과 ····· 27

제1절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까지의 법조재직연수 관련 논의 ····· 29
Ⅰ.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 : 7년 ····· 29
Ⅱ.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 5년 ····· 30
Ⅲ. 사법개혁위원회(2003년~2004년) : 5년 ····· 31
1. 건의 내용 ····· 31
2. 회의 과정에서 법조재직연수와 관련하여 제시된 기타 의견 : 10년 ····· 31
Ⅳ.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실시계획(2005년) : 5년 ····· 32
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2009년) ····· 33
1. 구성 ····· 33
2.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적정 법조재직연수 ····· 33
가. 5년이 적정하다는 견해 ····· 33
나. 10년이 적정하다는 견해 ····· 34
다.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 35
3. 특별소위 자문위원회의 다수 의견 ····· 36
Ⅵ.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2009년) ····· 36
Ⅶ. 대법원 주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 등(2010년) ····· 36
Ⅷ.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2010년~2011년) ····· 37
1. 구성 ····· 37
2. 적정 법조재직연수 관련 논의 ····· 37
가. 이주영 의원안과 여상규 의원안의 내용 ····· 38
나. 국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 38
다. 법원소위에서 제시된 의견 ····· 39
라. 사개특위의 최종 검토의견 ····· 40
3. 위원회안의 내용 및 처리 결과 ····· 40
Ⅸ. 소결 ····· 41
제2절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의 법조재직연수 관련 논의 ····· 42

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법관 임용 이원화 건의(2013년) ····· 42
Ⅱ. 개정 법원조직법 부칙의 개정(2014년) ····· 43
1. 내용 ····· 43
2. 개정 이유 및 검토 ····· 43
Ⅲ. 법관 임용 이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19년) ····· 44
Ⅳ. 국정감사 이슈 분석(2020년) ····· 45
Ⅴ. 기타 적정 법조재직연수 관련 주요 기고 및 보도 내용 ····· 45
1. 개정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10년이 과도하다는 견해 ····· 45
가. 노영보 변호사의 중앙선데이 기고문(2013) ····· 46
나. 최인석 전 울산지방법원장의 코트넷 게시글(2018) ····· 47
다. 법률신문 사설(2019) ····· 48
2. 개정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10년이 적정하다는 견해 ····· 50
Ⅵ. 소결 ····· 50

제4장 각국의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검토 ····· 53

제1절 서론 ····· 55
제2절 미국 ····· 56
Ⅰ. 연방법원 ····· 56
1. 연방법원 판사 ····· 56
2. 연방법원 부판사 ····· 57
3. 주요 연방법원의 판사 수 ····· 58
Ⅱ. 주 법원 판사 ····· 58
1.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재직연수 ····· 58
가. 주 법원 1심 판사 ····· 58
나. 주 법원 항소심 판사 ····· 60
2. 정년 ····· 61
가. 주 법원 1심 판사 ····· 61
나. 주 법원 항소심 판사 ····· 61
Ⅲ. 소결 ····· 62
제3절 영국 ····· 63
Ⅰ. 영국 사법부의 구조 ····· 63
Ⅱ. 영국 법관의 수직적·위계적 구분 ····· 65
Ⅲ. 영국 판사의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 ····· 67
Ⅳ. 판사 임용 지원자 및 현직 판사의 연령 ····· 69
1. 판사 임용 지원자의 연령 ····· 69
2. 현직 판사의 연령 ····· 70
Ⅴ. 영국 법관의 정년 ····· 72
Ⅵ. 소결 ····· 72
제4절 캐나다 ····· 73

제5절 독일 ····· 73
Ⅰ. 독일의 법관 임용제도 일반 ····· 73
Ⅱ. 독일 법관의 종류에 따른 자격요건 검토 ····· 74
1. 직업법관(Berufsrichter) ····· 74
2. 기술법관(technische Richter) ····· 76
3. 명예법관(ehrenamtliche Richter) ····· 77
Ⅲ. 소결 ····· 77
제6절 프랑스 ····· 77
Ⅰ. 프랑스의 법관 임용제도 일반 ····· 77
Ⅱ. 사법관의 직급 구조 등 ····· 78
Ⅲ. 사법관의 선발 방식 ····· 78
1.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한 선발 ····· 79
가. 시험에 의한 선발 ····· 79
나. 자격에 따른 선발 ····· 80
다. 보충시험에 따른 선발 ····· 80
2. 사법관 직접 편입 ····· 81
3. 고위사법관 직접 임명 ····· 82
4. 임시직 사법관 편입 ····· 82
가. 상근직(l'intégration provisoire à temps plein) ····· 82
Ⅳ. 소결 ····· 83
제7절 네덜란드 ····· 84
Ⅰ. 2013년까지의 법관 임용제도 ····· 84
1. 법관시보(trainee judicial officer,
Rechterlijk ambtenaar in opleiding, RAIO) ····· 84
2. 법관후보자(trainee judge, Rechterlijk in opleiding, RIO) ····· 84
3. 소결 ····· 85
Ⅱ. 2014년 이후의 법관 임용제도 ····· 85
Ⅲ. 소결 ····· 86
제8절 벨기에 ····· 87
Ⅰ. 법관 임용방식의 변경 과정 ····· 87
1. 1991년 사법개혁 이전 ····· 87
2. 1991년 사법개혁 이후 1998년 사법개혁 이전까지 ····· 88
3. 1998년 사법개혁 이후 ····· 89
4. 소결 ····· 89
Ⅱ. 법관 임용방식의 변경 목표 ····· 90
1. 전면적 법조일원화로 인한 사건 적체 내지 사법의 비효율성 관련 여부 ···· 90
2. 1991년 사법개혁의 목표 ····· 91
가. 임용방식의 객관화와 탈정치화 ····· 91
나. 법관조직 구성의 다양화 ····· 91
3. 1998년 사법개혁의 목표 ····· 91

Ⅲ. 1998년 및 2006년의 각 사법개혁에 따라 도입된
법관 임용방식에 따른 임용현황 ····· 92
Ⅳ. 소결 ····· 93
제9절 소결 ····· 93

제5장 법조재직연수가 법원의 인사와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 ····· 97

제1절 서론 ····· 99
제2절 법조재직연수에 따른 잠재적 법관 지원자들의 조직 내 자리매김 ····· 99
Ⅰ. 서론 ····· 99
Ⅱ. 검사 ····· 101
Ⅲ.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 102
1. A ····· 102
2. B ····· 103
3. C ····· 104
4. D ····· 105
5. E ····· 106
6. F ····· 107
7. 소결 ····· 107
Ⅳ. 국가·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 109
1. 국회 ····· 109
2.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부 ····· 110
3. 소결 ····· 110
Ⅴ. 사내변호사 ····· 110
1. 대기업 법무팀 ····· 110
2. 사내변호사 일반에 관한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의 견해 ····· 111
제3절 현직 법관의 연령, 퇴직률, 법조경력 ····· 112
Ⅰ. 서론 ····· 112
Ⅱ. 법관 평균 연령의 변화 추이 ····· 112
Ⅲ. 최근 10년간 법관 퇴직 관련 통계 ····· 113
Ⅳ.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일반(5년 이상) 법조경력 임용자의 평균 연령· 115
Ⅴ.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일반(5년 이상) 법조경력 임용자의
평균 법조경력 ····· 115
Ⅵ. 소결 ····· 116
제4절 지법부장 보임 및 전보인사에 미치는 영향 ····· 117
Ⅰ. 신규 임용 경력법관의 초임 법원 배치 패턴 ····· 117
Ⅱ. 지법부장 보임 전후의 인사 패턴 ····· 117
1. 법조재직연수를 5년으로 유지할 경우 ····· 117
2. 법조재직연수가 7년으로 상향될 경우 ····· 118
3. 법조재직연수가 10년으로 상향될 경우 ····· 119

Ⅲ. 소결 ····· 119
1. 제1안 ····· 120
2. 제2안 ····· 120
3. 제3안 ····· 121
4. 소결 ····· 121
제5절 보수 및 연금에 미치는 영향 ····· 122
Ⅰ. 서론 ····· 122
Ⅱ. 기본 가정 ····· 122
1. 법관으로 바로 법조경력을 시작하는 경우(A31) ····· 122
2. 법관으로 임용되는 시점의 법조경력이
10, 15, 20년인 경우(A41, A46, A51) ····· 123
3. 부양가족 및 기타 경력 ····· 123
Ⅲ. 현행의 보수체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분석 ····· 124
1. 보수 ····· 124
2. 연금 ····· 125
Ⅳ. 공무원 보수체계가 매년 2.6%씩 인상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분석 ····· 125
1. 보수 ····· 126
2. 연금 ····· 127
Ⅴ. 소결 ····· 127
제6절 법관 해외연수제도에 미치는 영향 ····· 128
Ⅰ. 현행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관 ····· 128
Ⅱ. 현행 법관 연수제도의 근거 규정 및 대상 법관의 범위 ····· 129
Ⅲ. 법조재직연수가 해외연수제도에 미치는 영향 ····· 131
1. 최소 법조재직연수 기준이 5년일 경우 ····· 131
2. 최소 법조재직연수 기준이 7년인 경우 ····· 131
3. 최소 법조재직연수 기준이 10년인 경우 ····· 131
4. 검토 ····· 132
제7절 재판부 구성에 미치는 영향 ····· 133
Ⅰ. 각급 법원의 합의부 실질재판부 총수 ····· 134
Ⅱ. 지방법원 합의부 중 경력대등재판부의 수 ····· 134
Ⅲ. 지방법원 합의부 중 부장 및 배석으로 이루어진 일반 합의부 수 ····· 135
Ⅳ. 재판연구원의 배치 현황 ····· 135
1. 지위 ····· 135
2. 배치 현황 ····· 136
Ⅴ. 법조재직연수 상향이 재판부 구성에 미치는 영향 ····· 137
제8절 기타 법원 내부의 법조재직연수 관련 논의 ····· 138
Ⅰ.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른 10년의 법조재직연수로 인한 문제점 ····· 139
1. 인력수급에 지나친 제약 ····· 139
2. 신규 법조인에 대한 과도한 진입 장벽 ····· 139
3. 검토 ····· 139

Ⅱ. 법관 임용 단계에서의 이원화 관련 ····· 140
Ⅲ. 소위 우수 법관 임용과 적정 법조재직연수 ····· 141
Ⅳ.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운영 개편 방향 ····· 142

제6장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45

제1절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47
Ⅰ. 분석 모델과 방법론 ····· 147
1. 자료의 수집 ····· 147
가. 응답자 성별 비율 ····· 147
나. 응답자 연령 분포 ····· 148
다. 법관 임용 직전 직업 (신임법관) ····· 149
라. 법관으로서 현재 직위 (법관대표) ····· 149
마. 법조경력기간 ····· 150
바. 출신 시험 ····· 151
사. 재판연구원 경력 유무 ····· 152
2. 주요 질문 ····· 153
Ⅱ. 연구결과 ····· 153
1. 주요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 153
2. 10년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대한 후속 설문결과 ····· 154
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이유 ····· 154
나. 10년 기준의 대안에 대한 답변 ····· 157
3. 10년 기준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대한 후속 설문결과 ····· 158
Ⅲ. 소결 ····· 159

제2절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후속 연구 관련 검토 ····· 161
Ⅰ. 설문조사의 필요성 ····· 161
Ⅱ.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 162
1. 변호사 대상 ····· 162
2.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 대상 ····· 162
3. 법관 대상 ····· 162
4. 검사 대상 ····· 163
Ⅲ. 설문 항목 예시 ····· 163
Ⅳ. 설문조사 후 통계분석 사항 ····· 165

제7장 결론 ····· 167

122. 체제 전환기의 국내·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Hybrid Domestic-International Special Criminal Courts in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연구총서 2021-02

연구책임자 :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3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목적 ····· 3
Ⅰ. 연구 배경: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책임규명 촉구 ····· 3
Ⅱ. 규범적 배경: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및 국내·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의 등장 ····· 6
Ⅲ.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0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2
Ⅰ. 연구 범위 ····· 12
Ⅱ. 연구 방법 ····· 13

제2장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규명 및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촉구 ····· 15

제1절 서설: 북한인권범죄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개관 ····· 17
Ⅰ. 유엔의 초기 대응 ····· 17

Ⅱ. 2014년 유엔 대응방향의 중요한 전환: COI 보고서 ····· 19
Ⅲ. COI 이후 유엔의 대응: 책임규명 모색 및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강조 ····· 22
제2절 2014년 북한 사실조사위원회(COI) 보고서 ····· 24
Ⅰ. 설립 근거 및 임무범위 ····· 24
Ⅱ. 조사방법과 한계 ····· 26
Ⅲ. 보고된 침해 사례 평가를 위한 법체계 및 입증 정도 ····· 27
Ⅳ. 주요 조사결과 ····· 28
1. 개별 인권침해 ····· 29
2. 인도에 반한 죄 성립 여부 ····· 30
3.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규명 ····· 31
가. 기관 책임 ····· 31
나. 개인의 형사책임 ····· 32
다. 국제공동체의 책임(보호책임) ····· 35
Ⅴ. 결론 및 권고 ····· 36
제3절 2017년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GIE) 보고서 ····· 37
Ⅰ. 설립 근거 및 임무범위 ····· 37
Ⅱ. 조사방법과 한계 ····· 38
Ⅲ.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 39
1. 책임규명 개념 ····· 39
가. 국제법 및 관행 ····· 39
나.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의 틀 ····· 41
2.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모색(실천적 제언) ····· 43
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를 통한 책임규명 ····· 43
나. 국제법원 및 국제적 조력을 받는 법원 ····· 47
3. 결론 및 권고 ····· 50
제4절 2019년 유엔인권최고대표 책임규명조사전담팀 활동보고 ····· 52
Ⅰ. 설립 근거와 임무범위 ····· 52
Ⅱ. 인권이사회 결의 34/24호 이행 ····· 53
1.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 강화 ····· 54
가. 피해자 및 증인과의 면담 ····· 54
나. 증거서류 수집 및 분석 ····· 54
2.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 설립 ····· 56
3. 정보 분석 및 평가 ····· 56
Ⅲ. 조사결과 ····· 57
Ⅳ. 결론 및 권고 ····· 59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 61

제3장 혼합 특별형사법원을 통한 전환기 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 ····· 65

제1절 서설 ····· 67

Ⅰ. 의의 ····· 67
Ⅱ. 구성 및 전개 ····· 68
제2절 전환기 정의 실현 메커니즘으로서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 70
Ⅰ. '전환기 정의' 개념 및 이행 메커니즘에 관한 담론 ····· 70
Ⅱ.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 72
Ⅲ.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이행 메커니즘으로서
형사재판제도 강조와 불처벌 반대 운동의 확산 ····· 75
Ⅳ. 함의 및 시사점 ····· 77
제3절 국제범죄자에 대한 기소·처벌 의무와 사면의 효력 ····· 79
Ⅰ. 개념 정의: 사면의 용례 및 기능 ····· 79
Ⅱ. 관련 조약 ····· 82
1. 사면에 관한 다자조약 ····· 82
2. 특정 국제범죄에 대한 당사국의 기소 및
처벌 의무 등을 부과하는 다자조약 ····· 85
3.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의무를 부여한 국제인권조약 ····· 87
4.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89
Ⅲ. 국제적 실행 ····· 92
1. 국가 실행 ····· 93
가. 개괄적 검토 ····· 93
나. 사례 연구 ····· 95
2. 국제법원 실행 ····· 99
가. 미주인권법원 및 미주인권위원회 ····· 99
나. 국제형사재판소 ····· 101
3. 유엔 실행 ····· 103
Ⅳ. 소결 및 시사점 ····· 105
제4절 혼합 특별형사법원의 등장·발전 및 관련성 ····· 106
Ⅰ. 혼합 특별형사법원의 등장 배경 ····· 106
Ⅱ. 혼합 특별형사법원의 당위 내지 유용성 ····· 108
Ⅲ.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규명의 장으로서 혼합 특별형사법원의 관련성 ·· 112
1. 국내법원의 한계 ····· 113
2. 국제법원의 한계 ····· 115
가. ICC의 한계 ····· 115
나. 임시국제재판소 설립의 한계 ····· 117
Ⅳ. 소결 및 시사점 ····· 117

제4장 혼합 특별형사법원 사례 연구 ····· 119

제1절 서설 ····· 121
Ⅰ. 혼합 특별형사법원의 정의·개념적 징표 ····· 121
Ⅱ. 혼합 특별형사법원 사례 선정 ····· 122

1. 선정의 이유 ····· 122
2. 설립 근거법의 성격에 따른 분류 ····· 123
Ⅲ. 사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26
제2절 법원별 설립 배경 및 주요 특징 개관 ····· 126
Ⅰ. 레바논 특별재판소(STL) ····· 126
1. 설립 배경 ····· 126
2. 관할 ····· 129
3. 조직구성 ····· 130
4. 예산 출처 ····· 132
Ⅱ. 시에라리온 특별법원(SCSL) ····· 132
1. 설립 배경 ····· 132
2. 관할 ····· 134
3. 조직구성 ····· 135
4. 예산 출처 ····· 136
Ⅲ. 코소보 혼합패널(IJPP) ····· 137
1. 설립 배경 ····· 137
2. 관할 ····· 138
3. 조직구성 ····· 139
4. 예산 출처 ····· 140
Ⅳ. 동티모르 중대범죄 특별패널(SPSC) ····· 140
1. 설립 배경 ····· 140
2. 관할 ····· 141
3. 조직구성 ····· 142
4. 예산 출처 ····· 143
Ⅴ. 캄보디아 특별재판부(ECCC) ····· 144
1. 설립 배경 ····· 144
2. 관할 ····· 145
3. 조직구성 ····· 146
4. 예산 출처 ····· 147
Ⅵ. 코소보 특별재판부·특별검찰청(KSC·SPO) ····· 148
1. 설립 배경 ····· 148
2. 관할 ····· 149
3. 조직구성 ····· 150
4. 예산 출처 ····· 152
Ⅶ. 주요 특징별 비교·검토 – 관할, 조직구성, 예산 출처 중심으로 – ····· 152
1. 관할 ····· 152
가. 인적관할 ····· 152
나. 영역관할 ····· 153
다. 물적관할(관할범죄) ····· 154
라. 시간관할 ····· 155

2. 조직구성 ····· 155
가. 재판부 및 재판관 ····· 155
나. 검찰부 및 사무국 ····· 156
3. 예산 출처 ····· 157
제3절 법원설립의 법적 근거 및 적법성 ····· 157
Ⅰ. 서설 ····· 157
Ⅱ.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법원설립 ····· 158
1.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국제법원을 설립하는 것의 적법성 ····· 160
가. ICTY/ICTR 설립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 ····· 160
나. ICTY/ICTR 판례 ····· 161
다. ICC 로마규정상 인정된 안보리 권한 ····· 164
2. 유엔 안보리 결의로 혼합 특별형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의 적법성 ····· 165
가. 개괄적 검토 ····· 165
나. STL 사례 연구 ····· 166
Ⅲ. 조약에 의한 법원설립 ····· 170
1. 개괄적 검토 ····· 170
2. SCSL 사례 연구 ····· 170
가. SCSL 설립과정에서의 안보리의 역할과 설립조약의 법적 성격 ····· 171
나. 불법적 권한 위임 항변 ····· 172
다. 시에라리온 헌법 위반 항변 ····· 173
라. 국내법원으로의 편입 항변 ····· 175
마. 소결 ····· 176
Ⅳ. 국내법에 의한 법원설립 ····· 177
1. 국제과도행정기구 감독 하에 설립된 혼합 특별형사법원의 법적 성격
– IJPP와 SPSC 사례 중심으로 – ····· 178
가. 논의의 배경 ····· 178
나. 설립규정의 법적 성격 및 쟁점 ····· 179
2. 국제기구의 운영 협조를 받기 위한 별도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내법원
– ECCC 중심으로 – ····· 181
가. ECCC 설립 배경 ····· 181
나. ECCC 협정의 감독기능 및 한계 ····· 183
다. ECCC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 ····· 186
Ⅴ. 국내법에 의한 국제재판부 설립 ····· 187
1. KSC·SPO의 특수한 설립 배경 ····· 187
2. KSC·SPO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쟁점 ····· 189
가. 코소보 정부와 유럽연합 간의 교환서신의 법적 성격 ····· 190
나. KSC·SPO 설립 근거법(코소보 헌법 및 국내법) 제·개정에 있어서의
유럽연합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정치적 쟁점 ····· 191
제4절 관할권 행사의 근거 및 장애요소 – 사면의 효력 중심으로 – ····· 193
Ⅰ. 서설 ····· 193

Ⅱ. 국내법에 의한 법원설립 ····· 194
1. 관할권 행사의 근거 ····· 194
가. 국가관할권에 관한 국제법 ····· 194
나.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혼합 특별형사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 195
2. 사면의 효력 ····· 196
가. 서설 ····· 196
나. 사례 연구: IJPP, SPSC, ECCC, KSC·SPO ····· 197
3. 소결 ····· 203
Ⅲ. 국제법에 의한 법원설립 ····· 204
1. 관할권 행사의 근거 ····· 204
가. 조약에 의한 법원설립: SCSL ····· 205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법원설립: STL ····· 208
2. 사면의 효력 ····· 210
가. 조약에 의한 법원설립: SCSL ····· 210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법원설립: STL ····· 215
3. 소결 ····· 215

제5장 한반도 전환기를 대비하며: 시사점 ····· 217

제1절 서설 ····· 219
Ⅰ. 의의 ····· 219
Ⅱ. 혼합 특별형사법원 설립 논의의 전제: 상황적 요건 ····· 219
제2절 혼합 특별형사법원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 221
Ⅰ. 지도원칙 ····· 221
Ⅱ. 설립의 전제요건 ····· 223
Ⅲ. 법원 설계: 주요 의제별 고려사항 ····· 226
1. 설립방식 및 설립의 적법성 ····· 227
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법원설립 ····· 228
나. 조약에 의한 법원설립 ····· 231
다. 국내법에 의한 법원설립 ····· 233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및 사면의 효력 ····· 237
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법원설립 ····· 238
나. 조약에 의한 법원설립 ····· 238
다. 국내법에 의한 법원설립 ····· 239
3. 관할 ····· 242
가. 물적관할(관할범죄) ····· 242
나. 시간관할 ····· 244
다. 영역관할 ····· 246
라. 인적관할 ····· 247
마. 국내법원과의 관계: 관할권 경합의 해결 ····· 249
4. 조직구성 ····· 250

가. 조직 ····· 251
나. 인적 구성 ····· 251
다. 자격 ····· 253
5. 예산 출처 ····· 253
6. 법원 소재지 ····· 254
제3절 추후 연구 과제 – 국내적 이행 및 역량 강화 중심으로 – ····· 255
Ⅰ. 국내적 이행 및 국내법 합치의 문제 ····· 256
1. 관련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필요 ····· 256
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적 이행 ····· 256
나. 조약의 국내적 이행 ····· 257
2. 혼합 특별형사법원에서의 재판의 국내법 합치성 문제 ····· 258
Ⅱ. 역량 강화 – 증거의 수집 및 보관 관련 – ····· 260

제6장 결론 ····· 263

123.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Judicial Specialization after Adopting Common Law Appointment System in Korea

연구총서 2021-03

연구책임자 :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5월 1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재판전문화 ····· 3
Ⅰ. 법관 전문성 향상과 법관임용방식의 변화 ····· 3
Ⅱ.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재판전문화 필요성 ····· 6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0
Ⅰ. 재판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 10
Ⅱ. 연구 대상 및 범위의 특정: 전문법관제도를 통한 재판전문화 ····· 11
제3절 연구내용의 구성과 연구방법 ····· 13
Ⅰ. 연구내용의 구성 ····· 13
Ⅱ. 연구방법 ····· 15

제2장 법관전문화와 전문법관의 활용모델 ····· 17

제1절 법관전문화의 개념과 장단점 ····· 19
Ⅰ. 전문화 개념의 상대성 ····· 19
Ⅱ. 법관전문화의 장단점 ····· 28
Ⅲ.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선결문제 ····· 39
제2절 전문법관의 활용모델 ····· 43
Ⅰ. 전문법관 활용을 위한 전문법원 및 전문재판부의 설치 ····· 43

Ⅱ.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형태 ····· 45
Ⅲ.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는 형태 ····· 56
제3절 전문법관 활용모델의 결정 기준과 과정 ····· 63
Ⅰ. 전문법관 활용모델 결정의 일반적 기준 ····· 63
Ⅱ. 전문법관 활용모델 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 ····· 65
Ⅲ. 전문법원과 전문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의 전문화 필요성 ····· 68

제3장 우리의 전문재판부와 전문법관 관련 제도 ····· 71

제1절 전문재판부와 전문법관 관련 제도의 변천 ····· 73
제2절 전문재판부 및 전담재판부 제도의 도입경과와 현황 ····· 74
Ⅰ. 도입경과 ····· 74
Ⅱ.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 ····· 76
Ⅲ. 각 법원의 전문재판부 운영 현황 ····· 83
Ⅳ. 검토 ····· 96
제3절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제도의 도입경과와 현황 ····· 100
Ⅰ. 도입경과 ····· 100
Ⅱ. 근무기간 및 선발 대상, 절차, 기준 ····· 103
Ⅲ. 각 가정법원의 전문법관 현황 ····· 109
제4절 전담법관제도의 도입경과와 제도적 의의 ····· 112
Ⅰ. 도입경과 ····· 112
Ⅱ. 제도적 의의와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115
Ⅲ. 사무분담 제한의 적법성 문제 및 대법원규칙의 개정 ····· 118
제5절 전문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23
Ⅰ. 선행연구 개관 ····· 123
Ⅱ. 지식재산전문법관 도입 문제 ····· 125
Ⅲ. 공법전문법관 도입 문제 ····· 136
Ⅳ. 도산전문법관 도입 문제 ····· 147

제4장 각국의 재판전문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61

제1절 대상국가의 분류 및 검토방법 ····· 163
제2절 유럽 대륙 즉시임용제 국가에 대한 검토 ····· 166
Ⅰ. 이탈리아 ····· 166
Ⅱ. 프랑스 ····· 172
Ⅲ. 네덜란드 ····· 180
Ⅳ. 오스트리아 ····· 189
Ⅴ. 독일 ····· 196
Ⅵ. 덴마크 ····· 205
Ⅶ. 스웨덴 ····· 211

제3절 보통법계 법조일원화 국가에 대한 검토 ····· 218
Ⅰ. 영국 ····· 218
Ⅱ. 캐나다 ····· 243
Ⅲ. 오스트레일리아 ····· 249
Ⅳ. 미국 ····· 255
제4절 각국 제도의 법관전문화에 대한 시사점 ····· 264
Ⅰ. 시사점 추출 방향 ····· 264
Ⅱ. 영국의 직급 및 직무별 법관선발 ····· 265
Ⅲ. 동일법원 장기근무 및 사무분담의 연속성 ····· 268
Ⅳ. 법조일원화 법관임용의 전문성 검증 방안 ····· 274
Ⅴ. 법관 임용방식의 다양화 ····· 276

제5장 우리 법관의 전문화를 위한 방법론적 제안 ····· 279

제1절 법관의 신규임용, 보직, 사무분담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전문화 ····· 281
Ⅰ. 법관전문화와 법관인사제도의 관계 ····· 281
Ⅱ. 신규임용 ····· 282
Ⅲ. 보직 ····· 289
Ⅳ. 사무분담 ····· 296
제2절 전문법관제도 활성화의 방향과 한계 ····· 303
Ⅰ. 법관전문화를 위한 제도설계의 방향 ····· 303
Ⅱ. 법관전문화로 인한 문제와 완화 방안 ····· 343

제6장 결론 ····· 355

124.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criminal trial procedures

연구총서 2021-04

연구책임자 : 이민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4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반 ····· 7

제1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율 체계 ····· 9
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현황 ····· 9
Ⅱ.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이해 ····· 11
1. 정의 조항 ····· 11
2. 개인정보 개념의 구체적 분석 ····· 12
3.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 17
4. 유형별 분류에 따른 개인정보의 예시 ····· 27
Ⅲ.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 29

1. 개인정보 처리원칙 ····· 29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30
3. 개인정보 처리 제한 ····· 33
4. 정보주체의 권리 ····· 35
Ⅳ.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7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과 적용관계 ····· 37
2. 구체적 적용 기준 ····· 37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 ····· 38
4. 형사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법 ····· 39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 42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 ····· 42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 4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과 내용 ····· 43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 44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 45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 ····· 45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 정립 ····· 47
Ⅲ.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52
1.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52
2. 오픈데이터 정책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52
제3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 53
Ⅰ. 비식별 개념의 도입 배경 ····· 53
Ⅱ.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 ····· 54
1. 개요 ····· 54
2. 비식별 조치 단계 ····· 55
3. 비식별 조치 방법 ····· 55
4.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 56
5. 비식별 조치를 마친 개인정보 ····· 57
6.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 57
Ⅲ. 비식별화 및 익명화에 관한 입법례 ····· 58
1. 유럽 ····· 58
2. 미국 ····· 61
Ⅳ.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 62
1. 가명정보의 개념 ····· 62
2.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 63
3. 개인정보 처리의 단계적 적법성 심사 ····· 64

제3장 형사사법절차와 개인정보 ····· 65

제1절 형사사법업무와 개인정보 ····· 67

Ⅰ. 형사사법업무의 특성과 개인정보 ····· 67
Ⅱ. EU의 형사사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율 ····· 68
1. 형사사법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 68
2. LED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68
3. 시사점 ····· 71
Ⅲ. 형사사법정보와 개인정보 ····· 72
1.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의 관계 ····· 72
2. 개인형사사법정보의 처리 관행과 업무인식 ····· 74
제2절 형사사법절차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5
Ⅰ. 형사사법절차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현형태 ····· 75
Ⅱ. 형사사법절차상 정보주체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6
1. 피의자·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6
2.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9
제3절 전자적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 84
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관 ····· 84
1. 도입 경위 ····· 84
2. 법률 제정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 85
3. 형사절차전자화법의 주요 내용 ····· 85
Ⅱ.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 87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의 형사사법정보 처리 방식 ····· 87
2.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 저장과 활용 ····· 87
3. 법원의 형사사법정보 저장과 활용 ····· 88
Ⅲ.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89
1. 형사사법업무의 목적과 범위 ····· 89
2. 형사사법정보 수집 및 관리의 근거 ····· 90
3. 형사사법정보의 보존 ····· 92
제4절 형사사법정보 처리원칙 개선방안 ····· 93
Ⅰ. 형사사법정보 처리원칙 수립 필요성 ····· 93
Ⅱ. EU지침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 94
1.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 원칙(제4조) ····· 94
2. 보존과 검색 기간 제한(제5조) ····· 95
3. 정보주체별 별도 범주 구분(제6조) ····· 95
4. 개인정보별 구분 및 개인정보 품질 인증(제7조) ····· 95
5. 적법한 처리(제8조) ····· 96
6. 구체적 처리 조건(제9조) ····· 96
7. 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제10조) ····· 96
8.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제11조) ····· 96
9.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의무(제19조) ····· 97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제20조) ····· 97
11. 정보주체의 참여권 ····· 97

Ⅲ. 형사사법정보 처리 원칙에 관한 제언 ····· 99
1. 법률유보의 원칙 ····· 99
2. 목적구속의 원칙 ····· 100
3. 비례성 원칙 ····· 103
4. 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 원칙 ····· 105
5. 정보주체 참여 및 공개의 원칙 ····· 106

제4장 형사재판과 개인정보 처리 ····· 109

제1절 형사재판에서의 기록편성 업무 ····· 111
Ⅰ. 공판기록의 편성 방식 ····· 111
Ⅱ. 증거기록의 편성 방식 ····· 112
제2절 검사 제출 문서와 개인정보 ····· 113
Ⅰ. 공소장 ····· 113
1. 공소장에 기재되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 113
2. 공소사실과 개인정보 ····· 114
3. 가명공소장 ····· 117
Ⅱ. 증거서류 ····· 118
1. 피의자신문조서 ····· 118
2. 진술조서 ····· 120
3. 진술서 ····· 129
4. 감정서 ····· 129
5. 전과자료 ····· 130
Ⅲ. 증거신청서 ····· 131
1. 증거신청의 의의 ····· 131
2. 증거신청의 방식 ····· 131
3. 증인신청서 ····· 131
제3절 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 문서와 개인정보 ····· 132
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 132
1.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 132
2.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의 기재사항 ····· 132
3.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와 개인정보 ····· 134
Ⅱ. 의견서 ····· 134
1.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 의무 ····· 134
2. 의견서의 기재사항 ····· 135
3. 제출된 의견서의 처리 ····· 136
4. 의견서와 개인정보 ····· 136
Ⅲ. 양형자료 ····· 137
제4절 제3자 제출 문서와 개인정보 ····· 138
Ⅰ. 배상신청서 ····· 138

1. 배상명령의 의의와 대상 ····· 138
2. 배상신청서의 기재사항 ····· 138
3. 배상신청서와 개인정보 ····· 139
Ⅱ. 양형조사 보고서 ····· 139
1. 양형조사의 필요성과 대상사건 ····· 139
2.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 140
3. 양형조사의 방식과 절차 ····· 140
4.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 ····· 141
5. 양형조사보고서와 개인정보 ····· 142
Ⅲ. 판결 전 조사서 ····· 142
1. 판결 전 조사제도의 개요 ····· 142
2.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사항 ····· 143
3. 판결 전 조사서와 개인정보 ····· 143
제5절 법원 작성 문서와 개인정보 ····· 144
Ⅰ. 재판서 ····· 144
1. 재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 144
2. 판결서의 기재사항 ····· 145
3. 결정문의 기재사항 ····· 149
Ⅱ.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 149
1. 공판조서의 구성 ····· 149
2. 공판조서의 기재사항과 개인정보 ····· 150
Ⅲ.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사항 ····· 151
1. 증인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 151
2.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방식 ····· 153
Ⅳ. 증거목록의 기재사항 ····· 153
제6절 소송서류의 취급방식과 개인정보 ····· 154
Ⅰ.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 ····· 154
Ⅱ. 송달 대상 문서와 개인정보 보호 ····· 155
1. 개요 ····· 155
2. 소송관계인 제출 문서 ····· 155
3. 판결서 송달과 개인정보 보호 ····· 156
Ⅲ. 편철 대상 문서와 개인정보 보호 ····· 159
1. 재판기록의 편성 ····· 159
2. 재판기록과 개인정보 보호 ····· 160
3. 녹음물 등의 사본 청구 절차와 개인정보 ····· 160
Ⅳ. 합의를 위한 피해자 인적 사항 제공 ····· 161

제5장 형사재판절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63

제1절 미국 ····· 165

Ⅰ. 미국의 전자적 사건 접수 및 관리 시스템(CM/ECF) 고찰 ····· 165
1. CM/ECF의 도입 배경 및 연혁 ····· 165
2. CM/ECF의 주요 구성 및 기능 ····· 166
Ⅱ. 재판기록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규율 및 인식 ····· 168
1. 재판의 공개와 제한 원리 ····· 168
2. 공개추정의 원칙 ····· 170
3. 공개제한 원리 ····· 170
Ⅲ. 재판기록 공개 제한에 관한 규율 및 실무 ····· 172
1. 관련 규정 ····· 172
2. 연방사법협의회의 프라이버시 정책 ····· 173
3. 편집본 서류 제출 제도 ····· 175
4. 봉인 서류 제출 제도 ····· 181
5. 재판기록 비공개 의무 주체와 책임 ····· 193
Ⅳ. 소결 ····· 193
제2절 독일 ····· 194
Ⅰ. 형사사법 분야의 개인정보 규율 ····· 194
Ⅱ. 형사절차상 작성 문서와 개인정보 ····· 195
1. 수사절차 관련 문서 ····· 195
2. 약식명령서 ····· 197
3. 중간절차 관련 문서 ····· 198
4. 공판절차 관련 문서 ····· 198
5. 판결서 ····· 200
Ⅲ.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제도 ····· 200
1. 형사절차 관계인의 기록열람권 ····· 201
2. 그 밖의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 204
3. 경찰법상 위험예방목적의 개인정보이용 ····· 207
Ⅳ. 형사판결서 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 207
1. 법원의 판결서 공개 의무 ····· 207
2. 형사판결서 공개의 주체 및 범위 ····· 208
3. 익명화 및 내용의 생략 ····· 208
Ⅴ. 증인보호와 개인정보보호 ····· 211
1. 증인보호의 의의 및 증인보호조화법 ····· 211
2. 증인보호조화법과 개인정보보호 ····· 211
Ⅵ. 소결 ····· 212
제3절 일본 ····· 213
Ⅰ. 개요 ····· 213
Ⅱ. 수사서류 및 증거서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215
1.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비실명처리 ····· 215
2. 증거서류의 비식별처리 ····· 216
3. 기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개인정보 ····· 218

Ⅲ. 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220
1. 피해자 특정사항의 비공개 ····· 220
2. 신문절차에서의 보호 ····· 224
3. 소송기록의 열람 및 정보공개법의 적용 제외 ····· 226
4. 확정 판결서의 열람 및 등사 ····· 230
Ⅳ. 소결 ····· 232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 234
Ⅰ. 설립 및 조직 개관 ····· 234
Ⅱ. ICC 재판절차의 특징 ····· 236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절충적 모델 ····· 236
2.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용 ····· 237
3. 공소사실확인 제도 ····· 239
Ⅲ.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ICC 재판절차 연구의 의의 ····· 240
Ⅳ. 정보 보호에 관한 ICC 관련 규정 ····· 241
1. 기관의 권한과 의무 ····· 241
2. 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 ····· 244
3. 일방절차의 특례 ····· 247
Ⅴ. ICC의 증거개시 제도와 정보 보호 ····· 249
1. 증거개시 제도의 의의 ····· 249
2. 검사의 증거개시 시기 ····· 250
3. 검사의 증거개시 의무와 대상 ····· 251
4. 증거개시의 방법 ····· 254
5. 증거개시의 제한 사유 ····· 258
6.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해태의 효과 ····· 262
7. 증거개시 제한에 따른 편집처리 ····· 262
Ⅵ. 재판기록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 273
1. 개관 ····· 273
2. 문서 등의 관리 체계 ····· 275
3. 보안등급 분류 ····· 277
Ⅶ. 소결 ····· 281

제6장 형사재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문제 ····· 283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절차 ····· 285
제2절 증거개시 제도와 개인정보 ····· 294
Ⅰ. 공판중심주의와 증거개시제도 ····· 294
1.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경위 ····· 294
2. 증거개시제도의 취지 ····· 295
Ⅱ. 증거개시제도의 내용 ····· 296
1. 열람·등사의 대상 ····· 296

2. 열람·등사의 절차 ····· 297
Ⅲ. 증거개시의 제한 ····· 297
1. 증거개시 제한 사유 ····· 297
2. 증거개시 제한 절차 ····· 298
Ⅳ.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 ····· 298
1. 열람·등사 허용 신청 ····· 298
2. 법원의 결정 ····· 299
3. 허용 결정의 효력 ····· 299
Ⅴ. 증거개시제도의 실무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 300
1.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운영 방식 ····· 300
2. 현행 수사기록 열람·등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03
Ⅵ.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한 수사절차의 개선 필요성 ····· 307
1.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 308
2. 가명조사의 적극적인 활용 ····· 309
3. 개인정보 처리절차 안내 제도 도입 ····· 311
제3절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제도 ····· 312
Ⅰ. 개관 ····· 312
1. 의의 ····· 312
2. 신청권자 ····· 313
3. 열람·복사의 대상 ····· 314
4. 열람·복사의 절차 ····· 314
Ⅱ. 재판기록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 314
1. 관련 규정 ····· 314
2. 보호조치의 사유 및 대상 ····· 315
3. 보호조치의 절차 ····· 316
4. 보호조치의 범위와 방법 ····· 316
Ⅲ.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과 개인정보 보호 ····· 317
1.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의 의의 ····· 317
2. 전자사본기록의 생성 방식 ····· 318
3. 전자사본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 319
4. 전자사본기록의 열람 ····· 320
5. 전자사본기록의 관리 및 보존 ····· 321
6. 전자사본기록의 열람제한 ····· 321
Ⅳ. 송달절차와 개인정보 ····· 322
Ⅴ. 재판기록 열람·복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 ····· 324
1. 개요 ····· 324
2. 제출 단계에서의 비실명처리 ····· 325
3. 개인정보 목록 제출 ····· 326
4. 증거기록에 대한 비실명처리 ····· 327
5. 제3자 제출 소송서류의 비실명처리 ····· 327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문서의 보관 ····· 328
7. 개인정보 편집 범위에 대한 법원의 결정 ····· 328
8. 개인정보 편집본 재판기록의 요지와 기대효과 ····· 329
제4절 형사판결서 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 329
Ⅰ. 형사판결서 공개제도의 연혁 ····· 329
Ⅱ. 형사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관 ····· 331
1. 열람의 범위와 절차 ····· 331
2. 확정 판결서 공개 및 열람 현황 ····· 333
Ⅲ. 형사판결서의 공개 제한 ····· 335
1. 공개제한 사유 ····· 335
2. 공개제한 절차 ····· 335
3. 형사판결서 공개 및 공개제한에 대한 이의 ····· 336
4. 전산시스템을 통한 형사판결서 공개제한 관리 ····· 337
5. 현행 형사판결서 공개제한 제도의 개선방안 ····· 338
Ⅳ. 미확정 형사판결서 공개 여부에 관한 논의 ····· 342
1. 개요 ····· 342
2. 우리 형사판결서의 내용 및 체계의 특성 ····· 343
3.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권고의견 ····· 345
Ⅴ. 형사판결서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 347
1. 비실명처리 업무 개요 ····· 347
2. 비실명처리의 범위 ····· 349
3. 비실명처리의 방식 ····· 349
4. 비실명처리의 실무와 절차 ····· 351
5. 법원도서관의 비실명처리 방식 ····· 352
6. 판결서 비실명처리 기준 개선에 관한 논의 ····· 354
7. 비실명처리의 제한적 완화 적용 검토 ····· 360
8. 소송관계인의 편집의견 제출 제도 검토 ····· 366

제7장 결론 ····· 367

12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Research on Improving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 Focusing on Discussions of Legislative Measures -

연구총서 2021-05

연구책임자 : 박병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3월 12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디지털 증거 일반론 ····· 7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 9
제2절 디지털화의 속도 ····· 12
제3절 디지털 증거의 특징 ····· 16

제3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비교법적 검토 ····· 21

제1절 미국 ····· 23
Ⅰ.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관한 연방대법원 해석의 변천 –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Katz부터 Carpenter까지) – ····· 23
1. 개관 ····· 23
2. 사생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Privacy) ····· 24
3. 연방대법원의 압수수색 법리의 변화 – 기술 발전에 따른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25
4. 스마트폰 내 디지털 증거 – Riley v. California ····· 35
5. 제3자 보유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Third Party Doctrine ····· 39
6. 시사점 ····· 50
Ⅱ. 연방법령에 따른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법 ····· 52
1. 개요 ····· 52
2. 연방 수정헌법 제4조,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Warrant ····· 52
3. 전기통신사생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te Act)에 따른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 ····· 61
4. Pen/Trap법, 감청법에 따른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 65
Ⅲ.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 문제 ····· 67
1. 개요 ····· 67
2.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Search incident to arrest) ····· 67
3. Plain View Doctrine ····· 68
4. 긴급한 상황의 예외(Exigent Circumstances Exception) ····· 74
5. 동의(Consent to Search) ····· 76
6. 국경수색의 예외(Border Search) ····· 83
Ⅳ.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특수 문제 ····· 85
1.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특수성 ····· 85
2. 사후 분석의 필요성 소명 여부 ····· 86
3. 사전 규제(Ex Ante)로서 법관이 집행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87
4. 분석기간 제한의 문제: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ion) 인정 여부 ····· 91
5. 범죄유관 정보의 선별방법으로 Filter 팀 운용 ····· 95
6. 집행절차에 대한 불복 ····· 97
7. 미국 영토 밖 소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97
8. 암호 해제(Decryption)의 가능 여부: 협력의무 쟁점 ····· 100
9.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로서 Good Faith Rule 제외 논의 ····· 107
Ⅴ. 캘리포니아 전기통신사생활법 ····· 109
1. 개관 ····· 109
2. 주요 내용 ····· 110
3. 시사점 ····· 112
제2절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 113
Ⅰ. 개관 ····· 113
Ⅱ. 절차 규정의 검토 ····· 114
1. 개요 ····· 114

2. 보존요청 등(제16조) ····· 115
3. 제출명령(제18조) ····· 115
4. 전자정보 압수수색(제19조) ····· 116
제3절 독일 ····· 117
Ⅰ. 서론 ····· 117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사생활 보호 ····· 117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 ····· 117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절차보장의 중요성 ····· 119
4. 절차적 규제로서 영장 정본의 교부 ····· 120
5. 독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개관 ····· 121
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적격성과 비례성의 원칙 ····· 121
Ⅲ. 수색과 압수의 명확한 구분 ····· 123
Ⅳ. 제3자 보관 정보의 수집 등 ····· 124
1. 가입정보의 수집 ····· 124
2. 통신정보의 수집 ····· 126
3. 기타 통신 관련 수사처분 ····· 133
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격지 열람 ····· 136
Ⅵ. 디지털 증거에 대한 독립적 압수수색 ····· 140
Ⅶ. 암호해제 논의 ····· 142
제4절 일본 ····· 143
Ⅰ.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개관: 유럽 사이버범죄방지 협약 반영 ····· 143
Ⅱ. 디지털 증거 집행방법의 특례 ····· 143
1. 원격지 압수수색 ····· 143
2. 기록명령부 압수 ····· 145
3. 기록매체압수 집행방법 ····· 146
4. 보존요청 ····· 146
5. 협력요청 ····· 148
Ⅲ.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등이 보관하는 자료에 대한 수집방법 ····· 149
1. 일본법의 체계 ····· 149
2.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방법 ····· 149
3. 감청 ····· 150

제4장 우리나라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 153

제1절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 155
Ⅰ. 대한민국 헌법 ····· 155
Ⅱ. 형사소송법 ····· 156
제2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법령 검토 ····· 163
Ⅰ.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 ····· 163
Ⅱ. 특별법 ····· 166

1. 전기통신사업법 ····· 166
2. 통신비밀보호법 ····· 167
제3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대법원 판례의 형성 ····· 175
Ⅰ.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 175
Ⅱ.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종근당 사건 ····· 177
Ⅲ. 절차적 통제(영장제시, 압수물 목록 교부 등) 관련 판결 ····· 183
Ⅳ. 원격지 압수수색: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186
Ⅴ. 관련성 원칙과 디지털 포렌식 ····· 189
Ⅵ. 스마트폰과 임의제출물 압수 ····· 190
제4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현황 ····· 191
Ⅰ. 법원 실무 ····· 191
Ⅱ. 검찰, 경찰 실무 ····· 195
1. 검찰 실무 ····· 195
2. 경찰 실무 ····· 201
제5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자 심층 인터뷰 ····· 203
Ⅰ. 영장 전담 법관 ····· 203
Ⅱ. 검사 ····· 208
Ⅲ. 변호사 ····· 211
Ⅳ.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사내변호사 ····· 218

제5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 221

제1절 압수수색 대상으로서 정보의 명문화 ····· 223
Ⅰ. 문제점 ····· 223
Ⅱ. 정보의 압수대상성 논의 ····· 224
Ⅲ. 개정 법안의 검토 ····· 225
제2절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방법의 설계 ····· 229
Ⅰ. 선별압수 원칙과 예외적 매체 반출 ····· 229
Ⅱ. 예외적 매체 압수 확대에 관한 입법론 검토 ····· 230
Ⅲ. 압수방법에 관한 법원의 사전규제 방안(Ex Ante Regulation) ····· 233
1. 압수 방법에 관한 사전규제 허용 여부 ····· 233
2. 사전규제의 개선방향 모색 ····· 235
Ⅳ. 수색영장·압수영장 분리 발부 여부 ····· 241
제3절 일련의 절차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명확화 ····· 245
Ⅰ. 개요 ····· 245
Ⅱ. 개정 법안의 검토 ····· 246
제4절 범죄유관 정보 선별 과정 개선방안 ····· 251
Ⅰ. 참여권 강화 방안 ····· 251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적법성 확보 방안으로 참여권의 등장 ····· 251
2. 참여권에 관한 입법례 ····· 252

3. 현행 규정상 참여권의 내용 및 범위 ····· 254
4. 참여 통지의 예외 ····· 255
5. 참여권 침해의 효과 ····· 256
6. 참여권 개선 방안 ····· 257
Ⅱ. 법원에 집행 결과 보고 방안 ····· 262
제5절 범죄무관 정보의 처리 ····· 263
Ⅰ. 저장매체 반환, 무관 정보의 폐기 및 통보 의무 ····· 263
Ⅱ. 별건 범죄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집방법 ····· 268
1.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종근당 사건) ····· 268
2.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 본 대법원 판결의 의미 ····· 268
3. 별건 영장의 청구 방법 ····· 271
4. 엄격한 별건 영장 심사 ····· 272
제6절 절차적 통제 개선방안 ····· 273
Ⅰ. 통지 배제 도입 여부 ····· 273
Ⅱ. 압수수색영장 제시(제118조) 강화 방안: 영장 사본 교부 ····· 275
1. 영장 제시 제도 ····· 275
2. 영장 사본 교부 제도의 도입 ····· 276
Ⅲ. 압수목록 교부 제도 강화(제129조) ····· 278
Ⅳ. 압수할 정보가 없는 경우 증명서 교부(제128조) ····· 280
제7절 임의제출물 압수 개선방안 ····· 280
Ⅰ. 개관 ····· 280
Ⅱ. 입법례 ····· 281
1. 미국 ····· 281
2. 독일·일본 ····· 282
Ⅲ. 개선 방안 ····· 283
1. 개선의 필요성 ····· 283
2.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고지 ····· 283
3. 혐의사실의 개요, 참여권 등의 서면 고지 ····· 285
4. 임의성에 대한 엄격 심사 ····· 286
5. 개선 입법 제안 ····· 287
제8절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개선방안 ····· 288
Ⅰ. 제3자 보관 정보의 특징 ····· 288
Ⅱ. 영장주의 강화 ····· 289
1.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현행 법 체계 ····· 289
2. 통신자료 수집과 영장주의 ····· 289
3.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과 영장주의 ····· 291
4.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기간의 설정 여부 ····· 294
Ⅲ.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통지 제도의 개선방안 ····· 294
1. 현황 ····· 294
2. 비교법적 검토 ····· 295

3. 개선방안 ····· 297
Ⅳ. 참여권의 도입 ····· 299
제9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강화 ····· 301
Ⅰ. 개관 ····· 301
Ⅱ. 미국의 경우 ····· 301
Ⅲ.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 302
제10절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 ····· 303
Ⅰ. 원격지 압수수색 ····· 303
Ⅱ. 보존요청 ····· 309
Ⅲ. 협력의무 및 제출명령 ····· 319
Ⅳ.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건 강화 여부 ····· 334

제6장 결론 ····· 337

126.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ies on Bankruptcy Cases and the Role of the Court -Focused on Personal Bankruptcy Cases-

연구총서 2021-06

연구책임자 :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4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방법 ····· 5

1. 개관 ····· 5

2. 문헌조사의 범위 ····· 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7

제2장 실증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 9

제1절 실증연구의 개념과 필요성 ····· 11

Ⅰ. 실증연구의 개념과 특징 ····· 11

Ⅱ. 실증연구의 한계 ····· 12

1.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 가변성 ····· 12

2. 규범적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 제시가 어려움 ····· 12

3. 편향성 위험 ····· 13

4. 시간이 많이 걸림 ····· 13

5. 불확정적 결론 ····· 14

6. 이해하기 어려움 ····· 14

Ⅲ. 실증연구의 필요성 ····· 14
제2절 도산 정책 입안에 있어 실증연구의 필요성 ····· 16
Ⅰ. 도산 정책에 혼재된 규범적 판단과 사실적 가정들 ····· 16
Ⅱ. 실증 데이터의 필요성 ····· 16

제3장 미국의 소비자도산 프로젝트 개관 ····· 19

제1절 미국의 도산 제도 개관 ····· 21
Ⅰ. 미국의 도산 제도 ····· 21
Ⅱ. 미국 연방 도산법 개정의 역사 ····· 23
1. 미국 연방 도산법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 ····· 23
2. 미국 연방 도산법의 제·개정 역사 ····· 23
가. 초기 미국 도산법의 제정 경과 ····· 23
나. 1978년 연방 도산법의 제정: 제13장 절차의 장려 ····· 24
다. 1984년 연방 도산법의 개정: 제7장 절차 남용의 제재 ····· 25
라. 2005년 BAPCPA의 제정: 변제자력평가제도 제도의 도입 등 ····· 25
제2절 CBP의 개요 ····· 26
Ⅰ. 실증연구 모델로서의 CBP의 의의 ····· 26
Ⅱ. 연구의 개략적 내용 ····· 27
Ⅲ. 조사결과의 발표 ····· 29
1. CBP I ····· 30
가. 논문 ····· 30
나. 단행본 ····· 30
2. CBP II ····· 30
가. 논문 ····· 30
나. 단행본 ····· 30
3. CBP III ····· 31
가. 논문 ····· 31
나. 단행본 ····· 31
4. CBP IV ····· 31
5. CBP V ····· 31
제3절 각 CBP의 내용 ····· 32
Ⅰ. CBP I: 도산채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32
1. 배경: 미국의 도산사건 급증 ····· 32
2. 연구의제 ····· 32
3. 조사방법 ····· 33
가. 조사 대상 기간 ····· 33
나. 조사 대상 지역 ····· 33
다. 조사자료 ····· 33
4.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점 ····· 35

가. 자산, 소득, 부채 ····· 35
나. 추가적 변제여력이 있는지 여부 ····· 38
다.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적정한지 여부 ····· 44
5. CBP I의 결론 ····· 45
Ⅱ. CBP II: 도산사건 급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 45
1. 배경 ····· 45
2. 연구의제 ····· 46
3. 조사방법 ····· 46
가. 조사 대상 기간 ····· 46
나. 조사 대상 지역 ····· 46
다. 조사자료 ····· 46
라. 기술적인 문제 ····· 47
4. 조사결과 ····· 49
가. 소득, 자산, 부채 ····· 49
나. 부채/소득비율(총부채 기준) ····· 54
다. 부채/소득비율(담보채무 제외) ····· 56
라. 장별 비교 ····· 57
5. CBP II의 결론 ····· 60
Ⅲ. CBP III: 도산으로 인한 불명예(Social Stigma)는 감소하였는가 ····· 60
1. 배경 ····· 60
2. 연구의제 ····· 61
3. 조사 대상 및 방법 ····· 62
가. 조사기간 ····· 62
나. 조사지역 ····· 62
다. 조사대상 ····· 62
4. 조사결과 ····· 64
가. 부채 부담의 증가 ····· 64
나. 불명예 감소 가설에 대한 검증 ····· 71
5. CBP III의 결론 ····· 78
6. 사회적 불명예 감소 여부에 관한 관련 논쟁 ····· 78
Ⅳ. CBP IV: 도산 사건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 79
1. 배경 ····· 79
2. 연구의제 ····· 80
3. 조사방법 ····· 80
가. 조사기간 ····· 80
나. 조사지역 ····· 80
다. 조사자료 ····· 80
라. 오차율 확인 ····· 83
마. 응답편향 여부 ····· 83
바. 인플레이션 조정 ····· 83

사. 특이값 제거 ····· 83
4. 조사결과 I: 소득 수준은 변동이 없었음 ····· 84
5. 조사결과 II: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채무자들 ····· 86
가. 총자산 ····· 86
나. 총부채 ····· 87
다. 담보 채무 ····· 88
라. 무담보 채무 ····· 88
마. 순자산의 추이: 감소세가 커졌음 ····· 90
바. 부채/소득비율의 추이 ····· 90
사. 도산 제도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 92
아. BAPCPA와 변제자력평가제도는 성공하였는가? ····· 93
6. CBP IV의 결론 ····· 95
7. 변제자력평가제도 성공 여부에 관한 이후 논쟁 ····· 95
가. 논쟁의 촉발 ····· 95
나. Pardo 교수의 주장 ····· 95
다. CBP IV 조사자들의 반박 ····· 97
라. 평가 ····· 98
Ⅴ. CBP V: 후불제 도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98
1. 배경 ····· 98
2. 연구의제 ····· 100
3. 조사방법 ····· 100
가. 조사기간 ····· 100
나. 조사지역 ····· 100
다. 법원기록 조사 ····· 100
라. 용어의 정의 – 어느 정도까지를 '후불제'로 볼 것인가 ····· 101
4. 조사결과 I: 절차 선택(chapter choice)의 문제 ····· 101
가. 각 장별 특징에 대한 소개 ····· 101
나. 절차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도덕적 동기, 인종, 변호사 보수 ····· 102
5. 조사결과 II: "후불제" 도산 현상 ····· 104
가. "후불제" 도산의 구조와 특성 ····· 104
나. 후불제 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106
다. CBP V 조사자들이 제안하는 해법 ····· 109
6. CBP V의 결론 ····· 110
Ⅵ. CBP 연구에 대한 평가와 의의 ····· 111

제4장 그 밖의 국내외 실증연구 현황 ····· 113

제1절 해외 실증연구 현황 ····· 115
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 ····· 115
1. 성별 ····· 115

2. 연령 ····· 116
3. 결혼 상태 및 가구 크기 ····· 116
4. 교육수준 및 직업, 사회경제적 수준 ····· 118
가. 교육수준 ····· 118
나. 직업 등 ····· 119
다. 패턴의 종합적 분석 ····· 120
Ⅱ. 도산의 원인 ····· 120
Ⅲ. 도산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22
1. White(1987): 면제재산 기준액 등과 도산신청률의 상관관계 ····· 122
가. 조사방법 ····· 122
나. 연구결과 ····· 122
2. Gropp et al. (1997):
면제재산 기준액이 높을수록 도산신청률은 낮아진다 ····· 124
3. McKinley(1997): 도산 증가의 요인 ····· 125
4. Buckley & Brinig (1998): 도산 증가의 3가지 요인 ····· 126
5. Moss & Johnson (1999):
소비자도산승수에 의한 도산사건수 추이 분석 ····· 128
6. Domowitz and Sartain (1999a): 개인별 자료에 따른 분석 ····· 130
7. Fay et al. (2002), Buckley & Brinig (1998), White(1987):
연령의 영향에 관한 일련의 연구 ····· 131
8. Fay et al. (2002): 도산의 결정요인 ····· 131
9. Gross & Souleles (2002): 위험효과와 수요효과 ····· 132
10. Zywicki(2005): 개인파산 증가의 원인 ····· 133
가. 도산에 관한 비용 감소와 편익 증가 ····· 133
나. 도산으로 인한 불이익 감소 ····· 134
다. 사회적 불명예 감소 ····· 134
라. 신용대출의 경향 변화 ····· 135
11. Lawless(2007): 소비자신용의 증가와 단기적 도산신청률 감소 ····· 136
Ⅳ. 도산 절차의 선택(chapter choice) ····· 137
1. Sullivan et al. (1988): 단순 경제 모델의 불완전성 ····· 137
가. 연구의 개관 ····· 137
나. 연구결과 ····· 138
다. 단순 경제 모델이 실패하는 이유 ····· 139
2. Ondersma (2009): 단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불완전성 ····· 141
가. 연구의 개관 ····· 141
나. 연구결과 ····· 142
3. Domowitz & Sartain (1999b) ····· 144
4. Greene et al. (2017): 제13장 절차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45
Ⅴ. 사회적 불명예의 존재 여부에 관한 논쟁 ····· 148
1. 양적 연구 ····· 148

가. McKinley(1997) ····· 148
나. Fay et al. (1998) ····· 148
다. Gross & Souleles (1998) ····· 149
라. Zywicki(2005) ····· 149
마. Gross & Souleles (2002) ····· 150
바. Athreya (2004) ····· 150
사. Buckley & Brinig (1998) ····· 150
아. Sousa(2018) ····· 151
2. 질적 연구 ····· 152
가. Hayes (2000) ····· 152
나. Efrat (2006) ····· 153
다. Thorne & Anderson (2006) ····· 153
라. Sousa(2013a) ····· 154
3. 소결 ····· 155
Ⅵ. 반복적 도산절차 신청인들에 대한 연구 ····· 156
1. 개관 ····· 156
2. CBP I ····· 157
3. Strand et al. (1994) ····· 159
4. Norberg(1999), Norberg(2007) ····· 160
5. Golmant & Ulrich (2006) ····· 160
6. Lown(2007) ····· 161
7. Miller & Miller (2008): 반복신청인들에 대한 BAPCPA 개혁의 효과 ···· 162
8. Greene(2015): 반복신청인들에 대한 법적 규제의 성공 여부 ····· 163
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63
나.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
사실상 무제한의 자동중지 효과를 부여하고 있음 ····· 164
다.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점:
입법목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느낌 ····· 164
라. 연구의 의의 ····· 165
9. Bartell(2015) ····· 166
가. 연구의 개관 ····· 166
나. 중지신청의 인용 비율: 대부분 인용됨 ····· 166
다. 중지신청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 166
라. §362(c)(4)은 효과적이거나 필요한가? ····· 169
10. 소결 ····· 169
Ⅶ. 신용교육의 의무화 문제 ····· 170
1. 개관 ····· 170
2. Braucher(2001): 신용교육은 도산절차 성공률에 영향을 주는가 ····· 170
3. Block-Lieb et al. (2005):
신용교육이 채무자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가 ····· 171

4. 국립소비자법센터 보고서: 의회가 의도한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 172
5. 미국 연방 회계감사원 보고서 …… 174
6. RAND 보고서(2007): 사전 신용상담 코스의 효과성 평가 …… 175
7. 연방 도산관재인 사무처 보고서 (2008): 채무자 교육의 효과 분석 …… 176
가. 연구 개관 …… 176
나. 조사 결과 …… 176
8. MMI 보고서(2008): 채무자 교육의 효과성 판단 …… 177
가. 연구의 개관 …… 177
나. 연구 결과 …… 178
9. Thorne & Porter (2010): 채무자 관점에서 본 채무자 교육의 유효성 … 178
10. Sousa(2013b): 채무자들은 의무적 신용교육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 179
Ⅷ. 도산 이후 채무자들의 경제생활 …… 180
1. Han & Li (2004): 새출발 효과의 검증 …… 180
2. Porter & Thorne (2006): 새출발 효과의 실패 …… 182
Ⅸ. 도산절차 운용의 실무적 문제 …… 182
1. Rhodes(1999): 채무자들이 도산신청서 양식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있는지 여부 …… 182
제2절 국내 실증연구 현황 …… 184
1. 박창균 등 (2005):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 184
가. 연구방법 …… 184
나. 연구결과 …… 185
다. 정책 제안 …… 187
2. 박창균(2008):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 188
가. 연구방법 …… 188
나. 분석 결과 …… 188
다. 정책 제안 …… 189
3. 김미라·황덕순 (2008): 개인파산채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 190
가. 연구의 개요 …… 190
나. 연구 결과 …… 190
다. 결 론 …… 191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2009): 개인파산사건의 분석 …… 191
가. 연구방법 …… 191
나. 분석 결과 …… 191
5. 김영준·남주하 (2009): 소비행태와 개인파산 …… 192
가. 연구방법 …… 192
나. 분석 결과 …… 193
다. 정책 제안 …… 193
6. 오수근(2010): 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연구 …… 194

가. 연구방법 ····· 194
나. 분석결과 ····· 194
다. 정책 제안 ····· 194
7. 김두얼(2013):
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적정한 운영방안 ·· 195
가. 연구방법 ····· 195
나. 연구결과 ····· 196
다. 정책 제안 ····· 197
8. 오윤해(2014):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198
가. 연구방법 ····· 198
나. 분석결과 ····· 198
다. 정책 제안 ····· 199
9. 오수근(2015):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 200
가. 연구방법 ····· 200
나. 분석결과 ····· 200
다. 정책 제안 ····· 201
10. 오수근(2016): 개인회생 채무자의 차금과 사기죄 ····· 201
11. 서울회생법원(2020) ····· 202
가. 조사방법 ····· 202
나. 조사대상 ····· 203
다. 조사결과 ····· 204
라. 평가 ····· 205
제3절 국내외 실증연구의 비교법적 평가 ····· 206

제5장 실증연구와 법원의 정책 반영 ····· 209
Ⅰ. 현황 ····· 211
Ⅱ. 정책 제언의 실무 반영 사례 ····· 211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211
2. 미복권 파산자에 대한 차별 규정 정비 ····· 211
3. 주택담보대출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실시 ····· 212
4. 개인도산채무자들에 교육 프로그램 ····· 214
5. 개인파산·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의 전국 법원 확산 ····· 215
6.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시행 ····· 216
Ⅲ. 평가 ····· 217

제6장 향후 실증연구에 관한 시사점 ····· 219
Ⅰ. 정기적 실증조사의 필요성 ····· 221
Ⅱ. 실시시기와 간격 ····· 221
Ⅲ. 조사의 대상 ····· 222

1. 법원기록 ····· 222
2. 신청대행기관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 224
3. 인터넷 여론과 언론보도 등 ····· 224
4. 설문조사 ····· 224
5. 인터뷰 ····· 225
6. 신용카드 정보 ····· 225
7. 패널조사자료 ····· 225
Ⅳ. 조사방법에 관한 주의사항 ····· 226
1. 일반론 ····· 226
2. 편향의 검증 ····· 226
3. 검증을 위한 자료의 공개 ····· 227
4. 개인정보 보호 ····· 228
5. 인플레이션 조정 ····· 228
6. 연구자의 구성 ····· 228
Ⅴ. 연구의제 ····· 229
1. 도산채무자들에 대한 기본정보 ····· 229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간 선별효과 확인 ····· 230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선택의 요인 ····· 231
가. 절차 선택의 직접적 동기 ····· 232
나. 변호사보수 ····· 232
다. 변호사의 역할 ····· 233
4. 단순 경제 모델 또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검증 ····· 233
5. 변호사 보수와 법률구조의 문제 ····· 234
6. 면제재산의 기능 ····· 234
7. 면책결정요인 분석 ····· 235
8. 도산 이후 채무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생활 ····· 236
9. 채무자 교육의 효과 ····· 236
Ⅵ. 연구방향의 편향성 문제 ····· 237

제7장 실증연구에 관한 법원의 역할 ····· 239

제1절 각국의 실증연구 기초자료 생산과 공표 현황 ····· 241
Ⅰ. 미국의 실증연구 기초자료 생산과 공표 ····· 241
1. 미국 연방법원 ····· 241
가. 미국 도산사건 현황에 관한 일반 통계 ····· 241
나. BAPCPA 보고서 ····· 242
2.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의 통계 제공 ····· 246
3. 법무부 도산관재인 프로그램(U.S. Trustee Program)의 자료 제공 ····· 247
가. 개관 ····· 247
나. 도산관재인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들 ····· 248
Ⅱ. 영국의 도산 통계 ····· 252

1. 개관 ····· 252
2. 개인도산절차 통계 ····· 253
3. 기업도산 통계 ····· 254
가. 영국의 기업도산절차 ····· 254
나. 기업도산에 관한 통계 ····· 255
Ⅲ. 독일의 도산 통계 ····· 257
1. 개관 ····· 257
2. 개인도산에 관한 통계 ····· 257
3. 기업도산에 관한 통계 ····· 259
4. 주요 통계는 영어 번역물을 제공함 ····· 260
Ⅳ. 프랑스의 도산 통계 및 실증분석자료 ····· 260
1. 프랑스 도산 제도 개관 ····· 260
가. 개인도산 제도 ····· 260
나. 기업도산 제도 ····· 261
2. 프랑스의 도산 통계 및 실증분석 ····· 262
가. 개관 ····· 262
나. 개인도산 ····· 262
다. 기업도산 통계 ····· 263
3. 프랑스은행의 실증자료를 볼 때 유의할 점 ····· 264
가. 주요 통계자료의 영어 번역물 제공 ····· 264
나. 통화정책 주관 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 ····· 264
Ⅴ. 일본의 도산 통계 ····· 265
1. 법원(裁判所) 제공 통계 ····· 265
2. 통계청(統計庁) 제공 통계 ····· 266
3.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제공 통계 ····· 266
제2절 우리 법원의 실증조사 현황 ····· 269
Ⅰ. 도산 통계 작성 현황 ····· 269
1. 법원통계월보 중 개인도산 관련 부분 ····· 269
2. 사법연감(통계) 중 개인도산 사건 관련 부분 ····· 271
3.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되는 통계 ····· 272
4. 법원행정처의 회생법원 연간보고서 ····· 274
Ⅱ. 서울회생법원의 실증데이터 개선작업 현황 ····· 274
1. 개관 ····· 274
2. 개인파산 관련 ····· 275
가. 통계산출방식 ····· 275
나. 새롭게 산출하고 있는 통계 항목 ····· 275
3. 개인회생 관련 ····· 282
가. 통계 산출 방법 ····· 282
나. 새롭게 산출 추진중인 통계 항목 ····· 283
Ⅲ. 회생·파산위원회의 관련 의결 소개 ····· 288

Ⅳ. 평가와 검토할 사항 ····· 289
1. 실증데이터 항목의 적정성 검토 ····· 289
2. 더 생각해 볼 점 ····· 290
Ⅴ. 법원의 역할에 관한 제언 ····· 291
1. 실증데이터 산출작업의 지속 및 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 ····· 291
2. 법원의 심층 실증연구 필요성 여부 ····· 292
가. 법원이 심층 실증연구를 하는 방안의 장점 ····· 292
나. 법원이 심층 실증연구를 하는 방안의 단점 ····· 293
다. 소결 ····· 294
3. 실증조사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 295
가. 문제점 ····· 295
나. 서울회생법원이 주관하는 방안 ····· 295
다. 회생·파산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안 ····· 296
라. 사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방안 ····· 300
마.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방안 ····· 300
바. 법무부 또는 통계청, 한국은행 등 사법부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방안 ··· 301
사. 각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302
4. 연구방법의 문제 ····· 304
가. 단순 집계 방식의 한계 ····· 304
나. 연구의제의 명확화 및 정밀한 연구 설계 필요 ····· 304
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필요 ····· 305
라. 실증연구 전문 인력의 참여 필요 ····· 305
5. 실증연구 또는 실증데이터의 산출 및 공표 방법 개선에 관한 제언 ····· 305
가. 전국적 데이터의 산출 필요성과 법원별 실무 편차 정보 제공 ····· 305
나. e-Form화의 필요성 ····· 307
다. 전자서식에 의한 데이터 추출 간소화 방안 마련 ····· 309
라. 결과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309
마. 연간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 ····· 310
6. 실증조사 근거규정의 필요성 여부 ····· 311
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 311
나. 실증연구자에 대한 기록 열람 등 협조의 문제 ····· 317
다. 지속성과 확대의 관점에서 ····· 320
라. 단점 – 법원에 추가적 부담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 321
마.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유의할 사항 ····· 322
바. 상정 가능한 관계 법령 개정안 ····· 322
7. 소결 ····· 325

제8장 결론 ····· 327

127.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TStudy on the International E-service

연구총서 2021-07

연구책임자 : 김효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5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Ⅰ. 연구의 범위 ····· 7
Ⅱ. 연구의 방법 ····· 9

제2장 국제적 전자송달의 허용 여부 ····· 11

제1절 해외에서의 국제적 전자송달 허용 여부 ····· 13
Ⅰ. 국제적 전자송달을 허용하는 조약 ····· 13
1. 유럽연합송달규칙(EU Service Regulation) ····· 13
가. 현행 2007년 유럽연합송달규칙 ····· 13
나. 2018년 유럽연합송달규칙 개정안 ····· 15
2. 유럽소액소송규칙(ESCP Regulation) ····· 18
3. 만국우편협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 ····· 19
Ⅱ. 국제적 전자송달을 허용하는 국가 ····· 20

1. 미국 ····· 20
2. 영국 ····· 22
3. 호주 ····· 23
4. 캐나다 ····· 24
Ⅲ. 국제적 전자송달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 26
1. 일본 ····· 26
가. 서설 ····· 26
나. 재판절차 등의 IT화 검토회 ····· 27
다. 민사재판절차 등 IT화 연구회 ····· 27
라. IT화에 동반하는 국제송달 및 국제증거조사 검토회 ····· 28
2. 독일 ····· 29
3. 프랑스 ····· 31
4. 스위스 ····· 32
5. 기타 국가 ····· 33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적 전자송달 허용 여부 ····· 34
Ⅰ. 서설 ····· 34
Ⅱ. 한·호 조약 등 양자조약 하에서의 국제적 전자송달 허용 여부 ····· 37
1. 개관 ····· 37
2. 중앙당국을 통한 전자송달 허용 여부 ····· 38
3. 외교경로를 통한 전자송달 허용 여부 ····· 41
4.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한 전자송달 허용 여부 ····· 42
Ⅲ. 헤이그송달협약 하에서의 국제적 전자송달 허용 여부 ····· 45
1. 개관 ····· 45
2.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의 개념 ····· 46
3. 주된 경로(main channel)에 의한 전자송달 허용 여부 ····· 47
가. 발송당국과 중앙당국 사이의 전자송부(e-transmission) 허용 여부 ···· 47
나. 송달받을 사람에 대한 전자송달(e-service) 허용 여부 ····· 50
4. 대안적인 경로(alternative channel)에 의한 전자송달 허용 여부 ····· 51
가. 우편 경로(postal channels)에 의한 송달의 경우
(협약 제10조 a호) ····· 51
나.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등을 통한 송달의 경우
(협약 제10조 b호·c호) ····· 54
다.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한 송달의 경우(협약 제8조) ····· 55
5. 예외적인 경로(derogatory channel)에 의한 전자송달 허용 여부
(협약 제19조) ····· 57
Ⅳ.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 하에서의 국제적 전자송달 허용 여부 ··· 58

제3장 해외에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의 허용 요건 ····· 61

제1절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63
Ⅰ. 헤이그송달협약상의 허용 요건 ····· 63

Ⅱ. 유럽연합송달규칙(EU Service Regulation)상의 허용 요건 ····· 63
Ⅲ. 만국우편협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상의 허용 요건 ····· 64
Ⅳ.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에서의 허용 요건 ····· 64

1. 미국에서의 허용 요건 ····· 65
가. Rio Properties, Inc. v. Rio Int'l Interlink 사건 ····· 65
나. Agha v. Jacobs 사건 ····· 70
다. Williams-Sonoma, Inc. v. Friendfinder, Inc., et al 사건 ····· 72
라. F.T.C. v. Pecon Software Ltd. 사건 ····· 73
마. 소결 ····· 74
2. 영국에서의 허용 요건 ····· 76
가. Queen's Bench Division 사건 ····· 76
나. Crystal Decisions Ltd. v. Vedatech Corp. 사건 ····· 77
3. 호주에서의 허용 요건 ····· 77
4. 캐나다에서의 허용 요건 ····· 79

제2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및 팩스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81
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81
1. 서설 ····· 81
2. 페이스북(facebook)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81
가. 캐나다에서의 허용 요건 ····· 81
나. 미국에서의 허용 요건 ····· 82
다. 뉴질랜드에서의 허용 요건 ····· 83
3. 트위터(twitter)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84
Ⅱ. 인터넷 게시판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84
Ⅲ. 팩스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84

제3절 보안전산망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85

제4장 우리나라의 국제적 전자송달 도입 방안 ····· 87

제1절 국제적 전자송달의 수단별 도입 여부 ····· 89
Ⅰ.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 여부 ····· 89
1.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장점 ····· 89
2.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단점 ····· 89
3. 검토 ····· 90
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및 팩스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 여부 ····· 92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 여부 ····· 92
2. 인터넷 게시판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 여부 ····· 92
3. 팩스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 여부 ····· 93

Ⅲ. 보안전산망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 여부 ····· 93
제2절 국제적 전자송달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 ····· 94
Ⅰ. 서설 ····· 94
Ⅱ.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제도적·기술적 도입 방안 ····· 94
1. 보안이 유지되는 이메일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 94
2. 우리나라의 샵메일 ····· 96
3. 독일의 데메일(De-Mail) ····· 98
가. 데메일법(De-Mail-Gesetz)의 목적 ····· 98
나. 데메일법의 주요 내용 ····· 99
다. 데메일 이용 현황 ····· 113
4. PGP(Pretty Good Privacy) 기술 ····· 115
5. 시사점 ····· 115
가. 국제적 전자송달을 위한 이메일서비스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 115
나. 국내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공인 ····· 117
다. 외국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동등 취급 ····· 118
Ⅲ. 보안전산망에 의한 국제송달의 제도적·기술적 도입 방안 ····· 119
1. 국내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 119
2.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적 전자송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 ····· 120
제3절 국제적 전자송달 도입을 위한 법적 방안 ····· 121
Ⅰ. 국제적 전자송달의 허용 요건 정립 ····· 121
1. 서설 ····· 121
2.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122
가. 송달받을 사람이 재판상 문서의 송달 목적으로
특정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을 것 ····· 122
나. 송달이 행해지는 외국의 법이 이메일에 의한 송달을
금지하지 않을 것 ····· 123
다. 국내 공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이메일서비스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질 것 ····· 123
라. 송달받을 이메일 계정이 국내 공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이메일서비스상의 계정이거나 이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외국 이메일서비스상의 계정일 것 ····· 124
마.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124
3. 보안전산망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 125
가. 송달받을 사람이 보안전산망을 통하여
재판상 문서를 송달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하였을 것 ····· 125
나. 송달이 행해지는 외국의 법이 보안전산망에 의한 송달을
금지하지 않을 것 ····· 126
Ⅱ. 송달시점 ····· 126
Ⅲ. 국제적 전자송달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 128

1. 양자조약상 국제적 전자송달의 명문화 및
양자조약·양해각서 체결국의 확대 ····· 129
2. 헤이그송달협약상 반대선언의 완화 ····· 129
3. 민사소송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민소전자문서법의 개정 ····· 131
4. 관련 문제: 이메일에 의한 국내송달의 도입 ····· 131

제5장 결론 ····· 133

128.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연구총서 2021-08

연구책임자 : 박기쁨(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5월 2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Ⅰ. 응보적 사법의 의의 및 한계 ····· 3
Ⅱ.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등장 ····· 4
Ⅲ.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과 회복적·치료적 사법 ·····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9
Ⅰ. 연구의 전제 및 내용 ····· 9
Ⅱ. 연구의 방법 ····· 11

제2장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 ····· 13

제1절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의의 ····· 15
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15
1. 회복적 사법의 연혁 및 개념 ····· 15
2. 회복적 사법의 특징 ····· 17
가. 자율성 ····· 18
나. 갈등해소 ····· 18
다. 피해의 배상 ····· 18

라. 지역사회의 역할 ····· 19
3. 회복적 사법 절차의 가치와 목표 ····· 19
가. 절차의 가치와 목적(Process Values and Goals) ····· 19
나. 목표(Objectives) ····· 20
4. 회복적 사법과 응보적 사법의 차이 ····· 23
5.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 24
가.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 ····· 24
나. 양형서클(Sentencing Circle) ····· 26
Ⅱ.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stice) ····· 29
1. 치료적 사법의 등장배경 및 개념 ····· 29
2. 치료적 사법과 전통적인 형사사법과의 비교 ····· 31
3.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s) ····· 32
가. 문제해결법원의 의의 및 공통요소 ····· 32
나. 문제해결법원 프로그램의 최소 요건 ····· 34
다. 문제해결법원 중 약물치료법원의 10대 주요 구성요소 ····· 50
Ⅲ.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과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비교 ····· 52
제2절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그리고 효과 ····· 54
Ⅰ.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에 대한 우려와 반론 ····· 54
1. 사법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 ····· 54
가. 비판
(외부 관여자의 영향력 확대 및 법관의 중립성, 객관성 확보 곤란) ··· 54
나. 반론 ····· 54
2. 극단적 사법후견주의의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 ····· 55
가. 비판 ····· 55
나. 반론 ····· 56
3. 당사자주의 붕괴의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 ····· 58
가. 비판 ····· 58
나. 반론 ····· 58
4. 피고인의 자발성 침해 문제와 그에 대한 반론 ····· 58
가. 비판 ····· 58
나. 반론 ····· 59
5. 피해자의 피해 감정의 회복 침해 문제와 그에 대한 반론 ····· 60
가. 비판 ····· 60
나. 반론 ····· 60
Ⅱ. 회복적·치료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문제해결법원 등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 61
1. 미국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 관련 실증적 조사 결과 ····· 61
2. 미국형사정책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 등의 분석 ··· 63
가. 약물 사용 여부 ····· 64
나. 재범률 ····· 68

3. 미국 욜로 카운티(Yolo County)의 정신건강법원의 운영 효과 ····· 71
4. 캐나다의 약물치료법원 전문가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Drug Treatment Court Professionals(CADTCP)]의 연구결과 ····· 73
5. 비용절감 효과 관련 분석 ····· 74
6. 그 밖의 분석 ····· 76
가. American University's School of Public Affairs의 조사 결과 ····· 76
나. 미네소타 약물치료법원 등의 조사 결과 ····· 78
7. 우리나라의 경우 ····· 79

제3장 미국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 ····· 81

제1절 회복적 사법이념에 기반한 제도 ····· 84
Ⅰ.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 ····· 84
1. 피해자-가해자 조정 실무 지침 (Guidelines for Victim-Sensitive Victim-Offender Mediation) ····· 85
가. VOM의 목적 ····· 85
나. VOM의 기본 원칙 ····· 85
다. VOM의 지침 ····· 86
라. 지침에 따른 VOM 절차의 진행 과정 ····· 93
2. VOM 프로그램의 운영 ····· 95
가. VOM 프로그램의 대상자 ····· 95
나. VOM 프로그램의 대상사건 ····· 95
다. VOM 프로그램의 사건 접수 시기 ····· 96
라. VOM 프로그램의 사건 의뢰기관 ····· 96
마. VOM 프로그램의 운영기관 ····· 97
3. 미 변호사협회의 기준 ····· 97
Ⅱ. 피해자 영향 패널(Victim Impact Panel) ····· 100
1. 의의 및 목적 ····· 100
2. 실행방식 ····· 101
3. 오클라호마주의 Victims Impact Panel(VIP) ····· 102
Ⅲ. 캘리포니아주의 피해자 영향 교실(Victim Impact Class) ····· 103
1. 의의 ····· 103
2. 목적 ····· 104
3. 실행 방식 ····· 104
4. 구체적 사례 ····· 105
제2절 치료적 사법이념에 기반한 문제해결법원 ····· 105
Ⅰ. 약물치료법원(Drug Court) ····· 108
1. 약물치료법원의 등장배경 및 운영현황 ····· 108
2. 약물치료법원의 관여자 및 관할사건 ····· 110
가. 관여자 ····· 110
나. 약물치료법원 관할 사건 ····· 111

3. 약물치료법원 사건의 실무 ····· 113
가. 약물치료법원 프로그램의 내용 ····· 113
나. 대상사건의 선정 절차 ····· 116
4. 약물치료법원 재판의 유형 ····· 117
가. 기소 인부 전(pre-plea) 모델 ····· 118
나. 기소 인부 후(post-plea) 모델 ····· 118
5. 뉴욕주 브루클린 약물치료법원(Brooklyn Treatment Court)의
절차 개관 ····· 120
가. 기소 전 약물치료법원 사건으로의 분류 ····· 120
나. 접수 및 임상진단 ····· 121
다. 기소인부 및 3단계 프로그램의 내용 ····· 121
라. 제재와 보상 ····· 123
마. 치료밴드(Treatment Bands) ····· 123
Ⅱ.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 ····· 125
1. 정신건강법원의 의의 및 특징 등 ····· 125
2. 대상사건 선정 등 절차 진행 ····· 130

제4장 우리나라 형사 재판의 현실 및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규정 검토 ····· 135

제1절 우리나라 형사 재판의 현실 ····· 137
Ⅰ. 우리나라의 재범률과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요구 ····· 137
Ⅱ.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우리나라의 현실 및 개선방안 ····· 140
1. 관련 인식의 부족 ····· 140
2.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부족 ····· 142
3. 형사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량 등 ····· 143
4.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족 ····· 147
제2절 우리나라의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 검토 ····· 148
Ⅰ. 회복적 사법 관련 제도 ····· 148
1. 관련 규정 ····· 148
2. 한계 ····· 149
Ⅱ. 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 ····· 15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보호제도 ····· 150
가. 규정 내용 ····· 150
나. 문제점 ····· 152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수강명령 등의 병과 등
(2020. 12. 4. 시행) ····· 154
가. 규정 내용 ····· 154
나. 해설 및 한계 ····· 155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 ····· 157
가. 규정 내용 ····· 157

나. 치료명령 운영 현황 ····· 160
다. 치료명령 사건의 재범 여부 및 재범률 ····· 163
라. 현행 치료명령 제도의 한계 ····· 169
4. 소년법상의 소년형사사건 조사관 제도 ····· 172
가. 규정 내용 ····· 172
나. 소년형사사건 조사관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 ····· 173
다. 소년형사사건 조사위촉 절차 및 조사방법 ····· 175
라. 조사관 제도의 활용과 실무상 문제점 ····· 176

제5장 법원 내 회복적·치료적 사법 실시 사례에 대한 분석 ····· 179

제1절 대전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에서 실시한 치료적 사법 ····· 181
Ⅰ. 사례 정리 ····· 181
1. 2008노10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 181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181
나. 양형심리 ····· 181
다. 선고결과 및 특별준수사항 ····· 182
2. 2008노135, 4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 등 ····· 183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183
나. 양형심리 ····· 183
다. 선고결과 및 특별준수사항 ····· 185
3. 2008노273 살인미수 ····· 186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186
나. 양형심리와 선고결과 및 특별준수사항 ····· 186
4. 2008노551 살인미수 ····· 187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187
나. 양형심리 ····· 187
다. 선고결과 및 특별준수사항 ····· 188
5. 2008노580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89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189
나. 양형심리와 판결선고결과 및 특별준수사항 ····· 190
6. 2008노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절도 등 ····· 191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191
나. 양형심리 ····· 191
다. 보석결정 및 경과 ····· 193
라. 판결선고결과 및 특별준수사항 ····· 195
7. 2008노144 준강도,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 195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195
나. 양형심리 ····· 195

다. 보석결정 및 경과 ····· 196
라. 판결선고결과 및 특별준수사항 ····· 197
Ⅱ. 분석 ····· 198
제2절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에서 실시한 치료적(치유적)/회복적 사법 ···· 200
Ⅰ. 사례 정리 ····· 200
1. 치유법원 프로그램 적용 사례 ····· 200
가. 2019노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201
나. 2019노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203
2. 치료적 사법 적용 사례(2019노947 살인) ····· 205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205
나. 재판 진행 경과 ····· 206
다. 판결선고결과 ····· 206
3.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2019노888 살인미수, 협박) ····· 207
가.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207
나. 재판 진행 경과 ····· 207
다. 판결선고결과 ····· 207
Ⅱ. 분석 ····· 208
제3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제2단독에서 실시한 회복적 사법 ····· 209
Ⅰ. 형사화해제도 실시 ····· 209
Ⅱ. 실시 경과 ····· 210
1. 전담재판부 마련 및 검찰과의 협의 등 ····· 210
2. 피고인 및 피해자의 보호 ····· 210
3. 구체적인 진행방식 ····· 211
가. 대상사건 선정 ····· 211
나. 리딩 인(Leading-In) 작업 ····· 211
다. 공판절차와의 엄격한 분리 ····· 212
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진행절차 ····· 212
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시 결과의 반영 ····· 213
4. 시범실시 대상 사건: 10건(자백,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동의) ····· 213
5. 시범실시 결과의 평가 및 성과 ····· 215
제4절 우리나라의 회복적·치료적(치유적) 사법 관련 재판의 재범률 분석 및 한계 ····· 217
Ⅰ. 재범 여부 ····· 217
1. 회복적 사법 관련 재판 피고인들의 재범 여부 ····· 217
2. 치료적/치유적 사법 관련 재판 피고인들의 재범 여부 ····· 219
Ⅱ. 분석 ····· 223
1. 전체 및 각 유형별 재범률 ····· 224
2. 기간에 따른 재범률 ····· 224
3. 정리 ····· 225
4. 한계 및 시범실시의 방향 ····· 226

제6장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 227

제1절 회복적 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 229
Ⅰ. 현행 법률 내에서의 운영 방안 ····· 229
1. 시범실시 재판 관련 회복적 사법 절차 도입 검토
– 소송촉진법상의 형사소송에서의 화해제도(제36조)의 활용 ····· 229
2. 피해자 영향 패널 또는 교육 도입 ····· 230
Ⅱ.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 ····· 233
1. 피해자–가해자 조정 제도의 법제화 등 ····· 233
2. 피해자 영향 패널 또는 교육의 법제화 ····· 235

제2절 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 236
Ⅰ. 현행 법률 내에서의 운영 방안 ····· 236
1. 시범실시 재판 관련 치료적 사법 재판의 도입 검토 ····· 236
가. 시범실시한 치료적 사법 관련 사건의 검토 ····· 236
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천방안 ····· 240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보호제도의 사법절차 내 이용방안 모색· 241
가. 방안 1:
치료보호 규정 개정 없이 재판 진행 중 치료보호제도 이용에 적정한
피고인에 대해 사실상 자의 입원 형태로 치료보호 받을 것을 권유 ·· 242
나. 방안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 개정 ····· 242
Ⅱ.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 ····· 243
1. 치료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도입 검토 ····· 243
2. 새로운 보호처분절차로 치료보호처분의 신설 검토 ····· 245
Ⅲ. 공판 진행 중 치료권고제도의 신설 여부 ····· 247
1. 공판 진행 중 치료권고의 필요성(치료과정에 대한 사법 통제의 필요성) 247
2. 치료권고 방안 ····· 247
가. 1안: 치료감호법을 근거로 치료를 권고하는 방안 ····· 247
나. 2안: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치료를 권고하는 방안 ····· 248
다. 3안: 공판절차 정지제도와 결합하여
재판장의 치료권고를 설계하는 방안(법 개정) ····· 249
라. 4안: 형사소송법 또는 치료감호법 상 재판 중
치료권고제도 규정 신설 ····· 249

제3절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원조사관의 활용 문제 ····· 251
Ⅰ. 현 법규 내의 관련 제도 검토 및 활용 ····· 252
1.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의 근거 규정 및 장단점 ····· 252
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의 근거 규정 ····· 252
나.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의 장·단점 ····· 253
2.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 전 조사의 근거 규정 및 장단점 ····· 254
가.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 전 조사의 근거 규정 ····· 254

나.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 전 조사의 장단점 ····· 254
3. 각 제도의 활용 ····· 255
Ⅱ. 법 개정을 통한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 운영 ····· 255
1.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 규정 마련 ····· 255
2.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조사위원제도의 마련 ····· 256
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 256
나. 형사조사위원제도 신설 ····· 257

제7장 결론 ····· 259

129.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ies on Bankruptcy Cases and the Role of the Court - Focused on Personal Bankruptcy Cases -

연구총서 2021-09

연구책임자 : 성대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4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Ⅰ. 연구의 범위 ····· 7

Ⅱ.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 11

제1절 유럽연합의 탄생 ····· 13

Ⅰ. 개관 ····· 13

Ⅱ. 유럽의 통합과정 ····· 14

1. 개요 ····· 14

2. 유럽연합의 탄생 ····· 15

가. 파리조약 ····· 15

나. 로마조약 ····· 15

다. 브뤼셀조약 ····· 16
라. 단일유럽의정서 ····· 17
마. 마스트리히트조약 ····· 17
바. 암스테르담조약 ····· 18
사. 니스조약 ····· 19
아. 리스본조약 ····· 19
Ⅲ. 유럽통합과 통합사법의 의의 ····· 21
제2절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 23
Ⅰ. 유럽연합에 관한 개요 ····· 23
1. 유럽연합의 규범적 기초 ····· 23
2. 유럽연합 회원국 ····· 23
3.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 24
Ⅱ.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 25
1.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 ····· 25
가. 구성 및 운영 ····· 25
나. 성격 및 권한 ····· 25
2.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25
가. 구성 ····· 25
나. 권한 ····· 26
3.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26
가. 의의 및 구성 ····· 26
나. 권한 ····· 26
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27
가. 역사 ····· 27
나. 구성 및 운영 ····· 28
다. 권한 ····· 28
5.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29
6.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29
7.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 30
8. 기타 ····· 30
제3절 유럽연합의 사법질서 ····· 31
Ⅰ. 개관 ····· 31
Ⅱ. 유럽연합의 법체계 ····· 32
1. 유럽연합법의 법원(法源) ····· 32
가. 개설 ····· 32
나. 제1차법원(法源) ····· 33
다. 국제법상 조약 및 국제관습법 ····· 36
라. 제2차법원(法源) ····· 36
마. 제3차법원(法源) ····· 38
2. 유럽연합 내 규범 간의 관계 ····· 39

가. 유럽연합의 규범 간 계위 ····· 39
나.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의 관계 ····· 42
3. 유럽연합의 법적행위 유형론 ····· 43
가. 작용형식적 분류 ····· 43
나. 입법행위와 비입법행위 ····· 45
Ⅲ.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 47
1. EU 사법재판소의 구조 ····· 47
가. 개설 ····· 47
나. 사법재판소 ····· 48
다. 일반재판소(제1심법원) ····· 50
라. 사법재판소와 일반재판소 간의 관계 ····· 52
2. EU 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53
가. 유럽연합조약 ····· 53
나. 유럽연합기능조약 ····· 53
3. 제2차법원(규칙: Regulation)에 따른 관할 ····· 55

제3장 EU 민사집행절차의 발전 ····· 57

제1절 국제관계에서 판결의 승인과 집행 ····· 59
Ⅰ. 의의 ····· 59
Ⅱ.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일반론 ····· 60
1. 외국판결의 국내집행 ····· 60
2. 국내판결의 외국집행 ····· 61
Ⅲ. 소결 ····· 62

제2절 유럽민사집행절차의 발전 과정 ····· 63
Ⅰ. 브뤼셀협약 ····· 63
1. 의의 ····· 63
2. 브뤼셀협약의 주요내용 ····· 64
가. 개설 ····· 64
나. 제1심: 집행절차의 신청과 재판 ····· 64
다. 제2심: 결정에 대한 불복 ····· 65
Ⅱ. 암스테르담조약 ····· 65
1. 의의 ····· 65
2. 브뤼셀 I 규칙 ····· 68
가. 개설 ····· 68
나. 적용범위 ····· 68
다. 관할 ····· 69
라.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 76
3.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 ····· 80
가. 개설 ····· 80
나.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의 의의 ····· 81

다. 유럽집행명령으로서 인증 요건 ····· 81
라. 집행 ····· 82
마. 집행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83
바. 다른 규칙과의 관계 ····· 84
Ⅲ. 리스본조약 ····· 84
1. 개요 ····· 84
2. 유럽지급명령절차 및 유럽소액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85
가. 개설 ····· 85
나. 내용 ····· 85
3. 개정 브뤼셀 I 규칙 ····· 86
가. 개설 ····· 86
나.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 87

제4장 유럽지급명령절차와 유럽소액소송절차 ····· 91

제1절 개관 ····· 93
제2절 유럽지급명령절차 ····· 94
Ⅰ. 목적 ····· 94
Ⅱ. 적용 범위 ····· 94
1. 지역적 적용범위 ····· 94
2. 물적 적용범위 ····· 94
가. 민사사건 및 상사사건 ····· 94
나. 섭외 사건 ····· 96
3. 적용 시점 ····· 98
4. 관할권 ····· 98
Ⅲ. 유럽지급명령절차 ····· 98
1. 신청서 작성과 제출 ····· 98
가. 소송목적의 값 ····· 98
나. 신청서 작성 ····· 100
다. 관할 ····· 100
라. 신청서 제출 ····· 101
2. 재판 전 절차 ····· 103
가. 서면심리 ····· 103
나. 신청서 보정 ····· 103
다. 법원에 의한 신청 거부 ····· 104
3. 유럽지급명령 결정 ····· 104
가. 유럽지급명령서 작성 ····· 104
나. 유럽지급명령서 발부 ····· 105
4. 송달 ····· 105
5. 이의신청 ····· 107
6. 집행가능선언 ····· 108

7. 번역 ····· 108
8. 유럽집행명령에 대한 예외적 심사 ····· 109
9. 집행의 실현 ····· 110
10. 집행의 거부 ····· 110
11. 집행의 보류 또는 제한 ····· 111
제3절 유럽소액소송절차 ····· 111
Ⅰ. 개관 ····· 111
1. 의의 ····· 111
2. 도입배경 ····· 112
3. 제정과정 ····· 113
4. 유럽지급명령절차와 유럽소액소송절차의 비교 ····· 114
Ⅱ. 주요국의 소액소송절차 개요 ····· 116
1. 개설 ····· 116
2. 영국과 웨일즈 ····· 116
3. 독일 ····· 118
4. 프랑스 ····· 118
5. 네덜란드 ····· 119
6. 폴란드 ····· 119
7. 스웨덴 ····· 120
Ⅲ. 유럽소액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121
1. 개설 ····· 121
2. 목적과 특징 ····· 122
3. 회원국의 각 소액소송절차 및 유럽규칙에 대한 관계 ····· 122
가. 회원국의 소액소송절차와의 관계 ····· 122
나. 다른 규칙과의 관계 ····· 123
4. 적용기준 ····· 124
가. 유럽연합 내 섭외 소송 ····· 124
나. 소송목적의 값 ····· 124
다. 소송의 대상 ····· 125
5. 유럽소액소송절차 일반 ····· 125
가. 관할 ····· 125
나. 변호사에 의한 대리 不要 ····· 126
다. 인지액 등 수수료 ····· 126
라. 소송비용 ····· 129
마. 당사자에 대한 지원 ····· 129
바. 언어 ····· 129
사. 송달 ····· 130
6. 유럽소액소송절차의 단계별 주요내용 ····· 130
가. 제1 단계: 유럽소액소송절차의 개시 ····· 130
나. 제2 단계: 당사자 간 서면 교환 ····· 132

다. 제3 단계: 채무이행의 판결 ····· 133
라. 제4 단계: 불복신청 ····· 135
마. 제5 단계: 승인과 집행 ····· 137
Ⅳ. 유럽소액소송절차 현황 ····· 140
1. 신청건수 ····· 140
2. 절차의 진행기간 ····· 141
3. 유럽소액소송절차에 대한 평가 ····· 142
가. 일반적인 평가 ····· 142
나. 그 외 집행위원회의 실무가이드 ····· 143
Ⅴ. 전망 ····· 143
1. 고려 가능한 개선방향 ····· 143
2. 전망 ····· 146

제5장 결론: 시사점에 갈음하며 ····· 149

130.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Policy Study for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Judicial Procedures and Services

연구총서 2021-10

연구책임자 : 정채연(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1년 8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제2장 각국 사법부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 동향 ····· 9

제1절 중국 사법부의 스마트 법원 ····· 11
Ⅰ. 중국 사법부의 지능형 스마트 법원 구축 방안 ····· 11
Ⅱ. 중국의 인터넷 법원을 통한 사건 해결 ····· 12
Ⅲ. 대국민 법률서비스 지능로봇으로서 시아오파 ····· 13
Ⅳ. 소송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 14
Ⅴ.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사건 관리 ····· 16
제2절 싱가포르 법원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 17
Ⅰ. 싱가포르 법원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 ····· 17
Ⅱ. 싱가포르의 지능형 사건 검색 시스템 ····· 18
Ⅲ. 싱가포르의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 19

제3절 미국 사법부의 디지털 사법과 형사사법에서 위험 평가 ····· 20
Ⅰ. 미국 사법부에서 컴퍼스(COMPAS)의 재범 예측 ····· 20
1. 형사절차에서 컴퍼스 프로그램의 활용 영역 및 방식 ····· 20
2. 컴퍼스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 ····· 22
3. 적법절차의 원칙과 Loomis v. Wisconsin 판결 ····· 24
Ⅱ. 미국 사법부의 디지털 사법 ····· 25
1. 사건 관리의 자동화 ····· 25
2. 법률 정보 어시스턴스 ····· 26
3. 법원 기록의 디지털화 ····· 27
Ⅲ. 미국의 온라인 분쟁해결(ODR)과 절차 자동화 ····· 29
Ⅳ. 사법서비스 니즈 파악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위한 자동화 기술 활용 ····· 30
제4절 호주의 가정법원에서 지능형 이혼절차 ····· 32
Ⅰ. 호주의 스플리트 업(Split-Up) 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32
Ⅱ. 호주의 '아미카'(amica)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 해결 ····· 36
1. 아미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 36
2. 아미카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 ····· 39
제5절 영국 사법부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 43
Ⅰ. 영국의 ODR 플랫폼을 통한 소액 사건 해결 ····· 43
Ⅱ. 영국 사법행정의 지능정보화 ····· 43
제6절 프랑스의 예측적 사법을 위한 정책 노력 ····· 44
Ⅰ. 프랑스의 예측적 사법 도구로서 '프레딕티스'(Predictice) ····· 44
Ⅱ. 프랑스 사법부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 46
제7절 오스트리아 사법부에서 전자-사법(E-Justice)의 발전 ····· 48
Ⅰ. 오스트리아의 '전략적 사법 3.0 이니셔티브' ····· 48
Ⅱ. 오스트리아의 전자적 법률 커뮤니케이션 및 사건 자동화 ····· 49
Ⅲ. 문서 처리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50
Ⅳ. 판결문 익명화와 '열린 사법'의 구현 ····· 52
Ⅴ. 오스트리아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 계획 및 IT 전문가 지원 체계 ····· 54
제8절 네덜란드의 온라인 법원과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 55
Ⅰ. 네덜란드의 온라인 이혼 플랫폼 ····· 55
1. 레히트바이저 플랫폼의 도입 및 한계 ····· 55
2. 저스티스42의 'uitelkaar.nl' 플랫폼 ····· 58
가. uitelkaar.nl을 통한 온라인 이혼 절차 ····· 58
나. 온라인 이혼 플랫폼의 장점 ····· 62
Ⅱ. 채무변제 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 63
Ⅲ.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법행정에서의 혁신 ····· 65
Ⅳ. 사법부 내부의 IT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65
제9절 에스토니아의 전자-사법(e-justice) 프로젝트 ····· 66
Ⅰ. 에스토니아 사법부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 66

1. 에스토니아의 전자-파일(e-File) ····· 67
2. 에스토니아의 법원 정보 시스템 ····· 69
3. 에스토니아의 전자-사법에 대한 평가 ····· 70
가. 법원의 디지털화 ····· 70
나. 사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 70
다. 인공지능을 통한 법관의 단순 업무 대체 ····· 70
Ⅱ. 에스토니아의 소액 사건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 71
제10절 라트비아 사법부의 지능정보화와 효율성 제고 ····· 72
Ⅰ. 라트비아의 법원정보시스템과 전자-서비스 ····· 72
Ⅱ. 라트비아의 소액 사건과 ODR 플랫폼 ····· 75
Ⅲ. 전자-파일(E-File)을 통한 공유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 76
Ⅳ. 라트비아의 로봇 절차 자동화 ····· 76
Ⅴ. 법원 업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법원행정 운영 ····· 77
제11절 소결: 각국 사법부의 지능정보화 정책 검토를 통한 성찰점 ····· 80

제3장 사법부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기본 전제 ····· 83

제1절 인공지능 기반 예측적 사법과 법관의 의사결정 간의 관계 설정 ····· 85
Ⅰ. 법원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예측적 사법의 발전 ····· 85
1. 사법실무에서 예측적 사법의 이론적·실천적 영향 ····· 85
2. 예측적 사법의 위험성과 가능성 ····· 87
가. 예측적 사법의 잠재적 위험성 ····· 87
나. 예측적 사법의 기대가능성 ····· 88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 89
1.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 89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 91
Ⅲ. 소결: 법관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 ····· 93
제2절 사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지침 ····· 96
Ⅰ.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사법부의 윤리 헌장 마련의 필요성 ····· 96
Ⅱ.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지침들 ····· 96
1. 아실로마 AI 원칙 ····· 96
2.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 99
가. 공통원칙(PACT) ····· 100
나.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 10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 ····· 101
4. 유럽연합의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 102
5. 사법체계 및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유럽윤리헌장 ····· 105
Ⅲ. 사법부의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핵심 내용 ····· 106
1. 알고리즘 투명성과 민간기업의 영리성 간의 충돌 문제 ····· 107
2.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에 대한 윤리적 테두리 ····· 108

제4장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 111

제1절 지능형 사법체계의 구축 ····· 113
Ⅰ. 법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 114
Ⅱ. 법관의 업무 보조 ····· 114
Ⅲ. 지능형 대국민 사법서비스 ····· 116
제2절 민사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 ····· 117
Ⅰ. 사법의 지능정보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 ····· 117
Ⅱ.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민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 119
1. 사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예측적 분석 ····· 119
2. 법적 주장 및 증거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분석 ····· 120
3. 온라인 분쟁해결에서 의사결정의 예측 및 자동화 ····· 121
4. 나홀로 소송과 사법절차 지원 서비스 ····· 123
제3절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 ····· 125
Ⅰ.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 및 분야 ····· 125
Ⅱ.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법치국가적 원칙의 전제 ····· 129
1. 자유심증주의의 현대적 재구성 ····· 129
2.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권리 보장의 문제 ····· 130
가. “의심스러울 때 자유의 이익으로”의 재구성 및 재해석 ····· 131
나. 피고인 등 당사자의 이의제기 및 의사결정참여권 ····· 132

제5장 결어 ····· 135

131.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 focu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

연구총서 2021-11

연구책임자 :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9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대상 ····· 10
제3절 연구의 방법 ····· 12
제4절 연구의 개요 ····· 14

제2장 프랑스 행정재판제도와 법의 일반원칙 ····· 15

제1절 프랑스 행정재판제도 개관 ····· 17
Ⅰ. 재판제도의 특징 ····· 17
Ⅱ. 행정법원의 연혁 및 기능 ····· 18
1. 국사원 ····· 19
가. 연혁 및 기능 ····· 19
나. 조직 ····· 20
2. 항소행정법원 ····· 21
3. 지방행정법원 ····· 21
Ⅲ. 행정재판제도의 특징 ····· 22

Ⅳ. 행정소송사건 현황 ····· 26
제2절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개관 ····· 28
Ⅰ.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및 발전 연원 ····· 28
Ⅱ. 법의 일반원칙이 국사원에 의해 확인되는 방식 ····· 34
1. 법규정으로부터의 도출 ····· 35
2. 판례로부터의 도출 ····· 37
Ⅲ. 관련 개념들과의 구별 ····· 38
1.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과의 구별 ····· 40
가. 개념 ····· 40
나. 구별되는 특징 ····· 41
다. 관련 판례 ····· 41
2. 당대에 필요한 정치·경제·문화 원칙과의 구별 ····· 43
가. 개념 ····· 43
나. 구별되는 특징 ····· 43
다. 관련 판례 ····· 44
3. 그 밖의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칙들과의 구별 ····· 45
4. 판례법 안에서의 법의 일반원칙 ····· 47
Ⅳ.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효력 ····· 48
1. 제5공화국 이전의 논의(1958년 이전) ····· 49
2. 제5공화국에서의 논의 ····· 49
3.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1969-1980년대) ····· 50
4. 법률의 조약합치성 심사 ····· 52
5. 사후적 규범통제 제도의 도입 ····· 54
6. 종합 ····· 55
제3절 소결 ····· 57

제3장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 및 내용 ····· 61

제1절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 가능성 ····· 63
제2절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내용 ····· 68
Ⅰ. 헌법상의 원칙 ····· 68
1. 평등에 관한 원칙 ····· 68
가. 개관 ····· 68
나. 법률/행정입법 앞의 평등 원칙 ····· 72
다.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 ····· 77
라. 공역무 앞의 평등 원칙 ····· 79
2. 자유에 관한 원칙 ····· 84
3. 제도 및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청에 관한 원칙 ····· 86
가. 국가 단일성의 원칙 ····· 86
나.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 87

다. 권력분립의 원칙 ····· 89
라. 공법인의 자율성 원칙 ····· 90
마. 공화국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그 밖의 원칙들 ····· 91
4. 형평에 관한 원칙 ····· 92
5. 사회권에 관한 원칙 ····· 94
Ⅱ. 법해석상의 원칙 ····· 96
1.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원칙 ····· 96
가. 권한에 관한 원칙 ····· 97
나. 방어권 존중 원칙 ····· 98
다. 행정행위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 ····· 102
2. 재판작용을 통제하는 원칙 ····· 107
가.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원칙 ····· 108
나. 재판절차 대심적 구조의 원칙 ····· 113
다. 비밀 평의 원칙 ····· 115
제3절 소결 ····· 117
Ⅰ.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기준 검토 ····· 117
Ⅱ. 판례 유형 분석 ····· 118

제4장 결론 ····· 121

제1절 요약 ····· 123
제2절 시사점 ····· 126

132.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Execution Officer System:

Execution for Delivery of Immovable Property and Others

연구총서 2021-12

연구책임자 : 나수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9월 1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5
1. 문헌 연구 ····· 5
2. 비교법적 연구 ····· 5
3.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 5
제2장 집행관제도와 저항배제권 ····· 7
제1절 집행관제도 개관 ····· 9
Ⅰ.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관 ····· 9

Ⅱ. 집행관의 지위 ····· 10
1. 독립된 단독제의 사법기관 ····· 10
2. 상대적 독립기관 ····· 11
3. 집행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 ····· 12
가. 학설 ····· 12
나. 대법원 판례 ····· 13
4.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으로서의 집행관의 신분 ····· 14
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 14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 ····· 14
다. 채권자와의 공법상 법률관계 ····· 14
5. 개인사업자의 지위 ····· 15
Ⅲ. 집행관의 직무 ····· 15
1. 독립의 집행행위 ····· 16
2.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 16
제2절 집행관의 저항배제권 ····· 16
Ⅰ. 법적 근거 ····· 16
Ⅱ. 집행방해로서의 저항행위 ····· 17
1. 저항의 의미 ····· 17
2. 저항의 형태 ····· 17
가. 적극적 저항 ····· 17
나. 소극적 저항 ····· 17
3. 저항의 시기 ····· 18
가. 집행행위 시 ····· 18
나. 집행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 ····· 18
4. 저항의 주체 및 대상 ····· 19
5. 저항행위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 ····· 19
가. 개인적, 소규모 저항의 경우 ····· 19
나. 집단적, 대규모 저항의 경우 ····· 20
Ⅲ. 저항배제권의 내용 ····· 21
1. 강제개문 등 ····· 21
가. 강제개문 ····· 21
나. 강제수색 ····· 21
다. 집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 22
라. 강제퇴거와 강제반출 ····· 22
2. 경찰 및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23
가. 의의 ····· 23
나. 절차 ····· 23
3. 집행관 외의 사람의 원조요구 ····· 24
4. 증인의 참여 ····· 24

제3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인도집행환경 ····· 27

제1절 부동산 등 인도집행 개관 ····· 29
Ⅰ. 부동산 등 인도집행의 원칙적 집행방법 ····· 29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의 개념 ····· 29
2. 강제집행의 국가구제원칙 ····· 29
3. 직접강제 ····· 30
Ⅱ. 집행의 목적물 ····· 31
1. 부동산 ····· 31
2. 선박 ····· 31
Ⅲ. 인도 등의 의미 ····· 31
1. 인도와 명도 ····· 31
2. 퇴거 ····· 32
Ⅳ. 부동산 등 인도집행절차 ····· 32
1. 집행의 신청(위임) ····· 32
2. 집행권원의 해석, 채무자·집행 목적물의 조사 ····· 33
3. 신분증과 집행정본의 휴대 및 제시 ····· 33
4. 집행 실시의 통지 ····· 34
5. 집행 사전최고 ····· 34
6.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 ····· 34
7. 부동산 등에 채무자 등이 부재한 경우 ····· 35
8. 집행의 종료 ····· 35
9. 집행종료의 통지 ····· 36
10. 집행조서의 작성 ····· 36
11. 집행관의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 36
가. 집행에 관한 이의 ····· 36
나. 국가배상책임 ····· 37

제2절 집행환경을 조성하는 요인들 ····· 37
Ⅰ. 개요 ····· 37
Ⅱ. 집행현장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 ····· 37
1. 부동산 등 인도집행현장의 긴장 정도 ····· 38
2. 물리적 충돌 발생의 원인 ····· 39
가. 도시정비지역에서의 인도집행 ····· 40
나. 압력단체와 경비용역의 집단적 충돌 ····· 43
다. 채무자 저항의 주된 이유 ····· 45
Ⅲ. 경찰원조의 형해화 ····· 46
1. 경찰의 소극적 대응의 문제점 ····· 46
2. 경찰원조의 실질화에 대한 요청 ····· 47
Ⅳ. 집행관 신변보호의 취약성 ····· 48
1. 법적 분쟁 연루 가능성 ····· 48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 ····· 48

3. 신체적 유형력 허용의 필요성 ····· 49

제4장 외국의 집행관제도와 집행환경 ····· 51

제1절 프랑스 ····· 53
Ⅰ. 프랑스 집행관제도 개관 ····· 53
1. 집행관의 연혁 ····· 53
2. 집행관의 지위 ····· 54
가.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관 ····· 54
나. 자유전문직을 가진 민간인 신분 ····· 54
다. 공무수행인의 신분 ····· 55
라. 채권자의 대리인 신분 ····· 56
3. 집행관의 업무 ····· 56
가. 주요 업무 ····· 56
나. 집행관의 명칭과 업무의 변화 ····· 58
4. 집행관단체 ····· 59
가. 전국협회(chambre nationale) ····· 59
나. 지방협회(chambre regionale) ····· 60
다. 도(道)협회(chambre departementale) ····· 60
5. 집행관 교육 ····· 60
Ⅱ. 부동산 인도청구 또는 강제퇴거 절차 ····· 61
1. 개요 ····· 61
2. 부동산 인도집행 또는 강제퇴거의 요건 ····· 62
가. 집행결정 ····· 62
나. 인도명령의 통지 ····· 62
3. 집행의 유예기간 부여 ····· 63
가. 절차상의 유예기간 ····· 63
나. 법정의 유예 ····· 63
4.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에서 집행관의 권한 ····· 63
가. 집행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 ····· 63
나. 인도집행을 위한 부동산에의 진입가능성 ····· 63
다. 공권력에 대한 원조요청 ····· 64

제2절 독일 ····· 67
Ⅰ. 독일 집행관제도 개관 ····· 67
1. 집행관의 의의 및 지위 ····· 67
가. 집행관의 의의 ····· 67
나. 집행관의 지위 ····· 68
2. 집행관의 주요 업무 및 직무감독 ····· 68
가. 집행관의 주요 업무 ····· 68
나. 집행관에 대한 직무감독 ····· 70

3. 독일 집행관연맹 ····· 71
Ⅱ.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 권한 ····· 72
1. 집행관 활동의 법적 근거 ····· 72
2.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 ····· 73
가.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 73
나. 강제력의 행사 ····· 73
다. 경찰에 대한 지원 요청 ····· 74
3. 부동산 인도·철거 집행 시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 ····· 75
가. 강제력 행사 가능성 ····· 75
나. 집행보조인력의 투입 가능성 ····· 75
다. 부동산 등 인도집행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행해진 사례 ····· 77
라. 야간 혹은 공휴일에 행하는 집행 ····· 78
마. 독일 집행관업무지침상의 집행에 대한 저항과 증인의 참여 ····· 78
Ⅲ. 집행관 업무수행의 위험성 및 개선방안 ····· 79
1. 언론에 보도된 사례 ····· 79
2. 업무수행의 위험성에 관한 조사 ····· 80
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실태조사 ····· 80
나. 헤센주의 설문조사 ····· 81
3. 집행관 업무수행의 개선방안 ····· 83
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시행 또는 제시된 개선방안 ····· 83
나. 헤센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 ····· 87
다. 향후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 ····· 90
4. 독일의 집행관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 ····· 91
가. 연방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의 집행관보호 연방정부안 초안 ····· 91
나. 입법 이유 ····· 91
다. 주요내용 ····· 92
라. 연방정부안(독일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757a조) ····· 94
Ⅳ. 가혹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의 보호 ····· 95
1. 가혹한 집행 금지의 목적 ····· 96
2. 가혹한 집행금지 보호신청 절차 ····· 96
가. 채무자의 신청 및 기간 ····· 96
나. 관할권 ····· 97
다. 신청권자 및 권리보호의 필요성 ····· 98
3. 가혹한 집행금지의 신청 요건 ····· 98
가. 매우 특별한 사정 ····· 98
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가혹함 ····· 99
다. 채권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존중 ····· 100
4. 법원의 결정 ····· 101
가. 결정절차 ····· 101
나. 법원의 결정 선고 ····· 101

다. 결정에 대한 불복 ····· 102
5. 가처분 ····· 102
가. 집행관의 가처분 ····· 102
나. 집행법원의 가명령 ····· 103
제3절 일본 ····· 104
Ⅰ. 일본 집행관제도 개관 ····· 104
1. 집행관의 지위 ····· 104
2. 총괄집행관제도 ····· 105
가. 총괄집행관 ····· 105
나. 총괄집행관보좌 ····· 105
3. 일본집행관연맹 ····· 106
4. 집행관 교육 ····· 106
Ⅱ. 강제집행방해행위 ····· 107
1. 일본 주거정책의 특징 ····· 107
2. 명도집행현장에서의 집행방해행위 ····· 107
가. 집행방해행위의 예 ····· 107
나. 집행보조자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 108
Ⅲ.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집행관의 권한 ····· 108
1. 강제개문 및 강제수색에 관한 권한 ····· 108
2. 집행보조자의 참석 ····· 109
3. 휴일 및 야간 집행에 대한 허가 ····· 109
4. 집행관 등의 유형력 행사 ····· 109
가. 유형력 행사 ····· 110
나. 집행보조자의 유형력 행사 ····· 110
5. 경찰에 대한 원조청구 ····· 111
가. 원조요청의 필요성 ····· 111
나. 원조요청 절차 ····· 111
다. 원조경찰의 활동 ····· 112
라. 경찰원조의 효과 ····· 112
Ⅳ. 집행관의 신변보호 ····· 112
1.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 112
2. 고소·고발 절차 ····· 113
Ⅴ. 2000년대 초반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 ····· 113
1. 명도의 최고제도 ····· 113
가. 신설 취지 ····· 113
나. 최고의 요건 ····· 115
다. 인도기한 ····· 115
라. 효과 ····· 116
2. 채무자불특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제도 ····· 117
3. 채무자불특정 승계집행문 제도 ····· 118

4. 목적 외 동산의 즉시 매각 제도 ····· 120
5. 점유자 등에 대한 진술거절죄 신설 ····· 121
6. 관청 등에 대한 원조청구제도 ····· 122
7. 다른 집행관에 대한 원조청구 ····· 123
8. 민사집행법 등 개정의 효과 ····· 124
제4절 미국 ····· 125
Ⅰ. 미국 집행관제도 개관 ····· 125
1. 집행관의 종류 ····· 125
가. 연방집행관(U.S. Marshal)과 연방집행관대리(Deputy Marshal) ····· 126
나. 지방집행관(Sheriff)과 지방집행관대리(Deputy Sheriff) ····· 131
다. Marshal과 Sheriff의 비교 ····· 133
라. 지방집행관(Sheriff) 관련 이미지 ····· 135
2. 집행관의 업무 ····· 135
가. 집행관의 형사사법상의 업무 ····· 135
나. 사법부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업무 영역 ····· 136
3. 집행관의 복합적인 지위 ····· 137
가. 카운티(county) 공무원의 지위 ····· 137
나. 법원 공무원의 지위 ····· 137
다. 채권자의 대리인 지위 ····· 138
4. 집행관단체 ····· 138
가. 지방집행관(Sheriff) 단체 ····· 138
나. 지방집행관대리(Deputy Sheriff) 단체 ····· 138
Ⅱ. 캘리포니아주의 민사판결 집행절차 개관 ····· 139
1. 미국 민사집행절차의 특징 ····· 139
2.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집행에 관한 규정 ····· 140
3. 금전판결의 집행절차 ····· 141
가. 판결 후 디스커버리(Post Judgement Discovery) ····· 141
나. 집행영장의 발급 ····· 142
다. 집행관의 압류 ····· 142
4. 비금전판결의 집행절차 ····· 143
Ⅲ. 임차건물 인도집행 시 집행관의 권한 ····· 144
1. 유형력의 행사 ····· 144
2. 집행관에 대한 서면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 144
3. 아동,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특별규칙(뉴욕주의 경우) ····· 145
4. 임차건물 인도 절차 ····· 146
가. 자발적 퇴거 ····· 146
나. 인도집행명령과 퇴거 통지 ····· 146
다. 열쇠 등 진입방법 확보 ····· 147
라. 임차인에 대한 퇴거 집행 ····· 148
마. 집행 종료 ····· 148

5. 부동산 인도·철거 집행 시 집행보조자 사용 ····· 148
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 148
나. 워싱턴 DC ····· 148
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 149
라. 일리노이주 레이크카운티 ····· 149
마. 뉴욕주 ····· 149
6. 부동산 인도·철거 집행 관련 지침(매뉴얼) ····· 149
가. 워싱턴 DC ····· 150
나.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카운티 ····· 150
다. 일리노이즈주 쿡카운티 ····· 150
라. 뉴욕주 ····· 150
제5절 집행환경 및 집행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51
Ⅰ. 개요 ····· 151
Ⅱ. 비교법적 검토 ····· 151
1. 집행환경이 집행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 151
가. 집행환경 비교 ····· 151
나. 집행환경이 집행관제도에 미치는 영향 ····· 153
2. 집행관의 권한에 대한 비교 ····· 154
가. 강제개문, 강제수색, 집행보조자 사용 ····· 154
나. 집행관의 대인적 유형력 행사 비교 ····· 155
다. 집행보조자의 유형력 행사 비교 ····· 155
3. 경비용역 사용에 대한 비교 ····· 156
4. 경찰원조에 대한 비교 ····· 156
가. 집행관의 경찰원조 청구권 ····· 156
나. 경찰원조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 ····· 157
5. 집행관의 신변보호에 대한 비교 ····· 157
가. 독일 ····· 157
나. 미국 ····· 158
다. 시사점 ····· 159
6.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방법의 선택에 대한 비교 ····· 159
가. 외국의 경우 ····· 159
나. 집행금지기간의 규정 ····· 160
다. 시사점 ····· 160
Ⅲ. 소결 ····· 160

제5장 부동산 등 인도집행 관련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 163

제1절 집행관제도 개선의 방향 ····· 165
Ⅰ. 종래의 개선 방향 ····· 165
Ⅱ. 집행관 중심의 제도개선의 필요성 ····· 165

제2절 집행관 등에 대한 강제력 허용 방안 ····· 166
Ⅰ. 개요 ····· 166
Ⅱ. 집행관의 대인적 유형력에 대한 검토 ····· 167
1. 헌법재판소의 입장 ····· 167
2. 대법원의 입장 ····· 168
가. 강력사용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168
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168
3. 전국 집행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68
Ⅲ. 집행관사무원의 대인적 유형력에 대한 검토 ····· 170
1. 집행관과 집행관사무원의 관계 ····· 170
2.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유형력 허용 ····· 171
Ⅳ. 경비노무자의 대인적 유형력에 대한 검토 ····· 171
1. 실무의 입장 ····· 171
2. 심층인터뷰 내용 ····· 172
3.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및 보관비용 기준(안) ····· 173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기준(안) ····· 173
나.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기준(안) ····· 174
4. 서촌궁중족발집 인도집행 관련 항소심 판결 ····· 175
5. 경비업법과 경비노무자의 강제력 행사의 관계 ····· 176
가. 경비업법의 규정 ····· 176
나. 일선 집행관들의 입장 ····· 177
다. 경비업법의 규범조화적 해석의 필요성 ····· 178
Ⅴ. 법령상의 개선방안 ····· 178
1. 문제의 제기 ····· 178
2. 입법례 ····· 179
3. 개정안 제안 ····· 180
가. 제2항 ····· 181
나. 제3항 ····· 182
제3절 집행관의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 183
Ⅰ. 집행관의 경비노무자의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강화 ····· 183
1. 경비노무자 선정 실무의 문제점 ····· 183
가. 경비노무자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 ····· 183
나. 경비노무자 선정 실무 ····· 184
다. 채권자가 경비용역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 185
2. 법령상 개선방안 ····· 188
가. 문제의 제기 ····· 188
나. 개정안 제안 ····· 189
Ⅱ. 집행관의 노무자 신분확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강화 ····· 191
1. 실무의 태도 ····· 191
가. 실무상 권장되는 매뉴얼 ····· 191

나. 일선 집행관의 실무 태도 ····· 192
2. 문제의 제기 ····· 193
3. 개정안 제안 ····· 194
가. 개정 집행관법 제17조 제2항 ····· 197
나. 개정 집행관규칙 제26조의3 ····· 197
제4절 경찰원조의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 198
Ⅰ. 경찰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198
1. 경찰원조에 관한 법적 근거 ····· 198
2. 적극적 경찰원조의 필요성 ····· 199
가. 압력단체 배제의 필요성 ····· 199
나. 경찰원조의 실태 ····· 201
3. 경찰원조 실질화의 효과 ····· 204
가. 국가구제원칙의 확립 ····· 205
나. 집행관 보호 효과 ····· 205
다. 사법적 신뢰의 회복 ····· 206
4. 법원 차원에서 경찰과의 소통의 필요성 ····· 206
가. 경찰 매뉴얼의 입장 ····· 206
나. 법원의 역할에 대한 요청 ····· 207
다. 경찰의 집행원조행위에 대한 면책 가능성 ····· 207
Ⅱ. 법령상의 개선 방안 ····· 208
1. 문제의 제기 ····· 208
2. 집행관 대상 설문결과 ····· 208
3. 개정안 제안 ····· 209
가. 제4항 ····· 210
나. 제5항 ····· 210
다. 제6항 ····· 211
라. 제7항 ····· 212
제5절 집행관의 신변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 213
Ⅰ. 집행관 신변보호에 대한 검토 ····· 213
1. 집행관 신변보호의 취약성 ····· 213
가. 집행관 대상 설문 결과 ····· 213
나. 집행관 신변보호의 필요성 ····· 215
2. 집행방해에 대한 대처의 취약성 ····· 215
가. 집행관 대상 설문 결과 ····· 215
나. 고소·고발의 한계 ····· 217
Ⅱ. 제도적 개선방안 ····· 218
1.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도입 ····· 218
가. 집행방해행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 218
나. 집행관연찬과정의 검토 내용 ····· 219
다. 소송대리인 선임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 219

2. 집행관 신변보호를 위한 집행관교육 커리큘럼 개선 ····· 222
Ⅲ. 법령상 개선방안 ····· 223
1. 문제의 제기 ····· 224
2. 입법례 ····· 225
3. 개정안 제안 ····· 225
가. 개정 집행관법 제19조의2 ····· 226
나. 개정 집행관규칙 제26조의2 ····· 227
제6절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227
Ⅰ. 동절기 등 집행금지 신설 ····· 228
1. 문제의 제기 ····· 228
2. 입법례 ····· 229
3. 개정안 제안 ····· 230
가. 제1항 ····· 231
나. 제3항 ····· 232
Ⅱ. 채무자 보호조항 신설 ····· 235
1. 문제의 제기 ····· 235
가. 실무의 방식 ····· 235
나. 입법의 취지 ····· 237
2. 입법례 ····· 237
3. 개정안 제안 ····· 238
가. 개설 ····· 239
나. 제1항 전문 ····· 240
다. 제1항 후문 ····· 240
라. 제2항 ····· 241
마. 제3항 ····· 241
바. 제4항 ····· 241
제7절 강제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 242
Ⅰ. 사전최고제도 신설 ····· 242
1. 문제의 제기 ····· 242
가. 실무의 태도 ····· 242
나. 현행 사전최고의 문제점 ····· 244
2. 입법례 ····· 247
가. 우리나라 ····· 247
나. 일본 ····· 247
다. 프랑스 ····· 249
3. 개정안 제안 ····· 249
가. 개정 민사집행법 제258조의3 제1항-제6항 ····· 252
나. 개정 민사집행법 제258조의3 제7항-제9항 ····· 254
다. 개정 민사집행법 제258조의3 제10항 ····· 255
라. 개정 민사집행규칙 제187조의2 ····· 256

Ⅱ.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 신설 ····· 256
1. 문제의 제기 ····· 256
가. 실무의 태도 ····· 256
나. 신속한 현장대응의 필요성 ····· 257
2. 입법례 ····· 258
3. 개정안 제안 ····· 259
Ⅲ. 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권 등 신설 ····· 259
1. 문제의 제기 ····· 259
2. 집행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61
3. 입법례 ····· 261
가. 집행관의 질문권 및 진술 등 거부의 죄 ····· 261
나. 채권자의 절차 협력의무 ····· 262
4. 개정안 제안 ····· 262
가. 제258조 제1항 ····· 263
나. 집행관의 채무자 등에 대한 질문권 ····· 263
다. 채권자의 절차 협력의무 ····· 267

제6장 결론 ····· 269

133.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Conflicts of Interest in Judges' Duties and Resolving Methods: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rials Related to the Holding and Trading of Stocks by Judges

연구총서 2021-13

연구책임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10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 5

제2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외국 입법례 ····· 7

제1절 들어가며 ····· 9
제2절 영국 ····· 11
Ⅰ. 들어가며 ····· 11
Ⅱ. 법관행동지침 ····· 12
1. 개관 ····· 12
2. 내용 ····· 13
Ⅲ. 관련 사례 ····· 16
1. *Dimes v Proprietors of Grand Junction Canal* 사건 ····· 16
가. 내용 ····· 16
나. 의의 및 영향 ····· 16
2. *R v Hammond* 사건 ····· 18
3. *R v Mulvihill* 사건 ····· 18
4. *Locabail (UK) Ltd v Bayfield Properties Ltd* 사건 ····· 19
Ⅳ. 정리 ····· 20
제3절 미국 ····· 21
Ⅰ. 들어가며 ····· 21
Ⅱ. 미국 연방법령집 제28편 제455조(28 U.S.C. § 455) ····· 23
1. 내용 ····· 23
2. 설명 ····· 25
가. 원칙 ····· 25
나. 예외 ····· 27
3. 관련 사례 ····· 28
가.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사례 ····· 28
나. 이해관계의 많고 적음의 기준에 관한 사례 ····· 32
다. 예외사유 –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관한 사례 ····· 33
라. 예외사유 – 경제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례 ····· 35
Ⅲ. 법관행위규범 ····· 37
1. 연방법관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 37
가. 규정의 내용 ····· 38
나. 연방법관행위규범 위원회(Codes of Conduct Committee)의 권고의견 ····· 40
2.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법관행위규범 (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 52
가. 개관 ····· 52
나. 내용 ····· 53
3. 주(州)의 법관행위규범 ····· 55
가. 규율 내용 ····· 55
나. 법관의 주식보유 관련 주(州)의 권고의견 ····· 55
다. 관련 사례 ····· 63
Ⅳ. 정리 ····· 67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 69
Ⅰ. 들어가며 ····· 69
Ⅱ. 오스트레일리아 ····· 70
1. 법관행동지침 ····· 70
가. 개관 ····· 70
나. 내용 ····· 70
다. 평가 ····· 72
2. 관련 사례 ····· 75
가. *Bank of New South Wales v The Commonwealth* 사건 ····· 75
나. *R v The Industrial Court and The Honourable Mostyn Hanger President of the Industrial Court and Mount Isa Mines Ltd* 사건 ····· 76
다. *Dovade Pty Ltd v Westpac Banking Group* 사건 ····· 77
라. *Ebner v Official Trustee in Bankruptcy* 사건 ····· 77
마. *Clenae Pty Ltd v ANZ Banking Group* 사건 ····· 78
Ⅲ. 뉴질랜드 ····· 79
1. 법관행동지침 ····· 79
가. 개관 ····· 79
나. 내용 ····· 80
2. 관련 사례 ····· 82
가. *Muir v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사건 ····· 82
나. *Auckland Casino Ltd v Casino Control Authority* 사건 ····· 82
Ⅳ. 정리 ····· 83
제5절 캐나다·싱가포르 ····· 84
Ⅰ. 들어가며 ····· 84
Ⅱ. 캐나다 ····· 85
1. 법관윤리원칙 ····· 85
가. 개관 ····· 85
나. 공정성 ····· 87
2. 관련 사례 ····· 89
가. *Ghirardosi v Minister of Highways for British Columbia* 사건 ····· 89
나. *Energy Probe v Canada (Atomic Energy Control Board)* 사건 ····· 90
Ⅲ. 싱가포르 – 법관행동강령을 중심으로 – ····· 92
1. 개관 ····· 92
2. 공정성 ····· 93
3. 청렴성과 적절성 ····· 93
Ⅳ. 정리 ····· 94
제6절 독일 ····· 95
Ⅰ. 개관 – 법관의 “직무 외 활동”으로서의 주식투자 ····· 95
Ⅱ. 연방법관의 경우 ····· 96

1. 연방공무원법 상의 직무 외 활동 규정 ····· 96
가. 연방공무원법의 준용 ····· 96
나. 직무 외 활동의 개념 ····· 96
다. 공무에 속하는 직무 외 활동 ····· 97
라. 허가의무 있는 직무 외 활동 ····· 97
마. 허가의무 없는 직무 외 활동 ····· 99
바. 직무 외 활동의 수행 ····· 100
사. 직무 외 활동의 종료 ····· 101
아. 퇴직 공무원의 영업활동 및 기타 활동 ····· 101
2. 연방법관의 직무 외 활동에 관한 특별 규정 ····· 102
가. 독일 법관법 ····· 102
나. 연방법관의 직무 외 활동에 관한 규정 ····· 104
3. 연방법관의 주식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 ····· 107
가. 법률상 규제 ····· 107
나. 민사소송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11
다. 소결 ····· 112
Ⅲ. 주(州) 법관의 경우 ····· 113
Ⅳ. 정리 ····· 114
제7절 일본 ····· 115
Ⅰ. 들어가며 ····· 115
Ⅱ. 재판관의 주식보유 등에 관한 규제 ····· 117
1. 개요 ····· 117
2. 재판관의 법조윤리 ····· 117
가. 의의 ····· 117
나. 재판관의 청렴성 ····· 119
다. 재판관의 품위 유지 ····· 121
라. 추가적인 논의 ····· 122
3. 일본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직자 주식보유 등의 규제 ····· 123
가. 개요 ····· 123
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규제 ····· 124
Ⅲ. 재판관의 주식보유와 재판의 공정성 ····· 139
1. 개요 ····· 139
2.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수단 ····· 139
3. 재판관의 탄핵제도 ····· 141
가. 의의 ····· 141
나. 탄핵절차 ····· 141
다. 소추심사에 관한 현황 ····· 142
라. 파면사례 ····· 143
Ⅳ. 맺음말 ····· 143
제8절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 145

Ⅰ. 들어가며 ····· 145
Ⅱ.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일반 ····· 146
1. 목적 및 배경 ····· 146
2. 법관청렴그룹(The Judicial Integrity Group)의 활동 ····· 146
3. 참고자료 ····· 147
4.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초안 ····· 151
5. 이후의 논의 ····· 151
6.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의 상정 ····· 152
7. UN 인권위원회에의 제출 이후 ····· 153
Ⅲ.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중 법관의 주식보유 관련 내용 ····· 154
1. 공정성에 관한 원칙 ····· 154
2. 공정성에 관한 적용기준 ····· 154
가. 적용기준 2.3 ····· 154
나. 적용기준 2.5 ····· 156
3. 적절성에 관한 원칙 ····· 158
4. 적절성에 관한 적용기준 ····· 158
가. 적용기준 4.7 ····· 158
나. 적용기준 4.11 ····· 159
Ⅳ. 정리 ····· 160
제9절 소결 ····· 162
Ⅰ. 영국 ····· 162
Ⅱ. 미국 ····· 163
Ⅲ.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 164
Ⅳ. 캐나다·싱가포르 ····· 164
Ⅴ. 독일 ····· 165
Ⅵ. 일본 ····· 165
Ⅶ.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 166
Ⅷ. 유형별 정리 ····· 167
1. 법계에 따른 정리 ····· 167
2. 국가별 정리 ····· 168

제3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현행 규정 분석 ····· 171

제1절 들어가며 ····· 173
제2절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현행 규정 ····· 174
Ⅰ. 주식보유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규정 – 직업윤리 관련 규정 등· 174
1. 국가공무원법 ····· 174
2. 공직자윤리법 ····· 175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176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78

5. 법원조직법 ····· 180
6. 법관윤리강령 ····· 180
Ⅱ. 주식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규정 ····· 181
1. 공직자윤리법 ····· 181
가. 재산등록제도 ····· 181
나. 백지신탁제도 ····· 18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1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205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06
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207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207
4. 법관윤리강령 ····· 208
5.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규칙·법원공무원규칙 ····· 208
Ⅲ. 주식보유에 관한 문제 발생시 적용 규정 ····· 209
1.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 209
가. 개관 ····· 211
나. 법관의 주식보유와의 관련 ····· 212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212
3. 각종 징계 규정 등 ····· 214
제3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14
Ⅰ. 법률의 경과 ····· 214
1.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14
2.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입법 논의 연혁 ····· 216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결 ····· 218
Ⅱ. 법률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19
1. 법률의 목적 ····· 219
2. 주요 내용 ····· 219
가.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신고의무 ····· 219
나. 부정 혹은 불공정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 224
다. 직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적 사용·수익 금지 ····· 228
라. 정리 ····· 230
3.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정비 등 ····· 232
제4절 소결 ····· 232

제4장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35

제1절 들어가며 ····· 237
Ⅰ. 제정이유 ····· 237
1. 제정경과 ····· 237
2.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 237

가. 연성법에 의한 접근 ····· 238
나. 입법을 통한 접근 ····· 238
3. 현행규정의 태도 ····· 239
Ⅱ. 주요 내용 ····· 240
Ⅲ. 타 정부 부처의 유사 규정 ····· 241
1. 현황 ····· 241
2. 규정 간의 비교 ····· 242
제2절 조문별 내용 ····· 247
제3절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 ····· 258
Ⅰ.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규율 태도에 관한 검토 ····· 258
1. 법관의 주식보유 제한에 관한 정당성 문제 ····· 258
2. 주식보유에 대한 일반적 권고의견 마련 ····· 258
가. 필요성 ····· 258
나. 권고의견의 내용 ····· 259
Ⅱ. 지침에 대한 검토 ····· 263
1. 민간전문가에 대한 준용규정 마련 ····· 263
2. 재검토 기한 설정 ····· 263
3. 법관의 가족 및 친족에 대한 규율 ····· 264
가. 필요성 ····· 264
나. 가족 및 친족에 대한 안내자료의 마련 ····· 264
4. 소송당사자에 대한 주식보유 사실의 공개 ····· 265
제4절 소결 ····· 266

제5장 결론 ····· 269

134.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Study on the Use of Evidence of the Protocol Prepar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연구총서 2021-14

연구책임자 : 이상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10월 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 3
Ⅰ. 조서재판에 대한 문제의식 ····· 3
Ⅱ. 제도와 실무의 변화, 연구 필요성 ····· 4
제2절 연구 범위 ····· 5
제3절 연구 방법 ····· 5

제2장 우리나라 제도와 실무의 변천 ····· 7

제1절 형사소송법 제정 ····· 9
Ⅰ. 제정 경위 ····· 9
1. 일제 시대 ····· 9

가. 한일 병합 ····· 9
나. 조선형사령 일반 ····· 10
다. 조서에 대한 규율 ····· 11
2. 미군정 시대 ····· 15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 16
Ⅱ. 형사소송법 초안 ····· 18
1. 내용 ····· 18
2. 평가 ····· 19
Ⅲ. 형사소송법 국회 수정안 ····· 20
1. 내용 ····· 20
2. 수정 경위 ····· 21
가. 국회의 수정안 도출 ····· 21
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 22
다. 대한변호사협회 건의서 제출 ····· 22
라. 국회의 재의결 ····· 23
Ⅳ. 제정 형사소송법 ····· 24
1. 내용 ····· 24
2. 실무 ····· 25
제2절 형사소송법 개정 ····· 27
Ⅰ.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 27
1. 개정 경위 ····· 27
2. 개정 내용 ····· 27
가. 신구 조문 대비 ····· 27
나. 평가 ····· 29
3. 실무 ····· 30
가. 진정성립의 형해화 ····· 30
나. 특신상태 추정 ····· 32
Ⅱ.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 33
1. 개정 경위 ····· 33
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2000) ····· 33
나. 사법개혁위원회(2003-2004) ····· 33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 ····· 34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2006) ····· 35
마. 형사소송법 개정(2007) ····· 36
2. 개정 내용 ····· 36
가. 개정이유 ····· 36
나. 신구 조문 대비 ····· 37
다. 평가 ····· 40
3. 실무 ····· 40
가.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 40

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의 실질화 ····· 41
다. 조사자 증언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금지 ····· 43
Ⅲ.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 44
1. 개정 경위 ····· 44
가. 수사권 조정 합의 ····· 44
나.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심의 ····· 44
다. 형사소송법 개정 ····· 46
2. 주요 내용 ····· 47
가. 개정이유 ····· 47
나. 신구 조문 대비 ····· 47
3. 평가와 전망 ····· 48
가. 옹호론 ····· 48
나. 비판론 ····· 48
다. 전망 ····· 50

제3장 해외 제도와 실무의 현황 ····· 51

제1절 독일 ····· 53
Ⅰ. 개관 ····· 53
Ⅱ. 독일의 형사절차 ····· 54
1. 우리나라와 유사한 절차 ····· 54
2. 특징 ····· 54
가. 기소법정주의와 예외 ····· 54
나. 사적기소(Privatklage)의 인정 ····· 55
다. 중간절차(Zwischenverfahren)
[공판개시절차(Eröffnungsverfahren)]의 존재 ····· 55
라. 협상(Verständigung) 제도의 도입 ····· 56
마. 직접주의(Unmittelbarkeit) ····· 56
3. 형사절차 및 심급 개요 ····· 57
가. 형사절차 개요 ····· 57
나. 형사사건 심급 개요 ····· 58
Ⅲ.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및 검사의 기소 ····· 59
1.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 59
가.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 59
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례 ····· 62
다. 경찰 진술조서 작성례 ····· 66
2. 검사의 기소 ····· 69
가. 증거방법의 기재 ····· 69
나. 공소장의 증거방법 기재례 ····· 70
Ⅳ.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및 공판조서와 판결문의 작성 ····· 72

1.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 72
가. 서증조사 ····· 72
나. 직접주의와 그 예외 ····· 73
다. 증인신문 ····· 80
라. 조서의 제시(Vorhalt) ····· 86
2. 공판조서의 작성 ····· 87
가. 공판조서의 작성 ····· 87
나. 공판조서의 증명력 ····· 93
다. 공판조서 기재례 ····· 94
3. 판결문의 작성 ····· 100
가. 판결문의 구성 ····· 100
나. 판결이유의 구조 ····· 101
다. 증거 평가 ····· 103
Ⅴ. 시사점 ····· 106
1.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106
2.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 106
3. 조사자 증언 ····· 106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07
제2절 프랑스 ····· 107
Ⅰ. 형사절차 개관 ····· 107
1. 특징 ····· 107
가. 3단계 형사절차, 직권주의, 조서의 적극적 활용 ····· 107
나. 신속 처리 및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다양한 절차 운용 ····· 109
2. 수사기관의 종류와 수사 권한 분배 ····· 111
가. 사법경찰관 ····· 111
나. 검사 ····· 113
다. 예심판사 ····· 115
3. 흐름도 ····· 118
Ⅱ.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 119
1. 개관 ····· 119
2. 조서의 종류와 작성 방법 ····· 119
가. 작성 주체별 구분 ····· 119
나. 조서의 작성방법 ····· 124
다. 관련 문제: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기록 ····· 125
Ⅲ.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128
1. 증거법 체계 개관 ····· 128
2. 증거법의 원칙 ····· 129
가. 증거자유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 129
나. 제한 ····· 131
3. 사건유형별 재판 진행 및 조서 사용 검토 ····· 136

가. 구술주의 원칙 ····· 136
나. 위경죄사건(경찰법원): 서면 재판 ····· 136
다. 경죄사건(경죄법원): 공판에서 조서 낭독 ····· 137
라. 중죄사건(중죄법원): 원칙적 구술주의 공판 ····· 138
Ⅳ. 시사점 ····· 140
1. 공판중심주의 ····· 140
2. 형사사법 자원의 분배 ····· 140
제3절 일본 ····· 141
Ⅰ. 형사절차 개관 ····· 141
1. 심급 구조 ····· 141
2. 특징: 최고재판소, 간이재판소, 검찰관 ····· 142
Ⅱ. 형사재판의 변천 ····· 142
1. 조서재판 관행 ····· 142
2. 재판원재판의 도입과 변화 ····· 143
3. 조서 활용의 변천 ····· 144
가. 1967년 합의재판 사례 ····· 144
나. 1977년 단독재판 사례 ····· 145
다. 1984년 단독재판 사례 ····· 145
라. 2010년 재판원재판 사례 ····· 146
Ⅲ. 전문법칙 일반 ····· 146
1. 원칙 ····· 146
가. 취지 ····· 147
나. 내용 ····· 147
다. 실무 ····· 148
2. 예외 ····· 149
가. 간이공판절차, 즉결심판절차 ····· 149
나. 증거 동의 ····· 149
다. 합의 서면 ····· 154
라. 탄핵증거 ····· 155
마. 자유로운 증명 대상 ····· 158
Ⅳ. 피고인 공술조서 ····· 159
1. 입법 경위 ····· 160
2. 주체, 형식 ····· 162
3. 작성 절차 ····· 162
4. 불리한 사실의 승인 ····· 164
5. 특히 신용할 정황 ····· 164
6. 임의성 ····· 165
7. 실무 ····· 167
가. 부인 사건 ····· 167
나. 자백 사건 ····· 168

Ⅴ. 참고인 공술조서 ····· 168
1. 주체, 형식 ····· 169
2. 작성 절차 ····· 169
3. 검찰 조서 ····· 170
가. 개념 및 증거능력 ····· 170
나. 공술불능 ····· 171
다. 공술의 상반성 ····· 172
라. 공술의 특신성 ····· 175
4. 경찰 조서 ····· 176
5. 임의성 ····· 176
Ⅵ. 증거조사 ····· 177
1. 수사기록 일부 조사 ····· 178
가. 취지 ····· 178
나.「가능한 한 다른 부분을 분리하여」 ····· 179
2. 낭독 및 요지의 고지 ····· 179
가. 취지 ····· 180
나. 낭독 ····· 180
다. 요지의 고지 ····· 181
라. 절차 ····· 182
Ⅶ. 기재례 ····· 182
1. 수사기관 작성 공술조서 ····· 182
가. 피고인 ····· 182
나. 참고인 ····· 186
2. 증거 등 관계 카드 ····· 188
가. 입증 취지 제한 ····· 188
나. 탄핵증거 ····· 189
다. 특신성 이의 제기 ····· 191
3. 공판조서 ····· 193
가. 제1회 공판조서 ····· 193
나. 피고인 공술조서 ····· 198
다. 증인심문조서 ····· 204
Ⅷ. 시사점 ····· 212
1. 공판중심주의 ····· 212
2. 탄핵증거 ····· 213
3. 증거조사 ····· 214
제4절 영국 ····· 215
Ⅰ. 형사절차 개관 ····· 215
1. 사법체계 ····· 215
2. 심급 구조 ····· 216
3. 제1심 절차 ····· 216

Ⅱ. 전문법칙의 연혁 ····· 217
1. 태동 ····· 217
2. 전개 ····· 219
가. 개념과 발전 ····· 219
나. 논거와 비판 ····· 220
3. 2003년 개혁 ····· 223
가. 배경 ····· 223
나. 2003년 형사사법에 관한 법률(Criminal Justice Act 2003) 제정 ····· 224
Ⅲ. 전문법칙 일반 ····· 225
1. 전문증거의 제한적 허용 ····· 225
2. 전문증거의 범위 ····· 225
가. 진술 ····· 225
나. 진술 내용 ····· 226
다. 전문에 기초한 자인 ····· 227
라. 주장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진술 ····· 228
Ⅳ. 법정 외 자백 ····· 228
1. 자백의 정의 ····· 229
2. 원칙적 허용 ····· 231
3. 예외적 배제 ····· 232
가. 강압 등에 의한 배제 ····· 232
나. 재량에 의한 배제 ····· 235
4. 혼합 진술 ····· 237
5. 기록 방법 ····· 238
가. 청각 기록 – 실무규범 E ····· 238
나. 시청각 기록 – 실무규범 F ····· 239
다. 서면 기록 – 실무규범 C, E ····· 239
라. 서면 진술 – 실무규범 C ····· 240
6. 실무 ····· 240
가. 피의자신문 방식 ····· 241
나. 녹취서 작성, 조사 ····· 241
다. 기록 매체 재생, 조사 ····· 242
Ⅴ. 제3자 진술 ····· 243
1. 서면 진술 ····· 243
2. 동의 ····· 244
3. 증언 곤란 ····· 245
가. 신원 특정 ····· 245
나. 부적합 ····· 246
다. 두려움 ····· 247
라. 출석 방해 ····· 250
마. 진술 제공 능력 ····· 251

4. 모순된 진술 ····· 252
5. 기억 환기 서류 ····· 252
6. 업무 등 서류 ····· 253
7. 정의의 관점 ····· 255
8. 보통법 원칙 ····· 256
9. 다중 전문 ····· 258
10. 재량 배제 ····· 259
Ⅵ. 전문증거 작성, 제출 ····· 260
1. 형사소송규칙 ····· 260
2. 양식 ····· 266
가. 서면 진술 ····· 266
나. 전문증거 ····· 268
Ⅶ. 시사점 ····· 273
1. 전문법칙의 가변성 ····· 273
2. 자백의 증거 허용 ····· 274
3. 종전 진술의 제한적 허용 ····· 275
제5절 미국 ····· 276
Ⅰ. 형사절차 개관 ····· 276
1. 탄핵주의, 당사자주의, 배심재판 ····· 276
2. 범죄의 분류 및 형사절차 개관 ····· 278
3. 경찰과 검찰의 관계 ····· 282
4. 흐름도 ····· 285
Ⅱ.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 286
1. 진술증거의 수집 ····· 286
가. 피의자신문 ····· 286
나. 참고인신문 ····· 289
2. 수집된 진술증거의 기록 ····· 290
가. 조서 작성의무의 부재 및 수사보고서 등의 작성 ····· 290
나. 직접 증거 사용가능성 ····· 295
3. 관련 문제 ····· 295
가. 연방대배심 절차 ····· 296
나. 면책조건부 증언 제도 ····· 297
Ⅲ. 수사기관 작성 자료의 증거 사용 ····· 298
1.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전문법칙과 그 예외 ····· 298
2. 수사기관 작성 보고서, 메모 등의 직접 증거 사용 ····· 299
가.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보고서, 메모 등과 전문법칙 ····· 299
나. 참고인 진술이 담긴 보고서 등의 직접 증거 사용 ····· 310
3. 조사자 증언에서 사용 ····· 312
가. 형사절차에서 조사자의 증언 ····· 312
나. 공판절차에서 기억 환기에 사용 ····· 319

다. 피고인의 사용 ····· 324
Ⅳ. 시사점 ····· 325

제4장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운영 방안 ····· 327

제1절 개정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 329
Ⅰ. 개관 ····· 329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329
가. 실체적 진실 발견 ····· 329
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 329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직접주의 ····· 330
가.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 ····· 330
나. 직접주의 ····· 330
3.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이념 ····· 331
가. 종래의 형사재판 ····· 331
나.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부합하는 형사재판 실현 ····· 331
다. 형사소송의 다른 가치와의 조화 ····· 332
Ⅱ. 소송경제적 측면 ····· 332
1.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 ····· 332
가. 심리 방식의 변화 ····· 332
나. 자백 번복 사건의 증가 ····· 333
2. 형사사법 자원 분배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예측 ····· 333
가. 수사 자원의 낭비 ····· 333
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 333
3. 가능한 반론 ····· 334
가. 전체 사건 대비 자백 번복 사건의 비율 ····· 334
나. 진정성립에 관한 공방 생략 ····· 334
다. 수사 관행의 변화 ····· 334
Ⅲ.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 ····· 335
1. 실체 진실 발견이 저해될 것이라는 예측 ····· 335
2. 특정 범죄성립요건이나 범죄 유형에 대처가 곤란할 것이라는 예측 ····· 335
3. 가능한 반론 ····· 336
Ⅳ. 검토 ····· 336
1.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변화되는 부분 ····· 336
가. 검찰 자백을 공판에서 부인하는 경우 ····· 336
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감소 ····· 337
2. 소송경제적 측면 ····· 337
가. 자백 번복 사건의 증가 가능성 ····· 337
나. 심리방식의 변화 가능성 ····· 338
다. 형사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 340

3.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 ····· 340
가.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수사 관행 확립 ····· 340
나. 자백 의존도가 높은 범죄의 경우 ····· 340
제2절 본증 사용 ····· 341
Ⅰ.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 341
1. 현행법의 규율 ····· 341
가. 수사기관 ····· 341
나. 피의자신문 및 조서의 작성 ····· 342
2.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율 ····· 344
가. 수사기관 ····· 344
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절차 및 기재 사항 ····· 344
Ⅱ. 조서의 증거조사 ····· 345
1. 서설 ····· 345
2. 종래의 실무 ····· 345
가. 피의자신문조서 ····· 345
나. 참고인 진술조서 ····· 346
다. 공범 조서 ····· 347
3.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부인에 의한 증거능력 부정 ····· 347
가. 피의자신문조서 ····· 347
나. 참고인 진술조서 ····· 348
다. 공범 조서 ····· 348
4. 소결 ····· 348
가. 사건의 변화
– 피의자신문조서를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의 감소 ····· 349
나. 수사기관의 변화 – 제3자 진술증거의 적극적 수집 ····· 349
다. 법원의 변화 –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의 활성화·실질화 ····· 349
제3절 조사자 증언 ····· 352
Ⅰ. 개관 ····· 352
1. 조사자 증언 제도의 도입 ····· 352
2. 도입 취지 ····· 352
3. 비활성화와 그 원인 ····· 352
4.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활성화 여건 ····· 353
5. 외국의 입법례 ····· 353
6. 수사 초기 피의자 진술의 중요성 및 증거 사용 필요성 ····· 354
7. 조사자 증언의 활성화 가능성 ····· 354
Ⅱ. 조사자 증언의 도입 과정 ····· 355
1. 1961년 전문진술(제316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한 허용 ····· 355
2. 구법 제312조 제3항에 근거한 증거능력 부정 ····· 356
가. 입법 취지 ····· 356
나. 해석론을 통한 해결 ····· 356

다. 배경 ····· 357
라. 조서 우선 상태의 지속 ····· 357
3.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명문화 ····· 358
가. 입법 취지 ····· 358
나. 기대 ····· 358
다. 평가 ····· 358
Ⅲ. 조사자 증언의 활용실태 ····· 359
1. 활용 저조의 원인 ····· 359
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용의 제도적 보장 ····· 359
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차등적 증거능력 부여 ····· 361
다. 특신상태 기준의 문제점 등 ····· 361
2. 활용 논의의 필요성 ····· 362
가. 증거능력 차등 규정의 배경 ····· 362
나. 차등 규정 배경의 변화 – 수사 관행의 개선 ····· 362
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 – 공판중심주의의 확립 ····· 363
라. 조사자 증언의 활성화 논의 ····· 364
Ⅳ. 조사자 증언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365
1. 문제점 ····· 365
2. 조사자 또는 조사 참여자 ····· 365
가. 수사기관 ····· 365
나.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 ····· 366
3.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 368
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 ····· 368
1. 서설 ····· 368
가. 조사자 증언과 특신상태 요건 ····· 368
나. 형사소송법에서 ‘특신상태’의 의의 ····· 370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특신상태 ····· 372
가. 종래의 견해 ····· 372
나. 판단 기준 ····· 373
다. 시사점 ····· 375
3. 검사 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 ····· 376
가. 견해의 대립 ····· 376
나. 검토 ····· 376
4. 사법경찰관 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 ····· 377
가. 판례와 실무 ····· 377
나. 구체적 판단 기준 ····· 377
다.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판단 기준 ····· 381
5. 판단 절차 ····· 384
가. 문제점 ····· 384
나. 판단의 증거 ····· 384

다. 특신상태의 판단 절차 ····· 385
라. 구체적 조사방법 ····· 386
Ⅵ. 조사자 증언에서 조서의 활용방법 ····· 388
1. 조사자 증언의 진행방법 ····· 388
가. 조사자 증언의 시기 ····· 388
나. 유도신문의 금지 ····· 389
2. 기억 환기용 자료로서 조서의 활용 ····· 389
가. 조서의 제시: 허용 ····· 389
나. 조서의 낭독 ····· 390
3. 문제점 ····· 391
가. 신빙성 판단: 조사자의 확증편향 및 기억 환기용 자료의 암기 재현· 391
나. 기억 환기용 자료의 정확성 문제 ····· 393
Ⅶ. 관련문제: 공범 진술의 조사자 증언 ····· 394
1. 문제점 ····· 394
2. 논의의 배경: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95
3. 견해의 대립 ····· 396
가. 제316조 제1항을 적용하는 입장 ····· 396
나.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하는 입장 ····· 396
다. 판례 ····· 397
제4절 탄핵증거 사용 ····· 397
Ⅰ. 개관 ····· 397
1. 탄핵증거의 의의 ····· 397
가. 탄핵증거의 의미 ····· 397
나. 규정 ····· 398
다. 주의할 점 ····· 398
2.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탄핵증거의 사용 ····· 399
가. 자유심증주의와 공판중심주의 ····· 399
나. 진술 신빙성 판단의 중요성 증가 ····· 399
다. 탄핵증거 사용의 현실적 필요성 ····· 399
Ⅱ. 탄핵증거의 자격 및 탄핵의 대상 ····· 400
1. 탄핵증거의 자격 ····· 400
2. 피고인 진술의 탄핵 대상 여부 ····· 401
가. 문제점 ····· 401
나. 견해의 대립 ····· 401
다. 검토 ····· 402
3. 내용 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허부 ····· 403
가. 문제점 ····· 403
나. 견해의 대립 ····· 403
다. 검토 ····· 404
Ⅲ. 판례의 태도 ····· 405

1. 대법원 판례 ····· 405
가. 탄핵증거 사용 허용 ····· 405
나. 탄핵증거에 기해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406
다.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탄핵증거 사용 허용 ····· 407
2. 하급심 판결 ····· 407
가. 다수의 판결: 탄핵증거 사용 허용 ····· 407
나. 일부 판결: 탄핵증거 사용 불허 ····· 409
다. 탄핵증거에 의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 410
Ⅳ. 증거조사 ····· 413
1.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필요 ····· 413
2. 증거신청 ····· 414
3. 증거결정 ····· 415
가. 결정 방식 ····· 415
나. 결정 기준 ····· 416
4. 증거목록의 기재 ····· 416
가. 필요성 ····· 416
나. 기재 방법 ····· 417
5. 증거조사의 실시 ····· 419
가. 필요성 ····· 419
나. 증거조사 방법 ····· 419
6. 기록편철 ····· 420
7. 피고인신문 종료 후의 탄핵증거 신청 ····· 420
제5절 관련 문제 ····· 421
Ⅰ. 피고인의 자백, 부인과 양형 ····· 421
1. 서설 ····· 421
2. 헌법상 진술거부권 ····· 421
가. 진술거부권의 의의 ····· 421
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 422
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 ····· 422
3. 일본의 논의, 실무 ····· 423
가. 긍정설 ····· 423
나. 부정설 ····· 423
다. 절충설 ····· 424
라. 실무 ····· 424
4. 자백, 부인의 양형 고려와 진술거부권 ····· 425
가. 부인을 이유로 한 양형 가중 ····· 425
나. 자백을 이유로 한 양형 감경 ····· 427
5. 자백, 부인 관련 양형기준 ····· 427
가. 진지한 반성 ····· 428
나. 자수, 내부 고발 ····· 428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429
라. 진지한 반성 없음 ····· 429
Ⅱ.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적 적용 범위 ····· 429
1. 형사소송법 부칙 및 대통령령 ····· 429
가. 형사소송법 부칙 – 대통령령에 위임 ····· 429
나. 대통령령 – 2022. 1. 1. ····· 430
2. 문제점: 경과규정 없음 ····· 430
3. 검토 ····· 430
가. 원칙: 입법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 ····· 430
나. 형사소송규칙 부칙(2020. 12. 28.) ····· 431
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 431
라. 증거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431

제5장 결론 ····· 433

제1절 요약 ····· 435
제2절 제언 ····· 437

135.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현안보고서 2021-01

연구책임자 :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10월 14일 발행

I. 서론 ····· 1

1. 현안 검토의 배경 및 목적 ····· 1
가. 검토의 배경 ····· 1
나. 검토의 목적 ····· 3

2. 보고서의 전제 ····· 4
가. 해사(海事)의 개념 ····· 4
나.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찬반론 ····· 4
다. 해사법원의 모습에 관한 일반론 ····· 5

3.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 6
가. 보고서의 구성 ····· 6
나. 연구방법 ····· 7

II. 해사법원이 담당할 사건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구체적 검토 ····· 8

1. 들어가면서 ····· 8

2. 해사민사사건 ····· 8
가. 사건관할 ····· 8
1) 해외 입법례 ····· 8
2) 입법안 제안 ····· 19

3) 사건 수 검토 ····· 24
나. 전속적 사건관할 및 토지관할 ····· 27
1) 전속적 사건관할 ····· 27
2) 토지관할 ····· 29
3) 입법안 제안 ····· 32
다. 사건의 병합 및 이송 ····· 33
1) 해사민사사건 사이의 병합 및 이송 ····· 33
2) 관련청구소송(비해사민사사건)의 병합 및 이송 ····· 34
3) 해사민사사건의 일반법원으로의 이송 ····· 37
4) 입법안 제안 ····· 37
라. 기타 문제 ····· 38
1) 소송 중 청구변경의 경우 ····· 38
2)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 관련 ····· 39

3. 해사행정사건 ····· 39
가. 현행 행정소송 관할 개관 ····· 39
나. 사건관할 ····· 40
1) 해외 입법례 ····· 40
2) 입법안 제안 ····· 41
3) 사건 수 검토 ····· 45
다. 전속적 사건관할 및 토지관할 등 ····· 46
1) 전속적 사건관할 ····· 46
2) 토지관할 ····· 48
3) 관련청구소송 이송 및 병합 ····· 49
4) 입법안 제안 ····· 50

4. 해사형사사건 ····· 51
가. 해외 사례 ····· 51
나. 해사형사사건 관할 인정 여부 ····· 52

5.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 53
가. 해외 입법례 ····· 53
나. 해사보전처분 ····· 59
다. 해사강제집행 ····· 65
라. 사건 수 검토 ····· 71
1)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 71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71

6. 기타 사건 ····· 72
가.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사건 ····· 72
1) 책임제한사건의 해사법원 관할 ····· 72
2) 관련사건의 해사법원 관할 ····· 73
3) 사건 수 검토 ····· 74
4) 입법안 제안 ····· 75

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관련사건 ····· 76
다. 중재사건 ····· 77
라. 국제해사사건 ····· 78
마. 국제상사사건 ····· 82
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83
사. 소액사건심판절차 ····· 84
아.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절차 ····· 85
자. 증거보전절차 ····· 86
차. 제소전화해사건 ····· 87
카. 비송사건 ····· 88
타. 항공사건 ····· 88
파. 해상기업 도산사건 ····· 89

III. 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모습 ····· 90

1. 해사법원의 설치 규모, 형태 및 지역 ····· 90
가. 들어가면서 ····· 90
나.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 ····· 90
1) 사물관할 검토 ····· 90
2) 심급관할 검토 ····· 91
다. 설치 규모, 형태 및 지역 ····· 93
1) 사건 수에 관한 종합적 검토 ····· 93
2) 설치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 ····· 95
3) 설치 형태 및 지역 검토 ····· 97
라. 입법안 제안 ····· 104

2. 해사법원의 소송절차 및 보전처분, 강제집행상의 특례 ····· 106
가. 들어가면서 ····· 106
나. 일반론 ····· 106
다. 소송절차상 특례 검토 ····· 106
라.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특례 검토 ····· 113

IV. 해사법원 설치 준비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16

1.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사항 ····· 116
가. 들어가면서 ····· 116
나. 해사전문재판부의 확대 설치 ····· 116
다. 해사법원 설치 전 해사전문법관 제도의 도입 ····· 118
라. 해사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건부호, 사건명 부여 ····· 118
마. 해사법원 설립에 따른 해사사건 분리 방안 ····· 120

2. 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 ····· 121
가. 소송절차 및 보전처분, 강제집행상 특례의 도입 ····· 121
나. 전문인력제도의 도입 ····· 121
1) 해사전문법관 ····· 121
2) 해사전문심리위원 ····· 122
3) 해사사법보좌관 ····· 122
4) 해사전문집행관 ····· 123
다. 국제해사사건의 유치 방안 ····· 123
1) 해사중재기관과의 연계 강화 ····· 123
2) 한국 법정지 및 준거법 활용증대 방안 ····· 125
3) 그 밖의 국제적 홍보방안 ····· 126

V. 결론 ····· 127

136.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through Community Mediation

연구총서 2021-15

연구책임자 :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10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Ⅰ. 연구의 내용 ····· 4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이웃분쟁과 주민자율조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 7

제1절 이웃분쟁에 관한 일반적 고찰 ····· 9
Ⅰ. 이웃분쟁의 의의 ····· 9
Ⅱ. 이웃분쟁의 유형 ····· 10
1. 층간소음 ····· 10
2. 생활누수 ····· 13
3. 반려동물 문제 ····· 13
4. 간접흡연 ····· 16

5. 주차문제 ····· 17
6.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 17
7. 경계분쟁 ····· 19
8. 통행로 분쟁 ····· 20
9.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 21
10. 기타 ····· 23
Ⅲ. 이웃분쟁의 특성 ····· 23
제2절 주민자율조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5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개론 ····· 25
Ⅱ. 주민자율조정의 개념과 의의 ····· 28
Ⅲ. 주민자율조정의 허용성 ····· 30
Ⅳ. 주민자율조정의 특징 ····· 30
Ⅴ. 주민자율조정의 기능 ····· 32
Ⅵ. 주민자율조정의 장점 ····· 33
Ⅶ. 주민자율조정의 단점 ····· 35

제3장 외국에서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제도 ····· 37

제1절 미국 ····· 39
Ⅰ.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전개와 초기 주민조정센터 ····· 39
Ⅱ. 미국 주민조정센터의 현황 ····· 42
Ⅲ. 주민조정센터의 운용 현황 ····· 47
1. 테네시주 앤더슨 카운티 주민조정센터 ····· 47
2.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 주민조정센터 ····· 47
3.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미들랜드 주민조정센터 ····· 48
4.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제1심 법원 주민조정센터 ····· 49
5. 네바다주 와슈 카운티 주민조정센터 ····· 51
제2절 호주 ····· 52
Ⅰ.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전개와 발전 ····· 52
Ⅱ. 주민조정센터법의 주요 내용 ····· 54
1. 1983년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민조정센터법 ····· 54
2. 1990년 퀸스랜드주 분쟁해결센터법 ····· 55
Ⅲ.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운용 현황 ····· 56
1. 노던테리토리주 ····· 56
2. 빅토리아주 ····· 57
제3절 싱가포르 ····· 59
Ⅰ. 주민조정센터의 개요 ····· 59
Ⅱ. 주민조정센터의 조정절차와 관련된 사항 ····· 61
Ⅲ. 주민조정센터의 운영실적 ····· 62
제4절 대만 ····· 63

Ⅰ. 주민자율조정의 개념과 의의 ····· 63
Ⅱ. 주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조정위원의 선정 및 자격 ····· 64
Ⅲ. 주민자율조정의 절차 ····· 65
Ⅳ. 주민자율조정의 성립과 법원의 승인 ····· 66
Ⅴ. 주민자율조정의 실적 ····· 68
제5절 중국 ····· 70
Ⅰ. 인민조정제도의 의의 ····· 70
Ⅱ. 인민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73
Ⅲ. 인민조정원 ····· 74
Ⅳ. 인민조정절차 ····· 75
Ⅴ. 조정합의의 효력 ····· 76
제6절 기타 국가 ····· 77
Ⅰ. 말레이시아 ····· 77
Ⅱ. 라오스 ····· 79
Ⅲ. 네팔 ····· 81

제4장 국내에서의 주민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제도 ····· 83

제1절 지역공동체형 주민조정 ····· 85
Ⅰ. 이웃분쟁 일반영역 ····· 85
1.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 85
2.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 ····· 88
3.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 97
4.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 ····· 100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 ····· 103
Ⅱ. 층간소음 영역 ····· 104
1.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04
2.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 107
3. 경기도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108
Ⅲ. 동물갈등 영역 ····· 111
1. 서울특별시 동물갈등 조정관제도 ····· 111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민원 자율조정관 제도 ····· 112
제2절 행정형 ADR 제도를 통한 주민조정 ····· 113
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113
Ⅱ.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15
Ⅲ.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116
Ⅳ.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17

제5장 주민자율조정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 ····· 121

제1절 주민조정인에 관한 사항 ····· 123
Ⅰ. 주민자율조정절차에서의 주민조정인의 핵심적 역할 ····· 123
Ⅱ. 주민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 124
Ⅲ. 주민조정인의 전문성 ····· 127
1. 법률전문가인 주민조정인의 참여 ····· 127
2. 주민조정인의 전문성 보장 ····· 129

제2절 주민자율조정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사항 ····· 130
Ⅰ. 주민자율조정의 비밀성 유지 ····· 130
Ⅱ. 주민자율조정절차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지위 ····· 132
1. 분쟁당사자의 적극적 의견진술권 보장 ····· 132
2. 분쟁당사자의 주민조정인 선정권 ····· 133
Ⅲ. 주민자율조정 처리기간과 조정안 수락(의제)기간 ····· 134
Ⅳ. 주민자율조정과 소송 간의 관계 ····· 136
1.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 136
2.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 ····· 138
3.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 139
Ⅴ. 주민자율조정의 합의효력 ····· 140

제3절 외부연계형 주민자율조정제도의 활용 ····· 144
Ⅰ. 법원연계형 조정과 행정형 ADR 기구 연계형 조정 ····· 144
Ⅱ. 형사사건 연계 조정 ····· 147

제4절 기타 사항 ····· 151
Ⅰ.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홍보의 강화 ····· 151
Ⅱ.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 152
Ⅲ. 재원확보문제 ····· 153
Ⅳ. 주민자율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도입 ····· 154

제6장 결론 ····· 157

137.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ultiple Derivative Suit

연구총서 2021-16

연구책임자 : 심정희(사법정책연구원 파견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1년 10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3절 연구참여자의 역할 ····· 5

제2장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입법 경과 및 과제 ····· 7

제1절 다중대표소송의 개념 ····· 9
제2절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찬반론과 입법적 논의 ····· 10
Ⅰ. 2004년 대법원 판결 ····· 10
Ⅱ.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찬반론 ····· 12
1.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 12
2.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 ····· 12
Ⅲ.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법률안과 입법 논의 ····· 13
1.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 ····· 13
가. 제20대 국회(2016~2020) ····· 14
나. 제21대 국회(2020~2024) ····· 16

2.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2006년 및 2013년) ····· 17
3.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경과 ····· 19
Ⅳ.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 도입(2020년 12월) ····· 19
제3절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22
Ⅰ. 미국 ····· 22
Ⅱ. 일본 ····· 26
Ⅲ. 영국 ····· 32
Ⅳ.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 ····· 32
제4절 다중대표소송 관련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 34
Ⅰ. 다중대표소송의 허용범위 및 지배·종속회사 기준 ····· 34
Ⅱ. 원고의 자격과 상장회사 특례조항 ····· 38
Ⅲ.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 ····· 40
Ⅳ. 지배회사 주주에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허용 여부 ····· 42
Ⅴ. 다중대표소송 남용 방지책 ····· 43
제3장 주주대표소송 판결 분석 ····· 45
제1절 주주대표소송 판결 분석의 배경 ····· 47
제2절 주주대표소송 일반론 ····· 48
Ⅰ. 「상법」 상 주주대표소송의 개관 ····· 48
1.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 48
2.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 ····· 49
3.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 50
4. 이사 책임의 성격 및 범위 ····· 51
Ⅱ. 외국의 사례 ····· 52
1. 미국 ····· 52
2. 독일 ····· 53
3. 일본 ····· 57
제3절 1998~2020년 주주대표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 ····· 58
Ⅰ. 분석대상 판결 ····· 58
Ⅱ. 주주대표소송 판결의 연도별 추이 및 선고내용 ····· 59
1. 연도별 주주대표소송 제기 및 판결 추이 ····· 59
2. 주주대표소송 판결의 선고내용 ····· 60
가. 1심 판결의 각하/기각/인용 비율 ····· 60
나. 심급별 판결에 대한 상소율과 상소결과 ····· 62
다. 1심 인용판결의 확정 내용 및 주주대표소송의 최종 결과 ····· 63
Ⅲ. 주주대표소송 판결에 나타난 원고 및 주식회사의 특징 ····· 64
1. 원고의 주식 보유량 ····· 64
2. 법인·단체가 원고로 참여한 비중과 소송결과에 미친 영향 ····· 66

3. 비상장회사·상장회사 구분과 그에 따른 소송결과 ····· 67
Ⅳ. 주주대표소송 판결이유 관련 분석: 소 각하 이유 ····· 68

1. 사전 제소청구 절차 ····· 69
가. 사전 제소청구 절차의 면제 ····· 69
나.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 70
다. 사전 제소청구 후 30일 경과 전에 소 제기 ····· 72
라. 사전 제소청구의 상대방 ····· 72
마. 사전 제소청구의 상대방: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 74
바. 사전 제소청구의 서면에 기재할 내용 ····· 76
사. 소결 ····· 77
2.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78
가.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78
나.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 79
다. 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 80
라. 원고적격에 대한 하자 치유 ····· 81
3.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물 ····· 81
Ⅴ. 주주대표소송 판결이유 관련 분석: 경영판단의 원칙 ····· 84
1.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 ····· 84
2. 미국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 ····· 87
가.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 88
나. 델라웨어주 법원의 3개 사법심사 기준 ····· 89
다.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사법심사 방법 ····· 92
라. 개정모범회사법 등에 소개된 주의의무 및 경영판단의 원칙 ····· 93
3. 독일 및 일본과 비교 ····· 95
4.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판결 ····· 98
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판결 ····· 98
나. 계열회사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파생상품계약 체결 ····· 101
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과 관련된 판결 ····· 103
라.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 ····· 105
마.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과 관련된 판결 ····· 108
Ⅵ. 주주대표소송 판결이유 관련 분석: 손해배상액 제한 ····· 112

제4절 종합 분석 ····· 114
Ⅰ. 주주대표소송의 추이 및 남용 여부 ····· 114
Ⅱ. 사전 제소청구 절차에 대한 해석 및 적용 ····· 115
Ⅲ.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송물 ····· 117
Ⅳ.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 ····· 120
Ⅴ. 법원 판결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제한 ····· 122

제4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와 다중대표소송 ····· 125

제1절 기본 개념과 연구 배경 ····· 127
Ⅰ. 지주회사의 개념 ····· 127
Ⅱ. 지주회사제도와 다중대표소송 ····· 129
제2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연혁 ····· 130
제3절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34
Ⅰ. 현황 및 특징 ····· 134
Ⅱ. 문제점 ····· 136
제4절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 139

제5장 결론: 다중대표소송과 관련된 고려사항 ····· 143

제1절 입법론적 고려사항 ····· 145
Ⅰ. 쟁점사항과 관련된 입법요구 내용 ····· 145
1. 다중대표소송이 허용되는 회사집단의 범위 확대 ····· 145
2.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다중대표소송 주식보유 비율 조정 ····· 146
3.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허용 ····· 147
Ⅱ. 원고적격과 관련된 특별규정 필요 ····· 148
Ⅲ. 모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49
Ⅳ. 소송 남용의 대책은 중·장기적 과제 ····· 150
제2절 재판실무상 고려사항 ····· 151
Ⅰ. 주주대표소송과 공통적인 사항 ····· 151
1. 사전 제소청구 절차 ····· 151
2. 경영판단의 원칙 ····· 152
3. 피고의 손해배상액 제한 ····· 154
Ⅱ.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사항 ····· 155
1. 당사자적격 및 소송물 ····· 155
2. 회사집단의 이익에 대한 고려 ····· 156

138.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Judicial Workload and Influencing Factors

연구총서 2021-17

연구책임자 : 홍보람(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12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성격 및 의의 ····· 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6
Ⅰ. 연구의 대상 ····· 6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법관의 업무부담 의의 ····· 9

제1절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 ····· 11
Ⅰ.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 11
1. 재판받을 권리 ····· 11
2.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 12
Ⅱ. 사법신뢰 형성을 위한 사법서비스 증진 ····· 14
1.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 ····· 14
2. 사법서비스 증진 ····· 16
Ⅲ. 법관 업무부담 적정화 ····· 18

1. 좋은 재판과 적정한 업무부담 ····· 18
2. 사법서비스 향상 전제요건 ····· 20
제2절 법관 업무부담에서 파생하는 결과 ····· 23
Ⅰ. 법원의 기관적 속성 ····· 23
Ⅱ. 업무부담으로 인한 결과 ····· 26
제3절 사법 수요와 공급 ····· 28
Ⅰ. 수요의 증대 ····· 28
Ⅱ. 숨어있는 사법 수요 ····· 30
Ⅲ. 사건처리기간 증가 ····· 33
제4절 법관 규모 ····· 36
Ⅰ. 법관 규모 ····· 36
Ⅱ. 법관 증원의 목소리 ····· 40
1. 주요 국가와의 업무부담 비교 ····· 40
2. 법원 내부의 법관증원 요청 ····· 41
3. 변호사 사회에서의 법관증원 요청 ····· 42

제3장 법관 업무부담 구성 ····· 45

제1절 법관 업무부담의 개념 ····· 47
Ⅰ. 업무부담의 개념 ····· 47
Ⅱ. 업무부담 구성요소 ····· 48
제2절 국내 선행연구 ····· 50
Ⅰ. 국내 선행연구 주요 내용 ····· 50
1. 적정 판사 정원에 관한 연구(2013년) ····· 50
2. 바람직한 법관상의 정립과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2015년) ····· 51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TF 연구(2019년) ····· 53
Ⅱ. 선행연구 활용방안 ····· 55
1. 질적 선행연구 ····· 55
2. 양적 선행연구 ····· 55
제3절 국외 검토사례 ····· 56
Ⅰ. 미국의 법관 업무부담 확인 ····· 56
1. 법관 업무부담 확인 방식 ····· 56
2. 미국 전국주법원센터 ····· 58
3. 노스 캐롤라이나 ····· 59
4. 플로리다 주 ····· 60
5. 법관 사건처리 시간 구분 ····· 61
6. 기술 및 비법관 인력의 효과적 활용 ····· 62
7. 인터뷰 기록에서 추출되는 미국 법관들의 근무시간 ····· 62
Ⅱ. 독일의 법관 업무부담 확인 방식 ····· 63

1. 법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 ····· 63
2. 업무부담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PEBB§Y 프로그램 ····· 65
3. 독일 법관들의 연간 근로시간 ····· 66
4. PEBB§Y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의 비판 ····· 67
5. 인터뷰 기록에서 확인되는 독일 법관들의 근무시간 ····· 68
6. 사건처리율에서 자유로운 독일 법관들 ····· 68
7. 같은 법원에서 장기간 근속 ····· 69
8. 가정과 일의 양립에 관한 보장 ····· 69
Ⅲ. 국외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70
1. 업무시간을 기초자료로 활용 시 유의사항 ····· 70
2. 현실적인 사건처리 시간 설정 ····· 71

제4장 전현직 법관 심층인터뷰 ····· 73

제1절 인터뷰 목적 및 의의 ····· 75
제2절 선행 인터뷰 ····· 76
Ⅰ. 외부 전문가 인터뷰 ····· 76
1. 인터뷰 배경 ····· 76
2. 인터뷰 주요 결과 ····· 76
3. 인사행정 전문가 A 인터뷰 결과 ····· 76
4. 인사행정 전문가 B 인터뷰 결과 ····· 77
5. 인터뷰 검토 소결 ····· 78
Ⅱ. 초점그룹 인터뷰 ····· 78
1. 초점그룹 인터뷰 배경 ····· 78
Ⅲ. 초점그룹 인터뷰 결과 ····· 79
1. 6월 22일 예비 인터뷰 결과 ····· 79
2. 7월 1일 예비 인터뷰 결과 ····· 82
3. 7월 10일 예비 인터뷰 결과 ····· 83
4. 8월 12일 예비 인터뷰 결과 ····· 84
5. 8월 24일 예비 인터뷰 결과 ····· 85
제3절 심층인터뷰 대상 및 방식 ····· 86
Ⅰ. 심층 인터뷰의 특징 ····· 86
Ⅱ. 인터뷰 질문 및 대상자 ····· 87
1. 인터뷰 질문의 구성 ····· 87
2. 인터뷰 참여자 ····· 88
Ⅲ. 인터뷰 방식 및 정리방법 ····· 89
1. 인터뷰 방식 ····· 89
2. 참여자 익명화 ····· 89
3. 인터뷰 정리방법 ····· 89
제4절 인터뷰 결과 ····· 91

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개념 ····· 91
Ⅱ. 업무부담 현황 및 성격 ····· 93
1. 높은 업무강도 ····· 93
2. 사건의 난이도 증가 ····· 94
3. 지역별 차이 ····· 95
4. 업무부담의 성격 ····· 96
5. 다른 직역과의 업무부담 비교 ····· 98
6. 법관 재직기간이 업무부담에 미치는 영향 ····· 99
7. 정년까지의 근무 가능성 우려 ····· 102
Ⅲ. 업무부담 영향요인 및 확인방식 ····· 103
1. 개별 사건마다의 고유성 ····· 103
2. 사건의 종류와 성격 ····· 104
3. 주변 환경의 영향 ····· 105
4. 법관 업무부담 확인방식 ····· 106
Ⅳ. 직무의 만족·불만족 요인 ····· 108
1. 법관 직무의 만족 요인(매력도) ····· 108
2. 법관 직무의 불만족 요인 ····· 111
3. 법원 문화의 변화 ····· 112
Ⅴ. 법관 직무동기 및 법원 인사정책 ····· 114
1. 법관들의 주된 직무동기 ····· 114
2. 직무 인센티브 부여 ····· 117
3. 근무평정이 미치는 영향 ····· 122
Ⅵ. 법관 증원 등 인사정책 ····· 125
1. 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 ····· 125
2. 비핵심업무의 이관 ····· 127
3. 재판연구원 증원 ····· 128
4. 단독재판부 증설 ····· 130
5. 재판부 인력배치의 효율성 제고 ····· 132
6. 법원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 ····· 133

제5장 설문조사 구성 ····· 135

제1절 설문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137
Ⅰ. 설문조사의 배경 ····· 137
Ⅱ. 설문조사의 필요성 ····· 138
제2절 설문조사의 분석틀과 문항의 구성 ····· 139
Ⅰ. 설문조사 분석틀과 변수구성 ····· 139
1. 설문조사 분석틀 ····· 139
2. 변수의 구성 ····· 140
Ⅱ. 설문 문항의 구성 ····· 141

제3절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142
Ⅰ. 설문조사 자료수집 ····· 142
1. 설문조사 대상자 ····· 142
2. 설문조사 진행방식 ····· 143
Ⅱ. 설문조사 분석방법 ····· 143
1. 자료의 분석방법 ····· 143
2. 응답자료 결측치 처리 ····· 145
Ⅲ.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 146
1. 타당성과 신뢰도 ····· 146
2. 요인분석 ····· 148

제6장 기술적 통계 분석 ····· 151

제1절 기초통계 분석 ····· 153
제2절 부족한 업무시간 ····· 155
Ⅰ. 부족한 업무시간 확인 ····· 155
Ⅱ. 부족한 시간을 부족한 인력으로 환산 ····· 156
Ⅲ. 업무시간에 쫓기는 이유 ····· 158
1.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이유 ····· 158
2. 재직기간에 따른 응답그룹별 차이 ····· 159
제3절 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 ····· 160
Ⅰ. 증원 찬성의견 과반수 ····· 160
Ⅱ. 응답그룹별 차이 ····· 162
제4절 신체적·정신적 건강 ····· 163
Ⅰ. 신체적 영향 ····· 163
Ⅱ. 번-아웃 경험 ····· 164
제5절 법관 직무에 대한 만족도 ····· 167
Ⅰ. 직무 만족도 ····· 167
Ⅱ. 직무 만족과 불만족 이유 비교 ····· 169
1. 직무 만족의 이유 ····· 169
2. 직무 불만족의 이유 ····· 170
Ⅲ. 응답그룹별 차이 ····· 171
Ⅳ. 법원에 느끼는 연대감 ····· 174
제6절 업무부담 영향요인 평가 ····· 174
Ⅰ. 자료의 분량이 방대한 사건 ····· 174
Ⅱ. 재직기간에 따른 응답그룹별 차이 ····· 176
Ⅲ. 재판연구원 경험이 있는 법관들의 답변 ····· 178
Ⅳ. 업무부담 가중 영향요인 ····· 178
Ⅴ. 응답그룹별 차이 ····· 180
Ⅵ. 영역별 업무부담 비중 확인 ····· 182

제7절 정년까지의 근무 계획 ····· 183
Ⅰ. 정년까지 근무할 의향 ····· 183
Ⅱ. 재직기간에 따른 응답그룹별 차이 ····· 183
제8절 민·형사 사건의 비교 ····· 185
Ⅰ. 민·형사 사건 비교 ····· 185
Ⅱ. 민·형사 적정건수 비교 ····· 186
Ⅲ. 전문분야 사건 선호도 ····· 188
제9절 선호하는 재판부 등 ····· 190
Ⅰ. 선호하는 재판부 형태 ····· 190
Ⅱ. 응답그룹별 차이 ····· 191
제10절 기타 정책적 제언 ····· 192
Ⅰ. 내부의견 수렴 ····· 192
Ⅱ. 비핵심 업무의 이관 ····· 193
Ⅲ. 미성년 양육 법관 배려 ····· 196

제7장 상관관계 분석 ····· 201

제1절 연구가설의 수립 ····· 203
Ⅰ. 분석을 위한 연구가설 수립 ····· 203
Ⅱ. 연구가설의 설정 ····· 204
1. 법관의 직무수행 역량 ····· 204
2. 주요 변수들 간 관계 ····· 206
3. 연구가설의 설정 ····· 207
제2절 근무시간의 영향력 ····· 209
Ⅰ. 장시간 근무가 미치는 영향 ····· 209
Ⅱ. 평균 근무시간의 영향 ····· 211
1. 평균 근무시간과 업무수행 역량 ····· 211
2. 평균 근무시간과 직무 만족도 ····· 212
Ⅲ. 야근 횟수가 미치는 영향 ····· 213
1. 야근 횟수와 업무수행 역량 ····· 213
2. 야근 횟수와 직무 만족도 ····· 214
Ⅳ. 주말근무 횟수가 미치는 영향 ····· 215
1. 주말근무 횟수와 신체적 건강 ····· 215
2. 주말근수 횟수와 번-아웃 ····· 215
3. 주말근무 횟수와 직무 만족도 ····· 216
Ⅴ. 법정 내 업무시간과 법정 외 업무시간 비교 ····· 216
제3절 직무 만족도의 조절효과 ····· 218
Ⅰ. 직무 만족도가 미치는 효과 ····· 218
Ⅱ. 근무시간 대비 번-아웃 확률 ····· 218

1. 근무시간 대비 번-아웃 경험 ····· 218
2. 근무시간 대비 신체적 건강 ····· 219
Ⅲ. 야근 및 주말근무의 영향에 미치는 효과 ····· 220
제4절 소속감 및 연대감의 매개효과 ····· 221
Ⅰ. 소속감·연대감이 미치는 효과 ····· 221
Ⅱ. 근무시간 대비 신체적 영향 ····· 222
Ⅲ. 야근횟수 대비 신체적 영향 ····· 223
Ⅳ. 주말근무 대비 신체적 영향 ····· 224
제5절 정년근무 의향이 미치는 조절효과 ····· 225
Ⅰ. 야근횟수 대비 번-아웃 확률 ····· 225
Ⅱ. 주말근무 대비 번-아웃 확률 ····· 226
제8장 표본 재판부 실증분석 ····· 229
제1절 업무부담 모델 구성을 위한 접근 ····· 231
Ⅰ. 업무부담 모델 구성의 기초 요소 ····· 231
Ⅱ. 법관 업무의 단계별 분석 ····· 232
Ⅲ. 업무성과 위주 vs 근무시간 위주 접근방식 ····· 234
Ⅳ. 업무부담 모델 구성시안 ····· 237
제2절 표본재판부 분석 ····· 240
Ⅰ. 표본재판부 선정 이유 ····· 240
1. 서울중앙지방법원 ····· 240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 241
3. 합의부 자료 ····· 241
Ⅱ. 분석대상 연도 ····· 242
Ⅲ. 사건의 전문분야 유형 ····· 243
제3절 재판자료 분석 결과 ····· 244
Ⅰ. 전산정보관리국 제공 기초자료 ····· 244
Ⅱ. 업무시간과 업무성과 반영 지표 ····· 245
Ⅲ. 분석 자료의 판별기준 ····· 247
Ⅳ. 평균 소요일수 및 자료분량 증가 ····· 249
1. 2014년 사건처리 소요일수 및 자료분량 ····· 249
2. 2019년 사건처리 소요일수 및 자료분량 ····· 250
3. 사건처리 시간 증가율을 상회하는 자료분량 증가율 ····· 251
제4절 기초자료 원본 분석 결과 ····· 254
Ⅰ. 평균 소요일수 비교 ····· 254
1. 원본 데이터 분석 의의 ····· 254
2. 소요일수 증가율이 큰 분야 ····· 255
Ⅱ. 사건기록 분량 비교 ····· 256

1. 사건기록 분량 ····· 256
2. 많은 자료가 제출된 분야 ····· 256
3. 자료 분량의 증가율이 큰 분야 ····· 257
Ⅲ. 분량/소요일수 비교 ····· 257
1.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건들 ····· 257
제5절 자료분석 의의 및 활용 전망 ····· 260
Ⅰ. 자료 분석의 의의 ····· 260
Ⅱ. 민사분야 업무부담 시안 ····· 261
Ⅲ. 자료활용 전망 ····· 262

제9장 결론 ····· 263

제1절 연구의 요약 ····· 265
Ⅰ. 연구의 주요 내용 ····· 265
Ⅱ. 전·현직 법관 인터뷰 자료 분석 ····· 265
Ⅲ. 법관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67
Ⅳ. 표본 재판부 데이터 분석 ····· 270
Ⅴ. 연구의 한계 ····· 271
1. 연구의 구비 요건 ····· 271
2. 주관적 응답의 한계 ····· 272
3. 표본 재판부의 한계 ····· 27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274
Ⅰ. 법관 업무부담 관리 필요성 ····· 274
Ⅱ. 업무부담 모델 구성을 위한 접근방향 ····· 276
1. 업무부담 확인을 위한 지표 설정 ····· 276
2. 계량적 지표의 추가 ····· 278
Ⅲ.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법관들의 실질적 참여 ····· 279
1. 정기적인 자료조사 필요성 ····· 279
2. 일선 법관들의 적극적 참여 ····· 280
Ⅳ. 연구의 활용방향 ····· 281

139.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Laos・Mongolia

연구총서 2022-01

연구책임자 : 정호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1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베트남의 부동산등기제도 ····· 7

제1절 등기의 효력 ····· 9
Ⅰ. 의의 ····· 9
Ⅱ. 물권변동의 효력 ····· 9
Ⅲ. 대항적 효력 ····· 13
Ⅳ. 추정력 ····· 16
Ⅴ. 순위확정적 효력 ····· 17
Ⅵ. 등기의 공신력 ····· 19

제2절 베트남 민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 21
Ⅰ. 서설 ····· 21
Ⅱ. 소유권 ····· 23
1. 소유권의 개요 ····· 23
2. 소유권의 형태 ····· 24
3. 소유권에 포함된 내용 ····· 25
4. 소유권의 내용 ····· 26
Ⅲ. 담보권 ····· 26
Ⅳ. 용익물권 ····· 28
Ⅴ. 토지 및 건물의 물권법적 관계 ····· 29
제3절 베트남 개황과 토지법의 주요 내용 ····· 30
Ⅰ. 서설 ····· 30
Ⅱ. 베트남 개황 등 ····· 32
1. 국가 개황 ····· 32
2. 한국과의 교역 동향 ····· 33
Ⅲ. 베트남 토지법의 주요 내용 ····· 34
1. 서설 ····· 34
2. 토지 관리의 역사 ····· 35
3. 주요 토지법 내용 ····· 36
제4절 등기절차 ····· 40
Ⅰ. 개관 ····· 40
1. 서설 ····· 40
2. 베트남 부동산등기 현황 ····· 41
Ⅱ. 등기기관 및 등기기록 ····· 44
1. 등기기관 ····· 44
가. 우리나라 ····· 44
나. 베트남 ····· 45
2. 등기부 ····· 49
가. 우리나라 ····· 49
나. 베트남 ····· 54
Ⅲ. 등기신청절차 ····· 65
1. 등기신청인 ····· 65
가. 우리나라 ····· 65
나. 베트남 ····· 66
2. 신청의 방법 ····· 67
가. 우리나라 ····· 67
나. 베트남 ····· 69
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69
가. 의의 ····· 69
나. 신청정보 ····· 70

다. 첨부정보 ····· 72
Ⅳ. 등기처리절차 ····· 76
1. 우리나라 ····· 76
2. 베트남 ····· 79
Ⅴ.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자산 저당등기 ····· 80
1. 서설 ····· 80
2. 요건 ····· 82
가. 우리나라 ····· 82
나. 베트남 ····· 82
3. 등기절차 ····· 83
가. 서설 ····· 83
나. 우리나라 ····· 84
다. 베트남 ····· 88
4. 관련 문제 ····· 93
Ⅵ. 상호 등기제도 교류 ····· 94
1. 한국과 베트남의 사법교류 현황 ····· 94
2. 등기 관련 상호교류 ····· 95
3. 시사점 ····· 96

제3장 라오스의 부동산등기제도 ····· 97

제1절 라오스 민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 99
Ⅰ. 서설 ····· 99
Ⅱ. 소유권 ····· 102
1. 소유권의 개요 ····· 102
2. 소유권의 형태 ····· 104
3. 소유권의 내용 ····· 106
4. 소유권의 보호 ····· 108
Ⅲ. 담보권 ····· 108
Ⅳ. 용익물권 ····· 110
Ⅴ. 토지 및 건물의 관계 ····· 111
제2절 라오스의 개황과 토지법의 주요 내용 ····· 113
Ⅰ. 서설 ····· 113
Ⅱ. 라오스 개황 등 ····· 114
1. 국가 개황 ····· 114
2. 한국과의 교역 동향 ····· 116
Ⅲ. 라오스 토지법의 주요 내용 ····· 117
Ⅳ. 2019년도 개정토지법의 내용 및 개정 전후 비교 ····· 118
1. 개정의 배경 ····· 118
2. 토지의 관리시스템 ····· 119

3. 토지사용권의 취득 ····· 120
4.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 122
가. 의의 ····· 122
나. 개정 전후 비교 ····· 126
5. 건축물 세대의 소유권 ····· 127
6. 콘도미니엄에 관한 규정 ····· 128
가. 콘도미니엄사업자의 요건 ····· 132
나. 콘도미니엄의 토지사용권 및 구분(unit) 소유권 ····· 133
다. 토지법 개정으로 열린 콘도미니엄 개발 기회 ····· 134
7. 토지권원서의 발행 ····· 134
8. 시사점 ····· 135
제3절 등기절차 ····· 136
Ⅰ. 개관 ····· 136
1. 서설 ····· 136
2. 라오스 부동산등기 현황 ····· 136
3. 2012년 이전의 등기실무 ····· 138
Ⅱ. 라오스 토지등기제도의 주요 개념 ····· 139
1. 서설 ····· 139
2. 토지등기제도 ····· 140
가. 의의 ····· 140
나. 토지대장등기 ····· 140
다. 토지권리증등기 ····· 140
라. 토지사용권활동등기 ····· 144
마. 토지사용권변경등기 ····· 144
바. 콘도미니엄의 건설용지에 대한 등기제도
(Registration of Land for Condominium Construction) ····· 145
3. 토지평가 ····· 146
Ⅲ. 등기 관련 법제 ····· 147
1. 서설 ····· 147
2. 2007년 토지에 관한 법률행위의 등기규칙 ····· 148
가. 의의 ····· 148
나. 내용 ····· 149
다. 등기절차 ····· 150
Ⅳ. 등기기관 및 등기기록 ····· 156
1. 등기기관 ····· 156
가. 법률에 의한 구분 ····· 156
나. 등기실무에 의한 구분 ····· 157
2. 등기기록 ····· 159
가. 등기의 종류 ····· 159
나. 등기 기재 ····· 159

다. 신규등기 현황 ····· 160
라. 지분권의 등기 ····· 160
마. 바코드 ····· 161
Ⅴ. 등기신청절차 ····· 163
1. 신청인 ····· 163
2. 신청의 방법 ····· 163
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163
가. 신청정보 ····· 163
나. 첨부정보 ····· 165
Ⅵ. 등기처리절차 ····· 168
1. 수도 비엔티안에서의 등기처리실무 ····· 168
2. 주(쾡, ແຂວງ)에서의 등기처리실무 ····· 170
가.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주(쾡, ແຂວງ)의
천연자원환경국에서의 등기절차 ····· 170
나. 참파삭(Champasak)주(쾡, ແຂວງ)의
천연자원환경국에서의 등기절차 ····· 173
3. 시(나콘)에서의 등기처리실무 ····· 173
가. 루앙프라방시(市) 천연자원환경사무소에서의 등기처리실무 ····· 173
나. 팍세이시(市)의 천연자원환경사무소에서의 등기처리실무 ····· 175
4. 군(므앙)에서의 등기처리실무 ····· 176
가. 조사절차 ····· 176
나. 수도 비엔티안 시삿타나군의 천연자원환경사무소 ····· 176
5. 촌[마을(반)]에서의 등기처리실무 ····· 177
가. 수도 비엔티안 시삿타나군 심완촌(마을)사무소 ····· 177
나. 루앙프라방의 나산촌(마을)사무소 ····· 178
Ⅶ. 담보등기 ····· 179
1. 서설 ····· 179
2. 내용 ····· 179
가. 주요 용어의 정의 ····· 179
나. 담보의 종류 ····· 180
다. 부동산담보의 대상 ····· 181
라. 담보계약 ····· 182
마. 피담보채권의 충당 ····· 183
3. 등기절차 ····· 186
4. 담보등기실무 ····· 188
Ⅷ. 기타 등기 ····· 189
Ⅸ. 상호 등기제도 교류 ····· 189
1. 라오스와의 사법교류 현황 ····· 189
2. 등기 관련 상호교류 ····· 190
3. 시사점 ····· 191

제4장 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 ····· 195

제1절 몽골 민법의 주요 내용 ····· 197
Ⅰ. 서설 ····· 197
Ⅱ. 소유권 ····· 197
1. 소유권의 개요 ····· 197
2. 소유권의 형태 ····· 198
3. 소유권의 내용 ····· 198
4. 소유권의 보호 ····· 199
Ⅲ. 담보권 ····· 199
Ⅳ. 용익물권 ····· 199
Ⅴ. 토지 및 건물의 관계 ····· 202

제2절 몽골의 개황과 토지법의 주요 내용 ····· 204
Ⅰ. 서설 ····· 204
Ⅱ. 몽골의 개황 등 ····· 205
1. 국가 개황 ····· 205
2. 한국과 교역 동향 ····· 205
Ⅲ. 몽골 토지법의 주요 내용 ····· 206

제3절 등기절차 ····· 210
Ⅰ. 개관 ····· 210
1. 서설 ····· 210
2. 몽골의 부동산등기 현황 ····· 211
Ⅱ. 등기기관 및 등기기록 ····· 213
1. 등기기관 ····· 213
2. 등기기록 ····· 216
Ⅲ. 등기신청절차 ····· 219
1. 신청인 ····· 219
2. 신청의 방법 ····· 219
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220
가. 신청정보 ····· 220
나. 첨부정보 ····· 221
Ⅳ. 등기처리절차 ····· 223
Ⅴ. 저당권에 관한 등기 ····· 227
1. 서설 ····· 227
2. 요건 ····· 227
3. 등기절차 ····· 227
Ⅵ. 기타 등기 ····· 228
1. 내용 ····· 228
2. 등기절차 ····· 231

Ⅶ. 상호 등기제도 교류 ····· 232
1. 한국과 몽골의 사법교류 현황 ····· 232
가. 양국 사법부 간의 협약 ····· 232
나. 사법부 최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 232
다.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사법교류 현황 ····· 232
라. 몽골법관 등 대법원 연수 참가 ····· 233
마. 몽골인사 한국 방문 ····· 234
바. 사법연수원과 몽골의 사법교류 현황 ····· 234
2. 등기 관련 상호교류 ····· 234
가. 몽골 전자등기연수 ····· 234
나. 몽골 국가등기·등록청 역량강화 연수 ····· 235
다. 2020년 몽골 국가등기·등록청 역량강화 연수 ····· 236
3. 시사점 ····· 237

제5장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41

제1절 부동산등기법제와 등기절차 비교 ····· 243
Ⅰ. 서설 ····· 243
Ⅱ. 베트남·라오스·몽골과 한국의 부동산등기법제 비교 ····· 243
1. 부동산등기 관련 법제 비교표 ····· 243
2. 주요 내용 검토 ····· 244
가.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 244
나. 건물소유권의 등기 가부 ····· 246
다.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분리 등기 가부 ····· 246
Ⅲ. 베트남·라오스·몽골과 한국의 등기절차 비교 ····· 247
1. 등기절차 비교표 ····· 247
2. 주요 내용 검토 ····· 248
가. 등기 열람 여부 ····· 248
나. 등기권리증 발급 여부 ····· 250
다. 주요 법제지원국가나 기관 ····· 251
제2절 시사점 ····· 252
Ⅰ.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 252
Ⅱ.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 ····· 253
Ⅲ.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필정보제도 관련 ····· 253
Ⅳ.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 ····· 254
Ⅴ. 등기 관련 상호교류 및 법제지원 ····· 254

제6장 결론 ····· 257

140.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n Civil Procedure
- Focusing on *in-camera* Proceedings -

연구총서 2022-02

연구책임자 : 박병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연구위원)

2022년 1월 1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우리 민사소송에서 비밀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 7
제1절 서설 ····· 9
제2절 증거수집 과정에서 비밀의 보호 ····· 9
Ⅰ.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심리절차에서 비밀의 보호 ····· 9
1.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요 ····· 9
2. 문서제출의무와 예외 ····· 10
3.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및 심리 ····· 16
4. 비공개 심리절차(in camera proceedings) ····· 16
5. 현행 in camera 심리절차의 문제점 ····· 19
6.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22
Ⅱ.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증거수집 과정에서 비밀의 보호 ····· 23

1. 개관 ····· 23
2. 자료제출명령 ····· 24
가. 개요 ····· 24
나. 자료제출명령의 범위 ····· 27
다. 자료제출신청 ····· 28
라. 자료제출거부 사유의 심리 ····· 29
마. in camera 심리절차 ····· 31
바. 자료의 열람범위 등의 지정 ····· 33
사.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특례 ····· 33
아.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 관련 자료제출명령 ····· 34
3. 비밀유지명령 제도 ····· 36
가. 개요 ····· 36
나.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요건 ····· 36
다. 사전 심문의 필요성 ····· 41
라. 결정 ····· 42
마. 비밀유지명령위반죄 ····· 43
바. 비밀유지명령과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 43
사.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44
아.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한계와 존재 의의 ····· 45
제3절 행정소송 등에서의 비공개 심리절차 ····· 47
Ⅰ. 정보공개 소송에서 in camera 심리 ····· 47
1. 개관 ····· 47
2. 정보공개 소송에서 in camera 심리의 필수성 ····· 48
3. 입법례 ····· 48
가. 미국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in camera 심리절차 ····· 48
나. 독일 행정법원법상 자료제출명령절차에서 in camera 심리 ····· 50
다. 일본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in camera 심리절차 ····· 53
4. in camera 제도의 구체적 운영 ····· 54
가. 구체적 운영의 근거: 소송지휘권 ····· 54
나. 심리의 주체 ····· 54
다. 정보의 제출방법 ····· 54
라. 정보의 보관, 반환·폐기 ····· 55
마.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56
5. 행정소송에서 in camera 심리의 확대 시론 ····· 56
Ⅱ.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 비밀의 보호 ····· 58
1.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과 영업비밀 보호 ····· 58
2.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 등의 신설 ····· 61
제4절 변론의 공개와 비밀의 보호 ····· 63
Ⅰ. 개요 ····· 63
Ⅱ. 재판공개의 원칙 ····· 64

1. 재판공개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 ····· 64
2. 재판공개 원칙의 범위 ····· 65
3. 재판공개의 원칙과 민사재판 ····· 66
Ⅲ. 비밀보호를 위한 심리의 비공개 ····· 67
1. 쟁점 ····· 67
2. 관련 논의의 소개 ····· 67
3. 검토 ····· 69
Ⅳ. 본안의 증거조사에서 in camera 심리의 가능성 ····· 70
1. 서론 ····· 70
2. 독일에서의 논의 ····· 71
3. 스위스 민사소송법 ····· 74
4. 검토 ····· 75
제5절 소송기록과 비밀의 보호 ····· 77
Ⅰ. 소송기록 등 열람·복사 제도 ····· 77
Ⅱ. 소송기록에 기재된 비밀의 보호 ····· 79
1. 개요 ····· 79
2. 지식재산권 소송 등에서의 특칙 ····· 82
3. 제도의 한계 ····· 83
제6절 법관·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본 실무 현황 ····· 85
Ⅰ.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업전담부 재판장 ····· 85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재판장 ····· 87
Ⅲ. 공정거래법위반 사건(퀄컴 사건) 주심판사 ····· 91
Ⅳ.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간담회 ····· 96

제3장 비교법적 검토 ····· 101

제1절 미국 ····· 103
Ⅰ. 디스커버리 제도 ····· 103
1. 개관 ····· 103
2. 디스커버리 제도의 역사: 모색적 증명의 금지에서 허용까지 ····· 104
3. 의의와 기능 ····· 105
4. 디스커버리의 범위: 관련성·비례성 ····· 106
5. 디스커버리 수단 ····· 107
6. 사전협의 ····· 107
7. 디스커버리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108
Ⅱ.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 109
1. 개관 ····· 109
2. 요건 ····· 111
3. 보호명령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113
4. 법원이 보호명령 심리 시 고려할 사항 ····· 114
5. in camera 심리 ····· 115

6. 비밀보호의 형태 ····· 116
7. 비밀보호의 정도 지정 ····· 116
8. 보호명령의 변경 ····· 118
9. 법원에 제출된 보호명령 대상 자료의 열람제한 결정(sealing) ····· 120
10. 보호명령에 대한 불복 ····· 121
Ⅲ. 재판공개의 원칙과 예외 ····· 121
1. 재판공개의 원칙 ····· 121
2. 재판공개 원칙의 예외 ····· 122
3. 정보공개 소송에서 in camera 심리 ····· 126
4. 재판공개로서 소송기록의 공개 ····· 126
5. 소송기록 열람제한(sealing) ····· 127
Ⅳ. 미국의 영업비밀 소송절차에서 비밀의 보호 ····· 132
1. 개관 ····· 132
2. 통일영업비밀법의 비밀유지 조항 ····· 132
Ⅴ. 미국 법관들과의 인터뷰 ····· 134
1. 개요 ····· 134
2. 인터뷰 내용 정리 ····· 134
제2절 일본 ····· 138
Ⅰ. 일본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 과정에서 비밀의 보호 ····· 138
1. 문서제출명령 절차에서 비밀의 보호 ····· 138
2. 문서제출명령신청과 in camera 심리절차 ····· 139
3. 문서제출명령 재판에서 in camera 운영의 실제 ····· 145
4.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147
5. 그 밖의 증거수집 단계에서 비밀의 보호 ····· 148
Ⅱ. 일본 지식재산권법상 증거수집 과정에서 비밀의 보호 ····· 152
1. 개관 ····· 152
2. 서류제출명령 제도 ····· 153
가. 개관 ····· 153
나. 요건 ····· 154
다. 서류제출명령 위반의 효과 ····· 157
라. in camera 절차 ····· 157
마. 특허소송에서 in camera 절차의 활용 정도 ····· 160
바. in camera 절차의 문제점 ····· 160
사. 문제해결방안에 관한 논의 소개 ····· 162
3. 비밀유지명령제도 ····· 163
4. 구체적 실시태양의 명시의무 ····· 174
5. 사증(査証) 제도 ····· 176
Ⅲ. 일본 공정거래법상 증거수집 과정에서 비밀의 보호 ····· 180
1. 관련 규정 ····· 180
2. 제도의 개요 ····· 182

Ⅳ. 일본에서의 재판공개의 원칙과 예외 ····· 183
1. 일본 헌법과 재판소법의 규정 ····· 183
2. 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재판 ····· 184
3. 특허재판에서 당사자 심문의 공개정지 ····· 186
4. 정보공개 소송에서 in camera 심리의 가능 여부 ····· 188
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 188
제3절 독일 ····· 191
Ⅰ. 독일 민소법의 문서제출명령 제도 ····· 191
Ⅱ. 독일 행정법원법의 자료제출명령 절차에서 비밀의 보호 ····· 192
Ⅲ. 독일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절차에서 비밀의 보호 ····· 193
1. 개관 ····· 193
2. 자료제출명령과 영업비밀의 보호 ····· 193
3. 독일 특허법의 비밀보호 장치에 대한 평가 ····· 200
4. 뒤셀도르프 절차: 제소 전 증거수집 단계에서 비밀의 보호 ····· 201
Ⅳ.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상 비밀의 보호 ····· 205
Ⅴ.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상 in camera 심리절차 ····· 209
Ⅵ. 재판공개 원칙과 예외 ····· 211
1. 개관 ····· 211
2. 법원조직법에 따른 재판의 공개와 예외 ····· 212
3. 본안 증거조사 단계에서 in camera 심리 가능성 ····· 214
4. 소송기록에 포함된 비밀의 보호 여부 ····· 214

제4장 비밀 보호에 관한 개선 방안 ····· 215

제1절 비밀 보호 체계의 조망 ····· 217
제2절 증거수집 단계에서 비밀의 보호 ····· 218
Ⅰ. 문서제출명령의 확대 ····· 218
1. 개정의 필요성 ····· 218
2. 개정안의 제시 ····· 221
Ⅱ. 제출거부 사유의 심리 ····· 224
1. 개요 ····· 224
2. 제출거부 사유 판단의 엄격성 ····· 225
3. 사전 협의의 필요성 ····· 226
4. 문서제출명령 심리절차의 개선 ····· 227
5. in camera 심리절차 개선 방안 ····· 233
가. 신청권 인정 여부 ····· 233
나. 문서제출신청인 측의 제한적 참여 보장 ····· 234
다. 일방적 심증 형성의 문제 ····· 237
6. in camera 심리절차의 구체화 ····· 237
Ⅲ.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 ····· 244
Ⅳ.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도입 ····· 246

1. 필요성 ····· 246
2. 구체적 설계 및 운용 ····· 248
가. 열람제한 범위 지정 제도 도입 ····· 248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 249
Ⅴ. 소 제기 전 증거수집 단계에서 비밀의 보호 ····· 255
제3절 재판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심리 ····· 257
Ⅰ. 재판의 비공개 ····· 257
1. 현행법의 해석론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 257
2. 입법 제안 ····· 258
Ⅱ. 증거조사 단계에서 in camera 심리의 가능성 ····· 259
1. 논의의 정리 ····· 259
2. 검토 ····· 261
Ⅲ. 소송기록 중 비밀의 보호 ····· 264
1. 제3자의 열람·복사 제한 ····· 264
2. 당사자의 열람·복사 제한 여부 ····· 265
제4절 그 밖의 제언 ····· 268
Ⅰ. 소송지휘 사례의 공유 ····· 268
Ⅱ. 변호사에 대한 신뢰 강화 ····· 269
Ⅲ. 관련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 ····· 269

제5장 결론 ····· 271

141.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Methods in Selecting Cases to be Reviewed on the Merits in the Final Appeal

연구총서 2022-03

연구책임자 :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2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3
제2절 연구의 범위 ····· 5
제3절 연구의 방법 ····· 6
제4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 6

제2장 미국 ····· 7

제1절 미국 사법조직 개관 ····· 9
Ⅰ. 연방법원 ····· 9
1. 연방법원조직의 성립 ····· 9
2. 연방법원의 심급 ····· 11
가. 연방지방법원 ····· 11
나. 연방항소법원 ····· 12

다. 연방대법원 ····· 13
Ⅱ. 주 법원 ····· 15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 개관 ····· 16
Ⅰ.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 ····· 16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할 ····· 19
1. 심급관할의 측면 – 1심 관할과 상소심 관할 ····· 19
가. 1심 관할(original jurisdiction) ····· 20
나. 상소심 관할(appellate jurisdiction) ····· 20
2. 사물관할의 측면 – 위헌심사권(judicial review power) ····· 21

Ⅲ.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주요 관여자 ····· 24
1. 변호사 ····· 24
2.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 ····· 25
제3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27
Ⅰ. 상고허가(certiorari) 제도 ····· 27
Ⅱ. 상고허가(certiorari) 제도의 역사 ····· 28
1. 상고허가 제도의 시작 ····· 28
2. 상고허가 제도의 확장 ····· 29
Ⅲ. 상고허가(certiorari)의 실질적 기준 ····· 30
1. 들어가며 ····· 30
2. 미국 연방대법원 규칙상의 고려사항 ····· 32
3. 판례의 충돌 ····· 34
4. 사안의 중요성 ····· 36
5. 상고허가 사건들의 대체적 분야 ····· 38
6. 나오며 ····· 39
Ⅳ. 상고허가(certiorari)의 절차적 측면 ····· 39
1. 들어가며 ····· 39
2. 상고허가 신청서의 제출 ····· 39
3.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등 ····· 40
4. 사건의 배당 ····· 40
5. 상고허가 여부의 심리 ····· 41
가. 대법관 전원의 참여 ····· 41
나. certiorari pool 제도 ····· 42
다. discuss list 제도 ····· 44
라. amicus curiae 제도 ····· 45
마. 상고허가 여부 심리의 구체적 방식 ····· 47
6. 상고허가 여부의 결정 ····· 48
가. 상고불허가 결정 ····· 48
나. 상고허가 결정 ····· 49
7. 최근 5년간 상고허가 관련 통계 ····· 51

8. 상고허가 이후의 본안 심리절차 ····· 52
9. 나오며 ····· 54
제4절 결론 ····· 54

제3장 영국 ····· 57

제1절 서론 ····· 59
Ⅰ. 영국 사법체계 개관 ····· 59
1. 들어가며 ····· 59
2. 민사사건의 사법체계 ····· 60
가. 구역법원(County Court)와 고급법원(High Court) ····· 60
나.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64
다. 대법원(Supreme Court) ····· 65
3. 형사사건의 사법체계 ····· 65
가.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과 형사법원(Crown Court) ····· 65
나. 고급법원(High Court) ····· 67
다.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68
라. 대법원(Supreme Court) ····· 68
Ⅱ. 영국 대법원 개관 ····· 69
1. 영국 대법원의 출범 ····· 69
2. 영국 대법원의 구성 ····· 72
제2절 영국 대법원의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73
Ⅰ. 상고허가의 실질적 기준 ····· 73
Ⅱ. 상고허가의 절차적 측면 ····· 78
1. 들어가며 ····· 78
2. 상고허가 신청서의 제출 ····· 78
3.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서 제출 ····· 79
4. 참고인 의견서 제출 ····· 80
5. 상고허가 여부의 심리 ····· 80
6. 상고허가 여부의 판단 ····· 83
가. 상고불허가 결정 ····· 83
나. 상고허가 결정 ····· 84
Ⅲ. 최근 5년간 상고허가 관련 통계 ····· 85
Ⅳ. 상고허가 이후 본안심리 단계에서의 사건 선별기제 – 재판부 규모 확대 ···· 86
제3절 결론 ····· 89

제4장 독일 ····· 91

제1절 서론 ····· 93
Ⅰ. 독일 사법조직 개관 ····· 93

Ⅱ. 독일 연방일반법원 개관 ····· 94
1. 구성 ····· 94
2. 심리 방식 ····· 96
가. 민사의 경우 ····· 96
나. 형사의 경우 ····· 97
Ⅲ. 논의의 진행 ····· 99
제2절 독일 민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99
Ⅰ. 독일 민사재판의 심급구조와 항소의 특징 ····· 99
1. 심급구조 ····· 99
2. 항소의 특징 ····· 100
가. 항소제한 제도의 존재 ····· 100
나. 항소수리거부결정 제도의 존재 ····· 101
Ⅱ. 독일 민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102
1. 들어가며 ····· 102
2. 독일 민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의 핵심
– 상고허가 제도 ····· 103
가. 상고허가 제도 개관 ····· 103
나. 현행 상고허가 제도 도입 경위 ····· 105
다. 상고허가의 절차와 형식, 효과 ····· 106
라. 상고허가의 실질적 기준 ····· 111
마. 상고허가와 관련한 몇 가지 통계 ····· 116
3. 실질심리 사건 선별에 관한 추가 절차
- 독일 민사소송법 제552조, 제552조a ····· 121
가. 독일 민사소송법 제552조 ····· 121
나. 독일 민사소송법 제552조a ····· 121
제3절 독일 형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123
Ⅰ. 독일 형사재판의 심급구조와 항소의 특징 ····· 123
1. 심급구조 ····· 123
가. 구법원 ····· 123
나. 지방법원 ····· 123
다. 고등법원 ····· 123
라. 연방일반법원 ····· 124
마. 심급구조 요약 ····· 124
2. 경미사건·무죄사건 등에서의 항소수리거부결정 제도의 존재 ····· 124
Ⅱ. 독일 형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125
1. 들어가며 ····· 125
2. 독일 형사 상고심 진행절차 ····· 126
가. 상고의 제기 ····· 126
나. 상고이유서의 제출 ····· 126
다.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127

라. 상고법원으로의 기록송부 ····· 127
마.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른 구술변론 없는 심리, 재판 ····· 127
바. 구술변론에 의한 심리, 재판 ····· 128
3. 독일 형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으로서의
독일 형사소송법 제349조 ····· 128
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349조 개관과 연혁 ····· 128
나. 구체적 내용 ····· 129
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49조의 활용도 ····· 134
제4절 결론 ····· 135

제5장 일본 ····· 137

제1절 서론 ····· 139
Ⅰ. 일본 사법조직 개관 ····· 139
Ⅱ. 일본 최고재판소 구성 개관 ····· 139
Ⅲ. 논의의 진행 ····· 141
제2절 일본 민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142
Ⅰ. 일본 민사재판의 심급구조와 항소, 상고의 특징 ····· 142
1. 심급구조 ····· 142
2. 항소의 특징 ····· 143
3. 상고의 특징 ····· 143
Ⅱ. 일본 민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145
1. 들어가며 ····· 145
2. 상고수리신청 제도 ····· 145
가. 상고수리의 실질적 기준 ····· 145
나. 상고수리신청 제도의 절차적 측면 ····· 149
다. 상고수리신청과 관련한 몇 가지 통계와 시사점 ····· 153
3. 그 외의 실질심리 사건 선별 제도 ····· 157
가. 원심재판소 단계에서의 사건 선별
– 일본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157
나. 권리상고 사건에 있어서 상고각하결정, 상고기각결정 제도 ····· 160
제3절 일본 형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162
Ⅰ. 일본 형사재판의 심급구조와 항소, 상고의 특징 ····· 162
1. 심급구조 ····· 162
2. 항소의 특징 ····· 162
3. 상고의 특징 ····· 163
Ⅱ. 일본 형사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 ····· 165
1. 원심재판소에의 상고장, 사건수리신청서 제출 ····· 165
2. 원심재판소에의 사건수리신청이유서 제출 ····· 165
3. 원심재판소의 심사절차 ····· 165

4. 최고재판소로의 사건 송부 ····· 166
5. 권리상고 사건에 있어서 최고재판소에의 상고이유서 제출 ····· 166
6. 사건수리신청 사건에서 최고재판소의 수리여부 판단 ····· 166
가. 사건수리신청에 관한 규정 ····· 166
나. 사건수리의 사유 ····· 167
다. 사건수리결정과 그 효력 ····· 168
라. 사건불수리결정의 불요 ····· 168
마. 심리 및 사건의 종결 ····· 169
제4절 결론 ····· 169

제6장 그 밖의 나라들 ····· 171

제1절 서론 ····· 173
제2절 프랑스 ····· 173
Ⅰ. 프랑스 사법제도 개관 ····· 173
1. 사법제도의 이원성 ····· 173
2. 일반법원의 체계 ····· 175
Ⅱ. 파기원(Cour de cassation) 개관 ····· 175
1. 파기원이라는 명칭의 배경 ····· 175
2. 파기원의 특성과 한계 ····· 176
3. 파기원의 구성 ····· 178
4. 파기원 재판절차 개관 ····· 179
Ⅲ. 이유불기재 기각 제도 ····· 180
1. 이유불기재 기각 제도의 존재 ····· 180
2. 이유불기재 기각 제도의 내용과 절차, 한계 ····· 181
제3절 캐나다 ····· 183
Ⅰ. 캐나다 사법체계 일반 ····· 183
Ⅱ. 캐나다 대법원 개관 ····· 184
Ⅲ. 캐나다 대법원의 상고허가 제도 ····· 185
1. 상고허가 제도 개관 ····· 185
2. 상고허가의 절차 ····· 186
3. 상고허가의 실질적 기준 ····· 188
4. 상고허가의 통계적 측면 ····· 189
가. 상고허가 인용률 ····· 189
나. 처리기간 ····· 189
제4절 노르웨이 ····· 190
Ⅰ. 노르웨이 대법원 개관 ····· 190
Ⅱ. 노르웨이 대법원의 상고허가 제도 ····· 191
1. 상고허가 제도 개관 ····· 191
2. 상고허가의 절차적 측면 ····· 193

가. 서면심리 및 합의의 원칙 ····· 193
나. 정족수 ····· 194
다. 결정의 형식 등 ····· 194
3. 상고허가의 실질적 기준 ····· 195
가. 당해 사건을 뛰어넘는 중요성 ····· 195
나. 기타 다른 이유 ····· 196
4. 통계 ····· 197
제5절 덴마크 ····· 198
Ⅰ. 덴마크 대법원 개관 ····· 198
Ⅱ. 덴마크 대법원의 상고허가 제도 ····· 199
1. 상고허가 제도 개관 – '상소허가위원회'를 중심으로 ····· 199
2. 상고허가 여부 판단의 구체적 절차 ····· 201
3. 통계 ····· 202
제6절 호주 ····· 203
Ⅰ. 호주 사법체계 일반 ····· 203
Ⅱ. 호주 대법원 개관 ····· 204
Ⅲ. 호주 대법원의 상고허가 제도 ····· 206
1. 상고허가 제도 개관 ····· 206
2. 상고허가의 절차 ····· 206
3. 상고허가의 실질적 기준 ····· 207
4. 통계 ····· 208
가. 상고허가 여부 심리 방식 비율 ····· 208
나. 상고허가 인용률 ····· 208
다. 상고허가 여부 처리기간 ····· 208
제7절 스위스 ····· 209
Ⅰ. 스위스 사법시스템 개관 ····· 209
Ⅱ.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구성 ····· 212
Ⅲ.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상고제한 제도 ····· 213
Ⅳ.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재판 실무 ····· 214
1. 일반적 절차 ····· 214
2. 예외적 절차 – 공동 합의체 ····· 215
3. 통계 ····· 216
가. 접수사건의 수 ····· 216
나. 재판부 패널 규모 비율(2020년도) ····· 217
Ⅴ. 나가며 ····· 218

제7장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의 시사점 ····· 219

제1절 서론 ····· 221
제2절 우리나라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현황 ····· 222

Ⅰ. 대한민국 대법원 개관 ····· 222
Ⅱ. 상고심 재판절차와 실질심리 사건 선별 기제 ····· 223
1. 민사의 경우 ····· 223
가. 민사 본안 상고심 소송절차의 대체적 흐름 ····· 223
나. 실질심리 사건 선별 기제와 분석 ····· 226
2. 형사의 경우 ····· 227
가. 형사 본안 상고심 소송절차의 대체적 흐름 ····· 227
나. 실질심리 사건 선별 기제와 분석 ····· 228
제3절 몇 가지 시사점들 ····· 229
Ⅰ. 들어가며 ····· 229
Ⅱ. 절차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229
1. 결정의 방식에 의한 종국재판 확대 ····· 229
2.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도입 ····· 231
3. 상고이유서 기재 방식 정비 ····· 231
4. 미국 연방대법원의 discuss list 제도 등의 참고 ····· 233
5. 가칭 심리속행사유 소부의 신설 ····· 233
Ⅲ. 제도적·구조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235
1. 상고제한 제도의 도입 ····· 235
2. 하급심 구조의 점검 ····· 236
3. 대법원 규모 확대 ····· 237
제4절 결론 ····· 239

제8장 결론 ····· 241

142.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Ways of Improving the Deposit System and Deposit Procedures

연구총서 2022-04

연구책임자 : 박미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3월 4일 발행

제1장 시작하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제2장 공탁제도의 개요 및 개선방안 ····· 7

제1절 공탁제도의 개요 ····· 9
I. 공탁의 의의 ····· 9
II. 공탁의 역사와 법적성질 ····· 10
1. 공탁의 역사 ····· 10
2. 공탁의 법적 성질 ····· 10
III. 공탁의 종류 ····· 12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12
2. 그 외 분류 ····· 15
IV. 공탁금 관리 ····· 16
1. 관련 규정 검토 ····· 16
2. 공탁출연금제도 ····· 16

3. 공탁금의 국고귀속 ····· 18
제2절 주요국가의 공탁제도 ····· 20
I. 서설 ····· 20
II. 공탁제도의 역사와 특징 비교 ····· 21
1. 독일 ····· 21
2. 일본 ····· 23
3. 프랑스 ····· 25
4. 미국 ····· 25
III. 공탁의 종류 비교 ····· 26
1. 독일 ····· 26
2. 일본 ····· 29
3. 프랑스 ····· 31
4. 미국 ····· 33
IV. 공탁업무처리 주체(공탁소와 공탁관) 비교 ····· 35
1. 독일의 구법원 ····· 35
2. 일본의 법무성 ····· 37
3. 프랑스의 예금공탁공고 ····· 38
4. 미국의 법원 ····· 39
V. 공탁금 보관 주체 비교 ····· 39
1. 독일의 사법금고 ····· 39
2. 일본의 법무성 ····· 40
3. 프랑스의 예금공탁공고 ····· 41
4. 미국의 법원 ····· 42
VI. 공탁금 관리정책의 비교 ····· 43
1. 독일 ····· 43
2. 일본 ····· 44
3. 프랑스 ····· 45
4. 미국 ····· 46
VII. 시사점 ····· 46
1. 독일 ····· 47
2. 일본 ····· 48
3. 프랑스 ····· 48
4. 미국 ····· 49
제3절 공탁제도 일반의 개선방안 ····· 50
I. 국고귀속 공탁금의 감소를 위한 대책 ····· 50
1. 공탁금의 지급 증대 방안 ····· 50
2.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대상 사건의 확대 ····· 59
3.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연장 검토 ····· 60
4. 편의적 국고귀속 기간의 연장 ····· 61
5.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논의 ····· 62

II. 새로운 공탁제도의 검토 ····· 64
1. 미성년자의 수익 보호를 위한 공탁 ····· 64
2. 부동산공탁 ····· 65
3. 에스크로제도를 활용한 부동산거래 공탁 ····· 66
III. 공탁비용(수수료)과 공탁금 이자의 상계 ····· 68
1. 관련 규정의 검토 ····· 68
2. 공탁수수료와 이자 상계 방안 ····· 69

제3장 공탁절차와 실무상 개선방안 ····· 71

제1절 공탁절차의 개요 ····· 73
I. 공탁신청절차 ····· 73
1. 당사자의 신청 ····· 74
2. 공탁관의 심사 ····· 75
3. 공탁물의 납입 ····· 76
4. 그 외 절차 ····· 76
II. 공탁물 지급절차 ····· 77
1. 당사자의 지급청구 ····· 78
2. 공탁관의 심사 ····· 79
3. 공탁물의 지급 ····· 80
4. 그 외 절차 ····· 80
III.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82
1. 대상 ····· 82
2. 절차 ····· 82
3. 항고, 재항고 ····· 83
제2절 독일과 일본의 공탁절차 ····· 84
I. 독일 ····· 84
1. 법적근거 및 절차의 개관 ····· 84
2. 공탁신청절차 ····· 85
3. 공탁물 지급절차 ····· 86
4.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 ····· 87
II. 일본 ····· 89
1. 법적근거 및 절차의 개관 ····· 89
2. 공탁신청절차 ····· 91
3. 공탁물 지급절차 ····· 92
4.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 ····· 92
III. 소결 ····· 93
제3절 공탁절차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5
I. 공탁사건의 처리시간 규정의 필요성 ····· 95
1. 관련 규정의 검토 ····· 95

2. 문제점 ····· 95
3. 개선방안 ····· 96
II. 변제공탁금 출급 시 공탁통지서 제출 의무의 검토 ····· 99
1. 관련 규정의 검토 ····· 99
2. 공탁통지서의 발송에 대한 검토 ····· 100
3. 공탁통지서의 제출에 대한 검토 ····· 101
4. 제출 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 ····· 102
III. 국가(공탁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통지 방법 ····· 103
1. 집행법원에서의 국가에 대한 송달 ····· 103
2. 공탁관에 대한 통지 방안 ····· 104
IV. 소액공탁금에 대한 검토 ····· 105
1. 관련 규정 및 검토의 필요성 ····· 105
2. 소액공탁금의 상향 조정 ····· 106
V. 보정권고에 대한 지침 마련 ····· 108
1. 관련 규정 및 문제점의 검토 ····· 108
2. 보정권고의 기준 마련 ····· 109
VI. 담보·집행공탁의 관할 규정 ····· 110
1. 규정의 검토 ····· 110
2. 담보공탁과 집행공탁의 관할 ····· 111
3. 관할 규정의 필요성 ····· 111
4. 관할 규정 신설 방안 ····· 113
5. 담보·집행공탁사건의 편의 이송 ····· 114
VII. 원격지 공탁 ····· 114
1.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절차의 검토 ····· 114
2. 문제점 ····· 115
3. 개선방안 ····· 117
VIII. 집행공탁금 지급절차에 대한 검토 ····· 119
1. 관련 규정 ····· 119
2. 집행공탁금 지급 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9
3. 혼합공탁금의 출급방식 검토 ····· 122
4. 배당 공탁금의 계좌입금 ····· 123
IX. 공탁금 착오지급의 위험 방지 ····· 124
1. 배당·공탁금 등 착오지급 사례의 유형 ····· 124
2. 문제점의 검토 ····· 127
3. 개선방안 ····· 128
X. 공탁절차 관련 예규 등의 체계적 정리 ····· 132
1. 공탁 관련 예규의 현황 ····· 132
2. 관련 규정 검색의 어려움 ····· 134
3. 관련 예규의 통합과 재분류 ····· 135
4. 예규·선례의 통합·색인집의 발간 ····· 136

5. 법원 코트넷 종합법률정보의 활용 방안 ····· 136
XI. 장기적 개선방안 ····· 137
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처리방안 검토 ····· 137
2. 전자공탁절차의 활성화 ····· 141
제4절 형사공탁특례 관련 논의 ····· 143
I. 형사공탁특례의 의의 및 필요성 ····· 143
1. 의의 ····· 143
2. 필요성 ····· 144
II. 특례도입의 과정과 내용 ····· 145
1. 도입 및 수정 과정 ····· 145
2. 형사공탁특례의 내용 ····· 146
III. 업무절차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147
1. 공탁통지의 주체와 방법 ····· 147
2. 피해자 동일인 증명의 주체 ····· 149
3. 업무처리 시스템의 연계 ····· 150
4. 군사법원 사건의 적용 여부 ····· 151
5. 기타 ····· 151
IV. 앞으로 고려할 사항 ····· 152
1. 단기적 관점에서의 검토사항 ····· 152
2.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 158

제4장 공탁사유신고절차와 실무상 개선방안 ····· 163

제1절 공탁사유신고절차 ····· 165
I. 공탁사유신고 개요 ····· 165
1. 공탁사유신고의 개념과 필요성 ····· 165
2. 공탁사유신고의 성격과 효력 ····· 165
3. 공탁사유신고의 주체에 따른 유형 ····· 167
4. 공탁사유신고의 철회와 불수리결정 ····· 176
II. 공탁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 178
1. 채권배당절차 ····· 178
2. 채권배당절차의 특징 ····· 178
3. 채권배당절차의 개시 ····· 179
제2절 독일과 일본의 공탁사유신고절차 ····· 180
I. 독일 ····· 180
1. 공탁사유신고제도 ····· 180
2. 배당절차 ····· 182
II. 일본 ····· 183
1. 공탁사정신고(공탁사유신고) ····· 183
2. 공탁관에 의한 사정신고 ····· 185

3. 사정신고서(사유신고서)의 제출 방법 ····· 187
4. 재판소의 배당 ····· 190
III. 소결 ····· 192
제3절 공탁사유신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3
I. 공탁사유신고와 지급위탁 용어의 변경 ····· 193
1. 공탁사유신고 ····· 194
2. 지급위탁 ····· 196
II. 배당요구 종기의 변경 검토 ····· 197
1. 배당요구의 종기 ····· 197
2. 공탁 후 (가)압류의 문제점 ····· 198
3. 개선방안 ····· 200
III. 공탁사유신고와 배당재단의 통일 ····· 201
1. 배당재단 ····· 201
2. 배당재단이 보관금인 경우의 문제점 ····· 202
3. 배당재단의 통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확보 ····· 203
IV. 강제징수(변경 전: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 ····· 204
1. 강제징수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 ····· 204
2.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 204
3. 강제징수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경합 ····· 205
4. 강제징수압류와 가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공탁의 허용 여부 검토 ····· 206
V. 공탁사유신고 주체에 대한 검토 ····· 208
1. 명확한 주체 규정의 필요성 ····· 208
2.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의 문제점 ····· 209
3. 이해관계인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의 문제점 ····· 210
4.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 문제점 ····· 213
5. 개선방안 ····· 213
VI.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 관할의 일치 ····· 217
1. 관할의 검토 ····· 217
2. 문제점 ····· 218
3. 개선방안 ····· 219
VII. 가압류와 공탁사유신고 ····· 220
1. 가압류와 공탁 ····· 220
2. 공탁관의 가압류에 기한 사유신고 ····· 220
3. 개선방안 ····· 222
VIII. 불수리결정과 공탁금의 출급 ····· 223
1.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 223
2. 문제점의 검토 ····· 224
3. 개선방안 ····· 226
IX. 채권배당절차의 공탁유보 ····· 227
1. 공탁유보 ····· 227

2. 문제점 ····· 227
3. 별도의 공탁을 통한 배당재단의 분리 ····· 228
X. 단일채권압류 등의 공탁사유신고 ····· 229
1. 관련 규정의 검토 ····· 229
2. 문제점 ····· 230
3. 개선방안 ····· 230

제5장 마치며 ····· 233

143.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연구총서 2022-05

연구책임자 :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3월 14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5

제2장 문서감정인 자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7
제1절 들어가며 ····· 9
제2절 법원의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 11
Ⅰ. 문서감정인 선정·관리에 대한 규정의 연혁 ····· 11
Ⅱ. 문서감정인의 선정 절차 ····· 12
1. 감정인 선정의 원칙 ····· 12
2. 감정인 명단 등재 ····· 13
가. 명단 등재 자격 ····· 14
나. 명단 등재의 절차 ····· 15
(1) 범죄경력조회 ····· 16
(2) 각급 법원의 평가 및 등재 ····· 18

Ⅲ. 감정인 명단에서의 삭제 ····· 22
1. 감정인 명단 조정에 의한 삭제 ····· 22
2. 결격사유 발견 등에 의한 삭제 ····· 23
Ⅳ. 문서감정에 관한 특칙 ····· 24
1. 형사사건 감정인 선정의 특칙 ····· 24
2. 교육·연수 의무 ····· 25
3. 감정료 ····· 25
Ⅴ. 감정인의 평정 ····· 25
제3절 문서감정 관련 대법원 판례 ····· 27
Ⅰ. 감정과 증명력 ····· 27
Ⅱ. 문서감정의 증거가치 ····· 27
1. 문서감정결과의 증명력 ····· 27
2. 감정결과가 상이한 경우 ····· 29
3. 절차의 적절성과 증거능력 ····· 29
4. 형사사건에서의 증명력 평가 ····· 30
5. 민사사건에서의 증명력 평가 ····· 31
제4절 문서감정 관련 공·사 기관의 현황 ····· 34
Ⅰ. 국가기관연구소 ····· 34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34
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 37
3. 국세청 문서감정팀 ····· 39
4. 그 밖의 국가기관연구소 ····· 39
Ⅱ. 문서감정 관련 민간단체 ····· 39

제3장 외국의 문서감정인 자격관리 ····· 41

제1절 들어가며 ····· 43
제2절 영국 ····· 44
Ⅰ. 전문가 증언제도 ····· 44
Ⅱ. 민사법 개혁과 전문가 증거 ····· 45
Ⅲ. 필적 식별과 문서감정인 ····· 49
1. 필적감정 전문가의 필요성 ····· 49
2. 필적 비교 금지의 원칙 폐기 ····· 50
3. 필적감정 전문가의 등장 ····· 52
Ⅳ. 문서감정인의 자격관리 ····· 53
1. 필적학자와 포렌식 문서감정인 ····· 53
2. 문서감정인의 자격관리와 신뢰성 ····· 54
가. 법원의 태도 ····· 54
나. 법제위원회 보고서의 제안 ····· 55
3. 문서감정 전문가의 확보 방법 ····· 56

4. 공인법과학협회와 자격 인증 ····· 58
Ⅴ. 요약 및 평가 ····· 61
제3절 미국 ····· 62
Ⅰ. 문서감정과 문서감정인 ····· 62
1. 필적 식별, 필적학과 직업적 문서감정인의 등장 ····· 62
2. 필적 비교 방법의 개요 ····· 63
3. 감정 기술의 발전 ····· 64
4. 문서감정의 특징 ····· 65
Ⅱ. 문서감정의 증거가치에 대한 논란과 법원의 태도 ····· 66
1. 초기 법원의 태도와 입법 ····· 66
2. 허용성에 대한 논란과 Daubert 판결 등 ····· 68
3. 문서감정 전문가 증언의 허용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 70
가. *Starzecpyzel* 판결과 배심 설명 ····· 70
나. 하급심 판례의 세 가지 경향 ····· 72
(1) 긍정적인 입장 ····· 72
(2) 부정적인 입장 ····· 73
(3) 절충적인 입장 ····· 74
4.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의 개정 ····· 74
Ⅲ. 문서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 76
1. 전미연구위원회 보고서의 제안 ····· 76
2. 문서감정인의 숙련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 77
3. 절차적 측면의 쟁점 논의 ····· 78
가. 보고서의 변론 전 증거개시 ····· 78
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 ····· 78
4. 문서감정 기술의 표준화 ····· 79
5. 컴퓨터에 의한 문서감정 ····· 82
Ⅳ. 문서감정의 허용성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 사례 ····· 83
1. 특정 기술에 대한 허용성 판단 ····· 83
가. 필적학과 문서감정 ····· 83
나. 타자, 잉크 분석 등 ····· 84
다. 필적 식별 ····· 84
2. 확실성의 정도 ····· 85
3. 대조 필적의 허용 여부 ····· 86
4. 문서감정인의 자격과 전문가 증언의 허부 ····· 88
Ⅴ. 문서감정인의 자격관리 ····· 91
1. 문서감정 교육과 자격 ····· 91
2. 문서감정인 단체와 전문성의 개선 ····· 91
가. 직업단체 ····· 92
(1) 미국문서감정인협회(ASQDE) ····· 92
(2) 기타 단체 ····· 94

나. 인증단체 ····· 94
(1) 미국문서감정인위원회(ABFDE) ····· 94
(2) 문서감정인위원회(BFDE) ····· 96
3. 자격 있는 문서감정인의 확보 ····· 100
Ⅵ. 요약 및 평가 ····· 100
제4절 프랑스 ····· 102
Ⅰ. 프랑스 문서감정제도의 특징 및 기원 ····· 102
1. 법원감정인 제도 안에서의 문서감정인 ····· 102
2. 문서감정 전문가단체의 등장 ····· 103
Ⅱ. 법원감정인의 법적 지위 및 법원 명단 등록 절차 ····· 104
1. 법원감정인의 법적 지위 ····· 104
2. 법원감정인 명단등록 절차 및 관리 ····· 110
가. 명명법 ····· 110
나. 등록을 위한 일반요건 ····· 111
다. 법원 명단에의 등록 및 재등록 ····· 113
(1) 항소법원 명단에의 최초 등록 ····· 119
(2) 항소법원 명단에의 재등록 ····· 120
(3) 파기원 명단에의 등록 및 재등록 ····· 121
라. 법원감정인의 정보 공개 ····· 121
(1) 법원 명단을 통한 공개 ····· 121
(2) 감정인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127
Ⅲ. 법원감정인의 의무 및 관련 징계 절차 ····· 127
1. 법원감정인의 의무 ····· 130
2. 법원감정인에 대한 징계 ····· 131
Ⅳ. 문서감정인 양성·훈련 과정, 단체 및 실무 ····· 131
1. 양성·훈련과정 ····· 131
2. 프랑스 법원감정인협회 ····· 132
3. 문서감정 실무에 사용되는 설비 ····· 133
Ⅴ. 법원에서의 절차 ····· 134
1. 민사사건 ····· 134
2. 형사사건 ····· 143
Ⅵ. 요약 및 평가 ····· 150
제5절 독일 ····· 151
Ⅰ. 문서감정제도의 역사적 개관과 현황 ····· 151
1. 문서감정제도의 진퇴 ····· 151
2. 문서감정의 전문화와 개혁의 요구 ····· 151
3. 문서감정제도의 개선과 문제점 ····· 153
4. 20세기 후반 이후 독일 상황 ····· 154
Ⅱ. 법원 문서감정인의 교육 및 자격 ····· 154
1. 문서감정인 교육 ····· 154

가. 교육체계의 부존재 ····· 154
나. 두 가지 교육 가능성 ····· 155
다. 문서감정인 교육 내용 ····· 156
(1) 추가 교육 ····· 156
(2) 일반 교육 ····· 156
라. 공적 임명과 연수 ····· 157
(1) 상공회의소의 공적 임명 및 선서 제도 ····· 157
(2) 공적 감정인의 요건 ····· 158
(3) 감정인 세미나 등 연수와 행사 ····· 159
(4) 문서감정인을 위한 특별 전문연수 ····· 159
2. 판례상 문서감정인의 자격요건 ····· 160
Ⅲ. 문서감정인의 선정 및 관리 ····· 161
1. 문서감정인 선정 절차 및 기준 ····· 161
가. 민사재판에서 문서감정인의 선정 ····· 161
나. 문서감정인 선정 시 법원의 판단 재량 ····· 161
다. 불필요한 문서감정인 선정 기준 ····· 162
2. 문서감정인 명단 작성 및 관리 ····· 163
가. 감정인 명단 작성 관련 법규 ····· 163
(1) 바이에른주 구 감정인법 ····· 163
(2) 현행 규정 ····· 164
나. 법원의 감정인 명단 작성 및 공개 여부 ····· 165
(1) 감정인 명단의 작성 및 관리 ····· 165
(2) 감정인 명단의 대외 공개 여부 ····· 165
다. 독일 상공회의소의 감정인 데이터베이스 ····· 165
3. 문서감정인 선정의 중요성과 어려움 ····· 168
가. 감정인 선정의 중요성 ····· 168
나. 감정인 선정의 어려움 ····· 169
4. 문서감정인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 170
가. 감정인 자질관리 서클의 운영 ····· 170
(1) 서클의 목적과 구성 ····· 170
(2) 서클의 과제와 업무방식 ····· 171
(3) 서클의 활동 ····· 171
나. 감정결과에 대한 법관의 설문지 작성 ····· 172
(1) 설문 작성의 의의 ····· 172
(2) 설문 작성의 피드백 기능과 특성 ····· 173
(3) 설문지의 내용 ····· 174
Ⅳ. 관련 논의 ····· 176
1. 문서감정 방법 ····· 176
가. 물리학적 기술적 문서감정 방법 ····· 176
(1) 의의 및 특성 ····· 176
(2) 구체적 방식 ····· 176

나. 화학적 문서감정 방법 ····· 177
2. 문서감정의 증명력 평가 ····· 178
가. 문서 대조와 문서감정 ····· 178
나. 문서감정인의 감정 ····· 178
다.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 ····· 179
3. 문서감정 관련 양식 ····· 180
가. 문서감정신청서 ····· 180
나. 증거결정서 ····· 180
Ⅴ. 요약 및 평가 ····· 181
제6절 오스트리아 ····· 183
Ⅰ. 문서감정제도 일반론 ····· 183
1. 민사소송법상 문서감정 ····· 183
가. 문서의 진정성 또는 부진정성의 증명 ····· 183
나. 문서 대조의 방식 ····· 183
다. 감정인의 문서감정 ····· 184
라. 문서 대조 결과에 대한 판단 ····· 184
2. 문서감정인의 선정 ····· 184
가. 감정인 선정의 필요성 및 당사자의 심문 ····· 184
나. 감정인 선정과 임명 ····· 186
다. 감정인의 수 ····· 187
Ⅱ. 감정인법의 제정 및 시행 ····· 187
1. 감정인법의 의의 ····· 187
2. 독일과의 차이점 ····· 188
3. 감정인법의 주요 내용 ····· 188
Ⅲ. 감정인법의 구체적 내용 ····· 190
1. 감정인 명단 등록 및 요건 ····· 190
가. 명단등재를 위한 요건 ····· 190
나. 책임보험 가입·유지 및 증명 의무 ····· 191
2. 감정인 명단의 작성 ····· 191
가. 명단작성의 주체 ····· 191
나. 관할 ····· 191
(1) 사물관할 ····· 191
(2) 토지관할 ····· 192
다. 감정인 명단의 기재 내용 ····· 192
(1) 일반적인 기재 내용 ····· 192
(2) 기재 내용의 변경과 별도기재 ····· 193
(3) 비용 납부와 추가기재 ····· 193
(4) 기재 금지 사항 ····· 194
(5) 금지된 내용의 차단 ····· 194
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책임 ····· 195

(1)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195
(2)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정정 ····· 195
(3) 데이터베이스 오류에 대한 책임 및 배제 ····· 195
3. 감정인 명단 등재절차 ····· 195
가. 신청서의 제출 ····· 195
(1) 서면에 의한 등재신청 ····· 195
(2) 신청서 기재 사항 ····· 196
나. 증명서 및 첨부 서류의 제출 ····· 196
(1) 의무적 증명 ····· 196
(2) 법원장 요청에 의한 증명 ····· 197
(3) 법원감정인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이유서 ····· 197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고려 ····· 197
다. 법원감정인 자격심사위원회 ····· 198
(1) 구성 ····· 198
(2) 심사 방식 ····· 198
(3) 심사비용 ····· 198
라. 전문영역의 사후적 변경 및 승인범위의 심사 ····· 199
마. 지방법원장의 결정 ····· 199
바. 감정인의 선서 ····· 199
4. 감정인 명단 등재기간 및 재승인 ····· 200
가. 등재기간 및 재승인 신청 ····· 200
나. 재승인 신청서 및 연수증명서 ····· 201
다. 신청서 사본의 전달 ····· 201
라. 재승인 심사 및 결정 ····· 201
마. 다수의 전문영역에 대한 재승인 ····· 201
5. 감정인 명단의 공개 ····· 202
가. 인터넷 무료 공개 ····· 202
나. 삭제된 명단의 공개 ····· 202
다. 방문 열람 ····· 202
6. 신분증 카드 및 인장의 사용 ····· 202
가. 신분증 카드의 발급과 기재 사항 ····· 202
(1) 신분증 카드의 발급 ····· 202
(2) 신분증 카드 기재 사항 ····· 203
(3) 신분증 카드의 신규 발급 ····· 203
나. 발급비용 납부 및 카드 교부 ····· 203
다. 카드의 소지 및 제시 ····· 203
라. 인장의 사용 ····· 204
7. 감정인 자격의 휴지, 상실 및 박탈 ····· 204
가. 자격휴지 ····· 204
나. 자격상실 ····· 205
다. 자격박탈 ····· 205

라. 불복수단 ····· 206
8. 일반적으로 선서한 구법원감정인 명단 ····· 206
Ⅳ. 카르텔법상 감정인 명단의 특칙 ····· 207
Ⅴ. 오스트리아 법원감정인 명단 ····· 207
Ⅵ. 요약 및 평가 ····· 209
제7절 일본 ····· 210
Ⅰ. 일본의 감정제도 ····· 210
1. 건축·의료 사건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설치 ····· 210
2. 의료소송에서의 복수감정제도와 콘퍼런스 감정 ····· 215
Ⅱ. 감정인의 선임 ····· 216
Ⅲ. 일본의 문서감정 관련 논의와 판례 ····· 216
1. 형사사건에서 전통적 필적감정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 216
2. 민사사건의 필적감정에 관한 재판실무상 논의 ····· 219
3. 관련 민사사건 하급심 판례 ····· 220
4. 문서감정의 과학화·객관화 노력 ····· 221
Ⅳ. 문서감정인의 자격과 관련 단체 ····· 222
1. 일본법과학기술학회 ····· 223
2. 일본필적감정협회 ····· 223
3. 일본법문서감정연구회 ····· 224
4. 기타 단체 ····· 224
Ⅴ. 요약 및 평가 ····· 224
제8절 마치며 ····· 226

제4장 문서감정인 자격의 개선방안 ····· 229

제1절 들어가며 ····· 231
제2절 문서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 검증 ····· 234
Ⅰ.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위원회 설치 ····· 234
Ⅱ. 문서감정인 자격시험의 실시 여부 ····· 237
Ⅲ. 평정기준표의 개선 ····· 238
Ⅳ. 보유시설·장비 기준 ····· 240
Ⅴ. 감정인 명단 조정제도의 활성화 ····· 242
Ⅵ. 재판장의 감정인 평정 활성화 ····· 245
제3절 교육·연수의 실질화 ····· 249
Ⅰ. 법원행정처장에 의한 국가기관연구소 교육·연수 명령 ····· 249
Ⅱ. 교육·연수 등에 대한 지원 ····· 250
Ⅲ. 명단 선정 시 교육·연수 결과의 반영 ····· 251
제4절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 개선 ····· 252
Ⅰ.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 252
1.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253

2. 대법원규칙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254
Ⅱ. 기타 공·사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257
제5절 기타 ····· 258
Ⅰ. 감정인 명단 선정·관리에 대한 규율 수준의 격상 ····· 258
Ⅱ. 자격요건인 '연수'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규정 ····· 259
Ⅲ. 경력기간 요건의 문제 ····· 260
Ⅳ. 감정인 명단의 공개 ····· 261
Ⅴ. 감정인 자격과 업무수행에 대한 보호·지원 ····· 262
1. 명단 등재기간의 연장 ····· 262
2. 감정료 현실화 ····· 263
3. 소송절차 외 접촉 금지 및 제재 ····· 264
4. 감정인 후보자의 자격 사칭 금지 및 제재 ····· 265
Ⅵ.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추진 문제 ····· 266

제5장 결론 ····· 269

144.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Court Operations in the Era of a Pandemic: Responses and Challenges

연구총서 2022-06

연구책임자 : 이은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3월 1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시적 한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와 시적 한계 ····· 5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재판의 현황과 대응 ····· 9

제1절 사법과 재판 ····· 11
Ⅰ. 재판청구권과 사법권 ····· 11
Ⅱ. 재판의 이상과 심리절차의 원칙 ····· 11
제2절 코로나19 상황과 법원의 조치 ····· 12
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조치 ····· 12
Ⅱ.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 ····· 14
Ⅲ.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 현황 ····· 19
Ⅳ.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의 문제점 ····· 28
제3절 개별 재판부 등의 구체적·개별적 대응사례 ····· 30

Ⅰ. 민사소액재판부 운영 사례 소개 ····· 31
Ⅱ. 형사단독 재판부의 운영 사례 소개 ····· 35
Ⅲ. 파산·회생 재판부의 운영 사례 소개 ····· 39
Ⅳ. 가사재판 등 운영 사례 소개 ····· 46
Ⅴ. 경매법정 개선 사례 소개 ····· 48
제4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영상재판 ····· 50
Ⅰ. 코로나19 이전의 영상재판의 도입과 실시 ····· 50
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영상재판의 실시와 확대 ····· 53
제5절 특허심판원(행정심판기관)의 대응방안 ····· 57
Ⅰ. 코로나19 대응 심판사무 운영지침 ····· 57
Ⅱ. 원격 영상 구술심리 ····· 58
제6절 법원의 장기적·구체적 대응마련의 필요성 ····· 61

제3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외국 재판의 현황과 대응 ····· 63

제1절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현황 ····· 65
제2절 미국 ····· 67
Ⅰ.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조치 ····· 67
Ⅱ. 영상재판 관련 법률과 현황 ····· 80
Ⅲ. 미국 법원의 업무지속성계획 ····· 95
Ⅳ. 배심재판 대응방안 ····· 101
제3절 독일 ····· 110
Ⅰ.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조치 ····· 110
Ⅱ. 코로나19와 민사재판의 변화 ····· 118
Ⅲ. 코로나19와 형사재판의 변화 ····· 125
Ⅳ. 영상변론의 일반론 ····· 136
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법원 시설 ····· 150
제4절 일본 ····· 154
Ⅰ.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조치 ····· 154
Ⅱ. 코로나19 관련 법률 ····· 157
Ⅲ. 재판소의 대응과 현황 ····· 160
Ⅳ. 재판절차에서 음성인식시스템 구축 ····· 171
제5절 시사점 ····· 174

제4장 팬데믹 시대 지속적인 재판을 위한 법원의 과제 ····· 177

제1절 재난대응을 위한 장기적 업무지속성계획(COOP) 수립방안 ····· 179
Ⅰ. 업무지속성계획 수립 ····· 179
Ⅱ. 장기 COOP 계획 수립 필요성 및 고려사항 ····· 181

Ⅲ. 그 밖의 팬데믹 대응방안 검토 ····· 183
제2절 법정환경 개선방안 ····· 184
Ⅰ. 법정 개선방안 ····· 184
Ⅱ. 재판 중 음성언어 자동문자화시스템 마련방안 ····· 187
제3절 재택근무 확대방안 ····· 189
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필요성 증대와 미래 전망 ····· 189
Ⅱ. 특허청의 재택근무 사례 ····· 191
Ⅲ. 법원의 재택근무 ····· 197
제4절 영상재판 강화방안 ····· 201
Ⅰ. 영상재판 일반이론 ····· 202
Ⅱ. 코로나19 유행 이전 우리나라 영상재판의 도입과 경과 ····· 211
Ⅲ. 영상재판 관련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실시 ····· 217
Ⅳ. 영상재판의 구체적 구현방안 및 개선방안 ····· 221
제5절 국민참여재판 개선방안 ····· 234
Ⅰ. 상세한 진행 매뉴얼 수립 및 안정성 홍보 ····· 234
Ⅱ. 배심원 선정기일 및 진행 법정의 분산 ····· 235
Ⅲ. 증거기록 전자기록화 방안 ····· 236
Ⅳ. 배심원 평의 절차에서 검색 가능한 공판심리 속기록 등 제공 ····· 237
Ⅴ. 원격(영상)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 ····· 238
제6절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 확대방안 ····· 239
Ⅰ. 코로나19와 디지털 정보격차 심화 ····· 239
Ⅱ.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 악화 ····· 240
Ⅲ. 법원의 대응 방안 ····· 241

제5장 결론 ····· 245

145.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per Operation and Transcription of the Court Proceedings by Utilizing Courtroom Audio Recording

— Focusing on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Recording System —

연구총서 2022-07

연구책임자 : 이민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3월 22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Ⅰ.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 ····· 3
Ⅱ. 지각과 기억에 내재된 한계와 기술적 극복 ····· 5
Ⅲ. 법정기술과 재판절차에서의 정확한 기록 ·····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1
Ⅰ. 연구의 방법 ····· 11
Ⅱ. 연구의 내용 ····· 12

제2장 법정녹음 제도의 연혁과 현황 ····· 13

제1절 우리의 법정녹음 제도 개관 ····· 15
Ⅰ. 법정녹음 제도의 도입 ····· 15

Ⅱ. 조서에 의한 기록방식 ····· 16
Ⅲ. 법정녹음 제도의 본격 실시와 규정 정비 ····· 16
제2절 민사재판의 법정녹음에 관한 규정 ····· 18
Ⅰ. 녹음의 유형 ····· 18
1.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녹음 ····· 18
2. 법원사무관등의 참여를 갈음하는 녹음 ····· 18
3. 조서 작성 편의를 위한 녹음 ····· 18
Ⅱ.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녹음 ····· 19
1. 관련 법령 ····· 19
2. 녹음의 요건 및 절차 ····· 21
3. 녹음의 방식과 보관 ····· 24
4. 녹음물의 소송상 지위 및 열람·복사 ····· 24
5. 녹음물에 대한 활자 형태의 보완기록 ····· 25
Ⅲ. 법원사무관등의 참여를 갈음하는 녹음 ····· 31
1. 관련 법령 ····· 31
2. 녹음의 요건 및 절차 ····· 32
3. 녹음물의 처리 ····· 32
Ⅵ. 조서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 ····· 33
제3절 형사재판의 법정녹음에 관한 규정 ····· 34
Ⅰ. 개요 ····· 34
Ⅱ.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녹음 ····· 35
1. 관련 법령 ····· 35
2. 녹음의 요건 및 절차 ····· 36
3. 녹음의 방식과 보관 ····· 37
4. 녹음물의 소송상 지위 및 열람·복사 ····· 38
5. 녹음물의 폐기 ····· 38
6. 녹음물에 대한 활자 형태의 보완기록 ····· 39
Ⅲ.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 ····· 41
제4절 법정녹음 제도의 운영 실태 ····· 41
Ⅰ. 개요 ····· 41
Ⅱ. 법정녹음시스템의 구성 및 활용 ····· 42
1. 시스템 개요 ····· 42
2. 재판녹음 ····· 42
3. 녹음재생 ····· 44
4. 녹음파일 열람 및 편집 ····· 44
5. 녹음파일 열람제한 등 관리 ····· 44
Ⅲ. 법정녹음과 절차진행 ····· 45
1. 녹음 전 점검사항 ····· 45
2. 변론절차 진행시의 유의사항 ····· 45
Ⅵ. 조서작성 및 활자 보완기록 ····· 47

1. 기본조서 ····· 47
2. 증인신문조서 ····· 49
3. 활자 보완기록의 작성 방식 ····· 49
4. 기록의 구성 ····· 52

제3장 해외의 변론기록화 실무와 법정녹음 제도 ····· 53

제1절 재판의 기록 방식과 조서 작성 개관 ····· 55
제2절 미국 ····· 56
1. 서론 ····· 56
2. 관련 규정 ····· 57
3. 재판조서 작성에 관련된 법원 인력 ····· 60
4. 재판조서의 연혁 및 방식 ····· 63
5. 항소사건과 재판조서 ····· 72
제3절 영연방 ····· 74
Ⅰ. 영국 ····· 74
1. 관련 규정 ····· 74
2. 실무상 운영 현황 ····· 76
Ⅱ. 호주 ····· 77
1. 관련 규정 ····· 77
2. 실무상 운영 현황 ····· 78
Ⅲ. 뉴질랜드 ····· 80
1. 관련 규정 ····· 80
2. 실무상 운영 현황 ····· 80
제4절 유럽연합 ····· 82
Ⅰ. 독일 ····· 82
1. 민사재판 ····· 82
2. 형사재판 ····· 90
Ⅱ. 프랑스 ····· 97
1. 관련 규정 ····· 97
2. 서면심리 위주의 재판실무 ····· 98
3. 실무상 운영 현황 ····· 100
Ⅲ. 스페인 ····· 100
1. 관련 규정 ····· 100
2. 실무상 운영 현황 ····· 104
Ⅵ. 아일랜드 ····· 108
1. 법정녹음의 도입 ····· 108
2. 법정녹음의 현황 ····· 108
3. 녹음물 관리 및 사본 제공 ····· 109
4. 녹음물에 대한 조서 작성 ····· 109

5. 녹음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 110
제5절 아시아 ····· 110
Ⅰ. 일본 ····· 110
1. 관련 규정 ····· 110
2. 실무상 운영 현황 ····· 113
Ⅱ. 중국 ····· 115
Ⅲ. 싱가포르 ····· 116
1. 관련 규정 ····· 116
2. 디지털 기록시스템(DART) ····· 116
3. 지능형 텍스트변환시스템 ····· 117

제4장 법정녹음 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 ····· 119

제1절 법정녹음의 합리적 확대 방안 ····· 125
Ⅰ. 21대 국회 법률안 검토 ····· 125
1. 검토의 배경 ····· 125
2.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 126
3.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 129
Ⅱ.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3
1. 법정녹음 시행 직후 ····· 133
2. 21년도 추가 설문조사 ····· 137
Ⅲ. 법정녹음의 합리적 확대 범위 제언 ····· 142
1. 의무적 녹음대상 확대 범위 설정 ····· 142
2. 변론절차에서 의무적 녹음의 예외사유 설정 ····· 143
3. 의무적 녹음대상 확대에 따른 입법안 제안 ····· 146
제2절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변론절차와 조서작성 ····· 147
Ⅰ. 논의의 필요성 ····· 147
Ⅱ. 현행 조서작성 업무 개관 ····· 148
1. 실시간 조서작성 방식 ····· 148
2. 변론조서의 구체적 작성 방법 ····· 148
Ⅲ. 녹음물과 변론조서의 관계 정립 ····· 151
1.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 ····· 151
2. 조서대체 혹은 조서보완 ····· 152
3. 미국의 조서작성 실무 ····· 153
4. 조서보완 형태의 녹음물 인용 방식 도입안 ····· 155
Ⅵ. 법정녹음과 연계된 변론조서 작성방식의 개선방안 ····· 157
1. 녹음물과 조서의 연계 필요성 검토 ····· 157
2. 조서작성 방식 변화의 기본 방향 ····· 157
3. 실제 재판실무에서의 구현 형태 ····· 162
제3절 변화된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재판 운영 ····· 166

Ⅰ. 재판부 변경과 종전 변론결과 진술 ····· 166
1. 변론갱신의 의의 ····· 166
2. 변론갱신의 취지 및 실무상 처리방식 ····· 167
3. 변론갱신 절차의 실질화 필요성 ····· 167
4.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변론갱신 절차 ····· 168
Ⅱ. 조서에 대한 이의 및 정정 절차 개선방안 ····· 176
1. 제도의 현황 ····· 176
2. 조서에 대한 이의 및 정정 절차의 개선방안 ····· 177
제4절 법정녹음 확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녹음물 관리방안 ····· 180
Ⅰ.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 180
Ⅱ. 속기와 녹음의 관계 재설정 ····· 180
1. 현행 소송법 규정에서의 속기와 녹음의 관계 ····· 180
2. 재판실무에서 속기의 활용 현황 ····· 181
3. 속기록의 예비적 지위 설정 ····· 181
Ⅲ. 형사재판 녹음물의 소송상 지위 ····· 186
Ⅵ. 녹음물 열람·복사 문제 ····· 187
1. 관련 규정 ····· 187
2. 현행 녹음물 열람·복사 절차의 개선사항 ····· 190
3.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가능성 ····· 191
4. 녹음물 열람·복사에 관한 입법적 개선 제안 ····· 193
제5절 음성인식기술을 접목한 법정녹음의 혁신 ····· 195
Ⅰ. 검토의 배경 ····· 195
Ⅱ. 음성인식기술의 이해 ····· 197
1. 음성인식기술의 개요 ····· 197
2. 음성인식기술의 원리 ····· 197
3. 음성인식기술의 발전 추이 ····· 199
Ⅲ. 재판절차에서의 음성인식기술 활용 ····· 201
1. 법정녹음 음성인식 시범사업 성과 검토 ····· 201
2. 시범사업 이후의 음성인식기술의 발전 ····· 204
3. 음성인식기술 도입에 관한 법관 인식 조사 ····· 207
4. 음성인식기술의 도입과 재판환경 변화 ····· 207
Ⅵ. 녹음 연계 전자녹취서 도입 방안 ····· 208
1. 현행 녹취서 작성 업무의 개선사항 ····· 208
2. 녹음과 활자의 연계방안 ····· 208
3. 재판실무에서의 구현 형태 ····· 210

제5장 결론 ····· 213

146.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Challenges to Collective Labour Law in Korea

연구총서 2022-08

연구책임자 :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4월 1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보고서가 취하고 있는 전제 ····· 5
Ⅰ. 개념 사용에 관하여 ····· 5
Ⅱ. 해석론의 성격 ····· 6
Ⅲ. 서술방식에 관하여 ····· 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7

제2장 ILO와 국제노동법: 결사의 자유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 11

제1절 서설 ····· 13
제2절 ILO와 국제노동기준의 발전 및 이행 ····· 15
Ⅰ. ILO ····· 15
1. 설립배경 및 설립목적 ····· 15

가. 설립배경 ····· 15
나. 설립목적 및 지도원칙: ILO 헌장 ····· 17
2. 연혁 ····· 19
가. 1919년~1939년: ILO 초기운영 ····· 19
나. 1939년~1998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 ····· 21
(1)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채택 ····· 21
(2) UN 전문기구로 편입 및 발전, 노벨평화상 수상 등 ····· 23
다. 1998년~현재: 주요 선언 중심으로 ····· 25
(1)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 25
(2) 기타 주요 선언 ····· 30
라. 현황 ····· 31
3. 조직 및 구성원칙 ····· 32
가. 주요 기관 ····· 32
(1) 총회 ····· 33
(2) 이사회 ····· 34
(3) 사무국 ····· 35
나. 정부·근로자·사용자 3자주의 원칙 ····· 35
Ⅱ. 국제노동기준 ····· 37
1. 개념 및 종류 ····· 37
2. 8개 기본협약과 4개 거버넌스(우선)협약 ····· 39
3. 국제노동기준의 채택 및 효력 ····· 41
가. ILO 총회에서의 채택과정 ····· 41
나. 국제노동기준의 비준 및 수락 ····· 43
4.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 44
가. 최소기준 ····· 44
나. 보편성(유보의 불허용)과 유연성(유연성 조항 허용)의 조화 ····· 45
5.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 46
가. 국내적 활용 ····· 46
(1) 국내입법 및 정책수립의 기준 ····· 46
(2)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규범으로 활용 ····· 47
나. 국제적 활용 ····· 48
(1) 국제기구 ····· 48
(2) 자유무역협정(FTA) ····· 48
Ⅲ. 이행감독절차 및 기구 ····· 49
1. 의의 및 서설 ····· 49
2. 정기 감독절차 – 전문가위원회 및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 ····· 51
가. 국가의 보고의무 ····· 51
(1) 비준협약에 대한 보고의무 ····· 51
(2) 미비준협약 및 권고에 대한 보고의무 ····· 51
나. 국가보고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감독기구에 의한 심의 ····· 52
(1)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 52

(2) 이사회 선정 주제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일반조사 ····· 56
(3)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 59
3. 특별 감독절차
– 노사정 임시·특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 ····· 60
가. 헌장 제24조 진정제기: 노사정 임시·특별위원회 ····· 60
(1) 진정제기 ····· 60
(2) 노사정 임시·특별위원회 절차 ····· 61
나. 헌장 제26조 이의제기: 조사위원회 ····· 61
(1) 이사회: 이의제기 수리적격 판단 ····· 61
(2) 조사위원회 구성 ····· 62
(3) 조사위원회 절차의 사법적 성격 ····· 62
(4) 조사위원회 결론 및 권고의 효력, 후속절차 ····· 63
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 64
(1) 설립 및 구성, 임무 ····· 64
(2) 절차 ····· 70
(3) 이후 절차 및 함의 ····· 72
제3절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범: ILO를 중심으로 ····· 74
Ⅰ. ILO 헌장 및 선언 ····· 75
Ⅱ.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 ····· 76
1. 제1조: 비준국의 이행의무 ····· 76
2. 제2조: 자유로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노사의 권리 ····· 77
가. 협약의 적용범위 및
“차별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노사의 권리 ····· 77
나.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할 노사의 권리 ····· 82
다.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노사의 권리 ····· 84
3. 제3조: 자유로운 단체 운영 및 활동권 ····· 86
가. 적용범위의 확장: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 87
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할 단체의 권리 ····· 87
다.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할 단체의 권리 ····· 88
라. 운영을 조직할 단체의 권리 ····· 91
마. 자유롭게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체의 권리 ····· 94
바. 파업권 ····· 96
(1) 파업권의 인정 여부 ····· 96
(2) 파업의 목적 ····· 97
(3) 파업의 방법 ····· 99
(4) 파업의 요건 ····· 100
(5) 파업의 제한 및 금지 ····· 101
(6) 파업시 대체고용 등 ····· 106
(7) 파업기간 중 경찰 개입 ····· 107
(8) 파업기간 중 임금 공제 ····· 108
(9) 파업에 대한 책임 및 제재 ····· 108

4. 제4조: 단체의 해산 및 활동의 정지 ····· 110
5. 제5조: 노사단체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권리와 근로자 및 사용자의 국제단체에 가입할 권리 ····· 112
6. 제6조: 노사단체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에 대한 협약의 적용 ····· 113
7. 제7조: 단체의 법인격 취득 관련 ····· 113
8. 제8조: 노사 및 단체의 국내법 존중의무와 한계 ····· 114
9. 제9조: 협약 적용의 예외로서 군대 및 경찰 ····· 115
10. 제10조: 단체의 의미 ····· 116
11. 제11조: 단결권의 보호 ····· 117
Ⅲ.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117
1. 제1조: 반노조적 차별로부터 보호 ····· 118
가. 협약의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 118
나. 보호 대상 ····· 119
다. 차별형태 ····· 120
라. 노동조합단체의 임원 및 대표자 ····· 121
마.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필요성 ····· 122
바. 조합활동가의 원직복귀 ····· 123
2. 제2조: 개입행위에 대한 보호 ····· 124
3. 제3조: 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관 설립을 통한 단결권 보장 ····· 125
4. 제4조: 단체교섭 ····· 126
가. 단체교섭권 일반론 ····· 126
나. 단체교섭의 주체 ····· 127
다.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 128
라.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 원칙과 단체교섭의 촉진 ····· 130
마. 성실교섭원칙 ····· 130
바. 비조합원 근로자대표와의 단체교섭 ····· 130
사. 가장 대표적인 단체에 대한 승인 ····· 131
아. 교섭할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결정 ····· 131
자. 소수노동조합의 권리 ····· 132
차. 교섭수준 ····· 133
카. 하청에서의 단체교섭 ····· 134
타.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원칙에 대한 제한 ····· 134
파.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 136
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137
거.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의 관계 ····· 137
5. 제5조: 협약 적용범위의 예외로서 군대 및 경찰 ····· 137
6. 제6조: 협약 적용범위의 예외로서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 139
Ⅳ. 기타 문서 ····· 140
제4절 대한민국과 ILO, 결사의 자유 ····· 141
Ⅰ. ILO와 대한민국 ····· 141

1. 개관 ····· 141
2. 비준 협약 ····· 141
3. 국가보고 현황 ····· 144
Ⅱ.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의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결정례 ····· 144
1. 개관 ····· 144
2. 쟁점 및 위원회의 권고 요지 ····· 145

제3장 국내법원에서의 ILO 협약 적용 ····· 157

제1절 서설 ····· 159
제2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 효과 ····· 159
Ⅰ. 조약 비준의 법적 효과 ····· 160
1. 국제법 질서에서의 효과 ····· 161
2. 국내법 질서에서의 효과 ····· 163
Ⅱ. ILO 체제 내에서의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추가적 효과 ····· 167
1. ILO 헌장상 의무와 ILO 기본협약상 의무의 관계 ····· 167
2. 협약 비준국에 대한 ILO의 강화된 절차적 감독메커니즘의 적용 ····· 168
가. 협약 비준 전 ····· 169
(1) 정기 감독절차 ····· 169
(2) 특별 감독절차 ····· 169
(3) 한계 ····· 170
나. 협약 비준 후 ····· 171
(1) 정기 감독절차 ····· 171
(2) 특별 감독절차 ····· 172
(3) 소결 및 법원의 역할 ····· 173
Ⅲ. 통상조약과의 연계적 효과 ····· 176
1. 한국의 FTA 노동조항 현황 ····· 177
2. 한-EU FTA 제13장에 따른 전문가패널 보고서 내용 및 함의 ····· 183
가. 경위 ····· 183
나. 전문가패널 보고서 주요 내용
- 제13.4.3조 제1문 위반 판단 중심으로 - ····· 184
(1) 제13.4.3조 제1문 해석 ····· 185
(2) 제13.4.3조 제1문 위반 판단 ····· 187
다. 함의 ····· 188
제3절 국내법원에서의 ILO 협약의 적용 관련 제 문제 ····· 189
Ⅰ. ILO 협약의 적용 관련 판단단계별 쟁점 검토 ····· 190
1. ILO 협약의 국내적 효력 ····· 190
2. ILO 협약과 국내법 간 충돌의 해결 ····· 192
가. ILO 협약과 국내법 간 충돌의 인정 ····· 194
(1) 규범 간 충돌이 있다는 ILO 이행감독기구의 견해 존중 &

국제법존중주의적 해석으로 충돌 조정 ····· 197
(2) 규범 간 충돌이 있다는 ILO 이행감독기구의 견해 배척 &
국제법의 국내법 역합치해석을 통한 충돌 회피 ····· 198
나. ILO 협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점하는 규범적 지위 ····· 199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지위: “국내법”적 효력의 의미 ····· 199
(2) 소결 및 시사점 ····· 206
다. 국제법 존중주의적 해석에 의한 충돌 조정 ····· 207
(1) 규범적 근거: 헌법상 국제법 존중원칙 ····· 208
(2) 이론적 근거 ····· 210
(3) 사법관행 ····· 211
(4) 활용방안 ····· 212
라. ILO 협약과 국내법 충돌의 해결 ····· 213
(1) 신법 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충돌 해결 ····· 213
(2)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른 조약의 우선 적용 ····· 220
(3) 조약에 충돌하는 국내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 222
(4)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률의 우선 적용 & 입법적 해결 권고 ····· 224
3. ILO 협약의 해석 및 적용 ····· 225
가. ILO 이행감독기구의 견해 및 결정의 법적 효력 ····· 226
나. ILO 이행감독기구의 견해 및 결정의 규범적 가치 ····· 227
(1) 이행감독기구의 임무 및 권한의 특수성 ····· 227
(2) 이행감독기구의 해석의 유효성 ····· 228
(3) 이행감독기구의 견해와 ‘성실한 규범적 연계를 할 의무’ ····· 229
Ⅱ. 대법원 판례의 변경 절차(전원합의체 회부 필요성 여부) ····· 230

제4장 노동법의 쟁점과 법해석의 전망 ····· 235

제1절 개관 ····· 237
제2절 단결권 관련 쟁점 ····· 239
Ⅰ.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 239
1. 해고자,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 239
가. 비준 전 논의 ····· 239
(1) 종래의 법리 ····· 239
(2) 법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입장 ····· 241
(3) 조합원 자격에 관한 ILO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243
나. 입법의 경과 –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 245
다. 검토 ····· 247
(1) 대법원 판례의 의미 ····· 247
(2) ILO 기본협약과의 관계 ····· 248
(3)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제한 문제 ····· 249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 251
가. 문제점 ····· 251

나. 대법원의 입장 ····· 252
(1) 대법원의 종래 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는 것을 주저함 ····· 252
(2) 2018년 재능교육 사건 판결 이후 대법원의 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는 데 관대해짐 ····· 253
다. ILO의 입장 ····· 256
(1) 기본시각 ····· 256
(2)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권고 ····· 258
라. 검토 ····· 259
3.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 ····· 261
가. 가입 제한 범위 개관 ····· 261
나. ILO의 입장 ····· 262
다. 개정입법 ····· 268
라. 검토 ····· 271
(1) ILO 기준에의 접근과 한계 ····· 271
(2) 교정공무원과 근로감독관 문제 ····· 271
(3) 지휘·감독자 등 관리 및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단결권 ····· 273
(4) 판례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 274
4.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 ····· 274
가. 종전 규정과 문제의 개관 ····· 274
나.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 275
다. 유치원 교사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 277
라. 대학 교수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 279
마. 개정 입법 ····· 279
(1) 유치원 교사와 대학 교수의 노조 가입 자격 부여 ····· 279
(2)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자격 부여 ····· 280
바. 검토 ····· 280
5. 불법체류 이주근로자의 노동조합 문제 ····· 281
가. 사안의 개요 및 판결의 경과 ····· 281
나. ILO의 입장 ····· 283
다. 검토 ····· 284
6. 청원경찰의 단결권 문제 ····· 285
Ⅱ. 비종사자의 노조 임원 선출자격 배제 ····· 287
1. 종전 규정과 논의 ····· 287
2. 개정 입법의 내용 ····· 290
3. 검토 ····· 290
Ⅲ.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법외노조 통보 ····· 291
1. 종전 제도와 관련 논의 ····· 291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종래 입장 ····· 294
가. 설립신고제도에 관하여 ····· 294

나. 법외노조 통보제도에 관하여 ····· 295
3. 대법원의 변경된 입장: 법외노조통보 제도를 위법 무효로 판단 ····· 295
4. ILO의 입장 ····· 296
5. 공익위원안 ····· 300
6. 개정입법 ····· 300
7. 검토 ····· 301
Ⅳ. 노동조합에 대하여 모든 정치운동을 금하는 규정의 적절성 ····· 302
Ⅴ.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 302
1. 종전 제도와 논의 ····· 302
가. 제도의 변천과 판례의 변화 ····· 302
나. 판례의 입장 ····· 305
(1) 급여금지 규정 신설 전 ····· 305
(2) 급여금지 규정 시행 후 ····· 305
다. 노사의 입장 ····· 306
2. ILO의 입장 ····· 307
가. 총론 ····· 307
나. ILO의 관련 규정 및 권고 ····· 307
(1) 원칙: 노조에 대한 지배 목적의 재정지원을 간섭행위로 간주 ····· 307
(2) 자율협상에 따른 재정지원의 폭넓은 허용 ····· 308
(3)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권고 ····· 309
3. 공익위원안 ····· 312
4. 개정입법 ····· 312
5. 검토 ····· 316
가. 개정 입법에 대한 평가 ····· 316
나. 대법원 판례의 향방 ····· 317
Ⅵ. 행정관청의 노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보고 요구 ····· 318
1. 현행 제도와 문제점 ····· 318
2. ILO의 입장 ····· 318
3. 평가와 전망 ····· 319
Ⅶ.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 320
1. 문제점 ····· 320
2. ILO의 입장 ····· 324
3. 검토 ····· 326
제3절 단체교섭권 관련 쟁점 ····· 327
Ⅰ. 단체교섭사항 ····· 327
1. 문제점 ····· 327
2. ILO의 입장 ····· 329
3. 검토 ····· 332
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 332
1. 종래의 제도와 논의 ····· 332

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관 ····· 332
나. 문제점 ····· 333
(1) 사용자의 노조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음 ····· 333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 ····· 334
(3) 교섭단위 통합 근거의 부존재 ····· 334
다. 노동조합법의 보완장치와 한계 ····· 334
2. 노사의 입장 ····· 335
3. 공익위원안 ····· 335
4. ILO의 입장 ····· 336
가.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ILO의 일반원칙 ····· 336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및 개별교섭 제도 모두 인정 ····· 336
다. 대표노동조합의 선출 ····· 337
라. 소수노동조합의 권리 ····· 337
마.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 338
5. 개정 입법 ····· 339
가.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법 제29조의2) ····· 339
나.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 신설(법 제29조의3) ····· 341
6. 검토 ····· 342
Ⅲ.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 등 다양한 교섭방식 촉진 ····· 343
1. 문제점 ····· 343
2. ILO의 입장 ····· 344
3. 공익위원 권고 ····· 346
4. 개정입법: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신설 (법 제30조) ····· 346
5. 검토 ····· 346
Ⅳ.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 347
1. 현행 제도와 문제점 ····· 347
2. ILO의 입장 ····· 349
3. 검토 ····· 351
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352
1. 문제점 ····· 352
2. 해외 입법례 ····· 352
3. 공익위원안 ····· 353
4. ILO의 입장 ····· 353
5. 개정 입법의 내용 ····· 354
6. 검토 ····· 354
Ⅵ.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문제 ····· 355
1. 문제의 제기 ····· 355
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종래 논의(근로계약관계론) ·· 355
나. 최근의 논의(지배력설) ····· 356

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실무의 경향 ····· 357
(1) 대법원 판례의 입장 ····· 357
(2) 단체교섭해태 행위에 관한 실무 경향 ····· 357
라. 파생 문제: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와 형사처벌 여부 ····· 360
2. ILO의 입장 ····· 361
가. 관련 이의제기 사건들 ····· 361
나. ILO의 권고 ····· 361
3. 검토 ····· 363
Ⅶ. 공무원의 단체교섭사항 ····· 364
1. 문제점 ····· 364
2. ILO의 입장 ····· 367
3. 검토 ····· 368
제4절 단체행동권 관련 쟁점 ····· 370
Ⅰ. 단체행동권의 제한과 금지 ····· 370
1. 개별법에 의한 쟁의행위 제한·금지 규정 ····· 370
가. 문제점 ····· 370
나. ILO 기준 합치 여부 ····· 372
(1) 일반원칙 ····· 372
(2) 공무원 ····· 373
(3) 교원 ····· 375
(4) 방위산업체 종사자 ····· 376
(5) 특수경비원 ····· 376
(6) 선원 ····· 376
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직권중재 ····· 377
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경위 ····· 377
나. 현행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개관 ····· 377
다.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노동위원회의 결정 ····· 382
라. 문제점 ····· 382
마. ILO의 입장 ····· 383
(1)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과 요건 ····· 383
(2) 최소서비스 범위 결정의 요건 ····· 385
(3) 구체적 해당 서비스 ····· 385
(4) 필수서비스에 대한 파업시 대체고용 허용 ····· 387
바. 검토 ····· 387
(1)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노사의 참여 문제 ····· 387
(2) 독립된 기구에 의한 결정 문제 ····· 388
(3) 필수유지업무 지정 업종의 문제 ····· 389
(4) 파업권의 무력화 여부 ····· 391
Ⅱ. 복수노조 사업장의 쟁의행위 제한: 대표노동조합 주도 여부 ····· 392
1. 문제점 ····· 392
2. ILO의 입장 ····· 394

3. 검토 ····· 394
Ⅲ.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문제:
경제적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경영해고 대항 파업 등의 허용 여부 ····· 395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개념 ····· 395
2.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유형의 쟁의행위 ····· 397
가. 정치파업 ····· 397
나. 동정파업(연대파업) ····· 398
다.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 398
라. 권리분쟁 ····· 399
3. ILO의 입장 ····· 400
가.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ILO의 기본 입장:
단체교섭사항설에 대한 반대 ····· 400
나. ILO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쟁의행위 목적:
순수 정치파업 및 권리분쟁 파업 ····· 401
다. ILO가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쟁의행위 목적 ····· 402
라. 관련 결정 소개 ····· 403
4. 검토 ····· 406
가.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에 관하여 ····· 406
나. 정치파업의 정당성 여부 ····· 406
다. 동정파업과 총파업의 정당성 여부 ····· 406
Ⅳ. 쟁의행위 형태의 제한 ····· 407
1. 생산시설 점거(Work-in)의 금지 문제 ····· 407
가. 문제점 ····· 407
나. 대법원의 입장 ····· 408
다. 비판론 ····· 408
라. 공익위원안 ····· 409
마. 개정 입법 ····· 409
2.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의 금지 문제 ····· 410
3. 준법투쟁 ····· 410
가. 정의 ····· 410
나. 쟁의행위 판단의 기준 ····· 411
다. 판례의 흐름 ····· 411
라. 문제점 ····· 412
4. ILO의 입장 ····· 412
5. 검토 ····· 413
가. 직장점거 파업에 관하여 ····· 413
나. 비공인파업에 관하여 ····· 413
다. 준법투쟁에 관하여 ····· 413
Ⅴ. 긴급조정과 강제중재 제도 ····· 414
1.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414

2. ILO의 입장 ····· 415
가. ILO의 권고 ····· 415
나. 분석 ····· 415
(1) 긴급조정 결정권자의 문제 ····· 415
(2) 파업제한의 요건 문제 ····· 416
(3) 강제중재의 문제 ····· 417
3. 검토 ····· 418
Ⅵ. 평화적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책임 추궁 ····· 419
1. 문제점 ····· 419
가.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 419
나. 비판론 ····· 420
다. 변화: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421
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 ····· 422
2. ILO의 입장 ····· 425
가. 평화적 파업에 대한 ILO의 기본 입장 ····· 425
나.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ILO의 입장 ····· 427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장 ····· 429
3. 검토 ····· 430
가.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 ····· 430
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 ····· 432
Ⅶ.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 ····· 433
1. 문제점 ····· 433
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 433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 434
2. ILO의 입장 ····· 434
가. 일반적 입장 ····· 434
나. 우리나라에 대한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 관련 직접 권고 ····· 435
3. 검토 ····· 437

제5장 결론 ····· 439

147.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Restructuring of Judicial Mediation System in Korea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연구총서 2022-09

연구책임자 :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5월 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I. 배경 : 법원의 조정 관여에 대한 관점 변화 ····· 3
II. 법원의 조정 관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보완 필요성 ····· 6
III.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구조와 담당기관 및 그 개선 필요성 ····· 8
1. 조정 개시원인의 이원화 및 조정담당기관의 복잡성 ····· 8
2. 개선필요성 ····· 11
IV. 연구의 범위와 업무분담 및 보고서의 구성 ····· 12
1. 연구의 범위와 업무분담 ····· 12
2. 보고서의 구성 ····· 14
가. 제2장 ····· 14
나. 제3장 ····· 15
다. 제4장 ····· 16
라. 제5장 ····· 16

제2장 법원과 조정의 관계 ····· 19

제1절 개관 ····· 21
제2절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과 소송 ····· 22
I. 조정의 개념과 성질 ····· 22
1. 조정의 개념 ····· 22
가. 조정의 개념요소 ····· 23
나. 소송상 화해와의 구별 ····· 25
2. 조정의 성질 : 절차의 비밀보장 ····· 27
II. 소송의 개념 ····· 30
III.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 32
1.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수단의 발전 ····· 32
2. 다양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수단과 조정의 관계 ····· 34
가. 심판과 합의 방식을 양단으로 하는 분쟁해결 스펙트럼과 조정의 위치 ·· 34
나. 주요 분쟁해결절차와 조정의 비교 ····· 36
제3절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의 제도화와 법원조정 ····· 37
I.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제도화의 흐름 ····· 37
II.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의 분류와 법원조정 ····· 38
1. 분야별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의 제도화 ····· 38
2. 사법형 ADR을 대신하는 용어 사용 제안 : 법원조정 ····· 39
3. 혼합적 분쟁해결절차와 법원조정 ····· 42
가. 검토의 필요성 ····· 42
나. 법원부속형 중재 ····· 43
다. 조정-중재 ····· 44
라. 조기중립평가 ····· 44
마. 간이심리 ····· 45
바. 촉진형, 평가형, 변화형 조정 ····· 47
III. 법관 또는 법원의 조정 관여에 대한 찬반론 ····· 48
1. 반대하는 견해 ····· 49
2. 찬성하는 견해 ····· 50
제4절 우리 법원조정의 개요, 연원, 성질과 수소법원 조정 ····· 51
I. 우리 법원조정의 개요와 수소법원 조정 ····· 51
1. 조정사건의 개시 원인 ····· 51
2. 조정사건 담당기관 ····· 52
가. 신청사건과 회부사건에 공통된 조정기관 ····· 53
(1) 조정담당판사 ····· 53
(2) 상임 조정위원 ····· 54
(3) 조정위원회 ····· 54
(4) 상임 아닌 조정위원의 책임조정방식의 조정사무수행 ····· 55
나. 회부사건 특유의 조정기관 : 수소법원 ····· 56
II. 우리 법원조정의 연원과 수소법원 조정 ····· 57
1. 민사조정법 제정 이전 ····· 58

가. 구 차지차가조정법 – 수소법원 조정을 도입하지 아니함 ····· 58
(1) 입법연혁 및 계수 관계 ····· 60
(2) 내용 ····· 61
나. 구 소액사건심판법 – 수소법원 조정제도의 도입 ····· 63
(1) 개요 ····· 64
(2) 조정 개시원인 ····· 64
(3) 조정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 65
(4) 조정성립시 효과 ····· 66
2. 민사조정법 제정 이후 ····· 67
III. 우리 법원조정의 성격과 수소법원 조정 ····· 68
1. 전통적 논의 – 조정재판설과 조정합의설 대립의 무익성 ····· 68
가. 조정재판설 ····· 68
나. 조정합의설 ····· 68
다. 검토 ····· 69
2. 현행 법원조정과 소송상 화해의 성격 ····· 70
가. 재판과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 ····· 70
나. 수소법원 조정과 그 밖의 방식을 구별할 필요성 ····· 70
(1) 소송상 화해 및 수소법원 조정 외의 조정에 대하여 ····· 71
(2) 수소법원 조정에 대하여 ····· 73
3. 검토방향 ····· 74

제3장 각국의 법원조정 ····· 77

제1절 개관 : 미국과 독일 그리고 조정과 화해 ····· 79

제2절 미국 ····· 85
I. 소송의 일환인 법원 내 화해적 분쟁해결 절차 ····· 85
1. 미국의 1심 민사소송절차 ····· 85
2. 변론 전 회합의 화해절차로의 활용 ····· 86
II. 소송과 구별되는 법원 내 화해적 분쟁해결 – 법원부속형 ····· 89
1. 수소법원 판사와 화해절차 진행 법관의 구별 취지 ····· 89
2.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제도 운용 ····· 89
III. 소송과 구별되는 법원 외 화해적 분쟁해결 – 법원연계형 ····· 91
1. 연방법 : 미국 ADR 법 ····· 91
가. 제정 과정 ····· 94
나. 소송상 화해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의 구별 ····· 95
2. 주법 : 표준 조정법 ····· 96
가. 제정 과정 ····· 96
나. 수소법원 화해절차와 비밀보장 ····· 97
다. 표준 조정법의 도입 경과 ····· 99
IV.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ADR ····· 100
1. ADR 절차 ····· 100

가. 절차의 개요 ····· 100
나. ADR 절차의 개시 : ADR 멀티옵션 프로그램에 배당되는 방식 ····· 101
(1) 자동배당 및 그에 대한 면제 신청 ····· 101
(2) 합의, 신청, 직권에 의한 배당 ····· 101
다. ADR 절차의 종류 ····· 101
(1) 법원 ADR 절차 ····· 101
(2) 민간 ADR 절차 ····· 102
라. ADR 절차의 선택 ····· 102
(1) ADR 절차 선택을 위한 회의 ····· 102
(2) ADR 인증서의 작성 ····· 102
(3)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ADR 절차 선택 ····· 102
(4) 사건관리회합에서의 ADR 절차 선택 ····· 103
2. ADR의 보수와 비밀보장 ····· 103
3. ADR 담당 조직 구조 ····· 104
가. 행정조직 ····· 104
나. ADR 담당 부판사 ····· 105
다. 조정인 등 절차진행자 ····· 105
V.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ADR 및 소송상 화해 ····· 106
1. ADR과 소송상 화해의 구별 ····· 106
2. 화해회합 ····· 107
가. 화해절차의 개시 유형 ····· 107
나. MSC 담당 기관의 결정 ····· 108
(1) 법관이 담당하는 방식 ····· 109
(2) 비법관이 담당하는 방식 ····· 110
다. MSC에서의 법관의 역할 ····· 111
라. MSC의 집행 ····· 112
제3절 독일 ····· 119
I. 화해적 분쟁해결의 종류와 근거규정 ····· 119
1. 종류 ····· 119
2. 근거규정 및 절차의 개관 ····· 120
가. ZPO 제278조 ····· 121
나. ZPO 제278a조 ····· 123
II. 소송의 일환인 법원 내 화해적 분쟁해결 절차 - 소송상 화해 ····· 123
1. 화해적 해결을 고려할 법관의 일반적 의무 (ZPO 제278조 제1항) ····· 123
가. 시간적 한계 ····· 124
나. 대상 법원 ····· 124
2. 수소법원의 의무적 화해변론 (제278조 제2항 내지 제4항) ····· 125
가. 화해변론과 구술변론과의 구별 ····· 125
나. 예외 및 적용범위 ····· 126
다. 화해변론절차 ····· 126

(1) 수소법원에서의 절차 진행 ····· 126
(2) 화해변론기일의 지정 ····· 127
(3) 당사자 본인 출석 및 필수적 변호사대리 ····· 127
(4) 화해변론 중의 의사표시 및 소송행위 ····· 128
(5) 화해변론의 내용 ····· 129
(6) 화해변론절차의 공개 여부 ····· 130
(7) 법원의 재판 ····· 130
(8) 조서의 작성 ····· 130
3. 구술변론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송상 화해 - 소송상 화해권고결정 ····· 131
가. 소송상 화해의 유형과 화해권고결정 ····· 131
나. 소송상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불복방법 ····· 132
III. 소송과 구별되는 법원 내 화해적 분쟁해결 절차 - 화해담당판사 화해 ····· 132
1. 화해담당판사 조정의 의미 ····· 132
2. 화해담당판사의 법적 지위 ····· 133
3. 화해담당판사에 의한 화해절차 ····· 135
가. 수소법원의 회부결정 ····· 135
나. 화해담당판사의 지정 ····· 136
4. 화해변론절차의 공개 여부 ····· 136
5. 절차의 비밀유지 문제 ····· 137
6. 절차의 종결 ····· 138
7. 소송절차로의 복귀 ····· 138
8. 관련 통계 ····· 139
가. 구법원 ····· 139
나. 지방법원 ····· 144
(1) 제1심 ····· 144
(2) 항소심 ····· 147
다. 고등법원 ····· 152
IV. 조정 등 재판 외의 화해적 분쟁해결 절차 - 민간형 조정 ····· 156
1. ZPO의 근거 규정 ····· 156
가. 의의 ····· 156
나. 규정의 내용 ····· 157
2. 독일 조정법 ····· 158
가. 독일 조정법 규정 ····· 159
나. 독일 조정법의 목적 ····· 162
다. 적용범위 ····· 162
라. 조정비용의 부담 ····· 162
마. 조정의 성립 ····· 163
3. 조정전치와 재판받을 권리 침해 문제 ····· 164
제4절 영국 ····· 166
I. 영국 법원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의 개요 ····· 166

1. 영국의 사법체계 ····· 166
2. 영국 민사소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이 적용되는 국면 ····· 168
II. CPR, 실무지침, 소송 전 규약상 ADR 관련 규정 ····· 171
1. CPR 규정 ····· 171
2. 소송 전 규약 ····· 172
III. 법원이 직접 ADR 절차를 채택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 – 법원부속형 ··· 175
1. 고급법원 : 건설기술부 화해회합 및 조기중립평가 ····· 176
가. 조기중립평가 ····· 176
나. 법원 화해절차 ····· 176
2. 가사사건 : 재산분할사건의 분쟁해결 ····· 177
3. 지방법원 : 소액사건 조정 서비스 ····· 178
IV. 법원에 연계된 독립된 조정인에 의한 조정 방식 – 법원연계형 ····· 179
1. 지방법원 법원연계형 조정의 통합 ····· 180
2. 항소법원의 법원연계형 조정 ····· 181
V. 법원과 연계되지 않은 ADR 절차를 권유하는 방식 – 민간형 조정 ····· 182
VI. 조정 촉진을 위한 소송비용부담 결정 ····· 183
1.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CPR 규정 ····· 184
2. 영국 항소법원 판결의 법리 : Halsey principle ····· 184
3. Halsey 판결에 대한 평가 ····· 187

제4장 우리나라 법원조정의 구조와 현황 ····· 189

제1절 개관 ····· 191

제2절 현행 조정위원 제도 ····· 192
I. 조정위원 제도에 관한 민사조정법상 연혁적 검토 ····· 192
1. 제정 민사조정법 ····· 192
2. 2009년 제7차 개정 이전의 변화 ····· 194
가. 조정위원 위촉 근거규정 신설 (1992. 11. 30. 제2차 개정) ····· 194
나. 조정위원 위촉권자의 확대 및 임기규정 신설 (1995. 12. 6. 제3차 개정) ····· 195
다. 조정위원 임기 다양화 (2001. 1. 29. 제5차 개정) ····· 196
3. 2009년 제7차 개정으로 상임 조정위원 도입 ····· 196
가. 상임 조정위원 도입 (2009. 2. 6. 제7차 개정) ····· 196
나. 상임 조정위원 자격요건 완화 ····· 198
II. 현행 조정위원의 유형 ····· 199
1. 상임 조정위원 ····· 200
가. 신분 ····· 200
나. 위촉권자 및 위촉자격요건 ····· 201
다. 임기와 보수 ····· 202
라. 상근의무와 근무장소 ····· 203
마. 조정센터 설립을 통한 근무 지원 ····· 205

2. 상근 조정위원 ····· 210
가. 개요 ····· 210
나. 제도의 취지 ····· 211
다. 업무의 처리 방식 ····· 211
3. 조정전담변호사 ····· 212
가. 개요 ····· 212
나. 제도의 취지 ····· 215
다. 업무의 처리 방식 ····· 216
라. 조정전담변호사 업무의 확장 논의 ····· 216
4. 소액전담 조정위원 ····· 225
가. 개요 ····· 225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사건 조정 업무처리방식 ····· 226
5. 각 조정위원 제도에 대한 평가 ····· 227
제3절 현행 조정행정기구 ····· 232
I. 조정담당판사 ····· 233
1. 조정담당판사 업무의 전담화 ····· 233
2. 조정행정업무의 주요 내용 ····· 234
II. 조정센터 ····· 236
1. 조정센터의 설치 및 성격 ····· 237
2. 조정센터의 운영·관리 ····· 238
3. 조정센터 설치 법원 ····· 239
III. 조정총괄부 ····· 240
1. 설치 배경과 직무수행 근거 ····· 240
가. 설치배경 ····· 240
나. 직무수행 근거 ····· 242
(1)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242
(2) 조정총괄부 설치 법원의 내규 ····· 243
2. 조정총괄부 업무내용과 구성 ····· 244
가. 전체적인 업무내용 ····· 244
(1) 사건 처리 ····· 244
(2) 행정·기획 업무 ····· 245
나. 출범 당시 법원별 조정총괄부의 구성 ····· 246
(1)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 246
(2)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 247
(3)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 247
3. 2021년 각 법원의 조정총괄부 구성 ····· 248
제4절 법원조정 사건 관련 통계의 추이 ····· 249
I.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소송 및 조정 사건의 접수 및 추이 ····· 249
1.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접수 추이 ····· 249
2. 제1심 민사본안사건 종결 내역 ····· 250

가. 소액사건 ····· 250
나. 단독사건 ····· 252
다. 합의사건 ····· 253
라. 전체사건 ····· 255
3. 제1심 민사조정 신청 및 회부, 조정 성공률 추이 ····· 256
가. 2007~2014년에 관한 기존 분석자료 ····· 256
나. 제1심 민사본안사건 대비 민사조정사건(신청 및 회부)의 접수 추이 · 258
II.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조정의 사건처리 현황 ····· 260

제5장 조정구조 개선안 ····· 265

제1절 개관 ····· 267
I. 구조개선의 방향과 대상의 특정 ····· 267
1. 자율적 분쟁해결로서의 법원조정 ····· 267
2. 효율적 분쟁해결로서의 법원조정 ····· 267
II. 민간형 조정의 법원조정 대체 주장에 대한 검토 ····· 268
1. 민간형 조정의 법원조정 대체론 ····· 269
2. 평가 ····· 270
가. 민간 조정기관의 예산 및 조정인의 보수 부담 문제 ····· 270
나. 법원조정 폐지·축소와 민간조정 활성화 사이의 관계 ····· 271
다. 조정의 효력 및 비변호사 조정인 활동 등에 관한 법적 규율 문제 ···· 272
라. 수소법원의 직권 조정회부의 허용성 ····· 273
III. 행정형 조정의 효력에 대한 제한 문제 ····· 273
제2절 수소법원 조정과 소송상 화해의 단일화 ····· 278
I. 조정과 소송의 원칙적 준별과 예외 ····· 278
1. 원칙적 준별 ····· 278
2. 수소법원의 예외적 조정관여의 적정성 ····· 279
II. 수소법원 조정의 특수성에 관한 기존 논의와 재검토 필요성 ····· 281
1. 심판적 절차로 운용하자는 견해 ····· 281
2. 2002년 민사소송법 전면개정시 대법원의 폐지 검토안 ····· 282
3.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견해 ····· 283
4. 수소법원 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284
III. 법원조정과 소송상 화해의 공통점 ····· 285
1. 방식 및 절차상 공통점 ····· 285
가. 관련 규정 ····· 285
나. 비교 ····· 287
(1) 시기 및 방법 – 원칙적 출석의무 ····· 287
(2) 요건 심사 ····· 288
(3) 조서작성 방식 ····· 289
(4) 사건번호 부여 방식 ····· 289
2. 효과상의 공통점 ····· 290

가. 관련 규정 ····· 290
나. 비교 ····· 291
(1) 소송상 화해와 법원조정의 효력발생 및 성립 요건 ····· 291
(2) 소송상 화해 및 법원조정 조서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291
3.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유사성 ····· 293
IV. 법원조정과 소송상 화해의 차이점 ····· 296
1. 관련 규정 ····· 296
2. 비교 ····· 298
가. 절차의 탄력성 ····· 298
나.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 및 종료 방식 ····· 299
다. 조정절차 내용의 소송절차 원용 금지 및 절차의 공개 문제 ····· 300
(1) 소송절차에서의 원용 금지 ····· 300
(2) 절차의 공개 여부 ····· 301
V. 수소법원 조정과 소송상 화해의 발전적 단일화 방안 ····· 302
1. 기본방향 : 소송과 조정 주재자의 준별 ····· 302
2. 소송상 화해와 수소법원 조정의 일원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 ····· 303
가. 소송상 화해와 수소법원 조정의 비교 요약 ····· 303
나. 수소법원 조정을 소송상 화해로 발전적 통일 ····· 305
(1) 개요 – 전국 조정담당판사 대상 설문조사 ····· 305
(2) 구체적 논거 – 인터뷰 ····· 307
(3) 구체적 방안 – 법률 개정안 제안 ····· 309
다. 보론 : 소송종료와 관련된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 312
제3절 조정기구 개편에 관한 종래의 논의 ····· 313
I. 조정센터 설립 전 논의 ····· 313
1.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의 (민사)중재원 등 도입 방안 ····· 313
가. 중재원 설치안 ····· 314
나. 사단법인 민사중재원 설치안 ····· 315
다. 특정분야 전담 중재원 설치안 ····· 315
2. 평가 ····· 316
II. 조정센터 설립 ····· 317
1. 조정센터 설립 시 국회논의 ····· 317
가. 법원의 재판기관으로서의 본질과의 관계 ····· 317
나. 조정의 독자성과의 관계 ····· 318
2. 평가 ····· 320
III. 조정센터에 관한 종전 민사조정법 개정안 ····· 321
1. 제18대 국회 발의 개정안 ····· 321
2. 제20대 국회 개정안 ····· 322
가. 심사경과 ····· 322
나. 심사경과에 대한 평가 ····· 327
제4절 조정사무 수행을 위한 법원 기구의 구성 ····· 331

I. 조정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필요성 ····· 331
1. 재판과 조정 사이의 기능적 구별과 법원의 조정기능 수행 ····· 331
2. 법원의 조정기능 행사에 대한 법률상 근거규정 부존재 ····· 332
3. 법원의 조정기능 행사에 대한 법률상 근거규정 필요성 ····· 333
II. 조정기능 수행 담당 기관 신설 필요성 ····· 335
1. 전통적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 담당기관으로서의 법원 ····· 335
2. 조정 및 조정행정사무의 독자성 ····· 336
3. 기존의 조정센터와 향후 조정기구 설계의 실제 ····· 338
III. 조정에 관한 근거규정과 기구구성의 모델 제안 ····· 340
1. 사단법인 형태의 민사중재원 설치안 ····· 340
2. 조정법원 내지 중재원(독립 조정센터) 설치안 ····· 341
가. 조정법원 설치안 ····· 342
(1) 법원조직법 개정안 ····· 342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 346
(3) 민사조정법 개정안 ····· 346
(4) 조정위원규칙 개정안 ····· 348
나. 조정센터 독립 설치안 ····· 349
(1) 개요 ····· 349
(2) 법원조직법 개정안 : 조정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근거 ····· 350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 353
(4) 민사조정법 개정안 ····· 355
(5) 조정위원규칙 개정안 ····· 357
3. 조정총괄센터와 조정센터의 각급 법원 부속설치 방안 ····· 358
가. 개관 ····· 358
나. 1안의 경우 ····· 361
(1) 법원조직법 개정안 : 조정총괄센터와 조정센터의 설치 및 권한 근거 등 ····· 361
(2) 민사조정법 개정안 ····· 363
(3) 조정위원규칙 개정안 ····· 365
다. 2안의 경우 ····· 365
(1) 법원조직법 개정안 : 조정총괄센터의 설치 및 권한 근거 등 ····· 366
(2) 민사조정법 개정안 : 개별 조정센터의 설치 및 권한 근거 ····· 367
(3) 조정위원규칙 개정안 ····· 369
IV. 조정총괄센터의 기능과 업무 제안 ····· 370
1. 기능과 업무의 범위 ····· 370
2. 업무의 구체적 내용 ····· 370
3. 온라인 법원조정 운영과 인공지능의 활용 ····· 373
가.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 분쟁해결 ····· 373
나. 우리 법원의 전자소송의 도입과 전망 ····· 374
다. AI의 재판상 활용의 한계와 ADR에의 활용가능성 ····· 375
(1) AI의 재판상 활용의 한계 ····· 375

(2) AI의 ADR에 대한 적용 ····· 376
라. 조정총괄센터를 통한 ODR 운용의 필요성 ····· 379
마. 조정총괄센터의 ODR 개념도 ····· 380

제6장 결론 ····· 381

I. 보고서 요약 ····· 383
II. 더블도어 코트하우스 방식 법원조정구조 도입 ····· 391
1. 도입 필요성 ····· 391
2. 효율적 분쟁해결의 제공 ····· 392
3. 다양한 분쟁해결 경로의 제공 ····· 393

148.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10 Years of Civil Electronic Litigation: Achievements and Prospects

- Focusing on Civil Lawsuits -

연구총서 2022-10

연구책임자 : 전휴재(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5월 20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7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8

제2장 민사전자소송의 연혁 ····· 9

제1절 들어가며 ····· 11
제2절 민사전자소송 시행 이전 사법 정보화의 발전 ····· 11
Ⅰ. 사법 업무의 전자화 ····· 11
Ⅱ. 판례 검색·작성프로그램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14
Ⅲ. 등기 전산화 ····· 15
Ⅳ. 제증명 발급의 전산화 ····· 17

Ⅴ. 결어 ····· 18
제3절 민사전자소송의 준비와 시행 ····· 19
Ⅰ. 민사전자소송의 태동 ····· 19
Ⅱ. 민사전자소송의 입법 과정 ····· 20
1. 2004~2005년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도 ····· 20
2.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3
Ⅲ. 특허전자소송의 개시 ····· 25
Ⅳ. 민사본안 전자소송의 시행 ····· 26
제4절 민사본안 전자소송 시행 이후의 전개 ····· 28

제3장 민사전자소송의 현황 ····· 31

제1절 통계의 추이 ····· 33
Ⅰ. 민사본안 전자소송 사건 ····· 33
Ⅱ. 전자소송 쌍방동의 ····· 34
Ⅲ. 결어 ····· 35
제2절 국제적 평가 ····· 36
제3절 국내의 현황 ····· 37
Ⅰ. 외부 이용자 – 당사자와 대리인 – ····· 38
1. 업무의 변화 ····· 39
2. 전자소송에 대한 만족도 ····· 39
3. 법원의 대응 ····· 40
Ⅱ. 내부 이용자 ····· 41
1. 법관의 업무 변화 ····· 41
가. 소송기록 관리 및 열람의 편의성 증대 ····· 41
나.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41
다. 재택근무 환경의 조성(smart work) ····· 42
라.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화 ····· 42
2. 참여관과 실무관의 업무 변화 ····· 43
가. 접수 업무 ····· 43
나. 송달 업무 ····· 44
다.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 44
라. 기록 검토 ····· 46
마. 기일 진행 및 조서 작성 ····· 46
바. 기록 보존 ····· 47

제4장 주요 국가의 전자소송 현황 ····· 49

제1절 들어가며 ····· 51

제2절 미국 ····· 53
Ⅰ. 미국 민사재판의 특징 ····· 53
1.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이중 구조 ····· 53
2. 법원 규칙(local rule) ····· 53
3. 재판과 기록의 공개 ····· 53
Ⅱ. 연방법원의 전자소송 ····· 54
1. 개요 ····· 54
2.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전자소송 ····· 54
가. 연혁 ····· 54
나. 기본적 내용 ····· 55
다. NextGen의 특징 ····· 59
라. '나홀로소송'에 대한 대응 ····· 59
3. 연방대법원의 전자소송 ····· 60
4. 전자법정 ····· 60
가. 미국 민사소송의 특수성 ····· 60
나. Pre-Trial ····· 60
다. Trial ····· 61
라. 전자법정의 공개 ····· 61
5.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 62
Ⅲ. 주법원의 전자소송 ····· 62
1. 개요 ····· 62
2. 전자적 제출 ····· 63
가. 개요 ····· 63
나. 이용자 ····· 64
다. 절차의 개시와 송달 ····· 65
라. 기록의 공개와 민감 정보의 취급 ····· 65
3. 비디오회의 및 전화회의의 이용 ····· 66
Ⅳ. 결어 ····· 67
1. 전자적 제출(전자파일링)의 정착 ····· 67
2. 전자법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 67
3. 검토 ····· 68
제3절 싱가포르 ····· 68
Ⅰ.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 68
Ⅱ. EFS(Electronic Filing System) ····· 69
1. 도입 배경 ····· 69
2. 근거 법령 ····· 70
3. 추진 단계 ····· 70
4. EFS의 기능과 특징 ····· 71
가. 기능 ····· 71
나. 특징 ····· 71

5. EFS에 대한 평가 ····· 73
Ⅲ. eLitigation ····· 73
1. 추진배경 ····· 73
2. 주요 내용 ····· 74
가. 제공되는 정보의 개선 ····· 74
나. 전체적인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 75
다. 사건관리시스템의 재정비 ····· 75
라.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 76
Ⅳ. 향후 과제 ····· 76
1. 추진 중인 과제 ····· 76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장기 프로젝트 ····· 76
가. 가상보조원(Virtual Assistant) ····· 77
나.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 77
다. 모의실험 결과(Outcome Simulator) ····· 77
라. 온라인 화해(E-Settlement) ····· 77
마. 인공지능에 의한 판결지원 ····· 78
제4절 독일 ····· 78
Ⅰ. 전자소송의 개요 ····· 78
1. 재판문서의 전자화 ····· 78
가. 재판문서의 전자적 송수신 ····· 78
나. 전자기록 ····· 81
2. 원격영상재판의 이용 ····· 82
Ⅱ. 진행 상황 ····· 82
1. 재판문서의 전자화 ····· 82
가. 법원에 대한 전자문서의 제출 ····· 82
나. 법원으로부터 전자문서의 수령 ····· 83
다. 전자문서의 송수신 ····· 84
라. 집행절차와의 연결 ····· 86
2. 소송기록의 전자화 ····· 87
가. 전자화의 기한 ····· 87
나. 전자화 현황 ····· 88
다. 전자화의 장단점 ····· 92
라. 관리시스템의 개발 ····· 93
마. 소송기록의 열람 ····· 93
3. 원격영상재판의 이용 ····· 93
가. 이용현황 ····· 93
나. 원격영상재판이 이용되는 절차 ····· 94
다. 증인신문에서 부당한 영향의 배제 ····· 94
라. 녹화 및 녹음 ····· 95
제5절 일본 ····· 95

Ⅰ. 전자소송에 대한 신중한 접근 ····· 95
Ⅱ. '민사소송법(IT화 관계) 등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주요 내용 ····· 97
1.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신청 등 ····· 97
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신청 ····· 97
나. 소송기록의 전자화 ····· 97
2. 송달 ····· 98
3. 구두변론 ····· 98
4. 새로운 소송절차(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이 법정되는 심리절차) ····· 99
5. 서증 ····· 99
가. 전자적 기록에 대한 서증에 준하는 증거조사 ····· 99
나. 전자적 기록의 서증에 준하는 증거조사에 대한 신청으로서의 제출 ·· 100
다. 전자적 기록 제출명령 및 전자적 기록 송부의 촉탁 ····· 100
라. 증거가 될 만한 것의 사전준비로서 사본의 제출 ····· 100
6. 증인신문 등 ····· 100
가. 증인신문 등 ····· 100
나. 통역인 ····· 101
다. 참고인 등의 신문 ····· 101
7. 그 밖의 증거조사절차 ····· 102
가. 감정 ····· 102
나. 검증 ····· 102
다. 재판소 이외의 증거조사 ····· 102
8. 판결 ····· 103
가. 전자판결서의 작성 및 판결의 선고 ····· 103
나. 전자판결서의 송달 ····· 103
9. 소송기록의 열람 등 ····· 103
10. 민사소송 비용 등 ····· 104
가. 수수료 전자납부로의 단일화 ····· 104
나. 우편비용 수수료의 단일화 ····· 104
제6절 중국 ····· 104
Ⅰ. 사법 ICT의 적극적 도입 ····· 104
Ⅱ. 중국 법원의 ICT화 개요 ····· 105
1. 소송절차 관련 자료의 전자화 ····· 105
2. 사무적 업무에서의 해방 ····· 105
3. 재판의 보조기능 개선 ····· 106
4. 이동에 따른 사건처리 ····· 106
Ⅲ. 전자증거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활용 ····· 107
1. 전자증거의 법적 취급 ····· 107
2. 전자증거와 블록체인 기술 ····· 107
3. 중국 법원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 108
Ⅳ. 지혜법원(智慧法院) 프로젝트 ····· 110

1. 의의와 배경 ····· 110
2. 주요 내용 ····· 111
가. 재판기록의 디지털화 ····· 111
나. 다중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 111
다. 법률 AI 소프트웨어의 발전 ····· 112
라. 법률 문서의 전자적 송달 ····· 112
Ⅴ. 인터넷 법원의 개설 ····· 113
1.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일부 문제'에 관한 규정 ···· 113
2. 항저우 인터넷 법원 ····· 114
가. 온라인에 의한 소송의 제기 ····· 114
나. 온라인 소송의 수리 - 온라인 심사(제8조) ····· 115
다. 온라인 법정 심리와 판결 등(제30조~제35조) ····· 115
Ⅵ. 전자소송 관련 법령의 정비 ····· 116
Ⅶ. 결어 ····· 117

제5장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방안 ····· 119

Ⅰ.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사법부의 대응 ····· 121
Ⅱ.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 122
1. 추진 배경과 목표 ····· 122
가. 추진 배경 ····· 122
나. 목표 ····· 123
2. 외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 125
가. 절차 단계별 개선사항 ····· 125
나. 사법정보 공개포털 ····· 125
다. 지능형 절차안내 ····· 126
라. 사법정보 공유센터 ····· 127
마. 모바일 전자소송 ····· 128
바. 사법통합 민원포털 ····· 129
사. 그 밖의 개선방안 ····· 130
3. 내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 130
가. 기록 검토 ····· 130
나. 정보 검색 ····· 133
다. 문서 작성 ····· 136
라. 오류 방지 ····· 137
마. 수작업·중복작업 감축 ····· 138
4. 추진 일정 ····· 140
5. 향후 과제 ····· 140
가.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 140
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활용 ····· 141

Ⅲ. 전자소송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제언 ····· 142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142
가. '나홀로 소송' 당사자 ····· 142
나. 정보화 소외계층 ····· 144
다. 장애인 ····· 145
2. 구술심리의 촉진 ····· 147
3. 온라인 재판의 도입 ····· 149

제6장 전자소송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 151

제1절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의 변혁 ····· 153
Ⅰ. 우리나라의 상황 ····· 153
Ⅱ. 외국의 상황 ····· 154
Ⅲ. 법 체계 변혁의 필요성 ····· 156
제2절 전자문서 및 전자증거 관련 법령의 통일적 규율 ····· 158
Ⅰ.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증거 관련 법령의 규정과 문제점 ····· 158
1. 민사소송법 및 동 규칙 ····· 158
2. 민소전자문서법 및 동 규칙 ····· 159
3. 이원적 규율로 인한 문제점 ····· 161
Ⅱ. 제도적 개선방안 ····· 162
제3절 전자소송 의무이용자의 범위 확대 ····· 165
Ⅰ. 우리나라의 상황 ····· 165
Ⅱ. 외국의 상황 ····· 165
Ⅲ. 제도적 개선방안 ····· 166
제4절 전자소송에 기반한 fast-track의 도입 ····· 167
Ⅰ. 일본 '민사소송법(IT화 관계) 등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fast-track ····· 168
Ⅱ. 제도적 개선방안 ····· 171
제5절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 ····· 173
Ⅰ. 우리나라의 상황 ····· 173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 ····· 173
2.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 174
3.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 175
4.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조항의 신설 ····· 175
Ⅱ. 외국의 상황 ····· 176
1. 미국 ····· 176
2. 독일 ····· 177
Ⅲ. 제도적 개선방안 ····· 178
1. 가상재판의 도입 ····· 178

2. ‘재판의 공개 원칙’과의 관계 ····· 180
3. 그 밖의 과제 ····· 181
제6절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도의 도입 ····· 181
Ⅰ. ‘온라인 분쟁해결’의 의미와 특징 ····· 181
Ⅱ. 외국의 상황 ····· 182
1. 전자상거래와 ODR ····· 182
2. 공공 ODR의 확대와 법원 ODR ····· 183
3. 외국의 법원 ODR ····· 183
가. 영국의 Briggs 보고서 ····· 183
나. 미국 유타주 법원의 ODR 시범실시 ····· 184
다.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 ····· 185
Ⅲ. 제도적 개선방안 ····· 186
제7절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대한 대비 ····· 188
Ⅰ.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도입 가능성 ····· 188
Ⅱ. 제도적 대비 방안 ····· 190

제7장 민사소송법 개정 시안 ····· 193

제1절 전자소송을 포괄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 195
제2절 개정 시안 ····· 197
Ⅰ. 개정 방향 ····· 197
Ⅱ. 구체적 검토 ····· 199
1. 삭제 조항 ····· 203
가. 민소전자문서법 제1조(목적) ····· 203
나. 민소전자문서법 제3조(적용범위) ····· 204
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 204
2. 수정 및 신설 조항 ····· 205
가. 민사소송법안 제511조 제1항 제3호 ····· 205
나. 민사소송법안 제513조 제3항 신설 등 ····· 205

제8장 결론 ····· 209

149.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현안보고서 2022-01

연구책임자 :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7월 8일 발행

Ⅰ. 서론 ····· 1

1. 현안 연구의 필요성 ····· 1
가. 현안 연구의 제안 배경 ····· 1
나. 현안 연구의 목적 ····· 2

2. 연구 쟁점의 정리 ····· 2
가. 소권 남용과 부당소송 ····· 2
1) 우리나라의 소권 남용 논의 ····· 2
2) 영미법계의 부당소송(Vexatious Litigation) 논의 ····· 4
나. 보고서의 전제 ····· 5

3. 연구 방법 ····· 5

Ⅱ. 부당소송의 현황과 현재 대응의 문제점 ····· 6

1. 부당소송의 현황 ····· 6
가. 각급 법원의 부당소송 현황 ····· 6
나. 부당소송의 전형적인 특징 ····· 7
다. 대표적 사례(1) - 정○영 사건을 중심으로 ····· 8
라. 대표적 사례(2) - 정○숙·이○림 사건을 중심으로 ····· 9

2. 부당소송의 폐해 ····· 12

가. 국민에 대한 폐해 ····· 12
1) 소송상대방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 12
2)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 저해 ····· 13
나. 국가에 대한 폐해 ····· 13
1) 사법부의 부담 가중 ····· 13
2) 국가 기관의 사기 저하 ····· 13

3. 부당소송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제도 ····· 14
가. 특정 재판부로 사건 배당 ····· 14
나. 변론병합 및 기록 합철 ····· 14
1) 변론병합 결정 ····· 14
2) 기록 합철 ····· 15
다. 소장각하 명령 ····· 15
1) 관련 규정 ····· 15
2) 소장기재 미비로 인한 소장각하 명령 ····· 16
3) 인지 미납으로 인한 소장각하 명령 ····· 16
4) 송달료 미납으로 인한 소장각하 명령 ····· 16
라.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 17
1) 관련 규정 ····· 17
2) 2010. 7. 23.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개정 ····· 18
3) 담보제공 불이행의 효과 ····· 19
마. 무변론 소각하/항소각하 판결 ····· 19
1) 관련 규정 ····· 19
2) 부적법한 소/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19
3) 부당소송의 경우 ····· 20
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의 정지·말소 제도 ····· 20
1) 관련 규정 ····· 20
2) 사용자등록 정지·말소의 부당소송 억지 기능 ····· 21

4. 부당소송에 대한 현재 사건처리의 문제점 ····· 23
가. 사건 접수단계에서 부당소송 대응 불가 ····· 23
나.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의 정지·말소 제도의 우회가능성 ····· 24
1) 사용자등록 정지·말소의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24
2) 사용자등록 말소 후 재등록하여 재차 부당소송을 계속할 위험 ····· 24
3) 개인회원이 법인회원의 대표자로 사용자등록 시 우회 가능 ····· 25
다. 소장각하 명령의 한계 ····· 26
1) 필수적 보정명령 ····· 26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관한 실질적 심사 불가 ····· 26
3) 소송구조 신청 시 소장각하 명령 불가 ····· 27
라. 소송구조 제도의 남용 ····· 28
마.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의 실효성 재고 ····· 28
바. 무변론 판결 관련 실무처리의 문제점 ····· 29
1) 소장/항소장 부본의 송달 및 선고기일의 통지 생략 ····· 29

2) 판결서 송달 생략 ····· 29
3)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의 문제 ····· 30

Ⅲ.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계 국가의 대응제도 ····· 31

1. 개관 ····· 31

2. 영국 ····· 31
가. 절차금지명령(Proceedings Order) ····· 31
1) 입법 연혁 ····· 31
2) 절차금지명령의 요건 및 절차 ····· 32
3) 민사절차금지명령(Civil Proceedings Order)의 효과 ····· 33
나. 민사소송금지명령(Civil Restraint Order, CRO) ····· 34
1) 개관 ····· 34
2) 제한적 민사소송금지명령(limited civil restraint order) ····· 34
3) 확장된 민사소송금지명령(extended civil restraint order) ····· 35
4) 일반 민사소송금지명령(general civil restraint order) ····· 36
다. 민사절차금지명령과 민사소송금지명령의 비교 ····· 37
라. 부당소송인의 공개 ····· 38
마. 기타 부당소송에 대한 제재 ····· 38
1) 소송절차 상 제재 ····· 38
2) 부당소송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40

3. 미국 ····· 41
가. 주(州) 차원의 부당소송인 규제 ····· 41
1) 개관 ····· 41
2) 캘리포니아 부당소송인규제법 ····· 41
3) 오하이오 부당소송인규제법 ····· 44
나. 연방 차원의 부당소송 규제 ····· 46
1)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11조 ····· 46
2) 연방 항소절차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38조 ····· 47
3) 연방법 제28절(United States Code: Title 28) ····· 47
다. 불법행위 책임 ····· 47

4. 호주 ····· 48
가. 개관 ····· 48
나. 빅토리아 주 2014년 부당소송 금지법 ····· 48
1) 입법 연혁 ····· 48
2) 적용범위 ····· 49
3) 소송금지명령 ····· 49
4) 기타 금지명령 ····· 51
5) 부당소송인의 공시 ····· 52

Ⅳ. 부당소송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의 대응제도 ····· 53

1. 개관 ····· 53

2. 독일 ····· 53

가. 소송절차상 권리남용 이론 ····· 53
나. 소송상 대응 ····· 54
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 55

3. 프랑스 ····· 55

가. 권리남용과 소권의 제한 ····· 55
나. 부당소송에 대한 소송법상 대응 ····· 56
다. 손해배상 책임 ····· 57

4. 일본 ····· 57

가. 소권 남용으로 인한 소각하 판결 ····· 57
나. 상소권 남용에 관한 규정 ····· 57

5. 스페인 ····· 58

Ⅴ. 부당소송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 개선 ····· 59

1. 현행 제도의 활용을 통한 개선 ····· 59

가. 부당소송 전문재판부의 설치 ····· 59
나. 종이 사건에 대한 전자기록화 명령 ····· 61
다. 무변론 각하판결의 폭넓은 활용 ····· 62
1) 보정명령 없이 무변론 소각하 판결 ····· 62
2) 선제적인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 62
3) 무변론 항소각하 제도의 활용 ····· 62

2. 규칙/예규/처리지침 보완을 통한 대응 방안 개선 ····· 63

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정지·말소 제도의 개선 ····· 63
나. 사건 접수의 보류의 근거 마련 ····· 64
1) 서류접수에 관한 관련 규정 ····· 64
2) 사건 접수의 보류 사유의 도입 ····· 65

3. 입법적 보완을 통한 대응 방안 개선 ····· 69

가. 사건 접수 보류와 관련된 입법적 보완 ····· 69
1)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접수 보류 근거 마련 ····· 69
2) 접수 보류와 민사소송법 제248조와의 충돌 문제 ····· 69
3)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접수 보류 인지 금액 신설 ····· 70
나. 소장각하 명령의 개선 ····· 72
다. 소송구조 제도의 정비 ····· 73
라. 송달제도의 정비 ····· 74

1) 필요성 ····· 74
2) 제1안 - 송달의 생략 ····· 74
3) 제2안 - 공시송달의 활용 ····· 75
4) 검토 ····· 75
마. 사후적 제도 보완 ····· 76
1) 민사상 손해배상의 한계 ····· 76
2) 과태료 제도의 도입 ····· 76
3) 형사적 제재 ····· 77

4. 새로운 제도의 도입 –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 ····· 77
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 ····· 77
나.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의 위헌성 검토 ····· 77
1)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충돌 문제 ····· 77
2) 재판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 78
3) 미국의 부당소송인 규제에 관한 위헌 논의 ····· 79
4)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의 과잉금지원칙 준수 ····· 79
다.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의 입법 제안 ····· 80
1) 부당소송인의 지정과 소송금지명령 ····· 80
2) 구체적인 내용 ····· 81
3) 입법의 형태 ····· 83

Ⅵ. 결론 ····· 84

150.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2-11

연구책임자 : 이상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7월 15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Ⅰ. 연구의 범위 ····· 6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 9

제1절 현행법령 및 판례 검토 ····· 11
Ⅰ. 관련 법령 ····· 11
1. 형사소송법 및 형법 ····· 11
2.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 13
3. 헌법의 근거규정성 ····· 14
Ⅱ. 대법원 판례의 입장 ····· 16
1. 사실관계 ····· 16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 17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19
Ⅲ. 검 토 ····· 20
1. 헌법적 권리성에 관하여 ····· 20
2. 다른 실정법상 규정들에 관하여 ····· 21
제2절 국회 입법안 검토 ····· 23
Ⅰ. 19대 및 20대 국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1. 노철래 의원 대표발의안 ····· 23
2.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안 ····· 24
3.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안 ····· 25
Ⅱ. 21대 국회: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안 ····· 26
Ⅲ. 요약 및 평가 ····· 28
1. 요약 ····· 28
2. 평가 ····· 30

제3장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35

제1절 미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 37
Ⅰ. 서설 ····· 37
1. 의의 ····· 37
2. 인접개념: 업무성과물 원칙 ····· 39
3. 형성 ····· 41
Ⅱ. 발전 및 수용 ····· 42
1. 영국에서 특권의 발전 ····· 42
2. 미국에서 특권의 수용 ····· 44
Ⅲ. 취지 및 근거 ····· 45
1. 인정 취지 ····· 45
2. 인정 근거 ····· 47
3. 헌법적 관점 ····· 53
Ⅳ.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요건 ····· 55
1. 의사교환의 당사자 ····· 55
2. 의사교환 ····· 58
3. 의사교환의 기밀성(In Confidence) ····· 60
4. '법적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 61
Ⅴ.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효력 ····· 62
1. 일반론 ····· 62
2. 특권의 성립 및 효과 ····· 63
Ⅵ.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행사 절차 ····· 69
1. 행사 및 판단주체 ····· 69
2. 행사 절차 ····· 70

3. 행사 시기 ····· 71
4. 구체적 검토: 압수영장 집행 시의 행사 ····· 72
5. 주장의 특정: 프리빌리지 로그(privilege log) ····· 75
6. 주장의 입증: 진술서 등의 첨부 ····· 82
7. 심리 및 판단 ····· 82
Ⅶ. 변호사-의뢰인 특권 침해의 효과 ····· 84
1. 기본적 효과 ····· 84
2. 이른바 '독수독과 원리'의 적용여부 ····· 85
3. 다른 구제수단 ····· 90
4. 특권 침해가 헌법 위반인 경우 ····· 91
Ⅷ.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예외 ····· 109
1. 개요 ····· 109
2. 특권의 남용: 범죄/사기 예외(crime/fraud exception) ····· 109
3. "정당한 사유"의 예외 또는 "이익형량"의 예외 ····· 140
4. 신인관계의 예외(fiduciary exception) ····· 147
5. 상속재산 분쟁의 예외 ····· 149
6. 자기 보호의 예외 ····· 149
Ⅸ.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 ····· 150
1. 포기의 합의, 특권보호의 부인, 이의제기 부존재 ····· 150
2. 자발적 공개(Voluntary Disclosure) ····· 151
3. 변호사의 법적 조력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한 포기 ····· 153
4. 일부 포기의 문제 ····· 154
제2절 영국의 법률전문가 특권 ····· 155
Ⅰ. 서설 ····· 155
1. '법률 전문가 특권'의 인정 ····· 155
2. 유형: 자문 특권 및 소송 특권 ····· 155
Ⅱ. 규율의 관점 및 특징 ····· 156
1. 규율의 관점 ····· 156
2. 영국 규율의 특징 ····· 156
Ⅲ. 특권의 주체, 요건 및 효력 ····· 157
1. 주체 ····· 157
2. 요건 ····· 158
3. 효력 ····· 160
Ⅳ. 특권의 예외 ····· 161
1. 서설 ····· 161
2. 범죄/사기 예외(crime/fraud exception) ····· 161
3. 특정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예외 ····· 163
4. 실정법 규정에 의한 예외 ····· 163
Ⅴ. 특권 분쟁의 절차 ····· 164
1. 특권의 주장 및 상대방의 이의 ····· 164

2. 특권의 입증 ····· 165
3. 법원의 심리 ····· 165
Ⅵ. 형사절차에서 특권의 제한 및 침해의 효력 ····· 166
1. 변호사가 증인인 경우 ····· 166
2. 압수수색에 대한 규율 ····· 166
3. 특권 침해의 효력 ····· 167
Ⅶ. 평가 ····· 168
제3절 독일에서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비밀의 보장 ····· 170
Ⅰ. 서설 ····· 170
1. 규율의 관점 ····· 170
2. 규율의 특징 및 체계 ····· 170
Ⅱ. 직무상 비밀유지의 일반적 근거 및 성격 ····· 172
1. 일반적 근거 ····· 172
2. 성격: 의무인 동시에 권리 ····· 173
Ⅲ. 직무상 비밀유지의 주체 및 객체 ····· 174
1. 비밀유지의 주체 ····· 174
2. 직무상 비밀유지의 객체 ····· 175
Ⅳ. 비밀유지의 효력 및 예외 ····· 177
1. 비밀유지의 효력 ····· 177
2. 비밀유지의 예외 ····· 178
Ⅴ. 형사소송법상 직무상 비밀 보호에 관한 규율 ····· 179
1. 압수에 대한 제한(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179
2. 직무상 비밀 취급자에 대한 강제수사조치 금지(형사소송법 제160a조) ····· 181
3.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183
4. 예외사유(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60a조 제4항) ····· 185
5. 관련문제: 형법상 직무상 비밀보호 규정 ····· 185
Ⅵ. 평가 ····· 187
제4절 프랑스에서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비밀의 보장 ····· 188
Ⅰ. 서설 ····· 188
1. 직무상 비밀: 규율체계 및 논의차원 ····· 188
2. 법적 근거 ····· 190
Ⅱ. 직무상 비밀의 구체적 규율 ····· 193
1.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의무 및 권리: 주체 및 내용 ····· 193
2. 비밀유지의무 및 권리의 예외 ····· 196
Ⅲ. 형사소송법상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비밀의 보호 ····· 197
1. 규제체계 개관 ····· 197
2. 형사소송법 제109조 등: 직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197
3. 직무상 비밀에 대한 강제수사 규제 ····· 198
4. 형사소송법 제56-1조: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규제 ····· 199
Ⅳ. 개정 형사소송법(2022. 3. 1. 시행 사법신뢰법 제3조) ····· 204

1. 개정 배경 ····· 204
2.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서조 및 제56-1조 개정, 제56-1-1조 등 신설 ····· 204
Ⅴ. 평가 ····· 206
제5절 캐나다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 208
Ⅰ. 서설: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인정 ····· 208
Ⅱ. 특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보장 ····· 208
1. 절차적 보장의 중요성 ····· 208
2. 연방대법원의 Lavallee 판결 ····· 209
Ⅲ.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시 특권 보호 절차 ····· 212
1. Lavallee 판결 제시 가이드라인 ····· 212
2. 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 ····· 213
Ⅳ. 평가 ····· 214
제6절 일본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 ····· 216
Ⅰ. 서설 ····· 216
Ⅱ. 현행법 규정 ····· 216
1. 형사소송법 ····· 216
2. 민사소송법 ····· 219
Ⅲ. 판례 ····· 220
1. 형사법 분야 판결 ····· 220
2. 그 외 분야: 이른바 'JASRAC 사건' ····· 221
Ⅳ. 평가 ····· 224
제7절 국제법적 규율 ····· 226
Ⅰ. 서설 ····· 226
Ⅱ. 유럽인권법원 판례 ····· 226
1. 인정 여부 및 근거 ····· 226
2. Versini-Campinchi and Crasnianski v. France 판결 ····· 227
3. Foxley v. United Kingdom 관결 ····· 228
Ⅲ. 유럽사법법원 판례 ····· 228
1. 인정 여부 및 근거 ····· 228
2. AM & S 판결 ····· 229
3. Akzo Nobel 판결 ····· 229
Ⅳ.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례 ····· 230
1. 사건의 개요 ····· 230
2. 사건의 진행 및 평가 ····· 230
Ⅴ. 국제형사재판소 절차 및 증거규정 ····· 230
제8절 소결 ····· 232
Ⅰ. 규율의 관점 ····· 232
1. 규율체계 ····· 232
2. 보호대상 ····· 232

Ⅱ. 시사점 ····· 232
1. 규율의 차원 ····· 232
2. 보호대상의 설정 기준 ····· 233
3. 보호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의 범위 ····· 234
4. 보호대상의 시적, 물적 범위 ····· 235
5. 비밀보호의 예외사유 ····· 236
6. 비밀보호 침해의 효과 ····· 237
7. 권리 구제 절차 ····· 238

제4장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입법방안 ····· 241

제1절 개선입법의 고려사항 ····· 243
Ⅰ. 규율의 전체적 체계 ····· 243
Ⅱ. 우리 법률체계와 조화 ····· 244
Ⅲ. 보호대상의 설정 ····· 245
Ⅳ. 의뢰인의 권리주체성 인정 ····· 246
Ⅴ. 비밀침해에 대한 조기, 적시의 구제절차 ····· 247
Ⅵ. 비밀 누설을 최소화하는 구제절차 ····· 248
Ⅶ. 예외사유의 정비 ····· 249
제2절 입법안 제시 ····· 251
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Ⅱ. 법안 설명 ····· 253
1. 논의의 차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 253
2. 권리의 성격 및 행사주체 ····· 256
3. 보호대상 ····· 258
4. 비밀유지의 예외사유 ····· 259
5. 비밀보장의 시기 ····· 262
6. 비밀유지권 침해의 효과 ····· 263
7. 비밀유지 주장의 절차 ····· 265

제5장 결론 ····· 273

151.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연구총서 2022-12

연구책임자 : 이혜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8월 5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가상자산 개관 ····· 7

제1절 가상자산의 의의 ····· 9
Ⅰ. 가상자산의 등장 배경 ····· 9
Ⅱ. 가상자산의 명칭과 정의 ····· 11
1. 해외 ····· 11
가. 국제기구 ····· 11
나. EU ····· 12
다. 미국 ····· 12
라. 독일 ····· 12
마. 일본 ····· 13
2. 국내 ····· 15
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 ····· 15

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 24
3. 시사점 ····· 28
Ⅲ. 가상자산의 특징 ····· 29
1. 블록체인 ····· 29
가. 의의 ····· 29
나. 종류 ····· 30
2. 가상자산의 특징 ····· 32
가. 탈중앙화 ····· 32
나. 무결성 ····· 32
다. 익명성, 투명성 ····· 32
라. 보안성 ····· 33
마. 희소성 ····· 33
Ⅳ. 가상자산의 분류 ····· 34
1. 코인(Coin)과 토큰(Token) ····· 34
2.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가상자산 분류 ····· 34
가. 교환 토큰(exchange token) ····· 35
나.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 35
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 35
라. 토큰 간의 관계 ····· 37
3. 스테이블(stable) 코인 ····· 38
4. 프라이버시(privacy) 코인 ····· 39
5. 대체불가토큰(NFT) ····· 39
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 41
Ⅴ. 가상자산의 현황 ····· 42
1. 발행 현황 ····· 42
2. 이용 현황 ····· 43
가. 투자 대상 ····· 43
나. 법화 ····· 43
다. 결제 수단 ····· 44
라. 대출 ····· 45
마. ATM ····· 45
바. 급여 지급 수단 ····· 45
제2절 비트코인 ····· 47
Ⅰ. 개요 ····· 47
1. 비트코인의 의의 ····· 47
2. 비트코인의 역사 ····· 48
3.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 ····· 49
Ⅱ. 비트코인의 취득 ····· 50
1. 비트코인 이전 과정의 예시 ····· 50
2. 트랜잭션(Transaction)의 생성 ····· 51

가. 지갑 설치 및 주소 생성 ····· 52
나.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UTXO) 계산 ····· 52
다. 거래수수료 추가 ····· 54
라. 개인키에 의한 전자서명 ····· 56
3. 트랜잭션의 전파 ····· 57
가. 노드의 의의와 기능 ····· 57
나. 노드에 의한 전파 ····· 58
4. 블록체인에의 기록 ····· 59
가. 개요 ····· 59
나. 블록의 형성 ····· 60
다. 작업증명 ····· 64
라. 검증 ····· 64
마. 분기현상과 그 해결방법 ····· 65
5. 비트코인 이전 과정의 법적 쟁점 ····· 66
가. 블록체인 설계자 및 개발자의 지위와 책임 ····· 66
나. 비트코인의 특정 ····· 67
다. 비트코인 이용자의 성격에 따른 법적 쟁점 ····· 67
Ⅲ. 비트코인과 그 외 가상자산의 비교 ····· 71
1. 이더리움 ····· 71
2. 라이트코인 ····· 72
Ⅳ. 시사점 ····· 72
제3절 가상자산의 성질 ····· 74
Ⅰ. 논의의 필요성 ····· 74
Ⅱ. 해외 ····· 74
1. 미국 ····· 74
2. 영연방 국가 ····· 76
가. UK Jurisdictions Taskforce의 보고서 ····· 76
나. B2C2 Ltd v Quoine Pte Ltd 사건 ····· 77
다. AA v Persons Unknown 사건 ····· 78
라. Ruscoe v Cryptopia Ltd (in liq) 사건 ····· 78
마. Vorotyntseva v Money-4 Ltd (t/a Nebeus.com) 사건 ····· 79
3. EU ····· 80
4. 독일 ····· 80
가. 협의의 금전 ····· 80
나. 예금 ····· 80
다. 전자화폐 ····· 81
라. 유가증권 ····· 81
마. 민법 제90조의 물건인지 여부 ····· 81
5. 일본 ····· 84
가. 비트코인의 성질에 대한 견해 ····· 84

나. 정책 ····· 86
다. 판례 ····· 87
Ⅲ. 국내 ····· 88
1. 학계 ····· 88
가. 민법상 물건 ····· 88
나. 준물권의 객체 ····· 89
다. 채권 ····· 90
라. 채권의 객체 ····· 90
마. 화폐 ····· 91
바. 유가증권 ····· 92
사. 사원권 ····· 93
아. 조합권 ····· 93
자. 지식재산권 ····· 94
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 94
카. 금융투자상품 ····· 95
타. 사이버재화 ····· 97
2. 정책 ····· 98
가. 금융투자상품 ····· 98
나. 국세징수법 ····· 99
다. 회계 분야 ····· 99
3. 판례 ····· 101
Ⅳ. 시사점 ····· 102
제4절 가상자산지갑 ····· 104
Ⅰ. 의의 ····· 104
Ⅱ. 종류 ····· 105
1. 종이지갑 ····· 105
가. 의의 ····· 105
나. 생성방법 ····· 106
2. 소프트웨어 지갑(software wallet) ····· 108
가. 데스크탑 지갑(desktop wallet) ····· 109
나. 웹 지갑(web wallet) ····· 109
다.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 ····· 110
라. 거래소 지갑 ····· 110
3. 하드웨어 지갑(hardware wallet) ····· 110
Ⅲ. 가상자산지갑의 사용 ····· 112
1. 가상자산지갑에 의한 가상자산 이전 ····· 112
2. 계층 결정적 지갑과 니모닉(Mnemonic) ····· 113
Ⅳ. 가상자산지갑의 안전성 ····· 114
1. 가상자산지갑 해킹 사례 ····· 114
2. 가상자산지갑의 보안 방안 ····· 115

가. 다중서명(Multi-signature) 지갑 ····· 115
나. 콜드월렛(Cold wallet) ····· 117
Ⅴ. 시사점 ····· 117
제5절 가상자산사업자 ····· 119
Ⅰ. 의의 ····· 119
Ⅱ.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 119
1. 규제 기반 ····· 119
가. FATF ····· 120
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121
2.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규제 ····· 122
가. 특정금융정보법의 의의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 122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124
다. 고객확인제도 ····· 126
라. 트래블룰(Travel rule) ····· 128
마. 가상자산업권법 ····· 129
Ⅲ. 가상자산거래업 ····· 130
1. 의의 ····· 130
2.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현황 ····· 131
3. 운영 방식 ····· 132
가. 이용을 위한 절차 ····· 132
나. 거래소 지갑 ····· 133
다. 거래 방식 ····· 134
라. 거래 유형 ····· 135
마. 거래소 수수료 ····· 136
바. 입·출금한도 ····· 138
사. 주문 단위 제한 ····· 139
4. 거래소 보안의 문제 ····· 139
5. 가상자산의 관리방식 ····· 141
가. 규정 ····· 141
나. 실무 ····· 141
다. 실무 분석 ····· 142
Ⅳ.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지갑서비스업 ····· 143
1. 가상자산보관·관리업 ····· 143
가. 의의 ····· 143
나. 멀티시그의 문제 ····· 144
2.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 146
Ⅴ.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의 법률관계 ····· 146
1. 논의의 필요성 ····· 146
2. 기본적 법률관계 ····· 147
3.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 ····· 147

가. 일본 ····· 147
나. 국내 ····· 148
다. 판례 ····· 150
4. 시사점 ····· 154
Ⅵ. 가상자산과 디파이(De-Fi) ····· 155
1. 디파이의 의의 ····· 155
2. 디파이 분야 ····· 157
가. 대출(Lending) ····· 157
나. 탈중앙화거래소 ····· 158
다. 파생상품(Derivatives) ····· 159
라. 자산토큰화(Tokenization) ····· 160
마. 보험 ····· 160
3. 디파이에 대한 규제 ····· 160
4. 시사점 ····· 161

제3장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 163

제1절 논의의 필요성 ····· 165
제2절 국세징수절차에서의 가상자산 취급 ····· 166
Ⅰ. 검토의 필요성 ····· 166
Ⅱ.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 과정 ····· 166
1. 국세징수법 개정 전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상황 ····· 166
2. 개정 국세징수법 ····· 167
가. 고용진 의원안 ····· 167
나. 정부안 ····· 168
다. 대안 ····· 168
Ⅲ. 국세징수절차에서 가상자산 압류와 현금화 ····· 170
1. 수색 ····· 170
2. 압류 ····· 171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174
나. 그 밖의 경우 ····· 176
3.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 177
4. 매각 ····· 177
5. 압류의 해제 ····· 178
Ⅳ. 시사점 ····· 178
제3절 가상자산 관련 보전처분 ····· 180
Ⅰ. 해외 ····· 180
1. 자산동결명령(Asset freezing order) ····· 180
가. 자산동결명령을 인정한 사례 ····· 180
나. 자산동결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81

다. 제재수단과 관련한 문제 ····· 181
2. 수탁관리인제도(Receivership) ····· 182
Ⅱ. 국내 ····· 182
1. 논의 ····· 182
가.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 182
나.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 183
2. 실무 ····· 183
가. 가처분 ····· 183
나. 가압류 ····· 185
Ⅲ. 시사점 ····· 187
제4절 금전집행 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 188
Ⅰ. 검토 방향 ····· 188
Ⅱ. 해외 논의 현황 ····· 188
1. 일본 ····· 188
가. 채무자의 가상자산지갑에 의해 가상자산이 관리되는 경우 ····· 189
나. 암호자산교환업자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 189
2. 독일 ····· 194
가. 독일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개관 ····· 194
나.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상자산 강제집행 방안 ····· 195
3. 미국 ····· 200
4. 시사점 ····· 201
Ⅲ. 국내 논의 현황과 실무 ····· 201
1. 논의 현황 ····· 201
가. 논의 기준 ····· 201
나. 채무자에 의해 그의 가상자산이 관리되는 경우 ····· 202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 204
2. 실무 ····· 208
가. 현황 ····· 208
나. 보정명령 ····· 209
Ⅳ. 집행안 검토 ····· 209
1. 민사집행 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 209
2. 민사집행에서의 가상자산의 성질 ····· 210
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의 가상자산 ····· 210
나. 절차 준용 범위 ····· 212
3. 집행 대상의 상태에 따른 집행방법의 차이 ····· 213
4. 채무자가 그의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의 집행절차 ····· 214
가. ‘채무자가 그의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 214
나. 관할 ····· 215
다. 압류명령 ····· 215
라. 가상자산 이전명령과 집행 ····· 217

마. 가상자산의 이전 거부 시 강제 방안 ····· 220
바. 현금화 절차 ····· 228
사. 배당 ····· 230
5.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행절차 ···· 231
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의미 ····· 231
나. 청구권의 종류 ····· 231
다.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발생 상황 ····· 233
라. 제3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 ····· 234
마. 가상자산사업자와 기타의 제3자를 구분할지 여부 ····· 237
바. 압류명령 ····· 238
사. 가상자산 이전명령과 집행 ····· 239
아. 현금화 방안 ····· 244
자. 배당 ····· 245
Ⅴ. 규정 위치와 조문 정리 ····· 246
제5절 가상자산에 대한 비금전집행 방안 ····· 251
Ⅰ. 검토의 필요성 ····· 251
Ⅱ. 본안판결 현황과 문제점 ····· 252
Ⅲ. 비금전집행 방식과 방식 간의 관계 ····· 253
1. 비금전집행 분류 ····· 253
2. 방식 간 관계 ····· 254
Ⅳ. 직접강제 가능 여부 ····· 255
1. 법 제257조의 적용 가부 ····· 255
가. 논의 현황 ····· 255
나. 검토 ····· 256
2. 민사집행법 제259조의 적용 가부 ····· 257
가. 논의 현황 ····· 257
나. 검토 ····· 258
Ⅴ.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가능 여부 ····· 259
1. 독일 ····· 260
가. 논의 상황 ····· 260
나. 판례 ····· 264
다. 대체집행으로 강제집행 할 경우 절차 관련사항 ····· 268
라. 간접강제로 강제집행 할 경우 절차 관련사항 ····· 270
2. 국내 ····· 271
3. 검토 ····· 272
가. 대체성 판단 기준 ····· 272
나. 상황에 따른 대체성 판단 ····· 272
Ⅵ. 비금전적 간접강제방안 ····· 273
1. 검토의 필요성 ····· 273
2.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활용 ····· 274

가. 제도의 의의 ····· 274
나.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에서의 활용 ····· 274
제6절 기타 가상자산 관련 고려사항 ····· 276
Ⅰ. 용어 사용 ····· 276
1. 검토의 필요성 ····· 276
2. 보전처분에서의 용어 사용현황 ····· 276
3. 본안판결에서의 용어 사용현황 ····· 277
4. 시사점 ····· 279
Ⅱ. 가상자산의 이전시기 ····· 281
Ⅲ. 압류금지 ····· 282
1. 검토의 필요성 ····· 282
2. 검토 ····· 283
Ⅳ.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검토사항 ····· 284
1.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현황 ····· 284
2. 채무자가 해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 284
3. 해외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환가대상인 경우 ····· 285
Ⅴ. 다크코인과 민사집행 ····· 286
1. 검토의 필요성 ····· 286
2. 다크코인 취급 현황 ····· 286
3. 검토 ····· 288
Ⅵ.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지갑과 가상자산 주소 ····· 290
1. 사건별 주소의 생성 ····· 290
2. 가상자산지갑의 선택 ····· 291
3. 고객확인의무와 트래블룰 ····· 292
Ⅶ. 각종 비용 ····· 293
1. 검토의 필요성 ····· 293
2. 여비 ····· 293
3. 가상자산으로 지출되는 수수료 ····· 293
4. 매매수수료 ····· 294
Ⅷ. 가상자산의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의 준비 ····· 294
Ⅸ. 패러데이(Faraday) 장치 ····· 295
1. 검토의 필요성 ····· 295
2. 페러데이 케이지(Faraday cage 또는 Faraday shield) ····· 295
3. 패러데이 백(Faraday bag) ····· 296
4. 페러데이 장치의 도입 ····· 297
가. 압류현장 ····· 297
나. 압류 후 ····· 297
Ⅹ. 이중지불 공격 ····· 298
1. 검토의 필요성 ····· 298
2. 이중지불 공격의 의미 ····· 298

3. 집행절차에서의 대응책 ····· 299
가. Confirmation 이용 ····· 300
나. 적정한 거래수수료 ····· 300
다. 채굴자와 집행관의 협의 ····· 301
XI. 트랜잭션 지연 ····· 301
1. 검토의 필요성 ····· 301
2. 트랜잭션 지연의 원인 ····· 301
가. 트랜잭션의 급증 ····· 301
나. 거래수수료 문제 ····· 302
다. Confirmation 수의 문제 ····· 302
3. 대응책 ····· 303
4. 집행절차에의 적용 ····· 304
XII. 야간집행 ····· 305
XIII 현금화절차 ····· 306
1. 매각 거래소 선택 ····· 306
2. 거래소 파산, 해킹으로부터의 보호책 ····· 307
3. 처분 방식 ····· 307
XIV. 기타 ····· 307
1. 가상자산 취급 업무 관련 행동강령의 필요 ····· 307
2. 가상자산 전문가의 필요 ····· 308
3. 가상자산 관련 교육 ····· 309

제4장 가상자산의 탐색 ····· 311

제1절 블록체인 탐색기 ····· 313
제2절 민사집행법상 탐색제도의 활용방안 ····· 315
Ⅰ. 재산명시제도의 활용 ····· 315
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 315
2. 재산명시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 315
3. 집행권원의 내용 ····· 316
4. 재산목록의 제출 ····· 316
가. 재산목록 기재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입법의 필요성 ····· 316
나.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1항 ····· 317
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 317
라.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 319
마. 가액 결정 ····· 321
Ⅱ.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 322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 322
2.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회절차 ····· 322
가. 신청자 및 신청사유 ····· 322

나. 재산조회를 할 기관 ····· 323
다. 조회대상 재산 ····· 324

제5장 결론 ····· 325

152.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2-13

연구책임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8월 1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Ⅰ. 연구의 방법 ····· 4
Ⅱ. 연구의 범위 ····· 5

제2장 연방사법행정제도 ····· 7

제1절 개관 ····· 9
제2절 조직 구조 ····· 9
제3절 수행 기능 ····· 11
Ⅰ. 연방대법원장 ····· 11
Ⅱ. 연방대법원 ····· 11
Ⅲ. 연방사법회의 ····· 12
Ⅳ. 연방법원행정처 ····· 14
Ⅴ. 연방사법센터 ····· 15
Ⅵ. 양형위원회 ····· 15
Ⅶ. 광역소송사법위원회 ····· 16

제3장 연방사법센터 소개 ····· 17

제1절 개관 ····· 19
제2절 설립 배경 ····· 19
Ⅰ. 설립 이전 ····· 20
1. 주 차원: 주사법평의회 설립 ····· 20
2. 연방 차원 ····· 21
가. 배경: 연방사법부의 사법행정권 확대 ····· 21
나. 연방법원 행정기구 설립: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 발전 ····· 21
다. 한계: 불충분한 행정적 지원 ····· 24
Ⅱ. 설립 과정 ····· 25
1. 설립 제안 ····· 25
2. 법률안 처리과정 ····· 26
가. Johnson 대통령의 반범죄 프로그램 발표 ····· 26
나. 상원 및 하원 법률 입법과정 ····· 27
3. 설립 ····· 28
4. 보론(補論) ····· 28
제3절 설립 목적 및 기능 ····· 30
Ⅰ. 설립 목적 ····· 30
Ⅱ. 기능 ····· 30
제4절 독립적 지위 ····· 31
Ⅰ. 연방사법행정상 독립적 위치 ····· 31
Ⅱ. 독립성 확보 대 법관의 지휘 ····· 34
1. 이사회 구성 ····· 34
가. 인적 구성에 관한 논의 ····· 34
나. 연방사법회의 위원 복무 금지 ····· 36
다. 보론(補論): 다양한 인적 구성 ····· 37
2. 기관장 요건 ····· 37
제5절 조직 구성 ····· 38
Ⅰ. 현황 ····· 38
Ⅱ. 주요 조직 ····· 40
1. 이사회 ····· 40
2. 기관장 ····· 41
3. 개별 부서 ····· 42
가. 교육부서 ····· 42
나. 연구부서 ····· 42
다. 연방사법역사부서 ····· 43
라. 국제사법교류부서 ····· 43
마. 정보기술부서와 편집 및 정보 서비스 부서 ····· 44

제4장 연방사법센터 부서별 업무 ····· 45

제1절 개관 ····· 47
제2절 교육부서 ····· 48
Ⅰ. 조직 구성 ····· 48
Ⅱ. 교육 자료 개발 ····· 49
Ⅲ. 교육 자료 유형 ····· 53
1. 매뉴얼, 모노그래프, 가이드 ····· 53
2. 비디오, 팟캐스트 ····· 54
가. 비디오 ····· 54
나. 팟캐스트 ····· 58
3. 웹 기반 자료 ····· 61
가. 인트라넷 ····· 61
나. 정보 교환 사이트 ····· 62
다. 온라인 전화 및 화상회의 ····· 62
라. 기타 ····· 63
4. 뉴스레터 ····· 63
Ⅳ.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 65
1. 운영방식 ····· 65
가. 교수진 ····· 65
나. 개발 방식 ····· 65
다. 내용: 중립성 ····· 66
2. 종류 및 내용 ····· 66
가. 법관 대상 프로그램 ····· 66
나. 법원변호사 대상 프로그램 ····· 70
다. 연방변호인 대상 프로그램 ····· 72
라. 법원장, 법원 부서 행정관리자 대상 프로그램 ····· 73
마. 슈퍼바이저 및 매니저 대상 프로그램 ····· 75
바. 경력직 연방 보호관찰관 및 재판 전 서비스관 대상 프로그램 ····· 78
사. 법원직원 대상 프로그램 ····· 82
아. 교육 담당 직원 대상 프로그램 ····· 86
자. 외국법관의 참가 ····· 87
Ⅴ. 교육프로그램 평가 ····· 88
제3절 연구부서 ····· 88
Ⅰ. 조직 구성 ····· 88
Ⅱ. 연구의 유형 ····· 89
1. 연방사법부의 추가적 리소스 요청을 위한 연구 ····· 89
2. 법원 또는 법원 기관 운영의 효율성 평가 연구 ····· 90
3. 법원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 파악 및 설명·분석·비교·보고 연구 ····· 90
4. 정책결정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사법행정 연구를 위한
전문화된 리소스 개발 연구 ····· 90
5. 연구 컨설팅 서비스 ····· 91
6. 연방사법행정에 관한 연구 촉진 및 조직화 ····· 91

Ⅲ. 연구주제 선정 및 배정 방식 ····· 91
1. 선정 방식 ····· 91
2. 배정 방식 ····· 93
Ⅳ. 연구내용 ····· 93
1. 개관 ····· 93
2. 진행 중인 연구 목록 ····· 95
3. 카돈 권고안 연구 ····· 100
4. 특별 주제 ····· 102
가. 1980년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 102
나. 선거 소송 ····· 103
다. 연방-주 법원 간 협력 ····· 104
라. 집단소송 통지문 예시 ····· 105
마. 사형 사건 관리 ····· 106
바. 국가안보 사건 ····· 106
사. 연방소송규칙 ····· 107
아. 과학적 증거 자료 ····· 107
자. 소송상 과학기술 ····· 107
차. 제3자 소송 자금 지원 ····· 107
5. 주제별 연방사법센터 자료 목록 편찬 ····· 108
가. 연방소송규칙 관련 자료 목록 편찬 ····· 108
나. 통합 데이터서비스 ····· 108
다. 1990년 민사사법개혁법 관련 자료 목록 편찬 ····· 108
Ⅴ. 연구수행 ····· 109
1. 기본 원칙 ····· 109
2. 연구 진행 관리 ····· 109
3. 내부 회의 종류 및 진행 방식 ····· 110
가. 월간 정례회의 ····· 110
나. 프로젝트 팀 내부 검토 ····· 110
다. 프로젝트 팀 외부 검토 ····· 110
라. 센터 외부 검토 ····· 111
마. 연방사법회의 위원회에 상응하는 연방법원행정처 부서 검토 ····· 111
4. 외부자원 활용 ····· 111
Ⅵ. 연구결과물 활용 ····· 112
제4절 연방사법역사부서 ····· 114
Ⅰ. 설립 배경 ····· 115
Ⅱ. 조직 구성 ····· 115
Ⅲ. 주요 업무 ····· 116
1. 사법부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 제공 ····· 116
2. 연방법원 역사 교육 ····· 116
3. 역사 기록 보존 증진 ····· 116
Ⅳ. 주제별 자료 내용 ····· 117

1. 제3조 연방법관 인명사전 ····· 117
2. 법원 ····· 118
3. 사법부 ····· 118
가. 사법행정기관 ····· 118
나. 법원 공무원 및 직원 ····· 119
다. 연방항소법원 ····· 119
라. 연방의회와 연방법원 ····· 119
마. 행정부와 법원 ····· 119
바. 연방사법부 역사의 화두 ····· 119
4. 법원 청사 ····· 120
5. 주요 판결 ····· 120
가. 유명한 연방 재판 ····· 120
나. 연방법원을 형성한 판결 ····· 121
6. 기타 ····· 121
제5절 국제사법교류부서 ····· 122
Ⅰ. 설립 배경 ····· 123
Ⅱ. 조직 구성 ····· 124
Ⅲ. 국제 프로그램 ····· 124
1. 방문 프로그램 ····· 124
2. 방문연구원 ····· 124
3. 기타 ····· 125
Ⅳ. 연방사법부에 관한 브리핑 및 번역 자료 ····· 125

제5장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27

제1절 우리나라 사법행정기능 ····· 129
제2절 시사점 ····· 129
Ⅰ. 교육기능에 주는 시사점 ····· 129
1.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 신설 ····· 129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개선방안 ····· 130
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 130
나. 교육프로그램 평가 방식 제고 ····· 131
Ⅱ. 연구기능에 주는 시사점 ····· 132
1. 연구 인력 운영 개선방안 ····· 132
가. 개방적 연구 인력 구성 ····· 132
나. 연구의 전문성,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위한 안정적 임기 확보 방안 ····· 134
다. 실무에 도움 되는 연구를 위한 연구 인력 구성 ····· 141
2. 연구 수행 개선방안 ····· 143
가. 연구 의뢰 시 중립성 유지 ····· 143
나. 개방적인 연구 데이터 제공 ····· 145

다. 다양한 외부자원 활용 ····· 146
라. 연구 수행 관리 방식 개선을 통한 연구 전문성 확보 ····· 147
3. 연구 지원 개선방안 ····· 149
가. 해외교류담당 지원 인력 배정 ····· 149
나. 편집 및 발간 지원부서 신설 ····· 150
4. 기타 ····· 151
가. 예산의 독립 ····· 151
나. 홈페이지 콘텐츠 및 운영 개선 ····· 152
다. 법원사 연구 활성화 ····· 157
Ⅲ.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협력 방안 ····· 158
1. 연방사법센터 교육부서와 연구부서의 협력방식 ····· 158
2. 우리나라 사법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협력 방안 ····· 160
가. 직접적 협력 방안 ····· 160
나. 간접적 협력 방안 ····· 161

제6장 결론 ····· 163

153.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2-14

연구책임자 : 김효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8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Ⅰ. 연구의 범위 ····· 7
Ⅱ. 연구의 방법 ····· 9

제2장 미국법상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 ····· 11

제1절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 개관 ····· 13
Ⅰ.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및 목적 ····· 13
Ⅱ.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의 기능 ····· 14
1. 증거자료의 수집 ····· 14
2. 증거 및 정보의 보전 ····· 14
3. 쟁점의 확인과 정리 ····· 15
Ⅲ.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의 장단점 ····· 15

1.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의 장점 ····· 15
2.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의 단점 ····· 15
Ⅳ. 기일 전 증거개시제도의 연혁 ····· 16
1.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및 확대 ····· 16
2.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 및 전자적 증거개시 도입 ····· 17
제2절 기일 전 증거개시의 범위 ····· 20
Ⅰ. 서설 ····· 20
Ⅱ. 청구 또는 방어와의 관련성(relevance) ····· 21
Ⅲ. 비례성(proportionality) ····· 22
Ⅳ. 증거개시범위 제외대상 ····· 23
1. 비닉특권의 대상인 사항(previleged matters) ····· 23
가. 비닉특권의 의의 및 대상 ····· 23
나. 비닉특권의 포기(waiver) ····· 24
2. 변론준비자료(trial preparation material) ····· 25
제3절 기일 전 증거개시절차 ····· 26
Ⅰ. 서설 ····· 26
Ⅱ. 증거개시계획회합(discovery planning conference) ····· 27
Ⅲ. 최초증거공개(initial disclosure) ····· 28
Ⅳ. 증거개시 일정을 정하는 명령(scheduling order) ····· 29
Ⅴ. 당사자 주도의 증거개시절차(party-initiated discovery) ····· 30
1. 원칙: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 절차 진행 ····· 30
2. 예외: 법원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 30
Ⅵ. 전문가증언 공개(disclosure of expert testimony) ····· 31
Ⅶ. 기일 전 증거공개(pretrial disclosure) ····· 32
제4절 기일 전 증거개시방법 ····· 32
Ⅰ. 서설 ····· 32
Ⅱ. 증언녹취서(deposition) ····· 33
Ⅲ. 질문서(interrogatories) ····· 35
Ⅳ. 문서 또는 유체물 등 제출 요청 ····· 36
1. 개관 ····· 36
2. 문서에 대한 '지배(control)'의 해석 ····· 37
Ⅴ. 신체 및 정신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 39
Ⅵ. 자백 요청(requests for admission) ····· 40
제5절 기일 전 증거개시 위반에 대한 제재 ····· 41
Ⅰ. 제재의 유형 ····· 41
Ⅱ.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37조의 제재조치 ····· 41
1. 증거공개 또는 증거개시에 대한 강제명령신청 ····· 42
2.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42
3. 증거공개 또는 보완 위반의 제재 ····· 43
4. 자백 요청 불이행에 대한 제재 ····· 43

5. 증언녹취서 불출석, 질문서 또는 문서제출 요청 불응의 제재 ····· 44
가. 개관 ····· 44
나. 임원, 이사 또는 경영대리인을 통한 수범자의 확장 ····· 45
6.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 보존의무 불이행의 제재 ····· 45
7. 증거개시계획(discovery plan) 불참의 제재 ····· 46

제3장 미국의 헤이그증거협약상 기일 전 서류개시 촉탁에 대한 대응방안 ····· 47

제1절 헤이그증거협약 개관 ····· 49
Ⅰ. 헤이그증거협약의 목적 ····· 49
Ⅱ. 헤이그증거협약의 적용범위 ····· 49
1. 증거취득 또는 그 밖의 사법적 처분의 이행 ····· 49
2. 민사 또는 상사 ····· 51
Ⅲ. 헤이그증거협약의 주요내용 ····· 52
1. 촉탁서(letter of request)에 의한 중앙당국을 통한 증거조사 ····· 52
가. 개관 ····· 52
나. 촉탁서의 발송기관: 사법당국(judicial authority) ····· 52
다. 촉탁서의 수령기관: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 54
라. 촉탁서 ····· 56
마. 촉탁서에 대한 이의 ····· 58
바. 촉탁서의 집행 ····· 58
2.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 62
가. 개관 ····· 62
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 63
다.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 64
3. 간이한 증거조사 ····· 65
Ⅳ. 우리나라의 헤이그증거협약 가입시 선언 및 유보 내용 ····· 65
1. 촉탁서의 언어 선택 ····· 66
2.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접수국 또는 제3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와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거부 ····· 67
3. 중앙당국 지정, 촉탁 당국의 법관 등의 집행시 출석 허가 선언 및 승인당국의 지정 ····· 67
4. 기일 전 서류개시를 위한 촉탁서의 집행에 대한 한정 불허 ····· 67
Ⅴ. 우리나라의 헤이그증거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 관련 처리절차 ····· 68
1. 외국에 대한 증거조사 촉탁의 절차 ····· 68
2. 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 촉탁을 받은 경우의 절차 ····· 69

제2절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에 따른 선언 ····· 71
Ⅰ.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목적과 작성배경 ····· 71
1.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목적 ····· 71
2.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작성배경 ····· 72
Ⅱ.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적용범위 ····· 73

1.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제2장)에의 적용 여부 ····· 73
2. '기일 전(pre-trial)'의 의미 ····· 73
3. '서류(documents)' 외 증거방법의 개시 촉탁에 적용되는지 여부 ····· 74
4. '특정한' 서류에 대한 개시 촉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76
5. '당사자'에 대한 개시 촉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77
Ⅲ.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 유형 ····· 77
Ⅳ.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 현황 ····· 78
Ⅴ. 우리나라의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 ····· 79
1. 제한적 거부선언 ····· 79
2.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에 따른 집행거부 현황 및 절차 ····· 81
3.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 선언에 따른 집행이 문제된 실제 사건 검토 ····· 82
가.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 선언을 이유로 집행거부한 사건:
Warren Gardner, et al. v. StarKist Co. 사건 ····· 82
나.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한 사건: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v.
Ripple Labs Inc. et al 사건 ····· 85
제3절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 선언국의 촉탁 집행거부 판단기준 ····· 87
Ⅰ. 제한적 거부선언을 한 국가 ····· 87
1. 영국 ····· 87
2. 홍콩 ····· 89
3. 네덜란드 ····· 90
4. 스위스 ····· 91
Ⅱ. 전면적 거부선언을 한 국가 ····· 92
1. 독일 ····· 92
2. 호주 ····· 93
3. 이탈리아 ····· 93
Ⅲ. 유럽연합 ····· 94
제4절 우리나라의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에 따른
촉탁 집행거부 판단기준 정립 ····· 95
Ⅰ. 헤이그증거협약의 대상인 '증거(evidence)'의 의미 ····· 95
Ⅱ.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의 선언으로 인한 집행거부 범위 ····· 96
1. 서류의 점유, 보관 등에 관한 진술 ····· 96
2. 촉탁서에서 특정되지 아니한 서류 ····· 96
Ⅲ. 헤이그증거협약 제9조에 따른 집행거부 가부(可否) ····· 97
Ⅳ. 촉탁의 범위 감축 가부(可否) ····· 98

제4장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근거한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으로 인한 사법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 101

제1절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 ····· 103

Ⅰ. 지리적 의제(geographic fiction) 이론에 근거한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적용 ····· 103
Ⅱ. 헤이그증거협약의 우선적용 원칙(first-attempt rule) 부정 ····· 105
제2절 미국 법원의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외국의 대응 ····· 107
Ⅰ. 각국의 기본적 입장 ····· 107
Ⅱ. 각국의 구체적 대응방안 ····· 108
1.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 108
가. 프랑스의 봉쇄법 ····· 109
나. 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117
2.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injunction) ····· 125
제3절 미국의 기일 전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125
Ⅰ. 대항입법(blocking statutes)을 마련하는 방안 ····· 125
Ⅱ. 대한민국 법원의 자료제출금지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신청하는 방안 ····· 127
1. 대한민국 법원의 자료제출금지가처분 ····· 127
2. 대한민국 법원의 자료제출금지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한
미국 법원에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신청 ····· 129
Ⅲ.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방안 ····· 130

제5장 결론 ····· 133

154.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2-15

연구책임자 : 박기쁨(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8월 22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Ⅰ. 성폭력 범죄와 국민참여재판 ····· 3
Ⅱ.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ing) 탈피와 배심원 지침의 필요성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6
1.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ing)에서의 탈피와 배심원 지침의 필요성 ····· 6
2. 성 고정관념 탈피와 여성차별철폐협약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Ⅰ. 연구의 내용 ····· 11
Ⅱ. 연구의 방법 ····· 12

제2장 성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 성폭력 범죄 ····· 15

제1절 성 고정관념과 강간통념(Rape Myth) 등 ····· 17
Ⅰ. 성 고정관념 의의 등 ····· 17
1. 성 고정관념의 의의 및 원인 ····· 17
2. 성 고정관념의 내용 ····· 22

Ⅱ. 강간통념과 성 고정관념, 성폭력 범죄 ····· 24
1. 강간통념 ····· 24
2. 성 고정관념과 강간통념 ····· 28
3. 성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 성폭력 범죄 ····· 29
Ⅲ. 피해자다움과 성폭력 범죄 ····· 31
제2절 현실에서의 성 고정관념의 발현과 판결 ····· 35
Ⅰ. 대중매체에서의 성폭력 등과 관련한 여러 고정관념 ····· 35
1. TV 또는 신문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 내지 강간통념 ····· 35
2. 유튜브 광고 및 섬네일 등에서의 성 고정관념 ····· 40
Ⅱ. 성폭력 범죄 판결문과 성 고정관념 ····· 44
1. 성 고정관념 등이 나타난 판결 ····· 44
2.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판결 ····· 48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Karen Tayag Vertido v. Philippines 사건 (CEDAW/C/46/D/18/2008) 관련 판단 ····· 52

제3장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성폭력 범죄 ····· 55

제1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성폭력 범죄의 특징 ····· 57
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식과 실제 ····· 57
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실제 ····· 67
1. 일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실제 ····· 67
2.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인식과 실제 ····· 71
제2절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 77
Ⅰ. 성폭력 범죄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 ····· 77
1.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 성폭력과 관련한 인식 및 남녀의 차이 ····· 77
2.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한 연도별 차이 ····· 79
Ⅱ.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 82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정신적 고통 ····· 82
2.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식 등 ····· 85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성폭력 범죄에서의 국민참여재판 ····· 89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 91
Ⅰ.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및 절차 등 ····· 91
1.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및 대상 ····· 91
2.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92
Ⅱ. 국민참여재판법에 대한 제21대 국회 개정 입법안 ····· 96
1.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안 정리 ····· 96
2. 각 개정 입법안 검토 ····· 98

제2절 성폭력 범죄에서의 국민참여재판 ····· 104
Ⅰ. 성폭력 범죄사건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평결 비율 ····· 104
Ⅱ. 배심원의 판단과 강간통념 및 배심원 교육 ····· 105
1. 강간통념과 배심원의 판단 ····· 105
2. 배심원 교육과 배심원의 판단 ····· 110
Ⅲ.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사건 정리 및 분석 ····· 112

제5장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 범죄 관련 배심원 지침 ····· 157

제1절 미국의 성폭력 범죄 관련 배심원 지침 ····· 159
Ⅰ. 캘리포니아주의 형사배심원 지침 ····· 159
1. 성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 강간 [1000. 폭력, 공포, 위협에 의한 (배우자) 강간] ····· 159
2. 증거 ····· 174
Ⅱ. 캘리포니아주 재판에서의 실제 활용 ····· 187
Ⅲ.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 등 관련 배심원 지침 ····· 189
1. 캘리포니아주의 배심원 지침 ····· 189
2. 뉴욕주의 배심원 지침 ····· 190
제2절 영국의 성폭력 범죄 관련 배심원 지침
– The Crown Court Compendium Part Ⅰ ····· 192
Ⅰ. 성폭력 범죄 – 암묵적 가정(assumptions)의 위험 ····· 193
Ⅱ. 성폭력 범죄 – 아이들에 대한 그루밍(grooming) ····· 217
Ⅲ. 성폭력 범죄 – 동의 능력과 자발적 음주 ····· 220

제6장 성폭력 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 ····· 231

제1절 성폭력 범죄 관련 배심원 지침의 제공 시기 등 ····· 233
Ⅰ. 배심원 지침의 방식 ····· 234
Ⅱ. 배심원 지침의 제공 시기 등 ····· 234
제2절 성폭력 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의 내용 ····· 237
1. 성 고정관념 등의 배제와 관련하여 배심원에게 당부할 일반적인 내용 ····· 237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부부 등인 경우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 238
3. 지연고소의 문제 ····· 238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 등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 240
5.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거나 유흥접객원 등인 경우 ····· 241
6. 범행 당시 일부 성적 행위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241
7. 피해자가 피고인과 클럽 등에서 만났다거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 242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거나 호텔 등에 함께 간 경우 ····· 243

9. 피해자의 저항 등이 문제되는 경우 ····· 244
10. 피해자의 고통의 호소 또는 결여 ····· 245
1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관련 ····· 246
12.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하게 행동한 경우 등 ····· 247
13. 피고인이 기혼 등으로 타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248

제7장 결론 ····· 251

155.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2-16

연구책임자 :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0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5
1. 사회변동과 사회보장 ····· 5
2. 법원과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 증대 ····· 6
Ⅱ. 연구의 필요성 ····· 7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9
Ⅰ. 연구의 대상 ····· 9
Ⅱ. 연구의 방법 ····· 10
Ⅲ. 연구의 구성 ····· 13

제2장 사회보장법 체계와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 ····· 15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및 기본체계 ····· 17
Ⅰ. 사회보장법의 개념 ····· 17
Ⅱ. 사회보장법의 기본체계 ····· 19
1. 사회보험법체계 ····· 19
2. 공공부조법체계 ····· 20
3. 사회보상법체계 ····· 21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 22
제2절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 ····· 23
Ⅰ.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 23
Ⅱ.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행정상 불복절차 ····· 24
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절차와의 관계 ····· 24
2.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이의신청 등의 기간과 심리기간 ····· 26
제3절 소결 ····· 27

제3장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 및 담당기관 ····· 29

제1절 행정을 통한 구제절차 ····· 31
Ⅰ.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복절차 ····· 31
1. 이의신청 ····· 31
2. 심판청구 ····· 32
3. 행정소송 ····· 32
4. 이용현황 ····· 32
Ⅱ. 국민연금법상 불복절차 ····· 35
1. 심사청구 ····· 35
2. 재심사청구 ····· 35
3. 이용현황 ····· 3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복절차 ····· 38
1. 심사청구 ····· 38
2. 재심사청구 ····· 39
3. 이용현황 ····· 39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불복절차 ····· 42
1. 1차 이의신청 ····· 42
2. 2차 이의신청 ····· 43
3. 이용현황 ····· 43
Ⅴ. 국가유공자법상 불복절차 ····· 45
1. 이의신청 ····· 45
2. 행정심판 ····· 46
3. 이용현황 ····· 46
Ⅵ. 장애인복지법상 불복절차 ····· 47
1. 이의신청 ····· 47
2. 요약 ····· 47
Ⅶ. 소결 ····· 47
1. 용어의 통일 및 체계화 ····· 48
2. 창구 일원화 또는 사건이송체계 확립 ····· 48
3. 동일 분야 사건에 대한 종합적 접근 ····· 49
4. 세분화 및 체계화된 통계 산출 ····· 49

5. 이의신청 제도 재고 ····· 51
6.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 52
제2절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 53
Ⅰ. 사회보장소송의 의미 및 종류 ····· 53
1. 사회보장소송의 의미 ····· 53
2. 사회보장소송의 종류 ····· 53
가. 사회보험 관련 소송 ····· 53
나. 공공부조 관련 소송 ····· 53
다. 사회보상 관련 소송 ····· 54
라. 사회복지 관련 소송 ····· 54
Ⅱ. 권리구제 관할법원 ····· 55
1.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55
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55
나. 조직 및 관할사건 ····· 55
다. 소송절차 관련 사항 ····· 57
라. 심리방식: 변론주의 ····· 61
마. 의무이행소송제도 미도입 ····· 62
바. 가구제 제도: 집행정지, 가처분 ····· 62
사. 행정소송으로 다뤄지는 사회보장사건의 양적 현황 ····· 63
2.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66
가. 사회보험법 영역에서의 민사소송 ····· 66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민사소송 ····· 67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 67
가. 법적 근거 및 현황 ····· 67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를 명한 법원의 결정 ····· 69
제3절 그 밖의 국내 구제절차 ····· 71
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 71
1.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되는 준사법적 권한 ····· 71
2. 법원의 재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연계 방안 ····· 72
Ⅱ.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통한 권리구제 ····· 78
1. 내용 및 법적 근거 ····· 78
2. 사례 및 개선조치 ····· 80
제4절 국제기구를 통한 구제절차 ····· 83
Ⅰ. 국제인권조약의 감독기구에 대한 개인진정 ····· 83
Ⅱ.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단체의 진정제기 ····· 84
제5절 소결 ····· 86

제4장 외국의 사회보장사건 해결제도 ····· 89

제1절 프랑스 ····· 92

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 92
Ⅱ. 권리구제 관할법원 ····· 93
1. 일반법원에서의 권리구제 ····· 93
가. 사전적 심판절차 ····· 95
나. 관할사건 ····· 95
다. 조직과 심급 ····· 98
라. 소송절차 관련 사항 ····· 99
2. 행정법원에서의 권리구제 ····· 104
3. 사건통계 ····· 105
Ⅲ.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09
1. 법률구조제도 ····· 109
가. 범위 ····· 109
나. 소송구조신청요건 ····· 109
다. 신청, 결정 및 불복 ····· 110
라. 소송구조결정의 효과 ····· 110
마. 비용의 회수 ····· 110
2.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11
제2절 독일 ····· 112
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 112
Ⅱ. 권리구제 관할법원 ····· 115
1. 사회법원에서의 권리구제 ····· 116
가.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16
나. 관할 ····· 116
다. 조직과 심급 ····· 118
라. 소송유형 ····· 120
마. 소송절차 관련 사항 ····· 120
바. 사건통계 ····· 126
2. 행정법원에서의 권리구제 ····· 126
가. 관할 ····· 126
나. 소송비용 ····· 127
Ⅲ.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28
1. 법률구조제도 ····· 128
2.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31
제3절 영국 ····· 132
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 132
Ⅱ. 권리구제 관할기관 ····· 134
1. 행정심판소에서의 권리구제 ····· 135
가. 사전절차: 이의신청 ····· 135
나. 조직, 심급 및 관할 ····· 136
다. 심판청구절차 관련 사항 ····· 143

라. 사건통계 ····· 147
2. 사법심사에 의한 권리구제 ····· 149
가. 프로토콜 ····· 149
나. 법원의 허가 ····· 150
다. 사건통계 ····· 152
Ⅲ.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54
1. 법률구조제도 ····· 154
2.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55
제4절 미국 ····· 156
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 156
Ⅱ. 권리구제 관할기관 ····· 161
1. 제소 전 단계 ····· 161
가. 이의신청: 사회보장지역사무소, 장애심사원 ····· 161
나. 청문절차: 행정법판사 ····· 163
다. 불복심사위원회 ····· 164
2.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제기 단계 ····· 165
가. 사법심사의 범위와 관할 ····· 165
나. 신속절차 ····· 168
다. 일반절차 ····· 168
3. 비용 관련 ····· 169
4. 통계 ····· 170
Ⅲ. 법률구조제도 및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71
1. 법률구조제도 ····· 171
2. 사법접근성 지원체계 ····· 173
제5절 소결 ····· 174

제5장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개선방안 ····· 175

제1절 제도의 도입 관련 사항 ····· 177
Ⅰ.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 177
Ⅱ. 가처분제도 도입 ····· 180
Ⅲ. 행정소송법상 화해권고제도 도입 ····· 181
Ⅳ. 참심제 도입 ····· 184
Ⅴ. 소송형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 ····· 188
제2절 제도의 보완 관련 사항 ····· 190
Ⅰ.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 개정 ····· 190
Ⅱ. 소제기 방식 및 관할법원 ····· 191
Ⅲ. 제소기간 ····· 192
1.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193
2. 심판청구 기관을 잘못 인지하여 결과적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194
3. 종합 ····· 194
Ⅳ. 소송대리 ····· 195
1. 사회보장사건에서 비변호사대리 허용 필요성 여부 ····· 195
2. 비변호사대리에 관한 현행법체계 ····· 196
가. 행정적 구제절차상 비변호사의 수급자 대리 ····· 196
나. 법원에서의 절차상 비변호사의 대리 ····· 197
3. 종합 ····· 199
Ⅴ. 소송비용 ····· 200
제3절 법원 조직 및 행정 관련 사항 ····· 205
Ⅰ. 사회보장재판부 단계적 설치 및 관련 연수과정 신설 ····· 205
1. 별도의 사회보장소송절차를 적용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 205
2. 사회보장소송 관련 연수 등 신설 ····· 207
Ⅱ. 사회보장사건 관련 법원의 세분화된 통계 산출 ····· 208
Ⅲ. 사법접근센터 확충 ····· 209

제6장 결론 ····· 213

156.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2-17

연구책임자 :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0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Ⅰ. 연구의 내용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개관 ····· 7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 9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개관 ····· 12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 12
1. 개요 ····· 12
2. 독립규제위원회 ····· 13
3. 준사법기관 ····· 14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소관 사무 등 ····· 17
1. 위원 ····· 17
2. 사무처 ····· 18
3. 소관 사무 ····· 19
4. 위원회 회의 ····· 20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22
Ⅰ. 개요 ····· 22
Ⅱ. 심사 ····· 23
Ⅲ. 심의 ····· 25
1. 심의 절차의 구조 ····· 25
2. 심의의 사전 절차 ····· 26
3. 심의의 진행 ····· 27
Ⅳ. 의결 ····· 28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행정적 제재 ····· 30
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30
Ⅱ. 기업결합의 제한 ····· 32
Ⅲ. 경제력 집중의 억제 ····· 34
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37
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38
Ⅵ.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 40
Ⅶ.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41
제5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43
Ⅰ. 이의신청의 성격 ····· 43
Ⅱ. 이의신청의 대상 ····· 47
Ⅲ.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 ····· 47
Ⅳ. 집행정지 ····· 48

제3장 공정거래 행정소송에 대한 개관과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 ····· 49

제1절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의의와 특징 ····· 51
제2절 공정거래분야에서의 행정소송의 역할과 쟁점 ····· 54
제3절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대상 ····· 54
Ⅰ. 시정조치 ····· 54
Ⅱ. 과징금 부과 ····· 56
Ⅲ. 경고 조치 ····· 59
Ⅳ. 이행강제금 부과 ····· 62
Ⅴ.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 관련 처분 ····· 63
제4절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 ····· 64
Ⅰ. 공정거래법상 관할 규정의 입법 연혁과 현황 ····· 64
Ⅱ. 주요 외국에서의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 ····· 67
1. 미국 ····· 67
2. 독일 ····· 72
3. 일본 ····· 74
4. 싱가포르 ····· 78
5. 러시아 ····· 80
6. 인도 ····· 81

7. 네덜란드 ····· 82
8. 기타 국가의 심급 구조 ····· 82
9. 소결 ····· 83

제4장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 유지와 3심제 전환에 대한 체계적 검토 ····· 85

제1절 심급 구조 전환 논의에 관한 개관 ····· 87
Ⅰ. 현행 심급 구조와 관련한 일반적 논의 ····· 87
Ⅱ.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 ····· 89
Ⅲ. 국회에서의 논의 ····· 92
Ⅳ. 관련 단체의 의견 ····· 93
제2절 2심제 유지를 위한 주요 논거 ····· 95
Ⅰ.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고도의 전문성 필요 ····· 95
Ⅱ.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 105
Ⅲ.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강화 ····· 106
Ⅳ. 기타 논거 ····· 119
제3절 3심제 전환을 위한 주요 논거 ····· 120
Ⅰ.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 120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 121
Ⅲ.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준사법성 문제 ····· 126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 127
Ⅴ.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의 형평의 문제 ····· 135
Ⅵ. 기타 논거 ····· 136
제4절 소결 ····· 138

제5장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를 위한 개선 방안 및 3심제 전환과 관련한 사법정책적 논의 ····· 141

제1절 2심제 유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43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143
Ⅱ. 심사와 심결의 분리를 통한 공정성 강화 ····· 149
Ⅲ.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의 실질적 보장 ····· 152
Ⅳ. 소수의견 부기의 활성화 ····· 159
제2절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3심제 전환과 관련한 사법정책적 논의 ····· 160
Ⅰ. 공정거래 행정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 ····· 160
Ⅱ. 3심제 전환과 관련한 법원의 역량과 방향 ····· 163

제6장 결론 ····· 169

157.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2-18

연구책임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1월 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 5

제2장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 7

제1절 들어가며 ····· 9
제2절 싱가포르 사법부의 역사 ····· 10
Ⅰ. 대법원 ····· 10
1. 영국 식민지 시대 ····· 10
2. 일본의 강점 시기 ····· 11
3. 일본 강점 시기 이후 독립 전 ····· 12
4. 독립 이후 ····· 12
Ⅱ. 하급법원 ····· 13
1. 하급법원법의 제정 ····· 13
2. 명칭의 변경 및 청사 이전 ····· 14
Ⅲ. 가정사법법원 ····· 15
1. 가정법원의 설립 ····· 15
2. 가정사법법원의 설립 ····· 15
제3절 싱가포르 사법부의 구조 ····· 17

Ⅰ. 개요 ····· 17
Ⅱ. 대법원(Supreme Court) ····· 18
1. 개요 ····· 18
2. 인적구성 ····· 22
3. 법원의 구성 ····· 29
Ⅲ. 하급법원(State Courts) ····· 35
1. 개요 ····· 35
2. 인적구성 ····· 37
3. 법원의 구성 ····· 40
Ⅳ. 가정사법법원(Family Justice Courts) ····· 47
1. 개요 ····· 47
2. 인적 구성 ····· 49
3. 법원의 구성 ····· 50
제4절 소결 ····· 53

제3장 싱가포르의 사법개혁 ····· 55

제1절 들어가며 ····· 57
제2절 문제 상황 및 사법개혁의 첫 번째 시도 ····· 58
Ⅰ. 문제 상황 ····· 58
Ⅱ. 사법개혁의 첫 번째 시도 ····· 59
1. 사법개혁의 첫 번째 시도와 그 조치 ····· 59
2. 한계 ····· 60
3.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 62
제3절 사법개혁의 두 번째 시도 ····· 64
Ⅰ. 사법개혁의 프레임 재정립 ····· 64
1. 전체적 접근방식의 채택 ····· 64
2. 미래 청사진의 제시 ····· 65
3. 장애 요소의 명확화 ····· 66
Ⅱ. 사법개혁의 핵심전략 ····· 71
1. 핵심 목표의 설정 ····· 71
2. 리더십의 활용 ····· 72
3. 사법 모델의 재설정과 대안의 확대 ····· 77
4. 법원에의 접근성 증대 ····· 85
5. 사법행정의 개선 ····· 91
6. 인적자원의 질 제고 ····· 95
7. 성과 및 결과 중심의 운영 ····· 100
8. 기술적 요소의 적극 활용 ····· 103
9. 다른 기관과의 연계(Building Bridges) ····· 107
Ⅲ. 단계적 계획 ····· 111

1. 1992-1993년의 발전계획 ····· 111
2. 1993-1994년의 발전계획 ····· 112
3. 1994-1995년의 발전계획 ····· 113
4. 1995-1996년의 발전계획 ····· 114
5. 1996-1997년의 발전계획 ····· 115
6. 1997-1998년의 발전계획 ····· 116
7. 1998-1999년의 발전계획 ····· 117
8. 1999-2000년의 발전계획 ····· 118
9. 2000-2001년의 발전계획 ····· 120
제4절 사법개혁 이후 ····· 123
Ⅰ. 사법개혁 이후 사법부 발전 단계적 계획 ····· 123
1. 하급법원의 단계적 발전계획 ····· 123
2. 가정사법법원의 단계적 발전계획 ····· 131
Ⅱ. EFS에 대한 평가 및 eLitigation으로의 발전 ····· 136
1. EFS에 대한 평가 ····· 136
2. eLitigation ····· 137
Ⅲ. 향후 과제 ····· 142
1. eLitigation의 현대화 ····· 142
2. 장기실시과제 ····· 143
3.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 146
제5절 소결 ····· 147

제4장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이 주는 시사점 ····· 151

제1절 들어가며 ····· 153
제2절 싱가포르 사법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 154
Ⅰ. 사법부 주도의 일관된 개혁 ····· 154
1. 사법부 주도로 이루어진 일관된 개혁의 원인 ····· 154
2. 실용적 관점에서의 출발 ····· 155
3. 사회적 배경의 특수성 ····· 155
Ⅱ. 인적자원의 충원 및 효율적인 관리 ····· 156
1. 법관 및 사법부 구성원의 충원 ····· 156
2. 법관 및 사법부 구성원의 처우 개선 ····· 157
Ⅲ. 사법 역할의 재설정 및 법원의 재조직 ····· 157
1. 사법 역할의 재설정 ····· 157
2. 사법 역할의 재설정에 따른 법원의 재조직화 ····· 158
Ⅳ. 법원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 158
1. 개관 ····· 158
2. 국제중재와 관련한 싱가포르 사법부의 태도 ····· 159
3. 국제상사법원과 관련한 사법부의 태도 ····· 160

4. 분쟁해결 생태계 형성 ····· 160
Ⅴ. 성과측정시스템의 활용 ····· 161
1. 균형성과평가제도의 의의 ····· 161
2. 공공기관과 균형성과평가제도 ····· 163
3. 사법부에의 도입 ····· 165
4. 우리 사법부에의 적용 가능성 ····· 167
Ⅵ. 전자소송 관련 시사점 ····· 167
1. XML의 의의 ····· 168
2. 전자소송에서 XML 포맷이 가지는 장점 ····· 168
3. 비실명화와 XML ····· 169
제3절 소결 ····· 170

제5장 결론 ····· 171

158.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2-19

연구책임자 : 박미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이학구(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2년 11월 1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현행 소송구조제도 검토 ····· 7

제1절 법률구조제도 개요 ····· 9
Ⅰ. 법률구조의 목적과 정의 ····· 9
Ⅱ. 법률구조제도의 종류 ····· 9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 ····· 10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률구조제도 ····· 10
가. 국선변호인제도 ····· 10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 11
3.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 ····· 11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 12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2

4. 프로보노 활동 ····· 13
제2절 소송구조의 의의와 변천 과정 ····· 14
Ⅰ. 의의 ····· 14
Ⅱ. 소송구조제도의 변천 과정 ····· 15
1. 제정 민사소송법 ····· 15
2.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 16
3.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 17
제3절 소송구조제도 개관 ····· 19
Ⅰ. 소송구조의 신청 ····· 19
1. 신청인 및 신청 방식 ····· 19
2. 관할법원 ····· 20
Ⅱ. 소송구조의 요건 ····· 21
1. 개설 ····· 21
2. 무자력 요건 ····· 22
가. 의의 ····· 22
나.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비용 ····· 23
다. 자금능력에 대한 평가 ····· 24
라. 구체적 판단 기준 ····· 24
3.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 26
Ⅲ. 소송구조의 재판 ····· 27
1. 소송구조결정 ····· 27
2. 신청 기각결정 ····· 28
3. 불복 ····· 29
Ⅳ. 소송구조결정의 효력 ····· 29
1. 객관적 범위 ····· 29
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제1호) ····· 29
나.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제2호) ····· 30
다.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제3호) ····· 31
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제4호) ····· 31
2. 주관적 범위 ····· 31
3. 시간적 범위 ····· 32
4. 절차적 범위 ····· 32
Ⅴ. 변호사비용 구조결정 시 선임절차 및 보수 ····· 33
1. 변호사 선임절차 ····· 33
가. 선임 안내 및 지정 ····· 33
나. 선임절차 ····· 34
2. 변호사보수의 지급 또는 청구 ····· 34
가. 국가의 지급 ····· 34
나. 소송구조가 취소된 경우 ····· 35
다. 상대방에 대한 추심 ····· 35

Ⅵ. 소송구조의 취소 ····· 36
1. 취소의 사유와 시기 ····· 36
2. 신청과 재판 ····· 37
Ⅶ. 비용의 납입 및 추심 ····· 37
1. 납입결정 ····· 37
가. 소송승계에 따른 납입결정 ····· 37
나. 소송구조결정의 취소로 인한 납입결정 ····· 38
2. 추심결정 ····· 38
3. 국가채권의 관리 ····· 39
제4절 소송구조제도의 이용 현황 ····· 41
Ⅰ. 소송구조사건의 현황 ····· 41
Ⅱ. 소송구조 예산 ····· 43

제3장 주요 국가들의 소송구조제도 ····· 47

제1절 세계의 소송구조 역사 ····· 49
Ⅰ. 자선으로서의 구조제도 ····· 49
Ⅱ. 사회복지로서의 구조제도 ····· 49
1. 개업변호사방식 ····· 50
2. 전담변호사방식 ····· 50
3. 혼합형방식 ····· 51
4. 입법례 ····· 51
제2절 독일 ····· 52
Ⅰ. 개관 ····· 52
Ⅱ. 소송구조제도의 개요 ····· 53
1. 소송구조의 요건 ····· 53
가. 주관적 요건 ····· 53
나. 객관적 요건 ····· 57
2. 소송구조의 재판절차 ····· 57
가. 상대방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57
나. 관할 및 심사 범위 ····· 58
다. 소송구조신청의 일부 승인 ····· 59
3. 소송구조의 효과 ····· 59
가. 당사자 및 상대방에 대한 효과 ····· 59
나. 변호사 선임 지원 ····· 60
4. 소송구조결정의 내용 변경 및 취소 ····· 61
가. 분할상환금 납부 일시 중지 및 소송구조 내용 변경 ····· 61
나. 소송구조 승인의 취소 ····· 62
5. 불복절차 ····· 63
가. 당사자 등의 불복 ····· 63

나. 국고의 불복 ····· 63
6. 소송구조 현황 ····· 64
가. 소송구조사건 현황 ····· 64
나. 통계 분석 ····· 65
Ⅲ. 시사점 ····· 66
제3절 미국 ····· 68
Ⅰ. 개관 ····· 68
Ⅱ. 소송구조제도 ····· 69
1. 변호사비용 소송구조 ····· 69
가. 연혁 ····· 69
나. (법률구조공사) 변호사비용 소송구조의 요건 ····· 71
다. 소송구조의 방법 ····· 73
2.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구조 ····· 74
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 ····· 74
나. 소송구조의 요건 ····· 74
다. 본인소송 당사자 지원 ····· 76
3. 소송구조의 현황 ····· 77
가. 주 사법접근위원회 ····· 77
나. 법률구조공사 주도의 소송구조 현황 ····· 77
Ⅲ. 시사점 ····· 79
제4절 프랑스 ····· 80
Ⅰ. 개관 ····· 80
Ⅱ. 소송구조제도 ····· 82
1. 소송구조의 대상과 요건 ····· 82
가. 구조대상 ····· 82
나. 대상사건 ····· 82
다. 요건 ····· 83
2. 소송구조 재판절차 ····· 85
가. 당사자의 신청 ····· 85
나. 심리와 결정 ····· 86
3. 소송구조의 효과 ····· 87
가. 소송비용의 면제 ····· 87
나. 변호사보수의 지원 ····· 87
4. 결정의 변경과 취소 ····· 87
가. 결정의 변경 ····· 87
나. 결정의 취소 ····· 88
5. 불복절차 ····· 88
6. 소송비용의 회수 ····· 89
Ⅲ. 시사점 ····· 89
제5절 일본 ····· 91

Ⅰ. 개관 ····· 91
Ⅱ. 소송구조제도 ····· 92
1. 요건 ····· 92
가. 대상 ····· 92
나. 무자력 요건 ····· 93
다. 승소의 가능성 요건 ····· 102
2. 재판절차 ····· 103
가. 당사자의 신청 ····· 103
나. 심리와 결정 ····· 103
3. 효과 ····· 105
가. 구조결정의 효과 ····· 105
나. 효력발생시기 ····· 106
다. 물적 범위 ····· 107
라. 인적 범위 ····· 109
4. 결정의 취소 ····· 110
가. 자력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 111
나. 자력을 회복한 경우 ····· 111
5. 유예비용의 추심 ····· 112
가. 유예한 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추심 ····· 112
나.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 등의 추심 ····· 112
6. 불복절차 ····· 113
가. 신청방법 ····· 113
나. 구조부여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신청 ····· 113
7. 일본사법지원센터 ····· 114
Ⅲ. 시사점 ····· 115

제4장 소송구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7

제1절 규정 형식상의 문제 ····· 119
Ⅰ. 현행 법 규정 ····· 119
Ⅱ. 문제되는 예규상의 규정 ····· 120
1.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규정 ····· 120
2. 소송구조요건의 심사규정 ····· 121
3. 소송구조변호사의 보수규정 ····· 122
Ⅲ. 개선방안 ····· 123
제2절 예산상의 문제 ····· 124
Ⅰ. 예산 배정 및 예산의 확보 ····· 125
1. 서언 ····· 125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의 예산 배정 ····· 126
가. 공탁출연금 ····· 126

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126
다. 기금의 예산 배정 현황 ····· 127
라.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사업의 주요 세부사업 ····· 128
3. 기금 예산 배정의 문제점 ····· 130
가. 불안정적인 기금 ····· 130
나. 다른 사업과의 경쟁구조 ····· 131
다.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의 장애 요소 ····· 133
4. 개선방안 ····· 134
가. 일반회계로의 편성 운영 ····· 134
나. 법률복지특별회계의 설치 ····· 137
다. 등기특별회계의 활용 ····· 139
라. 기타 방안 ····· 142
Ⅱ. 예산의 집행 ····· 143
1. 예산 및 집행 현황 ····· 143
2. 소송구조 예산 집행률 저조의 원인 ····· 144
3. 개선방안 ····· 149
가. 소송구조결정의 독립 ····· 149
나.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 ····· 150
제3절 구조의 요건 및 효력 상의 문제 ····· 152
Ⅰ. 소송구조의 요건 검토 ····· 152
1. 무자력 요건 ····· 152
가. 무자력 요건의 구체화 ····· 153
나. 사건에 따른 무자력 기준의 다양화 ····· 156
다. 무자력 판단을 위한 신뢰기관의 협조 ····· 163
2. 승소가능성 요건 ····· 165
가. 소송구조요건으로서의 승소가능성 ····· 165
나. 승소가능성 요건 완화의 필요성 ····· 170
다. 승소가능성 요건의 선별적 적용 ····· 170
Ⅱ. 소송구조의 범위 확대 ····· 173
1. 절차상 범위 확대 ····· 173
가. 조정절차 ····· 174
나. 비송절차 ····· 175
2. 소송비용 범위의 확대 ····· 176
가. 소송비용 ····· 176
나. 법률상담비용 ····· 177
다. 법무사 서기료 ····· 180
Ⅲ. 소송구조 효과의 다양화 ····· 182
1. 현행 규정 ····· 182
2. 다양화의 필요성 ····· 182
가. 소송구조 관점의 변화 ····· 183

나. 소송구조 효과 관련 입법례 ····· 184
3. 소송구조 유예비용의 면제 검토 ····· 185
가. 헌법재판소의 견해 ····· 185
나. 소송구조비용의 면제 ····· 187
Ⅳ. 소송구조 상대방의 보호 ····· 188
1. 필요성 ····· 188
2. 독일의 입법례 ····· 189
3. 시사점 ····· 190
제4절 운영 방식상의 문제 ····· 191
Ⅰ.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의 활성화 ····· 191
1. 필요성 ····· 191
2. 현황과 한계 ····· 19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97
Ⅱ. 지정대리인제도의 확대와 다양화 ····· 199
1. 지정변호사제도의 확대 ····· 199
가. 지정변호사제도 ····· 199
나. 현황 ····· 201
다. 지정변호사제도의 확대 필요성 ····· 202
라. 개선방안 ····· 202
2. 법무사의 지정대리인 추가 ····· 203
가. 개인파산면책·회생사건 소송구조의 현황 ····· 203
나. 법무사법 개정 및 공익적 활동 ····· 205
다. 개인파산·회생사건의 법무사 지정대리인 추가 필요성 ····· 206
Ⅲ. 본안의 예단 방지 및 심사의 통일성 방안 ····· 208
1. 전담재판부 지정 확대 ····· 208
가. 전담재판부 지정 현황 ····· 208
나. 전담재판부 지정 확대의 필요성 ····· 209
2. 독립된 기관의 심사 방안 ····· 210
가. 프랑스의 입법례 ····· 210
나. 독립된 심사기관의 설치 ····· 212
3. 사법보좌관의 심사 ····· 214
가. 승소가능성 요건의 제외 시 ····· 214
나. 승소가능성 요건의 통일적 심사기준 마련 시 ····· 215
다. 추심업무 관리 ····· 216
Ⅳ. 변호사보수의 규범화와 현실화 ····· 217
1. 개관 ····· 217
2. 소송구조변호사 보수의 문제점 ····· 218
가. 규범상의 문제 ····· 218
나. 소송구조변호사 보수의 적절성 ····· 220
다. 소송구조변호사 추가보수의 문제 ····· 227

Ⅴ. 소송구조의 남용 방지 대책 ····· 229
1. 소송구조결정의 불복 제한 ····· 229
가.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229
나. 개선방안 ····· 230
2.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 233
가.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233
나. 허위 서류제출의 제재 ····· 234
Ⅵ. 소송구조비용 국가채권의 관리방안 개선 ····· 236
1. 납입유예된 소송구조비용 처리의 문제점 ····· 236
2. 국가채권 회수 관리의 문제점 ····· 237
3. 개선방안 ····· 239
가. 사법보좌관을 통한 관리방안 ····· 239
나. 분할상환금제도의 도입 ····· 241
다. 납부유예제도 활용 ····· 241
Ⅶ. 법률구조 업무의 연계 방안 ····· 242
1. 대한법률구조공단 ····· 243
2. 법률구조 업무의 방향 ····· 243
가. 통합하는 방안 ····· 243
나. 이원적 체제 유지 방안 ····· 245
3. 연계 운영의 방향 모색 ····· 245

제5장 결론 ····· 247

15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연구총서 현안보고서 2022-02

연구책임자 : 정현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2월 12일 발행

I. 서론 ····· 1
1. 현안 검토 목적 ····· 1
2.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 1
가. 보고서의 구성 ····· 1
나. 연구방법 ····· 2

II.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 3
가. 입법목적 ····· 3
나. 입법과정 ····· 5
2. 외국 입법례 ····· 7
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 ····· 7
나. 호주의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8
다. 캐나다의 웨스트레이법 ····· 9
라. 각국 입법의 비교 ····· 1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
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11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13
다.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 13

4. 정의 ····· 14
가. 중대재해 ····· 14
나. 중대산업재해 ····· 15
1) 개요 ····· 15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6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19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20
다. 중대시민재해 ····· 22
1)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22
2)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 22
3)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의 범위 ····· 26
4) 재해의 발생 ····· 27
5) 중대산업재해와의 비교 ····· 28
라. 종사자 ····· 2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29
2)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30
3)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 33
마. 사업주 ····· 34
1) 개념 ····· 34
2) 다른 법률의 “사업주”와 개념 비교 ····· 35
3) 입법론적 문제 ····· 36
바. 경영책임자등 ····· 36
1) 개요 ····· 37
2)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등” ····· 38
3)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 ····· 45
4) 학교의 경우 ····· 46

III. 중대산업재해 ····· 50

1. 적용범위 ····· 50
가. 의의 ····· 50
나. 적용대상 ····· 50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50
2)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적용 여부 ····· 51
3) 해외 사업장 적용 여부 ····· 52
다. 상시 근로자 기준 ····· 52
1)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52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54

2.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56

가. 개요 ····· 56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58
1) 개요 ····· 58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61
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62
4)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66
5)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72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75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79
8)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 82
9)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85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 87
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90
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92
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4
1) 개요 ····· 95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97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100

3.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101
1) 의의 ····· 102
2) 주요 개념 ····· 102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108
가. 개요 ····· 109
나. 법적 성격 ····· 109
다. 범죄의 구성요건 ····· 111
1) 개요 ····· 111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111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112
4) 인과관계 ····· 113
5) 주관적 구성요건 ····· 119
라. 죄명 및 죄수 ····· 122
1) 죄명 ····· 122
2) 죄수 ····· 122
마. 가중처벌 ····· 129
바. 중대재해처벌법상 양형 ····· 129

5. 양벌규정 ····· 132

6. 사례 연구 ····· 137
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 137
1) 사실관계 ····· 137
2) 사건의 경과 ····· 138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가상사례) ····· 141
4) 형사재판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147
5) 시사점 ····· 148
7.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149
IV. 중대시민재해 ····· 151
1.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151
가. 개요 ····· 151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152
2.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 152
가. 원료·제조물의 정의 ····· 152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154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 154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54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60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161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2
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 164
가. 공중이용시설 ····· 164
나. 공중교통수단 ····· 167
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168
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 169
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71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 172
2) 필요한 인력 확보 ····· 173
3) 필요한 예산 확보 ····· 176
4)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178
5) 안전계획 수립 ····· 182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 182
7)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 ····· 184
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86
사. 중앙행정기관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187
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88
1) 의무 이행여부 점검 ····· 189

2) 교육 이수여부 점검 ····· 189
자.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190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191
가. 개요 ····· 191
나. 범죄의 구성요건 ····· 192
다. 죄수 ····· 199

5. 양벌규정 ····· 200

6. 사례 연구 ····· 201
가. 세월호 사건 ····· 201
1) 사실관계 ····· 201
2) 사건의 경과 ····· 201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가상사례) ····· 202
4) 시사점 ····· 204

V. 보칙 ····· 206

1. 형 확정 사실의 통보 ····· 206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206

3.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207
가. 피해자 등 직권 증인 신문 ····· 208
나.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 의무 ····· 208

4. 징벌적 손해배상 ····· 210
1) 개관 ····· 211
2)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 214
3) 배상액의 산정 ····· 216
4) 증명책임 ····· 217
5)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 217
6) 입법론적 비판 ····· 218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220

6. 부칙 ····· 221
가. 적용시기 ····· 221
나. 다른 법률의 개정 ····· 224
1)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의 사물관할 ····· 224
2) 부칙 제2조의 규율 내용 ····· 224
3) 재정합의결정에 따른 합의부 심판 가능성 ····· 225

VI. 결론 ····· 226

16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2-20

연구책임자 : 서현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2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4
1. 관련 통계 및 현황 데이터 분석 ····· 4
2. 문헌 연구 ····· 5
3. 비교법적 연구 ····· 5
4. 인터뷰 조사 ····· 5

제2장 재산명시제도의 소개 및 이론적 고찰 ····· 7
제1절 제도 소개 ····· 9
Ⅰ. 서론 ····· 9
Ⅱ. 재산명시제도의 도입과정 및 구체적 내용 ····· 9
1. 연혁 및 도입 과정 ····· 9
2. 제도의 구체적 내용 ····· 15
제2절 재산명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0
Ⅰ. 강제집행제도의 이상과 현실 ····· 20
Ⅱ. 기본권 충돌 및 위헌성 여부 ····· 20

Ⅲ.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정보조사의 이론적 배경 ····· 21
1. 강제적 자력구제가 금지된 상황에서의 공익적 필요성 관점 ····· 21
2. 정보비대칭 구조 및 채무자의 귀책사유라는 관점 ····· 23
3. 집행채무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고 전환 필요성 ····· 24

제3장 재산명시제도의 문제점 분석 ····· 25

제1절 서론 ····· 27
Ⅰ.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검증 필요성 ····· 27
Ⅱ. 제도의 실효성 확인을 위한 구체적 분석방법 ····· 28
제2절 재산명시 진행 단계별 분석 ····· 29
Ⅰ. 재산명시 신청 ····· 29
Ⅱ. 재산명시명령과 재산명시기일의 진행 등 ····· 30
1. 재산명시명령 ····· 30
2. 재산명시기일 ····· 32
3. 채권자의 재산목록 열람 및 활용 ····· 35
제3절 통계 및 현황데이터 분석 ····· 38
Ⅰ. 민사집행 현황 ····· 38
1. 서론 ····· 38
2. 강제집행의 현황 ····· 38
Ⅱ. 재산명시제도의 운영 현황 ····· 39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활용 현황 분석 ····· 39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의 소요 기간 분석 ····· 44
3. 재산명시절차의 종국내역 분석 ····· 47
4. 감치제도의 실효성 분석 ····· 56
5. 형사처벌 현황 분석 ····· 63
제4절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 65
Ⅰ. 서론 ····· 65
Ⅱ. 문헌 분석에 따른 문제점 분류 ····· 65
제5절 종합적 문제점 분석 결과 ····· 79
Ⅰ. 서론 ····· 79
Ⅱ. 종합적 분석 결과 ····· 80
1. 재산명시에 소요되는 과다한 기간 ····· 80
2. 재산목록 내용의 부실 및 진실성 확인 방법의 부재 ····· 80
3. 재산명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측면의 문제 ····· 81
4. 채무자 협력이 필요 없는 재산정보조사제도의 개선 및 발전 필요성 ····· 82
5. 기타 ····· 83
6. 소결 ····· 84

제4장 각국의 관련 제도 현황 ····· 85

제1절 개요 ····· 87

제2절 독일 ····· 88

Ⅰ. 독일의 채무자 재산정보조사제도의 특징 ····· 88

Ⅱ. 재산명시제도 ····· 88

1. 의의 ····· 88

2. 재산명시제도 절차 ····· 89

3. 독일의 재산명시제도 소개 ····· 90

Ⅲ. 집행관의 채무자정보수집 제도 ····· 97

1. 의의 ····· 97

2. 개정 배경 ····· 98

3. 각 제도 소개 ····· 99

제3절 일본 ····· 103

Ⅰ. 일본의 채무자 재산정보조사제도의 특징 ····· 103

1. 제도 연혁 및 개정 배경 ····· 103

2. 개정 이후 활용도 변화 ····· 104

3.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 ····· 105

Ⅱ. 재산개시제도 ····· 106

1. 서론 ····· 106

2. 재산개시제도의 내용 ····· 107

Ⅲ. 제3자로부터의 정보 취득 제도 ····· 112

1. 서론 ····· 112

2. 채무자의 부동산 정보 취득 ····· 113

3. 채무자의 급여채권 정보 취득 ····· 113

4. 채무자의 예금채권 정보 취득 ····· 114

5. 신청인에 대한 회신 정보 제공 절차 ····· 115

Ⅳ. 소액소송절차의 특례 ····· 116

1. 서론 ····· 116

2.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의 특례 ····· 116

제4절 미국 ····· 118

Ⅰ. 서론 ····· 118

Ⅱ. 집행 보조절차(Supplementary Proceedings) ····· 119

1. 캘리포니아주의 집행 보조절차 ····· 119

Ⅲ.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 ····· 124

1. 소개 ····· 124

2. 채무자에 대한 서면 심문제도
(Written Interrogatories to Judgement Debtor) ····· 125

3. 자료의 열람 및 등사 요청(Inspection Demands) ····· 126

제5절 각국 제도의 시사점 분석 ····· 127

Ⅰ. 독일 ····· 127
1. 집행관의 폭넓은 권한 ····· 127
2. 실효성 있는 정보조회 대상기관 ····· 127
3. 재산목록의 정보화 ····· 127
Ⅱ. 일본 ····· 128
1. 예금정보 조회 시 재산개시절차의 선행필요성 폐지 ····· 128
2. 채무자 급여채권정보 취득 절차 도입 ····· 128
3. 재산개시기일의 실질화 ····· 129
4. 소액채권 집행 ····· 129
Ⅲ. 미국 ····· 129
1. 법원 모독에 기반한 강력한 제도 실효성 ····· 129
2.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중시하는 법제 ····· 130
3. 당사자 간 재산정보 조사 제도 ····· 131

제5장 재산명시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 133

제1절 개요 ····· 135
제2절 제도의 일부개선을 통한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 137
Ⅰ. 신속제출절차 도입을 통한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137
1. 개선 취지 ····· 137
2. 도입 방안 ····· 138
3. 개정안 예시 ····· 141
제3절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 145
Ⅰ. 재산명시 업무 주체, 방법 및 과정 등의 개선 ····· 145
1. 개선 취지 ····· 145
2. 개선 방안 ····· 145
Ⅱ. 감치제도의 제재력 강화 ····· 149
1. 개선 취지 ····· 149
2. 개선 방안 ····· 150
3. 개정안 예시 ····· 155
제4절 재산조회 활용강화 측면의 개선방안 ····· 157
Ⅰ. 서론 ····· 157
Ⅱ. 재산명시 전치주의 개선을 통한 신속·정확한 재산정보조사 ····· 157
1. 개선 취지 ····· 157
2. 개선 방안 ····· 158
3. 민사집행법 개정안 예시 ····· 159
Ⅲ. 직권 재산조회 제도 도입을 통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 강화 방안 ····· 160
1. 논의의 전제 ····· 160
2. 법원의 직권 재산조회 제도 도입 ····· 161
3. 민사집행법 개정안 예시 ····· 165

Ⅳ. 재산조회 수집 정보의 확대 ····· 166
1. 개선 취지 ····· 166
2. 개선 방안 ····· 167
Ⅴ. 재산정보 조사절차의 선행화 ····· 167
1. 개선 취지 ····· 167
2. 개선 방안 ····· 168
Ⅵ. 통합적 재산정보조사 체계 구축 ····· 169
1. 개선 취지 ····· 169
2. 금융재산정보조회 관련 서비스 및 제도 동향 ····· 170
3. 통합형 재산조회 모델 제안 ····· 175
제5절 간이·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77
Ⅰ. 서론 ····· 177
Ⅱ. 간이·신속한 집행 측면의 제도 개선 ····· 177
1. 소액채권에 관한 집행 특례로서 법원의 변제 명령 도입 ····· 177
2. 구체적 도입방안 ····· 182
3. 민사집행법 개정안 예시 ····· 183
Ⅲ. 당사자 주도의 재산정보조사 체계의 도입 ····· 185

제6장 결론 ····· 187

16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3-01

연구책임자 : 임종미(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단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2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6
Ⅰ. 연구의 범위 ····· 6
Ⅱ. 연구방법 ····· 6
1. 관련 통계 및 현황 분석 ····· 6
2. 문헌 연구 ····· 6
3. 비교법적 연구 ····· 7
4. 인터뷰 조사 ····· 7
5. 판례와 기록 분석 ····· 7
6. 각 법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 ····· 7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8
제2장 협의이혼제도 ····· 9
제1절 개관 ····· 11

Ⅰ. 의의 ····· 11
Ⅱ.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법적 성질 ····· 11
Ⅲ. 우리나라 협의이혼절차의 특수성 ····· 12
Ⅳ. 협의이혼절차의 관할 ····· 13
제2절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 연혁 ····· 16
Ⅰ. 조선시대까지 ····· 16
Ⅱ. 일제 강점기 ····· 17
Ⅲ. 민법 제정 이후 ····· 18
1. 제정민법: 협의이혼 신고제도의 도입 ····· 18
2. 1963년: 호적공무원에 의한 확인제도 신설 ····· 18
3. 1977년: 가정법원의 확인제도로의 변모 ····· 19
4. 1990년: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 ····· 20
5. 2005년: 직권에 의한 자의 양육 등에 관한 처분제도 ····· 22
6. 2007년: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23
7. 2009년: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도입 ····· 26
제3절 현행 협의이혼절차와 운영현황 등 ····· 27
Ⅰ. 협의이혼절차 ····· 27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27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28
3.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의 경우 ····· 29
Ⅱ. 운영현황 ····· 30
1. 혼인 및 이혼 관련 통계 ····· 30
2. 협의이혼 처리현황 ····· 34
Ⅲ. 이혼 후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사건의 추이 ····· 40
Ⅳ. 이혼 후 분쟁사건 중 협의이혼가정의 비율 ····· 40
1. 분석의 목적과 대상 ····· 40
2. 분석의 방법 ····· 42
3. 분석 결과 ····· 42
제4절 협의이혼절차의 문제점 분석 ····· 43
Ⅰ. 서론 ····· 43
Ⅱ. 규정상의 문제점 ····· 43
1. 민법 규정의 불명확성 ····· 43
2. 절차 규정의 소극성 ····· 49
3. 절차 규율의 체계부적합성 ····· 50
4. 소결 ····· 56
Ⅲ. 실무운영상의 문제점 ····· 57
1. 당직제 등 사무분담 운영에 따른 전문성 저하 ····· 57
2. 형식적 심사에 따른 자녀 복리 저해 ····· 60
3. 민원안내의 어려움 ····· 63
4. 형식적인 부모교육 ····· 65

5.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문제 ····· 72
6. 소결 ····· 75
Ⅳ.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 ····· 76
1. 서론 ····· 76
2. 유엔아동권리협약 개관 ····· 77
3. 제12조 아동의견존중의 원칙에 대하여 ····· 82
4. 제6조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에 관하여 ····· 95
5. 제2조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106
6. 소결 ····· 114
Ⅴ. 종합적 결론 ····· 116
제5절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보호를 위한 외국제도 ····· 116
Ⅰ. 서론 ····· 116
Ⅱ. 오스트리아의 의무상담제도 ····· 118
1. 오스트리아의 이혼제도 ····· 118
2. 재판상이혼(Streitige Scheidung) ····· 120
3. 협의이혼(Einvernehmliche Scheidung) ····· 121
4. 시사점 ····· 127
Ⅲ. 프랑스의 자녀의견 청취제도 ····· 128
1. 프랑스 민법상 미성년자의 의견표명권 일반론 ····· 128
2. 프랑스 협의이혼절차에서 자녀의 의견표명권 ····· 130
3. 시사점 ····· 143

제3장 면접교섭권 ····· 145

제1절 개관 ····· 147
Ⅰ. 개념 ····· 147
Ⅱ. 면접교섭의 필요성 ····· 148
제2절 면접교섭의 실태 및 단절의 원인분석 ····· 149
Ⅰ. 면접교섭의 실태 ····· 149
Ⅱ. 면접교섭 단절의 원인분석 ····· 150
1. 양육친의 방해 ····· 150
2. 물리적 거리 ····· 163
3. 비양육친의 거부 ····· 164
4. 자녀의 거부 ····· 164
Ⅲ.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 ····· 165
1. 자녀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 ····· 165
2. 전 배우자에 대한 성범죄 발생의 위험 ····· 167
3. 제3자에 대한 범죄 발생의 위험 ····· 169
Ⅳ. 시사점 ····· 171
1. 면접교섭단절의 원인 해결 필요 ····· 172

2. 면접교섭전문가제도의 도입 ····· 177
제3절 면접교섭권 실현을 위한 외국제도 ····· 178
Ⅰ. 독일의 면접교섭보조인(Umgangspflegschaft)제도 ····· 178
1. 의의 ····· 178
2. 도입배경 ····· 179
3. 구별개념 ····· 182
4. 면접교섭보조인의 선임 ····· 185
5. 선발과 임명 ····· 189
6. 해임 및 종료 ····· 193
7. 실제 사례 ····· 194
8. 면접교섭보조인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196
Ⅱ. 오스트리아의 면접교섭동행(Besuchsbegleitung)제도 ····· 199
1. 의의 ····· 199
2. 도입배경 ····· 200
3. 입법 경과 ····· 201
4. 면접교섭동행인 선임요건 ····· 203
5. 면접교섭동행인의 권한 및 의무 ····· 204
6. 면접교섭동행 절차 ····· 205
7. 면접교섭동행 비용 ····· 209
8. 면접교섭동행을 후원받는 단체 ····· 210
9. 면접교섭동행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 214
10. 면접교섭동행인 교육 및 연수 ····· 214
11. 면접교섭동행 제도에 대한 평가 ····· 215
Ⅲ. 오스트리아의 면접교섭중재(Besuchsmittler)제도 ····· 217
1. 의의 ····· 217
2. 구별 개념 ····· 218
3. 면접교섭중재를 통한 법원 지원 방식 ····· 219
4. 법원의 면접교섭중재자 위촉 및 요건 ····· 220
5. 면접교섭중재자의 임무 ····· 224
6. 면접교섭중재자의 자격 및 연수 ····· 228
7. 면접교섭중재 절차 ····· 229
8. 면접교섭중재의 기간과 조기 종료 ····· 231
9. 면접교섭중재를 위한 비용 ····· 233
10. 면접교섭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 233
Ⅳ. 시사점 ····· 237

제4장 이혼과정에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239

제1절 협의이혼제도의 개선방안 ····· 241
Ⅰ. 미성년 자녀 있는 협의이혼 사건의 가사비송사건화 ····· 241

Ⅱ. 가사조사관의 증원 ····· 245
1. 이혼사건에서 가사조사관의 역할 ····· 245
2. 가사조사관 증원 필요성 ····· 247
Ⅲ. 자녀의 절차참여방안 마련 ····· 248
Ⅳ. 법관 사무분담 개선 및 연수제도 강화 ····· 252
Ⅴ. 시·군법원 관할 제한 ····· 253
1. 제한의 필요성 ····· 253
2. 법원조직법 개정안 ····· 253
Ⅵ.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개선 ····· 254
1. 의무상담을 통한 부모교육실시 ····· 254
2. 교육내용의 양적·질적 성장 필요 ····· 255
3. 지속적·반복적 부모교육 필요 ····· 256
4. 스마트한 온라인 교육방식 개발 ····· 257
5. 혼인신고 시 부모교육 필요 ····· 257
6. 수형자와 재외국민에 대한 부모교육 내실화 ····· 258
7. 외국인용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필요 ····· 260
8. 연구부서 신설 ····· 261
9. 부모교육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262
Ⅶ. 협의이혼에 대한 인지대 부과 ····· 262
Ⅷ. 전담부서 일원화 ····· 264
Ⅸ. 실무서 발간 ····· 266
Ⅹ. 기타 – 이혼과정에서 주소 비공개절차 마련 ····· 269
제2절 자녀의 면접교섭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 269
Ⅰ. 면접교섭보조인제도의 도입필요성 ····· 269
Ⅱ.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 ····· 270
1. 2015. 2. 제출된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안(1차 개정안) ····· 271
2. 법무부 삭제 논거에 대한 검토 ····· 272
3. 2022. 11. 발의된 가사소송법 개정안(3차 개정안) ····· 282
Ⅲ. 개정안 제안 ····· 283
1. 소결 ····· 283
2. 개정안 ····· 284

제5장 결론 ····· 287

16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3-02

연구책임자 :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2월 1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방법 ····· 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7

제2장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제도 ····· 9

제1절 현행법상 구속제도 ····· 11
Ⅰ. 구속의 의의와 목적 ····· 11
1. 구속의 의의 ····· 11
2. 구속의 목적 ····· 11
Ⅱ. 구속의 법적 근거 ····· 12
Ⅲ. 구속영장 발부절차 ····· 13
1.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절차 ····· 13
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절차 ····· 14
Ⅳ. 구속기간 ····· 15
1. 피의자의 구속기간(수사기관의 구속기간) ····· 15
2. 피고인의 구속기간(법원의 구속기간) ····· 15
3. 피고인의 구속 관련 조항의 피의자 구속에의 준용 ····· 16

Ⅴ. 현행법상 석방제도 ····· 16
1. 구속적부심사제도 ····· 16
2. 보석제도 ····· 19
3. 구속취소제도 ····· 23
4. 구속집행정지제도 ····· 24
제2절 구속기간 제한입법의 역사 ····· 26
Ⅰ. 형사소송법 제정 이전 ····· 26
1. 일제강점기 ····· 26
2. 미군정법령 제176호 ····· 35
Ⅱ. 형사소송법의 제정 ····· 40
1. 미군정기의 법전기초위원회 ····· 40
2. 정부 수립 후 법전편찬위원회 ····· 41
3. 6·25 전쟁 전후 김병로 대법원장에 의한 형사소송법 초안 ····· 44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 45
5.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 ····· 47
Ⅲ. 구속기간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위 ····· 47
1. 인신구속제도와 관련된 주요 개정 ····· 47
2. 구속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92조)의 개정 경과 ····· 49
3.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 51
4. 소결론 ····· 59

제3장 외국의 구속기간 입법례 및 운영 실무 ····· 61

제1절 미국 ····· 63
Ⅰ. 미국의 구속제도 ····· 63
1. 개관 ····· 63
2. 체포(Arrest) ····· 64
3. 최초출석(Initial Appearance) ····· 65
4.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Hearing) ····· 67
5. 대배심(Grand Jury) ····· 68
6. 기소(Prosecution) ····· 69
7. 피의자에 대한 석방 ····· 70
Ⅱ. 구속제도에 대한 미국 내 비판 ····· 73
제2절 영국 ····· 77
Ⅰ. 영국의 구속제도 ····· 77
1. 개관 ····· 77
2. 체포(Arrest), 경찰구금(Police Detention) 및 경찰보석(Police Bail) ····· 79
3. 기소(Charge) ····· 81
4. 최초출석(Initial Appearance) ····· 82
5. 재판 전 구금기간 제한(Custody Time Limits) ····· 85

6. 형사법원에서의 재판(Trial on Indictment) ····· 86
7. 법원에서의 보석 ····· 88
8. 불복절차 ····· 93
Ⅱ. 구속제도에 대한 영국 내 비판 ····· 94
제3절 독일 ····· 96
Ⅰ. 독일의 구속제도 ····· 96
1. 개관 ····· 96
2. 체포(Festnahme) ····· 97
3. 구속(Untersuchungshaft) ····· 98
4. 구속집행정지(Aussetzung des Vollzugs des Haftbefehls) ····· 104
5. 구속심사제도(Haftprüfung) ····· 107
6. 구속기간 ····· 108
7. 항고제도 ····· 116
Ⅱ. 구속제도에 대한 독일 내 비판 ····· 117
제4절 프랑스 ····· 119
Ⅰ. 프랑스의 구속제도 ····· 119
1. 범죄의 종류 ····· 119
2. 예심제도 ····· 120
3. 구속(la détention provisoire) ····· 121
4. 구속기간 ····· 125
5.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 ····· 131
6.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명령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137
7. 석방 ····· 138
8. 불복절차 ····· 141
Ⅱ. 구속제도에 대한 프랑스 내 비판 ····· 143
제5절 일본 ····· 147
Ⅰ. 일본의 구속제도 ····· 147
1. 개관 ····· 147
2. 체포 ····· 147
3. 구류 ····· 151
4. 보석제도 ····· 159
5. 불복절차 ····· 163
Ⅱ. 구속제도에 대한 일본 내 비판 ····· 164
제6절 시사점 ····· 166

제4장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운영 현황 및 환경 변화 ····· 169

제1절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운영 현황 ····· 171
Ⅰ. 불구속재판의 확대 추세 ····· 171

1. 구속기소율 및 구속항소율의 감소 추세 ····· 171
2. 제1심 보석인용률 및 직권보석 ····· 178
Ⅱ.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 증가 ····· 180
1.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처리기간 ····· 180
2.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일부터 1회 기일까지 소요일수 ····· 182
Ⅲ. 구속기소 된 제1심 형사사건의 난이도 ····· 185
1. 구속기소 된 제1심 형사사건의 난이도 징표 ····· 185
2. 공동피고인 4인 이상 구속사건의 비율 ····· 186
3. 죄명 4개 이상 구속사건의 비율 ····· 187
4. 증인신문조서 3회 이상 구속사건의 비율 ····· 188
5. 공판조서 4회 이상 구속사건의 비율 ····· 189
6. 추가 구속영장 발부율 ····· 191
7. 소결론 ····· 193
제2절 형사재판 환경의 변화 ····· 194
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 작성 조서의 작성빈도 감소 경향 ····· 194
1. 검·경 수사권 조정 경과 ····· 194
2. 구속기소 사건의 감소 추세 ····· 196
3. 구술심리 활성화 및 심리의 장기화 가능성 ····· 197
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요건 완화 ····· 198
Ⅲ. 공판갱신절차의 실질화 ····· 199
제3절 소결론 ····· 201

제5장 구속기간 제한제도에 관한 법관 및 변호사의 인식 ····· 203

제1절 법관 및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 ····· 205
Ⅰ. 인터뷰의 목적과 방법 ····· 205
1. 인터뷰의 목적 ····· 205
2. 인터뷰 대상, 시기 및 방법 ····· 206
Ⅱ. 법관에 대한 인터뷰 ····· 206
1.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한 심리 형태 ····· 206
2. 추가 구속영장 및 기소 재량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 213
3. 보석 ····· 214
4.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심리가 곤란했던 사례 분석 ····· 215
5. 구속기간 제한제도에 대한 의견 ····· 219
6. 개별 법관 인터뷰 ····· 220
Ⅲ. 변호사 인터뷰 ····· 220
1.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한 심리 형태 ····· 220
2. 추가 구속영장 ····· 223
3. 보석 ····· 224
4. 구속기간 제한제도에 대한 의견 ····· 225

5. 개별 변호사 인터뷰 ····· 227
제2절 법관 및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관련 설문조사 ····· 228
Ⅰ. 이전 설문조사 ····· 228
1. 사법행정자문위원회의 항소심 제도개선 설문조사 ····· 228
2. 구속기간 제한 관련 문항에 대한 설문결과 ····· 228
Ⅱ. 구속기간 제한 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 230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대상 ····· 230
2. 설문조사의 시기와 방법 ····· 231
3. 설문조사의 응답비율 ····· 231
4. 설문조사 결과 ····· 232
5. 소결론 ····· 280

제6장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 283

제1절 현행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한계 ····· 285
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의 석방으로 인한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해 등의 위험성 ····· 285
Ⅱ.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에 대한 사실상 제한 ····· 286
Ⅲ. 법원의 보석심사 부실화와 보석에 대한 소극적 태도 ····· 287
Ⅳ. 검찰의 기소 재량에 따른 법원의 구속기간의 사실상 연장 ····· 287
제2절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 288
Ⅰ. 입법적 개선방안 ····· 288
1.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완화 ····· 288
2.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완화 방법 – 예외적 구속기간 연장 ····· 292
3. 구속기간의 예외적 연장사유 ····· 294
4. 연장기간 ····· 298
5. 구속기간의 예외적 연장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 301
6. 불복절차 ····· 302
7. 구속기간의 예외적 연장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302
Ⅱ. 미결구금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의 제안 ····· 307
1. 구속대체제도 도입 및 석방제도의 일원화 ····· 307
2. 형사재판의 효율적 심리를 위한 개선방안 ····· 308
3. 법관의 인사이동 최소화 ····· 311

제7장 결론 ····· 313

16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연구총서 2023-03

연구책임자 :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단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2월 28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5

제2장 우리나라의 재판공개원칙 ····· 7

제1절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 9
Ⅰ. 재판공개원칙 관련 헌법 조항 ····· 9
Ⅱ. 재판공개와 사법제도 ····· 11
Ⅲ. 재판공개의 헌법적 보장 ····· 12
1. 재판공개의 범주 ····· 12
2. 헌법적 보장의 범위 ····· 13
제2절 절차의 공개 ····· 15
Ⅰ. 법원조직법상의 재판공개 ····· 15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 15
2. 공개되는 재판의 범위 ····· 16
3. 재판공개의 예외 ····· 17
4.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 18
Ⅱ. 민사소송절차의 공개 ····· 18
Ⅲ. 형사소송절차의 공개 ····· 19
Ⅳ. 기타 절차의 공개 ····· 20
Ⅴ. 절차의 간접공개 ····· 21

1. 법원조직법 제59조 ····· 21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간접공개 ····· 22
3.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간접공개 ····· 22
Ⅵ. 영상재판 심리의 공개 ····· 25
1. 민사소송절차 ····· 25
2. 형사소송절차 ····· 26
제3절 기록의 공개 ····· 28
Ⅰ.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 ····· 28
1. 정보공개법 ····· 28
2. 개인정보 보호법 ····· 30
Ⅱ. 민사소송에서의 기록 공개 ····· 31
Ⅲ. 형사소송에서의 기록 공개 ····· 35
Ⅳ. 기타 기록 공개에 관한 규정 ····· 39
Ⅴ. 판결서 등의 공개 ····· 40
1. 공개의 현황 ····· 40
2. 개인정보 보호조치 ····· 41
3. 열람 등 제한 ····· 42

제3장 각국의 재판공개원칙 ····· 45

제1절 서론 ····· 47
제2절 일본 ····· 50
Ⅰ. 서론 ····· 50
Ⅱ. 일본국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 51
1. 제82조의 재판공개원칙 ····· 51
2. 제37조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54
Ⅲ. 절차의 공개 ····· 55
1. 비공개심리의 헌법적합성 문제 ····· 55
2. 형사소송절차의 공개 ····· 57
가. 차폐조치 및 비디오링크 방식의 증인신문 ····· 57
나. 피해자 특정 정보의 공개 금지 ····· 61
3. 민사소송절차의 공개 ····· 62
가. 재판공개에 관한 논의 상황 ····· 62
나. 소송과 비송의 구분 ····· 62
다.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구현 ····· 63
4. 기타 절차의 공개 ····· 64
5. 외부적 공개 ····· 65
6.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른 변화 ····· 65
Ⅳ. 기록의 공개 ····· 66
1. 헌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6

가. 헌법상 재판공개원칙과 소송기록의 공개 ····· 66
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여부 ····· 67
2. 민사소송기록의 공개 ····· 68
가. 소송기록의 열람 ····· 68
나.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른 변화 ····· 72
3. 형사소송기록의 공개 ····· 72
가. 형사소송법 ····· 72
나.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75
4. 기타 기록의 공개 ····· 79
5. 판결서 공개 ····· 79
6. 재판정보의 온라인 공개 현황 ····· 80
Ⅴ. 요약 및 평가 ····· 81
제3절 독일 ····· 83
Ⅰ. 서론 ····· 83
Ⅱ. 재판공개원칙의 지위 ····· 84
1. 재판공개원칙의 헌법상 보장 ····· 85
2. 재판공개원칙의 국제법상 보장 ····· 86
Ⅲ. 절차의 공개 ····· 87
1. 원칙적 공개 ····· 89
2. 예외적 제한 ····· 89
가. 피의자의 정신병원 또는 금단치료시설 수용을 위한 소송절차 ····· 89
나. 사생활 관련 형사소송의 공개배제 ····· 89
다. 심리 또는 그 일부의 배제 사유 ····· 90
3. 간접공개의 금지 ····· 91
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 91
나. 간접공개의 범위 확대 ····· 92
4. 민사재판과 공개 ····· 93
5. 형사재판과 공개 ····· 94
6. 영상재판의 공개 ····· 96
가. 민사재판 ····· 97
나. 형사재판 ····· 97
다. 기타 재판 ····· 97
라. 재판공개원칙과의 관계 ····· 97
7. 재판공개와 코로나 유행 ····· 98
Ⅳ. 기록의 공개 ····· 100
1. 정보자유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 100
가. 정보자유법의 적용 여부 ····· 100
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 ····· 101
2. 민사소송법 ····· 101
가. 소송기록의 열람 등에 의한 공개 ····· 101

나. 마이크로필름 전환 기록의 공개 ····· 102
3. 형사소송법 ····· 102
가. 제3자에 대한 기록 공개 여부 ····· 102
나. 사법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록열람 ····· 103
Ⅴ. 판결서 공개와 익명화 문제 ····· 104
1. 판결서 공개의무의 존부 ····· 104
2. 공개 현황 ····· 104
3. 판결서 익명화 ····· 105
Ⅵ. 요약 및 평가 ····· 106
제4절 프랑스 ····· 108
Ⅰ. 서론 ····· 108
Ⅱ. 재판공개원칙의 의의 ····· 108
Ⅲ. 변론공개 ····· 109
1. 헌법적 가치 ····· 109
2. 관련 법률 조항 ····· 110
가. 민사소송 ····· 110
나. 형사소송 ····· 111
3. 변론공개원칙: 직접공개 ····· 113
4. 변론공개원칙의 예외 ····· 114
가. 민사소송 ····· 114
나. 형사소송 ····· 115
5. 간접공개 ····· 115
가. 금지의 원칙 ····· 115
나. 금지의 예외 ····· 118
(1) 1881년 법률 제38 ter조 제2항 ····· 118
(2) 형사소송법전 제308조 제2항 ····· 118
(3) 형사소송법전 제706-52조 ····· 118
(4) 1985년 7월 11일 법률 ····· 119
(5) 1881년 법률 제38 quater조 ····· 119
6. 영상재판의 공개 ····· 125
가. 팬더믹 이전 ····· 125
나. 팬더믹 이후 ····· 126
(1) 2020년 3월 25일 오흐도낭스 ····· 126
(2) 2020년 11월 18일 오흐도낭스 ····· 127
(3) 2020년 11월 27일 국사원 긴급집행정지결정 ····· 127
(4) 2021년 1월 15일 헌법위원회 위헌 결정 ····· 128
(5) 2021년 2월 12일 국사원 긴급결정 ····· 128
(6) 2021년 3월 5일 국사원 결정 ····· 128
다. 영상재판에 관한 논의 상황 ····· 129
라. 2021년 12월 22일 법률 ····· 130

Ⅳ. 판결공개 ····· 132
1. 원칙 ····· 132
2. 예외 ····· 134
3. 오픈 데이터 ····· 134
가. 오픈 데이터 운동 ····· 134
나. 판결서와 오픈 데이터 ····· 135
(1) 2016년 법률 이전 상황 ····· 135
(2) 2016년 법률 이후 상황 ····· 136
Ⅴ. 재판 관련 정보의 공개 ····· 139
Ⅵ. 요약 및 평가 ····· 140
제5절 영국 ····· 142
Ⅰ. 서론 ····· 142
Ⅱ. 헌법상 재판공개원칙의 의의와 성질 ····· 144
1. 재판공개원칙의 의의 ····· 144
2. 헌법적 지위와 성질 ····· 146
3. 재판공개원칙의 개요 ····· 148
Ⅲ. 형사절차와 재판공개원칙 ····· 149
1. 재판공개에서 언론 보도의 중요성 ····· 149
2. 심리 공개의 예외 ····· 150
가. 비공개심리 ····· 150
나. 소년법원 ····· 153
3. 자동적 보도제한 ····· 153
가. 엄격책임의 원칙 ····· 153
나. 성범죄 피해자 ····· 154
다. 재판 전 심리에서의 결정 ····· 155
라. 준비 심리 ····· 155
마. 기각 절차 ····· 155
바. 치안법원의 이송절차 ····· 156
사. 법원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 156
아. 소년법원 절차 ····· 156
자. 공중도덕을 해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설물 ····· 157
4. 재량적 보도제한 ····· 158
가. 공통된 절차적 보호 장치 ····· 158
나. 18세 미만자의 보호 ····· 158
다. 성인 증인의 보호 ····· 159
라. 공개가 보류된 이름과 기타 정보 ····· 160
마. 보도의 연기 ····· 161
바. 무죄판결의 파기와 재심 ····· 163
사. 감형절차에서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보도 연기 ····· 163
5. 절차에 관계된 사람들의 식별 ····· 164

6. 법원모욕죄 회부 ····· 164
7. 배심 평의 ····· 165
8. 퍼즐 식별 ····· 165
Ⅳ. 기타 절차와 재판공개원칙 ····· 166
1. 민사절차의 공개 ····· 166
2. 가사절차의 공개 ····· 168
Ⅴ. 간접공개와 재판공개원칙 ····· 168
1. 법원 절차의 녹음·녹화 등 ····· 168
2. 실시간 문자전송 ····· 169
3. 민사절차규칙의 관련 규정 ····· 170
Ⅵ. 영상 심리와 재판공개원칙 ····· 171
1. 라이브 링크 ····· 171
가. 2003년 형사사법법에 의한 라이브 링크 ····· 171
나. 라이브 링크와 재판공개 ····· 172
2. 영상 심리의 확장 ····· 173
3. 팬더믹과 재판공개원칙 ····· 173
가. 온라인 분쟁해결과 온라인 법원 ····· 173
나. 코로나바이러스법 제정 ····· 174
다. 영상 혹은 음성 심리 시범프로그램(실무지침 51Y) ····· 176
라. 원격심리에 관한 행동준칙 ····· 177
Ⅶ. 기록의 공개 ····· 180
1. 개요 ····· 180
2. 민사사건 기록 ····· 181
3. 형사사건 기록 ····· 184
가. 형사절차규칙의 규율 ····· 184
나. 법원 목록, 법원 등록부의 접근가능성 ····· 188
다. 법원 기록에 있는 문서에 대한 접근 ····· 188
라. 검찰 자료에 대한 언론의 접근 ····· 189
4. 법원 기록 공개에 관한 언론과의 프로토콜 합의 ····· 189
5. 판결서의 공개 ····· 191
가. 공개의 의의 ····· 191
나. 판례집을 통한 공개 ····· 192
다.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 193
Ⅷ. 요약 및 평가 ····· 194
제6절 미국 ····· 197
Ⅰ. 서론 ····· 197
Ⅱ. 헌법상 재판공개 관련 규범 ····· 198
1. 연방헌법과 재판공개 ····· 198
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연방 수정헌법 제6조) ····· 198
(1) 개요 ····· 198

(2) 권리의 연혁 ····· 199
(3)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 200
(4) 권리의 범위 ····· 201
나. 공중과 언론의 재판 접근권(연방 수정헌법 제1조) ····· 203
2. 주 헌법과 재판공개 ····· 206
3. 공개의 헌법적 가치 ····· 207
4. 공개의 이익을 상쇄하는 비공개의 이익 평가 ····· 209
Ⅲ. 절차의 공개 ····· 210
1. 형사재판 외 절차에의 접근권 ····· 210
2. 재판 보도 및 간접공개의 확대 요구와 대응 ····· 212
가. 언론 보도의 확대 ····· 212
나. 간접공개의 확대 요구와 대응 ····· 212
(1) 연방법원 ····· 212
(2) 주 법원 ····· 213
3. 원격심리와 재판공개 ····· 214
가. 팬더믹 전의 원격심리와 공개 ····· 215
나. 팬더믹 이후 원격심리와 공개 ····· 217
다. 법원 연계 온라인 분쟁해결 ····· 219
Ⅳ. 기록의 공개 ····· 219
1. 기록 공개와 비밀 보호 ····· 219
2. 연방대법원의 접근방식 ····· 221
가. 심리의 공개와 동일한 취급 ····· 221
나. 기록의 공개에 대한 예외적 취급 사례 ····· 221
3. 기록 공개에 관한 미국 법원의 3가지 경향 ····· 223
4. 형사사건기록의 공개 ····· 226
5. 기타 기록의 공개 ····· 226
가. 민사사건기록 ····· 226
나. 가사·소년사건기록 ····· 229
6. 법원 문서의 공개 ····· 230
7. 온라인 공개와 새로운 도전 ····· 231
가. 정보공개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연방법의 규율 ····· 23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 ····· 231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분야별 규율 ····· 232
나. 전자정부법과 온라인 공개 ····· 233
다. 실질적 모호성 ····· 236
라. 부작용 현실화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 238
마. 사생활 등 보호 규칙 제정 ····· 238
(1) 민사절차규칙 ····· 239
(2) 형사절차규칙 ····· 241
(3) 전자녹취록의 편집 ····· 244
(4) 사생활 보호를 위한 주 법원의 대응 ····· 244

Ⅴ. 요약 및 평가 ····· 245
제7절 국제형사재판소 ····· 248
Ⅰ. 서론 ····· 248
Ⅱ. 재판공개의 원칙에 관한 규율 ····· 249
1. 로마규정 ····· 249
2. 절차 및 증거규칙 ····· 252
3. 재판소 규칙 ····· 254
Ⅲ. 재판공개의 현황 ····· 256
1. 절차 공개 ····· 256
가. 직접공개 ····· 256
나. 간접공개 ····· 257
2. 기록 공개 ····· 258
Ⅳ. 요약 및 평가 ····· 258

제4장 시사점과 개선방안 ····· 261

제1절 재판공개를 둘러싼 논의 ····· 263
Ⅰ. 재판공개 관련 논의의 공통점 ····· 263
Ⅱ. 제도적 차이에 관한 논의 ····· 264
1. 한국과 미국의 차이 ····· 264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 265
Ⅲ. 공개 확대 여부에 관한 국내 논의 ····· 266
1. 공개 확대에 적극적인 견해 ····· 266
2. 공개 확대에 소극적인 견해 ····· 267
3. 검토 ····· 268
Ⅳ. 재판공개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논의 ····· 269
1. 정보기술과 재판공개의 의미 변화 ····· 270
2. 재판공개의 구조주의적 의의 부각 ····· 271
3.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도전: 기본권과의 충돌 ····· 271
4. 사법의 민영화 ····· 273
5. 정치적 도전 ····· 274
6. 현대적 매체를 활용한 재판공개의 확장 ····· 275
7. 영상 심리 또는 온라인 법원 ····· 276
Ⅴ. 소결 ····· 277
제2절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이익의 규범 조화 ····· 280
Ⅰ. 규범 조화에 의한 공개제한 ····· 280
Ⅱ. 규범 조화를 반영한 헌법 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282
제3절 재판정보 관리자로서 법원의 주도적 역할 ····· 284
Ⅰ. 공개제한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 인정의 필요성 ····· 284
Ⅱ. 법원 주도의 간접공개 활성화 ····· 285

Ⅲ. 대언론 관계에서의 시사점 ····· 287
1. 공보업무 활성화 ····· 287
2. 언론에 대한 특별한 취급 여부 ····· 288
Ⅳ. 공중과의 직접 소통 ····· 290
제4절 재판공개의 방식에 관한 규율의 정비 ····· 291
Ⅰ. 입법 및 규칙 등 누락 사항의 보충 ····· 291
1. 심리의 간접공개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 291
2. 영상공판준비기일의 공개 방법 ····· 295
3. 인터넷 중계 방식에 관한 실무지침 설정 ····· 296
4. 형사판결서 열람자의 부당한 이용 금지의무 ····· 296
Ⅱ. 비실명 처리 관련 ····· 297
1. 비실명 처리 혹은 익명화의 수준 ····· 297
2. 비실명 처리방법의 통합 ····· 301
Ⅲ. 기타 관련 절차의 정비 ····· 301
1. 민사소송기록의 공개 방법 ····· 301
2.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 관련 신청권자의 확대 ····· 302
3. 당해 소송관계인의 동의 요건 문제 ····· 303
4. '당해 소송관계인', '사건관계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 규정의 정비 ····· 305
제5절 공개 촉진의 유인 부여 ····· 309
Ⅰ.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배제 ····· 309
Ⅱ.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책임 제한 ····· 311
1. 추가적 책임 제한의 필요성 ····· 311
2. 추가적 책임 제한의 모색 ····· 312
Ⅲ. 전자기록 공개시스템 구축 ····· 313
1. 전자소송과 연계된 공개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 313
2. 전자기록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과제 ····· 314
3. 전자기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책임 분산 ····· 316
제6절 공개의 부작용 억제 ····· 318
Ⅰ. 가사소송절차의 공개제한 근거 마련 ····· 318
Ⅱ. 간접공개 방식의 법원 통제 ····· 320
Ⅲ. 공개된 재판정보 이용의 책임성 확보 ····· 321
1. 부당한 이용과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 321
2. 판결서 등 인터넷 열람에 있어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323
Ⅳ. 미확정 사건의 소송기록 공개 문제 ····· 324
Ⅴ.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문제 ····· 326
1. 판결서 등 공개에 대한 수수료 부과 문제 ····· 326
2. 미확정 사건 형사판결서의 공개 문제 ····· 328

제5장 마치며 ····· 331

16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연구총서 2023-04

연구책임자 : 신명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5
1.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통계 자료 활용 ····· 5
2. 문헌연구 ····· 6
3. 인터뷰 ····· 6
4.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과 그 분담 ····· 6

제2장 등기절차와 민원안내 ····· 7
제1절 들어가며 ····· 9
Ⅰ. 등기민원 관련 규정과 등기실무상 용어의 정리 ····· 10
1. 민원 및 민원인 ····· 10
2. 민원의 종류 ····· 10
3. 행정기관(민원처리법 제2조 제3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민원처리내규 제1조) ····· 11

4. ‘등기민원안내’, ‘등기민원상담’, ‘등기신청절차안내’ ····· 12
Ⅱ. 국가행정사무로서 등기민원안내업무 ····· 15
1. 사법행정사무 중 민원행정 ····· 15
2. 현대 행정의 변화와 등기민원행정 ····· 16
3. 다른 행정사무와의 차이점 ····· 17
4. 등기업무의 특수성과 민원행정업무로서의 성질을 고려한 등기민원안내 ···· 22
제2절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민원안내 ····· 24
Ⅰ. 등기신청절차와 민원안내 ····· 24
1. 등기신청절차 ····· 24
2. 민원안내 ····· 26
Ⅱ. 등기실행절차와 민원안내 ····· 27
1. 등기신청서의 접수와 민원안내 ····· 27
2. 신청사항의 기입과 민원안내 ····· 30
3.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과 민원안내 ····· 31
4.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와 민원안내 ····· 32
5. 등기완료 후의 절차와 민원안내 ····· 36
제3절 일본·독일의 등기절차와 안내 ····· 38
Ⅰ. 서설 ····· 38
Ⅱ. 일본의 등기제도 및 민원안내제도 ····· 39
1.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 및 상업등기제도 ····· 39
2. 등기민원안내제도 ····· 48
3. 시사점 ····· 58
Ⅲ. 독일의 등기제도 및 민원안내제도 ····· 62
1. 부동산등기 ····· 62
2. 상업등기제도 ····· 68
3. 민원안내제도 ····· 71
4. 시사점 ····· 77

제3장 등기민원상담제도 ····· 81

제1절 서설 ····· 83
제2절 등기소에서의 민원상담 ····· 84
Ⅰ. 전국의 등기소 운영 현황 ····· 84
1. 전국 등기소 및 등기관 현황 ····· 84
2. 등기사건 신청 건수 ····· 85
3. 등기관 1인당 사건 수 ····· 86
Ⅱ. 등기소의 민원상담 현황 ····· 88
1. 등기소민원상담 건수 ····· 88
2. 등기소별 민원상담의 형태 ····· 94
제3절 등기민원콜센터에서의 민원상담 ····· 106

Ⅰ. 등기민원콜센터 ····· 106
1. 개요 ····· 106
2. 운영 현황 ····· 107
Ⅱ. 등기업무 관련 안내 ····· 111
1. 사용자지원서비스 ····· 111
2. 등기민원상담서비스 ····· 112
제4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 115
Ⅰ. 개요 ····· 115
Ⅱ. 주요사업 ····· 115
1. 지역무관(地域無關) 등기서비스 ····· 115
2.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 116
3.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구축 ····· 117
4. 지능형 업무환경 구축 ····· 118
5. 신청서류의 전면서면화 ····· 119
6. 등기통합민원채널 구축 ····· 120
Ⅲ. 등기민원안내제도에 미칠 영향 ····· 122
1. 전자신청 활성화에 따른 방문민원인의 수 감소 ····· 122
2. 등기통합민원채널 구축과 민원상담 ····· 125
3.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구축과 민원감소 ····· 125
4. 일부 등기소에서의 민원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 125

제4장 등기신청절차안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7

제1절 서설 ····· 129
제2절 등기신청절차안내의 문제점 ····· 130
Ⅰ. 민원인의 기대와 기대 불충족에 따른 민원 ····· 130
1. 민원인의 기대(질적·양적 한계 없는 안내) ····· 131
2. 기대 불충족에 따른 민원 ····· 134
Ⅱ.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의 고충(苦衷) ····· 138
1. 한계 없는 상담요구로 인한 어려움 ····· 138
2. 전문가에게 문의할 것에 대한 권유의 어려움 ····· 139
3. 등기관의 보정명령 시 거친 항의 ····· 140
4. 민원인의 부당한 말이나 태도 ····· 141
Ⅲ. 민원 및 고충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 142
1. 민원인들의 등기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 142
2. 등기신청절차안내의 한계에 대한 안내담당자와 민원인 간 인식의 차이 ···· 142
3. 등기신청절차안내의 한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부존재 ····· 143
4. 민원안내담당자의 자질(친절한 태도, 등기에 관한 지식 등) 부족 ····· 144
5. 부당한 언동(言動)을 하는 일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부실한 대처 ····· 145
6. 직원에 의한 안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미흡 ····· 145

Ⅳ. 소결 ····· 146
1. 등기신청절차안내의 한계 ····· 146
2. 친절한 응대 태도 ····· 149
제3절 개선방안 ····· 151
Ⅰ. 서설 ····· 151
Ⅱ. 등기신청절차 안내의 한계를 구체화 하는 방안 ····· 152
1. 예규 개정을 통한 구체화 방안 ····· 152
2. 예규 개정 없는 구체화 방안 ····· 164
Ⅲ. 안내담담자의 친절한 응대와 전문성 제고 방안 ····· 175
1. 필요성 ····· 175
2. 등기업무 맞춤형 친절교육 ····· 176
3. 전문성 고양 ····· 179
4.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환경의 개선 ····· 185
Ⅳ. 등기신청절차 안내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 189
1. 서론 ····· 189
2. 등기민원상담위원제도 확대 시행 ····· 190
3. 법무사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등기민원상담제도의 운영 ····· 192
4.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 증원 ····· 193
5. 등기신청절차안내 사전 예약제 및 등기민원수수료 ····· 194
6. 챗봇을 활용한 등기신청절차의 안내 ····· 196
7.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방식의 개선 ····· 196
8. 특이심리민원인 대처를 위한 협조 ····· 200
Ⅴ. 바람직한 장래의 등기신청절차 안내 ····· 201
1. 등기신청절차 안내업무의 최소화 및 분담 ····· 201
2. 등기신청절차 안내업무의 통합 ····· 204
3. 법원공무원 아닌 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안내 ····· 206
4. 소결 ····· 208
Ⅵ.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 211
1. 등기특별회계의 활용 방안 ····· 211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활용 방안 ····· 212

제5장 결론 ····· 215

16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연구총서 2023-05

연구책임자 : 홍보람(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3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대상 ····· 5
제3절 연구의 구성 ····· 6

제2장 법률회피 문제에 대한 판단 ····· 9

제1절 법률회피 행위의 개념 ····· 11
Ⅰ. 법률회피 문제의 구조 ····· 11
1. 법률의 형식적 준수와 실질적 회피 ····· 11
2. 법적 개념에의 포섭 ····· 13
3. 법률회피 유관 개념 ····· 15
Ⅱ. 규제법의 이면과 법률회피 전략 ····· 18
1. 법률회피 문제의 증가 원인 ····· 18
2. 법률회피 전략의 활용 ····· 20
제2절 법률회피 문제에 관한 역사적 논의 ····· 22
Ⅰ. 근대 이전의 법률회피 논의 ····· 22
1. 로마법의 법률회피 논의 ····· 22
2. 중세의 법률회피 논의 ····· 22

Ⅱ. 근대 이후의 법률회피 논의 ····· 23
1.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 ····· 23
2. 법률회피 행위와 가장행위의 개념 구분 ····· 24
3. 법률회피 행위와 위법한 의도 ····· 24
Ⅲ. 현대의 법률회피 논의 ····· 25
1. 독일 법학계의 법률회피 논의 ····· 25
2. 일본 법학계의 법률회피 논의 ····· 27
3. 국내의 법률회피 논의 ····· 29
4. 검토 소결 ····· 34
제3절 법률회피 행위와 법해석 방법론 ····· 35
Ⅰ. 형식과 실질의 긴장관계 ····· 35
Ⅱ. 법률회피 행위와 '형식'의 우위 ····· 37
1. '형식'의 우위와 '문언중심' 법해석 ····· 37
2. 문언중심 법해석의 장점 ····· 38
3. 문언중심 법해석의 한계 ····· 43
Ⅲ. 법률회피 행위와 '실질'의 중시 ····· 45
1. '실질'을 중시하는 법해석 ····· 45
2. 법률 언어의 종합적 이해 ····· 47
3. 법률의 입법목적 및 헌법적 질서 ····· 58
4. '실질' 중시 법해석에 대한 비판 ····· 71
Ⅳ. 유추와 귀납적 접근법 ····· 71
1. 유비추론(Ejusdem Generis)과 유연한 법해석 ····· 71
2. 유비추론의 구조 ····· 74
3. 유비추론의 효용 ····· 75
4. 유비추론의 한계 ····· 78
5. 법률회피 문제와 유비추론 법리 활용 ····· 80
Ⅴ. 이익형량 및 비교편익 분석 ····· 80
1. 종합적 판단 방식으로서의 이익형량 논증 ····· 80
2. 이익형량과 법경제학적 접근방식 ····· 85
3. 이익형량 검토의 유의점 ····· 92
Ⅵ. 검토 소결 ····· 92
제4절 구체적 사안의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 94
Ⅰ.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금지와 허용 ····· 94
Ⅱ. '형식'이 '실질'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 사례 ····· 9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기간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사건) ····· 95
2. 여행업에 포함되는 등록대상 활동(제주지방법원 2021노411 판결) ····· 97
3. 법인 등록세 부과 대상(대법원 2007두26629 판결) ····· 98
Ⅲ. '실질'이 '형식'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 사례 ····· 99
1. 실질 중시와 규제 법망에의 포섭 ····· 99

2. 국외 사례 ····· 99
3. 국내 사례 ····· 100
Ⅳ. 검토 소결 ····· 107

제3장 신산업의 혁신과 규제 ····· 111

제1절 신산업의 등장과 사회적 영향력 ····· 113
Ⅰ. 신산업의 등장 ····· 113
1. 기술발전과 새로운 사업모델 등장 ····· 113
2. 네트워크 경제와 플랫폼 신산업의 등장 ····· 114
Ⅱ. 플랫폼 신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 120
1.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력 ····· 120
2. 대규모 플랫폼의 지배적 영향력 ····· 122
제2절 신산업과 규제 ····· 126
Ⅰ. 혁신에 대한 사회의 반응 ····· 126
1. 혁신을 수용하는 시점 ····· 126
2. 규제의 적시성 ····· 127
3. 법과 혁신의 긴장관계 ····· 128
Ⅱ. 혁신의 수용과 리스크 관리 ····· 129
1. 규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 ····· 129
2. 혁신의 우선적 허용을 주장하는 관점 ····· 135
3. 규제의 적정성 ····· 139
제3절 신산업의 쟁점과 파급효과 ····· 144
Ⅰ. 신산업과 관련된 가치와 권익 ····· 144
Ⅱ. 플랫폼 신산업의 혜택과 편의 ····· 146
1. 시장 접근성 증대 및 거래 효율성 증대 ····· 146
2. 소비자의 편의와 후생 증대 ····· 147
3. 생산성 제고 및 자원의 효과적 배분 ····· 149
4. 소외문제 해결 및 포용성 강화 ····· 150
5. 고용창출 효과 ····· 151
6. 정보비대칭 해소 ····· 151
Ⅲ. 플랫폼 신산업이 초래하는 문제 ····· 153
1. 사회 일반의 안전과 공익 보호 ····· 153
2.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 ····· 154
3. 공정경쟁 보장 문제 ····· 157
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의 신뢰성 문제 ····· 158
5.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 160
6. 조세납부 문제 ····· 162
7. 안전과 손해배상책임 분배 ····· 165
Ⅳ. 신산업 관련 설문조사 내용 ····· 166

1. 국외 설문조사 ····· 166
2. 국내 설문조사 ····· 168

제4장 플랫폼 신산업 관련 외국 판결 및 입법례 ····· 173

제1절 플랫폼 신산업과 규제 쟁점 ····· 175
Ⅰ. 신산업 업종의 판단과 규제법 적용 ····· 175
1. 신산업 업종의 판단 ····· 175
2. 플랫폼 여객운송 사업의 업종 분류 ····· 175
제2절 유럽연합의 플랫폼 신산업 업종 판단 ····· 176
Ⅰ.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과 정보사회서비스 ····· 177
1.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 ····· 177
2. 정보사회서비스의 개념 ····· 177
Ⅱ. 우버의 업종 및 규제법 적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178
1. 유럽사법재판소의 스페인 우버 판결(ECJ Case C-434/15) ····· 178
2. 유럽사법재판소의 프랑스 우버 판결(ECJ, Case C-320/16) ····· 180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신산업 업종 판단기준 검토 ····· 182
1. 최종 오프라인 서비스와의 연계성 및 분리가능성 ····· 182
2. 최종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플랫폼의 영향력 ····· 183
3.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통제력 ····· 183
4. 새로운 공급과 수요의 창출 여부 ····· 184
Ⅳ. 비교 대상으로서의 유럽사법재판소 에어비앤비 판결 ····· 185
1.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에어비앤비 사업 ····· 185
2. 최종 오프라인 서비스와의 분리가능성 ····· 186
3. 최종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플랫폼의 영향력 ····· 186
4.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통제력 ····· 187
5. 새로운 수요와 공급의 창출 여부 ····· 187
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 ····· 187
제3절 유럽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과 입법례 ····· 189
Ⅰ. 유럽연합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 ····· 189
Ⅱ. 유럽 공유경제 아젠다 ····· 190
1. 유럽 공유경제 아젠다 의의 ····· 190
2. 유럽 공유경제 아젠다 주요 내용 ····· 191
3. 손해배상책임 문제 ····· 193
4. 생산자 지위와 소비자 지위 ····· 194
5.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 196
6. 조세 납부의 문제 ····· 198
7. 검토 소결: 혁신의 장려와 적정 수준의 규제 ····· 199
Ⅲ. EU의 신산업 과세 지침 ····· 200
1. EU 디지털 경제 과세지침 제정안 ····· 200

2.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지침 제안서(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 201
3. 디지털 서비스 수입의 과세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안서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 202
Ⅳ.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 203
1.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이유 ····· 203
2. 디지털 서비스법 주요내용 ····· 203
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 205
1. 디지털 시장법 제정 이유 ····· 205
2. 디지털 시장법 주요내용 ····· 206
Ⅵ. 유럽의 플랫폼 경제활동 관련 행정제재 ····· 207
1.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계 ····· 207
2.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 208
제4절 미국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과 입법례 ····· 210
Ⅰ. 연방정부의 플랫폼 신산업 규제 입법례 ····· 210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제 ····· 210
2.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주요 법률안 ····· 211
3.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주요 법률 개정안 ····· 214
4. 기타 조치들 ····· 215
5. 검토 소결 ····· 216
Ⅱ. 주정부의 플랫폼 신산업 규제 움직임 ····· 217
1. 캘리포니아 주의 네트워크 운송산업 규제법 ····· 217
2. 플랫폼 여객운송 차량의 안전확인 및 보험가입 의무 ····· 219
3. 플랫폼 단기임대 사업자의 책임 (Airbnb, Inc. v.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사건) ····· 221
Ⅲ.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거래량 연동 규제 ····· 222
1. 거래 규모에 따른 규제의 차등화 ····· 222
2. 우버 등 여객운송 서비스 거래량 연동규제 ····· 223
3.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서비스 거래량 연동규제 ····· 224

제5장 플랫폼 신산업과 노동의 문제 ····· 227

제1절 신산업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 ····· 229
Ⅰ. 신산업과 플랫폼 노동 ····· 229
1.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 ····· 229
2. 플랫폼 노동 현황 ····· 230

Ⅱ. 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 ····· 232
1.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 분류 ····· 232
2.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 ····· 233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외 판례 ····· 239
Ⅰ. 노동계약의 자유와 정부 규제 ····· 239
1. 노동계약의 자유를 우선하는 관점 ····· 239
2. 노동 계약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화 ····· 241
Ⅱ.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 ····· 243
1. 전통적 노동 영역에서 활용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 243
Ⅲ. 신산업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246
1. 계약의 형식과 플랫폼 노동 환경의 실질 ····· 246
2. 플랫폼 기반 여객운송 사업 ····· 247
3. 플랫폼 기반 기타 서비스 사업 ····· 252
4. 노동자 지위 관련 입법 ····· 255
Ⅳ. 검토 소결 ····· 257
1.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신산업의 정체성 ····· 257
2. 통제력(control) 법리 ····· 258
3. 경제적 현실과 전산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 260
4. 사용자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기능적 표지 ····· 261
제3절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 262
Ⅰ. 근로의 종속성과 실질적 노동 여건 ····· 262
1. 근로의 종속성 ····· 262
2. 실질적 여건의 종합적 검토 ····· 262
Ⅱ. 전통적 분야에서의 근로자 지위 판결의 시사점 ····· 263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 263
2.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 ····· 265
Ⅲ. 국내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의 법적 지위 ····· 267
1.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의 지위(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629 판결) ····· 267
2.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의 법적 지위
(서울행정법원 22021구합72352 판결) ····· 269
Ⅳ. 타다 운전자의 법적 지위 ····· 271
1. 타다 운전자의 근로자성 문제 ····· 27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 272
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 273
4. 행정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83 판결) ····· 276
5. 참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398 판결) ····· 278
6. 검토 소결 ····· 279

제6장 플랫폼 신산업과 공정경쟁의 문제 ····· 281

제1절 신산업 등장과 공정경쟁 ····· 283
Ⅰ. 신·구 사업자 간 경쟁의 공정성 ····· 283
1. 신산업을 둘러싼 사회갈등 ····· 283
2.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 284
3. 진입규제의 기능과 경쟁 여건 검토 ····· 287
제2절 플랫폼 운송과 공정경쟁 문제 ····· 292
Ⅰ. 여객운송 산업의 의무부과 및 금지처벌 규정 ····· 292
1. 여객운송을 위한 택시영업 면허제도 ····· 292
2. 플랫폼 여객운송 사업의 국내도입 시도 ····· 294
Ⅱ. 타다 서비스와 여객운송 플랫폼 산업의 적법성 논란 ····· 295
1. 타다 사업과 여객운송 플랫폼 ····· 295
2. 타다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회적 효용 ····· 297
Ⅲ. 타다 영업의 적법성 논란과 재판의 진행 ····· 30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타다 영업의 적법성 논란 ····· 300
2. 검찰의 기소 이유 ····· 302
3. 타다 측의 주장 ····· 302
4. 타다 사건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 판결) ····· 303
5. 타다 사건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노845 판결) · 308
6. 타다 판결의 의의 분석 ····· 310
7. 비교 대상으로서 외국 경쟁갈등 사건 ····· 312
Ⅳ. 국회의 '타다 금지법' 입법 ····· 3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 314
2. 개정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 315
3. '타다 금지법'의 주요 내용 ····· 316
4. '타다 금지법' 위헌소송 ····· 318
Ⅴ. 타다 서비스의 재편성과 심야 택시난 지속 ····· 319
1. 타다 베이직 서비스 철수 ····· 319
2. 심야 택시난 현상과 규제완화 움직임 ····· 320
3. 검토 소결 ····· 322
제3절 신산업의 경쟁갈등 참고사례 ····· 326
Ⅰ. 화물운송 서비스 불법성 논란 ····· 326
1. 쿠팡 로켓배송과 유상화물운송 ····· 326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허가 ····· 327
Ⅱ. 리걸테크 플랫폼과 공정경쟁 문제 ····· 328
1.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 ····· 328
2.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 329
3. 국내 법률 플랫폼 갈등 ····· 331
4. 헌법재판소의 플랫폼 법률 서비스 판단 ····· 333
5.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 334
6. 검토 소결 ····· 335

제7장 신산업 분야의 법률회피와 법해석 ····· 337

제1절 현행 규제법 체계 구성과 법해석 ····· 339
Ⅰ. 현행 규제법 체계의 기본적 구성 ····· 339
1. 규제법 해석과 체계적 정합성 ····· 339
2.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 ····· 339
3.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 342
Ⅱ. 규제완화 주요 법제 ····· 349
1.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 법률 ····· 349
2. 행정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엄격한 심사 요구 ····· 351
3. 검토 소결 ····· 352

제2절 규제정책 방향성과 법해석 고려요소 ····· 353
Ⅰ. 규제정책의 적정 방향과 수준 ····· 353
1. 규제의 개념과 대상 범주 ····· 353
2. 규제 목적에 따른 분류 ····· 355
3. 정치모델에 따른 유형 분류 ····· 356
4. 규제의 패러다임 ····· 360
5. 규제 제도와 정부경쟁력 간의 관계 ····· 365
Ⅱ. 규제완화 주요 정책 ····· 373
1. 임시허가(규제 샌드박스) 제도 ····· 373
2. 신속처리 인증 제도 ····· 374
3. 사전심사청구 제도 ····· 375
4. 규제 일몰 제도 ····· 376
5. 유연한 규제형평 제도 ····· 376

제3절 법률회피 행위와 행정형법 해석 ····· 379
Ⅰ. 행정형법의 의의와 기능 ····· 379
Ⅱ. 행정형법의 해석 원칙 ····· 381
1.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최후수단성 ····· 381
2. 가벌성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법해석 ····· 383
3. 규제위반 행위의 성격 검토 ····· 388
4. 경제규제 영역의 형사처벌 개선 노력 ····· 389
5. 검토 소결: 행정형법 조항의 한정적 해석 ····· 390

제4절 신산업과 경제규제 위반행위 판단 ····· 391
Ⅰ. 법률회피 행위 판단의 접근방식 ····· 391
1. 법해석론 ····· 391
2. 규제정책 이론 ····· 392
Ⅱ.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허용 논리 ····· 393
1. 법해석론적 접근방식 ····· 393
2. 규제정책적 관점 ····· 395

Ⅲ.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 논리 ····· 397
1. 법해석론적 접근방식 ····· 397
2. 규제정책적 관점 ····· 398

제8장 결론 ····· 401

제1절 연구의 요약 ····· 403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 406
Ⅰ. 법률회피 문제와 정책적 사고 ····· 406
Ⅱ. 규제정책의 설계와 조정 ····· 408
Ⅲ. 법률회피 문제에 대한 접근과 논의의 결론 ····· 409

16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3-06

연구책임자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3월 31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6

제2장 민사건설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7

제1절 민사건설재판부와 사건 통계 현황 ····· 9
Ⅰ. 민사건설전담재판부 ····· 9
Ⅱ. 건설사건의 접수건수 ····· 12
1. 최근 5년간 공사대금, 손해배상(건) 사건의 접수건수 ····· 12
2. 2021년도 법원별 공사대금, 손해배상(건) 사건의 접수건수 ····· 13
3. 최근 5년간 민사건설전담재판부의 건설사건 접수건수 ····· 15
Ⅲ. 건설사건의 처리기간 ····· 18
1. 최근 5년간 공사대금, 손해배상(건) 사건의 처리기간 ····· 18
2. 최근 5년간 민사건설전담재판부의 건설사건 처리기간 ····· 21
Ⅳ. 건설사건의 처리 현황 ····· 23
1. 최근 5년간 공사대금, 손해배상(건) 사건의 처리 현황 ····· 23
2. 최근 5년간 민사건설전담재판부의 건설사건 처리 현황 ····· 26
Ⅴ. 감정절차 관련 통계 ····· 30
1. 건설사건 중 감정 실시 비율 ····· 30
2. 법원별 감정 사건수 ····· 32
제2절 민사건설재판 절차 현황 ····· 35
Ⅰ. 개관 ····· 35
Ⅱ. 초기단계(기일 지정 및 쟁점정리) ····· 35

Ⅲ. 감정 준비 단계 ····· 36
1. 감정신청과 준비명령 등 ····· 36
2. 감정 채부 결정 ····· 37
3. 감정인 후보자 선정 및 감정인 지정 ····· 38
4. 감정료의 결정과 예납 ····· 39
Ⅳ. 감정기일(감정인신문기일) 및 감정 시행 ····· 40
1. 감정기일의 중요성 ····· 40
2. 감정인에 대한 기초사항 확인 ····· 41
3. 감정사항의 확정 ····· 41
4. 감정자료의 확정 ····· 43
5. 감정인에 대한 고지, 확인사항 ····· 43
Ⅴ. 감정서 제출 및 이후 절차 ····· 45
1. 감정업무의 수행 및 감정 시행 중 협의 ····· 45
2. 감정의 보충 ····· 45
가. 의미 ····· 45
나. 감정보완(사실조회) ····· 46
다. 감정인신문 ····· 46
3. 재감정 ····· 47
4. 감정료 지급 ····· 48
Ⅵ. 조정 ····· 48
제3절 건설감정인 자격과 감정료 관련 제도의 현황 ····· 50
Ⅰ. 건설감정의 종류와 특징 ····· 50
Ⅱ. 건설감정인의 명단 등재 제도 ····· 51
1. 명단 등재 자격 ····· 51
2. 명단 등재 절차 ····· 52
가. 절차 일반 ····· 52
나. 각급 법원 평가 ····· 53
다. 명단 등재 ····· 54
Ⅲ. 건설감정인 명단 관리 및 감정인 평정 제도 ····· 55
1. 개관 ····· 55
2. 명단 삭제 ····· 55
가. 내용 ····· 55
나. 현황 ····· 56
3. 감정인 평정 ····· 57
가. 내용 ····· 57
나. 현황 ····· 58
다. 통합감정 메뉴에 따른 감정인 평정 ····· 60
Ⅳ. 건설감정료 산정 ····· 61
1. 건설감정료 산정 방식 ····· 61
2. 감정료 표준안 산정프로그램 ····· 62
가. 내용 ····· 62
나. 실무상 운용 현황 ····· 63
제4절 그 외 관련 제도 현황 ····· 65

Ⅰ.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 65
1. 도입 배경 ····· 65
2. 현황 ····· 65
가. 명단 ····· 65
나. 통계 ····· 66
다. 설문 결과 ····· 68
라. 활성화 방안 마련 ····· 68
3. 상임전문심리위원 조기절차 관여 제도의 시범실시 ····· 69
4.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교육, 강의 ····· 69
Ⅱ. 최근 도입된 제도 ····· 70
1. 건설사건 전문법관 제도 ····· 70
가. 도입 과정의 논의 ····· 70
나. 건설사건 전문법관의 역할 및 확대 ····· 71
2. 통합감정 메뉴 ····· 72
Ⅲ. 기타 ····· 74
1. 건설 분야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 ····· 74
2. 건설 관련 각종 기관 ····· 77
제5절 민사건설재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79
Ⅰ. 설문 대상 및 결과 회신율 ····· 79
Ⅱ.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0
1. 기초사항 ····· 80
2. 민사건설재판 지연 원인 ····· 81
3. 각종 표준안 관련 ····· 81
가.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상의 표준서식 사용 정도 ····· 81
나. 추가로 표준화가 필요한 감정 분야 ····· 83
다. 판결서 양식, 구조의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 ····· 83
4. 감정절차 관련 ····· 84
가. 감정진행 빈도 ····· 84
나. 감정에 관한 의견 처리 방법 ····· 84
다. 감정서 제출 이후 감정인신문 ····· 85
라. 건설감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 86
5. 감정인 명단, 선정 제도 관련 ····· 87
6. 감정인 평정 제도 ····· 88
가. 실무상 활용 ····· 88
나. 주심판사의 평정표 작성 ····· 89
다.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의 평정표 작성 ····· 89
라. 감정인에 대한 판결 결과, 평정 결과 통지 ····· 90
7. 감정료 관련 ····· 91
가. 건설감정료 수준에 대한 인식 ····· 91
나. 감정료 산정 방식 ····· 91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료 표준안 산정프로그램의 사용 현황 ····· 92
라. 감정료의 공동 예납 관련 ····· 94
8. 건설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관련 ····· 95
가. 건설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용도 ····· 95

나. 건설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만족도 ····· 95
9. 제도 개선 방안 관련 ····· 96
10. 기타 의견 ····· 97
Ⅲ. 설문조사 결과 요약 ····· 98
제6절 민사건설재판의 실무와 제도상 문제점 ····· 100
Ⅰ. 서론 ····· 100
Ⅱ. 감정인의 자질 관련 문제 ····· 101
1. 면담 내용 ····· 101
2. 감정인 명단 제도의 문제 ····· 103
가. 감정 외주 ····· 103
나. 등재 기준 문제 ····· 103
다. 인력풀 미확보 ····· 104
3. 감정인 선정 제도의 문제 ····· 105
4. 감정인 평가 제도의 문제 ····· 106
Ⅲ. 소송관계인의 전문성,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감정 ····· 107
1. 면담 내용 ····· 107
2. 감정신청 단계에서 준비 부족 ····· 109
3. 감정절차에 관한 당사자들의 참여권 관련 ····· 110
4. 감정결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 111
Ⅳ. 소송지연 ····· 111
1. 면담 내용 ····· 111
2. 소송지연 원인 ····· 112
Ⅴ. 감정료 ····· 113
1. 면담 내용 ····· 113
2. 고액의 감정료 ····· 114
3. 감정료 예측 및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 115
Ⅵ. 건설사건 심리의 어려움 ····· 116
1. 면담 내용 ····· 116
2. 사건의 복잡성 ····· 118
3. 사건수 ····· 118

제3장 각국의 민사건설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21

제1절 서설 ····· 123
제2절 영국 ····· 125
Ⅰ. 기술 및 건설 재판부 ····· 125
1. 개관 ····· 125
가. 재판부 현황 ····· 125
나. 적용 범위 ····· 126
다. 근거 법령 등 ····· 126
2. 사건 통계 ····· 127
3. 사건관리 ····· 129
4. 관련 기관과의 협약 ····· 129

5. 면담 내용 ····· 130
Ⅱ. 재결 ····· 131
1. 재결의 도입과 적용범위 ····· 131
가. 건설분쟁에서 법정 재결 제도의 도입 ····· 131
나. 적용 범위 ····· 133
2. 재결의 특징과 장단점 등 ····· 134
가. 특징 ····· 134
나. 장단점 ····· 134
다. 실무상 활용 ····· 135
3. 건설계약 계획 규정에 의한 구체적 내용 ····· 135
가. 재결 회부 및 재결인 선정 ····· 135
나. 재결인의 권한 ····· 136
다. 재결인의 결정 ····· 136
4. 재결인의 결정에 대한 이의 ····· 137
가. 법률, 사실관계, 절차에 관한 오류 ····· 137
나. 재결인의 관할권 또는 자연적 정의의 침해 ····· 138
5. 재결인 인력풀 ····· 138
Ⅲ. 건설 소송 전 규약 ····· 139
1. 지위 및 목적 ····· 139
2. 범위 ····· 140
3. 내용 ····· 140
가. 청구서와 답변서 ····· 140
나. 소송 전 회의(Pre-Action Meeting) ····· 141
다. 종결 및 미준수의 경우 ····· 142
4. 효과 및 비판 ····· 142
Ⅳ. TCC에 의한 민사건설재판 절차 ····· 143
1. 사건관리와 첫 사건관리회의 ····· 143
가. 사건관리 ····· 143
나. 첫 사건관리회의 ····· 144
다. 스콧표 ····· 145
2. 선결문제(Preliminary Issues) ····· 146
3. 변론 전 검토(Pre-trial Review, PTR) ····· 147
4.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 ····· 148
Ⅴ. 전문가 증거 제도 ····· 148
1. 의의와 종류 ····· 148
2. 전문가 증거 관련 절차 ····· 149
가. 선정 ····· 149
나. 전문가 증거의 채택 ····· 150
다. 전문가에 대한 지시·의뢰 ····· 151
라. 전문가 회의와 공동진술 ····· 152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52
바. 전문가 증거의 제시 ····· 153
Ⅵ. 결론 ····· 154
제3절 독일 ····· 156

Ⅰ. 건설재판부와 사건 통계 현황 ····· 156
1. 건설사건의 관할 및 의미 ····· 156
가. 건설사건의 사물관할 ····· 156
나. 건설사건의 의미 ····· 157
2. 민사건설재판부 현황 ····· 157
가. 지방법원 ····· 158
나. 고등법원 ····· 158
3. 건설사건 통계 ····· 159
가. 사건수 ····· 159
나. 평균 소송기간 및 감정실시율 ····· 160
4. 건설재판의 특징 ····· 161
Ⅱ. 독일 민사건설재판 절차의 특징 ····· 162
1. 독립적 증거조사절차 ····· 162
가. 의미 ····· 162
나. 건설사건에서의 의의 ····· 162
다. 요건 및 절차 참여권 ····· 163
라. 감정서의 구술진술과 서면보충 ····· 164
마. 감정보완 ····· 165
바. 효과 ····· 165
2. 감정절차 관련 특징 ····· 166
가. 감정절차 촉진을 위한 각종 조치 ····· 166
나. 감정인 소환 및 구술설명 ····· 167
다.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 ····· 169
라.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 ····· 170
3. 판결 관련 특징 ····· 170
Ⅲ. 감정인 자격 관련 제도 ····· 171
1. 조언자로서의 감정인 역할 도입 ····· 171
2. 공적으로 임명되고 선서한 감정인 제도 ····· 171
가. 의의 ····· 171
나. 임명 및 관리 ····· 172
다. 효과 ····· 174
라. 공적 감정인 명단의 작성 및 공개 ····· 174
마. 공적 감정인 연수 및 교육 ····· 176
3. 건설 관련 기타 조직, 기관 ····· 177
가. 감정인 자격 관리 서클 ····· 177
나. 건설재판부대회 ····· 178
Ⅳ. 결론 ····· 179
제4절 프랑스 ····· 181
Ⅰ. 민사건설재판부와 사건 통계 현황 ····· 181
1. 민사건설재판부 현황 ····· 181
2. 건설사건 관련 통계 ····· 182
Ⅱ. 프랑스 건설사건과 민사건설재판 절차의 특징 ····· 184
1. 건설사건의 특징 ····· 184
가. 다수 당사자 ····· 184

나. 감정의 중요성 ····· 184
2. 민사건설재판 절차의 특징 ····· 185
가. 감정 레페레 ····· 185
나. 사전절차 ····· 186
다. 본안변론 및 판결 ····· 187
3. 건설감정절차 ····· 188
가. 감정조사 명령 ····· 188
나. 감정회의 ····· 189
다. 감정서 제출 및 이후 절차 ····· 194
라. 감정료의 문제 ····· 194
Ⅲ. 특임법관 제도 ····· 195
1. 도입 과정 ····· 195
2. 특임법관의 권한과 업무 ····· 197
가. 감정인의 선임, 교체 등 ····· 197
나. 감정인의 업무 및 감정절차 감독 ····· 198
다. 자료 제출 명령 ····· 198
라. 감정인과의 소통 ····· 199
마. 예납금 및 보수 ····· 199
바. 감정인 명단 등록, 감정인 평가 및 교육 ····· 200
Ⅳ. 법원감정인 제도 ····· 200
1. 감정인 명단 등록 및 관리 ····· 200
가. 종류 ····· 200
나. 명단 등록 요건 및 절차 ····· 201
다. 건설감정인 명단 ····· 202
2. 감정인의 연간보고서 작성 의무 ····· 202
3. 감정인 연수 ····· 203
가. 연수 예시 ····· 203
나. 연수의 중요성 ····· 204
4. 감정인 평가 ····· 205
5. 감정인 협회 ····· 206
Ⅴ. 결론 ····· 208
제5절 일본 ····· 209
Ⅰ. 건축관계소송사건 통계 및 민사건설재판부 현황 ····· 209
1. 건축관계소송 개념 ····· 209
2. 건축관계소송사건 통계 ····· 209
가. 접수사건수, 평균 심리기간 및 심리기간 분포 ····· 209
나. 종국구분별 건수 ····· 211
다. 심리의 현황 ····· 212
라. 감정실시율 및 감정기간 ····· 213
마. 조정회부사건 관련 통계 ····· 214
3. 민사건설재판부 ····· 215
가. 현황 ····· 215
나. 도쿄지방재판소,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안내사항과
각종 일람표 기재례 ····· 216

Ⅱ. 건축관계소송위원회 ····· 219
1. 건축관계소송위원회 도입 ····· 219
2. 건축관계소송위원회의 소관 사무 ····· 220
가. 감정인 후보자의 선임 등 ····· 220
나. 운영에 관한 주요 심의사항 ····· 222
3. 효과 ····· 222
Ⅲ. 건축관계소송 관련 주요 절차 ····· 223
1. 쟁점정리절차 ····· 223
2. 소제기 전의 증거수집의 처분 등 ····· 224
가. 의의 ····· 224
나. 내용 ····· 225
다. 실무상 운용 현황 ····· 227
3. 계획심리 ····· 228
가. 의의 ····· 228
나. 내용 ····· 228
4. 건축관계소송사건의 심리모델 제시 ····· 230
가. 센다이지방재판소의 표준심리모델 ····· 230
나. 도쿄지방재판소의 심리모델 ····· 230
Ⅳ. 전문위원 제도와 감정 제도 ····· 231
1. 전문위원 제도 ····· 231
가. 의의 및 특징 ····· 231
나. 내용 ····· 232
다. 관련 통계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 234
2. 감정 제도 ····· 236
가. 실무상 운용 현황 ····· 236
나. 감정인 선임 절차 ····· 236
다. 감정인의 발문(発問) 제도의 실무적 운용 ····· 237
라. 감정인에 대한 지원 ····· 238
Ⅴ. 결론 ····· 239

제4장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 ····· 241

제1절 개관 ····· 243
제2절 재판절차 관련 개선방안 ····· 245
Ⅰ. 재판 준비 단계 ····· 245
1. 심리계획수립의 체계화 ····· 245
2. 쟁점정리의 통일 ····· 249
Ⅱ. 감정 단계 ····· 251
1. 감정기일의 실질화 ····· 251
2. 감정회의의 도입 ····· 256
가. 필요성 ····· 256
나. 도입 방안 ····· 257
다. 입법론 ····· 258

3. 감정절차 지연 최소화 ····· 260
가. 감정자료와 감정서의 제출기한 ····· 260
나. 감정보완 제한 ····· 261
다. 입법론 ····· 261
4. 감정서 양식 표준화 ····· 262
Ⅲ. 변론종결 단계 ····· 264
1. 화해권고결정 활용 ····· 264
2. 각종 계산 프로그램 개발 ····· 264
3. 판결서 양식 표준화 ····· 264
제3절 건설감정인 자격 관련 개선방안 ····· 268
Ⅰ. 건설감정인 선정·관리 위원회 설치 ····· 268
Ⅱ. 감정인 명단 등재 및 관리 ····· 271
1. 감정인 명단의 통합관리 및 차별화 ····· 271
2. 감정인 명단 조정 제도의 활성화 ····· 272
3. 등재기간의 연장 ····· 274
4. 감정인 명단의 공개 ····· 275
Ⅲ. 감정인 평가 방법 ····· 275
1. 평정 결과의 활용 ····· 275
가. 평정 결과 활용의 중요성 ····· 275
나. 활용 방안 ····· 276
2. 평정 제도 활성화 방안 ····· 277
가. 평정 가능 단계의 확대 ····· 277
나. 평정권자의 확대 ····· 277
다. 입법론 ····· 278
3. 평가기준의 개선 ····· 279
Ⅳ. 감정인에 대한 지원 ····· 282
1. 감정인에 대한 사건 결과 통지 ····· 282
2. 건설감정인에 대한 교육, 연수 ····· 282
제4절 전문성 강화 및 기타 제도 개선방안 ····· 284
Ⅰ.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용 ····· 284
1. 상임전문심리위원 활용 사례 ····· 284
2. 감정신청 초기의 일괄 참여결정 ····· 285
3. 소규모 건설사건에서 준참심제적 재판 참여 ····· 286
4. 공동참여결정 활성화 및 증원 필요성 ····· 288
가. 공동참여결정 활성화 ····· 288
나. 증원 필요성 ····· 289
Ⅱ. 감정담당판사 신설 및 감정센터 ····· 290
1. 감정담당판사 ····· 290
2. 감정센터 ····· 292
Ⅲ. 사전 재결 절차의 도입 ····· 292

제5장 결론 ····· 295

167.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3-07

연구책임자 : 권경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4월 2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압수물 보관·관리의 의의 ····· 5
Ⅰ. 압수물의 의의 ····· 5
1. 우리나라 법 규정에 등장하는 압수물, 증거물 ····· 5
2. 이 글에서 '압수물'의 정의 ····· 8
Ⅱ. 압수물 보관·관리의 의의 ····· 9
제4절 압수물 보관·관리의 중요성 ····· 9

제2장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 11

제1절 법원이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 13
Ⅰ. 법원이 직접 압수한 물건의 보관·관리 ····· 13
1. 공판절차에서 수소법원의 압수 ····· 13
가. 법원이 하는 압수의 유형 ····· 13
나. 절차 ····· 18
2.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물건 ····· 20
3.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압수 ····· 20
가. 의의 ····· 20
나. 이용실태 ····· 20
다. 요건 ····· 21
라. 증거보전의 실시 ····· 22
마. 증거보전 실시 후 증거의 보관·사용 ····· 24

Ⅱ.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보관·관리 ····· 28
1.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거신청하면서 제출하는 경우 ····· 28
2. 형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른 경우 ····· 28
제2절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규정 ····· 29
Ⅰ. 압수물의 접수·보관 ····· 29
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의 규정 ····· 29
2. 압수물의 보관 ····· 32
Ⅱ. 압수물의 반출 ····· 34
Ⅲ. 압수물의 처분 ····· 35
1. 사건 종결시 압수물의 처분 ····· 35
2. 사건 종결 전 압수물의 처분 ····· 36
가. 폐기 ····· 38
나. 대가보관 ····· 39
다. 환부 ····· 40
라. 가환부 ····· 45
마. 피해자환부 ····· 51
3. 상소한 경우 ····· 51
Ⅳ.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 52
1. 압수물의 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제점 ····· 52
가. 형사소송법 규정 ····· 52
나. 문제점 ····· 52
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 54
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의 문제점 ····· 56
제3절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과 문제점 ····· 57
Ⅰ.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 ····· 58
1. 절차에 따른 현황 ····· 58
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운영 현황 ····· 59
3.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 ····· 60
4. 사건이 종결·이송된 경우 ····· 60
5. 압수물 보관·관리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 61
Ⅱ. 현재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의 문제점 ····· 61
1. 인적·물적 시설의 미비와 임기응변식 대처 ····· 61
2. 증거조사방식의 미준수 ····· 62
가. 증거물의 조사방식 ····· 62
나. 실무 ····· 63
제4절 외국의 압수물 보관·관리 ····· 64
Ⅰ. 일본 ····· 64
1. 압수물의 의의 ····· 65
가. 압수의 대상 ····· 65
나. 압수물의 의미 ····· 67

다. 영치와의 구별 ····· 68
라. 재판소가 압수하지 않은 증거물의 제출 ····· 69
2. 압수물의 보관·관리 ····· 71
가. 관련 규정 ····· 71
나. 증거물의 보관과 환부·가환부 ····· 72
3. 처분사무 ····· 73
가. 관련 규정 ····· 73
나. 몰수 ····· 74
다. 압수물의 환부 ····· 76
라. 압수물의 가환부 ····· 77
마. 환부불능물의 공고 ····· 78
4. 일본 최고재판소 압수물 등 취급규정 및 압수물 운용통달 ····· 79
Ⅱ. 독일 ····· 85
1. 중간절차에서 검찰의 기록 제출 의무 ····· 85
가. 근거규정 ····· 85
나.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문제 ····· 87
2. 압수 또는 압류물의 보관·관리 ····· 90
가. 논의의 방향 및 범위 ····· 90
나. 연방법의 규율 ····· 91
다. 주(州)법의 규율 ····· 97
3.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보전 ····· 111
가. 증거보전을 위한 법원의 증거조사 ····· 111
나. 그 밖의 증거보전 ····· 112
Ⅲ. 프랑스 ····· 113
1. 압수물 관리의 특징 및 현황 ····· 113
가. 압수물의 정의 ····· 113
나. 압수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시도 ····· 117
다. 압수물 관리 기관 ····· 118
2. 프랑스 법원에서의 압수물 보관·관리 ····· 119
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 119
나. 압수물 관리에 관한 매뉴얼 ····· 121
Ⅳ. 오스트리아 ····· 142
1. 압수물 보관·관리 ····· 142
가. 관련 법규 ····· 142
나. 압수의 목적과 압수에 관한 관념의 변화 ····· 142
다. 보전된 목적물 내지 자산, 압수물, 증거물, 보관물의 개념 ····· 143
2. 형사소송법상 압수 ····· 144
가. 압수의 근거규정 ····· 144
나. 압수의 개념 ····· 145
다. 압수의 요건 ····· 146

라. 압수의 절차 ····· 148
마. 압수의 취소 ····· 149
3. 보전 이후 압수의 가능성 ····· 149
4. 형사절차에서 보전된 목적물 등의 보관·관리 개관 ····· 150
가. 수사절차 ····· 150
나. 공판절차 ····· 154
다. 형사판결 집행 절차 ····· 156
5. 법원의 증거물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규칙 ····· 157
6.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 ····· 162
가. 관할 ····· 162
나. 그라츠 및 빈 고등법원의 보관부서 ····· 163
다. 그라츠 및 빈 지방법원의 보관소 ····· 167
라. 외부 보관 ····· 173
제5절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의 범위 ····· 174
Ⅰ. 현재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실무에 대한 의문 ····· 174
Ⅱ. 외국의 압수물 보관·관리 실무에 대한 검토 ····· 176
Ⅲ.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보관·관리 ····· 179
1. 공소장일본주의 ····· 179
2.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처분권한 ····· 180
가. 보관·관리책임과의 구별 ····· 180
나. 공소장일본주의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처분권한 ····· 181
3.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보관·관리책임 ····· 183
가. 우리나라의 실무 ····· 183
나. 재판 집행의 주체 ····· 183
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법원이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185
Ⅳ. 법원이 압수한 물건의 보관·관리 ····· 188
1. 사건 종결 전 보관·관리·처분 ····· 188
2. 사건 종결 후 법원이 압수한 물건의 처분 ····· 190
가. 우리나라의 실무 ····· 190
나. 일본과의 비교·검토 ····· 190
다. 사건 종결 후 법원이 압수한 물건 처분의 주체 ····· 194

제3장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 197

제1절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와 형사공판절차의 비교 ····· 199
제2절 법원이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와 관련 규정 ····· 200
Ⅰ. 법원이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 200
1.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보관·관리 ····· 200
2. 법원이 압수한 물건의 보관·관리 ····· 201
Ⅱ. 관련 규정 ····· 201
1. 형사소송법의 준용 ····· 201

2.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 201
3.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의 내용 ····· 205
가. 압수물 보관·관리의 주체 ····· 205
나. 압수물의 수리(제3조) ····· 205
다. 압수물의 보관(제5조) ····· 206
라. 압수물의 가출(제6조) ····· 206
마. 압수물의 처리·처분(제4조, 제7조, 제8조) ····· 206
제3절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과 압수물의 보관·관리 ····· 208
Ⅰ. 심리개시결정시 증거조사 ····· 208
Ⅱ. 심리불개시결정 및 불처분결정 ····· 210
1. 심리불개시결정 ····· 210
2. 불처분결정 ····· 210
3. 심리불개시결정과 불처분결정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211
4. 몰수할 수 있는 경우 ····· 212
Ⅲ. 검찰송치결정 및 법원이송결정 ····· 212
Ⅳ. 보호처분시 몰수 ····· 215
1. 몰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15
2. 몰수의 요건 ····· 215
가. 주체 ····· 215
나. 종국결정의 종류 ····· 215
다. 대상물 ····· 216
3. 결정의 방식 ····· 217
4. 집행 및 효력발생의 시기 ····· 217
5. 보호처분의 취소와 몰수물 처분의 보류 ····· 217
가. 문제점 ····· 217
나.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218
다. 몰수물 처분의 보류가 필요한 경우 ····· 219
Ⅴ. 일본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 219
1. 일본 소년보호절차의 관련 규정 ····· 219
2. 증거물의 접수사무 ····· 223
가. 증거물의 개념 ····· 223
나. 증거물의 수령 ····· 224
다. 증거물을 송부받은 이후의 절차 ····· 224
3. 증거물의 보관 및 반출사무 ····· 225
가. 영치재판이 있었던 경우 ····· 225
나. 영치하지 않게 된 경우 ····· 226
4. 검찰관에 대한 송부 ····· 227
가. 증거물을 가환부한 사건 ····· 227
나. 증거물을 청외보관한 사건 ····· 227

다. 검찰관이 사건기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27
라. 사건기록 또는 관계서류의 수수 ····· 227
5. 압수물의 환부공고 및 몰수물 등의 교부 ····· 227
가. 압수물의 환부공고 ····· 227
나. 몰취물 등의 교부 ····· 228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228
제4절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의 특수성과 압수물의 보관·관리 ····· 229
제5절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과 문제점 ····· 230
Ⅰ.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 ····· 230
1. 자료회신 결과 ····· 230
가. 소년보호사건 압수물 예규에 따른 운영 현황 ····· 231
나. 법원에서의 압수물 관리·보관·처리 현황 ····· 234
다.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어려움과 개선방안 ····· 237
2. A가정법원 출장 결과 ····· 237
가. 압수물품 창고 방문 ····· 237
나. 압수물취급담임자 업무 경험이 있는 A행정관과의 인터뷰 ····· 239
다. 압수물 처분 사례 ····· 240
라. A가정법원 압수물 보관소의 사진 ····· 241
3. 압수물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예 ····· 242
Ⅱ. 문제점 ····· 245
1.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의 특징 ····· 245
2. 압수물에 관한 체계적 관리 부족 ····· 246
3. 압수물 처리에 관한 규정의 미비 ····· 246

제4장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 ····· 249

제1절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대법원규칙 신설 ····· 251
1. 대법원규칙안 ····· 251
2. 대법원규칙안의 제안 배경 ····· 260
제2절 전자시스템을 통한 압수물 관리 ····· 299
제3절 물적·인적 시설의 마련 ····· 301
1. 압수물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 ····· 301
2. 특정 유형의 압수물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의 존부 ····· 307
3. 압수물 보관·관리에 필요한 인력 ····· 312
4. 압수물 보관·관리에 필요한 설비 ····· 317
제4절 연수·교육과 기관 간 교류의 필요 ····· 321

제5장 결론 ····· 323

16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3-08

연구책임자 : 김두얼(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3년 5월 1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2장 법원 업무 개선과 통계 ····· 7

제1절 법원정책 ····· 9
제2절 법원정책과 통계 ····· 10
제3절 통계분석 필요성의 사례 1: 판사 업무부담과 판결의 공정성 및 신속성 ····· 12
Ⅰ. 사건 증가 ····· 13
Ⅱ. 판사 인력 증가와 업무부담 ····· 16
Ⅲ. 판결의 신속성 및 공정성 ····· 18
제4절 통계분석 필요성의 사례 2: 파산 및 회생 업무 ····· 21
제5절 소결 ····· 27

제3장 법원이 생산하는 정보와 통계 ····· 29

제1절 법원 업무와 정보생성 ····· 31
Ⅰ. 사건정보 ····· 32
Ⅱ. 원문건 ····· 34
Ⅲ. 행정정보 및 통계 ····· 36
Ⅳ. 간행물 ····· 37
Ⅴ. 기타 ····· 38
제2절 통계제공 방식 혹은 매체 ····· 39
Ⅰ. 「사법연감」 ····· 40
1. 전체 구성 및 내용 ····· 40

2. 통계 ····· 43
Ⅱ. 「법원통계월보」 ····· 47
Ⅲ. 사법통계분석시스템(DW) ····· 49
Ⅳ. 기타 발간물 ····· 51
제3절 소결 ····· 51

제4장 법원이 제공하는 통계 및 정보의 문제점 ····· 53

제1절 「사법연감」 통계편의 문제점 ····· 56
Ⅰ. 책자 방식 제공의 문제 ····· 56
Ⅱ. “개황”절 성격의 불명확성 ····· 60
Ⅲ. “개황”, “누년비교”, “세별표” 간 일관성 문제 ····· 66
Ⅳ. 불필요한 혹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 ····· 70
Ⅴ. 통계표 디자인의 문제 ····· 74
Ⅵ. 그림 디자인의 문제 ····· 77
제2절 원자료 공개 관련 문제점 ····· 83
Ⅰ. 전산화된 정보 ····· 83
Ⅱ. 전산화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 ····· 84
Ⅲ. 자료 연계를 통한 분석 ····· 85
Ⅳ. 원자료 공개 및 제공 절차 ····· 86
제3절 통계 자료 활용의 문제점 ····· 86
제4절 소결 ····· 88

제5장 개선방안 ····· 89

제1절 집계자료 제공 방식 및 「사법연감」의 개선 ····· 91
Ⅰ. 통계제공방식의 전환 ····· 92
Ⅱ. 「사법연감」 “통계편”의 개편 1: 누년비교와 세별표의 제거 ····· 92
Ⅲ. 「사법연감」 “통계편”의 개편 2: “현황평가” 보고서의 신설 ····· 94
Ⅳ. 통계 자료의 편집 혹은 디자인 개선 ····· 94
제2절 원자료 제공 확대 ····· 95
Ⅰ. 자료 제공 수준 ····· 95
1. 항시 제공 ····· 96
2. 표본 제공 ····· 96
3. 조사자료 ····· 97
Ⅱ. 자료 제공 방식 ····· 97
1. 웹페이지 ····· 97
2. 폐쇄터미널 ····· 98
Ⅲ. 정보 공개의 범위 ····· 98
Ⅳ. 원자료 제공에 대한 우려 ····· 100

1. 원자료 공개가 법원의 신뢰에 부당한 해를 끼칠 가능성 ····· 100
2.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 ····· 102
제3절 통계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 ····· 103
제4절 역사통계 정비 ····· 105
제5절 전산화 이전 자료의 관리 및 활용 ····· 107

제6장 결론 ····· 109

16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구총서 2023-09

연구책임자 :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5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3
제2절 연구의 개요 및 방법 ····· 5
Ⅰ. 연구의 개요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미국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 7

제1절 연방법원 법관의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 9
Ⅰ. 연방법원의 법관 임용 개관 ····· 9
Ⅱ. 연방법원 법관의 임용 실태 ····· 11
1. 연방법원 법관의 임용 전 직업 및 직무경력 ····· 11
가. 연방대법관 ····· 11
나. 연방항소법원 법관 ····· 12
다. 연방지방법원 법관 ····· 18
2. 연방법원 법관의 임용 당시 법조경력 및 임용 후 재직기간 ····· 25
가. 연방대법관 ····· 25
나. 연방항소법원 법관 ····· 25
다. 연방지방법원 법관 ····· 28
Ⅲ. 연방법원 법관의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 30
1. 전보인사 ····· 30

2. 사무분담 ····· 31
Ⅳ. 연방법원 법관의 재판보조인력 ····· 31
1. 연방법원의 재판업무 ····· 31
가. 연방대법원 ····· 31
나. 연방항소법원 ····· 35
다. 연방지방법원 ····· 39
2. 연방법원의 재판보조인력 ····· 46
가. 로클럭(Law Clerk) ····· 46
나.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 ····· 52
Ⅴ. 연방법원 법관의 처우 ····· 56
1. 연방법원 법관의 보수 및 연금 ····· 56
가. 보수 ····· 56
나. 연금 ····· 59
2. 연방법원 법관의 퇴직 ····· 60
가. 개관 ····· 60
나. 퇴직 유형 ····· 60
제2절 주 법원 법관의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 63
Ⅰ. 주 법원의 체계 및 구조 ····· 63
Ⅱ. 주 법원의 법관 임용 ····· 67
1. 주 법원의 법관 임용방식 및 자격요건 ····· 67
가. 임용방식 분류 ····· 67
나. 임용방식의 변천 ····· 68
다. 각 주의 법관 임용방식 ····· 69
라. 각 주 1심법원의 법관 임용 자격 ····· 71
2. 표본 선정 ····· 73
Ⅲ. 각 주 법원의 법관 임용 실태 ····· 74
1. 캘리포니아주 법원 ····· 74
가. 법원 조직 개관 ····· 74
나. 법관 임용방식 ····· 74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75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76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77
2. 콜로라도주 법원 ····· 81
가. 법원 조직 개관 ····· 81
나. 법관 임용방식 ····· 82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82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83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83
3. 코네티컷주 법원 ····· 90
가. 법원 조직 개관 ····· 90

나. 법관 임용방식 ····· 90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91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91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92
4. 플로리다주 법원 ····· 95
가. 법원 조직 개관 ····· 95
나. 법관 임용방식 ····· 95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96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96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98
5. 일리노이주 법원 ····· 104
가. 법원 조직 개관 ····· 104
나. 법관 임용방식 ····· 105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106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06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08
6. 뉴저지주 법원 ····· 113
가. 법원 조직 개관 ····· 113
나. 법관 임용방식 ····· 113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114
라. 항소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14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15
7.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 ····· 119
가. 법원 조직 개관 ····· 119
나. 법관 임용방식 ····· 120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120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20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21
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 ····· 129
가. 법원 조직 개관 ····· 129
나. 법관 임용방식 ····· 129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129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30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31
9. 버지니아주 법원 ····· 138
가. 법원 조직 개관 ····· 138
나. 법관 임용방식 ····· 138
다. 대법관의 임용 현황 ····· 139
라. 항소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39
마. 1심법원 법관의 임용 현황 ····· 140

10. 종합 ····· 147
가. 법관 임용방식에 따른 1심법원 법관 임용 실태 ····· 148
나. 최소 요구 법조경력연수에 따른 1심법원 법관 임용 실태 ····· 152
다. 9개 주 전체의 1심법원 법관 임용 실태 ····· 157
라. 9개 주 전체의 항소(심)법원 법관 임용 실태 ····· 158
마. 9개 주 전체의 대법관 임용 실태 ····· 159
Ⅳ. 각 주 법원 법관의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 161
1. 전보인사 ····· 161
가. 일반 원칙 ····· 161
나. 순환근무제 ····· 161
2. 사무분담 ····· 167
가. 일반 원칙 ····· 167
나. 시행 방식 ····· 167
Ⅴ. 주 법원 법관의 재판보조인력 ····· 171
1. 로클럭 및 상근변호사 ····· 171
가. 로클럭(Law Clerk) ····· 171
나.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 ····· 172
2. 기타 보조인력 ····· 173
가. 커미셔너(Commissioner) ····· 173
나. 레프리(Referee) ····· 174
Ⅵ. 주 법원 법관의 처우 ····· 176
1. 법관의 보수 ····· 176
가. 개관 ····· 176
나. 2022년도 급여 수준 ····· 177
다. 법관보수심의위원회 ····· 179
2. 법관의 연금 ····· 182
가. 개관 ····· 182
나. 캘리포니아주 및 미시간주 ····· 185
제3절 소결론 ····· 188
Ⅰ. 요약 ····· 188
Ⅱ. 시사점 ····· 191

제3장 영국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 197

제1절 영국의 법원 조직 및 법관 ····· 199
Ⅰ. 영국의 법원 조직 ····· 199
1. 대법원(Supreme Court) ····· 201
2.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202
3. 고급법원(High Court) ····· 203
가. 3개의 부 ····· 203

나. 산업 및 재산 법원 ····· 204
4. 형사법원(Crown Court)과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 206
가. 형사재판절차의 이원화 ····· 206
나. 형사법원 ····· 207
다. 치안법원 ····· 207
5. 구역법원(County Court)과 가정법원(Family Court) ····· 208
가. 구역법원 ····· 208
나. 가정법원 ····· 209
6. 심판소(Tribunal) ····· 209
Ⅱ. 영국의 법관 ····· 211
1. 개관: 법관의 다양화 ····· 211
2. 법관의 종류 ····· 212
가. 상근 법관 ····· 212
나. 비상근 법관 ····· 216
다. 기타 ····· 218
3. 법관의 임기 및 정년 ····· 220
제2절 영국 법관의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 ····· 221
Ⅰ. 법관 임용 개관 ····· 221
1. 법관 임용방식 ····· 221
가. 임용절차의 변천 ····· 221
나. 법관임용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및 추천 ····· 222
2. 법관 임용자격 ····· 223
Ⅱ. 법관 임용 실태 ····· 224
1. 상급 법관의 임용 현황 ····· 225
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 ····· 225
나. 항소법원 법관 ····· 225
다. 고급법원 법관 ····· 228
2. 하급 법관의 임용 현황 ····· 231
가. 순회판사 ····· 231
나. 지방판사 ····· 235
Ⅲ. 법관의 전보인사 및 사무분담 ····· 238
1. 전보인사 ····· 238
가. 상급 법관 ····· 238
나. 하급 법관 ····· 238
2. 사무분담 ····· 242
Ⅳ. 법관의 재판업무 및 재판보조인력 ····· 243
1. 법관의 재판업무 ····· 243
가. 민사소송 ····· 243
나. 형사소송 ····· 251
다. 상고심 ····· 256

2. 재판보조인력 ····· 258
가. 재판연구원(Judicial Assistant) ····· 258
나. 법률자문관(Justices' Clerk) ····· 261
Ⅴ. 법관의 보수 및 연금 ····· 264
1. 법관의 보수 ····· 264
2. 법관의 연금 ····· 265
가. 개관 ····· 265
나. 퇴직의 종류 ····· 266
다. 연금계획 ····· 268
제3절 소결론 ····· 270
Ⅰ. 요약 ····· 270
Ⅱ. 시사점 ····· 272

제4장 결론 ····· 277

17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연구총서 2023-10

연구책임자 : 권미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6월 12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제2절 연구의 순서와 방법 ····· 5
Ⅰ. 연구의 순서 ····· 5
Ⅱ. 연구방법 ····· 6

제2장 집행유예의 양형원칙과 현황 ····· 7

제1절 형벌이론에서 특별예방과 집행유예 ····· 9
Ⅰ. 형벌의 본질과 양형 ····· 9
1. 형벌의 본질로서 책임과 예방 ····· 9
2. 양형원칙으로서 책임과 예방 ····· 10
Ⅱ.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적극적 특별예방의 의미 ····· 13
1. 법률과 판례에서 나타난 양형원칙 ····· 13
2. 재범위험성에 관한 양형심리방법 ····· 15
제2절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와 양형기준 ····· 17
Ⅰ. 집행유예 제도의 개관 ····· 17
1. 연혁 ····· 17
2. 의의 ····· 18
3. 요건 ····· 18
4. 활용현황 ····· 21
Ⅱ. 집행유예 기준 ····· 23
1. 양형기준제의 시행 ····· 23

2.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방식 ····· 23
3. 특별예방적 관점에서의 검토 ····· 27
제3절 양형심리절차 ····· 33
Ⅰ. 조사제도의 현황 ····· 33
1. 연혁과 도입 배경 ····· 33
2. 주체별 조사제도 현황 ····· 35
3. 현행 조사제도의 문제점 ····· 41
Ⅱ. 양형심리절차의 현황 ····· 43
1. 양형심리모델 ····· 43
2. 양형조사보고서의 현황 ····· 45
3. 문제점 ····· 49
제4절 소결 ····· 50

제3장 각국의 집행유예 제도와 양형기준 ····· 53

제1절 미국 ····· 55
Ⅰ. 프로베이션(Probation) 제도 ····· 55
1. 개관 ····· 55
2. 유사 제도 ····· 56
3. 제한 ····· 57
Ⅱ. 연방법과 양형기준 ····· 57
1. 연방법 ····· 57
2. 연방 양형기준과 재범위험성 ····· 61
3. 양형심리절차에서 재범위험성의 평가 ····· 69
Ⅲ. 주(州)법과 양형기준 ····· 74
1. 각 주(州)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현황 ····· 74
2. 펜실베니아주의 사례 ····· 76
Ⅳ. 시사점 ····· 83
제2절 영국 ····· 84
Ⅰ.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 제도 ····· 84
1. 개관 ····· 84
2. 양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 87
Ⅱ. 집행유예와 양형기준 ····· 88
1. 양형기준제도 일반 ····· 88
2. 집행유예 관련 양형기준 ····· 94
Ⅲ. 양형심리절차와 판결 전 조사 제도 ····· 97
1. 양형심리절차 개관 ····· 97
2. 판결 전 조사 제도 ····· 98
Ⅳ. 시사점 ····· 102
제3절 독일 ····· 103

Ⅰ. 집행유예(Strafaussetzung) 제도 ····· 103
1. 개관 ····· 103
2. 유사 제도 ····· 105
3. 요건 ····· 106
Ⅱ. 양형의 기준 ····· 108
1. 양형의 원칙 ····· 108
2. 재범예측과 그 기준 ····· 109
3. 양형요소별 판단기준 ····· 111
Ⅲ. 양형심리와 사법보조(Gerichtshilfe) 제도 ····· 118
1. 양형심리의 범위 ····· 118
2. 양형조사 방식으로서 사법보조 제도 ····· 119
3. 사법보조인의 조사내용과 방식 ····· 122
4. 보고서의 제출과 심리 ····· 124
5. 활용 현황 ····· 126
Ⅳ. 양형심리 개선을 위한 최근의 동향 ····· 130
1.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논의 ····· 130
2.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논의 ····· 131
Ⅴ. 시사점 ····· 132
제4절 프랑스 ····· 133
Ⅰ. 집행유예(Sursis) 제도 ····· 133
1. 연혁 ····· 133
2.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 134
Ⅱ. 양형의 기준 ····· 138
1. 양형이론의 변화 ····· 138
2. 형법에서 형의 개별화 원칙 확장 ····· 140
3. 집행유예와 관련된 양형판례 ····· 145
Ⅲ. 양형심리절차 ····· 148
1. 조사제도 개관 ····· 148
2. 인적사항 조사 제도 ····· 149
3. 신속한 사회환경 조사 제도 ····· 152
4. 의학적·심리적 검사 및 기타 유용한 조치들 ····· 154
5. 재산상황 조사 ····· 157
Ⅳ.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 ····· 159
1.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에 관한 논의 ····· 159
2. 예측적 사법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 161
Ⅴ. 시사점 ····· 162

제4장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163

제1절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일반론 ····· 165

Ⅰ.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Risk-Need-Responsivity Model) ····· 165
Ⅱ. 단계별 구분과 특징 ····· 166
1. 단계별 구분 ····· 166
2. 평가방식의 특징과 비교 ····· 168
3.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진화 ····· 170
제2절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종류 ····· 171
Ⅰ. Level of Service Inventory(LSI) ····· 172
1. 개요 ····· 172
2. 위험요소의 구성 ····· 173
Ⅱ. 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HCR-20) ····· 176
1. 개요 ····· 176
2. 위험요소의 구성 ····· 177
Ⅲ.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 179
1. 개요 ····· 179
2. 위험요소의 구성 ····· 180
Ⅳ. Static-99 및 Static-2002 ····· 181
1. 개요 ····· 181
2. 위험요소의 구성 ····· 181
Ⅴ. 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SARA) ····· 184
1. 개요 ····· 184
2. 위험요소의 구성 ····· 184
Ⅵ. Offender Assessment System(OASys) ····· 185
1. 개요 ····· 185
2. OGP 및 OVP ····· 186
3. RoSH-A 및 OSP ····· 190
4. OGRS(Offender Group Reconviction Scale) ····· 192
제3절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대한 평가 ····· 193
Ⅰ. 긍정론 ····· 193
1. 치솟는 범죄율과 형벌이론의 변화 - 응보주의에서 공리주의로의 전환 ····· 193
2. 양형개혁에 대한 요구 ····· 195
3. 증거기반양형과 과학적 증거 ····· 197
Ⅱ. 부정론 ····· 200
1. 평가도구의 정확성에 대한 회의론 ····· 200
2. 집단과 개인간의 불일치(Group to Individual) ····· 203
3. 편향성과 평등원칙 위반 문제 ····· 204
4. 적법절차 위반 문제 ····· 205
5. 양형절차 활용의 문제 ····· 207
제4절 우리나라 양형심리에서의 시사점 ····· 208
Ⅰ. 재범위험성 평가의 필요성 ····· 208
1. 증거기반실무와 RNR 모델의 형사정책적 의의 ····· 208

2. 법원의 역할 ····· 209
3. 양형기준의 체계화와 편차의 극복 ····· 210
Ⅱ.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도입 여부 ····· 211
1. 직접적인 양형심리에 도입함은 부정적 ····· 211
2. 현실적 활용방안 ····· 212
3.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 ····· 212

제5장 집행유예 기준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 215

제1절 집행유예 기준의 개선방안 ····· 217
Ⅰ. 방향의 설정 ····· 217
Ⅱ. 재범위험성 관련 양형요소의 추출 ····· 219
1. 검토의 범위 ····· 219
2. 일반범죄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221
3. 성범죄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230
Ⅲ.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검토 ····· 237
1. 일반범죄 재범위험성 관련 요소 ····· 237
2. 성범죄 재범위험성 관련 요소 ····· 256
3. 소결 ····· 266
제2절 양형심리의 개선방안 ····· 274
Ⅰ. 조사제도의 개선 ····· 274
1. 여러 조사제도의 병존 ····· 274
2.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 ····· 281
Ⅱ. 양형심리모델의 개선 ····· 282
1.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양형조사명령 ····· 282
2. 양형의견 제출 방안으로서 양형인자표의 활용 ····· 284
3. 양형요소에 대한 판단이유의 설시 ····· 285

제6장 결론 ····· 289

17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3-11

연구책임자 : 탁상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6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사법신뢰와 형사재판 ····· 7
제1절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현황 ····· 9
Ⅰ. 개관 ····· 9
Ⅱ.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현황 ····· 10
Ⅲ. 형사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 14
Ⅳ. 소결 ····· 18
제2절 형사재판의 의의 및 특성 ····· 20
Ⅰ. 형사재판의 의의 ····· 20
Ⅱ. 형사재판의 특성 및 다른 재판과의 차이 ····· 20
Ⅲ. 형사재판의 현황 및 통계 ····· 27
제3절 형사재판 기피현황 및 원인 ····· 34
Ⅰ. 개관 ····· 34
Ⅱ. 법관들의 형사재판 기피 현황 및 그 원인 ····· 34

제3장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7
제1절 개요 ····· 49
제2절 영국 ····· 50

Ⅰ. 형사사건의 분류 ····· 50
Ⅱ. 형사재판 담당 법원 ····· 50
Ⅲ. 영국 법관의 근무형태 및 사무분담 ····· 53
제3절 미국 ····· 54
Ⅰ. 형사사건의 분류 ····· 54
Ⅱ. 간이법원과 치안판사 ····· 55
Ⅲ. 뉴욕주 형사사법 구조 ····· 57
Ⅳ. 시사점 ····· 65
제4절 프랑스 ····· 66
Ⅰ. 개관 ····· 66
Ⅱ. 형사사건의 분류 ····· 68
Ⅲ. 형사재판 담당 법원 ····· 68
Ⅳ. 형사법관과 사무분담 ····· 69
Ⅴ. 형사법관 우대조치 ····· 74
제5절 독일 ····· 77
Ⅰ. 형사사건의 분류 ····· 77
Ⅱ. 형사재판 담당 법원 ····· 78
Ⅲ. 형사사법의 현황 ····· 79
Ⅳ. 형사법관 우대조치 ····· 82
제6절 일본 ····· 84
Ⅰ. 들어가며 ····· 84
Ⅱ. 일본 형사재판절차의 특징과 구성 ····· 84
Ⅲ. 형사재판의 기피 현상 ····· 91
Ⅳ. 시사점 ····· 94

제4장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검토 ····· 95

제1절 개요 ····· 97
제2절 형사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 99
Ⅰ. 개관 ····· 99
Ⅱ. 법관 및 재판연구원 현황 ····· 99
Ⅲ. 주요 국가와의 법관 업무부담 비교 ····· 102
Ⅳ. 법관 증원의 요구 ····· 103
Ⅴ. 재판연구원의 증원 요청 ····· 113
Ⅵ. 재판지원인력의 확충 ····· 117
Ⅶ. 검토 – 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 121
제3절 형사사물관할의 조정 ····· 123
Ⅰ. 개관 ····· 123
Ⅱ. 우리나라의 형사 사물관할 ····· 123
Ⅲ. 비교법적 검토 ····· 128

Ⅳ. 형사단독판사 사물관할 범위의 확대 필요성 ····· 132
Ⅴ. 비판 및 그에 대한 반론 ····· 135
Ⅵ. 입법안 ····· 138
제4절 형사사건의 이원화 ····· 140
Ⅰ. 개관 ····· 140
Ⅱ.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시도 ····· 141
Ⅲ. 비교법적 검토 ····· 144
Ⅳ. 검토 ····· 160
제5절 형사전문법원 및 형사전담법관 도입에 관한 논의 ····· 162
Ⅰ. 개관 ····· 162
Ⅱ. 종래의 논의 ····· 163
Ⅲ. 설문조사 및 인터뷰 ····· 164
Ⅳ. 검토 – 특수형사법관 및 특수형사법원의 설치 ····· 168
제6절 각 법원 형사사무분담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174
Ⅰ. 개관 ····· 174
Ⅱ. 현행 법원의 사무분담 결정 과정 ····· 174
Ⅲ. 형사사무분담시 고려사항 ····· 178
제7절 외부 영향으로부터 법관의 보호 ····· 188
Ⅰ. 개관 ····· 188
Ⅱ. 형사 사건 관련 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 189
Ⅲ. 언론 보도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대응책 ····· 189
Ⅳ. 법관 신변보호 방안 ····· 195
제8절 형사재판담당 법관에 대한 인센티브 ····· 219
Ⅰ.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 219
Ⅱ. 상정가능한 형사법관에 대한 인센티브 ····· 225

제5장 결론 ····· 243

17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3-12

연구책임자 : 이혜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이단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승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8월 1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Ⅰ. 연구의 범위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대상인 '주택임대차관계'의 의미 ····· 7
가. 주택의 의미 ····· 7
나. 주택임대차관계의 의미 ····· 8
Ⅱ.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주택임대차와 경매절차 ····· 11

제1절 부동산 경매절차 개관 ····· 13
Ⅰ. 경매절차의 종류 ····· 13
Ⅱ. 강제경매절차 ····· 13
Ⅲ. 주택임대차와 부동산 경매 통계 ····· 15
1.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통계 ····· 15
2. 경매물건의 용도별 경매건수 통계 ····· 16
3. 매각대금이 납부된 주택경매사건 관련 통계 ····· 18

가. 개요 ····· 18
나. 매각대금이 완납된 사건과 그 매각기간 통계 ····· 18
다. 주택임차인이 있는 사건 중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 21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 2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구성 ····· 22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23
1. 대항력 ····· 23
가. 대항력의 의의 ····· 23
나. 주택의 인도 ····· 24
다. 주민등록 ····· 25
라. 대항력의 취득 ····· 26
2. 우선변제권 ····· 27
가. 소액보증금의 보호 ····· 27
나. 순위에 따른 보증금 보호 ····· 28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법리가 적용되는 계약관계 ···· 28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임차권 ····· 28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 28
다. 민법 제621조의 방식으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 29
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전세권등기도 한 경우 ····· 30
마. 미등기 전세 ····· 30
제3절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 ····· 30
Ⅰ. 일반적인 지위 ····· 31
1. 최고서 통지 대상 ····· 31
2. 임차인통지서 송달 대상 ····· 31
3.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 ····· 32
가. 이해관계인의 의의 ····· 32
나. 주택임차인의 경우 ····· 33
4. 배당 대상 ····· 35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 ····· 35
나. 민사집행법상 요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일 것 ····· 36
5. 인도명령 대상 ····· 38
가. 채무자가 주택임차인이기도 한 경우 ····· 38
나. 점유자로서의 주택임차인 ····· 39
Ⅱ. 구체적 사건에서의 순위별 주택임차인의 지위 ····· 39
1. 말소기준권리의 등기일자보다 대항력 취득일자가 빠르거나 같은 경우 ····· 39
2. 말소기준권리의 등기일자보다 늦은 날짜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 40
제4절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관계의 중요성 ····· 41
Ⅰ. 경매절차 운영에서의 중요성 ····· 41

1. 경매절차의 하자 ····· 41
2. 배당요구종기 연기로 인한 경매절차 지연 ····· 42
Ⅱ. 주체별 중요성 ····· 44
1. 주택임차인 ····· 44
2. 주택임차인 이외의 경매절차 참여주체 ····· 46
가. 매수희망자의 특징 ····· 46
나. 매수희망자의 주택임대차정보에 대한 이해관계 ····· 51
제5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현행 경매절차의 문제점 ····· 55
Ⅰ. 문제점 개관 ····· 55
Ⅱ. 현황조사절차의 문제 ····· 56
1. 주택임대차관계가 파악되는 주된 계기인 현황조사 ····· 56
가. 등기사항증명서 ····· 56
나. 현황조사보고 ····· 56
다.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 60
2. 주택임대차관계에 대한 현황조사의 문제 ····· 60
가. 주택임대차정보 수집의 한계 문제 ····· 60
나. 주택임차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주소의 문제 ····· 74
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주택임차인인 경우의 문제 ····· 75
라. 주택임차인이 장애인일 경우의 문제 ····· 75
Ⅲ.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 관련 문제 ····· 76
Ⅳ. 정리 ····· 77

제3장 경매절차에서의 주택임대차 관련 해외 현황 ····· 79

제1절 해외 현황 조사 방향 ····· 81
제2절 일본 ····· 82
Ⅰ. 부동산 집행절차 ····· 82
1. 개관 ····· 82
2. 현황조사 ····· 82
3. 물건명세서 ····· 84
Ⅱ. 부동산 집행절차에서의 대항력 ····· 84
Ⅲ. 부동산 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 87
Ⅳ. 시사점 ····· 88
제3절 프랑스 ····· 88
Ⅰ. 부동산 집행절차 ····· 88
1. 개관 ····· 88
2. 현황조사 ····· 89
3. 매각조건명세서 ····· 89
Ⅱ. 부동산 집행절차에서의 대항력 ····· 90
Ⅲ. 부동산 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 91

Ⅳ. 시사점 ····· 91
제4절 독일 ····· 92
Ⅰ. 부동산 집행절차 ····· 92
1. 개관 ····· 92
2. 임차인조사 ····· 92
3. 진술서 ····· 93
Ⅱ. 부동산 집행절차에서의 대항력 ····· 94
Ⅲ. 부동산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 94
Ⅳ. 시사점 ····· 95
제5절 정리 ····· 95

제4장 현황조사에서의 주택임대차정보 확충 ····· 97

제1절 서론 ····· 99
제2절 확정일자부제도의 활용 방안 ····· 100
Ⅰ. 검토 방향 ····· 100
Ⅱ. 확정일자부제도 운영 현황 ····· 101
1.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기관 ····· 101
2. 확정일자부 기재정보 ····· 101
3. 확정일자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 102
4. 통계 ····· 104
Ⅲ. 경매절차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효용성 ····· 107
1. 확정일자부제도의 기능과 경매절차에서의 활용 가능성 ····· 107
2. 경매절차에서의 높은 효용성 ····· 110
가. 경매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확정일자부 정보 ····· 110
나. 확정일자 부여 경로의 다양화에 의한 확정일자부 정보의 증가 ····· 111
Ⅳ. 활용 시 고려할 사항 ····· 113
1. 확정일자부 정보 활용의 근거 규정 ····· 113
2.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115
가. 요청 정보 항목 ····· 115
나. 요청기간 ····· 118
다. 요청범위의 제한 가능 여부 ····· 120
3. 확정일자부 정보의 활용 방식 ····· 121
가. 집행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제출의무 신설 ····· 121
나.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방식 ····· 123
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 124
Ⅴ. 경매절차에서의 활용을 위한 개선점 ····· 125
Ⅵ. 정리 ····· 127
제3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활용 방안 ····· 128
Ⅰ. 검토 방향 ····· 128

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현황 ····· 129
1. 신고의무 ····· 129
2. 신고 대상 계약 ····· 130
3. 신고 항목 ····· 131
4. 신고필증 ····· 131
5. 신고의제 ····· 132
가. 전입신고 시 신고 의제 ····· 132
나. 임대사업자의 신고의제 ····· 132
6. 확정일자 부여 의제 ····· 132
7. 통계 ····· 133
Ⅲ. 경매절차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효용성 ····· 136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취지과 경매절차에서의 활용 가능성 ····· 136
2. 경매절차에서의 높은 효용성 ····· 137
가. 경매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정보 ···· 137
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계약의 유사성 ····· 138
다. 주택임대차 계약정보의 진실성·정확성 제고 규정 존재 ····· 139
라. 확정일자부제도 활용의 한계 ····· 141
Ⅳ. 활용 시 고려사항 ····· 141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정보 활용의 근거 규정 ····· 141
가. 부동산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성 ····· 142
나. 집행관의 정보제공요청권 근거 규정 신설 ····· 144
2.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149
가. 요청 정보 항목 ····· 149
나. 요청기간 및 범위 ····· 149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정보의 활용방식 ····· 150
가. 집행관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정보현황서 제출의무 신설 ····· 150
나.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방식 ····· 152
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 153
Ⅴ. 경매절차에서의 활용을 위한 개선점 ····· 154
1. 신고대상을 금액·지역적으로 제한한 문제 ····· 154
가. 신고대상 제한과 그에 대한 평가 ····· 154
나. 신고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한 문제 ····· 156
다. 해결방안 ····· 157
2. 계약조건과 관련된 신고대상 제외 계약의 문제 ····· 159
가. 검토의 필요성 ····· 159
나. 전대차계약의 제외 ····· 159
다.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신고 범위 제한 ····· 160
3. 주소 검색기능 문제 ····· 163
Ⅵ. 정리 ····· 163

제4절 소결 ····· 165

제5장 현황조사에서의 상세주소 관련 문제 해결 ····· 167

제1절 검토의 필요성 ····· 169
제2절 상세주소 개관 ····· 170
Ⅰ. 상세주소의 정의 ····· 170
Ⅱ. 상세주소와 주민등록표 ····· 171
Ⅲ. 상세주소의 표기 ····· 171
1. 규정 ····· 171
2. 현황 ····· 173
가. 동(棟)번호 ····· 173
나. 층 ····· 174
다. 호(號) ····· 175
Ⅳ. 상세주소로 인한 문제 ····· 175
제3절 상세주소의 다양한 표기 문제와 해결방안 ····· 176
Ⅰ. 상세주소의 다양한 표기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문제 ····· 176
1. 현황조사에서의 문제 ····· 176
가. 문제 개관 ····· 176
나. 대응 현황 ····· 180
2. 확정일자부제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에서의 문제 ····· 186
Ⅱ. 개선방안 ····· 187
1. 개선방안의 방향 ····· 187
2. '주소의 동일화'에 의한 해결방안 ····· 187
3. '주소의 연계화'에 의한 해결방안 ····· 188
가. 방안의 의의 ····· 188
나. 연계키 활용 방안의 상세 ····· 189
제4절 상세주소 미부여 문제와 해결방안 ····· 193
Ⅰ. 검토의 필요성 ····· 193
Ⅱ. 다가구주택의 주소 표기 ····· 195
1. 원칙 ····· 195
2. 예외 ····· 196
가. 거주자 본인이 다가구주택 등의 명칭, 동번호, 호수의 기록을 신청한 경우 ····· 196
나. 상세주소 부여제도 ····· 197
Ⅲ. 경매절차에서의 문제 ····· 199
1. 현황조사절차에서의 문제 ····· 199
2. 집행법원의 업무처리에서의 문제 ····· 200
Ⅳ. 개선안 ····· 203
1. 본인이 등재 신청한 동·호수 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 ····· 203

가. 활용목적 ····· 204
나. 활용방식 ····· 209
2. 상세주소 부여 다가구주택의 확대 ····· 212
제5절 소결 ····· 215

제6장 취약계층 관련 경매절차의 개선 ····· 217

제1절 서론 ····· 219
제2절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임차인인 경우의 개선방안 ····· 219
Ⅰ. 검토의 필요성 ····· 219
Ⅱ. 외국인등의 체류 통계 및 주택임대차 현황 ····· 221
Ⅲ. 경매절차 안내 개선방안 ····· 223
1. 현황조사시 경매절차 안내방식 개선 ····· 223
가. 외국인등의 국적별 번역문 교부·부착 ····· 224
나. 정보번역 바코드의 활용 ····· 225
2.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 개편 ····· 227
3. 임차인통지서, 기일통지서 등 각종 서류의 송달에의 준용 ····· 227
제3절 장애인이 임차인인 경우의 개선방안 ····· 228
Ⅰ. 검토의 필요성 ····· 228
Ⅱ. 장애인 통계 ····· 230
Ⅲ.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및 지원 현황 ····· 233
Ⅳ. 장애인인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 ····· 235
1. 검토방향 ····· 235
2. 장애인 공통 지원방안 ····· 237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239
가. 음성생성용 바코드와 촉각돌기의 활용 ····· 239
나. 임차인통지서 송달에의 준용 ····· 241
제4절 소결 ····· 241

제7장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의 개선 ····· 245

제1절 검토의 필요성 ····· 247
제2절 임차인통지서 송달의 의의 ····· 248
제3절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의 개선 ····· 250
Ⅰ. 문제점 ····· 250
Ⅱ. 해결방안 ····· 253
1. 임차인통지서 송달방식의 변경 ····· 253
2. 배당요구종기 등 경매절차정보 제공 수단의 다양화 ····· 256
가. 경매절차정보 제공 수단 다양화의 필요성 ····· 256

나. 확정일자부제도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활용 ····· 257
다.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의 활용 ····· 257
제4절 변경된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의 개선 ····· 260
Ⅰ. 문제점 ····· 260
1.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문제점 ····· 261
가.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의 차별 필요성 ····· 262
나. 다른 임차인·사건 간 형평성 ····· 263
2.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 ····· 264
3. 문제점 정리 ····· 266
Ⅱ. 해결방안 ····· 266
1. 고지 객체의 확장 ····· 266
2. 고지 서류 개선 ····· 268
제5절 소결 ····· 271

제8장 결론 ····· 275

17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3-13

연구책임자 : 서현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23년 11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선행적 고찰 ····· 7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연혁 ····· 9
Ⅰ. 지방자치의 의의 ····· 9
Ⅱ. 지방자치 연혁 ····· 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1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13
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제한 ····· 14
1. 헌법적 보장의 의의 ····· 14
2. 제도적 보장의 내용 ····· 15
3. 지방자치의 제한 ····· 16
제3절 지방자치와 사법심사에 관한 논의의 전제 ····· 17
Ⅰ. 들어가며 ····· 17
Ⅱ. 지방자치에서의 사법적극주의 ····· 18
Ⅲ. 사법심사에서의 지방자치와 법치주의의 조화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20
1. 들어가며 ····· 20
2. 일본 ····· 21

3. 독일 ····· 22
4. 프랑스 ····· 23

제3장 조례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25

제1절 조례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 ····· 27
제2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법원의 사법심사 ····· 30
Ⅰ. 들어가며 ····· 30
Ⅱ.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 33
1. 사무 구분에서의 판례의 기본 입장 ····· 33
2. 기본 입장의 구체적 사례 ····· 33
3.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예시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한 사례 ····· 35
Ⅲ. 법률우위의 원칙 ····· 38
1.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에 대한 일반론 ····· 38
가. 들어가며 ····· 38
나. 법률우위의 원칙과 관련한 주요 판례 ····· 39
다. 법령합치적 조례 해석의 원칙 ····· 43
2. 조례제정사항이 이미 법령에 존재하는 경우 ····· 44
가. 이론적 논의와 판례의 기본 입장 ····· 44
나. 관련 주요 판례 ····· 46
3. 법률공백분야에서의 조례제정 ····· 49
Ⅳ. 법률유보의 원칙 ····· 50
제3절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개입에 대한 사법심사 ····· 52
Ⅰ. 들어가며 ····· 52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개입에 대한 사법심사 ····· 55
1. 임명 및 위촉권 ····· 55
가. 의원의 개인 자격에서 관여하는지와 관련한 판례 ····· 55
나.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약하는지와 관련한 판례 ····· 57
다.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와 관련한 판례 ····· 62
2. 파견 및 징계권 ····· 63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 개입에 대한 사법심사 ····· 64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 개입에 대한 사법심사 ····· 65
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타 개별적 권한 개입에 대한 사법심사 ····· 67
1.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권 ····· 67
2.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권 ····· 68
3.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시행권 ····· 68
4.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부의권 ····· 69
5.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체평가권 ····· 69
6.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지구지정권 ····· 69
Ⅵ. 소결 ····· 70

제4장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73

제1절 들어가며 ····· 75
제2절 주민투표권에 대한 사법심사
[서울행정법원 2011. 8. 16.자 2011아2179 결정(집행정지)] ····· 77
Ⅰ. 사건의 개요 ····· 77
Ⅱ. 결정의 핵심 요지 ····· 79
Ⅲ. 평가 ····· 80
제3절 주민감사청구권과 주민소송권에 대한 사법심사 ····· 81
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48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 81
1. 사건의 개요 ····· 81
2. 판결의 핵심 요지 ····· 82
3. 평가 ····· 83
Ⅱ.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 84
1. 사건의 개요 ····· 84
2. 판결의 핵심 요지 ····· 86
3. 평가 ····· 86
Ⅲ.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주민소송 손해배상(기)] ····· 87
1. 사건의 개요 ····· 87
2. 판결의 핵심 요지 ····· 88
3. 평가 ····· 89
Ⅳ.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 ····· 90
1. 사건의 개요 ····· 90
2. 판결의 핵심 요지 ····· 92
3. 평가 ····· 92

제5장 국가의 행정적 감독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95

제1절 들어가며 ····· 97
Ⅰ. 국가감독의 의의와 기능 및 사법적 구제 ····· 97
Ⅱ. 행정적 감독의 수단 ····· 100
1. 일반적 감독의 수단 ····· 100
2. 개별적 감독의 수단 ····· 101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101
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102
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 제소 ····· 104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105
Ⅰ.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105
1. 사건의 개요 ····· 105

2. 판결의 핵심 요지 ····· 106
가. 다수의견 ····· 106
나. 소수의견 ····· 107
3. 평가 ····· 108
Ⅱ.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110
1. 사건의 개요 ····· 110
2. 판결의 핵심 요지 ····· 110
3. 평가 ····· 111
Ⅲ.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 112
1. 사건의 개요 ····· 112
2. 판결의 핵심 요지 ····· 112
3. 평가 ····· 113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국가감독과 관련된 사법심사 ····· 114
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의 소] ····· 114
1. 사건의 개요 ····· 114
2. 판결의 핵심 요지 ····· 116
3. 평가 ····· 117
Ⅱ.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 ····· 118
1. 사건의 개요 ····· 118
2. 판결의 핵심 요지 ····· 119
3. 평가 ····· 119
Ⅲ.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 ····· 120
1. 사건의 개요 ····· 120
2. 판결의 핵심 요지 ····· 121
가. 다수의견 ····· 121
나. 반대의견 ····· 123
3. 평가 ····· 124

제6장 기타 지방자치 관련 법원의 사법심사 ····· 129

제1절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13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134
Ⅰ.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의 의미 ····· 134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 135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139
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분쟁조정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 ····· 139
1. 들어가며 ····· 139

2.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의 소] ····· 140
가. 사건의 개요 ····· 140
나. 판결의 핵심 요지 ····· 141
다. 평가 ····· 142
3.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청구의 소] 143
가. 사건의 개요 ····· 143
나. 판결의 핵심 요지 ····· 143
다. 평가 ····· 144
Ⅱ. 공유수면매립지 구역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 145
1. 들어가며 ····· 145
2. 공유수면매립지 구역 결정 관련 대표적 판례의 주요 내용과 평가 ····· 146

제7장 사법심사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 151

제1절 지방자치법상 소송에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복문제 ····· 153
Ⅰ. 들어가며 ····· 153
Ⅱ.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55
Ⅲ. 공유수면 매립지 소송에서의 권한 중복 ····· 157
1. 문제의 소재 ····· 157
2. 관련 논의 ····· 158
3.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 160
4. 헌재 결정 이후의 관련 논의 ····· 162
5. 소결 ····· 163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국가의 취소·정지에서의 권한 중복 ····· 165
1. 문제의 소재 ····· 165
2. 관련 논의 ····· 167
Ⅴ. 권한 중복의 해결 방안 ····· 168
제2절 지방자치와 관련한 행정소송 심급제도의 조정 문제 ····· 170
Ⅰ. 대법원 단심제와 심급 조정에 관한 개관 ····· 170
Ⅱ. 주요 외국에서의 지방자치 관련 행정소송의 심급 ····· 171
1. 들어가며 ····· 171
2. 일본 ····· 172
가. 시정촌 경계분쟁 ····· 172
나. 공유수면과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분쟁 ····· 172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결 요구와 관련한 소송 ····· 173
라. 대집행소송 ····· 173
마.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에 대한 소송 ····· 174
3. 독일 ····· 174
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분쟁 ····· 175
나. 국가감독처분 ····· 175

4. 프랑스 ····· 177
가. 매립지 경계분쟁 ····· 178
나. 국가감독 ····· 178
Ⅲ. 심급제도의 조정에 관한 사법정책적 논의 ····· 179

제8장 결론 ····· 183

17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3-14

연구책임자 :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12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일본의 재판소 체계와 간이재판소 제도 ····· 7

제1절 일본의 재판소 체계 ····· 9
Ⅰ. 일본 재판소 체계의 변천 ····· 9
1. 현행 헌법 이전 ····· 9
2. 현행 헌법 이후 체계 ····· 9
Ⅱ. 일본의 재판소 종류 ····· 10
1. 최고재판소 ····· 11
2. 하급재판소 ····· 12
제2절 간이재판소의 설립연혁 및 특징 ····· 14
Ⅰ. 연혁 ····· 14
Ⅱ. 간이재판소의 설립배경 및 취지 ····· 15
Ⅲ. 간이재판소의 특징 ····· 16
1. 영장재판소로서의 성격 ····· 17
2. 경죄재판소로서의 성격 ····· 17
3. 소액재판소로서의 성격 ····· 18

4. 국민친화형 재판소로서의 성격 ····· 18
5. 소형지방재판소로서의 성격 ····· 19
Ⅳ. 간이재판소 제도 관련 정책 변화 ····· 20
1. 간이재판소 사물관할의 변화 ····· 20
2. 간이재판소 판사의 인적 구성 변화 ····· 20
3. 간이재판소의 통·폐합 ····· 21

제3장 간이재판소의 조직과 재판권 ····· 23

제1절 간이재판소의 재판권 행사 지역 및 배치 ····· 25
Ⅰ. 간이재판소 설치 현황 ····· 25
Ⅱ. 도쿄도의 간이재판소 현황 ····· 25
제2절 간이재판소의 조직 구조 ····· 27
Ⅰ. 들어가며 ····· 27
Ⅱ. 도쿄간이재판소의 조직 현황 ····· 27
1. 재판 부문 ····· 27
2. 사무(사법행정) 부문 ····· 31
3. 스미다(墨田) 청사 ····· 32
제3절 간이재판소의 민사 재판권 ····· 33
Ⅰ. 간이재판소에서 취급하는 민사사건 개관 ····· 33
Ⅱ. 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 관할 ····· 35
1.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 35
2.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의 절차 구분 및 규정 ····· 38
Ⅲ. 통상소송절차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법 제270~280조)] ····· 38
1. 간이재판소 통상소송절차의 특징 ····· 38
2. 기일에서의 심리상 특칙 ····· 52
Ⅳ. 소액소송(少額訴訟)절차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법 제368조~제381조)] ····· 73
1. 대상 및 실무 ····· 73
2. 소액소송의 도입 취지 및 방향 ····· 74
3. 소액소송의 절차적 특징 소개 ····· 75
4. 소액소송의 심리절차상 특칙 ····· 80
5. 판결 선고에 관한 특칙 ····· 90
6. 소액소송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 99
7. 소액소송판결의 집행 ····· 102
8. 소액소송 운영의 실무 ····· 106
Ⅴ. 민사조정 ····· 107
1. 간이재판소에서의 조정 현황 ····· 107
2. 조정위원의 활발한 활용을 통한 사법에의 시민참여 제고 ····· 107
Ⅵ. 지급명령(支払督促, 법 제382조 이하) ····· 108
Ⅶ. 간이재판소 민사소송의 불복 체계 ····· 109

제4절 간이재판소의 형사 재판권 ····· 111
Ⅰ. 들어가며 ····· 111
Ⅱ. 간이재판소 관련 일본의 형사 사법체계 특징 ····· 111
1. 서론 ····· 111
2. 구검찰청 ····· 112
3. 부검사 ····· 113
4. 경찰의 체포영장 직접 청구 ····· 115
Ⅲ. 형사 통상소송(공판사건) ····· 116
1. 간이재판소와 지방재판소간 제1심 형사소송의 취급 ····· 116
2. 형사소송 사물관할 ····· 118
3. 형의 선고 범위 – 금고 이상 형의 원칙적 선고 불가 ····· 119
4. 판결문 작성과 조서판결(調書判決) ····· 119
Ⅳ. 약식명령 ····· 121
1. 개관 ····· 121
2. 현황 ····· 123
3. 도쿄간이재판소의 최근 실무 ····· 126
Ⅴ. 기타 형사소송사건 및 형사소송이외의 사건 ····· 126
1. 영장발부 ····· 126
2. 즉결재판 ····· 129
3. 교통사고 즉결재판 및 제3자 즉일처리제도 ····· 130
Ⅵ. 지방재판소와 간이재판소간 관할 경합 및 관계 ····· 131
Ⅶ. 심급 체계 ····· 132

제4장 간이재판소 판사의 확보 및 운용 ····· 135

제1절 들어가며 ····· 137
제2절 일본의 재판관 ····· 137
Ⅰ. 재판관의 구성과 종류 ····· 137
Ⅱ. 재판관의 종류 및 현황 ····· 138
1. 최고재판소 재판관 ····· 139
2. 하급재판소 재판관 ····· 139
3. 재판관 전체 현황 ····· 141
제3절 간이재판소 판사의 구성 및 운용 ····· 142
Ⅰ. 간이재판소 판사의 임명 자격 ····· 142
1. 임명 관련 규정 개관 ····· 142
2. 법조경력자 등의 임명(재판소법 제44조) ····· 144
3. 법조경력이 없는 자의 임명(전형임명)(재판소법 제45조) ····· 144
Ⅱ. 간이재판소 판사 선발을 위한 전형절차 ····· 144
1. 취지 ····· 144
2. 전형절차의 2가지 경로 ····· 145

3. 원칙적 전형 절차(전형규칙 제5조 제1항) ····· 146
4. 예외적 전형 절차(전형규칙 제5조 제2항) ····· 149
5. 2가지 전형절차의 상세 현황 분석 ····· 151
Ⅲ. 간이재판소 판사의 공급원(供給源) ····· 157
1. 일본의 최근 재판관 임용 현황 ····· 157
2. 간이재판소의 전체 구성원 ····· 159
3. 간이재판소 판사 공급원 (1): 재판소 서기관 출신 ····· 159
4. 간이재판소 판사 공급원 (2): 정규 판사(직업법관) 출신 ····· 160
5. 광의의 재판관으로서 민사조정관 제도(비상근 재판관) ····· 162
Ⅳ. 간이재판소 판사의 운용 및 처우 ····· 163
1. 간이재판소 판사의 전보 및 업무 부담 ····· 163
2. 간이재판소 판사의 대우 ····· 164
제4절 간이재판소 판사 공급원으로서의 재판소 직원의 커리어 ····· 168
Ⅰ. 들어가며 ····· 168
Ⅱ. 재판소 직원의 간이재판소 판사로의 진출 배경 ····· 168
1. 재판소 직원 현황 ····· 168
2. 재판소 사무관과 재판소 서기관의 구분과 역할 ····· 169
3. 재판소 직원의 채용 시험 ····· 170
4. 재판소 직원의 근무분야 및 커리어패스 ····· 171
5. 재판소 직원의 재판 분야 전문성 증진 정책에 대한 분석 ····· 176
6. 소결 ····· 178

제5장 간이재판소의 사건처리 현황 및 한계 분석 ····· 179

제1절 양국의 기본적 사법 현황 개관 ····· 181
Ⅰ. 한국과 일본의 사법부 현황 비교 ····· 181
1. 양국의 인구 및 사법부 예산 등 ····· 181
2. 양국 사법부의 인적 자원 현황 ····· 182
Ⅱ. 양국 사법부의 사건 현황 등 비교 ····· 183
1. 전체 소송사건 수 현황 ····· 183
2. 소송사건의 종류별 현황 ····· 184
3. 제1심 민사소송 본안사건 현황 ····· 185
제2절 간이재판소의 사건처리 현황 및 분석 ····· 186
Ⅰ. 간이재판소의 소송사건 개관 ····· 186
1. 민사 분야 사건 추이 ····· 186
2. 형사 분야 사건 추이 ····· 189
Ⅱ. 제1심의 지방재판소와 간이재판소간 사건 분담률 ····· 191
1. 제1심 민사소송사건 분담률 ····· 191
2. 제1심 형사사건 분담률 ····· 192
Ⅲ. 평균 심리 기간 ····· 194
1. 제1심 민사소송 평균 심리 기간 ····· 194
2. 제1심 형사소송 평균 심리 기간 ····· 197
Ⅳ. 간이재판소의 민사재판에 대한 불복률 분석 ····· 199
1. 제1심 민사통상소송에 대한 항소 현황 ····· 199
2. 소액소송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현황 ····· 202
Ⅴ. 간이재판소 판사의 업무량 분석 ····· 202
1. 간이재판소 판사의 사건처리량 ····· 202
2. 우리나라 법원과의 비교분석 ····· 203
제3절 간이재판소 제도의 한계 ····· 204
Ⅰ. 영장발부 관련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 204
Ⅱ. 소액소송제도의 활용률 저하 ····· 206
1. 활용률 저하 현황 개관 ····· 206
2. 감소추세의 원인과 배경 ····· 207
Ⅲ. 간이재판소 판사의 감소 및 간이재판소 운영의 한계 ····· 209
1. 간이재판소 판사 현원의 감소 추이 ····· 209
2. 간이재판소 판사 부족에 따른 운영상 제약 ····· 211
3.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절차의 불투명성 ····· 211
Ⅳ.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의 태생적 배경 및 법조단체의 시선 ····· 213

제6장 일본 간이재판소 제도의 시사점 ····· 217

제1절 들어가며 ····· 219

제2절 국민친화적 재판소로서의 시사점 ····· 220
Ⅰ. 재판소의 낮은 진입장벽을 통한 사법접근성 제고 ····· 220
1. 국민친화적 재판소로서의 편리한 접근성 및 소송수행 편의성 ····· 220
2. 국민친화적 재판 환경 및 심리 진행 ····· 221
3. 소액소송 대리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법률비용 부담 완화 ····· 222
Ⅱ. 후견적 사법을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 224
1. 사법위원 제도를 통한 사법화해 활성화 ····· 224
2. 소액채권집행제도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원 ····· 226
3. 지급유예 및 분할지급 판결을 통한 융통성 있는 분쟁해결 ····· 227
Ⅲ. 경미한 생활 속 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 ····· 228
1. 조서판결 등 각종 재판 문서의 간이화 ····· 228
2. 재판소 서기관의 적극적 사건관리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 230
제3절 간이·경미사건 담당 사법자원의 확보 및 활용 ····· 231
Ⅰ. 간이재판소 판사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 ····· 231
Ⅱ. 적절한 1심 간이·경미사건의 운용 범위 ····· 233
1. 1심 민사 사건 중 간이·경미 사건의 범위 지정 ····· 233
2. 우리나라 1심 민사소송에서의 적절한 간이·경미 사건의 범위 ····· 233
Ⅲ. 간이·경미사건 담당 사법자원(법관)의 확보방안 ····· 235
1. 퇴직 판사 등 기존 정규 법관 활용 방안 ····· 235
2.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활용 방안 ····· 237
3. 법원 외부의 변호사 활용을 통한 확보방안 ····· 246
Ⅳ. 간이·경미사건 담당 사법자원(법관)의 적절한 운용 방안 ····· 247
1. 간이·경미사건 전담 재판부의 운용과 필요 인력 ····· 247
2. 간이·경미사건 담당 법관의 인사 운용 방안 ····· 248
제4절 한정된 사법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법정책 ····· 249
Ⅰ. 1심 사건 분산처리와 심급체계의 이원화가 주는 시사점 ····· 249
1. 1심의 이원화를 통한 사법역량의 선택과 집중 실현 ····· 249
2. 간이·경미 사건만의 별도 불복 체계 운영 ····· 251
Ⅱ. 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에 따른 간이재판소의 운용 변화 ····· 252
1. 논의 필요성 ····· 252
2. 간이재판소 통·폐합의 배경 ····· 253
3. 간이재판소 통·폐합의 실현과 과제 ····· 254
4. 우리나라 법원에 주는 시사점 ····· 255
Ⅲ. 동종·대량 사건의 집중 처리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 ····· 257

제7장 결론 ····· 259

17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연구총서 2023-15

연구책임자 :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단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12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제2장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9
제1절 기능 ····· 11
Ⅰ. 개인의 인격발현 기능 ····· 11
Ⅱ.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보충 기능 ····· 12
Ⅲ. 소수자의 보호 기능 ····· 13
제2절 개념 ····· 14
Ⅰ. 개념 요소 ····· 14
1. 공동의 목적 ····· 15
2. 다수인 ····· 17
3. 일시적 모임 ····· 18

4. 평화성 ····· 18
Ⅱ. 주요 개념 ····· 19
1. 옥내집회 ····· 19
2. 옥외집회 ····· 20
3. 시위 ····· 21
제3절 법적 성격 ····· 22
Ⅰ. 주관적 공권성 ····· 22
Ⅱ. 객관적 가치질서성 ····· 23
제4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24
제5절 제한과 그 한계 ····· 26
Ⅰ. 제한 ····· 26
Ⅱ. 제한의 한계 ····· 27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27
2. 명확성의 원칙 ····· 28
3. 과잉금지의 원칙 ····· 28

제3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조치 ····· 31

제1절 개관 ····· 33
제2절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추이 ····· 33
Ⅰ. 1차 유행 시기: 2020년 1월 20일~2020년 8월 11일 ····· 34
Ⅱ. 2차 유행 시기: 2020년 8월 12일~2020년 11월 12일 ····· 35
Ⅲ. 3차 유행 시기: 2020년 11월 13일~2021년 7월 6일 ····· 36
Ⅳ. 4차 유행 시기: 2021년 7월 7일~2022년 1월 29일 ····· 37
Ⅴ. 5차 유행 시기: 2022년 1월 30일~2022년 6월 25일 ····· 38
Ⅵ. 6차 유행 시기: 2022년 6월 26일~2022년 8월 31일 ····· 39
제3절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의 근거 법률 ····· 39
Ⅰ. 집시법상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 40
Ⅱ.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 42

제4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처분과 법원의 판단: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43

제1절 개관 ····· 45
제2절 집행정지 제도 ····· 46
Ⅰ. 집행정지의 요건 ····· 46
1. 형식적 요건 ····· 46
가. 처분등의 존재 ····· 46
나.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을 것 ····· 46

2. 실체적 요건 ····· 47
가. 본안의 승소가능성 ····· 47
나. 보전의 필요성 ····· 47
Ⅱ. 집행정지의 절차 ····· 49
1. 신청 ····· 49
2. 심리 ····· 49
3. 결정 ····· 50
Ⅲ.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관련 집행정지 사건의 특수성 ····· 50
1. 본안판결 도달 전 집회 시간의 경과 ····· 51
2. 집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종국적 결정 효과 ····· 52
3. 소결 ····· 53
제3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분석 ····· 55
Ⅰ. 분석대상과 범위 ····· 55
Ⅱ. 집행정지의 요건 판단 ····· 56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56
2.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60
Ⅲ. 처분의 근거 ····· 62
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63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66
가.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통고' ····· 66
나.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고시' ····· 66
Ⅳ. 고려사항 ····· 69
1. 코로나19 확산 상황 ····· 69
가. 추이 및 경향 ····· 69
나. 예외 ····· 77
2.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 80
3.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89
4. 집회 및 시위 개최 이후 역학조사 및 방역의 어려움 ····· 99
5. 집회 금지 처분의 객관성 ····· 104
6. 집회 금지 고시의 합리성 ····· 107
7. 집회 및 시위의 시간 ····· 110
8. 집회 및 시위의 장소 ····· 112
9. 집회 및 시위의 방법 ····· 115
10. 교통소통 ····· 123
가. 교통소통 장애 우려 ····· 123
나. 질서유지 ····· 132
11. 대안적 수단 ····· 134
가. 금지·제한 외 대안적 방법의 존부 ····· 134
나. 신청인의 집회 목적 상당 부분 달성 가능성 ····· 140
다. 대안의 적절성 ····· 142

12.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번질 우려 ····· 143
13. 후순위 집회 ····· 148
14. 과거 집회 전력 ····· 151
15. 별지 조건 ····· 158
제4절 소결 ····· 164
Ⅰ.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 판단 ····· 164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164
2.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166
Ⅱ.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고시의 처분성 인정 여부 ····· 167
Ⅲ. 집회 금지 처분의 객관성 ····· 170
Ⅳ. 집회 및 시위의 시간 ····· 171
Ⅴ. 일부인용결정과 별지 조건 ····· 172

제5장 국제 및 지역 기구, 해외 각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 173

제1절 개관 ····· 175
제2절 국제 및 지역 기구 ····· 176
Ⅰ. 유엔: 자유권규약 ····· 176
1.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 176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76
가. 법적 근거 요건 ····· 177
나.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 ····· 177
다. 허용되는 목적 ····· 178
3. 감염병 예방과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대한 주요 원칙 ····· 181
4. 소결 ····· 185
Ⅱ. 유럽평의회: 유럽인권협약 ····· 186
1. 집회의 자유 ····· 186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87
가. 법적 근거 요건 ····· 187
나.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 ····· 188
다. 허용되는 목적 ····· 188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 189
4. 소결 ····· 191
제3절 독일 ····· 191
Ⅰ. 서설 ····· 191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연방 법률 ····· 192
1. 총론 규정 ····· 193
가. 주최자의 집회권 소유 여부(제1조) ····· 193
나. 무기 소지의 금지(제2조) ····· 195

다.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제복 착용 금지(제3조) ····· 195
2. 옥외집회 및 시위 ····· 195
가. 신고의무(제14조) ····· 195
나. 금지 및 조건부 허용, 해산(제15조) ····· 196
다. 금지구역(제16조) ····· 197
라. 종교 축제 등과 주민축제의 예외(제17조) ····· 197
마. 방어무기 및 복면 금지(제17a조) ····· 197
Ⅲ. 감염병 예방과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 198
1. 집회 금지·제한 경과 ····· 198
가. 연방의 감염예방법을 통한 집회 금지·제한 ····· 198
나. 주요 주(州)의 집회 금지·제한 ····· 201
2.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 ····· 206
가. 서설: 연방헌법재판소법상 가(假)명령 제도 ····· 207
나. 집회 금지 처분의 정지효 부활 ····· 209
다. 일반적 집회 금지에 대한 가명령 신청 인용결정 ····· 211
라. 침묵시위에 대한 가명령 신청 기각결정 ····· 214
Ⅳ. 소결 ····· 216
제4절 프랑스 ····· 217
Ⅰ. 서설 ····· 217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19
1. 집회 ····· 219
가. 개념 ····· 219
나. 관련 법제 ····· 220
2. 시위 ····· 221
가. 개념 ····· 221
나. 관련 법제 ····· 222
3. 불온다중 ····· 223
가. 개념 ····· 223
나. 관련 법제 ····· 224
Ⅲ. 감염병 예방과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 225
1. 국사원 결정례 ····· 225
가. 서설: 가처분(référé-liberté) 제도 ····· 225
나. 일반적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 227
다. 시위 사전 허가 규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 230
2. 국사원 판례 ····· 231
가. 서설: 월권소송 ····· 231
나. 공공도로에서의 시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및
사전 허가에 대한 판결 ····· 232
3. 이후 경과 ····· 233
Ⅳ. 소결 ····· 234

제5절 미국 ····· 236
Ⅰ. 개관 ····· 236
Ⅱ.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의 기초이론 ····· 236
1. 공적광장이론 ····· 237
2. 시간, 장소, 방법 규제 ····· 238
가. 내용규제 v. 방법규제 ····· 238
나. 심사기준 ····· 239
3. 사전허가제 ····· 240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41
Ⅳ. 감염병 예방과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 243
1.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경과 ····· 243
2. 연방지방법원 결정례 ····· 244
가. 서설: 임시적 제한명령 제도 ····· 244
나. Givens v. Newsom, 459 F.Supp.3d 1302 (2020) ····· 245
다. Antietam Battlefield KOA v. Hogan,
461 F.Supp.3d 214 (2020) ····· 247
라. Ramsek v. Beshear, 468 F.Supp.3d 904 (2020) ····· 249
마. Tigges v. Northam, 473 F.Supp.3d 559 (2020) ····· 255
바. Oakes v. Collier County, 515 F.Supp.3d 1202 (2021) ····· 256
사. Amato v. Elicker, 534 F.Supp.3d 196 (2021) ····· 258
Ⅴ. 소결 ····· 260
제6절 일본 ····· 262
Ⅰ. 개관 ····· 262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 ····· 264
1. 공안조례 ····· 264
가. 개념 ····· 264
나. 사례 ····· 265
2. 도로교통법 ····· 266
가. 개념 ····· 266
나. 공안조례와 도로교통법의 경합 ····· 267
3. 지방자치법 ····· 268
가. 개념 ····· 268
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권자의 허가 ····· 268
다. 공공시설 이용불허의 정당한 이유 인정 기준 ····· 271
Ⅲ. 감염병 예방과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 273
1.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경과 ····· 273
가. 2020년 4월 7일 긴급사태선언 ····· 274
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집회의 제한 ····· 274
다. 2022년 3월 17일 중점조치 전면해제 ····· 275
2. 사법적 구제 ····· 276

Ⅳ. 소결 ····· 279

제6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언 ····· 281

제1절 집시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처분 근거 마련 ····· 283
제2절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위한 전문재판부 지정 ····· 286
제3절 바람직한 일부인용결정과 별지 조건 부과 ····· 288
제4절 행정소송법상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291
제5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의 법적 근거 미비점 보완 ····· 295
Ⅰ.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을 위한 상세한 기준 제시 ····· 295
Ⅱ. 처분 시기의 구체적 명시를 통한 법원의 심리기간 확보 ····· 297
Ⅲ. 비형사적 제재 활용 고려 ····· 298

제7장 결론 ····· 301

17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연구총서 2023-16

연구책임자 :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前 연구위원)

2023년 1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 방법과 역할 분담 ····· 5
Ⅰ. 연구 방법 ····· 5
1. 문헌 연구 ····· 5
2. 비교법적 연구 ····· 5
Ⅱ. 연구책임자 사이의 역할 분담 ····· 6

제2장 벨기에 국가와 사법제도 ····· 7

제1절 들어가며 ····· 9
제2절 벨기에 국가 개관 ····· 10
Ⅰ. 벨기에 국가의 형성 ····· 10
1. 지정학적 위치와 인구 ····· 10
2. 국명의 유래 ····· 11
3. 국가의 형성과정 ····· 12
Ⅱ. 언어권의 형성 ····· 13
1. 언어권의 현황 ····· 13
2. 형성 배경 ····· 15
3. 정치사회적 영향 ····· 17

4. 언어 갈등 ····· 18
Ⅲ. 시사점 ····· 20
제3절 벨기에 법제 ····· 22
Ⅰ. 벨기에법의 특징 및 체계 ····· 22
1. 벨기에법의 특성 ····· 22
2. 벨기에법의 위계질서 ····· 22
Ⅱ. 벨기에 헌법 및 재판법 개관 ····· 23
1. 헌법 개관 ····· 23
2. 재판법(裁判法) ····· 31
Ⅲ. 법치국가로서의 벨기에 ····· 33
1. 법치주의 순위 ····· 33
2. 민사사법 순위 ····· 34
3. 형사사법 순위 ····· 35
제4절 일반법원의 구성과 관할 ····· 37
Ⅰ. 벨기에 법원의 이원성(二元性)과 재판기관의 체계 ····· 37
1. 법원 계통의 이원성 ····· 37
2. 재판기관의 체계 구조 ····· 37
Ⅱ. 일반법원 개관 ····· 39
Ⅲ. 치안법원 및 경찰법원 ····· 41
1. 치안법원 ····· 41
2. 경찰법원 ····· 43
Ⅳ. 제1심법원 ····· 46
1. 제1심법원의 구성 및 관할 ····· 46
2. 제1심법원 설치 현황 ····· 46
3. 제1심법원의 하위 법원 ····· 47
Ⅴ. 노동법원 및 기업법원 ····· 56
1. 노동법원 ····· 56
2. 기업법원 ····· 59
Ⅵ. 항소법원 ····· 62
1. 항소법원의 구성 ····· 62
2. 항소법원의 관할 ····· 62
3. 항소법원의 설치 현황 ····· 63
4. 항소법원 통계 ····· 63
Ⅶ. 노동항소법원 및 중죄법원 ····· 67
1. 노동항소법원 ····· 67
2. 중죄법원 ····· 69
제5절 파기원 ····· 72
Ⅰ. 의의 ····· 72
Ⅱ. 파기원 재판과 기능 ····· 72
Ⅲ. 파기원의 구성 ····· 72

1. 파기원장 및 부원장 ····· 73
2. 파기원 법관 ····· 75
3. 재판부 구성 ····· 76
Ⅳ. 심리 및 재판 ····· 78
1. 사건 배당 및 심리 ····· 78
2. 재판 ····· 79
Ⅴ. 파기원 사건 통계 ····· 79
1. 접수·처리사건 수 및 처리기간 관련 통계 ····· 79
2. 사건 처리 결과 관련 통계 ····· 82
제6절 국참사원과 헌법재판소 ····· 84
Ⅰ. 국참사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 84
Ⅱ. 행정재판제도와 국참사원 ····· 84
1. 벨기에의 행정재판제도 ····· 84
2. 국참사원 ····· 86
Ⅲ. 헌법재판소 ····· 88
1. 의의 ····· 88
2. 연혁 ····· 88
3. 헌법적 근거 ····· 89
4. 헌법재판절차 개시 ····· 89
제7절 소결 ····· 90

제3장 벨기에의 법관임용제도와 사법개혁 ····· 93

제1절 들어가며 ····· 95
제2절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 ····· 96
Ⅰ. 벨기에의 법학교육 ····· 96
1. 의의 ····· 96
2. 법학교육제도 ····· 96
Ⅱ. 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 ····· 97
제3절 사법개혁과 법관선발 및 임용 방식 ····· 99
Ⅰ. 개관 ····· 99
Ⅱ. 사법개혁의 의의 ····· 99
1. 사법개혁과 사법제도의 개선 ····· 99
2. 사법개혁의 주체 ····· 100
3. 사법관의 의미 ····· 101
Ⅲ. 법관임용방식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 103
1. 1991년의 사법개혁 ····· 103
2. 1998년의 사법개혁[문어(octopus) 개혁] ····· 112
Ⅳ. 최고사법회의 ····· 122
1. 설립배경 ····· 122

2. 목적 ····· 127
3. 지위 ····· 127
4. 법적 근거 ····· 127
5. 구성 및 조직 ····· 131
6. 위원의 자격, 임명, 임기 ····· 136
7. 최고사법회의의 소관 업무 ····· 139
Ⅴ. 법관 임용을 위한 자격시험 및 무시험전형 ····· 144
1. 의의 ····· 144
2. 법관 지원자 연수허가시험 ····· 145
3. 법관 지원자의 직업능력시험 ····· 178
4. 법관 지원자의 구술평가시험 ····· 189
5. 대리법관 임용을 위한 시험 ····· 197
6. 무시험 전형 ····· 200
Ⅵ. 법관임용절차 및 현황 ····· 201
1. 법관임용절차 ····· 201
2. 법관 임용 후 연수 및 보직 ····· 215
3. 법관 지원 및 임용 현황 ····· 216
Ⅶ. 법관 인사이동 및 처우 ····· 223
1. 법관의 라이프 사이클 ····· 223
2. 법관의 인사이동 ····· 224
3. 법관의 퇴직 내지 전직 ····· 225
4. 법관 급여 및 연금 ····· 226
제4절 소결 ····· 227
Ⅰ. 법관임용제도의 변천 및 시사점 ····· 227
1. 벨기에 법관임용제도의 변천 과정 ····· 227
2. 연수허가시험 제도의 도입 목적 ····· 228
3. 시사점 ····· 229
Ⅱ. 법관임용 자격부여 방식의 다양성 ····· 230
1. 다양한 법관임용 자격시험 및 무시험전형 ····· 230
2. 시사점 ····· 231
Ⅲ. 법관임용에서 최고사법회의의 역할 및 평가 ····· 235
1. 최고사법회의의 역할 ····· 235
2. 최고사법회의에 대한 평가 ····· 236
Ⅳ. 법관처우개선과 우수한 인력 채용 ····· 236
1. 법관처우 개선 문제 ····· 236
2. 우수한 인력 채용 ····· 238
Ⅴ. 사건적체현상과 법조일원화의 관계 ····· 239

제4장 1998년 이후 사법개혁과 신속한 사법을 위한 개혁 ····· 241

제1절 들어가며 ····· 243
제2절 1998년 이후 주요 사법개혁 ····· 244
Ⅰ. 1998년 이후 주요 사법개혁 ····· 244
1. 2005년의 사법개혁[소위 테미스 계획(Themis Plan)] ····· 244
2. 2010년의 사법개혁 시도(소위 “새로운 사법지형”) ····· 246
3. 2014년의 사법개혁 ····· 248
4. 2015년-2018년 사법개혁과 혼합법률 ····· 257
5. 2020년 이후 사법개혁 ····· 259
Ⅱ. 기타 법원의 주요 개혁 ····· 270
1. 가정법원 및 소년법원의 설치 ····· 270
2. 중죄법원의 개혁 ····· 271
3. 법관징계법원 도입 및 징계절차 개선 ····· 272
4. 중재재판의 개혁 ····· 274
제3절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사법개혁 ····· 276
Ⅰ. 벨기에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 276
1. 의의 ····· 276
2. 미제건수 및 사건처리기간 관련 통계 ····· 276
Ⅱ. 사건적체의 원인 ····· 282
1. 법관임용방식과 사건적체의 관련성 여부 ····· 282
2. 법관의 정치적 임명과 사건적체 ····· 282
3. 사건적체의 진정한 원인 ····· 283
Ⅲ. 사건적체 원인에 관한 실증연구 ····· 284
1. 의의 ····· 284
2. 벨기에 민사소송절차 ····· 285
3. 실증연구의 방식과 쟁점 ····· 294
4. 설문조사 및 결과 ····· 295
5. 사건분석 및 결과 ····· 300
6. 법관들과의 토론 ····· 308
7. 실증연구의 결론 ····· 312
Ⅳ. 법원의 사건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입법 ····· 313
1. 논의의 순서 ····· 313
2. 사법부 사건적체 극복을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 313
3. 재판을 해태한 법관의 사건 관여 배제를 위한 재판법 개정 ····· 315
4. 사법부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의 재판법 개정 법률 ····· 317
5. 사법부 내 업무부담 경감과 재분배를 위한 법률(혼합법률Ⅶ) ····· 319
Ⅴ. 더욱 인도적이고, 신속하며, 강고한 사법 프로젝트 ····· 321
1. 더욱 신속한 사법 프로젝트 ····· 321
2. 더욱 신속한 사법을 위한 기초 작업 ····· 322
3. 더욱 신속한 사법의 세부 목표 ····· 323
4. 더욱 신속한 사법을 위해 실행된 정책 ····· 324

제4절 소결 ····· 333
Ⅰ.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사법개혁 ····· 333
Ⅱ.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사법개혁 ····· 334
Ⅲ. 시사점 ····· 336
1. 지속적인 사법개혁 추진 ····· 336
2. 사건처리지연과 사건적체 해소 문제 ····· 336

제5장 결론 ····· 339

17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연구총서 2023-17

연구책임자 : 김효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승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12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9

제1절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11
Ⅰ.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의 의의 ····· 11
Ⅱ. 구 국제사법상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12
1. 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의 원칙 및
국내법의 관할규정 참작 ····· 12
2.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검토 ····· 13
가.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확정) ····· 14

(1) 사건의 개요 ····· 14
(2) 법원의 판단 ····· 15
(가) 제1심 법원의 판단 ····· 15
(나) 대상판결의 판단 ····· 17
(3) 검토 ····· 18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51716 판결(확정) ····· 20
(1) 사건의 개요 ····· 20
(2) 법원의 판단 ····· 21
(3) 검토 ····· 22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0가합510183 판결(미확정) ····· 23
(1) 사건의 개요 ····· 23
(2) 법원의 판단 ····· 24
(3) 검토 ····· 26
Ⅲ. 개정 국제사법상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27
1. 개정 국제사법 제41조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27
가. 개관 ····· 27
나. 개정 국제사법상 인터넷에 의한 계약의 의무이행지의 해석 ····· 29
(1) 계약 유형에 따른 개정 국제사법 제41조의 적용 조항의 결정 ····· 29
(2)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의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의 해석 ····· 32
(가) 견해의 대립 ····· 32
1) 인터넷 사업자(채무자)의 영업소 소재지로 보는 견해 ····· 32
2) 서버 소재지로 보는 견해 ····· 32
3) 접속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로 보는 견해 ····· 33
(나) 검토 ····· 33
2. 개정 국제사법 제8조의 합의관할 ····· 34
가.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형, 방식 및 독립성 ····· 35
나.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 36
(1) 개관 ····· 36
(2) 종래 판례 이론과의 비교: 합리적 관련성 요건의 배제 ····· 39
3. 개정 국제사법 제3조의 일반관할과
제4조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42
4. 개정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 44
제2절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46
Ⅰ. 서론 ····· 46
Ⅱ.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의의·유형 및 당사자 ····· 48
1.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의의 및 유형 ····· 48
2.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당사자의 확정 ····· 49
Ⅲ. 구 국제사법 제27조 및
개정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 52
1. 보호적 관할(protective jurisdiction)의 인정 ····· 52

2. 소비자 및 소비자계약의 범위 ····· 55
Ⅳ. 개정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범위 ····· 60
1.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 ····· 60
가. 지향된 활동의 판단기준에 관한 견해의 대립 ····· 61
(1) 웹사이트에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제1설) ····· 61
(2)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제2설) ····· 63
(3) 사업자의 의도(intention)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제3설) ····· 65
(4) 웹사이트가 미친 효과(effect)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제4설) ····· 66
나. 검토 ····· 69
다. 지향된 활동의 인정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의 조치 ····· 70
2.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소비자계약 체결 간의 인과관계 ····· 71
Ⅴ.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규제 ····· 73
1. 개관 ····· 73
2. 약관규제법 제14조의 국제재판관할합의에의 적용 여부 ····· 74
3.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 전속관할규정의 국제재판관할에의 적용 여부 ····· 75
4.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 ····· 76
Ⅵ. 소결 ····· 77

제3장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79

제1절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81
Ⅰ.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의 의의 및 유형 ····· 81
Ⅱ. 개정 국제사법 제44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82
1. 개정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른 행동지 및 결과발생지 관할의 인정 ····· 82
2. 지향지가 별도의 관할근거인지 여부 ····· 84
Ⅲ.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88
1. 개관 ····· 88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 ··· 88
가. Shevill 사건의 개요 및 판결의 내용: 결과발생지 관할의 양적 제한 ····· 88
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분석 ····· 90
3.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 ····· 92
가. 서설 ····· 92
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eDate 판결 ····· 93
(1) eDate Advertising 사건 및 Martinez 사건의 개요 ····· 93
(2) eDate 판결의 내용 ····· 94
(3) eDate 판결의 분석 ····· 96
(가) 모자이크 이론의 유지 ····· 97

(나) Shevill 판결에서 결과발생지의 요건과의 차이 ····· 98
(다) '피해자의 이익의 중심'과 국제재판관할 ····· 99
(4) 소결 ····· 102
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 및
금지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Bolagsuppysningen 판결 ····· 105
(1) Bolagsuppysningen 사건의 개요 및 판결의 내용 ····· 105
(2) Bolagsuppysningen 판결의 분석 ····· 107
(가) 모자이크 이론의 적용과 금지소송 ····· 107
(나) 법인의 인격권 침해와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와의 구별 ····· 109
라.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의 정리 ··· 109
4.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 ····· 110
가. eDate 판결 이전 인격권 침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결 ····· 111
(1)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 1977년 5월 3일 판결(①판결) ····· 111
(2) 독일 연방대법원 2010년 3월 2일 판결
(New York Times 판결, ②판결) ····· 113
(3) 독일 연방대법원 2011년 3월 29일 판결
(모스크바의 7일 판결, ③판결) ····· 116
(4) 독일 연방대법원 2011년 10월 25일 판결(④판결) ····· 117
(5) 독일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과
브뤼셀협약 제5조 제3항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
(eDate Advertising 사건 선결재정신청결정, ⑤결정) ····· 118
나. eDate 판결 이후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결 ····· 119
(1) 독일 연방대법원 2013년 5월 4일 판결(google 판결, ⑥판결) ····· 120
(2) 브뤼셀협약 제5조 제3항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 2013년 5월 8일 판결 ····· 121
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의 분석 ····· 122
(1) 판단기준의 구체적 내용 ····· 122
(2) 결과발생지 법원의 심리범위 ····· 124
(3) 침해수단에 있어서의 구별 ····· 124
5.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기준의 분석 ····· 125
가. 서설 ····· 125
나.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에 관한 견해의 분석 ····· 126
(1) 각 견해의 기본적 입장 ····· 126
(2) 인격권의 소재에 대한 이해의 차이 ····· 128
(3) 결과발생지의 한정 유무 ····· 129
(가) 접속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의 배경 ····· 129
(나) 모자이크 이론의 채택에 관한 논의 ····· 130

1) 모자이크 이론의 전제 ····· 130
2) 모자이크 이론의 채택과
자의적 관할 선택(포럼 쇼핑)의 회피의 문제 ····· 131
3) 피해자의 관점에서의 모자이크 이론 채택의 실익 ····· 132
4) 모자이크 이론에 대한 그 밖의 비판 ····· 134
5)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의
모자이크 이론의 채택에 대한 비판 ····· 135
(다) 집중적 심리가 가능한 관할의 인정 여부 ····· 136
(4) 결과발생지를 한정하기 위한 기준 ····· 137
(가) 피해자의 주소지에 결과발생지를 한정하는 견해 ····· 137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장소에
결과발생지를 한정하는 견해 ····· 139
(다) 다툼의 대상인 웹사이트가 공표자에 의해 향해져 있는 장소에
결과발생지를 한정하는 견해 ····· 140
(라) 각 견해의 차이 ····· 142
(5) 소결 ····· 144
Ⅳ.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의 행동지, 결과발생지 및 지향지의 해석 ····· 145
1.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행동지의 해석 ····· 145
가. 개관 ····· 145
나. 개정 국제사법 하의 해석론 ····· 146
(1) 불법행위자가 이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서버 소재지 ····· 146
(2) 인터넷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업로드한 곳 ····· 147
(3) 불법행위자의 영업소 소재지 ····· 147
2.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결과발생지의 해석 ····· 148
가. 접속가능성만으로 결과발생지 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48
나. 결과발생지 관할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 149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 149
(가) 사건의 개요 ····· 149
(나) 법원의 판단 ····· 150
(다) 검토 ····· 151
(2) 개정 국제사법 제44조에 따른
결과발생지 관할의 인정시 고려요소 ····· 151
3.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지향지의 해석 ····· 152
제2절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국제재판관할 ····· 153
Ⅰ. 개정 국제사법 제39조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153
1. 행동지, 결과발생지, 또는 지향지의 관할 인정 ····· 154
2. 관할의 양적 제한 ····· 155
가. 관할의 양적 제한의 원칙 ····· 155
나. 관할의 양적 제한의 예외: 주된 행동지의 경우 ····· 155
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모자이크 이론과의 비교 ····· 156
3. 결과발생지 관할의 예견가능성 불요 ····· 157

4. 관련 사건의 관할 규정 부적용 ····· 157
Ⅱ.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국제재판관할 ····· 158
1. 개관 ····· 158
2.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내 하급심 판결 ····· 158
가. 인터넷에 의한 상표권 침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확정) ····· 158
(1) 사건의 개요 ····· 158
(2) 법원의 판단 ····· 160
(3) 검토 ····· 161
나.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표권 침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21077 판결(확정) ····· 163
(1) 사건의 개요 ····· 163
(2) 법원의 판단 ····· 165
(3) 검토 ····· 165
다. 인터넷에 의한 특허권 침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확정) ····· 166
(1) 사건의 개요 ····· 166
(2) 법원의 판단 ····· 167
(3) 검토 ····· 167
3.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해외 판례 ····· 169
가. 인터넷에 의한 상표권 침해 사건:
2012년 Wintersteiger AG v. Products 4U
Sondermaschinenbau GmbH 판결 ····· 169
(1) 사건의 개요 ····· 169
(2) 법원의 판단 ····· 170
(3) 검토 ····· 170
나. 인터넷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건 ····· 171
(1) 2015년 Pez Hejduk v. EnergieAgentur, NRW GmbH 판결 ····· 171
(가) 사건의 개요 ····· 171
(나) 법원의 판단 ····· 171
(다) 검토 ····· 171
(2) 2006년 중국 북경시 중급인민법원 제1365호 사건 ····· 172
(가) 사건의 개요 ····· 172
(나) 법원의 판단 ····· 172
(다) 검토 ····· 173
4.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의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 173
가. 개정 국제사법 제39조의 행동지, 결과발생지 및 지향지의 해석 ····· 173
나. 개정 국제사법 제3조(일반관할), 제4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및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의 적용 ····· 175

다. 개정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의 적용 ····· 176

제4장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관한 제언 ····· 177

제1절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제언 ····· 179
Ⅰ.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179
Ⅱ.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181
1.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의 해석: 효과이론에 따른 특정 국가를 향한 징표 (country-specific indicia)의 고려 ····· 181
2.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 183
제2절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제언 ····· 183
Ⅰ.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183
Ⅱ.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 185

제5장 결론 ····· 187

17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3-18

연구책임자: 전 문 식(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12월 29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3절 보고서 구성 ····· 7

제2장 우리나라 법정 내 질서유지 현황 ····· 9

제1절 법정 내 질서유지의 중요성 ····· 11
제2절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 13
Ⅰ. 법정경찰권(법정질서유지권) ····· 13
1. 의의 ····· 13
2. 법정경찰권의 내용 ····· 16
3. 법정경찰권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 ····· 44
4. 법정경찰권의 한계 ····· 55
5. 법정경찰권 행사에 대한 불복 ····· 58
Ⅱ. 그 밖의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제도 및 관행 ····· 58

1. 형사처벌 ····· 58
2. 법정예절 ····· 61
제3절 법정 내 사건·사고 및 대처 현황 ····· 66
Ⅰ. 개관 ····· 66
Ⅱ. 사례와 유형의 분석 ····· 67
1.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 67
2. 법정 내 사건·사고의 분석 ····· 69
Ⅲ. 대처 현황 ····· 79
1. 연도별 법정 내 사건·사고 처리 결과 ····· 79
2. 형사처벌 사례 ····· 81
제4절 현 법정 내 질서유지 제도의 문제점 ····· 89
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대처방안의 변화 필요성 ····· 89
Ⅱ.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수단 개선의 필요성 ····· 90
1.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감치재판제도 개선의 필요성 ····· 90
2. 법정소란 시 제재조치로서 즉각적인 형사처벌의 필요성 ····· 98
Ⅲ. 법정기립에 대한 찬반론 ····· 101
Ⅳ.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 규정 개선의 필요성 ····· 103
1. 공판정에서 불구속 피고인의 '법정구속' 시
구속집행보조 권한 부존재 문제 ····· 104
2.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 관련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권한에 관한 문제 ····· 106
3. 유형력 행사에 있어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 109
Ⅴ. 경찰공무원 파견 문제 ····· 111
제5절 소결 ····· 112

제3장 각국의 법정 내 질서유지 현황 ····· 115

제1절 서론 ····· 117
제2절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 118
Ⅰ. 개요 ····· 118
Ⅱ. 독일 ····· 118
Ⅲ. 일본 ····· 123
Ⅳ. 프랑스 ····· 128
1. 원칙 ····· 128
2. 완화 ····· 131
Ⅴ. 미국과 캐나다 ····· 135
1. 미국 ····· 135
2. 캐나다 ····· 137

제3절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수단 ····· 152
Ⅰ. 개요 ····· 152
Ⅱ. 독일 ····· 152
1. 요건 ····· 153
2. 책임 ····· 156
3. 절차 ····· 157
4. 질서조치의 확정(Festsetzung) ····· 158
Ⅲ. 일본 ····· 158
1. 개관 ····· 158
2. 감치 및 과태료 재판 ····· 159
3. 법정경찰권과 심판방해죄의 관계 ····· 161
4. 제재를 위한 구속 ····· 162
5. 실무례 ····· 164
Ⅳ. 프랑스 ····· 165
1. 개요 ····· 165
2. 법정경찰권 ····· 165
3. 형벌규정 ····· 168
4. 공판정에서의 이루어진 범죄의 재판에 대한 절차 ····· 174
Ⅴ. 미국 ····· 176
1. 직접적 형사모독죄(Direct Criminal Contempt) ····· 176
2. 근거 규정 ····· 177
3. 약식절차 회부권(the summary contempt power) ····· 180
4. 실무례 ····· 182
제4절 법정기립에 대한 각국의 태도 ····· 183
Ⅰ. 독일 ····· 183
1. 법정기립의 의미 ····· 183
2. 법정기립에 대한 규제 ····· 183
Ⅱ. 일본 ····· 185
1. 과거의 규정 ····· 185
2. 현재 관행으로서의 법정 내 기립 ····· 185
Ⅲ. 프랑스 ····· 186
Ⅳ. 미국 ····· 187
1. 법정기립에 대한 이해 ····· 187
2. 법정에서의 기립 거부 실제 사례 ····· 187
제5절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인적 자원 ····· 190
Ⅰ. 독일 ····· 190
1. 법정경위 의의 및 역할 ····· 190
2. 실무현황 ····· 190
3. 무기사용 가능성 ····· 191
4. 지원 자격 및 심사 ····· 191

5. 수습 및 임용 ····· 192
6. 바이에른 주의 근거법령에 따른 법정경위의 업무 ····· 192
Ⅱ. 일본 ····· 196
1. 법정경위 ····· 196
2. 파출경찰관 ····· 196
3. 형사수용시설의 직원 ····· 197
Ⅲ. 프랑스 ····· 199
Ⅳ. 영국 ····· 199
Ⅴ. 미국 ····· 200
1. 미연방보안국 USMS(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 200
2. 미연방대법원경찰 USSCP(United States Supreme Court Police) ····· 201
3. 주법원의 보안관(Sheriff)과 집행관(bailiff) ····· 202
4. 법원보안요원 근무 실태 ····· 203
제6절 외국 법제가 주는 시사점 ····· 204

제4장 개선방안 ····· 207

제1절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 209
Ⅰ. 개선방향 ····· 209
Ⅱ. 규칙 제정안 ····· 210
1. 고려요소 ····· 210
2.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 ····· 211
3.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안) ····· 219
제2절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수단에 대한 검토 ····· 226
Ⅰ. 감치제도의 개선방안 ····· 226
1. 개선 방향 ····· 226
2. 감치재판의 실무 운용상 개선방안 ····· 226
3. 감치재판 대상자 권리의 개선방안 ····· 234
4. 영상재판 확대 실시에 따른 감치재판 제도 개선방안 ····· 237
Ⅱ. 법정 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에 대한 검토 ····· 240
1. 검토 방향 ····· 240
2. 직접적 형사모독죄 도입에 대한 찬반론 ····· 241
3. 법원 내 법정모독죄 도입 검토 이력 ····· 244
4. 이론 및 헌법적 검토 ····· 246
5. 법정질서위반자에 대한 감치 등 제도의 과잉금지에 관한
해결방안으로서 제도 구상 ····· 250
6. 요약 ····· 250
7. 개선방안 ····· 251
제3절 법정기립에 대한 검토의견 ····· 256
제4절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 규정 개선방안 ····· 259

제5절 기타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개선방안 ····· 263
제6절 법원경찰제도 도입론 ····· 265
Ⅰ. 논의의 필요성 ····· 265
Ⅱ. 법원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재검토 ····· 265
1. 법원경찰의 정의 ····· 265
2. 법원경찰제도 관련 지난 검토 내역 ····· 266
3. 문제점 ····· 269
4. 재판 관련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 ····· 270
5. 법원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73
Ⅲ. 법원경찰과 권력분립의 문제 ····· 274
Ⅳ. 법원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276
1. 권한 ····· 276
2. 조직 ····· 281
Ⅴ. 소결 ····· 284

제5장 마치며 ····· 289

17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연구총서 2023-19

연구책임자: 이 혜 영(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국제적 사법교류' 개념 ····· 9
제3절 한국의 특수성과 연구범위, 연구방법 ····· 11
Ⅰ. 한국의 특수성 ····· 11
Ⅱ.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13
제4절 구성 ····· 16

제2장 국제적 현상으로서 '국제적 사법교류' ····· 17

제1절 유형 및 공통요건 ····· 19
Ⅰ. 유형 ····· 19
1. 교류 주체 간 관계성에 따른 유형화 ····· 19
가. 수평적 교류 ····· 19
나. 수직적 교류 ····· 21
다. 수평·수직혼합적 교류 ····· 23
2. 상호인식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 ····· 24
가. 직접대화 ····· 24
나. 일방적 독백 ····· 24
다. 중간매개를 통한 간접대화 ····· 25
Ⅱ. 공통의 전제조건 ····· 25

1. 자주적 국제행위자로서 사법부 ····· 26
2. 설득적 권위 ····· 27
3. 공통의 정체성 및 방법론 ····· 28

제2절 국제적 사법교류의 기능: 왜 국제적 사법교류를 하는가? ····· 29
Ⅰ. 일반적 상호교류 기능 ····· 30
Ⅱ. 사법결정의 설득력 및 권위 강화 기능 ····· 32
Ⅲ.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적 기능 ····· 34
Ⅳ. 국제법의 이행 및 형성, 법치주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기능 ····· 34
1. 국제법의 이행에 이바지하는 기능 ····· 34
2. 국제법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능 ····· 35
3. 법치주의 진보에 기여 ····· 36
Ⅴ. 외교적 기능 ····· 36

제3장 한국의 국제적 사법교류 현황 ····· 39

제1절 해외판례의 사용 ····· 41
Ⅰ. 대법원 ····· 41
1. 전문인력 ····· 41
2. 해외 법제도 및 해외판례의 참조 및 활용 ····· 43
Ⅱ. 법원행정처 ····· 44
1. 전문인력 – 조사위원 중심으로 – ····· 44
가. 조사위원 제도 취지 ····· 45
나. 주요 업무 ····· 45
다. 효용성 및 순기능 ····· 46
라. 개선점 ····· 47
2. 기타 해외 법제도 및 해외판례의 참조 및 활용 ····· 47
Ⅲ. 사법정책연구원 ····· 48
1. 전문 연구인력 – 연구위원 및 조사위원 중심으로 – ····· 49
2. 해외 법제도 및 해외판례 연구 현황 ····· 52
가. 연구보고서 ····· 52
나. 국제규범연구 ····· 59
다. 외국사법제도연구 ····· 60
라. 정책연구용역 ····· 62
마. 국제교류 및 협력 ····· 62
바. 해외판례 기고 ····· 63
Ⅳ. 사법연수원 – 국제사법협력센터 중심으로 – ····· 64
1. 설립 목적 ····· 64
2. 조직 구성 ····· 64
3. 직무 ····· 65
4. 주요 업무 ····· 65
가. 선진 사법국가 법관연수기관들과의 교류 및 협력 ····· 65

나. 개발도상국 사법 역량강화 사업(ODA) 실시 ····· 66
다. 국제컨퍼런스, 콜로키엄 등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국제행사 개최 ····· 69
Ⅴ. 법원도서관 ····· 70
1. 해외 자료교환처 및 거점도서관 교류 ····· 70
2. 국제회의 참가 ····· 71
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 71
나. 국제법률도서관협회 총회 참가 ····· 71
3. 영문·중문 사법자료 서비스 ····· 71
가. 영문판례집 발간 등 영문판례 홍보 ····· 71
나. 중문판례집 발간 ····· 71
다. 영문저널 발간 ····· 72
제2절 법관 해외연수 제도를 통한 직접 사법교류 ····· 73
Ⅰ. 법관의 국비 해외연수 ····· 73
1. 현황 통계(2017년 ~ 현재) ····· 73
가. 연도별 통계 ····· 73
나. 국비 해외연수자별 국가, 과정, 연수 기간에 관한 세부통계 ····· 74
2. 운영의 규범적 근거 ····· 82
3. 지원 자격 및 종류 ····· 82
가. 지원 자격 ····· 82
나. 종류 ····· 83
4. 예산 및 비용 ····· 93
5. 과제부과 및 결과보고서 ····· 94
가. 과제부과 현황 및 사례 분석 ····· 94
나.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 102
다. 결과보고서 활용 현황 ····· 103
6. 기타 기능 및 개선점 ····· 105
Ⅱ. 연구법관의 해외연구 ····· 105
Ⅲ. 연수휴직(비국비) 제도 ····· 106
1. 내규상 제도 개괄 ····· 106
2. 현황 통계(2017년 ~ 현재) ····· 107
Ⅳ. 국제화 연수 ····· 108
1. 내규상 제도 개괄 ····· 108
2. 운영 현황(통계) ····· 108
3. 결과보고서 및 자료 활용 등 ····· 119
Ⅴ.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 ····· 119
1. 내규상 제도 개괄 ····· 119
2. 운영 현황(통계) ····· 120
3. 분석 ····· 137
가. 국제기구·조직체와의 지속적 교류 현황 ····· 137
나. 국제 법관기구 가입 및 활동 현황 ····· 144
다. 주요 국가의 해외사법제도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위한 출장 현황 ···· 146
4. 결과보고서 및 자료 등 활용 ····· 146

Ⅵ. 연임법관 연수 ····· 146
1. 개관 ····· 146
가. 제도 개설 ····· 146
나. 경과 ····· 147
다. 제도 취지 ····· 147
2. 근거 규정 ····· 148
3. 종류 ····· 149
가. [1차 연임법관연수] 국비·자비 연수 ····· 149
나. 2차·3차 연임법관연수 ····· 149
4. 예산 ····· 149
5. 선발 현황 ····· 150
6. 결과보고서 ····· 153
가. 제출 현황 ····· 153
나. 관리 및 공개, 활용 현황 ····· 153
7. 기타 기능 및 개선점 ····· 154
가. 순기능 ····· 154
나. 개선점 ····· 154
제3절 법관 해외파견 제도 ····· 155
Ⅰ. 역사 ····· 155
Ⅱ. 전체 현황 ····· 155
Ⅲ. 근거 규정 ····· 157
Ⅳ. 선정 절차, 지위, 업무, 기능 ····· 157
Ⅴ. 기능 및 개선점 ····· 159
제4절 최고위급 사법교류 ····· 161

제4장 일본의 국제적 사법교류 현황 ····· 163

제1절 사법외교에 따른 국제규칙의 형성 ····· 166
Ⅰ. 국제기관 등의 재정적 지원 및 인적 교류 ····· 166
Ⅱ. 국제적 규칙의 형성 ····· 167
제2절 재판관 및 재판소의 사법교류 ····· 169
Ⅰ. 관련 법률 및 기본방침의 제정 ····· 169
Ⅱ. 재판관의 해외연수 및 파견 ····· 169
1. 재판관의 해외연수 ····· 170
2. 재판관의 법률 정비의 지원 ····· 172
3. 재판관의 재외공관 근무 ····· 173
Ⅲ. 재판소의 사법교류 ····· 174
제3절 법무성의 사법외교 ····· 176
Ⅰ. 사법외교의 추진 ····· 176
Ⅱ. 2020년 일본 교토의정서 ····· 177
Ⅲ. 국제중재의 활성화 ····· 178

제4절 시사점 ····· 179

제5장 개선점 및 사법정책적 제언 ····· 181

제1절 해외판례의 사용 ····· 184
Ⅰ. 대법원 ····· 184
Ⅱ. 법원행정처 ····· 185
Ⅲ. 사법정책연구원 ····· 186
Ⅳ. 사법연수원 및 법원도서관 ····· 189
제2절 법관 해외연수 제도를 통한 직접 사법교류 ····· 191
Ⅰ. 법관의 국비 해외연수 ····· 191
Ⅱ. 국제화 연수 ····· 193
Ⅲ.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 ····· 194
Ⅳ. 연임법관 연수 ····· 195
제3절 법관 해외파견 제도 ····· 197
제4절 최고위급 사법교류 ····· 198

제6장 결론 ····· 199

18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3-20

연구책임자: 박 우 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대상 ····· 9

Ⅰ. 영국과 프랑스에서 배심제의 의미 ····· 9

Ⅱ. 주요국에서의 배심제와 참심제 ····· 10

1. 영국 ····· 11

2. 독일 ····· 13

3. 일본 ····· 14

4. 미국 ····· 14

5. 우리나라 ····· 16

Ⅲ. 프랑스에서의 배심제와 참심제 ····· 18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제4절 연구의 구성 ····· 23

제2장 프랑스 배심제의 형성 ····· 25

제1절 개관 ····· 27

제2절 프랑스 배심제의 기원과 변천 ····· 29

Ⅰ. 프랑스 배심제의 기원 ····· 29

Ⅱ. 프랑스 배심제의 변천 ····· 33

1. 1808-1932년에 있었던 시도 ····· 33

2. 1941-1958년에 있었던 시도 ····· 34

Ⅲ. 최근의 변화 ····· 37
1. 2000-2011년에 있었던 변화 ····· 37
2. 2019년 개혁 ····· 39
제3절 평가 ····· 42

제3장 프랑스 배심제의 개요 ····· 45

제1절 개관 ····· 47
제2절 프랑스 형사재판 제도 개관 ····· 48
Ⅰ. 형사재판 관할 법원 ····· 50
Ⅱ. 수사판사제도 ····· 55
Ⅲ. 중죄와 경죄의 구분 ····· 59
1. 예심 및 공소제기 절차의 차이 ····· 59
2. 구속기간의 차이 ····· 60
가. 예심 구속기간 ····· 60
나. 예심수사 종결 후 구속기간 ····· 61
제3절 중죄법원에서의 재판절차와 운용 ····· 63
Ⅰ. 중죄법원의 관할과 구성 ····· 63
1. 중죄법원의 관할 ····· 63
가. 원칙 ····· 63
나. 예외 ····· 65
2. 중죄법원의 개정시기 ····· 66
3. 중죄법원의 구성 ····· 67
가. 재판부 ····· 67
나. 배심 ····· 68
Ⅱ. 중죄법원에서의 재판준비절차 ····· 73
Ⅲ. 중죄법원의 개정 ····· 75
1. 배심원 명부 수정 ····· 75
2. 배심의 구성 ····· 76
Ⅳ. 중죄법원의 심리 ····· 83
1. 기본사항 ····· 83
2. 피고인의 출석 ····· 85
3. 증거의 제출 및 검토 ····· 85
4. 변론 종결 및 질문 낭독 ····· 89
가. 변론 종결 선언 ····· 89
나. 질문 낭독 ····· 89
Ⅴ. 중죄법원의 판결 ····· 94
1. 평의 ····· 94
2. 평결 ····· 96
3. 판결 이유의 작성 ····· 97

4. 판결 ····· 98
가. 선고 ····· 98
나. 판결서 및 조서 ····· 101
Ⅵ.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 102
1. 총칙 ····· 102
2. 항소기간 및 항소의 형식 ····· 104
3. 항소를 재판할 중죄법원의 지정 ····· 104
제4절 형사법원에서의 재판절차와 운용 ····· 106
제5절 소결 ····· 108

제4장 프랑스 배심제 관련 쟁점 검토 ····· 111

제1절 개관 ····· 113
제2절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116
Ⅰ. 중죄법원 항소심 도입 ····· 116
Ⅱ. 배심재판에 부과된 이유제시의무 ····· 120
1.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 Taxquet v. Belgium 판결 ····· 120
2. 프랑스 법제의 변화 ····· 123
제3절 형사재판의 효율성 제고 ····· 125
Ⅰ. 형사법원 제도의 도입 ····· 125
Ⅱ. 개혁의 내용 ····· 126
1. 형사법원 재판부 구성 ····· 127
2. 형사법원 관할 ····· 127
3. 재판기간 ····· 128
4. 형사법원 시행 이후의 경죄화 관행 ····· 134
5. 형사법원에서 선고한 형량 ····· 136
6. 운영비용 ····· 138
제4절 소결 ····· 140

제5장 결론 ····· 141

제1절 요약 ····· 143

제2절 평가 및 시사점 ····· 147

Ⅰ. 배심제도 도입의 취지와 변화 과정 ····· 147

Ⅱ. 배심제도 운영 차원의 개선방안 ····· 148

Ⅲ. 형사재판제도 운영 차원의 개선방안 ····· 154

제3절 결론 ····· 158

18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3-21

연구책임자: 정 승 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 4
제3절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우리나라 판결서 작성 방식 ····· 7

제1절 판결서의 기능 ····· 9
Ⅰ. 본질적 기능 ····· 9
1. 당사자에 대한 보고적 기능 ····· 9
2. 상급법원에 대한 심리기초 형성 기능 ····· 9
3. 판결 효력 범위의 명확화 기능 ····· 9
Ⅱ. 부수적 기능 ····· 10
1. 검토 기능 ····· 10
2. 공시 기능 ····· 10
3. 보존의 기능 ····· 10
제2절 판결서 작성 방식의 변천과정 ····· 11
Ⅰ. 1961년 판결서 개선 방안 ····· 11
1. 종전 판결서 작성 방식 ····· 11
2. 1961년 개선 방안의 내용 ····· 12
Ⅱ. 1991년 재판예규 제316호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 13

1. 예규 제정의 배경 ····· 13
2. 개선의 목적과 방향 ····· 14
3. 민사 판결서 관련 주요 내용 ····· 14
4. 형사 판결서 관련 주요 내용 ····· 15
5. 공통 부분 ····· 16
Ⅲ. 1998년 재판예규 제625-1호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사항」 ····· 16
1. 예규 제정의 배경과 목적 ····· 16
2. 민사 판결서 관련 주요 내용 ····· 17
3. 형사 판결서 관련 주요 내용 ····· 18
Ⅳ. 2002년 민사소송법 전문 개정 ····· 18
1. 당사자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 18
2. 이유 기재의 생략 ····· 19
Ⅴ. 2014년 재판예규 제1474호 「형사 판결서 작성 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 20
1. 제정 이유 ····· 20
2. 주요 내용 ····· 20
제3절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 22
Ⅰ. 판결서 이유 체제의 방식 ····· 22
1. 1998년 예규의 권장방식 ····· 22
2. 인정사실 통합형을 중심으로 한 개선의 문제점 ····· 22
3. 사법연수원의 교육 방식 ····· 23
Ⅱ. 각 방식의 적용 ····· 24
1. 방식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 ····· 24
2. 방식과 무관한 경우 ····· 25
3. 방식의 선택 ····· 26
Ⅲ. 판결서 구성요소별 작성 방식 ····· 27
1. 방식별 설시 순서 ····· 27
2. 사실의 인정 ····· 27
3. 당사자의 주장 ····· 30
4. 판단 ····· 30
5. 결론 ····· 32
제4절 형사 판결서 작성 방식 ····· 33
Ⅰ. 형사 판결서의 구조 ····· 33
1. 판결서 기재사항 ····· 33
2. 필수적 이유 기재 ····· 33
Ⅱ. 유죄 판결서 ····· 33
1. 관련 법률 규정 ····· 33
2. 유죄 판결서 체제 ····· 34
3. 사실의 적시 ····· 35
4. 증거의 요지 ····· 36
5. 법령의 적용 ····· 37

6. 양형의 이유 ····· 39
7.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39
8. 전산시스템을 통한 유죄 판결의 이유 기재 간편화 ····· 41
Ⅲ. 무죄 판결서 ····· 47
1. 관련 법률 규정 ····· 47
2. 무죄 판결서 체제 ····· 47
3. 판시 방법 ····· 48
4. 이유 무죄 ····· 49
Ⅳ.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서 ····· 49
1. 관련 법률 규정 ····· 49
2.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서 체제 ····· 50

제3장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과 현황 ····· 51

제1절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53
Ⅰ. 도입 논의 과정 ····· 53
1. 1990년대 ····· 53
2. 2000년대 ····· 54
Ⅱ.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55
1. 법원조직법의 개정 ····· 55
2.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른 최소 법조경력 요건의 단계적 강화 ····· 56
제2절 법조경력자 임용 현황 ····· 58
Ⅰ.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이후 법관임용 현황 ····· 58
Ⅱ.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상세 현황 ····· 59
1. 직역별 현황 ····· 59
2. 기수별 현황 ····· 60
3. 성별 현황 ····· 61

제4장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결서 개선의 필요성 ····· 63

제1절 법조일원화에 따른 변화 ····· 65
Ⅰ. 법조일원화 시대의 새로운 요구 ····· 65
1. 법조일원화 시대에 요구되는 법관의 자질 ····· 65
2. 판결서에 대한 새로운 요구 ····· 65
Ⅱ.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 업무 부담 가중 ····· 66
1. 법관의 고령화로 인한 체력적 부담 가중 ····· 66
2. 판결서 작성 부담의 가중 ····· 67
제2절 판결서 개선의 필요성 ····· 70
Ⅰ. 종래의 판결서 개선안이 실제로 잘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 ····· 70
1. 판결의 자족성·완결성에 대한 중시 ····· 70

2. 상급법원 등에 대한 의식 ····· 70
3. 법관의 무관심과 관행 ····· 71
4. 사법연수원 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미비 ····· 71
Ⅱ. 새로운 판결서 개선의 방향 ····· 72
1. 작성 부담의 경감 ····· 72
2. 당사자에 대한 답변 기능의 강화 ····· 73
3. 인식의 전환 ····· 75

제5장 외국의 판결서 작성 방식 검토 ····· 77

제1절 영국의 판결서 ····· 79
Ⅰ. 민사 판결서 ····· 79
1. 개요 ····· 79
2. 판결서(Written judgment) 작성 방식 ····· 80
3. 구술 판결(Oral judgment)의 작성 방식 ····· 82
4. 판결서의 체계 ····· 82
5. 특수한 형태의 판결 ····· 85
Ⅱ. 형사 판결서 ····· 87
1. 개요 ····· 87
2. 1심 판결의 형태 ····· 87
Ⅲ. 시사점 ····· 88
제2절 미국의 판결서 ····· 90
Ⅰ. 민사 판결서 ····· 90
1. 개요 ····· 90
2. 민사 판결 절차 일반 ····· 90
3. 판결 이유(Opinion)의 작성 ····· 91
4. 배심심리를 거치는 경우 ····· 93
5. 정식 심리절차 없이 하는 판결 ····· 94
Ⅱ. 형사 판결서 ····· 94
1. 미국 형사 재판절차의 특색 ····· 94
2. 형사 1심 판결서 작성 방식 ····· 95
Ⅲ. 시사점 ····· 96
제3절 독일의 판결서 ····· 111
Ⅰ. 민사 판결서 ····· 111
1. 개요 ····· 111
2. 사실관계(Tatbestand) ····· 112
3. 판단이유(Entscheidungsgründe) ····· 116
4. 사실관계 및 판단이유의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 120
Ⅱ. 형사 판결서 ····· 120
1. 개요 ····· 120

2. 유죄 판결의 이유 ····· 122
3. 무죄 판결의 이유 ····· 126
4. 절차중지 판결의 이유 ····· 128
Ⅲ. 시사점 ····· 128
제4절 프랑스의 판결서 ····· 129
Ⅰ. 민사 판결서 ····· 129
1. 개요 ····· 129
2. 분쟁의 진술 ····· 130
3. 이유 ····· 132
Ⅱ. 형사 판결서 ····· 135
1. 개요 ····· 135
2. 중죄법원의 판결 ····· 137
3. 경죄법원의 판결 ····· 143
4. 경찰법원의 판결 ····· 145
Ⅲ. 시사점 ····· 145
제5절 일본의 판결서 ····· 147
Ⅰ. 민사 판결서 ····· 147
1. 판결서 양식의 변화 ····· 147
2. 판결서 이유 기재 ····· 149
3. 특수한 형태의 판결서 ····· 154
Ⅱ. 형사 판결서 ····· 160
1. 개요 ····· 160
2. 유죄 판결의 이유 기재 ····· 161
3.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의 이유 기재 ····· 166
4. 형사 판결서 간이화 제도 ····· 167
Ⅲ. 시사점 ····· 171

제6장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개선 방안의 제안 ····· 173

제1절 민사 판결서 개선 방안 ····· 175
Ⅰ. 판결서의 유형화 ····· 175
1. 유형화의 필요 ····· 175
2. 구별의 기준 ····· 176
Ⅱ. 판결서 체제의 개선 방안 ····· 177
1. 기본형으로서 쟁점별 설시 ····· 177
2. 두괄식 구성 ····· 181
3. 개조식 구성 ····· 186
4. 체크리스트 식 작성 ····· 191
Ⅲ. 판결서의 구체적인 구성부분 개선 방안 ····· 196
1. 기초사실 기재의 간소화 또는 생략 ····· 196

2.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활용 ····· 200
Ⅳ. 보론 – 재판 과정에서 쟁점의 부각 및 정리 ····· 210
1. 변론에서 쟁점 정리의 필요성 ····· 210
2. 민사소송법상 쟁점 정리의 방법 ····· 215
제2절 형사 판결서 개선 방안 ····· 221
Ⅰ. 유죄 판결 이유 ····· 221
1. 서론 ····· 221
2. 증거의 요지 ····· 221
3. 법령의 적용 ····· 224
4.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26
5. 양형의 이유 ····· 233
Ⅱ. 무죄 판결의 이유 ····· 236
1. 유죄 판결 이유와의 비교 ····· 236
2. 판결서 구성요소별 개선 방안 ····· 237
3. 개조식 등 간이한 작성 방식의 제안 ····· 241
Ⅲ.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 244
1.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선고 ····· 244
2. 판결서 기재사항 ····· 244
3. 판결서 이유 기재 간이화 ····· 245
4. 질문지 제도의 도입 제안 ····· 251

결론 ····· 253

182.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4-01

연구책임자: 김 혜 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2월 22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범위 ····· 4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6

제2장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문제점 ····· 7

제1절 법원일반직공무원 개관 ····· 9
Ⅰ. 법원일반직공무원의 현황 ····· 9
Ⅱ.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지위 ····· 12
Ⅲ.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직무 ····· 12
Ⅳ. 법원일반직공무원의 특성 ····· 13
1. 연공서열에 입각한 기수 문화 ····· 13
2. 온정주의 문화 ····· 14
3. 직무의 특성 ····· 15
제2절 근무성적평정제도(성과평가) 일반론 ····· 17

Ⅰ. 근무성적평정(성과평가)의 의의 ····· 17
Ⅱ. 근무성적평정(성과평가)의 요건 ····· 18
1. 타당성 ····· 18
2. 신뢰성 ····· 18
3. 변별력 ····· 19
4. 수용성 ····· 19
5. 실용성 ····· 19
제3절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관 ····· 20
Ⅰ. 서설 ····· 20
Ⅱ.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정경과 ····· 20
Ⅲ. 주요 개정사항 ····· 21
Ⅳ.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주요 사항 ····· 22
1. 5급 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절차 ····· 22
2. 평정자와 확인자 ····· 25
3. 평정대상 및 시기 ····· 26
4. 업무추진실적 기재 ····· 26
5.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및 평정자 순위명부 제출 ····· 27
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 27
나.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 ····· 30
다. 확인자의 조정자 역할 ····· 32
6.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 ····· 32
제4절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실무와 문제점 ····· 34
Ⅰ. 서설 ····· 34
Ⅱ. 근무성적평정제도 피평정자 대상 설문조사 ····· 35
1. 서설 ····· 35
2. 설문조사 개요 ····· 35
가. 설문대상 및 응답률 ····· 35
나. 설문방법 ····· 37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7
가.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 37
나. 근무실적의 평가지표 ····· 41
다. 보직선호도 관련 사항 ····· 46
라. 각 평정요소의 적절한 평가자 ····· 46
마. 본인기재사항 작성과 관련한 어려움 ····· 48
바. 피평정자 교육의 필요성 ····· 50
사. 기타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의견 ····· 51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 57
Ⅲ. 평정자 대상 심층면담 ····· 58
1. 서설 ····· 58
2. 평정요소 관련 ····· 59

3. 평가기준 관련 ····· 61
가. 일반적 평가기준 ····· 61
나. 구체적 평가기준 ····· 62
다. 보직 간 우열관계 결정의 기준 ····· 65
라. 통계의 반영 ····· 67
4. 평가자료 관련 ····· 68
가. 본인기재사항 ····· 68
나. 업무유관자 의견 수집 ····· 70
5. 피평정자의 수용성 관련 ····· 73
6. 실질평정의 어려움 관련 ····· 75
7. 면담 결과 요약 ····· 78
Ⅳ.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 ····· 79
1. 평정요소 관련 문제 ····· 79
가. 일반적 평정요소의 일률적 적용 ····· 79
나. 평정요소의 의미 중첩 ····· 80
다. 평정요소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 80
2. 평가기준 관련 문제 ····· 80
가. 일반적 평가기준의 적절성 ····· 80
나. 구체적 평가기준의 필요성 ····· 81
다. 보직 간 우열관계 결정의 명확한 기준 부재 ····· 83
라. 통계의 반영에 관한 문제 ····· 84
3. 평가자료 관련 문제 ····· 84
가. 본인기재사항(본인평정서) 작성 ····· 84
나. 업무유관자 등 의견 수집 ····· 86
4. 평정자 관련 문제 ····· 86
가. 평정자 교육 등 정보제공 부족 ····· 86
나. 평정자의 평정의지, 객관적 노력 부족 ····· 87
5. 피평정자의 수용성 관련 문제 ····· 87
가. 피평정자의 무관심 ····· 87
나. 평정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 ····· 88
다. 실질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 88
라. 연공서열에 따른 기수문화와 충돌 ····· 89
6. 근무성적평정의 제반여건 관련 문제 ····· 89
가. 평정기준 등 데이터 부족 ····· 89
나. 피평정자와 소통 부족 ····· 90
다. 공개제도의 부담 ····· 90
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불확실성 ····· 90
제3장 각국의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 93
제1절 서설 ····· 95
제2절 독일 ····· 95

Ⅰ. 서설 ····· 95
Ⅱ. 독일의 공무원제도 ····· 96
1. 개관 ····· 96
2. 독일의 사법(司法)공무원 ····· 98
가. 전문학위 사법보좌관(Dipl. Rechtspfleger) ····· 99
나. 법원의 집행관(Gerichtsvollzieher) ····· 100
다. 사법전문공무원(Justizfachwirt) ····· 100
라. 법정경위(Justizwachtmeister) ····· 101
Ⅲ. 공무원 평정 ····· 101
1. 개요 ····· 101
2. 공무원 평정의 대상 ····· 102
가. 적합성(Eignung) ····· 102
나. 능력(Befähigung) ····· 103
다. 전문적 성과(Fachliche Leistung) ····· 103
3. 공무원 평정의 기능 ····· 103
4. 공무원 평정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평정지표 ····· 104
가. 연방 공무원평정의 법적 근거와 평정지표 ····· 104
나. 주요 주(州)법에 따른 평정과 평정지표 ····· 107
Ⅳ. 요약 및 시사점 ····· 146
제3절 일본 ····· 147
Ⅰ. 서설 ····· 147
Ⅱ. 일본 공무원의 인사평가제도 ····· 148
1. 일본 공무원의 현황 ····· 148
가. 개관 ····· 148
나. 일본 재판소의 일반직공무원 ····· 149
2. 새로운 인사평가제도의 도입 ····· 152
가. 기존 인사평가제도의 문제점 ····· 152
나. 새로운 인사평가제도의 도입 및 시행 ····· 153
다. 인사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추가논의 ····· 154
3. 공무원 인사평가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157
가. 의의 ····· 157
나. 인사평가의 종류 ····· 158
다. 인사평가의 방법 ····· 161
라. 인사평가의 결과(평어) ····· 162
Ⅲ. 요약 및 시사점 ····· 166

제4장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 167

제1절 개관 ····· 169
제2절 평정요소에 관한 개선방안 ····· 171

Ⅰ. 개별 평정요소에 관한 논의 ····· 171
Ⅱ. 평정요소의 선정 ····· 171
Ⅲ. 각 기관의 평정요소 검토 ····· 172
Ⅳ. 개선방안 ····· 175
1. 근무실적 평가 ····· 175
가. 현행 평정요소 분석 및 개선방향 ····· 175
나. 개선안 ····· 178
2. 직무수행능력 평가 ····· 178
가. 현행 평정요소 분석 및 개선방향 ····· 178
나. 개선안 ····· 179
3. 직무수행태도 평가 ····· 180
가. 현행 평정요소 분석 및 개선방향 ····· 180
나. 개선안 ····· 181
제3절 평가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 181
Ⅰ. 서설 ····· 181
Ⅱ. 각 기관의 평가기준 검토 ····· 182
Ⅲ. 근무실적에 관한 구체적 평가기준 ····· 198
1. 논의의 한계 ····· 198
2. 민사재판 ····· 199
가. 논의의 범위 ····· 199
나. 민사 전자소송과 업무의 형태 ····· 199
다. 참여관의 역할 강화 ····· 203
라. 직무분석(참여관, 실무관) ····· 206
마. 평가지표와 구체적 평가 ····· 212
3. 형사재판 ····· 220
가. 논의의 범위 ····· 220
나. 형사재판과 업무의 형태 ····· 220
다. 제도의 변화 ····· 222
라. 직무분석(참여관, 실무관) ····· 223
마. 평가지표와 구체적 평가 ····· 227
4. 민사집행 ····· 235
가. 논의의 범위 ····· 235
나. 민사집행과 전자소송 ····· 235
다. 직무분석(경매참여관) ····· 238
라. 평가지표와 구체적 평가 ····· 241
5. 등기 ····· 246
가. 논의의 범위 ····· 246
나. 부동산등기와 업무의 형태 ····· 246
다. 직무분석(등기관, 기입공무원) ····· 249
라. 평가지표와 구체적 평가 ····· 253

6. 보직에 관한 비교평가 기준 ····· 257
가. 서설 ····· 257
나. 직무평가의 방법 ····· 258
다. 활용 가능한 방법 ····· 265
라. 점수법의 활용 ····· 266
마. 서열법의 활용 ····· 274
바. 보직선호도의 결정 ····· 276
Ⅳ.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구체적 평가기준 ····· 277
1. 논의의 한계 ····· 277
2. 평가지표 ····· 278
3. 구체적 평가기준 ····· 279
Ⅴ. 직무수행태도에 관한 구체적 평가기준 ····· 280
1. 논의의 한계 ····· 280
2. 평가지표 ····· 280
3. 구체적 평가기준 ····· 282
제4절 그 외의 개선방안 ····· 283
Ⅰ. 평가자료 관련 개선방안 ····· 283
1. 근무성적평정서 본인기재사항(본인평정서)의 입력양식 개선 ····· 283
가. 본인기재사항의 필요성 ····· 283
나. 각 기관의 근무성적평가서 양식 ····· 284
다. 개선방안 ····· 288
라. 개정안 ····· 288
2. 업무유관자 등 의견 수집의 의무화 ····· 289
가. 필요성 ····· 289
나. 개선방안 ····· 290
다. 개정안 ····· 293
Ⅱ. 평정자 관련 개선방안 ····· 293
1. 서설 ····· 293
2. 평가자 교육 강화 ····· 294
가. 필요성 ····· 294
나. 행정부의 평가자 교육 ····· 295
다. 개선방안 ····· 295
Ⅲ. 피평정자 관련 개선방안 ····· 296
1. 서설 ····· 296
2. 피평정자 교육 실시 ····· 297
가. 필요성 ····· 297
나. 교육의 형태 ····· 297
다. 개선방안 ····· 298
라. 개정안 ····· 298
Ⅳ. 근무성적평정의 제반여건 관련 개선방안 ····· 299

1. 평정 관련 TF 또는 정기적 세미나 실시 ····· 299
가. 필요성 ····· 299
나. 개선방안 ····· 299
2. 평정매뉴얼의 작성, 배포 ····· 300
3. 면담제도의 도입 ····· 300
가. 필요성 ····· 300
나. 행정부의 성과면담제도 ····· 301
다. 개선방안 ····· 302
라. 개정안 ····· 303

제5장 결론 ····· 305

183.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02

연구책임자: 김 윤 선(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2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5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5

제2장 유전자 편집기술의 현황 ····· 7

제1절 용어의 정리 ····· 9
Ⅰ. 염색체, DNA와 RNA, 유전자, 유전체 ····· 9
1. 염색체 ····· 9
2. DNA와 RNA ····· 10
3. 유전자 ····· 11
4. 유전체 ····· 11
Ⅱ. DNA 복제, 전사, 번역 ····· 12
1. DNA 복제 ····· 12
2. DNA 전사 ····· 12
3. DNA 번역 ····· 13
Ⅲ. 생식계열세포, 생식세포, 배우자세포 및 체세포 ····· 13
1. 생식계열세포, 생식세포, 배우자세포 ····· 13
2. 체세포 ····· 15
Ⅳ. 재조합 DNA 기술 및 벡터 ····· 16

1. 재조합 DNA 기술 ····· 16
2. 벡터 ····· 17
Ⅴ. 유전자 편집 ····· 18
1. 유전자 편집의 개념 ····· 18
2. 유전자 편집도구(유전자가위) ····· 18
3. 제한효소와 메가뉴클레이즈 ····· 18
4. 징크핑거 뉴클레이즈(ZFN) ····· 19
5. 탈렌(TALEN) ····· 19
6. 크리스퍼(CRISPR) ····· 20
7. 염기편집(Base editing) ····· 22
8. 프라임편집(Prime editing) ····· 22
Ⅵ.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MRT 또는 MDT) ····· 23
제2절 유전자 편집기술의 활용 분야 ····· 24
Ⅰ. 동식물의 품종 개량 ····· 24
1. 식물의 품종 개량 ····· 24
2. 가축의 개량 ····· 25
Ⅱ. 동물 질병모델 개발 ····· 27
Ⅲ. 질병의 예방과 치료 ····· 27
1. 유전자치료의 개념 ····· 27
2. 유전자치료 전략 ····· 28
Ⅳ. 고생물 복원 ····· 36
Ⅴ. 유전자 드라이브 ····· 37
제3절 체외수정, 인간 복제, 그리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 38
Ⅰ. 체외수정(IVF)과 구세주 아기(saviour sibling) ····· 38
Ⅱ. 복제양 돌리의 탄생과 인간 복제 규제 논의 ····· 39
Ⅲ.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 ····· 40
1. 인간 줄기세포 유전자 편집 실험 ····· 40
2. 중국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 ····· 41
3. 영국 및 스웨덴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 ····· 42
4. 영국의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에 의한 세 부모 아기 ····· 43

제3장 우리나라의 유전자 편집 연구 및 규제 현황 ····· 45

제1절 우리나라 유전자 편집 연구 현황 ····· 47
Ⅰ. 학술적 연구에 편중 ····· 47
Ⅱ. 유전자 편집기술 관련 국내 연구 현황 ····· 48
1. 크리스퍼-Cpf1 유전자가위 개발 및 오작동 확률 측정법 개발 ····· 48
2. 한·미 공동연구에 의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 48
3. 생쥐의 황반 변성 유전자 편집 ····· 49
4. 선천성 망막질환 모델 생쥐에 대한 유전자치료 ····· 50

5. 태아세포주에서 고순도 염기편집기 합성 ····· 50
6. 초소형 유전자가위 및 염기편집기 개발 ····· 51
7. CAR-T 치료제 개발 ····· 51
제2절 우리나라의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 현황 ····· 52
Ⅰ.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 규제의 특징 ····· 52
1. 일반적 의미에서의 규제 ····· 52
2.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규제 ····· 52
3. 국내 바이오 분야 규제의 특징 ····· 55
4.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국내 규제 ····· 55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56
1. 법률 제정의 배경 ····· 56
2. 생명윤리법 제정 및 개정 경과 ····· 58
3. 생명윤리법의 주요 내용 ····· 65
Ⅲ.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82
1. 제정 배경 ····· 82
2. 생명윤리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 84
3.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적용 범위 ····· 84
4. 정책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회 ····· 89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90
6.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 94
7.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 및 신속처리 ····· 95
8.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선의 필요성 ····· 97
Ⅳ. 생명윤리법 관련 사건의 현황 ····· 98
1. 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98
2. 생명윤리법 관련 형사사건 ····· 100
3. 생명윤리법 관련 행정사건 ····· 104
4. 생명윤리법 관련 민사사건 ····· 105
제3절 우리나라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 107
Ⅰ. 생명윤리법상 인간 유전자 편집 관련 규정 - 유전자치료 관련 규정 ····· 107
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인간 유전자 편집 ····· 110
Ⅲ. 유전자치료의 허용 범위 ····· 110
1.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금지 ····· 110
2. 출생 이후 인간에 대한 체세포 유전자치료의 허용 ····· 113
Ⅳ.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범위 ····· 113
1.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 제한 ····· 113
2.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가능 여부 ····· 114

제4장 해외의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규제 ····· 117

제1절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정립 ····· 119

Ⅰ.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정립의 배경 ····· 119
1. 뉘른베르그 강령 ····· 119
2. 헬싱키 선언 ····· 119
3. 벨몬트 보고서 ····· 120
Ⅱ. 인간 유전자 연구 규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노력 ····· 121
1. 유럽평의회(CoE) ····· 121
2. 유네스코(UNESCO) ····· 123
3. 세계보건기구(WHO) ····· 126
Ⅲ. 인간 유전자 편집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율적 규제 노력 ····· 129
1. 제1차 인간 유전자 편집에 관한 국제회의(워싱턴 회의, 2015) ····· 129
2. 제2차 인간 유전자 편집에 관한 국제회의(홍콩 회의, 2018) ····· 130
3. 제3차 인간 유전자 편집에 관한 국제회의(런던 회의, 2023) ····· 131
제2절 각국의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 ····· 134
Ⅰ. 미국 ····· 134
1. 기관심사위원회와 생명윤리자문기구 ····· 135
2. 미국 국립보건원과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한 규제 ····· 137
3. 미국에서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 140
Ⅱ. 일본 ····· 141
1. 유전자 편집 연구의 감독기관 ····· 142
2. 법적 규제 ····· 144
3. 일본에서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 151
Ⅲ. 영국 ····· 152
1. 인간 수정 및 배아에 관한 법률(HFE Act) ····· 153
2. 연구윤리위원회(REC) ····· 156
3. 생명윤리자문위원회 ····· 157
4. 영국에서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 158
Ⅳ. 프랑스 ····· 159
1.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오비에도 협약) 체결 및 비준 ····· 159
2. 윤리위원회 ····· 159
3. 생명윤리에 관한 관련 법제 ····· 161
4. 프랑스에서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 166
5. 프랑스 규제의 특징 –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 절차 ····· 168
Ⅴ. 독일 ····· 168
1. 독일 윤리위원회 ····· 169
2.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법적 규제 ····· 171
3. 줄기세포법(StZG) ····· 173
4. 의약품법(AMG) ····· 176
5. 독일에서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 178
Ⅵ. 중국 ····· 180
1.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 180

2.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 이후 중국의 규제 강화 ····· 181
3. 중국에서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 187
제3절 시사점 ····· 188

제5장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의 개선방안 ····· 193

제1절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인식 ····· 195
Ⅰ. 체세포 유전자 편집 및 연구 ····· 195
Ⅱ. 생식계열세포 유전자 편집 ····· 199
Ⅲ. 유전자치료의 특징 및 전망 ····· 203
Ⅳ. 유전자치료의 문제점 ····· 206
1. 고가의 치료비용 ····· 206
2. 안전성 ····· 209
Ⅴ. 유전자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산업생태계 부존재 ····· 211
Ⅵ. 인간 유전자 편집기술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212
Ⅶ. 기타 ····· 215
1. 위험 감수(risk-taking)와 거버넌스 강화 ····· 215
2. 연구대상자의 DNA 염기서열 정보의 공공데이터베이스 등록 문제 ····· 217
3. 우리나라 연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 218
제2절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 관련 규제의 문제점 ····· 220
Ⅰ. 생명윤리법 규정의 불명확성 ····· 220
1. 난자, 정자, 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개념의 모호성 ····· 220
2.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규정의 모호성
-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 가능 여부 ····· 221
Ⅱ.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 ····· 222
1.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 제한의 배경 및 경과 ····· 222
2.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규제의 적정성 여부 ····· 223
Ⅲ. 규제의 공백 ····· 226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적 변이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 ···· 226
2. 난자, 정자의 전구체에 대한 유전자치료 금지 공백 ····· 227
Ⅳ. 사회적 합의의 부재 ····· 227
Ⅴ. 전문심사인력의 부족 ····· 228
제3절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 ····· 230
Ⅰ.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 ····· 230
1. 불분명한 규정의 명확화 ····· 230
2. 체세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규제의 완화 ····· 235
3. 규제 공백의 보완 ····· 236
4. 개정안 정리 ····· 238
Ⅱ. 전문가와 대중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 240

Ⅲ.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승인 등을 위한 전문심사인력 확충 ····· 242

제6장 결론 ····· 245

184.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총서 2024-03

연구책임자: 정 현 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를 비공개 발간함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682-01

대 외 비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85.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04

연구책임자: 김 종 근(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2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4
Ⅰ. 연구의 방법 ····· 4
Ⅱ. 연구의 내용 ····· 4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5

제2장 공소장일본주의 개관 ····· 7

제1절 공소장일본주의의 개념과 근거 ····· 9
Ⅰ. 서론 ····· 9
Ⅱ. 공소제기의 방식 ····· 10
1. 공소장의 제출 ····· 10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10
3. 검찰 실무에서의 공소장 작성 방법 ····· 14
Ⅲ. 형사재판의 소송구조 ····· 23
1. 의의 ····· 23
2. 당사자주의 ····· 25
3. 직권주의 ····· 26
4.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구조 ····· 27
5. 검토 ····· 29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 ····· 29
1. 의의 ····· 29

2. 예단배제의 원칙 ····· 30
3. 공판중심주의 ····· 30
4. 증거재판주의 ····· 31
5. 검토 ·····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의 연혁 ····· 33
Ⅰ.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 33
1. 공소장일본주의 관련규정 ····· 33
2.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위 ····· 33
3. 군사법원법의 개정 경위 ····· 36
4.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경위 ····· 36
Ⅱ. 소송실무에서의 운용 경과 ····· 37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과 적용 범위 ····· 39
Ⅰ.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 39
1. 서론 ····· 39
2. 공소장의 첨부서류 ····· 39
3. 첨부의 금지 ····· 41
4. 인용의 금지 ····· 42
5. 기타 사실 기재의 금지 ····· 45
6. 범죄동기의 기재 ····· 50
7. 여죄의 기재 ····· 50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 51
1.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원칙 ····· 51
2.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배제 ····· 51
제4절 대법원의 태도 ····· 54
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54
1. 사실관계 ····· 54
2. 소송의 경과 ····· 55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 59
4. 대상판결의 의의 ····· 61
Ⅱ.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 64
1. 사실관계 ····· 64
2. 소송의 경과 ····· 64
3. 대법원의 판단 ····· 68
4. 대상판결의 의의 ····· 70
Ⅲ. 대법원 판례의 태도 분석 ····· 71
1. 공소장일본주의 적용의 제한 ····· 71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효과 ····· 76

제3장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81

제1절 일본 ····· 83
Ⅰ. 서론 ····· 83
Ⅱ. 공소장일본주의 의의와 입법경위 ····· 83
1. 의의 ····· 83
2. 입법 경위 ····· 84
Ⅲ. 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구조의 전환 ····· 89
1. 공소장일본주의 ····· 89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효과 ····· 92
3. 공판구조의 변화에 따른 검찰관의 역할 ····· 92
4. 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 전 정리절차의 관계 ····· 92
5. 판례의 검토 ····· 93
6.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소장 양식 ····· 96
Ⅳ. 예단배제 원칙 관련 유형별 쟁점 ····· 97
1. 구속에 관한 처분 및 보석심리의 방법 ····· 97
2. 제1회 공판기일 전 보석심리 ····· 101
3. 공판 전 정리절차 ····· 102
4.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구속영장의 효력 문제 ····· 104
Ⅴ. 결론 ····· 105
제2절 미국 ····· 106
Ⅰ. 서론 ····· 106
Ⅱ. 연방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공소장의 과잉기재 삭제 ····· 107
1.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c)와 (d) ····· 107
2.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소장(Indictment) 양식 ····· 107
3. 의의 ····· 108
Ⅲ.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통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법리 ····· 109
1. 과잉기재의 개념 ····· 109
2. 과잉기재로서 삭제되기 위해 고려되는 사항 ····· 109
3. 피고인에게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 110
4. 혐의와 관련된 내용 ····· 111
5. 과잉기재 삭제 신청 ····· 112
6. 소결 ····· 112
Ⅳ. 결론 ····· 113
제3절 독일 ····· 114
Ⅰ. 서론 ····· 114
Ⅱ. 공소제기와 관련된 독일형사소송법(StPO) 규정의 검토 ····· 115
1. 기록완전성의 원칙 ····· 115
2. 형소법 제199조 제2항 제2문: “기소장과 함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다.” ·· 116
3. 형소법 제200조(공소장의 기재내용) ····· 117
4.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소장 양식 ····· 123
Ⅲ. 참심원을 통한 예단배제 원칙의 실현 ····· 128

1. 참심원제도의 연혁과 의의 ····· 128
2. 형사소송에서 참심원의 기능 ····· 129
3. 참심원의 서류열람권(Das Akteneinsichtsrecht der Schöffen) ····· 129
Ⅳ. 결론 ····· 131
제4절 프랑스 ····· 132
Ⅰ. 서론 ····· 132
Ⅱ. 공소제기 방법과 절차 ····· 132
1. 직접소환 ····· 133
2. 조서에 의한 소환 ····· 133
3. 즉시 출두 ····· 134
4. 예심개시청구 ····· 135
5. 검사의 종결공소장 및 예심판사의 법원이송 결정 ····· 137
6.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소장 양식 ····· 141
Ⅲ. 예단 배제를 위한 조치 ····· 146
1. 공판중심주의의 적용 ····· 146
2.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 150
Ⅳ. 결론 ····· 155

제4장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관한 유형별 사례 검토 ····· 157

제1절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의 첨부 ····· 159
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인정 사례 ····· 15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29. 선고 2017고단1688 판결
– 사기 ····· 159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160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노4336 판결 – 건조물침입 ····· 161
4.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15677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164
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12170 판결 – 사기 등 ····· 166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85, 98(병합)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169
Ⅱ.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부정 사례 ····· 17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6. 선고 2023고단411 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70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669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70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000 판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 17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노1845 판결

– 경범죄처벌법위반 ····· 173
Ⅲ. 검토 ····· 174
제2절 전과사실의 기재 ····· 175
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인정 사례 ····· 175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8888 판결 – 업무방해 ····· 175
Ⅱ.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부정 사례 ····· 180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451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180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559 판결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 181
3.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1노74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18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합4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18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8고단390 판결
– 위조사문서행사 ····· 184
Ⅲ. 검토 ····· 185
제3절 기타 사실의 기재 ····· 186
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인정 사례 ····· 18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186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 법정소동 등 ····· 187
Ⅱ.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부정 사례 ····· 189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3024 판결 – 강제추행 ····· 18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합307 판결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 190
3.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15677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19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0고합847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193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897 판결 – 사기 등 ····· 19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합143 판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195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1748 판결 – 절도 등 ····· 196
8. 전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8고단2417 판결 – 사기 등 ····· 19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802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 등 ····· 197
Ⅲ. 검토 ····· 198
제4절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의 비대화 문제 ····· 199
Ⅰ. 서론 ····· 199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199
1. 공소사실 ····· 199
2. 공소사실의 재구성 ····· 202
3. 법원의 판단 ····· 204
Ⅲ. 검토 ····· 206

제5장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정한 운용 방안 ····· 207

제1절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심리 절차에 관한 검토 ····· 209
Ⅰ. 하자 치유의 요건 ····· 209
1. 서론 ····· 209
2.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 ····· 209
3. 이의제기의 시기적 한계 ····· 210
Ⅱ.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심리 관련 법원의 조치 ····· 211
1. 법원의 석명 ····· 211
2. 구체적인 조치 방안 ····· 212
Ⅲ. 국민참여재판과 공소장일본주의 ····· 215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216
Ⅰ. 형사소송법의 공소장일본주의 규정 ····· 216
Ⅱ. 공소장의 첨부 서류 관련 규칙 개정 ····· 217
Ⅲ. 피고인의 구속 관련 절차 ····· 218
1. 현황 ····· 218
2. 개선의 필요성 ····· 219
Ⅳ. 공판준비절차 참여 법관의 예단배제 문제 ····· 220
Ⅴ. 법원의 공소사실의 삭제 근거 마련 ····· 221
Ⅵ. 검사의 모두진술 ····· 222

제6장 결론 ····· 225

186.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05

연구책임자: 한 나 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2월 29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범위 ····· 4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6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6

제2장 스토킹처벌법 개관 ····· 7

제1절 스토킹범죄 일반론 ····· 9
Ⅰ. 스토킹의 의미 및 특성 ····· 9
1. 스토킹의 의미 ····· 9
2. 스토킹의 유형 ····· 10
3. 스토킹의 특징 ····· 11
가. 사회적 정상행동과 범죄 사이에 있는 스토킹 ····· 11
나. 스토킹 행위태양의 비정형성, 중첩성, 신규성 ····· 12
다. 스토킹범죄의 비약성, 전조성 ····· 14
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 15
Ⅱ.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개정 과정 ····· 16

1.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 관련 규정 ····· 16
2. 스토킹처벌법 제정 논의 촉발 계기 및 제정 ····· 18
3.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 ····· 19
제2절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 개관 ····· 21
Ⅰ. 법률구성 및 목적, 보호법익 ····· 21
Ⅱ. 스토킹범죄 ····· 23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 24
2. 스토킹행위(법 제2조 제1호) ····· 24
3. 스토킹범죄(법 제2조 제2호) ····· 26
4. 스토킹 상대방, 상대방등, 피해자와 피해자등(법 제2조 제3호, 제4호) ····· 26
Ⅲ.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통한 범죄예방도모 ····· 28
1. 보호조치 비교 ····· 28
2. 응급조치(법 제3조)와 긴급응급조치(법 제4조) ····· 29
가. 응급조치 ····· 29
나. 긴급응급조치 내용 ····· 30
다.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 31
라.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31
마. 통지, 고지 ····· 31
바.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 32
3. 잠정조치(법 제9조) ····· 32
가. 잠정조치의 내용 ····· 32
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조치의 도입 ····· 33
다. 잠정조치의 청구 ····· 34
라. 의견청취절차 ····· 35
마. 잠정조치의 연장 및 변경 등 ····· 36
바. 통지, 고지 등 ····· 37
사. 집행지휘 ····· 38
아. 잠정조치의 효력상실 ····· 38
4. 항고 ····· 38
Ⅳ.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 ····· 39
1.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법 제17조) ····· 39
2.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법 제17조의2) ····· 39
3.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법 제17조의3) ····· 39
4.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법 제17조의4) ····· 40
Ⅴ. 벌칙 ····· 41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죄 ····· 41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41
3. 기타 스토킹처벌법위반죄 ····· 41
가. 잠정조치 불이행 ····· 41
나. 전자장치손괴, 피해자등 비밀누설 ····· 41

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이수명령 불이행 ····· 42
4.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 42
Ⅵ.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 ····· 43
1. 전자장치부착법 ····· 43
2.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분리선고 ····· 45
제3절 법원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 처리 현황 ····· 46
Ⅰ.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원 통계 ····· 46
1. 접수건수 ····· 46
2. 처리내역 ····· 48
3.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사건의 통계 ····· 50
4. 국민참여재판 ····· 53
Ⅱ. 잠정조치 등 사건의 업무현황 ····· 53
1. 사무분담 ····· 53
2. 심문 여부 ····· 55
3. 매뉴얼 ····· 57
Ⅲ.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판결 분석 결과 ····· 57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57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석 ····· 57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중대범죄 ····· 59
2. 경합범 관련 ····· 60
3. 잠정조치 불이행죄 관련 ····· 64
4. 기타 처분 관련 ····· 65
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과 스토킹범죄 ····· 65
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스토킹범죄 ····· 67
5. 양형 관련 분석 ····· 69
가. 스토킹처벌법위반 단일범죄 양형 ····· 69
나. 경합 사건의 양형 ····· 76
다. 주된 양형 이유 ····· 77
라. 항소심 관련 양형 ····· 83

제3장 각국의 스토킹범죄 처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87

제1절 미국 ····· 89
Ⅰ. 입법연혁 ····· 89
Ⅱ. 법률 내용 ····· 90
1. 연방스토킹방지법 ····· 90
가. § 2261A(1) ····· 91
나. § 2261A(2) ····· 93
다. 처벌규정 ····· 93
2. 모범스토킹방지법 ····· 94

가. 주법을 위한 모범스토킹방지법 규정 ····· 94
나. 주법이 포함하여야 할 스토킹행위 유형의 예시 ····· 96
다. 규정에 대한 설명 ····· 97
3.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6.9조 ····· 99
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 99
나. 처벌 규정 ····· 100
다. 유죄판결 시 부수처분 ····· 101
라. 접근금지명령 ····· 102
Ⅲ. 주요 쟁점과 판례 ····· 103
1. 헌법적 문제 ····· 103
가. 2014년 United States v. Osinger 사건 ····· 103
나. 2018년 United States v. Ackell 사건 ····· 104
다. 2021년 United States v. Fleury 사건 및 진정한 위협 ····· 105
라. 2023년 Counterman v. Colorado 사건 ····· 106
2. '일련의 행위' 관련 ····· 107
가. 행위 유형을 열거하지 않은 규정 ····· 107
나. 2개 이상의 행위 ····· 107
다. 합리적인 사람 기준 ····· 108
Ⅳ. 시사점 ····· 109
제2절 영국 ····· 110
Ⅰ. 입법연혁 ····· 110
Ⅱ. 스토킹범죄의 처벌 ····· 111
1. 처벌 규정 ····· 111
가. 스토킹범죄(제2A조)와 괴롭힘죄(제2조) ····· 113
나. 폭력의 두려움 또는 심각한 불안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스토킹범죄(제4A조) 및 타인에게 폭력의 두려움을 야기하는
괴롭힘죄(제4조) ····· 114
다. 인종, 종교적으로 가중된 괴롭힘죄, 스토킹범죄 ····· 115
2. 구성요건적 개념 ····· 115
가. 괴롭힘 ····· 115
나. 일련의 행위 ····· 116
다. 스토킹 ····· 117
라. 상당한 악영향 ····· 120
3. 피고인의 항쟁 사유 ····· 122
Ⅲ.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금지명령 등 ····· 122
1. 스토킹보호명령 ····· 122
가. 목적 ····· 122
나. 종류 및 요건 ····· 123
다. 내용 및 기간 ····· 124
라. 형사처벌 ····· 126

마. 효과에 관한 평가 ····· 127
2. 형사판결 후 금지명령 ····· 128
가. 목적, 종류 및 요건 ····· 128
나. 관련 사건유형과 판단 시 고려사항 ····· 130
다. 위반행위 ····· 131
Ⅳ. 주요 판례 ····· 131
1.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관련 ····· 131
가. 규제기관에 대한 고발행위(Sana Musharraf v R 사건) ····· 131
나. 폭력의 두려움, 확대되는 일련의 행위(R. v Qosja 사건) ····· 133
다.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R v Stott 사건) ····· 135
2. 금지명령 관련 ····· 136
가. 무죄판결 시 금지명령의 요건(Smith v R 사건) ····· 136
나. 무죄판결 시 금지명령 예시(R. v Oshosanya 사건) ····· 136
다. 금지명령의 변경(연장)[R. v Jackson (John) 사건] ····· 137
3. 양형 관련 ····· 138
가. 범행이 장기간인지 여부[R. v Doherty (Denise) 사건] ····· 138
나. 양형 가중사유가 크다고 본 사례(R v Nathan McMahon 사건) ····· 139
Ⅴ. 시사점 ····· 140
제3절 독일 ····· 141
Ⅰ. 입법연혁과 보호법익 ····· 141
Ⅱ. 독일 형법 제238조의 주요 내용 ····· 143
1. 구성요건해당성 ····· 145
가. 각 호의 내용 ····· 145
나. ‘반복적으로’ ····· 149
다. ‘권한 없이’ ····· 149
라. ‘다른 사람의 생활방식을 경미하지 않게 침해하기에 적합할 것’ ····· 150
마. 주관적 구성요건 ····· 152
2. 벌칙 ····· 152
가. 기본적 구성요건 ····· 152
나. 가중적 구성요건 ····· 153
3. 죄수, 경합관계 ····· 156
Ⅲ. 법원의 금지명령 ····· 158
1. 스토킹방지사법 ····· 158
가. 목적, 금지명령 발부 요건 ····· 159
나. 금지명령의 내용 및 제한 ····· 160
다. 금지명령의 기한(제1항 제2문) ····· 161
라. 제2항 ····· 162
마. 벌칙 규정 ····· 162
바. 적용례 ····· 163
2. 집행유예 시의 준수사항 부과 ····· 164

Ⅳ. 주요 판례 ····· 165
1. 스토킹범죄와 협박, 모욕죄 ····· 165
가. 사실관계 ····· 165
나. 판단 ····· 165
2. 스토킹범죄와 금지명령위반, 주거침입죄 ····· 166
가. 사실관계 ····· 166
나. 판단 ····· 167
3. 스토킹행위의 반복성 관련 ····· 168
가. 사실관계 ····· 168
나.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 ····· 168
다. 연방대법원의 판단 ····· 169
4. 지속·반복성이 부정된 사안 ····· 169
가. 사실관계 ····· 169
나. 판단 ····· 170
5. 스토킹치사죄를 인정한 사안 ····· 170
가. 사실관계 ····· 170
나. 판단 ····· 171
Ⅴ. 시사점 ····· 172
제4절 일본 ····· 173
Ⅰ. 입법연혁 ····· 173
Ⅱ. 스토커규제법의 주요 내용 ····· 176
1. 목적 ····· 176
2. 규제대상 ····· 177
가. 따라다니기 등, 위치정보 무단 취득 등 ····· 179
나. 스토커행위 ····· 186
3. 경고와 금지명령 ····· 189
가. 경고 ····· 190
나. 금지명령 ····· 191
4. 벌칙 ····· 193
가. 스토커행위죄 ····· 193
나. 금지명령 등 위반죄 ····· 193
5. 죄수 ····· 194
가. 스토커규제법위반죄의 죄수 ····· 194
나. 타죄와의 관계 ····· 195
6. 관련 통계 ····· 196
Ⅲ. 주요 판례 ····· 197
1. 최고재판소 판례 ····· 197
가. 스토커규제법 위헌 여부 ····· 197
나. ‘반복하여’의 의미 ····· 198
다. 지켜보기 해당 여부(GPS 사건) ····· 199

2. 구성요건 관련 하급심 판례 ····· 200
가. 연애감정 등 충족 목적의 의미 ····· 200
나. 잠복의 의미(제2조 제1항 제1호) ····· 201
다. '지켜보기(見張)', '침입'의 의미 ····· 202
라. '통상 소재하는 장소', '침입'의 의미 ····· 204
마.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 '반복해서' 해당 여부 ····· 205
바. 반복성 인정 사례 ····· 207
3. 죄수 관련 판례 ····· 208
가. 별개의 스토킹행위를 인정한 사례 ····· 208
나. 스토커규제법위반죄와 타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사례 ····· 209
다. 스토커규제법위반죄와 타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사례 ····· 210
4. 기타 판례 ····· 211
Ⅳ. 시사점 ····· 211

제4장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사건 관련 쟁점 ····· 213

제1절 스토킹범죄 관련 쟁점 ····· 215
Ⅰ. 해석 및 판단 기준 ····· 215
1. 피해자 보호와 과잉형사화 우려 ····· 215
2. 판단기준 ····· 216
Ⅱ. 상대방등 ····· 218
1. 특정된 상대방 ····· 218
2.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 219
Ⅲ. 규제대상 행위 유형 ····· 220
1. 제2조 제1호 (가)목 ····· 220
가. 의미 ····· 220
나. 사례 검토 ····· 220
2. 제2조 제1호 (나)목 ····· 221
가. 의미 ····· 222
나. 사례 검토 ····· 223
다. (가), (나)목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25
3. 제2조 제1호 (다)목 ····· 227
가. 의미 및 법리 ····· 227
나. 사례 검토 ····· 229
4. 제2조 제1호 (라), (마)목 ····· 232
가. (라)목 ····· 232
나. (마)목 ····· 234
5. 제2조 제1호 (바), (사)목 ····· 235
6. 다른 범행에 수반된 스토킹행위 ····· 236
Ⅳ.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237

1. 내용 및 판단기준 ····· 237
2. 사례 검토 ····· 239
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한 사례 ····· 239
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40
Ⅴ.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243
1. 내용 및 판단기준 ····· 243
2. 사례 검토 ····· 245
가. 주장 내용 ····· 245
나. 연인관계 등과 관련된 주장 ····· 246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문제가 있는 경우 ····· 249
라. 층간소음 관련 주장 ····· 252
마. 기타 주장 ····· 255
Ⅵ.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257
1. 내용 및 판단기준 ····· 258
가. 스토킹범죄가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여부 ····· 258
나. 의미 및 판단기준 ····· 259
다. 추가 논점 ····· 261
2. 사례 검토 ····· 263
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인정 사례 ····· 263
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 부정 사례 ····· 270
Ⅶ. 지속성 또는 반복성 ····· 274
1. 내용 및 판단기준 ····· 274
2. 사례 검토 ····· 277
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 인정 사례 ····· 277
나. 지속성 또는 반복성 부정 사례 ····· 283
Ⅷ. 고의 ····· 288
1. 내용 및 판단기준 ····· 288
2. 사례 검토 ····· 290
Ⅸ. 법 시행 전후의 행위 ····· 291
1. 문제점 ····· 291
2. 법 시행 전의 행위 처벌 가부 ····· 291
3. 법 시행 전의 행위를 '지속성 또는 반복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 292
Ⅹ. 기타 ····· 294
1. 특수스토킹범죄 ····· 294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 ····· 294
나. 축소사실 인정 ····· 295
2. 법률의 부지 ····· 295
3. 처벌불원의사 ····· 296
가. 경과규정 ····· 296
나. 철회 ····· 296

다.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범위 ····· 296
라. 조건부 의사표시 ····· 297
4. 스토킹범죄의 공범 ····· 297

제2절 잠정조치 불이행죄 등 관련 쟁점 ····· 298
Ⅰ. 유효한 잠정조치의 존재 ····· 299
Ⅱ. 잠정조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지 ····· 299
Ⅲ. 위반행위 ····· 301
1. 장소적 접근 금지의 불이행 ····· 301
2. 전자적 접근 금지의 불이행 ····· 302
가. 부재중 전화 ····· 302
나. 멀티프로필 상태 메시지 작성 ····· 303
Ⅳ. 고의 ····· 303
Ⅴ. 기타 쟁점 ····· 304
1. 피해자의 승낙 또는 양해 ····· 304
2. 정당행위 인정 여부 ····· 305
3.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공범 ····· 305
제3절 죄수 ····· 307
Ⅰ. 스토킹처벌법위반죄 ····· 307
1. 판단기준 ····· 307
2. 스토킹범죄 ····· 307
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307
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행위 태양이 동종인 경우 ····· 308
다. 시간적 단절이 있는 경우 ····· 308
라.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 ····· 310
마. 기타 ····· 311
바. 공소장변경 불요 ····· 312
3. 특수스토킹범죄 ····· 312
4. 잠정조치 불이행죄 ····· 313
5.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관계 ····· 314
Ⅱ. 스토킹범죄와 형법범죄 등과의 관계 ····· 315
1.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사례 ····· 315
2.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사례 ····· 316
3. 연결효과이론(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 ····· 316
4. 스토킹범죄와 법조경합이 문제되는 경우 ····· 319
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 320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321
다. 협박죄 ····· 322
라. 살인예비죄 ····· 322
제4절 부수처분 등 ····· 323

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323
1. 요건 ····· 323
2.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 324
3.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 324
가. 임의적 병과 ····· 324
나. 면제 사례 ····· 324
4. 잠정조치 불이행죄 등의 경우 ····· 325
Ⅱ. 기타 ····· 326
1. 배상명령 ····· 326
2. 몰수 ····· 327
3.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 ····· 327

제5장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사건 관련 쟁점 ····· 329

제1절 결정문 작성 관련 쟁점 ····· 331
Ⅰ. 결정문 주문 ····· 331
1. 인용 주문 기재례 ····· 331
가. 1심 인용 주문 기재례 ····· 331
나. 항고심 인용 주문 기재례 ····· 333
2. 주문 관련 쟁점 ····· 334
가. 특정과 비실명조치의 문제 ····· 334
나. 보호대상의 범위 ····· 335
다. 장소적 접근 금지 범위 ····· 336
라. 장소적 접근 금지 반경 ····· 337
마.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금지 ····· 337
바. 우편에 의한 접근의 경우 ····· 338
사. 부착명령 관련 ····· 339
아. 유치장 특정 ····· 339
3. 단서 조항 기재례 ····· 340
Ⅱ. 결정문 이유 ····· 342
1. 간단한 이유 기재례 ····· 342
2. 주요 고려요소 ····· 343
3. 잠정조치 결정 시 안내사항 ····· 344

제2절 절차적 요건에 관한 쟁점 ····· 346
Ⅰ. 관할 ····· 346
1. 잠정조치 변경 등 사건의 관할: 최초 잠정조치를 한 법원 ····· 346
2. 군사법원의 관할 유무: 적극 ····· 347
3.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또는 경정결정 가부: 소극 ····· 348
Ⅱ. 청구권자, 항고권자와 항고기간 ····· 349

1. 청구권자 및 피해자의 신청권 인정 여부 ····· 349
2. 항고권자 ····· 350
3. 항고기간 ····· 350
Ⅲ. 효력상실 ····· 351
Ⅳ. 기간만료와 연장청구 관련 ····· 351
1. 잠정조치기간 만료 후 연장청구 가부: 소극 ····· 351
2. 잠정조치기간 만료 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 가부: 적극 ···· 352
3. 잠정조치 연장청구를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 353
Ⅴ. 기타 쟁점 ····· 353
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 제기 기간 ····· 353
2. 고지 절차 등 관련 ····· 354
3. 효력 기간 ····· 354
4. 선행 잠정조치 위반 여부 ····· 354
5. 유치 결정에 대한 보석청구 ····· 355
제3절 내용에 관한 쟁점 ····· 355
Ⅰ.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 ····· 356
1. 보호대상 ····· 356
2.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 357
3.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358
Ⅱ.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필요성 ····· 359
1.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 359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동시 청구의 경우 ····· 361
Ⅲ. 항고사유인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 ····· 363
1. 현저히 부당하다고 본 사례 ····· 363
2.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 363
Ⅳ. 기타 ····· 365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365
2. 증명의 정도: 소명 ····· 365
제4절 심문과 유치명령 ····· 366
Ⅰ. 심문 관련 주의사항 ····· 366
1. 심문기일 지정 ····· 366
2. 심문기일 통지 절차 ····· 368
3. 유의사항 ····· 369
Ⅱ. 유치명령 결정 시 고려사항 ····· 370
1. 항고심에서 유치명령 부분만 파기한 사안 ····· 370
2. 유치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 ····· 372

제6장 개선방안 ····· 375

제1절 스토킹범죄 관련 개선방안 ····· 377
Ⅰ. 스토킹행위 유형 관련 ····· 377
1. 보충적 구성요건 규정 여부 ····· 377
2. 추가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행위 유형 ····· 378
가. 제3자에 의한 스토킹 ····· 378
나. 서성거리는 행위 ····· 380
Ⅱ. 스토킹 보호대상 범위 확대 ····· 382
Ⅲ. 가중처벌 규정 ····· 385
1. 관련 논의 ····· 385
2. 외국 입법례 ····· 386
3. 검토 ····· 387
Ⅳ. 부수처분 관련 ····· 389
1.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필요적 병과 ····· 389
2. 유죄판결 선고 시의 접근금지명령 등 ····· 391
3. 치료감호법 관련 ····· 392
제2절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관련 개선방안 ····· 393
Ⅰ. 실효성 확보 방안 ····· 393
1.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조치의 활용 ····· 393
2. 잠정조치 기간 연장 ····· 396
3. 처벌규정의 강화 ····· 397
Ⅱ. 내용 관련 개선방안 ····· 398
1. 보호대상 확대 ····· 398
2. 잠정조치의 내용 확대 ····· 401
가. 우편에 의한 접근 금지 추가 ····· 401
나. 상담위탁 조치 ····· 403
다. 온라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잠정조치 추가 ····· 405
Ⅲ. 절차 관련 개선방안 ····· 408
1. 피해자 보호 관련 ····· 408
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론 ····· 408
나. 피해자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권 ····· 409
2. 스토킹행위자 기본권 관련 ····· 411
가. 유치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 411
나. 의견청취를 위한 구인 필요성 ····· 411
3. 업무 효율성 관련 등 ····· 412
가. 원심법원의 결정 ····· 412
나. 집행권자 ····· 413
다. 잠정조치 등 사건의 담당재판부 통일 ····· 414
라. 시스템, 매뉴얼 마련 필요성 ····· 415
마. 스토킹범죄 통계 관련 ····· 415
제3절 개정안 종합 ····· 417

제7장 결론 ····· 425

187.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연구총서 2024-06

연구책임자: 이 종 구(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3년 12월 30일 발행

제1장 들어가며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범위 ····· 4
Ⅱ. 연구방법 ····· 5
Ⅲ.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5

제2장 변화하는 사법부 환경과 법원직원 직무역량 강화 필요성 ····· 7

제1절 들어가며 ····· 9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역량 강화 필요성 ····· 10
Ⅰ. 외부 환경 변화와 필요성 ····· 10
Ⅱ. 내부 환경 변화와 필요성 ····· 12
1. 법원의 인적구성 다양화 ····· 12
가. 공직분류체계의 조화로운 운영 ····· 12
나. 다양한 법관, 전문가 등과 진정한 원팀(One-team) 구성 ····· 13
다. 실천적 대안으로서 역할 수행과 전문성 다양화를 위한 필요성 ····· 16
2. 1심 단독심화 확대 현상 ····· 18
3. 사물관할 변경과 1심 단독사건 증가 ····· 19
가. 1심 단독판사의 사건부담 증가 ····· 20
나. 1심 단독판사에게 재판지원인력 필요 ····· 21

4. 법원조직의 유형과 작동원리 ····· 21
가. 법원조직의 유형(전문 관료제 조직) ····· 22
나. 법원조직의 작동원리 ····· 22
5. 전자화에 따른 업무대체 현상 ····· 24
가. 전자소송의 정착 ····· 24
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 24
다. 업무대체 현황 ····· 25
6. 심사사무의 확대 현상 ····· 29
가. 단순·반복·기계 사무의 디지털 전환 ····· 29
나. 심사 사무의 확대 ····· 30
Ⅲ. 소결 ····· 30

제3장 법원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할 문제점 ····· 33

제1절 개요 ····· 35
제2절 부족한 교육훈련 인프라 ····· 36
Ⅰ. 인적 인프라 부족 ····· 36
1. 법관의 직접훈련 부족 ····· 36
2. 교수지원인력 부족 ····· 37
Ⅱ. 물적 인프라 부족 ····· 38
1. 교수지원 조직의 부족 ····· 38
2. 기숙사 등의 부족과 거점교육기관의 부재 ····· 39
제3절 교육훈련동기를 저해하는 요소들 ····· 40
Ⅰ. 들어가며 ····· 40
Ⅱ. 하위직 위주의 직급 분포 ····· 41
1. 직급분포 현황 ····· 41
2. 현행 직급분포가 가지는 문제점 ····· 45
가. 법원직원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함 ····· 46
나. 전산화에 따른 업무대체 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 47
다. 법원조직의 조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48
라. 미래 법원조직 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48
3. 현행 직급분포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 51
가. 교육훈련에 자발적 참여를 저해 ····· 51
나. 교육훈련의 핵심내용 결정에 부정적 영향 ····· 52
Ⅲ. 근속승진의 확대 현상 ····· 53
1. 법원직원 근속승진 현황 ····· 53
2. 근속승진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 54
가. 승진의 본래적 기능 훼손 ····· 54
나. 직무역량 강화 동기 저해 ····· 55
Ⅳ. 재판 및 비송 분야 차 상위 경로 부재 ····· 56

1. 차 상위 경로가 없는 재판 및 비송분야 ····· 56
2. 전문분야별 직무역량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56
Ⅴ. 소결 ····· 57
제4절 교육훈련 운영상의 문제들 ····· 59
Ⅰ. 들어가며 ····· 59
Ⅱ. 장기교육훈련 미 운영 ····· 59
1. 장기교육훈련 미 운영 실태 ····· 59
2. 장기교육훈련을 운영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업무공백) ····· 62
3. 재직 중 학력증가 저조 현상 야기 ····· 62
Ⅲ. 직무분포와 교육인원 분포의 불일치 ····· 66
1. 불일치 현황 ····· 66
2. 직무분포를 고려한 교육설계 필요 ····· 69
Ⅳ. 교육훈련 성과를 보상할 수단의 부재 ····· 70
1. 내부 자격증 제도의 부재 ····· 70
2. 외부 자격증 제도의 부재 ····· 71
Ⅴ. 소결 ····· 71
제5절 직위별 역할과 연계 교육훈련의 부재 ····· 73
Ⅰ. 들어가며 ····· 73
Ⅱ. 민사참여사무관등 ····· 74
1. 요구되는 역할 ····· 74
가. 舊 사건관리부 제도 ····· 75
나. 집중심리재판부 제도 ····· 77
다. 민사참여사무관에게 요구되는 역할 ····· 80
2. 연계 교육훈련의 문제점 ····· 81
Ⅲ. 형사참여사무관등 ····· 84
1. 요구되는 역할 ····· 84
2. 연계 교육훈련의 문제점 ····· 86
가. 형사참여사무관 ····· 86
나. 양형조사관 ····· 88
Ⅳ. 등기관 ····· 90
1. 요구되는 역할 ····· 90
2. 연계 교육훈련의 문제점 ····· 91
Ⅴ. 사법보좌관 ····· 91
1. 요구되는 역할 ····· 91
2. 연계 교육훈련의 문제점 ····· 93
Ⅵ. 소결 ····· 94
제4장 외국과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역량 강화 현황 등 ····· 97
제1절 들어가며 ····· 99

제2절 외국 법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현황 ····· 99
Ⅰ. 미국 ····· 99
1. 장기교육훈련(단계별 인증 과정) 현황 ····· 99
가. 캘리포니아주, 3C-P-O
(Court clerk career progression opportunity program) ····· 100
나. 텍사스주, 서기 인증과정(clerk certification) ····· 102
2. 시사점 ····· 104
Ⅱ. 프랑스 ····· 105
1. 장기교육훈련 현황 ····· 105
2. 시사점 ····· 107
Ⅲ. 독일 ····· 108
1. 장기교육훈련 현황 ····· 108
2. 시사점 ····· 112
Ⅳ. 일본 ····· 112
1. 장기교육훈련 현황 ····· 112
2. 시사점 ····· 115
Ⅴ. 소결 ····· 115
제3절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현황 ····· 117
Ⅰ. 장기교육훈련 등 현황 ····· 117
1. 국가공무원 ····· 117
2. 지방공무원 ····· 119
Ⅱ. 교육훈련과 업무공백 해소 현황 ····· 122
1. 국가공무원 ····· 122
2. 지방공무원 ····· 124
Ⅲ. 소결 ····· 125

제5장 법원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127

제1절 개요 ····· 129
제2절 단기적 개선방안 ····· 130
Ⅰ. 들어가며 ····· 130
Ⅱ. 인재상의 지속적 발굴 ····· 130
1. 의의 ····· 130
2. 인식조사 ····· 131
3. 1차 조사 결과 ····· 131
4. 2차 조사 결과 ····· 134
가. 설문조사 개요 ····· 134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6

5. 소결 ····· 143
가. 인재상이 가져야 할 직무역량 ····· 143
나. 인재상의 성장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 ····· 144
다. 인재상이 우선 강화해야 할 핵심 사무 ····· 144
라. 법원직원 분야별 인재상 ····· 144
Ⅲ. 완화된 경쟁시험의 도입 ····· 145
1. 경쟁시험 도입 필요성 ····· 145
2. 역량인증제의 도입 ····· 146
가. 직무교육에 도입 ····· 146
나. 5급 승진임용후보자 선발에 도입(5급 사전역량인증제) ····· 148
다. 7급 승진임용후보자 선발에 도입(7급 사전역량인증제) ····· 153
라. 위 세 가지 역량인증제에 대한 인식 ····· 159
Ⅳ. 인사운영 개선 방안 ····· 161
1.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방안 ····· 161
가. 순환 후 최적기간 재직을 통한 전문화 필요성 ····· 161
나. 순환보직제도하에서 최적재직기간의 설정 ····· 163
2. 전문참여관 도입 방안 ····· 165
가. 의의 ····· 165
나. 재판사무 분야 전문직위제 운영 ····· 166
다. 전문참여관 도입에 대한 설문결과 ····· 173
라. 소결 ····· 174
3. 각급 법원의 법원조사관을 전문분야별로 확대 방안 ····· 175
가. 각급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관한 규정 ····· 175
나. 법원조사관을 전문분야별로 확대하는 방안 ····· 176
다. 전문분야별 법원조사관의 선발 ····· 178
라. 규칙 개정(안) ····· 178
4. 분야별 4급 인원 적정화 방안 ····· 179
5. 평정이원화 방안 ····· 180
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180
나. 현행 제도 하에서 이원화하는 방안 ····· 182
Ⅴ. 기타 개선방안 ····· 185
1. 법원직원 직무 파견 확대 ····· 185
가. 파견현황 ····· 185
나. 파견 분야와 인원 확대 ····· 186
2. 연구모임의 활성화 ····· 188
가. 현황과 문제점 ····· 188
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189
다. 학계 등 외부연계 활성화 ····· 189
3. 직무기술서를 통한 현장 지도 ····· 190
가. 의의 ····· 190

나. 직무기술서의 필요성 ····· 191
다. 직무기술서 마련 방안 ····· 194
라. '하나의 직무기술서' 제안 ····· 201
마. '하나의 직무기술서'를 통한 현장학습 ····· 202
4. 소결 ····· 203
제3절 중·장기적 개선방안 ····· 205
Ⅰ. 장기적인 교육훈련 과정의 신설 ····· 205
1. 개요 ····· 205
2. 장기교육훈련의 운영 등 ····· 205
가. 필요성 ····· 205
나. 목적 ····· 206
다. 대상 ····· 207
라. 인원 ····· 208
마. 주기(6년→ 5년→ 4년→ ○년) ····· 209
바. 설문결과 ····· 209
사. 기타의견 ····· 212
3. 업무공백의 해소 방안 ····· 212
가. 별도정원 확보 ····· 213
나. 법원 내에서 가는 교육 훈련을 '파견'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지 ···· 222
다. 6개월간의 업무공백기간 부여 ····· 224
4. 교과목 분포와 연계 자격증 부여 ····· 226
가. 교과목 분포 ····· 226
나. 연계자격증 부여 ····· 228
Ⅱ. 융합교육과 교육인프라 확충 ····· 230
1. 서론 ····· 230
2. 융합교육 ····· 231
가. 필요성 ····· 231
나. 개선방안 ····· 232
3. 인적 인프라 확충 ····· 233
가. 법관 등 직접 훈련 확대 ····· 233
나. 다양한 교수진의 확보 ····· 233
4. 물적 인프라 확충 ····· 234
가. 기관 융합을 통한 개선방안 ····· 234
나. 거점교육기관의 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 ····· 234
Ⅲ. 전문직공무원제도 신설과 운영 방안 ····· 235
1. 서론 ····· 235
2. 전문직공무원제도 신설 방안 ····· 235
가. 설문결과 ····· 235
나. 전문직 도입과 전문직 내 전문분야 설정 ····· 237
다.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 238

라. 전문직공무원 제도설계 방안 ····· 241
3. 전문분야별, 전문직공무원의 운영방안 ····· 246
가. 의의 ····· 246
나. 집행전문관(5급)을 운영하는 방안 ····· 247
다. 등기전문관(5급)을 운영하는 방안 ····· 248
라. 양형조사관 등을 전문직으로 운영하는 방안 ····· 249
마. 재판분야에 재판전문관(5급)을 운영하는 방안 ····· 249
바. 전문직공무원 정원 확보 필요성 ····· 253
4. 전문분야별 차 상위 경로 설정 방안 ····· 257
가. 서론 ····· 257
나. 필요성 ····· 258
다. 일본의 예 ····· 259
라. 분야별 차 상위 경로에 대한 설문결과 ····· 265
마. 전문분야별 차 상위 경로의 역할 ····· 269
Ⅳ. 법령 등 검토 ····· 271
1. 필요성 ····· 271
2. 법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신설(안) ····· 271

제6장 결론 ····· 275

188.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06

연구책임자: 권 경 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 현 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4월 2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범위 ····· 4
제2절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6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6

제2장 형사재심제도와 현황 ····· 9

제1절 형사재심제도 개관 ····· 11
Ⅰ. 형사재심제도의 의의, 근거 및 한계 ····· 11
Ⅱ. 형사재심제도의 연혁 ····· 13
Ⅲ. 형사재심의 대상 ····· 13
제2절 형사재심사유 ····· 14
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이유 ····· 14
1.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이유 ····· 14
2.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 16
3.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이유 ····· 16

가. 증거의 위조·변조의 증명(제1호) ····· 17
나. 증언·감정 등의 허위 증명(제2호) ····· 17
다. 무고죄의 성립(제3호) ····· 19
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의 변경(제4호) ····· 19
마. 침해한 권리의 무효 확정(제6호) ····· 19
바. 관여법관 등의 직무위반범죄(제7호) ····· 20
4.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20
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이유 ····· 22
가. 증거의 신규성 ····· 23
나. 증거의 명백성 ····· 26
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 29
Ⅲ.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 30
Ⅳ. 과거사 사건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 31
제3절 재심절차 ····· 32
Ⅰ. 재심개시절차 ····· 33
1. 재심의 청구 ····· 33
2. 재심청구의 효과 ····· 33
3.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 ····· 34
가. 사실조사 ····· 34
나.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진술 ····· 35
다. 변호인의 선임 ····· 36
4.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과 임의적 형집행정지 ····· 36
5. 재심개시의 효력 ····· 37
6.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38
Ⅱ. 재심심판절차 ····· 39
제4절 형사재심사건의 분류와 통계 ····· 41
Ⅰ. 형사재심사건의 분류 ····· 41
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 ····· 41
2. 과거사 재심사건 ····· 42
3. 일반 재심사건 ····· 42
Ⅱ. 분석대상 통계자료와 한계 ····· 43
Ⅲ. 전체 및 유형별 통계 ····· 44
1. 전체 사건 통계 ····· 44
가. 제1심 ····· 44
나. 항소심 ····· 47
2. 유형별 통계 ····· 49
가. 유형별 분류 기준 ····· 49
나. 제1심 사건 ····· 50
다. 항소심 사건 ····· 58

제3장 외국의 형사재심제도와 시사점 ····· 67

제1절 일본 ····· 68
Ⅰ. 형사재심제도의 의의와 특징 ····· 68
1. 의의 ····· 68
2. 특징 ····· 70
Ⅱ. 재심청구절차 ····· 70
1. 재심의 청구 ····· 71
2. 재심청구사유 ····· 72
가. 유죄선고를 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 72
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73
다.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등에 대한 재심사유 ····· 75
3. 사실조사 ····· 77
4.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관 항고의 문제 ····· 78
Ⅲ. 재심심판절차 ····· 80
Ⅳ. 형사재심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 81
1. 기존 재심규정의 한계 ····· 81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82
3. 일반 형사절차의 개정에 따른 영향 ····· 83
4. 형사소송법 개정시 검토할 사항 ····· 83
Ⅴ. 형사재심제도의 운용현황 ····· 84
1. 재심청구절차 ····· 84
가. 처리상황 ····· 84
나. 재심청구사유 ····· 85
다. 심리기간 ····· 86
라. 종국결과 ····· 87
2. 재심심판사건 ····· 89
가. 처리상황 ····· 89
나. 심리기간, 평균개정횟수 및 평균개정간격 ····· 89

제2절 프랑스 ····· 90
Ⅰ. 형사재심제도의 역사 ····· 90
Ⅱ. 재심절차 ····· 91
1. 요건 ····· 91
2. 재심청구권자 ····· 92
3. 재심·재심사법원 ····· 92
가. 구성 ····· 92
나. 예심위원회의 검토 ····· 93
다. 재심·재심사 판결법원의 검토 ····· 94
라. 재심·재심사 판결법원의 판결 ····· 94

4. 유죄판결의 집행정지 ····· 95
5. 재심대상판결의 효력 상실 및 재심판결 확정 효과 ····· 96
Ⅲ. 2014년 6월 20일 법률에 의한 개정 재심제도 소개 ····· 97
1. 개정 배경 ····· 97
2. 개정 전후 재심 규정의 차이점 ····· 98
3. 새로운 사실의 해석 ····· 110
가. 새로운 사실의 범주 ····· 110
나. 새로운 사실의 성질 ····· 111
Ⅳ. 통계 ····· 112
제3절 독일 ····· 114
Ⅰ. 재심제도 개관 ····· 114
1. 재심절차의 단계 ····· 115
2. 재심명령의 효과 ····· 116
3. 재심의 대상 ····· 116
4. 상대적 재심사유와 절대적 재심사유 ····· 117
Ⅱ. 이익재심사유 ····· 117
1. 진정하지 않거나 변조된 문서 ····· 118
2. 처벌할 수 있는 허위 진술 또는 감정 ····· 118
3. 처벌할 수 있는 직무의무위반 ····· 119
4. 민사법원 판결의 취소 ····· 120
5.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방법 ····· 121
가. 사실과 증거방법 ····· 121
나.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방법의 신규성 ····· 122
다. 사실과 증거방법의 적합성 ····· 124
Ⅲ. 최근의 이익재심 사례 ····· 126
1. 사건의 경위 ····· 126
2. 모살을 이유로 하는 형사절차 ····· 126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의문 ····· 128
4. 재심절차 ····· 129
5. 욕조 사건의 사건진행 경과 ····· 131
Ⅳ. 재심청구건수 통계 ····· 133
제4절 시사점 ····· 134
Ⅰ. 일본 ····· 134
Ⅱ. 프랑스 ····· 136
Ⅲ. 독일 ····· 137

제4장 형사재심사건의 유형별 구체적 검토 ····· 139

제1절 일반 재심사건 ····· 141
Ⅰ. 일반 재심사건의 흐름 ····· 141

Ⅱ. 무죄판결이 확정된 재심사건의 분석 ····· 141
1. 일반 재심사건의 특성 ····· 141
2. 춘천 강간살인 사건(1972년) ····· 141
가. 재심대상사건 ····· 141
나. 재심개시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 142
다. 재심심판절차 ····· 143
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143
마. 검토 ····· 143
3.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1989년) ····· 144
가. 재심대상판결 ····· 144
나. 재심개시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 146
다. 재심심판절차 ····· 146
라. 검토 ····· 147
4. 낙동강변 살인 사건(1990년) ····· 148
가. 재심대상판결 ····· 148
나. 재심개시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1호, 제2호의 재심사유 ····· 149
다. 재심심판절차 ····· 149
라. 관련 위증·위증교사 사건의 재심판결 ····· 150
마. 검토 ····· 150
5.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151
가. 재심대상판결 ····· 151
나. 재심개시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 151
다. 재심심판절차 ····· 152
라. 검토 ····· 153
6.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2000년) ····· 154
가. 재심대상판결 ····· 154
나. 재심개시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 155
다. 재심심판절차 ····· 156
라. 진범에 대한 유죄판결 ····· 157
마. 검토 ····· 157
7.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2007년) ····· 158
가. 재심대상판결 ····· 158
나. 청소년 4명에 대한 무죄판결 ····· 158
다.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위증죄 사건 ····· 158
라. 정씨에 대한 재심판결 ····· 159
마. 강씨에 대한 재심판결 ····· 160
바. 검토 ····· 161
Ⅲ. 진행 중인 재심사건의 분석 ····· 161
1. 사건 선정의 기준 ····· 161

2. 진도 저수지 추락 사건 ····· 162
가. 재심대상판결 ····· 162
나.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 162
다. 검토 ····· 164
3.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165
가. 재심대상판결 ····· 165
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계속 중 ····· 165
다. 검토 ····· 166
Ⅳ. 일반 재심사건의 특징 ····· 167
제2절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 ····· 169
Ⅰ. 근거규정 ····· 169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의한 재심 ····· 169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신설 ····· 169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규정한 재심이유와의 차이 ····· 171
2.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7항에 의한 재심 ····· 171
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 ····· 172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 172
2.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과 소급효 제한의 기준 ····· 172
3.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 174
Ⅲ.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재심사유로 인정되는 범위 ····· 175
1. 심판대상의 확정 ····· 175
2. 변형결정의 기속력 ····· 177
Ⅳ. 재심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문제되는 경우 ····· 179
1. 양벌규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 179
2.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 180
가. 사실관계 ····· 180
나. 재심청구의 어려움 ····· 181
다.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이유 인정 ····· 183
Ⅴ.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의 특징 ····· 186
제3절 과거사 재심사건 ····· 187
Ⅰ. 특별법의 제정과 위원회의 설립(1990년대부터) ····· 188
1. 과거사 정리를 위한 노력 ····· 188
가. 4·19 혁명 직후의 과거사청산 시도와 좌절 ····· 188
나. 노태우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 189
다. 김영삼 정부의 과거사정리 노력 ····· 189
라. 김대중 정부의 과거사정리 노력 ····· 191
마.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정리 노력 ····· 193
Ⅱ. 특별법,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심사건의 등장(2000년대 초반부터) ····· 195
1. 시대적 배경 ····· 196
가. 광복·건국·분단과 제1, 2공화국(1945-1960) ····· 196

나. 5·16 쿠데타와 제3공화국(1961-1971) ····· 196
다.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1972-1979) ····· 197
라. 12·12 쿠데타와 제5공화국(1980-1987) ····· 198
2. 정부 수립 초기 집단희생 사건 ····· 199
가. 여수·순천 10·19 사건 ····· 199
나. 제주 4·3 사건 ····· 206
다. 검토 ····· 209
3. 제1공화국: 조봉암 진보당 사건 ····· 209
가. 사건의 내용 ····· 209
나. 재심개시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 210
다. 재심심판절차 ····· 210
4. 제3공화국 ····· 211
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211
나.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 212
5. 제4공화국 ····· 213
가. 태영호 납북 사건 ····· 213
나. 인민혁명당 사건 ····· 214
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 217
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 218
6. 제5공화국 ····· 219
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220
나. 신귀영 일가 간첩 사건 ····· 221
다. 아람회 사건 ····· 223
라.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 225
마.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226
7. 제6공화국: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227
가. 사건의 내용 ····· 227
나. 재심개시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 ····· 228
다. 재심심판절차 ····· 229
8. 개별 사건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 229
Ⅲ.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과 재심(2000년대 후반부터) ····· 230
1.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반성 ····· 230
2. 재심사유의 확장 ····· 231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해석 ····· 231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해석 ····· 233
3. 대통령긴급조치명령은 위헌이라고 선고한 판결·결정 ····· 235
가.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명령 ····· 235
나. 대법원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에 대한 위헌판결 ····· 237
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 ····· 238

라. 위헌판결·결정의 영향 ····· 238
4. 계엄법 관련 위헌판결 ····· 239
가. 1979. 10. 18. 자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 ····· 239
나. 1972. 10. 17. 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위법 ····· 239
Ⅳ.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법무부·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의 활동
(2010년대 후반부터) ····· 240
1. 검찰의 공식 사과 ····· 240
2.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 240
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 240
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 242
다. 납북어부 귀환 사건 ····· 242
3. 법무부·검찰 산하 위원회 ····· 243
가.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 243
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 243
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 244
Ⅴ. 재심무죄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 245
1. 긴급조치권 행사의 불법성 ····· 245
2. 소멸시효 ····· 247
3.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 시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49
4.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문제 ····· 250
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소 청구 ····· 250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위헌소원 ····· 251
5. 손해배상소송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문제 ····· 253
Ⅵ. 과거사 재심사건의 특징 ····· 255

제5장 형사재심절차의 운용방안 ····· 257

제1절 재심사유의 해석 ····· 259
Ⅰ.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관계 ····· 259
Ⅱ. 재심사유 해석 확대의 필요성 ····· 260
Ⅲ.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해석 ····· 263
1. 증거의 명백성 ····· 263
가. 증거의 명백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 ····· 263
나. 신귀영 일가 간첩 사건 ····· 263
다. 증거의 명백성에 대한 검토 ····· 265
2. 증거의 신규성 ····· 266
3. 과학적 증거 ····· 270
Ⅳ.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해석 ····· 271
Ⅴ.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 ····· 273

Ⅵ. 위헌결정에서 재판의 전제성 ····· 275
제2절 재심개시절차의 운용 ····· 277
Ⅰ. 사실조사와 심문기일의 적극적 활용 ····· 277
1. 사실조사와 심문기일의 적극적 활용 ····· 277
2. 의견진술절차의 실질적 활용 ····· 281
Ⅱ. 형집행정지의 활용 ····· 283
Ⅲ. 재심청구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 ····· 284
Ⅳ. 재심청구인 지위 승계 규정의 도입 ····· 288
제3절 재심개시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 289
Ⅰ. 재심개시결정까지의 기간 ····· 289
1. 아람회 사건 ····· 290
2. 여순 사건 ····· 290
3.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291
4. 긴급조치 9호 관련 사건 ····· 291
Ⅱ.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재항고 ····· 291
제4절 재심절차 관련 문제 ····· 292
Ⅰ. 기록의 폐기, 멸실의 문제 ····· 292
1. 과거사 사건 ····· 293
가. 여순 사건 ····· 293
나.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298
다. 기록이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 ····· 298
라. 위원회 결정,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 ····· 299
2. 과거사 사건의 사실 확정 문제: 위원회 조사보고서의 효력 ····· 300
가. 진실화해위원회 ····· 300
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의 효력 ····· 302
3. 일반 사건 ····· 303
Ⅱ. 손해배상 문제: 특별법 제정의 필요 ····· 304
1.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배·보상 특별법 미제정 ····· 305
2. 개별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 307
가. 시효정지기간 6개월의 제한을 둔 판결 ····· 308
나. 민법상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에 적용한 판결 ····· 308
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310

제6장 결론 ····· 313

189.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4-08

연구책임자: 임 성 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5월 2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6
Ⅲ.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분담 ····· 7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9

제1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관 ····· 11
Ⅰ.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특징 ····· 11
1. 의의 ····· 11
2.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역사 및 형태 ····· 12
3. 국민참여재판의 역사적 배경 및 특징 ····· 14
Ⅱ.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및 개정과정 ····· 16
1.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과정 ····· 16
2. 국민참여재판법의 제정 및 개정 ····· 17
3.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 ····· 20
Ⅲ. 대상사건 ····· 23
1. 합의부 관할 사건 및 관련 사건 ····· 23

2. 단독사건으로의 확대(재정합의사건) ····· 23
Ⅳ. 피고인의 신청 및 배제결정 ····· 24
1. 피고인의 신청 ····· 24
2. 법원의 배제결정 ····· 25
Ⅴ. 공판준비절차 및 배심원 선정절차 ····· 26
1. 공판준비절차 ····· 26
2. 배심원 선정절차 ····· 26
Ⅵ. 공판절차 ····· 27
1. 모두절차 및 모두진술 ····· 27
2.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 ····· 27
3. 최후진술 및 변론종결 후 재판장 설명 ····· 28
4.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 28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 32
Ⅰ. 국민참여재판의 통계 현황 ····· 32
1. 접수 및 처리내역 등 현황 ····· 32
2. 주요 공판 운영 현황 ····· 36
3. 항소심 관련 현황 ····· 45
Ⅱ. 각 지방법원의 실무 운용 현황 ····· 48
1. 각 지방법원별 접수 및 처리 통계 현황 ····· 48
2. 각 지방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담당재판부 및 전담직원 배치 현황 ····· 49
3. 각 지방법원별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정 운용 현황 ····· 51
4. 각 지방법원별 국민참여재판 기일 지정방식 현황 ····· 52
5. 각 지방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사건 배당 및 가중치 부여 현황 ····· 53
Ⅲ. 최근까지 법원이 시행한 제도 개선 현황 ····· 55
1. 단독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회 확대 ····· 55
2. 국민참여재판 참여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57
3.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 채택 ····· 59
4. 국민참여재판의 홍보 관련 전문화·다양화 ····· 60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와 실무상의 문제점 ····· 61
Ⅰ. 서설 ····· 61
Ⅱ. 개별 설문조사의 현황 및 분석 방법 ····· 62
1. 선행 연구 등에서의 설문조사 현황 ····· 62
2. 법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63
3. 각 설문조사의 활용 방법 ····· 63
Ⅲ. 낮은 신청률 ····· 64
1. 국민참여재판의 신청률 현황 ····· 64
2. 낮은 신청률의 원인 및 문제점 ····· 65
Ⅳ. 높은 철회율 ····· 71
1. 국민참여재판의 철회율 현황 ····· 71
2. 높은 철회율의 원인 및 문제점 ····· 71

Ⅴ. 높은 배제율 ····· 74
1.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율 관련 현황 ····· 74
2. 높은 배제율의 원인 및 문제점 ····· 76
Ⅵ. 높은 항소율 ····· 79
1.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 현황 ····· 79
2. 높은 항소율의 원인 및 문제점 ····· 80
Ⅶ. 단일개정 위주의 재판 진행에 따른 문제 ····· 83
1.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 운영 현황 ····· 83
2. 단일개정 위주의 실무의 원인 및 문제점 ····· 84
Ⅷ. 국민참여재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현실적 여건상의 제약 ····· 86
1. 인터뷰 내용 및 법관 설문조사 결과 ····· 86
2.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추가되는 업무 부담 ····· 88
3. 국민참여재판의 업무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89
4. 국민참여재판에 투입될 인적·물적 여건상의 제약 ····· 91
5.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의 문제 ····· 92

제3장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95

제1절 서설 ····· 97
제2절 영국 ····· 98
Ⅰ. 영국의 배심재판 개관 ····· 98
Ⅱ. 배심재판 대상사건 ····· 98
1. 제1심 형사사건의 관할 ····· 98
2. 배심재판의 대상사건 ····· 99
3. 배심재판 실시 현황 ····· 100
Ⅲ. 배심재판 배제제도 ····· 101
1. 배심원 매수의 위험이 있는 사건(Jury Tampering) ····· 101
2. 표본소인(Sample Count)이 존재하는 사건 ····· 102
3. 최근 폐지된 조항 –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죄 사건 ····· 103
Ⅳ. 배심재판에 대한 항소 ····· 104
1. 무죄율 현황 ····· 104
2.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 여부 ····· 104
Ⅴ. 소결 – 배심재판의 축소화 경향 및 평가 ····· 105
1. 배심재판의 축소화 경향 ····· 105
2. 축소화의 원인 및 평가 ····· 106
제3절 미국 ····· 108
Ⅰ. 미국의 배심재판 개관 ····· 108
Ⅱ. 배심재판 대상사건 ····· 109
1. 대상사건의 범위 ····· 109
2.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재판 실시 현황 ····· 110

Ⅲ. 배심재판 배제제도 ····· 111
1. 개요 ····· 111
2. 각 주에서의 배심재판 포기 요건 등 ····· 112
Ⅳ. 배심재판에 대한 항소 ····· 115
1. 검사의 항소 ····· 115
2. 피고인의 항소 ····· 115
Ⅴ. 소결 – 배심제 축소와 관련한 종래의 시도 및 평가 ····· 116
1. 각 주에서의 배심재판 축소 시도 ····· 116
2. 평가 ····· 117
제4절 독일 ····· 119
Ⅰ. 독일의 참심재판 개관 ····· 119
Ⅱ. 참심재판 대상사건 ····· 120
1. 참심법원의 구성 ····· 120
2. 참심재판의 대상사건 ····· 121
3. 참심재판 실시 현황 ····· 121
Ⅲ. 참심재판 배제제도 ····· 123
Ⅳ. 참심재판에 대한 항소 ····· 124
Ⅴ. 소결 – 참심제에 대한 비판 및 평가 ····· 125
제5절 프랑스 ····· 126
Ⅰ. 프랑스의 참심재판 개관 ····· 126
Ⅱ. 참심재판의 대상사건 ····· 126
1. 대상사건의 범위 ····· 126
2. 참심재판 실시 현황 ····· 128
Ⅲ. 참심재판 배제제도 ····· 129
Ⅳ. 참심재판에 대한 항소 ····· 130
Ⅴ. 소결 – 최근의 참심제 변화 시도 및 평가 ····· 131
1. 참심제 관련 최근의 변화 시도 ····· 131
2. 형사법원 도입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및 평가 ····· 131
제6절 일본 ····· 133
Ⅰ. 일본의 재판원재판 개관 ····· 133
Ⅱ. 재판원재판 도입 과정에서의 구체적 논의 ····· 134
1. 구 배심법의 한계 ····· 134
2. 재판원법의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 135
Ⅲ. 재판원재판 대상사건 ····· 137
1. 대상사건의 범위 ····· 137
2. 합의체의 구성 ····· 138
3. 피고인의 선택권 ····· 139
4. 재판원재판의 실시 현황 ····· 139
Ⅳ. 재판원재판의 배제제도 ····· 141
1. 재판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의 우려가 있는 경우 ····· 141

2. 장기간 심판을 필요로 하는 사건 등의 경우 ····· 142
3. 제외결정의 절차 ····· 143
Ⅴ. 재판원재판에 대한 항소 ····· 144
Ⅵ. 소결 – 재판원재판에 대한 최근의 평가 ····· 144
제7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 146

제4장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 ····· 149

제1절 개관 ····· 151
제2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 ····· 152
Ⅰ. 서설 ····· 152
Ⅱ.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신뢰 확보 ····· 153
1. 의의 ····· 153
2. 기존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사법개혁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 153
3.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측면 ····· 155
4. 사법의 신뢰 확보 측면 ····· 159
Ⅲ. 실질적 법정중심의 재판 활성화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 ····· 161
1. 의의 ····· 161
2. 법관 인터뷰 내용 ····· 162
3. 실질적인 법정중심의 재판 활성화 측면 ····· 162
4. 재판의 투명성 확보 측면 ····· 165
Ⅳ. 사실인정 및 법적판단에 사회적 상식의 반영 ····· 166
1. 의의 ····· 166
2. 사회 일반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성 ····· 166
3.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사건에 관한 검토 ····· 167
Ⅴ.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적 효과 ····· 169
1. 의의 ····· 169
2. 각 집단별 인식 조사 현황 ····· 169
Ⅵ. 소결 ····· 172
제3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방향성 ····· 173
Ⅰ. 양적 활성화의 필요성 여부 ····· 173
1. 견해의 대립 ····· 173
2. 인터뷰 내용 ····· 174
3. 각 설문조사 결과 ····· 175
4. 소결 ····· 176
Ⅱ. 헌법적합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향 ····· 177
1. 서설 ····· 177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관한 견해 대립 ····· 177
3.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의 ····· 179

제5장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심리 개선방안
– 실시요건을 중심으로 ····· 183

제1절 개관 ····· 185
제2절 법원 주도의 부분적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 186
Ⅰ. 배제제도 관련 개선방안 ····· 186
1. 서설 ····· 186
2. 국민참여재판법의 배제제도 관련 규정 ····· 187
3.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문 분석 ····· 188
4.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각 배제사유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209
5. 배제결정의 필요적 등록 및 구체적인 이유제시 의무화 ····· 230
6. 보론 – 배제결정 전담재판부 신설 관련 ····· 234
Ⅱ.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의 설치 방안 ····· 236
1. 도입 초기의 전담재판부 실시 경험 ····· 236
2.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 237
3. 법관 및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 ····· 238
4. 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239
Ⅲ.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방안 ····· 241
1. 담당재판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241
2.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245
3.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247
Ⅳ. 기타 부분적 제도 개선방안 ····· 250
1. 단독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기회의 확대 ····· 250
2. 국민참여재판 철회 시 원래 재판부로 환송하는 방안 ····· 252
제3절 전면적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 256
Ⅰ. 대상사건 및 실시법원의 확대 방안 ····· 256
1. 개요 ····· 256
2. 법관 설문조사 결과 ····· 256
3. 검토 ····· 257
4. 보론 – 경미하거나 단순한 단독사건의 대상사건 제외 관련 ····· 258
Ⅱ. 신청주의의 개선 및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사건 지정 방안 ····· 259
1. 신청주의에 대한 견해 대립 ····· 259
2.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신청주의 개선방안 ····· 260
3.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도입 및 운용 방안 ····· 264
Ⅲ. 지방법원 지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방안 ····· 276
1. 개요 ····· 276
2. 법조인들의 인식 조사 결과 ····· 276
3.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을 정하는 기준 및 고려사항 ····· 277
4. 입법안의 검토 및 제안 ····· 281
Ⅳ. 법관의 증원 방안 ····· 287

1. 개요 ····· 287
2. 법관의 규모 및 현황 ····· 287
3. 법관 증원의 필요성 ····· 288
4. 검토 ····· 290
Ⅴ. 중·장기적 방안으로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 291
1. 의의 ····· 291
2. 종래 신속처리절차의 도입 시도 및 경과 ····· 291
3.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의 검토 ····· 293
제4절 국민참여재판 심리·운용상의 개선방안 ····· 296
Ⅰ. 서설 ····· 296
Ⅱ. 연일개정의 활성화 방안 ····· 296
1. 개요 ····· 296
2. 선행 설문조사 결과 ····· 297
3. 연일개정의 실시 현황 분석 ····· 298
4. 연일개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 302
Ⅲ.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작성의 간소화 방안 ····· 306
1. 의의 ····· 306
2. 판결서 이유 기재 간소화의 논거 ····· 307
3.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308
4. 판례의 태도 ····· 310
5.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개정안 검토 ····· 313
6. 보론 –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조화 ····· 317
Ⅳ. 기타 심리 개선방안 ····· 319
1.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와 관련한 심리 개선방안 ····· 319
2. 배심원 설명서의 표준화 방안 ····· 322
제5절 국민참여재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활성화 방안 ····· 325
Ⅰ. 의의 ····· 325
Ⅱ. 기존의 국민참여재판 홍보 및 예산 현황 ····· 325
1. 홍보의 대상 및 방법 ····· 325
2. 교육·홍보 예산 현황 ····· 326
Ⅲ.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 ····· 327
1. 국민참여재판 교육·홍보 예산 증액 필요성 ····· 327
2.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위한 노력 ····· 328
3. 기타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 ····· 330
Ⅳ.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 ····· 331
Ⅴ. 법조인들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 332

제6장 결론 ····· 333

190.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민·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4-09

연구책임자: 이 영 창(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 현 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5월 2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신속한 재판과 적정한 재판 ····· 4
제3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 지연의 의미 ····· 5
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 5
Ⅱ. '적정재판기간의 경과'로서 재판 지연 ····· 6
1. 적정재판기간(reasonable period) ····· 6
2. 민사소송법 등의 판결선고기간 조항과 적정재판기간 ····· 7
Ⅲ. '평균재판기간의 증가'로서 재판 지연 ····· 8
Ⅳ. 재판 지연의 두 의미들의 상관성 ····· 8
Ⅴ. 재판 지연의 유형 ····· 9
제4절 연구방법 ····· 10
제5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10
제6절 보고서의 구성 ····· 11

제2장 재판의 지연 실태와 그 원인들 ····· 13

제1절 재판의 지연 관련 해외통계 ····· 15
Ⅰ. 개관 ····· 15

Ⅱ.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 ····· 15
1. CIVIL JUSTICE IS NOT SUBJECT TO UNREASONABLE DELAY ····· 15
2. CRIMINAL ADJUDICATION SYSTEM IS TIMELY AND EFFECTIVE ····· 16
Ⅲ.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중 Enforcing Contracts ····· 16
Ⅳ. 총평 ····· 17
제2절 재판의 지연 관련 국내통계 ····· 18
Ⅰ. 접수 및 처리건수 ····· 18
1. 민사본안사건 ····· 18
2. 형사공판사건 ····· 19
Ⅱ. 평균처리기간 ····· 20
1. 민사본안사건 ····· 20
2. 형사공판사건 ····· 21
Ⅲ. 처리기간의 장단기 ····· 23
1. 민사본안사건 ····· 23
2. 형사공판사건 ····· 23
Ⅳ. 구간별 처리기간 ····· 24
1. 민사본안사건 ····· 24
2. 형사공판사건 ····· 26
Ⅴ. 장기미제사건 및 미제분포지수 ····· 29
1. 개념 ····· 29
가. 장기미제사건수 ····· 29
나. 미제분포지수 ····· 30
다. 장기미제사건수와 미제분포지수 분석 시 유의사항 ····· 31
2. 민사본안사건의 장기미제사건수 ····· 31
3. 형사공판사건의 장기미제사건 인원수 ····· 32
4. 민사본안사건의 미제분포지수 ····· 33
5. 형사공판사건의 미제분포지수 ····· 34
Ⅵ. 평균 기일 횟수와 변론 개시부터 종결까지 기간 ····· 36
Ⅶ. 소결 ····· 37
제3절 재판의 지연 원인들 ····· 38
Ⅰ. 재판절차 외(外) 지연 원인 ····· 38
1.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의 증가 ····· 38
2. 변호사 수의 급증 ····· 39
3. 미미한 법관 증원 ····· 41
4. 법관의 노령화 ····· 42
가. 노령화 상황 ····· 42
나. 법관의 노령화와 재판 지연 ····· 44
5. 법조일원화(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실시) ····· 46
가. 제도의 취지와 경과 ····· 46
나. 법조일원화와 신속한 재판 ····· 48
6.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 50
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 인사교류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 50

나. 고등부장 승진제도와 신속한 사건처리 ····· 51
다.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문제들 ····· 51
라.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폐지 ····· 51
마. 소결 ····· 53
7. 사법행정권의 소극적 행사 ····· 54
가. 종전 제1심 법원장 등의 임명방식과 사법행정권 행사 ····· 54
나. 법관인사 이원화 및 법원장 등의 임명방식 변화(법원장 후보 추천제) ·· 55
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 ····· 57
8. 코로나19 사태 ····· 57
가. 코로나19 사태의 발생과 재판 지연 ····· 57
나. 미국의 경우 ····· 58
다. 소결 ····· 59
Ⅱ. 재판절차 내(內) 지연 원인 ····· 60
1. 잦은 인사이동,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빈번한 재판부 교체 ····· 60
가. 잦은 인사이동 ····· 60
나. 잦은 사무분담 변경 ····· 61
2. 목표 사건처리건수(선고건수)의 하향 ····· 64
가. 사건처리건수(선고건수)의 중요성 ····· 64
나. 사건처리건수(선고건수)에 관한 실무 ····· 65
다. 2001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 등장 ····· 66
라. 2003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 조정 ····· 66
마. 2005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 재조정 ····· 67
바. 2008년 이후 민사재판의 적정처리건수의 사실상 폐기 ····· 67
사. 2012~2018년 발생한 과로사 사건들과 적정처리건수의 부활 논의 ···· 68
아. 2019년 수원지방법원의 민사·형사재판 적정선고건수 제안 ····· 68
자. 서울 소재 민사제1심 합의부의 선고건수 설정 및 선고건수 감소 ····· 70
3. 적시제출주의 불준수와 변론 속행 ····· 72
가. 민사재판 ····· 72
나. 형사재판 ····· 73
4. 변론·공판의 집중 실패와 기일의 변경·연기·추후지정의 통제 미흡 ····· 74
가. 변론·공판의 집중과 속행의 억제 필요성 ····· 74
나. 변론·공판기일의 변경 및 연기의 제한 ····· 75
다. 변론의 추후지정(감정결과, 관련사건 결과대기를 위한 추정) ····· 76
5. 민사·형사재판의 신속절차 부재 ····· 79
가. 민사재판 ····· 79
나. 형사재판 ····· 80
제4절 소결론 ····· 81
Ⅰ. 2023년 상반기의 변동상황 ····· 81
Ⅱ. 재판 신속화 대책의 필요성 ····· 82

제3장 해외 사례들의 소개 ····· 83

제1절 독일 ····· 85

Ⅰ. 재판의 신속에 관한 논의 ····· 85
1. 독일 장기간의 민사소송 보고서 ····· 85
2. Roland 보고서 ····· 86
Ⅱ. 재판의 신속화 방안 – 감정 관련 ····· 86
1. 법원과 감정인 사이의 의사소통 강화 ····· 87
2. 인수(Übernahme)의 확인 ····· 87
3. 감정서 작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한 설정 ····· 87
4. 철저한 기한 감시 ····· 88
5. 감정비용의 다툼 ····· 88
6. 감정인에 대한 의견교환 전자게시판의 설치 ····· 88
7. 감정인단체와 의견교환 ····· 88
Ⅲ.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 89
1. 재판지연보상제도 ····· 89
가. 기존 제도들 ····· 89
나. 새로운 입법 ····· 89
다. 재판지연보상청구의 내용 ····· 90
라. 독일 내 평가 ····· 94
2. 형사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제도들 ····· 94
제2절 프랑스 ····· 96
Ⅰ. 재판의 신속에 관한 논의 ····· 96
1. 2021년 사법감찰원 연구 ····· 96
2. 2022년 전반적인 사법의 상태 보고서 ····· 97
Ⅱ. 재판의 신속화 방안 ····· 99
1. 감정 관련: 감정조건과 특임법관제도 ····· 99
가. 감정조건의 충족 필요 ····· 99
나. 감정에 관한 특임법관 제도 ····· 100
2. 절차방향 결정 심리 및 신속절차(서면재판, 단기순환) ····· 103
가. 절차방향 결정 심리 ····· 103
나.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서면재판 ····· 103
다. 단기순환 ····· 104
라. 장기순환 ····· 105
3. 준비절차담당법관에 의한 사전절차 ····· 105
가. 준비절차담당법관에 의한 기한지정 ····· 105
나. 기한미준수의 효과(실권효) ····· 107
Ⅲ.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 재판지연배상제도 ····· 109
제3절 일본 ····· 112
Ⅰ. 재판의 신속에 관한 논의 ····· 112
1. 재판 지연에 대한 조사 ····· 112
가. 재판소의 통계데이터를 통한 조사 ····· 112
나. 재판 지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조사 ····· 112
2. 조사 결과에 따른 재판 지연의 원인 ····· 113
가. 소송당사자의 수 ····· 113
나. 법인의 포함 여부 ····· 113

다. 변호사의 선임 여부 ····· 113
라. 반소 제기 또는 변론의 병합 여부 ····· 114
마. 사건의 내용 ····· 114
바. 재판 결과 ····· 115
Ⅱ. 재판의 신속화 방안 ····· 115
1. 계획심리제도 ····· 115
가. 배경 ····· 115
나. 계획심리의 의의 ····· 116
다. 관련 조항 ····· 117
라. 주요 내용 ····· 118
마. 계획심리의 장점과 구현에 필요한 조건 ····· 119
2. 심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소송절차 ····· 120
가. 의의 ····· 120
나. 입법과정 ····· 121
다. 절차적 특례1 – 쌍방에 의한 신청 또는 동의 ····· 121
라. 절차적 특례2 – 심리기간의 제한(6개월) ····· 122
마. 절차적 특례3 – 일반절차로의 이행가능 ····· 122
바. 절차적 특례4 –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 허용 ····· 123
사. 평가 ····· 123
3. 소액소송절차 ····· 124
가. 의의 ····· 124
나. 절차적 특례1 – 원고의 소액소송절차 선택권과 피고의 이행신청권 … 124
다. 절차적 특례2 – 반소금지 ····· 125
라. 절차적 특례3 –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 125
마. 절차적 특례4 – 즉시선고, 분할지급판결 등 ····· 126
바. 절차적 특례5 –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 금지 ····· 127
사. 절차적 특례6 – 강제집행 ····· 128
4. 수표·어음소송절차 ····· 128
가. 의의 ····· 128
나. 절차적 특례1 – 반소의 금지 ····· 128
다. 절차적 특례2 – 증거조사 ····· 128
라. 절차적 특례3 – 일반절차로의 이행 ····· 129
마. 절차적 특례4 –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 허용 ····· 129
5.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과 신속화 검증보고서 공표 ····· 130
가. 입법의 배경 ····· 130
나. 재판신속화법의 특징 ····· 131
다. 재판심리기간의 법정화 – 2년 ····· 131
라. 재판 신속화를 위한 국가, 법원, 당사자, 대리인의 책무 ····· 132
마. 최고재판소의 검증 및 보고서 발표 ····· 132
바. 평가 ····· 133
Ⅲ.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 134

1. 판례 ····· 134
2. 학설 ····· 135
제4절 미국 ····· 136
Ⅰ. 재판의 신속화 방안 ····· 136
1. 헌법 ····· 136
2. 1974년 신속재판법 ····· 136
3. 1990년 민사사법개혁법 ····· 138
Ⅱ. 재판 지연에 대한 구제 ····· 139

제4장 재판의 지연 방지와 신속화를 위한 개선방안 ····· 143

제1절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 ····· 145
Ⅰ. 법관의 증원 ····· 145
1. 법관 증원의 필요성 ····· 145
2. 법관 증원 수의 산정 문제 ····· 146
3.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 제안 ····· 147
4. 시니어 판사 제도 등 ····· 148
Ⅱ. 재판연구원의 증원 ····· 150
1. 재판연구원 제도와 정원의 변화 ····· 150
2. 법관의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판연구원 제도 ····· 150
3. 재판연구원 증원 수의 산정 문제 ····· 152
4. 재판연구원 제도의 개선 제안 ····· 152
가. 재판연구원의 처우 개선 ····· 152
나. 고액단독재판부에 대한 재판연구원 배치 ····· 153
다. 일정 경력, 연령 이상의 법관 1인당 재판연구원 1명 배치 ····· 154
라. 재판연구원의 사무분담 장기화 및 임기 연장 ····· 154
마. 법원조직법의 개정 제안 ····· 156
제2절 인사이동과 사무분담 변경의 최소화 ····· 156
Ⅰ. 잦은 인사이동의 개선방안 ····· 156
1. 해외와의 비교 ····· 156
2. 지방 장기근무제도의 변천 ····· 157
가. 지역법관제도 ····· 157
나. 지역계속근무제도 ····· 157
다. 장기근무제도 ····· 157
3. 법원 내 개선논의 ····· 158
4.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158
가. 권역별 법관선발제 및 법관근무제에 대하여 ····· 158
나. 장기근무제도에 대하여 ····· 160
Ⅱ. 잦은 사무분담 변경의 개선방안 ····· 161
1. 해외와의 비교 ····· 161
2. 사무분담에 관한 관련 규칙, 예규 ····· 163
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163
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63

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163
라. 위 규칙, 예규에 따른 사무분담의 절차 ····· 164
3.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165
가. 법원장의 실질적 사무분담권한 행사 ····· 165
나. 판사회의의 심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자문 ····· 165
다. 법원장의 사무분담 결정의 기본방향 –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 ····· 167
라. 1 법원 1 사무분담 반대론 ····· 168
제3절 법관의 전문화 ····· 171
Ⅰ. 신속한 재판과 민사·형사재판에서 법관 전문화의 필요 ····· 171
Ⅱ.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171
Ⅲ. 민사·형사재판에서 전문화를 통한 신속재판 구현의 어려움 ····· 172
1. 형사재판부와 특정 민사 전문재판부에 대한 비선호 ····· 172
2. 빈번한 인사이동, 사무분담 변경 ····· 172
3. 사무분담의 형평 추구 ····· 172
4. 민사·형사재판의 전문법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 불일치 ····· 173
Ⅳ. 민사·형사재판의 전문화에 관한 제안 ····· 173
1. 전문법관 도입 관련 ····· 173
2. 전문재판부 유지 관련 ····· 174
3.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제안 ····· 174
제4절 사법행정권의 적정한 행사 ····· 176
Ⅰ.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 176
Ⅱ.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필요성 ····· 177
Ⅲ.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있었는지 ····· 177
Ⅳ.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 178
1. 문제점 ····· 178
2. 독일의 경우 ····· 179
가. 독일 법관법상 직무감독과 법관의 독립성 ····· 179
나. 구체적인 사례들의 검토 ····· 180
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는지 ····· 183
Ⅵ. 개선의 필요와 제안내용 ····· 184
Ⅶ. 보론 – 법원장의 임명방식 ····· 184
제5절 사건관리, 업무량 측정, 표준 사건처리기간 설정 ····· 187
Ⅰ. 사건관리와 표준 사건처리기간 설정의 필요성 ····· 187
Ⅱ. 법관들의 업무량과 사건처리기간의 측정 ····· 189
1. 업무량과 사건처리기간의 측정 절차 ····· 189
2. 실제 업무량과 사건처리기간(시간)의 측정 방식 ····· 191
Ⅲ. 표준 사건처리기간의 검증 및 적용 ····· 193
Ⅳ. 표준 사건처리기간 설정과 이에 기초한 사건관리의 장점 ····· 193
1.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관리 ····· 193
2. 법관 증원 요청의 객관적 근거 마련 ····· 194
3. 심급별, 법원별, 재판부별 공평한 자원배분 ····· 194
4.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근거 마련 ····· 195
제6절 영상재판의 확대 ····· 196

Ⅰ. 코로나19 사태 유사 위기상황의 도래 가능성과 그 대비로서 영상재판 …… 196
Ⅱ. 영상재판의 실시 현황 …… 196
Ⅲ. 영상재판에 대한 만족도 …… 198
Ⅳ. 민사재판의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서 영상재판 …… 199
Ⅴ. 형사재판의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서 영상재판 …… 200
Ⅵ. 영상재판의 활성화 방안 …… 200
1. 변론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의 원칙적 영상재판 진행 …… 200
2. 변론기일의 영상재판 실시요건에 대한 적극적 해석 …… 202
3. 형사 영상재판을 공판기일에 확대하는 방안 …… 203
4. 영상재판의 질 향상 …… 204
5. 영상재판 전용법정 등의 설치, 확대 …… 210
제7절 변론·공판의 집중 – 변론준비기일과 실권효 등 …… 210
Ⅰ. 변론·공판의 집중을 저해하는 요인들 …… 210
Ⅱ. 민사재판에서 변론준비기일의 원칙적 운용 필요성 …… 211
1. 원칙과 예외의 전환 …… 211
2. 변론준비절차가 없는 재판에서 변론의 집중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 211
3. 변론준비절차가 있는 재판에서 변론의 집중이 실현되기 쉬운 이유 …… 212
4. 민사소송법의 개정 제안 …… 212
Ⅲ.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유기적 운용 …… 213
1. 첫 대면으로 조기 변론준비기일 진행(판사실, 영상재판) …… 213
2. 변론준비기일의 본격 진행(판사실, 영상재판)
– 기일결정, 주장제출과 증거신청의 마감기한 설정 …… 215
3. 변론기일의 진행(법정, 대면재판) – 구술변론, 증거조사 …… 215
4. 실권효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제안 …… 216
5. 참고: 해외 중재판정부의 운영방식 …… 217
Ⅳ. 형사재판에서 실권효 적용 …… 218
Ⅴ. 기일의 속행, 연기, 추정에 대하여 …… 219
1. 속행, 연기에 관한 기준마련 및 공개 …… 219
2. 변론의 추후지정에 관한 기준마련 및 공개 …… 220
3. 증인의 출석확보 …… 220
4. 전자소송시스템의 알림, 자동 후속조치 기능 강화 …… 221
Ⅵ. 감정으로 인한 재판장기화에 대하여 …… 221
1. 조기 감정실시의 위험성 …… 221
2. 감정인신문의 필수 실시 방안 …… 222
가. 개요 …… 222
나. 변론준비기일 겸 감정인신문기일(1차)의 진행 …… 222
다. 변론기일과 감정인신문(2차)의 진행(인터넷 화상장치 이용) …… 225
라. 보완감정신청, 재감정신청의 원칙적 불채택 …… 226
3. 기타 감정의 신속화 방안들 …… 226
가. 신체감정료의 현실화 …… 226
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적극 활용 …… 227
다. 감정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전자게시판의 설치 … 227
라. 감정전담인력의 배치 …… 227
마. 감정센터(감정전담기관)의 설립 …… 228

Ⅶ. 민사재판의 변론주의 준수 ····· 229
제8절 민사재판의 증거개시제도 – 변론 전 증거조사제도 ····· 229
Ⅰ. 형사재판의 증거개시제도와의 비교 ····· 229
Ⅱ. 미국 민사소송의 증거개시제도 ····· 230
1.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의의 ····· 230
2. 재판 지연의 방지 및 자발적 합의 촉진 ····· 230
3. 불의타 전략의 방지 ····· 231
4. 이(E)-디스커버리로의 전환 ····· 231
Ⅲ.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 231
Ⅳ. 민사재판에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 232
Ⅴ. 민사재판에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여건의 조성 ····· 234
Ⅵ. 민사소송법 개정 제안 ····· 234
1. 질문서 제도 ····· 234
2. 증언녹취제도 ····· 236
3. 문서 등 자료(전자정보 포함) 제출명령제도(문서제출명령의 확대, 강화) ··· 240
제9절 선고건수의 증가 방안 및 판결서 작성의 변화 모색 ····· 248
Ⅰ. 민사합의부 선고건수의 증가 방안 ····· 248
1. 3·3·3·0 선고방식의 문제점 ····· 248
2. 구 선고방식의 문제점 ····· 250
3.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건강의 관계 ····· 250
4. 3·3·3·0 선고방식의 수정방안들 ····· 252
5. 선고건수 증가 시 유의사항 ····· 253
6. 적정처리건수의 재산정 필요 → 업무시간, 업무량 분석의 선행 필요 ····· 256
Ⅱ. 판결서 작성의 변화 모색 ····· 258
1. 판결서 작성시간 감소방안의 모색 필요성 ····· 258
2. 외국 법원의 경우 ····· 258
3. 판결서 간이화에 관한 논의들 ····· 259
4. 핵심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쓰는 '판결서 간이화' ····· 261
5. 인용과 생략을 하는 '판결서 간이화' ····· 263
가. 당사자가 제출한 별지 서면의 인용을 통한 판결서 간이화 방안 ····· 263
나. '양형의 이유' 중 문장식 부분의 생략 ····· 265
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과 판결 일치 시 판결이유의 간이화 ····· 268
제10절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및 이익/불이익 부여 ····· 273
Ⅰ. 새로운 승진제도의 도입 여부 ····· 273
1. 지위경쟁 이론의 소개 ····· 273
가. 논의의 배경 ····· 273
나. 지위경쟁의 의미와 구조 ····· 273
다. 지위경쟁의 장단점 ····· 274
2. 지위경쟁 이론에 비추어 본 과거의 승진제도 ····· 275
3. 현 상황에서의 승진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들 ····· 276
가. 승진제도 도입의 난점 ····· 276
나. 승진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 276
다. 소결 ····· 279

Ⅱ. 새로운 평가제도 및 이익/불이익 부여의 모색 ····· 280
1. 근무평정제도의 운용에 대한 점검의 필요 ····· 280
2. 업무성과에 따른 이익/불이익의 부여 ····· 280
3. 구체적 이익/불이익의 검토 ····· 281
4. 사무분담 장기화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 부여 ····· 283
제11절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효율화 ····· 284
Ⅰ. 인공지능의 배경지식 ····· 284
1.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 284
2. 대형 언어 모델(LLM)의 등장 ····· 285
3. 대형 언어 모델(LLM)의 학습 진행과정 ····· 286
4. 대형 언어 모델(LLM)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 ····· 288
Ⅱ.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법원업무 분야 ····· 288
1. 의미검색(semantic search) – 단기 ····· 288
2. 대화형 검색 – 단기 ····· 289
3. 판결검색 시 종국결과 제시 – 단기 ····· 289
4. 관련사건 분석 – 장기 ····· 290
5. 문서요약 – 단기 ····· 290
6. 특정 문서에 대한 질의, 응답 – 단기 ····· 291
7. 중복주장 식별 또는 일방 당사자의 새로운 주장 찾기 – 중기 ····· 292
8. 쌍방 당사자의 충돌 주장 찾기 – 중기 ····· 292
9. 준비서면과 증거 간 자동연결 – 단기 ····· 293
10. 항소심 등 신건메모 작성 – 장기 ····· 293
11. 판결서 등 법률문서 작성 – 중기·장기 ····· 294
12. 통계분석 ····· 296
13. 정확한 사건분류 ····· 297
14. 각국의 법률문서 번역 또는 요약정리, 해외사법자료들의 신속 정리 ····· 297
15. 모든 법관의 코트넷 계정에 AI 재판연구원 도입 ····· 297
Ⅲ. 인공지능의 구축 및 이용방안 ····· 298
1. 기존 해외 LLM의 이용방안 ····· 298
2. 법원 내 자체 소형 언어 모델(small LLM)의 구축방안 ····· 299
3. 검토의견 ····· 299
4. 오답변 가능성에 관하여 ····· 300
5. LLM을 이용한 판결서 작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 301
제12절 기타 개선방안 ····· 301
Ⅰ. 재판부 증설을 위한 3인 합의부의 단독화 또는 2인 합의부화 ····· 301
1. 민사제1심 합의부의 일부 단독재판부화(소가 증액) ····· 301
2. 민사제1심 합의부의 전면 단독재판부화 ····· 304
가. 논의의 내용 ····· 304
나. 독일, 일본의 경우 ····· 304
다. 검토 ····· 305
3. 민사항소심의 일부 단독재판부화 ····· 306
가. 논의의 내용 ····· 306
나. 독일의 경우 ····· 307

다. 검토 ····· 307
4. 2인 합의부의 설치 ····· 308
가. 논의의 내용 ····· 308
나. 인도연방공화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 309
다. 검토 ····· 309
Ⅱ. 유능한 신규법관들의 임용 ····· 310
1. 법관 즉시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 ····· 310
2.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한 인재 영입의 필요 ····· 311
3. 인재 영입을 위한 개선방안 – 법관 보수 증액 등 ····· 313
4.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관 선발제도와 최소 법조경력 기간 ····· 315
가. 논의의 내용 ····· 315
나. 벨기에의 경우 ····· 316
다. 검토 ····· 317
Ⅲ. 재판지연보상 ····· 318
Ⅳ. 재판 신속을 위한 특별법 제정 ····· 320
1. 현행 소송법상 처리기간 조항들의 문제점 ····· 320
2. 재판 신속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장점 ····· 321
3. 적정재판기간의 현실화 및 강행규정화 시도의 문제점 ····· 322
Ⅴ. 재판 신속에 관한 정기보고서 발간 및 통계의 공개, 제공 ····· 323
1. 재판 신속에 관한 정기보고서 발간 ····· 323
2. 재판부별 장기미제 현황의 공개 ····· 324
3. 희망 법관들에 대한 재판 지연 및 신속화에 관한 맞춤형 통계 제공 ····· 324
Ⅵ. 변호사계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협력 ····· 325
Ⅶ. 신속한 민사재판의 구현을 위한 기타 제도들 ····· 326
1. 변론기일지정신청권 부여 ····· 326
2. 민사재판에서 재판 지연자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 ····· 328
3. 소액소송절차 ····· 328
4. 수표·어음소송절차 ····· 329
5. 쌍방 동의에 의한 변론 없는 재판절차, 기간한정 소송절차의 도입 ····· 330
6. 온라인분쟁해결(ODR) 기관으로서 인터넷법원, 온라인법원 ····· 331
Ⅷ. 신속한 형사재판의 구현을 위한 기타 제도들 ····· 332
1. 신속한 형사재판의 중요성 ····· 332
2. 불구속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지정신청권 부여 ····· 333
3.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예외적 구속기간연장 등 ····· 333
4. 형사재판에서 재판 지연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 334
5. 부인사건에 대한 간이공판절차 도입 ····· 335
가. 간이공판절차와 신속한 재판 ····· 335
나. 부인사건에 대한 간이공판절차의 확대논의 ····· 336
6. 형사재판 신속처리절차 체계의 재검토 ····· 337
가. 공판 집중의 전제: 적당한 사건수 ····· 337
나. 형사공판의 신속처리절차인 간이공판절차의 기능 상실 ····· 338
다. 형사공판의 경죄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신속처리절차 도입의 모색 ··· 339
7. 형사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 확대 ····· 341
8. 형사항소심에서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의 적극 활용 ····· 342

가.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의 의미와 쟁점 ····· 342
나. 실무의 태도 ····· 343
9.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또는 감형 실시 ····· 344

제5장 결론 ····· 345

1. 요약 ····· 347
2. 비공식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 ····· 350
3. 맺는 말 ····· 352

191.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10

연구책임자: 진 현 섭(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 현 아(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를 비공개 발간함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707-01

대 외 비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92.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구총서 2024-11

연구책임자: 탁 상 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24년 6월 2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Ⅰ. 연구의 내용 ····· 7
Ⅱ. 연구의 방법 및 연구책임자 ····· 8

제2장 특수법인의 의의 및 특성 ····· 9

제1절 비영리법인의 의의 및 특성 ····· 11
Ⅰ. 서설 ····· 11
1. 의의 및 분류 ····· 11
2. 비영리법인의 특징 ····· 13
Ⅱ.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 14
1. 의의 및 특성 ····· 14
2. 경영위기의 원인 ····· 19
3. 사립학교법인 회생 사건 정리 ····· 26
4.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논의 ····· 33
Ⅲ. 의료법인의 경우 ····· 36
1. 의의 및 특성 ····· 36
2. 경영위기의 원인 ····· 41
3. 의료법인 회생사건 정리 ····· 43
Ⅳ. 종교법인의 경우 ····· 50

1. 의의 및 특성 ····· 50
2. 경영위기의 원인 ····· 51
3. 종교법인 회생사건 정리 ····· 54

제2절 가상자산거래소의 의의 및 특성 ····· 59
Ⅰ. 가상자산의 의의 ····· 59
Ⅱ.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 61
Ⅲ. 가상자산거래소 법인파산 사건 정리 ····· 64
1. 주식회사 코인빈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 ····· 64
2. 주식회사 노노스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335) ····· 64

제3장 비영리법인 회생의 경우 ····· 67

제1절 개관 ····· 69
Ⅰ. 서론 ····· 69
Ⅱ. 비영리법인 회생사건의 취급 ····· 70
1. 주요 국가의 경우 ····· 70
2. 시사점 ····· 72
제2절 법인회생절차 진행 개요 ····· 73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 74
2. 보전처분·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 74
3.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 75
4.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 75
5. 채권·채무의 확정 ····· 76
6.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 77
7. 채무자 재산의 확보 ····· 79
8.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80
9.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 81
10.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82
11. 회생계획의 수행 ····· 83
12.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 84
제3절 회생절차 신청 단계 ····· 85
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 85
1. 의의 및 목적 ····· 85
2. 법원의 역할 ····· 87
3. 효과 및 성공사례 ····· 89
4. 비영리법인 사건에 적용 ····· 92
Ⅱ. 비영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 인정 여부 ····· 93
1. 문제점 ····· 93
2. 검토 ····· 94

Ⅲ. 감독청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권 인정 여부
– 사립학교, 의료법인의 경우 ····· 95
1. 문제점 ····· 95
2. 검토 ····· 95
3. 입법안 ····· 97
Ⅳ.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과 이사회 결의 ····· 97
1. 문제점 ····· 97
2. 검토 ····· 97
Ⅴ.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대학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중지 ····· 99
1. 문제점 ····· 99
2. 검토 ····· 100
제4절 회생절차 개시결정 단계 ····· 101
Ⅰ. 개시원인의 판단 – 특히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 101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101
2.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03
3. 구체적 사례 ····· 106
Ⅱ. 관리인 선임 ····· 107
1. 제3자 관리인 선임 ····· 108
2. 공동관리인의 선임의 검토 ····· 111
제5절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 작성단계 ····· 112
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요양급여비용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
– 의료법인의 경우 ····· 112
1. 문제점 ····· 112
2. 판례 ····· 112
3. 검토 ····· 113
Ⅱ. 회생절차 중 감독행정청의 지도·감독 및 허가권 요부 ····· 115
1. 학설 ····· 115
2. 판례 ····· 116
3. 검토 ····· 117
Ⅲ. 청산가치 보장과 회계의 분리 ····· 119
1. 문제점 ····· 119
2. 학교법인 회계의 구분 및 이유 ····· 120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회생계획안 작성시 회계분리의 필요성 ····· 122
Ⅳ. 학교 통·폐합시 재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 127
1. 문제점 ····· 127
2. 대학 통·폐합 관련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 ····· 128
3. 구체적인 검토 ····· 129
Ⅴ. 의견청취 창구 개설 ····· 131
Ⅵ. 매각 후 재임대 방안 활용(sales & lease back) ····· 132
1. 의의 ····· 132

2. 법적 성질 ····· 133
3. 활용과 현황 ····· 133
4. 종교법인 회생절차에 적용 ····· 134
제6절 비영리법인 M&A 관련문제 ····· 135
Ⅰ. M&A 개요 ····· 135
1. M&A의 의의 및 종류 ····· 135
2. 회생절차에서 M&A의 차이 및 특장점 ····· 135
3. 비영리법인의 M&A 특수성 및 사례 ····· 136
Ⅱ. 운영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M&A 인정여부
–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 ····· 138
1. 문제점 ····· 138
2. 의료법인의 경우 ····· 138
3. 학교법인의 경우 ····· 140
4. 검토 ····· 147
Ⅲ.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 150
1. 인수대금 중 무상출연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과 ····· 150
2. 인수대금조달 증빙과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문제 ····· 151

제4장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의 경우 ····· 157

제1절 서론 ····· 159
제2절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의의 및 법률관계 ····· 160
Ⅰ.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의 구조 ····· 160
Ⅱ.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귀속 ····· 161
1. 학설 ····· 161
2. 판례 ····· 162
3. 검토 ····· 163
제3절 법인파산절차 진행 개요 ····· 164
1.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165
2. 제1회 채권자집회 ····· 165
3. 채권조사 ····· 166
4. 환가 및 배당 ····· 166
5. 파산절차의 종료(파산종결 또는 폐지) ····· 167
제4절 파산선고 단계 ····· 168
Ⅰ.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파산신청 여부 ····· 168
Ⅱ. 영업계속 허가 여부 ····· 169
Ⅲ. 자산의 조회 및 심리 ····· 170
1. 가상자산의 조회 ····· 170
2. 자산 및 부채의 심리 ····· 174
3.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 지급 ····· 175

Ⅳ. 채권 신고 및 조사, 부인의 청구 ····· 177
1. 채권의 신고 ····· 177
2. 채권의 조사 ····· 178
3. 부인의 청구 ····· 179
제5절 환가 및 배당 ····· 180
Ⅰ. 환가 ····· 180
1.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 180
2.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 181
Ⅱ. 배당 ····· 181
Ⅲ. 개선사항 ····· 182

제5장 결론 ····· 185

193.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4-12

연구책임자: 조 미 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7월 8일 발행

제1장 서론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연구의 구성 ····· 7

제2장 피해자의 재발견 ····· 9

제1절 피해자 지위의 변화 ····· 11
제2절 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국제적 추세 ····· 13
Ⅰ. UN의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 13
Ⅱ. 유럽연합 및 유럽평의회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지침 ····· 14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 15
제3절 제도의 방향성 ····· 17
Ⅰ. 피해자 보호필요성 ····· 18
Ⅱ. 피해자 참가필요성 ····· 19
1. 피해자 참가필요성을 둘러싼 논의 ····· 20
가. 피해자의 절차참가를 지지하는 견해 ····· 20
나. 피해자의 절차참가를 우려하는 견해 ····· 21

2. 피해자 참가필요성 검토 ····· 23
가. 정의실현의 욕구 ····· 23
나. 공정의 구현 ····· 24
다. 피해자참가 우려에 대한 검토 ····· 25
라. 소결 ····· 26
Ⅲ. 피해자 보호 및 참가의 한계 ····· 26

제3장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 29

제1절 피해자의 헌법상 지위 ····· 31
제2절 수사단계(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 33
Ⅰ. 피해자의 고소 ····· 33
1. 관련 규정 ····· 33
2. 실무운용현황 및 문제점 ····· 34
가. 고소장 반려 또는 인지사건으로의 접수 ····· 34
나. 고소 시점에 권리 및 형사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절차 미비 ····· 34
Ⅱ. 수사절차진행 중 피해자의 정보권 ····· 35
1.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 36
가. 관련 규정 ····· 36
나. 실무운용현황 ····· 38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의 문제점 ····· 40
2. 수사진행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 45
가. 관련 규정 ····· 45
나. 실무운용현황 ····· 46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47
Ⅲ. 수사의 진행 ····· 48
1. 피해자변호사 선임(선정) 및 조력 ····· 48
가. 제도적 의의 ····· 48
나. 피해자변호사의 선임 ····· 48
다.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선정 ····· 49
라. 피해자변호사의 수사절차상 권한 ····· 50
마.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51
2. 그 외 수사진행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 55
가.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진술조력인제도 ····· 55
나. 가명조서의 작성 ····· 57
Ⅳ. 경찰 및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 ····· 58
1. 수사결과(처분결과) 통지 ····· 58
가. 관련 규정 ····· 58
나. 실무운용현황 ····· 59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61

2.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사건 기록 열람·등사 ····· 64
가. 관련 규정 ····· 64
나. 실무운용현황 ····· 64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65
3. 피해자의 불복수단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66
가. 관련 규정 ····· 66
나. 실무운용현황 ····· 67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70
제3절 공판단계 ····· 73
Ⅰ. 공판준비절차 ····· 73
Ⅱ. 공판절차진행 중 피해자의 정보권 ····· 74
1. 피해자 및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통지 ····· 74
가. 관련 규정 ····· 74
나. 실무운용현황 ····· 75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76
2.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 ····· 78
가. 관련 규정 ····· 78
나. 실무운용현황 ····· 79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80
Ⅲ. 공판기일(증거조사) ····· 84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 84
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개정 ····· 84
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개정에 따른 실무변화 및 피해자보호의 한계 ····· 90
다.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예견되는 문제점 ····· 100
2. 피해자변호사의 법률상 조력 ····· 101
가. 공판절차상 권한 ····· 101
나. 피해자변호사의 기일출석 현황 ····· 102
다. 피해자변호사의 법정 내 좌석 위치 ····· 103
라. 피해자변호사의 출석 확인 여부 ····· 104
마.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106
3. 재판절차진술권 ····· 110
가. 관련 규정 ····· 110
나.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 ····· 111
다. 재판절차진술권 실무운용현황 ····· 113
라. 관련 규정 및 실무운용상 문제점 ····· 116
4. 기타 증인보호장치 ····· 121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및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 121

나. 피고인의 퇴정조치 ····· 126
다. 심리비공개 ····· 126
라.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증인지원시설 설치 ····· 127

제4장 해외 피해자 보호·참가현황 ····· 131

제1절 독일 ····· 133
Ⅰ. 피해자 보호·참가제도의 발전 ····· 133
Ⅱ. 피해자의 지위 ····· 134
Ⅲ. 부대공소제도 ····· 135
1. 의의 ····· 135
2. 부대공소권자 ····· 136
3. 부대공소의 절차 ····· 138
4. 부대공소인의 권한 ····· 139
가. 부대공소인의 절차상 권한 ····· 139
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40
5. 부대공소제도 운용현황 ····· 143
Ⅳ. 사인소추제도 ····· 144
1. 의의 ····· 144
2. 사인소추권자 ····· 144
3. 사인소추의 절차 ····· 146
가. 사인소추권자의 기소 ····· 146
나. 피범행혐의자에 대한 사인소추 통지 ····· 147
다. 공판개시의 결정 ····· 147
라. 비용 납부 및 담보 제공 ····· 147
4. 사인소추권자의 권한 ····· 148
가. 사인소추인의 지위 ····· 148
나. 일반적인 절차참여권 ····· 148
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49
Ⅴ. 그 외 피해자 보호제도 ····· 149
1. 증인보호제도 ····· 149
가. 증언의 녹음·녹화 ····· 149
나. 인격보호에 기한 질문권의 제한 ····· 150
다. 증인에 대한 변호사조력 ····· 151
라. 신뢰관계인의 동석 ····· 152
마. 분리 신문 및 신문 내용의 실시간 전송 ····· 152
바. 피범행혐의자의 배제 및 피고인의 퇴정 ····· 152
사. 비공개심리 ····· 153
2. 그 외 피해자의 참가제도 ····· 153
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153

나. 기록 열람권 ····· 154
다. 의견진술권 ····· 154
Ⅵ. 소결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55
제2절 프랑스 ····· 157
Ⅰ. 피해자 보호·참가제도의 발전 ····· 157
Ⅱ. 사소제도 ····· 158
1. 의의 ····· 158
2. 주체 ····· 158
3. 참가절차 ····· 159
4. 사소당사자의 권한 ····· 160
가.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 160
나. 의견진술권 ····· 160
다. 기타 증거조사참여권 ····· 161
Ⅲ. 그 외 피해자 보호·참가제도 ····· 162
1. 피해자 통지제도 ····· 162
가. 관련 규정 ····· 162
나. 통지제도의 전산화 ····· 164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64
3.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 165
4. 피해자지원국 ····· 166
가. 설치 ····· 166
나. 임무 ····· 166
다. 실제 운용사례 : 파리 지방법원 피해자지원국 ····· 167
라. 운용현황 ····· 167
Ⅳ. 소결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68
제3절 미국 ····· 170
Ⅰ. 피해자 보호·참가제도의 발전 ····· 170
Ⅱ. 피해자의 지위 ····· 171
Ⅲ. 일반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강제수단
– 범죄피해자권리법(CVRA)을 중심으로 ····· 172
1. 범죄피해자권리법상 피해자의 권리 ····· 172
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172
나.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 ····· 173
다.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 174
라. 진술할 권리 ····· 174
마. 검사와 상담할 권리 ····· 175
바. 배상받을 권리 ····· 175
사. 부당한 절차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175
아.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 ····· 176
자. 변호사의 조력 ····· 176

2. 직무집행영장 ····· 176
3. 범죄피해자권리법의 이행현황 ····· 177
가. 범죄피해자권리법상 피해자의 권리 ····· 177
나. 직무집행영장의 실효성 ····· 178
Ⅳ.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수단 ····· 178
1. 연방 강간피해자보호법 ····· 178
2. 비디오테이프 또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한 증인신문 ····· 179
Ⅴ. 피해자영향진술 ····· 180
1. 피해자영향증거의 도입 ····· 180
2. 피해자영향증거의 유형과 내용 ····· 181
3. 피해자진술증거의 행사 주체 ····· 182
4. 피해자진술증거 제출방법 ····· 182
5. 제도 운용 현황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182
가. Booth v. Maryland 사건 ····· 182
나. South Carolina v. Gathers 사건 ····· 183
다. Payne v. Tennessee 사건 ····· 183
Ⅵ. 소결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84
제4절 일본 ····· 186
Ⅰ. 피해자 보호·참가제도의 발전 ····· 186
Ⅱ. 피해자의 지위 ····· 187
Ⅲ.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제도 ····· 188
1.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 188
2. 차폐시설의 설치 ····· 188
3. 비디오 링크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189
4. 피해자 특정사항의 비공개 등 정보보호 ····· 191
5. 피해자 통지제도 ····· 191
6. 사법지원센터 ····· 192
가. 의의 ····· 192
나. 주요 업무 ····· 192
Ⅳ. 피해자참가제도 ····· 195
1.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 195
2. 피해자참가인의 범위 ····· 196
3. 피해자참가의 절차 ····· 197
4. 피해자참가인의 권한 ····· 197
가. 공판기일 출석 및 공판기일 통지 ····· 197
나.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 198
다. 증인신문권 및 피고인신문권 ····· 198
라. 사실 및 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진술권 ····· 199
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00
5. 피해자참가인 보호수단 ····· 203

가. 신뢰관계인의 동석 ····· 203
나. 차폐시설 등의 조치 ····· 203
6. 피해자참가제도 운용현황 ····· 204
가. 피해자참가 및 권한행사 현황 ····· 204
나. 사건명(죄명)별 피해자 참가현황 ····· 206
Ⅴ. 일반적인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 207
1. 방청권 ····· 207
2. 기록 열람·등사권 ····· 208
3. 의견진술권 ····· 209
Ⅵ. 소결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11

제5장 피해자 보호·참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215

제1절 수사단계(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 217
Ⅰ. 고소단계에서의 피해자 통지 ····· 217
Ⅱ. 수사절차진행 중 피해자 정보권 보장방안 ····· 218
1.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및 수사기관 소통부족의 개선방안 ····· 218
가. 법률상 수사진행상황의 통지규정의 마련 ····· 218
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 ····· 218
다. 수사관의 인식 개선 도모 ····· 219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의 법정대리인 통지규정 개선방안 ····· 220
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의 법정대리인 통지규정 개선안 ····· 220
나. 검토 ····· 221
Ⅲ. 피해자변호사제도 개선방안
: 피해자변호사의 선임(선정) 및 수사절차상 참여권한을 중심으로 ····· 222
1. 일반적 근거 규정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222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 223
나. 법관, 변호사 등 의견 ····· 226
다. 비교법적 검토 ····· 227
라. 피해자변호사제도 대상사건에 대한 검토 ····· 228
2. 피해자변호사의 수사절차상 권한에 대한 검토 ····· 232
3.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 출석 및 의견진술 개선방안 ····· 233
Ⅳ. 불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33
1. 통지의 상대방 : 원칙적 피해자 ····· 233
2. 피해자 신청을 전제로 한 통지제도의 적절성 ····· 234
가. 피해자의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 234
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 235
다. 검토 ····· 236
3. 경찰, 검찰, 법원 사이의 유기적인 통지체계 구축 ····· 237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사건조회의 개선 ····· 237

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자동문자발송시스템의 활성화 ···· 239
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 239
4.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사건 기록 열람의 허용 ····· 239
5. 피해자의 공소유지활동에의 참여 ····· 241
제2절 공판단계 ····· 243
Ⅰ. 공판절차진행 중 피해자 정보권의 보장방안 ····· 243
1. 피해자 통지제도 개선방안 ····· 243
가.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통지규정의 재정비 ····· 243
나. 법원의 사건조회시스템 추가 안내 ····· 244
다. 피해자 신청을 전제로 한 통지제도의 적절성 ····· 245
2. 소송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방안 ····· 245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토 ····· 246
나. 법관,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등 의견 ····· 249
다. 비교법적 검토 ····· 251
라.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개선방안 검토 ····· 252
Ⅱ. 개정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 257
1.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 257
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 257
나. 증인신문사항 사전검토 ····· 259
2.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의 활용 ····· 260
Ⅲ. 피해자변호사제도 개선방안 : 공판절차상 참여권한 및 처우를 중심으로 ··· 261
1. 피해자변호사 공판절차상 권한에 대한 검토 ····· 262
가. 이의제기권의 명문화 ····· 262
나. 증인신문권 및 피고인신문권에 대한 검토 ····· 263
2. 공판절차에 참가하는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배려 ····· 263
가. 피해자변호사 출석확인절차 ····· 263
나. 피해자변호사의 법정 내 좌석 위치 ····· 264
Ⅳ. 재판절차진술권 보장방안 ····· 265
1. 의견진술의 범위에 대한 검토 ····· 265
2.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실효성 확보 방안 ····· 267
3.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절차 마련 방안 ····· 269
4. 피해자가 서면으로 현출한 의견진술의 법적 취급 방안 ····· 270
5. 피해자 보호규정의 준용 ····· 271
6. 재판절차진술권의 홍보 ····· 271

제6장 결어 ····· 273

194.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연구총서 2024-13

연구책임자: 권 미 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8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Ⅰ. 금융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 3
Ⅱ. 금융법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 법제의 개관 ·····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와 내용 ····· 8
1. 연구의 범위 ····· 8
2. 연구의 내용 ····· 10
Ⅱ. 연구의 방법 ····· 11
1. 문헌연구 ····· 11
2. 사건연구 ····· 11
3. 인터뷰 ····· 11
4.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과 분담 ····· 11

제2장 집단적 금융투자피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대한 실증적 분석 ····· 13

제1절 금융투자 관련 법제도 일반 ····· 15
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 15
1.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경과와 목적 ····· 15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정 ····· 16
Ⅱ. 분쟁해결절차 ····· 19
1. 일반민사소송과 증권집단소송 ····· 19

2.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 23
제2절 집단적 금융투자소송의 현황 ····· 26
Ⅰ. 집단적 금융투자소송의 특징 ····· 26
Ⅱ.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사례 ····· 27
1. 유형별 사건들의 분포 ····· 27
2. 주요 사건의 분석 ····· 31
가. 키코 사건 ····· 31
나.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 33
다. 대우조선해양 사건 ····· 36
Ⅲ. 증권집단소송 사례 ····· 40
1. 증권집단소송의 현황 ····· 40
가. 소요된 기간 ····· 43
나. 분배금의 규모 ····· 46
다. 구성원 및 분배받은 투자자들의 수 ····· 49
라. 평가 ····· 50
2. 주요 사건의 분석 ····· 50
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사건(2번) ····· 51
나. 씨모텍 사건(3번) ····· 54
다. 지에스건설 사건(6번) ····· 57
Ⅳ.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61
1. 조정신청처리의 현황 ····· 61
2. 주요 사건의 분석 ····· 63
가. 키코 사건 ····· 63
나.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 ····· 65
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 69
제3절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 ····· 73
Ⅰ. 법원을 통한 집단적 소송절차 ····· 73
1. 일반 민사소송과의 비교 ····· 73
2. 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설정 ····· 75
Ⅱ. 감독기관 등을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 77
1.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평가 ····· 77
2.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의 필요성 ····· 78

제3장 각국의 사후적 금융투자 피해구제 체계 ····· 81

제1절 미국 ····· 83
Ⅰ. 투자자의 사후적 보호제도 ····· 83
1. 개관 ····· 83
2. 투자자의 피해보상 권리 ····· 85
가. 제정법상 청구권 ····· 86

나. 판례법상 청구권 ····· 88
Ⅱ.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절차-집단소송 ····· 89
1. 개관 ····· 89
2. 집단소송 관련 법규 및 소송상 쟁점 ····· 90
가. 집단소송 관련 법규 ····· 90
나. 집단소송에서의 쟁점 ····· 92
3. 운영현황 ····· 96
가. 연방집단소송의 현황 ····· 96
나. 연방증권집단소송의 종국원인 ····· 97
다. 집단소송 허가결정 및 소송종국까지의 기간 ····· 100
라. 화해금의 규모 등 ····· 101
Ⅲ. 감독기관을 통한 피해구제절차 ····· 105
1. SEC의 권한과 역할 ····· 105
2. 투자자피해보상기금 관련 규정과 절차 ····· 109
3. 투자자피해보상기금의 운영현황 ····· 111
가. 분배금의 규모 ····· 111
나. 분배에 소요되는 기간 ····· 111
4. 투자자피해보상기금에 대한 평가 ····· 113
가. 감독기관에 의한 투자자피해구제의 정당성 ····· 113
나. 구제수단으로서의 적절성 ····· 114
제2절 영국 ····· 116
Ⅰ. 투자자의 사후적 보호제도 ····· 116
1. 개관 ····· 116
2.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 권리 ····· 117
가. 금융법상 청구 ····· 117
나. 판례법상 청구 ····· 119
Ⅱ.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절차 ····· 119
1. 영국법원에서 금융투자소송의 중요성 ····· 119
2. 전담법원의 설치 ····· 120
3. 집단적 소송제도-표본소송 ····· 122
가. 관련 규정 ····· 122
나. 금융투자 관련 표본소송 ····· 124
Ⅲ. 감독기관을 통한 피해구제절차 ····· 127
1. FCA의 권한과 역할 ····· 127
2. 금융소비자피해배상절차 ····· 127
가. 근거법령 ····· 127
나. Arch cru Fund 사건 ····· 128
다. 영국철강연금 사건 ····· 129
라. 소결 ····· 132
3. 배상명령제도 ····· 132

가. 근거 규정 ····· 132
나. 사례 ····· 133
4. 금융옴부즈만서비스 ····· 134
제3절 독일 ····· 137
Ⅰ. 투자자의 사후적 보호제도 ····· 137
1. 개관 ····· 137
2. 투자자의 피해보상 권리 ····· 137
가. 금융법 ····· 137
나. 민법 ····· 139
Ⅱ.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절차-집단적 소송제도 ····· 143
1. 개관 ····· 143
2. 자본투자자의 표본소송 ····· 143
가. 법률과 절차 ····· 143
나. 표본소송의 현황 ····· 146
3. 단체소송 ····· 151
가. 입법경위 ····· 151
나. 요건과 절차 ····· 152
다. 검토 ····· 156
4. 채권양도계약을 통한 민사소송법상 청구 ····· 157
Ⅲ. 감독기관 등의 역할 ····· 157
1. 독일 연방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역할 ····· 157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 158
제4절 일본 ····· 163
Ⅰ. 금융규제 및 금융투자자 보호 체계 ····· 163
1. 개관 ····· 163
2. 투자자의 피해보상 권리 ····· 164
가. 금융서비스제공법 ····· 164
나. 금융상품거래법 ····· 165
Ⅱ.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절차 ····· 166
1. 단체소송제도 ····· 166
가. 집단적 분쟁해결의 필요성 ····· 166
나.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에 의한 규제 ····· 167
2. 공통의무확인소송 ····· 170
가. 당사자 ····· 170
나. 청구의 대상 ····· 171
다. 심판대상(소송물) ····· 172
라. 확정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 ····· 172
마. 소송상 화해 ····· 173
3. 간이확정절차 ····· 174
가. 개념 ····· 174

나. 절차 ····· 174
4.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에 따른 소송의 현황 ····· 175
Ⅲ. 감독기관을 통한 피해구제절차 ····· 178
1. 금융소비자보호기관 ····· 178
가. 금융청(金融庁) ····· 178
나. 소비자청 ····· 178
2. 분쟁해결기관 ····· 179
가. 제도의 도입 ····· 179
나. 지정분쟁해결기구 ····· 179
다. 분쟁해결절차 ····· 180
라. 현황 ····· 180
3. 투자자보호기금 ····· 183
가. 개요 ····· 183
나. 기금의 권한 ····· 184
다. 보상 범위 ····· 184
라. 기금의 재원과 보상현황 ····· 185
제5절 시사점 ····· 187
Ⅰ.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절차 ····· 187
1. 미국과의 비교 ····· 187
2. 영국과의 비교 ····· 189
3. 독일과의 비교 ····· 191
4. 일본과의 비교 ····· 192
Ⅱ. 감독기관의 역할 ····· 193
Ⅲ. 소결 ····· 195

제4장 집단적 금융투자소송의 실무 운용 방안 ····· 197

제1절 증거수집 및 조사절차의 개선방안 ····· 199
Ⅰ. 서설 ····· 199
Ⅱ.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 199
1. 문서제출명령 ····· 201
가. 요건의 심리 ····· 201
나. 불응시 효과 ····· 203
2. 증거보전제도 ····· 205
Ⅲ. 전문가의 활용 ····· 206
1. 전문가 증언 ····· 207
2. 전문심리위원 ····· 208
가. 제도의 개요 및 활용현황 ····· 208
나. 개선방안 ····· 210
제2절 사건의 집중 및 관리 방안 ····· 212

Ⅰ. 공통 쟁점 사건의 집중 방안 ····· 212
1. 선택 가능한 방안들 ····· 213
가. 한 재판부가 선행소송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방법(제1안) ····· 213
나. 한 재판부가 관련 소송을 병합하는 방법(제2안) ····· 214
다. 다수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제3안) ····· 215
2. 비교 및 제안 ····· 215
가. 3가지 방안의 비교·검토 ····· 215
나. 운용방식 ····· 218
다. 보완사항 ····· 219
Ⅱ. 사건의 관리 방안 ····· 222
1. 당사자들에 의한 사건설명기일 운용 ····· 222
가. 필요성 ····· 222
나. 운용방식 ····· 224
2. 법원 중심의 사건관리 ····· 224
가. 직권적인 절차진행 ····· 224
나. 인적자원의 유연한 활용 ····· 225

제5장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관련 법 개정안 ····· 227

제1절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 229
Ⅰ. 개정의 필요성 ····· 229
Ⅱ. 소송허가신청제도의 개선-즉시항고로 인한 지연의 문제 ····· 230
Ⅲ. 증거수집방식의 개선 ····· 234
1. 증거개시제도의 도입논의 ····· 234
2. 특례규정의 필요성 ····· 236
3. 특허법 등의 자료제출명령과 문서제출명령 개정안 ····· 238
가. 특허법 등의 자료제출명령의 검토 ····· 238
나.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개정안의 검토 ····· 241
다. 소결 ····· 243
4. 진술녹취제도의 도입 ····· 244
5. 유관기관에 대한 기록의 송부 및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 246
가. 기록의 송부 ····· 246
나.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 247
제2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 249
Ⅰ. 감독기관에 의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의 필요성 ····· 249
Ⅱ. 미국과 영국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 250
1. 주요 내용의 비교 ····· 250
2. 우리나라 투자자 피해구제 관련 시사점 ····· 251
Ⅲ. 제도의 설계방안 ····· 253
1. 신설 제도의 기본 요소 ····· 253

2. 부당이득환수의 소 세부 설계방안 ····· 257
가. 소송의 요건과 절차 ····· 257
나. 부당이득 분배절차 ····· 258
다. 법 개정안 ····· 259

제6장 결론 ····· 263

195.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14

연구책임자: 김 정 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9월 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 4

제2장 스마트계약 일반론 ····· 5

제1절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 7
Ⅰ. 블록체인의 개념 ····· 7
Ⅱ.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 8
Ⅲ. 블록체인의 발전 ····· 12
Ⅳ. 블록체인의 유형 ····· 15
Ⅴ. 블록의 구조 ····· 16
Ⅵ.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관계 ····· 22
제2절 스마트계약의 개념 및 특징 ····· 24
Ⅰ. 블록체인 이전의 스마트계약 ····· 24
Ⅱ. 블록체인 이후의 스마트계약 ····· 26
Ⅲ. 특징을 기초로 한 스마트계약의 개념 정의 ····· 29
Ⅳ. 일반 계약과 스마트계약의 차이 ····· 30
Ⅴ. 비교개념 ····· 30
Ⅵ. 스마트계약의 특징 ····· 38
Ⅶ. 스마트계약의 유형 ····· 47
제3절 스마트계약의 구조 ····· 50
Ⅰ. 스마트계약의 동작 방식 ····· 50
Ⅱ. 계약체결 절차 ····· 52

Ⅲ. 스마트계약의 구조 ····· 55
Ⅳ.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계약의 동작 방식 ····· 62
제4절 스마트계약의 활용 ····· 63
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 63
Ⅱ. 헬스케어 서비스 ····· 65
Ⅲ. 온라인 투표 ····· 65
Ⅳ. 보험금 청구 ····· 66
Ⅴ. 저작권 관련 ····· 70
Ⅵ. 고용계약 ····· 71
Ⅶ. 부동산 시장 관련 ····· 71
Ⅷ. 물류 관리 ····· 72
Ⅸ. 거래 활동 관리 ····· 74
Ⅹ. 기록보관 ····· 76
Ⅺ. 금융 ····· 76

제3장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 ····· 79

제1절 코드와 법의 관계 ····· 81
Ⅰ. “Code is Law(코드는 법이다).”라는 명제 ····· 81
Ⅱ.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에서의 “Code is Law” ····· 83
Ⅲ. “Code is Law”에 대한 비판적 견해 ····· 83
Ⅳ. 소결 ····· 84
제2절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 84
Ⅰ. 들어가며 ····· 84
Ⅱ. 학설 ····· 85
Ⅲ. 스마트계약의 계약유형 ····· 90
제3절 스마트계약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 ····· 91
Ⅰ. 문제의 제기 ····· 91
Ⅱ.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 92
Ⅲ. 준거법의 문제 ····· 94
제4절 스마트계약의 국내법적 규율 ····· 94
Ⅰ. 스마트계약의 오류 발생시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 ····· 94
Ⅱ. 민법상 계약법리의 적용 ····· 95
Ⅲ. 계약의 해지·해제 문제 ····· 113
Ⅳ. 소비자 보호 문제 ····· 117
Ⅴ. 스마트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 127
Ⅵ. 스마트계약과 전자계약 ····· 132
제5절 스마트계약에 의한 분쟁해결 ····· 135
Ⅰ. 스마트계약과 분쟁 발생 가능성 ····· 135

Ⅱ. 스마트계약 관련 분쟁 유형 ····· 136
Ⅲ. 스마트계약 관련 분쟁과 기존 분쟁해결수단의 정합성 ····· 138
Ⅳ. 스마트계약 기반 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 및 그 사례 ····· 139

제4장 스마트계약의 규율을 위한 방안 ····· 149

제1절 스마트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151
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151
Ⅱ. 법적 근거 마련의 방안 ····· 152
Ⅲ. 스마트계약 규율에 관한 각국의 입법 태도 ····· 152
Ⅳ. 스마트계약 규율을 위한 스마트계약 기본법의 제정 ····· 162
제2절 스마트계약 기술의 표준화 ····· 165
Ⅰ. 스마트계약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 ····· 165
Ⅱ. 스마트계약 기술의 표준화 사례
– ISO/TC 307에서의 스마트계약 기술 표준화 ····· 166
제3절 스마트계약 관련 개인정보보호 조치 마련 ····· 169
Ⅰ. 개인정보보호 조치 마련의 필요성 ····· 169
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 사례 ····· 171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의 내용 ····· 175

제5장 결론 ····· 177

196.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총서 2024-15

연구책임자: 안 원 주(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9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Ⅰ. 연구의 범위 ····· 6
Ⅱ. 연구의 방법 ····· 6
Ⅲ.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7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8

제2장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의미 및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 ····· 9

제1절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출생등록의 의미 ····· 11
Ⅰ. 개관 ····· 11
Ⅱ. 출생의 의미 ····· 11
1. 생물학적, 윤리적 의미 ····· 11
2. 법적인 의미 ····· 11
3. 사회적 의미 ····· 12
Ⅲ.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념 및 기능 ····· 12
1. 개념 ····· 12
2. 기능 ····· 14
가. 신분관계 증명 기능 ····· 14
나. 사실상 국적부로서의 기능 ····· 16

Ⅳ.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 18
1. 처리에 관한 권한 ····· 18
2. 감독에 관한 권한 ····· 19
Ⅴ. 가족관계등록제도상 출생등록의 의미 ····· 20
1. 신고, 통보, 등록의 의미 ····· 20
2. 출생신고, 출생통보, 출생등록의 의미 ····· 22
제2절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의미 ····· 23
Ⅰ. 개관 ····· 23
Ⅱ. 국제규범상의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 23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23
가. 서설 ····· 23
나. 구체적인 내용 ····· 24
다. 우리나라 의무이행 상황 ····· 26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27
가. 서설 ····· 27
나. 구체적인 내용 ····· 28
다. 우리나라 의무이행 상황 ····· 30
3. 그 외의 국제규범 ····· 32
4. 소결 ····· 33
Ⅲ.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 34
1.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 34
가. 결정대상 사안의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 34
나. 대법원의 판단 ····· 35
다. 대법원 결정의 의의 ····· 36
2.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전원재판부 결정 ····· 37
가. 심판대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 37
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 38
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 39
Ⅳ.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요건 ····· 40
제3절 출생통보제 도입 및 이에 따른 변화 ····· 42
Ⅰ. 개관 ····· 42
Ⅱ. 도입 배경 ····· 42
1. 사회적 배경 ····· 42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43
3.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 및 정부안 발의 ····· 45
4. 감사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 45
Ⅲ. 출생통보제 내용 ····· 47
Ⅳ.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 및 의미 ····· 55
1.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 ····· 55
가.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혼인 중인 경우 법률상 부에게 최고 ····· 55
나. 직권 등록 시 친생추정에 의한 부 기록 ····· 55
다. 외국인 모의 출생정보 통보 ····· 56

라. 모의 의료기관 기피 ····· 56
2. 출생통보제 도입의 의미 ····· 57

제3장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59

제1절 출생신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61
Ⅰ. 개관 ····· 61
Ⅱ. 출생신고 관련 현황 ····· 61
1. 출생신고 건수 현황 ····· 61
2. 출생신고 기간 현황 ····· 62
Ⅲ. 출생신고제도 관련 설문조사 ····· 64
1. 서설 ····· 64
2. 출생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64
가. 설문조사 개요 ····· 64
나. 서면 출생신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65
다. 온라인 출생신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76
3.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6
가. 설문조사 개요 ····· 86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6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 91
Ⅳ. 출생신고인 관련 문제점 ····· 94
1. 서설 ····· 94
2.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구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95
가. 현황 ····· 95
나. 문제점 ····· 95
3. 후순위 출생신고의무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97
가. 현황 ····· 97
나. 문제점 ····· 99
4. 출생신고적격자로서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00
가. 제도의 도입 및 현황 ····· 100
나. 문제점 ····· 101
Ⅴ. 출생신고 기재사항 관련 문제점 ····· 103
1.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03
가. 현황 ····· 103
나. 온라인 출생신고의 특수성 ····· 104
다. 문제점 ····· 106
2. 부 또는 모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의 이름 기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07
가. 현황 ····· 107
나. 문제점 ····· 108
Ⅵ.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관련 문제점 ····· 108
1.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08
가. 서설 ····· 108
나. 제도의 도입 및 현황 ····· 109

(1) 인우보증제도 폐지 및 출생확인제도 도입 ····· 109
(2)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확대 ····· 114
다. 문제점 ····· 116
2.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혼인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17
가. 현황 ····· 117
나. 문제점 ····· 117
Ⅶ. 출생신고 방법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19
1.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도입 및 현황 ····· 119
가.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도입 ····· 119
나.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확대 ····· 122
2. 문제점 ····· 124
가. 온라인 출생신고 범위 확대 관련 문제점 ····· 124
나. 국민의 선택권 보장 관련 문제점 ····· 125
Ⅷ. 소결 ····· 127
제2절 부모 기록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29
Ⅰ. 서설 ····· 129
Ⅱ. 친생추정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30
1. 친생추정 범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30
가. 현황 ····· 130
나. 문제점 ····· 131
2. 출생자의 지위 및 부 기록 근거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33
가. 현황 ····· 133
나. 문제점 ····· 134
3.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35
가. 현황 ····· 135
나. 문제점 ····· 137
Ⅲ. 생부(生父)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37
1. 서설 ····· 137
2. 제도의 도입 및 현황 ····· 140
가. 모불상 출생신고제도 폐지 ····· 140
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제도 도입 ····· 142
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제도 확대 ····· 147
3. 문제점 ····· 150
가. 서설 ····· 150
나. 친생부인의 소 관련 문제점 ····· 152
다. 인지의 허가 청구 관련 문제점 ····· 156
Ⅳ. 소결 ····· 159
제3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61
Ⅰ. 서설 ····· 161
Ⅱ.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현황 ····· 162
1.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규모 ····· 162
가. 체류 외국인 규모 ····· 162
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 규모 ····· 164

2. 미등록 사유 관련 현황 ····· 165
Ⅲ.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국민적 인식 ····· 166
1.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설문조사 ····· 166
2. 다문화수용성 지수 및 조사 ····· 168
가.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 168
나. 조사 방법 및 결과 분석 ····· 170
Ⅳ.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의 필요성 ····· 171
1. 인권적 필요성 ····· 171
2. 정책적 필요성 ····· 174
Ⅴ. 현행 제도의 한계 ····· 177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한계 ····· 177
2. 주민등록제도의 한계 ····· 179
3. 외국인등록제도의 한계 ····· 181
Ⅵ. 소결 ····· 183
제4절 보호출산 관련 현황 ····· 185
Ⅰ. 서설 ····· 185
Ⅱ. 구체적인 내용 ····· 186
1. 적용범위 ····· 186
가. 목적 ····· 186
나. 적용대상 및 보호출산의 의미 ····· 187
2. 절차 ····· 188
가. 단계적인 상담 제공 ····· 189
나. 보호출산 또는 아동보호조치 신청 ····· 190
다. 보호출산 또는 아동보호조치에 의한 출생등록 ····· 191
라. 미성년후견선임 및 입양절차 ····· 193
3. 출생증서 작성 및 자녀의 출생증서 공개청구 ····· 194
가. 출생증서 작성 ····· 194
나. 자녀의 출생증서 공개청구 ····· 194

제4장 해외입법례 ····· 197

제1절 서설 ····· 199
제2절 독일 ····· 201
Ⅰ. 출생등록 관련 사항 ····· 201
1. 관련 법률 및 관장 기관 ····· 201
2. 구체적인 내용 ····· 202
가. 출생신고인 ····· 202
나. 출생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205
다. 출생신고 방법 ····· 207
라. 출생등록의 증명 ····· 208
마. 출생신고 의무기간 및 의무불이행 시 제재 ····· 208
Ⅱ. 친생추정제도 관련 사항 ····· 209
1. 모자관계 ····· 210

2. 부자관계 ····· 210
가. 모의 혼인관계에 의한 부자관계 성립 ····· 211
나. 인지에 의한 부자관계 성립 ····· 213
다. 부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에 의한 부자관계 성립 ····· 213
3. 부성부인 ····· 214
가. 부성부인권자 ····· 215
나. 부성부인 기간 ····· 218
다. 부성부인의 효력 ····· 219
Ⅲ. 외국인 아동 관련 사항 ····· 219
1. 국적제도 ····· 219
2.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 220
Ⅳ. 신뢰출산 관련 사항 ····· 220
1. 배경 ····· 220
2. 절차 ····· 222
가. 단계적인 상담 제공 ····· 222
나. 혈통증서 작성 및 신뢰출산 ····· 223
다. 신뢰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등록 ····· 224
라. 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입양절차 ····· 224
3. 자녀의 혈통증서 열람 ····· 225
4. 생부의 권리 ····· 226
5. 신뢰출산에 대한 평가 ····· 227
Ⅴ. 시사점 ····· 228
제3절 프랑스 ····· 231
Ⅰ. 출생등록 관련 사항 ····· 231
1. 관련 법률 및 관장 기관 ····· 231
2. 구체적인 내용 ····· 232
가. 출생신고인 ····· 232
나. 출생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233
다. 출생신고 방법 ····· 234
라. 출생등록의 증명 ····· 235
마. 출생신고 의무기간 및 의무불이행 시 제재 ····· 236
Ⅱ. 친생추정제도 관련 사항 ····· 237
1. 친자관계의 성립 ····· 237
가. 모의 혼인관계에 의한 부성추정 ····· 238
나.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 성립 ····· 239
다. 신분점유에 의한 친자관계 성립 ····· 240
2. 친자관계 부인 ····· 241
Ⅲ. 외국인 아동 관련 사항 ····· 243
1. 국적제도 ····· 243
2.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 244
Ⅳ. 익명출산 관련 사항 ····· 245
1. 배경 ····· 245
2. 절차 ····· 246
가. 정보 제공 및 사회적 지원 ····· 246

나. 입원과 출산 ····· 247
다. 친권포기 및 신원에 대한 정보 봉인 ····· 247
라. 숙려기간의 진행 ····· 248
3. 자녀의 출생정보 공개청구 ····· 249
4. 생부의 권리 ····· 250
Ⅴ. 시사점 ····· 253

제5장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255

제1절 출생신고 관련 개선방안 ····· 257
Ⅰ. 서설 ····· 257
Ⅱ. 출생신고인 관련 개선방안 ····· 257
1. 혼인 중 출생자 및 혼인 외 출생자 구별 관련 개선방안 ····· 257
가. 개선방향 ····· 257
나. 개선안 ····· 260
(1)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관련 개선안 ····· 260
(2) 생부의 인지 효력 있는 출생신고 관련 개선안 ····· 261
2. 후순위 출생신고의무자 관련 개선방안 ····· 264
가. 개선방향 ····· 264
나. 개선안 ····· 265
3. 출생신고적격자로서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개선방안 ····· 267
가. 개선방향 ····· 267
나. 개선안 ····· 267
Ⅲ. 출생신고 기재사항 관련 개선방안 ····· 271
1.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관련 개선방안 ····· 271
가. 개선방향 ····· 271
나. 개선안 ····· 272
2. 부 또는 모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의 이름 기재 관련 개선방안 ····· 275
가. 개선방향 ····· 275
나. 개선안 ····· 276
Ⅳ.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관련 개선방안 ····· 277
1.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관련 개선방안 ····· 277
가. 개선방향 ····· 277
나. 개선안 ····· 277
2.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혼인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관련 개선방안 ····· 280
가. 개선방향 ····· 280
나. 개선안 ····· 280
Ⅴ. 출생신고서 서식 관련 개선방안 ····· 282
1. 개선방향 ····· 282
2. 개선안 ····· 282
가. 출생자 관련 개선안 ····· 282
나. 부모 관련 개선안 ····· 284
다. 신고인 등 관련 개선안 ····· 285

라. 작성방법 안내 관련 개선안 ····· 286
마. 첨부서류 안내 관련 개선안 ····· 289
Ⅵ. 출생신고 방법 관련 개선방안 ····· 290
1. 개선방향 ····· 290
2. 개선안 ····· 291
가. 온라인 출생신고 범위 확대 관련 개선안 ····· 291
나. 국민의 편의성 및 선택권 보장 관련 개선안 ····· 292
Ⅶ. 그 외의 개선방안 ····· 294
1. 과태료 관련 개선방안 ····· 294
가. 출생신고 의무기간 ····· 294
나. 과태료 관련 개선안 ····· 294
2. 출생등록 유예 상태에서의 아동보호 관련 개선방안 ····· 297
3. 다태아 출생신고 관련 개선방안 ····· 299
4. 재외국민 관련 개선방안 ····· 300
5. 출생신고 관련 안내자료 또는 매뉴얼 작성 ····· 302
Ⅷ. 소결 ····· 303
제2절 부모 기록 관련 개선방안 ····· 317
Ⅰ. 개관 ····· 317
Ⅱ. 친생추정 관련 개선방안 ····· 318
1. 서설 ····· 318
2. 현황 ····· 318
가. 제도적·사회적 변화 ····· 318
나.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이내 출생자 현황 ····· 320
다.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자 현황 ····· 320
3. 해외 입법례 ····· 322
4. 개선방향 ····· 323
가. 친생추정 범위 관련 개선방향(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자) ···· 323
나. 출생자의 지위 및 부 기록 근거 관련 개선방향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이내 출생자) ····· 325
다.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 관련 개선방향 ····· 327
5. 개선안 ····· 327
가. 민법 개정안 ····· 327
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 328
다.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안 ····· 329
Ⅲ. 생부의 출생신고 관련 개선방안 ····· 329
1. 친생부인의 소 관련 개선방안 ····· 329
가. 서설 ····· 329
나. 해외입법례 ····· 331
다. 개선방향 ····· 332
(1) 자녀의 친생부인권 ····· 333
(2) 생부의 친생부인권 ····· 334
라. 개선안 ····· 334
2. 인지의 허가 청구 관련 개선방안 ····· 337
Ⅳ. 그 외의 개선방안 ····· 339

Ⅴ. 소결 ····· 342
제3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개선방안 ····· 349
Ⅰ. 서설 ····· 349
Ⅱ.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개선방안 ····· 349
1. 등록의 모습 ····· 349
2. 등록되는 아동의 범위 ····· 350
가. 아동의 범위 ····· 350
나.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 ····· 351
다. 국적상실로 사후적으로 외국인이 된 아동 ····· 352
3. 불법체류자 발견 통보의무 면제 등 ····· 352
4. 관장 ····· 353
5. 출생신고 기간 및 직권 출생등록 ····· 355
가. 신고의무 및 과태료 ····· 355
나. 출생통보제 적용 ····· 355
6. 등록 및 증명의 내용 ····· 357
7. 그 외의 사항 ····· 358
제4절 보호출산 관련 고려사항 ····· 359
Ⅰ. 서설 ····· 359
Ⅱ. 고려사항 ····· 359
1. 본질적인 목적 ····· 359
2. 단계적인 상담 제공 관련 고려사항 ····· 361
3. 보호출산의 신청 관련 고려사항 ····· 362
가. 위기산부의 신청 관련 고려사항 ····· 362
나. 보호자의 신청 관련 고려사항 ····· 362
4. 자녀의 출생증서 공개청구 관련 고려사항 ····· 363
5. 생부의 권리 관련 고려사항 ····· 365

제6장 결론 ····· 367

197.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연구총서 2024-16

연구책임자: 허 성 욱(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2월 1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행정의 법집행 방식 변화 가능성 ····· 3
제2절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처분 사례의 증가 ····· 4
Ⅰ. 국내 사례 ····· 4
1.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 전자심사 24 ····· 4
2. 일부 자동화된 시스템 ····· 4
가.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 ····· 4
나. 식품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을 적용한 수입통관검사시스템 ····· 5
다.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 ····· 6
Ⅱ. 해외 사례 ····· 7
1. 중국 ····· 7
2. 미국 ····· 7
제3절 사법심사에 관한 문제의식 ····· 9

제2장 인공지능의 기술적 이해 ····· 11

제1절 인공지능의 개념 체계도 ····· 13
Ⅰ. 머신러닝 ····· 13
Ⅱ. 표현학습/특징학습 ····· 14
Ⅲ. 딥러닝 ····· 14
제2절 인공지능의 시대적 발전 ····· 17

Ⅰ. 인공지능의 발전사 ····· 17
Ⅱ. 오늘날의 인공지능 ····· 19

제3장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의 의사결정 ····· 21

제1절 행정의 의사결정 개요 ····· 23
Ⅰ. 법적 추론 ····· 23
1. 사실관계의 획정 ····· 23
2. 규범적 판단 ····· 23
3. 포섭 ····· 24
4. 법률의 적용 ····· 24
5. 사법심사 ····· 24
Ⅱ. 행정행위 ····· 24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5
2. 수익적 행위와 침익적 행위 ····· 25
3. 자동화된 행정의 의사결정 ····· 26
Ⅲ. 법률 체계 ····· 27
1. 법률의 출처에 따른 차이 ····· 27
2. 법원의 역할에 따른 차이 ····· 28
제2절 행정의 의사결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 29
Ⅰ. 과거 인공지능과 현대 인공지능 ····· 29
1. 과거 인공지능 ····· 29
2. 현대 인공지능 ····· 29
Ⅱ. 인공지능이 적용된 행정의 의사결정 ····· 30
1. 행정 의사결정의 고도화된 자동화 ····· 30
2. 행정 의사결정의 완전한 대체가능성 ····· 31
Ⅲ. 향후 활용 가능성 ····· 33
1. 법률정보 추출 ····· 33
2. 법률 규범의 분류 ····· 33
3. 법률 텍스트 분석 ····· 34
4. 법률 지능형 인터페이스 ····· 34
5. 의사결정 과정 개선 ····· 34
6. 불확실성 해결 ····· 34
제3절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의 의사결정 관련 주요 쟁점 ····· 36
Ⅰ. 법규사항과 비법규사항 ····· 36
Ⅱ. 법치행정의 원리 ····· 36
Ⅲ. 위임입법의 원리 ····· 37
1. 사이버위임(Cyber-delegation) ····· 37
2. 데이터위임(Data-delegation) ····· 38
Ⅳ. 경찰행정 ····· 38
Ⅴ. 급부행정 ····· 39

Ⅵ. 명확성의 원칙 ····· 39
1. 명확성의 기준 완화 주장 ····· 39
2. 명확성의 기준 제한적 강화 주장 ····· 41
3. 정보통신기술을 고려한 주장 ····· 42
Ⅶ. 적법 절차의 원칙 ····· 43
Ⅷ. 재량, 판단여지 및 재량권 일탈남용 ····· 44
Ⅸ. 책임성 ····· 45
1. 알고리즘 의사결정과 책임성 ····· 45
2. 책임성의 귀속주체 ····· 45
3. 국가배상책임 ····· 45
4. Black Box 문제 –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 46
Ⅹ.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 47
Ⅺ. 행정절차법상의 문제 ····· 48

제4장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51

제1절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해석규범 ····· 53
Ⅰ. 재량권의 일탈, 남용 판단 ····· 53
Ⅱ. 재량권의 불행사 통제 ····· 53
Ⅲ.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 ····· 54
Ⅳ. 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 54
Ⅴ.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 54
Ⅵ. 영미법계 사법심사 해석규범 ····· 55
1. Chevron Deference ····· 55
2. Skidmore Deference ····· 56
3. Arbitrary and Capricious test ····· 56
4. De Novo test ····· 56
5. 요약 ····· 57
Ⅶ.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관련 미국 내 판례의 흐름 ····· 58
1. Skidmore 판결(1944) ····· 58
가. 사실관계 ····· 58
나. 판시내용 ····· 58
다. 분석 ····· 59
2. Overton Park 판결(1971) ····· 59
가. 사실관계 ····· 59
나. 판시내용 ····· 60
다. 분석 ····· 61
3. State Farm 판결(1983) ····· 62
가. 사실관계 ····· 62
나. 판시내용 ····· 62
다. 분석 ····· 63

4. Prometheus Radio Project 판결(2021) ····· 64
가. 사실관계 ····· 64
나. 판시내용 ····· 64
다. 분석 ····· 65
5. Chevron 판결(1984) ····· 65
가. 사실관계 ····· 65
나. 판시내용 ····· 66
(1) Chevron Step 1 ····· 66
(2) Chevron Step 2 ····· 67
다. 분석 ····· 67
(1) 논거 ····· 67
(2) 적용 범위 ····· 68
(3) Chevron 원칙의 함의 ····· 71
제2절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해석규범 구성 ····· 73
Ⅰ. 행정의 의사결정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수준 ····· 73
Ⅱ.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존중 수준 ····· 73
Ⅲ.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에 대한 심사 방식 ····· 75
1. 데이터셋 검증 ····· 75
2. 라벨링 ····· 76
3. 알고리즘 검증 ····· 76
4. 해석품질 검증 ····· 76
Ⅳ.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 – 전자심사 24 ····· 76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사법심사를 위한 후속 논의 ····· 79

제1절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심급 제도 ····· 81
제2절 인공지능에 근거한 사법심사 ····· 81
제3절 행정의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83
Ⅰ. 문제제기 ····· 83
Ⅱ. 해결을 위한 입법적 노력 ····· 85
1. 지능정보화 기본법 ····· 85
2. 알고리즘 책임법(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3) 발의안 ····· 85
Ⅲ. 결어 ····· 87

198.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17

연구책임자: 유 영 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2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도입: 개념적 이해와 용어 사용의 유의 ····· 3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
1. 연구의 배경 ····· 4
가. 관련한 국내 논의의 부재와 그 시작의 필요 ····· 4
나.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사법 민간화 방향의 조망 요구 ····· 5
Ⅱ. 연구의 목적 ····· 6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7

제2장 민영화 개념과 사법 민간화 논의 개시의 선결 과제 ····· 9

제1절 민영화 논의 배경 및 개념과 유형 ····· 11
Ⅰ.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그 개념 ····· 11
1. 민영화 논의의 배경 ····· 11
가. 민영화 요구의 이론적·현실적 배경 ····· 11
나. 민영화에 대한 상반된 시각 ····· 12
다. 국가 역할의 유보와 민영화 ····· 13
2. 민영화 개념의 일반적 이해 ····· 14
가. 민영화 개념 규명의 방향 ····· 14
나. 민영화의 일반적 개념 ····· 15
3. 소결 : 민영화 쟁점의 다각적 검토 요구와 양면성 ····· 16

Ⅱ. 민영화의 유형, 복합적 구현과 대상 분야의 속성 고려 요구 ····· 17
1. 민영화의 유형 ····· 17
2. 유형 간 복합과 대상 분야의 속성 고려 ····· 20
Ⅲ. 소결 : 민영화에 관한 기존의 일반적 이해와 사법 민간화 ····· 20
제2절 사법 민간화의 개념적 이해와 선결 과제 ····· 22
Ⅰ. 사법 민간화의 개념적 이해 ····· 22
1. 개념 정의의 의의와 한계 ····· 22
2. '사법'의 개념 ····· 22
3. '민간화'의 개념 ····· 24
4. '사법 민간화'의 개념과 유형 ····· 25
가. 사법 민간화의 개념 정의 ····· 25
나. 사법 민간화의 유형적 구분 ····· 27
5. 소결 : 민영화 유형 구분의 표지로서 'internal'의 기능적 함의 ····· 29
Ⅱ. 사법의 민간화 관련 기본적 의문의 선결 ····· 30
1. 사법은 민간화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 30
가. 사법 민간화 논의의 시작점 : 기존 민영화와의 분명한 차이 인식 ····· 30
나. '사법'과 '민간화'의 개념적 관계 ····· 31
다. 사법 민간화 논의의 초점 :
'재판 전·후 절차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 ····· 31
2. 기존 민영화와 사법 민간화를 달리 볼 이유는 있는가? ····· 32
3. 사법 민간화 유형과 그 실현을 위한 고려요소는 무엇인가? ····· 32
4. 사법 민간화의 기대 효과와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 33

제3장 사법 민간화 논의의 개관 ····· 35

제1절 사법 민간화의 목적과 함의, 그 기대 효과 ····· 37
Ⅰ. 사법 민간화의 목적과 법원 관점에서의 함의 ····· 37
1. 사법 민간화의 목적 도출의 배경 ····· 37
가. 기존 민영화의 목적과 한계의 노정 ····· 37
나. 사법분야 민간화 논의의 차별성 ····· 38
다. 사법 민간화와 법원의 효율성 ····· 38
2. 사법 민간화의 목적 체계 ····· 39
가. 사법 민간화의 궁극적 목적과 그 기능적 함의 ····· 39
나. 사법 민간화의 목적 체계 도출 ····· 40
다. 세부 목적 간 관계 : 중첩과 상충, 특정 목적의 강조 가능성 ····· 43
라. 세부적 목적 도출의 근거 : 관련 법령의 목적 및 현안의 반영 ····· 44
Ⅱ. 법원 내외부적 관점에서 사법 민간화의 함의(含意) ····· 45
1. 사법 민간화의 전략적 함의와 균형적 접근 요구 ····· 45
2. 법원 내부적 관점 ····· 47
3. 법원 외부적 관점 ····· 52

4. 예산과 인력의 증액·원의 병행적·동시적 고려 필요 ····· 55
제2절 사법 민간화의 허용 범위와 한계 ····· 56
Ⅰ. 사법 민간화의 포섭 기준과 대상 범위 ····· 56
1. 사법 민간화 포섭의 기준 ····· 56
2. 사법 민간화 대상 범위의 설정 ····· 56
가. 민간화 범위의 확장적 이해 ····· 56
나. 민간화 범위 설정의 경계 ····· 57
Ⅱ. 사법의 본질적 한계 ····· 58
1. 사법의 본질 ····· 58
2. 헌법상 민간화의 한계 ····· 59
가. 헌법 제101조 제1항 ····· 59
나. 헌법 제27조 ····· 61
3. 소결 : 사법의 본질과 헌법적 한계를 고려한 민간화의 경계 도출 요구 ····· 62

제4장 사법 민간화의 주요 분야와 기존 제도의 현황 ····· 65

제1절 사법 민간화의 주요 분야와 기존 제도의 유형적 분류 ····· 67
Ⅰ. 사법 민간화 논의의 대상 분야와 그 속성 ····· 67
1. 사법 민간화 논의의 대상 분야 개관 ····· 67
가. 사법 민간화 논의 대상 분야 ····· 67
나. 관련 논의의 상대적 용이성 : 이론적·실무적 관점의 간극 ····· 68
2. 민사분야 민간화 논의의 방향과 그 속성상 상대적 용이성 ····· 69
가. 민사분야의 의의와 속성 ····· 69
나. 민간화 논의의 상대적 용이성 및 필요성 : 사적자치원칙의 강조 ····· 70
다. 민사사법의 주요한 특징과 변화의 단초 : 민사사법 시스템의 전환 ····· 72
라. 대표적 민간화 논의 대상으로서 ADR :
재판공개원칙의 제한과 내부적 민간화의 관점 ····· 73
3. 형사분야 민간화 논의의 방향과 그 속성상 한계 ····· 76
가. 형사사법의 개념 ····· 76
나. 형사분야의 속성과 근본적 한계 요소 ····· 77
다. 형사사법 민간화 양상의 격차 ····· 78
라.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신중한 접근 ····· 79
마. 형사사법체계 단계상 접점에서의 관계부처 간 협의·협력 ····· 81
4. 가사, 소년·가정·아동보호분야 민간화 논의의 방향과
그 속성상 확대 가능성 ····· 82
가. 가사분야 ····· 82
나. 소년·가정·아동보호분야 ····· 84
다. 법원주도적 절차·제도 운영과 민간화 가능성 ····· 98
5. 소결 : 사법 민간화 여건과 기본 방향 ····· 99
Ⅱ. 사법 민간화로 포섭 가능한 기존 제도의 유형적 분류 ····· 100

1. 기존 제도의 현황 파악의 의의와 한계 ····· 100
가. 사후적 유형 분류의 기초 제공 ····· 100
나. 기존 제도 검토의 한계 ····· 101
2. 유형 구분의 기준과 개괄적 분류(안) ····· 101
가. 유형 구분 기준설정의 배경과 2단계 분류 ····· 101
나. 절차 단계별 분류 ····· 102
다. 제도 목적별 분류 ····· 103
제2절 사법 민간화의 관점에서의 분야별 주요 제도 검토 ····· 105
Ⅰ. 민사분야 ····· 105
1. 개관 ····· 105
2. 민사조정법상 조정 ····· 106
가. 민사조정제도의 개관 ····· 106
나. 민사조정의 개념적 구분과 절차구조 ····· 111
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의 흐름 ····· 113
라. 제1심 민사조정 신청 및 회부, 조정 성공률 추이 ····· 115
마. 소결 : 사법 민간화 관점에서의 평가 ····· 118
3.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제도 ····· 121
가. 감정제도 ····· 121
나. 전문심리위원제도 ····· 124
다. 전문심리위원제도와 비교 ····· 125
라. 감정의 현실적 여건과 어려움 ····· 126
마. 소결 : 사법 민영화 관점에서의 평가 ····· 131
Ⅱ. 형사분야 ····· 134
1. 개관 ····· 134
2. 국민참여재판 ····· 134
가.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제도 도입의 경과 ····· 134
나. 형사재판에서 국민 참여의 함의 : 사법 민영화 관점의 접근 ····· 136
다.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특징 ····· 137
라. 국민참여재판의 절차구조와 내용 ····· 138
마. 국민참여재판의 운용현황 ····· 139
바. 소결 : 사법 민간화 관점에서의 평가 ····· 140
Ⅲ. 가사분야 ····· 144
1. 개관 – 가사분야 선행연구의 문제제기 ····· 144
가. 후견감독 ····· 145
나. 협의이혼 – 가사상담, 부모교육 등 ····· 146
다. 면접교섭 ····· 148
2. 가사조정제도 ····· 149
가. 가사조정의 개관 ····· 149
나. 가사소송법상 조정절차의 흐름 ····· 151
다. 가사조정조치의 내용 ····· 153

3. 소결 : 사법 민간화 관점에서의 평가 ····· 155
Ⅳ. 소년·가정·아동보호분야 ····· 157
1. 개관 ····· 157
2. 소년보호절차 ····· 158
가. 소년보호절차 관련 기관의 단계적 구분 ····· 158
나.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 159
다. 소년분류심사원 ····· 159
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161
3. 가정보호절차 ····· 162
가. 가정보호사건 조사·심리의 기본원칙 ····· 162
나. 전문가 의견의 조회 ····· 162
다. 심리 비공개와 피해자 진술권 보장 ····· 162
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 163
4. 아동보호절차 ····· 164
가. 신고 및 조치 ····· 164
나. 법원의 절차 ····· 164
다. 피해아동보호명령 ····· 165
5. 소결 : 사법 민간화 관점에서의 평가 ····· 166

제5장 해외 주요국의 사법 민간화 관련 특징적 제도 ····· 169

제1절 미국 : Rent-a-Judge ····· 171
Ⅰ. 사법 민간화에 관한 시각 ····· 171
Ⅱ. Rent-a-Judge 제도 ····· 173
1. 사적재판(Rent-a-Judge)의 개념적 이해와 속성 ····· 173
가. 사적재판의 개념 ····· 173
나. 사적재판의 속성 : 다른 ADR과의 명확한 차이 ····· 173
2. 사적재판의 기본적 구조 : 캘리포니아 주법 ····· 174
3. 사적재판 서비스의 시작과 성장 ····· 175
4. 사적재판 시행에 대한 상반된 시각 : 민간화의 기대와 우려 ····· 176
제2절 독일 : 형사소송에서의 협상(Verständigung) ····· 178
Ⅰ. 형사소송에서의 협상(Verständigung)제도 ····· 178
1. 용어로서 Verständigung과 유사 개념의 비교 ····· 178
가. 용어의 적절한 이해와 사용 ····· 178
나. 'Verständigung'과 'plea bargaining'의 개념 비교와
국내 논의 방향 ····· 179
2.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 배경, 개념 및 유형 ····· 180
가. 도입의 배경 ····· 180
나. 협상의 개념 ····· 182
다. 협상의 유형 ····· 183

3. 협상제도의 근거 규정(§ 257c StPO)과 그 구체적 내용 ····· 184
4. 형사재판절차에서의 협상의 함의 : 사법 민간화 관점의 접근 ····· 185
가. 내부적 민간화 유형으로 포섭 ····· 185
나. 사법 민간화의 세부적 목적 부합 ····· 186
제3절 프랑스 : 협의이혼 방식의 변화 ····· 187
Ⅰ. 법원 외 이혼 가능성 확대 경향 ····· 187
Ⅱ. 프랑스 : acte déposé au rang des minutes d'un notaire ····· 189
1. 이혼제도 개관 ····· 189
가. 프랑스 민법상 이혼사유 ····· 189
나. 프랑스 이혼법제의 기본원리 ····· 191
2. 협의이혼제도 변화의 계기와 함의 : 사법의 공공서비스로서 기능 강화 ····· 192
3. 새로운 이혼제도에 대한 기대효과와 평가 ····· 195
가. 새로운 협의이혼의 과정 ····· 195
나. 제도의 기대 효과 ····· 196
다. 제도의 긍부정적 평가 ····· 198
4. 재판상 이혼 ····· 199
가. 수락이혼 ····· 199
나. 파탄이혼 ····· 200
다. 유책이혼 ····· 201
5. 협의이혼 ····· 202
가. 협의이혼제도 도입의 사법의 민간참여 맥락에서 이해 ····· 202
나. 협의이혼제도 개관 ····· 203
다. 재판상 협의이혼 ····· 204
라. 재판 외 협의이혼 ····· 206
6. 이혼 유형별 법원의 선고 현황과 경향 ····· 208
가. 이혼 유형별 선고 현황 ····· 208
나. 재판상 협의이혼의 급격한 감소 ····· 208
7. 재판 외 협의이혼의 함의 : 사법 민간화의 관점 ····· 209
가. 외부적 민간화 유형으로 포섭 ····· 209
나. 사법 민간화의 세부적 목적 부합 ····· 209

제6장 결론 : 사법 민간화 고려의 기본 전제와 향후 추진 방향 제언 ····· 211

제1절 사법 민간화 고려의 기본 전제 ····· 213
제2절 사법 민간화의 논의·추진 방향(안) ····· 216

199. 재개발·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연구총서 2024-18

연구책임자: 이 종 구(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24년 12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 7

제1절 건설법과 재개발·재건축의 규율체계 ····· 9
Ⅰ. 건설법의 규율체계 ····· 9
1. 건설법의 의의 ····· 9
2. 거시적 관점 ····· 10
가. 국토 및 지역계획 ····· 10
나. 도시계획 ····· 11
다. 도시계획과 도시의 개발사업 ····· 12
3. 미시적 관점 ····· 13
가. 건축법 ····· 13
나.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 14
4.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 15
5.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 17
6. 소결 ····· 18
Ⅱ. 재개발·재건축의 규율 체계 ····· 20

1. 재개발·재건축의 정의 ····· 20
가. 정비사업의 정의 ····· 20
나. 정비사업의 종류 ····· 20
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 22
2. 규율체계의 변천과정 ····· 29
가. 택지조성사업 ····· 30
나. 주택건설사업 ····· 31
다.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이 혼합된 재개발·재건축 ····· 33
라. 소결(도시정비법 제정과 그 이후 개정 경과) ····· 34
3. 규모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와 규율체계 ····· 36
가. 소규모정비사업 ····· 36
나. 대규모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구별 기준 ····· 38
다. 대규모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차이점 ····· 40
4. 정비사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1
가. 건축법과의 관계 ····· 41
나. 주택법과의 관계 ····· 42
다. 도시재정비촉진법과의 관계 ····· 42
라.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 44
Ⅲ. 소결 ····· 44
제2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 46
Ⅰ. 의의 ····· 46
Ⅱ. 사업추진절차 ····· 47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 단계 ····· 47
가. 기본계획 ····· 47
나. 정비계획 ····· 47
다.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과의 관계 ····· 48
라.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 48
2. 사업시행자 구성 단계 ····· 49
가. 사업시행자 개관 ····· 49
나. 조합 ····· 50
다. 신탁업자의 시행 또는 대행 ····· 61
라. 토지등소유자 ····· 64
3.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단계 ····· 66
가. 의의 ····· 66
나. 사업시행계획의 법적성질 ····· 67
다.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 68
4.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단계 ····· 68
가. 관리처분의 절차 ····· 68
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85
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86

라. 관리처분인가·고시의 효력 ····· 87
마.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에 관한 쟁송 ····· 87
5. 이주·철거 전 소유권 등 확보 ····· 88
가. 의의 ····· 88
나.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의 소유권 확보 ····· 90
다. 불참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제64조의 매도청구) ····· 95
라.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소유권 확보 등 ····· 97
마. 세입자에 대한 인도소송 ····· 112
바. 소결 ····· 115
6. 이주 및 철거 ····· 116
가. 저당권자 등과의 이해조정 필요성 ····· 116
나. 분양대상조합원의 종전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 117
다. 현금청산대상자의 종전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 118
7. 이전고시 ····· 121
Ⅲ. 소결 ····· 122
제3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개발·재건축(권리변환-등기절차를 중심으로) ····· 124
Ⅰ. 들어가며 ····· 124
Ⅱ. 우리나라의 권리변환방식과 부동산등기절차 ····· 125
1. 권리변환방식(=환권법리와 보류지체비지법리) ····· 125
2. 환권방식 적용여부의 판단기준 ····· 127
가. 환권대상인 경우 ····· 130
나. 환권대상이 아닌 경우 ····· 132
다. 소결 ····· 145
3. 부동산 등기절차 ····· 146
가. 이전고시시점 이후의 등기 ····· 146
나. 이전고시시점 이전의 등기 ····· 150
Ⅲ. 일본의 권리변환방식과 부동산등기절차 ····· 156
1. 권리변환방식 ····· 156
가. 일본의 도시재개발사업 ····· 156
나. 권리변환방식 ····· 157
다. 권리변환절차 ····· 160
라. 소결 ····· 161
2. 부동산등기절차 ····· 162
가. 대항요건주의와 물적편성주의 ····· 162
나. 재개발의 권리변환과 등기절차 ····· 163
다. 재건축의 권리변환과 등기절차 ····· 173
3. 저당권자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 ····· 182
가. 압류권자와의 조정 ····· 182
나. 저당권자와의 조정 ····· 183
4. 권리변환절차와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 ····· 183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권리변환과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 ····· 184
나. 아파트의 재건축법에 의한 권리변환 또는
분배금의 취득 등과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에 관한 규칙 ····· 186
5. 권리변환기일 후 완공 전 조합원 지위 양도 ····· 188
Ⅳ. 소결(우리나라와 일본 비교) ····· 193

제3장 재개발·재건축부동산의 경매 ····· 197

제1절 쟁점의 개관 ····· 199

제2절 사업시행단계별 경매진행상 쟁점 ····· 203
Ⅰ.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의 경매 ····· 203
1. 수시 사실조회 필요성 ····· 203
2.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 204
3.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기준 ····· 204
Ⅱ.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전고시 이전까지의 경매 ····· 205
1. 검토필요성 ····· 205
가. 개관 ····· 205
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감정평가 실무와 검토필요성 ····· 207
2. 검토방향 ····· 213
3. 관리처분인가 이후 경매와 사업방식의 상관관계 ····· 215
가. 경매절차에서 사업방식이 가지는 의의 ····· 215
나.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방식 ····· 215
다. 사업방식의 차이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222
4. 종전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취소 여부 ····· 225
가. 문제점 ····· 225
나. 검토 ····· 227
다. 소결 ····· 229
5. 멸실된 종전건물과 토지의 일괄매각 여부 ····· 230
가. 견해의 대립 ····· 230
나. 검토(유보설) ····· 232
6.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경매진행 ····· 234
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경매절차 취소여부 ····· 234
나. 현금청산대상자 종전건물 경매절차에 대한
취소/유보 중 타당한 절차 ····· 245
다.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물상대위 ····· 247
7. 소결(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전고시 전까지) ····· 248
가. 경매절차와 사업방식과의 관계 ····· 248
나. 종전건물 멸실에 따른 경매절차 취소여부 ····· 250
다. 멸실된 종전건물과 토지의 일괄매각여부 ····· 251
라.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경매절차 취소여부 ····· 252

Ⅲ. 준공인가 이후 이전고시 이전까지의 경매 ····· 253
1. 종전재산에 신탁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된 경우 ····· 254
2. 종후 미등기 건물에 관한 직권보존등기 가부 ····· 256
가. 문제점 ····· 256
나. 일반절차에 의한 개별 직권보존등기 가부 ····· 256
다. 검토 ····· 257
3. 소결 ····· 262
Ⅳ. 이전고시 이후 일괄등기 이전까지의 경매 ····· 263
1. 이전고시가 부동산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263
2. 환권되는 부동산의 경우 ····· 265
가. 종전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265
나. 종전 개시결정의 부동산 목록 경정과 관련된 문제점 ····· 265
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기준 권리 ····· 266
라. 이전고시 이후 종전토지에 대한 매각대금납부 ····· 267
3. 환권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 268
4. 소결 ····· 269
가. 환권되는 조합원분양분 ····· 270
나. 환권되지 않는 일반분양분(현금청산대상자 등) ····· 271
다. 이전고시후 종전재산에 대한 대금납부 등 ····· 271
제3절 토지만 매각되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쟁점 ····· 272
Ⅰ. 검토필요성 ····· 272
Ⅱ.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 275
1. 적법성 여부 ····· 275
2. 매수인의 주된 관심 ····· 275
Ⅲ.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사항 ····· 277
1. 종전자산 권리가액과 비례율 등 ····· 278
2. 조합원분담금 ····· 279
3. 추가분담금 납부시기 ····· 280
4. 종전건물에 있던 대항력 임차인 문제 ····· 280
Ⅳ. 조합원 자격제한에 관한 것 ····· 280
1. 조합원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 281
2. 조합원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제39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 ····· 281
가. 도시정비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 ····· 282
나. 임의경매에서 취득한 경우(도시정비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 283
3. 검토 ····· 284
Ⅴ. 분양자격제한에 관한 것 ····· 285
1. 재개발 과소토지와 조합원분양자격 등 ····· 285
가. 원칙(재개발 과소토지는 현금청산대상) ····· 285
나. 예외(조합원분양대상) ····· 286

2.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원분양자격 등 ····· 287
가. 권리산정기준일 ····· 287
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 ····· 287
다. 경매에서 권리산정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 289
3. 소결 ····· 289
Ⅵ. 분양권의 개수에 관한 것 ····· 289
1. 원칙(1조합원1분양권) ····· 289
2. 재건축의 분양권 개수 ····· 290
가. 원칙(1세대 또는 1인 1주택) ····· 291
나. 예외(수개의 주택 공급) ····· 291
3. 재개발의 분양권 개수 ····· 294
가. 원칙(1세대 또는 1인 1주택) ····· 294
나. 예외 ····· 295
다.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296
4. 공동분양대상자 사이 대표조합원 선임 문제 ····· 299
가.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한 취지 ····· 300
나. 여러 명 각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302
5. 1인 다물건의 경우 ····· 306
6. 1세대 다물건의 경우 ····· 307
7. 공동분양대상자인지 단독분양대상자인지를 다투는 소송 ····· 307
8. 분양권개수에 관한 소결 ····· 308
Ⅶ. 소결 ····· 309
제4절 조합원입주권매매계약과 토지만의 경매 ····· 311
Ⅰ. 조합원입주권매수인의 법적지위 일반론 ····· 312
1. 조합원입주권의 의의 ····· 314
2. 조합원입주권의 매매 ····· 315
3. 조합원입주권매매의 실태 ····· 316
가. 매도, 매수 시 고려할 사항 ····· 316
나. 매매에 따른 절차 ····· 317
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 ····· 318
Ⅱ. 경매매수인이 조합원입주권매수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지 ····· 322
1. 문제점 ····· 322
2. 대법원 판례 ····· 322
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재개발) ····· 322
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재건축) ····· 324
3. 검토 ····· 329
Ⅲ. 소결 ····· 333
제5절 일체매각의 타당성 검토 ····· 335
Ⅰ. 조합원입주권 형성의 네 가지 유형 ····· 335
Ⅱ. 일체매각의 두 가지 관점 ····· 339

1. 일체로 매각하자는 관점 ····· 341
2. 조합원입주권이 토지에 화체되었다고 보는 관점 ····· 343
Ⅲ. 검토 ····· 347

제4장 현행법상 경매진행 방안 ····· 351

제5장 입법론 ····· 361

제1절 들어가며 ····· 363
제2절 관리처분절차개시등기 제도 등 도입 ····· 365
Ⅰ. 필요성 ····· 365
1. 관리처분절차개시등기 제도 ····· 365
2. 토지건물일괄말소 제도 ····· 365
Ⅱ. 입법론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 367
1. 관리처분절차개시등기 제도 ····· 367
2. 토지건물일괄말소 제도 ····· 368
Ⅲ. 입법례 ····· 369
1. 관리처분절차개시등기 제도 ····· 369
2. 토지건물일괄말소 제도 ····· 370
Ⅳ. 입법(안) ····· 372
제3절 권리 및 절차 조정에 관한 규정 도입 ····· 376
Ⅰ. 저당권자 등과의 '권리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376
1. 필요성 ····· 376
2. 입법례 ····· 377
3. 입법(안) ····· 379
Ⅱ. 정비사업과 강제집행의 '절차조정'에 관한 규칙 도입 ····· 382
1. 필요성 ····· 382
2. 입법론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 383
3. 입법례 ····· 384
4. 입법(안) ····· 384
제4절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개정(안) ····· 385
Ⅰ. 필요성 ····· 385
Ⅱ. 입법안 ····· 385
제5절 소결 ····· 387

제6장 결 어 ····· 389

200.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연구총서 2024-19

연구책임자: 권 형 관(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홍 보 람(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이 단 비(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12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3
Ⅰ. 장애인 등이 사법절차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3
Ⅱ.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사법절차에 관한 이지리드(Easy-Read) 개발 권고 · 4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 4
2. 사법절차 전반에 관한 개발을 권고받은 “이지리드” ····· 5
Ⅲ. 국내 최초의 이지리드 판결 선고 ····· 7
Ⅳ. 국회의 이지리드 판결서 등 제공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 7
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8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9
Ⅰ.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방법의 구체화 필요성 ····· 9
Ⅱ. 관련 선행연구의 부재 ····· 10
제3절 연구의 목적 ····· 10
Ⅰ. 법관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에 대한 부담 경감 ····· 10
Ⅱ.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실무상 혼란 예방 ····· 11
Ⅲ.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에 대한 발상 전환의 계기 제공 ····· 11
Ⅳ. 사법부가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관점 변화를 유도 ····· 12
제4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등 ····· 13
Ⅰ. 연구의 방법 ····· 13

Ⅱ. 연구의 내용 ····· 14
Ⅲ.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역할 ····· 15

제2장 이지리드 판결서 일반론 ····· 17

제1절 이지리드 개관 ····· 19
Ⅰ. 이지리드의 의미 ····· 19
1. 이지리드의 개념 ····· 19
2. 공식적 정의 규정의 부재 ····· 20
3. 구별 개념 ····· 20
4. 이지리드에 대한 다양한 표기 방식 ····· 25
5. 이지리드 자료의 분류 및 용어의 사용 ····· 26
Ⅱ. 이지리드의 구성요소 ····· 29
1. 내용적 요소 ····· 29
2. 형식적 요소 ····· 32
3. 절차적 요소 ····· 34
제2절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의 필요성 ····· 35
Ⅰ. 판결서 특성을 고려한 제공 필요성 ····· 35
1. 판결서의 의미 ····· 35
2. 판결서의 난해성 ····· 35
3. 판결서의 중요성 ····· 36
4. 판결서를 이지리드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성 ····· 36
Ⅱ. 사법절차 내에서 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 보장 ····· 38
1.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 38
2. 사법절차 내 정보접근에 관한 실질적 평등 보장 ····· 38
Ⅲ.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성 개선 및 국민 전반의 사법 신뢰 제고 ····· 42
1.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성 개선 ····· 42
2.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 전반의 사법 신뢰 제고 ····· 43
Ⅳ. 국제적 인권 기준 준수 ····· 43
1. 유엔의 장애인 사법접근성 개선 등에 관한 입장 ····· 44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수용 필요 ····· 45
Ⅴ. 이지리드의 활용 영역 확장과 사회통합 기여 ····· 49
1. 이지리드의 활용 영역 확장 ····· 49
2. 이지리드 판결서에 의한 사회 통합 기여 ····· 49
Ⅵ. 이지리드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 ····· 50
제3절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의 법적 근거 ····· 52
Ⅰ. 국내법적 근거 ····· 52
1. 헌법 ····· 52
2.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3
3. 발달장애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6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57
Ⅱ. 국제법적 근거 ····· 58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58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 60
3.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가이드라인」 ····· 61
제4절 이지리드 판결서의 적용대상 ····· 63
Ⅰ. 문해력 수준을 기초로 한 적용대상의 유형적 분류 ····· 63
1. 문해력과 이지리드 판결서의 적용대상 ····· 63
2. 발달장애인 ····· 67
3. 농인 및 그 밖의 장애인 ····· 73
4. 아동·청소년 ····· 79
5. 문해력 수준이 낮은 비장애 성인 ····· 80
Ⅱ. 소송상 지위에 따른 적용대상 범위 ····· 82
1. 형사판결서의 경우 ····· 82
2. 민사판결서의 경우 ····· 87
3. 가사판결서 등 및 행정판결서의 경우 ····· 88

제3장 외국의 이지리드 활용 ····· 91

제1절 스웨덴 등 ····· 94
Ⅰ. 스웨덴에서의 이지리드 개념 발전과 활용 ····· 94
Ⅱ.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의 이지리드 적용대상 ····· 94
제2절 영국 ····· 96
Ⅰ. 영국에서의 이지리드 개념 발전과 활용 ····· 96
Ⅱ. 관련 법령 등 ····· 96
1.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2005) ····· 96
2. 평등법(Equality Act 2010) ····· 97
3.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접근 가능한 정보 표준」 등 ····· 98
Ⅲ. 민간단체인 멘캡과 체인지의 각 이지리드 제작 지침서 ····· 99
1. 멘캡의 「분명하게 만들어라」 ····· 99
2. 체인지의 「어떻게 정보를 접근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 이지리드 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지침」 ····· 101
Ⅳ. 법 관련 이지리드 등 활용 사례 ····· 102
1. 영국 대법원의 '이지리드 사건요약' 및
'이지리드 요약보도자료' 제공 사례 ····· 103
2. 가정법원의 평이한 언어 방식 판결례 ····· 121
3. 형사법원의 이지리드 항소장 양식 등 ····· 123
4. 더비셔 카운티 의회의 이지리드 「법원에 갈 때 당신의 가이드」 ····· 126
5. 카디프 법원의 이지리드 '변론기일 통지서' ····· 126
6. 법무부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이지리드 안내서 4개 ····· 127

7. 가석방위원회의 가석방심사에 관한 이지리드 안내서 2개 ····· 132
8. 법률서비스위원회의 「이지리드 법률구조 사전」 ····· 134
제3절 독일 ····· 135
Ⅰ. 독일에서의 이지리드 개념 도입과 활용 ····· 135
1. 독일의 이지리드 개념: 쉬운 언어(Leichte Sprache) ····· 135
2. 공적 기관 웹사이트의 이지리드 활용 ····· 136
Ⅱ. 관련 법령 ····· 137
1. 연방법 ····· 138
2. 개별 주(州)법 ····· 140
Ⅲ. 민간단체인 '네트워크 쉬운 언어'의 이지리드 제작 지침서 ····· 142
Ⅳ. 법 관련 이지리드 활용 사례 ····· 143
1. 튀링엔주의 법 관련 이지리드 소책자 7개 ····· 143
2. 니더작센주의 상속법 관련 이지리드 소책자 ····· 148
제4절 프랑스 ····· 149
Ⅰ. 프랑스에서의 이지리드 개념 도입과 활용 ····· 149
1. 프랑스의 이지리드 개념: FALC ····· 149
2. 프랑스의 이지리드 활용 ····· 150
Ⅱ. Unapei 및 인클루전유럽의 이지리드 제작 지침서 ····· 151
Ⅲ. 법 관련 이지리드 활용 사례 ····· 155
1. 국사원(Conseil d'Etat)의 이지리드 활용 ····· 156
2. 법무부의 이지리드 소송구조 신청서 양식 「당신의 소송구조 신청서」 ·· 161
제5절 스페인 등 ····· 163
Ⅰ. 스페인 대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결정 사례 ····· 163
1. 사건의 개요 ····· 163
2. 소송의 경과 ····· 163
3. 스페인 대법원의 판시사항과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결정 ····· 164
4. 검토 ····· 165
Ⅱ.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결정 사례 ····· 165
제6절 호주 등 ····· 166
Ⅰ. 호주의 언어 다양성과 문해력 ····· 166
Ⅱ. 호주 등의 이지리드 제작 지침서 ····· 167
1. 호주 정부의 글쓰기와 편집에 관한 표준인 「스타일 매뉴얼」 ····· 167
2. 뉴질랜드의 민간단체인 '피플퍼스트 뉴질랜드'의 이지리드 제작 지침서 ···· 170
Ⅲ. 호주의 법 관련 이지리드 활용 사례 ····· 171
제7절 미국, 캐나다 ····· 173
Ⅰ. 미국 ····· 173
1. 미국의 평이한 언어와 이지리드 활용 ····· 173
2. 평이한 언어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 ····· 174
3. 평이한 언어 방식을 활용하여 판결서를 작성 및 제공한 사례 ····· 175

4. 미국에서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한 사례가 없는 이유 ····· 176
Ⅱ. 캐나다 ····· 180
1. 캐나다의 평이한 언어와 이지리드 ····· 180
2. 법 관련 평이한 언어 활용 사례 ····· 180
제8절 국제기구 ····· 185
Ⅰ. 국제도서관협회연맹 ····· 185
Ⅱ. 유엔 ····· 185
Ⅲ. 유럽연합(EU) ····· 187

제4장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국내 자료 ····· 189

제1절 국내의 이지리드 자료 개발 및 관련 연구 ····· 191
Ⅰ. 국내의 이지리드 자료 개발 ····· 191
1. 국내의 이지리드 자료 제작 현황 ····· 191
2. 국내의 이지리드 자료 제작 기관 등 ····· 191
Ⅱ. 국내의 이지리드 관련 연구 ····· 193
1. 이지리드 자료 제작 지침 및 제작 전문가 양성 교육 등에 관한 연구 ····· 193
2. 이지리드 자체에 관한 연구 ····· 195
제2절 선례판결에 대한 분석 ····· 197
Ⅰ. 선례판결의 내용 ····· 197
1. 주문 부분 ····· 197
2. 이유 부분 ····· 197
Ⅱ. 선례판결의 의의 ····· 200
Ⅲ. 선례판결에 대한 외부의 의견 ····· 201
Ⅳ. 선례판결의 분석 ····· 203
1. 분석의 목적 ····· 203
2. 판결서 구성형태에 대한 분석 ····· 203
3. 주문 부분에 대한 분석 ····· 203
4. 이유 부분에 대한 분석 ····· 207
제3절 관련 판결례에 대한 분석 ····· 211
Ⅰ. 청소년인 원고를 위하여 쉬운 설명을 추가한 행정판결 ····· 211
1. 내용 ····· 211
2. 분석 ····· 212
Ⅱ. 소송대리인 없는 피고를 위하여 쉬운 설명을 추가한 민사판결 ····· 214
1. 내용 ····· 214
2. 분석 ····· 216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결정문」 ····· 218
제5절 경찰청의 '경찰 업무 관련 읽기 쉬운 자료' ····· 219

제5장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방안 ····· 223

제1절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 및 제공을 위한 사전 논의 ····· 225
Ⅰ. 이지리드 판결서의 구성형태 ····· 225
1. 가능한 구성형태 ····· 225
2. 판결서의 본질적 기능 ····· 225
3. 판결서의 본질적 기능에 기초한 검토 ····· 226
Ⅱ.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 주체 및 제공 시기 ····· 234
1. 작성 주체 ····· 234
2. 제공 시기 ····· 236
3. 검토 ····· 237

제2절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절차 ····· 238
Ⅰ. 본격적인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의할 사항 ····· 238
1.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방식의 판결서가 무엇인지를 파악 ····· 238
2. 이지리드 부분의 자족성과 완결성 완화 ····· 239
Ⅱ. 작성절차의 흐름도 ····· 240
Ⅲ. 구체적 작성절차 ····· 241
1. 적용대상자의 문해력 수준 파악 ····· 241
2.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여부 결정 ····· 244
3. 이지리드로 작성할 판결의 핵심적 내용 추출 및 요약 ····· 245
4.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 ····· 246
5. 체크리스트 확인 ····· 247
6. 판결 선고 및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 250

제3절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방법 ····· 251
Ⅰ. 내용적 측면 ····· 251
1. 판결의 핵심적 내용을 쉬운 글로 작성 ····· 251
2. 보조적 이미지의 활용 ····· 256
Ⅱ. 형식적 측면 ····· 265
1. 알아보기 쉬운 글자 사용 ····· 266
2. 일관되고 간결한 지면 구성 ····· 267
3. 분량과 쪽번호 표기 등 ····· 270
Ⅲ. 판결서 특성에 따른 한계와 보완책 ····· 272

제4절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의 개발 과정 ····· 274
Ⅰ. 대상 판결의 선정 및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의 구성 비중 결정 ····· 274
1. 대상 판결의 선정 ····· 274
2.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의 구성 비중 결정 ····· 275
Ⅱ. 이지리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작성례 초안 작성 ····· 276
Ⅲ. 발달장애인들의 감수의견 수렴 ····· 277
1. 당사자 참여 논의의 기초: 감수자들의 문해력 수준 파악 ····· 277
2. 감수자들의 인적 사항 ····· 282

3. 감수의견의 내용 ····· 283
4. 감수의견에 대한 결과적 분석 ····· 287
Ⅳ. 법관 등의 검토의견 수렴 ····· 288
Ⅴ. 이지리드 판결서의 이해도 제고 효과 검증 등을 위한 설문조사 ····· 291
1.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 발달장애인, 농인, 초등학생 ····· 291
2. 설문조사의 구성 및 내용 ····· 295
3. 설문조사 실시 내역 ····· 296
4.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297
Ⅵ. 국내외 장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 320
1. 국내 장애단체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 320
2. 해외 장애법전문가들과의 회의 ····· 324
Ⅶ. 작성례 개발 완료 ····· 328
제5절 유형별 작성례에 대한 설명 ····· 329
Ⅰ. 이지리드 판결서 자체에 대한 설명 기재 부분 ····· 329
Ⅱ. 형사판결서 ····· 332
1. 형사판결서 기재사항 및 이지리드 형사판결서 작성의 주안점 ····· 332
2. 이지리드 형사판결서 작성례(별책 부록 1.) ····· 333
3. 부분별 설명 ····· 334
Ⅲ. 민사판결서 ····· 354
1. 민사판결서 기재사항 및 이지리드 민사판결서 작성의 주안점 ····· 354
2. 이지리드 민사판결서 작성례(별책 부록 2.) ····· 355
3. 부분별 설명 ····· 356
Ⅳ. 가사판결서 등 및 행정판결서 ····· 379
1. 가사판결서 등 및 행정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379
2. 이지리드 가사판결서 등 및 행정판결서 작성례(별책 부록 3. 및 4.) ····· 380

제6장 결론 ····· 381

제1절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및 제공 촉진을 위한 제언 ····· 383
Ⅰ. 개선의 필요성 ····· 383
1. 인지적 측면의 개선 필요성 ····· 383
2. 제도적 측면의 개선 필요성 ····· 384
Ⅱ. 인지적 측면의 개선방안 ····· 384
1.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 등에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내용 반영 ····· 384
2. 법원 내 연구회 활동을 통한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논의 지속 ····· 387
3. 대법원 등 주요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및 제공 ····· 387
4.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이지리드 판결서에 관한 실무적 내용 추가 ····· 388
Ⅲ.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388
1.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대법원예규 제정 ····· 388
2. 이지리드 전문가를 판결서 작성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 활용 ····· 392

3.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통계적 반영 ····· 396
제2절 법원의 책무와 이지리드 판결서 ····· 398
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원의 책무 ····· 398
Ⅱ. 이지리드 판결서에 관한 법관의 부담과 보람 ····· 399
제3절 결어 ····· 400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부록 1. 이지리드 형사판결서 작성례 [형사 7건] ····· 1

부록 2. 이지리드 민사판결서 작성례 [민사 3건] ····· 85

부록 3. 이지리드 가사판결서 등 작성례 [가사 3건] ····· 125

부록 4. 이지리드 행정판결서 작성례 [행정 1건] ····· 161

부록 5. 최종설문조사 문항 ····· 175

부록 6. 최종설문조사 결과표 ····· 207

201.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4-20

연구책임자: 전 문 식(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4년 12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3절 보고서 구성 ····· 7

제2장 우리나라 형사소송에 있어 송달제도 및 현황 ····· 9

제1절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일반론 ····· 11
Ⅰ. 송달제도의 개요 ····· 11
1. 송달의 의미와 비교 개념 ····· 11
2. 송달의 법적 성질 ····· 11
3. 형사소송에서 송달에 관한 규정 ····· 12
4. 송달의 효과 ····· 12
5. 송달의 하자 ····· 13
Ⅱ. 당사자송달주의와 직권송달주의 ····· 13
Ⅲ. 송달기관(송달사무처리기관과 송달실시기관) ····· 14
Ⅳ. 송달의 방법 ····· 15

1. 교부송달(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78조) ····· 15
2. 보충송달(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 15
3. 유치송달(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 16
4. 우체에 부치는 송달(형사소송법 제61조)과
발송송달(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16
5. 공시송달 ····· 17
6.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송달함 송달 ····· 20
7. 전자적 송달 ····· 21
Ⅴ. 송달의 대상에 따른 송달방식 ····· 21
1.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 ····· 21
2. 송달영수인 신고 ····· 22
3.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 ····· 22
4. 검사에 대한 송달 ····· 23
5. 외국송달 ····· 23
Ⅵ. 송달장소 ····· 25
1. 주소 등(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 25
2. 근무장소(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26
3. 조우송달(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3항, 제4항) ····· 26
4. 송달장소 신고 및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제185조) ····· 26
Ⅶ. 송달할 서류에 관한 규정 ····· 27
1. 송달할 서류 ····· 27
2. 송달을 요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 ····· 27
제2절 국내 형사소송에서의 송달 관련 실태 ····· 29
Ⅰ. 형사소송에서의 송달 실무 현황 ····· 29
1. 송달방식에 따른 송달 프로세스 ····· 29
2. 수송달자에 따른 송달 프로세스 ····· 34
3. 송달실시현황 개요 ····· 38
Ⅱ. 형사소송에서의 송달 관련 문제점 ····· 41
1. 개관 ····· 41
2. 송달성공률 제고의 필요성 ····· 41
3. 교부송달 등에 대한 보완의 문제 – 전자적 송달제도 실시의 필요성 ····· 66
4. 공시송달 관련 제문제 ····· 76
5. 송달보고서 문제 ····· 91
6. 송달실시기관 관련 문제 ····· 93
7. 송달업무의 경감 문제 ····· 101
8. 소결 ····· 105

제3장 외국의 형사 송달제도 ····· 107

제1절 미국의 형사 송달제도 ····· 109
Ⅰ. 개관 ····· 109
Ⅱ. 연방형사소송규칙상 송달제도 ····· 109
1. 소환장 송달 ····· 109
2. 소환장 이외의 서류 송달 ····· 116
Ⅲ. 미국 주 법원의 전자소송과 전자적 송달제도의 운영 ····· 125
Ⅳ.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제도 ····· 126
Ⅴ. 송달실시인 제도(Process server) ····· 126
1. 개관 ····· 126
2. 송달실시인 자격 및 만족도 ····· 127
3. 송달실시인을 위한 실무지침서 ····· 130
4. 미국 송달실시인의 부가적인 송달서비스 ····· 135
제2절 독일의 형사 송달제도 ····· 136
Ⅰ. 개요 ····· 136
Ⅱ. 형사소송에 있어서 송달제도 ····· 137
1. 형사소송법상 송달 관련 규정 ····· 137
2. 송달절차 ····· 140
Ⅲ. 전자적 법률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153
제3절 오스트리아의 형사 송달제도 ····· 157
Ⅰ. 개요 ····· 157
Ⅱ.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에 관한 규정 ····· 157
1. 형사소송법(제81조 내지 제84조) ····· 157
2. 형사소송법상 송달에 적용되는 법원조직법 규정 ····· 160
3. 형사소송법상 송달에 준용 내지 적용되는 송달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 ···· 161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전자송달과 공시송달 ····· 164
1. 형사 전자송달제도 ····· 164
2. 형사 공시송달제도 ····· 167
제4절 스위스의 형사 송달제도 ····· 171
Ⅰ. 개요 ····· 171
Ⅱ. 형사소송에 있어서 전자송달제도와 공시송달제도 ····· 171
1. 전자송달제도 ····· 171
2. 공시송달제도 ····· 183
제5절 일본의 형사 송달제도 ····· 188
Ⅰ. 개관 ····· 188
Ⅱ. 일본 형사소송규칙 ····· 189
Ⅲ. 일본 민사소송법의 준용 ····· 191
1. 송달장소 ····· 191
2. 송달방법 ····· 191
3. 송달보고서 ····· 194

Ⅳ. 송달의 효력 및 하자 ····· 194
Ⅴ. 형사소송에서의 송달 실무 관련 인터뷰 내용 ····· 195
Ⅵ.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검토 ····· 196
1. 2022년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및 2023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경과 ····· 197
2. 민사절차에서 전자송달제도 도입 관련 ····· 201
3. 형사절차에서 전자화 및 전자적 송달 관련 ····· 203
제6절 시사점 ····· 206

제4장 형사소송에 있어 송달제도 개선방안 ····· 209

제1절 디지털 시대와 형사소송에서의 송달방식 패러다임 전환 ····· 211
Ⅰ. 개요 ····· 211
Ⅱ. 형사전자소송상 전자송달제도 ····· 213
1. 형사전자소송 의의 및 도입 연혁 ····· 213
2.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과 전자적 송달제도 ····· 214
3. 형사절차전자문서법상 전자적 송달제도에 대한 검토 ····· 222
Ⅲ. 전자적 송달제도 시행 관련 제언 ····· 234
1. 논의의 방향 ····· 234
2.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 240
3. 전자적 송달에 대한 동의 및 동의 수집 방법 다양화의 필요성 ····· 244
4.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250
5. 전자적 송달의 장기적 방안에 대한 고찰
(상황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단계적인 검토의 필요성) ····· 253
제2절 전자적 송달방식 외의 실용성 있는 송달제도 설계 ····· 258
Ⅰ. 논의의 필요성 ····· 258
Ⅱ.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과 e-post 제도 시행 ····· 259
Ⅲ. 형사기일 안내 SMS 서비스 기능 확대 및 모바일 송달장소 신고제도 도입 ·· 260
1. 주안점 ····· 260
2. 형사 재판기일 안내 SMS 서비스 개요 ····· 261
3. 모바일 송달장소 신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 262
4. 구현방안 ····· 264
Ⅳ.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에 '통합송달' 제도의 적용방안 ····· 265
1. 주안점 ····· 265
2. 통합송달제도의 개관 ····· 266
3. 형사소송의 송달에 통합송달의 적용방안 ····· 267
Ⅴ. 송달실시기관의 개선방안 ····· 270
1. 주안점 ····· 270
2. 송달기관별 선호도 및 그 사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71
3. 송달실시기관의 전문화 ····· 274
4. 송달실시기관의 업무시스템 개선방안 ····· 278

Ⅵ. 송달보고서 개선방안 ····· 281
1. 주안점 ····· 281
2. 현 송달보고서 구성 ····· 282
3. 송달보고서 기재의 구체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83
4. 송달보고서 개선방안 ····· 285
Ⅶ. 기타 송달성공률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289
제3절 공시송달제도의 개선방안 ····· 293
Ⅰ.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 293
Ⅱ. 업무시스템 개선방안 ····· 295
1.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재판사무시스템 개선방안 ····· 295
2. 증거분리제출제도의 개선방안 ····· 295
Ⅲ. 소재탐지촉탁 등의 개선방안 ····· 302
1. 제도의 개관 및 문제점 ····· 302
2. 개선방안 ····· 304
Ⅳ. 공시송달 요건의 개선에 대한 제언 ····· 312
1. 주안점 ····· 312
2. 공시송달제도의 합헌성 문제 ····· 313
3. 공시송달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제언 ····· 316
제4절 송달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언과 과제 ····· 320
Ⅰ. 전자송달 받은 자에 대한 권리보호 ····· 320
Ⅱ. 전자송달 이외의 송달을 받은 자에 대한 권리보호 ····· 321
Ⅲ. 공시송달을 받은 자에 대한 권리보호 ····· 322
1. 개요 ····· 322
2. 판례의 태도 및 문제점 ····· 323
3. 제언 ····· 325
Ⅳ.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송달제도 ····· 326
1. 논의의 필요성 ····· 326
2. 취약계층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송달 관련 현황 ····· 326
3.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송달 관련 제언 ····· 330

제5장 결 론 ····· 333

202.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5-1

연구책임자: 고 대 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3월 5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I. 연구의 내용 ····· 5
II. 연구방법 ····· 6
III.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내용 ····· 6

제2장 현행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 7

제1절 불출석 재판제도의 개관 ····· 9
I. 원칙: 피고인의 출석의무 ····· 9
II. 예외: 불출석 재판의 허용 ····· 9
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 9
2. 형사책임능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10
3. 경미사건의 경우 ····· 10
4.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 ····· 10
5.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허가한 경우 ····· 10
6.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
7.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 11
8.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무죄, 면소, 형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 11
9.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12
10. 구속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 ····· 12
11. 소송촉진법이 정한 특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2
제2절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 ····· 13
I. 서설 ····· 13
II. 소송촉진법 제23조의 연혁 ····· 14
1.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도입과 위헌결정 ····· 14
2. 소송촉진법 제23조의 개정 ····· 15
3. 소송촉진법 제23조 개정 후의 경과 ····· 15
III.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16
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불능 ····· 16
2.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것 ····· 19
3. 6개월의 경과 ····· 23
4.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닐 것 ····· 24
IV. 불출석 재판의 진행 ····· 24
제3절 영구미제 사건의 처리 ····· 25
I. 영구미제 사건의 의의 ····· 25
II. 영구미제 사건의 요건과 절차 ····· 25
III. 영구미제 사건의 종국 ····· 26
제4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 27
I. 서설 ····· 27
II. 약식명령청구 사건에서의 공시송달 ····· 29
III.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출석 재판 ····· 30
제5절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 ····· 31
I.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 ····· 31
II.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 ····· 32
1. 공시송달의 요건 ····· 32
2.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유형 ····· 32
3. 항소심 공시송달의 추이 ····· 33
제6절 불출석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구제절차 ····· 34
I. 개관 ····· 34
1. 판결확정 전 피고인의 상소 ····· 34
2. 판결확정 후의 불복절차 ····· 34
II. 상소권회복청구 ····· 38
1. 상소권회복의 요건 ····· 38
2. 상소권회복의 심리와 결정 ····· 41

제3장 현행 불출석 재판제도의 문제점 ····· 43

제1절 서설 ····· 45

제2절 빈번한 송달지연과 송달불능 ····· 45

I. 송달상 어려움의 원인 ····· 45

II. 피의자신문의 생략, 수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문제 ····· 46

III. 사건적체, 재판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문제 ····· 47

1. 1심의 현황 검토 ····· 47

2. 항소심의 현황 검토 ····· 49

IV. 절차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 49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절차의 문제점 ····· 50

I. 유형화의 필요성 ····· 50

II. 피고인의 도주, 출석거부에 따른 재판의 지연 ····· 51

1. 엄격한 절차적 요건 ····· 51

2. 불출석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1

3. 공시송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지연 ····· 52

4. 설문조사 결과 ····· 54

III.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실효성 부족 ····· 56

1. 소재탐지촉탁 ····· 56

2. 구인영장 ····· 58

3. 구금영장 ····· 60

제4절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문제점 ····· 62

I. 약식명령 사건 ····· 62

1. 약식명령 송달의 문제 ····· 62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따른 절차반복 ····· 62

II. 정식재판청구 사건 ····· 64

1. 피고인의 임의적 불출석 ····· 64

2. 2회 불출석 재판의 실효성 제고 필요 ····· 64

3. 판결문 작성의 강제 ····· 67

4. 설문조사 결과 ····· 68

제5절 항소심 사건 ····· 70

I. 피고인에 대한 송달 및 소환의 어려움 ····· 70

II. 2회 불출석 재판의 실효성 제고 필요 ····· 71

III. 구속 피고인의 고의적 출석거부로 인한 재판지연 ····· 71

1. 불출석하는 피고인의 유형 ····· 71

2. 항소심에서 구속 피고인 불출석의 특징 ····· 72

3. 구속 피고인의 재판지연의 모습 ····· 72

IV. 법정구속의 감소로 인한 항소심의 불출석 문제 ····· 75

1. 문제의 소재 ····· 75

2. 예규 개정에 따른 실무의 변화 ····· 75

3. 불출석 피고인의 증가 여부 ····· 76
V. 설문조사 결과 ····· 77

제4장 외국의 불출석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79

제1절 미국 ····· 81
I. 피고인의 출석권 ····· 81
1. 개요 ····· 81
2. 연방헌법상 피고인의 출석권 ····· 81
II. 연방형사소송규칙상 불출석 재판의 요건 및 효과 ····· 89
1. 성질상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 ····· 89
2. 피고인의 임의적 불출석으로 인한 출석권 포기 ····· 90
3. 피고인의 재판방해로 인한 불출석 재판 ····· 94
4. 도망자에 대한 권리박탈 법리(Fugitive Disentitlement Doctrine) ····· 94
III. 불출석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불출석 재판의 효과 ····· 95
1. 불출석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95
2. 불출석 재판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 ····· 95
IV. 뉴욕주에서의 불출석 재판 ····· 96
1. 서설 ····· 96
2. 피고인의 자의적 출석권 포기로 인한 불출석 재판 ····· 96
제2절 독일 ····· 101
I. 개관 ····· 101
II. 피고인의 출석의무 ····· 101
III.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102
1. 부재의 의미 ····· 103
2. 외국거주의 경우 ····· 103
3. 효과 ····· 103
IV.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104
1. 독일 형사소송법 제232조: 경한 범죄의 경우 불출석 ····· 104
2. 독일 형사소송법 제233조: 경한 범죄의 경우 출석의무의 면제 ····· 105
3. 독일 형사소송법 제329조: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 105
4. 독일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2항: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의 불출석 ····· 106
V.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공판진행 ····· 106
1. 독일 형사소송법 제231조: 출석의무와 불출석 공판 ····· 107
2. 독일 형사소송법 제231a조: 피고인이 변론무능력을 야기한 경우 ····· 110
3. 독일 형사소송법 제231b조: 질서위반행위 ····· 111
VI.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112
1. 공판 개시 전의 강제수단 ····· 113
2. 공판시작시점의 불출석에 대한 강제수단 ····· 114
3. 공판이 개시된 후의 강제수단 ····· 116

VII. 독일의 불출석 재판실무 ····· 116
1. 서설 ····· 116
2. 부재자 재판 관련 ····· 117
3. 독일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 ····· 117
4. 독일 형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한 불출석 재판 ····· 118
5. 독일 형사소송법 제231a조, 제231b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 ····· 119
6. 불출석 재판제도에 대한 종합적 의견 ····· 119
제3절 일본 ····· 120
I. 개관 ····· 120
II. 피고인의 출석의무 ····· 120
1. 관련 조문 ····· 120
2. 피고인 출석의 원칙 ····· 122
III.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 ····· 123
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일본 형사소송법 제283조) ····· 123
2. 경미 사건의 경우(일본 형사소송법 제284조) ····· 123
3. 구류,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일본 형사소송법 제285조) ····· 124
4. 구속 피고인의 출석거부(일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126
5.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출석한 경우 또는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341조) ····· 126
6.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일본 형사소송법 제390조) ····· 127
IV.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 127
1. 기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 127
2. 기소장 송달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 130
V. 일본의 불출석 재판제도의 한계점과 그에 대한 비판 ····· 133
제4절 프랑스 ····· 134
I. 프랑스 형사사법체계의 개관 ····· 134
1. 범죄의 분류 ····· 134
2. 관할법원 ····· 134
3. 대심주의의 원칙 ····· 135
II. 중죄법원의 불출석 재판제도 ····· 136
1. 프랑스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 136
2. 구체적 검토 ····· 137
III. 경죄법원의 불출석 재판제도 ····· 138
1. 프랑스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 138
2. 구체적 검토 ····· 139
IV. 경찰법원의 불출석 재판제도 ····· 139

제5장 불출석 재판제도의 개선방안 ····· 141

제1절 서설 ····· 143
제2절 피고인 출석확보수단의 개선방안 ····· 144
I. 서설 ····· 144
1. 문제의 소재 ····· 144
2. 구금영장 집행률의 제고 필요성 ····· 144
II. 통신사실자료확인 ····· 145
1. 통신사실자료확인의 개념 ····· 145
2. 자료제공요청의 주체 ····· 146
3. 자료제공요청의 방식 ····· 147
4.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 ····· 148
III. 압수수색영장, 제출명령 ····· 149
1. 서설 ····· 149
2.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50
3. 유효기간의 문제 ····· 151
4. 자료의 전달방식 ····· 151
5. 자료의 범위 ····· 152
IV. 검찰의 검거팀 운영과 관련한 실무례 ····· 153
1. 검찰의 검거팀 도입 ····· 153
2. 검거팀의 현황과 운영방식 ····· 153
3. 인천지방검찰청의 운영사례 ····· 154
4. 검거팀 운영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 개선사항 ····· 155
5. 검토 및 전망 ····· 157
V. 법관 설문조사 결과 ····· 158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제도의 개선방안 ····· 160
I. 불출석 재판의 유형화 및 요건 완화의 필요성 ····· 160
II. 불출석 재판제도의 위헌성 논의에 대한 검토 ····· 161
1.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대한 비판론 ····· 161
2. 위헌결정의 취지 ····· 162
3. 위헌성 검토의 기준 ····· 163
4. 소결론 ····· 167
III. 유형별 검토 ····· 168
1. 유형분류의 기준 ····· 168
2.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1유형 ····· 169
3.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은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없는 경우: 2유형 ····· 173
4.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하는 경우: 3유형 ····· 176
5.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4유형 ····· 185
6. 설문조사 결과 ····· 191
IV. 소결론 ····· 193
제4절 정식재판청구 사건 개선방안 ····· 195

I. 기일통지절차의 간소화 ····· 195
1. 공판기일 일괄지정제도의 도입 검토 ····· 195
2. 전화에 의한 기일통지의 허용 필요성 ····· 196
II. 피고인의 주소지 등 신고의무의 신설 ····· 199
1. 의무신설의 필요성 ····· 199
2. 기대가능한 효과 ····· 199
3. 설문조사 결과 ····· 200
4. 개정안 ····· 200
III. 2회 불출석 요건의 완화 ····· 201
1. 요건완화의 필요성 ····· 201
2. 설문조사 결과 ····· 202
3. 개정안 ····· 202
IV.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 허용 ····· 203
1. 검사가 청구한 고정 사건의 규율 ····· 203
2. 문제점 ····· 203
3. 구체적 개정안 ····· 204
V. 판결 이외 종국절차의 도입 ····· 205
1. 문제점 ····· 205
2. 정식재판청구 취하간주제도에 대한 검토 ····· 206
3.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 207
제5절 항소심 사건 개선방안 ····· 209
I. 송달, 소환과 관련된 특례규정의 도입 여부 ····· 209
II. 2회 불출석 요건의 완화 ····· 210
1. 요건완화의 필요성 ····· 210
2. 설문조사 결과 ····· 210
3. 개정안 ····· 211
III. 구속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재판의 요건완화 ····· 211
1. 요건완화의 필요성 ····· 211
2. 개정안 ····· 212
IV. 판결 이외 종국절차의 도입 여부 ····· 212
제6절 기타 재판유형에 대한 검토 ····· 213
I. 영구미제 사건 ····· 213
II. 즉결심판 사건 ····· 214
1. 의의 ····· 214
2. 절차적 특징 ····· 215
3. 즉결심판 사건의 현황 ····· 215
4. 개선필요성의 검토 ····· 216
제7절 종합적 개정안 ····· 217

제6장 결론

203.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5-2

연구책임자: 김 종 근(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서 용 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3월 5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 4
Ⅰ. 연구의 방법 ····· 4
Ⅱ. 연구의 내용 ·····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5
제2장 기술 유출 사건의 개관 ····· 7
제1절 보호대상 기술 ····· 9
Ⅰ. 개요 ····· 9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 10
Ⅲ. 영업상 주요자산 ····· 13
Ⅳ.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 14
제2절 보호대상 기술 침해행위 ····· 23
Ⅰ. 영업비밀의 절취 등 ····· 23
Ⅱ. 영업용 주요자산의 유출 등 ····· 28
Ⅲ. 산업기술의 절취 등 ····· 29

제3절 각 법률의 중복 적용 ····· 33

제3장 주요 국가들의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 및 사례 ····· 37

제1절 미국 ····· 39
Ⅰ. 개요 ····· 39
Ⅱ. 규제 법률 ····· 39
Ⅲ. 주요 사례 ····· 45
Ⅳ. 검토 ····· 48
제2절 일본 ····· 49
Ⅰ. 개요 ····· 49
Ⅱ. 부정경쟁방지법 ····· 49
Ⅲ. 주요 사례 ····· 74
Ⅳ. 검토 ····· 80
제3절 독일 ····· 81
Ⅰ. 개요 ····· 81
Ⅱ. 영업비밀보호법 주요 내용 ····· 81
Ⅲ. 실무 현황 ····· 88
Ⅳ. 검토 ····· 97
제4절 프랑스 ····· 98
Ⅰ. 개요 ····· 98
Ⅱ.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 98
Ⅲ.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 103
Ⅳ. 기술 유출 사례 ····· 111
Ⅴ. 검토 ····· 118
제5절 우리나라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19

제4장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재판 현황 ····· 123

Ⅰ. 미제 현황 ····· 125
Ⅱ. 평균 처리 기간 ····· 128
Ⅲ. 평균 공판기일 횟수 ····· 130
Ⅳ. 기술 유출 관련 제1심의 증인 수 ····· 132
Ⅴ. 통계자료의 분석 및 평가 ····· 133

제5장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심리 절차 ····· 135

제1절 공소장의 검토 ····· 137
Ⅰ. 공소사실 ····· 137
Ⅱ. 죄명 및 적용법조 ····· 141
제2절 기술 유출 범죄사건의 쟁점별 검토 ····· 146
Ⅰ. 서론 ····· 146

Ⅱ.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146
Ⅲ. 업무상배임 ····· 233
Ⅳ.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261

제6장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 287

제1절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 ····· 289
Ⅰ. 기술의 이해도 문제 ····· 289
Ⅱ. 공판절차의 장기화 ····· 290

제2절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 ····· 292
Ⅰ. 기술 유출 범죄 담당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 ····· 292
Ⅱ. 전문가의 활용 ····· 294
Ⅲ. 공판준비절차의 충실화 ····· 305
Ⅳ. 증거조사의 집중화·효율화 ····· 310
Ⅴ. 재정합의 결정 등을 통한 합의부에서의 심리 ····· 313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 315
Ⅰ. 관할집중 논의 ····· 315
Ⅱ. 전문가 배치의 확대 ····· 319
Ⅲ. 피해자 절차 참여권 제고 ····· 320
Ⅳ.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방지 제도 ····· 343
Ⅴ. 구속기간의 완화 ····· 355

제7장 기술 유출 범죄와 양형 ····· 361

제1절 개관 ····· 363

제2절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관련 통계 ····· 364
Ⅰ. 죄명별 형량분포 ····· 364
Ⅱ. 영업비밀 침해행위 선고내역 ····· 365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량분포 ····· 366
Ⅳ. 양형기준 준수율 ····· 369

제3절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 370
Ⅰ. 양형기준 수정 경과 ····· 370
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 ····· 372

제4절 기술 유출 범죄 양형의 개선 방향 ····· 386
Ⅰ. 수정 양형기준에 관한 추가 고려사항 ····· 386
Ⅱ.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여부 ····· 389

제8장 결론 ····· 417

204.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현안보고서 2025-01

연구책임자: 남 승 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4월 7일 발행

Ⅰ. 연구 개관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1
3. 연구의 범위 ····· 2
4. 연구방법 ····· 2
5. 연구경과 ····· 3

Ⅱ. 공판중심주의 개관 ····· 5
1. 공판중심주의 의의 ····· 5
2. 공판중심주의 제도의 법제화 과정 ····· 5
가.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전 ····· 5
나.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 6
3. 공판중심주의 제도의 이상과 한계 ····· 7
가. 공판중심주의 제도가 예정한 이상적 공판절차의 모습 ····· 7
나. 복잡사건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의 현실 및 한계 ····· 7

Ⅲ. 복잡사건의 심리 현황과 문제점 ····· 10

1. 복잡사건의 통계 현황 ····· 10
가. 통계대상 사건의 선정 ····· 10
나. 복잡사건의 구체적 통계 현황 ····· 11
다. 일반사건(전국 제1심 형사합의 사건)과의 통계 비교 ····· 14
라. 통계자료 분석 및 평가 ····· 15

2. 소송관계인이 느끼는 복잡사건 심리의 문제점 ····· 16
3.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 17
가.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17
나. 개선방향의 목표 설정 ····· 18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적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발견 ····· 18
2) 충실한 재판 VS 신속한 재판 ····· 18
3) 무엇을 어느 정도로 추구할 것인가? ····· 18
4) 복잡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의 실현 ····· 19
5)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증거조사 및
심리방법 모색의 필요성 ····· 19

Ⅳ. 해외 사법례 ····· 21

1. 독일 ····· 21
가. 법관 운용 ····· 21
나. 공소장일본주의의 미적용 ····· 22
다. 증거조사 방법 ····· 22
라. 진술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및 조사방법 ····· 22

2. 프랑스 ····· 23
가. 법관 운용 ····· 23
나. 형사사법 절차의 특징 ····· 23
다. 공소장일본주의의 미적용 ····· 24
라. 조서의 활용 및 전문법칙의 미적용 ····· 24

3. 영국 ····· 25
가. 법관 운용 ····· 25
나. 형사사법 절차의 특징 ····· 26
다. 전문법칙의 태동과 현재 운용례 ····· 26
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진술의 법정 현출 방법 ····· 30
1) 피의자신문 ····· 30
2)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 30

4. 미국 ····· 31
가. 법관 운용 ····· 31
나. 형사사법 절차의 특징 ····· 31
다. 증거채부 절차 ····· 32

1) 공판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 ····· 32
2) 증거채부의 일반적 기준 ····· 32
▣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상 증거채부 기준 ····· 32
▣ 연방증거규칙 제403조를 적용하여 증거를 배제한 사례 ····· 34
▣ 증거배제신청(유해증거배제신청 및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 ····· 35
▣ 뉴욕주 브루클린 형사법원의 증인채부 실무례 ····· 36
라.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 ····· 38
마.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의 적용 ····· 38
1) 전문법칙 ····· 38
2)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진술증거의 법정 현출 방법 ····· 39

5. 일본 ····· 40

가. 법관 운용 ····· 40
나. 형사사법 절차의 특징 ····· 40
다. 공판전정리절차에 의한 복잡사건의 심리 효율화 ····· 41
라.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 ····· 42
마. 전문법칙의 적용 및 진술증거의 현출 방법 ····· 42
바. 증거의 엄선청구 의무 ····· 43

6. 시사점 ····· 45

가. 전문법칙과 직접주의 ····· 45
나. 복잡사건에 있어서의 심리 효율화 ····· 46
다. 증거의 허용성과 증거조사의 필요성 ····· 47

Ⅴ. 복잡사건의 심리 효율화 방안 ····· 48

1. 증거신청 및 채부의 적정화 ····· 48

가. 문제점 ····· 48
나. 개선방향 ····· 49
1)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증거조사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증거채부 기준 도입의 필요성 ····· 50
2) 소송관계인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의무 ····· 50
다. 증거채부 일반론 ····· 51
1) 관련 규정 ····· 51
2) 증거채부 과정에서의 일반적 고려 요소 ····· 52
라. 증거 선별의무 및 증거채부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 ····· 53
1) 증거 선별의무 및 증거채부의 기준 마련(규칙개정안) ····· 53
▣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 54
▣ 의의 및 개선효과 ····· 55
2) 증거신청 단계에서 입증취지 기재의 의무화(실무개선안) ····· 56
▣ 필요성 ····· 56
▣ 문제점 ····· 56
▣ 현행 증거목록 양식 ····· 57

▣ 증거목록 개선안(다음 페이지 참조) ····· 58
▣ 기대효과 ····· 58

2. 증인조사의 효율화 ····· 60
가. 문제점 ····· 60
나. 복잡사건에서 효율적 증인채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 62
1) 효율적인 증인채부의 전제 ····· 62
2) [제1안] 쟁점별 주요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안 ····· 63
▣ 핵심 ····· 63
▣ 구체적 사례 ····· 63
▣ <1단계> 쟁점파악 및 분류 ····· 65
▣ <2단계> 검찰의 증거신청 및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 진술 ····· 66
▣ <3단계> 쟁점별 분류에 따른 증인신청 및 피고인 측 의견청취 ····· 66
▣ <4단계> 쟁점별 증인에 대한 증인채부 및 증인신문 ····· 69
▣ <5단계> 보류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채부 ····· 69
▣ 검토 ····· 70
3) [제2안] 공소사실별 증거분류 및 중요도에 따른 증거채부 안 ····· 70
▣ 핵심 ····· 71
▣ <1단계> 각 공소사실별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분 ····· 71
▣ <2단계> 피고인 측 증거의견 ····· 74
▣ <3단계> 증인채부 ····· 75
▣ <4단계> 보류한 증인에 대한 증인채부 ····· 75
▣ 검토 ····· 75
4) [제3안] 공소사실별 구체적 증거 기재 안 ····· 76
▣ 핵심 ····· 76
▣ <1단계> 공소사실 중 다툼 있는 부분과 다툼 없는 부분의 구분 ····· 76
▣ <2단계> 검사의 관련 증거 구체적 거시 ····· 77
▣ <3단계> 증인채부 ····· 81
▣ <4단계> 보류한 증인에 대한 증인채부 ····· 84
▣ 검토 ····· 84
다. 효율적인 증인신문 계획의 수립방안 ····· 84
1) 입증계획서 제출을 통한 증인신문 일정 수립 ····· 84
2) 증인신문 스케줄의 작성 ····· 87
3) 증인신문기일의 일괄 지정 및 집중적인 증인조사의 실시 ····· 88
라. 증인신문 범위의 효과적인 제한 방안 ····· 89
1) 문제점 ····· 89
2) 개선방안 ····· 91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부인시 부동의 부분의 특정 요구 ····· 91
▣ 증인신문 이전 관련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건파악 ····· 92
마.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인조사 방안 ····· 92
1) 문제점 ····· 92
2) 개선방안 ····· 93

3. 서증조사의 효율화 ····· 94
가. 문제점 ····· 94
나. 서증조사의 효율화 방안 ····· 95
1) 동의한 서증과 부동의한 서증의 분리 조사 ····· 95
2) 쟁점별 내지는 증인과 연관된 서증의 연계조사 ····· 95
3) 유연한 조사 방식의 채택 ····· 95
4) 서증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청취(서증조사의 핵심) ····· 99
5) 증거분리제출 제도의 유연한 운영 ····· 99
6)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구현될 증거분리제출제도 ····· 100

4. 수사기록 열람·복사의 신속화 ····· 101
가. 관련 규정 ····· 101
나. 문제점 ····· 102
다. 개선방안 ····· 104
▣ 법원의 검사에 대한 열람·등사 명령 활용(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 105
▣ 검찰에 대한 협조 요청 ····· 107

5. 녹음·녹화물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효율화 ····· 107
가. 녹음·녹화물에 대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 마련의 필요성 ····· 107
1) 문제점 ····· 107
2) 개선방안 ····· 109
3)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 109
▣ 의의 및 기대효과 ····· 110
나.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효율화 ····· 110
1) 판사의 경질에 의한 공판절차의 갱신제도 개관 ····· 110
2) 관련 규정 ····· 111
3) 입법 연혁 및 일본의 공판절차 갱신 실무 ····· 114
▣ 일본 형사소송규칙 ····· 114
▣ 일본의 법정녹음 및 공판절차 갱신 실무 ····· 115
4) 공판조서와 녹음물, 녹취서와의 관계 ····· 116
5)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증거조사 방식의 문제점 ····· 117
6) 현행 공판절차의 갱신 모습 ····· 118
7)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개선 필요성 ····· 119
8) 개선안 ····· 120
▣ [제1안]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의 특칙 규정안 120
▣ [제2안]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하는 방안 ····· 121
▣ [제3안] 녹취서와 녹음물 모두를 조서의 일부로 하는 방안 ····· 123
▣ [제4안] 소송지연 목적에 대한 제재안 ····· 125
▣ 검토 ····· 126
다. 형사전자소송 환경하에서의 녹취 실무의 개선안 ····· 128
1) 문제점 ····· 128
2) 개선안 ····· 128

3) 시범 운용례 ····· 129
4) 기대효과 ····· 129

Ⅵ. 효율적인 심리모델의 제안 ····· 132

1. 목표 및 방향성 ····· 132
2. 복잡사건에 있어서 심리모델의 제안 ····· 132
가. 모델안 ····· 132
1) 기본모델 ····· 132
▣ 요약 ····· 132
▣ 심리절차도 ····· 133
▣ 구체적인 진행사례 ····· 133
2) 변형모델 ····· 133
▣ 요약 ····· 134
▣ 심리절차도 ····· 134
나. 복잡사건에 있어서 심리모델의 구체화 ····· 135
1) 원칙적인 공판준비절차의 운영 ····· 135
▣ 공소장 접수 단계 ····· 136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 136
2) 제1회 공판준비기일(사건파악 및 쟁점정리) ····· 136
▣ 검사의 사건개요 설명 ····· 136
▣ 피고인 측의 입장과 주장 정리 ····· 136
▣ 제2회 공판준비기일 안내 ····· 137
3) 제2회 공판준비기일(증거신청 및 채부, 입증계획 청취) ····· 138
▣ 증거신청, 증거의견 및 입증계획 청취 ····· 138
▣ 증거채부 ····· 139
▣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안내 ····· 139
▣ 공판준비절차 이후 향후 재판일정 검토 ····· 139
4) 제3회 공판준비기일(증인채택 및 향후 재판일정 협의) ····· 139
5) 제1회 공판기일 ····· 139
6) 제2회 공판기일 이후 ····· 140
7) 부동의한 서증 및 송부되어 온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 140
▣ 부동의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 140
▣ 송부되어 온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 140
8) 피고인신문 ····· 141
9) 변론종결 및 판결서 작성 ····· 141

Ⅶ. 결론 ····· 142

참고문헌 ····· 143

제1장 서론 ····· 1

205.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2025-02

연구책임자: 김 효 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4월 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Ⅰ. 연구의 범위 ····· 7
Ⅱ.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주식매수가액 공탁의 문제점 ····· 11

제1절 변제공탁의 법리와 일부공탁의 효력 ····· 13
Ⅰ. 변제공탁의 법리 ····· 13
1. 변제공탁의 의의 ····· 13
2. 변제공탁의 신청 ····· 14
가. 관할 ····· 14
나. 공탁당사자 및 공탁의 목적물 ····· 14
다. 공탁통지서 발송 ····· 15
3. 변제공탁의 요건 ····· 16
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 16
나. 공탁원인 ····· 17
다. 변제공탁의 내용 ····· 19
4. 변제공탁의 효과 ····· 20
가. 채무의 소멸 ····· 20

나. 담보의 소멸 ····· 21
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및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21
Ⅱ. 일부공탁의 효력 ····· 22
1. 일부공탁 무효의 원칙 ····· 22
2. 일부공탁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 24
가.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하여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 24
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진정한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24
제2절 주식매수청구권의 법리와 주식매수가액 공탁의 실무상 문제점 ····· 26
Ⅰ.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리 ····· 26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6
가. 의의 및 기능 ····· 26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원인 ····· 28
다. 주식매수청구권자 ····· 31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 32
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 39
2. 양도제한주식의 매수청구권 ····· 47
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의 취지 ····· 47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 48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 50
3.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 52
가. 의의 및 기능 ····· 52
나. 주식매도청구권자 ····· 53
다.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 경영상 목적 ····· 54
라.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 ····· 55
마.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 56
4.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 58
가. 의의 ····· 58
나. 주식매수청구권자 ····· 58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 58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 59
Ⅱ. 주식매수가액 공탁의 실무상 문제점 ····· 59
1. 불확정채무 공탁의 문제점 ····· 59
2. 일부공탁의 법리 적용시 문제점 ····· 60
3. 주식매수가액의 일부공탁 관련 판례의 검토 ····· 61
가. 주식매수가액 일부공탁의 유효성 및 변제충당순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50752 판결) ····· 61
나. 상환금액의 일부공탁 문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 66

제3장 주식매수가액 사전지급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례 ····· 73

제1절 서설 ····· 75
제2절 미국 ····· 78
Ⅰ. 개관 ····· 78
Ⅱ. 미국 개정모범회사법(RMBCA) ····· 79
Ⅲ.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DGCL) ····· 80
제3절 일본 ····· 82
Ⅰ. 개관 ····· 82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83
1. 주식매수청구절차 ····· 83
2. 주식매수의 효력발생시기(주주 지위 상실 시점) ····· 83
3. 주식매수가액 사전지급제도(일부공탁의 허용) ····· 84
Ⅲ. 양도제한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 85
Ⅳ.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87
Ⅴ. 주식매수가액 사전지급제도 운용에 대한 실무상 평가 ····· 89
제4절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비교 ····· 92

제4장 상법 개정안의 입장 ····· 97

제1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액의 공탁 ····· 99
Ⅰ. 회사의 주식매수가액 및 산정근거 등 명시·제공의무 및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 99
1.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식매수가액 및 산정근거 명시의무 ····· 100
2. 주식매수가액 산정자료 등 비치의무와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 102
Ⅱ. 주식매수의 효력발생시기(주주 지위 상실시점) ····· 104
1. 주식매수 효력발생시점 – 기업구조개편행위의 효력발생일 ····· 104
2. 주식매수 효력발생조건 – 명시가액의 전부 지급·공탁 ····· 106
Ⅲ. 매수가액 결정절차 ····· 108
1. 개관 ····· 108
2. 매수가액 결정 신청권자 ····· 110
3. 매수가액 결정 신청기간 ····· 111
Ⅳ. 매수가액 지급의무의 이행기 ····· 112
Ⅴ. 주식매수가액의 공탁(일부공탁의 허용) ····· 114
1. 개관 ····· 114
2. 효력발생일 전 공탁 – 명시가액 전부의 공탁 허용 ····· 115
3. 효력발생일 후 공탁 – 명시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의 공탁 허용 ····· 116
4. 공탁의 회수 불허 ····· 117
제2절 양도제한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액의 공탁 ····· 118
Ⅰ. 개관 ····· 118
Ⅱ. 주식매수가액의 공탁(일부공탁의 허용) ····· 119

제3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또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매가액의 공탁 ····· 121
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121
1. 개관 ····· 121
2. 지배주주의 매매가액 산정근거 등 자료 비치의무 및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 122
3. 주식매매가액의 공탁(일부공탁의 허용) ····· 122
Ⅱ.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123
1. 개관 ····· 123
2. 주식매매가액의 공탁(일부공탁의 허용) ····· 124

제5장 주식매수가액 일부공탁 허용에 관한 입론 ····· 125

제1절 일부공탁 허용의 타당성 검토 ····· 127
Ⅰ. 개관 ····· 127
Ⅱ. 주식매수가액 일부공탁의 유효성에 관한 찬반론 ····· 128
1. 일부공탁 무효설 ····· 128
2. 일부공탁 유효설 ····· 129
Ⅲ. 일부공탁 허용 여부 검토 ····· 130
제2절 주식매수가액 일부공탁 허용시 법적 쟁점 ····· 133
Ⅰ. 개관 ····· 133
Ⅱ. 주식매수청구권자의 주주 지위 상실 ····· 133
1. 주식매수가액 지급 이전 주주 지위 상실 여부 ····· 133
2. 주주 지위 상실 시점 ····· 136
3. 주주 지위 상실의 조건(주주 지위 상실과 대금지급의 결합 여부) ····· 137
Ⅲ. 주식매수가액 지급의무의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시점) ····· 139
Ⅳ. 주식매수가액 일부공탁의 허용 형태 및 범위 ····· 140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40
가. 일부공탁의 허용 형태 검토 ····· 140
나. 기업구조개편행위 효력발생일 전 일부공탁의 허용범위 ····· 142
다. 기업구조개편행위 효력발생일 후 일부공탁의 허용 여부 및 액수 ····· 146
2. 양도제한주식의 매수청구권 ····· 148
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149
4.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149
Ⅴ. 일부공탁의 변제충당순서 ····· 150
Ⅵ. 공탁금 회수 ····· 151
Ⅶ.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 152

제6장 결론 ····· 155

206.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 2025-03

연구책임자: 이 정 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4월 11일 발행

Ⅰ. 서론 ····· 1

1. 현안 검토의 배경과 목적 ····· 1
가. 검토의 배경 ····· 1
나. 검토의 목적 ····· 2
2.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 2
가. 보고서의 구성 ····· 2
나. 연구방법 ····· 3

Ⅱ.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과 감정 관련 기구의 필요성 ····· 4

1.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 ····· 4
가. 감정절차의 지연 ····· 4
나. 감정내용의 부실 ····· 9
2. 감정 지연 및 부실의 원인 ····· 9
가. 적합한 감정인 지정이 어려움 ····· 9
나. 감정 준비 및 진행 단계에서의 부실 ····· 12
다. 감정서 제출 이후 보완절차의 부실 및 지연 ····· 13
3.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감정 관련 기구의 신설 필요성 ····· 14
가. 감정의 각 단계별 전문가 참여 ····· 14
나. 감정사건의 통합 관리 ····· 15
다.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 ····· 16
라. 감정 관련 기구 신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16

Ⅲ. 비교법적 검토 ····· 18

1. 프랑스: 특임법관 제도 ····· 18
가. 의의 ····· 18
나. 도입 경위 및 근거 ····· 18
다. 특임법관의 역할 ····· 19
라. 개별 감정사건에서 특임법관의 구체적 업무 ····· 20
2. 일본: 의사(医事)관계소송위원회, 건축관계소송위원회 ····· 21
가. 의의 및 설치 근거 ····· 21
나. 설치 배경 ····· 21
다. 구체적 역할 ····· 23
라. 특징 ····· 26
3. 그 외 국가 ····· 26
가. 독일 ····· 26
나. 미국, 영국 ····· 28

Ⅳ. 감정절차 개선에 관한 종전의 논의 ····· 29

1. 전문심리관 제도 ····· 29
가. 의의 ····· 29
나. 제안 배경 ····· 29
다. 도입 취지 ····· 29
라. 구체적 업무 ····· 30
마. 제도의 운영 ····· 30
바. 논의 및 추진 결과 ····· 31
2. 감정센터 ····· 32
가. 의의 ····· 32
나. 내용 ····· 32
다. 업무 ····· 33
3.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 33
가. 제안 및 배경 ····· 33
나. 구성 ····· 34
다. 역할 ····· 34
라. 기타 ····· 34
4.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스케줄러 관여 ····· 34
가. 의의 및 제안 ····· 34
나. 필요성 ····· 35
다. 감정절차의 진행 개요 ····· 35
라.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의 차이 ····· 36
마. 도입 가능성 및 문제점 ····· 36

바. 논의 결과 ····· 37
5. (가칭) 감정위원회 ····· 37
가. 의의 및 제안 ····· 37
나. 제안 배경 ····· 38
다. 조직 형태 및 구성 ····· 38
라. 업무처리 절차 ····· 38
마. 논의 결과 ····· 39

Ⅴ. 감정 관련 기구의 형태와 역할 등에 대한 검토 ····· 40

1. 역할과 조직 형태 ····· 40
가. 제1안: '감정센터' 방식 ····· 40
1) 의의 및 배경 ····· 40
2) 기대되는 효과 ····· 40
3) 예상되는 문제점 ····· 41
나. 제2안: '감정인추천위원회' 방식 ····· 42
1) 의의 ····· 42
2) 기대되는 효과 ····· 42
3) 예상되는 문제점 ····· 43
다. 제3안: '감정전담법관' 방식 ····· 44
1) 의의 ····· 44
2) 업무 처리 절차 ····· 45
3) 기대되는 효과 ····· 46
4) 예상되는 문제점 ····· 47
라. 제4안: '감정관리센터' 방식 ····· 47
1) 의의 ····· 47
2) 업무 처리 절차 ····· 48
3) 기대되는 효과 ····· 49
4) 고려 사항 ····· 50
마. 검토 ····· 52
2. 감정 분야 ····· 52
가. 제1안: 사건 비중이 높은 의료/건설 감정에 한정 ····· 52
나. 제2안: 모든 분야의 감정 대상 ····· 53
다. 검토 ····· 53
3. 민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 검토 ····· 53
가. 문제점 ····· 53
나. 관련 규정 ····· 54
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필요 여부 ····· 55
1) 제1안: 법률상 근거규정 불필요 ····· 55
2) 제2안: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 필요 ····· 56

3) 제3안: 법률상 근거규정은 필요하나,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음 ····· 57
라. 검토 및 결론 ····· 57

4. 감정관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 58
가. 전문심리위원과의 구별 ····· 58
1) 감정절차와 관련된 기존 전문심리위원의 역할 ····· 58
2) 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의 구별 ····· 59
나. 감정관리위원의 역할 ····· 60
1) 개별 감정사건 진행 관련 ····· 60
2)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업무 관련 ····· 61
다. 감정관리위원의 세부 전문분야와 관할 ····· 61
라. 감정관리위원의 법적 지위 ····· 62
1) 제척 및 기피 ····· 62
2) 벌칙 적용 ····· 63

5. 감정관리센터의 구체적 업무와 감정절차 진행 ····· 64
가. 개별 감정사건의 관리(담당 재판부 및 감정관리위원) ····· 64
1) 감정 신청 및 채택 단계 ····· 64
2) 감정 준비 단계 ····· 66
3) 감정 진행 단계 ····· 67
4) 감정서 제출 이후의 단계 ····· 68
나.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 감독(감정담당판사) ····· 69
1) 감정인 후보자 명단 관리 ····· 69
2) 감정인 등 업무 지원 ····· 69
3) 전문가집단과의 협력관계 구축 ····· 70
다. 감정절차 진행 예시 ····· 71
1) 의료감정 ····· 71
2) 건설감정 ····· 77

Ⅵ. 감정관리센터 및 감정관리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 ····· 82

1. 민사소송법: 개정 불필요 ····· 82

2. 민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 82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 82
나. 내용 ····· 82
다. 부칙 ····· 83

3.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 개정 ····· 84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 84
나. 내용 ····· 84
다. 부칙 ····· 89

4.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전문심리위원예규'): 일부 개정 89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 89
나. 내용 ····· 89
다. 부칙 ····· 92
5.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감정예규'): 일부 개정 93
가. 개정 이유 및 경과 ····· 93
나. 내용 ····· 93
다. 부칙 ····· 103
6.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제정 ····· 104
가. 제정 취지 ····· 104
나. 진행 경과 ····· 104
다. 내용 ····· 104
라. 부칙 ····· 107

Ⅶ. 논의 및 추진 경과 ····· 108

1. 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 108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 108
3.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 109
4. 보고서 발간 ····· 110

Ⅷ. 결론 ····· 111

첨부

감정관리센터 업무매뉴얼(안)

제1장 서론 ····· 125

제1절 감정관리센터 소개 ····· 127
Ⅰ. 제도의 도입 배경 ····· 127
Ⅱ. 감정관리센터의 구성 및 업무 분담 ····· 130
1. 관련 법규 ····· 130
2. 개별 감정사건의 진행 ····· 130
3. 감정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리 ····· 130
제2절 감정관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 133
Ⅰ. 감정관리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관계 ····· 133
1. 전문심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 ····· 133
2. 기존 감정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역할 ····· 133
3. 감정관리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구별 ····· 134
Ⅱ. 감정관리위원의 역할 ····· 135
1. 개별 감정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 ····· 135
2. 감정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리업무 보조 ····· 137
Ⅲ. 감정관리위원의 법적 지위 ····· 137
1. 제척 및 기피 ····· 138
2. 비밀누설죄 ····· 141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42
제3절 감정관리센터 도입에 따른 감정절차 개관 ····· 144
Ⅰ. 감정절차의 일반적 흐름 ····· 144
Ⅱ. 감정관리위원의 참여 절차 ····· 145
1. 감정관리위원 지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청취 ····· 145
2. 감정관리위원의 절차 참여와 당사자의 의견진술 ····· 146
3.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 요구와 당사자에 대한 통지 ····· 146
4.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147
5. 감정관리위원의 기일 참여와 좌석의 위치, 조서 기재 등 ····· 147
6. 감정관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한계 ····· 148

제2장 개별 감정사건의 진행 ····· 149

제1절 감정 신청 및 채택 단계 ····· 151
Ⅰ. 감정관리위원의 참여결정 ····· 151
1. 감정관리위원의 지정 및 참여결정 ····· 151
2.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 152
3. 참여결정의 시기와 취소 ····· 152
Ⅱ.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등 요구 ····· 153
1. 감정관리위원에게 설명 등 요구서(포괄) 송부 ····· 153
2. 당사자에 대한 통지 ····· 154
Ⅲ.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155
Ⅳ. 감정의 채부 ····· 156
1. 설명 또는 의견 요구 ····· 156
2. 감정관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 ····· 156

제2절 감정 준비 단계 ····· 157
Ⅰ. 감정인(감정담당의사) 지정 ····· 157
1. 감정인 후보자의 추출 및 선정 ····· 157
2. 감정인 지정 및 당사자에 대한 고지 ····· 158
Ⅱ. 감정사항의 결정 ····· 158
1. 감정사항의 제출과 송달 등 ····· 158
2. 감정관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제시 ····· 158
3. 감정사항의 확정 ····· 159
Ⅲ. 감정자료 준비 ····· 159
1.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 ····· 159
2. 법원의 검토 및 자료제공 ····· 160
Ⅳ. 예상감정료산정서 등 검토 ····· 160
1. 감정인 후보자 등의 예상감정료산정서 등 제출 ····· 160
2. 법원의 검토와 송달 등 ····· 160
Ⅴ. 감정인신문(건설감정의 경우) ····· 161
1. 신문기일의 지정 ····· 161
2. 감정인신문의 방식 ····· 161
Ⅵ. 감정촉탁(의료감정의 경우) ····· 162

제3절 감정 진행 단계 ····· 163
Ⅰ. 감정 진행상황의 감독 ····· 163
1. 제출기한 등의 지정과 감독 ····· 163
2. 지연사유의 파악 및 조치 ····· 163
Ⅱ. 감정자료의 추가 제공 및 요청 ····· 164
Ⅲ. 당사자들 및 감정인 사이의 의견 조율 ····· 164
Ⅳ. 감정절차 진행상황의 보고 ····· 165

제4절 감정서 제출 이후의 단계 ····· 166

Ⅰ. 당사자의 의견진술 ····· 166
Ⅱ. 감정인신문 ····· 166
1. 의의 ····· 166
2. 신문의 준비절차 ····· 166
3. 신문의 방식 등 ····· 167
Ⅲ. 보충감정, 재감정 ····· 167
1. 보충감정, 재감정의 채부 절차 ····· 167
2. 감정사항 결정, 감정자료 제공 등 ····· 168
3. 재감정인의 지정 ····· 168
Ⅳ. 감정료 지급 ····· 169
1. 감정인의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 제출 ····· 169
2. 감정관리위원의 감정료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제시 ····· 170
3. 감정료 결정 ····· 170
Ⅴ. 감정인 평정 ····· 171
Ⅵ. 사건결과 통지 ····· 171

제3장 감정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리 ····· 173

제1절 감정인 후보자 명단 관리 ····· 175
Ⅰ. 감정인평정표 등 관리 ····· 175
Ⅱ. 감정인 후보자 명단 작성 관여 ····· 175
1. 감정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절차 ····· 175
2. 감정담당판사 및 감정관리위원의 역할 ····· 176
Ⅲ. 부적격 감정인의 보고 ····· 176
제2절 감정인 등 업무 지원 ····· 178
Ⅰ. 감정사건의 통합 관리 ····· 178
Ⅱ. 감정인 후보자 교육 ····· 178
Ⅲ. 감정 관련 각종 표준양식, 실무책자 마련 등 ····· 179
제3절 전문가집단과의 협력관계 구축 ····· 180
Ⅰ. 감정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정기 교류 ····· 180
Ⅱ. 유관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 180

207.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5-03

연구책임자: 이 혜 림(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4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내용 ····· 5
Ⅲ.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정신적 장애인의 개념 및 형사절차에서의 지위 ····· 9

제1절 정신적 장애의 개념 ····· 11
Ⅰ. 개요 ····· 11
Ⅱ. 장애의 개념 ····· 11
1. 장애 개념의 변천 ····· 11
2. 장애 개념의 설정 ····· 14
Ⅲ. 법적 관점에서의 정신적 장애 ····· 14
1. 장애인복지법 ····· 14
2. 발달장애인법 ····· 17
3. 장애인차별금지법 ····· 18
4. 정신건강복지법 ····· 18
5. 국가인권위원회법 ····· 19
Ⅳ. 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신적 장애 ····· 19

1. 서론 ····· 19
2. ICD-11 ····· 20
3. DSM-5 ····· 21
4. 우리나라에서의 진단기준 ····· 25
Ⅴ. 형법상 심신장애 개념과의 조화로운 해석 ····· 26
1. 형법상 심신장애의 개념 ····· 26
2. 의학적 의미의 정신적 장애와 형법에서의 정신적 장애의 범위 ····· 29
Ⅵ. 형사절차에서의 정신적 장애인 ····· 31
1. 정신적 장애인의 개념 설정 ····· 31
2. 형사절차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범위 ····· 32
제2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절차보장의 근거 ····· 34
Ⅰ. 헌법 ····· 34
Ⅱ. 국제규범 ····· 35
1. UN 장애인권리협약 ····· 35
2. 국제적 성명과 가이드라인 ····· 42
Ⅲ. 법률 ····· 47
1. 장애인차별금지법 ····· 47
2. 장애인복지법 ····· 50
3. 발달장애인법 ····· 50
4. 형사소송법 ····· 52
제3절 정신적 장애인 관련 형사사건 현황 ····· 53
Ⅰ. 정신적 장애인의 총계 ····· 53
Ⅱ.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 현황 ····· 54
1. 장애별 검거 현황 ····· 54
2. 죄명별 검거 현황 ····· 55
3.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의 전과 현황 ····· 57
Ⅲ.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의 구속 현황 ····· 58
Ⅳ.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검사 처분 현황 ····· 60

제3장 비교법적 검토 ····· 65

제1절 미국 ····· 67
Ⅰ. 정신적 장애의 정의 ····· 67
Ⅱ. 소송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CTS) ····· 67
1. CTS의 개념 ····· 67
2. CTS 평가절차 ····· 68
3. CTS 증명의 책임 및 증명의 정도 ····· 71
4. CTS 흠결시의 조치 ····· 71
5. CTS 회복절차 ····· 72
6. CTS가 회복불능인 경우 ····· 73

7. CTS의 유사 개념 ····· 73
Ⅲ.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 ····· 75
1. 정신이상 항변 ····· 75
2. 판단기준 ····· 76
3. 판결절차 ····· 78
Ⅳ.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 ····· 78
Ⅴ. 의사소통보조 ····· 79
제2절 영국 ····· 80
Ⅰ. 정신적 장애의 정의 ····· 80
Ⅱ. Appropriate Adult(AA) ····· 81
1. 정의 및 근거규정 ····· 81
2. AA의 자격 및 역할 ····· 82
Ⅲ. 등록 중개인(Registered intermediary) ····· 83
1. 도입 ····· 83
2. 의의 및 기능 ····· 84
3. 선발 및 양성 ····· 88
4. 업무 절차 ····· 89
Ⅳ. 피고인에 대한 중개인 ····· 96
Ⅴ. 재판적합성 판단 ····· 98
Ⅵ.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 ····· 99
Ⅶ. 입원명령(Hospital order) ····· 100
제3절 독일 ····· 100
Ⅰ. 정신적 장애의 정의 ····· 100
1. 관련법상 장애의 의미 ····· 100
2. 형법상 정신적 장애 ····· 101
Ⅱ. 변론능력(Verhandlungsfähigkeit) ····· 103
1. 의의 ····· 103
2. 변론능력의 판단 ····· 103
3. 변론무능력 ····· 104
4. 변론능력과 상고 ····· 106
Ⅲ. 치료지시(Therapieweisung) ····· 106
1. 관련규정 ····· 106
2. 의의 ····· 107
3. 위반시 제재 ····· 108
제4절 프랑스 ····· 109
Ⅰ. 정신적 장애의 정의 ····· 109
1. 법률상 장애의 개념 ····· 109
2. 정신장애 ····· 10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정신적 장애인 ····· 110
1. 프랑스 형사소송법체계 개관 ····· 110

2. 형사책임 조각사유로서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절차 및 결정 ··· 112
3. 예심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 113
4. 판결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 115
Ⅲ.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의 피고인 ··· 116
Ⅳ. 형사소송에서 정신적 장애인 조력제도 ··· 117
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안조치 ··· 119
1. 관련 법률 ··· 119
2. 완전 입원 형태의 정신과 치료명령 ··· 121
3. 치료의무 명령 ··· 123
4. 치료명령 운영 현황 ··· 124
제5절 일본 ··· 126
Ⅰ. 정신적 장애의 정의 ··· 126
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 127
1.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특징 ··· 127
2. 정신적 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절차 ··· 127
3. 자문 및 입회인 제도 ··· 129
4. 조사의 고도화 ··· 130
5. 기소전 감정 절차 ··· 131
Ⅲ. 소송능력 ··· 132
1. 소송능력 ··· 132
2. 책임능력과의 구별 ··· 132
3. 소송능력 판단기준 ··· 133
4. 소송능력 판단절차 ··· 134
5. 소송능력 흠결의 경우 ··· 135
Ⅳ. 절차조력 ··· 137
제6절 외국 제도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38
Ⅰ. 미국의 시사점 ··· 138
Ⅱ. 영국의 시사점 ··· 138
Ⅲ. 독일 및 프랑스의 시사점 ··· 139
Ⅳ. 일본의 시사점 ··· 140

제4장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개선방안 ··· 141

제1절 수사단계에서의 절차보장 ··· 143
Ⅰ. 장애의 확인 ··· 143
1. 수사기관의 장애확인 의무 ··· 143
2. 수사기관에서의 장애 판정 – 기소전 감정의 도입 ··· 145
Ⅱ. 보조인 ··· 150
1. 정의 ··· 150
2. 규정 ··· 151

3. 정신적 장애인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보조인의 역할 ····· 154
Ⅲ. 신뢰관계인의 동석 ····· 154
1. 정의 및 연혁 ····· 154
2. 신뢰관계인의 역할 ····· 158
3. 정신적 장애인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 159
4. 보론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 162
Ⅳ.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지정 ····· 163
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제언 – 영상녹화의 확대 등 ····· 164
Ⅵ.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연결 – 공소제기시 장애정보 표기 ····· 166
1. 공소제기시 장애정보 표기의 필요성 ····· 166
2. 장애표기와 공소장일본주의와 관계 ····· 167
3. 장애정보 표기의 구체적 방안 ····· 169
제2절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 173
Ⅰ. 서설 ····· 173
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 173
1. 의의 ····· 173
2. 연혁 및 법적 근거 ····· 174
3. 진술조력인 제도 개관 ····· 176
4.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력 절차 ····· 177
5.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조력 절차 ····· 180
6. 진술조력인 현황 ····· 184
Ⅲ.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 187
1.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의 필요성 ····· 187
2. 확대된 진술조력인 제도 규정방향 ····· 190
3. 확대된 진술조력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 ····· 191
4. 확대된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193
5.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별지2) ····· 198
6. 진술조력인의 재판절차 참여에 관한 규칙(가칭) 제정안(별지3) ····· 200
7. 진술조력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203
제3절 공판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213
Ⅰ. 절차상 조력 ····· 213
1. 보조인 ····· 213
2. 신뢰관계인의 동석 ····· 214
3. 의사소통 보조인력 ····· 215
4. 보조인, 신뢰관계인, 의사소통 보조인력, 진술조력인의 역할 분담 ····· 218
Ⅱ. 소송능력 ····· 220
1. 소송능력과 공판절차의 정지 ····· 220
2. 소송능력 판단절차 ····· 222
3. 소송능력 평가기준 ····· 224
4.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절차 ····· 225

5. 제언 – 소송능력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 226
Ⅲ.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 228
1. 서설 ····· 228
2. 소송능력 관련 ····· 228
3. 의사소통조력 관련 ····· 228
4. 실무상 준비절차기일의 활용 ····· 229
Ⅳ. 양형조사 ····· 229
제4절 선고단계에서의 고려사항 – 치료감호, 치료명령 ····· 231
Ⅰ. 치료감호, 치료명령 부과 현황 ····· 231
1. 치료감호 제도 ····· 231
2. 치료명령 제도 ····· 242
Ⅱ. 치료감호 제도 개선방안 ····· 246
1. 감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46
2. 치료감호 청구권의 검사에의 독점적 귀속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2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유효성 검토 ····· 254
Ⅲ. 치료명령 제도 개선 방안 ····· 255
1. 치료명령 관련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5
2. 치료명령의 제도적 개선방안 ····· 259
Ⅳ. 치료감호법 개정안 ····· 260
제5절 장애인 전문재판부 ····· 262
Ⅰ. 운영현황 ····· 262
1. 장애인 전문재판부의 신설 ····· 262
2. 장애인 전문재판부 현황 ····· 262
3. 장애인 전문재판부에 대한 평가 ····· 265
Ⅱ. 장애인 전문재판부 운영관련 제언 ····· 266
1. 장애확인 ····· 266
2. 전담사건 기준 ····· 267
3. 전담사건 가중치 ····· 268
4.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인인 사건의 통계화 ····· 268
5. 재판관련자에 대한 교육 ····· 269
제6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 270
Ⅰ. 개관 ····· 270
Ⅱ. 개선방안 ····· 271
1. 공판단계에서의 필요적 국선변호 ····· 271
2. 국선변호의 실질화 방안 ····· 272
Ⅲ. 입법론 –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 제도 ····· 273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 273
2.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필요성 ····· 274
3.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관련 입법안 검토 ····· 275
4.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대상에 한정한 입법안 검토 ····· 276

제5장 결론 ····· 279

208.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25-04

연구책임자: 김 봉 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5월 1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7
Ⅰ. 연구의 내용 ····· 7
Ⅱ.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예비적 고찰 ····· 11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과 사회보장 소송사건에 관한 개괄적 고찰 ····· 13
Ⅰ.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소송의 의미 ····· 13
Ⅱ. 사회보장법의 기본구조에 따른 사회보장소송의 유형 ····· 14
Ⅲ. 행정소송을 통한 사회보장사건의 특징 ····· 17
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7
2. 조직과 관할 ····· 18
3. 소송절차 관련 사항 ····· 19
가. 소 제기 방식 ····· 19
나. 제소 기간 ····· 19
다. 소송대리 ····· 19
라. 소송비용 ····· 20
마. 원칙적 심리방식으로서의 변론주의 ····· 20
바. 항고소송 ····· 21
사. 가구제 ····· 23
제2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25
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 25

1.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법제적 출발 ····· 25
2. 사회보장제도의 정착과 확대 ····· 26
3. 사회보장제도의 공고화와 조정 ····· 27
Ⅱ.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규범적 근거와 기본구조 ····· 29
1. 독일의 사회법전 ····· 29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 33
3. 일반 행정법과 구별되는 사회보장법의 특징 ····· 35
제3절 독일 사회법원을 통한 권리보호의 헌법적 보장 ····· 38
Ⅰ. 효과적인 사법적 권리보호 ····· 38
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38
Ⅲ. 사회국가원리 ····· 39
제4절 독일 사회법원의 구조와 역할 ····· 41
Ⅰ. 사회법원의 구조 ····· 41
Ⅱ. 사회법원의 역할 ····· 42
제5절 소결 ····· 46

제3장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특징 ····· 47

제1절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에서의 원고 친화성 원칙 ····· 49
Ⅰ. 들어가며 ····· 49
Ⅱ. 원고 친화성 원칙의 개념과 근거 ····· 50
1. 개념 ····· 50
2. 근거 ····· 51
Ⅲ. 원고 친화성 원칙의 주요 내용 ····· 52
1. 효과적인 사법접근권의 보장 ····· 52
가. 소 제기에서의 낮은 비용부담 ····· 52
나. 원고와 근접한 법원 ····· 53
다. 접근 장애로서의 소 제기 형식규정의 회피 ····· 53
라. 가구제 ····· 53
2. 사회법원 소송절차에서의 무기대등의 원칙 ····· 54
가.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전문가 참여 ····· 54
나. 법원의 설명의무 ····· 55
다. 사실관계 조사원칙으로서의 직권심리주의 ····· 56
3. 소결 ····· 57
제2절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 개시와 관련한 주요 사항들 ····· 58
Ⅰ. 사회법원에서의 소송당사자 ····· 58
Ⅱ. 사회법원에서의 소송유형 ····· 60
1. 일반론 ····· 60
2. 결합된 취소소송과 급부소송 ····· 61
3. 독립된 취소소송 ····· 62

4. 결합된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 ····· 62
5. 독립된 급부소송 ····· 63
6. 확인소송 ····· 64
7. 계속적 확인소송 ····· 65
8. 부작위소송 ····· 65
Ⅲ. 사회보장 행정절차 ····· 66
Ⅳ. 전심절차 ····· 67
Ⅴ. 사회법원의 지역적 관할 ····· 69
Ⅵ. 소 제기와 소의 내용 ····· 70
1. 관할위반에서의 소 제기 기간 준수 ····· 70
2. 구두를 통한 소 제기 ····· 71
3. 절차복귀 ····· 71
4. 소장의 내용적 요건 ····· 74
5. 소 청구대상의 해석규칙으로서의 최혜의 원칙 ····· 75
6. 제소 기간 ····· 77
7. 소의 변경 ····· 77
Ⅶ. 변호사강제주의의 배제 ····· 78
1. 변호사강제주의의 비적용(원칙) ····· 78
2. 예외적 변호사강제주의와 변호사 등의 선임 ····· 79
Ⅷ. 재판비용의 무상성 ····· 80
1. 원칙 ····· 80
2. 예외 ····· 81
3. 소송비용구조 ····· 82
Ⅸ. 소결 ····· 84
제3절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 진행에서의 주요 사항들 ····· 87
Ⅰ. 직권진행주의와 집중심리주의 ····· 87
Ⅱ. 직권심리주의 ····· 87
1. 일반론 ····· 87
2. 적용 범위 ····· 88
3. 당사자의 협력의무 ····· 89
4. 직권심리주의의 예외 ····· 91
가. 의사의 감정의견 청취 ····· 91
나. 사회법원법 제106a조: 실권규정 ····· 92
Ⅲ. 구두변론주의와 재판공개주의 ····· 93
1. 구두변론주의 ····· 93
2. 재판공개주의 ····· 94
Ⅳ. 당사자의 법적 청문권 ····· 97
1. 법적 청문권의 의의 ····· 97
2. 법적 청문권의 내용 ····· 98
3. 법적 청문권의 한계와 위반 효과 ····· 99

Ⅴ. 재판장의 설명의무 ····· 100
Ⅵ. 소결 ····· 101
제4절 독일 사회법원에서의 명예법관 ····· 103
Ⅰ. 사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명예법관 ····· 104
1. 법관 독립의 주체로서의 명예법관의 역할 ····· 104
2. 사회법원 재판부의 구성 ····· 106
Ⅱ. 명예법관의 임명 ····· 108
1. 보통사회법원과 주사회법원에서의 명예법관 임명 ····· 108
2. 연방사회법원에서의 명예법관 임명 ····· 109
Ⅲ. 명예법관 임명요건 및 제척과 기피 ····· 110
1. 임명요건 ····· 110
2. 제척과 기피 ····· 111
Ⅳ. 명예법관의 권리와 의무 ····· 112
1. 합의권과 표결권 ····· 112
2. 정보권과 질문권 ····· 113
3. 명예법관에 대한 보상 ····· 114
4. 명예법관에 대한 보험 ····· 115
5. 선서의무 ····· 115
6. 참여의무 ····· 116
Ⅴ. 소결 ····· 116

제4장 독일 사회법원에서의 가구제와 소송절차의 종결 ····· 119

제1절 가구제 ····· 121
Ⅰ. 가구제의 의의와 근거 ····· 121
Ⅱ. 집행정지 ····· 123
Ⅲ. 가명령 ····· 126
제2절 소송절차의 종결 ····· 128
Ⅰ. 판결을 통한 종결 ····· 128
1. 원인판결 ····· 128
2. 인낙판결과 청구포기판결 ····· 129
3. 궐석판결 ····· 130
Ⅱ. 판결 외 종결 ····· 130
1. 소 취하와 소 취하 간주 및 소송종결진술 ····· 130
2. 재판상 화해 ····· 132
3. 인낙 ····· 133
제3절 소결 ····· 133

제5장 독일 사회법원 소송제도의 시사점 ····· 135

제1절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 137

제2절 사회보장소송에서의 원고의 사법접근권 보장 ····· 143
제3절 직권심리주의의 원칙화 ····· 146
제4절 사회보장 소송사건에서의 준참심제와 전문가 참여 ····· 147
Ⅰ. 완전참심제의 도입 여부 ····· 147
Ⅱ. 준참심제의 도입과 방향 ····· 150
Ⅲ. 전문가의 참여 ····· 151
제5절 집행정지요건의 완화와 가처분제도의 도입 ····· 153
제6절 현실적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 전문재판부의 설치 ····· 156

제6장 결론 ····· 159

209.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연구보고서 2025-05

연구책임자: 신 권 철(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5년 5월 2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Ⅰ. 연구의 필요성 ····· 3
Ⅱ.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10

제2장 강제입원제도의 개관 ····· 13

제1절 사법입원의 개념과 논의 ····· 15
Ⅰ. 사법입원 도입논의의 배경과 내용 ····· 15
Ⅱ. 사법입원의 개념 ····· 23
제2절 강제입원제도의 이해 ····· 26
Ⅰ. 강제입원제도의 역사 ····· 26
Ⅱ. 강제입원에서 국친권능과 치안권능 ····· 33
Ⅲ. 강제입원에서 의료주의, 법률주의와 권리기반 시스템 ····· 40
제3절 강제입원심사제도 ····· 43
Ⅰ. 강제입원제도의 기준(1991년 UN 정신장애인 보호원칙) ····· 43
Ⅱ. 강제입원의 원칙과 요건 ····· 47
Ⅲ. 강제입원심사기관 ····· 53
Ⅳ. 강제입원심사와 절차적 보호장치 ····· 57
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의 변화 ····· 61
제4절 강제입원심사제도의 유형 비교 ····· 67

Ⅰ. 입원심사기관의 유형 ····· 67
Ⅱ. 입원심사방식의 유형 ····· 71
Ⅲ. 입원심사시기에 따른 유형 ····· 74

제3장 한국 강제입원심사제도의 현황 ····· 81

제1절 한국 입원심사제도의 연혁 ····· 83
Ⅰ.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의 강제수용(강제입원) 방식 ····· 83
Ⅱ. 한국의 강제입원심사기관 개관 ····· 86
제2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현황과 한계 ····· 92
Ⅰ. 입원적합성심사제도 ····· 92
Ⅱ.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사건과 인력 현황 ····· 114
제3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현황과 한계 ····· 131
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도입배경과 변천 ····· 131
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도의 내용 ····· 141
Ⅲ.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도의 현황과 한계 ····· 151
제4절 인신보호제도와 현황 ····· 157
Ⅰ. 인신보호제도 ····· 157
Ⅱ. 주요국의 인신보호제도 ····· 159
Ⅲ. 한국 인신보호제도의 내용 ····· 170
Ⅳ. 인신보호재판의 현황 ····· 188
제5절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 ····· 200
Ⅰ. 개관 ····· 200
Ⅱ.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 조항의 위헌소송 경과 ····· 201
Ⅲ. 강제입원과 헌법상 신체의 자유 ····· 212
제6절 기존 국회 사법입원 법안의 내용과 한계 ····· 217
Ⅰ. 개관 ····· 217
Ⅱ. 제18대 국회(2008~2012)의 입법안 ····· 218
Ⅲ. 19대 국회(2012~2016)의 입법안 ····· 222
Ⅳ. 20대 국회(2016~2020) 이후의 입법안 ····· 227

제4장 각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237

제1절 영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239
Ⅰ. 영국의 근대적 수용제도 개관 ····· 239
Ⅱ. 영국의 20세기 정신보건법 ····· 241
Ⅲ. 영국에서 법률주의와 의료주의의 대립 ····· 245
Ⅳ. 현행 영국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254
제2절 프랑스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269

Ⅰ. 프랑스의 19세기 강제수용제도 ····· 269
Ⅱ. 현행 프랑스 강제입원제도의 내용 ····· 275
Ⅲ. 인신보호판사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283
Ⅳ.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관련 판례 ····· 286
Ⅴ. 프랑스의 강제입원 관련 통계와 현황 ····· 291
Ⅵ. 프랑스 강제입원제도의 시사점 ····· 298
제3절 독일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299
Ⅰ. 독일 강제입원제도의 연혁과 개관 ····· 299
Ⅱ. 현행 독일의 강제입원제도 ····· 302
Ⅲ. 독일의 강제입원심사절차와 현황 ····· 314
Ⅳ. 독일 강제입원제도의 시사점 ····· 326
제4절 미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327
Ⅰ. 미국 강제입원제도의 개관 ····· 327
Ⅱ. 미국의 강제입원 관련 판례 ····· 333
Ⅲ. 미국의 각 주별 민사수용(강제입원)법 ····· 340
Ⅳ. 미국 강제입원제도의 시사점 ····· 350
제5절 일본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352
Ⅰ. 일본의 강제입원제도 개관 – 가족제도로서의 특징 ····· 352
Ⅱ. 일본 강제입원제도의 변천과 내용 ····· 353
Ⅲ. 일본의 강제입원심사제도와 현황 ····· 366
Ⅳ. 일본 강제입원제도의 시사점 ····· 384
제6절 대만의 강제입원심사제도 ····· 385
Ⅰ. 대만의 강제입원제도 개관 ····· 385
Ⅱ. 대만 강제입원제도의 변천과 내용 ····· 387
Ⅲ. 대만의 강제입원심사제도와 현황 ····· 393
Ⅳ. 대만 강제입원제도의 시사점 ····· 396

제5장 강제입원심사제도 개선방안 ····· 399

제1절 강제입원심사제도의 원칙과 문제점 ····· 401
Ⅰ. 강제입원심사제도의 원칙 ····· 401
Ⅱ. 현행 강제입원심사제도의 문제점 ····· 402
Ⅲ. 강제입원심사의 제도상 문제점의 해결 방향 ····· 405
제2절 입원심사제도 관련 기존의 개선방안 ····· 407
Ⅰ. 2016년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의 방안 ····· 407
Ⅱ. 2019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의 방안 ····· 411
Ⅲ.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원심사제도 개선권고 ····· 418
Ⅳ. 2024년 보건복지부의 사법입원 검토안 ····· 421
제3절 강제입원제도의 개선 ····· 423

Ⅰ. 강제입원의 유형과 현황 ····· 423
Ⅱ. 강제입원의 신청권자 ····· 429
Ⅲ. 강제입원의 절차(신청, 결정, 진단 및 이송) ····· 432
제4절 강제입원심사제도 연계방안 ····· 442
Ⅰ. 사법입원에 대한 찬반논쟁 ····· 442
Ⅱ. 강제입원심사제도 연계방안 ····· 445
제5절 결론 ····· 454

210.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5-06

연구책임자: 류 미 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25년 5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5
Ⅰ.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Ⅱ. 연구의 내용 ····· 6

제2장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규율 현황 ····· 9

제1절 이론적 고찰 ····· 11
Ⅰ. 개관 ····· 11
Ⅱ. 접근권 일반론 ····· 11
1. 개념 – 접근성과의 관계정립 ····· 11
2. 법제화 연혁 ····· 12
3. 내용 ····· 21
4. 법적 성격 ····· 24
Ⅲ.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의 의의 및 보장의 근거 ····· 26
1. 의의 ····· 26
2.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의 근거 ····· 27
제2절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 현황 ····· 39
Ⅰ. 개관 ····· 39
Ⅱ. 법원 시설 현황 ····· 39
1. 법원의 설치 ····· 39

2. 법원청사 현황 ····· 42
Ⅲ.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의 주요 내용 ····· 45
1. 장애인등편의법상 보장 내용 ····· 45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보장 내용 ····· 53
3. 법원청사 설계지침서상 보장 내용 ····· 59
Ⅳ. 현행 법제의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상 한계 ····· 61
1. 개관 ····· 61
2. 법정된 관리감독시스템 활용의 어려움 ····· 62
3. 법원 시설 특성을 반영한 실체적인 시설 기준의 부재 ····· 66
4. 소결 ····· 69

제3장 기존 법원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향후 관리·운영 방안 ····· 81

제1절 내부 서면조사 실시 ····· 83
Ⅰ. 법원청사 장애인 등 접근권 보장 현황에 대한 내부 서면조사 ····· 83
1. 기존 조사 사례 – 내부 서면조사 실시의 배경 ····· 83
2. 내부 서면조사의 취지 ····· 88
3. 내부 서면조사 진행 ····· 88
Ⅱ. 조사 결과 분석 ····· 91
1. 개관 ····· 91
2. 세부항목별 설치 현황 ····· 91
Ⅲ. 조사 결과의 점검 ····· 134
1. 점검의 필요 ····· 134
2. D법원 ····· 134
3. Q법원 ····· 135
Ⅳ. 본 조사의 한계와 활용지표로서 제안 ····· 135
1. 한계 ····· 135
2. 기존 시설 정비방식에 대한 활용지표로서 제안 ····· 135
제2절 기존 법원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 ····· 136
Ⅰ. 법원청사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리 방식 ····· 136
1. 각급 법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136
2.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시설 보완 ····· 137
Ⅱ. 법원청사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 ····· 137
1. 개관 ····· 137
2. 전수조사의 실시 ····· 138
3. 정비 방식 및 내용 ····· 140
4. 연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 ····· 148
제3절 향후 관리·운영 방안 ····· 150
Ⅰ. 개관 ····· 150
Ⅱ. 현 관리·운영 시스템의 보완 ····· 151

1. 외부 이용의 법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 151
2. 내부 직원 이용의 법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 152
Ⅲ. 대안적 조치의 운영 ····· 153
1. 법적 근거 ····· 154
2. 대안적 조치의 내용 ····· 154
3.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 ····· 154
4. 원칙에 대한 예외 ····· 156
Ⅳ. 법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안내 방식의 개선 ····· 156
1. 법원 홈페이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안내 방식 ····· 156
2. 해외 사례 ····· 158
3. 법원 홈페이지 게시 방식의 개선 ····· 161

제4장 실체적인 법원 시설 기준으로의 체계화 방안 ····· 165

제1절 개관 ····· 167
Ⅰ.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 내용의 법원 시설 기준 규정 구조 ····· 167
1. 현행법 ····· 167
2. 사법부 내부 규정 ····· 169
Ⅱ. 실체적인 법원 시설 기준으로의 체계화 방안의 설계 ····· 170
1. 주요 방향 ····· 170
2. 세부내용 ····· 172
제2절 해외 법원 시설 기준 ····· 173
Ⅰ. 미국 ····· 173
1. 개관 ····· 173
2. 규율체계 ····· 173
3.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 내용의 법원 시설 기준 ····· 177
Ⅱ. 독일 ····· 207
1. 규율체계 ····· 207
2.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 내용의 법원 시설 기준 ····· 211
Ⅲ. 일본 ····· 213
1. 규율체계 ····· 213
2.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 내용의 법원 시설 기준 ····· 216
Ⅳ. 시사점 ····· 218
제3절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정 시설 기준의 체계화 ····· 220
Ⅰ. 법정의 구조 ····· 220
1. 법정 좌석의 위치 ····· 220
2. 법정의 기본 구조 ····· 221
Ⅱ. 법정 현장조사 ····· 223
1. 조사 개요 ····· 223
2. 조사의 설계 ····· 223

3. 결과 분석 ····· 224
4. 시사점 – 법정 시설 기준 개발의 지표 ····· 230
Ⅲ. 법정 시설 기준의 체계화 ····· 232
1.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정 시설 기준 ····· 232
2. 장애인등편의법 등 개정안 ····· 245
3. 법원청사 설계지침서 개정안 ····· 272
제4절 체계화된 법정 시설 기준의 구현 방식 ····· 275
Ⅰ. 법정 보수 및 신축 등 기본계획에 반영 ····· 275
Ⅱ. 법정시설 점검기준으로 구체화 – 조사표 개발 ····· 275

제5장 결론 ····· 281

211.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5-07

연구책임자: 조 미 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7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의 구성 ····· 6

제2장 소년사법절차의 기초와 이념 ····· 9
제1절 소년사법절차 내 소년 ····· 11
제2절 소년보호이념의 발전 ····· 12
Ⅰ. 전통적인 소년보호이념 ····· 13
1. 국친사상 ····· 13
2. 교육사상 ····· 14
3.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의 상호발전 ····· 14
Ⅱ.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한 소년보호이념의 보완 ····· 15
Ⅲ. 국제법적 동향 ····· 16
1. UN 아동권리협약 ····· 16
2.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기준규칙 ····· 18
3. 소결 ····· 19
제3절 소년보호이념의 유효성 ····· 19
Ⅰ. 소년정책의 엄벌화 요청 ····· 19

Ⅱ. 이론적 검토 : 응보주의 및 예방주의 ····· 22
1. 응보주의 ····· 22
2. 예방주의 ····· 24
Ⅲ. 통계적 검토 : 소년범죄 증가 및 흉포화 여부 ····· 26
1. 소년범의 증가 여부 ····· 26
2. 소년범죄의 흉포화 여부 ····· 29
3. 소결 ····· 41
제4절 소결 ····· 41

제3장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절차 ····· 43

제1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절차의 개관 ····· 45
Ⅰ. 소년사법절차의 특징 ····· 45
1. 이원적 절차 ····· 45
2. 검사선의주의 ····· 45
Ⅱ. 소년사법절차의 흐름 ····· 45
1. 비행소년의 발견 ····· 45
2. 소년보호송치 또는 형사기소 ····· 46
3. 소년보호절차 ····· 49
4. 소년형사절차 ····· 58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절차의 문제점 ····· 61
Ⅰ. 경찰수사단계 ····· 61
1. 소년의 특수성 반영 필요성 ····· 61
2. 보조인 동석 및 조력의 한계 ····· 62
Ⅱ. 검찰수사단계 ····· 63
1. 검사의 전문성 ····· 63
2. 결정 전 조사의 비활성화 ····· 64
3. 기소유예처분의 적절성 ····· 64
Ⅲ. 소년보호 재판단계 ····· 67
1.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제도 및 순환보직제의 한계 ····· 67
2. 소년조사관의 부족 ····· 69
3. 사실인정절차 ····· 71
Ⅳ. 소년형사 재판단계 ····· 73
1. 일반 법관의 전문성 ····· 73
2. 국선변호인의 전문성 ····· 74
3. 집행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즉결심판 ····· 75
Ⅴ. 통합적인 협력체계 미비 ····· 77
Ⅵ. 소결 ····· 79
1. 전문성의 결여 ····· 79
2. 신속성의 결여 ····· 80

3. 통합성의 결여 ····· 82

제4장 해외의 소년사법절차 ····· 83

제1절 미국 ····· 85
Ⅰ. 소년사법절차의 특징 ····· 85
1. 법원선의주의 ····· 85
2. 이원적 절차와 혼합양형 ····· 86
Ⅱ. 일반적인 소년사법절차의 흐름 ····· 86
1. 수사기관 등에 의한 사건인지 ····· 87
2. 선별결정 ····· 87
3. 예방적 구금 ····· 88
4. 형사이송제도 ····· 88
5. 소년법원의 심리 및 처분결정 ····· 89
6. 형사법원의 심리 및 재판 ····· 93
Ⅲ. 일리노이주의 소년사법절차 및 소년법원 ····· 93
1. 일리노이주의 소년사법절차 ····· 93
2. 일리노이주의 소년법원 ····· 94
Ⅳ. 시사점 ····· 96
1. 법원선의주의의 채택 ····· 96
2. 적법절차의 원칙 ····· 96
3. 혼합양형 ····· 96
제2절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 97
Ⅰ. 소년사법절차의 특징 ····· 97
1. 엄벌주의정책에서 보호주의정책으로의 전환 ····· 97
2. 소년범죄대응팀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 98
Ⅱ. 소년사법절차의 흐름 ····· 99
1. 수사절차 ····· 99
2. 재판절차 ····· 99
3. 소년범 및 법원 처분현황 ····· 101
Ⅲ. 소년법원 ····· 101
1. 소년법원과 형사법원 ····· 101
2. 소년법원의 조직 및 구성 ····· 103
3. 소년법원의 법관 ····· 103
4. 소년사법위원회와 소년범죄대응팀과의 협력관계 ····· 103
Ⅳ. 소결 : 시사점 ····· 105
1. 소년사법위원회와 소년범죄대응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 105
2. 양형위원회를 통한 처분기준 마련 ····· 106
제3절 독일 ····· 106
Ⅰ. 소년사법절차의 특징 ····· 106

1. 절차의 일원화 ····· 107
2. 소년청 및 소년사법보호인의 역할 ····· 107
Ⅱ. 소년사법절차의 흐름 ····· 108
1. 경찰 및 검찰수사단계 ····· 108
2. 법원의 심리·재판단계 ····· 110
3. 재판집행단계 ····· 116
Ⅲ. 소년법원 ····· 116
1. 소년법원의 조직 및 관할 ····· 116
2. 소년법원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 119
Ⅳ. 시사점 ····· 119
1. 소년청의 협력·연계 ····· 119
2. 통합적 소년사법절차 ····· 120
3. 소년전문법관 및 소년전문검사의 전문성 확보 ····· 120
4. 집행유예, 선고유예, 약식명령 ····· 121
제4절 일본 ····· 122
Ⅰ. 소년사법절차의 특징 ····· 122
1. 법원선의주의와 전건송치주의 ····· 122
2. 보호처분우선주의와 불처분우선주의 ····· 122
Ⅱ. 소년사법절차의 흐름 ····· 123
1. 소년사법절차의 대상 소년 ····· 123
2. 수사단계 ····· 124
3. 가정재판소에 의한 소년보호절차 ····· 125
4. 일반재판소에 의한 소년형사절차 ····· 131
Ⅲ. 가정재판소 ····· 132
1. 가정재판소의 역할 ····· 132
2. 재판관 ····· 133
3. 가정재판소 조사관 ····· 133
Ⅳ. 시사점 ····· 134
1. 법원선의주의 및 전건송치주의의 채택 ····· 134
2. 아동상담소 등을 통한 복지적 조치 ····· 135
3.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적극적 활용 ····· 135

제5장 소년법원 설치방안 ····· 137

제1절 소년법원 설치의 필요성 ····· 139
Ⅰ. 소년법원의 정의 및 주요 요소 ····· 139
Ⅱ. 소년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141
1. 전문성 확보 ····· 141
2. 신속성 확보 ····· 142
3. 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가능성 ····· 143

제2절 선결문제에 대한 검토 ····· 143
Ⅰ. 선의권의 문제 ····· 144
1. 학계, 실무계의 의견 ····· 144
2. 비교법적 검토 ····· 146
3. 선의권에 대한 검토 : 법원선의주의로 전환 ····· 150
Ⅱ. 이원적 절차의 문제 ····· 159
1. 학계, 실무계의 의견 ····· 159
2. 비교법적 검토 ····· 165
3. 이원적 절차에 대한 검토 ····· 165
Ⅲ. 새로운 소년사법절차와 소년법원의 역할 ····· 166
1. 새로운 소년사법절차 개관 ····· 166
2. 소년법원의 역할 ····· 169
3. 심급관할의 검토 ····· 169
4. 법원조직법 및 소년법 개정방안 ····· 169
제3절 소년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 ····· 172
Ⅰ. 인적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 172
1. 소년법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 ····· 172
2. 소년조사관의 충원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176
3. 소년형사사건에서 국선보조인 활용 방안 ····· 179
Ⅱ.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구분기준 정립 ····· 180
Ⅲ. 다각도 협력체계 구축 ····· 183
1. 법원 내 협력체계 활성화 ····· 183
2. 타 소년사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183
3.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185
제4절 소년법원의 구체적인 모습 구상 ····· 187
Ⅰ. 소년법원 담당사건의 범위 ····· 187
1.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 188
2. 약식명령, 즉결심판 ····· 190
Ⅱ. 설치 형태 및 지역 ····· 197
1. 설치 형태에 대한 검토 ····· 197
2. 설치 지역에 대한 검토 ····· 198
Ⅲ. 재판부 및 법관의 수 ····· 210
1. 소년형사사건 재판에 따른 업무부담 검토 ····· 211
2. 소년보호사건 심판에 따른 업무부담 검토 ····· 213
3. 사건 접수 및 분류에 따른 업무부담 검토 ····· 218
4. 재판부의 구성 및 사무분담 ····· 218
Ⅳ. 심리절차 및 처분상의 특례 ····· 222
1. 의무적 소년조사 ····· 222
2. 소년형사부 및 소년보호부 이송 ····· 222
Ⅴ. 관계기관의 협력 ····· 224

1. 경찰 및 검찰의 협력 ····· 224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협력 ····· 225

제6장 결어 ····· 227

제1절 소년법원 설치를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미래 ····· 229
제2절 소년법원에서 문제해결법원으로 ····· 231

212.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5-08

연구책임자: 박 진 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7월 1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Ⅰ. 연구의 필요성 ····· 3
Ⅱ.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7
Ⅰ. 연구의 방법 ····· 7
1. 연구의 방법 ····· 7
2. 검토 대상의 선정 배경 ····· 8
Ⅱ. 연구의 구성 ····· 11
제2장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그 '대상'과 '주체', 그리고 '방법' ····· 13
제1절 사법판단의 대상으로서의 '외교 문제' ····· 15
Ⅰ. 외교 문제의 개념 ····· 15
1. 외교 문제에 관한 일반적 이해 ····· 15
2. 외교 문제의 정의 ····· 15
3. 외교 문제의 유형 ····· 17
4. 외교 문제의 특수성 ····· 18
Ⅱ. 외교 문제의 법적 사정(射程) ····· 20
1. 실정법상 외교 문제 ····· 20
2. 판례 및 결정상 외교 문제 ····· 21

3. 외교 문제의 법적 쟁점 ····· 23
Ⅲ. 본 보고서에의 적용 ····· 30
제2절 사법판단의 주체로서의 '사법부' ····· 32
Ⅰ. 서설 ····· 32
Ⅱ.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 ····· 33
1. 사법부 우위 ····· 33
2. 사법자제주의 ····· 34
3. 또 다른 사법부 우위의 흐름 ····· 34
4. 다시 사법자제주의에게로 ····· 35
Ⅲ.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의 사례 ····· 36
1. 외교 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사례 ····· 36
2. 외교 문제에 대한 ICJ의 판단 사례 ····· 40
Ⅳ. 소결 ····· 42
제3절 사법판단의 방법으로서의 '대화이론' ····· 45
Ⅰ. 사법판단과 논증에 관한 일반론 ····· 45
1. 어려운 사건 ····· 45
2. 어려운 사건을 위한 사법판단과 논증 ····· 47
Ⅱ. 사법재량의 행사 방법으로서의 '대화이론' ····· 49
1. 개요 ····· 49
2. 절차로서의 '법화' ····· 50
3. 대화이론의 대상 ····· 53
4. 대화이론의 의의와 과제 ····· 58
제4절 소결론 ····· 60

제3장 외교 문제에 대한 해외 사법부의 판단 ····· 63

제1절 영국 ····· 65
Ⅰ. 외교 문제와 인권법 ····· 65
1. 외교 문제의 성격 ····· 65
2. 영국 인권법의 제정 ····· 66
Ⅱ. 주요 판결의 검토 ····· 69
1. 인권법 제정 이전 주요 판결 ····· 69
2. 인권법 제정 이후 주요 판결 ····· 71
Ⅲ. 학문적 논의의 지형 ····· 80
1. 외교 문제에 관한 국왕대권의 사법통제 일반 ····· 80
2. Belhaj 및 Rahmatullah 사건에 대한 평가 ····· 82
Ⅳ. 평가 및 함의 ····· 85
1. 인권론적 전회 ····· 85
2. 판결의 전환을 이끌어낸 원동력 ····· 86
제2절 일본 ····· 87

Ⅰ. 외교 문제와 통치행위론 ····· 87
1. 통치행위론의 개념 ····· 87
2. 통치행위론과 외교 문제 ····· 88
Ⅱ. 스나카와(砂川) 사건 ····· 89
1. 사실관계 ····· 89
2. 소송의 경과 ····· 89
3. 최고재판소의 판단 ····· 91
4.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의 소송 동향 ····· 96
Ⅲ. 학계의 논의 지형 ····· 97
1. 내재적 한계설 ····· 97
2. 자제설 ····· 98
3. 절충설 ····· 99
Ⅳ. 평가 및 함의 ····· 100
1. 통치행위론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 ····· 100
2. 외교 문제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 ····· 102
3. 통치행위와 인권 ····· 102
제3절 독일 ····· 104
Ⅰ. 외교 문제와 위헌심사 ····· 104
1. 독일에서의 외교 행위 ····· 104
2. 외교 문제에 대한 헌법심사 ····· 104
3. 사법자제의 원칙 ····· 105
Ⅱ.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 ····· 106
1. 개요 ····· 106
2. 판결 요지 ····· 112
3. 기본조약 판결 이후 동향 ····· 114
Ⅲ. 평가 ····· 115
1. 개요 ····· 115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발적' 자리매김 ····· 116
제4절 소결론 ····· 120

제4장 외교 문제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판단 ····· 125

제1절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 ····· 127
Ⅰ. 사안의 개요 ····· 127
1. 일제의 강제노동 ····· 127
2. 청구권협정의 체결 ····· 127
3. 청구권협정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 129
Ⅱ. 소송의 경과 ····· 129
1. 제1심 판단 ····· 129
2. 항소심 판단 ····· 131
3. 상고이유 ····· 132

Ⅲ. 대법원의 판단 ····· 132
1. 판단의 요지 ····· 132
2.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장 ····· 133
Ⅳ.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 135
1. 개인청구권의 포함 여부(판단 ㉮) ····· 136
2.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판단 ㉯) ····· 141
3.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소멸(판단 ㉰) ····· 143
Ⅴ. 판결의 영향과 전망 ····· 145
제2절 '위안부' 사건 ····· 150
Ⅰ. 서론 ····· 150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 ····· 150
1. 개요 ····· 150
2. 결정의 요지 ····· 151
3.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152
4. 결정 이후의 동향 ····· 152
Ⅲ. 법원의 판단 ····· 157
1. 개요 ····· 157
2. 승소 판결 ····· 158
3. 각하 판결 ····· 159
4. 취소 판결 ····· 160
Ⅳ. 판결 이후의 동향 ····· 162
1. 국내에서의 동향 ····· 162
2. 일본에서의 동향 ····· 162
3. 국내에서의 추가 소송 ····· 163
Ⅴ. 소결 ····· 163
제3절 베트남 전쟁 정부배상 사건 ····· 166
Ⅰ. 사실관계 ····· 166
Ⅱ. 쟁점 ····· 166
Ⅲ. 법원의 판단 ····· 167
1. 제1심 판단 ····· 167
2. 항소심 판단 ····· 168
Ⅳ. 판결에 대한 검토 ····· 169
1. 인권론적 의의 ····· 169
2. 국익과 인권의 상충: 정보공개청구소송 ····· 169
3. 소결 ····· 174
제4절 소결론 ····· 176

제5장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의 검토 ····· 179

제1절 서설 ····· 181

제2절 사법판단 적합성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평가의 여지' ····· 183
Ⅰ. '평가의 여지'란 무엇인가 ····· 183
Ⅱ. '평가의 여지'에 기반한 사법판단 기준의 제안 ····· 183
1. 기준 ①: 전문성 ····· 184
2. 기준 ②: 법규범의 형식과 내용 ····· 184
3. 기준 ③: 절차의 민주성 ····· 185
Ⅲ. 사법판단 적합성 기준의 적용 ····· 186
1. 영국의 사례 ····· 186
2. 일본의 사례 ····· 187
3. 독일의 사례 ····· 188
제3절 실체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인권'과 '정의' ····· 189
Ⅰ. 서설 ····· 189
Ⅱ. 일본에서의 소멸시효 논의 ····· 191
1. 권리행사가능성 ····· 191
2. 사안에의 적용 ····· 193
Ⅲ. 구체적 쟁점에 관한 사법판단 기준의 제안 ····· 196
1. 기준 ④: 신체와 생명에 대한 반인도적이고 간과하기 어려운 가해 ····· 196
2. 기준 ⑤: 객관적 권리행사가능성 ····· 197
3. 기준 ⑥: 가해자에 의한 은폐 및 방해 ····· 197
제4절 소결론 ····· 199

제6장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203

제1절 서설 ····· 205
제2절 미국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 ····· 207
Ⅰ. 개요 ····· 207
Ⅱ. 요건 ····· 208
1. 제출자격 ····· 208
2.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 ····· 208
3. 제출시기 ····· 208
4. 주요 내용 ····· 209
Ⅲ. 법적 근거 ····· 209
Ⅳ. 주체 및 목적 ····· 210
Ⅴ. 기능 ····· 211
1.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 211
2. 공익판단에 대한 기여 ····· 212
3. 전문지식의 제공에 대한 기여 ····· 212
제3절 영국의 행정부의견서 제도 ····· 213
Ⅰ. 서설 ····· 213
Ⅱ. 판결례 ····· 213

1. Duff Development v. Kelantan Government (1924) ····· 213
2. Carl-Zeiss-Stiftung v. Rayner & Keeler Ltd (1967) ····· 214
Ⅲ. 한계 ····· 214
제4절 국내의 참고인 진술 제도 ····· 216
Ⅰ. 참고인 진술제도 일반론 ····· 216
Ⅱ. 우리 실정법상 참고인 진술제도 ····· 216
1.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 216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 217
Ⅲ. 참고인 진술 및 의견서 제출 제도의 활용 현황 ····· 218
1. 참고인 진술제도 활용 현황 ····· 218
2.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 활용 현황 ····· 220
제5절 각 제도의 비교와 개선방안 ····· 222

제7장 결론 ····· 225

제1절 내용의 정리 ····· 22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233

213.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5-09

연구책임자: 임성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정 관 선(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감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7월 1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 7

제2장 고령자 개관 및 법적 보호 필요성 ····· 9
제1절 고령자 개관 ····· 11
Ⅰ. 고령자의 의의 ····· 11
1. 노인의 의의 ····· 11
2. 고령자의 의의 및 범위 설정 ····· 15
Ⅱ. 고령자의 특성 ····· 17
1. 신체적 특성 ····· 17
2. 정신적 특성 ····· 17
3. 사회적 특성 ····· 17
Ⅲ. 우리나라 고령자의 현황 및 실태 ····· 18

1. 인구 고령화 추이 ····· 18
2. 고령자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21
제2절 고령자의 법적 보호 필요성 ····· 39
Ⅰ. 고령자의 법적 지위 ····· 39
1. 사회적 약자로서의 고령자 ····· 39
2. 기본권 주체로서의 고령자 ····· 39
3.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보호대상으로서의 고령자 ····· 40
Ⅱ. 고령자의 취약성에 기인한 주요 법적 문제 ····· 41
1. 고령 범죄자 및 고령 범죄피해자의 증가 ····· 41
2. 노인학대범죄의 증가 ····· 46
3. 고령자의 높은 빈곤율 ····· 50
4. 치매 등 정신적 장애의 증가 ····· 53
5. 고령자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 54
Ⅲ. 고령자 보호에 관한 국내 입법 현황 및 국제적 동향 ····· 56
1. 고령자 보호에 관한 주요 국내 법률 ····· 56
2. 고령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 57

제3장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지원 개관 및 사법수요 분석 ····· 61

제1절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지원 개관 ····· 63
Ⅰ. 사법접근권 개관 ····· 63
1. 사법접근권의 의의 ····· 63
2. 사법접근권과 관련 개념 사이의 관계 ····· 64
3. 사법접근권 논의의 추이 –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권 ····· 65
Ⅱ.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지원의 법적 근거 ····· 66
1. 헌법상 근거 ····· 66
2. 현행법상의 근거 ····· 69
제2절 고령자의 사법수요에 대한 실증적 분석 ····· 74
Ⅰ. 시민의 사법수요를 반영한 사법접근 제도의 설계·평가 ····· 74
1. 사법수요의 의의 ····· 74
2.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 제도의 설계 및 평가 ····· 75
Ⅱ. 2018년 고령자 사법수요 조사 결과 분석 ····· 79
1. 2018년 사법수요 조사 개관 ····· 79
2. 주요 문항별 고령자의 응답 내용 분석 ····· 81
3. 소결 ····· 92

제4장 고령자에 대한 사법접근권 지원 현황 ····· 93

제1절 사법부의 지원 현황 ····· 95
Ⅰ. 개관 ····· 95

Ⅱ. 고령자를 직접 대상자로 하는 사법지원 현황 ····· 95
1.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이용상의 편의제공 ····· 95
2. 법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 98
3. 소송절차에서의 구체적 사법지원 제도 ····· 98
4.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운영 ····· 102
Ⅲ.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고령자 사법지원 현황 ····· 104
1. 소송구조 제도의 활성화 ····· 104
2. 과학기술을 활용한 나홀로소송의 지원 ····· 105
3.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제도의 실시 ····· 107
4.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108
5. 협조자수당 지급 제도의 운영 ····· 109
6. 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원 ····· 109
제2절 사법부 이외의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 111
Ⅰ. 행정부의 지원 현황 ····· 111
1. 법무부 ····· 111
2. 보건복지부 ····· 113
Ⅱ. 행정부 이외의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 116
1. 대한법률구조공단 ····· 116
2. 변호사 단체 ····· 118

제5장 주요 국가의 고령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 검토 ····· 123

제1절 개관 ····· 125
제2절 미국 ····· 125
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위한 일반적 지원 제도 ····· 125
1. 법률구조 제도 ····· 126
2. 사법접근위원회(Access To Justice Commission) ····· 128
3. 나홀로소송(Self-Represented)에 대한 지원 ····· 133
4.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의 운영 ····· 137
5. 그 밖의 법원 연계형 사법접근권 지원 제도 ····· 138
Ⅱ. 고령자에 특화된 사법접근권 지원 제도 ····· 140
1. 행정부의 지원 제도 ····· 140
2. 행정부 이외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원 제도 ····· 143
3. 사법부의 지원 제도 ····· 149
Ⅲ. 시사점 ····· 156
제3절 프랑스 ····· 157
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위한 일반적 지원 제도 ····· 157
1. 서설 ····· 157
2. 소송구조 ····· 158
3. 법률정보접근 지원 ····· 159

Ⅱ.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 ····· 161
1. 서설 ····· 161
2. 사법부의 지원 제도 ····· 162
3.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법지원 ····· 166
Ⅲ. 시사점 ····· 168
제4절 독일 ····· 169
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위한 일반적 지원 제도 ····· 169
1. 서설 ····· 169
2. 재판상 법률구조 ····· 169
3. 재판 외 법률구조(법률상담구조) 등 ····· 171
Ⅱ.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 ····· 172
1. 서설 ····· 172
2. 고령자 등을 위한 재판제도 및 사법부의 지원 제도 ····· 173
3.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법지원 ····· 179
Ⅲ. 시사점 ····· 183
제5절 일본 ····· 184
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위한 일반적 지원 제도 ····· 184
1. 서설 ····· 184
2. 일본사법지원센터를 통한 법률구조 ····· 184
Ⅱ.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 ····· 187
1. 2016년 종합법률지원법 개정을 통한 지원 ····· 188
2. 고령자 등을 위한 재판절차 제도 ····· 189
3. 사법부의 고령자 등을 위한 지원 제도 ····· 190
4. 사법소셜워크와 복지, 행정 및 사법의 지역 연계 네트워크 ····· 192
5.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법지원 ····· 195
Ⅲ. 시사점 ····· 198

제6장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사법적 지원 방안 ····· 201

제1절 실효적인 사법지원 방안의 구상 ····· 203
Ⅰ. 사법지원의 목표 및 전략의 수립·실시 ····· 203
Ⅱ. 구체적인 고려사항 ····· 203
1. 고령자의 다양성 및 자립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지원 ····· 203
2. 법원의 공정성·중립성 및 법조 직역의 이해관계 고려 ····· 204
3. 외부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확대 및 홍보 강화 ····· 204
4. 고령자 사법접근권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립 ····· 205
제2절 법원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 ····· 206
Ⅰ. 고령자를 위한 오프라인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 ····· 206
1. 법원 시설물 접근권 관련 ····· 206
2. 사회적 약자 대상 보조기구 등 편의제공 관련 ····· 209

Ⅱ. 고령자를 위한 온라인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 ····· 211
1. 고령자의 디지털 평등권 보장 필요성 ····· 211
2.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의 개선 및 충실화 ····· 211
3.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 개선 및 오프라인 지원 병행 ····· 213
제3절 재판절차와 관련한 사법적 지원 방안 ····· 218
Ⅰ. 각 재판절차에서 공통적인 사법지원 방안 ····· 218
1.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제도의 근거규범 마련 ····· 218
2.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관의 배치 ····· 219
3. 실시간 문자통역의 제공 ····· 220
4. 법관 및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고령자 대응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222
5. 찾아가는 법정 또는 영상법정의 실시 ····· 224
Ⅱ.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방안 ····· 225
1. 소송구조의 제도 및 운영상 개선 ····· 225
2. 진술보조인 제도의 운영 개선 ····· 228
3. 판결선고 단계에서의 사법지원 ····· 229
4. 화해·조정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 230
Ⅲ. 형사소송 절차 등에서의 사법지원 방안 ····· 231
1. 고령자가 피고인인 경우 ····· 231
2. 고령자가 피해자 또는 증인인 경우 ····· 233
3. 노인학대 사건에서의 사법지원 방안 ····· 234
Ⅳ. 가사소송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방안 ····· 240
1. 가사소송에서의 보조인 활용 확대 ····· 240
2. 성년후견 사건에서의 사법지원 방안 ····· 241
제4절 분쟁의 통합적 해결을 위한 사법서비스 강화 방안 ····· 244
Ⅰ. 사법접근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방안 ····· 244
1. 사법접근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 244
2. 사법접근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 245
3. 사법접근위원회의 고령자를 위한 사법접근 지원 전략 ····· 246
Ⅱ. 사법접근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 ····· 247
1. 현행 사법접근센터의 운영 상황 및 문제점 ····· 247
2. 개선방안 ····· 248
Ⅲ. (중·장기적) 고령자 법원의 도입 방안 ····· 252
1. 서설 ····· 252
2. 도입 여부에 관한 찬반론 ····· 253
3. 구체적인 운영 모델에 대한 고찰 ····· 254
제5절 법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법지원 방안 ····· 256
Ⅰ. 고령자에 대한 법교육 및 홍보 강화 ····· 256
1. 고령자의 법교육 관련 경험 및 인식 현황 ····· 256
2. 고령자 법교육의 필요성 ····· 257
3. 고령자 법교육 관련 개선방안 ····· 257

4.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 관련 홍보 강화 ····· 260
Ⅱ.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261
1.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 261
2. 구체적인 교육 및 홍보 개선방안 ····· 261
제6절 고령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 263
Ⅰ. 서설 ····· 263
Ⅱ.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모색 ····· 264
1. 사법접근센터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 ····· 264
2. 복지, 행정 및 사법의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 265
3. 기타 협력 방안 ····· 266

제7장 결론 ····· 269

214.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25-10

연구책임자: 심 병 준(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7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개요,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개요 ····· 5

Ⅱ. 연구 범위 ····· 6

1.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분쟁과 인도집행의 개념 정립 ····· 6

2. 국내 법제 및 현황 분석 ····· 6

3. 비교법적 고찰 ····· 6

4. 구체적인 집행 사례와 인터뷰 분석 ····· 7

Ⅲ. 연구 방법 ····· 7

1. 문헌 연구 및 실무자 인터뷰 ····· 7

2. 비교법적 분석 및 정책 제안 ····· 7

제2장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분쟁 ····· 9

제1절 개관 ····· 11

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와 집행 ····· 11

Ⅱ.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유아의 인도 의무'의 의미 ····· 12
제2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 14
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집행의 필요성 ····· 14
Ⅱ.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성립 ····· 16
1.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 16
가. 양육자의 지정 ····· 16
나. 인도청구권의 성립 ····· 17
2.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인도청구권 ····· 18
가. 한국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 18
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가 간 적용 ····· 20
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 ····· 20
라. 헤이그아동탈취법 및 부속법령의 주요 내용 ····· 23

제3장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권의 이행확보수단 ····· 27

제1절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 29
Ⅰ.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 ····· 29
1. 사전처분 ····· 30
가. 의의 ····· 30
나. 성질 ····· 32
다. 시적한계 ····· 33
라. 필요성 ····· 33
마. 재판 및 불복 ····· 34
바. 사전처분의 효력 ····· 34
사. 실효성의 확보 ····· 36
2. 이행명령 ····· 36
가. 의의 ····· 36
나. 성질 ····· 38
다. 이행명령의 요건 ····· 38
라. 이행명령의 재판 ····· 39
마.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40
Ⅱ. 강제집행 ····· 42
1. 강제집행의 국가구제원칙 ····· 42
2.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 형태 ····· 43
가. 직접강제 ····· 43
나. 대체집행 ····· 43
다. 간접강제 ····· 43
3. 집행기관 ····· 44
가. 집행관 ····· 44
나. 집행법원 ····· 45

다. 제1심 법원 ····· 45
4. 미성년 자녀 인도의 집행방법 ····· 45
가. 유아인도집행예규(개정 전) ····· 47
나. 유아인도집행예규(개정 후) ····· 52
Ⅲ. 국내 가사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현황 ····· 56
1. 개설 ····· 56
2.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집행사건 ····· 57
가. 집행사건 접수건수 ····· 57
나. 집행사건의 집행권원 ····· 58
다. 집행사건의 현황 및 진행결과 ····· 60
라.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 ····· 62
3.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형식 및 내용 ····· 63
4. 향후 변화 예상 ····· 67
제2절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 68
Ⅰ. 헤이그아동탈취법의 규율 ····· 68
1. 사전처분, 이행명령 ····· 68
가. 사전처분 ····· 68
나. 이행명령 ····· 69
2.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미비로 인한 유아인도집행예규 적용 ····· 69
3.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 불능 등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 ····· 70
Ⅱ.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제정 ····· 71
Ⅲ.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 현황 ····· 76
1. 개설 ····· 76
2.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집행사건 ····· 79
가. 집행사건 접수건수 ····· 79
나. 집행사건의 현황 및 진행결과 ····· 80
다.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 ····· 82
제3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사례 분석 ····· 84
Ⅰ.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 84
Ⅱ. 일본의 경우 ····· 85
제4절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유아인도집행예규에 대한 고찰 ····· 88
Ⅰ.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및 유아인도집행예규 개정으로 인한 변화 ····· 88
1. 제정 및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 ····· 88
2.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의 타당성 평가 ····· 90
Ⅱ.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 92

제4장 비교법적 고찰 ····· 95

제1절 개관 ····· 97
제2절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모범사례가이드 ····· 97
Ⅰ.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모범사례가이드의 내용 ····· 97
1. 효율적인 강제집행제도의 정비 ····· 98
가. 강제집행 수단의 유형 ····· 98
나.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정비 ····· 98
다. 가집행 여부 ····· 99
2. 집행의 실시 ····· 99
Ⅱ. 모범사례가이드의 요약 및 시사점 ····· 101
1. 요약 ····· 101
2. 시사점 ····· 102
제3절 일본의 법제 및 실무 ····· 103
Ⅰ. 일본의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의 변화 ····· 103
1.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실무의 태도 ····· 103
2.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과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 ····· 104
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 ····· 104
나. 헤이그조약실시법 제정의 경위 ····· 105
다. 헤이그조약실시법에 의한 제도의 구축 ····· 105
3. 집행의 실효성 문제 지적 ····· 106
Ⅱ.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자녀 인도 강제집행의 규율 ····· 107
1. 기본적인 방향 ····· 110
2. 개정 민사집행법의 내용 ····· 110
가. 직접적 강제집행 채택 ····· 110
나. 간접강제전치 구조의 신설과 직접적 강제집행의 예외적 허용 ····· 111
다.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 ····· 112
라.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 부적용 ····· 112
마. 집행장소 선택의 확대 ····· 112
바. 집행관 권한의 명문화 ····· 113
사. 집행관에 의한 위력행사의 제한 ····· 114
아. 자녀의 심신에 대한 배려의 명문화 ····· 115
자. 사전준비 작업 명문화 ····· 116
3. 자녀 인도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 116
Ⅲ. 헤이그조약실시법 등의 동반 개정 ····· 117
Ⅳ. 시사점 ····· 118
제4절 독일의 법제 및 실무 ····· 120
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 120
1. 국제협약과 이행법률 등 ····· 120
2. 중앙당국으로서의 연방법무청 ····· 121
Ⅱ. 법원이 아동반환을 명한 경우의 이행확보 ····· 122
1.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체계 ····· 122

2. 자발적인 반환조치 ····· 122
3. 강제집행 ····· 122
가. 가정법원의 역할 ····· 123
나. 간접강제 ····· 123
다. 비례성의 원칙 ····· 123
라. 직접강제 ····· 125
4. 자녀 탈취에 대한 처벌 ····· 128
Ⅲ. 시사점 ····· 129
제5절 프랑스의 법제 및 실무 ····· 131
Ⅰ.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 131
1.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관련 법률 ····· 131
2. 중앙당국 ····· 132
가. 법무부 ····· 132
나. 중앙당국의 역할 ····· 132
3.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이행확보 ····· 133
가. 간접적 수단 ····· 133
나. 직접강제 ····· 135
4. 탈취 부모에 대한 제재 ····· 140
가. 형사상 제재 ····· 140
나. 친권 박탈 ····· 141
Ⅱ.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 143
1. 개관 ····· 143
2.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적 수단 ····· 144
가. 강제금(astreinte) ····· 144
나.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 145
3. 직접강제 ····· 146
4. 인도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 147
Ⅲ. 시사점 ····· 147
제5장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개선방향 ····· 149
제1절 법률 규정 신설의 필요성 ····· 151
제2절 법률 개정 방안 ····· 154
Ⅰ. 가사소송법의 개정 ····· 154
1.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명시 ····· 154
가. 기존 ‘유아’의 개념 불명확 ····· 154
나. 독립된 사건 유형으로 규정 ····· 156
2. 집행개시 허가 ····· 157
3. 집행개시 허가 요건 ····· 159
가. 간접강제 우선 ····· 159
나. 직접강제 개시 허가 시 고려사항 ····· 161

다. 필요적 심문 ····· 162
4. 불복권 보장 ····· 163
5. 과태료의 실효성 강화 ····· 165
6. 개정안 제안 ····· 166
Ⅱ. 민사집행법 개정 방안 ····· 169
1. 가사소송법 개정안과의 관계 ····· 169
2. 유아인도집행예규 반영 ····· 170
가.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 170
나. 집행관의 권한 등 ····· 170
3. 제3의 장소에서의 인도집행 허용 ····· 172
4. 채권자의 집행 현장 참석 ····· 173
5. 강제력 행사 ····· 173
6. 강제집행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 보호와 강제집행의 조화 ····· 175
7. 대법원 규칙에 위임 ····· 177
8. 개정안 제안 ····· 177
Ⅲ. 헤이그아동탈취법의 개정 ····· 181
제3절 관련 규칙의 개정 ····· 183
Ⅰ.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 183
1. 개정의 필요성 ····· 183
2. 민사집행규칙에 규정될 사항에 대한 검토 ····· 183
가. 인도집행 허가 신청서 ····· 183
나. 집행실시 신청서 ····· 184
다. 제3의 장소에서의 미성년자 인도집행 허가 신청서 ····· 184
라. 대리출석 허가 신청서 ····· 185
마.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 186
바. 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 187
사. 통역인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참여 ····· 187
아.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 188
자. 집행조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 189
차. 비밀준수의무 ····· 189
카. 개정안 제안 ····· 190
Ⅱ.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의 개정 ····· 198
제4절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 대한 검토 ····· 200
제5절 집행 현장에서의 개선방안 ····· 202
Ⅰ. 집행 현장에서의 미성년 자녀 복리 우선 및 설득 노력 ····· 202
Ⅱ. 집행사건의 관리 현황 및 조서 작성 개선 ····· 204
제6장 결론 ····· 205

215.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 2025-04

연구책임자: 유 인 규(사법정책연구원 파견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서 용 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8월 20일 발행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방법 ····· 6
1. 연구의 방법 ····· 6
2.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분담 ····· 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7

제2장 우리나라의 몰수제도 현황 ····· 9

제1절 몰수 관련 법률의 체계 ····· 11
제2절 헌법의 몰수 관련 사항 ····· 12
Ⅰ. 개요 ····· 12
Ⅱ. 헌법의 몰수 관련 규정 ····· 12
1. 죄형법정주의 ····· 12
2. 적법절차의 원칙 ····· 13
3. 과잉금지의 원칙 ····· 13
4. 재산권 보장 ····· 14
5. 무죄추정의 원칙 ····· 14
제3절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몰수 관련 규정 ····· 16
Ⅰ. 「형법」 의 몰수 관련 규정 ····· 16
1. 「형법」 총칙의 규정 ····· 16

2. 「형법」 각칙의 규정 ····· 18
Ⅱ. 「형사소송법」 의 몰수 관련 규정 ····· 19
1. 몰수에 대한 「형사소송법」 의 적용 ····· 19
2. 몰수 관련 「형사소송법」 의 명시 규정 ····· 19
제4절 몰수 특례법의 규정 ····· 22
Ⅰ. 개관 ····· 22
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23
1. 개요 ····· 23
2. 몰수 대상 ····· 24
3.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의 몰수 ····· 24
4. 불법재산의 입증의 특례 ····· 25
5.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의 집행 ····· 26
6.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 27
7. 몰수·추징 보전 ····· 28
Ⅲ.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29
1. 개요 ····· 29
2. 몰수 대상 ····· 30
3.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의 몰수 ····· 32
4. 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죄 및 불법수익등의 수수죄 처벌 ····· 32
5. 불법수익등의 입증의 특례 ····· 33
6.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 33
7. 몰수·추징 보전 ····· 34
8.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 34
Ⅳ.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4
1. 개요 ····· 34
2. 몰수대상 ····· 35
3.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몰수대상재산·혼화재산의 몰수 ····· 36
4.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죄 및 범죄수익등의 수수죄 처벌 ····· 36
5.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금지 ····· 37
6. 추징 집행의 특례 ····· 37
7. 범죄수익등의 입증의 특례 ····· 38
8. 국제 공조 ····· 39
9.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 39
10. 몰수·추징 보전 ····· 39
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39
1. 개요 ····· 39
2. 몰수대상 ····· 40
3.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혼합재산의 몰수 ····· 41
4. 불법재산의 입증의 특례 ····· 41
5.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 42

6. 몰수·추징 보전 ····· 42
Ⅵ.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42
1. 개요 ····· 42
2. 몰수대상 ····· 42
3.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부패재산·혼합재산의 몰수 ····· 43
4.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 44
5. 국제 공조 ····· 45
6.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 45
7. 몰수·추징 보전 ····· 45
Ⅶ. 몰수 특례법의 비교 ····· 46
1. 공통점 ····· 46
2. 특이점 ····· 47
제5절 그 밖의 몰수 근거 법률 ····· 50
Ⅰ. 일반적인 입법례 ····· 50
1. 개요 ····· 50
2. 몰수 대상 ····· 51
3.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사례 ····· 51
4.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몰수 ····· 52
Ⅱ. 예외적인 입법례 ····· 53
1. 범인이나 악의취득자 외의 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를 규정한 사례 ····· 53
2. 보호처분을 하면서 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 55
제6절 몰수제도와 관련된 주요 판례 ····· 56
Ⅰ. 대법원 판례 ····· 56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한 몰수의 범위 ····· 56
2.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57
3.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 58
4. 비례의 원칙에 의한 몰수 제한 ····· 59
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 60
1.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입법목적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례 ····· 60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례 ····· 62
3. 입법재량권의 한계 일탈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례 ····· 63
4.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기존의 몰수·추징만으로는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결정례 ····· 64

제3장 주요국의 몰수제도 현황 ····· 67

제1절 독일의 몰수제도 ····· 69
Ⅰ. 독일 「형법」 의 몰수제도 개관 ····· 69
1. 독일 「형법」 의 체계 ····· 69

2. 몰수의 법적 지위 ····· 70
Ⅱ. 몰수의 목적물 및 효과 등 ····· 71
1. 독일 「형법」 의 몰수 대상 ····· 71
2. 비례의 원칙에 따른 몰수 제한 ····· 79
3. 몰수의 효과 ····· 80
4. 몰수의 부과 절차 ····· 81
5. 시효 ····· 83
Ⅲ. 독립몰수 ····· 84
1. 개관 ····· 84
2. 독립몰수의 내용 ····· 84
3. 독립몰수의 절차 ····· 86
4. 독립몰수의 시효 ····· 88
Ⅳ.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 89
1.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유사점 ····· 89
2.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차이점 ····· 89
제2절 미국의 몰수제도 ····· 91
Ⅰ. 미국의 몰수제도 개관 ····· 91
1. 몰수의 근거 법률 ····· 91
2. 몰수의 대상 ····· 92
3. 부과절차에 따른 몰수의 분류 ····· 92
Ⅱ. 형사몰수 ····· 93
1. 의의 ····· 93
2. 형사몰수의 대상 ····· 93
3. 형사몰수의 절차 ····· 95
4. 미국 형사몰수의 특징 ····· 97
Ⅲ. 행정몰수 ····· 98
1. 의의 ····· 98
2. 행정몰수의 대상 ····· 99
3. 행정몰수의 절차 ····· 100
4. 행정몰수와 형사몰수의 관계 ····· 102
Ⅳ. 민사몰수 ····· 102
1. 의의 ····· 102
2. 민사몰수의 대상 ····· 102
3. 민사몰수의 절차 ····· 103
4. 민사몰수와 형사몰수의 차이점 ····· 107
Ⅴ.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 108
1.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유사점 ····· 108
2.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차이점 ····· 109
제3절 일본의 몰수제도 ····· 112
Ⅰ. 일본의 몰수제도 개관 ····· 112

Ⅱ. 일본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의 몰수 규정 ····· 112
1. 일본 「형법」 의 몰수 관련 규정 ····· 112
2. 일본 「형사소송법」 의 몰수 관련 규정 ····· 114
Ⅲ. 특별법의 몰수 규정 ····· 116
1. 개관 ····· 116
2.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116
3.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118
4.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119
Ⅳ. 몰수 근거를 규정한 개별법 ····· 123
Ⅴ. 일본의 몰수제도 개편 논의 ····· 123
Ⅵ.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 125
1.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유사점 ····· 125
2. 우리나라 몰수제도와의 차이점 ····· 125

제4장 현행 몰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 127

제1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제기한 문제점 ····· 129
Ⅰ. 몰수제도 개편 관련 주요 법률안 ····· 129
1. 「형법」 개정안 ····· 129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32
Ⅱ. 법률안들이 제기한 문제점 ····· 134
제2절 현행 몰수제도의 문제점 ····· 136
Ⅰ. 「형법」 의 몰수 대상 및 제3자 소유물 몰수 관련 문제 ····· 136
1. 「형법」 의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 ····· 136
2. 「형법」 상 제3자 소유물 몰수의 절차규정 미비 ····· 137
Ⅱ. 공소제기 없는 몰수제도 미비 ····· 138
1. 개요 ····· 138
2. 범인이 사망한 경우 ····· 138
3. 범인의 도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의 경우 ····· 139
4. 범죄는 확인되나 범인이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 ····· 139
5. 검사가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등 기소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경우 ···· 139
6.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무능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40
7. 고소 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표시 등의 소송조건이 결여된 때 ····· 140
8. 참고인중지의 경우 ····· 141
9. 공소가 취소된 경우 ····· 141
10.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141
11. 피고인의 사물변별력 결핍 등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 141
1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경우 ····· 142
13.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 142

Ⅲ. 몰수 특례법의 문제 ····· 143
1. 개요 ····· 143
2. 몰수 대상범죄의 중복 ····· 143
3. 절차규정의 중복 ····· 144
4.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 144
제3절 몰수제도의 개편 필요성 ····· 145

제5장 몰수제도의 개편방안 ····· 147

제1절 몰수제도 개편 시 고려사항 ····· 149
제2절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방안 ····· 150
Ⅰ. 개요 ····· 150
Ⅱ.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유지하면서 몰수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 151
1. 「형법」 의 몰수 대상 확대 ····· 151
2. 「형법」 상 몰수의 제3자 참가절차 마련 ····· 153
3.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 158
Ⅲ.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의 몰수를 확대하는 방안 ····· 166
Ⅳ. 공소제기 없는 몰수를 도입하는 방안 ····· 168
제3절 몰수를 형에서 제외하고 개편하는 방안 ····· 170
Ⅰ. 개요 ····· 170
Ⅱ. 몰수를 형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 ····· 172
1. 몰수의 실체적 요건에 미칠 영향 ····· 172
2. 몰수 절차에 미칠 영향 ····· 175
3. 다른 법률에 규정된 몰수에 미칠 영향 ····· 176
4. 그 밖의 사항에 미칠 영향 ····· 177
Ⅲ. 몰수를 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방안 ····· 177
1. 몰수를 형에서 제외할 경우 조문의 위치 ····· 177
2. 몰수의 부과에 관한 사항 규정 ····· 179
3. 몰수를 형에서 제외할 경우 정비해야 할 사항 ····· 179
Ⅳ.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182
1. 개요 ····· 182
2. 독립몰수를 규정하는 방식 ····· 184
3. 독립몰수·추징의 절차에 관한 규정 ····· 198
4. 다른 법률의 몰수·추징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211
Ⅴ. 종합 ····· 212
1. 「형법」 의 개정사항 ····· 212
2. 「형사소송법」 의 개정사항 ····· 216

제6장 결론 ····· 229

216.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현안보고서 2025-05

연구책임자: 안 원 주(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서 용 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9월 1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Ⅰ. 연구 개관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1
3. 연구의 범위 ····· 2
4. 연구방법 ····· 2
Ⅱ.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의 연혁 및 현황 ····· 4
1. 개관 ····· 4
2. 독촉절차 주요 연혁 및 현황 ····· 4
가. 독촉절차 의의 및 전체적인 흐름 ····· 4
나. 독촉절차 주요 연혁 ····· 5
다. 독촉절차 현황 ····· 7
1) 독촉사건 전체 처리 현황 및 강제집행 현황 ····· 7
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현황 및 전자사건 비율 ····· 10
3) 채무자 이의신청 현황 ····· 11
4) 채권자 소제기신청 현황 ····· 13
5) 소송절차회부 현황 ····· 15
3. 무변론판결 연혁 및 현황 ····· 16

가. 무변론판결 의의 및 전체적인 흐름 ····· 16
나. 무변론판결 연혁 ····· 18
다. 무변론판결 현황 ····· 19

4. 독촉절차 및 무변론판결과 소송사기 ····· 20

Ⅲ. 해외 입법례 분석 ····· 22

1. 독일 ····· 22

가. 독일의 독촉절차 ····· 22
나. 독일의 무변론판결 ····· 27
다. 소송사기 관련 사항 ····· 28

2. 오스트리아 ····· 29

가. 오스트리아의 독촉절차 ····· 29
나. 오스트리아의 무변론판결 ····· 31
다. 소송사기 관련 사항 ····· 32

3. 일본 ····· 32

가. 일본의 독촉절차 ····· 32
나. 일본의 무변론판결 ····· 37
다. 소송사기 관련 사항 ····· 37

4. 프랑스 ····· 38

가. 프랑스의 독촉절차 ····· 38
나. 프랑스의 무변론판결 ····· 42
다. 소송사기 관련 사항 ····· 43

5. 시사점 ····· 43

Ⅳ. 소송사기 (의심)사건 현황 및 발생 요인 ····· 46

1. 개관 ····· 46
2. 법원행정처(또는 대법원) 보고 또는 언론보도 사건 ····· 46

가. 독촉사건 ····· 46
나. 무변론판결사건 ····· 52
다. 한계 ····· 52

3. 소송사기 판결 분석 ····· 53

가. 개관 ····· 53
나. 독촉절차를 이용한 소송사기 사건 분석 ····· 53
1) 소송사기 관련 주요 내용 ····· 53
2) 사건 분석 ····· 64
다. 무변론판결을 이용한 소송사기 사건 분석 ····· 72

1) 소송사기 관련 주요 내용 ····· 72
2) 사건 분석 ····· 74
라. 소결 ····· 79

4. 소송사기 (의심)사건 발생 요인 및 실무상 처리 현황 ····· 80
가. 소송사기 (의심)사건 발생 요인 ····· 80
1) 발생 요인의 구분 ····· 80
2) [요인 1] 허위채권 또는 소멸채권 ····· 80
3) [요인 2] 허위송달 ····· 80
4) [요인 3] 소송무능력 ····· 81
나. 실무상 처리 현황 – 설문조사 결과 ····· 81
1) 독촉절차를 이용한 소송사기 (의심)사건 문제 인지 관련 ····· 81
2) 소송사기 (의심)사건 처리 내용 및 방법 관련 ····· 82
3) 소결 ····· 83

Ⅴ.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 84

1. 개관 및 고려 사항 ····· 84
가. 개관 ····· 84
나. 개선방안 검토 시 고려 사항 ····· 84

2. [요인 1] 허위채권 또는 소멸채권 ····· 85
가. 현행 제도의 한계 ····· 85
1) 확정의 효력에 비해 채권자 주장의 진정성 담보 부족 ····· 85
2) 독촉절차 심리의 한계 ····· 87
나. 개선방안 검토 ····· 90
1) 독촉절차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 90
2) 서면심리를 강화하는 방안 ····· 91
가) 개선방향 ····· 91
나) 개선안(1안) – 지급명령 신청 시 채권자에게 청구채권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장기] ····· 92
다) 개선안(2안) –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 [장기] ····· 101
라) 개선안(3안) – 지급명령 남용의 경우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 시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방안 [단기·중기] ····· 105
마) 고려할 사항 ····· 110
3)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장기] ····· 111
4)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 ····· 115

3. [요인 2] 허위 송달 ····· 116
가. 현행 제도의 한계 ····· 116
1) 채무자 주소의 진정성 담보 부족 ····· 116

2) 송달 상황 파악의 한계 ····· 119
3) 당사자의 송달현황 파악 한계 ····· 125
나. 개선방안 검토 ····· 127
1) 채무자 주소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장기] ····· 127
2) 독촉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제한 [단기] ····· 128
3) 우편송달에 의한 송달사유 통지 구체화 방안 [중기] ····· 129
4)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 [중기] ····· 132
5) 전자적 보조수단 활용 방안 [중기] ····· 135
6) 채무자가 송달장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장기] ····· 138
7) 그 외의 개선방안 ····· 141

4. [요인 3] 소송무능력 ····· 143

가. 현행 제도의 한계 ····· 143
1) 소송무능력자 확인의 한계 ····· 143
2) 정신적 장애인 지원의 한계 ····· 144
3) 송달보고서 서식의 한계 (요인 2와 동일) ····· 146
나. 개선방안 검토 ····· 147
1) 구체화된 우편송달통지서 및 확대된 소송절차회부 사유 활용 방안 [중기·장기] · 147
2) 채무자 소송능력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장기] ····· 147
3) 법원이 후견등기사항 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기] ····· 148
4) 등록된 정신적 장애인의 절차 이용 편의성 확대 방안 [중기·장기] ····· 153
5) 그 외의 개선방안 ····· 154

5. 그 외의 개선방안 ····· 155

가. 현실적 손해 방지 관련 개선방안 ····· 155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방안 [중기] ····· 155
2) 대국민 안내 관련 방안 [단기] ····· 160
나. 소송사기 의심사례 대응체계 관련 개선방안 [단기] ····· 162
1) 설문조사 결과 ····· 162
2) 현행 제도의 한계 ····· 164
3) 개선안 ····· 165

6. 보론 – 이행권고결정제도 ····· 168

가. 개관 ····· 168
나.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의의 및 현황 ····· 168
1) 의의 및 절차 ····· 168
2) 현황 ····· 170
다.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문제점 ····· 170
1) 도입 배경 ····· 170
2) 효력 및 독촉절차와의 차이 ····· 171
3) 문제점 ····· 173
라. 개선안 ····· 175

Ⅵ. 결론(정리) ····· 178

217.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5-11

연구책임자: 박 우 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2025년 9월 25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배경 ····· 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 6
Ⅰ. 연구의 방법 ····· 6
Ⅱ. 연구의 개요 ····· 8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법제의 구조와 성격 ····· 9

제1절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상위 규범 ····· 11
Ⅰ. 헌법과 장애인의 평등권 ····· 11
1. 헌법의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제 ····· 11
2. 장애인의 평등권 ····· 13
3. 헌법소송과 장애차별구제사건 ····· 13
Ⅱ. 국제규범상의 장애인 평등권 ····· 23
1. 국제인권규범과 장애인권리보장 ····· 23
2.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평등권 ····· 27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법제 도입의 배경 및 쟁점 ····· 35
Ⅰ. 장애인차별금지법제 도입의 배경 및 과정 ····· 35
1. 도입 배경 ····· 35
2. 입법 과정 ····· 36
Ⅱ.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 ····· 38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 및 최근 변화 ····· 41
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 ····· 41

Ⅱ. 주요 변화 ····· 45
제4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핵심 개념 ····· 48
Ⅰ. 장애 개념 ····· 48
Ⅱ. 차별 개념 ····· 51
Ⅲ. 권리구제 방식 ····· 54
1. 기본개념과 절차 ····· 54
2. 행정적 구제절차 현황 ····· 56
3. 관련 쟁점 ····· 70
제5절 소결 ····· 80

제3장 법의 적용과 해석 ····· 81

제1절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 83
제2절 판례 분석의 시각과 자료 ····· 85
Ⅰ. 분석의 시각 ····· 85
Ⅱ. 자료 ····· 87
제3절 현황 ····· 110
Ⅰ. 민사사건 ····· 110
1. 고용 ····· 114
2. 교육 ····· 114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115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117
5. 모·부성권, 성 등 ····· 119
6.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119
Ⅱ. 행정사건 ····· 120
1. 고용 ····· 123
2. 교육 ····· 126
3. 재화용역 ····· 129
4. 괴롭힘 ····· 133
5. 급여·등급·서비스 ····· 134
제4절 법원의 논증 ····· 138
Ⅰ. 장애 개념 ····· 138
Ⅱ. 차별 개념 ····· 142
1. 간접차별 ····· 142
2. 정당한 편의제공 ····· 148
Ⅲ. 차별 사유에 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상의 '정당한 사유' 159
1. 장애인 등 시외이동권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 사건(민사판례 17) … 160
2.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 사건
(민사판례 19) ····· 165
3.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 사건
(민사판례 24) ····· 169
4. 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 사건(민사판례 28)· 171
5. 종합 ····· 173

Ⅳ. 구제조치 ····· 173
1. 적극적 구제조치에 대한 판단 ····· 173
2. 임시조치신청에 대한 판단 ····· 180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188
제5절 소결 ····· 207

제4장 외국 사례 검토 ····· 209

제1절 개관 ····· 211
제2절 미국 ····· 212
Ⅰ. 미국 장애인법의 구조 ····· 212
1. 도입 배경 및 입법 과정 ····· 212
2. 주요 차원별 핵심 내용 ····· 214
3. 구제절차 ····· 218
Ⅱ. 주요 판례 ····· 221
1. 장애 개념 ····· 221
2. 차별 개념 ····· 223
3. 강제명령 ····· 230
Ⅲ. 평가 ····· 235
제3절 유럽연합 ····· 236
Ⅰ. 유럽연합의 차별금지 규범 ····· 236
1. 차별금지지침 ····· 236
2. 접근성 강화 지침 ····· 239
Ⅱ. 장애 및 차별 개념 ····· 241
1. 장애 개념 ····· 242
2. 차별 개념 ····· 244
Ⅲ. 구제절차 ····· 245
Ⅳ. 평가 ····· 246
제4절 영국 ····· 247
Ⅰ.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 ····· 247
1. 도입 배경 및 입법 과정 ····· 247
2. 주요 차원별 핵심 내용 ····· 249
3. 구제절차 ····· 258
Ⅱ. 주요 판례 ····· 262
1. 장애 개념 ····· 262
2. 차별 개념 ····· 265
3. 구제절차 ····· 267
Ⅲ. 비교 및 평가 ····· 269
제5절 독일 ····· 270
Ⅰ. 독일 장애인법의 구조 ····· 270
1. 도입 배경 및 입법 과정 ····· 270
2. 주요 차원별 핵심 내용 ····· 273
3. 구제절차 ····· 276

Ⅱ. 주요 판례 ····· 279
1. 장애 개념 ····· 279
2. 차별 개념 ····· 279
3. 구제절차 ····· 281
Ⅲ. 비교 및 평가 ····· 282
제6절 프랑스 ····· 283
Ⅰ. 프랑스 장애법의 구조 ····· 283
1. 도입 배경 및 입법 과정 ····· 283
2. 주요 차원별 핵심 내용 ····· 286
3. 구제 절차 ····· 289
Ⅱ. 주요 판례 ····· 294
1. 차별 관련 ····· 294
2. 구제절차 ····· 296
Ⅲ. 비교 및 평가 ····· 300
제7절 일본 ····· 301
Ⅰ. 일본 장애법의 구조 ····· 301
1. 도입 배경 및 입법 과정 ····· 301
2. 주요 차원별 핵심 내용 ····· 302
3. 구제절차 ····· 306
Ⅱ. 주요 판례 ····· 307
Ⅲ. 비교 및 평가 ····· 308
제8절 소결 ····· 309
Ⅰ.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의 형성 과정 ····· 309
Ⅱ. 개념정의 및 분류방식 ····· 312
1. 장애 개념 ····· 312
2. 차별 개념 ····· 314
Ⅲ. 담당기관 및 구제절차 ····· 318

제5장 시사점 ····· 327

제1절 입법 차원 ····· 329
Ⅰ. 장애 개념 ····· 329
Ⅱ. 차별 개념 ····· 331
Ⅲ. 구제절차 ····· 333
1.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도입 ····· 333
2. 소송비용 ····· 340
제2절 행정 차원 ····· 345
Ⅰ. 법원의 재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연계 방안 ····· 345
1. 의견제출 제도의 활용 ····· 345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가능성 ····· 347
Ⅱ. 법무부 시정명령 권한 관련 방안 ····· 348
1. 법제도 차원의 개선 ····· 349
2. 운영·정책 차원에서 개선 ····· 350

제3절 사법 차원 ····· 350
Ⅰ. 절차 등 제도 ····· 350
1. 참고인 의견의 적극적 활용 ····· 350
2. 공익변호사 처우 개선 및 양성 ····· 356
Ⅱ. 법원의 판단 ····· 358
1. 구제조치 안에 관한 충분한 심리 ····· 358
2. 위자료 ····· 358
3. 적극적 구제조치 ····· 359

제6장 결론 ····· 363

제1절 요약 ····· 365
제2절 함의와 후속과제 ····· 368

218.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구보고서 2025-12

연구책임자: 이 영 창(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 보 람(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9월 2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6
Ⅰ. 연구의 대상 ····· 6
Ⅱ.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담당 등 ····· 10
Ⅰ. 보고서의 내용 구성 ····· 10
Ⅱ. 주요 개념어 의미와 용례 ····· 11
Ⅲ. 연구의 내용별 집필 담당 ····· 13

제2장 법원 업무량 분석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 15

제1절 업무량 분석방법과 사건가중치 연구 ····· 17
Ⅰ. 업무량 분석방법 ····· 17
Ⅱ. 사건가중치 분석의 개념 ····· 20
Ⅲ. 사건가중치 분석방법의 유용성 ····· 24
Ⅳ. 사건가중치 분석방법에 대한 평가 ····· 28
제2절 미국의 사건가중치 연구 ····· 30
Ⅰ. 사건가중치 연구의 시작 ····· 30
Ⅱ. 사건가중치 산정 고려요소 ····· 31
Ⅲ. 다양한 사건가중치 모델 ····· 33

Ⅳ. 사건가중치 모델 비교 ····· 48
Ⅴ. 미국 사건가중치 모델의 유용성과 한계 ····· 50
제3절 유럽의 사건가중치 연구 ····· 52
Ⅰ. 유럽 국가들의 법관 업무부담 분석 ····· 52
Ⅱ. 유럽 국가들의 사건가중치 모델 분류 ····· 68

제3장 법원 업무량 분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71

제1절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기존 연구들 ····· 73
Ⅰ. 국내 선행연구 검토 ····· 73
Ⅱ. 과거 법원의 업무부담 측정방식 ····· 73
Ⅲ. 1997년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연구 ····· 75
Ⅳ. 2000년 법관의 업무부담에 관한 연구 ····· 102
Ⅴ. 2001년 민사재판 적정처리건수 제시 ····· 107
Ⅵ. 2003년 민사재판 적정처리건수 조정 ····· 110
Ⅶ. 2004년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평가 ····· 110
Ⅷ. 2005년 민사재판 적정처리건수 재조정 ····· 111
Ⅸ. 2013년 업무시간 측정 방식의 연구 ····· 112
Ⅹ. 2008년 이후 적정처리건수 개념의 쇠퇴 ····· 113
Ⅺ. 2019년 이후 적정처리건수 논의의 부활 ····· 114
Ⅻ. 2020년 이후의 논의 동향 ····· 120
제2절 사건가중치를 통한 법관의 업무부담 분석 시론(試論) ····· 122
Ⅰ. 시간조사를 통한 사건가중치 산정의 필요성 ····· 122
Ⅱ. 시간조사를 통한 사건가중치 모델 선정 시 고려사항 ····· 123
Ⅲ. 시간조사를 통한 법관 업무부담 측정 ····· 126
제3절 법관 업무시간 분석과 사건가중치 방식에 대한 평가 ····· 144
Ⅰ. 법관의 업무시간 분석에 기초한 사건가중치 연구 ····· 144
Ⅱ. 사건가중치 분석 방식의 제약과 한계 ····· 144
Ⅲ. 분석 소결 ····· 146

제4장 현직 법관들의 근무여건 ····· 14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49
Ⅰ. 현직 법관 설문조사 연구설계 ····· 149
Ⅱ. 설문조사 대상 및 시기 ····· 154
Ⅲ. 설문조사 분석 절차 ····· 155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기초정보 ····· 157
Ⅰ. 연령 및 성별 분포 ····· 157
Ⅱ. 직무 경력 ····· 158
Ⅲ. 미성년 자녀의 양육 여부 ····· 160
제3절 법관의 시간적 업무부담 분석 ····· 162
Ⅰ. 법관의 평균적 근무시간 ····· 162

Ⅱ. 평균적인 야근 횟수 ····· 165
Ⅲ. 평균적인 주말근무 빈도 ····· 169
Ⅳ. 만성적인 업무시간 부족 ····· 173
Ⅴ. 검토 소결 ····· 175
제4절 법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 177
Ⅰ. 법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 177
Ⅱ. 법관의 신체적 건강 ····· 179
Ⅲ. 법관의 정신적 건강 ····· 182
Ⅳ. 검토 소결 ····· 185
제5절 직무 만족도 및 주된 만족·불만족 요인 ····· 188
Ⅰ. 법관의 직무 만족도 수준 ····· 188
Ⅱ. 직무 만족 요인 분석 ····· 191
Ⅲ. 직무 불만족 요인 분석 ····· 194
제6절 법관의 이직 의향과 장기근속 저해 요인 ····· 200
Ⅰ. 법관의 이직률 ····· 200
Ⅱ. 정년까지 근무할 의향 ····· 204
Ⅲ. 정년근무 또는 장기근속 의향을 저해하는 요인 ····· 206
제7절 법원에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 ····· 214
Ⅰ. 연대감 및 소속감이 발휘하는 영향력 ····· 214
Ⅱ. 법원에 대한 법관들의 소속감·연대감 ····· 215
제8절 법관 증원 필요성 및 적정 규모 ····· 220
Ⅰ. 법관의 수요와 공급 ····· 220
Ⅱ. 법관 증원의 필요성 ····· 223
Ⅲ. 법관 증원의 적정 규모 : A 분석안 ····· 226
Ⅳ. 법관 증원의 적정 규모 : B 분석안 ····· 230
제9절 재판연구원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 ····· 239
Ⅰ. 재판연구원 증원의 필요성 ····· 239
Ⅱ. 재판연구원 증원의 적정 규모 ····· 242
Ⅲ. 법관 vs 재판연구원 증원의 우선순위 ····· 245

제5장 업무부담 요인에 관한 현직 법관들의 인식 ····· 249

제1절 법원의 사건부담 접근방식 ····· 251
Ⅰ. 법원의 사건부담 현황 ····· 251
Ⅱ. 소송사건의 난이도 상승 추세 ····· 258
제2절 시간적 부담 및 재판의 난이도 ····· 264
Ⅰ. 시간적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 영역 ····· 264
Ⅱ. 법관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사건 ····· 269
제3절 업무부담 분석지표(안) ····· 274
Ⅰ. 업무부담 분석지표(안) 구성 ····· 274
제4절 잠정적 업무부담 분석지표(안) ····· 281
Ⅰ. 사건기록의 분량 ····· 281

Ⅱ. 판결문의 길이 ····· 284
Ⅲ. 사건 당사자 수 ····· 289
Ⅳ. 민사사건 소가 규모 ····· 291
Ⅴ. 업무부담 주요 분석지표(안) 검토 ····· 294

제6장 민사재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299

제1절 재판데이터 분석 방식 ····· 301
Ⅰ. 수집·분석 대상 재판 데이터 ····· 301
Ⅱ. 분석대상 민사재판 데이터 개황 ····· 315
제2절 민사사건 재판기간 분석 ····· 318
Ⅰ. 전체 법원의 평균 재판기간 변동 추이 ····· 318
Ⅱ. 각 지역 고등법원 민사부 재판기간 분석 ····· 331
Ⅲ. 각 지역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재판기간 분석 ····· 347
Ⅳ. 평균 재판기간 분석 소결 ····· 362
제3절 민사재판 제출 자료의 분량 검토 ····· 365
Ⅰ. 고등법원 민사부에 제출된 자료의 분량 ····· 365
Ⅱ. 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제출된 자료의 분량 ····· 382
Ⅲ. 제출 자료의 분량에 대한 분석 소결 ····· 394
제4절 민사재판 판결문 길이 검토 ····· 396
Ⅰ. 연도별 평균 판결문 길이 ····· 396
Ⅱ. 고등법원 판결문 길이 ····· 400
Ⅲ. 주요 지방법원 판결문 길이 ····· 405
Ⅳ. 판결문 길이의 차이 분석 ····· 409
제5절 사건 종국 유형별 속성 분석 (범주 B) ····· 411
Ⅰ. 사건 종국 유형에 따른 업무부담 차이 ····· 411
Ⅱ. 각하판결 ····· 412
Ⅲ. 원고패소 판결 ····· 416
Ⅳ. 원고일부승소 판결 ····· 420
Ⅴ. 원고승소 판결 ····· 423
Ⅵ. 항소각하 판결 ····· 426
Ⅶ. 항소기각 판결 ····· 429
Ⅷ. 사건의 종국 유형별 분석의 시사점 ····· 431
제6절 재판 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 434
Ⅰ. 주요 분석지표 사이의 통계적 관계 ····· 434
Ⅱ. 자료의 분량과 재판기간 분석 ····· 441
Ⅲ. 판결문 길이와 재판기간 분석 ····· 445
Ⅳ. 분석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448
제7절 법원의 인적자원 배치 ····· 452
Ⅰ. 법원별 법관 및 사건처리 규모 ····· 452
제8절 법원 사건관리 방식의 발전 필요성 ····· 469
Ⅰ. 법원의 사건관리 방식과 업무 능률 ····· 469

Ⅱ. 차등화된 맞춤형 사건관리 ····· 477
Ⅲ. 한국 법원에의 시사점 ····· 489

제7장 인사정책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과 정책적 함의 ····· 493

제1절 법원의 조직 구성 및 운영 ····· 495
Ⅰ. 법원의 조직론적 유형 ····· 495
Ⅱ. 법원의 내부 환경 및 인사정책 검토 필요성 ····· 498
제2절 법원 인사정책에 관한 현직 법관들의 인식 ····· 502
Ⅰ. 현직 법관들의 평가 : 긍정적 피드백의 부족 ····· 502
Ⅱ. 현직 법관들의 평가 : 부정적 피드백의 부족 ····· 504
Ⅲ. 사무분담 고려 사항 ····· 507
Ⅳ. 법관 연임심사 적정 수준 ····· 512
Ⅴ. 근무평정 결과의 고지 ····· 516
Ⅵ. 현직 법관들의 인사정책 평가에 관한 분석 소결 ····· 523
제3절 법원의 인사정책에 관한 전·현직 법관들의 평가 ····· 527
Ⅰ. 전직 법관 인터뷰 ····· 527
Ⅱ. 현직 법관 인터뷰 ····· 533
제4절 법원 인사정책에의 시사점 ····· 544
Ⅰ. 직무동기 강화 필요성 ····· 544
Ⅱ. 법원 문화의 중요성 ····· 554
Ⅲ.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 ····· 559
Ⅳ. 법원 인사정책의 난제 ····· 563

219.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5-13

연구책임자: 박 영 욱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 (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백 수 빈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5년 12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6
Ⅰ. 연구의 대상 ····· 6
Ⅱ.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담당 등 ····· 10
Ⅰ. 보고서의 내용 구성 ····· 10
Ⅱ. 주요 개념어 의미와 용례 ····· 11
Ⅲ. 연구의 내용별 집필 담당 ····· 13

제2장 법원 업무량 분석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 15

제1절 업무량 분석방법과 사건가중치 연구 ····· 17
Ⅰ. 업무량 분석방법 ····· 17
Ⅱ. 사건가중치 분석의 개념 ····· 20
Ⅲ. 사건가중치 분석방법의 유용성 ····· 24
Ⅳ. 사건가중치 분석방법에 대한 평가 ····· 28

제2절 미국의 사건가중치 연구 ····· 30
Ⅰ. 사건가중치 연구의 시작 ····· 30
Ⅱ. 사건가중치 산정 고려요소 ····· 31
Ⅲ. 다양한 사건가중치 모델 ····· 33
Ⅳ. 사건가중치 모델 비교 ····· 48
Ⅴ. 미국 사건가중치 모델의 유용성과 한계 ····· 50
제3절 유럽의 사건가중치 연구 ····· 52
Ⅰ. 유럽 국가들의 법관 업무부담 분석 ····· 52
Ⅱ. 유럽 국가들의 사건가중치 모델 분류 ····· 68

제3장 법원 업무량 분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71

제1절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기존 연구들 ····· 73
Ⅰ. 국내 선행연구 검토 ····· 73
Ⅱ. 과거 법원의 업무부담 측정방식 ····· 73
Ⅲ. 1997년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연구 ····· 75
Ⅳ. 2000년 법관의 업무부담에 관한 연구 ····· 102
Ⅴ. 2001년 민사재판 적정처리건수 제시 ····· 107
Ⅵ. 2003년 민사재판 적정처리건수 조정 ····· 110
Ⅶ. 2004년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평가 ····· 110
Ⅷ. 2005년 민사재판 적정처리건수 재조정 ····· 111
Ⅸ. 2013년 업무시간 측정 방식의 연구 ····· 112
Ⅹ. 2008년 이후 적정처리건수 개념의 쇠퇴 ····· 113
Ⅺ. 2019년 이후 적정처리건수 논의의 부활 ····· 114
Ⅻ. 2020년 이후의 논의 동향 ····· 120
제2절 사건가중치를 통한 법관의 업무부담 분석 시론(試論) ····· 122
Ⅰ. 시간조사를 통한 사건가중치 산정의 필요성 ····· 122
Ⅱ. 시간조사를 통한 사건가중치 모델 선정 시 고려사항 ····· 123
Ⅲ. 시간조사를 통한 법관 업무부담 측정 ····· 126
제3절 법관 업무시간 분석과 사건가중치 방식에 대한 평가 ····· 144
Ⅰ. 법관의 업무시간 분석에 기초한 사건가중치 연구 ····· 144
Ⅱ. 사건가중치 분석 방식의 제약과 한계 ····· 144
Ⅲ. 분석 소결 ····· 146

제4장 현직 법관들의 근무여건 ····· 14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49
Ⅰ. 현직 법관 설문조사 연구설계 ····· 149
Ⅱ. 설문조사 대상 및 시기 ····· 154
Ⅲ. 설문조사 분석 절차 ····· 155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기초정보 ····· 157
Ⅰ. 연령 및 성별 분포 ····· 157

Ⅱ. 직무 경력 ····· 158
Ⅲ. 미성년 자녀의 양육 여부 ····· 160
제3절 법관의 시간적 업무부담 분석 ····· 162
Ⅰ. 법관의 평균적 근무시간 ····· 162
Ⅱ. 평균적인 야근 횟수 ····· 165
Ⅲ. 평균적인 주말근무 빈도 ····· 169
Ⅳ. 만성적인 업무시간 부족 ····· 173
Ⅴ. 검토 소결 ····· 175
제4절 법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 177
Ⅰ. 법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 177
Ⅱ. 법관의 신체적 건강 ····· 179
Ⅲ. 법관의 정신적 건강 ····· 182
Ⅳ. 검토 소결 ····· 185
제5절 직무 만족도 및 주된 만족·불만족 요인 ····· 188
Ⅰ. 법관의 직무 만족도 수준 ····· 188
Ⅱ. 직무 만족 요인 분석 ····· 191
Ⅲ. 직무 불만족 요인 분석 ····· 194
제6절 법관의 이직 의향과 장기근속 저해 요인 ····· 200
Ⅰ. 법관의 이직률 ····· 200
Ⅱ. 정년까지 근무할 의향 ····· 204
Ⅲ. 정년근무 또는 장기근속 의향을 저해하는 요인 ····· 206
제7절 법원에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 ····· 214
Ⅰ. 연대감 및 소속감이 발휘하는 영향력 ····· 214
Ⅱ. 법원에 대한 법관들의 소속감·연대감 ····· 215
제8절 법관 증원 필요성 및 적정 규모 ····· 220
Ⅰ. 법관의 수요와 공급 ····· 220
Ⅱ. 법관 증원의 필요성 ····· 223
Ⅲ. 법관 증원의 적정 규모 : A 분석안 ····· 226
Ⅳ. 법관 증원의 적정 규모 : B 분석안 ····· 230
제9절 재판연구원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 ····· 239
Ⅰ. 재판연구원 증원의 필요성 ····· 239
Ⅱ. 재판연구원 증원의 적정 규모 ····· 242
Ⅲ. 법관 vs 재판연구원 증원의 우선순위 ····· 245

제5장 업무부담 요인에 관한 현직 법관들의 인식 ····· 249

제1절 법원의 사건부담 접근방식 ····· 251
Ⅰ. 법원의 사건부담 현황 ····· 251
Ⅱ. 소송사건의 난이도 상승 추세 ····· 258
제2절 시간적 부담 및 재판의 난이도 ····· 264
Ⅰ. 시간적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 영역 ····· 264
Ⅱ. 법관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사건 ····· 269

제3절 업무부담 분석지표(안) ····· 274
Ⅰ. 업무부담 분석지표(안) 구성 ····· 274
제4절 잠정적 업무부담 분석지표(안) ····· 281
Ⅰ. 사건기록의 분량 ····· 281
Ⅱ. 판결문의 길이 ····· 284
Ⅲ. 사건 당사자 수 ····· 289
Ⅳ. 민사사건 소가 규모 ····· 291
Ⅴ. 업무부담 주요 분석지표(안) 검토 ····· 294

제6장 민사재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299

제1절 재판데이터 분석 방식 ····· 301
Ⅰ. 수집·분석 대상 재판 데이터 ····· 301
Ⅱ. 분석대상 민사재판 데이터 개황 ····· 315
제2절 민사사건 재판기간 분석 ····· 318
Ⅰ. 전체 법원의 평균 재판기간 변동 추이 ····· 318
Ⅱ. 각 지역 고등법원 민사부 재판기간 분석 ····· 331
Ⅲ. 각 지역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재판기간 분석 ····· 347
Ⅳ. 평균 재판기간 분석 소결 ····· 362
제3절 민사재판 제출 자료의 분량 검토 ····· 365
Ⅰ. 고등법원 민사부에 제출된 자료의 분량 ····· 365
Ⅱ. 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제출된 자료의 분량 ····· 382
Ⅲ. 제출 자료의 분량에 대한 분석 소결 ····· 394
제4절 민사재판 판결문 길이 검토 ····· 396
Ⅰ. 연도별 평균 판결문 길이 ····· 396
Ⅱ. 고등법원 판결문 길이 ····· 400
Ⅲ. 주요 지방법원 판결문 길이 ····· 405
Ⅳ. 판결문 길이의 차이 분석 ····· 409
제5절 사건 종국 유형별 속성 분석 (범주 B) ····· 411
Ⅰ. 사건 종국 유형에 따른 업무부담 차이 ····· 411
Ⅱ. 각하판결 ····· 412
Ⅲ. 원고패소 판결 ····· 416
Ⅳ. 원고일부승소 판결 ····· 420
Ⅴ. 원고승소 판결 ····· 423
Ⅵ. 항소각하 판결 ····· 426
Ⅶ. 항소기각 판결 ····· 429
Ⅷ. 사건의 종국 유형별 분석의 시사점 ····· 431
제6절 재판 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 434
Ⅰ. 주요 분석지표 사이의 통계적 관계 ····· 434
Ⅱ. 자료의 분량과 재판기간 분석 ····· 441
Ⅲ. 판결문 길이와 재판기간 분석 ····· 445
Ⅳ. 분석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448

제7절 법원의 인적자원 배치 ····· 452
Ⅰ. 법원별 법관 및 사건처리 규모 ····· 452
제8절 법원 사건관리 방식의 발전 필요성 ····· 469
Ⅰ. 법원의 사건관리 방식과 업무 능률 ····· 469
Ⅱ. 차등화된 맞춤형 사건관리 ····· 477
Ⅲ. 한국 법원에의 시사점 ····· 489

제7장 인사정책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과 정책적 함의 ····· 493

제1절 법원의 조직 구성 및 운영 ····· 495
Ⅰ. 법원의 조직론적 유형 ····· 495
Ⅱ. 법원의 내부 환경 및 인사정책 검토 필요성 ····· 498
제2절 법원 인사정책에 관한 현직 법관들의 인식 ····· 502
Ⅰ. 현직 법관들의 평가 : 긍정적 피드백의 부족 ····· 502
Ⅱ. 현직 법관들의 평가 : 부정적 피드백의 부족 ····· 504
Ⅲ. 사무분담 고려 사항 ····· 507
Ⅳ. 법관 연임심사 적정 수준 ····· 512
Ⅴ. 근무평정 결과의 고지 ····· 516
Ⅵ. 현직 법관들의 인사정책 평가에 관한 분석 소결 ····· 523
제3절 법원의 인사정책에 관한 전·현직 법관들의 평가 ····· 527
Ⅰ. 전직 법관 인터뷰 ····· 527
Ⅱ. 현직 법관 인터뷰 ····· 533
제4절 법원 인사정책에의 시사점 ····· 544
Ⅰ. 직무동기 강화 필요성 ····· 544
Ⅱ. 법원 문화의 중요성 ····· 554
Ⅲ.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 ····· 559
Ⅳ. 법원 인사정책의 난제 ····· 563

220.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현안보고서 2025-06

연구책임자: 홍 보 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협업: 김 현 아 (前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남 기 윤 (사법정책연구원 사서)

2025년 12월 12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대상 ····· 5
1. 분석대상 시기(時期) ····· 5
2. 분석대상 죄명(罪名) ····· 6
3. 분석대상 판결의 심급(審級) ····· 8
4. 분석대상 자료의 확인방법 ····· 8
Ⅱ.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10
1. 연구의 내용 구성 ····· 10
2. 연구의 성격 ····· 11
3.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의 업무분담 ····· 12

제2장 양형 판단기준 및 주요 국가들의 양형제도 ····· 13

제1절 양형판단의 의의 ····· 15

Ⅰ. 양형판단의 의의 ····· 15
1. 양형판단과 재량 ····· 15
Ⅱ.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 18
1. 양형판단과 사법신뢰 ····· 18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신뢰 ····· 18
3. 사법신뢰의 형성 ····· 19
제2절 양형판단의 내용적 기준 ····· 21
Ⅰ. 양형판단과 형사정책 ····· 21
Ⅱ. 형법상 양형의 조건 ····· 22
1.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의 조건' ····· 22
2. 형법 제51조의 특별예방적 성격 ····· 23
Ⅲ.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 24
1.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 24
2. 판례에 따른 해석기준 ····· 25
3.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비판 ····· 25
4. 정상참작감경 사유 구체화 시도 ····· 26
Ⅳ. 법원조직법상 양형의 원칙과 기준 ····· 27
1.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양형제도 개혁안 ····· 27
2. 법원조직법 개정과 양형의 원칙 규정 ····· 27
3. 형법과 법원조직법의 양형 규정 비교 ····· 29
제3절 현행 양형기준 제도의 도입 ····· 31
Ⅰ. 양형기준 도입과 양형위원회 설치 ····· 31
1. 양형기준 도입 배경 ····· 31
2. 양형위원회의 설치·운영 ····· 31
3. 양형기준 설정 작업 ····· 32
4. 양형기준의 발표 ····· 32
Ⅱ. 양형기준 설정 방식 ····· 33
1. 양형기준 설정 방식의 구분 ····· 33
2. 기술적 접근방식 위주의 양형기준 도입 ····· 33
3. 기술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규범적 보완 ····· 34
4. 양형기준 적용 제외 범죄 ····· 34
5. 양형인자의 구분과 적용 ····· 35
Ⅲ.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 ····· 36
1.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 ····· 36
2. 양형기준의 사실적 구속력 ····· 37
3. 양형기준 준수율 ····· 38
Ⅳ. 양형이유 기재방식 ····· 39
1. 양형이유 기재 법리와 실무 ····· 39
2. 양형이유 기재방식 ····· 39
제4절 주요 국가들의 양형제도 ····· 40

Ⅰ. 미국의 양형제도 ····· 40
1. 과도한 양형 격차 해소 필요성 ····· 40
2. 양형기준의 제도적 기반 ····· 41
3. 미연방 양형기준의 목적 및 구성 ····· 42
4. 미국의 공정양형법(Fair Sentencing Act) ····· 44
5. 미국 주별 양형기준 ····· 45
6. 미국 양형기준의 효력 ····· 46
Ⅱ. 영국의 양형제도 ····· 47
1. 영국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과 양형제도 ····· 47
2. 검시관 및 사법법(Coroners and Justice Act) 제정과 양형위원회 ····· 48
3. 영국의 양형기준 ····· 48
4. 영국의 양형법(Sentencing Act 2020) ····· 49
Ⅲ. 프랑스의 양형제도 ····· 50
1. 프랑스의 양형제도 개관 ····· 50
2. 프랑스의 양형 실무 ····· 50
Ⅳ. 독일의 양형제도 ····· 51
1. 독일의 양형제도 개관 ····· 51
2. 독일의 양형 실무 ····· 52
Ⅴ. 일본의 양형제도 ····· 53
1. 일본 양형제도 개관 ····· 53
2. 일본의 양형 실무 ····· 53
제5절 살인범죄 양형기준 ····· 56
Ⅰ. 살인범죄 양형기준 도입 ····· 56
1.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도입과 개정 ····· 56
2. 살인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 56
3.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변천 과정 ····· 56
4.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표 ····· 60
5. 향후 양형기준 개정 의견 ····· 62
Ⅱ. 살인범죄 세부 유형 ····· 62
1. 양형기준에 따른 살인범죄 세부 유형 ····· 62
2. 제1유형 ····· 62
3. 제2유형 ····· 63
4. 제3유형 ····· 63
5. 제4유형 ····· 64
6. 제5유형 ····· 64
7. 범죄 세부 유형의 확인과 양형인자 검토 ····· 64

제3장 실증분석 설계 및 기술분석 결과 ····· 65

제1절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 67
Ⅰ. 분석대상 수집자료 ····· 67
1. 자료조사 대상 선정 ····· 67
2. 자료의 수집 방법 ····· 68
Ⅱ. 판결문 정보 구조화 작업 ····· 68
1. 판결문 정보의 코딩 ····· 68
2. 코딩 작업의 기준 및 유의사항 ····· 69

제2절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 70
Ⅰ. 실증분석의 목적 ····· 70
Ⅱ. 판결문 정보의 계량화 ····· 70
1. 형량 계산의 기본단위 ····· 70
2. 무기징역형의 계량화 ····· 71
3.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 72
4. 사형이 선고된 사건 ····· 73
5. 부정기형이 선고된 사건 ····· 73
Ⅲ. 주요 개념의 변수화 작업 ····· 74

제3절 기초통계 개황 ····· 75
Ⅰ. 분석대상 판결문 정보의 개괄 ····· 75
Ⅱ. 연도별 선고형 분포 ····· 76
Ⅲ.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형량 변화 추이 ····· 80
1. 양형기준 도입(2009년) 이전 ····· 80
2. 양형기준 도입(2009년) 이후 ····· 81
3. 양형기준 도입 이전과 이후의 비교 ····· 82

제4절 살인범죄 세부 유형별 형량 ····· 83
Ⅰ. 양형기준에 따른 살인범죄 세부 유형 ····· 83
1. 살인범죄 세부 유형 ····· 83
2. 세부 유형별 선고형량 ····· 83
Ⅱ. 살인범죄 세부 유형별 평균 형량 ····· 84
1. 시간에 따른 세부 유형별 평균 형량 ····· 84
2. 표준적 형량의 상승 ····· 85
3. 제4유형 살인 사건의 형량 분포 ····· 85

제5절 이례적 형량이 선고된 사례 ····· 87
Ⅰ. 이례적인 사건들 ····· 87
Ⅱ. 집행유예 선고 사건 ····· 87
1. 집행유예가 선고된 살인범죄 사건 ····· 87
2.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속성 ····· 90
3. 집행유예가 선고된 구체적 사건 ····· 91
Ⅲ. 사형선고 사건 ····· 92
1. 사형이 선고된 살인범죄 사건 ····· 92
2. 사형선고 건수의 감소 추세 ····· 93
3. 사형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94
Ⅳ. 무기징역형 선고 사건 ····· 96
1. 실질적 극형으로서의 무기징역형 ····· 96
2. 유기징역형 평균 형량의 상승과 무기징역형의 감소 ····· 97
제6절 사건 유형별 구체적 양형 ····· 98
Ⅰ. 존속살해 사건 ····· 98
1. 존속살해 사건의 평균 형량 ····· 98
2. 장기간 누적된 갈등이 발현된 존속살해 사건 ····· 99
3. 패륜성이 현저한 존속살해 사건 ····· 102
4. 존속살해 사건의 분석 소결 ····· 104
Ⅱ. 강도살인 사건 ····· 104
1. 강도살인 사건의 구체적 양형 ····· 105
2.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분석 소결 ····· 108
Ⅲ. 성범죄 결합 살인 사건 ····· 108
1. 성범죄 결합 살인사건의 구체적 양형 ····· 108
2. 성범죄 결합 살인사건에 대한 분석 소결 ····· 113
Ⅳ. 영아살해 사건 ····· 114
1. 영아살해 사건의 형량 분포 ····· 114
2. 영아살해 사건의 구체적 양형 ····· 114
3. 영아살해 사건에 대한 분석 소결 ····· 117
Ⅴ. 아동학대살해 사건 ····· 117
제7절 검찰 구형량 대비 법원의 선고형량 ····· 119
Ⅰ. 검찰의 구형량 수준 확인 ····· 119
Ⅱ. 검찰 구형량 대비 법원의 선고형량 비교 ····· 119
1.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 ····· 119
2. 무기징역형 사건을 포함하는 경우 ····· 120
3. 유기징역형 사건에 한정하는 경우 ····· 121
4. 분석 소결 ····· 121
Ⅲ. 연도별 검사 구형량 대비 법원의 선고형량 ····· 122
Ⅳ. 양형기준 도입 이전 및 이후의 구형량 수준 ····· 123
1. 법원의 양형기준 도입과 검사의 구형량 ····· 123

2. 양형기준 도입 이전 시기의 검사 구형량 ····· 124
3. 양형기준 도입 이후 시기의 검사 구형량 ····· 125
Ⅴ. 검사 구형량 수준과 법원 선고형 수준의 상관성 ····· 126
제8절 1심 선고형과 2심 선고형의 비교 ····· 129
Ⅰ. 항소심에서의 형량변경 ····· 129
1. 양형부당과 항소 ····· 129
2. 항소심에서의 형량감경 관행에 대한 비판 ····· 129
3. 1심 양형판단의 존중 ····· 130
Ⅱ. 항소심의 원심파기율 및 형량변경 비율 ····· 130
1. 항소심의 원심파기율 ····· 130
2. 항소심에서의 형량변경 비율 ····· 131
3. 항소심에서의 형량감경 수준 ····· 132
Ⅲ. 항소심에서의 형량 역전(逆轉) 현상 ····· 134
Ⅳ. 분석 소결 ····· 136
제9절 항소인에 따른 형량 및 승소율 ····· 137
Ⅰ. 항소인에 따른 전반적인 형량 차이 ····· 137
Ⅱ. 항소인에 따른 연도별 변화 추이 ····· 138

제4장 양형의 영향 요인과 추론통계 분석 ····· 141

제1절 추론통계 분석과 연구가설 ····· 143
Ⅰ. 기술통계와 추론통계 ····· 143
Ⅱ. 연구를 위한 분석 모델 ····· 143
1.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 143
2. 양형기준표상의 양형인자 ····· 145
3. 양형기준표상 양형인자 이외의 요인 ····· 145
4. 양형인자의 실제 영향력 ····· 145
5. 연구가설의 수립 ····· 146
6. 통계분석의 성격 ····· 148

제2절 양형인자의 영향력 ····· 149
Ⅰ. 양형인자의 영향력 ····· 149
Ⅱ. 확정적 고의 vs 미필적 고의 ····· 150
Ⅲ. 범행의 계획성 ····· 153
1. 범행의 계획성이 확인된 사례 ····· 153
2. 범행의 계획성에 따른 형량 비교 ····· 154
Ⅳ. 피고인의 심신미약 ····· 156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 156
2.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 ····· 157
3. 심신상실이 인정된 사례 ····· 163

Ⅴ. 잔혹한 범행수법 ····· 164
1. 범행수법의 잔혹성이 인정된 사례 ····· 164
2. 범행수법의 잔혹성에 따른 형량 분석 ····· 167
Ⅵ.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 169
1. 피해자(측)와의 합의 ····· 169
2.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른 형량 분석 ····· 170
Ⅶ. 사체손괴 또는 사체유기 ····· 171
1. 사체관련 범죄 ····· 171
2. 사체손괴 사건 ····· 172
3. 사체 관련 추가적 범죄에 따른 형량 ····· 172
Ⅷ. 피고인의 반성 없음 ····· 174
Ⅸ. 피고인의 자수 ····· 176
Ⅹ. 피고인의 반성 ····· 177
Ⅺ. 공탁 여부 ····· 180
Ⅻ. 피고인의 전과 여부 ····· 184
제3절 주요 영향 변인의 영향력 ····· 186
Ⅰ. 기타 주요 영향 변인 ····· 186
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186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186
2. 면식 또는 비면식 관계 ····· 188
3. 가족 또는 동거인 관계 ····· 190
4. 교제(또는 교제강요) 관계 ····· 194
Ⅲ. 변호인 유형에 따른 구분 ····· 197
1. 사건변호인 선임 사건과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 197
2. 항소심 변호인 유형에 따른 비교 ····· 199
Ⅳ. 범죄의 공연성 ····· 201
1. 범죄의 공연성과 양형 ····· 201
2. 범죄의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 ····· 201
제4절 양형 요소에 대한 회귀분석 ····· 204
Ⅰ.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만을 계산한 회귀분석 결과 ····· 204
1. 형량을 실증적으로 가중하는 요인 ····· 205
2. 형량을 실증적으로 감경하는 요인 ····· 205
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 ····· 206
Ⅱ. 무기징역형 선고 사건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 206
1. 형량을 실증적으로 가중하는 요인 ····· 206
2. 형량을 실증적으로 감경하는 요인 ····· 207
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 ····· 207
Ⅲ. 회귀분석 결과의 시기별 비교 ····· 208
1.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회귀분석 ····· 208
2.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포함한 회귀분석 ····· 210

Ⅳ.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 및 유의점 ····· 212
1. 전체 기간의 회귀분석 결과 ····· 212
2. 시기별 회귀분석 결과 비교 ····· 213
3. 범죄자의 피해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 213
4. 회귀분석 해석의 유의점 ····· 214
제5절 분석의 시사점 및 한계 ····· 216
Ⅰ. 분석 결과의 시사점 ····· 216
1. 양형판단의 체계화 ····· 216
2. 양형인자의 영향력 수준 확인 ····· 216
Ⅱ. 양형기준 도입과 형량 상승 간의 상관성 ····· 217
1. 양형기준 설정의 근거자료 ····· 217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218
Ⅲ. 인과관계 성립 판단을 위한 검토 요건 ····· 221
1. 양형기준 도입과 형량 판단 ····· 221
2. 선후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별 필요성 ····· 221
3. 유기징역 상한 변경의 영향력 ····· 222
4. 양형기준 도입의 영향력 검토 소결 ····· 223
5.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과 과제 ····· 224

제5장 정책적 제언 ····· 225

제1절 양형조사 충실화를 통한 양형심리 강화 ····· 227
Ⅰ. 주요 국가들의 양형조사 제도 ····· 227
1. 영미법계 국가들의 양형조사 제도 ····· 227
2. 대륙법계 국가들의 양형조사 제도 ····· 230
Ⅱ. 양형조사 업무의 제도화 필요성 ····· 232
1. 양형정보의 충실한 조사 ····· 232
2. 양형조사 제도의 의의 ····· 232
3. 현행 양형정보 조사 체계 ····· 233
Ⅲ.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 234
1.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사관 ····· 234
2. 현행 양형조사보고서 작성원칙 ····· 235
3. 양형 업무를 위한 조사관 확충의 필요성 ····· 235
Ⅳ. 양형조사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 236
1. 법적 근거의 마련 필요성 ····· 236
2. 양형조사관의 주요 업무 ····· 237
3. 제17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안 ····· 237
4. 제18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안 ····· 238
5. 제19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안 ····· 240
6. 제21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안 ····· 241

7. 양형조사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 244
제2절 양형기준의 직관적 이해가능성 제고 ····· 245
Ⅰ. 현행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적 이해도 ····· 245
1. 일반 국민들의 양형기준에 대한 인지도 ····· 245
2. 배심원들의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도 ····· 245
Ⅱ.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이해 가능성 제고 필요 ····· 247
1. 양형기준의 이해 가능성 제고 필요 ····· 247
2. 양형기준에 관한 불충분한 이해도의 배경 ····· 248
Ⅲ.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인식 ····· 248
1. 양형기준의 의의 ····· 248
2. 범죄 처벌 수준에 관한 국민 여론 ····· 248
3.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적정성 ····· 249
제3절 양형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250
Ⅰ. 양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식 개선 ····· 250
Ⅱ. 양형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노력 ····· 250
1. 1996년 양형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 마련 ····· 250
2. 사법개혁위원회의 양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의 ····· 251
3. 2005년 양형정보 시스템 구축 노력 ····· 251
4. 검토 소결 ····· 252
Ⅲ. 외국의 양형정보 시스템 ····· 252
Ⅳ. 양형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관리 ····· 254

제6장 결론 ····· 255

제1절 연구의 요약 ····· 257
Ⅰ. 연구의 성격과 의의 ····· 257
Ⅱ. 기술적 분석 ····· 257
1. 법원 평균 선고형량의 증가 ····· 257
2.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 감소 ····· 259
3. 검사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 수준의 비교 ····· 260
Ⅲ. 추론적 분석 ····· 261
1. 양형인자의 영향력 분석 ····· 261
2. 개별 양형인자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61
Ⅳ. 양형기준 도입 취지와 양형판단의 합리성 제고 ····· 26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263
Ⅰ. 연구의 한계 ····· 263
1. 연구의 구비 요건 ····· 263
2. 분석대상의 시간적 한계 ····· 263
3.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한계 ····· 263
Ⅱ. 후속 연구의 필요성 ····· 264

1. 분석대상의 종(縱)적 확장 ····· 264
2. 분석대상의 횡(橫)적 확장 ····· 264
Ⅲ.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266
Ⅳ. 양형판단과 사법정의 ····· 267

221.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현안보고서 2025-07

연구책임자: 서 용 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12월 30일 발행

I. 서론 ····· 1

1. 현안 검토 목적 1

가. 형사공탁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 1

1) 형사공탁의 개념 ····· 1

2)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 ····· 2

나. 「형사특례공탁」의 실무상 쟁점 현안에 관한 연구 필요 ····· 4

2. 연구대상과 방법 ····· 5

가. 연구대상 ····· 5

나. 연구방법 ····· 5

3. 연구의 개관 ····· 6

II. 형사공탁제도 일반론 ····· 7

1. 형사공탁의 의의 7

가. 형사변제공탁과 형사특례공탁 ····· 7

1) 형사변제공탁의 의의 ····· 7

2) 형사특례공탁 제도의 도입 ····· 10

3) 형사공탁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 12

4) 형사특례공탁 관련 문서의 전자적 작성 및 처리 관련 개정 ····· 13

나. 형사변제공탁과 형사특례공탁의 구별 ····· 13

1) 형사변제공탁과 형사특례공탁의 공통점 ····· 13

2) 형사변제공탁과 형사특례공탁의 차이점 ····· 14

2. 형사공탁의 법적 성격 및 현황 ····· 14

가. 형사공탁의 법적 성격 ····· 14

나. 형사공탁의 현황(2022. 12. - 2025. 6.) ····· 16

1) 형사변제공탁의 신청, 공탁금 출급, 출급률 ····· 16

2) 형사특례공탁의 신청, 공탁금 출급, 출급률 ····· 18

III. 형사특례공탁 절차 ····· 20

1. 의의 20

2. 형사특례공탁 신청 20

가. 공탁 신청 ····· 20

나. 전자공탁신청 ····· 20

다. 공탁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21

라. 공탁 신청 수리 및 공탁금 납입 ····· 23

마. 기타 절차 ····· 24

바. 공탁신청 업무흐름도 ····· 24

3. 형사특례공탁 사실 통지 및 고지 절차 ····· 25

가. 형사특례공탁 사실의 통지 및 고지 ····· 25

나.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관의 통지 ····· 26

다. 법원·검찰에 대한 공탁관의 통지 ····· 27

라. 피해자 등에 대한 법원·검찰의 고지 ····· 28

4.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 ····· 30

가. 법원의 피해자 의사 확인 의무 ····· 30

나.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방법 ····· 31

다.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에 대한 예외 ····· 31

5.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및 송부 절차 ····· 32

가. 의의 ····· 32

나.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송부 절차 ····· 33

다. 검찰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송부 절차 ····· 34

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송부절차 업무흐름도 ····· 36

6. 형사특례공탁금 지급 절차 ····· 37

가. 형사특례공탁금 출급청구 및 지급절차 ····· 37

1) 형사특례공탁금 출급청구 및 인가 ····· 37

2) 형사특례공탁금 지급 및 수령 ····· 38

나. 공탁금 출급 및 지급절차 업무흐름도 ····· 39

7. 형사특례공탁금 회수 절차 ····· 39

가. 예외적인 공탁물 회수 요건 ····· 39
나. 피해자 등의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 ····· 40
다. 무죄판결 확정으로 인한 공탁물 회수 ····· 40
라. 형사특례공탁금의 회수청구 및 지급절차 ····· 41
1) 형사특례공탁금의 회수청구 및 인가 ····· 41
2) 형사특례공탁금 지급 및 수령 ····· 42

IV. 형사공탁 내지 피해회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3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43

1)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 ····· 43
2) 비교법 조사의 주요 쟁점 ····· 43
3) 비교 대상 국가 ····· 43

2. 독일법계 국가 ····· 44

가. 일본 ····· 44
1) 형사변제공탁제도 ····· 44
2) 형사변제공탁 제도에 관한 일본 법무성의 입장 ····· 44
3) 관련 판례 ····· 47
4) 시사점 ····· 49
나. 독일 ····· 50
1) 감경사유로서 피해회복 또는 그 노력 ····· 50
2) 피해회복수단으로서 공탁 가능 여부 ····· 51
3) 시사점 ····· 51
다. 오스트리아 ····· 52
1) 특별감경사유로서 피해회복 또는 그 노력 ····· 52
2) 피해회복의 수단으로서 공탁 제도의 활용 여부 ····· 53
3) 시사점 ····· 54

3. 영미법계 국가 ····· 54

가. 영국 ····· 54
1) 선고유예 시 고려되는 피해회복 ····· 54
2) 양형의 목적으로서 피해배상 ····· 55
3) 양형가이드라인 ····· 55
4) 시사점 ····· 58
나. 미국 ····· 58
1) 미국 연방형법 및 연방양형가이드라인 ····· 58
2) 미국 주요 주의 피해배상 관련 규정 ····· 59
3) 시사점 ····· 67
다. 캐나다 ····· 68
1) 형법상 양형과 피해배상 ····· 68
2) 피해회복 관련 판례 ····· 69
3) 시사점 ····· 71

라. 호주 ····· 72
1) 형법상 양형 시 감경사유로서 피해회복 ····· 72
2) 보통법상 양형의 일반원칙으로서 피해회복 ····· 73
3) 시사점 ····· 74
마. 뉴질랜드 ····· 75
1) 양형 시 감경사유로서 피해회복 ····· 75
2) 관련 판결례 ····· 76
3) 시사점 ····· 78
바. 홍콩 ····· 78
1) 양형 시 감경사유로서 반환 및 배상 ····· 78
2) 피해배상과 자유형 선고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79
3) 시사점 ····· 81

V. 형사특례공탁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 ····· 82

1. 의의 82

2. 형사특례공탁 사건에서 법원의 양형심리 82

가. 양형기준상 공탁 관련 인자의 정비 및 방향 ····· 82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 82
2) 양형기준상 공탁 관련 인자의 정비 ····· 83
나. 형사특례공탁 사건의 양형심리에서 고려할 사항 ····· 90
1) 양형요소로서 형사특례공탁 ····· 90
2) 형사특례공탁금 규모의 적정성 ····· 91
3)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 ····· 92
다. 형사특례공탁의 양형상 취급 및 판결서 기재 ····· 93

3. 형사특례공탁 사실 고지 관련 문제 ····· 98

가. 형사특례공탁 사실 고지 주체 및 고지 대상 ····· 98
나. 형사특례공탁 사실의 고지 기간 설정 ····· 102
1) 형사특례공탁 사실의 고지 실무 ····· 102
2) 신속한 고지를 위해 고지기간을 제한하자는 입장 ····· 103
3) 고지기간의 제한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검토 ····· 103
다. 미성년자·장애인·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고지 ····· 104

4. 피고인의 기습공탁 문제 ····· 106

가. 기습공탁의 의의 ····· 106
나. 기습공탁 방지 방안으로서 피해자 의견 청취 ····· 106
1) 피해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 106
2) 형사특례공탁 사실의 통지 실무 개선 ····· 110
다.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제안된 기타 방안들 ····· 111
1) 공탁법상 공탁 기간 제한 ····· 111
2) 법원에 의한 공탁 기간 제한 ····· 111
라. 기습공탁에 관한 법원의 입장 ····· 112

마. 소결 ····· 112

5.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제한 ····· 116

가. 판결선고 후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문제 ····· 116

1) 소위 먹튀공탁 문제 ····· 116

2) 공탁법 개정 전 공탁금 회수 및 회수제한신고 제도 ····· 116

나. 공탁금 회수제한 제도 ····· 118

1) 공탁금 회수제한 제도의 신설 ····· 118

2) 공탁금 회수제한의 구체적 내용 ····· 119

3) 형사공탁금 회수 현황 ····· 121

4) 공탁금 회수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측의 불이익 문제 ····· 125

6. 피해자의 공탁금 기습출급 ····· 127

가. 판결선고 직전 또는 직후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 127

1) 기습출급의 의미 ····· 127

2) 현행법상 피해자의 기습출급이 가능한 이유 ····· 127

3) 기습출급으로 인한 문제점 ····· 128

나. 피해자의 기습출급에 대한 대응 방안 ····· 128

1) 공탁금 출급청구 시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 신설 방안 ····· 128

2) 피해자의 공탁금수령 포기 제도의 도입 방안 ····· 128

3) 형사특례공탁통지부터 판결확정 이후까지
공탁절차 확인 제도의 도입 방안 ····· 129

다. 소결 ····· 129

7. 법관통합재판시스템 등의 개선 필요성 ····· 130

VI. 결론 ····· 132

1. 형사특례공탁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 ····· 132

가. 형사특례공탁 사건에서 법원의 양형심리 ····· 132

1) 양형기준상 공탁 관련 양형인자의 정비 ····· 132

2) 형사특례공탁 사건의 양형심리에서 고려할 사항 ····· 133

3) 형사특례공탁의 양형상 취급 및 판결서 기재 ····· 134

나. 형사특례공탁 절차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135

1) 형사특례공탁 사실 고지 주체의 일원화 및 대상 확대 문제 ····· 135

2) 형사특례공탁 사실 고지 기간 설정 문제 ····· 136

3) 피고인의 기습공탁 문제 ····· 136

4) 피고인의 먹튀공탁 및 공탁금 회수제한으로 인한 문제 ····· 137

5) 피해자의 공탁금 기습출급 문제 ····· 138

6) 법관통합재판시스템 등의 개선 필요성 ····· 139

2. 형사특례공탁 제도의 향후 운용 방향 ····· 139

222.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26-01

연구책임자: 김 미 란(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백 수 빈(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1월 2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 범위 ····· 4
Ⅱ. 연구 방법 ····· 5
제3절 연구의 구성 ····· 6

제2장 장애인 고용의 이해 ····· 7

제1절 장애인 고용의 규범적·이념적 기반과 정책대상 ····· 9
Ⅰ. 장애인 고용의 규범적 근거 ····· 9
1. 헌법 ····· 9
2. 국내법 ····· 10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10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0
다. 국가공무원법 ····· 10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10

Ⅱ.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정책의 논리 ····· 11
1. 역할 이론(Role Theory) ····· 11
2. 보수적 추론(Conservatism Corollary) ····· 12
3. 진정한 사회통합(Real Social Integration) ····· 12
4. 책임성 확보(Accountability) ····· 12
Ⅲ. 고용정책 대상 장애인의 범위 ····· 13
1. 우리나라 장애인구 ····· 13
2. 고용정책 대상 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15
3. 중증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16
제2절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변천 ····· 18
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 18
1.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18
2.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 18
3.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축소 ····· 19
4. 국가 및 지자체의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서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 ····· 20
5.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21
6.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 ····· 22
Ⅱ.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 및 고용 안정성 확보 ····· 22
1. 장애인지원관 지정 ····· 22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 23
3. 공무원에게까지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23

제3장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정책 ····· 27

제1절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의 도입과 변화 ····· 29
Ⅰ. 사법부의 공무원 신규채용 종류 ····· 29
1. 공개경쟁채용 ····· 29
2. 경력경쟁채용 ····· 30
Ⅱ. 2001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도입 ····· 30
Ⅲ.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기준 완화 ····· 31
1. 2019. 6. 4. 법원공무원규칙 개정 배경 ····· 31
2. 개정규칙의 내용 ····· 31
Ⅳ.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도입 ····· 33
1. 도입의 배경 ····· 33
2. 2024. 7. 26. 법원공무원규칙 개정 ····· 33
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마련 ····· 33
나. 응시요건 완화 ····· 34
다. 정원 적용 완화 ····· 34
3. 도입과정의 주요 내용 ····· 34
가. 적합직무 개발 및 컨설팅 의뢰 ····· 34

나. 각급 법원 수요조사 ····· 35
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36
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채용정보 홍보 ····· 36
마.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신설 ····· 37
Ⅴ. 채용단계에서의 편의제공 지원 강화 ····· 37
1. 정당한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 37
2. 편의제공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 ····· 39
가. 개요 ····· 39
나. 면접시험 편의제공 개선 ····· 40
다. 편의제공 매뉴얼 작성 ····· 45
라. 인권친화적 채용면접을 위한 리플릿과 표준질문 도입 ····· 51
마. 외부면접위원 위촉을 통한 평가 공정성 제고 ····· 53
제2절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성과 ····· 54
Ⅰ.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 55
Ⅱ. 사법부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 ····· 56
Ⅲ. 9급 공채 합격기준 완화 후 성과 분석 - 법원사무직렬 중심으로 ····· 59
1. 필기시험 합격률의 변화 ····· 60
2. 응시현황 및 경쟁률의 변화 ····· 61
3. 지원자 감소 원인 ····· 64
가. 공무원 선호도의 하락 ····· 64
나. 법원직 시험과목의 특수성과 방대한 수험분량 ····· 67
다. 장애인 수험생의 진입장벽 심화 ····· 68
4. 법원직 시험의 난이도 분석 ····· 69
가. 난이도 분석 범위 ····· 70
나. 난이도 분석 방법 ····· 70
다. 합격자 평균점수와 합격선 격차 분석 ····· 70
라. 과목별 과락률 분석 ····· 72
마. 종합 분석 ····· 74
5. 소결 ····· 74
Ⅳ.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의 기대효과와 발전방향 ····· 75
1. 지원현황 및 합격인원 ····· 75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의 기대효과와 운영상 주요 과제 ····· 76
가. 기대효과 ····· 76
나. 운영상 주요 과제 ····· 78
3. 앞으로의 발전 방향 ····· 80

제4장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및 인식 조사 ····· 8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83
Ⅰ.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 83
Ⅱ. 설문조사 대상 ····· 83

Ⅲ. 설문조사 방법 및 절차 ····· 84
Ⅳ. 설문 항목의 구성 ····· 84
Ⅴ. 자료 분석 방법 및 한계 ····· 8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6
Ⅰ. 조사응답자 특성 ····· 86
Ⅱ. 임용 및 직무특성 ····· 89
Ⅲ. 채용 ····· 95
1. 채용정보 및 접근성 ····· 95
2. 채용제도 ····· 97
Ⅳ. 인사관리 ····· 99
1. 보직관리 ····· 99
2. 근무환경 ····· 106
가. 인적·보조기기 지원 ····· 107
나. 장애인 편의시설 ····· 110
다. 정보 접근성 ····· 111
라. 복무제도 ····· 112
3. 경력개발 ····· 116
가. 교육 ····· 116
나. 조직 적응 및 지원 ····· 117
다. 근무성적평정 ····· 120
Ⅴ. 종합 인식 ····· 123
1.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적극성 여부 ····· 123
2. 사법부의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여부 ····· 125
제3절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현황 ····· 128
Ⅰ. 장애인 지원 운영 현황 ····· 128
1. 법원행정처 부서별 업무 분장 ····· 128
2. 사법지원 분야의 정착 ····· 129
3. 장애인지원관 지정과 초기 실행계획 검토 내용 ····· 129
4. 법관 외의 장애인 공무원 지원 현황 ····· 130
5. 장애인 공무원의 요구 ····· 131
Ⅱ. 장애인 공무원 지원체계 부재의 문제점 ····· 132
1. 이미 마련된 지원제도의 활용 미비 ····· 132
2. 법원사무직렬의 직무적합성 확보 어려움 가중 ····· 134
가. 법원사무직렬의 직무 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 ····· 134
나. 장애인 공무원의 인식 ····· 134
다. 인사담당자의 인식 ····· 135
라. 소결 ····· 137
3. 사법부 구성원의 장애인 인식개선 저해와 그 파급효과 ····· 137
Ⅲ. 인사운영에서 구조적 문제점 ····· 138
1. 순환근무 규정의 경직성 ····· 138

2. 인사절차에 내재된 문제점 ····· 139
가. 인사관리시스템상 장애정보 등록 및 활용 미비 ····· 139
나. 법원행정처에서 파악한 장애정보의 제한적 활용 ····· 140
다. 인사희망원 기재 방식 및 기준의 한계 ····· 142
라. 고충원 중심의 인사 반영의 한계 ····· 144
마. 소결 ····· 145

제5장 국내외 장애인 공무원 고용정책 및 현황 ····· 147

제1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49
Ⅰ. 개요 ····· 149
1. 통합인사정책 ····· 149
2. 장애인 고용현황 ····· 150
3. 채용제도별 고용현황 ····· 151
가.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 151
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 153
Ⅱ.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 155
1.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55
가. 시험방식 및 필기시험과목 ····· 155
나.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2025년도) ····· 157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 160
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절차 ····· 160
나. 응시 요건 ····· 160
다. 시험 절차 ····· 162
라. 선발 예정인원 및 합격자 현황(2025년도) ····· 163
마. 직무분석 사례 ····· 164
3. 시사점 ····· 165
가. 시험방식 개편과 장애인 응시자의 수험환경 개선 ····· 165
나. 직급 및 직렬의 다양화를 통한 포용적 채용 기반 확대 ····· 165
Ⅲ.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의 근무지원 ····· 166
1. 중앙행정기관의 근무지원제도 ····· 166
가. 적합직무 발굴 및 배치 연구 ····· 166
나. 보직관리 ····· 167
다. 장애인 공무원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적극적 안내 ····· 169
라. 장애인 공무원 직무적응 멘토링 ····· 170
마. 중증장애인 공무원 인사상담 창구 마련 ····· 170
바.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 ····· 171
사. 평정 및 승진에 있어 차별금지 ····· 171
아. 장애인 공무원 지원정책의 점검·보완 ····· 171
2. 서울시의 근무지원제도 ····· 172
가.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 172

나.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적응 및 경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인사관리 …… 172
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 175
3. 시사점 …… 177
가. 장애인 인사관리의 규범화 …… 177
나. 적합직무 배치를 위한 인사행정의 접근 …… 177
다. 근무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178
라. 고충 수렴과 소통 창구 운영 …… 178
마. 조직 구성원의 인식개선 교육 병행 …… 178
제2절 국회 및 공공기관 …… 179
Ⅰ. 국회사무처의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 179
1. 개요 …… 179
2.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0
가. 8급 공채 시험방식 및 필기시험과목 …… 180
나. 9급 공채 시험방식 및 필기시험과목 …… 181
3. 장애인 구분모집 고용현황 …… 182
가. 8급 및 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현황 …… 182
나. 정보기술직(구 전산직) 9급 경력경쟁채용에서의 장애인 구분모집 …… 183
Ⅱ. 국회의 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 …… 184
1. 개요 …… 184
2. 국회 내 지적·자폐성장애인 고용창출 프로젝트 …… 184
3. 국회 내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창출 프로젝트 …… 185
Ⅲ.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달장애인 예술단 …… 185
Ⅳ. 시사점 …… 188
1. 구분모집제도 적극 운영 …… 188
2. 포용적 시험제도 설계 …… 188
3. 직무 맞춤형 설계와 창의적 접근 …… 189
제3절 외국의 법원 …… 190
Ⅰ. 독일 …… 190
1. 고용의무 대상인 장애인 …… 190
2. 의무고용률 및 고용현황 …… 191
3. 법원의 장애인 고용 및 근무지원 …… 192
가. 독일 공무원 분류 체계 …… 192
나. 장애인 직원 채용 …… 192
다. 장애인 직원에 대한 근무지원 …… 194
라. 바이에른주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 199
Ⅱ. 프랑스 …… 202
1. 고용의무 대상인 장애인 …… 202
2. 의무고용률 및 고용현황 …… 203
3. 법원의 장애인 고용 및 근무지원 …… 204
가. 프랑스 공무원 분류 체계 및 채용경로 …… 204

나. 법원서기(greffier) 장애인 특별채용의 구체적 내용 ····· 205
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 207
Ⅲ. 일본 ····· 208
1. 고용의무 대상인 장애인 ····· 208
2. 의무고용률 및 고용현황 ····· 208
3. 재판소의 장애인 고용 ····· 210
가. 재판소 조직 구조 및 채용경로 ····· 210
나. 장애인 직원 고용 ····· 212
4. 최고재판소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정비 ····· 213
가. 배경 ····· 213
나. 원인 분석 및 평가 ····· 214
다. 장애인 고용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 ····· 215
라. 최근 일본 재판소의 추진계획 및 평가 ····· 215
Ⅳ. 시사점 ····· 218
1. 독일 ····· 218
2. 프랑스 ····· 219
3. 일본 ····· 220

제6장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 221

제1절 채용제도 개선방안 ····· 224
Ⅰ. 채용 이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224
1. 편의제공 매뉴얼에 유의점 보완 ····· 224
가. 문자통역 담당자의 자격 확인 ····· 224
나. 장애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시 유의점 ····· 225
2.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 적극적 홍보방안 ····· 226
가. 필요성 ····· 226
나. 기존 공직설명회에 장애인 대상 세션 마련 또는
별도의 장애인 대상 공직설명회 개최방안 ····· 227
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방안 ····· 227
3. 장애인 응시자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콘텐츠 연계방안 ····· 228
Ⅱ. 시험방식 개편방안 ····· 230
1. 필요성 ····· 230
2. 영어·한국사를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 ····· 230
가. 공인인증시험의 활용 효과 ····· 230
나. 타 공무원시험에서의 활용 사례 ····· 231
다. 소결 ····· 232
3. 필기시험 1·2차 분리시행과 1차시험 면제방안 ····· 232
가. 구체적 방안 ····· 232
나. 국회사무처의 사례 ····· 233

다. 소결 ····· 234
4. 2차시험 부분 면제방안 ····· 234
Ⅲ. 장애인 구분모집의 직렬·직급 확대방안 ····· 235
1. 필요성 ····· 235
2.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대상 검토 ····· 236
3. 임기제조사관 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의 타당성 ····· 236
가. 가사조사관 제도 개요 ····· 236
나. 임기제조사관의 선발인원 증가 배경 및 현황 ····· 236
다. 채용 구조 및 교육과정의 장점 ····· 239
라. 장애인의 진입 가능성 ····· 240
마. 소결 ····· 242
Ⅳ.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확대방안 ····· 243
1. 필요성 ····· 243
2. 행정사무·속기직렬 업무 분석을 통한 중증장애인 적합업무 발굴 ····· 244
가. 적합업무 발굴 ····· 244
나. 직무유형화 및 직무분석 ····· 246
다. 업무유형별 분석결과 ····· 253
라. 응시요건 및 채용방식 ····· 259
마. 소결 ····· 259
3. 임기제 법원·등기사무담당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도입방안 ····· 260
가. 해당 제도 도입의 전제 ····· 260
나.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 현황 ····· 260
다.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그 가능성과 방향 ····· 262
라. 해외사례 시사점과 도입 가능성 ····· 264
마. 구체적 도입방안 ····· 265
바. 소결 ····· 271
Ⅴ. 창의적 직무 설계를 통한 발달장애인 고용모델 제안 ····· 271
1. 창의적 고용모델 탐색의 출발점 ····· 271
2. 저연령층 법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 ····· 272
3. 법원의 견학 프로그램 현황 ····· 273
4. 법원전시관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 274
가. 전시 프로그램 ····· 275
나. 교육 프로그램 ····· 276
다. 수요 ····· 278
5. 발달장애인 공연단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제안 ····· 279
가. 발달장애인 공연단 운영방안 ····· 280
나. 기대효과 ····· 281
Ⅵ.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 동료지원인 시범고용· 282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82
2. 동료지원인 시범고용 ····· 283

가. 동료지원인의 개념 및 제도적 기반 ····· 283
나. 동료지원인의 단계별 역할 확장방안 ····· 284
다. 구체적 운영방안 ····· 286
라. 기대효과 ····· 287
제2절 근무지원 개선방안 ····· 288
Ⅰ. 근무환경 개선방안 ····· 288
1. 장애인 공무원 고충 수렴 및 소통 체계 마련 ····· 288
가. 장애인 공무원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 설치 ····· 288
나. 간담회 또는 온라인 포럼 운영 ····· 289
2.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수요조사 및 활용 홍보 ····· 290
가. 필요성 ····· 290
나. 수요 파악·관리체계 구축 ····· 291
다. 제도 활용 홍보 ····· 292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 292
가. 필요성 ····· 292
나.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활용 ····· 293
다. 안내책자 작성·배포 ····· 294
라. 동료지원인을 활용한 인식개선 강의 운영 ····· 294
Ⅱ. 인사운영 개선방안 ····· 295
1. 순환근무원칙의 유연한 적용 ····· 295
가. 필요성 ····· 295
나. 개정안 ····· 295
2. 인사희망원 양식 수정 및 장애정보 공유 ····· 296
가. 필요성 ····· 296
나. 장애인 공무원 전용 인사희망원 양식 마련 ····· 297
다. 인사정보의 체계적 공유 ····· 297
Ⅲ. 체계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 298
1.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마련 ····· 298
가. 필요성 ····· 298
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정예규안 ····· 299
다. 지침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 301
2.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 301
가. 필요성 ····· 301
나. 장애인지원관을 인사부서로 이관 및 전담팀 구성 ····· 303
다. 장애인 공무원 직무 코디네이터 직위 신설 ····· 303

제7장 결론 ····· 305

223.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02

연구책임자: 정 현 준(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1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과 전제 ····· 3
1. 연구의 목적 ····· 3
2. 용어의 의미 – 유언 등록·보관제도 ····· 4
3. 연구의 전제 ····· 5
Ⅱ. 연구의 개요와 방법 ····· 7
1. 연구의 개요 ····· 7
2.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유언제도 및 관련 분쟁의 현황 ····· 9

제1절 유언제도 일반 ····· 11
Ⅰ. 유언의 의의와 방식·내용 ····· 11
1. 유언의 의의 ····· 11
2. 유언의 방식 ····· 12
3. 유언의 내용 – 유언법정주의 ····· 19
Ⅱ. 유언의 철회 ····· 22
1. 유언철회의 자유 ····· 22
2. 유언철회의 방법 ····· 23
Ⅲ. 유언의 검인 ····· 24

1. 유언 검인절차의 종류 ····· 24
2. 유언자필증서등 검인(민법 제1091조 제1항) ····· 25
3. 구수증서유언 검인(민법 제1070조 제2항) ····· 28
Ⅳ. 유언의 집행 ····· 30
1. 유언집행의 주체 - 유언집행자 ····· 30
2. 유언 집행과 검인절차의 접점 ····· 32
3. 유언 집행과 연관된 검인절차의 현실적인 기능 ····· 41
제2절 유언제도의 이용과 분쟁의 현황·분석 ····· 43
Ⅰ. 조사의 필요성 ····· 43
1. 유언제도 이용 현황·통계 조사의 필요성 ····· 43
2. 유언 관련 분쟁 현황·통계 조사의 필요성 ····· 43
Ⅱ. 유언제도 이용의 현황·통계 ····· 44
1. 검인사건 건수의 동향 ····· 44
2. 검인조서를 통해 본 자필증서유언의 경향 ····· 49
3. 검인조서를 통해 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활용 동향 ····· 54
4. 공정증서유언의 활용 상황 ····· 58
Ⅲ. 유언 관련 분쟁의 현황·통계 ····· 60
1. 조사 방향과 방법 ····· 60
2. 유언이 무효가 된 분쟁 사례의 분석 ····· 62

제3장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 67

제1절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필요성 ····· 69
Ⅰ. 유언의 방식별 보관·발견상 문제점 ····· 69
1. 개관 ····· 69
2. 유언의 방식별 상세검토 ····· 69
3. 소결 ····· 72
Ⅱ.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 72
1. 유언자의 의사실현 ····· 72
2. 유언 분쟁의 해결에 기여 ····· 73
3. 상속관계의 신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에 기여 ····· 73
Ⅲ. '수증자가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의의' ··· 74
제2절 외국의 유언 등록·보관제도 검토 ····· 77
Ⅰ. 영국과 미국 ····· 77
1. 영국과 미국에서 유언의 방식과 상속법의 특징 ····· 77
2. 영국의 유언증서 보관에 관한 공적 제도 ····· 78
3. 미국의 유언증서 등록·보관에 관한 공적 제도 ····· 79
Ⅱ. 일본 ····· 81
1. 개관 ····· 81
2. 유언서보관법 및 제도의 주요 내용 ····· 82

3. 제도의 활용 현황 ····· 90
Ⅲ. 독일 ····· 91
1. 개관 ····· 91
2. 유언 등의 공적 보관제도 ····· 92
3. 유언의 집행 ····· 98
4. 유언 등의 등록제도 – 중앙유언등록부 ····· 101
5. 시사점 ····· 105
Ⅳ. 기타 유럽 국가(프랑스·네덜란드) ····· 106
1. 1972년 유언장 등록 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 106
2. 프랑스 ····· 107
3. 네덜란드 ····· 108
4. 시사점 ····· 109
제3절 유언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국내 논의 ····· 110
Ⅰ. 개 관 ····· 110
Ⅱ. 국내에서 제안된 유언 보관제도 모델에 대한 비교 ····· 110
1. 제안된 모델들의 공통점 ····· 110
2. 제안된 모델들의 차이점 ····· 111

제4장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도입방안 ····· 115

제1절 제도의 유형화 및 검토 ····· 117
Ⅰ. 유언 '보관'제도의 유형화 및 검토 ····· 117
1. 유언 보관제도의 유형 ····· 117
2. 보관제도의 유형별 특징 ····· 118
3. 분리형·자동형 보관제도 도입 검토 ····· 120
4. 보관된 유언의 검인절차 면제 여부 ····· 124
5. 소결 – 중간형 보관제도의 도입 ····· 134
Ⅱ. 유언 '등록'제도의 유형화 및 검토 ····· 135
1. 등록정보에 따른 구분 및 검토 ····· 135
2. 등록시스템의 개수에 따른 구분 ····· 137
3. 보관제도와 분리된 유언등록부시스템 검토 ····· 138
4. 유언등록부 시스템의 예시 화면 ····· 140
제2절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 142
Ⅰ.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 142
1. 유언의 존재에 대한 비밀 보장 ····· 142
2. 이용자의 특징에 맞는 접근 환경 보장 ····· 143
3. 상속실무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성 ····· 144
4. 실체법을 변화시키는 형태의 지양 ····· 144
Ⅱ. 등록·보관의 대상 및 사무의 담당기관 ····· 145
1. 등록 또는 보관의 대상이 되는 유언의 방식 ····· 145

2. 보관사무를 담당할 기관 ····· 151
Ⅲ. 보관신청의 방법·관할 및 보관기관의 사무처리 ····· 157
1. 보관신청의 방법 ····· 157
2. 보관신청의 관할 ····· 161
3. 보관신청에 대한 심사 ····· 165
4. 유언의 정보로서 등록 대상이 되는 내용 ····· 167
Ⅳ. 유언자 사망 후의 처리 ····· 168
1. 유언 보관 사실의 통지 ····· 168
2. 보관상태에서 검인절차로 넘어가는 방법 ····· 171
3. 검인을 실시한 원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 ····· 173
4. 보관기간의 문제 ····· 175
Ⅴ.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의 등록·보관제도 ····· 176
1. 문제점 ····· 176
2. 공정증서유언의 등록 ····· 177
3. 녹음유언의 등록·보관 ····· 180
제3절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안 ····· 183
Ⅰ. 개관 ····· 183
Ⅱ. 법률안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 ····· 183
1. 제2조(정의) ····· 183
2. 제3조(유언보관소의 설치 등) ····· 185
3. 제4조(보관신청) ····· 186
4. 제5조(보관신청에 대한 심사 등) ····· 191
5. 제6조(유언공정증서의 등록) ····· 193
6. 제7조(유언등록부) ····· 195
7. 제8조(유언자의 유언등록부 열람) ····· 200
8. 제9조(보관신청의 철회) ····· 201
9. 제10조(유언자 사망시 유언보관통지) ····· 203
10. 제11조(상속인 등의 유언등록부 조회) ····· 204
11. 제12조(보관·보존의 기간) ····· 209
12. 제13조(검인의 청구에 관한 특칙) ····· 210
13. 제14조(검인기일 종료시의 특칙) ····· 212
14. 제15조(이의신청) ····· 213
15. 제1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214
16. 제17조(수수료) ····· 215
17. 부칙 ····· 217

제5장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추가 논의 ····· 219

제1절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확장이 가능한 방향 탐색 ····· 221
Ⅰ. 사후정보통합관리체계 ····· 221

1. 사후정보통합관리체계의 의미와 쟁점의 정리 ····· 221
2. 유언 등록·보관제도와 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의 접목 검토 ····· 222
3. 소결 ····· 225
Ⅱ. 전자유언제도 ····· 225
1. 유언제도에 관한 논의의 동향과 전자유언의 정의 ····· 225
2. 전자유언과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접점 ····· 226
3. 전자유언을 포함하는 유언 등록·보관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 227
제2절 유언 등록·보관제도와 분쟁의 전망 및 당부 ····· 230

제6장 결어 ····· 233

224.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26-03

연구책임자: 이 현 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前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2월 5일 발행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필요성 ····· 7
1. 디지털자산의 의미 확립 ····· 7
2.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정리 ····· 8
3. NFT, CBDC 등의 법적 성격 논의 ····· 11
4. 해외의 논의 반영 ····· 12
Ⅲ. 물건성 논의의 필요성 ·····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17
Ⅰ. 연구의 방법 ····· 17
1. 문헌연구 ····· 17
2. 비교법적 방법론 ····· 17
3. 전문가 인터뷰 ····· 17
4. 외부자문위원 감수 ····· 18
Ⅱ. 연구의 내용 ····· 18
1. 기존 연구의 한계 ····· 18
2. 본 연구의 차별성 ····· 18
3. 정책적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9

제2장 디지털자산의 현재 ····· 21

제1절 의미 ····· 23
Ⅰ. 국내의 논의 ····· 23
1. 사전적 의미 ····· 23
2. 현행 법률 ····· 24
3. 입법안 ····· 26
4. 학계의 논의 등 ····· 34
Ⅱ. 해외의 논의 ····· 36
1. 대륙법계 ····· 36
2. 영미법계 ····· 39
3. 국제기구 ····· 44
Ⅲ. 소결 – 용어의 정리 ····· 48

제2절 종류 ····· 52
Ⅰ.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 52
1. 의미 ····· 52
2. 권리 ····· 53
3. 분류 ····· 54
4. 소결 ····· 58
Ⅱ. 분산원장기술 ····· 58
Ⅲ. 가상자산 ····· 62
1. 용어의 정리 ····· 62
2. 내용 ····· 65
3. 온체인·오프체인 거래 ····· 70
4.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74
5. 보론 – 양자컴퓨터와 가상자산 ····· 76
Ⅳ. NFT ····· 78
Ⅴ. RWA ····· 81
Ⅵ. CBDC ····· 83

제3절 성질론 ····· 85
Ⅰ. 전통적인 디지털자산 ····· 85
1. 온라인게임 아이템 ····· 86
2. 이메일 계정 ····· 88
3. 도메인 이름 ····· 89
4. 워드 파일 등 ····· 92
5. 탄소배출권 ····· 97
Ⅱ. 가상자산의 성질 ····· 99
1. 해외의 논의 ····· 99
2. 국내의 논의 ····· 129

Ⅲ. 시사점 ····· 139

제3장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 143

제1절 일반론 ····· 145
Ⅰ. 물권의 의미 ····· 145
Ⅱ. 물권의 객체 ····· 146
1. 개요 ····· 146
2. 물건의 정의 ····· 146
3. 형법상 재물과의 비교 ····· 148
4. 물건의 요건 ····· 151
5. 유사개념 ····· 153
Ⅲ. 물권법정주의 ····· 155
Ⅳ. 영미법상과의 비교 ····· 157
1. 서설 ····· 157
2. Property ····· 158
3. 유형 ····· 159
4. Possession ····· 161
Ⅴ. 시사점 ····· 162
제2절 국내의 논의 ····· 165
Ⅰ. 판례 ····· 165
1. 대법원 ····· 165
2. 하급심 판결 ····· 168
3. 소결 ····· 173
Ⅱ. 학계 ····· 175
1. 물건성 부정설 ····· 175
2. 물건성 긍정설 ····· 179
3. 준물권설 ····· 188
4. 시사점 ····· 189
Ⅲ. 입법안 ····· 190
1. 김세연 의원 발의 ····· 191
2. 조정훈 의원 발의 ····· 194
Ⅳ. 소결 ····· 196
제3절 해외의 논의 ····· 199
Ⅰ. 서론 ····· 199
Ⅱ. 영국 ····· 199
1. 경과 ····· 199
2. 개요 ····· 201
3. 목적 ····· 203
4.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 도입 ····· 204

5. 입법안 ····· 223
6. 관련 판결 ····· 225
Ⅲ. UNIDROIT ····· 230
1. 서설 ····· 230
2. 요건 ····· 231
3. 지배 ····· 232
Ⅳ.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요건 ····· 233
1. 논의의 정리 ····· 233
2. 국내 요건의 적용 ····· 234
3. 해외 요건과의 비교 ····· 236
4. 소결 ····· 240
제4절 물건성의 확장 ····· 241
Ⅰ. 입법론 ····· 241
1. 해석론의 한계 ····· 241
2. 입법론의 필요성 ····· 241
3. 구체적인 내용 ····· 243
Ⅱ. 반론 ····· 246
1. 공시방법 등의 문제 ····· 246
2. 배타적 지배가능성과 개인키 복제의 문제 ····· 246
3. 추상적 가치의 위험성 ····· 247
4. 기술의 차이 ····· 248
Ⅲ. 검토 ····· 249
1. 준물권 인정 여부 ····· 249
2. 가상자산의 경우 ····· 251
3. NFT의 경우 ····· 253
4. CBDC의 경우 ····· 255
Ⅳ. 적용 ····· 257
1. 물권적 청구권 ····· 257
2. 점유의 보호 규정 ····· 259
3.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 260
4. 무주물 선점 ····· 262

제4장 디지털자산의 귀속주체 ····· 265

제1절 일반론 ····· 267
Ⅰ. 필요성 ····· 267
Ⅱ. 점유 ····· 268
1. 점유의 개념 ····· 268
2. 디지털자산에 대한 점유 ····· 270
Ⅲ. 한계 ····· 272

제2절 지배 ····· 275
Ⅰ. 컨설테이션 페이퍼 ····· 275
1. 개요 ····· 275
2. 영미법상 점유 ····· 275
3. 지배 ····· 276
Ⅱ. UNIDROIT 원칙 ····· 280
1. 의미 ····· 280
2. 지배의 변경 ····· 282
Ⅲ. 미국 통일상법전(UCC) ····· 284
1. 의미 ····· 284
2. 이익 향유와 이익 배제 ····· 284
3. 지배의 이전 ····· 285
4. 지배의 기능 ····· 286
Ⅳ. 비교 및 시사점 ····· 287
1. 영미법계 비교 ····· 287
2. 대륙법계의 경우 ····· 288
3. 소결 ····· 290
제3절 지배와 법률관계 ····· 291
Ⅰ. 디지털자산의 취득과 이전 ····· 291
1. 취득(Acquisition) ····· 291
2. 이전(Transfer) ····· 293
3. 가상자산의 이전과 지배 ····· 299
4. 선의취득 ····· 303
Ⅱ. 커스터디(Custody) 계약 ····· 305
1. 개요 ····· 305
2. 종류 ····· 306
3. 커스터디 거래소(Custodial exchanges) ····· 308
4. 법률적 구성 ····· 309
Ⅲ. 담보계약 ····· 310
1. 컨설테이션 페이퍼 ····· 311
2. UNIDROIT 원칙 ····· 316
Ⅳ. 기타 구제수단 ····· 320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 320
2. 재산권에 기한 반환청구(Proprietary restitutionary claim) ····· 322
3.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 323
4. (소유권) 전환불법행위(Tort of conversion) ····· 325
Ⅴ. 소결 ····· 328
제4절 시사점 ····· 331
Ⅰ. 지배 개념의 도입 ····· 331
Ⅱ. 귀속주체의 판단기준 ····· 336

Ⅲ. 법률관계 ····· 339
1. 민·형사 일반 ····· 339
2. 선의취득 ····· 350
3. 담보계약 ····· 352
4.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 353

제5장 결론 ····· 355

제1절 논의의 정리 ····· 35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360

225.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04

연구책임자: 김 영 하(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정 관 선(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2월 12일 발행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를 비공개 발간함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926-01

대 외 비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226.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 2026-01

연구책임자: 윤 동 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3월 10일 발행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필요성 ····· 1
3. 연구방법 ····· 2

Ⅱ. 사건과 재판부 구성의 현황 및 문제점 ····· 3
1. 사건의 현황 ····· 3
가. 복잡사건의 현황 ····· 3
1) 복잡사건의 의의 ····· 3
2)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특수성 ····· 5
3) 복잡사건에 관한 통계 ····· 6
4) 일반사건과 복잡사건의 비교 ····· 11
나. 간단사건의 현황 ····· 13
1)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 13
2) 행정사건의 경우 ····· 15
2. 우리나라 재판부 구성 현황 및 문제점 ····· 16
가. 우리나라 재판부 구성 현황 ····· 16
나. 문제점 ····· 22

Ⅲ. 재판부 구성 유연화 관련 해외 실무례 ····· 25

1. 조사방식 ····· 25

2. 일본 ····· 25

가. 재판부 구성 일반론 ····· 25
나. 대규모소송에 관한 사건에서의 5인 판사 합의체 ····· 26
1) 법률규정 ····· 26
2) 조문의 해석 ····· 28
3) 실무상 운영 ····· 29
다. 특허권등에 관한 소에 대한 사건에서의 5인 판사 합의체 ····· 29
1) 법률규정 ····· 29
2) 실무상 운영 ····· 31
3) 합의 및 판결문 작성 ····· 32
4) 의의 ····· 33
라. 배제조치명령 등에 관한 항고소송 등 사건에서의 5인 판사 합의체 ····· 35
마. 내란죄 등에 관한 사건에서의 5인 판사 합의체 ····· 36
바. 판사의 면직, 징계 등에 관한 사건에서의 5인 판사 합의체 ····· 36
사. 소결론 ····· 37

3. 미국 ····· 38

가. 일반론 ····· 38
1) 법원의 구조 ····· 38
2) 연방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38
3) 주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40
나. 연방법원의 전원합의체 제도 ····· 43
1) 연방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제도 ····· 43
2) 연방지방법원의 다수합의체 제도 ····· 48
다. 일부 주 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제도 ····· 50
라. 재판부 구성 유연화와 관련된 기타 제도 ····· 50
1) 광역소송에서의 협력 ····· 50
2) 부판사 제도 ····· 51
3) 복잡소송에서의 특별관리인 제도 ····· 52
마. 소결론 ····· 54

4. 독일 ····· 54

가. 일반론 ····· 54
1) 판사의 구성 ····· 54
2) 법원의 구조 ····· 55
3) 일반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56
4) 행정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59
5) 재정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60
6) 노동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60

7) 사회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61
나. 일반법원에서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 ····· 61
1) 고등법원 형사합의부의 5인 직업판사 합의체 ····· 61
2) 지방법원 대형사부의 2인 직업판사 포함 합의체 ····· 62
3) 참심재판부의 2인 직업판사 포함 합의체 ····· 64
4) 연방특허법원의 4, 5인 직업판사 합의체 ····· 64
다. 전문법원에서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 ····· 65
라. 소결론 ····· 67

5. 프랑스 ····· 68
가. 일반론 ····· 68
1) 법원의 구조 ····· 68
2) 사법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69
3) 중죄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71
4) 행정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71
5) 기타 특별법원의 경우 재판부의 구성 ····· 71
나.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 ····· 71
1) 경죄법원의 4인 이상 판사 합의체 ····· 71
2) 부서형 형사법원의 5인 판사 합의체 ····· 71
3) 특별중죄법원의 5, 7인 판사 합의체 ····· 72
4) 행정법원의 전원합의체 ····· 72
5) 기타 행정법원의 특별규정 ····· 73
다. 소결론 ····· 75

6. 영국 ····· 76
가. 일반론 ····· 76
1) 사법부의 구조 ····· 76
2) 법원의 재판부 구성 ····· 79
3) 심판소의 재판부 구성 ····· 80
나.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 ····· 80

Ⅳ. 우리나라의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 방안 ····· 81

1. 재판부 구성원을 늘리는 방향 ····· 81
가. 복잡사건에 관한 현행 규정 ····· 81
나. 필요성 ····· 87
1) 사건의 신중한 판단 ····· 87
2) 분업화를 통한 사건의 신속한 진행 ····· 93
3)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 ····· 95
4) 기타 장점 ····· 95
5) 비교법적으로 인정된 제도의 합리성 ····· 96
6)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반론 ····· 96
다. 도입범위 ····· 97

1) 1심 vs 항소심 ····· 97
2) 규정의 형태 ····· 98
가) 민사사건의 경우 ····· 98
나) 특허사건의 경우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 유무 ····· 99
다) 형사사건의 경우 ····· 101
라) 행정사건의 경우 ····· 101
마) 가사사건, 회생사건 등의 경우 ····· 103
라. 구체적인 시행방안 ····· 103
1) 인원수 ····· 103
2) 구성시점 ····· 104
3) 구체적인 선정기준 ····· 105
4) 5인 합의체 대상사건 선정절차 ····· 106
5) 합의체 구성원 확정절차 ····· 109
6) 심리절차 및 합의방식 ····· 111
7) 판결문 작성방식 ····· 112
8) 기타 문제 ····· 115

2. 민사사건에서 공동심리제도의 활성화 ····· 116
3. 재판부 구성원을 줄이는 방안 ····· 118
가. 필요성 ····· 118
나. 재판부 구성원 감축의 실효성 ····· 119
다. 도입범위 ····· 125
1) 항소심의 일부 단독화 ····· 125
2) 2인 합의체의 구성 ····· 126
3) 구체적인 사건범위 ····· 128
가) 지방법원 항소심 관할 사건에 관하여 ····· 128
나) 고등법원 관할 사건에 관하여 ····· 128
다) 소결론 ····· 132
라. 구체적인 시행방안 ····· 132

4. 판사의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방향 ····· 133

Ⅴ. 재판부 유연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의 제안 ····· 136

1. 법원조직법 ····· 136
가. 확대합의체의 구성 관련 ····· 136
나. 항소심 단독재판부 구성 관련 ····· 137

2.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38
3.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139
가. 확대합의체의 구성 관련 ····· 139
1) 확대합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절차 ····· 139
2) 확대합의체 구성시 사무분담 변경 근거 ····· 140

3) 배당정지 관련 근거 ····· 140
4) 배당확정의 효력 예외사유 추가 ····· 141
나. 항소심 단독재판부 구성 관련 ····· 142
1) 제2심 단독재판부 사건의 합의부로의 복귀(재정합의결정) ····· 142
2) 배당확정의 효력에 대한 예외 ····· 143
3) 제2심 단독사건 및 단독판사의 신설로 인한 특정의 문제 ····· 144
4. 개정안에 의할 때 단독사건, 합의사건의 분류 및 관련 규정 ····· 145
가. 제1심 ····· 145
1) 민사사건 ····· 145
2) 가사사건 ····· 146
3) 형사사건 ····· 146
4) 행정사건 ····· 146
5) 지식재산사건 ····· 147
6) 회생·파산사건 ····· 147
나. 제2심 ····· 147
1) 고등법원 ····· 147
2) 지방법원 ····· 147
Ⅵ. 결론 ····· 149

227.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 2026-02

연구책임자: 이 정 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박 우 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백 수 빈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 (前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3월 19일 발행

I. 서론 ····· 1
1. 현안 검토의 배경과 목적 ····· 1
가. 검토의 배경 ····· 1
나. 검토의 목적 ····· 4
2.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 4
가. 보고서의 구성 ····· 4
나. 연구방법 ····· 5
II. 현행 판결서 공개 제도 ····· 6
1. 요약 ····· 6
2. '직접 열람(인터넷)' 방식 ····· 8
가. 근거 법령 ····· 8
나. 공개 대상(원칙) ····· 10
다. 신청권자: 누구든지 ····· 11

라. 공개 제한(예외) ····· 11
마. 신청 및 열람·복사 방법 ····· 12
바. 개인정보 보호조치 ····· 13

3. '직접 열람(방문 등)' 방식 ····· 16

4. '사본 제공' 방식 ····· 16

5.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방식 ····· 22

III. 각국의 판결서 공개 현황 ····· 25

1. 미국 ····· 25

가. 판결서 공개에 관한 기본 원칙 ····· 25
나. 공개 현황 – (1) 연방법원 ····· 30
1) 판례집 발간 ····· 30
2) 온라인 공개 ····· 31
다. 공개 현황 – (2) 주법원 ····· 36
1) 뉴욕주 ····· 36
2) 캘리포니아주 ····· 38
라.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 – (1) 연방법원 ····· 40
1) 전자정부법과 연방사법회의의 사생활 보호 정책 ····· 40
2) 각 연방 소송규칙의 사생활 보호 규정 ····· 42
3) 가명(假名) 사용의 허부 ····· 46
마.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 – (2) 주법원 ····· 50
1) 판결서 공개에 관한 CCJ/COSCA 가이드라인 ····· 50
2) 뉴욕주 ····· 53
3) 캘리포니아주 ····· 58

2. 독일 ····· 59

가. 판결서 공개에 관한 기본 원칙 ····· 59
나. 공개 현황 ····· 61
1) 소송기록 열람 ····· 61
2) 판례집 발간 ····· 62
3) 온라인 공개 ····· 63
다.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 ····· 72
1) 판결이유의 비공개 ····· 72
2) 비실명 처리 ····· 73
3) 내용의 생략 ····· 78

3. 프랑스 ····· 79

가. 판결서 공개에 관한 기본 원칙 ····· 79
나. 공개 현황 ····· 82
1) 판결서 사본 청구 ····· 82
2) 판례집 발간 ····· 82

3) 온라인 공개 ····· 83
다.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 ····· 89
1) 판결서 사본 청구의 제한 ····· 89
2) 온라인 공개의 제한 ····· 91
3) 비실명 처리 ····· 91
4. 일본 ····· 96
가. 판결서 공개에 관한 기본 원칙 ····· 96
나. 공개 현황 ····· 98
1) 소송기록 열람 ····· 98
2) 판례집 발간 ····· 99
3) 온라인 공개 ····· 100
다.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 ····· 105
1)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 ····· 105
2) 비실명 처리 ····· 106
IV. 판결서 공개의 필요성과 방향성 ····· 112
1. 판결서 공개를 둘러싼 논의 ····· 112
가. 제도적 차이에 따른 논의 ····· 112
1) 판결서 공개에 관한 해외 각국의 기본 입장 ····· 112
2) 우리나라와의 비교 ····· 113
나. 국내에서의 논의 ····· 115
1) 사법개혁위원회(2003) ····· 115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 ····· 117
3)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2010) ····· 117
4)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2018) ····· 118
5) 사법행정자문회의(2020) ····· 119
6) 4차산업혁명위원회(2021) ····· 120
7)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2025) ····· 121
2. 판결서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 122
가. 개요 ····· 122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22
1) 판결서 공개의 기본 방향 ····· 122
2)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 여부 ····· 127
3) 비실명 처리 ····· 133
4) 수수료 ····· 136
5)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판결 데이터베이스 제공 ····· 141
6) 판결서 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146
다. 설문조사 결과 검토 ····· 146
3. 판결서 공개의 당위성과 필요성 ····· 148
가.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과 알권리 ····· 148

나. 공공데이터로서의 판결서 공개 ····· 149
다. 판결 정보의 충분한 공개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효과 ····· 152
1)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법접근성의 형평성 제고 ····· 152
2) 정보의 왜곡, 부당한 비난·공격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예방 ····· 153
3) 첨단 법률서비스 개발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 154
라. 판결서 공개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54
4. 판결서 공개의 기본 방향 ····· 155
가. 접근의 제한 또는 장벽이 없는 판결서 공개 ····· 155
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주체 ····· 156
다. 공개 방식의 일원화: '직접 열람' 방식으로 통합 ····· 158
라. 오·남용에 대한 예방책 ····· 160
1) 판결서의 대량 또는 영리 목적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 160
2) 판결서 파일의 분리 생성 및 일부 공개 ····· 161
3) 법관의 직무 평가 등(판사 프로파일링) 금지 여부 ····· 161
V. 현행 판결서 공개 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 168
1. 과거 판결서의 공개 ····· 168
가. 문제점 ····· 168
나. 공개 여부의 검토 ····· 169
2.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공개 ····· 170
가. 현황 및 문제점 ····· 170
나. 미확정 형사판결서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 ····· 171
다. 설문조사 결과 ····· 173
라. 해외 사례 ····· 174
마. 검토 ····· 174
3. 비실명 처리 방법의 개선 ····· 176
가. 현황 ····· 176
나. 비실명 처리 대상에 관한 검토 ····· 176
다. 비실명 처리 방식에 관한 검토 ····· 186
4.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 193
가. 현황 ····· 193
나. 수수료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 ····· 195
다. 설문조사 결과 ····· 195
라. 해외 사례 ····· 196
마. 검토 ····· 198
5.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판결데이터 공개 ····· 200
가. 검토의 배경과 필요성 ····· 200
나. 국내 리걸테크산업 및 관련 제도 현황 ····· 201
1) 국내 리걸테크 업체 및 서비스 현황 ····· 201

2) 리걸테크 관련 법률안의 발의 ····· 207
3) 국내의 법률 공공데이터 공개 현황 ····· 207
다. 해외 동향 ····· 215
1) 미국: PACER ····· 215
2) 독일: Juris GmbH(유리스 유한책임회사) ····· 219
3) 프랑스: Judilibre(쥐디리브흐) 및 PISTE ····· 225
4) 영국: Find Case Law ····· 228
5) 일본: 「민사재판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33
라. 검토 ····· 236
1) 판결 데이터베이스 공개의 기본 방향 ····· 236
2) 비실명 처리하지 않은 판결데이터의 제공 여부 ····· 238
3)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구체적 방법 ····· 243
4) 데이터베이스 제공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 ····· 248

VI. 결론 ····· 252

1. 판결서 공개의 당위성과 필요성 ····· 252

2. 판결서 공개의 방향성 ····· 253

3. 판결서 공개 제도의 개선방안 ····· 254

228.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26-05

연구책임자: 설 동 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박 우 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4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Ⅰ. 들어가며 ····· 3
1. A 주식회사의 이야기 ····· 3
가.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이르게 되다 ····· 3
나. 주제 3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에 대해 고민하다 ····· 3
다. 주제 4 “회생법원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 5
라. 주제 5 “회생절차 자동개시의 필요성 및 효용에 관한 검토”에 대해 고민하다 ····· 5
2. A 주식회사의 직원 D의 이야기 ····· 6
가. 개인도산절차에 이르게 되다 ····· 6
나. 주제 1 “개인회생절차의 윤리성 제고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 7
다. 주제 2 “개인도산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에 대해 고민하다 ····· 8
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
1. [공통] 도산사건 접수 건수 증가 ····· 9
2. 개인회생절차의 윤리성 제고방안 ····· 12
가.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의 급증 ····· 12

나. 개인회생절차 악용 사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12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6호) 발의 (2024. 9. 12.) ····· 13
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필요 13
마. 「신속하고 적극적인 절차 진행」을 해하지 않아야 함 ····· 14
3.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 14
가. 개인파산사건 접수 건수의 감소 ····· 14
나.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존재 ····· 15
다. 현행 법률의 규정 ····· 15
라. [참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사유 정비를 위한 법률안 발의 현황 · 16
4.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18
가. 기촉법에 관한 국회 부대의견 ····· 18
나.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18
다. 다양한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존재 ····· 18
라.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효율적 연계방안 마련 ····· 19
5. 회생법원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 19
가. 「법원별 도산사건 처리기간 편차」에 대한 문제 제기 ····· 19
나. 이른바 「포럼 쇼핑」 현상에 대한 지적 ····· 20
다. 채무자의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차별적 대우 우려 ····· 21
라. 특정 법원에 사건이 집중됨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 ····· 22
마. 회생법원 신설을 맞이하여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 22
6. 회생절차 자동개시의 필요성 및 효용에 관한 검토 ····· 23
가.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각종 효력의 발생 시기 ····· 23
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각종 효력발생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 단축의 필요성 ····· 26
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 28
라. 현행 채무자회생법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28
Ⅲ. 연구의 목적 ····· 30
1. 개인회생절차의 윤리성 제고방안 ····· 30
2.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 30
3.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30
4. 회생법원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 30
5. 회생절차 자동개시의 필요성 및 효용에 관한 검토 ····· 31

제2장 도산절차 일반론 ····· 33

Ⅰ. 도산절차 개관 ····· 35
1. 도산절차의 분류 ····· 35
2. 법인도산 ····· 37
가. 법인회생 ····· 37

나. 법인파산 ····· 46
3. 개인도산 ····· 52
가. 개인회생 ····· 52
나. 개인파산·면책 ····· 57
다. 일반회생 ····· 60
Ⅱ. 도산절차의 정당성 ····· 61
1. 주된 논의의 대상 ····· 61
가. 법인도산의 경우 ····· 61
나. 개인도산의 경우 ····· 61
다. 소결 ····· 62
2. 개인도산 절차의 정당화 근거 ····· 62
가. 공리주의적 관점 ····· 62
나. 가계신용 주도형 경제구조 ····· 63
다.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기능 ····· 63
라. 채권자 유형별 보호 필요성의 한계 ····· 64
마.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취지의 비판에 대하여 ····· 65
바. 소결 ····· 66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윤리성 제고방안 ····· 67

Ⅰ. 개인회생절차 악용 사례 현황 ····· 69
1. 채무자 측면 ····· 69
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 69
나. 재산을 은닉한 다음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례 ····· 72
다.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해 신청대리인 측을 통하여 대부회사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례 ····· 74
라. 신청대리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 등에 포함시킨 사례 ····· 75
마. 허위자료 제출 ····· 78
2. 신청대리인 측면 ····· 79
가. 의의 ····· 79
나. 현황 ····· 79
Ⅱ. 현행 개인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의 현황 및 검토 ····· 82
1. 채무자 등에 대한 심리·조사 ····· 82
가. 회생위원의 업무 ····· 82
나. 조치사항 ····· 84
다. 검토 ····· 84
2.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 85
가. 근거 규정 ····· 85

나. 위원회 개요 ····· 86
다. 체크리스트 ····· 87
라. 대응조치 ····· 89
마. 현황 ····· 90
바. 검토 ····· 99
Ⅲ. 해외 입법례·실무례 검토 ····· 101
1. 미국 ····· 101
가. 개인회생제도 연혁 ····· 101
나. 신용자문 제도(Credit Counseling) ····· 102
다. 채무자교육 제도(Debtor Education) ····· 104
라. 절차 관리·감독자 ····· 105
마. 면책 제한 ····· 111
2. 일본 ····· 112
가. 개인회생 제도 개관 ····· 112
나. 개인회생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 114
Ⅳ. 개선방안 검토 ····· 117
1. 검토 원칙 ····· 117
가. 개인파산 대비 개인회생의 우선성 ····· 117
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의 필요성 ····· 119
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절차 진행」의 필요성 ····· 120
2.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 검토 ····· 120
가.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의 적극적 활용 ····· 120
나.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적극적 활용 ····· 124
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의 적극적 활용 ····· 126
라.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의 적극적 활용 ····· 129
마.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의 적극적 활용 130
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취소 절차의 적극적 활용 ····· 133
사. 「신청대리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 등에 포함시킨 사례」에 관하여 ····· 135
아.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138
3. 새로운 제도의 제안 ····· 139
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 사유 신설 : 2024. 9. 12. 발의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6호) 관련 ····· 139
나. 사전 신용자문 제도 도입 ····· 148
다. 면책 전 채무자교육 제도의 도입 ····· 149
라.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 ····· 152

제4장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 155

Ⅰ.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현황 ····· 157
1.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 157
가. 개관 ····· 157
나. 개별 법률상 신분상 불이익 규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 165
2.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 215
가. 현행 개인채무자 구조조정 제도 개관 ····· 215
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 삭제 시기 ····· 216
다.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 시 불이익 ····· 216
Ⅱ. 해외 입법례·실무례 ····· 218
1. 미국 ····· 218
가.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관련 ····· 218
나.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관련 ····· 218
다. 소결 ····· 219
2. 독일 ····· 219
가.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관련 ····· 219
나.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관련 ····· 220
3. 프랑스 ····· 222
가.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관련 ····· 222
나.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관련 ····· 224
4. 일본 ····· 225
가.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관련 ····· 225
나.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관련 ····· 225
Ⅲ. 개선방안 검토 ····· 227
1. 개인도산 채무자의 신분상 불이익 관련 ····· 227
가. 관련 규정 ····· 227
나. 원칙 : 결격사유 규정 삭제 ····· 228
다. 예외 : 결격사유 규정 유지 ····· 236
라. 구체적 개선방안 ····· 248
2. 개인도산 채무자의 경제적 불이익 관련 ····· 250
가. 검토 원칙 ····· 250
나.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 251
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 252

제5장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255

Ⅰ.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현황 ····· 257
1.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 257
가. 의의·취지 ····· 257
나. 기촉법 연혁 ····· 257

다. 절차 개관 ····· 258
라. 금융위원회의 관여 ····· 266
마. 법원의 관여 ····· 268
바. 사건 현황 ····· 268
2. 그 밖의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 절차 ····· 269
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 269
나.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270
다.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271
Ⅱ. 해외 입법례·실무례 검토 ····· 273
1. 미국 ····· 273
가.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 273
나. 프리패키지드 플랜 절차(Prepackaged Plan) ····· 275
2. 영국 ····· 276
가. 회사정리계획(SoA, Scheme of Arrangement) ····· 276
나. 구조조정계획(RP, Restructuring Plan) ····· 278
다. 회사임의정리(CVA,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 278
3. 독일 ····· 280
가. 개요 ····· 280
나. 기업안정화 및 구조조정체계에 관한 법률(StaRUG, Gesetz über den Stabilisierungs- und Restrukturierungsralimen für Unternehmen) ··· 281
4. 프랑스 ····· 284
가. 개요 ····· 284
나. 임시위임절차(le mandat ad hoc) ····· 284
다. 조정절차(la conciliation) ····· 285
라. 보호절차(la procédure de sauvegarde) ····· 286
마. 신속보호절차(la sauvegarde accélérée) ····· 287
5. 일본 ····· 288
가. 사적정리 가이드라인 ····· 288
나. 사업재생 ADR 절차 ····· 289
다. 조기사업재생절차(早期事業再生手続) ····· 291
Ⅲ.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개편방안 ····· 294
1. 기촉법 상시화 여부 ····· 294
가. 견해의 대립 ····· 294
나. 법원의 입장 변화 추이 ····· 295
다. 검토 ····· 300
2.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개편 시 법원의 역할 ····· 308
가. 검토의 원칙 ····· 308
나. 공동관리절차 개시에 대한 법원의 승인제도 도입 여부 ····· 309
다. 절차관계인 선임 제도의 도입 여부 ····· 310
라. 법원 인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311

마. 기촉법 개정안 ····· 313
Ⅳ.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방안 ····· 317
1. 연계방안 모색의 필요성 ····· 317
가.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최신 동향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 317
나. 최근 새로 도입된 제도들 ····· 317
2. 최근 도입된 제도 ① : 「pre-ARS 제도」 ····· 318
가. 개요 ····· 318
나. 구체적 운영방안 ····· 319
다. 검토 ····· 320
라. 실제 사례 ····· 344
마. 소결 ····· 345
3. 최근 도입된 제도 ②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 346
가. 개요 ····· 346
나. 구체적 운영방안 ····· 347
다. 검토 ····· 348

제6장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 ····· 355

Ⅰ. 법원별 업무 편차의 현황 및 원인 ····· 357
1. 업무처리 '기간'의 편차 ····· 357
가. 접수 이후 개시결정·파산선고 시점까지 법원별 평균 처리기간(일) ····· 357
나. 접수 이후 인가결정·면책인용결정 시점까지 법원별 평균 처리기간(일) 358
다. 검토 ····· 359
2. 업무처리 '방식'의 편차 ····· 361
3. 법원별 업무 편차의 발생 원인 ····· 362
가. 전문 인력의 편재(偏在) ····· 362
나. 도산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362
다. 통일적 업무처리 기준의 유무 ····· 363
라. 절차관계인 선발 및 관리·교육의 어려움 ····· 364
마. 절차관계인의 법원 간 인사 교류가 전무함 ····· 364
Ⅱ. 미국의 입법례·실무례 검토 ····· 365
1. 이른바 「포럼 쇼핑」 현상 ····· 365
2. 법원별 업무통일성 확보를 위한 방안 ····· 366
가. 미국 헌법 ····· 366
나. 미국 연방파산절차규칙(FRBP, 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 367
다. 연방도산관재인(U.S. Trustee) 프로그램 ····· 367
Ⅲ. 업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368
1. 균질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 ····· 368
가. 도산절차의 특수성 ····· 368
나. 일반적인 소송절차와의 비교 ····· 370

다. 신규 제도의 효율적 시행 ····· 371
라. 소결 ····· 372
2. 업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조치사항 ····· 372
가. 공통 ····· 372
나. 개인회생 ····· 374
다. 개인파산 ····· 377
라. 법인회생·법인파산 ····· 377
마. 참조 : 가정법원에서의 업무 통일성 확보를 위한 노력 ····· 377
3. 새로운 개선방안 제안 ····· 379
가. 도산사건 처리업무 통일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379
나. 도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 385
다. 통일적 업무처리 기준 마련 ····· 392
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제도 구성 ····· 397
마. 절차관계인에 대한 인사 제도 개선 ····· 400
바. 자동개시제도의 도입 ····· 407

제7장 회생절차 자동개시의 필요성 및 효용에 관한 검토 ····· 409

Ⅰ. 법인회생 실무(신청～개시결정) 현황 ····· 411
1. 현행 실무 –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 411
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411
나. 개시결정 ····· 413
2. 현행 실무의 문제점 ····· 425
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 425
나. 법원의 재량권 약화 ····· 426
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관련 ····· 427
라. 법원별 업무편차 심화 ····· 430
마. 변호사 보수 구조의 왜곡 ····· 433
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해석의 문제 ····· 437
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와의 비교 ····· 442
아. 상계 문제 ····· 444
Ⅱ. 해외 입법례·실무례 검토 ····· 446
1. 미국 ····· 446
가. 개시결정(Order for relief) ····· 446
나. 자동중지(Automatic stay) ····· 450
다. 회생절차 신청 제1일차 명령(First Day Orders) ····· 458
라. 관할 ····· 461
마. 시사점 ····· 463
2. 독일 ····· 464
가. 도산신청 ····· 464

나. 개시절차(Eröffnungsverfahren) ····· 464
다. 도산절차 개시결정(Eröffnungsbeschluss) ····· 467
라. 시사점 ····· 469
3. 프랑스 ····· 469
가. 「신청 – 법원의 개시결정(jugement d'ouverture)」의 구조 ····· 469
나. 자동개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 470
4. 일본 ····· 471
가. 「신청 – 법원의 개시결정(開始の決定)」의 구조 ····· 471
나. 자동개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 472
5. 그 외에 자동개시제도를 채택한 국가들 ····· 473
가. 캐나다 – 회생절차(Proposal) ····· 473
나. 호주 – 임의관리절차(Voluntary Administration) ····· 474
Ⅲ. 개선방안 검토 ····· 475
1. 상정 가능한 견해의 대립 ····· 475
가. [제1안] 현행 체계 유지 ····· 475
나. [제2안] 자동중지제도 – 신청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 ····· 476
다. [제3안] 자동개시제도 – 신청 즉시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 ····· 479
2. 검토 ····· 480
가. 제1안의 논거에 대한 반박 ····· 480
나. 제2안과 제3안 사이의 선택 ⇨ 제3안이 타당함 ····· 483
Ⅳ. 자동개시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 ····· 486
1. 자동개시의 요건 ····· 486
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 486
나. 신청서의 제출 ····· 486
2. 자동개시의 효력 ····· 487
3. 자동개시 이후의 절차 ····· 487
4. 회생절차 실효결정 ····· 487
가. 의의 ····· 487
나. 회생절차 실효결정의 사유 ····· 488
다. 불복절차 ····· 488
5. 자동중지 효력의 적용 배제결정 ····· 489
가. 현행법의 태도 ····· 489
나. 개정안의 내용 ····· 489
6.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의 제한 ····· 490
가. 현행법의 태도 ····· 490
나. 개정안의 내용 ····· 490
7.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 491

제8장 결론 ····· 495

1. 개인회생절차의 윤리성 제고방안 ····· 497
2.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 498
3.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499
4.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 ····· 500
5. 회생절차 자동개시의 필요성 및 효용에 관한 검토 ····· 501
6. 나가며 ····· 502

229.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26-06

연구책임자: 이 혜 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 18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5

Ⅲ. 연구의 내용 ····· 6

제2장 사법권 독립 개관 ····· 7

제1절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내용 ····· 9

Ⅰ. 개관 ····· 9

1. 민주주의·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 ····· 9

2. 사법권 독립의 국제적 규범력 ····· 9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 10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 10

2. 제도적 독립 ····· 11

3. 개별적 독립 ····· 11

제2절 국제적 규범체계에서의 사법권 독립 ····· 12
Ⅰ. 사법권 독립에 관한 국제규범 ····· 12
1. 사법권 독립에 관한 국제 인권규범 ····· 12
2. 국제기구 등의 원칙·지침 ····· 13
Ⅱ. 사법권 독립의 구체적 요소 ····· 18
1. 개관 ····· 18
2. 판사의 신분보장 ····· 18
3. 사법부의 예산 및 행정 ····· 19
제3절 사법권 독립의 평가 메커니즘 ····· 20
Ⅰ. 베니스 위원회 ····· 20
Ⅱ. 유엔인권이사회 ····· 20
1. 보편적 정례검토 ····· 20
2.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 21
Ⅲ. 국제재판소 ····· 21
Ⅳ. 사법독립 지표(Independence Indices) ····· 22

제3장 폴란드의 사법권 독립 침해 현황 ····· 25

제1절 폴란드 국가 개관 ····· 27
Ⅰ. 개관 ····· 27
Ⅱ. 폴란드 정치 상황 변동 과정 ····· 27
1. 공산화 과정 ····· 27
2. 민주화 과정 ····· 28
3. 이후의 정치 상황 ····· 28
4. EU 가입 ····· 29
Ⅲ. 폴란드 헌법 ····· 30
1. 개관 ····· 30
2. 정부형태 ····· 31
3. 양원제 ····· 31
4. 사법권 ····· 32
Ⅳ. 폴란드의 사법체계 ····· 32
1. 개관 ····· 32
2. 법원 체계 ····· 33
3. 헌법재판소 ····· 34
4. 국가재판소 ····· 35
5. 국가사법위원회 ····· 35
제2절 폴란드 사법권 독립 침해 과정 ····· 36
Ⅰ. 사법개혁 및 관련 법률 개정 과정 ····· 36
Ⅱ. 헌법재판소 독립 침해 내역 ····· 38
1. 침해의 시작-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 38

2. 헌법재판소의 무력화 과정(2015. 12.-2016. 12.) ····· 43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의 정당화(2017년 이후) ····· 55
4. 소결 ····· 62
Ⅲ. 대법원 독립 침해 내역 ····· 63
1. 정년 단축 ····· 63
2. 대법원장 임명 절차 변경 ····· 66
3. 재판부 신설 ····· 69
4. 비상상고 제도 신설 ····· 75
5. 대통령의 권한 확대 ····· 77
Ⅳ. 일반법원 독립 침해 내역 ····· 78
1. 판사의 임명 ····· 78
2. 사법행정 ····· 87
3. 판사의 징계 등 ····· 91
제3절 폴란드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단 ····· 95
Ⅰ. 유럽인권재판소 ····· 95
1. 유럽인권재판소 절차 개관 ····· 95
2. 헌법재판소 구성 관련 판결(Xero Folr 사건) ····· 97
3. 대법원 신설 재판부 관련 판결 ····· 99
4. 판사 징계 절차 관련 판결 ····· 105
5. 그 밖의 판결 ····· 114
Ⅱ. EU사법재판소 ····· 121
1. EU사법재판소 절차 개관 ····· 121
2. 선결적 판결 ····· 124
3. 의무불이행소송(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 130
제4절 폴란드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국내외의 대응 ····· 137
Ⅰ. 국제사회의 논의 ····· 137
1. 폴란드의 민주주의 지표 하락 ····· 137
2. EU 차원의 대응 ····· 138
3. 베니스 위원회 ····· 150
4. UN ····· 151
5. 각종 국제기구 ····· 153
Ⅱ. 폴란드 국내의 논의 ····· 157
1. 사법부 내부의 대응 ····· 157
2. 폴란드 판사 Igor Tuleya 인터뷰 ····· 161
3. Free Court Foundation ····· 162
Ⅲ. 사법권 독립 회복을 위한 노력 ····· 163
1. 2023년 총선 이후 폴란드의 정치 상황 ····· 163
2. 사법기관의 상황 ····· 164
3. 사법제도 관련 법률 개정안 ····· 167
4. 국제기구의 견해 ····· 171

5. 2025년 대선 전후의 상황 ····· 173

제4장 헝가리의 사법권 독립 침해 현황 ····· 175

제1절 헝가리 국가 개관 ····· 177
Ⅰ. 개관 ····· 177
Ⅱ. 헝가리 정치 상황 변동 과정 ····· 177
1. 공산화 과정 ····· 177
2. 민주화 과정 ····· 178
3. 이후의 정치 상황 ····· 178
4. EU 가입 ····· 179
Ⅲ. 헝가리 헌법 ····· 179
1. 기본법의 제정 ····· 179
2. 카디널법(Cardinal Act) ····· 179
3. 사법제도 관련 기본법과 카디널법 ····· 180
Ⅳ. 헝가리의 사법체계 ····· 181
1. 개관 ····· 181
2. 법원 체계 ····· 181
3. 헌법재판소 ····· 182
4. 국가사법청과 국가사법위원회 ····· 182
제2절 헝가리 사법권 독립 침해 과정 ····· 183
Ⅰ. 개관 ····· 183
Ⅱ. 헌법재판소 독립 침해 내역 ····· 184
1. 기본법 및 2011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 184
2. 2013년 제4차 기본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 ····· 186
Ⅲ. 법원행정 관련 독립 침해 내역 ····· 192
1. 기본법 및 2011년 법원조직법 제정 ····· 192
2.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 ····· 200
3. 4차 기본법 개정 ····· 203
4. 2020년 법원조직법 개정 ····· 204
5. 2024년 법원조직법 개정 ····· 206
Ⅳ. 판사의 지위 관련 독립 침해 내역 ····· 207
1. 2011년 기본법 및 판사지위법 제정 ····· 207
2. 2012년 판사지위법 개정 ····· 213
Ⅴ. 행정법원 신설 시도 ····· 215
1. 행정법원법 제정 ····· 215
2. 베니스 위원회의 견해 ····· 218
3. 이후의 경과 ····· 221
제3절 헝가리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 ····· 222
Ⅰ. 국제재판소의 판단 ····· 222

1. 유럽인권재판소(Baka 사건) ····· 222
2. EU사법재판소 ····· 227
Ⅱ. 국제사회의 논의 ····· 230
1. 헝가리의 민주주의 지표 하락 ····· 230
2. EU 차원의 대응 ····· 230
3. 베니스 위원회 ····· 234
4. 유엔인권이사회 ····· 237
5. 각종 국제기구 ····· 238
Ⅲ. 헝가리 국내의 논의 ····· 239
1. 사법부 내부의 대응 ····· 239
2.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 ····· 241

제5장 그 밖의 국가의 사법권 독립 침해 현황 ····· 243

제1절 멕시코 ····· 245
Ⅰ. 사법권 독립 침해의 경과 ····· 245
1. 최근의 사법개혁 논의 ····· 245
2. 2024년 헌법 개정 ····· 245
Ⅱ. 2024년 개정 헌법의 내용 ····· 246
1. 연방대법원의 구조 개편 ····· 246
2. 판사의 국민 직선제 ····· 247
3. 징계법원 신설 ····· 249
4. 판사 보수 제한 ····· 250
Ⅲ. 개헌 이후의 상황 ····· 251
1. 판사 선거 ····· 251
2. 국제기구의 평가 ····· 252
제2절 베네수엘라 ····· 254
Ⅰ. Chávez 정권 이전의 상황 ····· 254
1. 정치 상황 ····· 254
2. 사법부의 현실 ····· 255
Ⅱ. Chávez 정권에서의 사법권 독립 침해 과정 ····· 256
1. 사법권 침해의 시작 ····· 256
2. 사법부 인적 구성의 변경 ····· 259
3. 친정부적 판결 양산 ····· 263
4. 반정부 판사에 대한 탄압 ····· 264
Ⅲ. Maduro 정권에서의 사법권 독립 침해 과정 ····· 265
1. Maduro의 집권 ····· 265
2. 사법부의 정권 정당화 과정 ····· 265
3. 최고재판소법 개정 ····· 268
4. 사법부의 정권에의 종속 ····· 269

Ⅳ. 국제사회의 대응 ····· 270
1.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 ····· 270
2. UN ····· 272
3. 각종 국제기구 ····· 274
제3절 이스라엘 ····· 276
Ⅰ. 사법개혁의 배경 ····· 276
1. 이스라엘 사법부의 지위 ····· 276
2. 사법개혁의 경과 ····· 278
Ⅱ.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279
1. 합리성 심사 폐지 ····· 279
2. 판사임명위원회의 구성 변경 ····· 281
Ⅲ. 국제기구의 평가 ····· 285
제4절 미국 ····· 286
Ⅰ. 서론 ····· 286
Ⅱ. 행정부의 판결 불복 ····· 287
1. 전체 현황 ····· 287
2. 대표적 사례 ····· 287
Ⅲ. 판사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 ····· 290
1. 일반적 양상 ····· 290
2. 대표적 사례 ····· 290

제6장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제공하는 시사점 ····· 293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 ····· 295
Ⅰ. 우리나라에서의 사법부 독립의 구현 ····· 295
Ⅱ. 사법부 독립의 한계 ····· 296
1. 사법부에 대한 견제 ····· 296
2.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 296
Ⅲ.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 연혁과 입법적 동향 ····· 297
1. 사법개혁 연혁 ····· 297
2. 입법적 동향 ····· 298
제2절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 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 299
Ⅰ. 서설 ····· 299
Ⅱ. 사법권 독립 침해의 양상 ····· 299
1. 사법권 독립 위기의 특징 ····· 299
2. 입법 절차의 불투명성 ····· 301
3. 사법권 독립 침해의 태양 ····· 302
4. 사법권 독립 침해의 결과 ····· 305
5. 사법권 독립 회복의 어려움 ····· 306
Ⅲ.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거시적 대응 방안 ····· 308

1. 사법권 독립의 취약성 인식 ····· 308
2. 민주주의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역할 확인 ····· 310
3.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사법제도 설계(사법권 침해 현황으로부터의 교훈) 311
4.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와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 ····· 316

제7장 결론 ····· 319

참고문헌 ····· 323

[별지] 20대 국회 이후 사법제도 관련 법률안 ····· 358

230.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6-07

연구책임자: 남 승 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 (사법정책연구원 前 조사위원)
백 수 빈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5월 27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방법 ····· 5
제3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7
제2장 비송사건절차법의 개관 ····· 9
제1절 비송사건의 개요 ····· 11
Ⅰ. 비송사건의 의의 ····· 11
Ⅱ.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 ····· 13

1. 형식적 의미의 비송사건 ····· 13
2. 실질적 의미의 비송사건 ····· 14
가. 학설 ····· 14
나. 판례 ····· 16
다. 검토 ····· 16
라. 비송사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17
3.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경우의 문제 ····· 19
Ⅲ.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율하는 비송사건 ····· 20
Ⅳ. 비송사건의 특질 ····· 24
1. 직권주의(처분권주의의 배제) ····· 24
2. 직권탐지주의(변론주의의 배제) ····· 24
3. 비공개의 원칙 ····· 25
4. 기판력의 결여 ····· 25
5. 기속력의 제한 ····· 25
6. 간이·신속주의 ····· 26
Ⅴ. 비송사건의 현황 및 중요성 ····· 26
1. 비송사건의 접수 현황 ····· 26
2. 비송사건의 중요성 ····· 28
제2절 비송사건절차법의 연혁 ····· 29
Ⅰ. 비송사건절차법의 제정 과정 ····· 29
Ⅱ. 제정 이후의 개정 내용 ····· 31
1. 제1차 전부개정(1962. 12. 29. 법률 제1240호) ····· 31
2. 제2차 일부 개정(1963. 12. 13. 법률 제1501호) ····· 32
3. 제3차 일부 개정(1984. 4. 10. 법률 제3724호) ····· 32
4. 제4차 전부개정(1991. 12. 14. 법률 제4423호) ····· 33
5. 제5차 일부 개정(1994. 12. 31. 법률 제4834호) ····· 33
6. 제6차 일부 개정(1996. 12. 30. 법률 제5206호) ····· 34
7. 제7차 일부 개정(2001. 7. 24. 법률 제6498호) ····· 34
8. 제8차 일부 개정(2001. 12. 19. 법률 제6526호) ····· 34
9. 제9차 일부 개정(2007. 7. 27. 법률 제8569호) ····· 35
10. 제10차 일부 개정(2013. 5. 28. 법률 제11827호) ····· 35
11. 제11차 일부 개정(2016. 1. 19. 법률 제13765호) ····· 36
Ⅲ. 비송사건절차법 개정 논의 ····· 37
제3절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39
Ⅰ.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점 ····· 39
1. 체계정합성의 부재 ····· 39
2. 제대로 된 총칙 규정의 불비 ····· 40
3. 입법적 공백의 다수 존재 ····· 41
4. 대법원규칙의 부존재 ····· 41
Ⅱ. 실무가들이 느끼는 비송절차의 문제점 ····· 42

1. 비송합의 재판장들의 건의사항 ····· 43
2. 변호사가 느끼는 비송절차의 문제점 ····· 45
Ⅲ. 비송절차 개선의 기본 방향 ····· 45
1.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 45
2. 비송절차 개선의 구체적 방안 ····· 47
가. 총칙 규정의 정비 ····· 47
나. 각칙 규정의 정비 ····· 47
3. 과태료 사건의 정비 ····· 48

제3장 해외 주요나라의 비송절차 개요 및 입법적 동향 ····· 51

제1절 독일 ····· 53
Ⅰ. 독일 비송사건절차법의 역사와 발전 ····· 53
1. 역사적 발전 ····· 53
2. 비송사건절차법의 전면개정 ····· 54
가. 개정의 필요성 대두 ····· 54
나. 새로운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의 제정 ····· 55
다. 제정 이후 주요 개정 내역 ····· 57
Ⅱ. FamFG의 제정 목표 및 주요 특징 ····· 59
1. FamFG의 제정 목표 ····· 59
2. FamFG의 구조 ····· 60
3. FamFG의 특징 ····· 61
가. 법전의 통합과 체계화 ····· 61
나. 관계인(Beteiligte) 규정의 명확화 및 절차보장 강화 ····· 61
다. 직권탐지주의의 유지와 변형 ····· 62
라. 화해·조정 등 ····· 62
마. 재판의 형식 ····· 63
바. 임시처분 ····· 63
사. 항고 ····· 64
아. 재판의 취소 및 변경·재심 ····· 64
자.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절차 정비 ····· 65
차. 외국판결 승인 및 집행 규정의 정비 ····· 65
Ⅲ. FamFG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실무의 변화 ····· 65
1. FamFG 개혁에 대한 평가보고서 ····· 65
2. FamFG 제정 이후 실무의 변화 ····· 68
Ⅳ. 비송사건의 처리 분장 ····· 70
Ⅴ. 시사점 ····· 71
제2절 일본 ····· 71
Ⅰ. 일본 비송사건절차법의 역사와 발전 ····· 71

1. 역사적 발전 ····· 71
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 71
나. 신법의 제정 ····· 74
다. 신법 제정 이후 주요 개정 내용 ····· 76
Ⅱ. 일본 비송사건절차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78
Ⅲ. 총칙 규정의 정비 ····· 78
1.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78
가. 참가 ····· 78
나. 조서의 작성 ····· 79
다. 기록의 열람·복사 ····· 80
라. 불의타 방지를 위한 심문 및 통지 제도 ····· 80
2.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제도 ····· 81
가.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 ····· 81
나. 수명법관 제도 ····· 81
다. 전자회의 시스템에 의한 절차 신설 ····· 81
라. 최고재판소규칙에 대한 위임 ····· 82
3.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 82
4. 처분권주의의 수정 ····· 82
5. 불복방법 ····· 83
가. 항고제도의 정비 ····· 83
나. 재심 절차의 명문화 ····· 84
Ⅳ. 각칙 규정의 정비 ····· 84
Ⅴ. 신법 제정 이후 실무의 변화 ····· 85
Ⅵ. 시사점 ····· 87
제3절 프랑스 ····· 88
Ⅰ. 프랑스 비송사건절차법의 역사적 발전 ····· 88
1. 구 민사소송법전(Napoleonic Code of Civil Procedure, 1806년) ····· 88
2. 신 민사소송법전의 도입(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NCPC) ····· 89
3. 법전의 통합과 명칭 변경 ····· 89
Ⅱ. 프랑스 비송사건절차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90
1. 민사소송법전 제1권 총강 규정의 적용 ····· 90
2. 비송사건의 고유한 원칙(비송사건의 총칙) ····· 90
가. 비송사건의 의의(법 제25조) ····· 91
나. 처분권주의 예외(법 제26조) ····· 92
다. 직권탐지주의(법 제27조) ····· 92
라. 임의적 심문, 변론주의의 배제(법 제28조) ····· 94
마.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법 제29조) ····· 96
3. 개별 절차상 비송사건의 특칙 ····· 96
가. 신청의 방식 ····· 96
나. 심리의 비공개 ····· 96

다. 결정의 비공개 ····· 97
라. 결정의 고지 ····· 97
마. 결정의 효력 ····· 97
바. 항고절차 ····· 98
4. 비송절차에서 검사의 참여와 역할 ····· 100
Ⅲ. 프랑스 비송절차에 관한 최근의 논의 ····· 101
1. 비송사건에 있어서의 판사의 역할 ····· 101
2. 비송(gracieux)과 쟁송(contentieux)절차의 구분 문제 ····· 104
3. 비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의 보장 ····· 104
Ⅳ. 시사점 ····· 105
제4절 오스트리아 ····· 106
Ⅰ. 오스트리아 비송사건절차법의 역사적 발전 ····· 106
1. 구법의 제정 및 한계 ····· 106
2. 구법에 대한 개정 논의와 신법 제정 ····· 107
Ⅱ. 오스트리아 비송사건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109
1.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 ····· 109
가. 청문권 및 재판받을 권리 ····· 109
나. 절차의 진행단계별 보장 ····· 110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0
2. 공개재판의 원칙과 구술심리주의 ····· 111
가. 공개재판의 원칙 ····· 111
나. 제한적 구술심리주의 ····· 111
3. 처분권주의의 유연한 적용 ····· 112
가. 신청의 취하 ····· 112
나. 화해 ····· 112
다.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사건의 특칙(처분권주의의 일부 적용) ····· 113
4. 직권탐지주의와 그 실효성의 확보 ····· 113
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증거조사 방법 ····· 113
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 114
다. 간이·신속주의와의 관계 ····· 114
5. 편리한 재판절차의 제공 ····· 114
6. 비송대리 ····· 115
7.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15
8. 결정 및 결정의 효력 ····· 116
9. 불복절차 ····· 116
가. 항고 ····· 116
나. 재항고(Revisionsrekurs) ····· 117
10. 결정의 집행 확보(Zwangsmittel) ····· 117
Ⅲ. 시사점 ····· 117
제5절 미국 ····· 118

Ⅰ. 개관 ····· 118
Ⅱ. 미국 비송사건의 역사적 기원 및 제도의 발전 ····· 119
1. 역사적 발전 ····· 119
가. 로마법 및 시민법(Civil Law) 기원 ····· 119
나. 영국 및 미국 식민지에서의 도입 ····· 120
2. 미국 건국 초기 연방법원이 수행한 비송사건 ····· 120
가. 정부 혜택(Government Benefits) ····· 120
나. 재산의 이전(Transfers of Property) ····· 122
3. 현대 연방법원 관할의 비송절차 ····· 122
가. 상표 압수명령(Trademark Seizure Orders) ····· 123
나. 파산(Bankruptcy) ····· 123
다. 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영장 ····· 124
4. 주(州) 법원 관할의 비송사건들 ····· 124
Ⅲ. 연방법원의 사법관할과 비쟁송적 사건의 충돌 문제 ····· 125
1. 문제점 ····· 125
2. Pfander & Birk의 견해 ····· 125
3. Michael T. Morley 교수의 비판 ····· 126
4. 검토 ····· 127
Ⅳ. 시사점 ····· 128

제4장 비송사건절차법의 정비 및 비송절차의 개선방안 ····· 129

제1절 총칙 규정의 정비 ····· 131
Ⅰ. 현행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개관 ····· 131
Ⅱ. 총칙 개정의 필요성 ····· 135
제2절 총칙에 관한 구체적 개정안 ····· 136
Ⅰ. 관할 ····· 136
1. 토지관할의 특칙 ····· 136
2. 우선관할과 편의이송 ····· 138
3. 지정관할 ····· 140
4.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이송의 효과 및 불복 ····· 141
Ⅱ. 법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142
Ⅲ. 당사자 ····· 145
1. 당사자 개념의 불명확과 용어 통일의 필요성 ····· 145
2. 해외 입법례 ····· 146
3. 검토 ····· 147
4. 당사자능력, 비송절차능력 ····· 147
5. 선정당사자 ····· 148
6. 절차의 수계 ····· 150
가. 개요 ····· 150
나. 일본의 입법례 ····· 151

다. 개정안 ····· 152
7. 참가 ····· 153
가. 참가제도의 의의 및 현행법 고찰 ····· 153
나. 해외 입법례 ····· 153
다. 실무 운영 현황 ····· 154
라. 비송절차에서 참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154
마. 의견조회 결과 ····· 155
바. 검토 및 개정안의 제안 ····· 156
Ⅳ. 비송대리인 ····· 160
1. 비송대리인의 자격 ····· 160
가. 현행법 개관 ····· 160
나. 비교법 고찰 ····· 161
다. 의견조회 결과 ····· 163
라. 검토 ····· 164
2. 비송대리권의 범위 ····· 167
3. 진술보조인 제도 ····· 170
Ⅴ. 제1심 재판에 관한 절차 ····· 171
1. 신청 ····· 173
가. 신청의 방법 ····· 173
나. 신청의 병합(수개의 신청) ····· 175
다. 신청의 변경 ····· 177
2. 비송사건의 심리 ····· 178
가. 재판의 비공개 ····· 178
나. 기록의 열람·복사 ····· 179
다. 조서 작성의 의무화 ····· 182
라. 절차 진행 ····· 184
마.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189
바. 영상재판에 의한 심문기일 운영 ····· 194
Ⅵ. 증거조사와 사실탐지(직권탐지주의의 보완) ····· 198
1. 비송절차에서 사실인정(직권탐지주의) ····· 198
가. 개관 ····· 198
나. 개선의 필요성 ····· 199
다. 해외 입법례 ····· 200
2.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증거신청권 ····· 201
가. 당사자의 협력의무 ····· 201
나.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 202
3. 증거조사 방법의 확대 ····· 203
가. 개관 ····· 203
나. 의견조회 결과 ····· 204
다. 검토 ····· 206

라. 구체적인 개정안 ····· 206
4. 증거조사의 범위 ····· 210
Ⅶ. 절차의 종료 ····· 211
1. 종국결정에 의한 종료 ····· 211
가. 재판의 방식 ····· 211
나.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213
2. 종국결정 이외의 종료 ····· 216
가. 신청의 취하 ····· 216
나. 신청의 취하 간주 제도의 도입 여부 ····· 219
다. 화해, 조정 제도 ····· 220
Ⅷ. 재판의 취소·변경·경정 ····· 225
1. 재판의 취소·변경 ····· 225
가. 개관 ····· 226
나. 위법·부당한 재판에 대한 재판의 취소·변경의 개선안 ····· 227
다. 사정변경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규정의 신설 필요성 ····· 228
라. 재판의 취소·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 보장 및
즉시항고권의 부여 ····· 230
마. 개정안 ····· 230
2. 재판의 경정 ····· 231
Ⅸ. 불복절차 ····· 232
1. 항고 ····· 232
가. 개관 ····· 232
나. 문제점 ····· 234
다. 해외 입법례 ····· 235
라. 의견조회 결과 ····· 235
마. 검토 ····· 237
바. 개정안 ····· 240
2. 종국결정 이외의 재판에 대한 불복 ····· 242
가. 재판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차등화 ····· 242
나. 수명법관, 법원사무관등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의 신설 ····· 243
다. 개정안 ····· 243
3. 준재심 ····· 244
가. 확정된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244
나. 준재심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 246
Ⅹ. 절차비용 ····· 247
1. 절차비용의 부담 및 그에 관한 재판 ····· 247
가. 현행법 개관 ····· 247
나. 절차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 248
다. 변호사 보수의 절차비용에의 산입 ····· 252
라.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불복 ····· 253

마. 상급심에서의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과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 253
2. 절차비용의 국고 충당 ····· 254
3. 절차비용의 구조 ····· 255
4. 비용의 예납과 보수의 국고부담 ····· 256
XI.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및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 규정 ····· 259
1. 재판절차 일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 259
2. 대법원규칙의 제정에 관한 위임 규정 ····· 259
제3절 각칙 규정의 정비 ····· 260
Ⅰ. 서론 ····· 260
1. 현행법 개관 ····· 260
2. 각칙 정비의 방향 ····· 261
3. 검토의 순서 ····· 262
Ⅱ. 입법의 공백 부분에 대한 검토 ····· 262
1. 민사비송사건 ····· 262
가.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 262
나. 검사인의 보고 및 심문에 관한 절차규정의 신설 ····· 263
다. 신탁보수의 증감에 관한 재판 규정의 신설 ····· 264
라. 유치물에 의한 변제충당 허가사건 규정의 신설 ····· 265
2. 상사비송사건 ····· 267
가. 주식회사 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사건 ···· 268
나.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및 상무 외 행위의 허가사건 ····· 269
다.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가액 산정 사건 ····· 272
라. 상법 제409조 제5항에 기한 주식회사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274
3.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277
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277
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278
Ⅲ. 상사비송사건과 회사가처분 사건의 절차 이원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280
1. 문제점 ····· 280
2. 실무 현황 및 의견조회 결과 ····· 283
3. 개선방안 ····· 284
가. 비송성이 강한 사건들 ····· 284
나. 회사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사건 ····· 285
4. 구체적인 개정안 ····· 287
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가 사건 ····· 287
나.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등의 회계장부 열람 및 재산상태 검사에 관한 허가사건 ····· 288
Ⅳ. 과태료 사건 ····· 291
1. 서설 ····· 291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 사건 구분 ····· 293
가. 원칙 ····· 293
나. 예외 ····· 294
다. 구분의 필요성 및 중요성 ····· 295
3. 문제점 및 개정안 ····· 298
가. 적용범위 규정의 신설 ····· 298
나. 즉시항고 기간의 특례 ····· 299
Ⅴ. 비송사건절차법의 편제 정비 및 개정 방식 ····· 300
1. 비송사건절차법의 편제 정비 ····· 300
가. 현행 편제의 문제점 ····· 300
나. 일본의 개정 사례 ····· 301
다. 개정 방법의 제안 ····· 302
2.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방식 ····· 305
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 305
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방식의 선택 ····· 306
다. 검토 ····· 306

제5장 결론 ····· 309

231.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08

연구책임자: 정 우 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백 수 빈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6월 3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 ····· 7

제1절 서설 ····· 9
제2절 외국과의 비교 ····· 10
Ⅰ.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형사사법 법치주의 지수 [Rule of Law Index (Criminal Justice)] ····· 10
Ⅱ. 주요 국가의 법관 및 사건 관련 통계 비교 ····· 11
1. 독일, 프랑스, 일본 ····· 11
2. 영국 ····· 12
3. 미국 ····· 13
Ⅲ. 법관들 대상 형사재판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6
1. 개요 ····· 16
2. 형사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분석 ····· 17

3. 설문조사 결과의 정리 ····· 22
제3절 시사점 ····· 23

제3장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25

제1절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변화과정 ····· 27
Ⅰ. 형사소송법 등의 판결 이유 기재방식 ····· 27
1. 재판의 이유 명시 ····· 28
2. 유죄판결의 이유 ····· 29
3.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의 이유 ····· 33
4.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판결의 이유 ····· 34
Ⅱ. 형사판결서 기재방식의 변화과정 ····· 35
1.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 형사판결서의 모습 ····· 35
2. 제1심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과정 ····· 39
Ⅲ.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71
1. 유죄판결서 ····· 71
2. 무죄판결서 ····· 85
3.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서 ····· 87
4.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서 ····· 88
제2절 형사판결서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 92
Ⅰ. 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과정의 정리 ····· 92
1. 작성형식의 변화 ····· 92
2. 작성내용의 변화 ····· 92
Ⅱ. 적정화 예규와 관련한 설문조사 ····· 94
1. 개요 ····· 94
2. 적정화 예규와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분석 ····· 94
3. 설문결과의 검토 ····· 107
Ⅲ. 우리의 형사판결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 108
1. 작성형식 적정화와 내용적 적정화의 구별 ····· 108
2. 내용적 적정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 ····· 109
3. 판결서의 장문화와 상소율과의 관계 ····· 109
4. 현행 적정화 예규의 평가와 한계 ····· 110
5. 복잡사건에서의 판결서 장문화와 개별 기준 설정의 한계 ····· 111
6.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 112

제4장 외국의 형사판결서 ····· 113

제1절 미국의 형사판결서 ····· 115
Ⅰ. 연구의 대상 ····· 115
Ⅱ.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구조 ····· 115
1. 범죄의 분류에 따른 연방지방법원 내 담당 사건의 구분 ····· 115

2. 배심재판(Jury Trial) 및 비배심재판(Bench Trial) ····· 117
Ⅲ.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판결서 등 작성방식 ····· 118
1. 연방지방법원 형사판결서의 기본적인 작성방식 ····· 118
2. 실제 형사판결서 등의 검토 ····· 124
Ⅳ. 검토 및 시사점 ····· 143
제2절 영국의 형사판결서 ····· 145
Ⅰ. 연구의 대상 ····· 145
Ⅱ. 영국의 하급심 형사재판 구조 ····· 145
1.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과 형사법원(Crown Court) ····· 145
2. 치안법원의 관할 사건 ····· 145
3. 형사법원의 관할 사건 ····· 146
4. 유죄인정과 형량고지(Sentence indication) ····· 147
Ⅲ. 영국의 형사판결 ····· 148
1. 치안법원의 판결 ····· 148
2. 형사법원의 판결(제1심 판결) ····· 153
Ⅳ. 시사점 ····· 157
제3절 독일의 형사판결서 ····· 158
Ⅰ. 독일의 형사재판 제도 개관 ····· 158
1. 독일의 제1심 형사법원 구성 ····· 158
2. 독일의 형사재판 절차의 제도적 특징 ····· 159
Ⅱ. 독일의 특수한 형사절차 ····· 163
1. 형벌명령(Strafbefehl) ····· 163
2. 단축판결(Abgekürztes Urteil) ····· 166
3. 검토 ····· 172
Ⅲ. 독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172
1. 유죄판결의 이유 ····· 172
2. 무죄 판결의 이유 ····· 181
Ⅳ. 시사점 ····· 183
제4절 프랑스의 형사판결서 ····· 184
Ⅰ. 프랑스의 형사재판제도 개관 ····· 184
1. 범죄의 종류에 따른 관할 법원 및 재판 절차의 개관 ····· 184
2. 프랑스 형사절차의 제도적 특징 ····· 187
Ⅱ. 프랑스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189
1. 중죄법원 ····· 189
2. 경죄법원 ····· 195
3. 경찰법원 ····· 197
Ⅲ. 시사점 ····· 197
제5절 일본의 형사판결서 ····· 199
Ⅰ. 일본의 형사판결서의 개관 ····· 199
Ⅱ. 일본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199

1. 관련 법령 ····· 199
2. 일본 형사판결서 구성 ····· 200
3. 일본 형사판결서의 기재사항 ····· 200
4. 이유 기재의 순서 ····· 201
5. 구체적인 판결례 ····· 202
Ⅲ. 형사판결서 간이화 제도 ····· 207
1. 인용의 활용 ····· 207
2. 조서판결 ····· 207
Ⅳ. 시사점 ····· 210
제6절 종합적 검토 ····· 211

제5장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제안 ····· 213

제1절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방향성 ····· 215
Ⅰ. 개선방안 논의의 전제 : 형사판결서의 양적 증가 현상의 고착 ····· 215
1. 과거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및 개선방향 ····· 215
2. 형사판결서의 양적 증가 현상의 고착 ····· 215
Ⅱ. 기재 내용에 관한 개선 방안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원인 ····· 216
1. 기재 내용 증가의 주된 원인 ····· 216
2. 개선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원인 ····· 217
Ⅲ. 개선의 방향성 ····· 218
1.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 ····· 218
2. 개선의 방향성 ····· 218
제2절 상소 제기에 따른 판결 이유의 보충 제도의 제안 ····· 220
Ⅰ. 제도의 개관 ····· 220
Ⅱ. 제도 도입의 착안점 ····· 220
Ⅲ. 독일의 단축판결과 차이를 둔 이유 ····· 221
Ⅳ.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22
Ⅴ. 설문결과 및 분석 ····· 223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 223
2. 분석 ····· 234
Ⅵ. 도입제안 제도의 주요내용 ····· 235
1. 판결서에 의한 판결선고 ····· 235
2. 상소에 따른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작성 ····· 236
3. 작성기간의 제한 ····· 239
4. 위임에 의한 적용 제외 사유 ····· 241
5. 공판조서의 활용 ····· 242
6. 판결 이유 작성 과정에서 국어자문 등의 활용 ····· 242
Ⅶ. 개정안의 제안 및 보충 설명 ····· 243
1. 형사소송법의 개정 ····· 243

2.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 244
3. 예시 ····· 245
Ⅷ. 예상되는 우려와 보완책 ····· 246
1. 상소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저하 및
이유 확인을 위한 항소 증가 우려 ····· 246
2. 이유의 추후 보완에 따른 선고 시점에서 판결 완성도 저하 우려 ····· 246
3. 사후작성 이유는 결론의 정당화를 위한 자의적·형식적 기재가 될 우려 ··· 246
4. 판결 이유의 보충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또는 재판 지연 우려 ····· 247
제3절 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제도의 제안 ····· 248
Ⅰ. 제도의 개관 ····· 248
Ⅱ. 제도 도입의 착안점 및 일본의 조서판결과의 차이점 ····· 248
Ⅲ.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49
Ⅳ. 설문결과 및 분석 ····· 251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 251
2. 분석 ····· 259
Ⅴ. 제도의 주요내용 ····· 260
1. 제도 적용의 전제 – 제1심 간이공판절차 결정 사건 ····· 260
2.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조서판결의 작성 ····· 260
3. 판결서 작성 시기 및 상소의 제기에 따른 판결서의 작성 ····· 261
4. 조서판결에 기재할 사항 ····· 261
5. 적용 제외 사유의 위임 ····· 262
Ⅵ. 개정안의 제안 및 보충 설명 ····· 264
1. 형사소송법의 개정 ····· 264
2.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 266
3. 조서판결의 예시 ····· 267
Ⅶ. 예상되는 우려와 보완책 ····· 269
1. 자백사건에서는 이미 간이한 판결서를 쓰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 ····· 269
2. 조서 형식 판결에 대한 거부감에 관한 우려 ····· 269
3. 판결서 작성을 통한 검증이 배제됨에 따른 우려 ····· 270
4.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약화에 따른 우려 ····· 270
제4절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이유 기재의 특례에 관한 제안 ····· 272
Ⅰ. 제도 개선의 개관 ····· 272
Ⅱ. 개선의 필요성 ····· 272
Ⅲ. 설문결과 및 분석 ····· 273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 273
2. 분석 ····· 279
Ⅳ. 주요 내용 ····· 280
1. 적용범위 ····· 280
2. 배심원 평결의 인용 ····· 280

Ⅴ. 개정안의 제안 ····· 281
1. 개정 형식 ····· 281
2. 대법원규칙의 개정방안 ····· 281
3. 적정화 예규의 개정방안 ····· 281
4. 예시 ····· 282
Ⅵ. 예상되는 우려와 그에 대한 보완책 ····· 282
1.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실상 형사판결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 판결이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우려 ····· 282
2.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종국적 판단 주체는 법원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 ····· 283
3.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설득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 283
Ⅶ. 보론 – 배심원 설명의 합리화 및 질문지의 활용 필요성 ····· 283
1.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 평결의 특성 ····· 283
2. 배심원 설명의 합리화 필요성 ····· 284
3. 배심원의 판단 근거 확인을 위한 의견확인 또는 질문지 도입 ····· 284
제5절 형사판결서 작성형식의 개선 등 ····· 286
Ⅰ. 작성형식 개선의 필요성 ····· 286
Ⅱ. 증거의 요지 기재 방식의 개선 ····· 287
1. 개선방안의 개관 ····· 287
2. 예규 개정안 ····· 288
3. 예시 ····· 288
Ⅲ. 법령의 적용 기재 방식의 개선 ····· 289
1. 개선 방안의 개관 ····· 289
2. 예규 개정안 ····· 290
3. 예시 ····· 290
Ⅳ. 양형이유 기재 방식의 개선 ····· 291
1. 개선방안의 개관 ····· 291
2. 도입의 필요성 ····· 291
3. 예규 개정안 ····· 293
4. 양형이유 기재방식 ····· 294

제6장 결론 ····· 299

232.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09

연구책임자: 홍 보 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7월 1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Ⅱ.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6
Ⅲ. 연구보고서의 내용 구성 ····· 7
제3절 주요 용어의 의미와 용례 ····· 9

제2장 유해물질 소송과 인과관계 증명의 구조 ····· 17

제1절 유해물질 소송의 특징 ····· 19
Ⅰ. 유해물질 손해배상 소송과 증명부담 ····· 19
1. 유해물질 소송의 의미 ····· 19
가. 유해물질 소송의 개념정의 ····· 19
나. 유해물질 및 유해성 개념 ····· 20

2. 유해물질 소송의 증명부담 ····· 21
가.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적 정보 ····· 21
나. 노출 수준에 대한 증명 ····· 21
다. 제3의 설명 가능성 배제 ····· 22
라. 피해 발현까지의 긴 잠복기 ····· 22
마. 개별적 편차의 존재 ····· 22
바. 증명 비용의 문제 ····· 23
3. 유해물질 소송과 인과관계 증명 ····· 23
Ⅱ. 인과관계 증명과 책임귀속 ····· 24
1. 인과관계 증명의 기본 구조 ····· 24
가. 인과관계의 개념 ····· 24
나. 인과성 추론의 요건 ····· 24
다. 인과관계 판단기준 ····· 25
2. 법적 인과관계의 증명과 책임귀속 기준 ····· 26
가.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26
나. 개연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26
3. 상당인과관계와 규범적 책임귀속 ····· 28
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구조 ····· 28
나.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 개념에 대한 비판 ····· 29
4. 비교법적 참고: 영미법의 근인(Proximate Cause) ····· 29
5. 불확실한 인과관계의 유형화 ····· 31
가. 조건적 인과관계(Conditio sine qua non) ····· 31
나. 중첩적 인과관계(Concurrent causes) ····· 32
다. 대체적 인과관계(Alternative causes) ····· 32
라. 잠재적 인과관계(Potential causes) ····· 32
마. 불확실한 부분적 인과관계(Uncertain partial causes) ····· 33
바. 피해자의 지배영역 내에 위치한 불확실한 인과관계
(Uncertain causes within the victim's sphere) ····· 33
사. 기타 참고 내용 ····· 33
제2절 손해배상제도의 기능과 위험책임 법리 ····· 35
Ⅰ. 손해배상제도와 리스크 관리 ····· 35
1. 리스크 관리 기제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35
가.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 ····· 35
나. 손해배상제도의 억지 기능 ····· 35
2. 인과관계 판단과 최적의 주의수준 ····· 37
가. 최적의 리스크 관리 수준 ····· 37
나. 인과관계 증명의 문턱과 과소배상 우려 ····· 37
3.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논의 ····· 39
가.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론 ····· 39
나. 증명책임 완화론에 대한 비판 ····· 39

Ⅱ. 불확실성의 사회적 비용과 위험책임 법리의 발달 ····· 40
1. 위험과 책임 ····· 40
가. 위험책임 법리의 근거 ····· 40
나. 위험책임 법리 배경 ····· 42
2. 국가별 위험책임 법리 ····· 43
가. 독일의 위험책임 ····· 43
나. 영국의 위험책임 ····· 43
다. 미국의 위험책임 ····· 43
3. 위험책임 법리가 정립된 분야 ····· 44
4. 위험책임 법리의 의의 ····· 45
제3절 인과관계 추정과 증명부담 완화 ····· 47
Ⅰ.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통한 증명부담 완화 ····· 47
1. 증명부담 완화 필요성과 그 접근방식 ····· 47
2. 증명도 수준의 완화: 개연성설 ····· 48
가. 개연성설 ····· 48
나. 개연성설의 판례상 전개 ····· 48
3. 증명 대상의 유형화: 신개연성설과 간접반증 ····· 51
가. 신개연성설 ····· 51
나. 신개연성설의 판례상 전개 ····· 52
다. 신개연성설의 정립 ····· 54
4. 증명 방법의 완화: 역학적·통계적 증거 활용 ····· 56
5. 인과관계 추정의 효과 및 의의 ····· 57
가. 인과관계 추정 법리 ····· 57
나. 인과관계 추정의 효과 ····· 58
다. 인과관계 추정의 의의 ····· 58
Ⅱ. 국내 법제의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 규정 ····· 58
1. 제조물책임과 결함의 추정 ····· 59
가. 유해물질 소송과 제조물책임 ····· 59
나.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결함의 추정' 조항 신설 ····· 60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인과관계 추정 ····· 62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인과관계 추정 ····· 65
4. 참고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67
Ⅲ. 2024년 유럽연합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 ····· 68
1. 유럽연합 제조물책임 지침 ····· 68
2. 개정 제조물책임 지침의 주요 내용 ····· 69
3. 개정 제조물책임 지침의 증명부담 완화 규정 ····· 69
Ⅳ. 분석 소결 ····· 71

제3장 역학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 73

제1절 과학적 불확실성과 법적 인과관계 판단 ····· 75
Ⅰ. 법적 인과관계와 사실적 인과관계 ····· 75
1. 법적 인과관계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 75
2. 법적 인과관계와 책임의 귀속 ····· 75
Ⅱ. 과학적 접근과 법적 접근의 차이 ····· 78
1. 분석의 방향성 ····· 78
2. 분석의 단위: 개인과 집단 ····· 78
3. 연속성과 불연속성 ····· 79
4. 시간적 대상 범주의 차이 ····· 80
5. 분석 목적 및 가치의 투영 ····· 81
6. 과학적 증거의 규범적 해석 ····· 81
제2절 역학적 증거의 의의와 연구방법 ····· 83
Ⅰ. 역학의 의의와 활용 ····· 83
1. 역학의 개념 ····· 83
2. 역학의 활용 ····· 83
3. 역학적 증거 ····· 84
Ⅱ. 역학의 연구방법 ····· 85
1. 역학연구의 기본적 접근 ····· 85
가. 실험연구와 관찰연구 ····· 85
나. 기술연구와 분석연구 ····· 86
2. 역학연구의 주요 지표 ····· 87
가.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 88
나. 교차비(Odds Ratio) ····· 89
다.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 89
라. 메타분석(Meta Analysis) ····· 90
3. 역학연구를 활용한 인체 위해성 평가 ····· 90
4. Hill Criteria를 활용한 인과성 추론 ····· 92
가. Hill 평가기준(Hill Criteria)을 이용한 판단 ····· 92
나. Hill Criteria 내용 구성 ····· 93
다. 힐 평가기준(Hill Criteria) 활용 시 유의사항 ····· 97
Ⅲ. 역학연구 결과 해석상 유의사항 ····· 98
제3절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 평가와 수용 ····· 100
Ⅰ. 역학적 증거를 활용한 인과관계 증명 ····· 100
1.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 ····· 100
2. 역학연구와 경험칙 ····· 100
3. 역학적 증거의 신뢰성과 타당성 ····· 101
Ⅱ. 유해물질 소송과 인과관계 증명 ····· 102
1. 역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증명 ····· 102

2. 역학적 증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 103
3. 일반적 인과성과 개별적 인과관계 ····· 104
가. 일반적 인과성과 개별적 인과관계의 구분 ····· 104
나. 일반적 인과성 증명 ····· 105
다.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 ····· 105
제4절 특이성 질환 및 비특이성 질환과 역학연구의 활용 ····· 106
Ⅰ.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 ····· 106
1.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개념 ····· 106
가. 특이성 질환 ····· 106
나. 비특이성 질환 ····· 107
2. 질환의 유형 구분에 따른 증명책임 차등화 ····· 107
가.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원인 규명 ····· 107
나. 질환 유형에 따른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 차이 ····· 108
3. 특이성 질환과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 ····· 108
4. 비특이성 질환과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 ····· 110
Ⅱ. 질환 유형별 인과관계 증명 차등화에 대한 평가 ····· 112
1. 판례 법리에 대한 찬반 평가의 대립 ····· 112
2. 검토 소결 ····· 114
Ⅲ.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 평가와 활용 ····· 114

제4장 국내외 주요 분쟁사례의 유형별 분석 ····· 117

제1절 국내외 인과관계 판례의 세 가지 유형 ····· 119
제2절 일반적 인과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사례 ····· 120
Ⅰ. 서울시 대기오염 소송 사건 ····· 120
1. 서울시 대기오염 사건 개요 ····· 120
가. 사건의 핵심 쟁점 ····· 120
나. 심급별 경과 ····· 120
2. 인과관계 개연성에 대한 판단 ····· 121
가. 하급심의 판단 구조 ····· 121
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 123
3. 역학적 증거의 의의와 한계 ····· 124
4. 비교사례: 일본 대기오염 소송 ····· 124
가. 일본 도쿄 주민들의 대기오염 소송 ····· 124
나. 오사카 주민들의 대기오염 소송 ····· 126
다. 욧카이치 대기오염 소송 ····· 128
라. 한국과 일본의 대기오염 소송 비교 ····· 130
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소송 사건 ····· 131
1.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개별소송 ····· 131
가. 사건 개요 ····· 131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100370 판결 · 131
다. 부산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4나53844 판결 ····· 132
라. 검토 소결 ····· 133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공동소송 ····· 133
가. 사안 개요 ····· 133
나. 노출 수준 및 위험 분석 모델 ····· 134
다.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 135
라. 인과관계 판단 ····· 135
3.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건의 분석 소결 ····· 136
4. 국외 방사능 노출 비교사건: Allen v. United States ····· 137
가. 일반적 인과성과 개별적 인과관계 ····· 137
나. 1심 법원의 판결(1984) ····· 138
다. 항소심(1987) 및 최종 결과 ····· 138
라. Allen v. United States 사건 분석 소결 ····· 139
5. 소송상 구제의 한계와 입법을 통한 보상제도 마련 ····· 139
Ⅲ. 의약품 사건 ····· 140
1. McClain v. Metabolife International, Inc. (2005년) ····· 140
2. 일반적 인과성 증명의 부족 ····· 140
3. 증거의 신빙성 평가와 법원의 역할 ····· 141
제3절 일반적 인과성은 인정되나 개별적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 ····· 142
Ⅰ.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 사건 ····· 142
1.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노출 피해 ····· 142
2. 미국의 Agent Orange 제조물책임 집단소송 ····· 143
가. 사실관계 개요 ····· 143
나. 사건의 종결 ····· 143
3. 미국의 입법적 구제: Agent Orange Act of 1991 ····· 144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46
5. 우리나라 고엽제 손해배상소송의 전개 ····· 147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5. 23. 선고 99가합84123 판결 ····· 147
나.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32668 판결 ····· 149
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153
6. 검토 소결: 역학적 상관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의 간극 ····· 154
Ⅱ. 국내 담배소송 ····· 155
1. 국내 개인 흡연자 담배소송 ····· 155
가. 사건 개요 ····· 155
나. 1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156
다.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 157
라. 상고심 판단: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 161
마. 검토 소결 ····· 164
2.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 165

가. 사건 개요와 청구 구조 ····· 165
나. 1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 167
다. 항소심 판단 ····· 168
라. 항소심 결과 ····· 169
마. 상고심 진행 ····· 170
3. 의학계·역학계의 비판 ····· 170
가.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특별위원회 의견서 ····· 170
나. 인과관계 평가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비판 ····· 170
다.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관점의 차이 ····· 173
라. 역학적 증거에 기한 인과관계 인정 필요성을 논한 기고문 ····· 173
4. 담배소송 분석 소결 ····· 175
Ⅲ. 국외 담배소송 사건 ····· 176
1. 일본의 담배소송 사건 ····· 176
가. 도쿄 담배소송 ····· 176
나. 요코하마 담배소송 ····· 177
다. 일본 담배소송 검토 소결 ····· 178
2. 미국과 캐나다의 담배소송 사건 ····· 178
가. State of Minnesota v. Philip Morris Inc. (미네소타주 담배소송) ····· 179
나. 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1998) ····· 180
다. United States v. Philip Morris USA Inc. (2006) ····· 181
라. 캐나다 Létourneau 집단소송 ····· 182
마. Canadian Tobacco Settlement (2025년) ····· 183
3. 담배소송의 국가별 비교·분석 ····· 185
가. 인과관계 증명구조 차이 ····· 185
나. 개인소송 대 집단소송 ····· 186
다. 디스커버리 제도와 내부 문건의 공개 ····· 187
라. 개인의 자발적 선택 여부 ····· 187
마. 분석 소결 ····· 188
Ⅳ. 화학물질 및 의약품 사건 ····· 189
1. Parker v. Mobil Oil Corp. (2006) 사건 ····· 189
가. 사건의 개요 ····· 189
나. 법원의 판단 ····· 189
다. 검토 소결 ····· 191
2. Guinn v. AstraZeneca Pharmaceuticals LP (2010년) ····· 192
가. 사건의 개요 ····· 192
나. 법원의 판단 ····· 193
다. 검토 소결 ····· 194
제4절 일반적 인과성 및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 195
Ⅰ. 석면노출피해 사건 ····· 195

1. Borel v. Fibreboard Paper Products Corp. (1973) ····· 195
가. 사건의 개요 ····· 195
나. 법원의 판단 ····· 195
2.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2003) ····· 197
가. 사건의 개요 ····· 197
나. 법원의 판단 ····· 197
3. Nemeth v. Brenntag North America (2022) ····· 198
가. 사건의 개요 ····· 198
나. 법원의 판단 ····· 198
4. 석면소송 분석 소결 ····· 199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 ····· 200
1. 사건의 개요 ····· 200
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 200
나.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과 질환의 특성 ····· 200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 ····· 201
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추진 ····· 202
마. 사건의 진행 경과 및 법원의 판단 ····· 203
바.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 204
2. PHMG/PGH 계열 사건: 특이성 질환과 인과관계 인정 ····· 204
가. 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 204
나. 1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고합527 판결 ··· 204
다. 2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243 판결 ····· 205
라. 3심 판단: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 206
3. CMIT/MIT 성분: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재판 진행 중 ····· 206
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 206
나. 1심 판단: 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판결 ····· 207
다. 1심 판결에 대한 과학계의 비판 ····· 208
라. 2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 ····· 211
마. 3심 판단: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 213
4. 민사소송 및 피해구제특별법 ····· 213
가. 국가배상책임 ····· 213
나. 제조·판매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 214
다.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 214
라.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체계 전환 요구 ····· 215
5. 분석 소결 ····· 215
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 215
나. 형사재판 검토의 의의 ····· 216
Ⅲ. 불산 누출 사건 ····· 217
1. 사건의 개요 ····· 217
2. 대립되는 주장 ····· 218

가. 공장 인근 주민들의 주장 ····· 218
나. 피고 기업의 주장 ····· 218
3. 심급별 판단 ····· 219
가. 1심의 판단(대전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가합101052 판결) 219
나. 항소심의 판단(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220
다. 상고심의 판단(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 221
4. 검토 소결 ····· 222
제5절 사례 유형별 분석의 종합 ····· 224
Ⅰ. 일반적 인과성 증명의 관문 ····· 224
Ⅱ.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부담 ····· 225
Ⅲ.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 사례에서의 증거종합적 판단 ····· 225
Ⅳ. 입법적·제도적 보완 ····· 226
Ⅴ. 분석 소결 ····· 226

제5장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인과관계 판단의 쟁점 ····· 229

제1절 역학적 증거의 수용방식 ····· 231
Ⅰ. 역학적 증거의 기능과 한계 ····· 231
Ⅱ. 역학적 증거의 규범적 해석 ····· 231
1. 역학연구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안 ····· 232
2. 역학연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안 ····· 233
제2절 역학적 증거를 활용한 인과성 추론 ····· 235
Ⅰ. 위험성 배증 이론 ····· 235
1. 위험성 배증 이론의 의의 ····· 235
2. 위험성 배증 이론의 적용 ····· 236
3. 위험성 배증 이론의 한계 ····· 236
4. 위험성 배증 이론에 대한 평가 ····· 238
Ⅱ. 차별적 병인론 ····· 239
1. 차별적 병인론의 의의 ····· 239
2. 차별적 병인론의 적용 ····· 239
가. 1단계: 가능한 원인을 포함하기(ruling-in) ····· 239
나. 2단계: 원인 배제하기(ruling-out) ····· 239
3. 차별적 병인론의 한계 ····· 240
4. 차별적 병인론에 대한 평가 ····· 240
Ⅲ. 실질적 기여 요인과 위험의 실질적 증가 ····· 241
1. 실질적 기여 요인 ····· 241
2. 위험의 실질적 증가 법리 ····· 242
3. 위험의 실질적 증가 법리가 적용된 사례 ····· 244
가. 영국 McGhee v. National Coal Board 사건 ····· 244
나. 영국 Fairchild v. Glenhaven Funeral Services Ltd (2002) ····· 245

4. 접근방식에 대한 평가 ····· 246
제3절 인과관계 판단과 대안적 책임귀속 이론 ····· 247
Ⅰ. 대안적 책임귀속 논의의 필요성 ····· 247
Ⅱ. 집단적 인과관계와 시장점유율 책임 ····· 248
Ⅲ. 비례적 인과관계 ····· 248
Ⅳ. 일본의 확률적 인과관계 이론 ····· 249
Ⅴ. 대안적 책임귀속 이론 평가 ····· 251
Ⅵ. 대안적 논리에 대한 검토 소결 ····· 251
제4절 민사 손해배상과 공적 피해구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 253
Ⅰ. 인과관계 증명부담 비교: 손해배상제도와 피해구제제도 ····· 253
Ⅱ. 산업재해 인과관계 판단기준 ····· 253
1.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 ····· 253
2. 산업재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 254
3. 첨단산업 직업병과 규범적 상당인과관계 ····· 255
가. 다발성경화증 사건(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255
나. 반도체 조립라인 근무자 사건: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 259
Ⅲ.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 판단기준 ····· 262
1. 백신 예방접종과 부작용 발생 간의 인과관계 판단 ····· 262
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구제 ····· 262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판단기준 ····· 265
Ⅳ. 공적 피해구제와 민사 손해배상제도 비교·분석 ····· 269

제6장 합리적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271

제1절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 273
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자료 확보 ····· 273
Ⅱ. 의료 관련 법률 ····· 274
1. 국민건강보험법 ····· 274
2.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자료 ····· 275
3. 암관리법 ····· 275
Ⅲ. 환경보건법 ····· 276
Ⅳ. 산업재해보상 및 산업안전 관련 법률 ····· 277
1. 고용보험법 ····· 27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78
3. 산업안전보건법 ····· 278
Ⅴ. 화학물질 및 대기·수질 관련 법률 ····· 279
1.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79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상 환경오염 측정자료 ····· 280
Ⅵ. 통계법 ····· 281

Ⅶ. 공공 자료 활용의 유의사항 ····· 281
1. 수집 정보의 성격을 고려한 검토 ····· 281
2. 조사설계와 수집방법의 차이 고려 ····· 282
3. 자료의 접근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 282
제2절 과학적 증거 심사 역량의 강화 ····· 283
Ⅰ. 법관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용 ····· 283
Ⅱ. 감정절차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 개선 ····· 284
1. 유해물질 소송의 감정 절차 관리 ····· 284
가. 감정의 의의 ····· 284
나. 유해물질 소송에서 감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 ····· 285
2. 감정관리센터의 활용 ····· 286
3.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 287
가. 전문심리위원 제도 ····· 287
나. 전문심리위원의 적극적 활용 ····· 288
4. 과학적 쟁점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방안 ····· 288
Ⅲ. 대립되는 전문적 증거의 평가기준 정립 ····· 289
1. 대립되는 전문가 증거의 평가 및 채택 ····· 289
2. 집중적 교호신문 또는 동시증언 제도의 활용 가능성 ····· 290
제3절 역학적·통계적 증거의 평가기준 표준화 ····· 292
Ⅰ. 증거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292
1. 유해물질 소송 증거 체크리스트(안) ····· 292
2.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 확인 내용 ····· 294
가. (1단계) 해당 유해물질이 문제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294
나. (2단계) 역학·독성학 연구의 설계와 수행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가? ·· 294
다. (3단계) 연관성의 강도와 통계적 유의성·신뢰구간이 제시되었는가? 295
라. (4단계) 용량-반응관계가 확인되는가? ····· 296
마. (5단계) 우연·편향·교란 가능성이 적절히 검토·통제되었는가? ····· 297
바. (6단계)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기존 과학지식과 내용이 정합적인가? ····· 297
사. (7단계) 원고가 해당 유해물질에 실제로 노출되었는가? ····· 298
아. (8단계) 노출경로와 노출평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가? ····· 298
자. (9단계) 노출량의 충분성 및 발병시기 검토 ····· 299
차. (10단계) 다른 원인이 충분히 검토·배제되었는가? ····· 299
카. (11단계) 증거의 총체적 평가 내용이 고도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가? 300
3. 증거 평가 체크리스트(안)의 활용방식 ····· 301
Ⅱ. 평가 내용의 구체적 검토 기준 ····· 302
1. 연구·분석의 타당성 평가 ····· 302
가.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 303
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 305

다.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 ····· 306
2. 통계분석의 타당성 ····· 308
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평가 ····· 308
나. 상대적 위험도에 대한 평가 ····· 309
3. 편향·교란 요인에 대한 평가 ····· 310
가. 우연(chance)의 결과 ····· 310
나. 편향(bias)의 영향 ····· 311
다. 교란(confounding) 변수 ····· 312
4. 검토 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 312
제4절 합리적인 인과관계 추론의 요건과 방향 ····· 313
Ⅰ. 증거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판단 ····· 313
1. 개별 증거의 한계와 증거의 종합평가 필요성 ····· 313
2. 증거종합적 판단 방법의 비교법적 시사점 ····· 313
3. 증거에 대한 종합 평가: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 사건 ····· 315
가. 사실관계와 쟁점 ····· 315
나. 인과관계 증명구조: 신개연성설과 수치모형실험 ····· 315
다. 과학적 증거의 일부 오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 ····· 316
라. 분석 소결 ····· 316
4. 증거 평가와 법관의 종합적 심증 형성 ····· 317

제7장 결 론 ····· 319

제1절 연구 내용의 요약 ····· 321
Ⅰ. 유해물질 소송과 인과관계 판단 ····· 321
Ⅱ. 비특이성 질환의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 ····· 321
Ⅲ. 역학적 증거의 증명력 ····· 322
Ⅳ. 합리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정책적 제언 ····· 323
제2절 인과관계 판단기준의 법정책적 함의 ····· 324
Ⅰ. 인과관계 판단기준의 함의 ····· 324
Ⅱ. 맺음말 ····· 325

참고문헌 ····· 327

233. 준거법의 지정, 조사 및 해석 · 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10

연구책임자: 김 효 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7월 23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인 법률관계의 판단 ····· 11

제1절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의미 ····· 13
Ⅰ. 개관 ····· 13
Ⅱ. 학설 및 판례의 입장 ····· 15
1. 학설의 대립 ····· 15
가. 광의설 ····· 15
나. 협의설 ····· 15
다. 절충설 ····· 16
2. 판례의 입장 ····· 17

Ⅲ. 검토 ····· 18
제2절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판단 ····· 20
Ⅰ. 개관 ····· 20
Ⅱ. 유형별 검토 ····· 21
1. 당사자가 외국 법인임에도 곧바로 국내법을 적용한 경우 ····· 21
가.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 21
나. 마스터캠(Mastercam)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2가합538925 판결(확정)] 24
2. 양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나,
그 밖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 25
가. 카타르국 판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 25
나. 필리핀국 국립노동위원회 경매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 29
다. 미르의 전설 2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 31
3. 순수한 국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합의한 경우 ····· 39
4.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형식적인 경우(편의치적 등) ····· 39

제3장 준거법의 지정 ····· 41

제1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43
Ⅰ. 개관 ····· 43
Ⅱ. 실체와 절차의 구별 ····· 44
1. 상계 ····· 44
가. 실체로의 성질결정과 상계의 준거법 ····· 44
나. 상계의 준거법 소속국이 상계를 절차로 성질결정하는 경우의 문제 ···· 46
2. 소멸시효 ····· 48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자 ····· 49
4.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 51
가. 증명의 정도 ····· 51
나. 증명책임 ····· 52
5. 담보권의 실행방법 ····· 53
6. 소결 ····· 54
Ⅲ. 국제사법상 법률관계로의 성질결정 ····· 55
1. 직무발명에서의 특허권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 ····· 55
2. 제조물책임 ····· 58
3. 이혼에 따른 부수적 결과 ····· 58
가. 이혼당사자의 성(姓) ····· 58

나. 부부재산제의 청산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59
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 60
라. 이혼이 혼인에 따른 성년의제에 미치는 영향 ····· 60
제2절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 ····· 61
Ⅰ.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의 취지 ····· 61
Ⅱ. 국제사법 제21조의 해석론 ····· 62
1.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 62
2. 종속적 연결원칙의 예외조항에 의한 배제 가부(可否) ····· 63
Ⅲ.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이 문제된 판례의 검토 ····· 66
1. 선박의 편의치적 관련 판례 ····· 66
가.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긍정한 판례 ····· 66
나.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부정한 판례 ····· 75
다. 소결 ····· 81
2. 이혼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 82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82
나. 검토 ····· 83
3. 친자관계 관련 판례
: 인천가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4드단103984 판결(확정) ····· 87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87
나. 검토 ····· 87
4. 국가배상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나14901 판결(미확정) ····· 89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89
나. 검토 ····· 91
5. 부당해고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57213 판결(확정) ····· 93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93
나. 검토 ····· 95
Ⅳ. 기타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96
1.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의 경우 ····· 96
2.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의 경우 ····· 96
제3절 준거법 지정 시의 반정(反定) ····· 99
Ⅰ. 반정(反定)의 의의 및 유형 ····· 99
Ⅱ. 국제사법 제22조 및 제80조의 해석론 ····· 101
1. 직접반정의 인정(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 102
2. 직접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국제사법 제22조 제2항) ····· 103
가.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제1호) ····· 103
나. 국제사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제2호) ····· 106
다. 국제사법 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제3호) ····· 106
라. 국제사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제4호) ····· 107
마. 국제사법 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제5호) ····· 110
바. 직접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제6호) ····· 110
3. 전정의 인정: 어음·수표의 행위능력 ····· 113
Ⅲ. 숨은 반정(hidden renvoi)의 법리 ····· 114
1. '숨은 반정(hidden renvoi)'의 의의 및 요건 ····· 114
가. '숨은 반정'의 의의 ····· 114
나. '숨은 반정'의 요건 ····· 115
2. 숨은 반정의 법리가 문제된 판례의 검토 ····· 116
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 117
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119
3. 숨은 반정의 법리에 대한 재검토 ····· 122
가. 비교법적 변화: 숨은 반정의 적용범위 축소 ····· 122
나. 숨은 반정에 대한 본질적 비판 ····· 123
다. 검토 ····· 125

제4장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 ····· 127

제1절 법원의 준거법 직권조사·적용의무와 조사방법 ····· 129
Ⅰ. 준거법인 외국법의 성질 ····· 129
Ⅱ. 법원의 준거법 직권조사·적용의무 ····· 130
1. 법원의 직권에 의한 준거법 조사·적용의 의미와 범위 ····· 130
2. 당사자의 협력의무 ····· 133
3. 법원의 준거법 직권조사·적용의무 이행의 실무상 난점 ····· 134
가. 언어 장벽과 번역의 한계 ····· 134
나. 해외 법령·판례 및 학술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 ····· 134
다. 외국 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어려움 ····· 135
라. 당사자의 인식 부족과 협력의 한계 ····· 135
마. 제도적·인적 지원의 부족 ····· 135
Ⅲ. 준거법인 외국법 조사방법에 관한 실무 현황 ····· 136
1. 석명권 행사에 따른 당사자·대리인의 조사 ····· 136
2. 법원의 직권조사: 공개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기구 자료의 활용 ····· 137
3. 외국 전문가의 선서진술서(affidavit) 및 기타의 방법 활용 현황 ····· 137
4. 소결 ····· 139
제2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 139
Ⅰ. 외국법 전문가의 감정 ····· 140
1. 외국법의 존부 및 해석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 140
2. 「외국법의 조사·적용에 관한 예규」의 제정 필요성 ····· 141
가. 참고 모델: 독일 함부르크 가이드라인 ····· 141

나. 「외국법의 조사·적용에 관한 예규」의 입법 방향 ····· 142
다. 「외국법의 조사·적용에 관한 예규」의 내용 ····· 144
Ⅱ. 전문심리위원 ····· 161
Ⅲ. 법정보에 대한 공조 신청 ····· 162
1. 한·호 조약 등 양자조약에 따른 법정보 교환 내지 제공 요청 ····· 162
2. 한·호 조약 등 양자조약에 따른 법률정보 제공범위 및 절차 ····· 164
Ⅳ. 외국법 조사를 위한 전문적 인력과 조직 양성 ····· 166
1. 외국법 조사를 위한 전문적 인력과 조직 양성의 필요성 ····· 166
가. 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의 증가 ····· 166
나. 외국법 조사를 위한 전문적 인력과
조직 구축 시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 168
2.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외국법적용센터의 조직 및 역할 ····· 169
3. 우리나라에서의 외국법 조사를 위한 전문적 인력과 조직 양성방안 ····· 172
가. 개관 ····· 172
나. 제1안: 사법정책연구원의 전문가 감정 제공 방안 ····· 174
다. 제2안: 외국법조사원 신설 방안 ····· 190
라. 제3안: 법원행정처의 외국법 조사위원 채용 방안 ····· 193
Ⅴ. 외국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 195
1. 외국법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 195
2. 외국법 데이터베이스 등재 자료의 범위 ····· 197
가. 해외 법령(외국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원문 및 국문번역 ····· 197
나. 준거법이 외국법인 우리나라 판례 ····· 198
다. 외국 법원의 판례 등재의 한계 ····· 198
3. 외국법 데이터베이스 운용 시 유의사항 ····· 199
Ⅵ. 외국법 조사를 위한 인공지능(AI)의 활용 ····· 200
1.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외국법 조사 환경의 변화 ····· 200
2.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의 기능 ····· 200
3. 인공지능 활용의 위험요소 및 운용기준 ····· 201

제5장 준거법의 해석·적용 ····· 203

제1절 준거법인 외국법 불명 시의 처리 ····· 205
Ⅰ. 개관 ····· 205
Ⅱ. 판례의 입장 ····· 206
1.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근거한 3단계 구조의 채택 ····· 206
2. '조리(條理)'의 실질적 내용 ····· 207
가. 외국법에 가장 유사한 규범을 적용하는 '근사법(近似法)설' ····· 207
나. 보편적 규범을 적용하는 '일반 법원리설' ····· 208
다.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국내법 적용설' ····· 208
라. 검토 ····· 209

3. 외국법 불명 시의 처리에 관한 판례법리의 개선 방향 ····· 209
제2절 조약의 저촉규범성 및 우선적 적용 여부 ····· 210
Ⅰ. 개관 ····· 210
Ⅱ. 조약 조항의 저촉규범성 판단 ····· 211
1. 조약 조항의 저촉규범성 판단기준 ····· 211
2.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저촉규범성 여부 ····· 211
Ⅲ. 조약의 우선적용 여부 ····· 213
Ⅳ. 소결 ····· 215
제3절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 215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의 및 판단기준 ····· 215
1.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의 ····· 215
2.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 216
Ⅱ. 국제적 강행규정성에 관한 검토 ····· 217
1. 국제적 강행규정성이 문제되는 법 조항에 대한 검토 ····· 217
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17
나.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19
2. 판례상 국제적 강행규정성 판단 ····· 220
제4절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배제(공서조항) ····· 221
Ⅰ. 공서조항의 취지 ····· 221
Ⅱ. 공서조항의 적용요건 ····· 221
1.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것 ····· 222
2.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것 ····· 222
가. 공서 위반의 대상: 외국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 ····· 222
나. 공서 위반의 의미: 대한민국의 '국제적 공서' 위반 ····· 222
다. 공서 위반의 정도: 위반의 '명백성' ····· 225
Ⅲ. 공서 위반의 판단시점 및 공서조항 적용의 효과 ····· 227
1. 공서 위반의 판단시점 ····· 227
2. 공서조항 적용의 효과 ····· 227
Ⅳ. 공서 위반이 문제된 판례의 검토 ····· 228
1. 외국법이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2005889 판결(확정) ····· 228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228
나. 검토 ····· 230
2. 외국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와 이전등록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확정) ····· 235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235
나. 검토 ····· 236
3. 외국법이 외국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8나63343 판결(확정) ····· 238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238
나. 검토 ····· 240
4. 외국법이 파양을 전면 불허하는 경우
: 서울가정법원 1996. 10. 31. 선고 94드89245 판결(확정) ····· 242
5. 외국법이 이혼을 전면 불허하는 경우
: 서울가정법원 1981. 3. 11. 선고 79드2574 판결(확정) ····· 243
6. 외국법이 도박채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
: 서울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8가합48946 판결(확정) ····· 244
제5절 준거법인 외국법 해석·적용의 잘못과 상고이유 ····· 246

제6장 결론 ····· 249

참고문헌 ····· 258

234.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11

연구책임자: 김 봉 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7월 24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Ⅰ. 연구의 내용 ····· 4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일반적 고찰 ····· 9

제1절 법교육과 관련한 기초적 이론 ····· 11
Ⅰ. 법교육의 개념 ····· 11
Ⅱ. 법교육과 유사 교육과의 구별 ····· 14
1. 인권교육과의 구별 ····· 14
2. 정치교육과의 구별 ····· 14
Ⅲ. 법교육의 목적 ····· 16
Ⅳ.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개괄적 고찰 ····· 17
1. 법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 ····· 17
2. 법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 19
3. 법교육지원법을 통한 법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 ····· 25
Ⅴ. 법교육의 유형화 ····· 27

Ⅵ. 법교육 방식 ····· 27
1. 강의식 교육 ····· 28
2. 사례연구법 ····· 29
3. 모의재판 ····· 30
4. 판례 활용 법교육 ····· 32
5. 지역사회기반 학습 ····· 34
가. 현장 학습 ····· 34
나. 외부자원인사 활용 ····· 34
6. 역할놀이 ····· 35
7. 배심원 토론 ····· 36
8. 학생자치법정 ····· 38
9. 계기 수업 ····· 42
10. 교육연극 ····· 43
Ⅶ. 소결 ····· 45
제2절 학교 법교육과 학교 외 법교육 ····· 46
Ⅰ. 학교 법교육의 연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46
1. 대한제국 말기 ····· 46
2.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 ····· 46
3.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 47
4.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 48
5.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 49
6.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 50
7.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 50
8.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 51
9.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 52
가. 제7차 교육과정기 ····· 52
나. 2007 개정 교육과정 ····· 54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 55
라. 2015 개정 교육과정 ····· 57
10. 2022 개정 교육과정(현재) ····· 59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 59
나. 2022 개정 초·중 공통 교육과정 '사회'에서의 법 ····· 59
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사회2'에서의 법 ····· 61
라.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 63
Ⅱ.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 ····· 67
1.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 ····· 67
2. 학교 법교육의 문제점 ····· 69
가. 학교 법교육의 현실과 법교육 효과 등 ····· 69
나. 학교 법교육 교사의 문제 ····· 74
Ⅲ.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 ····· 75

Ⅳ. 소결 ····· 76

제3장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79

제1절 논의에 앞서 ····· 81
Ⅰ.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와 의의 등 ····· 81
1.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로서의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 ····· 81
가. 사법 신뢰의 측면 ····· 81
나. 사법 접근성의 측면 ····· 84
2. 청소년 법교육의 의의 ····· 85
3. 청소년 법교육의 강점 ····· 87
Ⅱ. 법원 법교육의 근거 ····· 88
제2절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93
Ⅰ. 서설 ····· 93
Ⅱ. 법원전시관 학교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 94
1. 초등학교 고학년 ····· 94
2. 중·고등학생 ····· 96
Ⅲ.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2025년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 97
1. 개요 ····· 97
2. 어린이 판사의 하루 ····· 98
가.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등 ····· 98
나. 설문조사 결과 ····· 99
3.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 101
가.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등 ····· 101
나. 설문조사 결과 ····· 102
4. 가인의 꿈, 나의 꿈 ····· 104
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 104
나. 설문조사 결과 ····· 105
5.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 106
6.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주요 후기 ····· 107
Ⅳ.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109
Ⅴ. 기타 법교육 프로그램 ····· 110
1. 법원전시관 견학 ····· 110
2. 사법역사문화관 법교육 프로그램 ····· 111
3. 대한민국 법원의 날 프로그램 ····· 112
4. 사법견학 프로그램 ····· 113
5. 대법원 유튜브 등 ····· 113
제3절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 ····· 115
Ⅰ. 서설 ····· 115
Ⅱ.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 ····· 116

Ⅲ.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 ····· 118
1. 초등학생 법교육 ····· 118
가. 법교육 일정 ····· 118
나. 설문조사 결과 ····· 118
2. 중학생 법교육 ····· 123
가. 법교육 일정 ····· 123
나. 설문조사 결과 ····· 124
3. 고등학교 법교육 ····· 127
가. 법교육 일정 ····· 127
나. 설문조사 결과 ····· 128
Ⅳ. 기타 ····· 132
제4절 각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133
Ⅰ. 법원의 법강연 ····· 133
1. 서설 ····· 133
2. 대전고등법원 ····· 133
3. 서울북부지방법원 ····· 134
4. 춘천지방법원 ····· 134
5. 기타 법원 ····· 136
Ⅱ. 법원 체험 프로그램 ····· 137
Ⅲ.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 143
1. 서설 ····· 143
2. 부산가정법원 ····· 144
3. 광주지방법원 ····· 144
4. 창원지방법원 ····· 145
제5절 소결 ····· 146

제4장 해외 주요국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49

제1절 미국 ····· 151
Ⅰ. 미국에서의 법교육 전개 ····· 151
Ⅱ. 미국 학교에서의 법교육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56
Ⅲ. 미국 법원에서의 법교육 ····· 161
1. 연방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161
2. 연방법원행정처의 청소년 법교육 ····· 165
3. 연방사법센터의 청소년 법교육 ····· 167
4. 국립 주 법원센터 ····· 168
5. 각 주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170
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 170
나. 워싱턴주 대법원 ····· 170
다. 코네티컷주 대법원 ····· 170

라. 미시간주 대법원 ····· 171
마. 테네시주 대법원 ····· 172
바. 유타주 대법원 ····· 172
제2절 영국 ····· 173
Ⅰ. 영국에서의 법교육 전개 ····· 173
Ⅱ. 영국에서의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76
Ⅲ. 영국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77
1. 영국 대법원 ····· 177
2. 국립사법박물관 ····· 178
3. 치안판사의 법교육 ····· 179
제3절 독일 ····· 180
Ⅰ. 독일에서의 법교육 전개 ····· 180
Ⅱ. 독일에서의 학교 법교육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82
1. 독일에서의 학교 법교육 ····· 182
2.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 185
3. 주 법무부 ····· 186
4. 독일 변호사협회 ····· 187
Ⅲ. 독일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89
1. 법원견학 ····· 190
2. 학교방문 법교육 ····· 191
제4절 일본 ····· 193
Ⅰ. 일본에서의 법교육 전개 ····· 193
Ⅱ. 일본에서의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95
1. 일본에서의 학교 법교육 ····· 195
2. 일본 법무성 ····· 196
3. 일본 변호사연합회 ····· 197
4.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 198
Ⅲ. 일본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99
1. 일본 최고재판소 ····· 199
2. 일본 하급재판소 ····· 201
제5절 소결 ····· 203

제5장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 207

제1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 209
Ⅰ. 법무부 ····· 209
1. 법교육 통합 플랫폼 이로운법 ····· 209
2.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 213
3. 청소년꿈키움센터 ····· 217
4. 검찰청 ····· 218

5. 법무부 법교육 최근 동향 ····· 218
가. 법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법교육의 강화 ····· 218
나. 유튜브 활동의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법교육의 활성화 ····· 220
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 221
Ⅲ. 법제처 ····· 224
Ⅳ.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 225
1. 헌법재판소 ····· 225
2. 헌법재판연구원 ····· 228
Ⅴ. 교육청 ····· 232
제2절 민간단체 ····· 235
Ⅰ. 한국법교육센터 ····· 235
Ⅱ.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 239
Ⅲ. 대형로펌 공익재단 ····· 242
제3절 소결 ····· 243

제6장 법원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 247

제1절 법교육 조직구성과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249
Ⅰ. 법교육 조직 ····· 249
1. 법원의 현황 ····· 249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1
3. 개선방안 ····· 251
Ⅱ. 법교육 전문인력 ····· 252
1. 법원의 현황 ····· 252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3
3. 개선방안 ····· 253
제2절 법원의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 ····· 255
Ⅰ. 법교육 대상 인원의 확대 ····· 255
1. 법원의 현황 ····· 255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6
3. 개선방안 ····· 256
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법교육 지역의 확대 ····· 258
1. 법원의 현황 ····· 258
2.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8
3. 개선방안 ····· 259
제3절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 261
Ⅰ. 법원 체험형 법교육의 의의 ····· 261
Ⅱ.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61
Ⅲ. 법원의 현황과 개선방안 ····· 262
제4절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 ····· 265

Ⅰ. 법원의 현황 ····· 265
Ⅱ.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66
Ⅲ. 개선방안 ····· 269
제5절 법원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 ····· 271
Ⅰ.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장점 ····· 271
Ⅱ. 법원의 현황과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의 의의 ····· 271
Ⅲ.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72
Ⅳ.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핵심적 내용 구성 ····· 273
제6절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 275
Ⅰ. 규칙제정의 필요성 ····· 275
Ⅱ. 규칙제정안의 예시 ····· 275
제7절 기타 ····· 278
Ⅰ. 법교육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의 확대 ····· 278
Ⅱ. 법교육 경연대회의 활성화 ····· 279
Ⅲ.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 ····· 280
1.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의의 ····· 280
2.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 방안 ····· 280

제7장 결론 ····· 283

참고문헌 ····· 290

235.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12

연구책임자: 이 규 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7월 31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 방법 ····· 6
1. 국내외 문헌 및 정책보고서 분석 ····· 6
2. 법관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 ····· 7
3. 비교법적 분석, 시사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 ····· 7

제2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 및 현황 ····· 9

제1절 연혁 및 운영 근거 ····· 11
Ⅰ. 서설 ····· 11
Ⅱ. 연혁 ····· 12
1. 1988년 가칭 '법원경찰대' 설치 법안 제출 ····· 12
2.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법원경찰대 창설 검토 ····· 13
3. 인적 구성 ····· 13

가. 법정방호 ····· 14
나. 청사방호 ····· 14
4.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 14
가. 법원조직법 개정(2005. 12. 23. 법률 제7730호) ····· 14
나. 채용 및 교육·훈련 ····· 15
5.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 변경 ····· 16
가. 법원보안관리대(2014. 1. 7.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제12188호) ····· 16
나. 인적 구성 ····· 16
Ⅲ. 설치 및 운영의 근거 ····· 16
1. 헌법 ····· 16
2. 법원조직법 ····· 17
3. 대법원 규칙 ····· 19
4. 대법원 예규 ····· 21
5. 기(旗)에 관한 예규 ····· 23
6. 보고지침 ····· 23
Ⅳ. 보안관리 권한의 근거 ····· 24
1. 법정경찰권(법정질서유지권) ····· 24
가. 근거 ····· 25
나. 내용 ····· 26
2. 청사관리권 ····· 27
가. 근거 및 지휘체계 ····· 27
나. 내용 ····· 29
3. 권한의 범위 ····· 30
가. 시간적 범위 ····· 30
나. 장소적 범위 ····· 30
제2절 운영 현황 ····· 32
Ⅰ. 인적 구성 및 근무 현황 ····· 32
1. 인적 구성 ····· 32
가. 직렬 구성 내력 ····· 32
나. 구성원 ····· 33
2. 근무 현황 ····· 35
가. 직렬별 근무 인원 ····· 35
나. 업무별 근무 인원 ····· 37
Ⅱ. 물적 설비 현황 ····· 41
1. 개요 ····· 41
2. 보안장비 및 운용 매뉴얼 ····· 42
가. 전국 법원 보안장비 현황 ····· 42
나.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 ····· 45
3. 유형력 행사 기준 ····· 46
4. 물적 설비 현황 분석 ····· 46

Ⅲ. 제복 ····· 47
1. 현황 ····· 47
가. 대원복 상의 ····· 48
나. 대원복 하의 ····· 49
다. 대원복 재킷 ····· 50
라. 모자와 넥타이 ····· 51
마.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 ····· 52
바. 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 ····· 53
2. 착용 모습 ····· 54
가. 하복, 춘추동·하복 재킷, 여름철 기능성 간편복 ····· 54
나. 춘추·동 점퍼, 춘추·동복 ····· 55
3. 지급 방법 ····· 55
제3절 사건·사고 발생 및 대처 현황 ····· 56
Ⅰ. 사건 현황 및 분석 ····· 56
1.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 56
2.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사고별 발생 비율 ····· 57
3.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사고 발생 건수 추이 ····· 57
4. 대표적 주요 사례 ····· 58
가.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폭언, 욕설 ····· 58
나. 재판 진행 중 소송관계인 등에 대한 폭언, 폭행 ····· 59
다. 법정에서 무단 녹음 및 녹화 행위 ····· 60
라. 청사 내 각 실·과 사무실 등에서 소란 ····· 61
마. 법정구속 시 도주행위 ····· 61
5. 사건 분석 ····· 62
Ⅱ. 대처 현황 및 분석 ····· 63
1.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사고 처리 결과 ····· 63
2.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사고별 처리 결과 비율 ····· 64
3.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사고 처리 결과 추이 ····· 64
4. 결과 분석 ····· 65
Ⅲ. 법정 외 청사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및 조치 ····· 65
Ⅳ. 형사처벌 사례 ····· 66
1. 개요 ····· 66
2. 주요 사례 ····· 66
3. 사례 분석 ····· 73
제4절 청사방호 대책 현황 ····· 75
Ⅰ. 2016년 안전한 근무환경 TFT ····· 75
1. 배경 ····· 75
2. 대책 및 성과 ····· 75
Ⅱ. 2019년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 TFT ····· 76
1. 배경 ····· 76

2. 대책 및 성과 ····· 76
Ⅲ. 2023년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 ····· 77
1. 배경 ····· 77
2. 대책 및 성과 ····· 77
Ⅳ. 2024년 법정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 78
1. 배경 ····· 78
2. 대책 및 성과 ····· 78
Ⅴ. 소결 ····· 78

제3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문제 ····· 81

제1절 조직운영상 비효율성 ····· 83
Ⅰ. 직렬 구성의 다원성 ····· 83
1. 법원경위 ····· 83
가. 법원조직법상 법정 사무 집행기관 ····· 83
나. 형사소송법상 권한 ····· 84
2. 방호원 ····· 85
3. 청원경찰 ····· 85
가. 제도 개관 ····· 85
나. 직무 범위 ····· 86
Ⅱ.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 ····· 87
1. 직렬 상호 간 업무 불균형 ····· 87
2.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집행 업무 ····· 88
3. 승진 불균형으로 인한 지휘체계의 취약성 ····· 89
4. 인터뷰 내용 ····· 90
Ⅲ. 조직의 지휘 및 업무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 91
1. 지휘·감독 체계 ····· 91
2. 업무관리·감독 체계 ····· 92
가. 안전관리관의 분장사무 ····· 92
나. 비상계획 업무와 법원보안관리 업무 ····· 93
3. 인터뷰 내용 ····· 94
Ⅳ. 분석 ····· 95
제2절 유형력 행사의 기준 및 요건의 불명확성 ····· 96
Ⅰ. 근거 및 기준 ····· 96
1. 근거 ····· 96
2. 기준 ····· 96
3.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비교 ····· 97
Ⅱ. 요건의 불명확성 ····· 102
1. 포괄적 규정 ····· 102
2. 경찰청과 비교 ····· 103

가. 규칙 제정(경찰청예규 제550호, 2019. 7. 18. 일부개정) ····· 103
나. 3대 원칙 ····· 103
다.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 ····· 104
3. 인터뷰 내용 ····· 106
Ⅲ. 분석 ····· 108
제3절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및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 109
Ⅰ.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 109
1. 법정경찰권의 한계 ····· 109
2. 청사관리권의 한계 ····· 110
3. 인터뷰 내용 ····· 110
Ⅱ.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 112
1. 구조적 한계 ····· 112
가. 사건 대응형 TFT ····· 112
나. 책임부서의 필요 ····· 112
2.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 ····· 112
가. 시설물 확충에 집중 ····· 112
나. 제도 개선 방안 필요 ····· 113
제4절 제복 ····· 113
Ⅰ. 의미 ····· 113
1. 제복 디자인의 구성요소 ····· 114
가. 상징성 ····· 114
나. 기능성 ····· 114
다. 심미성 ····· 114
2. 착용 효과 ····· 115
Ⅱ. 대한민국 경찰 제복 ····· 115
1. 서설 ····· 115
2. 변천 ····· 115
3. 제복 개선 ····· 116
Ⅲ. 법원보안관리대 제복 ····· 117
1. 인터뷰 내용 ····· 117
2. 개선 요청 의견 ····· 118
Ⅳ. 분석 ····· 118

제4장 외국 법원 및 국내 기관의 보안조직 현황 ····· 121

제1절 서론 ····· 123
제2절 주요국 법원 보안조직 현황 ····· 124
Ⅰ. 미국 ····· 124
1. 현황 ····· 124
가. 연방법원의 보안담당기관 ····· 124

나. 연방마샬(U.S. Marshals Service) ····· 124
다. 보안장비 ····· 126
라. 유형력 행사 ····· 127
마. 미국 법무부 부서 공통 유형력 사용 정책 ····· 130
2. 시사점 ····· 132
Ⅱ. 영국 ····· 133
1. 현황 ····· 133
가. 잉글랜드·웨일스 ····· 133
나. 사법절차와 법원 운영에 관한 법률(Courts Act 2003) ····· 135
2. 시사점 ····· 136
Ⅲ. 독일 ····· 137
1. 현황 ····· 137
가. 법정보안관리대 ····· 137
나. 권한체계의 법적 근거 ····· 140
다. 유형력 행사의 근거 ····· 141
라. 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 ····· 147
마. 유형력의 행사 요건 ····· 148
바. 비례성의 원칙 ····· 149
사. 사법경찰적 권한 행사 ····· 150
2. 시사점 ····· 150
Ⅳ. 일본 ····· 151
1. 현황 ····· 151
가. 법정 및 청사보안 업무 ····· 151
나. 유형력 행사 수단 ····· 153
2. 시사점 ····· 154
제3절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 현황 ····· 155
Ⅰ. 국회 ····· 155
1. 방호체계 ····· 155
가. 국회경위직 ····· 155
나. 국회방호직 ····· 156
다. 국회경비대 ····· 156
2. 임무 및 권한 ····· 156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57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58
Ⅱ. 행정부(중앙행정기관·정부청사) ····· 158
1. 방호체계 ····· 158
2. 임무 및 권한 ····· 159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59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60
Ⅲ. 헌법재판소 ····· 160

1. 방호체계 ····· 160
2. 임무 및 권한 ····· 161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61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62
Ⅳ. 검찰청 ····· 162
1. 방호체계 ····· 162
2. 임무 및 권한 ····· 163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63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63
Ⅴ.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이 주는 시사점 ····· 164
1. 법적 근거 마련 ····· 164
2. 유형력 행사 규정의 구체성 ····· 166
3. 비상대비와 청사보안 업무의 조직 분리 ····· 168

제5장 개선방안 ····· 171

제1절 법원경찰대 도입 방안 ····· 173
Ⅰ. 서설 ····· 173
Ⅱ. 도입 시 제반 검토사항 ····· 174
1. 권력분립의 문제 ····· 174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 175
가. 제도 배경 ····· 175
나. 사법경찰권 부여 ····· 175
다. 특징 ····· 176
라. 수사권 ····· 176
3. 신변보호 조치 규정 도입 ····· 177
4. 구인영장 집행 및 소재탐지 권한 부여 여부 ····· 178
5.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원조 ····· 178
가. 경찰원조의 실질화 ····· 179
나. 법원보안관리대의 집행원조 ····· 179
6. 지휘체계 구성 ····· 180
가. 지휘체계 ····· 180
나. 정책 총괄부서 ····· 180
7. 인권침해 방지 및 부당소송 지원 대책 마련 ····· 180
가. 인권침해 방지 ····· 180
나. 부당소송 및 고소·고발로부터 대응 ····· 181
8. 인터뷰 내용 ····· 182
Ⅲ. 도입 방안 ····· 184
1. 수사권 포함 여부 ····· 184
2. 구인영장 집행 및 소재탐지 권한 부여 여부 ····· 185

3.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원조 여부 ····· 186
4. 청원경찰의 증원 배치 방안 ····· 187
Ⅳ. 소결 ····· 188
제2절 조직운영상 개선방안 ····· 190
Ⅰ. 다원적 구성원의 통합 ····· 190
1. 기능적 통합 ····· 190
가.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 ····· 190
나.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안 ····· 194
다.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 195
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 196
2. 직렬 간 정원 통합 ····· 196
가. 직렬 통합 ····· 196
나. 인터뷰 내용 ····· 198
다. 직급 간 정원 조정 ····· 199
Ⅱ. 조직의 지휘계통 및 업무관리의 체계화 ····· 200
1. 지휘계통의 체계화 ····· 200
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독립직제 필요성 ····· 200
나. 전임제 법원보안관리대장 및 부대장 설치 ····· 200
다. 인터뷰 내용 ····· 202
라.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및 운영예규 개정안 ····· 202
2. 업무관리의 체계화 ····· 204
가. 의미 ····· 204
나. 인터뷰 내용 ····· 204
다. 개선 방안 ····· 205
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 ····· 207
3. 소결 ····· 211
제3절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 마련 ····· 212
Ⅰ.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 ····· 212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 212
2. 인터뷰 내용 ····· 213
3. 규정 사항 ····· 214
가. 청사관리권의 장소적 범위 확장 ····· 214
나. 제2조 정의 ····· 215
다. 제3조 적용범위 ····· 216
라. 제4조 권한행사의 기본원칙 ····· 216
마. 직무 범위의 정비 및 추가 ····· 216
바. 보안장비의 사용 ····· 217
사. 보호장비의 사용 ····· 218
아. 직무질문 ····· 219
4. 제정안 제안 ····· 221

Ⅱ.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 ····· 224
1. 제정 취지 ····· 224
가. 제정의 목적 ····· 224
나. 제정의 필요성 ····· 225
다. 기본 방향(핵심 원칙) ····· 225
라. 주요 내용 ····· 225
마.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차별성 ····· 226
2. 제정안 제안(1안)
–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 ····· 227
3. 제정안 제안(2안)
– 현행 법원조직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 ····· 238
가. 대법원 규칙 제정권 ····· 238
나. 범위 ····· 238
다. 주요 내용 ····· 238
제4절 제복의 개선 ····· 247
Ⅰ. 고려사항 ····· 247
1. 제복 개선의 판단 기준 ····· 247
2. 인터뷰 내용 ····· 248
Ⅱ. 국내 기관별 제복 개선 사례와 시사점 ····· 249
1. 개선 사례 ····· 249
가.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 249
나. 소방공무원 제복 재질 개선 연구용역 ····· 249
다. 해양경찰청 ····· 249
2. 시사점 ····· 250
Ⅲ. 제복 개선의 추진방향 ····· 250
1. 기본방향 ····· 250
2. 단계적 추진 방안 ····· 251
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선행 ····· 251
나. 업무별 조건 및 근무환경 분석 ····· 252
다. 디자인과 소재의 구성 ····· 252
라. 의견수렴 절차 ····· 252
3. 추진의 우선순위 ····· 253

제6장 결론 ····· 255

참고문헌 ····· 260

236.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13

연구책임자: 신 유 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백 수 빈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2026년 8월 6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내용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후견 및 후견감독 제도 개관 ····· 7

제1절 현행 후견제도 ····· 9
Ⅰ. 후견의 의의 ····· 9
Ⅱ.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 ····· 9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9
2.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 10
3. 성년후견의 유형 ····· 10

Ⅲ.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 ····· 13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목적 ····· 13
2. 2011년 개정 민법의 미성년후견제도 ····· 14
3. 미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 및 후견인의 권한 ····· 14
Ⅳ. 후견사건의 진행 ····· 15
1. 성년후견 사건 ····· 15
2. 미성년후견 사건 ····· 20
제2절 현행 후견감독제도 ····· 22
Ⅰ. 후견감독 ····· 22
1. 의의 ····· 22
2. 후견감독의 필요성 ····· 22
3. 후견감독기관 ····· 23
Ⅱ.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 24
1. 근거 규정 ····· 24
2. 후견감독사무의 특성 ····· 27
3. 후견감독 절차 ····· 28

제3장 외국의 후견감독 제도 ····· 33

제1절 일본의 후견감독 제도 ····· 35
Ⅰ. 일본의 후견 제도 ····· 35
Ⅱ. 일본의 후견감독 실무 ····· 36
1. 가정재판소의 감독과 후견감독인 제도 ····· 36
2.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 부담에 대한 대응 ····· 37
Ⅲ. 시사점 ····· 39
제2절 미국의 후견감독 제도 ····· 41
Ⅰ. 미국의 후견 제도 ····· 41
Ⅱ. 통일후견보호조치법의 후견감독 체계 ····· 42
1. 신상관리 후견 ····· 42
2. 재산관리 후견 ····· 42
Ⅲ. 미국 후견감독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안 ····· 43
1. 후견감독 실무의 문제점 ····· 43
2. 개선안 ····· 44
Ⅳ. 시사점 ····· 45
제3절 독일의 후견감독 제도 ····· 46
Ⅰ. 독일의 후견 제도 ····· 46
Ⅱ. 후견법원의 후견 감독 ····· 47
1. 후견법원의 조직과 기능 ····· 47
2. 후견법원의 지원과 감독 ····· 47
Ⅲ. 후견청의 감독 지원 ····· 48

1. 후견청의 관할과 조직 ····· 48
2. 후견청의 역할 ····· 49
Ⅳ. 시사점 ····· 50

제4장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문제점 ····· 51

제1절 후견감독실무 현황 ····· 53
Ⅰ. 개관 ····· 53
Ⅱ. 각 법원의 후견감독사건 수 ····· 54
1. 연도별 후견감독 개시건수 ····· 54
2. 사건유형별 누적 개시건수 ····· 56
3. 연도별 후견감독 종국건수 ····· 59
4. 진행 중인 사건 수 ····· 61
Ⅲ. 각 법원의 인적 현황 ····· 64
1. 각 법원의 후견감독업무 담당 인원 ····· 64
2. 업무담당자 사무분담 형태 ····· 67
3. 보직기간 ····· 71
Ⅳ. 후견감독업무 처리 절차 ····· 72
1. 사건 분류 및 관리 방식 ····· 73
2. 후견인 교육 ····· 74
3. 초기후견감독 ····· 77
4. 정기후견감독 ····· 79
5. 심층후견감독 ····· 83
6. 후견감독 종료 ····· 84
Ⅴ. 각 법원의 업무지침 및 양식 ····· 87
1. 각 법원의 업무지침 ····· 87
2. 각 법원의 보고서 양식 ····· 88
Ⅵ. 후견감독업무 지원체계 관련 현황 ····· 89
1. 외부 전문가 위원의 위촉 및 운영 ····· 89
2.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 92
3. 후견감독담당자 연수 및 교육 ····· 94
Ⅶ. 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 95
1. 설문조사 개요 ····· 95
2.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기초정보 ····· 96
3. 업무의 비중 ····· 98
4. 업무량 ····· 106
5. 업무 수행의 어려움 ····· 109
6. 적정 보직기간 ····· 112
7. 전담 업무담당자 필요 여부 ····· 113
8. 소결론 ····· 113

Ⅷ. 서울가정법원 실무 운영 체계 ····· 114
1. 개관 ····· 114
2. 후견센터 설치와 초기 운영 ····· 115
3. 후견감독사건 관리 절차 개선 ····· 116
4. 후견과 설치 ····· 120
제2절 현행 후견감독실무의 문제점 ····· 121
Ⅰ. 인력 운용 및 사무분담 문제 ····· 121
1. 인력 수의 부족 ····· 121
2. 사무분담 관련 문제 ····· 122
3. 보직기간 ····· 125
Ⅱ. 법원별 업무처리 절차와 감독 정도의 상이 ····· 126
Ⅲ. 통일적 업무지침 및 지원체계 부재 ····· 128
1. 업무지침 ····· 128
2. 지원체계 부족 ····· 129

제5장 후견감독실무 개선방안 ····· 131

제1절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 ····· 133
Ⅰ. 인력 운용 및 사무분담 개선 ····· 133
1. 후견감독사건 전담 인력 배치 ····· 133
2. 후견감독사무 전문직위 활용 확대 ····· 134
3. 후견사건 담당 조직 개편 ····· 137
Ⅱ. 통일적인 후견감독업무 시스템 마련 ····· 140
1. 통일적 업무지침 마련 ····· 140
2.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개정 ····· 154
Ⅲ. 감독업무 지원 전문가 활용 방안 ····· 158
1.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 ····· 158
2. 운영 방안 ····· 159
3.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 160
Ⅳ. 국선후견인 제도 정비 ····· 162
1. 국선후견인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 162
2. 국선후견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166
3. 사건 관리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 167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 168
Ⅰ. 논의의 배경 ····· 168
Ⅱ. 각 방안에 관한 검토 ····· 169
1. 본원에서 지원의 후견감독업무를 보조·지원하는 방안 ····· 169
2. 후견사무전담기구 설치 방안 ····· 169
3. 관할 집중 방안 ····· 170
4. 검토 ····· 171

Ⅲ. 가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 172
1. 현행 가사소송법상 후견감독사건의 관할 ····· 172
2. 기존 가사소송법 개정안 ····· 172
3. 가사소송법 개정안 ····· 174

제6장 결론 ····· 177

237. 의료조력사 법제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14

연구책임자: 김 성 돈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8월 19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Ⅰ. 연구의 범위 ····· 6
Ⅱ.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의료조력사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 ····· 11

제1절 의료조력사의 의의 ····· 13
Ⅰ. 의료조력사 용어의 변화 ····· 13
1. 의료조력사 정의 ····· 13
2. 용어사용의 변화: 의사조력자살→의료조력사 ····· 14
3. 소결: 용어 사용('의료조력사')과 정의(구성요소) ····· 15
Ⅱ. 구별개념 ····· 16
1. 연명의료중단과 구별 ····· 16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별 ····· 17
3. 완화의료의 최후수단인 '완화 진정'과 의료조력사의 구별 ····· 18

4. 존엄사와 의료조력사의 관계 ····· 19
5. 안락사와의 의료조력사의 구별 ····· 20
Ⅲ. 의료조력사와 안락사 용어사용의 혼선 ····· 21
1. 의료조력사를 안락사의 하위유형으로 취급하는 예 ····· 22
2. 의료조력사와 안락사가 용어적으로 서로 충돌되고 있는 예 ····· 23
3. 입법례 소개에 대한 부정확 ····· 23
제2절 형법적 개념과의 조응을 통한 용어의 정리 ····· 25
Ⅰ. '안락사'라는 용어의 다의성과 다맥락성 ····· 25
1. 안락사 용어의 다의적 사용례 ····· 25
2. 안락사 용어의 문제점과 대안적 용어의 등장 ····· 26
3. 한국에서의 안락사와 사망조력이라는 용어 및 그 다맥락성 ····· 27
Ⅱ. 의사의 개입 양태를 기준으로 한 생애 말기의 사망 유형화 ····· 29
1. 요청에 따른 적극적 사망조력(Active Sterbehilfe/Assisted Dying) ····· 30
2. 요청에 따른 소극적 사망조력(Passive Sterbehilfe/Assisted Dying) ····· 32
3. 간접적 사망조력(=간접적 안락사) ····· 33
4. 소결: '의료조력사'의 체계적 지위와 의의 ····· 34
Ⅲ. 안락사와 의료조력사의 개념적 구별을 전제로 한 법제화 논의 ····· 35
Ⅳ. 소결 ····· 38
1. 의료조력사망(MAID)의 독자성과 최종 행위 주체의 문제 ····· 38
2. 개입 시기와 환자 상태에 따른 구별 ····· 39

제3장 의료조력사 도입배경과 찬반론 ····· 41

제1절 의료조력사 법제화 논의 등장 배경 ····· 44
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화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담론 ····· 44
Ⅱ. 완화의료의 한계(경험) 극복을 위한 돌파구 모색 ····· 46
Ⅲ. 임종기 요건과 관련하여 '수동적 죽음'과 '능동적 죽음'의 형평성 문제 ····· 47
Ⅳ. 헌법적 자기결정권의 확장논리와 예외상황에서의 의료조력에 대한
비범죄화 요구 ····· 48
제2절 의료조력사 법제화 찬반론 ····· 50
Ⅰ. 의료조력사 찬성론 ····· 51
1. 의료조력사 제도는 말기 환자들의 '좋은 죽음(good death)'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 ····· 51
2. 현행법상 완화의료를 통해서는 고통제거에 한계가 있다. ····· 53
3. 의료조력사는 고통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 55
4. 의료조력사는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57
Ⅱ. 의료조력사 반대론 ····· 58
1. 의료조력사는 자살을 정상화 내지 법제화한다. ····· 58
2. 의료조력사 법제화는 의사의 직업윤리와 상충한다. ····· 59

3. 의료조력사의 성급한 도입 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충이 선결과제이다. ····· 60
4. 의료조력사는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 집단을 위험에 빠뜨린다. ····· 61
5. 의료조력사의 법제화는 안락사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면 또는 도덕적 벼랑을 만든다. ····· 62
6. 아직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 63
Ⅲ. 소결: 반대론에 대한 반박 ····· 64
1. 의료조력사의 법제화는 자살의 제도화가 아니다. ····· 64
2. 의료조력사는 의료윤리와 의사의 직업윤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 66
3.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료조력사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에 있다. ··· 73
4. 잠재적 남용 우려와 확산 위험은 강력한 통제장치를 통해 막을 수 있다. · 81
5. 종교적 차원의 반대론도 극복 불가능하지 않다. ····· 87
6. 소결: 제도적 필요성과 규범적 정당화 요구의 충족 ····· 89

제4장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지위와 인정 범위 ····· 91

제1절 삶의 종말기 환자의 권리 확장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 93
Ⅰ. 자기결정권의 정의, 의의, 한계 ····· 93
1. 정의 ····· 93
2. 의의 ····· 93
3. 한계 ····· 94
Ⅱ. 의료조력사 법제화와 자기결정권의 관계 ····· 94
1.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일보전진과 의료조력사 법제화와의 접점 ····· 94
2. 자살과 자살방조죄, 의료조력사망 ····· 95
제2절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양한 법리들 ····· 97
Ⅰ. 미국 연방대법원(1997) – 죽을 권리 및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의 부정 ···· 97
1. 경과 ····· 97
2. 연방대법원의 논증구조와 판시 내용 ····· 97
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 99
4. Glucksberg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의 ····· 100
5. Glucksberg 판결에 대한 비판론 ····· 100
Ⅱ. 독일의 헌법재판소(2020) – 자살권, 조력자살권 등 포괄적 자기결정권 인정 ····· 102
1. 개요 ····· 102
2.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자기결정적 죽을 권리의 내용 ····· 103
3.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자기결정권의 관계 ····· 104
4.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논란 ····· 105
Ⅲ.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2020) – 죽음을 선택할 자기결정권 인정 ····· 106
1. 개요 ····· 106
2. 자기결정적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 106
3.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 108

Ⅳ. 캐나다의 연방대법원(2014) ····· 110
1. 개요 ····· 110
2. Carter v. Canada 사건의 판결 요약 ····· 111
3. 판결의 결론 ····· 113
4. 판결의 의의 ····· 114
Ⅴ. 스위스 연방재판소(2006) – 죽음을 선택할 자기결정권 인정 ····· 115
1. 개요 ····· 115
2. 2006년 연방재판소 판결 내용 ····· 115
3. 판결의 의의 ····· 117
Ⅵ. 이탈리아 헌법재판소(2018/2019) ····· 118
1. 종래의 규범상황 ····· 118
2. 전환점: 헌법재판소 판결(207/2018→242/2019 소위 '카파토 판결') ····· 119
3.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의 논리와 자기결정권의 연결 ····· 121
4. 평가 및 시사점 ····· 122
5. 판결의 의의 ····· 123
Ⅶ.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 124
1. 안락사 합법화의 헌법적 근거(C－239/97/C－233/21) ····· 125
2. 의료조력사 허용 판결(C－164/2022) ····· 126
3. 안락사와 조력사망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한 헌법적 논거 ····· 127
4. 평가 및 의의 ····· 128
Ⅷ. 프랑스 헌법위원회(2017/2022) ····· 128
1.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헌법위원회 결정 ····· 129
2.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의 의의 ····· 130
Ⅸ. 한국의 대법원(2009/2014년)과 헌법재판소(2009년) ····· 130
1.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31
2.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 133
3. 2014년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4. 6. 26. 2009도14407 ····· 135
제3절 헌법적 자기결정권과 국가 생명보호 의무의 관계 ····· 139
Ⅰ.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리 비교 ····· 139
1.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인정 범위 비교 ····· 139
2.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 141
3. 각국의 헌법해석과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편차 ····· 144
4.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발전 방향 ····· 147
Ⅱ.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관계 ····· 149
1.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편차의 이유 ····· 149
2.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변화의 기류 ····· 150
3. 자살방조죄의 입법정책 변화와 의료조력사 법제화 요구의 접점 ····· 150

제5장 의료조력사 허용 입법례와 생명 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 153

제1절 자살방조 금지 국가에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 156
Ⅰ. 미국의 의료조력사법 ····· 156
1. 오리건 주의 존엄사법 ····· 157
2. 델라웨어 주의 의료조력사법 ····· 161
Ⅱ. 캐나다의 의료조력사법(MAID) ····· 166
1. 입법배경 및 의의 ····· 166
2. 현행 캐나다 의료조력제도 ····· 169
Ⅲ. 호주 ····· 175
1. 의의 및 배경 ····· 175
2. 호주 6개 주의 합법화 연혁과 개별 법률의 특징 ····· 176
3. 각 주의 자발적 조력사망법의 공통된 핵심 특징과 문제점 ····· 178
4. 호주 모델의 입법정책적 함의 평가 ····· 178
Ⅳ. 오스트리아: 조력사망의향서에 관한 법률(Sterbeverfügungsgesetz: StVfG) 180
1. 입법배경 ····· 180
2. StVfG에 규정된 의료조력사제도 내용 ····· 181
3. StVfG의 입법정책적 의의 ····· 185
Ⅴ. 프랑스 ····· 187
1. 입법 배경과 경과 ····· 187
2. 법률안의 내용 ····· 195
3. 입법정책적 함의 ····· 200
제2절 자살방조 허용 국가에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 203
Ⅰ. 독일: 허용과 금지 사이를 오가며 ····· 203
1. 개관: '자율성 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 203
2.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적·사회적 논의의 전개 ····· 203
3. 독일 입법 초안들에 나타난 생명보호의무의 입법정책적 구상 ····· 205
4. 독일 입법 구상의 비교법적 특징(타국 법제와의 차이점) ····· 208
Ⅱ. 스위스의 의료조력사를 규율하는 법제 ····· 209
1. 개관 ····· 209
2. 일부에서 제정된 법률 ····· 210
3. 예상되는 법제화 ····· 211
4. 독일 모델과 스위스 모델 비교 ····· 212
제3절 '적극적 안락사' 허용 국가 ····· 213
Ⅰ. 네덜란드 안락사법 ····· 213
1. 입법배경 ····· 213
2. 허용 요건 ····· 214
3. 제도적 운영 구조 및 절차 ····· 216
4. 제도의 법리적 특징 및 국제적 영향 ····· 217
5. 네덜란드 안락사 제도의 최근 변화(2020년, 2023~2024년) ····· 218
6. 입법정책적 의의 ····· 219
7. 운용현황 ····· 219

Ⅱ. 벨기에 안락사법 ····· 220
1. 배경 ····· 220
2. 「안락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2022년 5월 30일까지의 개정 사항 반영) ····· 221
3. 해석 및 적용범위 ····· 227
4. 입법정책적 의의 ····· 230
Ⅲ. 룩셈부르크 안락사법 ····· 231
1. 배경 ····· 231
2. 법률의 내용: 적극적 안락사 및 의료조력사의 포괄적 합법화 ····· 232
3. 입법정책적 평가 ····· 233
Ⅳ. 우루과이의 「안락사법(Ley de Eutanasia)」
– 의료조력사 불허 입법례(2025년) ····· 235
1. 배경 ····· 235
2. 법률의 내용 ····· 238
3. 입법정책적 내용 평가 ····· 239
제4절 국가 생명보호 패러다임 전환과 의료조력사 법제화 ····· 243
Ⅰ.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 연명의료 중단(소극적 안락사) ····· 243
Ⅱ.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생명보호 의무의 관계 재설정 ····· 254
1. 국가 생명보호의무 패러다임의 전환 ····· 254
2. 패러다임 전환을 추동시킨 철학적 프레임 워크 ····· 256
제5절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모습들: 입법모델론 ····· 259
Ⅰ. 법률적·의료적 통제로 이원화된 사전 통제 모델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260
Ⅱ. 권리 중심의 통합 및 사후통제 모델 (베네룩스 3국, 캐나다) ····· 261
Ⅲ. 특별법의 보호구역 설정을 통한 의료적 돌봄체계 모델 ····· 261

제6장 의료조력사 법제화 필요성과 정당성 ····· 263

제1절 생애 말기 환자의 의료적 선택에 관한 한국 법제 현황과 문제점 ····· 266
Ⅰ. 한국법제 현황 ····· 266
1. 허용되어 있는 선택지 ····· 266
2. 금지된 선택지 ····· 267
Ⅱ. 현행 법제의 문제점 ····· 269
1. ‘말기’와 ‘임종과정’의 인위적 구획에 따른 규범적 사각지대 ····· 269
2. 말기 환자의 선택권 공백과 고통의 강요 ····· 270
3. 의료조력사 법제화 필요성 ····· 271
Ⅲ. 한국에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시도 및 경과 현황 ····· 271
1. 개관 ····· 271
2. 조력존엄사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 ····· 273
3. 헌법재판소 헌법소원(형법의 자살방조죄에 관한 헌법소원) ····· 283
제2절 한국 헌법재판소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검토 ····· 286

Ⅰ.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와 자살방조죄의 관계 ····· 286
1. 가장 진보적 헌법해석(독일의 헌법재판소) ····· 286
2. 가장 보수적 헌법해석(미국의 연방대법원 등) ····· 287
3. 중도적 헌법해석(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 287
4. 요약 정리 ····· 288
Ⅱ. 한국 헌법재판소의 종래 입장과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확장론 ····· 290
1. 종래 입장과 문제점 ····· 290
2.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의료조력사망 요구의 등장 배경 ····· 291
3. 생명처분권 부정론 도그마를 넘어설 수 있는 규범적 조건의 변화
: 자기결정권에 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가능성 ····· 292
4. 보론: 이탈리아 헌법재판소(2019/2024)가 구성한 자기결정권 이론 ····· 297
Ⅲ. 소결: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 확장론 ····· 299
제3절 의료조력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론 ····· 302
Ⅰ. 의료조력사 법제화의 논리적·규범적·철학적 기초 ····· 302
1. 논리적 기초 ····· 302
2. 규범적 기초: 평등권과 생명보호 의무의 재해석 ····· 304
3. 철학적 관점의 분석: 조에(Zoe)에서 비오스(Bios)로 ····· 305
4. 소결: 불가피한 귀결로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 306
Ⅱ. 의료조력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모델론 ····· 306
1. 형법체계의 전면개정 방식 vs. 독립된 특별법을 통한
보호구역 설정 방식 ····· 307
2. '자살' 합법화 모델 vs. 합법적 '의료' 모델 ····· 309
3. 사후통제 모델 vs. 사전통제 모델 ····· 313
4. 실체적 권리 보장(확장)형 모델 vs 절차적 통제 모델 ····· 317
5. 사전의료지시서의 규범적 지위
: 전통적 방어모델 vs. 선행적 자율성 모델 ····· 319
6. 엄격한 기대 여명 요구 모델 vs 고통 중심 모델 vs 이원화 모델 ····· 323

제7장 의료조력사 법제화 방안 ····· 325

Ⅰ. 의료조력사 허용여부는 더 이상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이 아니다. ····· 327
Ⅱ. 의료조력사 허용의 법제화는 기본적으로 '권리모델'에 입각하여야 한다. ··· 327
Ⅲ. 권리모델에 기초한 의료조력사망제도는 의료적 절차 모델과 결합되어야 한다. 328
Ⅳ. 절차적 안전장치는 '사전 통제'를 주로 하고 '사후통제'로 보완되는
이원적 통제 체계로 최적화되어야 한다. ····· 329
1. 사전통제(법률적 통제+의료적 통제) ····· 329
2. 사후통제: 보건복지부 임종지원과 ····· 333
Ⅴ. 전환된 국가 생명보호 의무 패러다임하에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를 담당할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 333
1. 사전통제: 임종지원심사위원회 ····· 333

2. 사후통제: 보건복지부 임종지원과 ····· 333
Ⅵ. 의료조력사망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은
형법 자살방조죄와 독립된 특별법에 담는다. ····· 334

제8장 결론 ····· 335

238.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

연구보고서 2026-15

연구책임자: 박 진 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8월 20일 발행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Ⅰ.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9
1. 연구 방법론 채택하기 ····· 9
2. 문헌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10
3.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 11
제3절 연구의 구성 ····· 13

제2장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 ····· 17

제1절 서설 ····· 19
제2절 재판지연의 개념 ····· 21
Ⅰ. 재판지연 개념의 사정(射程) ····· 21

1. 내용 ····· 21
2. 법적 성격 ····· 22
3. '신속한 재판'의 의미 ····· 26
4. 얼마나 지연되어야 재판지연인가 ····· 27
5. 선거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 27
Ⅱ. 재판지연 문제의 가치내재적 특성 ····· 29
Ⅲ. 재판지연 문제의 대응 방식 ····· 32
제3절 재판지연의 현황 ····· 35
Ⅰ. 재판지연의 현 주소 ····· 35
Ⅱ. 사법통계상 재판지연 실태 ····· 36
1. 민사 본안사건 ····· 36
2. 형사 공판사건 ····· 37
3. 2년 초과 사건 수 ····· 39
Ⅲ. 재판지연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 42
1. 재판지연과 관련한 변호사협회 불편 사례 설문조사 (2022) ····· 42
2.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 (2023) ····· 42
제4절 재판지연 문제 대응의 시도들 ····· 45
Ⅰ. 개요 ····· 45
Ⅱ. 입법적 시도 ····· 45
1.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 45
2. 민사재판 ····· 46
3. 형사재판 ····· 47
4. 판사 임용 및 증원에 관한 법안 ····· 48
Ⅲ. 사법제도의 개선 ····· 49
제5절 소결: 사법통계의 필요성 ····· 51

제3장 재판지연 문제 대응을 위한 일본의 시도 ····· 53

제1절 서설 ····· 55
제2절 사법통계 체계 개선의 배경 ····· 56
Ⅰ. 일본에서의 재판지연 문제 부상 ····· 56
1. 개요 ····· 56
2. 타카다 사건 ····· 57
Ⅱ. 사법개혁의 흐름 ····· 60
1. 개요 ····· 60
2. 사법제도 개혁의 배경 ····· 61
3. 사법제도개혁심의회 ····· 61
4. 민사소송 이용자조사 ····· 62
5. 사법제도개혁 추진법 ····· 65

제3절 신속화법의 제정과 검증검토회의 설치 ····· 69
Ⅰ. 신속화법 ····· 69
1. 제정 배경 ····· 69
2. 주요 내용 ····· 70
Ⅱ. 검증검토회 ····· 74
1. 개요 ····· 74
2. 진행 방식 및 주요 내용 ····· 75
3. 검토회 위원목록 ····· 82
4. 검토회의 주요 내용 ····· 82
제4절 검증보고서 ····· 89
Ⅰ. 개요 ····· 89
Ⅱ. 검증보고서의 법적 근거 및 작성 주체 ····· 89
1. 법적 근거 ····· 89
2. 작성 주체 ····· 90
Ⅲ. 역대 검증보고서의 내용 분석 ····· 90
1. 제1회 ····· 90
2. 제2회 ····· 91
3. 제3회 ····· 92
4. 제4회 ····· 94
5. 제5회 ····· 95
6. 제6회 ····· 95
7. 제7회 ····· 96
8. 제8회 ····· 97
9. 제9회 ····· 98
10. 제10회 ····· 99
Ⅳ. 제11회 검증보고서의 주요 내용 ····· 100
1. 개요 ····· 100
2. 목차 ····· 102
3. 실정조사 ····· 104
4. 재판절차의 디지털화 ····· 106
Ⅴ. 검증보고서의 특징 ····· 108
1. 검증보고서의 서술방식상 특징 ····· 108
2. 검증보고서의 내용상 특징 ····· 110
3. 그 외의 특징 ····· 114
제5절 기타 사법통계 자료 ····· 122
Ⅰ. 개요 ····· 122
Ⅱ. 사법통계연보 및 재판소 데이터북 ····· 122
1. 사법통계연보 ····· 122
2. 재판소 데이터북 ····· 123
3. 담당 조직 ····· 124

4. 서술방식상의 특징 ····· 125
제6절 국내 도입의 대상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 ····· 128
Ⅰ. 신속화법 체계의 의의에 관한 평가 ····· 128
1. 개요 ····· 128
2. 신속화법에 관한 평가 ····· 128
3. 검증보고서의 의의 ····· 131
Ⅱ. 신속화법 체계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 ····· 134
1. 개요 ····· 134
2. 민사소송 이용자 설문조사 ····· 135
3. 신속화법 체계를 통한 제도의 개선 ····· 136
4. 평가 ····· 137
Ⅲ.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에 관한 평가 ····· 138
Ⅳ. 소결 ····· 141

제4장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과 과제 ····· 143

제1절 서설 ····· 145
제2절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 ····· 146
Ⅰ. 법원 사법통계의 법적 근거 ····· 146
1. 통계 작성의 목적 ····· 146
2. 수집 ····· 146
3. 관리 ····· 147
Ⅱ. 사법통계 조직 ····· 148
1. 개요 ····· 148
2. 사법정보화실 ····· 149
Ⅲ. 사법통계 업무 ····· 151
1. 개요 ····· 151
2. 업무 유형 ····· 151
3. 업무정의 및 상세화 ····· 152
제3절 주요 사법통계 자료 ····· 154
Ⅰ. 사법연감 ····· 154
1. 개요 ····· 154
2. 법적 근거 ····· 155
3. 사법연감 업무 프로세스 ····· 155
4. 2025년도 사법연감의 주요 내용 ····· 157
Ⅱ. 법원통계월보 ····· 166
1. 개요 ····· 166
2. 업무 프로세스 ····· 167
3. 주요 내용 ····· 168
제4절 현행 사법통계 체계의 한계 ····· 176

Ⅰ. 개요 ····· 176
Ⅱ. 사법통계 조직 및 업무에 있어서의 한계 ····· 176
1. 개요 ····· 176
2. 인력 구성과 역할의 한계 ····· 177
3. 업무의 유기적 연계 결여 ····· 177
4. 과도한 수작업 의존 ····· 177
5. 충분한 권한의 부재 ····· 178
Ⅲ. 사법통계의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 ····· 179
1. 개요 ····· 179
2. 수치 데이터 중심 사법통계의 한계 ····· 179
3. 데이터 제공 방식의 한계 ····· 180

제5장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방안 ····· 181

제1절 서설 ····· 183
제2절 국내 도입의 범위에 관한 검토 ····· 185
Ⅰ. 신속화법의 도입 여부 ····· 185
Ⅱ. 검증검토회 도입 여부 ····· 186
Ⅲ. 검증보고서 도입 여부 ····· 187
Ⅳ. 소결 ····· 188
제3절 국내 도입의 방안에 관한 검토 ····· 190
Ⅰ. 개요 ····· 190
Ⅱ. 구체적 방안에 관한 검토 ····· 190
1. (가칭)재판 적정·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 ····· 190
2. 검증보고서 작성 및 공표 방안 ····· 191
제4절 補論: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중장기적 과제와 개선방안 ····· 195
Ⅰ. 개요 ····· 195
Ⅱ. 사법통계 업무에 관한 과제 및 개선방안 ····· 195
Ⅲ. 단순반복 작업의 자동화 ····· 196
Ⅳ. 경험의 지식화, 지식의 데이터화 필요 ····· 197
제5절 소결 ····· 198

제6장 결론 ····· 201

제1절 주요 내용 ····· 203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 205